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017-10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해설·요약 -

1974

외 교 부

## | 일러두기 |

1. 이 해제집은 공개된 외교문서를 대상으로 하며, 최초(1949년) 생산된 문서부터 순차적으로 발간하여 금번에는 1974년도 문서를 수록하였다.
2. 해제는 각 문서철별로 문서 내용을 충실하게 요약·기술하고자 하였으며, 전반적인 흐름과 그 주요 내용을 집약함으로써 해당 문서철에 대한 최대한의 기본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3. 해제문의 수록 순서는 각 문서철의 연도순/주제순(분류번호순)이며 각 해제 첫머리에 문서철 제목·생산연도·생산부서·마이크로필름(MF) 번호 및 면수 등의 정보를 표기하였다.
4. 문서철 제목은 생산 당시 사용했던 국가명, 용어 등을 그대로 표기하였고, 해제문은 현재 시점의 국가명으로 표기하였다.
5. 해제집은 목차, 본문, 부록(1974년 외교일지)으로 구성하였다.

# 1974년도

1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 장례식, 전2권 (V.1 기본문서)	33
2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 장례식, 전2권 (V.2 각국 조문)	34
3	명예영사 활동보고-Brisbane(호주)	35
4	주Melbourne(호주) 명예영사관 설치 및 Frew, George N. 명예영사 임명, 1974.5.29.	36
5	주Copenhagen(덴마크)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37
6	Wagner, Jean 주Luxembourg(룩셈부르크) 명예영사 임명, 1974.2.6.	38
7	Seeyave, Rene Cheh 주Port Louis(모리셔스) 명예영사 임명, 1974.11.28.	39
8	Matook A. Hasanain 주Jeddah(사우디아라비아) 명예총영사 해임, 1974.1.10.	40
9	스웨덴 주재 명예영사 임명 추진	41
10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 스페인	42
11	주 Boston(미국)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43
12	Gribbs, Roman S. 주Detroit(미국) 명예영사 임명, 1974.1.22.	44
13	Smith, Milo M. 주Tampa(미국) 명예영사 임명, 1974.12.31.	45
14	1974년도 북미지역 주재 명예영사 현황 및 활용 방안	46
15	주재관(국방무관) 파견 - 인도네시아	47
16	주우루과이대사관 상주무관 파견건의	48
17	각국의 상훈제도	49
18	외국 훈장 수령	50
19	훈장수여 - 대만(구 자유중국)	51
20	훈장수여 - 뉴질란드	52
21	대통령 긴급조치[제1-4호] 선포 및 해제, 전3권 (V.1 제1-3호 선포)	53
22	대통령 긴급조치[제1-4호] 선포 및 해제, 전3권 (V.2 제4호 선포 및 제1·4호 해제 [제5호])	54
23	대통령 긴급조치[제1-4호] 선포 및 해제, 전3권 (V.3 자료)	55
24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구주지역의 반응	56
25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1 사건일지)	57
26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2 대일본 교섭대책 I : 1974.8.15.-9.4.)	58
27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3 대일본 교섭대책 II : 1974.9.5.-10.)	60
28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4 대일본 교섭대책 III : 1974.9.11.-30.)	62
29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5 대일본 교섭대책IV : 1974.10월-1975)	64
30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6 재외공관활동)	65
31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7 면담록 및 구술서)	66
32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8 주한 일본 공관 및 관저 난입사건)	67
33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9 국제법적 제문제 : 일본의 국가 책임 및 공범 인도)	68
34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10 수사 및 범인 인도)	69
35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11 저격범 문세광 등 공판 및 사형집행)	70
36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12 국외반응)	71
37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13 일본 언론 반응)	73
38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14 일본 신문기사철)	75
39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15 국내 신문기사철)	76

40	외국인에 대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의 적용문제 .....	77
41	지학순 천주교 원주교구장 구속사건 .....	78
42	김대중 납치사건. 전3권 (V.1 김대중 문제에 관한 한 · 일본 간 외교 교섭) .....	80
43	김대중 납치사건. 전3권 (V.2 일본 국회의원 동정) .....	82
44	김대중 납치사건. 전3권 (V.3 언론보도) .....	83
45	한국에서의 인권문제에 관한 보고서 .....	84
46	축 · 조전 발송에 관한 지시 .....	85
47	국제회의의 참가대표 신임장 발급 .....	86
48	대사파견 - 아프가니스탄 .....	87
49	대사파견 - 호주 .....	88
50	대사파견 - 방글라데시 .....	89
51	대사파견 - 벨기에 .....	90
52	대사파견 - 보츠와나 .....	91
53	대사파견 - 차드 .....	92
54	대사파견 - 칠레 .....	93
55	대사파견 - 카메룬 .....	94
56	대사파견 -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	95
57	대사파견 - 도미니카공화국 .....	96
58	대사파견 - 에콰도르 .....	97
59	대사파견 - Cairo(이집트) 총영사관 .....	98
60	대사파견 - EC(구주공동체) .....	99
61	대사파견 - 튀지 .....	100
62	대사파견 - 프랑스 .....	101
63	대사파견 - 가봉 .....	102
64	대사파견 - 가이아나 .....	103
65	대사파견 - 교황청 .....	104
66	대사파견 - 아이티 .....	105
67	대사파견 - 아이슬란드 .....	106
68	대사파견 - 인도 .....	107
69	대사파견 - 인도네시아 .....	108
70	대사파견 - 이란 .....	109
71	대사파견 - 일본 .....	110
72	대사파견 - 요르단 .....	111
73	대사파견 - 레소토 .....	112
74	대사파견 - 라이베리아 .....	113
75	대사파견 - 라오스 .....	114
76	대사파견 - 룩셈부르크 .....	115
77	대사파견 - 모로코 .....	116
78	대사파견 - 모리셔스 .....	117
79	대사파견 - 말라위 .....	118
80	대사파견 - 오만 .....	119
81	대사파견 - 스페인 .....	120
82	대사파견 - 스와질란드 .....	121

83	대사파견 - 토고 .....	122
84	대사파견 - 태국 .....	123
85	대사파견 - 튀니지 .....	124
86	대사파견 - 통가 .....	125
87	대사파견 - 영국 .....	126
88	대사파견 - 부르키나파소(구 오투볼타) .....	127
89	대사파견 - 월남 .....	128
90	대사파견 - 사모아(구 서사모아) .....	129
91	대사부임 - UNICEF(유엔아동기금) 대표부 .....	130
92	대사부임 - 칠레 .....	131
93	대사부임 - 캐나다 .....	132
94	대사부임 - 코스타리카 .....	133
95	대사부임 - 온두라스 .....	134
96	대사부임 - 인도 .....	135
97	대사부임 - 인도네시아 .....	136
98	대사부임 - 요르단 .....	137
99	대사부임 - 라이베리아 .....	138
100	대사부임 - 말레이시아 .....	139
101	대사부임 - 멕시코 .....	140
102	대사부임 - 네팔 .....	141
103	대사부임 - 미국 .....	142
104	대사부임 - 베네수엘라 .....	143
105	영사위임장 발급 .....	144
106	영사부임 - 대만(구 자유중국) .....	145
107	영사부임 - 캐나다 .....	146
108	영사부임 - 필리핀 .....	147
109	명예영사 접수 - 니카라과 .....	148
110	한상윤 주서울 콜롬비아 명예영사 인가 보류 .....	149
111	외교 특권 및 면제 제도 .....	150
112	주한 국제기구 전문가에 대한 외교관 대우 문제 .....	151
113	주한 외교기관 및 외교관 차량 구입·처분 문제 .....	152
114	주한 외국기관 부동산 관계. 전3권 (V.1 아주지역 I) .....	153
115	주한 외국기관 부동산 관계. 전3권 (V.2 아주지역 II) .....	154
116	주한 외국기관 부동산 관계. 전3권 (V.3 구주 및 미주지역) .....	155
117	미국 평화봉사단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의 건 .....	157
118	대중남미 외교시책 및 업무계획 .....	158
119	한국의 대EC(구주공동체) 제국 외교 .....	159
120	한·모로코 관계증진 방안 .....	160
121	한국의 대팔레스타인(PLO) 정책 .....	161
122	대아프리카 외교정책 .....	162
123	1974.18 긴급조치 선포에 대한 중국(구 중공)의 반응 .....	163
124	일본의 대한 정책 .....	164
125	중국(구 중공)의 대한반도 정책 .....	166

126	소련 언론의 대한반도 관계기사 보도 .....	167
127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	168
128	스웨덴의 외교정책(연설문) .....	169
129	미국의 대외정책 .....	170
130	메콩강 취항 한국선박 방호를 위한 크메르 군인 승선 및 무기탑재 문제 .....	171
131	한· 대만(구 자유중국) 정부 관계 .....	172
132	한· 중앙아프리카 정부 일반 .....	173
133	한· 프랑스 정부 일반 .....	174
134	한· 이스라엘 교류문제 .....	175
135	한· 이스라엘 정부 일반 .....	176
136	일본 언론의 반한기사 게재 및 왜곡 보도 .....	177
137	일본 좌익단체의 주일본공관 앞 시위 및 난입사건 .....	178
138	한국항공기의 일본 영공 침범 문제 .....	179
139	한· 일본 정부일반 .....	180
140	한· 일본 간 해저전선 분할에 관한 회의개최 계획 .....	181
141	한· 레바논 정부 일반 .....	182
142	한· 라이베리아 정부 일반 .....	183
143	한· 파키스탄 정부 일반 .....	184
144	한· 스웨덴 정부 일반 .....	185
145	한· 토고 정부 일반 .....	186
146	미국 하원 한국 관계 청문회. 전6권 (V.1 기본대책) .....	187
147	미국 하원 한국 관계 청문회. 전6권 (V.2 서한 발송) .....	188
148	미국 하원 한국 관계 청문회. 전6권 (V.4 1차 청문회 II: 연설문 및 회의록) .....	189
149	미국 하원 한국 관계 청문회. 전6권 (V.6 홍보자료) .....	190
150	한· 미국 정부 일반 .....	191
151	소진철 주싱가포르총영사 관할국 브루나이 출장, 1974.12.21.-23. ....	192
152	Gonzalez Barros, Luis 일본상주 주한 콜롬비아대사 방한, 1974.4.14.-17. ....	193
153	Mohsen Abdel Khalek 주일본 이집트대사 비공식 방한, 1974.3.24.-31. ....	194
154	Hasan Bukres 주일본 리비아대사 방한, 1974.7.23.-27. ....	195
155	김동성 주아르헨티나대사 겸임국 파라과이 출장 .....	196
156	동구권 외교관 직접 접촉 .....	197
157	Mulamba, Leonard 일본 상주 주한 자이르대사 방한, 1974.4.12.-16. ....	198
158	호주· 소련 관계 .....	199
159	브라질· 중국(구 중공) 관계 .....	200
160	미국· 중국(구 중공) 관계에 있어서의 대만(구 자유중국) 문제 .....	201
161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 관계 .....	202
162	미국· 대만(구 자유중국) 관계 .....	203
163	이집트· 중국(구 중공) 관계 .....	204
164	일본· 중국(구 중공) 관계 .....	205
165	파키스탄· 중국(구 중공) 관계 .....	206
166	중국(구 중공)· 토고 관계 .....	207
167	태국· 중국(구 중공) 관계 .....	208
168	중국(구 중공)· 소련 관계 .....	209

169	미국·중국(구 중공) 관계 .....	210
170	쿠바·소련 관계 .....	211
171	미국·쿠바 관계 .....	212
172	이집트·리비아 관계 .....	213
173	이집트·미국 관계 .....	214
174	핀란드·소련 관계 .....	215
175	인도·소련 관계 .....	216
176	일본·소련 관계 .....	217
177	일본·미국 관계 .....	218
178	코헨 미국 대학교수 발언 문제 .....	219
179	다나카(田中) 일본 수상 동남아 순방, 1974.1.7.-17. ....	220
180	튀니지·리비아 통합 노력 .....	221
181	노르웨이·소련 관계 .....	222
182	미국·소련 관계 .....	223
183	Kissinger, Henry A. 미국 국무장관 중국(구 중공) 방문, 1974.11.25.-29. ....	224
184	Ford, Gerald R. 미국 대통령 소련 방문, 1974.11.23.-24. ....	225
185	대공산권 관계개선 방안 .....	226
186	재외공관을 통한 중국(구 중공) 외교관 직접접촉 .....	227
187	한·중국(구 중공) 관계개선 .....	228
188	국교수립 교섭 - 이집트 .....	229
189	국교수립 - 그레나다, 1974.8.1. ....	230
190	국교수립 - 라오스, 1974.7.25. 전2권 (V.1 1958-62) .....	231
191	국교수립 - 라오스, 1974.7.25. 전2권 (V.2 1963-74) .....	233
192	국교수립 - 네팔, 1974.5.15. ....	235
193	국교수립 - 오만 .....	236
194	국교수립 - 카타르, 1974.4.18. ....	237
195	국교수립 교섭 - 남아프리카공화국 .....	238
196	소련의 대한정책 및 우방국을 통한 한·소련 관계개선 .....	239
197	한·소련의 관계개선을 위한 소련 외교관 직접 접촉 .....	240
198	국교수립 교섭 - 북예멘 .....	241
199	재외공관(상주) 설치 계획 .....	243
200	재외공관 설치교섭 - 보츠와나 .....	244
201	캄보디아(구 크메르) 대사관 비상철수 계획 및 무관 가족 출국 .....	245
202	재외공관 설치 - 코스타리카, 1974.9.11. ....	246
203	사이프러스 관할공관 변경 .....	247
204	재외공관 설치 - 에콰도르, 1974.3.15. ....	248
205	재외공관 설치 - 과테말라, 1974.9.10. ....	249
206	재외공관 설치 - 바티칸, 1974.4.8. ....	250
207	주오모베·요코하마·나고야영사관의 총영사관 승격, 1974.5.7. ....	251
208	재외공관 설치 - 자메이카, 1974.10.14. ....	252
209	주Beirut(레바논) 통상대표부 직원·가족 철수 및 복귀 .....	253
210	재외공관 설치 - 라오스 .....	254
211	재외공관 설치 - 시에라리온, 1974.11.27. ....	255

212	재외공관 폐쇄 - 토고, 1974.9.25.	256
213	사모아(구 서사모아) 및 통가 관할공관 재조정	257
214	미국령 사모아(American Samoa) 출장소 설치 노력	258
215	재외공관 설치 - Agana(미국) 총영사관, 1974.5.7.	259
216	재외공관 설치계획 - 미주지역	260
217	중미 지역 재외공관 관할 · 공관 재조정	261
218	주한공관 설치 - 아르헨티나, 1974.5.3.	262
219	주한공관 설치 - 대만(구 자유중국) 영사관(부산) 1974.5.31.	263
220	주한공관 설치 - 스웨덴, 1974.5.2.	264
221	중미 5개국가의 주한 공동대사관 설치 추진	265
222	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상회의, 제7차, Jakarta, 1974.5.7.-9.	266
223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과학기술등록처 장래 및 한국 분담금 문제	267
224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 제33차, 서울, 1974.5.22.	268
225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 제34차, 서울, 1974.6.14.	269
226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 제35차, 서울, 1974.12.3	270
227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임시회의, 제18차, 서울, 1974.7.2.	271
228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6-7차, 서울	272
229	OAS(미주기구) 총회, 제4차, Atlanta(미국) 1974.4.19.-5.1.	273
230	OAS(미주기구) 외상회의	274
231	NORDIC(북구협력기구) 이사회, 제22차, Stockholm, 1974.2.16.-20.	275
232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제4차, Paris, 1974.12.9.-10.	276
233	NORDIC(북구협력기구) 외상회의	277
234	EC(구주공동체) 외상회의	278
235	EC(구주공동체) 유엔 · 아주지역 전문기회의 및 정부국장회의	279
236	아랍 정상회담, 제7차, Rabat(모로코) 1974.10.26.-28.	280
237	이슬람 외상회의, 제5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74.6.21.-25.	281
238	이슬람 정상회담, 제2차, Lahore(파키스탄) 1974.2.22.-24.	282
239	OUA(아프리카단결기구) 제11차 정상회담 및 제23차 각료회의, Mogadishu(소말리아) 1974.6.6.-15.	283
240	OCAM(아프리카 · 말라가시공동기구) 외상 및 정상회담, 제8차, Bangui(중앙아프리카) 1974.8.6.-12.	284
241	신생독립국 승인 - 그레나다, 1974.2.7.	285
242	신정부승인 - 포르투갈, 1974.5.3.	286
243	독일 유학생 김성수(유럽거점 간첩단 연락책) 사건	287
244	민청학련사건 관련 일본인 구속 및 김대중 문제, 전3권 (V.11-5월: 일본인 기소)	288
245	민청학련사건 관련 일본인 구속 및 김대중 문제, 전3권 (V.2 6월-7.15: 일본인 구형)	289
246	민청학련사건 관련 일본인 구속 및 김대중 문제, 전3권 (V.3 7.16.-11월: 일본 반응, 가족면회 및 석방 문제)	290
247	서울 주재 일본 특파원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관련보도 및 이에 대한 규제	291
248	재한 일본인 유골 봉환	292
249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293
250	주요인사 접촉기록	294
251	주미국대사 서한 및 공관원 연설문	295
252	나영덕(羅英德) 주한 대만(구 자유중국)대사	296
253	교황청(구 바티칸) 교황 메시지	297
254	Kissinger, Henry A. 미국 국무장관 연설문 및 기자회견	298



255	재일본 국민의 재외재산 반환 신청문제 .....	300
256	공관장회의, 1974년도 - 북미 및 구주지역, 서울, 1974.7.8.-22, 전2권 (V.1 기본문서) .....	301
257	공관장회의, 1974년도 - 북미 및 구주지역, 서울, 1974.7.8.-22, 전2권 (V.2 회의결과) .....	303
258	공관장회의, 1974년도 - 아주지역, 서울, 1974.4.15.-29, 전3권 (V.1 기본문서) .....	304
259	공관장회의, 1974년도 - 아주지역, 서울, 1974.4.15.-29, 전3권 (V.2 회의진행 시나리오) .....	305
260	공관장회의, 1974년도 - 아주지역, 서울, 1974.4.15.-29, 전3권 (V.3 브리핑자료) .....	306
261	공관장회의, 1974년도 - 중남미지역, Rima(페루) 1974.3.18.-19, 전3권 (V.1 사전준비) .....	307
262	공관장회의, 1974년도 - 중남미지역, Rima(페루) 1974.3.18.-19, 전3권 (V.2 회의결과) .....	308
263	공관장회의, 1974년도 - 중남미지역, Rima(페루) 1974.3.18.-19, 전3권 (V.3 자료) .....	309
264	공관장회의, 1974년도 -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1974.5.7.-8, 및 5.11.-12, 전4권 (V.1 기본문서) .....	310
265	공관장회의, 1974년도 -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1974.5.7.-8, 및 5.11.-12, 전4권 (V.2 회의결과) .....	311
266	공관장회의, 1974년도 -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1974.5.7.-8, 및 5.11.-12, 전4권 (V.3 중동지역 공관장회의 자료) .....	313
267	공관장회의, 1974년도 -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1974.5.7.-8, 및 5.11.-12, 전4권 (V.4 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 자료) .....	314
268	국제학술회의, 제7차, 서울, 1974.6.25.-28, .....	315
269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상임위원회, 제11차, 동경, 1974.7.19.-20, .....	316
270	김종필 국무총리 동남아 순방 계획, 전3권 (V.1 사전준비) .....	317
271	김종필 국무총리 동남아 순방 계획, 전3권 (V.2 국별교섭 I) .....	318
272	김종필 국무총리 동남아 순방 계획, 전3권 (V.3 국별교섭 II) .....	319
273	김동조 경축 특사(외무장관) 브라질·베네수엘라 방문, 1974.3.10.-16, .....	320
274	김동조 외무장관 캐나다 방문, 1974.11.14.-15, .....	321
275	김동조 외무장관 프랑스 방문 .....	322
276	김동조 외무장관 교황청(구 바티칸) 방문, 1974.10.9.-13, .....	323
277	김동조 외무장관 페루 방문, 1974.3.16.-19, .....	324
278	김동조 외무장관 미국 방문 .....	325
279	노신영 외무차관 중남미 순방, 1974.10.24.-29, .....	326
280	함병춘 특사(주미국대사) 바하마 방문, 1974.9.10.-12, .....	327
281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2개국 순방, 1974.9.5.-12, .....	328
282	친선사절단 파키스탄 및 중미 순방, 1974.7.10.-8.8, 전2권 (V.1 사전준비) .....	330
283	친선사절단 파키스탄 및 중미 순방, 1974.7.10.-8.8, 전2권 (V.2 결과보고) .....	331
284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4개국 순방, 1974.7.16.-8.6, .....	332
285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5개국 순방, 1974.6.19.-7.6, .....	334
286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6개국 순방, 1974.6.16.-7.7, .....	336
287	특별사절단 서남아 순방, 1974.6.27.-7.6, 전2권 (V.1 기본문서집) .....	338
288	특별사절단 서남아 순방, 1974.6.27.-7.6, 전2권 (V.2 언론보도) .....	339
289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 1974.6.17.-7.5, 전2권 (V.1 기본문서집) .....	340
290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 1974.6.17.-7.5, 전2권 (V.2 자료집) .....	341
291	친선사절단 중미 순방, 1974.5.6.-18, .....	342
292	특별사절단 남미 순방, 1974.7.23.-8.3, .....	344
293	특별사절단 서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4.7.7.-17, .....	346
294	특별사절단 북구 순방, 1974.10.31.-11.12, .....	348
295	정일권 국회의장 남미 및 대만(구 중화민국) 순방, 1974.6.3.-22, .....	349
296	이철승 국회부의장 아주 순방, 1974.1.18.-2.17, .....	350
297	국회사절단 서구 순방, 1974.6.17.-7.6, .....	351

298	국회사절단 복구 순방, 1974.6.10.-28.	352
299	이범석 한국적십자사 부총재 터키 방문, 1974.4.27.-30.	353
300	비공식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 1974.6.26.-8.1.	355
301	실무사절단 동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4.10.2.-11.2.	356
302	실무사절단 서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4.9.15.-11.4.	358
303	안진생 주콜롬비아대사 Lopez Michelsen, Alfonso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74.8.7.	360
304	송광정 주베네수엘라대사 Balaguer, Joaquin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74.8.16.	361
305	이창희 주멕시코대사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겸임국 니카라과 방문	362
306	이창희 주멕시코대사 Somoza Debayle, A. 니카라과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74.11.29.-12.3.	363
307	Pastrana Borrero, Misael 전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1974.10.31.-11.3.	364
308	Habib Bourguiba 튀니지 대통령 방한 초청 계획	365
309	Ford, Gerald 미국 대통령 방한, 1974.11.22.-23. 전6권 (V.1 기본문서철)	366
310	Ford, Gerald 미국 대통령 방한, 1974.11.22.-23. 전6권 (V.2 의전행사 준비)	367
311	Ford, Gerald 미국 대통령 방한, 1974.11.22.-23. 전6권 (V.3 각 부처별 의전행사계획 및 자료)	368
312	Ford, Gerald 미국 대통령 방한, 1974.11.22.-23. 전6권 (V.4 활동사항)	369
313	Ford, Gerald 미국 대통령 방한, 1974.11.22.-23. 전6권 (V.5 국내 언론보도)	370
314	Ford, Gerald 미국 대통령 방한, 1974.11.22.-23. 전6권 (V.6 해외 언론보도)	371
315	Rahman, S. M. 방글라데시 수상 방한 초청 계획	372
316	뉴질랜드 수상 방한 초청 계획	373
317	Hossain, Kamal 방글라데시 외상 방한 초청 계획	374
318	Guzman, Alberto 볼리비아 외상 방한 초청 계획	375
319	Sauvagnargues, Jean 프랑스 외상 방한 초청 계획	376
320	Singh, S. S. 인도 외상 방한, 1974.8.9.-13.	377
321	호겐 신사쿠(法眼晋作) 전 일본 외무차관 방한, 1974.5.7.-12.	378
322	Ahmed Laraki 모로코 외무장관 방한, 1974.9.1.-4.	379
323	Karki Gyanendra B. 네팔 외상 방한, 1974.10.17.-20.	380
324	Romulo, Carlos P. 필리핀 외무장관 방한, 1974.8.5.-8.	381
325	Suheim bin Hammad Al-Thani 카타르 외무담당국무상 방한 초청 계획	382
326	Ibrahim Al-Sultan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차관 방한, 1974.12.12.-15.	383
327	Sayed Omar Al-Sakkaf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담당국무상 방한, 1974.7.1.-4.	384
328	Hunlede, Joachim 토고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385
329	Habib Chatty 튀니지 외무장관 방한, 1974.7.19.-21.	386
330	Brimelow, Thomas 영국 외무부 사무차관 방한, 1974.12.2.-4.	387
331	Coll Blasini, Ne'stor 베네수엘라 외무차관보 방한 초청 계획	388
332	Mohamed Abdul Kader Hatem 이집트 대통령 특별보좌관(전 부수상) 방한 초청 계획	389
333	Egerton, John 호주 노동당 부총재 방한, 1974.7.10.-16.	391
334	제61차 IPU 총회 참석 각국 대표단 방한 및 Dutra, Tarso 브라질 상원의원 방한	392
335	Turbay, Julio Cesar 콜롬비아 자유당 당수 방한, 1974.5.17.-21.	393
336	캐나다 국회의원단 방한, 1974.4.16.-20.	394
337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단 방한, 1974.7.23.-29.	395
338	이란 국회의원단 방한	396
339	이시이 하지메(石井一) 일본 자민당 아시아·아프리카연구회 의원 방한, 1974.12.26.-28.	397
340	일본 사회당 의원단 방한	398

341	Abdul Aziz Al-Massaeed 쿠웨이트 국회 외무위원장 방한 계획	400
342	Khalid S. Al-Ghunaim 쿠웨이트 국회의장 방한, 1974.9.23.-30.	401
343	Tolbert, Frank E. 라이베리아 상원의장 방한, 1974.10.12.-16.	402
344	노르웨이 국회 상무해운 분과위원회 의원단 방한계획	403
345	미국 외교정책협회 '순방세미나 주의원단' 방한, 1974.11.17.-20.	404
346	미국 의회의원 방한	405
347	미국 하원의원단 방한, 1974.4.15.-17.	406
348	한·일본 의원간친회 총회, 제3차. 서울, 1974.5.4.	407
349	한·세네갈 의원친선협회	408
350	천명성(詹明星) 대만(구 자유중국) 동아시아·태평양 부국장 방한, 1974.3.26.	409
351	도미니카공화국 주요인사 방한	410
352	Alvarado Sagastume, Alfredo 온두라스 'Tegucigalpa' 시장 방한, 1974.6.7.-10.	411
353	인도네시아 주요인사 방한	412
354	구와바라 미끼네(桑原幹根) 일본 아이찌(愛知)현 지사 방한, 1974.5.21.-24.	413
355	다카시마(高島益郎)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74.6.6.-11.	414
356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관련 일본 유력인사 방한	415
357	Kariuki, J.M. 케냐 관광성차관 방한, 1974.6.2.-7.	416
358	Molapo, Charles Dube 레소토 보건교육사회장관 방한, 1974.4.15.-20.	417
359	Shahaty, Ahmad 리비아 아랍사회주의연맹(Arab Socialist Union) 정치국장 방한 초청 계획	418
360	Walter, Harold H. 모리세스 보건장관 방한, 1974.1.10.-12.	419
361	Kelly, Frank J. 주 Managua(니카라과) 명예총영사 방한, 1974.10.23.-30.	420
362	De La Puente Radbill, Jose 페루 외무성 경제차관보 방한, 1974.11.6.-11.	421
363	Sheikh Abdul Aziz Thunayan 사우디아라비아 'Riyadh' 시장 방한 계획	422
364	De Geer, Carl 스웨덴 외무성 차관보 방한, 1974.3.21.-23.	423
365	스리랑카 불교 지도자일행 방한, 1974.9.9.-14.	424
366	Pracha 태국 외무부 정보국장 방한, 1974.9.18.-21.	425
367	터키 주요인사 방한	426
368	영국 외무성 인사 방한	427
369	미국 국무부 인사 방한	428
370	미국지역 명예영사 방한	429
371	Saenz Sanguinetti, Abelardo 우루과이 보건성 국제문제위원장 방한, 1974.10.16.-21.	430
372	북한의 대외정책	431
373	북한·아르헨티나 관계	433
374	북한·호주 관계. 전3권 (V.1 대호주 국교수립 저지교섭)	434
375	북한·호주 관계. 전3권 (V.2 국교수립 및 공관개설 등)	436
376	북한·호주 관계. 전3권 (V.3 국교수립 저지 각국 교섭)	437
377	북한·오스트리아 관계	438
378	북한·부룬디 관계	440
379	북한·미얀마(구 버마) 관계	441
380	북한·보츠와나 관계	442
381	북한·칠레 관계	443
382	북한·콜롬비아 관계	444
383	북한·카메룬 관계	445

384	북한·캐나다 관계 .....	446
385	북한·코스타리카 관계 .....	447
386	북한·중국(구 중공) 관계 .....	448
387	북한의 대중국(구 중공)·소련 관계 .....	449
388	북한·덴마크 관계 .....	450
389	북한·에콰도르 관계 .....	451
390	북한·이집트 관계 .....	452
391	북한·핀란드 관계 .....	453
392	북한·프랑스 관계 .....	454
393	북한·가봉 관계 .....	455
394	북한·독일 관계 .....	456
395	북한·그리스 관계 .....	457
396	북한·과테말라 관계 .....	458
397	북한·가이아나 관계 .....	459
398	북한·온두라스 관계 .....	460
399	북한·인도 관계 .....	461
400	북한·인도네시아 관계 .....	462
401	북한·이란 관계 .....	463
402	북한·이탈리아 관계 .....	464
403	북한 송환 재일동포 일본인 처 자유왕래 실현 문제 .....	465
404	북한·일본 관계 .....	466
405	북한·일본 관계 신문기사 .....	467
406	일본·북한 체육교류 .....	468
407	북한·자메이카 관계 .....	469
408	북한·요르단 관계 .....	470
409	북한·케냐 관계 .....	471
410	북한·레바논 관계 .....	472
411	북한·라이베리아 관계 .....	473
412	북한·라오스 관계 .....	474
413	북한·리비아 관계 .....	475
414	북한·말레이시아 관계 .....	476
415	북한·모로코 관계 .....	477
416	북한·몰타 관계 .....	478
417	북한·네팔 관계 .....	479
418	북한·니제르 관계 .....	480
419	북한·뉴질랜드 관계 .....	481
420	북한·필리핀 관계 .....	482
421	북한·파나마 관계 .....	483
422	북한·팔레스타인(PLO) 관계 .....	484
423	북한·페루 관계 .....	485
424	북한·페루 관계(신문기사철) .....	486
425	북한·루마니아 관계 .....	487
426	북한·루안다 관계 .....	488

427	북한·시에라리온 관계 .....	489
428	북한·수단 관계 .....	490
429	북한·스위스 관계 .....	491
430	북한·토고 관계 .....	492
431	북한·태국 관계 .....	493
432	북한·트리니다드토바고 관계 .....	494
433	북한·터키 관계 .....	495
434	북한·우간다 관계 .....	496
435	북한·소련 관계 .....	497
436	미국의 북한지역 여행제한 조치 연장 .....	498
437	북한·미국 관계 .....	499
438	북한·부르키나파소(구 오투볼타) 관계 .....	500
439	북한·우루과이 관계 .....	501
440	북한·베네수엘라 관계 .....	502
441	북한의 대구주 진출 현황 및 대처방안 .....	503
442	북한의 대중남미 정책 및 관계 현황 .....	504
443	북한·신유고연방(구 유고슬라비아) 관계 .....	505
444	북한·자이르 관계 .....	506
445	북한대표단 일본 방문 .....	507
446	북한 광물사절단 페루 방문 .....	508
447	북한사절단 우루과이 방문 1974.1.3.-8. ....	509
448	북한사절단 아프리카지역 순방 동향 .....	510
449	북한사절단 서남아 및 동남아 순방 .....	511
450	북한사절단 구주지역 순방 .....	512
451	Malik, Adam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북한 방문, 1974.7.6.-10. ....	513
452	우쓰노미야 일본 자민당 의원 북한 방문, 1974.8.5.-15. ....	514
453	Eyad'ema, Gnassingbe 토고 대통령 북한 방문, 1974.9.7.-12. ....	515
454	Mobutu, Sese Seko 자이르 대통령 북한 방문, 1974.12.9.-16. ....	516
455	일본·북한 경제관계 .....	517
456	일본의 대북한 플랜트 등 수출 및 수출입은행 자금 사용 승인 문제 .....	518
457	남북한 평화협정 제의 및 북한·각국 반응 .....	519
458	북한의 대미국 평화협정 제의 및 북한·각국 반응 .....	520
459	남북대화 진전현황 .....	521
460	이산가족재회 전문가회의. Florence(이탈리아) 1974.6.13.-16. ....	522
461	외교단 행사에서의 외교단장(헝가리 대사)의 한국 등 비수교국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 .....	523
462	동구권과의 인사고료 현황(통계) .....	524
463	우방국을 통한 대동구권 관계개선 추진 .....	525
464	공산권여행 허가 - 불가리아 .....	526
465	공산권여행 허가 - 체코슬로바키아 .....	527
466	공산권여행 허가 - 헝가리 .....	528
467	공산권여행 허가 - 폴란드 .....	529
468	공산권여행 허가 - 루마니아 .....	530
469	공산권여행 허가 - 소련 .....	531

470	대동구권 교류문제 .....	532
471	동구권 교류 - 신 유고연방(구 유고슬라비아) .....	533
472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Algiers(알제리) 1974.3.19.-21. ....	534
473	북한의 비동맹회원국 가입 신청 정보 입수 .....	535
474	일본 및 미국의 대한민국 안보정책 .....	536
475	FY74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3권 (V.1 수권법) .....	537
476	FY74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3권 (V.2 지출법 및 대한군원) .....	538
477	FY75 미국 국방 예산 .....	539
478	FY75 미국의 대외원조법(수권법) 전4권 (V.1 1974.2-6) .....	540
479	FY75 미국의 대외원조법(수권법) 전4권 (V.2 1974.7-9) .....	541
480	FY75 미국의 대외원조법(수권법) 전4권 (V.3 1974.10-75.3) .....	542
481	FY75 미국의 대외원조법(수권법) 전4권 (V.4 언론보도) .....	543
482	청와대 안보 정세보고 회의자료 .....	544
483	한국 안보관계 자료 .....	545
484	미국 FMS 차관에 의한 대여함정구매 .....	546
485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각료이사회. Ottawa, 1974.6.18.-19. ....	547
486	WARSAW(바르샤바) 조약기구 정치자문위원회 회의. Warsaw(폴란드) 1974.4.17.-18. ....	548
487	인도양지역 안보문제 .....	549
488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 구상 .....	550
489	SOFA - 한·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1-92차 .....	551
490	SOFA - 한·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3-95차 .....	552
491	SOFA - 한·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6-98차 .....	554
492	SOFA - 한·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9-100차 .....	556
493	SOFA - 한· 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김포공항 종합청사 내 주한미군 전용안내 카운터 설치문제 .....	557
494	SOFA - 주한미군 사격장 내 출입통제 및 탄환철도 단속 .....	558
495	SOFA - 한· 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제25-29차 .....	559
496	SOFA - 한· 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 주한미군의 마약사용 단속 .....	560
497	SOFA - 대통령 긴급조치 하에서의 주한미군 형사재판권 조항의 효력에 관한 건 .....	561
498	SOFA - 미국 Phico· Ford사 기술요원의 주한미군 시설 사용 허가 .....	562
499	SOFA - 주한미군 군납계약 체결시 문제 .....	563
500	SOFA -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 주택 건설문제 .....	564
501	SOFA - 주한미군 전용택시 운수업체의 관세법 위반사건 .....	565
502	인도에 송환된 반공포로의 법적지위문제 .....	566
503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48-350차 .....	567
504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51-355차 .....	568
505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56-357차 .....	570
506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회의록, 제421-429차 .....	571
507	체코 및 폴란드 중립국 감시위원단원 방한. 1974.11.15. ....	572
508	스웨덴 중립국 감시위원단 대표 철수 고려 발언 .....	573
509	미군 및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건립 .....	574
510	동해안 해양경비정 피격사건, 1974.6.28. ....	575
511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불법 지하터널 구축 .....	576

512	북한의 일본을 통한 대남한 간첩활동 .....	577
513	서해안 어선 피격 및 납북사건, 1974.2.15. 전3권 (V.1 기본문서: 2월) .....	578
514	서해안 어선 피격 및 납북사건, 1974.2.15. 전3권 (V.2 기본문서: 3-10월) .....	579
515	서해안 어선 피격 및 납북사건, 1974.2.15. 전3권 (V.3 공관보도 및 언론보도) .....	580
516	Soerono 인도네시아 통합군 부사령관 방한, 1974.10.28.-11.5. ....	581
517	William, Allen H. 라이베리아 국방장관 방한, 1974.9.29.-10.3. ....	582
518	사우디아라비아 군사관계 주요인사 방한 계획 .....	583
519	우간다 군사사절단 방한, 1974.9.28.-10.3. ....	584
520	영국 국방대학원생 방한 .....	585
521	핵 연료 비확산문제 .....	586
522	한· 칠레 군사· 안보협력 .....	587
523	한· 인도네시아 정보교류회의, 제[2]차, 서울, 1974.7.1.-3. ....	588
524	국제기구에서의 한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 .....	589
525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7 정부각서, 연설문) .....	590
526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9 해외 언론보도) .....	591
527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0 국가별 지지교섭 I: 아주지역1) .....	593
528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1 국가별 지지교섭 II: 아주지역2) .....	595
529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2 국가별 지지교섭 III: 아주지역3) .....	596
530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3 국가별 지지교섭 IV: 미주지역1) .....	597
531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4 국가별 지지교섭 V: 미주지역2) .....	599
532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5 국가별 지지교섭 VI: 미주지역3) .....	601
533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6 국가별 지지교섭 VII: 구주지역1) .....	602
534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7 국가별 지지교섭 VIII: 구주지역2) .....	603
535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8 국가별 지지교섭 IX: 중동지역1) .....	605
536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9 국가별 지지교섭 X: 중동지역2) .....	606
537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20 국가별 지지교섭 XI: 아프리카지역1) .....	608
538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21 국가별 지지교섭 XII: 아프리카지역2) .....	610
539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22 국가별 지지교섭 XIII: 아프리카지역3) .....	611
540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23 OAU(아프리카단결기구)를 통한 지지교섭) .....	613
541	유엔특별총회, 제6차, New York, 1974.4.9.-5.2. 전2권 (V.1 사전준비) .....	614
542	유엔특별총회, 제6차, New York, 1974.4.9.-5.2. 전2권 (V.2 결과보고) .....	615
543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 특별위원회 .....	616
544	유엔 세계식량회의, Rome(이탈리아) 1974.11.5.-16. 전2권 (V.1 준비위원회 회의) .....	617
545	유엔 세계식량회의, Rome(이탈리아) 1974.11.5.-16. 전2권 (V.2 사전준비 및 결과보고) .....	618
546	Ortiz de Rozas, Carlos 주유엔 아르헨티나 대사 방한, 1974.12.26.-30. ....	619
547	Mogami, Thebe D. 주유엔 보츠와나 대사 방한, 1974.4.30.-5.3. ....	620
548	Ramphul, Radha K. 주유엔 모리셔스 대사 방한, 1974.5.8.-13. ....	621
549	Jimenez, Privado G. 주카나다 필리핀 대사(전 주유엔대사) 방한, 1974.5.27.-6.1. ....	622
550	유엔 한국참전국 협회 .....	623
551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전2권 (V.1 1973.11-74.2) .....	624
552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전2권 (V.2 1974.2-12) .....	626
553	제26회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 .....	627

554	제29차 유엔의 날 기념메세지 .....	628
555	유엔공채 원리금 상환액 수령 .....	629
556	ECAFE(아시아공동경제위원회)/아시아 미국무역기금 한국 가입 검토 .....	630
557	ECAFE(아시아공동경제위원회) 총회, 제30차, Colombo(스리랑카) 1974.3.27.-4.8. 전2권 (V.1 사전준비) .....	631
558	ECAFE(아시아공동경제위원회) 총회, 제30차, Colombo(스리랑카) 1974.3.27.-4.8. 전2권 (V.2 결과보고) .....	632
559	ECAFE(아시아공동경제위원회)/공업 및 천연자원위원회, 제26차, Bangkok, 1974.2.1.-11. ....	633
560	ECAFE(아시아공동경제위원회)/무역위원회 회의, 제17차, Bangkok, 1974.1.7.-14. ....	634
561	ECAFE(아시아공동경제위원회)/TNG(무역협상단) 회의, 제4차, Bangkok .....	635
56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경제기획위원회 회의, 제1차, Bangkok, 1974.12.9.-14. ....	636
56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두류잡곡전문가 회의, Bangkok, 1974.12.17.-20. ....	637
56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무역위원회 회의, 제18차, Bangkok, 1974.12.2.-9. ....	638
56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세계인구회의 사전 협의회, Bangkok, 1974.5.7.-10. ....	639
56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운수 · 통신위원회, 제22차, Bangkok, 1974.1.15.-22. ....	640
56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운수 · 통신위원회, 제23차, Bangkok, 1974.12.16.-23. ....	641
568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인구문제와 여성역할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협의회, Bangkok, 1974.5.13.-17. ....	642
56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인력 및 노동통계에 관한 실무단회의, Bangkok, 1974.10.28.-11.4. ....	643
57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천연자원위원회 회의, 제1차, Bangkok, 1974.11.5.-11. ....	644
57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태풍위원회 제7차 회의 및 WMO(세계기상기구) 태풍조절기술회의, Manila(필리핀) 1974.10.8.-18. ....	645
57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통계위원회 회의, 제1차, Jakarta(인도네시아) 1974.11.21.-27. ....	646
57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CPR(상임대표자문위원회) 회의, 제1-6차, Bangkok .....	647
57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IEDP(아시아경제개발계획연구원) 집행이사회, Bangkok, 1974.11.28.-29. ....	649
57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SAC(아시아표준자문위원회) 제4차, Kuala Lumpur, 1974.12.16.-19. ....	650
57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COORDCOM(동남아시아운수통신 조정위원회) 회원국 선원 훈련 전문가회의, Bangkok, 1974.8.19.-24. ....	651
57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PU(만국우편연합) 우편전문가 정부간 실무회의, Bangkok, 1974.10.21.-28. ....	652
578	아시아 농기구센터 설립 준비사절단 방한, 1974.10.24.-27. ....	653
579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회의, 제14차, 제1부, Geneva, 1974.8.20.-9.13. ....	654
580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 제정에 관한 작업단 회의, 제3-4차 .....	655
58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국제일관수송협정에 관한 정부간 준비그룹회의, 제2차, Geneva, 1974.11.11.-29. ....	656
58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무역 및 무역외 금융위원회/개발도상국 대외부채문제에 관한 Adhoc 전문가 그룹회의, 제1-2차, Geneva .....	657
583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원산지 규정 작업단 회의, 제5차, Geneva, 1974.12.2.-6. ....	658
584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제품위원회 속개회의, 제6차, Geneva, 1974.7.2.-12. ....	659
585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중석위원회 작업단 회의, 제9차, Geneva, 1974.8.12.-16. ....	660
586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특혜특별위원회 회의, 제6차, Geneva, 1974.5.20.-31. ....	661
587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해운위원회 회의, 제6차, Geneva(스위스) 1974.7.29.-8.9. ....	662
588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호주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663
589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오스트리아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664
590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캐나다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665
59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일본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666
59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스위스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667
593	각국의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이사회 입후보 지지요청 .....	668



594	제2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준비를 위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특별회의, Bangkok, 1974.10.31.-11.4. ...	669
595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및 상임위원회, 제4-5차, Vienna .....	670
596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기술협력관계 전문가 채용에 관한 회의, Geneva(스위스) 1974.9.16.-20. ....	671
597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제18차, Pasay(필리핀) 1974.6.5.-24. ....	672
598	UNDP(유엔개발계획) 주한대표 수석농업고문 겸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상주대표 임명 문제 .....	673
599	UNEP(유엔환경계획) 이사회, 제2차, Nairobi(케냐) 1974.3.11.-22. ....	674
600	UNICEF(유엔아동기금) 대표 임명 .....	675
601	UNICEF(유엔아동기금) 분담금 .....	676
602	UNFPA(유엔인구활동기구) 자금 지원에 의한 가족계획 사업 .....	677
603	WFUNA(유엔협회세계연맹) 서태평양지역회의, Sydney, 1974.5.20.-30. ....	678
604	WFP(유엔세계식량계획) 분담금 서약회의, New York, 1974.2.4. ....	679
605	WFP(유엔세계식량계획)/IGC(정부간위원회) 회의, 제25-26차, Rome .....	680
606	중국(구 중공)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가입 .....	681
607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1차, Montreal, 1974.9.24.-10.15. 전2권 (V.1 기본문서) .....	682
608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1차, Montreal, 1974.9.24.-10.15. 전2권 (V.2 각국의 이사회 이후부 지지요청) .....	683
609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회의, Honolulu, 1973.9.5.-28. ....	684
610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 회의, 제21차, Montreal, 1974.10.3.-22. ....	685
61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북대서양 및 태평양지역 임시항공회의, Montreal, 1974.11.4.-12. ....	686
612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선박에 의한 승객 및 화물수송에 관한 국제법률회의, Athens, 1974.12.2.-13. ....	687
613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8차, Vienna(오스트리아) 1974.9.16.-20. ....	688
614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Vienna(오스트리아) .....	689
615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가입 .....	690
616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18차, Paris, 1974.10.17.-11.23. ....	691
617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94차, Paris, 1974.5.20.-6.28. ....	692
618	FAO(유엔식량농업기구) APHCA(아시아태평양지역축산보건위원회) 가입 검토 .....	693
619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 및 극동지역 총회, 제12차, 동경, 1974.9.17.-27. ....	694
620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비료위원회 회의, 제1차, Rome, 1974.7.2.-5. ....	695
62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정부간 경질섬유단 회의 .....	696
622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개도국 상주대표단 회의, Rome, 1974.1.11.-5.24. ....	697
623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담배에 관한 정부간 집중 특별협의회, Rome, 1974.6.20.-22. ....	699
624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곡물연구단 회의, 제17-18차, Rome .....	700
625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미국연구단 회의, 제18차, Rome, 1974.1.14.-16. ....	701
626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유실유지연구단 회의, 제8차, Rome, 1974.2.18.-27. ....	702
627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AG(농업위원회) 회의, 제2차, Rome, 1974.4.17.-30. ....	703
628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수산위원회) 회의, 제9차, Rome, 1974.10.15.-22. ....	704
629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O(산림위원회) 회의, 제2차, Rome, 1974.5.22-29 .....	705
630	Umali, Dioscoro L.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차장 겸 아시아·극동지역 대표 방한, 1974.9.28.-10.4. ....	706
63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극동지역 농업통계위원회 회의, 제5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74.7.14.-21. ....	707
632	FAO(유엔식량농업기구)/CECAF(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회의, 제4차, Rome, 1974.10.8.-12. ....	708
633	FAO(유엔식량농업기구)/OFC(인도양수산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 제4차, Rome, 1974.10.23.-25. ....	709
634	FAO(유엔식량농업기구)/MECAF(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설치 및 한국가입 .....	710
635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7차, Geneva(스위스) 1974.5.7.-24 .....	711
636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회의, 제25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74.9.2.-10. ....	712

637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59차, Geneva(스위스) 1974.6.5.-26.	713
638	UPU(만국우편연합) 총회, 제17차, Lausanne(스위스) 1974.5.22.-7.4.	714
639	UPU(만국우편연합) 북한 가입	715
640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해상이동통신업무를 위한 WARC(세계무선통신주관회의) Geneva(스위스) 1974.4.22.-6.8.	716
641	ITU(국제전기통신연합)/CCIR(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 총회, 제13차, Geneva(스위스) 1974.7.15.-26.	717
642	유엔 인권관련 제 결의와 관련한 한국정부 입장 및 조치사항	718
643	유엔세계인구회의 및 행사, Bucharest(루마니아) 1974.8.19.-30. 전2권 (V.1 회의)	719
644	유엔세계인구회의 및 행사, Bucharest(루마니아) 1974.8.19.-30. 전2권 (V.2 행사)	720
645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제42차, Paris, 1974.5.13.-18.	721
646	제1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회의 및 제10차 기술자문회의, 서울, 1974.8.7.-21.	722
647	SEAMEO(동남아문교장관기구) 회의, 제9차, Bangkok, 1974.1.28.-2.1.	723
648	ASCA(아시아과학협력협회) 회의, 제3차, New Delhi, 1974.4.8.-10.	724
649	AOPTS(아시아·대양주우정학교) 관리이사회, Bangkok(태국) 1974.3.18.-19.	725
650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가입국 총회, 제1차, Washington D.C., 1974.2.4.-8. 전2권 (V.1 기본문서)	726
651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가입국 총회, 제1차, Washington D.C., 1974.2.4.-8. 전2권 (V.2 각국의 법률전문가 입후보 지지요청)	727
652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서명자 회의, 제2차, Acapulco(멕시코) 1974.4.1.-4.	728
653	IHD(국제수문개발10개년사업) 총회, Paris, 1974.9.2.-14.	729
654	IUTO(국제관찰관광기구연맹) 태평양 동아시아지역위원회 회의, 제3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74.12.3.-5.	730
655	WTO(세계관광기구) 규정 승인	731
656	AARRO(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 사무총장 방한	732
657	AARRO(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 집행위원회, 제13차, New Delhi(인도) 1974.3.29.-30.	733
658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이사회, 제16차, Singapore, 1974.4.15.-19.	734
659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이사회 회의, 제3차, Madrid(스페인) 1974.11.20.-26.	735
660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식품위생위원회 회의, 제11차, Washington D.C., 1974.6.10.-14.	736
661	ADC(아시아개발센터) 이사회 회의, 제10차, 동경, 1974.5.13.-17.	737
662	APU(아시아의원연맹) 이사회 회의, 제16차, 서울, 1974.7.15.-16.	738
663	제10차 APU(아시아의원연맹) 총회 및 제17차 이사회 회의, Bangkok, 1974.11.28.-12.2.	739
664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61차, 1974.10.2.-11. 전3권 (V.1 기본문서)	740
665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61차, 1974.10.2.-11. 전3권 (V.2 총회참석 각국대표단 방한)	741
666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61차, 1974.10.2.-11. 전3권 (V.3 북한 참석)	742
667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4차, Bucharest(루마니아) 1974.4.15.-20.	743
668	WACL(세계반공연맹회의) 총회, 제7차, Washington D.C., 1974.4.8.-11.	744
669	ICG(국제유리공학협회)/ICG(국제유리회의) 총회, 제10차, 교토(일본) 1974.7.8.-12.	745
670	WEC(세계에너지회의) 총회, 제9차, Detroit(미국) 1974.9.23.-27.	746
671	ATTU(아시아탁구연합) 한국가입	747
672	불필요한 교통 또는 무차별 효과를 야기하는 무기에 관한 정부전문가회의, Lucerne(스위스) 1974.9.24.-10.18.	748
673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관회의, 제1차, Geneva, 1974.2.20.-3.29. 전3권 (V.1 사전준비)	749
674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관회의, 제1차, Geneva, 1974.2.20.-3.29. 전3권 (V.2 대표단 구성 및 훈령 등)	750

675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관회의, 제1차, Geneva, 1974.2.20.-3.29. 전3권 (V.3 회의 결과보고) .....	751
676	PATA(태평양지역관광협회) 총회, 제23차, Jakarta(인도네시아) 1974.4.1-4. ....	752
677	PIANC(국제상설항해협회) 상설국제위원회 연차총회, Rotterdam(네덜란드) 1974.6.4.-7. ....	753
678	조약근거에 대한 의견 조회 .....	754
679	무상군원 징비 처분에 관한 한· 미국 간의 각서교환 .....	755
680	한· 미국 아-시스템즈(E-Systems) 회사 간의 전술용 무전기 키트(Kit) 구매협정 개정, 1974.10.14. ....	756
681	한· 대만(구 자유중국) 간의 화교학생 수학기 송금에 관한 각서교환 개정 .....	757
682	한· 독일 간의 재정원조협정 .....	758
683	한· 일본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형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	759
684	한· 일본 간의 수출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일본 차관협정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	760
685	한· 캐나다 간의 투자보장협정 체결교섭 .....	761
686	한· 독일 간의 거주 및 상업 활동에 관한 조약 체결 교섭 .....	762
687	한· 캐나다 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	763
688	한· 프랑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764
689	한· 태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제6조 4항]의 수정 .....	765
690	한국(대한항공)· 짐바브웨(AIR Rhodesia) 간의 항공운송계약 해약, 1974.7.15. ....	766
691	북한· 제3국가 간 항공협정 체결관계 .....	767
692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 간 항공노선 운항 중지, 1974.4.21. ....	768
693	일본· 중국(구 중공) 항공협정 체결. 전2권 (V.1 기본문서) .....	769
694	일본· 중국(구 중공) 항공협정 체결. 전2권 (V.2 신문기사철) .....	770
695	한· 미국 간의 국제우편환 교환협정 체결 교섭 .....	771
696	한· 핀란드 간의 사증면제협정 .....	772
697	한· 독일 간의 사증면제협정 .....	773
698	한· 그리스 간의 외교관 및 관공 여권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	774
699	한· 온두라스 간의 문화협정 .....	775
700	한· 인도 간의 문화협정 .....	776
701	한· 터키 간의 문화협정 .....	777
702	한· 우루과이 간의 문화협정 .....	778
703	한· WHO(세계보건기구) 간의 기본협정 .....	779
704	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건설중인 시설을 위한 보조약정 부속규정 .....	780
705	한· 프랑스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	781
706	한· 인도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교섭 .....	782
707	[1973년도]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 미국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 .....	783
708	한· 일본 간의 농업공동연구계획 수행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784
709	PL480호 제1관에 의한 한· 미국 간의 농산물 도입협정 2차 개정 .....	785
710	한· 스페인 간의 수산협력 협정 .....	786
711	한· 뉴질랜드 간의 한국 내 육우시범목장 설치를 위한 각서교환 .....	787
712	한· 월남 간의 농업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수정, 1974.2.28. 및 3.5. ....	788
713	한· 그리스 간의 무역협정 .....	789
714	한· 인도 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 협정. 전2권 (V.1 1968-72) .....	790
715	한· 인도 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 협정. 전2권 (V.2 1973-74) .....	791
716	한· 라오스 간의 무역 및 기술협력 협정 체결 교섭 .....	792

717	한·스웨덴 간의 고무장화류 쌍무협정 .....	793
718	한(대한상사중재협회)·미국(미국중재협회) 간의 상사중재협정 체결, 1974.12.1. ....	794
719	한·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간의 인구계획에 관한 협정 .....	795
720	한·중앙아프리카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796
721	한·프랑스 간의 기술초급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구성 .....	797
722	한·독일 간의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확충 사업을 위한 각서 교환 .....	798
723	한·독일 간의 산림녹화사업을 위한 약정 각서 교환 .....	799
724	한·독일 간의 정밀기계기술 센터에 관한 각서 교환 .....	800
725	한·일본 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각서 교환 .....	801
726	한·일본 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시설 지원에 관한 약정 .....	802
727	한·월남 간의 한·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약정의 개정 .....	803
728	독일 주재 외국 외교공관 직원에 대한 재판관할권 .....	804
729	1961년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이행에 대한 한국의 관행 .....	805
730	외교 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 .....	806
731	ILO(국제노동기구) 한국 가입 문제 .....	807
732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한국 가입, 1974.3.18. 전3권 (V.1 1970-72) .....	808
733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한국 가입, 1974.3.18. 전3권 (V.2 1973,1-7) .....	809
734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한국 가입, 1974.3.18. 전3권 (V.3 1973,8-74.9) .....	810
735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부속서 개정 .....	811
736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제56조 개정에 관한 의정서 한국 가입, 1974.12.19. ....	812
737	WTO(세계관광기구) 규정 한국 가입, 1974.11.1. ....	813
738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교육·과학 및 문화적 자재 수입에 관한 협정 한국 가입 검토 .....	814
739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 한국 가입, 1974.10.9. ....	815
740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연장을 위한 의정서 한국 가입, 1974.7.1. ....	816
741	1973년도 국제사탕협정 한국 가입, 1974.10.15. ....	817
742	각국의 영해의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	818
743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1 해양법에 관한 77그룹 회의, 1974.3.25.-4.5.) ...	819
744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2 훈령 및 기본입장, 1973) .....	820
745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3 훈령 및 기본입장, 1974) .....	821
746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4 대표단 구성 및 관련조치) .....	822
747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5 회의경과 및 결과보고) .....	823
748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6 한국대표단 연설문) .....	825
749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7 회의자료 I) .....	826
750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8 회의자료 II, 각국대표단 연설문: 가나-미국) .....	827
751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9 회의자료 III, 각국대표단 연설문: 방글라데시-일본) .....	828
752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10 회의자료IV, 각국대표단 연설문: 자마йка-튀지) .....	829
753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11 회의자료 V, 각국대표단 명단) .....	830
754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 대한 주요국가 입장 .....	831
755	해양에 관한 4개 제네바 협약 .....	832
756	대만(구 자유중국)의 해양정책 .....	833

757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 .....	834
758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 .....	835
759	파라셀 · 스프라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	836
760	프랑스의 남태평양지역 핵실험에 대한 호주 및 뉴질랜드의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 .....	837
761	인도 · 중국(구 중공) 국경분쟁 .....	838
762	부르키나파소(구 오투볼타) · 말리 간의 국경분쟁 .....	839
763	스페인령 서부사하라(폴리사리오) 영유권 문제 .....	840
764	중동전 및 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 .....	841
765	ICJ(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5조 2항에 따른 비당사국 선언 .....	842
766	AALCC(아시아 · 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분담금 .....	843
767	AALCC(아시아 · 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연락관회의, 제101-128차, New Delhi .....	844
768	AALCC(아시아 · 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15차, 동경, 1974.1.7.-14. ....	845
769	강원도 - Alberta주(캐나다) 간의 자매결연, 1974.9.5. ....	846
770	한 · 소련 문화교류 .....	847
771	한 · 소련 자료교류 .....	848
772	Mohamed Mekki Naciri 모로코 종교문화장관 방한 초청계획 .....	849
773	Dennis, James C. 라이베리아 'Liberian Star' 지 업무국장 방한, 1974.10.6.-11. ....	850
774	Mustapha Alaoui 모로코 'El Kawalis' 지 사장 방한, 1974.12.16.-24. ....	851
775	Pataký-Frómmer, Laszlo 니카라과 언론인 방한, 1974.5.15.-20. ....	852
776	Diaz Bravo, Oscar 페루 'La Prensa' 지 편집국장 방한, 1974.2.22.-23. ....	853
777	Epenu, Nathan 우간다 'Voice of Uganda' 지 부주필 방한, 1974.9.27.-10.4. ....	854
778	Papa Blanco, Sergio 한 · 우루과이 친선협회 간사 방한, 1974.11.27.-12.3. ....	855
779	한 · 중국(구 중공) 및 한 · 소련 문화 학술교류 .....	856
780	미국 하와이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센터 .....	857
781	Ibrahim C. Badran 이집트 'Cairo' 대학교 부총장 방한, 1974.8.25.-28. ....	858
782	Agapitidis, Sotirios J. 그리스 아테네대학 교수 방한, 1974.4.7.-20. ....	859
783	미국 학계 인사 방한 .....	860
784	연세대 · 파리 제7대학 간의 교수 · 학생교환 협약에 대한 프랑스 승인보류 .....	861
785	Hassan Mohamed Kutbi 사우디아라비아 종교장관 방한, 1974.9.2.-8. ....	862
786	한 · 벨기에 친선협회 .....	863
787	한 · 캄보디아(구 크메르) 친선협회 .....	864
788	한 · 일본, 일본 · 한 친선협회 .....	865
789	한 · 스페인, 스페인 · 한 친선협회 .....	866
790	구주 및 아프리카지역 제국에 대한 유대 강화 방안 .....	867
791	나이지리아 경제동향 .....	868
792	각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	869
793	한 · 덴마크 경제협력 .....	870
794	한 · 이집트 경제협력 .....	871
795	대일본 청구권자금 청산계정 상쇄 .....	872
796	한 · 라이베리아 경제협력 .....	873
797	한 · 스페인 경제협력 .....	874
798	제9차 한 · 대만 (구 자유중국) 경제각료회담 및 실무자회의, 서울, 1974.6.14.-17. ....	875
799	한 · 월남 경제각료회담, 제6차, Saigon, 1974.12.16.-17. ....	876

800	한·독일 경제실무자회담, Bonn, 1974.6.24.-28.	877
801	한·일본 경제협력 예비실무자회담, 제1-2차, 1974.11.28.-29. 및 12.18.-20.	878
802	한·튀니지 공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74.7.18.-19.	879
803	한·벨기에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1차, 서울, 1974.10.2	880
804	한·프랑스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창립총회, Paris, 1974.3.25.	881
805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설립	882
806	한·일본 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 제6회, 동경, 1974.2.28.-3.2	883
807	한·영국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창립총회 및 합동회의, 제1차	884
808	IECOK(대한국제경제협력체) 총회, 제7차 및 태완선 부총리 구주 순방, 1974.3.16.-29.	885
809	동남아 경제개발 각료회의, 제9차, Manila(필리핀) 1974.11.14.-16.	886
810	EC(구주공동체)지역 주재공관 협의체 설치	887
811	IEA(국제경제학회) 총회, 제4차, Budapest(헝가리) 1974.8.19.-24.	888
812	IER(동서경제기구) 주최 국제경제협력회의의 참가 계획	889
813	경제협력사절단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74.4.25.-5.10.	890
814	경제사절단 미국 방문, 1974.7.8.-21.	891
815	경제사절단 서남아 순방, 1974.10.26-11.10	892
816	경제조사단 중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4.11.8.-23.	893
817	라오스 경제사절단 방한, 1974.12.8.-11.	894
818	Ngon Sananikone 라오스 재무장관 방한, 1974.5.30.-6.3.	895
819	말레이시아 Selangor주 개발공사 대표단 방한, 1974.7.23.-26.	896
820	Ringadoo, Veerasamy 모리셔스 재무장관 방한, 1974.10.25.-30.	897
821	Nazer, Hisham Mohiddin 사우디아라비아 기획상 방한, 1974.2.13.-18.	898
822	Chagula, Wilbert K. 탄자니아 경제개발계획성장관 방한 추진	899
823	한국의 대미안바(구 버마) 원조	900
824	한국의 대차드 원조	901
825	한국의 대중앙아프리카 무상원조	902
826	한국의 대중앙아프리카 엠블런스 지원(무상원조)	903
827	한국의 대이집트 원조(무상원조)	904
828	한국의 대말라위 원조(무상원조)	905
829	한국의 대니카라과 지원원조	906
830	한국의 대피나마 원조(무상원조)	907
831	한·미국 농산물 구매협정에 의한 미국농산물 도입	908
832	프랑스의 대한민국 투자	909
833	영국의 대한민국 투자	910
834	캐나다 원자로(CANDU 2기 및 NRX) 도입을 위한 재정차관 교섭	911
835	중앙선 C.T.C. 장치 사업을 위한 영국 차관 자금중 미사용 잔액 처리의 건	912
836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농산물 복합가공 시험차관도입	913
837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도입	914
838	미국 EXIM BANK 차관도입	915
839	AID(미국국제개발처) 차관 자금 환불 관계	916
840	대모로코 인력진출	917
841	한국 외환은행 Beirut(레바논)사무소 설치	918
842	대중앙아프리카 원면공장 기술자 및 경영자 파견 검토	919

843	한·영국 기술협력사업 .....	920
844	한·일본 과학기술장관회의, 제4차 .....	921
845	의료단 아프리카 파견 문제 .....	922
846	Battesti, Barry 코트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 직업기술교육장관 방한, 1974.8.25.-9.1. ....	923
847	일본 각계인사 서울시 지하철 개통행사 참석차 방한, 1974.8.14.-15. ....	924
848	한·미국 간 원자력 5·6호기 핵연료 농축계약 체결, 1974.9.5. 및 11.13. ....	925
849	한·버뮤다 어업협력 .....	926
850	캐나다의 북태평양에서의 넙치(Halibut) 보호조치 요청 .....	927
851	한·이집트 어업협력 .....	928
852	한·가나 어업협력 .....	929
853	한·인도네시아 어업협력 .....	930
854	한·일본 어업 공동규제수역 내 어획량 및 출어선 척수 상호 통보 .....	931
855	한·모로코 어업협력 .....	932
856	한·모리타니아 어업협력 .....	933
857	한·모리셔스 어업협력 .....	934
858	한·스리랑카 어업협력 .....	935
859	한·세네갈 어업협력 .....	936
860	한·스페인 어업협력 .....	937
861	마이크로네시아 연안에서의 시험 조업 .....	938
862	한·미국 어업협력 .....	940
863	한·우루과이 어업협력 .....	941
864	한·인도네시아 수산청장회의, 서울, 1974.5.17.-18. ....	942
865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9차, 서울, 1974.7.31.-8.3. ....	943
866	한·일본 간 연안어업 정보교환 협의회 .....	944
867	한·스페인 어업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74.5.22.-24. ....	945
868	한·일본 간 해도[참고자료] .....	946
869	한·호주 면양 시범목장 운영 .....	947
870	한·일본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제6차, 서울, 1974.2.11.-12. ....	948
871	Robinson, Lionel 트리니다드토바고 농수산장관 방한 초청 계획 .....	949
872	Butz, Earl L. 미국 농무장관 방한, 1974.4.18.-20. ....	950
873	IMF(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제도 개혁 논의 .....	951
874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29차, Washington D.C., 1974.9.30.-10.4. ....	952
875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이사회 회의록 .....	953
876	IMF(국제통화기금) 동남아그룹 국제통화 전문가회의, 제3-4차 .....	954
877	제7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서의 대만(구 자유중국) 대표권 문제 .....	955
878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제7차, Kuala Lumpur, 1974.4.25.-27. ....	956
879	EC(구주공동체) 확대에 따른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율 재교섭 .....	957
88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관세그룹 회의 .....	958
88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열대산품그룹회의 .....	959
88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NTB(비관세장벽) 그룹회의 .....	960
88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자료 .....	961
88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Sector Approach 그룹회의 .....	962
88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28조에 의거한 체약국간 양허표 수정 .....	963

88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30차, Geneva, 1974.11.19.-21. ....	964
88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내 원산지 규정문제 협의, Geneva .....	965
88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TCN(무역협상위원회) 회의, 제3차: Geneva, 1974.7.17.-18. ....	966
889	Long, Olivier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방한, 1974.5.16.-21. ....	967
89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훈련과정 참가 .....	968
891	ICAC(국제면화자문위원회) 총회 서울 유치 추진 .....	969
892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43-44차, Brussels(벨기에) 1974.6.10.-14. ....	970
893	일본의 생사수입 규제조치 .....	971
894	한·불가리아 교역추진 .....	972
895	브라질의 서울소재 Trade Center 설치 검토 .....	973
896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PL480 백미의 대월남·캄보디아(구 코메르) 대여 및 상황 .....	974
897	한·체코슬로바키아 통상 .....	975
898	한·일본 부관페리호 취항에 따른 자동차 일시 수입금지 조치 .....	976
899	주서울 미국 무역센터 설치 .....	977
900	New York 한국센터(Korea Center) 설치 추진 .....	978
901	대동구권 교역 추진 방안 .....	979
902	대신유고연방(구 유고슬라비아) 통상관계 개선노력 .....	980
903	한·신유고연방(구 유고슬라비아) 통상 .....	981
904	한·벨기에 통상장관회담, 제1차, Brussels, 1974.9.30.-10.1. ....	982
905	한·미얀마(구 버마) 통상장관회담, 제1차, 서울, 1974.11.4.-5. ....	983
906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제6차, Wellington, 1974.3.4.-5. ....	984
907	한·미국 상공장관회담, 제6차, Washington D.C., 1974.6.4.-5. ....	985
908	한·오스트리아 합섬셔츠 쿼터 협정, 1974.7.30. ....	986
909	한·일본 무역회담, 제11차, 서울, 1974.10.21.-22. ....	988
910	한·일본 생사 실무자회담, 동경, 1974.12.19.-21. ....	989
911	한·노르웨이 섬유쿼터회담, Oslo, 1974.5.24. ....	990
912	한·스웨덴 특정섬유류 섬유쿼터회담 .....	991
91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SB(직물감독기구) 회의 .....	992
914	1974년도 경제외교위원회 회의, 제2차, 1974.3.6. ....	993
915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4권 (V.1 제1-3차) .....	994
916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4권 (V.2 제4-6차) .....	995
917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4권 (V.3 제7-9차) .....	996
918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4권 (V.4 제10-11차) .....	997
919	1973년도 일본지역 수출진흥 공공장회의 .....	998
920	동구시장 개척조사단 폴란드 및 루마니아 파견계획 .....	999
921	통상 및 자원사절단 동남아 순방, 1974.3.3.-15. ....	1000
922	호주 통상협력사절단 방한, 1974.7.20.-27. ....	1001
923	우간다 통상사절단 방한, 1974.10.19.-22. ....	1002
924	Scotland(영국) 통상사절단 방한, 1974.9.15.-20. ....	1003
925	미국 기업인 통상투자사절단 방한, 1974.5.12.-17. ....	1004
926	장예준 상공장관 이란 방문, 1974.10.8.-11. ....	1005
927	장예준 상공장관 아프리카 및 일본·월남 순방, 1974.12.3.-21. ....	1006
928	이병희 제1무임소장관 쿠웨이트 방문, 1974.10.21.-25. ....	1007



929	Mahmoud A. Taiba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차관 방한, 1974.6.9.-13. ....	1008
930	Hussein Ali Al-Watari 예멘(구 북예멘) 상공회의소 회장 방한, 1974.4.13. ....	1009
931	대바레인 시멘트 수출 .....	1010
932	대모로코 군수품 수출 .....	1011
933	김종락 코리아 타코마 조선공업주식회사사장 구주 순방, 1974.5.22.-26. 및 12.10.-24.(연기) .....	1012
934	한·일본 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 보호에 따른 심사협력 협의 .....	1013
935	미국의 외국국적 민간항공기 검색 강화 .....	1014
936	한·캐나다 간 항공협력 .....	1015
937	대한항공(KAL)의 Teheran행 전세기 운항 .....	1016
938	인천항 차별 선임 철폐 노력 .....	1017
939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국제우편교환 .....	1018
940	노르웨이 통상사절단 방한, 1974.3.19.-22. ....	1019
941	Plovdiv(불가리아) 국제박람회 참가, 1974.9.3.-10. ....	1020
942	광주(廣州, 중국) 교역회 참관 .....	1021
943	Brno(체코슬로바키아) 국제소비재박람회 참가계획, 1974.4.20.-28. ....	1022
944	Cairo(이집트)국제박람회, 제7차, 1974.3.9.-30. ....	1023
945	Leipzig(동독) 국제무역박람회 간접참가, 1974.3.10.-17. ....	1024
946	Budapest(헝가리) 국제박람회 참가추진 .....	1025
947	Poznan(폴란드) 국제박람회 직접 참가 추진 .....	1026
948	Dakar(세네갈) 국제박람회 참가, 제1차, 1974.11.28.-12.15. ....	1027
949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운영 개선 방안 .....	1028
950	Tripoli(리비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소 설치, 1974.10.1. ....	1029
951	Lisbon(포르투갈)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소 설치 .....	1030
952	1974년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장회의, 1974.3.18.-21.(Jeddah 사무소 자료) .....	1031
953	Las Palmas(스페인)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소 설치 계획 .....	1032
954	제2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준비회의, Vienna, 1974.12.2.-14. ....	1033
955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제24차, Singapore(싱가포르) 1974.11.26.-12.5. ....	1034
956	콜롬보플랜 기술협력이사회, 제122-125차, Colombo(스리랑카) .....	1035
957	일본의 동해안 오염방지를 위한 연안국 협력제안 추진 .....	1036
958	알제리 정세 .....	1037
959	앙골라 정세 .....	1038
960	아르헨티나 정세 .....	1039
961	호주 총선거 .....	1041
962	오스트리아 정세 .....	1042
963	방글라데시 정세 .....	1043
964	미얀마(구 버마) 정세 .....	1044
965	브라질 정세 .....	1045
966	보츠와나 정세 .....	1046
967	베냉(구 다호메이) 정세 .....	1047
968	차드 정세 .....	1048
969	콜롬비아 정세 .....	1049
970	카메룬 정세 .....	1050
971	인도의 핵실험에 대한 캐나다 입장 .....	1051

972	캐나다 정세 .....	1052
973	중국(구 중공) 정세 .....	1053
974	중앙아프리카 정세 .....	1054
975	미주지역국가의 대쿠바 제재 해제 노력 .....	1055
976	도미니카공화국 정세 .....	1056
977	에콰도르 정세 .....	1057
978	이집트 정세 .....	1058
979	이디오피아 정세 .....	1059
980	프랑스 정세 .....	1060
981	가봉 정세 .....	1061
982	동·서독 관계 및 상호 상주대표부 개설 .....	1062
983	가나 정세 .....	1063
984	기니비사우 정세 .....	1064
985	과테말라 총선거 .....	1065
986	헝가리 정세 .....	1066
987	세계주교회의(Synod of Bishops) 제4차, Vatican, 1974.9.27.-10.26. ....	1067
988	아이슬란드 정세 .....	1068
989	인도·시킴왕국 합병 .....	1069
990	인도 정세 .....	1070
991	인도네시아 정세 .....	1071
992	이란 정세 .....	1072
993	이스라엘 정세 .....	1073
994	일본 정세 .....	1074
995	케냐 정세 .....	1075
996	레바논 정세 .....	1076
997	라오스 정세 .....	1077
998	말레이시아 정세 .....	1078
999	몰타 정세 .....	1079
1000	몰디브 정세 .....	1080
1001	멕시코 정세 .....	1081
1002	모잠비크 정세 .....	1082
1003	니카라과 정세 .....	1083
1004	니제르 정세 .....	1084
1005	파키스탄 정세 .....	1085
1006	폴란드 정세 .....	1086
1007	파라과이 정세 .....	1087
1008	파나마 정세 .....	1088
1009	각국의 팔레스타인(PLO) 승인 .....	1089
1010	페루 정세 .....	1091
1011	루안다 정세 .....	1092
1012	스리랑카 정세 .....	1093
1013	소말리아 정세 .....	1094
1014	튀니지 정세 .....	1095

1015	트리니다드토바고 정세 .....	1096
1016	터키 정세 .....	1097
1017	탄자니아 정세 .....	1098
1018	우간다 정세 .....	1099
1019	영국 총선거 .....	1100
1020	미국 정세 .....	1101
1021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정세 .....	1102
1022	우루과이 정세 .....	1103
1023	월남전 .....	1104
1024	월남 정세 .....	1106
1025	베네수엘라 정세 .....	1107
1026	북예멘 쿠데타 .....	1108
1027	잠비아 정세 .....	1109
1028	공관활동보고 - 미얀마(구 버마) .....	1110
1029	공관활동보고 - 캄보디아(구 크메르) .....	1111
1030	공관활동보고 - 캐나다 .....	1112
1031	공관활동보고 - 고오베(神戸, 일본) 총영사관 .....	1113
1032	공관활동보고 - 센다이(仙臺, 일본) 영사관 .....	1114
1033	공관활동보고 - 요코하미(横浜, 일본) 총영사관 .....	1115
1034	공관활동보고 - 일본 .....	1116
1035	공관활동보고 - 라오스 .....	1117
1036	공관활동보고 - 루안다 .....	1118
1037	공관활동보고 - 미국 .....	1119
1038	공관활동보고 - Agana(미국) 총영사관 .....	1120
1039	공관경제통상 동향보고 - 카메룬 .....	1121
1040	공관경제통상 동향보고 - 캐나다 .....	1122
1041	공관경제통상 동향보고 - 이탈리아 .....	1123
1042	공관경제통상 동향보고 - 리비아 .....	1124
1043	공관경제통상 동향보고 - 스페인 .....	1125
1044	재외교민회관 건립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실태 .....	1126
1045	재외국민 교육 기본정책 .....	1127
1046	재외국민 선도대책 수립추진 .....	1128
1047	재외교민 실태조사단 파견 .....	1129
1048	재일본 한국인 차별대우 문제 .....	1130
1049	재일본 민단 확대 간부회의 개최계획 .....	1131
1050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	1132
1051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관련 민원 .....	1133
1052	재사할린 동포 귀환 교섭 .....	1134
1053	재사할린 동포 귀환관계 진정서 .....	1135
1054	기타지역 재외국민단체 창설 및 활동 .....	1136
1055	주아르헨티나 한국교민회관 건립 .....	1137
1056	주Sydney(호주) 한국교민회관 건립 추진 .....	1138
1057	주월남 한국 교민회관 건립 .....	1139

1058	문선명 전도사 및 통일교회 활동 .....	1140
1059	재카나다 반한단체 활동 .....	1141
1060	독일 내의 반한 활동 .....	1142
1061	반한인사 일본 내 활동 .....	1143
1062	재일본 반한단체 동향 .....	1144
1063	재일본 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 간첩사건 .....	1145
1064	문명자 전 문화방송 미국 특파원 입국 허가 문제 .....	1146
1065	Ogle, George E. 미국 목사 반한 활동 및 강제 퇴거 .....	1147
1066	조총련 동향 .....	1148
1067	조총련계 인사 북한 방문 .....	1149
1068	조총련계 인사 제3국 방문 .....	1150
1069	조총련계 인사의 미국 방문시도 .....	1151
1070	일본 내 조선교육재단의 재산환수 소송 .....	1152
1071	브라질 해상에서의 한국 원양어선 피납 .....	1153
1072	중국(구 중공)의 한국어선 및 선원 구조 .....	1154
1073	한·중국(구 중공) 간 영해 침범 .....	1155
1074	일본 밀입국자 강제송환 .....	1156
1075	일본어선의 한국 영해 및 어업전관수역 침범 .....	1157
1076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	1158
1077	Las Palmas(스페인) 진출 한국 선원 사고 .....	1159
1078	선원기항 여행결과보고서 .....	1160
1079	일본 적군파 관계 .....	1161
1080	주오오사카총영사관 청사 신축 .....	1162
1081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관저 매입 .....	1163
1082	주우간다대사관 관저 매입 .....	1164
1083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중앙회관 건립 추진 및 민단 운영 .....	1165
	부록 .....	1167



1974년도



#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 장례식. 전2권 (V.1 기본문서)

| 74-000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의전/총무
MF번호	A-11 / 1 / 1~130p

1. 외무부는 1974.8.15. 미국 등 주요 공관에 현직 국가원수부인의 서거에 따른 장례식 거행 형식 등 주재국 관행 보고를 훈령함.

2. 외무부는 1974.8.16. 전 재외공관장에게 영부인 서거에 따른 조치사항을 훈령함.

- ※ 고 육영수 여사의 장례는 8.19. 국민장으로 거행하기로 결정
- ※ 상기 사실을 주재국에 통보하고 조문록 비치, 반기 계양, 애도표명 등 조치
- ※ 국민장 완료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회, 만찬 등 삼가

3. 주미국대사 등 각국 공관장은 상기 훈령에 따른 공관 조치사항을 수시 보고함.

- ※ 8.15. 경축리셉션 취소, 조문록 비치 및 반기 계양, 주재국에의 통보, 주재국 애도표명 및 언론보도 내용 등

4. 외무부는 1974.8.16. 전 재외공관장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함.

- ※ 대통령 영부인 서거 및 국민장 관련, 각 재외공관장은 임지를 떠나지 말고 업무수행에 매진
- ※ 주재국 언론동향에 각별히 유의, 이번 사건이 왜곡 보도되거나 한국 정부를 비방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언론대책에 만전

5. 총무처는 1974.8월 장의(葬儀) 집행계획을 작성함.

- ※ 운구, 영결식, 안장식, 안장식 참석자 명단 등

6. 월남대사는 1974.8.22. 조문과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조문록 비치 및 접수, 교민회 주관 추모예배, 추도식 거행(8.19.)
- ※ 월남 정부 주요인사 위로 및 조문 접수
  - 티우 대통령, 후웅 부통령, 외무장관 등
- ※ 금번 사태에 대한 홍보 전개
  - 언론계, 대외 및 대내 홍보, 회람 발송 등
- ※ 언론계 및 일반 반응 등

7. 외무부 아주국은 1974.9.5. 의전실에 8·15 사건과 관련 재외공관 조치사항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함.

- ※ 의전실은 9.7. 아래 조치내용을 아주국에 회신
  - 지시전문 타전, 조위 메시지 접수 및 회신, 외국 정부 특사 접수, 주한 외교사절 조문 접수 및 장례식 참석 조치, 진재외공관에 조문록 송부 지시

#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 장례식. 전2권 (V.2 각국 조문)

| 74-000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의전/총무
MF번호	A-11 / 2 / 1~573p

## 1. 주일본대사 등 각국 공관장은 1974.8월 고 육영수 여사의 국민장에 대한 특사파견 계획을 보고함.

- ※ 일본은 다나카 수상을 파견하기로 결정
- ※ 주대만(구 중화민국)은 행정원 부원장을 파견하기로 결정

## 2. 외무부는 1974.8.18. 대통령 비서실에 고 육영수 여사 장례식 참석차 내한하는 아태 고위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접견을 건의함.

- ※ 일본 수상, 대만 행정원 부원장, 월남 부수상, 필리핀 전 상원의장 등

## 3. 외무부는 1974.8.21. 전재외공관에 공관이 접수한 조문객 명단 및 조문록을 송부할 것을 지시함.

- ※ 각 공관장은 상기 훈령에 따라 조문록 서명 또는 서한을 통한 조의표명 사실을 보고

## 4. 전 재외공관장은 1974.8월 조전 접수 사실 및 내용을 수시 보고함.

- ※ 재외공관장 본인 및 교민의 조전 내용 보고
  - 육영수 여사의 서거 비보에 경악과 슬픔, 애도 표명
  - 고인의 명복 및 대통령의 건승을 기원
- ※ 각국 국가원수 및 주요인사의 조전 접수 내용 보고
  - 육영수 여사의 서거 비보에 경악, 고인의 명복 기원 등

## 5. 외무부는 1974.8월 대통령 및 국무총리 비서실에 육영수 여사의 서거에 따른 외국 국가원수 및 주요 인사의 조위 메시지 접수 내용을 수시 송부함.

## 6. 외무부 의전실은 1974.8월 전재외공관장에게 육영수 여사의 서거에 따른 외국 주요인사의 조전에 대한 감사서한 및 전문을 주재국에 전달하도록 지시함.

- ※ 국가원수 및 수상급 조전 63건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 전문
  - 이와는 별도로 미국, 일본 등 10개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친서 발송
- ※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명의 전문



# 명예영사 활동보고-Brisbane(호주)

| 74-000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1
MF번호	A-11 / 5 / 1~6p

주호주대사는 1974.10.8.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 주재하는 Cameron 명예영사의 활동을 외무부에 보고함.

## 1. 국경일 리셉션 거행

- ✿ 주요 참석인사
  - 퀸즐랜드 주지사, 교육문화장관, 의회의원 및 외교단 인사
- ✿ 육영수 여사의 서거(1974.8.15.)에 대한 묵념 실시
  - 한국음식 등 제공

## 2. 한국 아동합창단 방문(1974.10.29.~31.)

## 3. 국제입찰

- ✿ 3개 수질오염측정 기지에 대한 입찰문의 회신
- ✿ 이행채권(performance bond)에 관한 문의에 대해 주시드니총영사의 제의로 서울 외환은행과 접촉하도록 조치

## 4. 한인회 활동

- ✿ 태권도 사범 도착 · 정착 및 태권도 교습학교 개교 알선
  - 브리즈번에 태권도센터 설립 조언

## 5. 관광 · 홍보 활동

# 주Melbourne(호주) 명예영사관 설치 및 Frew, George N. 명예영사 임명, 1974.5.29.

| 74-000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1
MF번호	A-11 / 6 / 1~49p

## 1. 주호주대사는 1974.4.1. 주멜버른 명예영사관 설치 및 명예영사 임명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 주멜버른 명예영사관 설치

- 멜버른은 호주 제2의 도시로서 정치, 금융, 문화의 중심지
- 또한 멜버른에는 친북단체가 구성되어 활동 중인바, 친북단체 활동을 견제하고 한국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필요

### ※ G. N. Frew 명예영사 임명

- Frew은 호주, 뉴질랜드의 호텔 체인 Commodore Group의 창설자로서 지역사회활동에 공헌이 큰 인물이며, 한국에 대한 호텔 합작사업 투자 및 한국 호텔업 훈련생 초청 추진 중

36

## 2. 외무부는 1974.4.3. 주호주대사의 건의를 수용, 주멜버른 명예영사관 설치 및 Frew 명예영사 임명에 관해 장관결재를 득함.

### ※ 외무부는 5.21. 주호주대사에게 동 결정 통보

## 3. 외무부는 1974.5.24. Frew를 주멜버른 명예영사로 임명하고 아래 관련조치를 시행함.

### ※ 6.11. 명예영사 위임장 발급에 관한 대통령 결재

- 외무부는 6.15. 주호주대사에게 상기 명예영사 임명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동의여부 회보를 훈령
- 주호주대사는 8.26. 호주 정부가 주멜버른 명예영사관 설치 및 Frew 명예영사 임명에 동의함을 보고 (1974.5.29.로 소급하여 동의)

## 4. 주호주대사는 1974.9.17. 주멜버른 명예영사 임명장 수여와 관련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9.11. Frew 명예영사에게 명예영사 임명장을 수여

- 명예영사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건 개정령(대통령령 5254호)에 따라 선서

### ※ 직무범위

- 재외국민의 보호, 공동 등기소 문서 사본 및 발취문의 입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및 항공기의 보호, 상거래 및 외자도입을 위한 연락 및 알선, 통상·경제·예술·과학 및 교원 등의 교류촉진 등

# 주Copenhagen(덴마크)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 74-0005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구주/총무
MF번호	A-11 / 7 / 1~66p

## 1. 주덴마크대사는 1973.2.27. 명예영사 임명에 관해 아래와 같이 건의함.

- ※ 명예영사관 존속필요 이유
  - 명예영사와 같은 친한 인사의 협력 필요
  - 친북한단체의 활발한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친한세력의 구축 필요
  - 통상, 경제협력을 통한 우호관계 심화를 위한 명예영사의 중추적 역할 필요
- ※ 현 Strand 명예총영사는 건강 사정 및 소극적 태도를 감안하여 해임하고 Ronberg를 명예영사로 신규 임명

## 2. 외무부는 1973.12.8. 주코펜하겐 명예영사 임명에 관해 장관결재를 득함.

- ※ 명예영사 임명 필요성
  - 북한과의 대치 공관임을 감안, 친북한단체의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친한세력 구축에 공헌
  - 주재국에서는 대사와 명예영사가 동일 도시에 상주하는 것이 보편적 관례
  - Ronberg는 주재국 정계 및 경제계에 대해 영향력이 크며, 통상과 경제증대를 위한 역할다대

## 3. 외무부는 1973.12.31. 주코펜하겐 명예영사 Strand를 해임하고 Ronberg를 신규 임명 조치함.

- ※ 외무부는 1974.1.24. 주덴마크대사에게 Ronberg에 대한 영사위임장을 송부하고 주재국의 인가장을 수령토록 훈령
  - 동 대사는 4.29. 주재국 외무성이 Ronberg를 코펜하겐 주재 한국 명예영사로 인가하는 공한을 보내 왔으며, 동 영사관이 5.1. 개관함을 보고

## 4. 주덴마크대사는 1974.6.26. Ronberg 명예영사의 승격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 승격 건의 이유
  - 현 명예영사의 직위는 타국 명예총영사에 비해 심리적 열등감을 느끼게 하며, 영사단 행사에서 최하위 서열 차지
  - 덴마크 친북한단체 정조협회장이 북한 명예총영사로 임명되리라는 설이 있어 금번 승격은 대북한 견제활동의 견지에서 시기 적절
  - 동인은 명예영사 임명 이전에도 공관활동에 적극 협조한 친한인사이며, 대한 수입품목 확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 5. 외무부는 1974.7.27. Ronberg를 주코펜하겐 명예총영사로 임명함.

# Wagner, Jean 주Luxembourg(룩셈부르크) 명예영사 임명, 1974.2.6.

| 74-0006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A-11 / 8 / 1~37p

## 1. 주벨기에대사는 1973.4.20. 겸임국인 룩셈부르크 출장(1973.4.17.~19) 결과를 보고하면서 북한침투 저지 방안의 일환으로 아래 사항을 건의함.

- ※ 룩셈부르크의 영향력 있는 인사를 명예영사로 임명
- ※ 동국에 있는 한국 참전 용사회를 중심으로 각계를 망라한 한 · 룩셈부르크 친선협회를 조직하여 친한여론을 조성

38

## 2. 외무부는 1973.4.24. 주벨기에대사에게 주룩셈부르크 명예영사 임명을 위한 유력인사를 물색, 보고할 것을 훈령함.

## 3. 주벨기에대사는 1974.1.24. 주룩셈부르크 명예영사로 Klieps 룩셈부르크 내무장관이 추천한 J. Wagner 변호사를 임명할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 룩셈부르크는 겸임국으로서 동국의 정세판단 및 동태파악이 어려운 실정
- ※ 동국에는 노조세력이 강하고 공산당이 6석의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 측의 접근책동이 용이하고 북한과의 친선협회도 구성되어 활동
- ※ 이번 명예영사관 설치로 룩셈부르크와의 관계 강화
- ※ Wagner 변호사는 룩셈부르크 3개 은행 및 주회사 고문 및 행정부처 소송담당 변호인으로서 활동적인 인물이며, 내무 · 외무 · 국방장관과도 친분이 두터움.

## 4. 외무부는 1974.2.1. Wagner 주룩셈부르크 명예영사 임명에 관해 장관결재를 득함.

## 5. 외무부는 1974.2.6. Wagner를 주룩셈부르크 명예영사로 발령하고 영사위임장 발급을 위한 대통령 재가를 득함.

- ※ 외무부는 2.20. 주벨기에대사에게 동인에 대한 영사위임장을 송부하고 룩셈부르크 정부의 인가장을 발급 받도록 훈령

## 6. 주벨기에대사는 1974.5.15. 명예영사 인가장 발급과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룩셈부르크 정부가 5.9. 공한으로 Wagner 주룩셈부르크 명예영사에 대한 영사인가장이 발급되었음(4.26.)을 통보
- ※ 명예영사관은 동인의 변호사 사무소에 설치

# Seeyave, Rene Cheh 주Port Louis(모리셔스) 명예영사 임명, 1974.11.28.

| 74-0007 |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아프리카/총무
MF번호	A-11 / 9 / 1~61p

1. 외무부는 1973.5.25. 모리셔스와의 기존 우호관계 강화 및 무역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모리셔스 명예총영사관 설치에 관한 장관결재를 득함.
2. 외무부는 1974.6.9. 주영국대사(모리셔스 겸임)에게 주재국 모리셔스대사를 접촉, 동국 정부의 주모리셔스 한국 명예총영사관 개설 동의를 얻도록 교섭하고 결과보고 할 것을 훈령함.
3. 외무부는 1974.8.12. R.C. Seeyave를 주모리셔스 명예총영사로 내정하기 위한 장관결재를 받음.
  - ※ Seeyave는 정치, 경제계 실력자로서 한국어선단 진출에 공이 큰 중국계 실업인
4. 주영국대사는 1974.10.21. 주재국 모리셔스 고등판무관실이 Seeyave 주모리셔스 명예총영사 임명 제의에 동의함을 통보해 왔다고 보고함.
5. 외무부는 1974.11.6. 주영국대사에게 주모리셔스 명예총영사 발령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 1974.11.1. Seeyave를 주모리셔스 명예총영사로 발령함. 이에 대통령 명의의 영사위임장 접수 시 모리셔스 정부의 영사인가장을 받도록 조치 요망
6. 주영국대사는 1974.11.19. Seeyave 주모리셔스 명예총영사 임명과 관련한 주재국 모리셔스 고등 판무관실과의 접촉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모리셔스 관례로는 명예총영사를 명예영사보다 상위직으로 취급
  - ※ 한국과 합의한 것은 명예영사 임명에 대한 동의
    - 현재 모리셔스에는 많은 나라의 명예영사가 임명되었으나, 아직까지 명예총영사 임명은 없음.
  - ※ 다른 나라와의 균형유지를 위해 한국에서도 동인을 명예영사로 임명해 주기를 희망
7. 외무부는 1974.11.21. 상기 주영국대사의 보고를 토대로 Seeyave를 명예영사로 재발령 조치하기 위한 장관결재를 득함.
  - ※ 외무부는 11.28. 동인을 명예영사로 임명
  - ※ 외무부는 1975.1.8. 주영국대사에게 동인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영사위임장을 송부하고 모리셔스 정부의 영사인가장을 받도록 훈령

Matook A. Hasanain 주Jeddah(사우디아라비아)  
명예총영사 해임, 1974.1.10.

| 74-000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중동/총무
MF번호	A-11 / 10 / 1~11p

1.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73.10.30. 주젯다 명예총영사 발령과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당시 명예총영사 Hasanain의 해임발령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  
- 원만한 해임을 위해 조치 중이며 추후 상세보고 예정

2.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73.12.26. Hasanain 주젯다 명예총영사 해임에 관해 아래와 같이 건의함.

- ※ 동인은 개인사정에 의해 명예총영사직 사퇴를 희망해 왔으나, 대사관은 그간 동인의 영향력과 업적을 고려하여 이를 만류  
- 동인이 사직을 계속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락하여 해임 발령을 건의
- ※ 동인은 과거 수년간 한국을 위해 성의껏 직무를 수행했으며, 앞으로도 동인과 계속 접촉하면서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 동인에 대한 훈장수여를 건의

3. 외무부 구아국장은 1974.1.7. 총무과장에게 Hasanain 주젯다 명예총영사에 대한 해임 발령을 아래와 같이 요청함.

- ※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젯다에 한국 상주공관이 설치됨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바 있는 동인에 대한 해임 발령을 건의해 왔으므로 조치 요망
- ※ 동인에 대한 표창수여는 의전실에 별도 의뢰  
-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공한 및 동인의 사임희망 서한 첨부

4. 외무부는 1974.1.10. Hasanain 주젯다 명예총영사 해임에 관한 장관결재를 득함.

5. 외무부 총무과장은 1974.1.10. 구아국장에게 Hasanain 주젯다 명예총영사의 해임 발령을 통보함.

# 스웨덴 주재 명예영사 임명 추진

| 74-000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A-11 / 11 / 1~11p

## 1. 주스웨덴대사는 1974.8.12. 및 8.26. 친한 단체인 한국협회의 G.M. Fagraeus 회장을 스톡홀름 명예 총영사로 임명할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 명예영사 임명 필요성은 공관 창설 당시부터 건의되었으나, 특히 스웨덴이 북한을 승인한 후 스웨덴에서 남북대결이 격화됨에 따라 친한적인 현지인의 활동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필요성이 증대
- ※ 대사관이 소재하는 지역에 명예영사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스톡홀름의 경우 예외적인 임명이 필요
  - 당지 친한 단체는 한국협회, 한·서협회, 코리아센터 등이 있으나 간행물 발간, 정기적 회동행사 이외에 적극적인 친한적 홍보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
  - 당관은 친한 단체 간부들에 대한 접촉을 강화하고 있으나, 단체 간부 중 열성적인 지도자를 명예영사로 임명하는 것이 친한 단체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하고 조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 Fagraeus 회장 추천사유
  - 한국협회는 친한 단체 중 회원 수가 가장 많고 재정 및 조직 활동 면에서 비교적 건실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회원의 대부분이 한국 중립국 휴전감시단 스웨덴대표 단원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군인들과 메디컬센터 등에서 근무한 의사들임.
  - Fagraeus 회장은 군인출신으로 한국에 관심이 있는 예비역 고급장교들과의 인간적 접촉이 비교적 넓으며, 1970.3.5.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고 지금까지 대사관과의 접촉이 가장 긴밀한 인물임.

## 2. 외무부 구주과는 1974.9.3. 주스웨덴대사에게 명예영사 임명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화신함.

- ※ 주스톡홀름 명예영사 임명문제는 1959.2월 Ek 한·서협회장으로부터 한국 명예영사로서의 위임신청이 있었으며, 당시 우리 방침이 수립되지 않았던 관계로 구체적인 결과를 얻지 못함.
- ※ Fagraeus 한국협회 회장의 공적과 활동은 인정되나, 동인의 명예영사 임명에는 아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검토 후 재건의 바람.
  - 동일 지역에 소재하는 한·서협회와 한국협회 2개 친한단체 중 한쪽만 명예영사를 둬으로써 양 단체 간 협조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
  - Ek 한·서협회 회장이 지금도 영사 위임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동인을 명예영사로 임명할 경우 Ek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
  - 상주공관이 소재하는 지역에 대한 명예영사 신규 임명을 가급적 피하고자 하는 본부 방침

##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 스페인

| 74-0010 |

생산연도	1970-1975
생 산 과	총무/구주
MF번호	A-11 / 12 / 1-44p

### 1. 주스페인대사는 1971.12.8. 주바르셀로나 명예영사관 설치를 건의함.

※ 외무부는 1972.7.22. 주스페인대사에게 명예영사관 신설 필요성을 지역별로 검토한 결과, 바르셀로나는 1972년도 신설계획에서 제외됨을 회신

### 2. 외무부 구아국장은 1974.1.23. 총무과장에게 주마드리드 명예총영사인 L. De la Sema y Espina의 1.19.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해임조치를 요청함.

※ 총무과장은 1.29. 구아국장에게 상기인이 1.19.자로 해임됨을 회신

### 3. 주스페인대사는 1974.10.2. 주바르셀로나 명예영사 임명을 요청함..

※ 명예영사관 설치 필요성

-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제2의 도시이며 인구 300만의 대항구 도시
- 스페인 GNP의 약 35%가 동 지역에서 생산되며 대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상공업의 중심지
- 카탈루냐지역의 중심지
- 일본, 태국, 파키스탄을 비롯한 40여개국에 명예영사관 설치

※ 피추천인 Herrero 인적사항

- 5개 회사의 중역이며, 각종 은행을 비롯한 대기업의 주식과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경제적 기반이 확고한 청년사업가
- 가족 중 주태국대사, 주중국(구 중공)대사가 있으며, 정부, 언론계, 업계 등에 인맥 보유

### 4. 외무부 구주과는 1974.10.14. 상기 주스페인대사의 건의를 검토한 결과, 주바르셀로나 명예영사관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장관재가를 득함.

※ 외무부는 10.28. Herrero를 주바르셀로나 명예영사로 임명

### 5. 외무부는 1975.1.6. 주스페인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Herrero 주바르셀로나 명예영사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영사위임장을 송부하니 주재국의 영사인가장을 발급 받고 결과 보고

※ 주스페인대사는 1.16. 주재국 외무성에 구상서로 영사인가장 발급을 요청하였음을 보고

### 6. 주스페인대사는 J.V. Herrero 주바르셀로나 명예영사에 대한 주재국의 영사인가장이 1975.2.20. 발급 되었음과 4.11. 동인과 명예영사관 개관식 거행을 합의하였음을 3.7. 외무부에 보고함.



## 주 Boston(미국)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 74-0011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1/총무
MF번호	A-11 / 13 / 1~27p

### 1. 주미국대사는 1974.4.11. 주보스턴 명예영사 해임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Lowe 명예영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임을 통보, 동 사표를 수리하고 4.1. 국무부에 통보
- ※ 후임 인선과 관련 O'Neill 하원 민주당 총무에게 적절한 인물을 추천해 줄 것을 의뢰

### 2. 외무부는 1974.4.17. 주미국대사에게 명예영사 해임관련 아래와 같이 통보함.

- ※ Lowe 주보스턴 명예영사 4.17. 해임 발령

### 3. 주미국대사는 1974.8.13. 주보스턴 명예영사 임명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 4.17. 해임 발령된 Lowe 명예영사 후임으로 J. Joseph Maloney Jr.를 추천
- ※ 관할구역
  - 보스턴시 및 그 일원
- ※ 직무범위
  - 대통령령 제5254호 제6조의 규정중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업, 한국 국적을 가진 선박 및 항공기 보호, 상거래 및 외자도입을 위한 연락 및 알선, 통상 등 교류촉진, 미국시민에 대한 통과 및 관광사증 발급, 기타 관할 공관장의 지시사항

### 4. 외무부 미주국은 1974.8.26. 주미국대사의 건의에 따라 상기 Maloney를 명예영사로 임명 건의하고 장관재가를 받음.

- ※ 외무부 미주국장은 8.28. 총무과장에게 명예영사 발령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
- ※ 외무부 총무과장은 9.2. 미주국장에게 Maloney가 주보스턴 명예영사로 임명됨을 통보

### 5. 외무부는 1974.9.4. 주미국대사와 주보스턴총영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9.2. Maloney가 주보스턴 명예영사로 발령되었으니 필요한 조치요망

### 6. 외무부는 1974.9월 주미국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Maloney 주보스턴 명예영사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영사위임장을 수여하고 주재국의 인가 조치와 결과보고

Gribbs, Roman S. 주Detroit(미국) 명예영사 임명,  
1974.1.22.

| 74-0012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북미1/총무
MF번호	A-11 / 14 / 1~32p

**1. 주미국대사는 1973.12.27. 주디트로이트 명예영사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고 임명 건의함.**

※ 피추천인: Roman S. Gribbs 현 디트로이트시장(1973.12.31. 이후 변호사 개업)

※ 추천 직위

- 주시카고총영사가 동인을 명예총영사로 추천(11.30.)해 왔으나 동인은 명예영사를 기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 외무부 미주국은 1974.1.12. 주디트로이트 명예영사 임명에 대한 장관재가를 득함.**

※ 주미국대사가 주디트로이트 명예영사로 Gribbs를 추천

※ 주시카고총영사관 관할 내 주재하는 명예영사들의 위치로 보아 디트로이트시 주변지역을 담당하는 명예 영사관이 없어 지역적인 면을 고려, 임명 요망

**3. 외무부 미주국장은 1974.1.15. 총무과장에게 Gribbs의 명예영사 발령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

※ 총무과장은 1.22. 동인을 주디트로이트 명예영사로 임용함을 1.23. 미주국장에게 통보

**4. 주미국대사는 1974.5.22. 주디트로이트 명예영사 인가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미 국무부는 5.17. Gribbs 주디트로이트 명예영사에게 영사인가를 통보

Smith, Milo M. 주Tampa(미국) 명예영사 임명,  
1974.12.31.

| 74-0013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1/총무
MF번호	A-11 / 15 / 1~28p

**1. 주미국대사는 1974.12.3. 주탐파 명예영사 임명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피추천인: Milo M. Smith 도시계획 상담회사장

※ 추천사유

- 탐파시와 한국의 무역량 및 한국선박의 탐파시 출입이 점차 증가
- 동인은 탐파지역에 견고한 기반과 영향력을 갖고 있어 동 지역과의 무역증진 및 문화교류에 많은 역할을 기대

**2. 외무부 미주국은 1974.12.11. 주탐파 명예영사 임명에 관해 장관결재를 득함.**

※ 외무부는 1975.1.6. 주미국대사에게 1974.12.31.자로 Smith를 주탐파 명예영사로 발령함을 통보함.

**3. 주미국대사는 1975.7.2. 주탐파 명예영사관 개관식(7.1.)을 주재하였음을 보고함.**

※ 동 개관식에는 Poe 탐파시장, 시의회 의장, 산업·금융계 대표, 언론인 등 탐파시 유지 약 100여명 참석

# 1974년도 북미지역 주재 명예영사 현황 및 활용 방안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A-11 / 16 / 1~35p

## 1. 외무부 미주국은 1974.2.28. 1974년도 북미지역 명예영사 활용계획에 관해 장관재가를 득함.

### ※ 활용목표

- 명예영사 제도를 대미외교 수행에 실질적으로 활용
- 친한 여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방 홍보활동 강화

### ※ 주요사업

- 지방 홍보활동의 강화: 명예영사관별로 최소 연1회 “한국의 밤” 또는 그와 유사한 행사개최 및 유력한 지방 언론계 인사와의 접촉 장려
- 새마을사업 지원: 본국의 새마을사업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자료 제공으로 각 공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실질적인 새마을사업 지원 추진
- 명예영사 방한초청: 국군의 날에 즈음하여 아직까지 방한하지 못한 명예영사 4명을 초청하여 활동의 욕 고취

## 2. 외무부 미주국은 1974.3.5. 주미국대사 및 주캐나다대사에게 상기 북미지역 명예영사 활동계획을 통보하고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훈령함.

### ※ 북미지역 명예영사관 현황: 각 관할별 총 19개 공관

- 로스앤젤레스 2(피닉스,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3(포틀랜드, 시애틀, 덴버), 시카고 4(미네아폴리스, 클리블랜드, 세인트루이스, 디트로이트), 뉴욕 2(보스턴, 볼티모어), 휴스턴 7(뉴올리언스, 마이애미, 샌안토니오, 애틀랜타, 댈러스, 모빌, 오클라호마시티), 캐나다 1(몬트리올)

## 3. 외무부는 1974.5.31. 주미국대사 및 주캐나다대사에게 북미지역 명예영사 활동계획에 관해 훈령함.

### ※ 1974년 상반기 중 명예영사관별로 특별한 활동실적 및 하반기 활동계획, 건의사항 등 보고

### ※ 향후 각 명예영사로 하여금 각 분야별 실적 및 계획을 분기별로 담당공관에 제출(사본은 관할 총영사관에 송부)하도록 제도화

- 명예영사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명예영사관에 지시 및 결과 보고

### ※ 종래의 시증발급 현황 보고는 계속하여 월별로 총영사관에 제출

# 주재관(국방무관) 파견 - 인도네시아

| 74-0015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동남아2
MF번호	A-11 / 18 / 1~26p

## 1. 국방부는 1972.2.5. 외무부에 주자카르타총영사관 무관 파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함.

- ※ 주자카르타총영사는 27. 총영사관에 대한 무관 파견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 ※ 외무부 동남아2과는 28. 총영사관에 대한 무관파견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
  - 대통령령 및 시행 세칙상 무관은 대사관이나 공사관에 파견 가능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3.4.24.채택)에도 총영사관에 무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2. 국방부는 1972.5.20. 외무부에 무관 파견에 관한 협조를 재차 요청함.

- ※ 총영사관에 영사의 직위를 가진 현역장교를 파견하여 주재국에서 군사외교활동을 수행
- ※ 인도네시아 국방성 정보참모부장 방한(1972.5.15.~16.)시 이에 대한 찬성 입장 표명

## 3. 외무부는 1972.6.19. 국방부에 무관 파견 문제와 관련 아래와 같이 회보함.

- ※ 영사직위로 무관을 파견하는 경우 무관단의 일원이 될 수 없어 무관단과의 접촉 곤란
- ※ 공식 활동 참여가 불가하므로 활동상 많은 제약
- ※ 영사직으로 파견하는 경우 외무부 정원 조정(영사직 증원) 등 관계 법령 개정 필요

## 4. 국방부는 1972.7.13. 외무부에 무관 파견 필요성을 강조, 협조 재차 요청함.

- ※ 취지
  - 인도네시아에 국방부 직원을 파견하여 주재국과의 군사유대 강화
  - 대공 첩보, 북한 진출 장비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상대적인 전력강화에 기여
- ※ 군사적 긴요성
  - 인도네시아가 소련 및 동구국가의 군사·경제 원조를 받고 있어 북한과 흡사한 전술교리 등을 용이하게 획득 가능
  -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어 주재국 인사의 북한 왕래가 빈번
  - 소련 및 북한의 군사정보 수집조건 양호 등

## 5.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74.7.12. 무관 파견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 인도네시아군의 국토방위와 정치참여라는 이중적 사명으로 인한 군부의 막중한 비중에 비추어 대사관 활동 강화를 위해 무관의 조속한 부임 필요
  - 특히 신입 무관의 광복절 행사 참가가 향후 무관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므로 가능한 한 8.15. 이전 부임 건의

## 6.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74.8.26. 주재국의 무관임명 동의에 관해 보고함.

- ※ 주재국 외무성이 8.24. 공한으로 주인도네시아 한국 무관의 임명에 동의함을 공식 통보

# 주우루과이대사관 상주무관 파견건의

| 74-0016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A-11 / 19 / 1~24p

### 1. 외무부는 1974.1.24. 주우루과이대사관에 대한 무관 파견 문제에 관해 국방부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문의함.

- ※ 1973.10.12.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최규하 대통령 특사는 인접국 우루과이를 동시 방문하고 우루과이가 현재 군부 통치하에 있음을 감안, 주우루과이대사관에 무관 파견이 요망된다고 건의한바, 주우루과이대사관에 대한 무관 파견 문제에 관한 의견 회신 요망

### 2. 국방부는 1974.1.29. 무관 파견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 ※ 국방부는 1.1. 주브라질 무관이 주우루과이 무관을 겸임하도록 발령한 바 있으며 우루과이에 대한 상주무관 파견 문제는 계속 검토 예정임.

### 3. 주우루과이대사는 1974.2.13. 상주무관 파견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주재국 군부와의 원활한 접촉과 북한의 주재국 침투방지를 위해서도 상주무관 파견이 절실히 요망되니 각별히 고려 요망

### 4. 외무부는 1974.4.1.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4개 재외공관에 중남미국가 무관들과의 접촉을 강화할 것을 훈령함.

- ※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1974.3.18.~19., 페루) 시 군부세력의 영향력이 큰 중남미지역에 대한 외교활동 강화책의 일환으로 재외공관 무관들의 중남미국가 무관들과의 접촉 강화를 건의
- ※ 재외공관 무관들의 대외활동 시 특히 중남미국가 무관들과 평상시 긴밀한 접촉유지
  - 군부집권 또는 군부 영향력이 큰 나라는 집권세력과 연결되는 유대 조성
  - 북한의 외교적 침투저지에 있어서 군부의 영향력이 작용될 수 있도록 대외활동 강화

### 5. 외무부는 1974.4.1. 국방부에 중남미국가에 대한 무관파견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 시 중남미지역 외교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무관파견 문제 토의
- ※ 북한의 중남미 침투 저지와 대중남미 외교강화를 위해 페루, 콜롬비아, 우루과이에 대한 무관파견 건의

### 6. 외무부는 1974.12.27. 및 1975.4.3. 국방부에 주우루과이대사관 상주무관 파견문제의 조속한 검토를 요청함.

- ※ 북한은 우루과이에 대한 외교적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주아르헨티나 북한대사 일행의 우루과이 입국은 우루과이 군부인사가 주선
- ※ 주우루과이대사는 우루과이의 제반사항이 군부의 직접적인 관여 하에 처리되고 있으므로 주우루과이대사관에 상주무관 파견을 재차 건의
  - 주재국의 주요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부의 동정을 수시로 파악, 대처하고 군부인사들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유지에 필요

# 각국의 상훈제도

| 74-0017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의전
MF번호	A-11 / 20 / 1~42p

외무부가 조사한 각국의 상훈제도에 관한 내용 수록

## 1. 독일 외교관 훈장수여제도(1972.11.10. 주독일(구 서독)대사 보고)

- ✿ 독일 정부는 외교관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하에 훈장 수여
  - 외국대사가 2년이상 주재한 경우 서훈하며 훈격도 상호주의 원칙 적용
  - 한국이 독일 외교관에게 훈장을 수여하지 않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외교관에게 훈장 수여 중단
-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근무 독일 외교관에 대한 훈장 수여 검토 요망

## 2. 페루 인사의 훈장 수령에 대한 사전동의 필요여부(1974.2월)

- ✿ 외무부는 2.23. 주페루대사에게 페루 정부 인사가 외국 정부로부터 훈장 수령 시 주재국 정부의 사전동의의 필요 여부를 문의
  - 페루 공관장회의 시 주재국 외상에게 수교훈장 광화장 서훈 검토 중
- ✿ 주페루대사는 2.25. 아래와 같이 보고
  - 주재국 정부인사가 외국 정부로부터 훈장 수령 시 정부의 사전허가는 불필요
  - 단, 수훈 후 패용허가는 필요

## 3. 미국의 훈장 종류(1974.4.30. 주미국대사 보고)

- ✿ 대통령 수여 메달
  - 국가과학재단 심사 메달, 미 공무원위원회 심사 공무원 대상 공적 메달, 대통령 행정사무소 심사 메달
- ✿ 미 행정부 각 부처별 심사 메달

## 4. 덴마크 외교관 훈장수여제도(1974.11.25. 주덴마크대사 보고)

- ✿ 주재국은 관례에 따라 외국 정치인, 외교관 및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서훈함.
  - 일반적으로 자국 국익선양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인사 대상
- ✿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는 외교관은 아래 규정에 따라 서훈
  - 덴마크에 최소 2년이상, 겸임공관은 최소 4년이상 근무 시 호혜원칙에 의거, 각 직급에 상응하는 등급의 훈장수여
- ✿ 양국간 기존 우호관계 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해 상호서훈 실시를 건의

# 외국 훈장 수령

| 74-001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총무
MF번호	A-11 / 21 / 1~99p

1973~74년 한국 외무부 직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수령한 훈장의 허가와 관련된 내용 수록

50

## 1. 외무부 미주국장은 1973.8.31. 총무과장에게 외국훈장 패용 허가 신청

- ※ 김용식 외무부장관 멕시코, 브라질 공식방문 시 방문국 정부로부터 아래 훈장 수령  
- 멕시코(아길라 아즈테카 훈장), 브라질(백강 대십자 훈장)

## 2. 주독일대사는 1974.2.1. 외무부에 외국훈장 수령에 관한 허가 신청

- ※ 김영주 주독일대사가 1.29. 독일 정부로부터 십자대훈장 수령
- ※ 외무부는 2.7. 총무처에 상기 외국훈장 수령 추진 및 패용 허가 신청  
- 총무처는 3.4. 김 대사에 대한 훈장 수령 추진 및 패용 허가

## 3. 주베트남(구 월남)대사는 1974.3.8. 외무부에 외국훈장 수령에 관한 허가 신청

- ※ 유양수 전 주월남대사가 월남 정부로부터 Kim-Khamh 1등급(최상급 수교훈장) 수령
- ※ 외무부는 3.11. 주월남대사에게 훈장 수령 후 추진 신청토록 훈령

## 4. 주태국대사는 1974.3.20. 외무부에 외국훈장 수령에 관한 허가 신청

- ※ 임윤영 전 주태국대사가 3.17. 태국 정부로부터 최고 수교훈장 수령
- ※ 외무부는 3.23. 주태국대사에게 추진 신청토록 훈령  
- 총무처는 6.13. 임 대사에 대한 훈장 수령 추진 및 패용 허가

## 5. 주모로코대사는 1974.4.19. 외무부에 외국훈장 수령에 관한 허가 신청

- ※ 현시학 주모로코대사가 4.18. 모로코 정부로부터 수교대훈장 수령
- ※ 외무부는 10.8. 현 대사의 훈장 수령 추진과 패용 허가 통보

## 6. 주월남대사는 1974.6.5. 외무부에 외국훈장 수령에 관한 허가 신청

- ※ 김형근 참사관이 월남 국제원조 유공자로 6.22. Chuong My 훈장 수령 예정
- ※ 외무부는 6.20. 동 대사에게 김 참사관의 훈장 수령 허가 통보

## 7. 주칠레대사는 1974.8.2. 외무부에 외국훈장 수령에 관한 허가 신청

- ※ 변정현 참사관이 8.1. 칠레 공로훈장 기사장 수령
- ※ 외무부는 10.8. 동 대사에게 변 참사관의 훈장 수령 추진 및 패용 허가 통보



## 훈장수여 - 대만(구 자유중국)

| 74-0019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동남아2/의전
MF번호	A-11 / 22 / 1~9p

### 1. 국회사무처는 1974.8.12. 외무부에 대만(구 자유중국) 입법원장 서훈 추천에 관한 동의를 요청함.

- ※ 국회의장의 공식초청으로 Nieh Wen-Ya 대만 입법원장이 1974.8.26.~31. 방한 예정
- ※ 국회에서는 동 방한기간 중 동 입법원장에 대해 수교훈장 광화장(1등급) 서훈 추천
- ※ 공적조서
  - 동 입법원장은 평소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대만 양국간의 우호증진에 크게 기여
  - 특히 최근에는 한·대만 문화증진협회장에 취임함으로써 앞으로의 양국간의 문화교류와 우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 외무부는 1974.8.21. 국회 사무처에 Nieh 대만 입법원장에 대한 수교훈장 광화장 서훈에 동의함을 통보함.

## 훈장수여 - 뉴질랜드

| 74-002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의전
MF번호	A-11 / 23 / 1~10p

### 1. 국회사무처는 1974.5.7. 외무부에 뉴질랜드 국회의장 서훈 추천에 관한 동의를 요청함.

- ※ 국회의장의 공식초청으로 Whitehead 뉴질랜드 국회의장이 1974.5.16.~22. 방한 예정
- ※ 국회는 동 의장에 대해 방한기간 중 수교훈장 광화장(1등급) 서훈 추진
- ※ 공적사항 및 서훈 필요성
  - 동 의장은 평소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으며 뉴질랜드와 한국 양국간의 유대강화와 우호증진에 크게 기여
  - 동 의장의 국내서열은 총독과 수상 다음으로 제3위이며, 금번 방한기간 중 훈장수여는 정책적 차원에서 유익한 성과 거양 기대
  - 동 의장과 같이 방한하는 Jack 의원은 전 국회의장으로서 1971.2.5.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 수상

52

### 2. 외무부는 1974.5.8.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에 한국 정부가 Whitehead 국회의장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할 예정임을 통보함.

- ※ 아울러 동 훈장수여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동의여부를 조속히 회신 요청

### 3. 외무부는 1974.5.14. 국회사무처에 Whitehead 국회의장에 대한 수교훈장 광화장 서훈에 동의함을 회신함.

# 대통령 긴급조치[제1-4호] 선포 및 해제, 전3권 (V.1 제1-3호 선포)

| 74-002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동북아1
MF번호	B-20 / 1 / 1~172p

## 1. 외무부는 1974.1.8. 전재외공관장에게 정부의 긴급조치와 관련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정부는 1.8. 헌법 제53조에 의해 긴급조치 선포
- ※ 긴급조치 선포에 즈음한 대통령 담화 및 긴급조치 제1, 2호 영문 번역문을 송부하니 그 내용을 주재국 정부에 설명함과 동시에 적절한 공보 활동 전개
  - 긴급조치 제1호: 개헌 인동 금지
  - 긴급조치 제2호: 제1호 위반자 처리를 위한 비상군법회의 설치
- ※ 긴급조치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 언론의 반응을 수시 보고

## 2. 외무부는 1974.1.8. 전재외공관장에게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른 특별 홍보지침을 전달함.

- ※ 긴급조치의 필요성, 불가피성 및 그 당위성을 정부기관, 언론기관, 사회, 여론단체, 영향력있는 지도급 인사 및 교포단체 지도자에게 주지 및 이해시켜 이를 지지하도록 유도
- ※ 이번 조치는 국가보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 권한 내에서 취한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
- ※ 동 조치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주지시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입장에 대한 이해, 지지 유도
- ※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며 자기 직무와 생업에 충실한 절대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

## 3. 주미국대사대리 등 각 공관장은 1974.1월 긴급조치 관련 사항을 수시 보고함.

- ※ 주재국 외무부 등 정부 반응, 각계 반응, 언론 보도동향, 공관 홍보활동 등

## 4. 이병희 제1무임소장관은 1974.1월 대통령 긴급조치 제1~3호에 따른 일본에 대한 조치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 ※ 제1무임소장관실 정무조정실장 일본방문 시(1974.1.18.~21.) 아래 활동 전개
  - 긴급조치 제1~3호의 일본어 번역 책자를 일본 정계, 언론계, 학계 등의 저명인사에게 장관명의 서한과 함께 배포하고 이해를 촉구

# 대통령 긴급조치[제1-4호] 선포 및 해제, 전3권 (V.2 제4호 선포 및 제1·4호 해제 [제5호])

| 74-002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동북아1
MF번호	B-20 / 2 / 1~411p

## 1. 외무부는 1974.4.3. 전재외공관장에게 긴급조치 제4호 선포와 관련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정부는 4.3.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활동 일체금지를 위한 긴급조치 제4호 선포
- ※ 주재국 정부에 대해 긴급조치 제4호 내용설명 및 홍보, 주재국 언론반응 등을 수시 보고
- ※ 외무부는 4.4. 전재외공관장에게 상기 긴급조치 제4호 및 대통령 특별담화문의 영문 번역본 송부

## 2. 전재외공관장은 1974.4월 상기 훈령에 따라 주재국 반응 및 각계 동향과 언론보도 내용을 수시 보고함.

54

## 3. 문화공보부는 1974.4.29. 민청학련의 정체리는 아래 내용의 홍보자료를 작성함.

- ※ 민청학련의 조직, 배후, 투쟁목표와 책동, 민청학련과 북한의 대남전략과의 관계
- ※ 국제공산주의의 통일전선 공작과 북한의 대남전략
- ※ 북한의 간접 침략과 민청학련의 책동 봉쇄

## 4. 외무부는 1974.8.23. 긴급조치 제5호와 관련된 아래 조치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함.

- ※ 긴급조치 제5호: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의 해제 조치
- ※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홍보
  - 8.23. 28개 주한 상주공관에 동 해제조치 및 해제에 즈음한 대통령 특별담화문(영문) 배포
  - 주한 검입공관(동경 상주)에 대해 주일본대사관이 같은 자료를 송부하도록 조치
- ※ 재외공관에 대한 홍보 및 지시
  - 해제조치 및 대통령 특별담화문을 전 재외공관에 통보
  - 주재국 정부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주재국 및 언론의 반응 보고 지시

## 5. 문화공보부는 1974.8.27. 「긴급조치(제1호 및 제4호) 해제와 금후의 과제」라는 홍보자료를 작성함.

- ※ 동 조치 해제의 배경과 의의, 긴급조치(1호 및 4호)의 배경과 불가피성
- ※ 긴급조치 제2호와 제3호를 해제하지 않은 이유
- ※ 금후의 과제
  - 국민 자율성의 제고, 대공 경제체제의 강화, 시국관의 확립과 국론통일의 강화

# 대통령 긴급조치[제1-4호] 선포 및 해제. 전3권 (V.3 자료)

| 74-002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동북아1
MF번호	B-20 / 3 / 1~292p

## 1. 외무부는 1974.1.9.~23. 긴급조치와 관련한 조치 및 반응에 관한 일일보고 자료를 작성함.

- ※ 외무부 및 재외공관 조치사항
- ※ 공관보고를 토대로 한 외국의 반응
  - 주재국 주요 언론의 보도내용 요약

## 2. 해외공보관은 평화를 지향한 외교선언 제하 ‘박대통령의 6·23 특별성명과 그 배경 및 의의 정책자료 (일어본)’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 특별성명 주요내용
  - 남북간 상호 내정불간섭, 불침략
  - 긴장완화와 국제협력을 위해 남북한 국제기구 동시가입 불반대
  - 북한과 동시 유엔가입에 불반대
  -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개방 등
- ※ 김종필 국무총리의 배경설명과 기자회견 내용

## 3. 한국헌법위원회는 1974.1.14.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획기적 조치(일어본)’을 아래와 같이 작성함.

- ※ 대통령 특별담화
- ※ 긴급조치 제3호의 주요부분 해설
- ※ 제3호 전문
  - 총칙, 조세의 특례, 국민복지연금법 등 효력정지, 노동조건 개선, 부당이득세, 예산의 조정, 보칙

## 4.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긴급조치 자료가 수록됨.

- ※ 긴급조치 제3호 내용
- ※ 기타 관련법규 내용
  - 동 긴급조치 제11조 2항 및 제16조 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 관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
  - 관세법 제28조 1항 10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령 등

## 5. 문화공보부는 1974.1.19.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천명된 분야별 정책사항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 1974년도 시책 기본방향 및 실천방침
- ※ 외교, 안보 및 국방, 남북관계와 남북대화, 경제, 문교, 사회·노동, 과학기술, 새마을운동 등

#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구주지역의 반응

| 74-002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B-20 / 4 / 1~81p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관련 1974.6~8월 구주지역 공관이 보고한 내용과 외무부 조치 현황임.

56

## 1.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EC(구주공동체) 국가의 반응(8.21. 외무부 작성)

- ※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동 사건 연도결과에 대한 관심과 우려 표명
- ※ 최근 EC 외무성 국장들은 상호협의를 통해 한국의 정치정세에 비상한 관심 표시
  - 특히 반정부인사들이 처형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
- ※ 9.6. EC 아주국장 회의 시 한국문제가 토의될 예정
  - 유엔 한국 문제 외에 한국 내 정치정세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관측

## 2. 주한 네덜란드대사대리와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 면담요록(8.20. 외무부 구주과 작성)

- ※ 네덜란드 측은 긴급조치로 사형이 언도된 피고인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의 우려 표명
  - 한국 측은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

## 3. 주스웨덴대사의 국내 사태에 대한 항의문 접수 보고(7.25.)

- ※ 민청학련 사건 재판 및 형 언도에 항의하는 스웨덴 평화위원회 측의 서한 접수

## 4. 외무부의 구주지역 주요 공관에 대한 훈령 전달(8월)

- ※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구주지역 언론의 한국에 대한 비판적 논조가 강화되고 일부 정부는 한국 국내사정에 대해 직접 관심 표명
- ※ 이미 전달된 지침과 자료에 따라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
  - 정부 관계당국 및 언론과 긴밀히 접촉, 한국의 실정, 민청학련 사건의 성격 및 관련자들의 범법행위를 충분히 이해시킴.
  - 특히, 지학순 주교에 대한 재판이 종교탄압이 아니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정치탄압이 아니라는 점을 납득시킴.
- ※ 본 건에 관한 공관 직원의 활동상황을 매일 보고

## 5. 외무부의 대통령에 대한 외교적 조치 서면보고(8.21.)

- ※ 주요 구주지역 공관에 특별지침 하달, 활동상황 보고 조치
- ※ 주요국의 반응 종합
- ※ 구주지역 공관에 대한 향후 조치사항
  -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 등 특수사정 설명
  - 본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려 이를 본국 정부에 전달토록 할 계획

#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1 사건일지)

| 74-0025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B-20 / 5 / 1~212p

## 1. 1974.8.15.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과 관련, 외무부가 9.12. 대통령에게 보고한 활동일지의 요지

- ※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8.15.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저격사건과 관련한 한·일본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 표명
- ※ 외무부는 8.15. 육영수 여사의 서거를 주재국에 통보하도록 전재외공관에 지시
- ※ 노신영 외무부차관은 8.16.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공범자 수사 등 일본 측의 적극적 협조 요청
- ※ 주일본대사관은 8.16. 다나카 일본 수상이 조의 사절로 8.19. 국민장에 참석 예정임을 보고
- ※ 주오사카총영사관은 8.17. 오사카 경찰본부가 고오즈 파출소에서 도난당한 2정의 권총 중 1정을 문세광의 집 천장에서 발견했음을 보고
- ※ 외무부는 8.17. 일부 해외언론의 비판적 경향에 비추어 사건 성격이 왜곡 보도되지 않도록 사건 진상설명 및 배후관계를 강조하도록 전재외공관에 지시
- ※ 주일본대사관은 8.20. 주재국 각 조간이 박정희 대통령과 다나카 수상의 회담에서 일본 측의 수사 협력을 약속했으나 국내법의 제약이 있음을 지적했다고 보고
- ※ 국내언론은 8.24. 특별수사본부가 문세광을 서울지검에 송치했음을 보고
- ※ 외무부는 8.30. 주일본대사관 폭파협박 전화에 대해 주재국 정부당국에 통고하고 대사관과 관원의 보호조치를 요청할 것을 주일본대사관에 지시
- ※ 외무부는 9.3. 일본 정부가 사과, 적극적인 수사협조, 반한단체 규제 등을 이행하도록 미국 정부에 대일본 영향력 행사를 요청할 것을 주미국대사관에 지시
- ※ 노 차관은 9.4. 주한 영국, 프랑스, 필리핀, 이탈리아, 캐나다 대사를 초청,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대일본 영향력 행사를 요청

## 2. 외무부가 1974.9.17. 대통령에게 보고한 활동일지의 요지

- ※ 외무부는 9.10. 김동조 외무부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일본 측 특사파견 목적은 사죄하는 것이며 다른 문제도 함께 협의할 목적으로 오는 것은 절대 불가를 강조하였음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
- ※ 주일본대사관은 9.12. 주재국 각 조간에서 다나카 친서 안이 한국 측에 전달되었고 작일 심야에 한국 외무부 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만났음을 보도하였다고 보고

## 3. 상기 이외에 외무부가 1974.9.23. 대통령에게 보고한 활동일지, 8.15. 대통령 저격사건의 진상과 그 배경에 관한 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음.

#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2 대일본 교섭대책 I : 1974.8.15.-9.4.)

| 74-0026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B-20 / 6 / 1~259p

58

1. 주일본대사관은 1974.8.22. 도고 외무성 차관이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통령 저격사건 관련 발표된 사실 관계에 미루어 동 사건이 일본 내에서 준비된 것은 사실이며 그것이 일본 내에서 일어난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일본대사는 1974.8.24. 다나카 일본 수상을 방문하여 국무총리의 친서를 전달하고 일본 측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필요성 등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한데 대해 다나카 수상은 아래 요지의 일본 정부 측 입장을 밝혔음을 보고함.

- ※ 친선우호 증진에 대해서 양국이 전적으로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 일본 정부는 동 사건에 대한 국내 수사를 엄중히 하며 양국의 우호관계를 저해하는 여사한 사건이 국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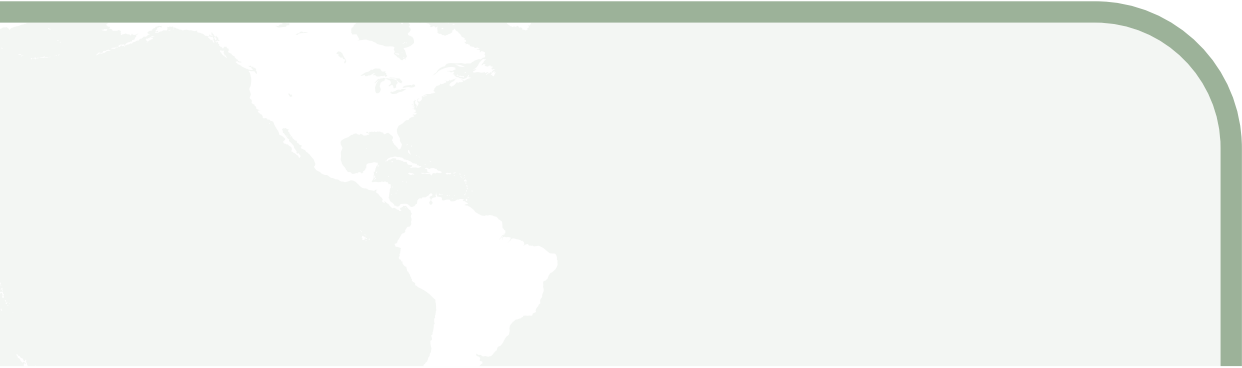
3. 외무부는 1974.8.30. 박정희 대통령이 동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외무부장관 배석), 저격사건 관련 아래 요지로 언급했음을 주미국대사에게 통보하고 주재국 국무부 고위층과 접촉하여 협조를 강력히 요청토록 지시함.

- ※ 일본 정부는 동 사건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고 사건 해결에 적극적인 협력
-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국민의 대일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고 일본 수사당국의 무성의에 대해 의분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악랄한 수단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
- ※ 한국 정부의 전복을 위한 북한의 기지로서 이용되고 있는 조총련이라는 범죄단체를 일본 정부가 불법화하거나 조총련의 반한 활동을 완전히 봉쇄하여야 하며, 만약 일본 정부가 조총련에 대하여 여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조총련을 비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
- ※ 한·일본 관계가 최악의 사태까지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측 요청에 대한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 필요

4. 주미국대사는 1974.9.4. 하비브 미 국무부 차관보를 방문, 8·15 저격사건 관련 한국 정부의 대일본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대일본 영향력 행사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하비브 차관보는 아래 요지로 언급했음을 보고함.

- ※ 한국 측이 설명하는 내용은 키신저 장관을 위시하여 상부에 충분히 보고하겠으며 상부에 보고하기 전에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현 단계에서는 말할 수 없음.
- ※ 자신의 견해로는 한국과 일본에 다같이 우방인 미국으로서는 양국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며, 최근 한국의 일본에 대한 입장표명이 너무나 분명하게, 고위층에서 행하여진 만큼 일본은 본 건을 신중하고 심각하게 검토할 것으로 봄.





5. 본 문서철에는 대통령 저격사건과 관련한 대일본 조치방안(1974.8.21. 동북아1과 작성), 외무부 아주국의 당면 대일 자세에 관한 부내 의견조회(8.27.), 외무부의 대통령 앞 8·15 사건에 관한 주일본대사관 대책 회의 결과보고(9.3.), 주재국 언론보도 동향에 관한 주일본대사관의 보고전문 등도 수록되어 있음.

#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3 대일본 교섭대책 II: 1974.9.5.-10.)

| 74-0027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B-20 / 7 / 1~207p

## 1. 외무부는 1974.9.6. 대통령 저격사건에 관한 다나카 일본 수상의 친서에 포함되길 원하는 아래요망 사항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하고 동 사항이 포함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 ※ 사과 및 책임

- 일본 정부는 범행이 일본에서 준비·계획되었고 범인이 일본 여권과 일본 경찰의 권총을 사용하였으며 일본인이 공범으로 관련되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

### ※ 수사 협력

- 일본 정부는 사건의 진상이 하루 속히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한국 정부와 견해를 같이 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 정부에 최대의 협력을 할 것이고 관련 범법자에 대하여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

### ※ 조총련의 파괴활동 규제

- 일본 정부는 조총련의 파괴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개정·보완할 방침

### ※ 장래에 대한 보장

- 일본 정부는 8·15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 경주

## 2. 외무부는 1974.9.6. 다나카 수상의 친서는 대통령 앞으로 작성되고 거물급 특사에 의해 전달되도록 하며, 동 친서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3. 주일본대사관은 1974.9.6. 다카시마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이 윤하정 주일본 공사를 초치, 다나카 수상의 친서는 김종필 국무총리 친서에 대한 회담 형식으로 작성하여 내주 초 주한 일본대사가 직접 전달·설명하도록 금일 각의에서 결정되었으며 동 친서는 현재로서는 변경이 곤란하다고 언급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4. 김영선 주일본대사는 1974.9.9. 자신이 도쿄 일본 외무차관에게 다나카 수상의 친서가 한국 대통령 앞 서한으로 작성되어야 할 이유 등 한국 입장을 설명한데 대해, 동 차관은 일본 특사를 파견할 경우 다른 현안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동일 특사 파견은 어디까지나 저격사건 자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느끼고 파견할 성질의 것이고 기타의 현안 문제를 아울러 협의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

**5. 외무부는 1974.9.10. 김종필 국무총리가 9.9. 주한 일본대사 면담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음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외무부장관이 요구한 바와 같은 4개 항목이 다나카 수상 친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특사가 대통령 앞 친서를 휴대하는 것은 철회할 수 없는 요구

**6. 주미국대사관은 1974.9.10. 하비브 미 국무부 차관보가 동일 박근 공사(대사대리)에게 전화, 미국 측은 공평한 입장에서 대처하고 있으며 친서내용에 대해 한국 측이 너무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7. 본 문서철에는 친서, 특사 등과 관련된 주일본대사관의 보고문서 및 외무부의 지시문서, 일본 언론보도 내용, 외무부의 대일교섭대책(안), 주일본대사관의 대책회의 결과 등도 수록되어 있음.**

#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4 대일본 교섭대책Ⅲ: 1974.9.11.-30.)

| 74-0028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B-20 / 8 / 1~243p, Re-22 / 2 / 1~34p

62

1. 김영선 주일본대사는 1974.9.10. 이병희 제1무임소장관과 함께 사토 전 일본 수상을 방문, 다나카 일본 수상의 친서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측 요망사항이 실현되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음을 외무부에 보고

※ 사토 전 수상은 조총련 규제문제를 친서에 포함시킬 것을 희망하는 한국 측의 뜻은 알지만 친서에 조총련이란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고 현재 한국에서 격화되고 있는 반일 데모는 한국 정부를 난처하게 하고 일본국민의 반발을 유발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언급

2. 주일본대사관은 1974.9.11. 일본 정부가 동일 한국문제에 관한 자민당회의에서 시나 자민당부총재를 한국에 특사로 파견하기로 발표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주미국대사관은 1974.9.12. 박근 공사(대사대리)가 동일 하비브 미 국무부 차관보를 면담, 일본의 친서내용에 관해서 일본 측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요청한 데 대하여 동 차관보는 자신이 보기에 한국 측의 기본 요구조건이 충족된 이상 오히려 한국 측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음을 보고함.

4. 주일본대사는 1974.9.13. 도쿄 일본 외무차관이 친서내용에 관해 다나카 수상이 이미 확정·서명했을 뿐만 아니라 시나 특사가 방한 시 구두로 한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는 길밖에 도리가 없는 실정임을 설명하고 한국 측의 재고를 간곡히 부탁했음을 보고함.

5. 주일본대사관은 1974.9.17. 일본 언론(조간)이 작일 밤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주한 일본대사 간의 면담에서 다나카 수상의 친서에 대한 보충설명 내용에 관해 양측 간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시나 특사 방한이 9.18. 실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했음을 보고함.

6. 주일본대사는 1974.9.17. 이병희 장관과 함께 시나 특사(자민당 부총재)를 방문하고 9.19. 동 특사의 방한을 언급함을 보고함.

※ 동 특사는 9.19. 도착하여 고 육영수 여사 묘소 참배,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예방 및 국무총리 주최 만찬 일정을 가진후 9.20. 이한

### 7. 다니카 수상의 1974.9.11자 박정희 대통령 앞 친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육영수 여사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
- ✿ 이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유감스럽게 생각
- ✿ 이번 사건에 관하여는 일본 정부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속 한국 수사당국의 협력을 얻어 철저한 수사를 펴나가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
- ✿ 한국 정부의 전복을 의도하는 테러활동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는 그 단속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여 나갈 예정
- ✿ 이번 사건은 일본·한국 양 국민에게 있어서 불행한 사건이기는 하나 이 때문에 일본·한국 관계가 위기에 이르는 것과 같은 일은 양국의 어느 편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음.
- ✿ 양국 정부는 일본·한국 관계를 다시 강고한 기초위에 확립하도록 노력

8. 본 문서철에는 상기 다니카 수상의 친서(일본어),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 시나 특사 접견결과에 관한 청와대 대변인 발표문(영문), 시나 특사 일행 명단(일본어), 조총련 및 일본 측 수사 등에 관한 한국 측 입장 문서(영문), 친서 및 특사 파견 등과 관련된 주일본대사관 및 주미국대사관의 보고문서, 외무부 작성 일본 특사 면담자료(1974.9월), 박정희 대통령의 시나 특사 면담요록(9.19.), 문화공보부 작성 국무총리 담화(방송 전문)(9.20.) 등도 수록되어 있음.

#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5 대일본 교섭대책IV: 1974.10월-1975)

| 74-0029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B-20 / 9 / 1~107p, 2010-87 / 13 / 1~11p

1. 외무부는 1974.10.4. 서울신문 보도를 인용, 아마모리 오사카 부경 본부장(8·15 사건 특별수사본부장 겸직)이 10.3. 오사카 부의회에 출석하여 시나 특사가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 관련, 조총련 등 특정 단체의 단속에 관해 시나 방한 이후에도 특별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요지로 답변했음을 주일본대사관 및 주오사카총영사관에 통보하고 동 내용의 진위를 조사·보고하도록 지시함.

※ 주오사카총영사관은 10.5. 아사히신문(10.4.)에서 동 본부장이 시나 특사가 박 대통령에게 수교한 메모 문제에 관해 특정단체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수사하지 않으며 시나 방한 이후에 특별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언급했음을 보도했다고 보고

2. 외무부가 1975.3.19. 일본 정부의 8·15 사건 처리 현황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배후 수사 및 처벌 관계

- 일본 내 공범 중 요시이 미키코는 출입국 관리령 위반 방조 등으로 1974.8.28. 기소되고, 1975.3.7. 징역 3년, 집행유예 1년형 선고(일본 외무성 측은 여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동 자유형 선고는 특례적 조치라고 한국 측에 설명)
- 김호용, 요시이 유키오 등에 대하여는 상금 범행에 가담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
- 8·15 사건 즉시 대판부경에 설치되었던 특별수사본부를 1974.12.25. 해체하고 필요한 인원으로 배후 규명을 포함한 미해명분의 수사를 계속할 방침임을 한국 측에 통보

※ 조총련 등의 반한적 파괴활동 규제문제

- 일본 측은 시나 특사의 문서 내용은 동 특사 방한 전 관계 부처 간 면밀히 검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특사의 귀국 후에도 방한 결과 보고내용을 비밀리에 관계 부처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내용과 취지를 관계 부처에서 알고 있으며, 따라서 동 문서의 취지가 행정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예로 북한 만경봉호에 대한 감시 강화를 들고 있음.
- 조총련에 대한 감시태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조총련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령, 내규 등의 제정은 없음.

※ 예방조치 관계

-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1975.3.1. 시행), 부정여권 발급 방지를 위하여 신원확인 절차 등을 보완
- 자민당은 1974.9.17. 외교조사위원회, 법무부회 및 치안대책특별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 스파이 방지법 제정 또는 이를 위한 기구 설치 필요성 등을 거론한 바 있으나 구체적 진전은 없음.

3. 본 문서철에는 시나 특사 방한 이후 조총련 문제 관련 외무부의 지시문서 및 주일본대사관의 보고문서, 언론동향에 관한 주일본대사관 보고문서, 법무부 작성 대통령 저격사건 재일 공범 범행 개요 및 증거 설명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6 재외공관활동)

| 74-0030 |

생산연도	1974-1975
생산과	동북아1
MF번호	B-20 / 10 / 1~129p

**1. 외무부는 1974.9.2. 외무부장관이 동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대통령 저격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요청사항이 수록된 구술서를 전달했음을 주미국, 영국, 독일(구 서독), 프랑스, 캐나다, 필리핀대사관 등에 통보하고 동 내용을 비망록으로 작성, 주재국 정부에 전달하고 주재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주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 ✪ 외무부는 9.3. 정부의 아래 교섭지침을 해당 재외공관에 통보
  -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옹분의 책임을 지고 수사에 적극적이고 최대의 성의를 보여야 함.
  - 일본 정부는 일본을 기지로 삼아 한국을 전복·파괴하려는 조총련을 불법화 또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철저히 규제
  - 한국 정부는 양국의 우호친선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방침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으나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으면 양국관계가 최악의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을 우려

**2. 외무부는 1974.9.3. 일본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조총련을 포함한 재일 반한단체를 불법화하거나 철저히 규제하도록 미국이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교섭할 것을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미국대사관의 보고내용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주미국대사는 9.4. 하비브 국무부 차관보를 방문, 비망록을 수교하고 정부의 대일 기본입장을 설명하면서 영향력 행사 필요성을 강조
  - 동 차관보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공개비난을 삼가하여 양국 국민을 자극시키지 않고 냉철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언급
- ✪ 하비브 차관보는 9.9. 주미국대사를 초치, 지난해 일본대사관 파괴 데모사건이 그간의 한·일본 관계 사태수습 노력에 심한 반대효과를 가져올 것임을 지적하고 양측이 냉각기를 갖고 적절한 대화를 계속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함을 언급
- ✪ 동 차관보는 9.10. 박근 주미국 공사(대사대리)에게 전화, 친서내용에 관해 한국 측이 너무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
- ✪ 동 차관보는 9.12. 박근 공사(대사대리) 면담 시 한국 측의 기본 요구조건이 충족된 이상 그와 같은 선에서 마무리되어 시급히 사태가 수습되도록 한국 측의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한국의 방위는 일본을 거점으로 삼고서만 가능하므로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한국 방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

**3. 본 문서철에는 주영국대사관 등 해당 재외공관의 주재국과의 협의결과 등에 관한 보고문서, 외무부 작성 주한 외교단에 대한 설명자료(영문) 등도 수록되어 있음.**

#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7 면담록 및 구술서)

| 74-0031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B-20 / 11 / 1~222p, Re-22 / 4 / 1~18p

본 문서철에는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과 관련된 면담요록 및 구술서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노신영 외무부차관의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면담요록(1974.8.16., 8.26.)
2. 신정섭 외무부 아주국장의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면담요록(1974.8.20., 8.28., 8.29., 8.30., 8.31., 9.7., 9.13., 9.24., 10.23.)
3. 우문기 외무부 동북아1과장의 오키자키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면담요록(1974.8.29.)
4. 김영선 주일본대사의 기무라 일본 외상 면담요록(1974.8.31.)
5. 진관섭 외무부 동북아1과 서기관인 가와시마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면담요록(1974.9.3.)
6. 박정희 대통령의 시나 일본 특사 면담요록(1974.9.19.)
7.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면담요록(1974.12.30.)
8. 노신영 외무부차관의 마에다 주한 일본대사대리 면담요록(1975.3.5., 3.11.)
9. 외무부의 주한 일본대사관 앞 구술서(1974.8.26., 9.2., 12.30., 1975.7.22.)
10. 주한 일본대사관의 외무부 앞 구술서(1974.9.7., 1975.2.18.)



#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8 주한 일본 공관 및 관저 난입사건)

| 74-0032 |

생산연도	1974-1975
생산과	동북아1
MF번호	B-21 / 1 / 1~69p, Re-22 / 5 / 1~11p

## 1. 1974.9.6. 발생한 주한 일본대사관 침입사건 및 한국의 한반도에서의 유일 합법성 문제에 대해 외무부가 9.7.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한 일본대사관 침입사건)

- ☛ 9.6. 주한 일본대사관 침입사건 관련 동일 12:00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와 신정섭 외무부 아주국장은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를 방문, 아래 요지로 견해를 표명함.

  - 한국 정부는 동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일본대사관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있을 것임.
  - 가해자는 의법 조치할 것이며 여사한 불상사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임.
- ☛ 이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는 예방조치 미흡에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국기를 파손한 것과 공기총으로 4층 유리창을 파손한 것을 중대시하며, 여사한 사건이 다른 곳으로 확대되어 주한 일본 상사 및 일본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국 정부의 보호조치를 요청함.
- ☛ 외무부장관은 동일 17:00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아래 요지의 각서 수교

  - 일본대사관 침입, 기물 손괴 및 관헌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함.
  - 피해 보상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이며 범법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것임.
  - 일본 국기 파손 및 모독에 대하여 특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국기를 파손한 자가 이미 경찰에 체포되었음을 알림.

(한국의 한반도에서의 유일 합법성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

- ☛ 외무부는 일본 중의원 외무위에서의 9.5. 기무라 외상 및 외무성 조약국장의 발언에 대한 진상 파악을 주일본 대사관에 지시
- ☛ 외무부는 9.6. 대변인 담화를 통해 동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
- ☛ 윤하정 주일본 공사의 해명 요청에 대해 마쓰나가 외무성 조약국장은 상기 외무위에서의 아래 답변 내용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정책변경은 없음을 해명

  -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전체의 유일 합법 정부임.
  - 유일 합법 정부의 관할권 문제에 있어서는 1948년 유엔 총회 결의 제195에 기술된 대로임.
  - 한국의 실효적 지배와 관할이 미치지 못한다고 간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권 및 유효 지배권이 백지상태에 있음.

## 2. 외무부는 1974.9.9. 대통령에게 마에다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9.6. 아주국장을 방문하여 침입자들에게 대한 적절한 처벌 등을 요청하고, 이에 관한 구술서를 9.7. 전달했음을 보고함.

## 3. 외무부는 1974.9.14. 대통령에게 마에다 공사가 9.13. 아주국장을 방문, 9.11. 및 9.12. 양일에 걸쳐 발생한 부산 주재 일본총영사관 및 총영사 관저 난입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재한 일본 기업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희망하는 구술서를 전달했음을 보고함.

#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9 국제법적 제문제 : 일본의 국가 책임 및 공범 인도)

생산연도 | 1974-1975

생 산 과 | 동북아1

MF번호 | B-21 / 2 / 1~257p

## 1. 1974.9.4. 외무부가 작성한 대통령 저격사건 공범 김호용의 인도 요청문제에 관한 검토자료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한국 측 입장 및 법적 논거

- 정치범 불인도 조항의 가해 조항(국가원수 및 그 가족에 대한 행위는 정치범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관행)
- 범죄인이 자국민(일본인)이 아니며 범죄의 충분한 증거가 있고 범죄는 양국 국내법상 공히 가법적임.
- 우호국가 간의 사법협력 관행 등

### ※ 일본 측 입장 및 논거

- 범죄인 인도조약 결여(인도여부는 일본의 재량사항)
- 김호용이 도망범죄인이 아닌 점,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등

### ※ 예상되는 일본의 반응

- 사법부의 심사단계에서의 거부 등 국내법적 절차에 따른 실무적 처리
- 일본 정부의 정치적 결단
- 강제추방에 의한 인도

### ※ 의견 및 건의

- 한국의 법적 논거는 일반 국제법 원칙에 부합되는 점이 많으나 일본 측의 반론 제기가 가능하며, 종국적으로는 범죄인 인도조약 결여와 도망범죄인 인도법을 이유로 김호용의 인도를 거부할 가능성이 큼.
- 법적인 논리에 의존하기보다는 한·일 간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범외적 논리에 의거하여 일본의 협력을 촉구하는 방법이 타당
- 정식인도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 목적지를 모국으로 지정하여 강제퇴거라는 정치적 타결방법을 동시에 추진

## 2. 1974.9월 외무부가 작성한 8·15 대통령 저격사건과 국제법상 문제 검토 자료

## 3. 본 문서철에는 1974.9.7. 대한국제법학회 주최 대통령 저격사건에 따른 국제법적 제문제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10 수사 및 범인 인도)

| 74-0034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B-21 / 3 / 1~409p, Re-22 / 6 / 1~132p

## 1. 1974.8.15.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수사 및 범죄인 인도 관련 내용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외무부는 8.15. 요시이 유키오(吉井行雄)의 비자발급 여부를 긴급 조사 보고토록 주일본대사관 및 주오사카 총영사관에 지시
- ※ 가와시마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은 8.15. 우문기 외무부 동북아과장에게 전화, 일본 경찰이 여권신청서에 부착된 사진을 조사한 결과 재일 한국인 문세광이 요시이 유키오 명의로 출국한 기록이 발견되었음을 통보
- ※ 세오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은 8.15. 이동익 주일대사관 1등서기관에게 전화, 요시이 유키오는 금일 오사카 NHK TV에 출현, 자신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자기 명의로 여권을 위조한 것에 대해 분개한다고 해명하였음을 통보
- ※ 주오사카총영사관은 8.17. 오사카부 경찰본부가 고오즈 파출소에서 도난당한 2정의 권총중 1정을 문세광의 집 천장에서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음을 보고
- ※ 김영선 주일본대사는 8.31. 기무라 일본 외상을 방문, 일본 측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동 외상은 양국간 법체제의 상이로 인하여 수사의 속도나 폭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나 수사당국 간의 연락은 잘되고 있으며 최대한의 수사협조를 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도 변함이 없음을 강조  
- 동 외상은 한국 측의 수사관 상호교환 제안에 대해 정보교환을 위한 수사관 상호교환은 별문제이지만 수사관할권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언급
- ※ 법무부는 9.3. 피의자 김호용의 인도를 일본 정부에 요청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
- ※ 주일본대사관은 9.9. 윤하정 주일본 공사가 다카시마 외무성 아주국장으로부터 주재국 수사당국의 수사상황 보고서(9.7.)를 전달받았음을 보고

## 2. 외무부는 1974.8.23. 일본이 일방 당사국이 되었던 후지은행 사건(일본/프랑스) 등에 있어서 관계국은 관찰권, 수사권, 범인인도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했었는지 보고하도록 주프랑스대사관 등 해당 재외공관에 지시함.

- ※ 주프랑스대사관은 8.23. 일본 정부는 후지은행에서의 부정용자 혐의로 주재국에 거주중인 재일교포 김동선을 체포, 인도하여 줄 것을 주재국 측에 요청한데 대해 주재국 측은 프랑스·일본 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으나 프랑스의 외국인 범죄자 인도에 관한 법에 의거 3회의 공판을 거쳐 일본 측에 동인을 인도하였음을 보고

## 3. 본 문서철에는 피의자 문세광의 진술내용(1974.8.23.), 대통령 저격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주일본대사관의 의견서(9.3.), 법무부 작성 대통령 저격사건 재일공범 처벌문제에 관한 자료(9.4.), 서울형사지방법원 발급 김호용에 대한 구속영장(9.5.), 일본 측의 수사상황 보고서(9.7.), 일본 측 조회에 대한 한국 측 수사당국의 회보서(10.19.) 등도 수록되어 있음.

#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11 저격범 문세광 등 공판 및 사형집행)

| 74-0035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B-21 / 4 / 1~255p, Re-22 / 7 / 1~30p

## 1. 박정희 대통령 저격범 문세광 공판(1974.10.7.~12.17.) 관련, 일본 언론동향에 대한 주일본대사관 보고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10.7. 각 석간은 문세광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판이 금일 오전 열렸으며 일본 적군파의 문세광 신병 탈환 정보와 관련 재판소 주변 경계가 엄중하다는 것과 심문에서 문세광이 조총련을 통하여 박대통령 저격이 지령되었다는 기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다는 것 등 재판 상황을 상세 보도
- ※ 10.19. 각 석간은 문세광에 대한 사형 선고 문제를 대체로 1면 톱으로 취급
- ※ 10.25. NHK 등 TV 뉴스에 의하면 오사카 경찰분부는 한국청년동맹 중앙본부 김군부 위원장에 대해 출입국 관리령 위반 및 살인예비혐의로 동 중앙본부 및 자택을 강제 수색했으며 그 결과 동 자택에서 문세광의 편지 발견
- ※ 12.17. 각 석간은 문세광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음을 보도
- ※ 12.20. 각 석간은 동일 오전 문세광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형 집행이 형 확정 후 3일만에 행하여진 충격적인 것이었다고 보도
- ※ 12.26. 마이니치 조간은 오사카 박대통령 저격사건 수사본부가 12.25. 문세광을 여권법, 총검법, 화약류 단속법 등 위반으로 오사카지검에 서류 송검하고 동 수사본부를 해체하였음을 보도

## 2. 주오사카총영사관은 1974.12.18. 문세광에 대한 일본여권 부정교부 사건에 관련된 요시이 미키코에 대한 제1회 공판이 동일 개정됨을 외무부에 보고함.

- ※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1975.3.7. 동인에 대해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3. 법무부는 1974.12.31. 문세광에 대한 사형을 12.20. 서울구치소에서 집행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 진관섭 외무부 동북아과 서기관은 1975.1.8. 가와시마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에게 동 사실 통보

## 4. 주일본대사관은 1975.1.31. 세오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이 이동익 1등서기관을 초치, 오사카 지방 검찰청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문세광에 대해 불기소 처분(1.22.)함을 설명하고 동 내용 등이 기재된 문서를 수교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12 국외반응)

| 74-0036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B-0021 / 5 / 1~279p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에 대한 북한 및 조총련, 한국 교민사회, 해외언론의 반응에 대한 재외공관의 보고문서 및 해외언론기사 등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1. 북한 및 조총련의 반응


- ※ 주인도대사관은 1974.8.24. 현지 북한대사관에서 8.23. 대통령 저격사건에 북한이 가담한 바 없다고 부인하는 북한 중앙통신의 성명내용을 언론에 배포했음을 외무부에 보고
- ※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은 9.3. 조총련이 동일 11:00~16:00 자동차 150대를 동원, 시내에서 가두시위 행진을 통해 조총련과 문세광은 무관함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

## 2. 한국 교민사회 반응

- ※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1974.8.20. 관할 각 현 민단 간부를 비롯한 500여명이 8.19. 총영사관에 설치된 빈소에서 고 육영수 여사 고별식을 개최함을 보고
- ※ 주오사카총영사관은 8.20. 오사카 민단산하 부인회 및 청년부 소속 회원 1,000여명이 8.21. 민단본부에서 집회 후 아사히신문 오사카 본사 앞까지 시가행진 후 동 신문의 편파적인 대한민국 보도태도에 항의 등의 시위를 할 예정임을 보고
- ※ 주일본대사관은 9.3. 민단중앙본부 주최 동경본부 주관의 고 육영수 여사 추모 중앙대회가 동일 동경체육관에서 개최되고 일본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민단대표 약 15,000명이 참석함을 보고
-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9.6. 남가주 한인부인회를 중심으로 한 100여명의 교민들이 동일 현지 일본총영사관 인근 도로에서 반일 시위함을 보고

## 3. 해외언론 반응

- ※ 주싱가포르총영사관은 1974.8.28. 현지 최대 중국어 신문인 남양상보가 동일 사설에서 최근 한국의 반일데모는 작년에 있었던 일본의 자본침투에 대한 학생데모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며 일본의 조총련에 대한 간섭회피, 육 여사 살해사건 배후수사 관련한 소극적 태도에 대한 불만표시이며 일본 측의 김대중 사건 등에 대한 입장과 함께 한·일본 관계를 복잡 미묘하게 할 것이나 여사한 양국간 마찰이 한반도의 평화안전을 원하는 공통적 입장에 비추어 극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음을 보고
- ※ 주미국대사관은 8.31. 워싱턴포스트가 동일 Park Criticizes Japan's Assassination Probe 제하 Oberdorfer 동경 주재 특파원의 아래 요지 기사를 게재했음을 보고
  - 박대통령 자신의 이해적인 경고로 한·일본 관계는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는 이를 The Gravest Sort of Warning으로 해석
  - 일본경찰 관리는 한국 정부로부터 범죄인 인도 공식요청이 있더라도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한국에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소란을 일으킨 기무라 일본 외상은 저격사건에 관한



한국과 일본경찰의 보고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으며 일본은 국내법의 범위내에서 사건을 다룰 것이라고 언급

- 동 외상은 한국의 방위를 위한 미국·일본 안보조약 이행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함.

#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13 일본 언론 반응)

| 74-0037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B-21 / 6 / 1~253p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관련 1974.8.15.~9.26. 일본 언론 보도에 관한 주일본대사관의 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8.15. 보고

- ※ 동일 각 석간은 일제히 1면 톱 “박 대통령 저격되다, 범인 일본인 체포, 연설 중 수발, 영부인이 머리에 피탄 중상”이라는 제목 하에 저격상황, 한국 정부 대변인이 발표한 범인의 신원 등에 대해 상세 보도
- ※ 일본 외무성은 사태 확인을 지시하고 범인이 일본 정부 발급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와 관심을 보이면서 김대중 수사 중단 문제로 한일 간의 단층이 깊어지고 일본 여론이 한국에 대하여 강한 자세를 보일 것을 염려하여 대책에 고심 중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고뇌의 색을 더욱 깊이하고 있다고 보도

## 2. 8.18.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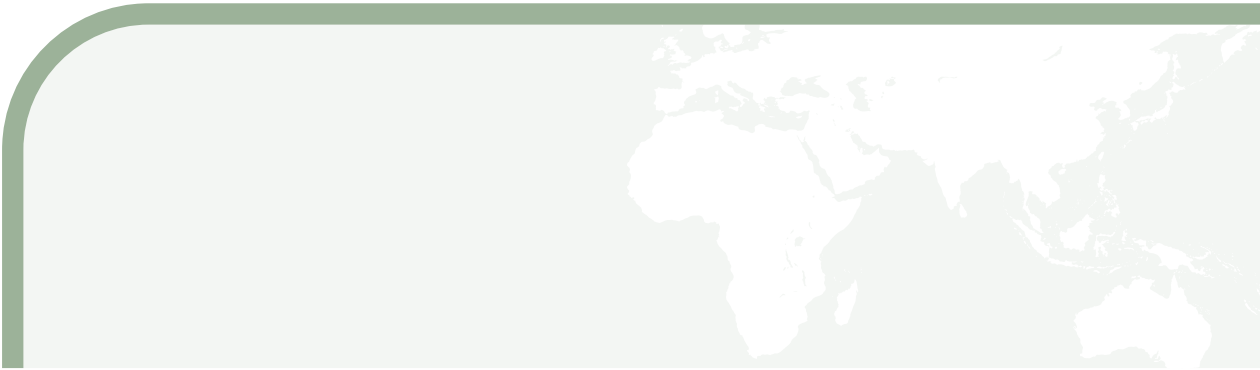
- ※ 동일 각 조간은 다나카 일본 수상의 방한 관련, 명일 다나카·박 회담, 양국관계에 전기 기대 등의 제목 하에 1면 톱으로 보도
- ※ 동 수상 측은 동 회담에서 조의 이외의 양측 간 현안문제를 제기, 정치회담을 할 의향은 전혀 없다고 하고 김대중 사건 이후 악화된 한일 관계를 전환시키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방한이 실현된 만큼 일본 정부로서는 사실상 수뇌회담이 실현된 데 대해 만족  
- 동 수상이 취임 이래 박대통령과 처음 면담한다는 데에도 의의

## 3. 8.23. 보고

- ※ 동일 각 석간은 한국 정부의 긴급조치 해제 결정 관련, 기무라 외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동 결정은 한국 내 문제이나 극히 바람직한 것이며 일본인 두 사람에 관하여도 매우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는 부정할 수 없다고 함을 보도
- ※ 아사히 신문은 동 긴급조치 해제의 이유로 미국의 대한국 여론악화, 일본 여론에 대한 배려,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 시 국제여론 고려 등을 들고 있음.

## 4. 9.4. 보고

- ※ 동일 각 석간은 일본 사회당이 동일 오전 기무라 외상을 만나 일본 정부가 박정권의 내정간섭을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요구함과 두 학생 구출, 김대중씨의 무조건 일본 재방문과 사건 해결, 경제원조 중지, 한일 조약 폐지 등 대한민국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에 대해 요구함을 보도



5. 9.15. 보고

✿ 동일 정오경 각 TV뉴스는 다나카 수상의 친서 문제 관련, 조총련 문제에 관하여는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간의 메모 형식으로 한국 측 요구를 절충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보도

6. 9.18. 보고

✿ 동일 19:00 NHK TV 뉴스는 일본 정부가 임시각의에서 시나 특사 파견에 대한 동의를 얻어 명일 동 특사가 방한키로 하고, 특히 문제가 된 조총련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단속될 것임을 동 특사가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





#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14 일본 신문기사철)

| 74-0038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B-21 / 7 / 1~184p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과 관련하여 일본 언론이 보도(1974.8.16.~12.24.)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박 대통령 피격사건 발생

- ※ 대통령 영부인이 피탄, 사망
- ※ 연설은 중단, 대통령은 무사
- ※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양국 관계 복잡화
  - 한국 국회는 격렬한 대일 비판
  - 일한 각료회의의 1974년 내 개최 곤란
  - 일본 외무성은 일한 각료회의의 1975.5월 이후 개최 시사
- ※ 다나카 일본 수상이 방한, 8.19. 박대통령과 회담하고 애도의 뜻 표시
  - 대통령 영부인 국민장에 일본 정부 특사로서 최초로 헌화
  - 박대통령은 저격사건에 대한 수사협력을 요청
  - 일본 측은 국내법의 제약을 지적
- ※ 박 대통령은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대일 강경조치
  - 파괴활동 소멸을 주문
- ※ 한국 총리가 다나카 수상에게 친서 발송, 수사협력을 재요청
- ※ 일본 외상은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북한의 위협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언급

## 2. 문세광에 대한 보도

- ※ 대통령 저격범은 제일 한국인으로서 과격파 활동가인 문세광
- ※ 문세광은 동경에서 사격훈련
  - 저격에 사용된 총은 오사가 파출소에서 도난된 권총
- ※ 요시이 부부가 공범이라고 한국수사본부가 발표
  - 일본 측에서는 문세광의 단독범행이라는 추측이 강함
- ※ 문세광은 주오사카총영사관도 노림
- ※ 일본 정부는 국내법 적용의 당위성 여부 등을 검토
- ※ 서울 대법원은 상고기각, 문세광에 대해 사형 확정
  - 12.20. 교수형 집행

#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V.15 국내 신문기사철)

| 74-0039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B-21 / 8 / 1~166p

## 1.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에 관한 주요 국내신문기사(1974.8.16.~ 75.8.16.)의 제목은 아래와 같음.

- ※ 민단서 제적된 극좌파(1974.8.16. 조선일보)
- ※ NHK 방송해설 망언(8.16. 경향신문)
  - NHK 방송은 8.15. 정오뉴스 해설시간에 박 대통령 저격사건이 조작 같다고 해설
- ※ 홍콩 동행 때도 남편 명의 여권사용(8.17. 동아일보)
- ※ 1년 전부터 범행계획(8.17. 경향신문)
- ※ 일본은 북한의 대한 적화공작 기지화(8.19. 동아일보)
- ※ 요시이 부부, 김호용 등 강제수사 가능(8.26. 동아일보)
- ※ 문세광의 저격음모에 쓰여진 돈 조총련은행에서 조달(8.30. 서울신문)
- ※ 정부, 대일 각서 전달(9.3. 조선일보)
- ※ 일본대사관 앞 데모 계속(9.7. 동아일보)
- ※ 국교정상화 후 최대 위기(9.8. 한국일보)
- ※ 거물급 진사사절 파한 고려(9.10. 서울신문)
- ※ 친서 절충 교착상태(9.13. 서울신문)
- ※ 한일분쟁 사실상 타결(9.15. 조선일보)
- ※ 박대통령에 진사(9.20. 조선일보)
- ※ 문세광 항소심도 사형 구형(11.13., 경향신문)
- ※ 요시이 미키코 첫 공판(12.18. 경향신문)
- ※ 문세광 사형집행(12.21. 한국일보)
- ※ 일본, 문세광 사건 종결(1975.1.23. 한국일보)
- ※ 시나 특사 메모는 법적 구속력 없어(3.5. 서울신문)
- ※ 문세광 접촉자들 증발(8.13. 경향신문)
- ※ 이웃서도 차가운 눈초리-저격범 문세광 주변인물 근황(8.16. 조선일보)

## 2. 본 문서철에는 8·15 사건에 관한 재일본 특파원 송고기사 및 해설, 국내조간 논조분석 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음.

# 외국인에 대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의 적용문제

| 74-0040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일본담당관/국제법규
MF번호	B-21 / 9 / 1~61p

## 1. 외무부는 1973.12.12. 주한 일본대사관이 12.10.자 비망록(Aide Memoire)을 통해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의 외국인 적용에 관해 아래 요지로 질의했음을 법무부에 통보하고 의견 회신을 요청함.

- ※ 일본 영토에서 일본국민이 행한 행위에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법적 근거
- ※ 만약 그 근거가 형법 제5조가 아니고 제6조라면 형법 제6조 및 반공법과(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일본에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는 일본영토에서 일본인이 행한 행위에 한국의 동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 2. 외무부는 1974.2.28. 내부결재를 통해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아래 요지의 비망록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회신하기로 결정함.

- ※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하에 범죄를 구성하는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행위가 동시에 형법 제5조가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할 때는 형법 제5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견해임.
- ※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형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 제6조 하에 범죄가 되는 그런 행위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도 동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견해임.
- ※ 그러나 형법 제6조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타 법령에 정한 죄에도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되며,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은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인 만큼 동 법은 외국인의 국외범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함.
- ※ 그러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적용은 형법 제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행위지법에 의하여 현저히 제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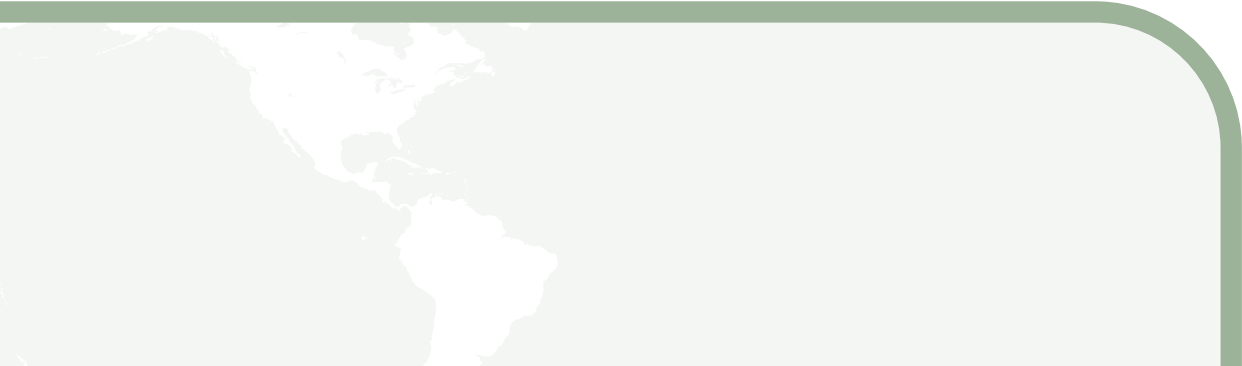
## 지학순 천주교 원주교구장 구속사건

| 74-0041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Re-22 / 1 / 1~229p

지학순 천주교 원주교구장의 구속사건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 구주과장은 1972.11.20. 주한 교황청대사관 직원 Bressan 씨를 초치, 주한 교황청 사절이 11.17. 외무부장관에게 수교한 각서의 내용과 어조가 한국 정부에 항의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지학순 주교는 한국 국적자이며 국내법규에 의해 규제됨을 지적함.
2. 윤석현 외무부차관은 1974.1.22. Luigi Dossena 주한 교황청대사를 초치, 최근 카톨릭 신부와 수녀를 포함한 일부 종교인들이 정치활동에 종사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함.
3.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74.7.10. 주재국 주요 일간지 등이 7.9. 지학순 주교가 유럽 여행후 귀국 시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을 보도하였음을 보고함.
4. 노신영 외무부차관은 1974.7.11. Dossena 주한 교황청대사 면담 시 지학순 주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이나 만약 재판결과 유죄가 선고되면 그 판결에 따라야 할 것임을 설명함.
5. 주한 영국대사관 직원 Blake-Pauley는 1974.7.30. 외무부 구주과장에게 원주교구 소속 아일랜드 국적 신부 2명이 연행된 것이 사실이라면 아일랜드의 이익보호국으로서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영국대사관에 연행 사유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함.
6. 주교황청대사는 1974.8.5. 교황청 당국의 요청으로 국무부 공의회 Silvestrini 주교를 면담함.
  - ※ 동 주교는 교황청이 미국, 서구, 기타 제국으로부터 지학순 주교를 돕기 요망하는 메시지를 접수하고 있다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희망
7. 주교황청대사는 1974.8.14. 교황청 당국의 요청으로 국무부 공의회 의장인 Oasarioli 대주교를 면담함.
  - ※ 동 대주교는 Paul 교황 6세가 지학순 주교의 재판결과와 그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심각한 반응에 대해 마음 아프게 여기고 있으며 지 주교의 좋지 않는 건강을 고려, 모종의 특별 배려를 베풀어 주길 희망한다고 언급



8.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74.8.14. 주재국 정의 및 평화위원회 위원장이 지학순 주교에 대한 15년형 선고에 관한 항의 전문을 보내왔다고 보고함.
9. 외무부장관은 1974.11.2. Dossena 주한 교황청대사를 초치, 최근 카톨릭 신부 및 신자들이 반체제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국내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 활동에 가담하고 있는 종교인 중 8명은 이미 한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입국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을 지적함.
10. 주일본대사관은 1974.12.12. 요미우리 등 석간이 12.11. 지학순 주교가 작일 석방되어 수도원에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음을 보고함.

# 김대중 납치사건. 전3권 (V.1 김대중 문제에 관한 한·일본 간 외교 교섭)

| 74-004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Re-22 / 8 / 1~159p

**1. 외무부는 1974.6.5. 외무부장관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와의 면담(6.4. 및 6.5.)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아래 요지로 답변했음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 김대중 사건에 관한 한·일본 간 외교적 타결과정에서 김종필 총리·다나카 일본 수상 간 양해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임.
  - 김대중은 출국을 포함하여 거취가 자유로울 것이며 이는 모든 점에서 일반 내국민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는 것임.
  - 귀국 전 일본 체류 중 행한 언동에 대하여 앞으로 반국가적인 언동으로 재범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임.
- ※ 따라서 과거 또는 장래에 있어서 국내에서의 범법 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것은 상식이며, 금번 법정 소환은 기왕에 기소되어 공판 중에 있는 사건의 심리 속개를 위한 것이므로 양해사항과는 무관함.

**2. 가와시마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은 1974.7.20. 우문기 외무부 동북아1과장 면담 시 도쿄 외무차관이 7.11. 김영선 주일본대사에게 김대중 사건에 관한 일본 경찰의 요청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고 하고, 7월 중 이에 대한 회보를 희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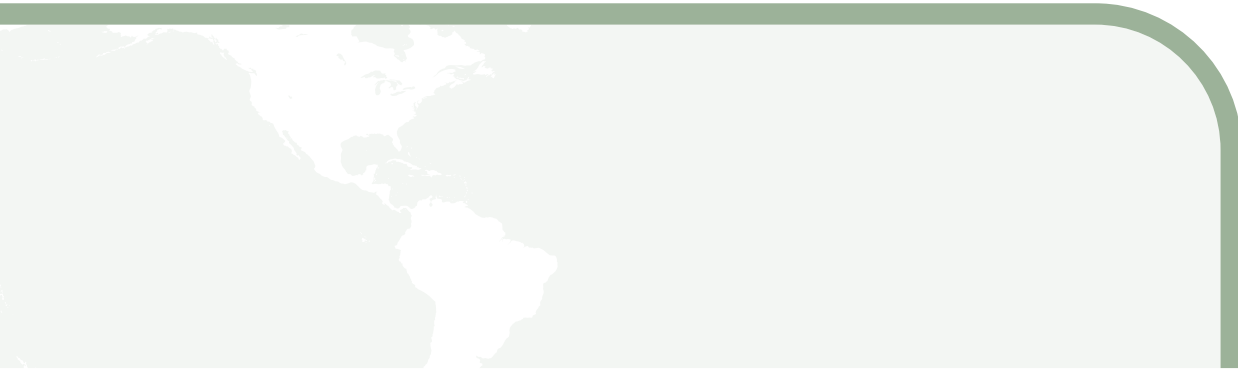
- ※ 동 차관은 7.23. 김 대사와 오찬 시 김대중 사건 1주년을 맞는 8.8. 이전에 한국 측이 일본 경찰당국의 요청 사항에 대해 통고하여 줌으로써 정치적으로 이미 해결된 동 사건을 사무적인 면에서도 종결지어 버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 표명

**3. 외무부는 1974.8.14. 외무부장관이 동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에게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김대중 사건에 관한 결정서를 전교했음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 한국 경찰당국은 용의자들에 대한 용의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포착하지 못하였으며 용의자들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거도 현 단계에서는 내사 중지

**4. 외무부는 1974.8.14. 주한 일본대사관이 본국 정부의 훈령임을 전제로 동 결정서의 일부 부분만 발표하게 되면 언론의 불필요한 억측을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결정서 전문 발표를 요망한데 대해 아주국장은 마에다 주한 일본 공사에게 동 결정서가 외교문서이므로 전문의 공표 여부는 일본 정부의 재량에 맡기겠다고 회답했음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5. 외무부는 1974.10.28. 대통령 앞 보고 문서를 통해 일본 외무성은 10.26. 주일본대사관 관계관에게 구술서를 전달하고 김동운 서기관에 대한 한국 측의 상세한 취조결과 등 신속한 정보제공을 받고 싶다는 희망을 표명하였으며, 기무라 외상은 10.25. 김영선 대사 면담 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 
- 8.14. 수사 중단 통고가 수사의 종결 통고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6. 주일본대사관은 1974.12.19. 주재국 각 조간이 동일 김대중의 재판관 기피신청을 고등법원이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자택에 대한 일반시민의 출입 금지가 12.13.부터 해소되고 미행, 감시가 중단됨을 일제히 보도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7. 본 문서철에는 1974.8.14.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면담요록 등 다수의 면담요록, 김대중 사건 관련 주재국 외무성 접촉결과 및 언론동향 등에 관한 주일본대사관의 보고문서, KT선거법 위반사건 대외신기자 설득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음.

# 김대중 납치사건. 전3권 (V2 일본 국회의원 동정)

| 74-004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Re-22 / 9 / 1~94p

## 1. 1974년 우츠노미야 도쿠마 일본 자민당 중의원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주미국대사관은 6.18. 동 의원이 1974.6.16.~23. 주재국을 방문하며 방문목적은 미국 정부 지도자들과 만나 한국 국내문제에 관해 협의하는데 있다고 했음을 외무부에 보고  
- 6.19. 미국에 도착하는 이시이 하지메 자민당 중의원도 합류 예정
- ※ 베나드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6.20.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에게 동 의원이 잉거솔 미국 차관보와 본인을 만났으며 의외로 김대중 관련 언급은 많지 않았고 한국에서 압제가 심해지고 있는 것은 장기집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비해 북한은 최근 수년간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고 말했음을 언급
- ※ 주일본대사관은 6.27. 동 의원이 주동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미국·일본회의(가칭)가 9.9. 또는 9.10. 워싱턴에서 개최되어 최근 한·일본 관계 및 김대중 사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을 보고
- ※ 외무부는 6.29. 동 회의가 유엔총회 직전 한국 정부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서 개최될 경우 한국의 유엔전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감안, 동 회의 참가예정자 소속 파벌의 장 등 실력자가 자파 의원의 동 회의 불참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토록 교섭할 것을 주일본대사관에 지시
- ※ 외무부는 8.14. 각 일간신문에서 현재 북한을 방문 중인 동 의원이 김일성과의 면담에서 한국이 북침을 준비 중이므로 북한도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했음을 보도, 이를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하고 사실유무 확인 등을 지시
- ※ 주일본대사관은 8.16. 이시이 하지메 의원이 통일 김영선 대사에게 작일 북한으로부터 귀국한 우츠노미야 의원과 AA연 소속의원들은 워싱턴에서 개최될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음을 보고

## 2. 1974년 자민당 이시히 하지메 중의원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외무부는 7.18. 동 의원이 7.12. 서신을 통해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외무부장관 면담을 희망했음을 주일본 대사관에 통보하고 김영선 주일본대사가 우선 동인을 면담할 것임을 전달토록 지시
- ※ 주일본대사관은 8.2. 동 의원이 워싱턴 개최 소위 미국·일본회의에서 우츠노미야 의원의 친북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므로 외무부장관 면담을 건의
- ※ 외무부는 8.3. 동 의원 일행의 면담에 응하지 않음은 물론 입국도 불허함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
- ※ 도쿄 일본 외무차관은 8.7. 김 대사에게 전화, 동 의원 일행의 방한 문제 관련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기무라 외상도 한국 입장을 이해하나 동 의원이 외교분과위 소속 여당의원이므로 입국이 계속 허용되지 않을 경우 외상으로서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고충을 거론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 정부의 동 의원에 대한 방한 허가를 요청



# 김대중 납치사건. 전3권 (V.3 언론보도)

| 74-004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Re-22 / 10 / 1~245p

## 1. 1974년 주일본대사관이 보고한 김대중 사건에 관한 일본 언론보도 내용임.

- ✪ 1.11. 아사히신문 등은 김동조 외무부장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김대중의 출국을 허가할 전망은 어둡고 여권이 발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김대중 석방에 관해 취하여진 일본 측 압력에 분개를 표명했음을 보도
- ✪ 2.28. 아사히신문은 평론가 초무미순의 논단시평에서 인권에 관하여 상식을 뒤엎은 사건 중 뚜렷한 것의 하나가 김대중 사건이라고 주장
- ✪ 5.3. 각 조간은 지난번 방한한 바 있는 이슈머 미국 민주제도연구소장이 작일 일본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김대중의 출국문제에 대해 내정문제라며 소극적이거나 20년에 걸쳐 한국 국내문제에 간섭하여 온 미국이 이 사건만을 예외로 하여 제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언급했음을 보도
- ✪ 6.2. 각 조간은 김대중이 1967년 및 1971년의 선거법 위반관련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음에 대해 일제히 1면에서 보도
- ✪ 6.22. 마이니치신문은 동사 서울 주재 특파원의 김종필 총리와와의 기자회견 내용을 1면 톱기사로 취급  
- 김종필 총리는 김대중 사건에 관해 양국 정부 간의 양해사항인 자유라는 것은 일반 시민적 자유로서 김대중을 치외법권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아니며, 동 사건은 현재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야기한 것인지 모르나 본인은 실로 무거운 마음으로 작년 11월 일본을 방문한 것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고 언급
- ✪ 10.17. 각 조간은 김대중의 재판관 기피신청을 10.16. 대법원이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대중은 사법부가 양심을 표시한 것으로 환영한다는 요지로 발언했음을 보도

## 2. 1974년 주미국대사관 등 여타 재외공관이 보고한 주재국 언론보도 내용임.

- ✪ 워싱턴포스트는 6.3. "Seoul court orders Kim to stand trial" 제목 하 김대중의 법정소환에 관한 기사를 Oberdoffer 특파원의 동경발 기사로 보도
- ✪ 6.4. 홍콩 HK Standard는 서울발 Reuter 등 외신을 인용, 서울지법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대중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였다고 보도
- ✪ 7.1. 독일 Die Welt지는 "한국 정치인 법정에서 서다"라는 제목으로 김대중이 그에 대한 재판을 박정희 대통령 정부 측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난하였음을 보도
- ✪ 덴마크 주간지 Billed Bladet지는 10.25. 덴마크 거물급 정치인 Orla Moller(전 국방장관)와 김대중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

# 한국에서의 인권문제에 관한 보고서

| 74-004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B-22 / 2 / 1~241p

## 1. 주미국대사관은 1974.10.2. 주재국 국무부가 10.1. 공표한 한국 인권 보고서를 외무부에 보고함.

- ※ 동 보고서는 7.30. Hummel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가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재수룩한 것이며, 국무부 측은 한국 인권문제에 관해 의회, 언론 및 일반 국민으로부터 질문이 많기 때문에 이를 단행본으로 공표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 표명
- ※ Hummel 부차관보의 증언 요지는 미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요약한 것으로서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을 승인(approve)하지는 않으나 전쟁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조치라고 언급

84

## 2. 1974년 A.I.(Amnesty International)의 한국 인권관계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임.

- ※ 뉴욕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 William Joseph Butler는 A.I. 뉴욕지부의 위촉을 받아 6.30. 방한
- ※ 주한 미국대사관의 요청으로 외무부 정무차관보가 7.2. 동인을 면담
  - 동 변호사는 김대중 등의 재판은 공개되어 있으나 민청학련 관련 사건 재판은 비공개로 들었다며 동 재판에 국제민간기구에서 참관인을 보내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관심 표명
- ※ 외무부는 8.1.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7.30. 증언한 동 변호사가 한국 인권문제에 관한 보고서의 결론 및 건의 부분에서 비상조치에 관련된 피고인들의 일반사면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A.I.는 한국의 인권문제를 유엔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에 진정하여야 한다고 건의했음을 주유엔대표부에 통보
- ※ 주미국대사관은 8.2. 동 변호사가 작성한 A.I.의 한국에 관한 보고서를 외무부에 보고
- ※ 외무부는 8.20. 동 보고서가 한국의 실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극히 비판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음을 주영국대사관에 통보하면서 A.I. 본부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실정과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A.I. 측의 이해를 촉구토록 지시

## 3. 본 문서철에는 외무부 국제연합과가 작성한 인권 및 기본 자유권 행위에 관한 유엔인권위원회의 취급절차에 관한 자료(1974.8.6.), 외무부 미주국이 작성한 한국에서의 인권문제가 유엔기관에 제기될 가능성 및 그 대책(안)(8.10.),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김지하 지지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to support Kim Chi-Ha and his Friends) 대표단 면담요록(8.10.) 등도 수록되어 있음.

## 축·조전 발송에 관한 지시

| 74-0046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의전
MF번호	B-22 / 3 / 1~40p

### 1. 외무부 의전실은 1974.12.9. 각국의 국경일에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명의의 축전을 발송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아래와 같은 관례를 참고하여 관련 정보를 외무부 내 각 지역국에 요청함.

#### ※ 대통령 명의 축전 발송

- 한국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거나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을 합의한 국가의 국경일
- 기타 동 축전 발송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국경일

#### ※ 외무부장관 명의 축전 발송

-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우방국가의 국경일
- 한국과 영사관계를 가진 국가의 국경일
- 기타 동 축전 발송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국경일

### 2. 상기 자료 요청에 대해 외무부 각 지역국이 의전실에 통보한 자료

## 국제회의 참가대표 신임장 발급

| 74-004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의전
MF번호	B-22 / 4 / 1~81p

본 문서철에는 1974년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한국 정부대표에 대한 신임장 발급을 위한 외무부 내부결재 문서 등이 수록되어 있음.

### 1. 제22차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운수통신위원회 회의

- ※ 회의 기간 및 장소: 1974.1.15.~22., 방콕
- ※ 1974.1.11. 김동조 외무부장관 명의 ECAFE 사무총장 앞 신임장 발급  
- 서인수 교통부 종합수송계획관(수석대표), 박병선 교통부 경제협력담당관 외 2명(대표)

### 2. 제9차 ECAFE 공업개발이사회 회의

- ※ 회의 기간 및 장소: 1974.1.23.~31., 방콕
- ※ 1974.1월 김동조 외무부장관 명의 ECAFE 사무총장 앞 신임장 발급  
- 김이명 주태국대사관 참사관(수석대표), 상공부 관계관 등 2명(대표)

### 3. 유엔/FAO(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회의

- ※ 회의 기간 및 장소: 1974.11.5.~16., 로마
- ※ 1974.10.22. 김동조 외무부장관 명의 WFC 사무총장 앞 신임장 발급  
- 정소영 농수산부장관(수석대표), 문덕주 주이탈리아대사 외 4명(대표), 농수산부 관계관 등 7명(교체 대표), 농수산부 관계관 2명(교문)

### 4. 제3차 ISC(국제사탕이사회) 회의

- ※ 회의 기간 및 장소: 1974.12.2.~12., 런던
- ※ 1974.11.25. 노신영 외무부장관대리 명의 국제사탕기구 Executive Director 앞 신임장 발급  
- 윤치원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수석대표), 제당업계 관계관 4명(교체대표)

## 대사파견 - 아프가니스탄

| 74-004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1
MF번호	B-22 / 5 / 1~38p

1. 1973.12.31. 아프가니스탄과의 외교관계 수립 합의에 따라 주아프가니스탄대사관을 설치하고 대사를 임명하여야 할 입장이나 아래 사유로 외무부는 1974.1.23. 내부건의을 통해 당분간 주인도대사로 하여금 겸임하도록 결정함.

※ 아프가니스탄은 전통적으로 소련과 밀접한 관계이고, 특히 1973.7.17. 쿠데타 이후 소련의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 있으며, 현재 북한의 공관 설치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한국이 먼저 공관을 설치하여 대결 상태를 유발하는 것은 불필요

※ 만약 북한이 상주공관을 설치하거나 아프가니스탄과의 경제·통상관계가 확대되는 경우 한국도 상주공관 설치를 고려하고 필요시에는 아프가니스탄에 대사대리를 두고 주인도대사가 겸임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

2. 외무부는 1974.1.23. 박찬현 주인도대사를 주아프가니스탄 겸임대사로 임명하고자 함을 주인도대사관에 통보하고 주인도 아프가니스탄대사관을 통하여 아그레망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3. 주인도대사관은 1974.3.12. 주인도 아프가니스탄대사관으로부터 3.11. 아그레망 발급이 통보되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 외무부는 1974.4.12. 대통령 명의 Mohammad Daud 아프가니스탄공화국 대통령 앞 신임장을 주인도 대사관에 송부함.

5. 박찬현 주인도대사는 1974.7.1. 아래 요지의 아프가니스탄 출장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신임장 제정

- 6.26. 오전 11시 제정식

- Daud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및 산업에 지대한 관심 표명

- 박찬현 대사가 한국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한데 대해 동 대통령은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한국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언급

※ 유엔문제

- 6.27. Sharq 아프가니스탄 부수상 면담 시 비동맹 중립외교 정책을 택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남북한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

## 대사파견 - 호주

| 74-004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의전/동남아1
MF번호	B-22 / 6 / 1~8p

1. 외무부 총무과는 1.25. 노석찬 주호주대사에 대한 신임장 발급을 의전실에 요청함.
2. 외무부 총무과는 1.29. 주호주대사로 발령(1.25.)된 동 대사의 주통가, 주취지, 주서사모아국 겸임을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하도록 의전실에 지시함.
3. 외무부 총무과는 1.30. 노석찬 주호주대사의 상기 3개국 겸임에 관한 의견 회보를 아주국장에게 요청함.

## 대사파견 - 방글라데시

| 74-005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1
MF번호	B-22 / 7 / 1~34p, 2007-4 / 14 / 1~167

### 1. 외무부는 1974.1.23. 박찬현 주인도대사를 주방글라데시 겸임대사로 임명하고자 함을 주인도대사관에 통보하고 주인도대사관에 아그레망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 방글라데시는 4.4. 동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

### 2. 박찬현 대사는 1974.6.15. 방글라데시 출장결과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신임장 제정

- 6.10. 오전 10:00부터 Muhammadullah 방글라데시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Rahman 방글라데시 수상 면담

- 6.12. 동 수상은 한국과의 통상·경제 관계 증진 및 연내 방한을 희망

※ 유엔총회 관련 협의

- 박 대사가 유엔총회 관련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한 데 대해 Hossain 방글라데시 외상은 방글라데시의 전문기구 가입 시 한국 정부가 일괄적으로 지지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 입장을 잘 이해하겠다고 언급

- 또한 박 대사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데 대해 Fakhruddin Ahmed 방글라데시 외무성 차관은 강대국의 태도가 문제이기는 하나 보편성의 원칙을 지지하며 남북한과 수교한 자국 으로서는 남북한 동시가입 지지가 당연함을 언급

※ Khandeker Mosthoue Ahmed 방글라데시 통상상 면담

- 박 대사가 한국의 방글라데시에 대한 시멘트 2만 톤 수출 추가배정을 설명한데 대해 동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계속 공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 3. 본 문서철에는 동 겸임대사 신임장 발급 등을 위한 외무부 내부절차 문서, 주인도대사관이 외무부에 송부한 방글라데시 출장(6.5.~14.) 결과보고서, 신임장 제정 관련 방글라데시 언론기사 등도 수록되어 있음.

## 대사파견 - 벨기에

| 74-005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B-22 / 8 / 1~23p

1. 외무부는 1974.3.15. 송인상 전 재무부장관을 주벨기에 대사로 내정하고 주벨기에대사관에 아그레망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2. 주벨기에대사관은 1974.3.25. 송인상 대사에 대한 신임장 수령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송인상 대사는 1974.4.17. 벨기에 부임함.

- ※ 4.18. 외교부 의전장 방문
- ※ 4.19. 왕궁 궁내성장관 면담
- ※ 4.22. 외교부장관의 일정상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장관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의전실을 통해 간접 전달

4. 송인상 대사는 1974.4.23. 보드왕 1세 벨기에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 대사가 직접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
- ※ 별실에서 벨기에 국왕과 단독 면담
  - 송 대사가 경제·통상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언급한데 대해 국왕은 한국의 노동력, 학교, 통일문제 등에 관해 문의



## 대사파견 - 보츠와나

| 74-005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B-22 / 9 / 1~12p

1. 외무부는 1974.3.26. 연하구 신임대사 내정자를 주케냐 대사로 임명하고 동 대사의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4개국 겸임을 위한 아그레망을 각국에 요청함.
2. 보츠와나 정부는 1974.7.23 연하구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4.8.12. 연하구 대사를 주보츠와나 겸임대사로 발령함.
4. 연하구 대사는 1974.8.19.~24. 보츠와나를 방문, 8.20. 보츠와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대사파견 - 차드

| 74-005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B-22 / 10 / 1~30p

1. 외무부는 1974.2.4. 주프랑스대사관에 윤석현 주프랑스대사의 겸임국 차드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  
토록 지시함.
2. 차드 정부는 1974.7.25. 윤석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4.8.12. 윤석현 주프랑스대사를 주차드 겸임대사로 발령함.
4. 윤석현 대사는 1974.12.9. N'Garta Tombalbaye 차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 신임장 제정 후 면담에서 윤 대사는 차드의 한국에 대한 우의와 지지에 사의를 표명
  - ※ 윤 대사는 신임장 제정 후 외교장관 등 주요 정부인사 면담

## 대사파견 - 칠레

| 74-0054 |

생산연도 | 1972-1974

생 산 과 | 중남미

MF번호 | B-22 / 11 / 1~108p

1. 칠레 정부는 1974.1.14. 한병기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외무부는 1974.1.28. 한병기 대사를 주칠레대사로 발령함.
3. 한병기 대사는 1974.3.12. 칠레에 부임함.
4. 한병기 대사는 1974.3.29. Huerta 칠레 외무부장관을 예방하여 신임장 사본을 수교함.
5. 한병기 대사는 1974.4.15. Augusto Pinochet 칠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 후 환답에서 한 대사는 재임 중 양국간 우호 증진과 상호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함.

## 대사파견 - 카메룬

| 74-005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B-22 / 12 / 1~40p

1. 외무부는 1974.6.1. 윤영교 신임대사 내정자를 주카메룬 대사에 발령함.

2. 윤영교 대사는 1974.7.4. Ahidjo 카메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윤 대사는 7.4. 신임장 제정 직전에 Efon 카메룬 외교장관을 예방하여 신임장 사본을 수교하고 동 장관은 윤 대사의 재임기간 중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함.

## 대사파견 -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 74-0056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의전/인사계
MF번호	B-22 / 13 / 1~9p

1.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정부는 1974.6.11. 임명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외무부는 1974.6.18. 임명진 대사를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에 발령함.
3. 임명진 대사는 1974.6.27. 모부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모부투 대통령은 임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에 대한 답사에서 한국 대통령에 대한 경의 전달을 요청하면서 양국관계에서의 긴밀한 협조를 희망함.

## 대사파견 - 도미니카공화국

| 74-005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B-22 / 14 / 1~27p

1. 외무부는 1974.3.23. 송광정 주베네수엘라대사의 겸임국인 도미니카공화국에 아그레망 신청을 지시함.
2.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1974.4.24. 송광정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4.5.15. 송광정 대사를 주도미니카공화국 겸임대사로 발령함.
4. 송광정 대사는 1974.7.22. Balaguer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 신임장 제정 후 환담에서 동 대통령은 한국 사정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경제분야에서의 양국관계 증진을 희망함.
5. 송광정 대사는 1974.7.23. Hernandez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유엔담당대사를 면담, 한국 정부의 유엔총회에 대비한 각서를 수교하고 도미니카 정부의 지지를 요청한 바, Hernandez 대사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며 계속 지지할 수 있다고 답변함.

## 대사파견 - 에콰도르

| 74-0058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의전/중남미
MF번호	B-22 / 15 / 1~23p

1. 외무부가 주칠레대사로 발령된(1974.1.28.) 한병기 대사의 겸임국 에콰도르에 대한 아그레망 신청을 지시함
2. 외무부는 1974.5.11. 한병기 주칠레대사를 주에콰도르 겸임대사로 발령함.
3. 한병기 대사는 1974.5.29. 에콰도르 외교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수교함.
4. 한병기 대사는 1974.5.30. 에콰도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대사파견 - Cairo(이집트) 총영사관

| 74-0059 |

생산연도 | 1968-1974

생 산 과 | 중동

MF번호 | B-22 / 16 / 1~29p

1. 대주재국 외교활동 필요상 주카이로 총영사직을 대외직명 대사로 보임하기를 요청한 주카이로총영사의 건의에 대해 1968.6.27. 외무부 구아국은 대외직명 대사 보임이 실질적인 외교활동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장위돈 주카이로총영사(대외직명 대사)가 1974.4.29. 카이로에 부임, 전임 최운상 총영사 후임으로 업무를 개시함.
3. 전임 최운상 총영사는 1974.5.19. 주모로코대사로 부임함.



## 대사파견 - EC(구주공동체)

| 74-0060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구주
MF번호	B-22 / 17 / 1~8p

1. EC(구주공동체) 의전장은 1974.5.10. 송인상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주벨기에대사관에 통보함.
2. 외무부는 1974.5.22. 송인상 주벨기에대사를 주EC대사로 겸임 발령함.
3. 송인상 대사는 1974.6.4. EC각료이사회 개최지인 룩셈부르크에서 EC각료이사회 의장인 Genscher 서독 외교장관과 Ortolí EC 집행위 위원장에게 각각 신임장을 제정함.
  - ※ Genscher 의장은 각료이사회 의장직을 맞아 처음으로 신임장을 접수, 앞으로 EC와 한국 간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 ※ Ortolí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발전상에 관해 알고 있고 과거 프랑스 공업발전장관 재임 시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한국·프랑스 기술협력계획이 매우 조직적이고 세밀하게 작성되어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함.

## 대사파견 - 취지

| 74-006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B-22 / 18 / 1~44p

1. 외무부는 노석찬 주호주대사의 겸임국 피지에 대한 아그레망 신청을 주호주대사관에 지시함.

※ 주호주 피지대사관은 1974.12.2. 노석찬 주호주대사의 겸임국 피지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통보함.

2. 외무부는 1974.12.4. 노석찬 대사를 주피지 겸임대사로 발령함.

3. 노석찬 대사는 1974.12.9. George Cakobau 피지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대사파견 - 프랑스

| 74-0062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구주
MF번호	B-22 / 19 / 1~47p

1. 외무부는 1974.2.4. 윤석현 외무부차관을 주프랑스대사로 발령함.

2. 윤석현 대사는 1974.3.3. 프랑스에 부임함.

3. 윤석현 대사는 1974. 3.22. Pompidou 프랑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Pompidou 대통령은 양국관계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알루미늄 및 정유공장 합작투자, 프랑스 산 에어버스의 훌륭한 성능에 대해 언급함.

- 동 대통령은 양국간 경제, 문화, 기술분야 협력증진을 희망하고 프랑스 외교장관의 방한계획도 언급함.

## 대사파견 - 가봉

| 74-0063 |

생산연도 | 1971-1974

생 산 과 | 아프리카

MF번호 | B-22 / 20 / 1~64p

1. 외무부는 1972.11.10. 정일영 주프랑스대사를 주가봉 겸임대사로 발령하였으나 주가봉 상주대사관 설치 추진 등 이유로 부임하지 않음.

2. 가봉 정부는 1974.6.22. 김창훈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4.7.6. 김창훈 대사를 초대 주가봉 상주대사로 발령함.

4. 김창훈 대사는 1974.8.5. 오쿰바 가봉 외교장관을 예방하여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동 장관의 방한을 초청한 바, 동 장관은 상주대사를 파견한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시하고 방한 초청을 수락함.

5. 김창훈 대사는 1974.9.5. 봉고 가봉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김 대사가 봉고 대통령에게 박 대통령의 인사를 전한 바, 동 대통령은 육영수 여사 서거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대통령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함.

※ 또한 봉고 대통령은 유엔의 한국문제 토의 시 한국 입장 지지 및 명년 4월 방한 계획을 언급함.

## 대사파견 - 가이아나

| 74-0064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중남미
MF번호	B-22 / 21 / 1~34p

1. 외무부는 1974.3.23. 송광정 주베네수엘라대사의 겸임국인 가이아나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을 주베네수엘라대사관에 지시함.
2. 가이아나 정부는 1974.7.7. 송광정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4.7.16. 송광정 대사를 주가이아나 겸임대사로 발령함.
4. 송광정 대사는 1974.9.30.~10.5. 가이아나에 출장하여 10.2. Arthur Chung 가이아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송 대사는 가이아나 출장 기간 중 신임장 제정 외에도 Burnham 수상, 임시 외교장관인 Jack 자원개발장관, Hoyte 경제개발장관, Collins 외교차관 등을 예방함.

## 대사파견 - 교황청

| 74-006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B-22 / 22 / 1~28p

1. 외무부는 1974.2.18. 신현준 신임대사 내정자를 주로마 교황청대사(초대 상주대사)로 발령함.
2. 신현준 대사는 1974.3.21. 로마 교황청에 부임함.
3. 신현준 대사는 1974.4.8. 교황 바오로 6세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대사파견 - 아이티

| 74-0066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의전담당관/중미
MF번호	B-22 / 23 / 1~42p

1. 외무부는 1974.3.23. 송광정 주베네수엘라대사의 겸임국 아이티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을 주베네수엘라 대사관에 지시함.
2. 아이티 정부는 1974.4.5. 송광정 대사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4.4.18. 송광정 대사를 주아이티 겸임대사로 발령함.
4. 송광정 대사는 1974.6.2.~10. 아이티에 출장하여 6.4. Brutus 아이티 외교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6.6. 듀발리에 아이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대사파견 - 아이슬란드

| 74-006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총무
MF번호	B-22 / 24 / 1~21p

1. 재외공관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1974.3.13. 아이슬란드에 대한 관할이 주스웨덴대사에서 주노르웨이대사로 변경됨.
2. 아이슬란드 정부는 1974.4.8. 남철 주노르웨이대사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4.5.3. 남철 주노르웨이대사를 주아이슬란드 겸임대사로 발령함.
4. 남철 대사는 1974.9.2.~7. 아이슬란드에 출장, 9.6. 아이슬란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 남 대사는 신임장 제정 외에도 아이슬란드 외교장관, 외교차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의 면담에서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아이슬란드의 지지를 확보함.



## 대사파견 - 인도

| 74-006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남아1/총무
MF번호	B-22 / 25 / 1~50p

1. 한국과 인도가 1973.12.10. 외교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외무부는 노신영 주뉴델리총영사를 대사대리로 임명하고 이를 인도 외교부에 통보함.
2. Trivedi 인도 외교차관이 1973.12.11. 노신영 주인도대사대리에게 북한이 북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신청하였음을 알려면서 한국대사의 아그레망 신청 일정에 관해 문의함.  
\* 노 대사대리는 Trivedi 외교차관에게 아그레망의 발급이나 신임장의 접수에 있어 한국이 북한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외무부에 신임대사의 아그레망이 조속 신청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함.
3. 외무부는 1974.1.19. 박찬현을 주인도대사(초대)로 발령함.
4. 박찬현 대사는 1974.2.1. 인도에 부임함.
5. 박찬현 대사는 1974.2.5. Giri 인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 후 면담에서 Gi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상 및 남북관계의 진전에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 대통령에게 각별한 문안을 전해 주기를 요청함.

## 대사파견 - 인도네시아

| 74-006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인사계
MF번호	B-22 / 26 / 1~20p

1. 인도네시아 정부는 1974.3.4. 이재설 신임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외무부는 1974.3.8. 이재설 주인도네시아대사를 발령함.
3. 이재설 대사는 1974.3.25. 인도네시아에 부임함,
4. 이재설 대사는 1974.3.26. 인도네시아 외교부 의전장을 방문하여 신임장 사본을 수교하고 외교장관 대리인 법무장관(외교장관은 외국 출장 중) 등을 예방함.
5. 이재설 대사는 1974.4.3.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 후 면담에서 수하르토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을 위한 이 대사의 조언을 당부함.

## 대사파견 - 이란

| 74-0070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중동
MF번호	B-22 / 27 / 1~13p

1. 외무부는 1974.3.20. 현시학 주이란대사를 발령함.

2. 현시학 대사는 1974.4.30. 이란 외교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수교함.

※ 동 장관은 남북대화 등 남북한 관계 및 양국간 경제관계 증진 등에 관해 문의함.

3. 현시학 대사는 1974.5.21. 팔레비 이란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 후 면담에서 팔레비 국왕은 한국의 경제발전, 남북관계, 지도자의 영도력, 석유자원, 정유공장 합작, 주한 상주대사관 설치, 한국의 농업 등에 관해 관심을 표명함.

109

## 대사파견 - 일본

| 74-0071 |

생산연도	1970-1975
생 산 과	의전/인사계
MF번호	B-22 / 28 / 1~79p

### 1. 외무부는 이호 전 법무부장관을 주일본대사로 내정하고 1970.12.20.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하여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을 신청함.

- ※ 주한 일본대사관은 12.25.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 부여를 외무부에 통보
- ※ 외무부는 1971.1.4. 이호 주일본대사를 발령
- ※ 이 대사는 1.17. 일본에 부임
- ※ 이 대사는 1.21. 일본 천황에게 신임장 제정
  - 일본 천황은 이 대사에게 박 대통령에 대한 문안인사 전달을 요청하고, 이 대사는 천황에게 박 대통령의 문안인사를 전달하면서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한 노력을 꾀력

110

### 2. 일본 정부는 1974.1.11. 김영선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 외무부는 1.16. 김영선 주일본대사를 발령하고 전임 이호 대사를 소환
- ※ 김 대사는 1.30. 오히라 일본 외상을 예방하여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3.9. 일본 천황에게 신임장을 제정

## 대사파견 - 요르단

| 74-0072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중동
MF번호	B-22 / 29 / 1~18p

1. 요르단 정부는 1973.9월 윤경도 신임대사 내정자(사우디아라비아 상주)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윤경도 대사는 1974.1.22.~31. 요르단에 출장함.

- ※ 1.23. Al-Mufti 요르단 외교담당국무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한국의 대중동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중동 사태에 관한 요르단의 입장을 청취함.
- ※ 1.30. 루마니아를 방문 중인 요르단 국왕을 대신한 Hassan Ibn Talal 황태자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윤 대사가 한국의 중동사태에 관한 아랍 지지 입장 등을 설명한 데 대해, 동 황태지는 양국간의 우호 증진 특히 경제협력증진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 대사파견 - 레소토

| 74-007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총무
MF번호	B-22 / 30 / 1~10p

1. 외무부는 1974.3.26. 연하구 주케냐대사 임명에 따라 겸임국 레소토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을 지시함.
2. 레소토 정부는 1974.6.14. 연하구 주케냐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4.6.25. 연하구 주케냐대사를 주레소토 겸임대사로 발령함.

※ 연 대사는 6.24. 레소토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대사파견 - 라이베리아

| 74-0074 |

생산연도 | 1973-1974

생 산 과 | 아프리카

MF번호 | B-22 / 31 / 1~85p

### 1. 라이베리아 정부는 1973.8.4. 강영규 대사(코트디부아르 상주)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 외무부는 8.23. 강영규 대사를 주라이베리아 겸임대사로 발령함.
- ※ 강영규 대사는 10.30. 톨버트 라이베리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2. 라이베리아 정부는 1974.5.21. 심명원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 외무부는 6.1. 심명원 주라이베리아대사(초대상주)를 발령하고 전임 강영규 겸임대사의 겸임을 면함.
- ※ 심명원 대사는 7.16. 톨버트 라이베리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대사파견 - 라오스

| 74-0075 |

생산연도 | 1974-1975

생 산 과 | 동남아2

MF번호 | B-22 / 32 / 1~57p

1. 한국과 라오스는 1974.7.25. 외교관계를 수립함.
2. 라오스 정부는 1974.8.30. 천병규 대사(태국 상주)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4.9.13. 천병규 주태국대사를 주라오스 겸임대사로 발령함.
4. 천병규 대사는 1974.10.21. Phoumi Vongvichit 라오스 외교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10.22. 라오스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5. 한국과 라오스는 1975.7.24. 외교관계를 단절함.



## 대사파견 - 룩셈부르크

| 74-0076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구주
MF번호	B-22 / 33 / 1~13p

1. 외무부는 1974.4.25. 송인상 주벨기에대사를 주룩셈부르크 겸임대사로 발령함.
2. 송인상 대사는 1974.5.20. 룩셈부르크 외교부 의전장을 면담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3. 송인상 대사는 1974.5.21. 룩셈부르크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 후 면담에서 송 대사가 박 대통령의 인사를 전한데 대해 국왕은 박 대통령의 인사에 감사를 표시하고 한국의 경제발전, 남북한 관계 등에 관해 질문함.

## 대사파견 - 모로코

| 74-007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B-22 / 34 / 1~16p

### 1. 최운상 대사는 1974.5.24. Bahnini 모로코 외상대리(문화담당국무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 ※ 최 대사는 양국간 우호관계의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북한이 각국에서 벌이고 있는 반정부 활동 등을 설명함.
- ※ Bahnini 외상은 최 대사의 설명에 동의와 지지의 뜻을 표명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 지지를 약속함.

### 2. 최운상 대사는 1974.6.21. Hassan 모로코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 Hassan 국왕은 최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양국간 우호관계의 발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회교도를 통한 양국간 우호관계 강화를 희망하고 한국 대통령과 국민에게 자신의 경의와 안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 ※ 최 대사는 동 국왕에게 한국 대통령과 국민의 경의와 안부를 전달하고 국왕의 한국 회교사원 건립기금(6만 달러) 기부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모로코가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함.
  - 또한 최 대사는 한국의 평화통일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모로코의 지지를 요청함.

## 대사파견 - 모리셔스

| 74-007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B-22 / 35 / 1~30p

1. 한국과 모리셔스는 1971.7.3. 양국 외무장관 간 공동성명을 통하여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함.
2. 모리셔스 정부는 1973.11.14. 최경록 주영국대사의 주모리셔스 겸임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4.1.16. 최경록 대사를 주모리셔스대사에 겸임 발령함.
4. 최경록 대사는 1974.3.4.~10. 겸임국 모리셔스에 출장하여 3.6. 모리셔스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최 대사는 신임장 제정 후 환담 및 오찬에서 한국의 국내사정, 북한의 동향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총독은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 및 경제발전에 대해 경의와 찬사의 뜻을 표함.
5. 최경록 대사는 1974.3.7. Ramgoolam 모리셔스 수상을 예방하고 양국관계에 대해 협의함.  
\* Ramgoolam 수상은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를 재확인하고 모리셔스의 대북한 관계에 더 이상 진전이 없음을 언급하였으며 한국과의 어업협력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명함.

## 대사파견 - 말라위

| 74-007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B-22 / 36 / 1~21p

1. 말라위 정부는 1974.5.21. 연하구 주케냐대사의 주말라위 겸임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외무부는 1974.6.1. 연하구 주케냐대사를 주말라위대사에 겸임 발령함.
3. 연하구 대사는 1974.7.29.~31. 겸임국 말라위에 출장하여 7.31. Banda 말라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 연하구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
    - 양국간의 우호관계 및 상호이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즐거운 의무가 될 것임.
    - 양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동의 이상과 평화, 자유 및 번영에 대한 열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까움.
    - 양국간 우호관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
  - ※ Banda 대통령의 답사 요지
    - 양국간 우호적인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양국 국민들에게 상호 이익이 될 것임.
    - 양국간의 지리적 거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방해하지 못할 것임.
    - 양국이 공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기를 희망함.
4. 연하구 대사는 1974.7.31. 신임장 제정 후 Nqumayo 말라위 국무장관을 예방하고, Ngwigi 외무차관과 면담을 가짐.

## 대사파견 - 오만

| 74-008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B-22 / 37 / 1~24p

1. 한국과 오만은 1974.3.28.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함.
2. 오만 정부는 1974.10. 윤경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의 주오만 겸임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4.11.1. 윤경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주오만대사에 겸임 발령함.
4. 윤경도 대사는 1974.11.11.~15. 겸임국 오만에 출장하여 11.12. Zawawi 오만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11.13. Qaboos 오만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 윤 대사는 11.12. Zawawi 외상 면담 시 양국간의 우호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특히 오만이 유엔총회의 한국문제에 대한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협의함.
  - ※ 윤 대사는 11.13. 국왕과의 환담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소개하고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희망, 군사 기술·훈련 및 군 간부의 상호교환 등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제안하였는바, 국왕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신중한 검토를 언급함.

## 대사파견 - 스페인

| 74-0081 |

생산연도 | 1973-1974

생 산 과 | 구주

MF번호 | B-22 / 38 / 1~47p

1. 심홍선 주스페인대사가 1973.12.3.자 외무부의 이임 인사 발령에 따라 12.14. 귀국함.

2. 외무부는 1974.1.28. 신상철 신임 주스페인대사를 인사 발령함.

3. 신상철 대사는 1974.3.13. 스페인에 도착함.

120

4. 신상철 대사는 1974.3.15. 스페인 외무차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 신 대사는 동 차관과 환담 시 자신이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진력할 것임을 밝히고, 스페인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지지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함.

- 또한 신 대사는 동 차관에게 한국의 통일정책 및 남북대화 상황에 대해 설명함.

5. 신상철 대사는 1974.4.4. 프랑코 스페인 총통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신 대사는 프랑코 총통과 환담 시 자신이 양국 우호관계의 발전을 위해 진력할 것을 다짐하고 한국 대통령의 안부 인사를 전달하였으며, 특히 국제무대에서의 스페인의 지지와 협력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 동 총통은 한국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안부 인사 전달을 요청하면서 양국 우호관계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언급함.

## 대사파견 - 스와질란드

| 74-008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B-22 / 39 / 1~11p

1. 스와질란드 정부는 1974.6.21. 연하구 주케냐대사의 주스와질란드 겸임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연하구 대사는 1974.7.2. 스와질란드 외무부차관을 방문하여 신임장 제정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후 외무부장관을 방문하여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3. 연하구 대사는 1974.7.2. Sobhuza 스와질란드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 신임장 제정 후 환담에서 국왕은 한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안부 인사를 전해줄 것을 요청하고 특히 한반도 정세와 남북대화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바, 연 대사가 이에 상세히 설명함.
4. 연하구 대사는 1974.7.2. 신임장 제정식 후 스와질란드 전 각료, 외교단 및 교포 등을 초청하여 리셉션을 개최함.

## 대사파견 - 토고

| 74-008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B-22 / 40 / 1~9p

### 1. 허승 주토고대사관 대사대리는 1974.1.16. Hundele 토고 외상을 면담하고 양국 현안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협의함.

※ 한국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 문제

- 허승 대사대리는 강영규 주세네갈대사(토고 겸임)에 대한 아그레망이 5개월이 지나도록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아그레망 부여를 요청함.
- Hundele 외상은 스와질란드 대통령이 비상주대사의 집수를 원치 않고 있음을 밝히면서 상주대사 파견을 요청함.

※ 외상의 방한 문제

- 허승 대사대리가 1973.11.12. 제기했던 Hundele 외상의 방한시기 문제를 문의한바, 동 외상은 아직 미결정임을 언급함.

※ 의료협력 문제

- 아네쇼 근무 의료단의 계약기간 완료, 외과의사 증파 문제 등에 관해 한국대사관이 외무차관과 협의하기로 결정함.

### 2. 토고 정부가 1974.1.17. 강영규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1.18. 주토고대사관에 알려줌.



## 대사파견 - 태국

| 74-0084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동남아2
MF번호	B-22 / 41 / 1~8p

1. 외무부는 1974.4.8. 천병규 신임 주태국대사를 인사 발령함.

2. 천병규 대사는 1974.4.29. 현지 관행에 따라 태국 외무성 의전장을 방문하여 부임통보 공헌을 수교하고 조속히 신임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 신임장의 조속 제정을 희망하는 입장의 표시로서 원래 외상 예방 시 수교하는 신임장 사본을 부임 통보 공헌의 별첨으로 의전장에게 전달함.

3. 천병규 대사는 1974.5.2. 태국 외상을 예방하고 신임장 제정 및 양국관계에 대해 협의함.

※ 동 외상은 천 대사의 신임장 제정일시가 5.7. 11:30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외무성이 최선을 다한 것임을 강조함.

※ 천 대사가 최근 태국의 대북한 접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데 대해, 동 외상은 태국이 대북한 접촉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 측에 사전에 통보할 것임을 언급함.

- 또한 동 외상은 태국 측이 오랜 친구인 한국과의 관계에 해를 끼치면서 북한에 접근할 생각은 없다고 말함.

4. 천병규 대사는 1974.5.7. 태국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12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대사파견 - 튀니지

| 74-008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B-22 / 42 / 1~15p

### 1. 외무부는 1974.5.15. 문철순 신임 주튀니지대사를 인사 발령함.

### 2. 문철순 대사는 1974.6.25. 부르기바 튀니지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 문 대사는 동 대통령과 환담 시 자신이 양국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이를 위한 동 대통령의 지도, 편달을 부탁한바, 동 대통령은 이번 튀니지 외상의 방향이 양국간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최대한 협력을 약속함.
- ✿ 문 대사는 남북대화에 관한 동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 남북한이 1972.7.4. 공동성명에 합의하고 온 국민의 기대 아래 남북대화가 개시되었으나, 북한 측은 비현실적인 제의를 고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가 작년에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함.
  - 한국 측은 한국문제의 해결은 남북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고 어떻게든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비동맹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께서 남북대화의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가능한 최대한의 협조를 베풀어 주기 바람.
- ✿ 문 대사의 설명에 대해 동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남북대화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외상이 곧 방한하니 그때 이 문제를 더욱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앞으로 양국관계 증진에 큰 성과가 있기를 희망함.

## 대사파견 - 통가

| 74-0086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총무/서남아
MF번호	B-22 / 43 / 1~32p

1. 외무부는 1974.7.15.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종전 주호주대사가 겸임하던 주통가대사를 주뉴질랜드대사가 겸임하도록 조정함.
2. 외무부는 1974.9.10. 강춘희 주뉴질랜드대사를 주통가대사에 겸임 발령함.
3. 강춘희 대사는 1974.11.7. 겸임국 통가에 도착하여 통가 수상이 강 대사 부부를 위하여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함.
  - ※ 동 리셉션에는 전 각료 부부, 외교단 인사, 주재국 저명인사 등이 참석함.
4. 강춘희 대사는 1974.11.8. Tupou 4세 통가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 신임장 제정 후 Tupou 4세 국왕과의 환담에서 동 국왕은 먼저 육영수 여사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였으며, 강 대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 동향 등에 관하여 설명함.
  - ※ 동 환담 중 동 국왕은 자신의 내년 5월 일본 방문 기회에 한국도 2~3일간 비공식적으로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함.
5. 강춘희 대사는 통가 방문 기간(1974.11.7.~12.) 중 통가의 수상, 부수상, 경찰장관, 상공장관 등을 예방하고 통가 현충일 기념식 및 국회 폐회식에도 참석함.

## 대사파견 - 영국

| 74-008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총무/구주
MF번호	B-22 / 44 / 1~5p

1. 외무부는 1974.10.14. 김용식 신임 주영국대사를 인사 발령함.
2. 김용식 대사는 1974.12.17.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대사파견 -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 74-0088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아프리카
MF번호	B-22 / 45 / 1~9p

1. 김동호 주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대사대리(참사관)는 1974.8월 Zerbo 부르키나파소 외상 앞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소개장(Lettres de Cabinet)을 지참하고 부르키나파소에 부임함.

2. 김동호 대사대리는 1974.8.19. Zerbo 외상을 면담하고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소개장을 제정함.

- ※ 소개장 제정시 동 외상은 김 대사대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자국 정부가 김 대사대리의 임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시로 접촉을 가지면서 양국 우호관계가 긴밀해 지기를 희망함.
- ※ 김 대사대리는 한국문제가 금년 유엔총회에서 토의될 전망임을 밝히면서, 부르키나파소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주길 바라나, 부르키나파소의 비동맹 중립정책으로 지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한 엄정 중립을 지켜줄 것을 요청함.
  - 동 외상은 한국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부르키나파소는 비동맹 중립정책을 채택할 것임을 언급함.

## 대사파견 - 월남

| 74-008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2
MF번호	B-22 / 46 / 1~18p

1. 외무부는 1974.3.5. 김영관 신임 월남대사를 인사 발령함.

2. 김영관 대사는 1974.4.4. 월남 외무부장관을 예방함.

3. 김영관 대사는 1974.4.5. 티우 월남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신임장 제정식에서 티우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간곡한 안부를 전해줄 것을 김 대사에게 요청하고, 한국의 제반 원조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명함.

## 대사파견 - 사모아(구 서사모아)

| 74-009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총무/동남아1
MF번호	B-22 / 47 / 1~30p

1. 외무부는 1974.7.15.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종전 주호주대사가 겸임하던 주사모아(구 서사모아)대사를 주뉴질랜드대사가 겸임하도록 조정함.
2. 사모아 정부는 1974.9.6. 강춘희 주뉴질랜드대사의 주사모아 겸임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74.9.25. 강춘희 대사를 주사모아대사에 겸임 발령함.
4. 강춘희 대사는 1974.11.4. 사모아 수상대리(법무장관)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 신임장 제정 시 수상대리는 육영수 여사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였으며, 강 대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 동향 등에 관하여 설명함.
  - ※ 신임장 제정 후 수상대리는 강 대사 부부를 위하여 전 각료 및 사모아 주재 뉴질랜드 고등판무관대리 부부를 초대하여 오찬을 베풀음.

## 대사부임 - UNICEF(유엔아동기금) 대표부

| 74-009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의전1/국제연합
MF번호	B-22 / 48 / 1~11p

1. UNICEF(유엔아동기금) 본부는 1974.7월 주한 UNICEF 대표로 ALAN E. McBAIN을 지명하고 동인에 대한 한국의 동의를 요청하는 공한을 주유엔대표부에 송부함.
2. 외무부는 1974.9월 한국 측이 McBAIN의 주한 UNICEF 대표 임명에 동의함을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UNICEF 측에 통보함.



## 대사부임 - 칠레

| 74-0092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의전1/남미담당관
MF번호	B-22 / 49 / 1~64p

1. 한국 정부는 1974.6.11. Carlos Besa Lyon 주일 칠레대사의 주한 겸임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2. Besa 대사는 1974.9.24.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

- 신임장을 제정하는 것이 무한한 영광일뿐 아니라, 동시에 공동의 적인 국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의 전통을 수호하고자 동일한 투쟁을 하고 있는 양국간의 관계에 있어 자신의 무거운 책임이기도 함.
-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화 및 교역 분야의 교류가 증진되어야 할 것이며, 자신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하께서 도움과 혜택을 베풀어 줄 것을 확신함.
- 최근 각하께서 너무나 큰 손실을 가져온 비극적인 사건(육영수 여사 서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함.

※ 박 대통령의 답사 요지

- 귀하가 언급한 양국 국민의 고귀한 경험이 국제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평화와 자유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려는 공통된 이념에 바탕을 둔 양국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공헌할 것으로 확신함.
- 귀하의 부임을 계기로 양국간에 현존하는 유대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모든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랍.
- 귀하가 맡은 바 중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보장함.

## 대사부임 - 캐나다

| 74-0093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의전/북미1
MF번호	B-22 / 50 / 1~77p

1. 캐나다 정부는 1974.6.7. J. A. Stiles를 주한 캐나다 상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73.6.21. J. A. Stiles의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캐나다 정부는 1973.7.11. J. A. Stiles를 초대 주한 캐나다 상주대사로 임명, 발령함.

4. Stiles 대사는 1974.1.11. 한국에 도착함.

5. Stiles 대사는 1974.1.17.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

- 캐나다 국민들은 각하와 한국 국민들이 30년간의 분단상태와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에 감동을 받았으며, 특히 동유럽, 중국(구 중공) 및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에 대해 성원을 아끼지 않는 바임.
- 캐나다와 한국은 오랜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전쟁 중 유엔의 깃발 아래 싸운 캐나다 아들들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음.
- 최근에는 양국이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 되고 있으며, 양국간의 경제협력의 위대한 시대가 바야흐로 시작된 것으로 사료됨.
- 초대 주한 캐나다 상주대사로 부임하게 된 것을 큰 자랑과 영광으로 생각하며, 캐나다 상주대사관의 설치가 양국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한층 심화하고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함.

※ 박 대통령의 답사 요지

- 캐나다 초대 상주대사의 부임은 현존하는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함.
- 한국전쟁 중 캐나다 국민의 훌륭한 공헌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이 깊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작년 캐나다 상주공관의 설치는 양국간의 우호와 협력을 보다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귀하가 맡은 바 중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함.

## 대사부임 - 코스타리카

| 74-0094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의전
MF번호	B-22 / 51 / 1~61p

1. 코스타리카 정부는 1973.5.28. E. S. Matarita 대만(구자유중국) 코스타리카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73.6.21. Matarita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Matarita 대사는 1974.9.26.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

- 양국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함.
- 본인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간의 단합된 의지가 기존의 이해와 우의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각하의 배려와 한국 정부의 지원이 있기를 바람.

※ 박 대통령의 답사 요지

- 양국관계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증진되어 왔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동 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양국간 우호관계가 더욱 확대 될 것임을 확신함.
- 귀국이 유엔이나 기타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입장을 변함없이 지지하여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함.
- 귀하가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신뢰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함.

## 대사부임 - 온두라스

| 74-0095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의전
MF번호	B-22 / 52 / 1~63p

1. 온드라스 정부는 1973.9.4. C. M. Sorto 주일본 온두라스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73.11.26. Sorto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Sorto 대사는 1974.4.25.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134

### ※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

- 대한민국을 존경하여 왔으며, 한국의 획기적 발전이야말로 위대한 국가로서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온 한국 국민의 우수성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음.
- 한국은 산업, 교육,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국가로 등장하고 있다고 확신함.
- 신임장을 제정함으로써 현존하는 양국간의 긴밀한 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열망하는 동시에 제반 분야에서 우호관계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 박 대통령 답사 요지

- 양국관계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리적인 여건을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증진되어 왔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귀하의 부임을 계기로 양국간 우호관계가 더욱 확대되고 공고히 될 것으로 확신함.
- 이 기회를 빌어 온두라스가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입장을 변함없이 지지해 준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함.

## 대사부임 - 인도

| 74-0096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의전/동남아1
MF번호	B-22 / 53 / 1~44p

1. 인도 정부는 1974.7.8. S.M.Agar를 주한 인도 상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74.7.16. Agar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Agar 대사는 1974.12.10.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

- 한국 국민과 인도 국민은 수세기에 걸쳐 밀접한 문화적, 역사적 유대관계를 맺어 왔으며, 양국은 지금 상호 유익한 관계가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
- 이것은 우리 양국간의 외교관계 수립 및 양국 지도자들의 상호 방문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믿으며,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관계의 현저한 진전이야 말로 우호관계 증진의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초대 인도 상주대사로 부임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양국간에 현존하는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 ※ 박 대통령 답사 요지

-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일주년에 즈음하여 이와 같은 경사스런 제정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함.
- 양국간에 이미 존재하는 우호협력관계는 우리 모두가 관여하고 있는 평화적인 국제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확신함.
- 귀하의 부임을 계기로 양국간 유대가 더욱 공고해지고 모든 분야에 있어 상호 밀접한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랍.

## 대사부임 - 인도네시아

| 74-0097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남아2/의전
MF번호	B-22 / 54 / 1~70p

1. 인도네시아 정부는 1974.1.31. Sarwo Edhic Wibowo를 주한 인도네시아 상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74.2.9. Wibowo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Wibowo 대사는 1974.5.14.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136

### ※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

- 양국간에 현존하는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무역 및 경제 관계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기를 열망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희망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함.
- 양국간의 상호 공동 목적과 이념을 바탕으로 양국간의 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음.
-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각하와 한국 정부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

### ※ 박 대통령 답사 요지

- 1973년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양국관계는 현저히 증진되어 왔으며 양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귀하의 부임을 계기로 양국간 우호관계가 더욱 더 넓혀지고 공고히 될 것으로 확신함.

## 대사부임 - 요르단

| 74-0098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의전/중동
MF번호	B-23 / 1 / 1~52p

1. Amer Abdel Kader Shammout 주일본 요르단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요르단 정부의 아그레망 요청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1974.8.29. 아그레망을 부여함.

2. Shammout 대사는 1974.9.24.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

- 요르단 국민은 여러 분야에서 최근 점증하는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한국기업들이 요르단 국가개발계획의 수행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함.
- 한국 국민과 요르단 국민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여러가지 문제에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음. 양국 국민은 정의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세계 평화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취한 여러 조치에서 상호 지지를 하고 있음.
- 양 국가와 국민 간의 협력과 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대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본인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함.

※ 박 대통령의 답사 요지

- 양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우의와 세계평화 그리고 인류의 번영이라는 공동목표를 기초로 하여 정치, 경제 및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
-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중동문제의 만족스러운 해결을 위한 요르단 정부의 평화적인 협상노력에 대하여 찬사를 보냄.
- 귀하의 부임이 양국간 유대관계를 가일층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귀하가 맡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국민은 모든 신뢰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함.

## 대사부임 - 라이베리아

| 74-0099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의전/인사계
MF번호	B-23 / 2 / 1~130p

1. 라이베리아 정부는 1973.11.19. Ernest Eastman 주일본 라이베리아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73.12.10. Eastman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Eastman 대사는 1974.6.21.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138

※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

-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양국 원수와 정부 및 국민 간의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 강화하기 위해 본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함.
- 한국이 20년 내에 이룩한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여러분야에서 양국간 협조의 가능성을 밝게 비추주고 있음.
- 양국 대통령 간의 돈독한 우정과 양 국민 간의 우호관계를 더욱 깊게 다져야 할 본인의 기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각하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리라 확신함.

※ 박 대통령의 답사 요지

- 양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민족자결, 평화와 자유라는 공동이념에 바탕을 둔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상호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양 국민의 번영과 복지를 위하여 꾸준히 강화될 것임을 확신함.
- 귀하의 부임이 양국간 상호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국민이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함.



## 대사부임 - 말레이시아

| 74-0100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의전
MF번호	B-23 / 3 / 1~41p

1. 말레이시아 정부는 1974.8.21. John Denis de Silva를 주한 말레이시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74.8.30. Silva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Silva 대사는 1974.11.15.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

- 양국은 기존의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맞고 있음.
- 1969년 양국 정상의 교환 방문으로 상징되는 기존의 양국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평화, 자유, 건설적 노력과 같은 이상과 열망이 양국간의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가장 잘 보장하는 것임.

☼ 박 대통령 답사 요지

- 우리 양 국민 사이에는 공고한 유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호이해와 선린관계가 유지되고 있음.
- 양국은 지난 수년간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또한 공동번영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귀하의 부임을 계기로 양국간 유대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모든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랍.

## 대사부임 - 멕시코

| 74-010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의전/중남미
MF번호	B-23 / 4 / 1~62p

1. 멕시코 정부는 1974.4.19. Manuel Alvarez 주일본 멕시코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74.5.2. Alvarez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Alvarez 대사는 1974.11.15.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140

※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요지

- 멕시코 정부를 대표하여 한국과 멕시코 간의 기존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일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함.
- 한국은 아시아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훌륭한 전통과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에 산업, 경제분야에서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여 이제는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
- 앞으로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짐함.

※ 박 대통령의 답사 요지

- 양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함.
- 귀하의 부임이 우리 양국간에 현존하는 유대관계를 한층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함.
- 귀하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국민이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함.

## 대사부임 - 네팔

| 74-0102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동남아1
MF번호	B-23 / 5 / 1~48p

### 1. Devandra Raj Upadhyya 주태국 네팔대사대리가 1972~73년간 주한 네팔총영사(태국상주)의 역할을 담당함.

※ Upadhyya 대사는 1972.5월 방한한 바 있으며, 1973.3월 임기를 마치고 귀국함.

### 2. 한국과 네팔 양국은 1974.5.15.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상호간에 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킴.

### 3. 네팔 정부가 Yadav Prasad Pant 주일본 네팔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해 온데 대하여, 한국 정부는 1974.6.18. 아그레망을 부여함.

### 4. Pant 대사는 1974.9.24.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사 요지

-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귀하의 부임을 환영함.
- 네팔 국왕께서 본인에게 전해준 따뜻한 축의와 우리 국민에 대한 우의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귀국이 국왕 폐하의 영도 하에 정치, 경제, 사회 및 기타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데 대하여 찬양의 뜻을 표하고자 함.
- 우리 양국은 유사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활발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음.
- 양국간의 외교관계 수립이 양국의 공통 관심분야에서의 기존 우의와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공고히 할 것으로 확신함.
- 귀하가 귀국의 초대대사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전적인 신뢰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

## 대사부임 - 미국

| 74-010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의전
MF번호	B-23 / 6 / 1~58p

1. Richard Sneider 신임 주한 미국대사는 1974.9.16. 서울에 도착하여 9.18.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신임장 제정일자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은 Sneider 대사가 호놀룰루에서 개최되는 한·미국 안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974.9.22. 출국 예정임을 알리고 가급적 동 출국 전에 신임장 제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한 바 있음.

## 대사부임 - 베네수엘라

| 74-0104 |

생산연도	1973-1975
생산과	의전1/중남미
MF번호	B-23 / 7 / 1~125p

1. Freddy Arocha Castresana 주한 베네수엘라대사(동경 상주)가 1974.3.6.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는 3.5. 외무부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주한 베네수엘라 상주공관 설치 방침을 통보함.
2. Castresana 대사는 1974.11.25.~29. 이임 인사차 방한하여 11.26.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함.
3. 외무부는 1974.12.2. Enrique Lilue 신임 주한 베네수엘라대사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함.

143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74

## 영사위임장 발급

| 74-010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의전
MF번호	B-23 / 8 / 1~176p

외무부는 총영사 또는 영사로 발령된 직원에 대한 영사위임장 발급 문제에 관하여 해당공관을 통해 아래사항을 확인함.

### 1. 주재국의 영사위임장 필요여부 또는 외교 공한으로 통고 가능여부

### 2. 영사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발급권자 명의

144

※ 대통령 또는 외무부장관

## 영사부임 - 대만(구 자유중국)

| 74-0106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의전
MF번호	B-23 / 9 / 1~6p

1. 주한 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은 1974.3.12.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부산에 대만영사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동 영사관에 근무할 직원(영사 1명, 부영사 2명, 행정관 1명)을 임명함을 통보함.  
\* 영사로 임명된 직원(Hsu Han-shen)은 현재 대사관의 1등서기관이며, 동 직원이 부산으로 이동하여 영사관 개설업무를 담당하게 됨.
2. 외무부는 1974.3.15. 부산시장에게 상기 사실을 통보하고 동 영사관 개설에 따르는 적절한 협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145

## 영사부임 - 캐나다

| 74-010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의전2
MF번호	B-23 / 10 / 1~12p

1.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74.5.30.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캐나다 정부가 Louis Boisvert를 동 대사관 부영사로 임명함을 통보함.

※ 또한 동 대사관은 7.31.자 공한으로 동인에 대한 영사위임장을 제출함.

2. 외무부는 1974.9.9. Boisvert 부영사에 대한 영사인가장을 발급함.



## 영사부임 - 필리핀

| 74-0108 |

생산연도	1974-1975
생산과	의전
MF번호	B-23 / 11 / 1~10p

1. 주한 필리핀대사관은 1974.12.13.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Noberto Basilio가 동 대사관 3등서기관 겸 부영사로 발령됨을 통보하고 동인에 대한 영사위임장을 제출하고 영사인가장 발급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74.12.27. Basilio 부영사에 대한 영사인가장을 발급함

## 명예영사 접수 - 니카라과

| 74-0109 |

생산연도	1971-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B-23 / 13 / 1~40p

1. 주한 니카라과대사관(동경 상주)은 1971.12.10.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한국인 문창준을 주한 니카라과 명예영사로 임명함을 통보하고 동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영사인가장 발급을 요청함.

※ 외무부 구미국장은 문창준을 면담한 결과 동인이 명예영사로 적합치 않다는 의견을 1972.9월 의전실장에게 통보함.

※ 그 이후 주한 니카라과대사관이 동 명예영사 임명을 취소한다고 외무부에 통보함으로써 동 건은 1973.9.24. 종결됨.

148

2. 주한 니카라과대사관은 1974.7.1.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4.3. 한국인 오세중을 주한 니카라과 명예영사로 임명함을 통보하고 동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영사인가장 발급을 요청함.

※ 외무부는 8.7. 오세중에 대한 영사인가장을 발급함.

## 한상윤 주서울 콜롬비아 명예영사 인가 보류

| 74-011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B-23 / 14 / 1~34p

1. 주한 콜롬비아대사관(동경 상주)은 1974.4.16.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한국인 한상윤을 서울 주재 콜롬비아 명예영사로 임명함을 통보하고 동인에 대한 영사인가장 발급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74.8월 가까운 시일내에 주한 콜롬비아 상주공관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한상윤에 대한 명예영사 인가를 보류하기로 함.

※ 주콜롬비아대사는 주한 콜롬비아 상주공관 설치의 예비작업으로 현재 콜롬비아 관계관이 훈련을 받고 있고 콜롬비아가 상주공관 개설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명예영사를 인가함은 실익이 없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149

## 외교 특권 및 면제 제도

| 74-0111 |

생산연도	1970-1974
생 산 과	의전2
MF번호	B-23 / 15 / 1~153p

1. **외무부 의전실은 1971.9월 ‘외교관 등 물품 면세 수입에 관한 규정(안)’ 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외무부 내 관련실·국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문의함.**

- ※ 외교관 등의 면세 수입이 무질서하고 특권남용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면세물품 수입 업무를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동 규정 제정 추진

2. **주한 외교단장이 1972.6.12.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외교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및 달러 거리 수수료 면제를 요청한데 대해, 외무부는 10.7. 아래 요지로 외교단장에게 화신함.**

- ※ 고속도로 통행료는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임.
- ※ 달러 거리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8.1.자로 폐지함.

3. **외무부는 전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앞 회람 공한(1974.1.8.자)으로 1974.1.1. 시행된 전화세 면제 대상을 통보함.**

- ※ 외국 공관 및 국제기구
-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임명된 외교공관 직원 또는 국제기구 직원

4. **외교공관 행정 및 기능직원의 부임 시 면세권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1974.3월 주요국 주재 대사관 (26개)에 아래 사항에 대한 주재국의 관례를 조사·보고하도록 지시함(공관보고 수록).**

-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임(first installation)의 기한을 도착 후 몇 개월까지 인정해 주는지
  - 한국은 6개월 인정
- ※ 상기 기한 경과 후 수입하는 물품과 주류, 식료품, 의약품에 한한 면세권 인정여부
  - 면세의 경우 수량 제한 여부

# 주한 국제기구 전문가에 대한 외교관 대우 문제

| 74-0112 |

생산연도	1967-1975
생 산 과	의전
MF번호	B-23 / 16 / 1~93p

## 1. 농촌진흥청은 1967.6월 및 7월 외국에서 초청된 외국 농업과학자·기술자들이 체한 중 사용하는 차량 (농촌진흥청 제공)에 대해 준외 번호판을 발급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 외무부는 준외 차량 번호판은 주한 유엔기구 등 한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기관에 대해서만 발급되는 것이며 기타의 목적으로는 발급될 수 없다고 회신함.

## 2. 외무부는 1968.1월 명예영사관 소유차량의 납세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한 명예영사관에 각각 통보함.

- ※ 명예영사관 또는 명예영사는 국제법상 또는 국제관례상 주재국의 국세나 지방세로부터 면세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한국 정부도 그러한 면세권을 인정하지 않음.
- ※ 일부 명예영사관에서 현행 규정상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한국의 현행 법규상 명예영사관 면세규정이 없으며 지방세법의 비과세 규정도 명예영사관에는 적용되지 않음.

## 3. 외무부는 1972.1월 과학기술처의 요청(1971.12월 및 1972.1월)에 따라 콜롬보플랜 등 양자협정에 의하여 기술원조 목적으로 내한하는 전문가들에 대해 준외 차량번호판 발급, 물품 면세통관, 특별신분증 발급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과학기술처에 통보함.

- ※ 준외 차량번호판 발급
  - 과학기술처의 수입 사전 승인을 받은 차량에 한하여 면세통관 의뢰 및 준외 번호판 발급
- ※ 물품 면세통관
  - 공용품 및 한국 정부에 기증되는 물품은 과학기술처가 면세통관 의뢰
  - 사용품 수입에 대해서는 외무부에 통보된 자에 한하여 외무부가 면세통관 의뢰
- ※ 특별신분증 발급
  - 전문가의 직위, 성명을 표시한 신분증 발급

## 4. 농촌진흥청이 1974.12월 국제감자연구소(페루 소재) 아시아 지역대표부의 한국설치와 관련하여 한국에 파견되는 감자생산 전문가에 대하여 외교관 또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직원에 준하는 특권부여를 외무부에 요청한데 대해, 외무부가 아래 요지로 회신함.

- ※ 상기 감자전문가는 한국이 체결한 협정상 특권과 면제 대상이 아님.
- ※ 동 감자전문가에게 유엔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 또는 외국 정부의 기술원조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것과 같은 특전 부여를 위해서는 특전의 근거가 되는 협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함.

# 주한 외교기관 및 외교관 차량 구입·처분 문제

| 74-0113 |

생산연도	1970-1975
생산과	의전
MF번호	B-23 / 19 / 1~215p, Re-22 / 18 / 1~36p

## 1. 대통령 지시에 따라 1971.12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관계부처 회의는 면세 도입된 외제차량의 일괄 구입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 ※ 매각을 원하는 외교차량은 관광공사에서 일괄 인수함.
- ※ 인수 시 가격은 미국 동서부지역에서의 중고차 시세표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함.
- ※ 인수한 차량은 원칙상 관광용으로 사용하고 잔여 차량이 있으면 민간에 불하함.
- ※ 동 조치는 1972.2.1.부터 시행함.

152

## 2. 상기 합의에 대한 주한 외교단들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1972.1.28.자 외교단장 공한 요지).

- ※ 외교 공관장 전원은 신제도 실시에 만장일치로 반대함.
  - 신제도가 문제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편만 초래할 것임.
  -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임.
- ※ 차량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어야 함.

## 3. 외무부는 1972.3월 대통령 비서실장(경제수석비서관) 앞 공문에서 외교단들의 반응 등 제반사정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신제도 내용은 아래 원칙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시행일도 7.1.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 관광공사에서 매입 시 수입 후 3년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 당시 가격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의 노후상태에 따라 5% 이내의 범위에서 감가함.
- ※ 관광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차량매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유판매를 허용하되 관광공사의 확인을 얻도록 함.
- ※ 관광공사가 매입할 경우에는 그 대금에 대하여 전액 환금을 허용함.

## 4. 외무부는 1972.11월 외제차량 거래창구 일원화 조치의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 구두 합의하였음을 교통부에 공문으로 통보함.

# 주한 외국기관 부동산 관계. 전3권 (V.1 아주지역 I)

| 74-0114 |

생산연도	1963-1974
생산과	특전/의전
MF번호	B-23 / 21 / 1~123p

주한 외국기관의 부동산에 관한 내용임.

## 1. 뉴질랜드

- ※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뉴질랜드 정부재산 관리기구인 New Zealand Government Property Corporation 명의로 대사관 사무실 임차 및 관저용 토지 구입 시 동 Corporation에 대해 대사관 명의로 임차 또는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면세권 인정을 외무부에 요청(1973.10.10.)
  - 외무부는 대사관 공용으로 임차 또는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권이 인정됨을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에 공한(1973. 10. 29. 자)으로 통보함.
- ※ 내무부가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이 공관용 토지 소유권 취득허가를 신청한 데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한 바, 외무부는 1973.5월 상호주의 조건으로 보아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에 이의 없음을 회보함.

## 2. 말레이시아

- ※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은 동 대사관 및 관저용으로 한남동 소재의 토지와 동 토지상의 건물을 구입하기를 희망하고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한 바, 외무부는 1971.3월 내무부에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의 동 토지 취득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을 시 적의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 3. 월남(베트남)

- ※ 외무부가 1973.1월 내무부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주한 월남(베트남)대사관의 대사관 부지용 토지 취득을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내무부는 3월 월남대사관에 동 토지에 관한 권리 취득 허가증을 교부함.
  - 외무부는 4월 내무부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주한 월남대사관 부지 취득에 따른 제반 세금을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4. 인도

- ※ 주한 인도총영사가 1972.6월 뉴델리 주재 한국공관과 서울 주재 인도공관 건물 건축용 대지를 상호 교환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서 인도총영사관에 대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한데 대해 외무부는 1974.2월 교환을 위한 적절한 부지가 없음을 주한 인도총영사에게 통보함.

## 5. 인도네시아

- ※ 외무부가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이 작성한 대사관 사무실 건축 설계안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문의한데 대해, 서울시는 1974.2월 동 건축 설계안이 관계법에 저촉된다고 외무부에 회보함.

# 주한 외국기관 부동산 관계, 전3권 (V.2 아주지역 II)

| 74-0115 |

생산연도	1963-1974
생 산 과	특전/의전
MF번호	B-23 / 22 / 1~216p

주한 외국기관의 부동산에 관한 내용임.

## 1. 일본

- ※ 대사관 부지
  - 내무부는 1968.3월 주한 일본대사관 신축 부지용 토지(중학동) 소유권 취득을 허가함.
- ※ 주부산 총영사관 직원 숙소 부지
  - 내무부는 4월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직원 숙소 신축 부지용 토지(남천동) 소유권 취득을 허가함.
- ※ 대사관저 부지
  - 내무부는 1971.4월 주한 일본대사 관저용 토지(성북동) 소유권 취득을 조건부 허가함.
- ※ 주부산 총영사관 부지
  - 내무부가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건축 부지용 토지 취득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한 데 대해 외무부는 1971.12월 이를 허가하여도 무방하다고 통보함.
- ※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 내무부가 주한 일본대사관의 직원 숙소용 토지(이촌동) 소유권 취득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한데 대해 외무부는 1974.1월 허가 가능함을 통보함.
  - 내무부가 주한 일본대사관의 직원 숙소용 토지(이태원동) 소유권 취득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한데 대해 외무부는 1974.3월 이의 없음을 통보함.

## 2. 태국

- ※ 외무부가 1973.6월 대한주택공사에 주한 태국대사관의 증축, 주한 태국대사관 및 관저건물 구입, 외인주택의 경비강화 등의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대한주택공사는 아래와 같이 회보함.
  - 주한 태국대사관 증축공사는 6.30. 완공 예정임.
  - 주한 태국대사관이 임대 중인 이태원 외인주택 2체에 대한 매각 계획은 없음.
  - 향후 경비를 더욱 강화하여 도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3. 호주

- ※ 내무부는 1973.7월 주한 호주대사관저용 토지(성북동) 소유권 취득을 허가함.
- ※ 서울시는 주한 호주대사관이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 허가를 신청한 용산구 한남동 소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선행한 후 분양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무부의 판단으로 동 허가 신청이 반려되었음을 주한 호주 대사관에 통보함.
- ※ 주한 호주대사관이 경기도 가평군 소재 임야를 직원 휴양 및 별장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문의한 데 대해 내무부는 1974.2월 동 건물은 관계기관에서 협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답변함.



# 주한 외국기관 부동산 관계. 전3권 (V.3 구주 및 미주지역)

| 74-0116 |

생산연도	1963-1974
생 산 과	특전/의전
MF번호	B-23 / 23 / 1~231p, Re-22 / 19 / 1~35p

주한 외국기관의 부동산에 관한 내용임.

## 1. 이탈리아

### ※ 대사관 건물(1963~66년)

-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이 1963.8월 임차사용 중인 후암동 소재 건물을 재무부로부터 불하받은 '임종길'이 동 건물의 명도를 요구함에 따라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은 이에 동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1966.1월까지 동 건물 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외무부는 재무부에 이탈리아대사관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바, 동 건물 매수자인 '임종길'은 1964.7월 이탈리아대사관이 임대료를 포함한 어떤 조건의 변경없이 1965.6.30.까지 계속 사용토록 할 것임을 약속함(동 대사관은 1965.7.1. 상기 건물에서 이전).
-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은 1966.7월 전 건물소유자와 '임종길'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지불하지 못한 임차료를 재무부 명의 수표로 발행하여 전달하고 이를 합법적인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 대사관지

-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은 1969.3월 동 대사관이 대사관저로 임차 사용 중인 건물(정동)의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 외무부에 문의한 바, 외무부는 8월 관련사항을 회신함.

## 2. 영국

- ※ 주한 영국대사관은 1972.12월 외무부 앞 공한으로 서울시 발급 지적도에 의하면 동 대사관 부지 외곽을 연결하여 폭 8m 상당의 대지가 서울시 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며 동 대사관 대지의 계획도로 편입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서울시는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1973.1월 상기 대사관 대지의 편입을 피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변경·고시함.
- ※ 주한 영국대사관은 1973.1월 외무부를 통하여 서울시에 동 대사관 증축 허가를 신청함.
- 서울시는 2월 주한 영국대사관이 시공 중인 대사관 건축물(지상3층 지하1층)이 덕수궁 경관 유지에 지장이 있으므로 2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협조를 요청함.

## 3. 미국

- ※ 내무부는 1974.10월 한미재단의 토지 소유권 취득허가 신청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이견 없음을 통보함.



#### 4. 독일

※ 주한 독일대사관은 대사관저 정원 확장용 토지(성북동) 소유권 취득허가를 신청한바, 외무부는 1974.12월 군사 목적상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함을 내무부에 회신함.

#### 5. 벨기에

※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대사관저 건축 부지용 토지(성북동) 소유권 취득허가를 신청한 바, 외무부는 1974.12월 동 토지가 공공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취득 허가함을 내무부에 회신함.

156

#### 6. 스위스

※ 주한 스위스대사관은 대사관 사무실과 관저 부지용 토지(송월동) 소유권 취득허가를 신청한 바, 외무부는 1974.12월 동 신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내무부에 요청함.



## 미국 평화봉사단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의건

| 74-011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B-23 / 24 / 1~12p

1. 에릭슨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는 1974.12월 외무부 미주국장을 면담하여 마리화나 불법소지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 장흥지청에 송치된 평화봉사단원 2명(남자1명, 여자1명)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등 특별조치를 해준다면 이들을 즉시 파면하여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약속함.
2. 법무부는 외무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1974.12월 대검찰청이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지시하여 관계자를 불기소 처분하도록 조치함.

# 대중남미 외교시책 및 업무계획

| 74-0118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중남미
MF번호	C-70 / 1 / 1~113p

1. 외무부 미주국은 1974.2월 중남미국가 주재 각 공관이 제출한 1974년도 사업계획서를 종합하여 '1974년도 대중남미 외교시책 및 업무계획'을 작성함.

2. 상기 '1974년도 대중남미 외교시책 및 업무계획'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현황

※ 중남미국가의 특성과 최근 추세

- 보수, 중도좌파, 공산권, 군부집권국으로 분류
- 이념보다 실리 추구, 대미 의존 탈피 노력 및 독자적 노선 지향, 대미 감정 악화와 미주협력기구 약화 등 추세

※ 대중남미 외교목표와 방침

- 중남미지역에서의 압도적인 외교기반 유지
- 자원확보, 교역증진 등 실리적 각도에서의 협력관계 심화

※ 1974년도 주요 업무계획

- 중남미지역 공관장 회의
- 중남미 미수교국들과의 수교 추진
- 대중남미 외교망 강화
- 주한 상주공관 유치
- 사절단 파견
- 겸임국과의 접촉 강화
- 유력인사 방한초청
- 명예영사 활용
- 민간단체 활용
- 각종 협정 체결

# 한국의 대EC(구주공동체) 제국 외교

| 74-011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C-70 / 4 / 1~94p

외무부 구아국이 1974.4월 작성한 '대EC 외교' (집무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대외정책에 있어서 EC(구주공동체)의 정치적 협력 현황

- ※ 성격 및 목적
- ※ 기구
- ※ 정치적 협력
  - 현황, 평가 및 전망, 결론

## 2. EC의 한국문제에 대한 태도

- ※ 현황
- ※ 토의내용
  - 아주국장 회의(1974.1.29. 및 3.14.)
  - 제28차 유엔총회 대책회의
- ※ 평가 및 전망
  - 동 회의의 지배적 의견이나 확인사항이 EC 국가의 대한국 정책 입안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침.
  - 현 단계에서는 북한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를 보임(기수교국 덴마크 제외).

## 3. 현안 문제

- ※ EC의 대한정책 공동선언 교섭 추진
- ※ 아일랜드와 국교수립
- ※ 북한통상대표부 설치 저지 노력
- ※ 각국별 현안문제 일람

## 4. 토의 사항(대EC 외교 강화방안)

- ※ 북한진출 저지 대책
- ※ 제29차 유엔총회 대책
- ※ EC 주재 공관활동 강화 방안
- ※ 대동구 접촉 문제
- ※ 건의 및 요망사항

# 한 · 모로코 관계증진 방안

| 74-012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등
MF번호	C-70 / 5 / 1~30p

외무부는 주모로코대사관이 모로코와의 관계증진 방안으로 건의한 내용(1974.7월)에 대한 검토 및 조치사항을 1974.10월 아래 요지로 동 대사관에 통보함.

## 1. 정무

- ※ 대통령 모로코 방문
- ※ 모로코 왕실과의 강화
  - 대통령의 모로코 국왕 앞 전문·친서 발송: 의전관례에 따라 시행 예정
  - 한국 외교협회 축전 발송 및 선물 증정: 핫산2세 생일 기념일에 축전 기발송
  - 핫산 2세컵 골프대회 참가: 한국 프로골프협회에서 참가하기로 결정
  - 왕실용 가구·집기 조달: 선물 증정 시 참고 예정
- ※ 모로코 군사사절단 방한: 1974.8.1.~11. 기 방한
- ※ 외무담당 국무상 및 공보담당 국무상 방한 초청: 외무부장관 명의 초청장 기 발송
- ※ 국군의 날 주요인사 방한 초청: 모로코 검찰총감 일행 기 방한

## 2. 경제 · 통상

- ※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모로코 측이 한국 안 검토 중
- ※ 어업협정 체결: 경제기술협력협정안 검토 결과에 따라 체결 추진 여부 결정
- ※ 카사블랑카 국제전시회 참가: 검토 중
- ※ 상품전시회 개최: 예산 사정상 어려움
- ※ 의료협력 추진: 검토대상이 되지 않음.

## 3. 문화 · 공보

- ※ 문화협정 체결: 한국 안에 대한 모로코 측 대안을 기다리고 있음.
- ※ 공보관 파견: 1975년 공보관 증파 시 검토 예정
- ※ 유력언론인 방한 초청: 문공부에서 난색 표명
- ※ 리틀엔젤스 공연: 공연계획 확정
- ※ 태권도 대회 개최: 구체적 건의 시 지원 검토 예정

# 한국의 대팔레스타인(PLO) 정책

| 74-0121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중동담당관
MF번호	C-70 / 6 / 1-46p

## 1. 아랍국가가 1974년 유엔총회 안건으로 제출한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 외무부가 1974.9월 중동지역 주제 공관을 통하여 확인한 아랍국가들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 ✱ 아랍 측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종래 단순한 피난민 문제로 취급되어 왔음에 비추어 이를 금번 유엔총회에 상정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정치문제로 성격을 전환시키는 동시에 앞으로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팔레스타인 정부의 승인을 유도하려는 것임.
- ✱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유엔총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킴으로써 아랍권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앞으로 대이스라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음.
- ✱ 요르단 정부는 팔레스타인 문제 토의는 요르단 거주 팔레스타인인 문제를 야기시킬 것임에 비추어 예민한 관심을 보이는 동시에 불안함을 느낌.

## 2. 외무부는 1974.11월 주요공관 및 중동공관에 한국의 PLO 승인여부에 관한 의견을 보고토록 지시한 바, 각 공관의 의견은 아래와 같음.

- ✱ 주카이로총영사, 주튀니지대사, 주유엔대사, 주베네수엘라대사
  - 승인 찬성
- ✱ 주캐나다대사
  - 정치적으로는 인정함.
- ✱ 주프랑스대사
  - 유엔총회에서 토의결과를 본 후 승인 필요 여부 결정
- ✱ 주독일대사
  - 현 상태에서 승인은 시기상조

## 3. 주미대사관은 1974.11월 한국의 PLO 승인문제와 별도로 PLO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표명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 한국의 PLO에 대한 태도는 PLO 자체보다는 PLO 지지 배후세력에 주는 효과를 고려해야 함.
  -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권과의 관계개선, 비동맹에 대한 한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면 부각, 유엔에서 한국 문제 토의 득표에 유리한 입장 조성, 대아랍 자원외교
- ✱ 한국의 PLO 승인은 이러한 시도의 결과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며, 성과없는 성급한 승인은 오히려 부작용만 가져올 것임.
- ✱ 한국의 PLO에 대한 호의적인 처우나 조치는 미국 내 유태계 주도층(언론, 학계, 경제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인 바, 호의적인 의사전달이나 PLO 지도층 접촉 시도 등 공식적인 승인 이전의 조치에는 특별한 보안이 요망됨.

# 대아프리카 외교정책

| 74-012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70 / 7 / 1~49p

## 1. 외무부 구아국이 1974.2월 작성한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방안' 의 목차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의 필요성
- ※ 아프리카에서의 남·북한 대치 현황
- ※ 대아프리카 외교의 기본방향
  - 한국외교에 대한 이미지 쇄신
  -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한 외교기반 구축
  - 경제적 실리를 고려한 정책 집행
- ※ 대아프리카 외교의 구체적 방안
  - 외교망 정비 강화(1인 공관 정비, 상주공관 증설)
  - 사절단 파견 · 초청 외교 계속 추진
  - 정책분야에서의 협조 증진
  - 미수교국과의 수교 노력 강화
  - 친한세력 육성 지원
  - 수출증대 및 경제적 진출 활동 강화
  - 의료협력 강화

## 2. 1974년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무부 구아국이 6월 작성한 1인 공관 제도 운영개선안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1인 공관 현황: 8개 공관
- ※ 1인 공관 존속 필요성
  - 북한의 외교적 진출 저지 및 대북한 우위확보책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
- ※ 운영면의 개선 필요성
  - 하위직급에 대외직명 대사대리를 부여하여 파견하는 경우 고위 정책결정자 접촉 곤란
  - 행정업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외교활동 수행에 지장
- ※ 운영상의 개선점 건의
  - 공관장은 현지어에 능한 이사관급 이상 직원 중에서 선정하고 대외직명 대사 부여
  - 1인 공관의 운영규모는 현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일상적인 자료조사 업무 및 각종 정기 보고서 제출 면제
  - 필요시 인접공관에서 인원 지원 체제 강구



# 1974.1.8 긴급조치 선포에 대한 중국(구 중공)의 반응

| 74-012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C-70 / 9 / 1~22p

## 1. 중국(구 중공) 인민일보는 한국의 긴급조치 선포와 관련하여 1974.1.13. '박정희 도당의 단발마적 발악 제하의 논설을 게재함.

- ✪ 1.8. 비상조치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한국 국민을 탄압하는 박정희 정권의 범죄적 만행이며 애국적 국민들의 불길을 끄려는 잔인한 수단임.
- ✪ 이러한 단발마적 발악은 부질없는 짓이며 한국 국민들을 반항의 투쟁으로 이끌 것임.
- ✪ 한국 국민들의 투쟁은 파쇼 독재정치가 종료되고 조국통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발전할 것임.

## 2. 홍콩의 친중국계 대공보는 1974.1.11. 한국의 긴급조치 선포에 대해 아래 요지의 논평을 게재함.

- ✪ 유신헌법 개헌 운동이 점증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1.8. 돌연 긴급조치를 선포해 현 헌법 반대자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함으로써 더욱 박해할 수 있게 됨.
- ✪ 한국 국민들은 동 긴급조치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박 정권의 긴급조치가 한국의 민주화를 결코 방해할 수 없을 것임.

# 일본의 대한 정책

| 74-012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70 / 10 / 1~197p

1974년도 일본 수상, 외상 및 외무차관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언급한 내용임.

## 1. 도쿄 외무차관 발언(5.24. 일본기자클럽 오찬 연설)

- ※ "일본의 당면한 외교문제" 라는 제목으로 한·일 관계 증진, 한반도에서의 남북 평화공존 지지, 한국의 대공산권 수교에 대한 지지 등

164

## 2. 기무라 외상 발언(8.9. 아사이신문 인터뷰)

- ※ 한반도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주변 4강이 공동책임을 지고 국제회의 개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바람직함.
- 일본 외무성 실무자들은 동 언급 내용이 외상의 개인 의견이라고 함.

## 3. 기무라 외상 발언(참의원 답변)

- ※ 8.19. 답변
  - 만일 유엔이 한국 문제에 관한 입장을 변경할 경우, 일본은 북한 승인문제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 1969년 사토·니슨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긴요하다는 정책을 선언한 이래 여건의 변화가 있어 왔음.
- ※ 8.29. 답변
  -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극히 중대하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변함.
  - 이와 관련, 한국 외무부 아주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하여 해명을 요구하였다고 일본 NHK가 8.30. 보도함.
  - 한국 외무부의 항의 등 한국 내 반발 분위기를 감안, 일본 외상은 8.30. 기자회견을 열고 6·25와 같은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함.

## 4. 기무라 외상 발언(8.30. 외신기자클럽 오찬 연설)

- ※ 남북대화, 유엔군 주둔으로 남북한 간 세력균형 및 평화안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미 방위협정으로 6·25 때와 비교하여 환경이 개선되었고, 박 대통령 암살시도 사건에 대한 일본 내 수사 확대에는 법적 제한이 있음.
- 박 대통령은 8.30.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8·15 저격사건의 배후인 조총련 활동을 불법화하도록 일본 정부가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5. 미야자와 외상 발언

- ※ 김대중 사건의 조속한 종결이 좋겠음(12.11. 방송 인터뷰).
- ※ 김대중 사건은 한국에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기다려야 하고 조총련 규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하여는 한국 정부 파괴의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 규제할 것임을 박대통령에게 전달하였음(12.17. 참의원 답변).
- ※ 한국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전임자와는 반대의 일을 하겠음(12.20. 아사이 신문 인터뷰).
- ※ 한국과 북한에 대한 교차승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임(12.24. 참의원 답변).

## 6. 미키 수상 발언(12.16. 중의원 답변)

- ※ 북한과의 수교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며, 한일 관계 정상화를 희망함.

# 중국(구 중공)의 대한반도 정책

| 74-012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C-70 / 11 / 1~33p

## 1. 외무부는 1974.12월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소련 및 중국(구 중공)의 대한국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 상황에 대한 양국의 언급 내용 및 태도를 수집 분석함.

- ※ 소련·중국 분쟁 격화, 미국·중국 및 일본·중국 화해 및 북한의 친중화, 박정희 대통령의 6·23 선언, 남북대화 등으로 소련은 한국에 대하여 적대적 자세를 완화한 것으로 평가함.
  - 이러한 태도 변화는 북한의 중국에로의 편향을 견제하고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 ※ 이러한 한국·소련 접근 가능성에 대하여 중국이 맹렬하게 비난하기는 하지만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 변화 가능성도 검토됨.
  - 중국은 북한을 포섭하기 위하여 북한의 대남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소련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불안을 느끼고 있던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소련에 대한 스마일 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
  - 중국은 소련의 대한민국 진출을 억제하고 한반도 통일 시까지 북한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하여 한반도에서의 Two Korea 개념을 적극 배제하려고 노력함.

## 2. 중국의 한국에 대한 언급과 관련된 내용임.

- ※ 1974.11.19. 중국 신화통신은 소련이 한국 정부와 공모하여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 하면서 최근 한국·소련 접근 사례를 상세하게 열거하고 북한의 정책을 지지함.
  - 외무부는 중국과 소련이 대한국 관계 개선에 있어서 모두 북한을 크게 의식하고 있으며, 아울러 북한의 반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 11.20. 주일본대사관은 방일 중인 중국대표단이 한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고 보고함.
  -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며 한국을 승인하지 않음.
  - 중국 고추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홍콩소재 상인들 간에 주선된 것으로 중국 당국과의 직접 거래는 아님.
- ※ 11.21. 주홍콩총영사관은 신화통신의 비난에 대한 현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본부에 보고하면서, 중국의 대한국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진 것으로 평가하나 북한을 자극할 정도로까지 진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 ※ 중국의 교관화는 1973.9월 폼피두 프랑스 대통령 면담 시 한·중국 대사급 비밀접촉 시도는 “좀 두고 보자”고 하면서 유엔사 해체를 반대한다고 언급함.
- ※ 중국의 주은래는 오히라 일본 수상 방중 시 면담에서 한·중 국교수립은 남북대화를 저해할 것이므로 수교를 원치 않는다고 언급함.

# 소련 언론의 대한반도 관계기사 보도

| 74-0126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동구담당관/북미담당관
MF번호	C-70 / 12 / 1~136p

본 문서철에는 소련의 한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외무부 분석자료 및 소련 언론의 관련 보도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 1. 소련 정부의 대한국 정책 분석 자료

- ※ 소련 언론의 한국 비방 논평 게재 횟수, 내용 등에 대한 평가, 외교 접촉 내용, 국제회의에서의 소련대표단의 태도 및 인사교류의 성격에 대한 평가, 소련의 대북한 태도 분석 등

## 2. 소련 언론 보도 분석 자료

- ※ 소련 언론의 한반도 관련 보도에 관한 분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1974.3.5. '주간소련동향 보고 내용의 분석·평가 기준표' 작성
- ※ 소련 정부의 대한국 및 대북한 정책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4.24. 소련과 북한의 대외행사에 관한 소련 언론보도 일람표 작성
- ※ 1974년도 2/4분기 소련의 대한반도 동향 분석자료를 7.23.작성
- ※ 소련 신문의 대한반도 관계 기사 요약 보고 자료 작성  
- 6.3.~7.17., 7.18.~8.11., 8.12.~29. 기간 중 보고 자료

## 3. 소련 언론 보도 내용

- ※ 1974.3.27. 소련 정부 기관지 이즈베스티야는 북한이 3.26. 대미 평화조약 체결을 제외한 데 대한 논평을 게재함.
- ※ 주미국대사관이 8~10월 소련 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 주요 내용은 8·15 백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사건과 관련한 한·일 관계 악화, 그에 따른 국내 정치 상황 등에 관한 것임.
- ※ 독일 Frankfurter Allgemeine지가 11.13. '한국과 소련 접촉 강화, 비밀접촉은 서방 동맹국가 및 사회주의국가를 불안케 함'이라는 제하로 동경특파원 해설기사를 게재한 데 대해 소련 모스크바 방송은 11.24. 동 독일 신문 보도가 허구·날조라고 비판함.

##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 74-012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70 / 13 / 1~11p, Re-0022 / 28 / 1~9p

외무부가 1974.5.10.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1974년도 2/4분기 정세 보고서에 아래 요지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분석 보고'가 포함됨.

1.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지지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한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반정부 시위에 관한 미국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인하여 미국 의회 및 여론 일각에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
- 168 2. 미국 정부는 남북대화 정체 및 북한의 도발로 인한 긴장고조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으나, 북한의 재침략과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함.
3. 미국 행정부의 주관심 대상은 인도차이나 문제, 중동 문제, 대소련, 대중국 및 대유럽 문제이며, 한국 문제는 관심의 중심에서 멀어져 가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음.

## 스웨덴의 외교정책(연설문)

| 74-0128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구주
MF번호	C-70 / 14 / 1~11p

1. 주스웨덴대사관은 1974.3.4. Olof Palme 스웨덴 수상의 국회 시정연설(1.30.) 중 외교정책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2. Palme 수상은 동 연설에서 월남전 종전과 파리평화협정 체결 후 월남에서의 평화 부재 및 인권 탄압을 비난하면서 협정 준수를 촉구하고, 중동 사태 진전에 관하여는 조심스럽게 낙관하면서 평화적 해결은 모든 당사자들의 합법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스웨덴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강조함.  
\* 또한 동 수상은 스웨덴의 중립정책을 옹호하면서 세계 인류의 안전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유엔을 통한 평화와 안전 추구를 촉구함.

16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미국의 대외정책

| 74-012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70 / 15 / 1~23p

### 1. 주미국대사관이 1974.1.22. 외무부에 보고한 Kenneth Rush 미 국무부 차관의 연설(1.21. 미국 클리블랜드 외교위원회)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아시아 인구 및 미국의 대외 무역량, 그리고 1차 대전 이후 미국의 모든 전쟁은 아시아에서 발생한 점, 세계 4강 모두가 태평양국가인 점 등을 반영하여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은 미국 세계정책의 중추가 됨.
- ※ 미국이 일본, 중국(구 중공), 소련 등 아시아 강대국 간의 상호이해와 상호자제의 체계 수립과 아시아 약소 국가들의 개발 및 방위를 위한 책임과 부담의 분담이라는 닉슨독트린의 목표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닉슨 취임 후에 아시아 주둔 미군병력은 1/4로 감축되고 대아시아 군사원조도 40% 감축됨.

170

### 2. 주미국대사관은 1974.8.28. 포드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8.28)에서 언급한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 ※ 포드 대통령은 동 기자회견에서 닉슨 탄핵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쿠바 문제 및 SALT II 문제 등에 관해 언급함.

### 3. 주미국대사관은 1974.9.3. New York Times가 9.2. 게재한 'Ford's foreign problem and prospects' 제하의 기사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 ※ 동 기사의 한국 관련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한국은 처음부터 포드 대통령과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에 관한 우려를 표명함.
  - 포드 대통령은 최근 한국 정부의 정치범 구속에 관심을 표명함.
  - 미국 의회는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삭감을 시사하고 국회의원들은 한국의 인권유린을 비난함.
  -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은 주한미군 감축을 요구함.



# 메콩강 취항 한국선박 방호를 위한 크메르 군인 승선 및 무기탑재 문제

| 74-013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70 / 16 / 1~22p

공산군의 공격으로 위기에 몰린 캄보디아(구 크메르)에 대한 한국의 지원과 월남과 프놈펜 사이의 메콩강을 이용하여 유류 수송을 하는 한국 선박 보호를 위해 무장 군인 탑승과 무기 탑재 필요성에 대하여 외무부와 주캄보디아대사관 간에 교신한 내용임.

## 1. 캄보디아 정세 및 한국의 지원

- ※ 1973.4월 및 9월 공산군의 총공세로 프놈펜이 함락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외무부는 비상 잔류 공관원을 제외한 공관원 가족 및 교민의 철수를 지시하는 한편, 8월 논볼 캄보디아 대통령 특사 방한 시 요청한 군사훈련 요원 파견은 거부하는 대신에 식량 원조는 제공함.

## 2. 한국 선박 보호

- ※ 1974년 들어 캄보디아의 정세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은 1.11. 외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메콩강에서 캄보디아 해군 호송 하에 석유물자 수송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선박 4척의 운영 회사가 동 대사관에 선박 보호를 위하여 선박에 캄보디아 군 탑승과 무기 탑재 동의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외무부의 훈령을 요청함.
  - ※ 외무부는 1.14. 주캄보디아대사관에 현재 캄보디아 해군의 호송이 선박 안전 운행에 불충분한지 여부, 무기 탑재와 군인 탑승이 선박 운행의 안전도를 강화할 것인지 여부, 무장 군인의 탑승으로 공산군의 공격 유발 가능성이 증가되지 않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을 지시함.
  - ※ 주캄보디아대사관은 1.17. 외무부에 유조선들이 공산군의 공격을 많이 받았고 다른 선박들은 이미 무기 탑재를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공산군의 메콩강 차단에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조치로 국제법상 및 대외정책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고함.
  - ※ 외무부는 1.21. 군인 탑승과 무기 탑재는 선박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공산군의 공격 유발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킬 우려가 있으나 주캄보디아대사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 결정하라고 하면서 사태 악화에 대비하여 이들 선박의 계속적 취입 여부를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을 건의하도록 지시함.
- 이에 대해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선박회사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하나, 공격 유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통보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한·대만(구 자유중국) 정무 관계

| 74-013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C-70 / 17 / 1~20p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는 대만 행정원장과 외교부장을 면담하여 협의한 내용 등을 외무부에 보고함.

## 1. 심창완 외교부장 면담(1974.2.14.)

- ※ 외교부장은 한·일본 대륙붕 협정에 대한 대만 정부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동 성명문을 주대만대사에게 전달함.  
- 대만 정부의 성명은 중국 대륙에 인접한 대륙붕에 대한 대만의 권리를 확인하면서 국제해양법에 의거한 고유 권리 침해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을 직접 지칭하지 않고 어떤 국가라고 언급함.
- ※ 외교부장은 중국이 일본과 항공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만과 일본 간에 구축된 경제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본 정부의 “정치는 중국, 경제는 대만과의 관계 유지”라는 정책은 절대 양립될 수 없다고 강조함.
- ※ 또한 외교부장은 서사군도에 대한 월남의 무력해결 기도에 대한 우려, 중국 내부의 동향 등을 주대만대사에게 설명함.

## 2. 심창완 외교부장 면담(1974.5.18.)

- ※ 외교부장은 한국이 각종 계기에 대만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대사관 신축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
- ※ 또한 외교부장은 한국이 요청한 식량 지원에 대하여는 작황을 보아가면서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 3. 장경국 총무원장 면담(1974.5.21.)

- ※ 총무원장은 공산당의 위협과 피해를 입은 양국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확신하며 한국이 난국에 처할 때 이를 적극 돕는 것이 대만의 입장이고 6월에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제9차 한·대만 경제각료 회담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함.

## 4. 심창완 외교부장 면담(1974.8.26.)

- ※ 외교부장은 중국·일본 항공협정에 대한 반발 조치로 4.20. 단절시킨 일본과의 항공노선이 복구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부인함.

## 한·중앙아프리카 정무 일반

| 74-0132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중앙아프리카
MF번호	C-70 / 18 / 1~7p

주중앙아프리카대사가 뽀도로 중앙아프리카 외무장관과의 면담(1974.4.29.) 결과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뽀도로 외무장관은 대아시아 정책 특히 한국에 대한 정책이 불변이라고 언급함.
2. 뽀도로 장관은 캄보디아(구 크메르) 문제와 관련하여 시아누크 정권에 대한 승인은 비동맹국가들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있어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함.
3. 또한 뽀도로 장관은 한국 외무부장관의 중앙아프리카 방문을 초청함.

## 한·프랑스 정무 일반

| 74-013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C-70 / 19 / 1~34p

본 문서철에는 외무부 구아국이 1974.4월 작성한 ‘불란서와의 관계 현황 및 현안문제’라는 제하의 아래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 1. 한국·프랑스 정치, 경제, 문화, 교민 등 관계 현황 평가

### 2. 프랑스의 대북한 정책 및 현안문제

174

- ※ 한국 정부가 프랑스와의 관계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은 파리소재 북한무역사무소의 무역대표부로의 승격 문제와 북한승인 문제이며, 한국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함.

### 3. 1974년도 유엔총회 요청사항

### 4. 프랑스 기업의 한국 경제개발 참여 문제

- ※ 경제협력 대상국의 다변화 차원에서 프랑스 기업들의 댐 건설, 원자력 시설, 제2 종합제철 건설 등에의 참여가 협의됨.

## 한·이스라엘 교류문제

| 74-0134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아중동
MF번호	C-70 / 20 / 1~27p

1.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아랍 국가들의 친이스라엘국가들에 대한 석유 금수 제재를 피하고 아랍지역에서의 북한의 비난 선전을 막기 위하여 1973.12.15. 친아랍 정책을 발표함.

2.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스라엘이 한국에 대해 의회, 스포츠, 학술, 방송, 기술자 훈련 등 교류를 제안한데 대하여,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공적인 교류는 유보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간 차원의 교류를 권장함으로써 친아랍 정책 기조에 맞게 대처하려고 노력함.

- ※ 1974.8.2.~9. 이스라엘대학 스포츠협회 개최 국제대학농구대회에 한국대표 초청
- ※ 3.4. 이스라엘 Settlement Study Center가 한국 기술훈련생 파견보류에 관한 한국 정부의 이유 설명 요청
- ※ 3.28. 이스라엘 방송기구와 한국 방송공사 간의 방송자료 상호 교환 제안
- ※ 6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이스라엘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소장 방한 초청
- ※ 7.10. 한국 농업기술자의 이스라엘 방문
- ※ 10.12.~15. 방한하는 이스라엘 의원단의 국무총리 예방 신청

## 한 · 이스라엘 정무 일반

| 74-013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담당관
MF번호	C-70 / 21 / 1~14p, 2010-87 / 33 / 1~10p

### 1. 주카이로총영사관은 1972.6.2.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일본 적군파 청년들이 5.30.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을 공격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
- ※ 이집트 신문들은 6.1. 공항 공격에 관한 기사에서 친이스라엘적인 한국 정부가 한국의 새마을 지도자 10명을 이스라엘에 파견 예정임을 보도함으로써 중동지역에서의 한국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고 있음.

### 2. 벤 요한난 주한 이스라엘대사는 1972.6.20. 외무부를 방문, 텔아비브 공항 공격사건을 기화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공격이 전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데 대비하여 약 2개월마다 한국 항구에 기항하게 될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보안 조치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조를 요청함.

### 3.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가 1974.2.11. 벤 요한난 주한 이스라엘대사를 면담함.

- ※ 제4차 중동전쟁(1973.10월) 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군사격리협정을 체결하고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를 이집트에 반환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외상은 한국 외무부장관에게 동 협정에 관한 서한을 보냄.
- ※ 이스라엘 대사는 이집트와의 철수 철차 협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1973년도 17명의 한국인이 이스라엘에서 개최된 세미나 또는 훈련에 참석하는데 비해 1974년도에는 참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서 이람에 대한 고려 때문에 한국 · 이스라엘 관계가 이렇게까지 소원해질 필요는 없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김 차관보는 북한의 악선전 때문에 한국 정부가 융통성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이며, 세미나 참석 등을 불허한 바는 없다고 언급함.

## 일본 언론의 반한기사 게재 및 왜곡 보도

| 74-0136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동북아1
MF번호	C-70 / 22 / 1~63p

일본 주간지인 겐다이노메 1974.12월호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정부 인사에 대한 재판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이에는 일본 대학생 2명에 대한 군사 재판, 김지하 재판 등이 포함됨.

# 일본 좌익단체의 주일본공관 앞 시위 및 난입 사건

| 74-013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70 / 23 / 1~42p

1974년도 일본 좌익단체들의 일본 주재 한국공관 앞 시위 및 난입사건에 관한 내용임.

## 1. 주일본대사관 공보관 난입(3.6.)

- ※ 일본 극좌 폭력단체인 제4 인터내셔널 소속 회원들인 법정대학 및 와세다대학 학생 4~50명이 주일본대사관 공보관에 난입하여 항의문을 제출하는 등 큰 소란을 피우다 돌아감.
- ※ 외무부는 3.7. 주일본대사관에 적절한 방법으로 일본 정부에 항의하도록 지시함.
- ※ 일본 경찰은 배후 조사 결과를 대사관에 알려주는 한편, 사전에 이를 방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사과를 표명 하면서 보안강화를 약속함.

## 2. 주일본공관 앞 시위

- ※ 주일본대사관 및 공보관 앞 시위(4.5.~26.)
  - 일본 좌익계 학생들이 한국 정부의 긴급조치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
- ※ 주오사카총영사관 앞 시위(4.19.)
  - 좌익계 학생 140여명이 시위
- ※ 주센다이총영사관 앞 시위(4.19.)
  - 약 15명의 학생이 시위
- ※ 주요코하마총영사관 앞 시위(10.11.)
  - 좌익 학생 19명이 공관에 진입하여 항의문을 뿌린 후 공관 앞에서 시위

## 3. 한국 정부의 보안 강화 조치

- ※ 한국 정부는 일본 적군파가 아랍 테러단과의 협력 하에 주일본 한국공관, 기관, 선박 등을 공격하기 위하여 6개팀을 편성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4.20. 긴급하게 주일본대사관에 이를 통보하면서 자체경비 대책수립 및 일본 당국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을 지시함.



# 한국항공기의 일본 영공 침범 문제

| 74-013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70 / 24 / 1~16p

1. 주일본 대사관은 1974.1.30. 외무부에 일본 외무성이 대사관 관계자에게 한국 공군 편팀기 1대가 1.26. 일본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 및 경위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보고함.

- ※ 한국 공군기가 대만(구 자유중국)에서 제주도 방향으로 비행 중 규슈지역 일본 영공을 통과함.
- ※ 1.29. 한국대사관 무관이 일본 항공 자위대 본부를 방문하여 비공식적으로 침범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함.
- ※ 일본 외무성은 외교채널을 통한 공식 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외무성에 초치하여 통보함.
- ※ 일본 측으로서는 동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문제화할 의향은 없음.

2. 한국 국방부가 1974.2.5. 외무부에 동 사건이 대만 정비장에서 정비를 받은 공군기가 대구 기지로 귀환 비행 중 항법 보조 장치 및 방위지시 계기의 결함과 조종사의 목측 항법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통보함에 따라, 외무부는 2.8. 주일본대사관에 사건 경위 설명과 함께 한국 정부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일본 외무성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 한·일본 정무일반

| 74-013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70 / 25 / 1~166p

1974년도 한·일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관한 내용임.

## 1. 서울 주재 일본 언론에 대한 규제 문제

- ※ 주한 일본대사는 1.12. 외무부차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긴급조치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국내 문제이지만 한국 주재 일본 기자들에게 동 조치가 적용될 우려를 표명하면서 외국 기자에게 보편적으로 허용되는 보도자유 보장을 요청함. 이에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대사관 관계자에게 일본 특파원들의 돌출 행동을 걱정하고 일본 언론인이 한국에서 처벌될 경우의 외교적 부담을 우려함.
- 1.19. 일본대사는 외무부차관을 다시 면담하고 1.18. 문공부에서의 일본 기자에 대한 설명회 결과 (유언비어 전달 처벌)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체포 구금 자제를 요청함.
- 1.28. 일본 외무성 정보문화국장 주일대사관 공사에게 일본 특파원에 대한 긴급조치 적용에 있어 신중한 배려와 신체상의 위협가능성에 대비한 신변보호를 요청함.

## 2. 다나카 일본 수상의 한국 관계 발언

- ※ 다나카 수상이 1.24. 일본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의 예를 들면서 일본의 구식민 통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외무부장관은 1.29.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엄중 항의함.
- ※ 다나카 수상은 기자들에게 자신의 본의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며, 관방장관도 1.29. 기자회견을 열어 오해임을 해명함.
- ※ 다나카 수상은 2.1. 중의원에서 과거의 역사는 사실로서 논평을 할 입장이 아니라고 언급한데 대하여 외무부장관은 2.4.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해명을 요구함.
- 주한 일본대사는 2.6. 외무부장관에게 일본 수상의 발언은 과거 불행에 대한 반성의 뜻이라고 해명

## 3. 동경교육대학 부속고등학교 입시문제 왜곡 출제

- ※ 2월에 시행된 동경교육대학 부속고등학교 입시문제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찬양하고 한국을 비방하는 내용의 시험문제가 출제된 것이 밝혀지자, 외무부는 5.2.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여 시험문제지의 제공과 일본 정부의 필요조치 등을 요구함.

## 4. 주교베총영사관 건물 낙서 및 국기 모독 사건

- ※ 주교베총영사관은 9.21. 동 총영사관 건물 앞 벽에 “반 박”이라는 낙서와 오물통에 버린 태극기를 발견하여 이를 일본 경찰에 신고함.
- ※ 외무부 아주국장은 9.24.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하여 범죄자 처벌 등을 요구함.
- ※ 일본 외무성은 10.9.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함.

# 한·일본 간 해저전선 분할에 관한 회의개최 계획

| 74-0140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동북아1
MF번호	C-70 / 26 / 1~20p

## 1. 한·일본 간 현안 문제 중의 하나인 해저케이블 문제해결을 위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 체신담당 실무 대표단은 제1차 비공식 실무자 회의를 1974.2.20. 동경에서 개최함.

※ 한국 측은 제2차 회의 개최를 수차례 일본 측에 제안하였으나 일본 측은 구체적 성과 전망이 없는 회의 개최에 대해 유보적 입장 견지

## 2.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설한 11개의 해저 케이블에 대한 소유권 분할 및 사용 요금 정산 문제에 관하여 양국이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여 미해결 상태가 지속됨.

※ 한국과 일본 양국간에 유선 통신 수단으로 사용되던 스켓타 시설이 1975년 말까지 전 용량 소진될 전망이어서 한국 정부는 새로운 전선 매설을 위해서는 기존 전선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

## 한·레바논 정무 일반

| 74-014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중동담당관
MF번호	C-70 / 27 / 1~13p

1. 한국 정부의 친아랍 정책 선언(1973.12월)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주재 북한대표부의 선전공세로 인하여 아랍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레바논 언론들이 한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보도함.

2. 레바논 외무성 차관보는 1974.1.29. 주레바논통상대표부 공사를 초치하여 한국이 1973.12월 공군 조종사를 이스라엘에 파견하였다는 시리아 정부의 정보를 확인하여 아랍연맹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 하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추진 중인 양국 수교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함.

182

※ 주레바논통상대표부 공사가 이것은 북한의 허위 선전이라는 점을 아랍연맹에 통고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하여 동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공식 문서로 이를 해명해 줄 것을 제안함.

※ 주레바논통상대표부는 문서 작성에 관한 외무부의 지시를 청훈하면서 동 사실을 주변 아랍국가들에게도 알려줄 것을 건의함.

- 국방부는 2.1. 이스라엘에 조종사를 파견한 사실이 없음을 외무부에 통보

## 한·라이베리아 정무 일반

| 74-0142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70 / 28 / 1~15p

1. 1973년도 북한 대표단의 라이베리아 방문에 이어 1973.12.20. 평양 방송이 라이베리아와 북한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원칙 합의가 있었음을 보도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자, 주라이베리아 대사관은 1974.3.8. 외무부에 라이베리아에 대한 의사 증파 시기 통보, 라이베리아 외상에 대한 서훈 문제 등을 건의함.
2.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은 1974.3.21. 라이베리아에서의 외교력 강화를 위한 친한 세력 육성 대책을 외무부에 보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함.
3.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974.3.22. 롬버트 라이베리아 대통령을 예방하여 6.25 전쟁 시 라이베리아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라이베리아의 북한과의 수교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동 대통령은 호혜 평등, 내정불간섭 원칙에 입각한 라이베리아의 문호개방 정책을 설명함.
4.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974.5.21. 데니스 라이베리아 외상을 면담한바, 동 외상은 OAU(아프리카통일 기구)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 반대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제의가 없었음을 언급함.

## 한 · 파키스탄 정무 일반

| 74-014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70 / 29 / 1~5p

주파키스탄대사가 1974.12월 신임 파키스탄 상무장관과 법무장관 면담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1. Mir Afzal Khan 상무장관 면담(12.2.)

- ※ 주파키스탄대사는 1972년 상공부장관이 파키스탄 상무장관을 방한 초청하였음을 상기 시키면서 Khan 장관의 방한을 제의함.
- ※ 또한 주파키스탄대사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수출신장 현황을 파악하고 양국간 교역증대를 위하여 파키스탄 관·민 통상사절단의 방한 필요성을 강조함.

184

### 2. Malik Meraj Khalid 법무장관 겸 의회담당장관 면담(12.12.)

- ※ 주파키스탄대사가 한국 경제성장 현황 및 북한의 비무장지대 땅굴 건설 등 호전성을 설명하면서 Khalid 장관의 방한을 요청한데 대하여 동 장관은 긍정적 반응을 보임.
- ※ 파키스탄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며 차기 제9차 아시아경기대회 연합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동 장관은 주파키스탄대사에게 차기 대회 준비를 위한 스포츠 각 분야 간행물 제공을 요청함.

# 한·스웨덴 정무 일반

| 74-014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복구담당관
MF번호	C-70 / 30 / 1~19p, Re-22 / 35 / 1~4p

1. 공관장회의 참석차 스웨덴에 일시 귀국한 Gunnar Heckscher 주한 스웨덴대사는 1974.9.6. 주스웨덴 한국대사를 면담하고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한국의 사형제도, 스웨덴 중립국 감시위원단원 철수 문제, 주중국 스웨덴대사의 한국정세 관찰 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한바, Heckscher 대사의 언급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남북한 간 대화를 통한 한국문제 해결이라는 스웨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 ※ Socialist International의 강한 어필로 Palme 스웨덴 수상이 한국 대통령에게 전문을 보냈는바, 한국 정부가 비상조치법 위반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감형하여 줄 것을 바람.
- ※ 중립국 감시위원단원은 결국 철수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계획이 없음.
- ※ 북한 김일성은 자신이 남한에서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월남식의 공산정권이 수립된다는 자신들의 선전에 사로잡혀 있으나, 전면적 침략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봄.
- ※ 중국·소련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는 한국의 대동구권 접촉은 큰 성공을 보기 어려움.

2. Heckscher 주한 스웨덴대사는 1974.10.7. 외무부차관을 면담하여 비상조치법 위반자 사형 구형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 동 대사는 Palme 스웨덴 수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비상조치법 위반자 사형구형에 대한 감형 호소 전문을 보낸 것과 관련하여 한국의 친구로서 우려를 표명하며 당사자들이 사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 ※ 외무부차관은 한국에서의 종교의 자유와 정치적 행위는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함.
- ※ 외무부차관은 동 대사와 주한 외국인 철수 및 유엔사 해체 문제, 김대중 사건 및 한·일본 관계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 한·토고 정무 일반

| 74-014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C-70 / 32 / 1~54p

### 1. Eyadema 토고 대통령이 탑승한 군용 항공기가 1974.1.24. 지방 공항 활주로에서 사고를 당하여 동 대통령이 경상을 입고 수행원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

- ※ 동 대통령은 1.25. 대국민 녹음방송에서 경제적 독립을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토고 정부는 토고 인광석 국유화(프랑스 기업 소유)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동 사건 개입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함.
- ※ 주토고대사관이 1.26. 사고 발생을 외무부에 보고함에 따라, 외무부는 당일 대통령 명의로 위로전문을 토고 측에 발송함.
- ※ 주토고대사관은 2.29. 동 사건을 기화로 1인 독재체제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동 대통령이 친서방에서 좌경 비동맹 중립정책으로 전환할 것이 우려됨을 외무부에 보고함.

186

### 2. Eyadema 대통령이 1974.9월 중국(구 중공)과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주토고대사대리는 7.1. 토고 외상을 예방함.

- ※ 동 예방 시 주토고대사대리가 토고 외상으로부터 동 정보를 확인하고 동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건의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하여, 동 외상은 부정적으로 답변함.

### 3. 외무부는 1974.7.2. 주토고대사대리에게 Eyadema 대통령을 예방하고, 동 대통령이 남북한을 동시 방문하도록 정식 초청할 것을 지시함.

- ※ 주토고대사대리는 7.3. 동 대통령을 예방하고, 6·23 선언, 주한 유엔군 문제 등에 관한 한국 입장을 설명한 후 토고 외상의 방한 초청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동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한국도 방문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외무부의 훈령은 시차로 인하여 주토고대사대리의 대통령 예방 후에 대사관에 도달)



# 미국 하원 한국 관계 청문회. 전6권 (V.1 기본대책)

| 74-014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70 / 34 / 1~249p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시아·태평양문제소위원회와 국제기구 및 활동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탄압 문제를 주제로 2차례(1974.7.30. 및 8.5.) 개최한 청문회 관련 내용임.

## 1. 주미국대사는 1974.7.18. Sneider 국무부 부차관보로부터 미국 하원이 한국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7.30. 개최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 미국 언론의 비판적 보도(워싱턴포스트지의 민청련 학생들에 대한 고문 보도) 및 Reischauer 교수 등 일부 학자들의 청문회 개최 주장과 국제기구 및 활동소위원회 위원장인 Frazer 의원의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동 청문회 개최의 배경이라고 설명함.
- ✪ 동 청문회는 대외군원 심의와 연결되어 있어 동 의원은 한국과 칠레에 대한 군원 삭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 주미국 대사는 7.19. Lord 국무부 정책실장 및 Sneider 부차관보로부터 미국 정부의 내정불간섭 원칙과 남북 대치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동 청문회에 대한 주미국대사관의 대처 계획을 외무부에 보고함.

## 2. 외무부는 수시로 주미국대사관에 대책을 지시하고 미국 의회가 1974.7.17. 국무부에 보낸 청문회 관련 질의서를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수하여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 외무부는 동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미 국무부의 답변서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7.23.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달함.
- ✪ 외무부는 한국과 미국 학계 인사 및 경제계 인사들의 지원을 요청하고, 주미국대사관은 미국 국회의원들과 접촉하여 한국 입장을 설명하면서 지원을 요청함.
  - 주미국대사는 7.29. Frazer 의원과 면담하고 한국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동 의원은 한국의 방위가 미국이나 일본의 안보에 큰 이익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을 주장함.
  - 주미국대사관은 7.29. 청문회 관계 의원 및 하원 외교위원회 의원 전원에게 한국 측 입장 설명자료를 배포함.

# 미국 하원 한국 관계 청문회. 전6권 (V.2 서한 발송)

| 74-014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70 / 35 / 1~195p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시아·태평양문제소위원회와 국제기구 및 활동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탄압 문제를 주제로 2차례(1974.7.30. 및 8.5.) 개최한 청문회와 관련된 내용임.

## 1. 외무부는 미국의 정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종교계의 주요인사 923명에 대하여 외무부장관 및 외무부 간부, 경제기획원장관 등의 명의로 서한을 발송함.

- ※ 외무부장관은 73명의 미국 국회의원에게 서한 발송
- ※ 외무부는 1974.7.30. 미국 내 명예총영사 및 영사들이 출신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화 또는 서신으로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에 대한 군원 식감/중단에 관한 수정안을 지지하는데 협조하여 주도록 조치하라고 주미국대사관에 지시

## 2. 동 청문회 전후로 외무부는 한국 정부 입장에 동조적이었던 미국 국회의원에 대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외무부장관의 감사서한을 발송함.

# 미국 하원 한국 관계 청문회 전6권 (V.4 1차 청문회 II: 연설문 및 회의록)

| 74-014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70 / 37 / 1~274p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시아·태평양문제소위원회와 국제기구 및 활동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탄압 문제를 주제로 1974.7.30. 개최한 청문회에서의 발언 내용임.

1. Frazer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탄압이 한반도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원조는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고 실질적으로도 불건전하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는 북한의 침략 위협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대국민 탄압 능력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함.

※ Broomfield 의원이 청문회의 균형 있는 진행을 위하여 한국대사관에서 제공한 설명 자료도 의회 기록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여 의회 절차법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 벌어짐.

2. 미국 정부 측 증인으로 Arthur W. Hummel, JR 국무부 차관보대리와 Morto I. Abramowitz 국방부 동야태차관보의 증언이 있었음.

※ 동 차관보대리는 미국 정부의 인권에 대한 입장은 확실하나 그 이행에는 한계가 있으며 키신저 장관도 극단적 정책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한국 인권 문제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북한의 위협이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고 주장
- 미국의 군사원조를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
- 미국은 한국 측에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

※ 동 차관보는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은 한반도에서의 균형을 통하여 전쟁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남북한 및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변화를 통하여 한반도에서의 적대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함.

-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자구방위를 위한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이 진행 중이며 미국의 원조는 이러한 노력이 중요한 결실을 맺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

3. Amnesty International을 대표하여 증언한 변호사 William Butler는 1972년 유신헌법이 한국의 인권 탄압의 배경이 됨을 증언하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한국에 대한 지원 중단을 촉구함.

4. Edwin Reischauer 전 주일본 미국대사 등은 한국의 유신헌법이 한국에서 매우 위험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염려를 가지고 그 위험을 경고하여 왔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 국민들은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하여 한국민의 인권을 희생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함.

# 미국 하원 한국 관계 청문회. 전6권 (V.6 홍보자료)

| 74-014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71 / 2 / 1~302p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시아·태평양문제소위원회와 국제기구 및 활동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탄압 문제를 주제로 2차례(1974.7.30. 및 8.5.) 개최한 청문회와 관련된 내용임.

## 1. 외무부는 동 청문회에 대비하여 1974.7.23.~29. 주미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송부함.

- ※ '전국민주청년총연맹의 국가변란기도 사건 전모'에 관한 비상군법회의 발간 자료
- ※ 한국 상황과 북한 현황에 관한 자료
- ※ 미국 의회가 미 국무부에 보낸 질의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작성한 답변 자료

## 2. 외무부는 1974.7.29. 긴급조치 및 민청학련 사건 등에 관한 영문 홍보자료를 전 재외공관에 배포하고 이를 홍보활동에 참고하라고 지시함.

- ※ Information Materials: The Case of National Federation of Democratic Youths and Students
- ※ A Statement on the Current Korean Situation
- ※ Reference Material on Some Questions about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 3. 한국 비상군법회의 대변인인 국방부 법무담당관이 1974.7.26. 워싱턴포스트지 특파원과 면담을 가짐.

- ※ 동 특파원은 군사재판에 회부된 피고인들에 대한 전기고문설, 피고자 면담, 재판 진행 등에 관하여 대변인에게 질의

# 한·미국 정무 일반

| 74-015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71 / 3 / 1-44p

미 육군이 간행한 한국 지도의 지명 색인 오류 정정과 한국 경찰 요원의 미국 평화봉사단 감시 미행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내용임.

## 1. 미 육군 간행 지도의 영유권 표기 오류 정정

- ※ 외교부는 1974.3.19. 주미국대사에게 미 육군이 1972.11월 간행한 한국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함에 대해 시정 조치를 교섭하라고 지시함.
- 주미국대사는 4.2. 명칭 오기에 관해 미 국방부 한국과에 정정을 요청하고 측지사령부에 서한을 발송 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
- 주미국대사는 4.16. 미 국무부에 동 건을 제기하도록 요청하는 측지사령부의 회신을 접수했음을 외무부에 보고

## 2. 미국 평화봉사단 감시 미행에 대한 시정 조치

- ※ Ericson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은 1974.4.19. 외무부차관을 예방하여 한국 경찰의 평화봉사단 감시에 대한 항의를 제기함.
- 한국 경찰 요원의 봉사단 주위 배회, 한국인 고용원에게 봉사단 활동·교제 범위에 대한 문의, 단원 사진 및 명부 등 자료 요청으로 봉사단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언급함.
- 주한 미국대사가 봉사단원들에게 한국법 존중, 국내정치활동 불개입 등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봉사단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조치하여 주기를 희망
- 이에 대해 외무부차관은 한국이 평화봉사단협정을 준수하고 봉사단 활동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면서 봉사단에 대한 접근이나 질문이 있을 경우 이는 한국의 안보를 고려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기를 요망함.
- ※ 주미국대사는 미 국무부가 평화봉사단에 관한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적절한 시정 조치가 취하여 질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답변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5.3. 외무부에 보고함.
-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5.8. 주한 미국대사관이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는 내용의 미 국무부 공식입장을 표명함.

# 소진철 주싱가포르총영사 관할국 브루나이 출장, 1974.12.21.-23.

| 74-015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71 / 4 / 1~12p

소진철 주싱가포르총영사는 1974.12.21.~23. 관할국 브루나이를 방문함.

## 1. 주요 일정

- ※ 12.21. 브루나이 도착, 교민회 사무실 방문 및 교민 초청 만찬
- ※ 12.22. 브루나이 교민 가정 방문, 교민 자녀 결혼식 참석, 대림산업 천연가스 액화공장 건설현장 시찰, 교민 리셉션 주최
- ※ 12.23. 전 수석장관 면담

192

## 2. 브루나이 교민 현황

- ※ 63세대 총 215명 거주
- ※ 1966년 이후 초기에는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1972년도 이후 생활기반 구축

## 3. 브루나이 경제

- ※ 국민총생산의 80% 이상을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점유
- ※ 1974.10월 5개년 경제개발계획 발표

## 4. 홍보 활동

- ※ 교민회에 극영화 '갑돌이와 갑순이' 전달(추후 상영 예정)
- ※ 향후 교민사회에 영화 및 홍보자료 송부 계획

## 5. 건의사항

- ※ 5년 이상 거주한 교민에 대한 교포여권 발급

## Gonzalez Barros, Luis 일본상주 주한 콜롬비아 대사 방한, 1974.4.14.-17.

| 74-0152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의전/중남미
MF번호	C-71 / 5 / 1~11p

Luis Gonzalez Barros 주한 콜롬비아대사(동경 상주)는 1974.4.14.~17. 이임 인사차 방한함.

1. 주일본대사는 주벨기에 콜롬비아대사로 전임 예정인 주한 콜롬비아대사가 이임 인사차 1974.4.14.~17. 방한하여 대통령 예방 등을 희망한다고 보고함.
2. 외무부는 Gonzalez 대사의 대통령 예방 일정을 확정할 수 없다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동 대사에게 통보하도록 주일본대사에게 지시함.
3. 주콜롬비아대사는 Gonzalez 대사의 재임 기간은 짧으나 주요 인사의 방문 추진, 상호 정보교환 등 공적이 있으므로 동 대사에 대한 수교훈장 수여를 건의함.

# Mohsen Abdel Khalek 주일본 이집트대사 비공식 방한, 1974.3.24.-31.

| 74-015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71 / 6 / 1~150p

Mohsen Abdel Khalek 주일본 이집트대사가 1974.3.24.~31. 방한함.

## 1. 방한 경위

- ※ 1974.2.7. Khalek 대사가 윤하정 주일본 공사 면담 시 방한 희망 표명
- ※ 1974.2.26. 방한 초청장 전달

194

## 2. 방한 일정

- ※ 3.25.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및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 3.26.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차관 예방 및 무역업계 대표 간담회
- ※ 3.27.~28. 울산, 포항 공업지구 시찰
- ※ 3.29. 외무부차관 면담, 부총리 주최 만찬

## 3. 주요인사 면담 시 의제

- ※ 주카이로총영사관의 대사관 승격
- ※ 주한 이집트 상주공관 설치
- ※ 아랍권 국가와의 협력관계 증진
- ※ 스위즈 운하 복구공사 등 전후 재건사업 참여
- ※ 문화·예술분야 교류 추진

## 4. 방한 결과

- ※ 양국간 수교를 위한 협력
- ※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조사단 파견



# Hasan Bukres 주일본 리비아대사 방한, 1974.7.23.-27.

| 74-015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71 / 8 / 1~138p

Hasan Bukres 주일본 리비아대사가 1974.7.23.~27. 방한함.

## 1. 방한 경위

- ※ 1974.3.30. 윤하정 주일본 공사가 Bukres 대사를 예방, 방한 권유
- ※ 1974.6.26. 동 대사가 7월 중 비공식 방한 희망
- ※ 1974.7.6. 방한 초청장 전달

## 2. 방한 일정

- ※ 7.23. 외무부장관 및 차관 예방
- ※ 7.24. 상공부장관 및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이슬람협회 간부 면담,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 7.25. 현대조선소, 석유화학 및 정유공장 시찰
- ※ 7.26. 국무총리 및 건설부차관 예방, 상공회의소회장 주최 만찬

## 3. 주요인사 면담 시 Bukres 대사 언급 내용

- ※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경탄 표명
- ※ 양국간 관계개선, 경제기술협력 증대를 본국에 강력 건의
- ※ 양국간 물적·인적 교류를 통한 관계증진 필요성 강조
- ※ 리비아 경제건설에 대한 한국의 지원 요망

# 김동성 주아르헨티나대사 겸임국 파라과이 출장

| 74-015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71 / 9 / 1~49p

김동성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74년 중 두차례 겸임국 파라과이를 방문함.

## 1. 1차 방문(5.13.~17.)

### ※ 주요 일정

- 5.13. 교민회 간부 면담 및 오찬, 파라과이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
- 5.14. 교민 탁구대회 등 행사 참석
- 5.15. 칠레 대통령 알현식, 칠레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
- 5.16. 파라과이 외무부 총국장 면담 및 문화협정 서명, 농림장관 등 면담

### ※ 주요 논의사항

- 주파라과이 상주공관 설치 문제
-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 문화협정 서명
- 교민회관 건립 문제

### ※ 건의 사항

- 내년 상반기 중 상주공관 설치
- 교민회관 건립 자금 일부 지원

## 2. 2차 방문(8.14.~16.)

### ※ 주요 일정

- 8.14. 파라과이 외무장관 예방
- 8.15. 파라과이 국경일 행사 및 교민회 주관 광복절 행사 참석

### ※ 주요 논의사항

- 파라과이 외무장관 방한 일정
-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 문화협정 비준서 교환
- 교민사회 지원

# 동구권 외교관 직접 접촉

| 74-015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구
MF번호	C-71 / 10 / 1~19p

재외공관에서의 동구권 외교관 접촉 활동에 관한 내용임.

## 1. 주콜롬비아대사관의 활동

- ※ 주콜롬비아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대사가 1973.11.28. 주콜롬비아대사 주최 리셉션에 참석함.
  - 세르비아대사는 주콜롬비아대사의 양국 관계 증진 희망을 본부에 보고하여 협조하겠다는 반응을 보임.
- ※ 주콜롬비아대사는 제3국 공관장 주최 행사에서 동구권 대사들과 접촉함.
  - 소련 대사는 악수 이외 그 이상의 대화는 기피함.
  -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대사 등과는 IPU(국제의원연맹), 경제·문화 관계 증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2. 주랑군총영사관의 활동

- ※ 1974.1.24. 이문수 총영사 등 총영사관 직원들은 미국대사관 직원 사택에서 개최된 랑군 외교단탁구대회에 참가함.
  - 당초 소련대사관 문화원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건물수리 관계로 장소가 변경됨.
- ※ 주랑군총영사관팀은 태평양조에 편성되어 동구 공산권조(소련,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와 경기를 가짐.
  - 동 경기를 계기로 공산권팀과 비정치적인 사교적 의견을 교환함.

## 3. 주이태리대사관의 활동

- ※ 체육 및 문화행사 참가 및 경제관계 교섭을 위해 실무차원에서 접촉함.
  - 소련 개최 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를 위하여 소련대사관 문정관과 교섭함(1973.8~9월).
- ※ 체코 플랜트 수입을 위하여 체코대사관 공사 및 경제참사관과 접촉함(1974.2~4월).
- ※ 체코 Brno 박람회 참관단 파견을 위하여 체코대사관과 교섭하였으나 최종단계에서 비자 발급이 실현되지 못함.
- ※ 폴란드 선박 도입을 위하여 폴란드대사관 상무관과 접촉함(1974.2월).

# Mulamba, Leonard 일본 상주 주한 자이르대사 방한, 1974.4.12.-16.

| 74-015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C-71 / 11 / 1~34p

Leonard Mulamba 주한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동경 상주)는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취임 축하 등을 목적으로 1974.4.12.~16. 방한함.

## 1. 주요 일정

- ※ 4.12. 노신영 외무부차관 예방
- ※ 4.13. 김동조 외무부장관 예방

198

## 2. 주요 면담내용

- ※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973년말 콩고민주공화국 외상의 방한을 언급하고, 본인은 1974.5월 중순 아비장에서 개최되는 공관장회의 후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계획임을 언급함.
  - 이에 대해 Mulamba 대사는 김 장관의 방문을 고대하며 양국간 우호관계 및 경제협력 증진을 희망
- ※ 노신영 외무부차관은 동 대사의 방한을 환영하고, 본인이 뉴델리총영사로 재임 시 방한 후 귀로에 있던 콩고민주공화국 외상을 면담한 바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이 북한 측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믿기지 않았으나 이후 원만하게 타협되었던 적이 있음을 지적함.
  - 이에 대해 동 대사는 1972년 초대 주한대사로 부임한 이래 3개월 마다 방한하여 한국의 입장과 실정을 본국에 보고하는 등 양국 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음을 설명하고 동 외상의 지난해 방한도 자신의 설득에 힘입어 북한 방문에 앞서 실현되었음을 강조

## 호주 · 소련 관계

| 74-0158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특수지역
MF번호	C-71 / 12 / 1~17p

본 문서철에는 호주 · 소련 관계와 관련된 호주 외무부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 1. 호주 · 소련 간 외교관계 일지

- ✿ 1929년 외교적 승인
- ✿ 1943년 공사관 설치
- ✿ 1946년 대사관 승격
- ✿ 1954~59년간 외교관계 단절
  - '페트로브' 망명사건으로 단교
- ✿ 1959년 외교관계 재개
  - 캔버라 개최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총회 계기

### 2. 양국 관계 현황

- ✿ 정치, 군사면에서 소련 해군의 인도양 진출이 다소 문제로 제기되는 양상임.
- ✿ 호주의 중국 · 소련 양국에 대한 자세에 있어 중국(구 중공) 측에 기울어진다고 평가됨.
- ✿ 1974년말~75.1월 휘트람 호주 수상의 소련 방문이 추진되고 있음.

## 브라질 · 중국(구 중공) 관계

| 74-015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71 / 13 / 1~86p

1974.8월 중국(구 중공) 통상사절단의 브라질 방문과 동 방문 기간 중 발표된 중국·브라질 간 국교수립에 관련한 내용임.

### 1. 중국 통상사절단 브라질 방문(8.7.~16.)

#### ※ 사절단 구성

- 셴시에 중국 대외무역성 차관을 단장으로 국제무역진흥협회 부총재, 외교부, 대외무역부 등의 인사들로 구성

#### ※ 사절단 주요일정

- 8.7. 실베이라 외무장관, 벨로띠 상공장관,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 8.10. 산업시찰
- 8.16. 가이젤 대통령 예방

### 2. 브라질의 중국 승인 및 양국 외교관계 수립

#### ※ 브라질 외무장관과 중국 통상사절단은 1974.8.15. 브라질의 중국 승인과 양국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

- 양국은 8.15. 대사관 수준의 외교관계를 수립
- 브라질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

#### ※ 대만(구 자유중국) 정부는 8.16. 브라질의 중국 승인 및 양국 외교관계 수립에 강경하게 항의하면서 브라질과의 단교를 결정

# 미국 · 중국(구 중공) 관계에 있어서의 대만 (구 자유중국) 문제

| 74-0160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중국담당관
MF번호	C-71 / 14 / 1~34p

미국 · 중국(구 중공) 관계와 관련한 대만(구 자유중국) 문제 내용임.

## 1.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태도(1974.9.2. 주홍콩총영사 보고)

- ※ 홍콩 발간 잡지 '전망'은 중국 고위인사의 발언을 인용,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방안을 아래와 같이 게재함.
  - 중국은 스스로 대만문제를 해결함.
  - 소련의 침투를 고려, 미국의 조기 대만 철수를 주장하지 않음.
  - 무력 행사를 하지 않음.

## 2. 대만 국민당 제10회 제5차 전당대회 개최(주대만대사 보고)

- ※ 개최일자: 1974.11.24.
- ※ 장경국 행정원장 보고사항
  - 반공 부국의 국시를 관철, 중국과는 협상하지 않음.
  - 미국 · 대만 관계는 도의적인 토대 위에서 수립되어야 함.
  - 대만에 투항하는 중국 간부에 대해 자유를 보장하고 출세 기회를 부여함.
  -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함.
- ※ 분석
  - 헌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72년 유엔 축출에 따른 정세변화로 인한 내정의 동요가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외적인 경제위기 극복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3. 포드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관한 1974.12.2.자 언론 보도(주미국대사 보고)

- ※ Christian Science Monitor
  - 포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미국 · 중국 간 화해의 지속을 증명하는 것으로 국교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함.
  -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중국 측이 제시하는 조건이 정당할 경우 미국은 중국을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음.
- ※ New York Times
  - 중국이 동 대통령을 초청하였더라도 양국 관계 정상화의 합의를 본 것은 아님을 미국 고위 관리들이 언급함.
  - 중국은 미군이 대만에서 철수하기 이전이라도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 · 대만(구 자유중국) 관계

| 74-016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2/동북아1
MF번호	C-71 / 15 / 1~12p

대만(구 자유중국) · 일본 국교 단절(1972년) 후 양국 관계와 관련한 주대만대사 및 주일본대사의 보고 내용임.

## 1. 장경국 대만 행정원장의 입법원 보고(1974.2.26.)

- ※ 대만 · 일본 항공협정 문제
  - 일본이 중국(구 중공)과 항공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대만의 국위를 해치는 경우 대만은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
- ※ 대만 · 미국 관계
  - 미국이 대만에 대한 공약과 협정을 이행하는데 대해 감사함.
  - 대만은 미국과의 우호관계 지속을 위해 노력할 것임.

202

## 2. 일본 · 대만 관계에 관한 일본 언론 보도(1974.7.31. 및 8.3.)

- ※ 일본 자민당 전 중원의장이 1974.9.8.부터 1주간 대만을 방문할 예정임.
  - 대만 개최 외교문제 심포지움에 참석, 일본 · 대만 관계개선에 관한 의견 교환
  - 4.20. 일본 · 대만 항공노선 중단 이후 자민당 유력 정치인의 최초 대만 방문으로서 의의
- ※ 7월초 일본 총리부장관의 대만 방문이 일본 · 대만 항공노선의 재개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을 끌고 있음.
- ※ 기무라 신임 외상의 취임으로 일본 · 대만 항공노선 재개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음.
  - 항공노선 재개 시기 및 구체적 조치 등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

## 3. 일본 · 대만 국교단절 후 상황

- ※ 1972.9월 국교단절 후 대만에서 일본대사관 난입 사건이 발생한 사례는 없음.
- ※ 국교단절 전후에 대만에서는 소규모 시위를 비롯하여 일본상품 불매운동, 일본어 불사용, 일본군의 침략과 잔악성에 관한 영화상영 등 일본을 비난하는 활동이 전개됨.

## 4. 일본 · 대만 간 인적교류

- ※ 10.27. 데이쥬 일본 교류협회장 대만 방문
- ※ 10.31. 나카가와 의원 대만 방문
- ※ 11.1. 대만 · 일본 합작추진 위원회 주관 좌담회



# 미국 · 대만(구 자유중국) 관계

| 74-016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C-71 / 16 / 1~15p

미국 · 대만(구 자유중국) 관계와 관련한 주대만대사의 보고 내용임.

## 1. 미국 · 대만 관계 주요 인사 발언 내용

- ※ 주미국 대만대사는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미국 · 대만 간 기존관계를 유지하고 방위협정 준수를 다짐하였음을 지적, 현 정세로 보아 미국 · 중국 간 외교관계 수립 동정은 보이지 않음을 1974.1.15. 언급함.
- ※ Ingersoll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는 1974.1월 대만 방문 시 미국은 방위조약 및 우호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유지를 희망함.
  - 양국의 국제정치면에서의 다소간 견해 차이는 정상적임.

## 2. 미국 내 대만 공관 현황

- ※ 대만이 미국 내 공관 증설을 위해 노력한 결과, 주미국 대만총영사관이 10개소에서 11개소로 증가함.

## 3. 미국 상무차관 대만 방문

- ※ Tabor 상무차관이 1974.3.18. 대만에 설치되는 미국무역센터 개막식을 주최하기 위해 Gessel 상무차관보를 대동하고 대만을 방문 예정임.

## 4. 장개석 총통 미국대사 환송 만찬

- ※ 장개석 총통은 1974.4월초 이임하는 맥카나기 대사를 위한 만찬을 3.28. 주최함.

## 5. 대만 방위를 위한 미국 대통령 특별권한 중지 법안

- ※ 미국 상원외교위원회는 대만 방위를 위해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무력개입을 허용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의회결의안(1955.1.29.)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1974.4.22. 통과시킴.
  - 동 법안이 해외군사원조중단 및 군사사절단의 요원수 삭감에 관한 법안과 함께 통과됨.

## 이집트 · 중국(구 중공) 관계

| 74-0163 |

생산연도	1971-1974
생 산 과	아중동/동북아2
MF번호	C-71 / 17 / 1~11p

이집트 · 중국(구 중공) 관계와 관련한 주카이로총영사와 주홍콩총영사의 보고 내용임.

### 1. 중국 유엔대표단 이집트 도착

- ※ 차오관화 중국 외교차관을 대표로 하는 중국 유엔대표단 일행(3명)이 1971.11.10. 카이로에 도착함.
- ※ 동 대표단은 카이로 국제공항 도착 시 이집트 고위층의 영접을 받고 중동분쟁에 관한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의 노선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함.

204

### 2. 이집트 외무장관 중국 방문

- ※ Zayat 외무장관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1972.1.21.부터 6일간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 중동 사태 등에 관하여 협의함.
- 동 방문은 이집트 외무장관의 첫번째 중국 방문으로서 의의가 있음.

# 일본 · 중국(구 중공) 관계

| 74-0164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동북아1/조약
MF번호	C-71 / 18 / 1~430p

일본 · 중국(구 중공) 관계와 관련한 내용임.

## 1. 오히라 일본 외상의 중국 방문(1974.12.~6)

### ※ 방중 경위

- 1973.4월 오히라 외상이 중국 외상 앞 서한을 통해 상호방문 제의
- 1973.9월 중국 측 회신

### ※ 주요 일정

- 1.4. 회봉비 외상 및 주은래 총리와 회담
- 1.5. 모택동 주석 예방, 회봉비 외상 및 주은래 총리와 회담, 오히라 외상 주최 만찬 및 양국 외상 간 무역협정 서명식
- 1.6. 회봉비 외상과 회담

### ※ 회담 내용

- 아시아, 중동문제 등 국제정세 논의
- 양국 관계의 진전에 만족 표명
- 일·중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선린우호관계의 발전 기대

### ※ 방문 성과

- 무역협정 조인
- 항공협정 교섭
- 기자교환 확대에 관한 각서교환
- 어업 · 해운협정 등에 관한 실무 협의

### ※ 한국 관련 사항

- 오히라 외상이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을 설명하고 남북대화 진전을 지지한다고 언급한데 대해 중국 측은 이를 양해하는 태도를 보임.
- 일본 측이 중국의 한국 승인을 권고한데 대해 중국 측은 승인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언급함.

## 2. 항공협정

### ※ 협상 경위

- 1973.3월(1차) 및 4월(2차) 예비교섭과 수차례의 정치적 절충을 거침.
- 1974.4.11. 최종 교섭을 개시하여 4.18. 타결함.

### ※ 서명

- 1974.4.20. 베이징에서 중국 외상과 주중국 일본대사가 서명함.

### ※ 내용

- 전문, 본문 19개조 및 부속서로 구성됨.

## 파키스탄 · 중국(구 중공) 관계

| 74-0165 |

생산연도	1970
생 산 과	서남아/동북아2
MF번호	C-71 / 20 / 1~23p

파키스탄 · 중국(구 중공) 관계와 관련한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의 보고 내용임.

### 1. 중국 사절단 파키스탄 방문

- ※ 중국 인민군 참모차장이 이끄는 군사친선사절단이 1974.1.6.~17. 파키스탄을 방문함.
  - 부토 수상 등 고위급 인사 면담
  - 무기공장,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 시찰

206

### 2. 부토 파키스탄 수상 중국 방문

- ※ 부토 수상은 1974.4.19. 기자회견에서 5월 초순 중국을 방문할 계획임을 발표함.
  - 동 방중 시 중국의 방글라데시 승인문제, 인도와의 관계 정상화, 인도양 진출문제,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
- ※ 동 수상은 주은래 중국 총리 초청으로 1974.5.11.~14.간 중국을 방문함.
- ※ 주요 방문 목적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분석됨.
  - 인도·파키스탄 전쟁 사후처리를 위한 중국의 지원에 사의 표명
  - 중국으로부터의 군사 및 경제원조 요청

## 중국(구 중공) · 토고 관계

| 74-0166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71 / 21 / 1~15p

중국(구 중공) · 토고 관계와 관련한 주토고대사의 보고 내용임.

### 1. 중국의 대토고 원조

- ✿ 중국 · 토고 경제기술협력협정
  - 1972.9월 서명
  - 1974.3.24. 발효
  - 440만 달러의 장기 무이자차관 공여
  - 1974년 중 50만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 제공
  - 연불 수출방식의 원조 제공으로 토고의 생필품 시장 석권
- ✿ 중국 농경단 파견
  - 53명의 중국 농경단이 파견되어 쌀, 채소 재배, 트랙운전 교육 등에 종사
- ✿ 의료단 파견
  - 5명의 의료진 토고 방문 중
  - 1974.4.20. 중국 의사 파견 협정 서명

### 2. 중국의 수리사업조사단 파견 제의

- ✿ 주토고 중국대사는 1973.12.21. 수리사업 및 수력전기 조사단 파견을 토고 측에 제의
- ✿ 토고 외무장관은 1974.2.1. 동 제안을 수락

## 태국 · 중국(구 중공) 관계

| 74-016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2/동북아2
MF번호	C-71 / 22 / 1~32p

태국 · 중국(구 중공) 관계와 관련한 주태국대사의 보고 내용임.

1. 태국 The Nation지는 1974.1.22. Dawee 태국 국방상이 태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1974. 2.7.부터 1주일간 북경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2. Bangkok Post지는 1974.1.27. 차차이 태국 부외상은 최근 대중국 관계와 관련해 1974년말 이전 Semi-Governmental 관계를 향해 움직일 것이고 태국과 중국은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고 언급했음을 보도함.
3. Dawee 국방상은 태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1974.2.8.~15.간 중국을 방문, 2.12. 주은래 중국 총리 등과 회담을 개최함.  
\* 동 장관은 북경에서 중국과의 관계수립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단계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나, 다음 단계가 어떤 것인지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중국 지도자들과는 주로 체육 분야를 협의하였음을 언급함.
4.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관영통신 Tanjug는 1974.2.16. 중국이 최근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과 접촉을 시작하여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북경발로 보도함.

## 중국(구 중공) · 소련 관계

| 74-016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2/구주2
MF번호	C-71 / 23 / 1~207p

1. 뉴욕타임즈는 1974.1.3. 소련 외교문제 월간지 Mezuduharodnaya Zhizbi가 중국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도함.

※ 동 월간지는 중국이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자 대만(구 자유중국) 영유권 주장을 양보하고 있으며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동맹국보다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접촉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난함.

2. 중국 신화통신은 1974.1.25. 여잡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주중국 소련대사를 초치, 소련 당국이 주소련 중국 외교관을 불법 감금하고 간첩으로 조작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고 보도함.

3. 중국 · 소련 분쟁과 한국의 안보에 관한 세미나가 1974.3.29. 청와대에서 개최됨.

※ 동 세미나에서는 중국 · 소련 분쟁이 중국 · 소련 전쟁으로 비화될 경우 북한은 어느 한쪽의 군사기지화하여 중립정책을 취하기 어려운 난처한 입장이 될 것이고, 중국 · 소련 화해가 될 경우 북한은 중국 · 소련 양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북한의 남침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4. 노신영 외무부차관은 1974.5.4. 정무협의회차 귀로에 방한한 John Boldridge 주중국 미국연락사무소 부소장을 면담, 중국 국내정세, 대한반도 태도, 중국 · 소련 분쟁 등에 관해 의견 교환함.

※ Boldridge 부소장은 중국 · 소련 분쟁이 심각하며 중국은 소련의 침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상황이나 가까운 장래에 소련이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 동 부소장은 중국 · 소련 분쟁에서의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신중한 입장을 보임.

5. 중국이 전세계국가들을 초강대국, 선진국 및 제3세계로 분류하면서 중국은 제3세계권에 속하며 사회주의 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데 대해 소련 Pravda는 1974.6.6. 보도에서 중국의 견해를 반박하고 중국은 제국주의자와 합작하여 소련과 투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제3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비난함.

6. 주미국대사는 1974.6.18. 외무부에 대한 보고에서 중국 · 소련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소련은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동구권 국가 중에서는 헝가리, 체코, 폴란드가 중국에 대한 공격을 적극화하고 있는데 반해 루마니아,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는 중국 · 소련의 화해를 촉구하고 있다고 함.

20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전

1974

## 미국 · 중국(구 중공) 관계

| 74-016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동북아2
MF번호	C-71 / 24 / 1~53p

1. 미 국무부는 주중국(구 중공) 미국 연락사무소를 경비하는 미 해병대원(6명)을 철수하라는 중국의 요청에 따라 1974.5월말까지 이들을 국무부 자체 경비원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1974.5.28. 발표함.  
\* 동 사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지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한다고 분석한 반면, 뉴욕 타임즈는 해병대원의 주둔에 대한 중국의 불만 표시로 판단함.
2. The National Council for United States-China Trade는 미국 상무성의 통계를 인용, 미국 · 중국 간 무역이 1974.1~4월간 4.4억 달러로 미국 · 소련 간 무역 3.4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1974년말까지 미국 · 중국 간 무역량은 1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The National Council은 1974.5월 창립 1주년 기념행사로 The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등과 공동으로 만찬회를 주최하였으며, 동 행사에 키신저 미 국무장관, 황진 연락사무소장 등이 참석함.
3. Henry Jackson 미국 상원의원은 중국 정부 초청으로 1974.7.1.~6. 중국을 방문한 후, '중국과 미국의 정책' 제하의 보고서를 미국 상원군사위원회에게 제출함.  
\* 동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만과 단교해야 할 상황이 되었으며, 중국과의 국교수립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 세계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함.
4. 중국과 북한을 1974.2~3월 방문한 교포화자는 미국이 1976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대만과 단교 하되 방위공약은 계속 준수하는 입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며, 대만은 Jackson 상원의원이 미국의 대만과의 단교 및 방위공약 준수 등을 주장한데 대해 우려와 반발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5. 주미국대사는 1974.8.29. 키신저 국무장관이 1974년말 또는 1975년초에 중국을 방문, 중국 지도부에 포드 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지속성을 재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고함.
6. 워싱턴발 AP보도에 의하면 Fulbright 미국 상원외교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의회대표단이 1974. 9.2.부터 2주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  
\* 주미국대사는 8.29. 동 대표단의 일원인 Broomfield 미국 상원의원과 오찬을 가진 바, 동 의원은 금번 중국 방문 시 중국의 대한민국 태도를 타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쿠바 · 소련 관계

| 74-0170 |

생산연도	1970-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71 / 25 / 1~22p

1. 미국은 OAS(미주기구) 평화위원회의 요청으로 1970.6.27. '카리브 지역에 대한 긴장상태를 조성하는 쿠바 정부의 미국에 대한 도발적인 행위' 제하의 각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8.5. 재차 '서반구에 있어서의 증가된 국제긴장에 대한 쿠바의 책임' 제하의 각서를 제출함.

- ※ 동 각서는 쿠바 정부와 소련, 중국(구 중공) 등 공산 진영과의 관계 및 쿠바에서의 독재정치 체제의 출현 등 2개 항목을 분석하고, 유엔헌장과 OAS 협약을 위반한 쿠바 정부에 대한 비난을 개별적으로 열거함.
- ※ 쿠바에서의 독재정치 체제의 출현 항목은 쿠바 혁명정부의 공약, 산티아고 선언 원칙을 파기한 쿠바 혁명정부, 쿠바 혁명정부의 국제문제에서의 동향 등을 포함함.

2. 리버스 미국 하원군사위원장은 소련이 쿠바의 씨엔푸에고 항구에 미사일 잠수함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는 보도에 관해 미국은 소련의 위협을 방관할 수 없으며 동 잠수함 기지를 제거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언급하였다고 주미국대사가 1971.5.4. 외무부에 보고함.

3. 쿠바를 방문 중인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74.1.30. 군중 환영대회 연설에서 쿠바는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적 기지가 아니며 또한 소련의 대쿠바 군사원조는 타국을 공격하거나 국제사태를 긴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언급하고 혁명은 선전이나 정부 전복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함.

- ※ 카스트로 쿠바 수상은 환영사를 통해 상이한 국가제도를 가진 국가 간의 평화공존이 점차 진전되어 가고 있고 쿠바는 국제긴장을 완화하고 군비경쟁을 지양하려는 소련의 노력을 적극 지지할 것임을 언급함.

## 미국 · 쿠바 관계

| 74-017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담당관/북미담당관
MF번호	C-71 / 26 / 1~33p

1. Muino 멕시코 주재 신임 쿠바대사가 1974.1.7. 미국이 12년간 지속된 대쿠바 경제봉쇄를 해제하는대로 미국과의 외교관계 재수립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용의가 있으며 봉쇄가 지속되는 한 쿠바는 절대로 협상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을 주멕시코대사가 1.8. 외무부에 보고함.

※ Vast 미 국무부 대변인은 쿠바가 미국과의 외교관계 재개를 원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미국은 이를 일축하지 않고 여러 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함.

212

2. 그로미코 소련 외상이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의 쿠바 방문 수행 후 미국을 방문, 1974.2.4.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및 닉슨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였다고 주미국대사가 2.5. 외무부에 보고함.

※ 동 회담에서는 닉슨 대통령의 연내 소련 방문 문제, SALT(전략무기제한협상), 중동 문제 및 베를린 문제 등 국제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쿠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백악관 대변인이 언급함.

3. 미국 상원외교위원회는 Javits 상원의원이 제출한 대쿠바 무역봉쇄 해제 및 관계정상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1974.4.23.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주미국대사가 4.24. 외무부에 보고함.

※ 이 결의안은 대통령을 구속할 수는 없으나 대쿠바 관계개선에 관한 의회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임.

4. Javits 상원의원과 Pell 상원의원이 1974.9.27. 쿠바 방문 예정임을 Javits 상원의원 보좌관이 언급하였음을 주미국대사가 동일 외무부에 보고함.

※ 상기 상원의원들은 쿠바 방문 시 카스트로 수상을 면담할 예정임.

## 이집트 · 리비아 관계

| 74-017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71 / 27 / 1~19p

## 1. 이집트 · 리비아 관계와 관련한 주카이로총영사의 1974.7.28. 보고 내용임.

- ✪ 1973.10월 중동 전쟁 이후 이집트와 리비아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74.4월부터 양국의 불화는 표면화되고 있음.
- 이집트 · 수단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리비아 · 수단 관계는 악화되어 아랍국가 상호 간의 불화가 노정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게 리비아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대중동 진출에 유익한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됨.

## 2. 이집트 · 리비아 관계와 관련한 주카이로총영사의 1974.8.9. 보고 내용임.

- ✪ 이집트 · 리비아 관계는 최근 더 한층 악화되고 있음.
-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카다피 리비아 대통령과 혁명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양국 간의 화해를 도모하는 성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의 이집트에 대한 비난 및 파괴행동이 지속됨.
- 이집트 측은 리비아 측의 도발적 행위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 ✪ 이집트 측은 리비아에 대한 정책 수립에 알제리 측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임.

## 3. 아랍에미리트의 중재 노력으로 이집트와 리비아의 관계개선을 위한 사다트 대통령과 카다피 대통령 간의 회담이 1974.8.17.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개최됨.

- ✪ 동 회담의 결과 발표는 없었으나 양측은 상호비방 중지 등 관계 악화 방지를 모색한 것으로 관측됨.

## 4. 수단 대통령은 1974.11.19.~20. 이집트를 방문하여 사다트 대통령과 회담한 바, 동 방문은 이집트와 리비아 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주카이로총영사가 11.21. 외무부에 보고함.

## 이집트 · 미국 관계

| 74-0173 |

생산연도	1969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71 / 29 / 1~36p

1. 이집트 무역장관이 1969.5.4. 이집트를 방문한 미국 화학공업계 대표단과 회담하여 양국간 화학품 교역증진에 관해 협의하였다고 주카이로 총영사가 외무부에 보고함.

2. 미국 백악관은 1973.11.7. 미국과 이집트가 외교 관계를 재개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양국은 1967년 중동 전쟁으로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대사관을 폐쇄한 바 있음.

214

3. 미국과 이집트는 1974.2.28. 양국간 외교관계를 재개기로 합의하였다고 공식 발표함.

※ 양국의 수도에서 동시 발표함.

4. 닉슨 미국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에 관해 주카이로총영사가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면담 인사 및 내용

-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4차례 회동
- 중동평화 문제 및 양국 관계에 관해 협의

※ 주요 합의사항

- 이집트 재정구조 강화에 대한 미국의 기여
- 미국의 대이집트 경제협력(20억 달러 이상) 고려
- 합동경제협력위원회 설립 장려
- 핵에너지 개발 협조

※ 분석 및 평가

- 미국의 각종 협력 약속은 이집트의 중동 맹주로서의 지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임.
-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이집트와의 관계 진전에도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임.

5. 화미 이집트 외상은 1974.8.12. 미국을 방문하여 포드 미국 대통령 등과 면담함.

6.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은 1974.10.9. 이집트를 방문하여 사다트 대통령 등과 회담함.

※ 동 장관은 동 대통령과 3차례에 걸친 회담을 가짐.

※ 동 장관은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순방 결과를 동 대통령에게 통보함.

## 핀란드 · 소련 관계

| 74-0174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구주
MF번호	C-71 / 30 / 1~14p

### 1. 1974.1월초 Vladimir Stepanov가 신임 주핀란드 소련대사로 부임함.

- ※ 약 10여년 전 핀란드 주재 참사관으로 재직한 바 있어 핀란드 정세에 정통한 Stepanov 대사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누어져 있는 핀란드 공산당 내분을 수습하는데 있는 것으로 탐문된다고 주핀란드 대사가 외무부에 보고함.
- 1978년 차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다고 보고함.

### 2. 소련은 '소련-핀란드' 협회 창설 30주년 기념식에 소련 최고회의 상임회의 의장인 포드고르니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 ※ 기간
  - 1974.10.14.~10.17.
- ※ 주요 일정
  - 10.14. 케코넨 핀란드 대통령과 회담
  - 10.15. 동 협회 창설 30주년 기념식 참석
  - 10.16. 소련 · 핀란드 간 에너지, 과학 및 기술협정 체결, 핀란드 공산당 지도자와 회담

### 3. 1974.11월 하순 스웨덴 일간지가 '주핀란드 소련대사의 핀란드 내정간섭' 제하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핀란드 내에서 정치적 물의와 논란이 야기됨.

- ※ 기사 요지
  - 소련대사의 배경, 소련의 핀란드 내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영향 및 핀란드 공산당 내분 분석
  - 소련대사가 핀란드 공산당 내분에 개입할 경우 친소파와 수정주의자의 결별 가능 전망
- ※ 동 사태는 핀란드 정부의 소련대사 초치 및 항의 제기와 동 신문사의 해명으로 수습되었다고 주핀란드대사가 12.10. 외무부에 보고함.

## 인도 · 소련 관계

| 74-017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남아/동구
MF번호	C-71 / 31 / 1~15p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구상에 대한 인도의 태도와 인도 · 소련 관계 등에 관한 1974년 주인도 대사의 보고 내용임.

### 1.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구상에 대한 인도의 태도

- ※ 소련은 중국(구 중공) 견제 및 후방 지역의 안전을 위해 인도와의 우호 및 안보협력 관계 강화
- ※ 제3세력권에 대한 인도의 영향력을 감안, 아시아 집단안보체제에 대한 인도의 동조나 지지 요망
- ※ 인도로서는 중국 견제 및 인도 대륙 내에서의 입지 강화와 소련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우호협력관계 유지
- ※ 대소련 일변도 인상을 주어 제3세력권에서의 인도의 이미지 손상 방지, 중국 자극 자제

### 2. 인도 · 소련 관계

- ※ 1971년 인도 · 소련 우호협력조약 체결
- ※ 1971.12월 인도 · 파키스탄 전쟁 시 소련의 적극적인 군사 · 경제지원으로 인도가 승리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증진
- ※ 1972.3월 경제 · 과학 · 기술 협력을 위한 양국 공동위 구성
- ※ 1973.11월 브레즈네프 서기장의 인도 방문 시 2개의 경제협력협정과 영사협정 서명
- ※ 1974년 Swaran Singh 인도 외상 및 Dhar 계획상 등의 소련 방문으로 긴밀한 협력관계 지속

### 3. 인도의 대강대국 외교 일반

- ※ 인도는 미국 · 소련 간 및 미국 · 중국 간의 긴장완화 등 국제정세에 대처
- ※ 대소련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중국과의 화해 모색

## 일본 · 소련 관계

| 74-017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구주3
MF번호	C-71 / 32 / 1~89p

일본 · 소련 관계와 관련한 주일본대사의 보고 내용임.

1. 도로야노브스키 주일본 소련대사가 1974.2.14. 일본 수상 관저에서 다나카 일본 수상과 일 · 소련 평화조약 교섭, 시베리아 천연자원 개발문제 등에 관해 회담하였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함.

2. 소련이 1974.3월말 일본 · 소련 경제위원회 경제합동위 간부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 회담에서는 남아쿠트 원료탄, 천연가스, 화태 대륙붕 석유, 천연가스 등의 개발 프로젝트 추진 방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974.2.22. 보도함.

※ 일본의 대소련 은행차관의 금리 조건, 일본 · 미국 · 소련 3국 공동 개발여부 등에 관한 협의도 있을 것이라고 함.

3. 자마닌 소련 최고회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소련 최고회의 의원단 9명이 1974.2.27.~3.6. 일본을 방문함.

※ 동 대표단은 일본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 미키 다케오 부수상, 오히라 외상, 중 · 참 외무위원 등과 회담을 개최하고 일본 철강, 마쓰시다 전기, 가네코 방적공장 시찰 등 일정을 가짐.

4. 시게미쓰 주소련 일본대사는 1974.3.21.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예방, 다나카 수상의 친서를 전달함.

※ 동 친서에는 일본 · 소련 관계에 관한 다나카 수상의 소신과 평화조약 교섭을 포함한 양국간 외교일정에 대한 일본 측 입장,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제의한 양국수뇌 간 대화 지속에 대한 일본 측의 동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5. 코시긴 소련 수상이 1974.3.22. 소련 방문 중인 유에무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의장과 나가노 일본 상공회의소 의장을 접견, 시베리아 자원개발, 다나카 수상 방소 시 제기된 펄프공장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의향을 표명하였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함.

※ 일본 측도 양국간 협의 지속 등 공동개발 추진 의사 표명

※ 3.25. 일본 · 소련 경제합동회의 개최, 시베리아 개발 6대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각서 조인

※ 소련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에 대한 일본의 참여 요청

6.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퐁피두 프랑스 대통령 장례식 참석차 1974.4.5. 모스크바에 도착한 다나카 수상은 코시긴 수상과 공화 귀빈실에서 시베리아 개발협력에 관한 회담을 개최하였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함.

## 일본 · 미국 관계

| 74-017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북미1
MF번호	C-72 / 1 / 1~313p

### 1. 다니카 일본 수상은 1974.9.21.~23. 미국을 방문, 포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9.21)을 개최함.

- ※ 주요 의제는 일본 · 미국 관계, 에너지, 인플레이 등 국제경제 문제 등이며, 회담 결과 양국은 미국 · 일본 안보조약을 기축으로 하여 긴밀한 관계를 추진하고 에너지 등 세계경제질서의 재건에 노력하기로 합의함.
- ※ 또한 일본 측은 한 · 일본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미국 측은 한 · 일본 간의 어려운 문제 해결에 만족을 표시함.

218

### 2. 포드 대통령은 1974.11.18.~22.간 일본을 방문, 다니카 수상과 정상회담(11.19)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 ※ 공동성명 요지
  - 양국간 평등호혜 관계 일층 발전
  - 평화유지 등 국제질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군축 및 핵확산방지를 위해 노력
  - 개방적이고 균형된 세계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해 노력
  - 과학기술과 환경보호에서의 연구와 정보교환
- ※ 일본 내 각계 반응
  - 자민당: 양국의 국익과 세계평화에 공헌 기대
  - 사회당: 국민의 비판을 야기하는 국민부재의 표시
  - 공산당: 미일동맹의 영속화, 천황의 방미 재확인은 천황을 정치적으로 이용
  - 언론(아사히 신문 사설): 방일은 획기적이며 상징적 의의를 보여주며, 미국 측은 한반도 문제에 관심 집중
  - 재계: 미국 · 일본 우호연대를 심화한 성공적 방문
- ※ 평가
  -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소외된 일본이 미국과 새로운 정치 ·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
  - 석유, 식량자원 등 경제문제 중심으로 협의하면서 안보체계 강화
  - 한반도 문제가 아시아 평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것에 대해 공감 표시

### 3. 오히라 일본 외상은 1974.5.18.~23. 미국을 방문, 리쉬 국무장관대리와 미국 · 일본 에너지개발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닉슨 미국 대통령을 예방하여 미국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를 요청한 바, 동 대통령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임.



## 코헨 미국 대학교수 발언 문제

| 74-017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72 / 2 / 1~22p

1. 코헨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는 1974.9.12. 워싱턴 기자 클럽에서 행한 강연에서 일본의 다나카, 사토, 기사 수상 등이 대한 경제원조의 대가로 한국으로부터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발언을 함.

※ 이에 대해 일본 아사히 신문은 '사토 전 수상, 코헨 교수에 반론' 제하의 특집 기사를 게재하여 동 수상과의 회견내용을 보도함.

- 동 수상은 동 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원조 대가로 사례를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함.

2. 일본 외무성은 상기 코헨 교수의 발언에 대해 다나카, 기사 전 수상 등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정하고 있으며 일본 측이 유감의 뜻을 동 교수에게 문서로 전달한 바 있다고 1974.10.2. 밝힘.

3. 나카이도 일본 관방장관은 1974.10.2. 기자회견에서 "전혀 사실무근한 일을 강연에서 언급한 것은 심히 유감이며 주미국 일본대사관을 통하여 본인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있다" 고 말함.

4. 코헨 교수는 1974.10.2. 일본 정부의 항의서한에 대해 성명을 발표, 일본 정부의 서한은 아주 비외교적이며 오만하고 도발적이며, 중립적인 학자, 비평가에 의한 자유로운 언론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함.

5. 코헨 교수의 성명에 대해 일본 관방장관과 외무차관은 1974.10.3. 기자회견에서 현직 수상을 지목하여 사실무근한 발언을 한 것은 명예에 관련되므로 심히 유감이며, 일본 정부의 서한은 언론의 자유와 무관하고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국민의 손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발언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함.

6. 아사히 신문은 1974.10.5. 코헨 교수의 회견 내용을 게재하면서 동 교수의 의도는 한국의 현상에 비추어 미국의 대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함.

# 다나카(田中) 일본 수상 동남아 순방, 1974.1.7.-17.

| 74-0179 |

생산연도	1973
생 산 과	동북아주/동남아2
MF번호	C-72 / 3 / 1~201p

다나카 일본 수상의 1974.1.7.~17. 동남아 순방 관련한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임.

## 1. 방문 일정

- ※ 1.7.~9. 필리핀
- ※ 1.9.~11. 태국
- ※ 1.11.~12. 싱가포르
- ※ 1.12.~14. 말레이시아
- ※ 1.14.~17. 인도네시아

220

## 2. 배경

- ※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국제정치상 지위 획득
- ※ 미국·중국 화해 등 신국제질서 형성 추세 속에서 일본의 자주외교노선 강화
- ※ 동남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고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다짐
- ※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 3. 방문 내용

- ※ 다나카 수상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우호친선을 강조하고 경제교류확대, 경제 협력, 상호 원자재 수입 안정도모 등 10개 항목에 관해 언급한 바, 동 대통령은 대체로 이를 지지
- ※ 동 수상은 산야 태국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태국 측의 합연기업문제에 관한 정부 간 협의 기간 설정 제안에 동의
  - 동 수상은 정상회담 후 태국 학생 대표와의 대화를 진행한바, 학생 대표는 일본의 경제진출방식을 비판하는 요망서를 동 수상에게 전달
- ※ 동 수상은 리광요 싱가포르 수장과 석유위기의 영향과 공업원재료 공급문제를 중심으로 회담하고 시아즈 싱가포르 대통령을 예방
- ※ 동 수상은 라자크 말레이시아 수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제3차 엔 차관 공여, 비료·농약 및 공업원재료 공급,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합의
- ※ 동 수상은 수하르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2억 달러 엔 차관 공여, 미작농업 및 석유중계지 건설 등 개발계획에 대한 협력에 합의

## 4. 방문 평가

- ※ 정치적으로 동남아 국가의 대일 불신감 해소와 일본의 정치적 기반을 확립함.
- ※ 경제적으로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일본의 경제진출에 대한 불신감 해소에 주력함.

# 튀니지 · 리비아 통합 노력

| 74-018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72 / 4 / 1-81p

튀니지 · 리비아 통합 문제에 관련한 주튀니지대사의 보고 내용임.

## 1. 부르기바 튀니지 대통령과 가다피 리비아 대통령은 1974.1.12. 양국이 단일국가로 통합하기로 합의 하였음을 발표함.

- ※ 동 통합안은 1974.1.18. 국민투표에서 승인시 확정되며, 신국명은 아랍이슬람공화국으로 정함.
- ※ 아랍세계 통합주의자인 가다피 대통령이 당초 이집트와의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의 의견 불일치, 1973.10월 중동전 발발 등으로 좌절되어 튀니지와 통합을 서두르게 된 것으로 분석됨.
- ※ 양국은 역사, 언어, 종교, 지리 측면에서 동일 환경지역에 속해 있으나 자원, 인구, 경제발전 측면에서는 상이 하여 대외정책면에서 이질적인 정책을 추구하여 왔음.
- ※ 리비아의 석유자원을 이용하려는 튀니지와 아랍세계의 통합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는데 있어 튀니지의 후원을 필요로 하는 리비아의 이해가 일치된 결과인 것으로 보임.

## 2. 부르기바 대통령은 1974.1.14. 마스무디 튀니지 외상을 해임하는 등 일부 개각을 단행함.

- ※ 동 외상의 가다피 대통령과의 지나친 친분과 정치적 비중 증대가 해임의 이유라고 현지 외교가에서는 분석함.
- ※ 양국 통합의 주동적 역할을 한 마스무디 외상의 해임으로 통합이 석연치 않게 될 것으로 관측됨.
- ※ 양국 통합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이집트는 동 통합을 환영한다고 Hatem 이집트 부수상 겸 공보장관이 논평함.
  - 모로코와 알제리는 동 통합 추진이 마그레브 아랍통합의 성공 기회를 빼앗는 즉흥적인 것이라면서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함.

## 3. 1974.1.18. 실시 예정이던 튀니지 국민투표가 일방적으로 연기되고 신임 튀니지 외상이 모로코나 알제리가 반대하는 한 리비아와 통합하지 않을 것이라 발언하는 등 동 통합의 실현이 난망시됨.

## 4. 부르기바 대통령은 1974.3.2. 데스트루당 창설 4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양국 통합은 마그레브 건설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언급함으로써 양국 통합의 실현가능성을 부인한 것으로 관측됨.

## 노르웨이 · 소련 관계

| 74-018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C-72 / 5 / 1~16p

노르웨이 · 소련 관계와 관련한 주노르웨이대사 보고 내용임.

### 1. Bratteli 노르웨이 수상이 1974.3.18.~25. 소련을 방문함.

- ※ 동 방문은 1971년 코시긴 소련 수상의 노르웨이 방문에 대한 답방이면서 노르웨이 · 소련 간 국교수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친선 방문의 성격을 지님.
- ※ 양국간의 대륙붕, 어업 한계선, 교역 증대 및 정치 문제 등도 논의할 예정임.
- ※ 노르웨이 종교교육장관, 외교부 정무국장, 경제국장 등이 동 수상을 수행함.

### 2. Bratteli 수상은 1974.3월 국교수립 50주년에 즈음하여 대소련 관계에 관해 아래와 같이 발언함.

- ※ 노르웨이가 소련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에 주저하는 면이 있다고 하면 이는 선린 관계의 확대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며 어떠한 소국도 강대국과의 협력 관계 구축에 있어 취하는 조심성의 표현임.
- ※ 양국간 선린 관계 증진에 있어 소련은 주변 약소국의 특별한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노르웨이로서는 소련이 강대국으로서의 이해와 책임을 지닌 국가라는 사실을 고려함.

### 3. Bratteli 수상의 소련 방문 결과, 양국은 1974.3.25. 공동성명을 발표함.

- ※ 노르웨이 일부 언론은 동 공동성명이 소련의 지식인 탄압 등 인권 문제에서의 노르웨이 측 관심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비판받고 있다고 보도함.
- ※ 동 공동성명에는 소련이 제의한 유럽안보정상회의에 관한 언급이 없어 소련이 동 제의에 대한 노르웨이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됨.
- ※ 또한 양국간 쟁점인 북부해역의 대륙붕 문제에 관해 합의없이 다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사실로 미루어 노르웨이가 동 수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고 소련과의 공동관리를 회피한 것으로 분석됨.

## 미국 · 소련 관계

| 74-018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C-72 / 6 / 1~84p

닉슨 미국 대통령의 1974.6.27.~7.3. 소련 방문과 관련한 외무부 종합 보고 내용임.

## 1. 주요 일정

- ※ 6.27. 제1차 정상회담, 포드고르니 최고회의 간부회의 의장 주최 만찬
- ※ 6.28. 제2차 세계대전 참전무명용사묘 헌화, 제2차~3차 정상회담
- ※ 6.29. 제4차~5차 정상회담, 알타 방문
- ※ 6.30. 제6차 정상회담, 흑해 선상 비공식 회담
- ※ 7.1. 민스크에서 백러시아 지도자와 회담
- ※ 7.2. 제7차 정상회담, 닉슨 대통령 주최 만찬, 소련 국민에 대한 TV방송 연설
- ※ 7.3. 협정 및 의정서 서명, 공동성명 발표

## 2. 방문 배경

- ※ 1972년 닉슨 대통령의 방소, 1973년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미국 방문에 이은 닉슨과 브레즈네프 간 제3차 정상회담 개최
- ※ 양국간 화해 및 협조 추구에 관한 이해관계 일치

## 3. 정상회담 합의사항

- ※ ABM(탄도탄요격미사일) 추가 제한 의정서, 지하 핵실험 부분적 금지 협정, 전략공격무기의 대체, 철거 등에 관한 의정서, 10개년 경제협정, 에너지 개발협정 등 서명
- ※ SALT(전략무기제한협정) 교섭 조기 타결 합의, 군사목적을 위한 환경변조기술사용 위험성 극복에 관한 공동 성명, 화학무기 등의 제조금지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등 합의
- ※ 양국의 공동외교 목표 천명, 전략무기의 추가 제한과 군비축소, 핵무기 비확산 등 공동관심사 확인

## 4. 관계국 및 언론 반응

- ※ 미국(언론): 전면적 핵실험 금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 표시
- ※ 소련: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닉슨의 국내적 입장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
- ※ 일본: 지하 핵실험 부분 금지 및 요격미사일 제한에 관한 합의 환영
- ※ 중국(구 중공): 닉슨의 외교적 성과만을 위해 미국 자신이나 유럽의 이익을 희생치 않을 것으로 기대

## 5. 평가

- ※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협정의 체결로 강대국인 양국간의 일반적 화해 경향 강조
- ※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협력과 합의의 빠른 진전 기대
- ※ 핵심 과제인 MIR(다탄두미사일)의 규제에 합의치 못한 것은 군부지도자의 비타협적 강경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Kissinger, Henry A. 미국 국무장관 중국(구 중공) 방문, 1974.11.25.-29.

| 74-018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동북아2
MF번호	C-72 / 7 / 1~33p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의 1974.11.25.~29. 중국(구 중공) 방문과 관련한 주미국대사 및 주일본대사의 보고 내용임.

1. 금번 중국 방문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키신저 국무장관의 1973.11월 방중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비해 간략하며 포드 미국 대통령의 방중 계획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음.

224

2. 포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중국 측의 요청으로 결정되었으며 동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대만 문제 처리 및 미국·중국 국교정상화가 타결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미국·소련 간 현안인 핵무기 제한 협정과 미국·중국 간 현안인 국교정상화 문제를 내년 중에 타결할 계획인 것으로 관측됨.

3. 미국 언론은 키신저 국무장관의 방중 결과에 대해 비교적 크게 사실을 보도하고 있으며 포드 대통령의 방중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중국이 소련의 계속적인 위협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동 장관은 중국의 대소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로 중국·소련 간 화해 징후가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금번 방문으로 중국·소련 간 불화의 뿌리가 깊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되었다고 사적으로 인정함.

4. 일본 아사히신문은 키신저 국무장관의 방중에 관해 '미국 대통령 내년 중 방중', '미국·중국 커뮤니케 발표, 상해정신 지킴' 제하의 1면 특기사로 보도함.

※ 또한 동 신문은 '신시대를 맞이한 미국·중국' 제하의 해설기사에서 포드 대통령의 방중 결정이 중국·소련에 대한 균등외교에 신경을 쓰는 미국으로 볼 때 중국에 대한 선물이며, 중국으로서는 대중국 관계에 소극적인 포드 정권에 대한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함.

5. 키신저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한 미국 주요 언론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 포드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정으로 미국·중국 양국이 관계정상화를 위한 다음 단계의 중요한 진전을 이룸.
- 중국은 소련에 대한 전략 차원에서 미국·중국 관계를 중요시하며 미국·중국 화해를 영구화하고자 동 대통령을 초청함.

※ 뉴욕 타임즈

-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나 정상화 일정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말함.

# Ford, Gerald R. 미국 대통령 소련 방문, 1974.11.23.-24.

| 74-018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구주2
MF번호	C-72 / 8 / 1~95p

포드 미국 대통령의 1974.11.23.~24. 소련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관련한 재외공관 보고 내용임.

1. 미국과 소련은 10.26. 포드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간의 회담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1.23.~24.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함.
2. 미국 국무부 관계관은 미국·소련 정상회담은 양국 수뇌가 처음으로 만나는데 의의가 있으며, SALT(전략무기제한협정) 문제가 토의의 중심이 되고 그 밖의 문제는 논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3.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폴란드 및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5개국은 미국·소련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임.
4. 일본 외무성 담당 국장은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이 소련의 요구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짐작되며 중국에 대해 소망스럽지 못한 일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큰 자극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5. 일본 언론은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소련 방문 후 일본에 기착하여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갖고 미국·소련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보도함.
6. 미국 언론은 미국·소련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평가하면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장착될 MIRV(다탄두미사일)의 개수 제한문제를 포함한 핵공격무기 규제에 관한 합의 내용을 중점 보도함.  
※ 포드 대통령은 귀국성명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군축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중요한 합의 중의 하나”라고 표현하였으며 백악관 대변인은 닉슨 대통령이 5년 동안 성취하지 못한 것을 3개월 만에 성취하였다고 평가함.

# 대공산권 관계개선 방안

| 74-0185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북아2/특수지역
MF번호	C-72 / 9 / 1~132p

## 1. 외무부는 1973년말~74년초에 걸쳐 6·23 문호개방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주요 공관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은 대공산권 관계개선 방안을 마련함.

- ※ 2~3년 내 실현이 가능한 관계개선 방안
  - 유엔군사령부 해체 시 소련 및 중국(구 중공)에 대한 관계개선 협상 조건 제시
  - 미국·일본·중국·소련의 남북한 교차 승인을 위한 비밀협상 시도
  - 워싱턴과 파리에 중계 창구 설정·운영 방안
- ※ 관계개선 활동상의 장애 및 극복방안
  - 남북대화의 부진
  - 유엔 한국문제 제기
  - 언론의 과장보도 지양
- ※ 북한의 자유진영 국가 침투 저지
  - 해당 공관에 대한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상의 지원
  - 북한의 자유우방국과의 경제관계증진 저지
  - 공산진영에 의한 한국 승인을 위한 자유진영의 지지 확보

## 2. 외무부는 1974.2.21. 아래와 같은 대동구권 진출 구상을 마련함.

- ※ 동구 공산권과의 능동적 접촉을 추진해 왔으나 실질적 관계개선이 없는 상황
  - 소련과는 유니버시아드 참석, 언론인과 예술인 등 극히 제한된 범위의 인사교류
  -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와는 통상사절단의 파견 및 간접무역 실현에 불과
  - 폴란드와는 선박 도입 교섭이 관계자의 비자발급 거부 상황 직면
  - 체코와는 경기 참가 및 취재 등에 국한
  - 루마니아와는 기자 입국 취재 및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참석 예정
- ※ 동구권 전체를 상대로 하는 교섭이 산발적, 분산적으로 진행
- ※ 상대국의 실익에 연결된 제안을 통한 추진 필요성 제기
- ※ 1~2개국을 선정하여 집중적 노력 경주
- ※ 비정치적 교류, 내부 거점 확보 및 대상국의 실익에 기초한 무역 추진



# 재외공관을 통한 중국(구 중공) 외교관 직접접촉

| 74-018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C-72 / 10 / 1~13p

1974년도 재외공관을 통한 중국(구 중공) 외교관 접촉에 관련한 내용임.

## 1. 재외공관에서의 중국(구 중공) 외교관 접촉

- ✿ 캐나다: 외교 및 사고 활동상 소련, 동구권 및 쿠바 외교관의 태도는 다소 유연하나, 중국 대사는 비우호적 태도를 보임
- ✿ 스리랑카(주콜롬보통상대표부): UNDP(유엔개발계획) 주재관과 중국대사 간 대화에 참여코자 하였으나 중국 대사가 다른 장소로 이동함.
- ✿ 토고: 소련대사대리는 인사를 교환하는 예의를 지키고 있으나 중국대사는 접근을 회피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 2. 외무부의 재외공관을 통한 대중국 관계개선 방안

- ✿ 재외공관에 중국 외교관 접촉활동 지침 시달
  - 개정 외교관 복무지침, 대중국 정책 개요 등 송부
  - 비공식적 접촉에 있어서 중국의 정식 국명 사용 가능
- ✿ 대중국 접촉활동 중점공관 지정 및 활용
  - 한·중국 간의 의견 차이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사용
  - 진취적인 대중국 자세
  - 평화5원칙에 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가 없다는 입장 표명
- ✿ 자유진영 국가들의 대북한 정책 변경
- ✿ 외교활동, 사교행사 등 계기에 한국의 의도를 중국 측에 전달

## 3. 외무부의 해양 관계를 통한 대중국 접촉점 모색 방안

- ✿ 중국은 1970년대 들어 공해에 대한 연안국의 특수이익을 강조
- ✿ 중국은 1973.4월 유엔해저위원회에서 인접국과의 공동해역 설정에 관한 협의를 언급
- ✿ 중국과의 협의 및 협조가 가능한 분야로 해난구조, 어업자원의 보존을 위한 공동규제조치, 대륙붕 경계획정 등을 상정
- ✿ 유엔 해양법회의의 참가 계기에 중국 대표단 접촉 모색 및 중점 공관을 통한 예비적 타진 시도

## 한 · 중국(구 중공) 관계개선

| 74-018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C-72 / 11 / 1~45p

주한 호주대사관 측 요청으로 1974.10.23. 이루어진 외무부 중국담당 과장과의 면담 내용임. 이 면담에서 호주 1등서기관은 중국(구 중공) 측 메시지를 전달하여 관계 개선을 종용하는 등 아래와 같이 발언함.

1. 중국 외교부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인물인 Spurr가 방한 시, 한국 측에서 외무부 직원을 홍콩에 파견할 경우 씨토 킹과의 면담을 주선해 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호주 측이 이 문제에 관여하게 된 것은 우연이며 중국 측의 의도에 따라 호주가 개입하게 된 것은 아님.
2. 이번 메시지는 신뢰할 만한 중국 외교부의 메시지로 보며 내용도 진솔한 것으로 보임. 내용면에서 한국이 대만(구 자유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조건으로 상호 간 비공식적 회담이 개시될 수 있다는 점과 상호관계 수립 시 한국의 대만 주재 연락대표부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함.
3. 상기 조건은 호주의 대중국 수교교섭의 경험으로 중국이 수교 대상국에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 측이 중국의 메시지를 계기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한국 측에 해로운 일은 없다고 봄.
4. 호주는 보수당 집권 시에 파리에서 양국간 비밀접촉을 오랫동안 하였으며 중국은 대만과의 단교, 1개의 중국, 중국이 유일합법정부라는 입장에 대한 호주 측의 수락이 없이는 수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하였음. 1972.10월 노동당 정부의 집권 후 교섭을 재개하여 12.21. 수교에 합의함.

# 국교수립 교섭 - 이집트

| 74-0188 |

생산연도	1966-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72 / 12 / 1~315p

이집트와의 국교수립 교섭과 관련한 재외공관의 1966~74년 중 보고 내용임.

## 1. 주카이로총영사 보고(1966.10.18.)

※ 이집트와의 외교관계 부재 및 한국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유로 지난 5년간 공관장 관저, 차량에 대한 국기 게양을 승인받지 못하였으나 주카이로총영사가 이집트 외교부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여 협조를 요청한 결과, 이집트 외교부로부터 국기 게양 허락 통보를 받음.

## 2. 주터키대사 보고(1967.12.1.)

※ 주터키대사가 이집트를 방문, Fky 이집트 외상서리를 면담한 바, 동 외상서리는 한국에 대한 이집트의 태도에는 단계적 개선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한국의 이집트에 대한 우호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함.  
- 동 외상서리의 발언은 양국간의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며, 당장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음.

## 3. 주카이로총영사 보고(1970.6.30.)

※ 주카이로총영사는 Fawzy 이집트 외상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친선사절단의 방문에 관해 협의함.  
- Anwar 이집트 외무부차관보는 사절단 방문 이전에 모종의 조치를 취하면 접수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 아랍권에 대한 지지 표명을 촉구함.

## 4. 주카이로총영사 보고(1973.8월)

※ 정부가 1973.6.23. 정책 선언 이후 7.16. 주카이로총영사관의 대사관 승격이 필요함을 결정하고 외무부가 이에 관한 지시를 주카이로총영사에게 전달한 데 대해 동 총영사는 이집트 외교차관 등과 면담하여 총영사관의 대사관 승격문제를 교섭하였으나 이집트 측은 동 건이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으로 최고위층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대답 하면서 아무런 언질을 하지 않음.

## 5. 주카이로총영사 보고(1973.12월)

※ 주카이로총영사가 이집트 외교차관을 면담하여 한국의 아랍입장 지지 성명을 전달한 데 대해 동 차관은 한국 입장이 분명해졌다면서 만족을 표명함.

## 6. 주카이로총영사 보고(1974.11월)

※ 기무라 일본 외상의 이집트 방문 시 양국 외상회담에서 이집트 외상은 한국과의 영사관계를 장차 국교를 맺는 관계로 격상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음.

## 국교수립 - 그레나다, 1974.8.1.

| 74-018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72 / 13 / 1~52p

230


1. 정부는 1974.2.7. 독립한 그레나다를 동일자로 승인하고 카리브지역에서의 동 국가의 정치적 비중을 고려하여 동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및 관계 증진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판단하여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을 관할 공관으로 지정함.
2. 외무부는 북한이 1974.5.18. 가이아나와의 수교에 이어 카리브지역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그레나다의 유엔 가입 신청 전망, 수교 교섭현황 등을 파악하도록 주요 재외공관에 지시함.
  - ※ 주유엔대사는 6.6. 그레나다가 유엔 가입을 신청하였음을 보고
  - ※ 주영국대사는 그레나다와의 수교 교섭을 위해 그레나다 수상 앞으로 서한을 보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영국 외무성이 조언하였음을 보고
3. 주영국대사관 공사는 1974.6.12. 에반스 영국 외무성 극동국장을 면담하여 한국의 대그레나다 수교 및 사절단 파견 의사를 영국이 그레나다 측에 전달하여 주기를 요청한 바, 동 국장은 이를 수락하고 추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함.
4. 주유엔대표부 직원이 1974.6.13. 뉴욕 그레나다 관광사무소에서 그레나다총영사 내정자를 면담하여 한국의 대그레나다 수교 및 사절단 파견 의사를 그레나다 정부에 전달하여 주기를 요청한 바, 동인은 사건임을 전제로 양국간의 국교수립은 환영할 일이라고 언급함.
5. 주쿠바 북한대사 일행이 1974.5.23. 전후 그레나다를 방문하여 그레나다 수상을 면담하고 경제기술 협력증진을 약속하였다는 주캐나다대사의 보고를 6.15. 주베네수엘라대사가 보고함.
6. 주유엔대사가 1974.6.14. 주뉴욕 그레나다총영사 및 뉴욕을 방문 중인 그레나다 상원의원을 오찬에 초청하여 그레나다와의 국교수립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한데 대해 동인들은 그레나다 수상에게 국교수립 추진을 건의하겠다고 하였음을 보고함.
7. 대통령 특사로 그레나다를 방문한 김용식 통일원장관은 그레나다 수상과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1974.8.1. 이를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함.

# 국교수립 - 라오스, 1974.7.25. 전2권 (V.1 1958-62)

| 74-0190 |

생산연도	1958-1974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72 / 14 / 1~323p

1. 정부는 1962.3.8. 라오스와의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3.20. 이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2. 라오스와의 외교관계 수립에 따라 정부는 주태국대사를 겸임대사로 임명하기로 하고 아그레망 신청을 추진한 바 있으나 분음 정부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 및 러스크-코만 공동성명을 계기로 라오스의 정치 상황을 관망하면서 당분간 아그레망 신청을 보류하기로 결정함.
3. 1962.7.5. 주미국 대사의 보고에 의하면 라오스 중립정부의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라오스가 중국(구 중공), 동독 및 월맹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고 이들 공산국가와 관계를 수립할 경우 서독, 대만(구 자유중국), 월남 등 자유진영국가들이 라오스와의 관계를 단절하게 될 것이며 이후 라오스는 공산진영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한국과 라오스와의 외교관계 수립 합의는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나, 정부는 외교관계 수립 합의는 당연히 유효하므로 라오스 중립정부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아그레망 신청을 지시함.
4. 1962.8.13. 외신 보도에 의하면 라오스 연립정부 각료회의는 북한을 포함, 몽고, 헝가리, 불가리아 4개 공산국 및 인도네시아와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원칙 합의를 한 바 있음. 주태국대사는 직원을 라오스에 파견, 아그레망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9.3. 라오스 각료회의에서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이 결정될 경우 한국의 유일 합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라오스와 국교를 단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전달하여 북한과 라오스의 외교관계 수립을 저지할 필요를 건의함.
5. 외무부는 라오스 연립정부가 평화5원칙에 입각한 중립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으므로 남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 한국의 종전 입장인 대중립국 정책의 한계선인 두 개의 한국 불인정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잠정 결정함.
6. 라오스의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관련 공관의 보고요지는 아래와 같음.
  - ※ 대만: 두 개의 중국론을 인정할 수 없으며 라오스의 대중국 외교관계 수립시 관계 단절할 각오
  - ※ 월남: 라오스가 월맹과 외교관계를 수립시 월남은 라오스와 관계 단절할 계획
  - ※ 독일: 라오스와 동독이 외교관계를 수립할 경우 서독은 라오스에 대한 경제지원을 중단할 예정


- 
7. 주태국대사대리는 1962.9.3.~7.간 라오스를 방문, 부수상과 외교장관을 면담, Position Paper를 전달하고 북한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함. 동 부수상에 의하면 아그레망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좌파가 북한 승인 문제를 제기하여 왕이 이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지시를 내린바 있다고 함.
  8. 외무부는 한국은 여하한 경우에도 두 개의 한국을 의미하는 조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라오스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경우 라오스의 중립성 위배라고 보며 부득이 외교관계를 단절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라오스 정부에 전달하도록 주태국 대사에게 지시함.

# 국교수립 - 라오스, 1974.7.25. 전2권 (V.2 1963-74)

| 74-0191 |

생산연도	1958-1974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72 / 15 / 1~312p

1.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은 1963.2.2. 외무부 직원을 면담, 2.1. 라오스 연정 각의에서 동독 및 북한에 대한 승인을 보류한 것 같으며, 동독과는 영사관계를 수립하고 북한과는 통상관계를 수립하도록 하는 우파의 건의가 라오스 수상에게 제출되었다고 언급함.
2. 주태국대사관 직원은 1963.3.12.~16. 라오스를 방문하여 푸미 노사반 라오스 부수상과 면담함.
  - ※ 동 부수상은 한국과 라오스 간의 외교관계 수립 협정은 유효하며 동 협정을 고수할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함.
3. 주태국대사는 1966.3.18.~20. 라오스를 방문하여 수바나 푸마 라오스 수상과 면담함.
  - ※ 동 수상은 라오스는 제네바 협정에 의한 중립국가로서 국가의 대외정책상 자유 또는 공산국가를 막론하고 국교를 수립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우호관계에 있으나 북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함.
4. 정일영 주스위스대사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967.12.19.~23. 라오스를 방문하여 라오스 국왕, 수상, 부수상 등을 면담함.
  - ※ 정일영 대사는 방문 결과 보고에서 라오스가 1962년 라오스 중립화 협정의 장벽으로 형식적인 국교수립보다는 실리적인 방법으로 양국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라오스와의 우호증진 방안으로 통상문화교류 증진, APU(아시아의원연맹) 등 국제회의 이용, 친선협회 결성, 통상사절단 파견 등을 건의함.
5. 정부는 라오스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잠정 조치로서 1973.6월 주비엔티안 통상대표부 설치를 라오스 측에 제의하여 1973.11월 주비엔티안 통상대표부가 개설됨.
6. 주캄보디아(구 크메르) 대사는 1974.1.1.~3. 라오스 방문 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가까운 장래에 연정이 수립될 전망은 없을 것이며 라오스는 연정 수립 시까지 한국과 현상을 유지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음.
  - ※ 주라오스총영사(주비엔티안 통상대표부)의 라오스 외교부와의 비공식 접촉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7. 주라오스총영사가 1974.4.12. 찬타라시 라오스 외교차관을 면담한 바, 동 차관은 한국이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하면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한국에 경제기술원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언급함.



8. 주라오스총영사는 1974.5.29. 라오스 외교부 의전장으로부터 북한이 라오스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하였으며, 동 제의가 5.30. 각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라오스의 엄정 중립외교 정책에 따라 그간 보류한 양국 외교관계 수립 제의 서한을 5.29. 라오스 측에 제출하도록 지시함.

※ 라오스 각의는 5.31. 남북한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의함.

9. 한국과 라오스는 1974.7.25. 양국 국교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 국교수립 - 네팔, 1974.5.15.

| 74-0192 |

생산연도	1970-1974
생산과	조약1/동남아1
MF번호	C-72 / 16 / 1~152p

1. 외무부는 1970.4.23. 주네팔 상주공관 설치를 위한 검토의견서에서 주뉴델리총영사의 보고를 참고하여 일차적으로 2명의 공관원을 파견하여 상주공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함.
2. 주뉴델리총영사는 1972.1.10.~15. 네팔에 출장하여 네팔 국왕, 수상, 외무차관 등과 면담하였으며, 동 출장 후 주네팔 상주공관의 설치를 외무부에 건의함.
3. 정부는 1972.1월 주카트만두총영사관 설치를 결정함.
  - ※ 1.31. 네팔 국왕이 서거하고 신 국왕이 즉위한 상황에서 등 총영사관을 조속 설치하기로 함.
4. 네팔 외무성은 1972.6.2. 한국 측의 주카트만두총영사관 설치 및 총영사 임명 통보에 대해 동의한다고 알려음.
5. 카르키 네팔 외상이 1973.9.15.~18.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9.13. 주카트만두총영사가 보고함.
  - ※ Khatri 네팔 외무차관은 주카트만두총영사에게 남북한과 동시에 외교관계 수립 또는 현상유지가 네팔의 정책 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카르키 외상의 방북 시 네팔 측이 외교관계 수립을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6. 주카트만두총영사는 1974.1.10. Khatri 차관을 면담하여 외교관계 수립 제의 문서를 수교한 바, 동 차관은 카르키 외상 귀국 후 검토하여 각의에 상정할 예정이나 자신의 생각으로는 양국의 관계개선은 시간문제로 본다고 말함.
  - ※ 네팔 외무성은 한국 측의 제의가 왕실에 보고되고 각의에서 토의될 것이라고 함.
7. 외무부는 1974.4.23. 유엔 특별총회에 참석 중인 네팔 외상을 총회 후 귀로에 방한 초청하기로 결정함.
8. 한국과 네팔은 1974.5.15.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국교수립 - 오만

| 74-0193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아중동
MF번호	C-72 / 17 / 1~43p

- 236
1. 공산 계렬라 소탕에 노력하는 오만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자원문제 관련, 주독일대사는 오만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한 상황에서 원조제공은 긴급한 일이 아니라고 보며 외교관계 수립 시점이나 사절단 파견 시기에 맞추어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1973.6.14. 보고함.
  2. 정부는 1974년 중 중동지역에 대한 중점사업으로 페르시아만 4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5월중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을 결정함. 주사우디대사는 카타르, 오만 대사와 수차례 외교관계 수립을 논의하고, 상대측의 요청에 따라 공문으로 보낸바 동 대사들은 본국 정부와 연락중이며 회신을 통보하겠다고 하였음을 보고함.
    - ※ 주사우디 오만대사는 1974.3.12. 주사우디대사를 방문, 오만은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동의한다는 오만 정부의 의사를 통보하고 이를 공한으로 전달. 이후 주사우디대사는 오만대사를 방문, 오만 측이 준비한 양국 간 국교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합의하고 서명
  3. 주사우디대사는 1974.3.16. 사우디 외무성 의전장의 요청으로 면담한 바, 동 의전장은 외무차관의 지시에 따라 카타르, 바레인 및 북예멘 주재 사우디대사에게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종용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고 함.
    - ※ UAE는 사우디와의 국경분쟁으로 외교관계가 없는 상황
  4. 한국과 오만 정부는 양국간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1974.3.28. 발표함.

## 국교수립 - 카타르, 1974.4.18.

| 74-0194 |

생산연도	1971-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72 / 18 / 1~59p

### 1. 정부는 1971.9.1. 독립을 선언한 카타르를 9.7. 승인하고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을 희망하는 의사를 카타르 측에 피력함.

- ※ 외무부가 주스위스대사에게 스위스에 체류 중인 카타르 국왕을 예방하여 대통령과 한국 국민의 우의와 경의를 전달하고 양국간 외교관계수립을 타진하도록 지시함.
- ※ 주스위스대사가 9.17. 카타르 국왕을 예방하여 한국이 카타르의 독립을 축하·승인한 사실을 전달하고 긴밀한 외교적 유대를 희망한 데 대해, 동 국왕은 귀국 즉시 특별히 선처하겠다고 언급함.

### 2. 카타르 외교부는 1972.5.8. 한국 측에 대한 공한을 통해 한국 측의 수교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카타르의 인력부족으로 현 시점에서 이를 고려할 수 없다고 통보함.

- ※ 주이란대사는 6.21. 대안으로 우선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상주대사를 임명할 수 있을 때까지 제3국 대사가 상호 겸임하기를 제외한 바, 카타르 측은 주이란 카타르대사를 통하여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회신함.

### 3. 정부는 1974년도 중동 지역에 대한 중점 사업으로 카타르 등 페르시아만 4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함.

- ※ 한국 측이 1974.1.30. 주이란대사 명의 공한을 통해 수교를 제한한데 대해 카타르 측이 3.19. 주이란 카타르대사 명의 회한을 통해 이에 동의함.

### 4. 한국과 카타르 정부는 1974.4.18. 국교수립 합의 공동성명서를 양국 수도에서 동시에 발표함.

- ※ 양국 정부는 동 공동성명을 통해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함.

237

## 국교수립 교섭 - 남아프리카공화국

| 74-0195 |

생산연도	1961-1974
생 산 과	조약/구미
MF번호	C-72 / 19 / 1~32p

### 1. 백선엽 주프랑스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아프리카지역 친선사절단은 1961.8.21.~26.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 ※ 주요일정

- 8.22. 남아공 외교차관 및 장관 예방, 대통령 친서 전달, 남아공 국방장관 예방, 한국전 참전에 대한 사의 표시, 남아공 외교장관 주최 만찬 참석
- 8.23. 주남아공 대만(구 자유중국)총영사 주최 사절단 환영만찬회 참석
- 8.24. 남아공 국방총사령관 예방 및 Waterkloof 비행대 훈장수여식 거행
- 8.25. 공동성명서 서명 및 발표, 친선사절단 주최 칵테일 파티
- 8.26. 남아공 외교장관과의 조찬

#### ※ 평가

- 반공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국에 대한 우호관계 및 유엔에서의 한국 지지 입장 확인

### 2. 백두진 대통령 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유 후 1973.4.29. 보고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인종차별 문제가 있으나 동국의 경제 및 군사력 등을 감안, 향후 적어도 동국과 준외교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언급함.

### 3. 주아르헨티나대사는 현지 주재 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가 1974.3.22. 전화하여 한국의 문호개방외교 정책 발표 후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문의하면서 외교관계가 어려우면 영사관계를 설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을 동일자로 보고하면서 외무부의 지침을 조회함.

- ※ 이에 대해 외무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는 외교관계 등 공식 관계가 없어도 통상무역관계가 순조로이 증진되고 있으며 관계수립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통보함.

# 소련의 대한정책 및 우방국을 통한 한·소련 관계개선

| 74-0196 |

생산연도 | 1973-1974

생 산 과 | 동구

MF번호 | Re-22 / 46 / 1~71p

소련의 대한정책과 관련한 재외공관의 주요 보고 내용임.

## 1. 주일본대사 보고(1973.9.4.)

- ※ 일본 외무성에 의하면 소련의 대한민국 관계에 관해 소련 외무성 극동국 부국장은 소련 주재 한국 통상대표부 설치나 특파원 파견은 북한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으며 소련 개최 유니버시아드에 한국 대표단을 초청한 것은 정치적 의미가 없고, 북한은 두 개의 한국 인정에 반대한다고 언급함.

## 2. 주이탈리아대사 보고(1974.1월)

- ※ 이탈리아 외무성에 의하면 지난해 봄까지는 소련 외교관들이 이탈리아로 하여금 북한을 승인하도록 종용하였으나 금후 북한 승인 종용을 의미하는 하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소련 정부의 의향이 변화됨.
- ※ 이탈리아 외무성에 의하면 소련은 서구 지역 국가가 남북한에 대한 동시문호개방정책을 견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금년 내에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함.

## 4. 주네덜란드대사 보고(1974.5월)

- ※ 네덜란드 외무성 아주국장은 5.3. 주네덜란드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언급함.
  - Van Der Stoel 네덜란드 외상이 소련 방문 중 그로미코 소련 외상에게 국제적 긴장완화를 위해 소련이 한국을 승인함이 유익할 것이라고 한 바, 동 외상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북한이 제안한 통일안의 진전이 없는 현 단계에서 남한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 Stoel 외상은 1974.5.28. 주네덜란드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동 외상의 소련 방문 시 그로미코 외상은 남북한이 통일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남북한을 따로 승인하면 통일에 대한 장애가 되므로 남한에 대한 승인을 고려할 수 없다고 말함.

## 5. 주독일대사 보고(1974.9월)

- ※ 겐셔 서독 외상이 9.16. 서독 방문 중인 그로미코 외상에게 소련과의 국교를 희망하고 우선적으로 무역, 문화 등 비정치분야의 교류 추진을 바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한데 대해, 그로미코 외상은 이에 유의하겠지만 소련 으로서는 긴급한 사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임.

## 한·소련의 관계개선을 위한 소련 외교관 직접 접촉

| 74-019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특수지역/구주2
MF번호	C-73 / 2 / 1~93p

재외공관의 1974년 중 소련 외교관 접촉 관련한 보고 내용임.

1. 주르완다대사는 1.3. 주르완다 소련대사관에서 개최된 영화회에 참석, 주르완다 소련대사와 남북대화, 중국(구 중공)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2. 주호주대사관 무관은 1.24. 캔버라 엠버시 호텔에서 주호주 소련대사관 서기관 3인을 면담, 남북한 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3. 주핀란드대사는 2.5. 주핀란드 아르헨티나대사 송별 리셉션에서 최근 부임한 주르완다 소련대사와 한·소련 관계, 남북회담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4. 주핀란드대사는 3.19. 주핀란드 소련대사관 2등서기관과 소련의 대북한 군사원조, 아시아집단안보회의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4.10. 동 2등서기관을 면담하여 한·소련 간의 정치관계 정상화 이전에 고려될 수 있는 유익한 지역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함.
5. 주캐나다대사관 공보관은 4.29. 소련 타스통신 특파원과 오찬을 가진바, 동 특파원은 한국 문제에 관해 별로 논평하지 않고 중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함.
6.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는 5.4. 엑스포 개회식에서 주샌프란시스코 소련총영사의 옆자리에 앉은바, 동 소련총영사는 남북한 대화의 진전, 북한의 대미협상 등에 관해 문의함.
7. 주벨기에대사는 5.21. 겸임국 신임장 제정차 룩셈부르크 방문 시 주룩셈부르크 소련대사를 면담한바, 동 대사는 한국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
8. 주르완다대사대리는 7.21. 벨기에 국경일 리셉션에서 주르완다 소련대사와 회동하여 남북한 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국교수립 교섭 - 북예멘

| 74-019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73 / 3 / 1~121p

정부는 6·23 특별선언 이후 북예멘 등 친공산 중립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기로 함.

### 1. 외무부는 주카이로총영사관을 통해 북예멘 측과 교섭 중임을 주에티오피아대사에게 통보하면서 주에티오피아 북예멘대사관을 통해서도 한국과의 관계개선 의향을 타진하도록 지시함.

※ 주에티오피아대사관 참사관이 1973.8.1. 주에티오피아 북예멘대사를 예방한 바, 동 대사는 한국의 6·23 문호개방정책을 본국에 보고한 바 있으며 8월말 일시귀국 시에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임을 언급

### 2. 주이집트 북예멘대사대리는 1973.9.26. 주카이로총영사에게 양국 관계는 어업 등 경제협력부터 시작 하고 이를 위해 소규모의 무역대표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함.

※ 동 총영사는 북예멘의 반응이 우호적임을 감안하여 북예멘을 직접 방문하여 교섭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3. 주카이로총영사는 1974.1.1. 주이집트 북예멘대사대리를 방문하여 자신이 1월중 북예멘을 방문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북예멘 대통령, 수상, 외무상 및 경제부처장관과의 면담추진을 요청함.

### 4. 주카이로총영사는 1974.1.18.~27. 북예멘에 출장하여 Numan 북예멘 대통령 특별보좌관, Said 개발성장관, Gamil 부외상, 경제관계인사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함.

※ Numan 보좌관은 Eiani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한국과의 수교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제출한바, 동 보고서는 이집트의 선례를 따라 북한과는 외교 관계, 한국과는 영사 관계를 수립하는 방침을 포함하고 있음.

### 5.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74.5.15.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Asnag 북예멘 외상을 면담하여 외교관계 수립문제에 관해 협의함.

※ Asnag 외상은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진지하게 고려할 예정이지만 북예멘이 북한으로부터 기계수리공장 등의 원조를 받고 있어 한국과의 수교 시 북한은 이러한 원조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대신에 한국이 경제, 기술, 어업분야에서 협력할 용의가 있는지를 문의함.

※ 동 외상은 한국과의 관계 수립에 관해 귀국 후 각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언급함.

### 6. Hamdi 북예멘군 참모차장은 1974.6.13.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함.

※ 쿠데타 직후 7인의 군장교로 구성된 통치평의회를 조직하고 비상상태를 선포함.



**7.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74.8.25.~29. 북예멘을 방문하여 Aini 북예멘 수상, Hadle 외무상, Jamil 부외상 등을 면담함.**

- ※ 북예멘 측은 원칙적으로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동의하지만 공산권 국가의 원조사업 중단 위협을 감안, 한국이 예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표시로 예멘산 암염을 수입해주기를 희망함.
- ※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동 방문 후 북예멘과 수년간의 암염 수입계약을 체결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재외공관(상주) 설치 계획

| 74-0199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법무담당관
MF번호	C-73 / 04 / 1~94p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에 따른 재외공관 설치 문제와 관련한 검토 내용임.

## 1. 외무부는 1974~75년 중 설치가 필요하거나 설치 예정인 상주공관에 관해 아래 의견을 제출함.

- ✧ 유럽·아프리카·중동 지역: 포르투갈, 니제르, 요르단, 이집트(카이로), 레바논, 오만, 카타르
- ✧ 아시아 지역: 일본(니가타), 네팔,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2. 외무부는 1974년 중 신설이 예정 또는 요망되는 공관에 관해 아래 의견을 제출함.

- ✧ 유럽: 포르투갈(대), 프랑크푸르트(총), 뒤셀도르프(총), 뮌헨(총)
- ✧ 미주: 토론토(총), 자메이카(대), 파라과이(대), 시애틀(총), 도미니카(대), 볼리비아(대), 가이아나(대), 트리니다드토바고(대), 엘살바도르(대), 온두라스(대), 니카라과(대), 아이티(대)
- ✧ 아주: 아프가니스탄(대), 니가타(총)
- ✧ 아프리카: 시에라리온(대), 니제르(대), 보츠와나(대)
- ✧ 중동: 요르단(대)

## 3. 외무부는 대북한 우위를 목표로 하는 외교망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1974.8월 재외공관 증설 계획서를 작성함.

- ✧ 증설 기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진출 저지 및 압도, 수출 상품 시장 개척, 교민 보호 등
- ✧ 1974년도 증설 계획: 대사관 5개, 총영사관 3개

## 재외공관 설치교섭 - 보츠와나

| 74-0200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C-73 / 5 / 1~14p

1. 외무부는 1974.7월 주케냐대사(보츠와나 겸임)에게 보츠와나에 1인 공관 설치 또는 태권도 사범 파견을 검토 중에 있다고 통보하고 보츠와나가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함.
2. 주케냐대사는 1974.8.20. 보츠와나 외무담당국무상을 면담하여 한국의 1인 공관 설치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2월까지 보츠와나 측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이 없음.
3. 주케냐대사는 1974.12월 보츠와나가 이미 12.5.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므로 통상관계 등 특별한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보츠와나에 공관을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캄보디아(구 크메르) 대사관 비상철수 계획 및 무관 가족 출국

| 74-0201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동남아2
MF번호	C-73 / 6 / 1-28p

## 1. 주캄보디아(구 크메르)대사관 직원 가족 전원은 수도 프놈펜에 대한 공산군의 침공이 격화됨에 따라 1973.5월말 서울로 철수를 완료함.

- ※ 국방부는 1974.3월 주캄보디아대사관 무관 부인에 대한 일시출국허가(3.7.~21.)를 외무부에 요청하였는바, 이는 주캄보디아대사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동 무관이 대만(구 자유중국)에 체류하게 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임.
- ※ 국방부는 5.27. 주캄보디아대사관 무관을 1974년 중 교체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신임 무관 부임 전 이사 등을 위한 무관 가족의 출국에 대해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무관 교체 계획에 따른 동반가족 출국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국방부에 통보함.

## 2. 외무부는 1974.1.21. 주캄보디아대사에게 비상사태 발생 시 공관원 및 교포의 안전철수를 포함한 비상대책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공관장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함.

- ※ 외무부는 주캄보디아대사관 직원 및 교민 보호와 비상 시 안전철수 지원을 위해 1.28.부터 매일 2회 외무부와 주캄보디아대사관 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 3. 주캄보디아대사는 1974.2.19. 대사관에 대한 공산군 포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놈펜 근무 직원 수를 반으로 줄여 교대로 근무하는 방법을 채택하겠다고 보고함.

- ※ 2.19. 각국 공관장 중 한국, 일본, 필리핀, 라오스, 월남, 영국대사만 프놈펜에 남아있다고 보고함.

## 재외공관 설치 - 코스타리카, 1974.9.11.

| 74-0202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73 / 7 / 1~81p

### 1. 주코스타리카대사관(상주)이 1974.9.11.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에 설치됨.

※ 이복형 대사대리는 9.5. 현지에 부임함.

### 2. 주코스타리카대사관 설치 경위는 아래와 같음.

- ※ 주멕시코대사(코스타리카 겸임)는 1974.6.5. 코스타리카 외무장관 앞 공한으로 한국이 코스타리카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고 7.11.~13. 코스타리카에 출장하여 상주대사관 설치 교섭을 함.  
- 동 외무장관은 1974.7.11. 주멕시코대사 앞 공한으로 한국 정부의 주코스타리카 상주대사관 설치 결정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면 동 대사관 설치에 따른 협조 제공을 약속함.
- ※ 주코스타리카 상주대사관 설치 안건이 1974.7.19.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 주코스타리카대사관이 1974.9.11. 설치됨

### 3. 코스타리카의 La Nacion 등 일간지는 1974.9월 주코스타리카 한국대사관 설치 관련 기사를 게재함.

## 사이프러스 관할공관 변경

| 74-0203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구주1
MF번호	C-73 / 8 / 1~16p

1. 외무부는 1974.3.18자 대통령령 제7088호에 의거, 사이프러스에 대한 관할공관을 주이탈리아대사관에서 주그리스대사관으로 변경함.
2. 상기 사이프러스에 대한 관할공관 변경은 1974.1월 주이탈리아대사가 아래와 같이 건의하고 이에 대해 주그리스대사가 동의하여 이루어짐.
  - ※ 사이프러스 인구의 88%가 그리스계이므로 그리스의 사이프러스에 대한 영향력이 큼.
  - ※ 주그리스 사이프러스대사가 이탈리아대사를 겸임하고 있으므로 주이탈리아대사가 그리스 출장을 가지 않는 한 신속히 접촉할 수 없음.
  - ※ 주그리스 사이프러스대사에 대한 사이프러스 대통령의 신임이 큼.
  - ※ 거리상으로 그리스가 이탈리아보다 사이프러스에 더 가까움.
3. 주그리스대사관은 1974.5월 주이탈리아대사관으로부터 사무인계서와 함께 관련 서류철을 인수함.

## 재외공관 설치 - 에콰도르, 1974.3.15.

| 74-0204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73 / 9 / 1~123p

### 1. 주에콰도르대사관(상주)이 1974.3월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 설치됨.

※ 김상규 대사대리가 3.15. 현지에 부임함.

### 2. 주에콰도르대사관 설치 경위는 아래와 같음.

- ※ 주페루대사관은 1973.6.21. 에콰도르 외무부 앞 공한으로 한국이 에콰도르에 상주공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함.
  - 페루 주재 에콰도르 대사를 통하여 전달
- ※ 에콰도르 정부는 1973.7.9. 한국의 상주공관 설치를 환영하고 양국 정부가 7.13. 이를 공동발표할 것을 제의함.
  - 7.13. 양국 정부 공동 발표
- ※ 주에콰도르 상주대사관 설치 안건이 1973.11.2.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음.
- ※ 김상규 대사대리가 1974.3.15. 현지에 부임함.

## 재외공관 설치 - 과테말라, 1974.9.10.

| 74-0205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73 / 10 / 1~72p

1. 주과테말라대사관(상주) 개설을 위해 정희택 대사대리가 1974.9.5. 과테말라에 부임함.

2. 주과테말라대사관 설치 경위는 아래와 같음.

- ※ 주멕시코대사(과테말라 겸임)는 1974.6.5. 과테말라 외무장관 앞 공한으로 한국이 과테말라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함.  
- 과테말라 정부는 6.25. 과테말라 외무차관 명의 공한으로 한국의 과테말라 상주공관 설치에 동의함.
- ※ 주과테말라 상주대사관 설치 안건이 1974.7.19.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음.
- ※ 정희택 대사대리가 1974.9.5. 현지에 부임함.

## 재외공관 설치 - 바티칸, 1974.4.8.

| 74-0206 |

생산연도	1964-1974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C-73 / 11 / 1~36p

### 1. 초대 주교황청대사(상주)가 1974.3.21. 부임함.

### 2. 주교황청대사관 설치 경위는 아래와 같음.

✪ 주교황청 상주대사관 설치 안건이 1974.21.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음.

- 교황청은 1964.2월 이래 교황 사절을 서울에 상주시키고 있으나 한국은 주스위스대사가 겸임하고 있음에 따라 상호주의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있음.
- 국제사회에서 교황청의 지위 및 영향력이 지대한 바, 더욱 적극적으로 대교황청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주교오베 · 요코하마 · 나고야영사관의 총영사관 승격, 1974.5.7.

| 74-020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73 / 12 / 1~50p

1. 정부는 1974.5.7. 주교베영사관, 주나고야영사관 및 주요코하마영사관을 각각 주교베총영사관, 주나고야총영사관 및 주요코하마총영사관으로 승격함.

2. 상기 3개 영사관의 총영사관 승격 경위는 아래와 같음.

- ※ 외무부는 상기 3개 영사관이 1966년 개설된 이래 그 비중과 중요성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동 3개 영사관을 각각 총영사관으로 승격하기로 하고 1974.1월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수출시장 개척, 영사업무 강화, 민단조직의 활동 강화, 영사단과의 관계 등 고려
- ※ 주일본대사관은 1974.2.9. 일본 외무성 앞 공한으로 한국 정부가 3개 영사관을 총영사관으로 승격하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 일본 정부는 2.22. 동의 부여
- ※ 정부는 1974.5.7. 3개 영사관을 각각 총영사관으로 승격함.

## 재외공관 설치 - 자메이카, 1974.10.14.

| 74-0208 |

생산연도	1970-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73 / 13 / 1~107p

1. 주자메이카 상주대사관 개설차 서경석 주자메이카대사대리가 1974.10.7.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톤에 부임함.

2. 주자메이카대사관 설치 경위는 아래와 같음.

※ 외무부는 1971.7월 주자메이카 상주대사관을 설치키로 결정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음.

- 자메이카는 카리브지역 국가 중 정치적, 경제적인 면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고 카리브 자유무역연합의 사실상 중심국으로 상주공관 설치 시 카리브 여타국을 겸임할 수 있음.

- 자메이카에 상주공관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유엔에서의 한국 지지도 호전, 통상 증진, 북한의 침투 저지, 카리브지역 영연방국가와의 유대강화 등 현안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임.

※ 중남미사절단장 김동조 주미국대사는 1971.9.2. 주자메이카 한국 상주공관 설치를 통고하는 외무부장관 명의 공한을 자메이카 측에 전달함.

- Shearer 자메이카 수상 겸 외상은 9.28.자 외무부장관 앞 공한으로 동 정부가 킹스톤 주재 각국 공관의 증설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동 검토가 끝날 때까지 한국이 공관 개설 조치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주미국대사 및 주멕시코대사를 통해 자메이카 측의 공관 개설 연기 요청 사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특별한 진전이 없었음.

※ Manley 자메이카 수상 겸 외상은 1974.8.6. 주멕시코대사 앞 공한으로 한국의 상주공관 설치는 1974.9.15.이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통고함.

# 주Beirut(레바논) 통상대표부 직원 · 가족 철수 및 복귀

| 74-020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73 / 14 / 1~34p, 2010-87 / 34 / 1~3p

1. **외무부는 1974.10.21. 일본 적군파가 대통령 저격범 문세광과의 교환을 목적으로 베이루트 주재 한국 공관장 또는 공관원을 납치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공관 직원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

- ※ 주베이루트 통상대표부에는 공사와 최소한의 공관 직원만을 잔류시키고 공관직원 3명과 전 공관직원의 가족을 서울로 철수시킴.
- ※ 문공부 공보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직원 및 외환은행 직원 등은 인근국가 또는 유럽지역 국가로 철수시킴.

2. **대통령 저격범 문세광이 1974.12.20. 처형되고 베이루트 현지에서도 한국 공관원을 납치하려는 특별한 징후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외무부는 철수한 공관직원, KOTRA 직원, 외환은행 직원 등을 아래와 같이 복귀시키기로 1974.12월 결정함.**

- ※ 복귀 시기
  - 최단 시일 내에 복귀시켜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복귀 방법
  - 외무부 소속 직원 및 동 가족은 일시에 출국하여 베이루트에 함께 도착하는 것을 피하도록 시차를 두고 복귀시킴.
  - 문공부 공보관, KOTRA 직원 및 외환은행 직원의 베이루트 복귀는 당해기관의 조치에 일임함.

## 재외공관 설치 - 라오스

| 74-0210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73 / 15 / 1~104p

### 1. 주라오스 통상대표부가 1973.11.1. 개설된 바, 동 대표부 개설 경위는 아래와 같음.

- ※ 한국 정부가 1973.6.5. 라오스 정부에 주라오스 한국 통상대표부 설치를 제의한 데 대하여, 라오스 정부는 7.25. 이에 동의함.
- ※ 외무부는 라오스 측과 통상대표부 설치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하여 최종 합의를 보는 대로 통상대표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1973.9월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대동남아 외교, 특히 대중립국 외교 강화 방안으로서 상주공관 조기 설치가 유리
  - 라오스 전후복구사업에 대한 한국의 적극 참여를 통한 경제적 실리 확보
  - 라오스에 대한 북한의 진출에 앞서 한국의 외교활동 거점 확보
- ※ 진인택 주라오스 통상대표부 총영사가 1973.10.28. 라오스에 부임함.
  - 1974.11.1. 주라오스 통상대표부 업무 개시

### 2. 한국과 라오스의 국교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가 1975.7.25. 발표됨,

- ※ 주라오스 통상대표부는 동일자로 라오스 외무부와 외교단에 동 대표부의 대사관 승격 및 대사대리 임명 등을 통보함.

## 재외공관 설치 - 시에라리온, 1974.11.27.

| 74-0211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C-73 / 16 / 1~84p

### 1. 주시에라리온대사관(상주)이 1974.11.27. 시에라리온 수도 프리타운에 설치됨.

※ 조상훈 주시에라리온대사대리가 11.27. 부임함.

### 2.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의 설치 경위는 아래와 같음.

※ 주시에라리온 상주대사관 설치 안건이 1974.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이미 북한은 8월 프리타운에 상주대사관을 개설함.
- 시에라리온 수도 프리타운은 대서양에서 조업하는 한국 원양어선단의 기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안 해에 풍부한 어장이 있으므로 한국 원양어선단의 조업 권장과 보호를 위해 시에라리온과의 관계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음.
- 북한 외교에 대한 견제와 경제적 실리 확보를 위하여 한국 상주대사관 설치가 요망됨.

※ 조상훈 대사대리는 1974.11.29. 시에라리온 외무부 의전장을 면담하여 동 대사대리가 부임한 11.27.자로 한국 상주대사관이 설치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함.

## 재외공관 폐쇄 - 토고, 1974.9.25.

| 74-021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C-73 / 17 / 1~75p

1. 훈레데 토고 외상은 1974.9.17. 주토고 한국대사대리를 초치하여 토고가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함.

※ 동 외무장관은 단교의 이유는 한국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사실이 한국의 통일을 촉진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함.

2. 주토고대사관은 에야테마 토고 대통령이 1974.9.7.~12.간 평양 방문 시 한국과의 단교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함.

※ 북한은 한국과의 외교관계 단절의 대가로 2,200만 달러의 원조 제공을 약속하였다 함.

3. 주토고대사대리는 대사관 철수 업무를 마치고 1974.9.25.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으로 철수함.

※ 9.23. 토고 외무차관서리를 방문하여 철수 준비 중인 한국 의료단 3명의 신변보호를 요청함.

4. 외무부는 1974.9.24. 토고에서의 한국 이익대표국으로 프랑스를 지정하고자 하며 이를 프랑스 정부가 수락해 줄 것을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하여 프랑스 외무부에 요청함.

## 사모아(구 서사모아) 및 통가 관할공관 재조정

| 74-021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73 / 18 / 1~27

외무부는 1974.7.15. 공포된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을 통해 주통가 및 주사모아 대사관을 주호주대사의 겸임에서 주뉴질랜드대사의 겸임관할 공관으로 변경함.

1. 주뉴질랜드 상주대사 부임을 계기로 사모아 및 통가의 관할공관을 주호주대사관에서 주뉴질랜드 대사관으로 변경함.
2. 사모아와 통가는 전통적으로 뉴질랜드의 영향권 하에 있고 특히 사모아는 대외 문제를 뉴질랜드의 외교망을 통하여 다루고 있음.
3. 사모아와 통가는 뉴질랜드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여타국도 뉴질랜드 주재 대사들이 동 양국을 겸임함.

## 미국령 사모아(American Samoa) 출장소 설치 노력

| 74-0214 |

생산연도	1971-1974
생 산 과	북미1/경제협력2
MF번호	C-73 / 19 / 1~128p

1. 주호놀룰루총영사는 1971년 이후 사모아에 진출한 한국 원앙어선단 보호, 어획물의 판로개척 및 선원 고입·고지 사무 등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모아에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출장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함.

2. 외무부는 사모아출장소 설치가 예산 형편상 곤란한 실정임을 감안, 사모아에 주재 중인 주미국대사관 소속 수산관을 1974.5.9.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영사(선원 및 선박 담당)로 발령하여 아래의 한정된 영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 선원 고입·고지 업무
- ※ 선원, 선박 및 어획물 판매 대전에 대한 확인 업무
- ※ 수입금을 월별 종합하여 주호놀룰루총영사관으로 송금 업무



# 재외공관 설치 - Agana(미국) 총영사관, 1974.5.7.

| 74-0215 |

생산연도	1970-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73 / 20 / 1~53p

## 1. 주호놀룰루총영사관 관출장소가 1974.5.7. 주하갓나영사관으로 승격됨.

※ '재외공관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이 5.7. 대통령령 7135호로 개정 공포됨.

## 2. 주호놀룰루총영사관 관출장소가 주하갓나영사관으로 승격된 경위는 아래와 같음.

※ 주호놀룰루총영사와 관출장소장의 건의에 따라 외무부가 1974.2월 관출장소의 지위를 영사관으로 승격하기로 결정함.

- 괌과 한국 관계의 특수성 및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의 관출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할이 곤란한 점을 감안

※ 주하갓나영사관 설치 안건이 1974.2.26.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음.

- 한국의 건설업체 및 군용업체가 '괌'도 및 인접도서에 대거 진출

- 괌 정부와의 교섭문제 등에 있어서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을 거치지 않고 외무부 본부와 직접적인 업무 연락 관계를 수립할 필요성 대두

- 거리 관계 및 괌의 특수성에 비추어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의 관할은 명목상에 불과

※ 1974.5.7. 관련 규정이 개정됨.

## 재외공관 설치계획 - 미주지역

| 74-0216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73 / 21 / 1~37p

1. 외무부 미주국이 1973.8월 기획관리실에 송부한 중남미지역 상주공관 설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 주에콰도르대사관, 주가이아나대사관, 주파라과이대사관

2. 외무부 미주국은 1974.8월, 1974년 중 설치가 요망되는 공관으로 주자메이카대사관과 주파라과이대사관을 기획관리실에 통보함.

260

3. 외무부는 1974.9월 주멕시코대사에게 중미지역 공관 설치와 운영에 관해 통보함.

※ 외무부는 대중미 및 카리브지역 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테말라 및 코스타리카에 상주공관을 설치하였으며, 자메이카에도 상주공관을 설치할 계획임.

※ 상주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중미 3개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에 대해서는 공관 설치를 연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또한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에 공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임.

## 중미 지역 재외공관 관할 · 공관 재조정

| 74-0217 |

생산연도	1974-1975
생산과	중미담당관
MF번호	C-73 / 22 / 1~53p

### 1. 외무부는 1974.1월 바하마의 겸입관할 공관으로 주미국대사관을 지정하기로 결정함.

- ※ 미국과 바하마 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함.
- ※ 3.18. 관련규정이 개정 공포됨.

### 2. 외무부는 1974.12월 트리니다드토바고와 바베이도스의 겸입관할 공관을 주베네수엘라대사관에서 주캐나다대사관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함.

- ※ 트리니다드토바고와 바베이도스는 1960년대 독립한 신생독립국이며 영연방의 일원으로 캐나다와 경제·기술 협력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은 캐나다에 고등판무관을 상주시키고 있음.
- ※ 1975.2.7. 관련규정이 개정 공포됨.

261

## 주한공관 설치 - 아르헨티나, 1974.5.3.

| 74-021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73 / 23 / 1~13p

1. 아르헨티나 외무부 아주국장은 1974.5.7. 주아르헨티나대사에게 아르헨티나 정부가 서울 주재 아르헨티나대사관을 정식 대사관으로 승격시키기로 하고 5.3.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였음을 통보함.
2. 주한 아르헨티나대사대리는 1974.5.10. 외무부차관을 면담하여 아르헨티나 정부가 5.3.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을 주일본 아르헨티나대사관의 겸임으로부터 독립시키기로 결정함을 통보함.

# 주한공관 설치 - 대만(구 자유중국) 영사관 (부산) 1974.5.31.

| 74-0219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C-73 / 24 / 1~52p

## 1. 주한 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은 1972.9.18.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동 대사관의 부산 출장소를 대신할 영사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 ※ 경상남 · 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에 거주하는 약 9천 명의 화교에 대한 영사업무 증가와 남해지구를 방문하는 대만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업무 증가로 영사관 설치 필요

## 2. 외무부는 1974.1.21.자 공한으로 한국 정부가 부산 주재 대만영사관 설치에 동의함을 주한 대만 대사관에 통보함.

## 3. 외무부는 아래 사항을 고려, 대만영사관 설치문제를 조용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함.

- ※ 1965년에 체결된 한국 · 대만 우호조약에 의하면 양국은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타방 체약국 내의 지방에 각급 영사관을 파견하는 권리를 갖도록 합의함.
- ※ 대만이 아래 이유로 부산에 영사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일본 · 중국(구 중공) 국교수립으로 입은 외교적 손실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
  - 1만 명의 화교가 거주하는 부산 등지의 교민보호사무의 관할
  - 매년 증가하는 양국간 무역의 상당부분이 부산항을 출입
- ※ 부산에 대만영사관이 설치될 경우 한국과 대만 간 경제교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한국이 중국과 경제 · 문화교류 등을 통한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는 후퇴하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음.

## 주한공관 설치 - 스웨덴, 1974.5.2.

| 74-0120 |

생산연도	1970-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C-73 / 25 / 1~31p

### 1. Heckscher 주한 스웨덴대사(동경 상주)는 1974.5.3. 김동조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주한 상주공관 설치에 관한 스웨덴 정부의 공식통보(5.2.자)를 전달함.

- ※ 스웨덴 정부는 주한 스웨덴대사관 상무관실을 상주대사관으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상무관실에 근무 중인 Berg 상무관을 대사대리로 승격시킴.

### 2. 외무부는 주스웨덴대사 등을 통해 스웨덴의 주한 상주공관 설치를 위한 교섭을 진행해 옴.

- ※ 스웨덴 정부는 그동안 주한 상주공관 설치를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예산사정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반응을 보여왔음.

## 중미 5개국가의 주한 공동대사관 설치 추진

| 74-012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중미
MF번호	C-73 / 26 / 1~10p

1. 한국을 방문한 과테말라대통령의 장남이며 보좌관인 Carlos Arena는 1973.5.7.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시 중미 5개국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5개국이 공동으로 서울에 상주 공관을 개설하면 좋겠으며 귀국 후 이를 추진해 보겠다고 언급함.

2. 이와 관련 외무부가 1974.1월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주재 과테말라대사대리 등으로부터 파악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중미 5개국 중 일부 국가가 각국의 해외공관이 상호 타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양자 협정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중미 5개국 전체가 이러한 협정을 갖기는 어려움.
- ※ 실제로 공동공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대사를 포함한 파견직원 구성 문제, 경비 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동공관 설치 협정이 이행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나 이 과정에서 협정이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음.

265

# 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상회의, 제7차. Jakarta, 1974.5.7.-9.

| 74-022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73 / 27 / 1~88p

## 1. 제7차 ASEAN(동남아국가연합) 각료회의가 1974.5.7.~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됨.

- ※ 5개 회원국(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외무장관이 참석함.
- ※ 캄보디아(구 크메르) 및 라오스 대표는 옵서버로 참석함.

## 2. 상기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인도네시아대통령은 개회사에서 ASEAN은 어느 국가도 적대하지 않으며 역내 평화, 안정,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진정한 지역협력기구임을 강조
- ※ ASEAN 상설사무국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설치
- ※ ASEAN 현장 채택 문제를 상설위원회와 회원국의 심의에 회부
- ※ 회원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력을 강화
- ※ 차기 각료회의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



#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과학기술등록처 장래 및 한국 분담금 문제

| 74-022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2
MF번호	C-73 / 28 / 1~102p

## 1. 주한 호주대사관은 1974.3.14.자 공한으로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과학기술등록처의 장래에 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통보함.

- ※ 호주 정부는 과학기술등록처의 활동을 계속 지원할 의사가 있으나 동 기구가 ASPAC에 머물러 있는 한 지원 할 수 없음.
- ※ 동 정부는 과학기술등록처의 운영을 단독으로 떠맡을 수 없으며 동 기구는 현존하는 타 국제기구로 흡수되어야 할 것으로 봄.
- ※ 한국 정부가 과학기술등록처를 장차 귀속시킬 국제기구에 관한 의견을 제공해 주기를 희망함.

## 2. 주호주대사가 1974.4월 외무부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ASPAC 회원국들이 과학기술등록처가 이관되기를 희망하는 국제기구는 아래와 같음.

- ※ 태국(ESCAP), 일본·필리핀(ASCA), 호주(ESCAP, ASCA 또는 FAO), 뉴질랜드(호주 결정에 따름), 월남(ESCAP 또는 ASCA)

## 3. 호주 정부는 1974.8.19. 캔버라 주재 ASPAC 회원국 공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ASPAC 과학기술 등록처의 ESCAP 이관 문제를 거론하며 동 정부가 회원국을 대표하여 ESCAP과 교섭하여도 좋을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 ※ 외무부는 9월 부내 회의에서 호주 또는 다른 ASPAC 회원국이 과학기술등록처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나, 회원국들의 반대로 국제기구로의 이관이 불가피할 경우 ASCA를 선호하며 ESCAP도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함.

## 4. 호주 외무부는 1974.10.9. ESCAP 25개 회원국 주재 호주대사관에 아래 사항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을 타진하도록 지시한 바, 주한 호주대사관도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요청함.

- ※ 과학기술등록처의 ESCAP 이관 문제는 한국 등 ASPAC 7개국의 지지를 받음.
- ※ 1975.2월 ESCAP 총회에 앞서 1974.11월 자문위원회에서 과학기술등록처의 ESCAP 이관에 관한 원칙적 합의가 있기를 희망함.
- ※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이며, UN 기금 또는 자발적 분담금에 의존하는 방법 등이 있음.
- ※ 상기 자문위원회에 앞서 ESCAP 회원국 간에 자금 조달 방법이 모색·합의되기를 희망함.
- ※ 각 ESCAP 회원국은 자문위원회 자국 대표에게 등록처의 ESCAP 이관 문제를 적극 지지하도록 지시하기를 요청함.

#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 제33차. 서울, 1974.5.22.

| 74-0224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공보문화
MF번호	C-73 / 29 / 1~144p

제33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가 1974.5.22. 서울에서 개최됨.

## 1. 참가국

- ※ ASPAC 회원국 실무자 대표 및 사무국 전문직 직원 전원  
- 회원국 중 호주와 말레이시아는 불참
- ※ 김석현 외무부 공보문화과장 등 2명

268

## 2. 주요 의제

- ※ 사회문화센터 전문직 직원 봉급 및 수당 인상
- ※ 1974/1975년도 예산안

## 3. 주요 협의사항

- ※ 사무국의 전문직 보수인상  
- 월남과 일본 대표는 사무국이 사회문화센터 운영비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 1974/1975년도 예산안  
- 운영비: 회원국 대표들은 운영비 부족 총당 문제는 1974/1975 회계연도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이므로 사무국이 장기적인 견지에서 재원확보 전망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함.  
- 행정비: 1974/1975년도 행정비 초과분에 대하여는 한국과 사무국이 협의·조정하기로 함.  
- 기타: 사무국이 운영비 부족분을 총당하기 위해 행정비 예비비 이체를 요청한 데 대해 한국 대표는 설립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함.

#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 제34차. 서울, 1974.6.14.

| 74-0225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공보문화
MF번호	C-73 / 30 / 1~95p

제34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가 1974.6.14. 서울에서 개최됨.

## 1. 주요 의제

- ※ 1974/1975 센터 운영비 예산 및 사업계획안
- ※ 센터 전문직 보수 인상 조정(25%)안

## 2. 한국 측 입장

- ※ 운영비 예산안
  - 운영비 예산은 한국을 제외한 여타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한국 측으로서는 특별히 관여할 사항이 없음.
  - 단지 예산 부족액에 대한 한국 정부 부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한국 측은 협정 규정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
- ※ 사업계획안
  - 원칙적으로 찬성
- ※ 센터 전문직 보수 인상
  - 본건은 한국을 제외한 여타 회원국 분담금에서 충당되고 있는 사항으로 회원국 다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함.
  - 필요시 물가고를 감안, 현 봉급액의 합리적인 조정(10~15%)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 제35차. 서울, 1974.12.3

| 74-022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공보문화
MF번호	C-73 / 31 / 1~64p

1. 제35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가 1974.12.3. 서울에서 개최 예정임.

2. 동 회의의 잠정의제는 아래와 같음.

- ※ 제18차 임시회의 회의록 요약 검토
- ※ 사무총장의 1973~74년 연례보고
- ※ 사무총장의 1973~74 회계연도 재정보고
- ※ 1973~74 회계연도 감사보고
- ※ 전문직 직원 보수 조정에 관한 보고
- ※ 전문직 직원 채용
- ※ 1975~76년 사업프로그램 및 예산안 초안
- ※ 직무규정 개정 관련 보고

#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임시회의, 제18차. 서울, 1974.7.2.

| 74-0227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공보문화
MF번호	C-73 / 32 / 1~184p

제18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임시회의가 1974.7.2. 서울에서 개최됨.

## 1. 참가국

- ✿ 7개 회원국(일본, 대만, 월남, 필리핀, 뉴질랜드, 태국, 한국) 대표 및 사무국장 등이 참석함.
  - 회원국 중 호주와 말레이시아는 불참
- ✿ 오재희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등 2명 참석

## 2. 주요 결정사항

- ✿ 1974~75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총 336,459달러(운영비 215,741달러, 행정비 120,718달러)
- ✿ 사무국 전문직 직원 보수 인상 문제
  - 태국 측의 입장이 결정되는 대로 제19차 임시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을 편성
- ✿ 기타 사항
  - Dr Kung(행정담당 전문직)의 임기를 1975.5.18.까지 연장 승인
  - 차기 정기집행위원회는 1974.10월 개최 예정

#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6-7차. 서울

| 74-022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공보문화
MF번호	C-74 / 1 / 1~334p

제6~7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됨.

## 1. 제6차 회의(1974.1.24.)

### ※ 참가국

- 7개 회원국(일본, 대만(구 자유중국), 월남, 필리핀, 뉴질랜드, 태국, 한국) 대표 및 사무국장
- 김동조 외무부장관(사회) 및 한우석 외무부 방교국장 참석

### ※ 주요 의제별 토의결과

- 집행위원회 의장 선출(김동조 외무부장관)
- 제17차 집행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 심의
- 1973~74 회계연도 사업수행에 관한 사무국장 보고
- 1974~75 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실무회의에서 세부 검토 후 1974.5월 개최 예정인 집행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채택하기로 결정

## 2. 제7차 회의(1974.12.11.)

### ※ 참가국

- 7개 회원국(일본, 대만, 월남, 필리핀, 뉴질랜드, 태국, 한국) 대표 및 사무국장
- 오재희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등 2명 참석

### ※ 주요 의제별 토의결과

- 집행위원회 의장 선출(김동조 외무부장관)
- 제18차 집행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 심의
- 대학출판회의에 관한 사무국장 보고
- 사무국장의 1973~74 연례보고
- 사무국장의 1973~74 회계연도 재정보고
- 1973~74 회계연도 감사보고
- 사무국 전문직 직원의 보수 인상안 승인
- 직무규정 개정에 관한 태국 제의 청취
- 1975~76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토의

# OAS(미주기구) 총회, 제4차, Atlanta(미국) 1974.4.19.-5.1.

| 74-022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74 / 2 / 1~60p

제4차 OAS(미주기구) 총회가 1974.4.19.~5.1.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며, 동 총회 시 주요 참석자의 연설 요지는 아래와 같음.

## 1. 키신저 미 국무장관

✿ 미국의 새로운 대중남미 정책은 Good Partner 정책임.

## 2. Rabasa 멕시코 외상

✿ 미국의 대중남미 관계는 종래의 보호적 입장에서 대등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전환기에 있음.

## 3. Vignes 아르헨티나 외상

✿ OAS에 의한 12년간의 쿠바 보이콧은 시대착오임.

## 4. Miguel 페루 외상

✿ 쿠바 보이콧 정책은 미주국가 간 관계 쇠퇴를 방해하고 OAS의 약화를 초래함.

## 5. Diaz 칠레 외상

✿ 쿠바의 침략행위와 내정간섭을 규탄함.

## 6. Vasquez 콜롬비아 외상

✿ 미국·중국 관계 및 미국·소련 관계의 호전으로 쿠바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 OAS(미주기구) 외상회의

| 74-0230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남미
MF번호	C-74 / 3 / 1~272p

OAS(미주기구) 외무장관회의의 1973~74년 중 개최 관련 내용임.

## 1. 1973.11.14.~16. 회의(Bogota, 콜롬비아)

※ 차기 회의를 1974년 멕시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 2. 1974.2.21.~23. 회의(Mexico city)

※ 참석자

- 중남미 24개국 외무장관 및 미국 국무장관

※ 주요 협의사항

- 개발협력, 경제적 강제조치, OAS 개편, 파나마 운하 문제, 국제 통상구조 및 통화체제, 기술이전, 에너지 위기 등 10개 의제 토의

※ 공동성명

- 발전을 위한 협력, 능률적인 미주기구 재건, 파나마 문제 해결, 기술교류, 미국과의 전반적인 관계개선 등을 포함

## 3. 1974.4.17.~18. 회의(Washington D.C.)

※ 참석자

- 미국 국무장관 및 중남미 24개국 외무장관

※ 공동성명(14개항)

-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제국과의 협력 의지 및 희망 표명

- 중남미국가들은 미국과 중남미국가 간의 통상증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입제한이 적용되거나 기존 수입제한제도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

## 4. 1974.11.8.~12. 회의(Quito, 에콰도르)

※ 참석자

- OAS 21개 회원국 외무장관

※ 개최 경위

- 동 회의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이 대쿠바 봉쇄 해제를 목적으로 요청하여 소집됨.

※ 회의 결과

- 대쿠바 봉쇄 해제가 주된 의제가 됨.

- 대쿠바 봉쇄 해제 결의안이 결의안 채택에 필요한 14국(회원국의 2/3)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부결됨 (찬성 12개국, 반대 3개국, 기권 6개국).



# NORDIC(북구협력기구) 이사회, 제22차. Stockholm, 1974.2.16.-20.

| 74-0231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서구2
MF번호	C-74 / 4 / 1~12p

제22차 NORDIC(북구협력기구) 이사회 연차총회가 1974.2.16.~20.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됨.

## 1. 참석자

- ☼ 이사회 5개국 대표 의원 78명과 수상·외무장관을 비롯한 장관 50여명 참석

## 2. 건의사항 및 의견개진

- ☼ 건의
  - 입법 협조, 주류 광고 금지, 물리치료 교육 분야에서 특별 훈련 등 20개 항목
- ☼ 의견개진
  - 북구 협력에 관한 각료 이사회 보고 관련 사항 5건

#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제4차. Paris, 1974.12.9.-10.

| 74-023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구담담관/통상2
MF번호	C-74 / 5 / 1~42p

제4차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이 1974.12.9.~10.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됨.

## 1. 회의 개요

- ※ 9개 회원국 정부 수반과 외무장관 및 EC 집행위원장이 참석함.
- ※ 동 정상회담은 37개 항목의 최종성명을 발표함.
  - 제도 및 정치협력, 통합경제정책, 지역개발정책, 고용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이 최종성명에 포함

276

## 2. 회의 결과

- ※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번 정상회담이 공동체 체제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과 회원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결의를 새로이 하였다는 점에서 구주통합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함.
- ※ 프랑스 언론은 동 회담이 에너지 등 어려운 문제는 제쳐놓고 용이한 사항만 다루었음을 지적하고 제한된 성공이라고 논평함.

# NORDIC(북구협력기구) 외상회의

| 74-023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구2
MF번호	C-74 / 6 / 1~26p

NORDIC(북구협력기구) 외상회의의 1974년 중 개최 관련 내용임.

## 1. 제1차 회의(4.4.~5., Copenhagen(덴마크))

### ※ 공동성명 주요요지

- 구주안보회의, 동·서 상호감군회의 및 미국·소련 간 SALT(전략무기제한협정) 회의 지지
- 중동의 휴전 지지 및 유엔활동에 대한 만족 표명
- 중동문제에 관한 EC(구주공동체) 결의(1973.11월)에 대한 지지 확인
- 포르투갈의 아프리카 식민정책 비난
- 칠레에 대한 인권유린 비난

## 2. 제2차 회의(8.29.~30., Reykjavik(아이슬란드))

### ※ 공동성명 주요요지

- 제28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한국에 관한 선언과 관련, 외상들은 남·북한이 대화를 지속하고 상호협력을 발전시킴으로써 평화통일을 촉진하기를 재차 희망함.
- 또한 외상들은 모든 국가가 남·북한 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기를 소원함.

# EC(구주공동체) 외상회의

| 74-023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구1
MF번호	C-74 / 7 / 1~32p

## 1. 1974.1.30. 개최 예정인 EC(구주공동체) 외상회의를 앞두고 EC 회원국들은 아래와 같이 상호 대립함.

- ※ 일부 회원국들(프랑스, 영국, 독일)이 중동 원유 확보를 위해 경쟁
- ※ 프랑스는 일방적 변동 환율제 채택
- ※ 지역개발기금문제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이견대립 지속

## 2. 1974.4.1.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C 외상회의에서 영국 외상은 아래와 같이 영국 노동당의 대EC 정책을 밝힘.

- ※ 보수당 정부하의 EC 가입조건 재협상 정식 요구  
- 공동농업정책의 변경, 예산의 공평한 부담, 영국연방국가의 경제적 이익 보호, 고정환율제 반대
- ※ EC보다는 대서양 동맹 우선 및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천명

## 3. 1974.4.20.~21. 독일 본에서 EC 외상회의(특별임시회의)가 개최됨.

- ※ 회의 의제: 미국과의 협력문제 및 영국의 EC 가입조건 재협상 요구 문제
- ※ 평가: 영국의 EC 가입조건 재교섭 제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점에서 EC 국가가 상호협의를 강화하려는 결의를 표시

## 4. 1974.10.15.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C 외상회의에서 아래 사항이 협의됨.

- ※ 에너지 문제
- ※ 파키스탄·방글라데시·인도와의 통상협정 체결 협상 지침
- ※ 대동구권 통상정책
- ※ COMECON·이란·캐나다 등과의 관계

# EC(구주공동체) 유엔·아주지역 전문가회의 및 정무국장회의

| 74-0235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구주총괄
MF번호	C-74 / 8 / 1~156p

EC(구주공동체)의 1974년 중 아주국장회의, 유엔·아주국장회의 및 아주전문가회의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대한 외무부의 평가 내용임.

## 1. 아주국장회의(1.29., Bonn)

- ※ 대북한 관계에 대한 회원국 간 비공식 의견 교환이 있었으나, 어떠한 결론이나 결정에 합의한 것은 없음.
- ※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는 동·서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확인하였으나, 북한상사 대표의 상주 등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임.
  - EC 국가(덴마크 제외)의 북한 승인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 민간통상대표의 상주는 프랑스 이외에 1~2개국에 더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됨.
- ※ 평소 EC 회원국 주재 공관의 적극적인 대주재국 교섭활동으로 EC 국가 정부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동 국가들의 대북한 접근을 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함.

## 2. 아주국장회의(3.14., Bonn)

- ※ EC 회원국들은 동·서 간 동시 문화개방 원칙의 양해 속에 급격한 대북한 관계 확대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3. 유엔 및 아주국장회의(9.5~6., Paris)

- ※ EC 국가는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촉 결의안 내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찬의를 표시하였지만 유엔총회에서 한국 측안 지지 또는 공동제안국 가담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함.
  - 특히 프랑스 및 덴마크의 유보적 태도로 합의를 보지 못하였으며 회원국별로 뉴욕 현지 대표단과 연락하여 대처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됨.

## 4. 아주전문가 회의(11.15., Paris)

- ※ EC 각국은 대체로 한국 문제에 대하여 한국의 6·23 선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호의적인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금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안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함.

## 아랍 정상회담, 제7차. Rabat(모로코) 1974.10.26.-28.

| 74-023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74 / 9 / 1~111p

1974.10.26.~28.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된 제7차 아랍정상회담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박정희 대통령 명의의 동 회담 의장(Khassan 2세 모로코 국왕) 앞 축전 및 김동조 외무부장관 명의의 Riad 아랍연맹 사무총장 앞 축전을 발송함.
2. 동 회담은 Riad 사무총장 및 Khassan 2세 국왕 연설 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공동성명서나 결의문, 선언문 등의 발표도 없음.
3. 주모로코대사는 동 회담 기간 중 아랍 각국 외무장관 또는 모로코 주재 아랍국가 대사들을 상대로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지지 교섭을 전개함.

# 이슬람 외상회의, 제5차, Kuala Lumpur (말레이시아) 1974.6.21.-25.

| 74-0237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중동담당관
MF번호	C-74 / 10 / 1-24p

제5차 이슬람 외상회의가 1974.6.21.~2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됨.

## 1. 참가국

- ✿ 이슬람국 회의 38개국 중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를 제외한 37개국이 참석함.
- ✿ 회의는 정치위원회, 경제위원회, 행정위원회로 나누어 진행됨.

## 2. 주요 토의의제

- ✿ 이슬람의 경제 및 기술협력 계획 수립
- ✿ 이슬람국가 간의 통상 및 투자 확대
- ✿ 이슬람 은행의 미사용 자금을 가능한 한 많이 이슬람 세계에서 사용
- ✿ 이슬람 헌장일 제정 선언
- ✿ 이슬람국가 간의 여행제한 완화

## 3. 주요 토의내용

- ✿ 정치위원회
  - 레바논 전 외무장관을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으로 추천
  - 알제리 외무장관을 제29차 유엔총회 의장으로 추천
  - 세네갈 문교장관을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으로 추천
- ✿ 경제위원회
  - Islam Solidarity Fund 설치
  - Islam Solidarity Fund 프로젝트(57백만 달러) 협의

# 이슬람 정상회담, 제2차, Lahore(파키스탄) 1974.2.22.-24.

| 74-023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74 / 11 / 1~45p

제2차 이슬람 정상회담이 1974.2.22.~24.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개최됨.

## 1. 참가국

- ※ 32개국의 국가원수 또는 대표단이 참석함.

## 2. 주요 선언과 결의안 요지

282

- ※ 라호르 선언
  - 이슬람국가들의 단결
  - 아랍국의 전면 실지회복 전폭 지원
  -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 종식
  - 이슬람국가 간의 실질적인 경제유대 강화 방책을 강구할 전문가 위원회 구성
  - 동 위원회의 보고를 토의하기 위한 이슬람 외상회의 개최(1974.5월)
- ※ 중동 및 팔레스타인에 관한 결의
  - 이스라엘의 아랍 점령지로 부터의 철수
  - 이집트·시리아·팔레스타인의 실지회복 전폭 지원
  -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팔레스타인의 유일합법대표로 인정
  -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부터의 철수
- ※ 예루살렘에 관한 결의
  - 예루살렘에 관한 유엔결의를 준수하여 이스라엘은 즉시 무조건 예루살렘에서 철수
  - 예루살렘에 대한 아랍의 주권 회복이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조건



| 74-0239 |

##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제11차 정상회담 및 제23차 각료회의, Mogadishu(소말리아) 1974.6.6.-15.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74 / 12 / 1~254p

### 1. 제11차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담이 1974.6.12.~15. 소말리아 로가디쉬에서 개최됨.

- ※ 25개국 국가원수를 포함한 42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함.
- ※ 주요 내용
  - 중동 분쟁에서 이집트, 팔레스타인 등 아랍 입장 지지
  - 아랍과 아프리카 간 협력 추구
  - 아프리카 민족해방운동 지원
  - 기니비사우를 OAU 해방위원회 18번째 회원국으로 선출
- ※ 동 회의는 아프리카에 관한 문제만 다루고 한반도를 비롯한 타 지역 문제는 거론하지 않음.

### 2. 한국 정부는 1974.5.25. 아프리카 해방운동 원조 경비로 3만 달러를 OAU 사무총장에게 전달함.

- ※ OAU 사무총장은 5.25. 기증식에서 한국 정부가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표시해 준 우의와 지원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우의를 OAU 전 회원국에 주지시킬 것임을 다짐함.
- ※ 외무부는 아프리카 주재 전공관장에게 상기 기증식 내용을 통보하여 북한의 OAU 침투 책동 저지를 위해 외교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함.

28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74-0240 |

## OCAM(아프리카·말라가시공동기구) 외상 및 정상회담, 제8차. Bangui(중앙아프리카) 1974.8.6.-12.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C-74 / 13 / 1~80p

제8차 OCAM(아프리카·말라가시 공동기구) 외상회담 및 정상회담이 1974.8.6.~12. 중앙 아프리카 방기에서 개최됨.

### 1. 회담기간 및 참석자

- ※ 외상회담(8.6.~9.): 10개국 외상
- ※ 정상회담(8.10.~12.): 10개국 국가원수
- ※ 기타 비회원국 및 국제기구에서 옵서버 참석

284

### 2. 회의결과

- ※ 외상회담
  - 회원국 간의 경제·사회·문화 및 부대 기관의 운영과 아프리카지역 내의 정치적 자립문제를 토의
- ※ 정상회담
  - 정상회담은 매 2년마다 개최하고 각료회담은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
  - 동 기구의 산하기관 육성, 문호 개방, 기금 창설, 영화제작소 및 배분소 신설, 건축 및 도시계획 연구소의 토고 설치 등에 관해 토의

3. OCAM은 1965.2월 아프리카 프랑스어 사용자 간의 정치적 유대 강화 및 경제협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회원국 간의 이해상반 등으로 일부 회원국이 탈퇴함에 따라 동 기구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신생독립국 승인 - 그레나다, 1974.2.7.

| 74-0241 |

생산연도 | 1973-1974

생 산 과 | 중남미

MF번호 | C-74 / 14 / 1~42p

### 1. 정부는 1974.2.7자로 독립을 선포하는 그레나다를 승인하기로 하고 동일자로 그레나다에 승인을 통보함.

※ 외무부장관 명의 그레나다 수상 앞 전문으로 통보

### 2. 그레나다에 대한 승인 안은 1974.2.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음.

※ 1967년 이후 영국의 준자치령이었던 그레나다는 1974.2.7. 영연방의 일원으로 독립함에 따라 신생국가로 탄생됨.

※ 그레나다는 독립 후 유엔, OAS(미주기구)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한국과 제반 우호 관계를 개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285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74

## 신정부승인 - 포르투갈, 1974.5.3.

| 74-024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구2
MF번호	C-74 / 15 / 1~15p

1. 주프랑스대사(포르투갈 겸임)가 포르투갈 군사혁명 정부 수립에 관한 1974.4.26.자 포르투갈 외무부 공한을 접수한 후, 외무부는 주프랑스대사로 하여금 양국간 기존 우호관계의 증진을 바란다는 회답 각서(5.3.자)를 발송케 함으로써 포르투갈 신정부를 묵시적으로 승인 조치함.

※ 미국, 프랑스, 일본 등도 한국과 동일한 방법으로 포르투갈 신정부를 승인함

2. 한국이 승인한 포르투갈 정부의 임시 대통령에는 군사혁명의 지도자이며 구국위원회 의장인 Spinola 장군의 선출이 확실시 됨.

※ 포르투갈 신정권은 기본적으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서 친서방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과의 우호 관계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독일 유학생 김성수(유럽거점 간첩단 연락책) 사건

| 74-0243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구주
MF번호	Re-22 / 54 / 1~49p

## 1. Lahn 독일 외무부 정책국장은 1973.11.8. 주독일대사와의 면담에서 한국 유학생 김성수가 한국대사관 직원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해명을 아래와 같이 요구함.

- ※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수 3명으로부터 받은 전화에 의하면 한국대사관 직원 2명이 프랑크푸르트 유학생 김성수의 집 부근에 나타나 그를 감시, 추적하고 모종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함.
- ※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대사의 해명을 요구함.

## 2. 주독일대사는 1973.11.14. Lahn 외무부 정책국장과 오찬을 갖고 상기 건에 대해 해명함.

- ※ 주독일대사 해명요지
  - 대사관 직원 2명은 프랑크푸르트의 김성수 집을 방문, 자수를 권유하는 담화문이 게재된 한국일보를 단순히 수교하고 돌아왔으며 어떠한 종류의 압력도 가한 사실이 없음.
  - 김성수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에 관해서는 대사관이나 대사관 직원들도 전혀 아는 바 없음.
  - 김성수는 독일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그러한 웅색한 조작을 하게 된 것으로 추측함.
- ※ Lahn 정책국장의 반응
  - 대사의 해명을 일단 받아들이겠으나, 김성수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에는 관련 대사관 직원이 독일에 남아있을 수 없는 바, 이러한 유감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람.

## 3. 프랑크푸르트 Rundschau지는 1973.11.8. '김성수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정부의 반대자로서 한국 비밀기관에 의하여 압력을 받고 있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함.

- ※ 김성수가 북한 간첩사건 관련자로 발표된 후 7명의 한국인이 그에게 접근하였는데 그 중 2명이 한국대사관 직원이라고 함.

# 민청학련사건 관련 일본인 구속 및 김대중 문제. 전3권 (V.1 1-5월: 일본인 기소)

| 74-024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Re-25 / 2 / 1~327p

1. 한국 체류 중인 일본인 마치가와 마사키(28세, 학생)와 하야가와 요시하루(36세, 대학강사 겸 학생)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혐의로 1974.4.5.부터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아오다 5.17. 비상군법회의에 송치됨.

※ 동 일본인들은 4.3. 서울대 데모 주동자와 접선하여 데모 광경을 촬영하고 불온 유인물을 전달하는 등 반정부 학생운동에 관여함.

288

2. 일본 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수시로 상기인들에 대한 혐의 내용, 수사 진행상황 및 재판 관련사항 등을 문의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직원 및 가족들이 면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한국 측에 요청함.

3. 주일본대사는 1974.5.25. 도쿄 일본 외무차관을 면담한 바, 동 면담 시 도쿄 차관은 상기 일본인 2명이 군법회의에 기소된 이후에도 인도적 고려에서 가족 및 대사관 직원과의 면회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 비공개 재판인 경우에 적어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만은 동 학생들의 용의내용이나 재판 결과를 알려주기 희망함.

# 민청학련사건 관련 일본인 구속 및 김대중 문제. 전3권 (V.2 6월-7.15.: 일본인 구형)

| 74-024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Re-25 / 3 / 1~276p

## 1. 주한 일본대사관은 1974.6.1. '구속된 일본인 학생 문제' 에 관한 아래 일본 정부의 입장을 외무부에 전달함.

- ※ 재판 전 기소단계에 있어서 대사관 직원 및 가족과의 면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 ※ 재판 전 및 도중에 두 피고인과 변호인 간에 충분한 협의
- ※ 외교경로를 통해 재판 일정 등 절차에 관해 사전에 통고
- ※ 기소문 및 판결문 텍스트를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
- ※ 대사관 직원 및 가족의 재판 방청을 허용
- ※ 재판에 있어서 일본어 통역 지원

## 2. 외무부는 1974.6.10. 및 6.14. 상기 일본 대사관의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답함.

- ※ 재판 전 기소단계에서 가족 및 대사관 직원의 면회는 허용되지 않음(재판부의 결정).
- ※ 현재 피고인들이 변호사와 자유롭게 접촉하고 있음.
- ※ 재판 절차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자동적으로 통고됨.
- ※ 기소문 및 판결문 사본도 자동적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전달됨.
- ※ 동 재판이 공개 재판이므로 대사관 직원 및 가족의 방청이 가능함.
  - 가족은 피고인당 3명 방청 가능
  - 대사관 직원의 방청은 1명(통역 1명 대동 가능)
- ※ 한국인 일본어 통역이 붙여질 것임.

## 3. 일본 방송 및 신문(석간)은 1974.7.15. 오전 일본인 피고인 2명에 대해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음을 보도함.

- ※ NHK TV는 '일본인 피고에 판결' 이라는 특집보도를 방영하고, 신문들은 판결공판의 진행사항, 판결조문, 가족의 반응 등을 상세히 보도함.

# 민청학련사건 관련 일본인 구속 및 김대중 문제. 전3권 (V.3 7.16.-11월: 일본 반응, 가족면회 및 석방 문제)

| 74-024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Re-25 / 4 / 1~207p

1. 기무라 신임 일본 외상과 도고 일본 외무차관 등은 1974.7.25. 기자회견에서 민청학련사건 관련 일본인 피고 2명의 항소사실이 항소 당일 일본 측에 통고되지 않은 점과 아직 가족이나 변호사의 면회가 허용되지 않은 점이 유감이라고 밝힘으로써 동 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함.

- ※ 기무라 외상과 도고 차관은 7월 각각 주일본대사에게 본국 정부에 가족면회 허가를 재차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함.
- ※ 외무부는 주일본대사의 건의를 관계당국과 협의·검토한 후, 일본인 피고인들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이들의 가족면회를 불허하기로 하였다고 주한 일본대사관에 통보함.

290

2. 주한 일본대사관은 1974.8.2.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일본인 피고인들의 가족면회 허가를 요청하면서 ‘하야가와 요시하루’ 가족의 대통령 앞 탄원서를 동봉한 바, 외무부는 한·일본 간 특수 관계 및 인도적 견지에서 하야가와와 부인에 대해서 8.5. 면회를 허용함.

3. 국내 일간지는 1974.8.3. 마이니치 신문보도를 인용하여, 한국 정부가 일본인 피고인들의 형이 최종 확정된 후 연내 적당한 시기에 대통령 특사 형식으로 이들을 석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주일본 대사가 기무라 외상에게 전한 것 같다고 보도함.



# 서울 주재 일본 특파원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관련 보도 및 이에 대한 규제

| 74-0247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동북아1
MF번호	C-75 / 1 / 1-85p

1. 문화공보부는 1974.1.10. 서울주재 일본 특파원 11명을 문화공보부로 불러 1.8. 대통령 긴급조치 이후에도 일본 언론이 유신체제를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보도하면 긴급조치에 의해 다스릴 것임을 경고함.

2.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는 1974.1.12. 윤석현 외무부차관을 면담함.

※ 일본대사 언급내용

- 국제관례상 외국 기자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도의 자유가 일본 기자에게 인정되기 바람.
- 대통령 긴급조치의 일본 특파원에 대한 적용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기 바람.
- 일본 기자가 불미스러운 혐의를 받을 때는 먼저 경고하고 사전에 일본대사관과 협의하여 주기 바람.

※ 외무부차관 답변내용

- 법을 준수하고 국제적으로 지켜지는 규범과 예의를 지키는 언론인은 걱정할 이유가 없음.
- 해명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조회하겠음.

3. 마에다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는 1974.1.24. 지성구 외무부 아주국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주한 일본 특파원들의 보도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 일본 외무성으로부터의 감촉에 의하면 주한 일본 특파원들의 불만에 관해서는 일본의 11개사 편집국장 회의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1.23. 한국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일단락되었다고 느껴짐.
- ※ 최근 주한 일본 특파원들에게 협박전화가 걸려와 이들이 심리적 불안 상태에 있음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함.

4. 정부는 일본 아사히 신문이 그간 한국에 대하여 내정 간섭적이며 부당한 비판, 비방 보도와 논평으로 일관하여 왔음을 이유로 아사히 신문에 대한 한국 내 수입허가를 취소함.

- ※ 특히, 1974.1.10. 아사히 신문 기사가 한국 국민을 모독한데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동 신문은 1.30. 논평기사에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비방함.

## 재한 일본인 유골 봉환

| 74-024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
MF번호	C-75 / 2 / 1~9p

1. 주한 일본대사관은 1974.7.5.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경기도 용진군에서 1974.6월 발견된 일본인 유골 2구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관계관을 파견하고자 한국 관계당국의 허가를 요청함.
2. 보건사회부는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관할 경기도 지사에게 일본인의 유골 여부를 확인하여 본국으로 봉환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지시하였음을 1974.7월 외무부에 통보해 옴.

#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 74-0249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동북아1
MF번호	C-75 / 3 / 1~156p

1. 외무부는 그간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당해 피폭자는 물론 한국인 일반이 납득할 수 있는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일본 측과 교섭하여 왔는바, 1974.4월 현재 양측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 한국 측 입장

- 일본에 의하여 상당한 규모의 치료센터가 건립되어야 함.
- 문제의 인도적 성격으로 보아 일반 무상원조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 한·일본 간의 기존 경제협력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의 재원으로 건립할 것.

※ 일본 측 입장

- 한·일본 경제협력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함.
- 사업순위는 서울공대시설원조사업(74~76년) 후로 할 것
- 한국 정부가 각료회담에서 한·일본 경제협력 중 무상협력사업으로 제기하여 줄 것
- 치료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일본 측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의 제출이 요망됨.

2. 보건사회부가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1974.11월 작성·제출한 ‘한국 원폭 피해자 진료병원 설치계획’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 사업 개요

- 사업명, 사업 주체, 사업 설명, 사업 규모, 요원 훈련, 소요액, 자금 확보

※ 사업 배경

- 원폭 피해자 현황, 피폭자의 진단 실적, 피폭자에 대한 의학적 조사

※ 사업 효과

- 도일 치료시의 문제점, 국내치료의 장점, 피폭자의 재활, 기술개발

※ 병원 운영

- 방침, 조직, 목표, 운영비, 의료장비 및 기재 확보, 참고사항(연도별 의료기관 분포현황)

※ 부록

- 장비 명세서

3. 1974.7월 주일본대사관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본 후생성이 단기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건강수첩을 교부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함.

- ※ 동 수첩을 발급받기 위한 요건은 원폭 피해자로서 치료목적으로 입국하여 1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일본 현지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임.

## 주요인사 접촉기록

| 74-025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
MF번호	C-75 / 4 / 1~24p

1. 외무부 미주국은 1974.12월 외무부 간부들의 주요 인사 접촉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를 체계화 하는 방안을 건의하여 외무부장관의 재가를 득함.

※ 외무부 간부들이 면담 또는 서신 왕래하는 주요 외국 인사의 접촉기록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접촉 시마다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함.

2. 외무부 각·실국은 주요 인사 접촉이 있을 경우, 이를 접촉카드에 기록하여 매주 금요일 오후까지 미주국에 송부하도록 함.

## 주미국대사 서한 및 공관원 연설문

| 74-0251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북미1
MF번호	C-75 / 5 / 1~42p

본 문서철에는 아래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1. 주미국대사관 공사가 1974.4.16. 및 4.17. 양일 간 보스턴과 뉴욕에서 행한 연설문과 이에 관한 Journal of Commerce의 기사
2. 외무부가 1974.6월 문화공보부에 참고로 송부한 미국 감리교회 세계선교회의 성명서 요지(국문) 및 동 성명서에 대한 주미국대사의 서한 요지(국문)

29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나영덕(羅英德) 주한 대만(구 자유중국)대사

| 74-0252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C-75 / 6 / 1~18p

본 문서철에는 나영덕 주한 대만(구 자유중국)대사의 외무부장관 및 차관 면담록이 수록되어 있음.

### 1. 외무부장관 면담록(1973년)

- ※ 4.3. 면담
- ※ 4.7. 면담
- ※ 4.10. 면담
  - 대만 측 AIDE-MEMOIRE 수교
- ※ 12.24. 면담

### 2. 외무부차관 면담록(1974년)

- ※ 12.31. 면담

## 교황청(구 바티칸) 교황 메시지

| 74-0253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남구담당관/ 구주1
MF번호	C-75 / 7 / 1~55p

본 문서철에는 바오로(Paul) 6세 교황청(구 바티칸) 교황이 1974년 발표한 각종 메시지 등이 수록되어 있음.

### 1. Dossena 교황청 대주교는 1973.12.17. 김동조 외무부장관에게 평화의 날을 축하하는 교황의 메시지 (1974.1.1.)를 송부함.

- ✿ 진보를 지향하는 이상주의로서의 평화의 개념 설명
  - 인류의 이상으로서 평화의 필요성 · 의무 강조
- ✿ 평화의 역동성
  - 단순히 존재하는 의미가 아닌 적극적 실현에 기초
  - 세상을 리드하는 사상
  - 평화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려 있음.

### 2. Dossena 대주교는 1974.2.5. 김동조 장관에게 “평화의 날-1973년도” 책자를 송부함.

- ✿ 주요내용
  - 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활동 설명
  - 교황의 주도를 지지하는 세계 각국 정상과 정치단체장의 메시지와 발언문

### 3. 주교황청대사관은 1974.9.2. 외무부에 교황청 대표의 기조연설문을 송부함.

- ✿ 세계 인구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8.19.~30., 부카레스트(루마니아))에서 연설

### 4. 주교황청대사관은 1974.10.10. 외무부에 교황의 설교 전문을 송부함.

- ✿ 주교 총회(9.27.) 개최 시 행한 바오로 6세 교황의 설교
  - 복음화(evangelization)의 필요성, 보편성, 종결
  - 종교의 목적

### 5. Dossena 대주교는 1974.12.18. 김동조 장관에게 평화의 날을 축하하는 교황의 메시지(1975.1.1.)를 송부함.

- ✿ 평화에의 길-화해
  -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
  - 평화의 내재화만이 진정한 인본주의이며 진정한 문명화
  - 평화의 달성은 어려운 과제이나 불가능하거나 공상이 아님.
- ✿ 화해만이 평화의 길임을 명심

# Kissinger, Henry A. 미국 국무장관 연설문 및 기자회견

| 74-0254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북미1
MF번호	C-75 / 8 / 1~143p

본 문서철에는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이 행한 연설문 및 기자회견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음.

## 1. 주미국대사는 키신저 국무장관이 서구 및 중동지역 방문 후 귀국 시 기자회견(1973.12.27.) 전문을 1974.1.2. 보고함.

- ※ 월남전의 종결로 미국 외교정책의 초점이 평화구조 설계로 옮겨감.
- ※ 공산세계와 비공산세계 간 경화된 적대 관계는 공산세계 자체의 분열과 미국·소련, 미국·중국(구 중공) 관계 개선으로 완화됨.
- ※ 미국의 대중국, 대소련 정책은 화해 정책으로 집약됨.
  - 이 화해는 각국의 제도의 일치에 근거한 것은 아님.
  - 가치의 개념은 서로 상치되고 때때로 적대적임.
- ※ 1973년에 구주와의 관계는 실망적이었음.

## 2. 주미국대사는 키신저 국무장관이 미 상원 외교위(1974.9.19.)에서 미국 정부의 대공산권(주로 소련) 관계에 관해 증언한 내용 전문을 1974.9.24. 보고함.

- ※ 미국·소련 관계의 과정
  - 미국의 목표, 전(全)지구적 필요성
- ※ 데탕트의 진화-위험과 인센티브의 균형
  - 원칙, 정치적 대화 및 협력협정, 경제적 구성요소, 전략적 관계
- ※ 데탕트의 평가와 장래의 과제

## 3. 키신저 국무장관은 1974.9.23. 유엔총회 연설에서 세계경제의 조직과 기구의 긴장이 세계경제를 전반적 불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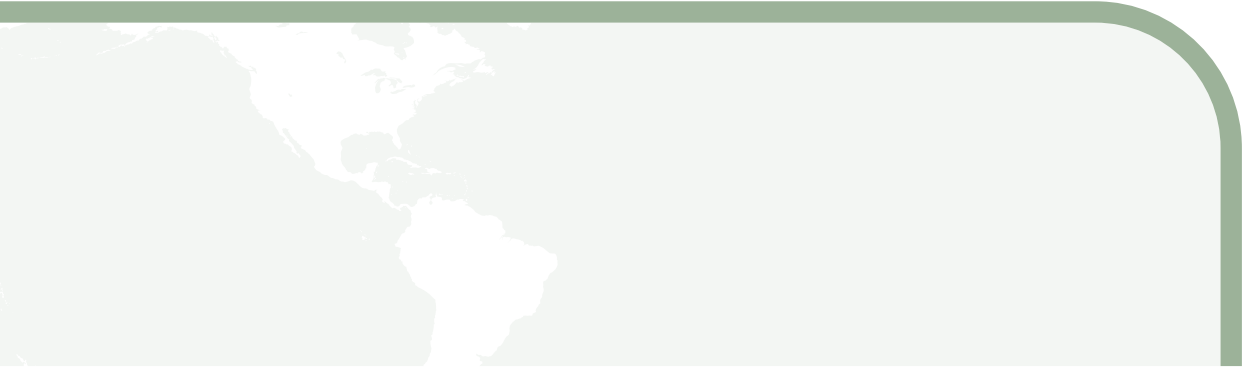
## 4. 주미국대사는 키신저 국무장관이 미국 외교협회에서 행한 연설(11.11.) 전문을 1974.11.13. 보고함.

- ※ 외교정책과 외교업무의 역할을 강조

## 5. 주한 미국대사는 1974.11.19. 김동조 외무부장관에게 키신저 국무장관의 에너지 위기에 관한 시카고대 연설(11.14.) 전문을 송부함.

- ※ 서방세계는 현재 에너지 문제로 큰 도전에 직면
  - 동 위기해결을 위해 국제협력이 불가피하며, 유류 소비국과 생산국 간 대화가 필요하고, 소비국들이 가일층 단결해야 함.





✿ 유류소비국의 조치 제안

- 에너지 보존계획 추진, 신에너지 공급원 및 대체에너지원 개발, 유류위기대책 및 경제안보 강화, 유류  
가격 인상으로 인한 약소국의 지원, 소비국과 생산국 간 대화

✿ 미국은 소비국의 입장수립을 위한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창설을 제안

# 재일본 국민의 재외재산 반환 신청문제

| 74-0255 |

생산연도	1971
생 산 과	동북아
MF번호	C1-30 / 2 / 1~19p

본 문서철에는 재일본 국민(한국인 국적인)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재외재산 반환신청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 1. 신청인 및 신청대상

- ※ 신청인
  - 한국인 국적으로서 일본 동경도 에도구에 거주하는 박성녀(1913.5.3. 생)
- ※ 신청대상
  - 일본 대장대신 앞으로 1954.8.11. 재외재산 반환신청

## 2. 신청금액 및 신청재산 소재지

- ※ 신청금액: 9억 9,446만 8,230엔
- ※ 신청재산 소재국: 미얀마(구 버마)

## 3. 신청사유

- ※ 인도차이나 사변 당시 상해에서 거주하다 1941년 상행위를 위해 미얀마로 이주
- ※ 주미얀마 일본총영사관에 대한 전기공사 및 부품납품 미납대금 반환 신청
  - 일본군의 철수로 인한 미납

## 4. 첨부서류

- ※ 재외활동 관계 폐쇄기관 특수청산사무 신청서 사본
- ※ 철수 당시 일본은행 본점 재외채무보고서 사본
- ※ 외무성의 사실증명서 등

# 공관장회의, 1974년도 - 북미 및 구주지역. 서울, 1974.7.8.-22. 전2권 (V.1 기본문서)

| 74-025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구주
MF번호	C1-30 / 7 / 1~217p

## 1. 외무부는 1974.6.10. 아래 요지의 1974년도 공관장회의의 보도 자료를 배포함.

- ※ 북미 및 구주지역 공관장회의를 1974.7.8.~20. 서울에서 개최
- ※ 동 회의에서 북미 및 구주지역 최근정세 검토와 외교강화 방안 강구, 10월 유신과업과 6·23 평화통일 외교 정책 실천을 위한 방안 검토, 수출목표 달성 및 경제외교 강화 방안, 재외국민의 보호선도책, 홍보활동 강화 방안, 공관의 효율적 운영 및 행정쇄신 방안 등 토의
- ※ 북미지역 대사 3명, 구주지역 대사 16명 참석

## 2. 외무부는 1974.6월 상기 공관장회의(구주지역) 의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 정무 관계
  - 북한의 구주진출 저지 및 외교강화 방안, 구주 각국의 북한승인 문제, 우호관계 증진방안, 대동구권 관계개선
- ※ 유엔 관계
  - 제28차 유엔총회 결과 평가, 1975년도 대유엔 기본방침 및 대책, 국가별 교섭목표
- ※ 수출진흥
  - 기간시장 기반확충 방안, 국가별 무역·관세정책 대처, 대동구권 교역확대방안, 북한의 경제적 침투현황 파악 및 견제
- ※ 경제협력
  - EC(구주공동체) 협의체를 통한 경험, 민간 경제기구를 통한 경험 등
- ※ 공관운영 개선방안

## 3. 외무부는 1974.6월 상기 공관장회의의 개최 관련 각종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 정무 관계 토의 시나리오
- ※ 구아국장의 브리핑자료
  -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진출현황, 북한의 침투양상 분석, 북한침투 저지, EC 주재 공관 간 효과적 협조를 통한 북한저지

## 4. 외무부는 1974.6월 상기 공관장회의의 각종 연설문을 아래와 같이 작성함.

- ※ 김동조 외무부장관 훈시
  -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 노골화, 세계적인 석유파동 위기 등 각종 도전 과제
  - 1974년도를 '극복과 전취(戰取)의 해'로 삼아 금년도 외교목표 달성
  - 주재국의 이해와 협력을 더욱 발전, 심화시키도록 노력 경주 당부
  - 금년도 외교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과 문제점을 충분히 토의, 해결책 마련을 기대



※ 김종필 국무총리 치사(안)

-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유의점 강조
- 국내안정, 안보를 위한 국력배양,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실천
- 정책적 건의사항, 개선사항을 정부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

# 공관장회의, 1974년도-북미 및 구주지역, 서울, 1974.7.8.-22. 전2권 (V.2 회의결과)

| 74-025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구주
MF번호	C1-30 / 8 / 1~253p

1. 외무부 구아국장은 1974.6.17. 부내 관련국장에게 북미 및 구주지역 공관장회의(7.8.-20) 관련 구주지역 각 공관의 건의사항을 송부하고 답변 자료에 참고하도록 함.

2. 외무부는 1974.7월 북미 및 구주지역 공관장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종합 답변

- 유력인사 초청, 유엔 대책, 대동구권 접촉 및 관계개선, 경제협력 강화 및 정책적 수출입, 수출진흥, 홍보활동 지원, 영사관 증설 및 명예영사관 설치, 교민 지도육성, 문화협정 체결, 고아 입양, 여권업무 개선, 공관 운영 등 항목별로 답변

※ 공관별 건의에 대한 답변

- 각 공관 건의내용에 대한 본부의견 및 방침

3. 외무부 구주과는 1974.7월 북미 및 구주지역 공관장회의 결과를 요약,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수시로 서면보고함.

※ 정무 관계

- 북한진출 저지 및 외교강화 방안, 대동구권 관계개선 문제 등에 대한 본부방침 설명과 공관장 의견 청취

※ 재외국민 관계

- 문교부의 문교현황 및 해외동포 교육정책과 현황 브리핑, 토론 및 질의응답

※ 통상 관계

- 수출진흥 종합시책 브리핑, 공관장 건의 및 상공부장관 답변

※ 공보문화 관계

- 홍보대책 및 1974년 하반기 해외홍보활동 설명, 공관장의 건의 및 답변

※ 경제인 간담회

-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단체장 발언 및 토의

※ 영사업무 관계

- 교민정책의 기본목표와 주요시책 등 브리핑, 공관장 건의 및 답변

4. 외무부 구주과는 1974.7.22. 상기 공관장회의의 참석 공관장들의 최규하 대통령특보와의 면담요지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최규하 특보는 최고통치방침, 대외정책의 기본, 대외 홍보상의 문제점, 금추 유엔 대책 등을 언급

- 총화유신체제로 국력을 배양,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통일로 민족중흥의 달성을 당부

# 공관장회의, 1974년도 - 아주지역. 서울, 1974.4.15.-29. 전3권 (V.1 기본문서)

| 74-025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2/동남아
MF번호	C1-30 / 9 / 1~326p

## 1. 외무부 아주국이 1974.4.8.작성한 1974년도 아주지역 공관장회의 준비 및 진행계획은 아래와 같음.

- ※ 회의 준비, 회의 진행, 회의 문서 및 물품, 공관장의 출입국, 담당자별 업무 체크리스트

## 2. 외무부는 1974.4.24. 1974년도 아주지역 공관장회의 결과를 종합, 대통령에게 보고함.

- ※ 회의 일정
  - 4.15.~22. 정무, 경제, 각부처 주관 회의 등 분야별 회의 진행과 결의문 채택
  - 4.23.~27. 새마을 시찰, 산업 시찰, 일선 시찰
- ※ 정무 관계 회의
  - 안보, 북한저지, 유엔 문제 등 북한에 우월하는 관계수립 일차책임 부과, 총력외교 전개
  - 공관 건의사항 처리방침 제도화 등
- ※ 경제 관계 회의
  - 수출 증대와 장기적 자원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 시행
- ※ 결의문 채택
  - 10월 유신의 이념과 6·23 선언 정신에 입각,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국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확보를 위해 전력 경주
  - 1980년도 100억 달러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확충
  - 1974년도 수출목표 45억 달러 초과 달성

## 3. 외무부는 1974.4.29. 아주지역 공관장들의 대통령비서실 외교, 교육, 사회, 경제담당 특보와의 간담회 결과를 작성함.

- ※ 최규하 외교담당특보는 한국의 기본목표 및 과제, 남북대화와 6·23 선언, 북한의 통일정책, 1974년 가을 유엔총회 문제 등 설명

## 4. 외무부 아주국은 1974.5.2. 아주지역 공관장회의 시 건의사항에 대한 시행방침을 내부결재 후 부내 각 실·국에 송부함.

## 5. 외무부는 1974.5.21. 전 재외공관에 아주지역 공관장회의 결과를 송부함.

# 공관장회의, 1974년도 - 아주지역, 서울, 1974.4.15.-29. 전3권 (V.2 회의진행 시나리오)

| 74-025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2/동남아
MF번호	C1-30 / 10 / 1~145p

## 1. 외무부 아주국은 1974.4.8. 외무부장관의 아주지역 공관장회의(1974.4.15.~26.) 의사진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작성함.

- ※ 외무부 업무계획 설명
  - 개회선언, 회의진행 설명(아주국장), 업무계획 설명(기획관리실장), 대통령 연두순시 시 '외무부 업무 계획 보고' 시청
- ※ 정무관계 회의
  - 아주정세 브리핑(아주국장), 공관장 정세보고
  - 북한의 아주지역 침투현황 및 저지책 브리핑(아주국장), 공관장의 북한문제 보고
  - 금년도 유엔 대책 브리핑(방교국장), 공관장의 유엔 문제 보고, 의견교환
- ※ 재외국민관계 회의
  - 재외국민관계 브리핑(영사국장), 공관장의 재외국민 관계 보고, 의견교환
- ※ 공관운영관계 회의
  - 행정문제 일반에 관한 브리핑(기획관리실장), 공관장 보고
- ※ 건의사항 검토, 결의문 채택, 폐회식
  - 각 공관장 건의에 대한 본부 답변, 각 공관장과의 의견교환, 결의문 채택, 폐회선언

## 2. 외무부 아주국은 1974.4월 아주국장의 아주지역 공관장회의 의사진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작성함.

- ※ 공관장 귀국인사 사회
- ※ 일정 설명
- ※ 개회식 사회
  - 개회 선언, 국민의례, 총리 치사, 장관 훈시, 개회식 종료선언, 공지사항 발표
- ※ 외무부 업무계획 설명
  - 회의 진행
  - 정무 관계 회의, 재외국민 관계 회의, 경제 관계 회의, 건의사항 검토회의
  - 결의문 채택
- ※ 공지사항 발표
  - 청와대 예방, 장관주최 리셉션, 새마을 시찰, 수출진흥 확대회의의 참관, 중앙정보부 방문, 산업시찰

# 공관장회의, 1974년도-아주지역, 서울, 1974.4.15.-29. 전3권 (V.3 브리핑자료)

| 74-026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2/동남아
MF번호	C1-30 / 11 / 1~123p

본 문서철에는 1974년도 아주지역 공관장회의(1974.4.15.~26.)의 각종 브리핑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 1. 1974년도 외무부 업무계획(4.15., 기획관리실)

- ※ 외교목표
  -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발전적으로 실천(안보, 평화외교)
  - 100억 달러 수출기반 확충(경제외교)
- ※ 1974년도 외교시책 방향
  -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외교적 노력
  - 한국의 평화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 경제외교의 적극 전개
  - 재외국민의 효율적 지도 육성
- ※ 1974년도 주요 업무계획
  - 정부, 경제·통상, 영사·교민

## 2. 1974년도 대아주 외교의 기본방향과 문제점(4.15., 아주국)

- ※ 아시아 정세 검토와 1974년도 대아주 외교의 기본방향
- ※ 1974년도 대일 외교의 기본방향 및 대중국(구 중공) 관계
- ※ 아시아에서의 북한제압 및 외교적 침투책동 저지 노력
- ※ 인도차이나 정세 및 지역협력 문제
- ※ 대아주 외교망 확장 및 검임 관할국 재조정 계획

## 3. 북한의 아주지역 진출현황 및 저지책(4.16., 아주국)

- ※ 아주지역 정세변동과 북한의 외교적 책략
- ※ 북한의 외교적 진출현황
- ※ 북한진출 저지를 위한 기본방향과 대책

## 4. 유엔 대책, 국제기구 및 조약체결과 관련된 문제(4.16., 방교국)

- ※ 제29차 유엔총회 대책, 비동맹 대책, 조약체결 및 개정교섭에 관한 사항

## 5. 재외국민 관계(4.22., 영사국)

- ※ 재외국민 현황, 재외국민에 대한 북한 침투저지 대책, 모국과의 유대강화, 새마을사업 참여



# 공관장회의, 1974년도 - 중남미지역, Rima (페루) 1974.3.18.-19. 전3권 (V.1 사전준비)

| 74-026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1-30 / 12 / 1~104p

## 1. 외무부는 1974.2.13.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에 관해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베네수엘라 및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참석 후 1974년도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를 1974.3.18.~19. 페루 리마에서 개최할 예정
- ※ 중남미지역 공관은 정무, 공보문화, 영사, 통상 및 경제협력 분야 회의자료를 작성, 3.2까지 본부에 보고

## 2. 외무부는 1974.2.21.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에 관해 아래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 정부는 Perez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식(3.12.) 및 Geisel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3.15.)에 경축 특사로 김동조 장관을 파견하기로 결정
- ※ 동 장관은 1974.3.18.~19. 페루 리마에서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예정
  - 중남미 정세, 대중남미 외교 강화, 수출 진흥, 홍보활동 효율화, 교민육성 방안 등 검토 방침
  - 동 회의에는 중남미 9개국 공관장과 주유엔대사가 참석 예정

## 3. 외무부는 1974.2.20.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김동조 장관의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 참석 기회에 페루와의 친선유대 공고화를 위해 Alvarado 페루 대통령을 예방, 한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을 건의함.

- ※ 아울러 공관장회의 시 대통령의 아래 유시 전달을 건의
  - 노고치하, 총화유신체제 공고화, 국제적으로 안보체제 강화를 위한 외교활동 전개, 북한의 침투활동 대처방안 강구, 수출진흥과 시장개척 등 경제외교에 배전의 노력 당부

## 4. 외무부 미주국은 1974.3.4.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 세부일정에 관한 내부결재를 받음.

- ※ 제1일(3.18.)
  - 정무 관계 토의, 홍보활동에 관한 토의, 외교부장관 주최 만찬
- ※ 제2일(3.19.)
  - 경제통상 관계 토의, 교민 및 행정 관계 토의, 주페루대사 주최 리셉션

# 공관장회의, 1974년도-중남미지역, Rima (페루) 1974.3.18.-19. 전3권 (V.2 회의결과)

| 74-026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1-30 / 13 / 1~207p

## 1. 외무부는 1974.3월 외무부장관의 중남미 방문(1974.3.9.~24.) 보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 베네수엘라 및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참석
  - Perez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3.12.), 외상 예방(3.12.) 및 대통령 예방(3.13.)
  - Geisel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참석(3.15.) 및 대통령 예방(3.15.)
- ※ 특기사항
  - 베네수엘라 방문 시 미 대통령 특사인 닉슨 대통령 부인과 인사교환
  - 바베이도스 수상과 면담, 최근의 남북한 관계 설명과 양국간 관계수립 타진
  - 코스타리카 외상과 오찬, 코스타리카와 북한의 수교발전 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파악
- ※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3.18.~19., 페루 리마) 결과
  - 정무 관계: 미수교국과의 수교 추진, 대중남미 외교망의 강화, 주한 상주공관 유지, 사절단 파견, 검임 국 접촉 강화, 유력인사 방한초청, 명예영사 활용 등 토의
  - 홍보 관계: 북한의 선전활동에 대처한 홍보, 문화외교 강화 방안 등 토의
  - 이민 관계: 이민송출 적극 장려
  - 통상 및 경제협력: 자원확보 강화, 경제협력 추진, 수출진흥 노력 등 토의
- ※ 한국·페루 간 무역협정 체결(3.19.)
  - 교역 및 경제협력 관계 필요성 상호 인정

## 2. 외무부 미주국이 1974.3.4 종합한 중남미지역 공관의 건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 ※ 주요 유력인사 방한초청 및 서훈 검토, 친선사절단 파견, 영사관 또는 출장소 추가설치, 친한단체 육성 지원, 명예영사 활용, 합작투자 장려, 홍보활동 개선, 통상진흥과 교민육성 등을 위한 특별활동비 지원, 직원증원 등

## 3. 외무부는 1974.4.25. 중남미지역 공관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및 처리방침을 동 지역공관에 통보함.

# 공관장회의, 1974년도 - 중남미지역, Rima (페루) 1974.3.18.-19. 전3권 (V.3 자료)

| 74-026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1-30 / 14 / 1~246p

## 1. 외무부는 1974.2.15.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문화공보부, 보건사회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1974년도 중남미 공관장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함.

- ✧ 1974.3.18.~19. 페루 리마에서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예정
  - 각 공관에 대한 요망 사항이나 참고 자료를 3.2.까지 송부 요청
- ✧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아래 회의 자료 제출
  - 중남미지역 박람회 개최, 현지 수입업자의 주문서 송부, 자원수입 가능성에 대한 개선 의견
  - 소맥, 쌀 및 철강, 금 등 주요자원의 세계생산 및 교역 현황(1973.7월 현재)
- ✧ 문화공보부는 해외홍보와 관련된 아래 자료 제출
  - 1973년도 홍보활동 실적과 1974년도 홍보활동 계획
  - 재외공관 건의에 따른 대책과 공관장에 대한 협조요망 사항
- ✧ 경제기획원은 외국인 투자유치제도, 자원정책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 보건사회부는 이민사업 확충방안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2. 외무부는 1974.3월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 자료(경제, 통상 관계)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 공관별 건의사항 및 정부의 원칙적 방침
- ✧ 중남미국가와의 현안문제
- ✧ 1974년도 중남미지역 공관별 수출계획 및 실적
- ✧ 대중남미 공관별 수출입 현황
- ✧ 참고자료
  - 남미 어업조사단 파견, 한국의 해외투자 진출업체 현황, 한국의 원양어선 출어현황, 1974년도 한국 기술협력공여 시행계획

## 3. 외무부 미주국은 1974.3월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 토의 의제별 현황 및 방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 중점 교섭대상국에 대한 활동계획, 유력인사 방한초청, 사절단 파견, 미수교국과의 수교추진
- ✧ 독립 예정국에 대한 선제활동, 외교망의 강화, 주한 상주공관 유치, 원조 및 협력
- ✧ 친한단체 육성 강화, 명예영사 활용, 대겸임국 활동 강화, 대쿠바 관계, 공관활동 강화

# 공관장회의, 1974년도 -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1974.5.7.-8. 및 5.11.-12. 전4권 (V.1 기본문서)

| 74-026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중동
MF번호	C1-31 / 1 / 1~151p

## 1. 외무부는 1974.3.4. 1974년도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대통령 재가를 받음.

- ※ 중동지역 공관장회의(1974.5.7.~8., 베이루트(레바논))
  - 중동지역 8개 전 공관장, 외무부장관, 외무부 구아국장, 관계부처 관계관 등 참석
  - 회의목적: 원유확보 및 수출진흥 대책, 경제협력 방안, 북한 제압 대책 등 협의
- ※ 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1974.5.11.~12., 아비장(코트디부아르))
  - 아프리카지역 13개 전 공관장, 외무부장관, 외무부 구아국장, 관계부처 관계관 등 참석
  - 회의 목적: 북한외교 제압 방안, 수출시장 개척과 자원확보를 위한 대책 검토
  - 기타: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외상 등을 면담하고 양국 우호 관계 돈독화
- ※ 기타
  - 외무부장관은 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 후 세네갈 방문
  - 외무부 구아국장은 동 지역 공관 감사 시행
  - 외무부 정부차관보는 중동지역 공관장회의 후 페르시아 4개국을 순방, 국교수립 교섭

## 2. 외무부는 1974.3.15. 아프리카지역 공관장에게 상기 공관장회의 개최 계획을 통보하고 정무, 수출 진흥 및 경협, 문화 홍보, 대유엔 관계 등에 관한 회의 자료를 3.30.까지 보고할 것을 훈령함.

- ※ 외무부는 3.19.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문화공보부, 농수산부에 상기 회의개최 계획을 통보하고 회의참가자 선정과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

## 3. 외무부는 1974.4.23. 아프리카지역 공관에 상기 공관장회의 개최 일정과 회의진행 방식을 통보함.

- ※ 회의 일정
  - 제1일(5.11.): 국무총리 치사, 외무부장관 훈시, 아프리카 정세 브리핑, 정무 관계 토의
  - 제2일(5.12.): 경제통상 관계 토의, 홍보 대책 및 행정 관계 토의
- ※ 일반정세 브리핑과 대아프리카 외교의 기본입장 설명 후 세부문제 토의

## 4. 외무부는 1974.4.30. 중동지역 및 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함.

- ※ 김동조 외무부장관 주재하에 중동지역 공관장회의(5.7.~8., 베이루트)와 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5.11.~12., 아비장) 개최 예정
- ※ 금번 회의에서는 양 지역에 대한 외교, 통상문제 및 자원확보 대책 등 토의
- ※ 국내에서는 외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문화공보부, 수산청 관계관이 참석 예정

# 공관장회의, 1974년도 -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1974.5.7.-8. 및 5.11.-12. 전4권 (V.2 회의결과)

| 74-026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중동
MF번호	C1-31 / 2 / 1~106p

## 1. 외무부는 1974.4월 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의 관련, 동 지역 공관의 건의사항을 사업별로 아래와 같이 작성함.

- ✿ 유력인사 방한초청
  - 국가원수, 외상 등
- ✿ 주한 상주대사관 유치
- ✿ 원조
  - 의료단, 의료기재 등
- ✿ 사절단 파견
  - 외무부장관 및 고위층인사, 경제통상사절단 등
- ✿ 홍보·문화
  - 언론인 방한초청, 홍보 자료 제공, 무용단·체육팀 파견
- ✿ 행정
  - 예산 및 인력 지원, 직원 처우개선
- ✿ 통상
  - 협정체결, 통상 관계 인사초청, 합작투자 등 자본협력

## 2. 외무부장관은 1974.5.14. 1974년도 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상부에 보고함.

- ✿ 회의 일정
  - 5.11. 정부 관계 토의
  - 5.12. 통상·경제 및 홍보 관계 토의
- ✿ 통상·경제 관계 토의 시 결정사항
  - 소액주문 및 상품문의에 적극 호응, 종합상사의 우선 설치, 연불수출 장려, 각종 건본 신규 대체
  -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를 통한 시장 확대, 사절단 방문 권장, 상사 신용유지
  - 원면의 정책적 수입, 원양어업의 적극 추진 등
- ✿ 외무부장관은 5.12. 부와니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을 예방하고 동 대통령 주최 오찬에 참석
  - 부와니 대통령은 양국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유엔 및 OAU(아프리카단결기구)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를 다짐
- ✿ 외무부장관은 5.13. 이수완 코트디부아르 외상과 회담

## 3. 외무부는 1974.6.8.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부와니 대통령과 이수완 외상에 대한 감사서한을 전달할 것을 훈령함.



✿ 부와니 대통령 앞 감사서한 요지

- 본인의 코트디부아르 방문 시 접견과 오찬에 대해 감사함.
-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조국통일이라는 한국민의 소망에 이해와 공감을 표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음.
- 평화와 대화를 추구하는 코트디부아르가 우리에게 큰 의미와 격려가 되고 있음.
- 본인의 방문이 양국간 우의와 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함.

# 공관장회의, 1974년도 -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1974.5.7.-8. 및 5.11.-12. 전4권 (V.3 중동지역 공관장회의 자료)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아프리카/중동
MF번호	C1-31 / 3 / 1~117p

외무부 구아국은 1974.5월 중동지역 공관장회의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1. 주요 회의일정 및 참석자

- ✿ 제1일(5.7.)
  - 개회, 국무총리 치사 및 외무부장관 훈시, 정부 관계 토의, 외무부장관의 레바논 외상 예방, 외무부장관의 레바논 대통령 예방 및 오찬
- ✿ 제2일(5.8.)
  - 경제 및 통상 관계 토의, 홍보 및 공관운영 관계 토의
- ✿ 참석자
  - 중동지역 7개 공관장, 외무부장관, 외무부 구아국장, 관계부처 관계관

## 2.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자료

- ✿ 대중동 외교정세 현황 및 외교강화 기본방향
- ✿ 공관망 확장방안
- ✿ 유력인사 방한초청
- ✿ 시절단 파견
- ✿ 친한단체 육성문제
- ✿ 유엔 대책

## 3. 참고자료

- ✿ 중동지역 공관직원 현황
- ✿ 남북한 대치 현황
  - 수교현황, 공관근무 직원대비, 북한사절단 파견현황
- ✿ 공관별 예산 현황
- ✿ 중동지역 사업별 예산
- ✿ 공관장 활동 평가

## 4. 공관별 건의사항 및 현안문제

- ✿ 유형별 주요 건의사항
  - 유력인사 방한초청, 특별사절단 파견, 북한침투 저지책 마련,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대중립국 원조, 미수교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추진, 친한단체 육성, 정책수립과정에서의 본부와 재외공관의 협조, 민속 예술단 파견, 중동지역 한국축구단 파견, 체육·문화행사 참가, 공보·문화계 유력인사 방한초청,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 및 자료 지원, 상주공보관 파견, 공관 인원 증원, 공관 활동경비 증액, 해외주재 공무원에 대한 공관장의 지휘감독권 강화 등

# 공관장회의, 1974년도 -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1974.5.7.-8. 및 5.11.-12. 전4권 (V.4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회의 자료)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중동
MF번호	C1-31 / 4 / 1~147p

외무부 구아국은 1974년도 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1. 공관장회의 자료

- ✿ 외무부장관 일정, 의사일정, 참석자 명단, 국무총리 훈시, 외무부장관 훈시
- ✿ 외무부 구아국장 설명자료
  - 회의일정 및 진행방법
  - 아프리카 정세현황과 1974년도 시책요강
  - 대아프리카 외교의 구체적 방안
- ✿ 남북한 대치현황
  - 수교현황, 공관 근무직원 대비, 북한사절단 파견현황
- ✿ 대아프리카 수출실적, 공관별 예산현황, 1974년도 대아프리카 사업별 예산
- ✿ 공관별 현안문제 및 건의사항, 공관장 활동평가 등
- ✿ 기타 참고자료
  - 북한의 대아프리카 원조제공 현황, 공관별 원조요청 종합, 아프리카 조업 원앙어선 현황

## 2. 국가별 현안문제

- ✿ 코트디부아르 등 18개 아프리카지역 국가별 현안문제와 본부 조치사항

## 3. 국가별 건의사항

- ✿ 코트디부아르 등 18개 아프리카지역 국가별 건의사항과 본부 방침

## 4. 사업별 건의

- ✿ 아래 사업별 건의사항에 대한 본부 방침
  - 유력인사 방한초청(국가원수, 외상, 기타 정부인사), 상주대사관 유치, 명예총영사 임명,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북한 단독수교국, 남북한 미수교국), 원조(의료단, 의료기재, 기타 원조), 사절단 파견(외무부장관 순방, 정부 고위층 아프리카 파견, 경제·무역사절단 파견 및 교환), 홍보·문화(언론인 방한초청, 공공·사회단체 간 교류, 공보·문화활동 건의), 경제·통상관계 건의, 행정면(공관지원, 직원 처우개선)



## 국제학술회의, 제7차. 서울, 1974.6.25.-28.

| 74-026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1-31 / 5 / 1~152p

### 1. 외무부 등록 민간단체인 한국국제관계연구소는 1974.2월 외무부에 국제학술회의 개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오면서 초청인사에 대한 비용 등 지원을 요청해 옴.

- ※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평화 추구' 라는 논제 하에 1974.6.25.~29. 서울에서 제7차 국제학술회의 개최 - 동 회의에 초청되는 외국 석학들의 방한 비용의 일부 지원 요청

### 2. 외무부는 1974.2.7. 아래 이유로 동 회의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 ※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문제에 관한 연구발표 및 토론을 통해 안보문제에 관한 학술교류에 기여
- 미국지역 초청학자 6명에 대한 2등 왕복항공료(약 8,283달러) 지원

### 3. 외무부는 1974.2월 상기 회의 개최에 따른 각종 필요조처에 대해 협조함.

- ※ 공산권 학자 초청에 대해 중앙정보부에 협조요청(2.20.)
- ※ 국토통일원, 교통부, 문교부, 문화공보부 등 관계부처에 비용 일부 지원 협조요청(3.19.)
- ※ 재외공관을 통해 피초청자의 초청 수락의사 타진 및 초청장 전달(3~4월)
- ※ 국무총리 산하 행정조정위원회에 회의 개최 심의 요청(5.2.)
- 논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평화 추구-한국의 평화외교선언을 중심으로'
- 6.23.~29. 서울에서 국내외 학자 약 60명 참가

### 4. 한국국제관계연구소는 1974.7.30. 외무부에 제7차 국제학술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일시 및 참석인원: 1974.6.25.~28. 국내외 학자 등 65명
- ※ 논제
- 동아시아의 평화 모색 : 대결의 대안 주제 하에 동아시아의 평화, 상이한 사회체제 간의 평화모색,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남북한 관계의 미래전망 등 4개 세션과 종합평가 진행
- ※ 회의 개최 의의 및 효과
- 한국의 평화외교정책의 당위성 주지, 차기 유엔총회 대비 전략적인 면에서 기선제압, 동구권외교의 일익을 담당, 친한파 인사 저변확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과 문제점을 제시하여 지역경제 협조증진 도모 등

#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상임위원회, 제11차. 동경, 1974.7.19.-20.

| 74-026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1-31 / 6 / 1~36p

## 1. 한·일본 협력위원회는 1974.6.21. 외무부에 제11차 합동상임위원회(1974.7.19.~20) 개최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함.

- ※ 일본 측 기시 노부스케 회장이 제11차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상임위원회 개최 초청장을 송부해 음.
- ※ 일본 측은 아래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함.
  - 남북한 간 대화의 진전 실정, 김대중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 일본인 학생의 민청학련 사건 가담 실정 등

316

## 2. 주일본대사는 1974.7.8. 제11차 한·일본 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 개최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상기 회의가 동경에서 개최 예정
  - 한국 측 박두진 회장 등 17명 참석
  - 일본 측 기시 노부스케 회장 등 상임위원단 참석
- ※ 주일대사관은 동 회의가 성과 있게 끝나도록 지원
  - 동 회의가 한·일본 간 유대강화 및 경제관계의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활용

## 3. 중앙일보 등 한국 언론이 1974.7.19.~20. 보도한 상기 회의 개최 결과임.

- ※ 한·일본 관계의 금후, 김대중 사건, 두 일본인 문제, 일본 매스컴의 편향보도문제 등 토의
  - 한국 측 대표들은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남북 관계의 추이에 대한 일본 측의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고 특히 한국에 대한 일본 언론의 편향적 자세를 신랄하게 비판
  - 일본 측은 일본 매스컴의 편향적 자세를 인정하면서도 두 일본인에 대한 한국 측의 특별배려를 희망
  - 장기영 의원은 두 일본인에 대한 특별조치를 건의할 용의를 표명하고 김대중의 선거법 위반 재판 종료에 따른 시민으로서의 일반적 자유 회복 사실을 언급
- ※ 일본이 정부베이스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험을 조속히 공유하도록 촉구하기로 합의
- ※ 동 회의가 양국간 현안문제에 대한 솔직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상호이해와 협조를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 차기 합동위원회는 1974년 내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김종필 국무총리 동남아 순방 계획. 전3권 (V.1 사전준비)

| 74-0270 |

생산연도	1974-1975
생산과	동남아2
MF번호	C-75 / 9 / 1~249p

김종필 국무총리의 1974년도 동남아 순방을 추진함.

## 1. 외무부는 1974.5.2. 특별교섭사절단의 해외파견에 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 파견목적

-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의 효과적 시행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각지역 침투책동을 효과적으로 저지
- 제29차 유엔총회에 대비

### ※ 파견시기 및 지역

- 1974.6월 아주, 구주,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지역 등 총 62개국에 13개반 파견
- 14개 겸임 또는 인접 공관장을 20개국에 파견
- 기타 19개국은 외교경로로 교섭

## 2. 외무부는 1974.5월 상기 계획에 따라 김종필 국무총리의 동남아 순방계획을 수립함.

### ※ 순방기간 및 대상국

- 1974.6.10.~25. 아세안 5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 ※ 방문목적

- 국제정세 논의, 북한침투 저지 및 제압, 유엔에서의 지지 획득

### ※ 교섭대상

- 각국 국가원수, 수상, 외상, 경제각료 등 주요인사

## 3. 외무부는 1974.5월 이후 국무총리 순방에 따른 각종 준비를 진행함.

### ※ 순방국 대사관에 일정교섭, 면담인사 확정 주재국의 의전관례 조사, 각종 행정사항 준비 등 훈령

### ※ 외무부는 순방에 따른 자료 준비

- 각국별 주요 현안 문제, 주요인사 면담자료 및 훈령작성
- 한반도 정세, 유엔 문제 등 한국 정부의 입장 지침
- 국무총리 방문 발표문, 공동성명, 각종 연설문
- 각국 국가원수 등에 대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명의의 친서

## 4. 상기 김종필 국무총리의 동남아 순방계획은 순방국의 사정, 1974.8.15. 사건 등으로 수차례 변경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외무부장관의 동남아 순방계획(1975.2.27.~3.3.)으로 확정됨.

# 김종필 국무총리 동남아 순방 계획. 전3권 (V.2 국별교섭 I)

| 74-0271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남아2
MF번호	C-75 / 10 / 1~277p

외무부는 김종필 국무총리의 1974년도 동남아 순방계획과 관련하여 방문국에 대한 국별 교섭을 진행함.

## 1. 순방국(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공통 훈령(1974.5월)

- ※ 순방 대상국 국가원수 등 주요 인사의 정치 일정 조사 보고
- ※ 주요현안 및 정치적 해결시도가 요청되는 사항 지급 건의
- ※ 국무총리의 방문 접수 적극 교섭
- ※ 토의의제 교섭
  - 한국 측은 국별 주요 현안 이외에 각국 공통사항으로 일반 국제 정세, 한반도 정세, 한국 입장, 유엔 한국 문제, 북한의 침략적 도발상과 위장 평화공세, 지역협력문제, 정기각료회담 개최, 경제·통상·문화 등 제 분야의 교류촉진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
- ※ 기타 의전사항
  - 훈장교환 여부, 각종 행사 시 복장, 공항영송 절차, 연회종류 및 참석범위, 선물교환, 연설이 필요한 행사 등

## 2. 국무총리 순방연기 지시 등 훈령(1974.5월이후)

- ※ 국무총리의 동남아 방문계획(1974.6.10.~25.)을 여러가지 사유로 수차례 연기
- ※ 방문 연기에 따른 새로운 방문일정 교섭
- ※ 국무총리의 방문 시 공동성명 발표에 대한 주재국의 의향

## 3. 상기 훈령에 따라 주인도네시아, 주말레이시아대사 및 주싱가포르총영사는 1974.5월 이후 아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함.

- ※ 주재국과의 일정 교섭 진행 결과
  - 국무총리 방문연기에 따른 재교섭 결과 포함
- ※ 공동성명 발표에 관한 주재국의 반응
- ※ 면담의제에 대한 주재국의 의견
  - 외교관계 수립 등 포함 요망(싱가포르)
- ※ 주재국의 영접계획 및 기타 의전사항
  - 주재국 대통령, 외상 등 고위인사 약력 및 사진 송부
- ※ 한국 대통령 부인 자격사건(8.15.)에 대한 주재국의 애도표명

# 김종필 국무총리 동남아 순방 계획. 전3권 (V.3 국별교섭 II)

| 74-0272 |

생산연도	1974-1975
생산과	동남아2
MF번호	C-75 / 11 / 1~244p

외무부는 김종필 국무총리의 1974년도 동남아 순방계획과 관련하여 주필리핀, 주태국, 주대만 (구 자유중국), 주홍콩, 주미얀마총영사는 1974.5월 이후 국별 교섭을 보고함.

## 1. 주재국과의 일정교섭 진행 결과

- ※ 국무총리 방문연기에 따른 재교섭 결과 포함

## 2. 공동성명 발표에 관한 주재국의 반응

## 3. 면담의제에 대한 주재국의 의견

## 4. 주재국의 영접계획 및 기타 의전사항

- ※ 주재국 대통령, 외상 등 고위인사 약력 및 사진 송부
- ※ 박사학위 수여식(필리핀), 서훈 계획(태국)

# 김동조 경축 특사(외무장관) 브라질 · 베네수엘라 방문, 1974.3.10.-16.

| 74-027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의전
MF번호	C-75 / 12 / 1~127p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방문(1974.3.10.~16.) 교섭 경과 및 관련 사항임.

## 1. 외무부 중남미과는 대통령 경축특사 파견과 1974년도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 파견목적

- 베네수엘라 및 브라질과의 전통적인 친선유대 공고화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신임 대통령 취임 경축사절단을 파견

### ※ 사절단

- 김동조 외무부장관(단장)외 주베네수엘라 및 주브라질 대사

### ※ 취임식 참석

- Perez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식(3.12.)
- Geisel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3.15.)

### ※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1974.3.17.~18. 리마(페루)) 개최

- 중남미정세 검토와 대중남미 외교강화 방안 강구 목적
- 중남미지역 7개 공관장과 외무부 미주국장, 통상국장 등 참석

## 2. 외무부는 1974.3.2. 베네수엘라 및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하는 김동조 외무부장관에게 대통령의 신임장을 발급함.

### ※ 신임장 주요 요지

- 한국과 양국의 돈독한 관계의 증거로서 김동조 장관이 특사로서 대통령 취임식 참석
- 동 경축사절로부터 본인의 존경과 양국 정부 및 국민 간 우의를 받아주기를 희망

## 3. 외무부는 1974.3월 김동조 장관의 중남미 방문 보고자료를 작성함.

### ※ 베네수엘라 및 브라질 대통령 경축식 참석

- Perez 대통령 취임식 참석(3.12.) 및 대통령 예방(3.13.)
- Geisel 대통령 취임식 참석(3.15.) 및 대통령 예방(3.15.)

### ※ 각국 특사들 접촉 시 특기사항

-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특사인 닉슨 대통령 부인과 인사
- 바베이도스 수상 면담 시 최근 남북한 관계를 상세히 설명
- 코스타리카 외상과 오찬 시 코스타리카의 북한과의 수교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파악

### ※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1974.3.18.~19., 리마) 참석

## 김동조 외무장관 캐나다 방문, 1974.11.14.-15.

| 74-027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75 / 13 / 1~70p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캐나다 방문(1974.11.14.~15.) 교섭경과 및 관련 사항임.

### 1. 외무부는 1974.10.31. 주캐나다대사에게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Stiles 주한 캐나다대사와의 면담 (10.31) 결과를 통보함.

- ※ Stiles 대사는 캐나다 외상이 1974.11월 중 김동조 장관을 초청하는 의사를 전달해 옴.  
- 동 대사는 가능한 한 11.14. 또는 11.15.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언급
- ※ 동 장관은 캐나다 방문 시 일반적인 의견교환과 원자로 도입문제 협의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2. 외무부 미주국은 1974.11.2. 김동조 장관의 캐나다 방문 시 면담자료를 작성함.

- ※ 캐나다 개황, 한국 · 캐나다 주요관계, 캐나다 정무일반(캐나다 국내정세, 대외정책, 대한정책)
- ※ 한국 · 캐나다 주요현안  
- 캐나다 외상 방한 초청, 유엔 한국문제 계속 지원, 조약체결, 양국 통상확대 및 경제협력
- ※ 참고자료  
- 캐나다 교민현황, 양국 교역현황, 1974년도 캐나다 주요 방한인사, 캐나다 각료명단

### 3. 외무부는 1974.11.9. 김동조 장관의 캐나다 방문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함.

- ※ 김동조 장관이 캐나다 외상의 초청으로 1974.11.14.~15. 캐나다를 공식 방문, 양국 외상회담을 개최함.  
- 동 회담에서 일반 국제정세 및 양국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교환 예정

### 4. 김동조 장관은 1974.11.15. 대통령에게 양국 외무장관 회담의 주요내용을 전문으로 보고함.

- ※ 캐나다 외상이 동 장관의 방한 초청(1975.2월)을 수락함.
- ※ 캐나다 측은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신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 전망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측은 캐나다 측의 협조와 지원에 사의를 표명함.
- ※ 한국 측은 북한의 위장평화 선전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설명함.
- ※ 원자력발전 차관과 관련, 캐나다 측은 원자력 안전조치에 관한 새로운 검토가 진행 중이며 조속히 선처하겠다고 언급함.
- ※ 외상회담과 별도로 경제기술협력 증진과 한반도 평화안전 조치를 위한 캐나다 측의 협조를 다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 김동조 외무장관 프랑스 방문

| 74-027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C-75 / 14 / 1~14p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중동지역 공관장회의와 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 참석 후 프랑스를 방문하여 Jobert 프랑스 외상과 면담을 가짐.

## 1. 면담 일자

※ 1974.5.15.

322

## 2. 면담 장소

※ 프랑스외상 집무실

## 3. 면담자

※ 프랑스 측

- Jobert 외상, 외무성 아주국장 배석

※ 한국 측

- 김동조 외무부장관, 윤석현 주프랑스대사 배석

## 4. 면담 요지

※ 김 장관 언급 요지

- 유엔 한국문제에 관한 전망 설명과 지원 요청
- 아랍권의 대한국 오해 해소를 위한 협조 요청
- 동구권의 대한국 문화개방을 위한 지원 요청
- 아프리카국가의 지지를 위한 협조 요청

※ Jobert 외상 언급 요지

- 아랍국에 가능한 대로 한국입장을 이해시키도록 할 것임.
- 아프리카를 포함한 제3세력에 한국입장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음.
- 유럽국 중 미군의 유럽 주둔을 주장하면서도 미군의 한국 주둔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들(덴마크, 네덜란드)이 있는바, 본인과 아주국장이 한국의 입장을 관계국에 이해시키도록 지원할 것임.
- 방한 계획이 국내정치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언젠가 방한하기를 바라고 있음.



# 김동조 외무장관 교황청(구 바티칸) 방문, 1974.10.9.-13.

| 74-027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북미
MF번호	C-75 / 15 / 1~33p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교황청(구 바티칸) 방문(1974.10.9.~13.) 교섭경과 및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1974.9.28. 주교황청(구 바티칸)대사에게 외무부장관의 교황청 방문과 관련하여 교황, 외무담당 추기경 및 기타 인사와의 면담을 주선할 것을 지시함.

2. 주교황청대사는 외무부장관의 교황청 방문과 관련하여 1974.10.4.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10.3. 교황청 국무총리관은 Villot 국무장관 추기경이 교황의 전권을 위임받아 10.10. 외무부장관을 접견키로 결정했음을 주교황청대사에게 통보해 옴.  
- 교황은 진행 중인 제40차 주교총회 관계로 접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줄 것을 요청

3. 외무부장관은 1974.10.10. Villot 교황청 국무장관 면담 후 동 결과를 대통령에게 전문으로 보고함.

- ※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국내 카톨릭 교직자들의 정치활동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나 국내의 일부 교직자들과 특히 외국인 신부들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과 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언급함.  
- 교황청 당국이 한국에 있는 내외국인 교직자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하여 정치활동이나 시위 등 행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
- ※ 김동조 장관은 지학순 주교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수일 내 판결공판이 있을 것이나, 고등군법 회의와 대법원에 의해 재심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언급함.
- ※ Villot 장관은 교황이 한국에 대해 특별한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한 후 한국이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교황청이 한국의 국내문제에 관여하려는 의도는 없고 문제가 조용히 수습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동 장관은 주한 교황사절에게 훈령을 시달한 바 있으므로 서울에서도 주한 교황사절과 계속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
- ※ 동 장관은 김 장관이 국내 정세와 카톨릭 교직자들의 정치활동을 설명한 데 대해 주의깊게 경청하고 특히 외국인 신부들이 정치활동에 가담하고 있다는 데 대해 놀라운 표정을 지음.  
- 전체적으로 급변 면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교황청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 김동조 외무장관 페루 방문, 1974.3.16.-19.

| 74-027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75 / 16 1~165p

김동조 외무부장은 1974.3.16.~19. 페루 리마를 방문함.

## 1. Prada 페루 외상대리(내무장관) 면담(1974.3.18.)

### ※ 김동조 장관 언급 요지

- 리마 방문의 주목적이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를 주재하는 것임.
-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의 무력이나 공산주의 방식에 의한 통일에는 반대함.
- 페루와 경제적 유대강화, 문화면의 상호교류 증진을 희망하며, 한국에도 페루의 상주공관이 개설되기를 희망함.
- 외상대리의 방한을 초청함.

### ※ Prada 외상대리 언급 요지

-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며 양국간 관계증진을 희망함.

## 2. Jarrin 페루 수상 겸 국방장관 면담(1974.3.18.)

### ※ 김동조 장관 언급 요지

- Jarrin 수상의 외상 재임 시 한국의 상주대사관 설치를 수용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한국에 페루 상주대사관이 설치되기를 희망함.
- 페루의 200마일 해양주권 선언과 관련, 해양자원 보호를 위한 전관수역 주장에 찬성함.
- 페루와의 어업협력 가능성 검토를 위해 페루 어업장관을 방한 초청함.
- 페루의 북한과의 관계는 북한의 동맹국들이 한국의 문화개방 원칙에 호의적 반응을 보일 때까지 호혜 원칙에 의거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함.

### ※ Jarrin 수상 언급요지

- 현재 아프리카지역 등에서 외교망 확충을 우선 추진 중이며, 주한 상주공관설치 문제는 검토 중임.
- 200마일 해양주권 선언과 관련, 영해가 각 연안국의 실정에 맞도록 신축성 있게 설정되어야 할 것임.
- 문화개방 정책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이해를 표명함.

## 3. 기타 주요활동

- ※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 주재(1974.3.18.)
- ※ Prada 외상대리 주최 만찬 참석(3.18.)
- ※ 한·페루 통상협정 서명 및 한·페루 문화협회 이사진 접견(3.19.)

# 김동조 외무장관 미국 방문

| 74-027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국제연합
MF번호	C-75 / 17 / 1~351p, Re-26 / 15 / 1~24p

김동조 외무부장은 제29차 유엔총회 지지교섭차 미국을 방문함.

## 1. 외무부는 1974.8.12. 제29차 유엔총회 대비한 현지교섭단 파견에 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 교섭단: 김동조 외무부장관 외 주유엔, 미국, 캐나다 대사 등
- ✱ 출장기간: 1974.9.2부터 1개월간
- ✱ 외무부장관 활동계획
  - 유엔 사무총장 및 총회 참석 각국 외상, 수석대표와 접촉, 지지교섭 시행
  - 주요 우방과의 고위전략협의 시행
  - 워싱턴에 출장, 미국 신행정부 지도자들과 접촉, 현안문제 협의

## 2. 외무부는 1974.10.17. 국회 외무위원회에 김동조 장관의 미국 방문(1974.9.22.~10.8.) 성과를 보고함.

- ✱ 활동 개요
  - 유엔 사무총장 면담(9.25.), 45개국 외상 면담, 유엔총회 참석 각국 대표를 위한 리셉션 및 만찬 개최 (9.25. 및 10.7.)
- ✱ 주요 성과
  - 유엔 사무총장 및 각국 외상을 대상으로 한국 측 입장에 대한 지지 교섭 및 주요 현안 문제 협의
  -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과의 전략협의: 미 국무부 정무차관 및 아·태국제기구담당차관보와 면담 (9.27.)하여 유엔대책 및 주요현안 협의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가담 교섭
  - 방한 초청 11개국 외상 등

## 3. 김동조 장관은 제29차 유엔총회 참석차 1974.11.5.~12.14. 미국을 방문하여 각종 활동을 전개함.

- ✱ 유엔총회 참석 주요인사 면담 활동(11.11.)
  - 유엔총회 정치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여 한국문제 토의 시 협조 당부
  - 중남미 3개국 유엔대사와 오찬, 한국 측 공동제안국 가담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문제 토의 시 협조를 요청
  - 주유엔 미국대사와 면담, 공산 측 결의안 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
- ✱ 유엔 정치위원회 연설(11.29.) 시행
- ✱ 워싱턴 주요 인사 면담 활동
  - 행정부, 의회, 언론계 요인들과 만찬(12.10.)
  - 잉거솔 국무차관 면담(12.11.)

# 노신영 외무차관 중남미 순방, 1974.10.24.-29.

| 74-027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국제연합
MF번호	C-75 / 18 / 1~63p

노신영 외무부차관은 1974.10월 제29차 유엔총회 지지교섭차 중남미 3개국을 순방함.

## 1. 방문배경

- ※ 중남미 3개국(파나마, 베네수엘라, 페루)은 종래 유엔 한국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한국 입장을 지지해 왔으나, 근래 국제정치의 다변화에 따른 실리외교 추구 및 중남미지역에서의 반미감정의 고조와 미국 영향력의 감퇴에 따라 독자노선 추구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함.
  - 따라서 1973년 유엔총회 시부터 한국 입장에 대해 종래와 같은 전폭적 지지로부터 후퇴,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함.
- ※ 특히 상기 3개국은 공히 비동맹그룹 회원국 또는 옵서버로서 중국(구 중공) 및 비동맹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와의 행동통일 강령을 내세워 반서방 노선을 지향함.
  - 더욱이 최근 중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 북한과의 외교(베네수엘라) 또는 통상(페루)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의 집요한 책동에 의해 유엔총회 한국 문제에 있어 한국 입장을 심히 약화시켜 왔음.

326

## 2. 방문목적

- ※ 제29차 유엔총회 한국 문제에 대비, 중남미 3개국 정부요를 설득하여 동 정부로부터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지지 및 공산 측 결의안에 대한 반대를 확보하고, 나아가서 가능한 한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가담을 교섭함.

## 3. 방문성과

- ※ 파나마(10.24.~26.)
  - 한국 측 결의안 지지 및 공산 측 결의안 반대는 물론 한국 측 공동제안국 가담 확약
  - 파나마의 공동제안국 가담은 11.5. 유엔총회 제1위원회 위원장에 의해서 정식 발표
- ※ 베네수엘라(10.26.~28.)
  - 베네수엘라 정부의 북한과의 전격적인 외교 관계 수립(10.28.)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측은 한국 측 결의안 지지 및 공산 측 결의안 반대 확약
- ※ 페루(10.28.~29.)
  - 한국 측 결의안 지지에 호의적 반응 표명
  - 공산 측 결의안에 대해서는 기권 내지 불참하겠다고 언급

# 함병춘 특사(주미국대사) 바하마 방문, 1974.9.10.-12.

| 74-028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75 / 19 / 1~57p

함병춘 대통령 특사는 1974.9.10.~12. 바하마를 방문함.

## 1. 외무부는 1974.5.26. 바하마에 대한 대통령 특사 파견에 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 파견목적
  - 중남미 카리브지역 신생 독립국이며 미수교국인 바하마와의 수교 교섭 및 제29차 유엔총회에 대비한 지지 교섭
- ※ 특사 및 파견시기
  - 함병춘 주미국대사를 1974.9월 초순(유엔총회 개막 전) 파견

## 2. 외무부는 1974.9.6. 주미국대사에게 대통령 특사로서의 바하마 방문에 따른 훈령을 하달함.

- ※ 훈령 주요사항
  - 대통령의 친서 휴대, 전달
  - 한반도 정세설명과 유엔에서의 한국지지 확보(공동제안국 교섭)
  - 바하마와의 수교 교섭 추진
  - 경제·기술협력 증진

## 3. 주미국대사는 1974.9.13. 바하마 출장(1974.9.10.~12.) 결과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주요 면담인사
  - Pindling 수상, Adderley 외상, Russell 외무차관
- ※ 면담 요지
  - 유엔에서의 한국 측안 및 결의안 지지요청에 대해 수상은 외상과 상의하여 처리할 것임을 설명
  - 외상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문제는 전적으로 찬성이나 UNC(유엔군사령부) 존속은 의문시 된다고 언급한 바, 특사가 계속 UNC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자 외상은 이에 대한 이해 표명
  - 국교수립 촉구에 대해 수상은 외상과 협의 후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외상은 이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회답하겠다고 언급
- ※ 북한 동향
  - 8.28. 진중국 주제네바 북한대사가 방문하여 바하마 수상, 외상과 면담
  - 주쿠바 북한대사는 1974년 3차례에 걸쳐 바하마를 방문
- ※ 관찰
  - 수상 및 외상의 반응은 이해 관계가 없는 문제에 관여되기를 꺼리며 그간 북한 측의 빈번한 방문으로 한국 문제에 대해 귀찮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줌.
- ※ 건의
  - 북한 측의 빈번한 방문에 대비하여 한국 측 입장을 바하마 정부 고위층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계속 마련해야 할 것임.

##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2개국 순방, 1974.9.5.-12.

| 74-028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75 / 20 / 1~164p

윤석현 주프랑스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4.9.5.~12. 아프리카 2개국(가나, 시에라리온)을 순방함.

### 1. 외무부는 1974.5.2. 북한의 각 지역 침투책동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제29차 유엔총회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교섭사절단 파견에 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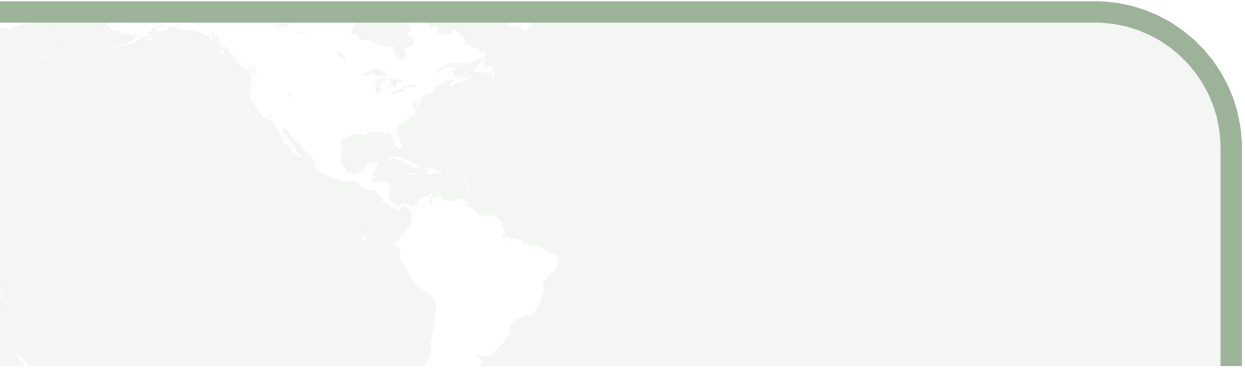
- ※ 13개반을 총 62개국에 파견
- ※ 파견시기는 1974.6~8월

### 2. 외무부는 상기계획에 따라 1974.8.8. 아프리카지역 사절단(단장: 윤석현 주프랑스대사)에 대한 훈령을 확정함.

- ※ 파견개요
  - 방문국 및 방문일정: 가나(9.5.~9.), 시에라리온(9.9.~12.)
  - 비공식 방문국(경유국): 차드,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 ※ 파견목적
  - 대통령 친서전달
  - 최근 한반도 정세와 정부입장 설명
- ※ 일반훈령
  - 북한침투 저지: 북한승인이나 북한과의 국교수립 적극 저지
  - 북한사절단 방문효과 극소화: 북한의 원조약속의 허구성 지적, 북한침투 경각심 야기
  - 북한제압을 위한 효과적 대책 모색: 효과적인 방안 종합건의
  - 남북대화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설명
  - 1974년 가을 유엔총회 대비, 정부입장 설명 및 지지 교섭
  - 남북 불가침협정 제의 배경설명 등

### 3. 윤석현 대사는 1974.10.4. 아프리카 2개국 순방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주요활동
  - 방문국 원수에 대한 대통령의 친서 전달
  - 최근 한반도 정세와 정부입장 설명
  - 한국 측 유엔결의안에 대한 지지 요청
  - 북한의 전쟁 도발상 설명 및 위장평화 정책 폭로
  - 남북대화의 현황 및 문제점과 북한의 남북대화 중단 저의 및 한국 측 기본태도 설명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또는 한국의 단독가입 필요성 설명



✿ 관찰 및 건의

- 가나: 경제사절단 파견, 유력바이어 초청, 한국 문제와 아프리카 문제의 상이점 홍보
- 시에라리온: 상주대사관 설치, 경제사절단 파견, 유력인사 방한초청 등

# 친선사절단 파키스탄 및 중미 순방, 1974.7.10.-8.8. 전2권 (V.1 사전준비)

| 74-028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서남아/국제연합
MF번호	C-76 / 1 / 1~379p

김용식 국토통일원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이 1974.7.10.~8.8. 파키스탄 및 카리브지역을 순방함.

## 1. 외무부는 1974.6.21. 카리브지역 및 파키스탄에 대한 사절단 파견에 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 파견목적

- 카리브지역: 북한의 대카리브지역 침투저지, 한국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촉구, 유엔총회에 대비한 한국 입장 설명, 수교 교섭 추진
- 파키스탄: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평화통일 외교정책 주지, 외교관계 수립 추진

### ※ 파견 대상국

- 카리브지역 6개국: 아이티, 자메이카,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 파키스탄

### ※ 사절단 : 김용식 국토통일원장관(특사) 및 수행원

### ※ 파견기간: 파키스탄(7.10.~15.), 카리브지역(7.20.~8.16.)

## 2. 외무부는 1974.7.3. 김용식 장관에게 방문사절단에 대한 훈령을 아래와 같이 지시함.

### ※ 일반적 훈령사항

- 우호증진, 한반도 정세 설명과 유엔에서의 한국지지 요청, 경제·기술협력 관계 추진, 방문결과 보고

### ※ 국별 훈령사항

- 국가별로 국교수립 교섭추진, 한반도 정세 설명, 수상 또는 외상 등 주요 인사 방한초청, 북한침투 저지노력, 유엔지지 교섭, 경제·기술협력, 상주공관 설치, 명예영사 임명 등

## 3. 외무부는 1974.5월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한 바 있음.

### ※ 정부는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13개 특별사절단 파견의 일환으로 김용식 통일원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6~7월 파키스탄에 파견할 예정임.

- 주재국 정부가 동 사절단을 팔히 접수하도록 적극 교섭 및 결과 보고
- 대통령, 수상, 의회 및 여당 지도자와 그 외 영향력 있는 정부지도자와의 면담 추진

### ※ 금번 특사파견은 양국간 우호증진을 위한 공동관심사 협의는 물론 교역 및 경제협력 증진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함을 강조할 것.



# 친선사절단 파키스탄 및 중미 순방, 1974.7.10.-8.8. 전2권 (V.2 결과보고)

| 74-0283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중남미/서남아/국제연합
MF번호	C-76 / 2 / 1~161p

김용식 대통령 특사는 1974.8월 파키스탄 및 카리브지역 5개국 순방 친선사절단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1. 순방일정

- ※ 파키스탄(7.10.~15.), 트리니다드토바고(7.22.~24.), 가이아나(7.24.~27.), 바베이도스(7.27.~31.), 그레나다(7.31.~8.2.), 아이티(8.5.~8.)

## 2. 국별 방문보고

- ※ 일정 및 활동, 주요 면담결과, 종합판단, 정세 및 관찰, 건의사항

## 3. 종합평가

- ※ 파키스탄은 한국·파키스탄 수교원칙을 결정해 놓고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1974년 유엔총회 결과를 보아가면서 시기를 포착할 것으로 관측됨.
- ※ 남북한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카리브지역 다수국이 단독수교를 피하고 관망하는 자세를 보임.
  - 다만, 그레나다의 경우 한국과의 단독수교로 북한의 진출은 당분간 곤란할 것이며, 아이티가 북한을 포함한 공산국가로 수교할 가능성은 없음.
- ※ 카리브지역은 중남미에서 정치·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동 지역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배려가 요망됨.
- ※ 카리브지역에 대한 선전활동으로 동 지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카리브해역 미독립 영토의 독립선포에 대비, 카리브 소 도서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 카리브연안 및 도서국들에 대한 한국 어선단의 적극적 진출을 권장함.

## 4. 건의사항

- ※ 주베네수엘라대사관 인원 증원이 필요함.
- ※ 카리브지역 관찰 대사관 직원들의 상시적인 동 지역 순방이 필요함.
- ※ 가이아나, 바베이도스, 아이티에 대한 원양어선 기지건설을 검토함.
- ※ 북한의 카리브지역에 대한 사절단 공세(1974.8월)에 대처하여 한국은 경제기술협력 조사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것을 건의함.
  - 동 사절단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요망
  - 다만, 가이아나의 경우는 한국이 이미 공약한 사업추진과 연관하여 신중을 기할 것.

## 5. 참고자료

- ※ 한국과 그레나다 국교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1974.8.1. 국교 수립)

#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4개국 순방, 1974.7.16.-8.6.

| 74-0284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C-76 / 3 / 1~159p

이병희 무임소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4.7.16.~8.6.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함.

## 1. 외무부는 1974.5.2. 북한의 각 지역 침투책동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제29차 유엔총회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교섭사절단 파견에 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 13개반을 총 62개국에 파견
- ※ 파견시기는 1974.6~8월

## 2. 외무부는 1974.5.24. 상기 계획에 따라 주프랑스대사 등 관련 공관장에게 특사파견 계획을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사절단장: 이병희 무임소장관
- ※ 방문국 및 방문시기
  - 차드(7.16.~20.), 중앙아프리카공화국(7.20.~26.), 말라위(7.30.~8.3.), 모리셔스(8.5.~8.), 마다가스카르(8.8.~8.13.)
- ※ 방문목적
  - 양국간 기존 우의증진 및 협력관계 심화, 양국간 공동관심사 협의
- ※ 동 파견계획을 주재국 정부에 통보하고 접수동의를 얻도록 교섭
  - 방문국 국가원수, 외상, 기타 정부요인 면담을 주선

## 3. 외무부는 1974.6.20. 이병희 특사에게 아프리카지역 특별사절단에 대한 훈령을 아래와 같이 지시함.

- ※ 일반훈령
  - 북한침투 저지, 북한사절단 방문효과 극소화, 북한제압을 위한 효과적 대책 모색, 남북대화에 관한 정부입장 설명, 1974년 가을 유엔총회에 대비한 정부입장 설명 및 지지교섭, 남북불가침협정 제의 배경 설명, 통상·기술 및 경제협력 증진 등
- ※ 국별 훈령
  - 방문국별로 유엔총회에서의 한국지지 요청, 북한과의 관계개선 저지, 국가원수 등 주요인사의 방한 초청, 경제기술협력, 한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 촉구 등

## 4. 이병희 특사는 1974.7월 특별사절단의 방문 결과를 수시로 보고한 바,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음.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7.16.~22.)
  - 주한 상주대사관 설치 및 대사 파견 합의, 한국 측의 의료기재 및 농기구 지원, 대통령 방한 초청 수락, 공동성명 발표

✿ 차드(7.22~25.)

- 대통령의 친서전달 및 한반도 정세 설명,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외상의 1974.8월 방한 결정, 주프랑스 대사의 겸임 아그레망 부여(7.25.)

✿ 모리셔스(7.29.~8.1.)

-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요청에 대해 호의적 고려 약속, 주모리셔스 한국 명예영사 임명에 대해 원칙적 합의, 우호조약 및 어업협정 체결 검토 합의, 북한 모리셔스 침투 저지

✿ 말라위(8.2~6.)

-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약속, 북한 등 공산국과의 수교의향 없음을 언급, 경제 및 기술협력 증진 희망

✿ 마다가스카르

- 한국사절단 접수 거부로 방문 취소

##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5개국 순방, 1974.6.19.-7.6.

| 74-028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C-76 / 4 / 1~383p

김용태 공화당 원내총무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4.6.19.~7.6. 아프리카 5개국을 순방함.

### 1. 외무부는 1974.5.2. 북한의 각 지역 침투책동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제29차 유엔총회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교섭사절단 파견에 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 13개반을 총 62개국에 파견
- ※ 파견시기는 1974.6~8월

### 2. 외무부는 1974.5.23. 상기 계획에 따라 주세네갈대사 등 관련 공관장에게 아프리카지역 특사파견에 관해 훈령함.

- ※ 아래 사절단 파견계획에 따라 접수교섭 및 면담을 주선하고 결과 보고
  - 사절단장: 김용태 공화당 원내총무
  - 방문국 및 방문시기: 세네갈(6.18.~22.), 니제르(6.24.~27.), 카메룬(6.30.~7.3.),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7.3.~6.)
- ※ 각 방문국 국가원수 앞 한국 대통령 친서에 특히 언급하기를 희망하는 사항 지급 건의

### 3. 김용태 특사는 1974.7.19. 서부아프리카 5개국 순방 특별사절단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함.

- ※ 방문국 및 기간
  - 세네갈(6.19.~22.), 니제르(6.24.~27.), 코트디부아르(6.27.~30. 비공식방문), 카메룬(6.30.~7.3.), 콩고민주공화국(7.4.~6.)
- ※ 방문목적
  - 대통령의 친서전달, 한반도 정세설명과 한국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 기타 양국간 현안문제 교섭
  - 북한의 대아프리카 침투상황 파악과 효과적 제압책 현지조사, 대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정책자료수집
- ※ 세네갈 방문 결과
  -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환영, 북한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논평, 대통령 등 주요인사 방한초청, 무역협정 체결, 양국 의원친선협회 구성 등
- ※ 니제르 방문 결과
  - 혁명정부의 친한 입장 확보, 외상 방한 초청, 협력사업 계속 추진
- ※ 코트디부아르 방문 결과
  - 국회의장 방한 초청 재확인, 양국 의원친선협회 구성, 친한적 태도 재확인

✿ 카메룬 방문 결과

- 한국의 평화통일노력 지지, 대통령 등 주요인사 방한 초청, 상호협력 증진, 의료단 파견통보, 주한대사 임명 요청, 양국 의원친선협회 구성

✿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결과

-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노력 지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입장 표명, 대통령 등 주요인사 방한 초청, 경제협력 강화, 주한 상주공관 설치 요청

✿ 종합 건의

- 북한의 공관 설치에도 불구하고 착실한 외교활동 전개 필요
- 아프리카 적극진출을 위한 장기정책 수립 필요
- 장기적 기술협력사업 추진: 의료원조사업, 태권도사범 파견, 단기기능공 양성소 설치, 합작투자사업 추진 등

#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6개국 순방, 1974.6.16.-7.7.

| 74-028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C-76 / 5 / 1~402p

최규하 대통령 특보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4.6.16.~7.7. 아프리카 6개국을 순방함.

## 1. 외무부는 1974.5.2. 북한의 각 지역 침투책동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제29차 유엔총회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교섭사절단 파견에 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 13개반을 총 62개국에 파견
- ※ 파견시기는 1974.6~8월

## 2. 외무부는 1974.5.10. 상기 계획에 따라 주케냐대사 등 관련 공관장에게 특사파견에 관해 훈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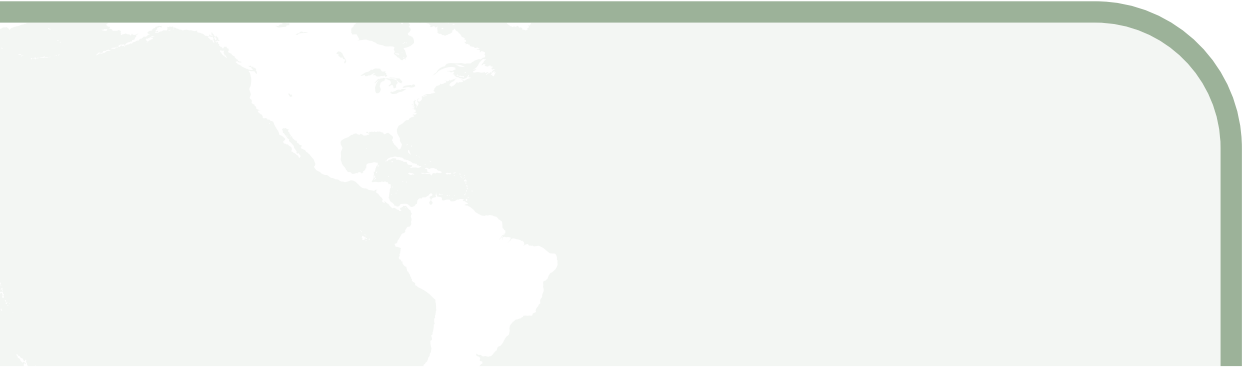
- ※ 최규하 대통령 특보를 6월 동부아프리카 6개국에 파견예정이니 상대방 정부에 통보하고 접수동의를 받도록 교섭

## 3. 외무부는 1974.6.7. 최규하 특사에게 특별사절단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일반훈령
  - 북한침투 저지, 북한사절단 방문효과 극소화, 북한 제압을 위한 효과적 대책 모색, 남북대화에 관한 정부입장 설명, 1974년 가을 유엔총회에 대비한 정부입장 설명 및 지지 교섭, 남북불가침협정 제의 배경 설명, 통상·기술 및 경제협력 증진 등
- ※ 국별 훈령
  - 방문국별로 유엔총회에서의 한국 지지 요청, 북한침투 저지, 국가원수 등 주요인사 방한 초청, 경제기술 협력, 의료협력 등

## 4. 최규하 특사는 1974.7.11. 동부아프리카 6개국 순방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순방일정
  - 케냐(6.16.~19.), 에티오피아(6.19.~22.), 레소토(6.24.~26.), 보츠와나(6.27.~29.), 스와질란드(7.1.~3.), 우간다(7.4.~7.)
- ※ 국별 방문 결과
  - 케냐: 한국의 평화정책 및 남북대화 지지, 한국의 유엔가입 찬성, 한국과의 경제협력 및 교역증진에 적극적 자세 시현
  - 에티오피아: 한국의 평화정책 및 남북대화 지지
  - 레소토: 한국입장 지지,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 보츠와나: 한국입장을 이해하는 태도 표명
  - 스와질란드: 한국입장 이해 및 지지
  - 우간다: 한국의 평화정책 및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 종합 건의

- 동 지역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정책 추진
- 의사 및 태권도 사범 파견사업의 계속 추진
- 한국의 대아프리카 홍보활동 강화

# 특별사절단 서남아 순방, 1974.6.27.-7.6. 전2권 (V.1 기본문서집)

| 74-028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1
MF번호	C-76 / 6 / 1~462p

차지철 국회 내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4.6.27.~7.6. 네팔, 미얀마(구 버마), 라오스를 순방함.

## 1. 방문목적

- ※ 6·23 선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지 교섭
- ※ 경제기술협력 문제 협의
- ※ 외교관계 수립 협의

338

## 2. 네팔 방문(6.27.~29.)

- ※ 방문시 접촉 인사
  - 네팔 국왕, 수상, 외상, 국회의장, 건설교통상 등 주요 인사
- ※ 네팔 측 반응
  - 양국 제반 관계증진 희망
  - 한국의 외교정책이 평화를 위한 것임을 인식
  - 남북한 합의로 유엔동시가입 조속 실현 희망
  - 외상이 한국 측의 방한 초청 수락

## 3. 미얀마 방문(6.29.~7.3.)

- ※ 방문시 접촉 인사
  - 미얀마 대통령, 수상, 부수상, 외상, 국가이사회 위원 등 주요 인사
- ※ 버마 측 반응
  - 남북한의 무력충돌은 대화 분위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언급
  - 남북한이 합의를 통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를 희망
  - 한·버마 경제각료회담 개최문제 호의적 검토(10월말 개최의사 표명)

## 4. 라오스 방문(7.3.~6.)

- ※ 방문시 접촉 인사
  - 라오스 수상, 부수상, 외상, 경제기획상, 건설교통상 등 주요 인사
- ※ 라오스 측 반응
  -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이해하며, 제반 정세로 보아 통일 달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이러한 노력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의견 표명
  - 한반도 분단의 비애를 충분히 이해하며 양국간의 제반 관계 증진 희망
  - 한국의 대라오스 외환안정기금 참여 호소



# 특별사절단 서남아 순방, 1974.6.27.-7.6. 전2권 (V.2 언론보도)

| 74-028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1
MF번호	C-76 / 7 / 1-33p

차지철 국회 내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의 서남아 순방 시(1974.6.27.~7.6.) 수행한 기자단이 외무부를 통해 중앙, 조선, 한국일보 및 CBS에 전달한 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네팔 방문(6.27.~29.) 기사

- ✪ 의원사절단은 6.27. 하오 첫 순방국인 네팔에 도착
  - 특사 일행은 이날 하오부터 6.28. 상오에 걸쳐 네팔 수상, 외상, 건설교통상 및 국회의장과 회담
  - 특사는 이 자리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북대화를 계속하겠다는 한국의 입장과 6·23평화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의 평화공존정책을 지지 요청
  - 네팔 외상은 네팔은 평화공존을 외교의 기본정책으로 한다고 말하고 차 특사의 방한 요청에 대해 유엔 총회 참석 후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희망을 표시
- ✪ 차지철 특사는 6.28. 비엔트라 네팔 국왕을 알현, 박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약40분간 회담
  - 차 특사는 남북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과 남북한 군사 대치현황 및 북한의 도발을 설명하고 유엔에서의 한국 평화외교정책을 지지 요청
  - 동 국왕은 한국의 평화외교정책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확약하고 남북대화의 진행에 깊은 관심을 표명

## 2. 미얀마(구 버마) 방문(6.29.~7.3.) 기사

- ✪ 한국과 버마는 금년 안에 각료급 통상경제회담을 갖기로 원칙적 합의에 도달
  - 의원사절단은 7.2. 버마 대통령, 수상, 부수상과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음.
- ✪ 네윈 미얀마 대통령과 회담에서 차 특사는 중단상태에 있는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한국의 노력과 동해안 경비병 피격 등 북한의 도발을 설명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미얀마 정부가 유엔에서 한국의 평화외교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
  - 동 대통령은 한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번의 경비정 침몰사건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며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 동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특히 관심 표명
  - 차 특사는 이 자리에서 동 대통령에게 박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

## 3. 라오스 방문(7.3.~6.) 기사

- ✪ 의원사절단은 7.3. 하오 마지막 순방국인 라오스의 비엔티안에 도착
- ✪ 사절단은 푸마 라오스 수상에게 박 대통령의 친서를 전하고 라오스 정부지도자들과 양국의 우호 및 협력 증진에 관해 회담할 계획

#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 1974.6.17.-7.5. 전2권 (V.1 기본문서집)

| 74-028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77 / 1 / 1~501p

심홍선 총무처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4.6.17.~7.5. 중동 3개국을 순방함.

## 1. 주요활동

- ※ 방문국 원수에 대한 대통령의 친서 전달
- ※ 방문국의 한국에 대한 이해 및 지지에 감사 표명
- ※ 한반도의 최근 정세 설명 및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요청
  - 북한의 도발 설명 및 위장평화정책 폭로
  - 남북대화 현황 및 한국의 기본입장 설명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또는 한국의 단독가입 필요성 설명
  -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요청
- ※ 방문국과의 가능한 협력관계 모색

## 2. 주요 접촉 인사

- ※ 이란 방문(6.19.~21.)
  - 이란 국왕, 수상, 외상, 하원의장, 석유공사총재 등 주요 인사
- ※ 모로코 방문(6.23.~26.)
  - 모로코 국왕, 수상, 외상, 외무차관 등 주요 인사
- ※ 튀니지 방문(6.26.~30.)
  - 튀니지 대통령, 외상, 경제담당국무상,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 3. 순방 결과

- ※ 순방 3개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
- ※ 순방 3개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우호적이었고 한국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음.
- ※ 특별사절단의 방문은 이러한 우호국들에 대해 한국의 관심을 보임으로써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 하는 유익한 기회가 됨.

#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 1974.6.17.-7.5. 전2권 (V.2 자료집)

| 74-0290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중동
MF번호	C-77 / 2 / 1~51p

심홍선 총무처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의 중동 3개국 순방(1974.6.17.~7.5.)과 관련된 언론보도, 감사서한 등 관련 자료임.

## 1. 이란 방문(6.19.~21.)

### ✿ 언론 보도

- The Tehran Journal, Kayhan 등 현지 언론보도 내용

### ✿ 각종 서한

-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이란 국왕의 답신
- 특사의 서한에 대한 이란석유공사 사장의 답신
- 특사의 서한 접수를 확인하는 이란 외상의 주이란대사 앞 서한
- 특사의 선물에 대한 이란 국왕의 사의를 전달하는 궁내성장관의 주이란대사 앞 서한
- 특사의 선물에 대한 사의를 전달하는 이란 외무성 의전장의 주이란대사 앞 서한

## 2. 모로코 방문(6.23.~26.)

### ✿ 언론 보도

- Le Martin, Al Anbaa 등 현지 언론보도 내용

### ✿ 주요행사 시 모로코 측 참석자

- 국왕 알현: Hassan 국왕, Osman 수상, Laraki 외상, Alsoui 왕실장관, Bensouda 왕실 비서실장
- 외상 면담: Laraki 외상, Iraki 외무성 관방국장
- 외무차관 면담: Skalli 외무차관, Mbareche 차관실 참사관
- 외무차관 오찬: Skalli 외무차관, Iraki 외무부 법무국장 등

## 3. 튀니지 방문(6.26.~30.)

### ✿ 언론보도

- La Presse 등 현지 언론보도 내용

# 친선사절단 중미 순방, 1974.5.6.-18.

| 74-029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국제연합
MF번호	C-77 / 3 / 1~290p

김용식 국토통일원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이 1974.5.6.~18. 중미 및 카리브지역을 순방함.

## 1. 외무부는 1974.4.12.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및 중미, 카리브지역 친선 사절 파견에 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 사절단장: 김용식 국토통일원장관
- ※ 코스타리카 경축사절 파견
  - 파견기간: 1974.5.5.~10.
  - 파견목적: 코스타리카의 대북한 관계진전을 지지하고 한국과의 기존 우호관계 긴밀화
- ※ 중미, 카리브지역 친선사절단 파견
  - 파견기간: 1974.5.11.~25.
  - 파견대상국: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파나마, 자메이카
  - 파견목적: 최근 한반도 정세설명과 이해증진, 동 지역에 대한 북한의 침투기도 저지, 1974년 가을 유엔 총회에 대비한 교섭, 경제협력 및 통상증진 방안 협의 등

## 2. 외무부는 1974.4.22. 김용식 특사에게 친선사절단의 훈령을 아래와 같이 지시함.

- ※ 일반 훈령사항
  - 우호증진, 한반도정세 설명과 유엔에서의 한국지지 요청, 제29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제기 전망에 대한 태도 타진, 경제·기술협력관계 추진
- ※ 국별 훈령사항
  - 주요인사 방한 추진, 북한침투 저지, 명예영사 활동 강화, 주한 상주공관 설치 촉구 등

## 3. 김용식 특사는 1974.6월 중미지역 친선사절단 순방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국가별 주요 활동내용 및 성과
  -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참석, 외상 등 주요인사 면담, 주재국의 대북한 관계 탐색
  - 온두라스: 대통령 예방 및 외상 면담, 평화정책에 대한 한국입장 지지, 남북대화 노력 평가,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 파나마: 대통령 예방 및 외상대리 면담, 한반도 사태 및 남북회담 관련 이해표명,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시사, 대북한 수교의사 없음을 확인
  - 엘살바도르: 대통령 예방 및 외상 면담,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약속, 북한의 침투 가능성 없음을 확인

✱ 결론

- 중미지역의 외교방침이 보다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경향을 뚜렷이 하고 있고 확일적 대미 의존에서 탈피
- 이들 국가와의 기존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경제, 기술분야의 실질적 협력관계 유지 강화가 불가결

## 특별사절단 남미 순방, 1974.7.23.-8.3.

| 74-0292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남미/국제연합
MF번호	C-77 / 4 / 1~297p

윤주영 문화공보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1974.7.23.~8.3. 에콰도르,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을 순방함.

### 1. 외무부는 1974.5.2. 북한의 각 지역 침투책동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제29차 유엔총회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교섭사절단 파견에 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 13개반을 총 62개국에 파견
- ※ 파견시기는 1974.6~8월

### 2. 외무부는 1974.6.18. 상기 계획에 따라 주칠레대사 등 관련 공관장에게 남미 4개국에 대한 대통령 특사 파견에 관해 훈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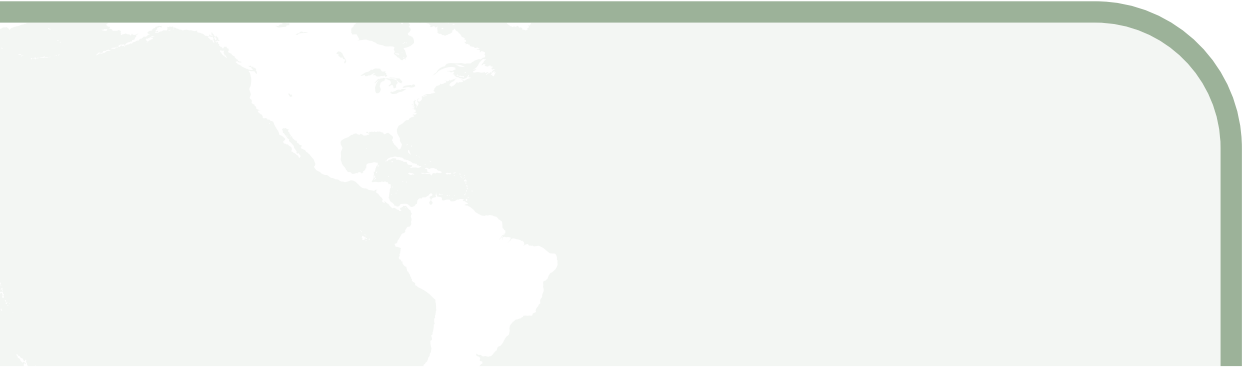
- ※ 윤주영 문화공보부장관을 특사로써 남미 4개국(에콰도르,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에 파견할 계획이니 이를 주재국에 통고하고 주재국 정부 고위인사와의 면담 주선

### 3. 외무부는 1974.6.29. 윤주영 특사에게 남미 3개국 방문에 대한 훈령을 아래와 같이 지시함.

- ※ 일반 훈령사항  
- 우호증진(대통령 친서전달), 한반도정세 설명, 유엔에서의 한국지지 요청, 경제·기술협력 관계 추진 등
- ※ 국별 훈령사항  
- 외상 등 주요인사 방한초청, 북한침투 저지, 경제·기술협력, 교역증진, 주한 상주공관 재개, 자원개발, 어업협력 등

### 4. 윤주영 특사는 1974.8.21. 남미 친선사절단 순방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방문국 및 일정: 에콰도르(7.23.~26.), 칠레(7.26.~31.), 아르헨티나(7.31.~8.3.)
- ※ 국가별 주요 성과  
- 에콰도르: 남북대화 노력 지지, 한국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강조,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상정 시 신중하게 고려 검토, 양국 공동성명 발표  
- 칠레: 한반도 정세 이해 및 한국 입장 지지, 주한 상주공관 개설 진행 확인  
- 아르헨티나: 한반도 정세와 한국 입장 이해
- ※ 주요 건의  
- 경제·기술협력 강화, 홍보활동 강화, 문화사절단 파견, 주요인사 방한초청, 사절단 방한초청, 교민 선도사업 및 지원책 강구



✿ 결론

- 대통령 친서 및 비망록 전달로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평화정책 및 남북대화 재개 노력에 대한 설명과 이해 심화
- 경제·기술협력관계 강화 및 홍보활동 강화 필요
- 북한의 교민사회 침투저지를 위해 교민들에 대한 선도사업 강화 요망

# 특별사절단 서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4.7.7.-17.

| 74-029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C-77 / 5 / 1~127p

김세련 국회 외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교섭사절단이 1974.7.7.~17. 서부아프리카지역을 순방함.

## 1. 외무부는 1974.5.2. 북한의 각 지역 침투책동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제29차 유엔총회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교섭사절단 파견에 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 13개반을 총 62개국에 파견
- ※ 파견시기는 1974.6~8월

## 2. 외무부는 상기 계획에 따라 1974.6.20. 김세련 국회 외무위원장을 대통령특사로 서부아프리카 5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파견국(7.3.~21.)
  -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라이베리아, 베냉(구 다호메이), 토고, 나이지리아 5개국
- ※ 일반훈령
  - 북한침투 저지, 북한사절단 방문효과 극소화, 북한제압을 위한 효과적 대책 모색, 남북대화에 관한 정부입장 설명, 1974년 가을 유엔총회에 대비한 정부입장 설명 및 지지 교섭, 남북불가침협정 제의 배경 설명, 통상·기술 및 경제협력 증진 등
- ※ 국별 훈령
  - 방문국별로 유엔총회에서 한국지지 요청, 유엔에서의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가담요청, 북한침투 저지, 주요 인사의 방한초청, 경제·기술협력, 의료협력 등

## 3. 김세련 특사는 1974.7.31. 서부 아프리카 3개국 순방결과를 보고함.

- ※ 순방국 및 기간
  - 라이베리아(7.7.~10.), 베냉(7.11.~14.), 토고(7.14.~17.)
- ※ 국가별 주요 성과
  - 라이베리아: 남북 간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 베냉: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재론 불원입장 표명,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지지
  - 토고: 남북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 지지, 남북한 유엔가입 지지
- ※ 국별 건의
  - 주요인사 방한 초청, 의료단 및 의약품 지원, 태권도사범 파견 검토, 홍보활동 강화, 기자제 제공 등





✿ 종합평가 및 건의

- 이 국가들은 전략적 거점으로 향후 북한의 침투공세가 집중 전개될 것으로 예상
- 평화통일 외교정책, 불가침협정 제의 등 우리의 외교정책을 현실적이고 객관성 있는 정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
- 경제, 기술, 의료 등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으로 우리의 지지기반 강화 필요
- 초청외교, 해외 홍보활동 강화 및 상주공관 설치 등 요망

## 특별사절단 복구 순방, 1974.10.31.-11.12.

| 74-029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국제연합
MF번호	C-77 / 6 / 1~210p

### 1. 외무부는 1974.10.22. 제29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에 대비한 대통령 특사파견에 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 특사파견

- 특사: 최규하 외교담당특보
- 방문국(4개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파견시기: 1974.10.30.~11.15.

#### ※ 특사가 휴대할 대통령 친서내용

- 최근 한반도 정세와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증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특사 파견
-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과 남북대화 추진에 대한 이해와 지지 요청
- 1974년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토의 시 지지 요망

### 2. 최규하 특사는 1974.11월 복구 4개국 방문보고서를 제출함.

#### ※ 특사 일정

- 노르웨이(10.31.~11.2.), 스웨덴(11.2.~6.), 덴마크(11.6.~9.), 아이슬란드(11.9.~12.)

#### ※ 방문 목적

- 기존 우호관계의 증진 및 양국간 현안문제 협의
- 특히 한반도 정세, 남북대화의 양상 및 북한의 도발상, 유엔총회 한국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을 통해 방문국 정부의 한국안에 대한 지지 확보

#### ※ 방문국 반응종합

- 한반도 안보정세, 남북대화의 양상과 북한의 도발상에 대한 설명에 깊은 이해 표시
-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관련, 한국 측안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임을 인정하고 자국 입장도 한국 정부 입장과 전적으로 일치함을 표명
- 유엔군 및 유엔사의 장래문제는 안보리 소관사항이라는 한국 측 주장에 동감 표시
- 금번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가 자유, 공산 양 진영 간의 막후교섭으로 타협되기를 희망

#### ※ 건의

- 북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공관의 인원과 예산의 증점적 배분 요청
- 대북구 외교는 북구지역을 한국 지지 세력화한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
- 1974.6월 선거로 우경화한 아이슬란드의 외상 방한 초청
- 아이슬란드 한국 명예총영사 방한 초청
- 한국 선전 간행물 배포 증량
- 한국 교아의 북구지역 입양문제 개선방안 검토 등

# 정일권 국회의장 남미 및 대만(구 중화민국) 순방, 1974.6.3.-22.

| 74-0295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중남미/동북아2
MF번호	C-77 / 7 / 1-488p

## 1. 국회의사무처는 1973.4.25. 외무부에 정일권 국회의장의 브라질 및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과 관련 아래와 같이 요청함.

- ※ 방문국 및 일정: 브라질(1974.6.3.~7.), 대만(6.18.~21.)  
- 방문국 사정 및 접수 동의여부 회보 요망
- ※ 경유국: 미국, 파라과이, 우루과이, 홍콩

## 2. 외무부는 1974.4월 이후 관련 재외공관에 국회의장의 방문일정 주선 및 재조정, 행정사항 협조 등 필요조치 시행을 훈령함.

- ※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를 방문국에 추가

## 3. 주대만대사는 1974.5.30. 국회의장의 대만 방문 주요일정을 보고함.

- ※ 장경국 행정원장, 입법원장, 검찰원장 예방 등

## 4. 외무부는 1974.5월 국회의장의 남미 방문 참고자료를 작성함.

- ※ 중남미 개황, 방문국(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개관, 국내 정세, 한국 및 북한과의 관계, 현안문제 등

## 5. 외무부는 1974.6월 브라질 등 해당공관 보고를 토대로 정일권 국회의장의 남미 방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 ※ 방문단: 정일권 국회의장 외 국회의원 5명, 국회 사무처 및 수행기자단
- ※ 방문국 대통령 등 주요인사 면담 성과 및 특기사항
  - 브라질(6.3.~8.):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 전망에 관심표명, 한반도 정세설명에 긍정적 태도 표시, 의원단 방한초청
  - 파라과이(6.8.~10.): 경제협력 및 교역증진 희망, 유엔총회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확약, 농업 및 기술이민 환영
  - 우루과이(6.10.~12.): 남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기대,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통상 증진 희망, 한국 농업이민 환영

## 6. 주대만대사는 1974.6.19.~20. 정일권 국회의장이 대만에 도착, 공식 일정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함.

- ※ 행정원장 예방 및 만찬, 부총통 등 예방
- 대만 언론은 6.23. 한국 국회의장의 행정원장 면담 결과 등을 보도

# 이철승 국회부의장 아주 순방, 1974.1.18.-2.17.

| 74-029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77 / 8 / 1~49p

## 1. 외무부는 1974.1.16. 이철승 국회부의장의 해외방문에 관해 관련 재외공관에 훈령함.

- ※ 방문 시 필요한 편의제공
- ※ 방문국 정계요인과의 면담 교섭 및 결과보고
- ※ 방문일정
  - 일본(1.18.~27.), 홍콩(1.27.~29.), 필리핀(1.29.~2.1.), 싱가포르(2.1.~3.), 말레이시아(2.3.~5), 인도네시아(2.5.~8.), 호주(2.9.~12.), 뉴질랜드(2.12.~14.), 미국 호놀룰루(2.15.~17.)

350

## 2. 주일본대사는 1974.1.28. 이철승 국회부의장의 일본 정계인사와의 면담내용을 보고함.

- ※ 자민당 3역(간사장, 총무회장, 정조회장) 면담(1.21.)
  - 대통령 긴급조치가 불가피하였음을 강조
  - 일본 언론의 한국관계 보도가 편파적임을 지적
  - 자민당 3역의 방한초청
- ※ 다케이리 공명당위원장 면담(1.25.)
  - 대통령 긴급조치의 불가피성 강조 및 일본 언론의 편파성 지적
  - 다케이리 위원장은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1973년 자신의 북한 방문 후 더욱 친한적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김대중의 조속한 출국을 희망
- ※ 오히라 일본 외상 면담(1.26.)
  - 한국의 농업부문 발전 필요성에 합의
  - 대통령 긴급조치의 필요성, 특히 경제조치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설명
  - 오히라 외상은 자신의 중국(구 중공)방문 시 중국 측이 북한 주장에 동조(소련, 중국의 한국 승인과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하였다고 언급

## 3. 이철승 국회부의장이 면담한 방문국 주요 인사들은 아래와 같음.

- ※ 필리핀: 주필리핀 미국대사
- ※ 말레이시아: 하원의장, 상원의장
- ※ 인도네시아: 부통령, 국회의장단, 외상
- ※ 뉴질랜드: 국회의장, Holyoak의원, 외무차관
- ※ 호주: 하원의장

# 국회사절단 서구 순방, 1974.6.17.-7.6.

| 74-0297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구주
MF번호	C-77 / 9 / 1~108p

## 1. 외무부는 1974.5.29. 국회사절단의 서구순방 계획에 관해 해당 재외공관에 훈령함.

- ※ 1974년도 의원 해외활동계획의 일환으로 국회사절단 파견
  - 방문목적: 6·23 특별선언 및 제29차 유엔총회 한국지지 교섭
  - 사절단: 이민우 신민당 원내총무(단장)의 의원 4명, 수행원 등
  - 방문국: 영국, 벨기에, 독일(구 서독),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5개국
  - 시기: 1974.6~7월
- ※ 방문시기, 면담대상자, 방문 시 논의요망 사항 등 지급 보고

## 2. 주영국대사 등 해당 공관장은 1974.5~6월 사절단 체재일정 및 면담주선 사항 등을 수시 보고함.

## 3. 외무부는 1974.7월 해당공관 보고 등을 토대로 국회사절단의 서구 순방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방문국별 주요 일정 및 방문 결과 요약)

- ※ 독일(6.17.~20.)
  - 하원 부의장 면담, 하원 국방분과위원과의 간담회, 기민·기사당 원내총무 면담, 교민과의 만찬
  - 독일 측은 경제기술협력(한·독일 기술학교 추가설립) 중대 요청에 대해 최선의 지원을 약속하고, 군사 기술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간담회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
- ※ 오스트리아(6.20.~23.)
  - 국회의원 및 정당 지도자 면담, 외무장관대리와 통상장관 면담
  - 양국 의원협회 창립 결정
  - 한국의 국회사절단 파견에 대한 오스트리아 측의 사의 표명
- ※ 벨기에(6.23.~26.)
  - 상하원 의원 및 국방상 면담, 한국전 참전기념탑 헌화
  - 양국 의원협회 구성 합의
- ※ 영국(6.26.~28.)
  - 하원 부의장, 노동당 및 보수당 원내총무 면담, 외무성 정무차관 면담
  - 양국간 우호증진 및 국제회의에서의 협조방안 협의
  - 유엔총회에서의 한국지지 입장 불변 확인
- ※ 이탈리아(7.3.~6.)
  - 내각 총사퇴(6.11.)로 인한 국내사정으로 방문 연기

## 국회사절단 북구 순방, 1974.6.10.-28.

| 74-029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C-77 / 10 / 1~209p

### 1. 외무부는 1974.5.2. 북한의 각 지역 침투책동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제29차 유엔총회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교섭사절단 파견에 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 13개반을 총 62개국에 파견
- ※ 파견시기는 1974.6~8월

### 2. 외무부는 1974.5.13. 상기계획에 따라 북구 5개국에 대한 특별사절단 파견을 결정함.

- ※ 사절단장: 심흥선 총무처장관
- ※ 방문국(5개국):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 ※ 파견시기: 1974.6.10.~28.

### 3. 외무부는 1974.5.21. 상기 특별사절단의 파견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재외공관에 통보함.

- ※ 백두진 의원(유정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사절단 파견
  - 방문국은 북구 4개국(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 파견시기는 동일

### 4. 백두진 특사는 1974.6월 국회친선사절단의 북구 방문 결과를 전문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함.

### 5. 외무부는 1974.6월 상기 보고를 토대로 국회사절단의 북구 방문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 ※ 사절단: 백두진 단장 외 국회의원 4명, 국회사무처 실무진
- ※ 주요 방문결과
  - 덴마크(6.10.~13.): 1974.10월 IPU 의원단 초청과 양국 의원협회 결성을 제의, 남북대화와 유엔문제, 동구권의 한국승인에 대한 의견교환
  - 핀란드(6.13.~16.): 동구권과의 수교용의를 표시한 한국의 문호개방정책 지지, 통상증대 합의
  - 스웨덴(6.16.~19.): 스웨덴의 중립국감시위원단 철수를 만류하고 스웨덴대표 철수로 동 감시위원단이 해체되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강조
  - 노르웨이(6.19~22.): 남북대화를 통한 한국의 통일노력에 공감 표시

### 6. 주덴마크대사 등 해당공관장은 1974.6월 국회사절단의 주재국 방문에 관한 언론 보도내용을 보고함.

# 이범석 한국적십자사 부총재 터키 방문, 1974.4.27.-30.

| 74-029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C-78 / 1 / 1-27p

## 1. 외무부는 1974.1.8. 주터키대사 등 관련 공관장에게 북한의 수교책동 저지에 관해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북한은 연말연시를 기해 특사 파견, 정부요인 방문초청, 김일성 신년 메시지 발송 등 방법으로 한국 단독 수교국 침투공작을 강화
- ✿ 아래 이유로 주재국 정부가 북한과 수교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북한의 침투기도를 저지
  - 6·23 선언의 의미는 공산권 및 친공산 중립국들에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문화개방을 촉구한 것
  - 이들이 한국의 제의에 상급 하등의 호의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차제에 한국 우방국들이 일방적으로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함은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을 해쳐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

## 2. 주터키대사는 1974.3.18. Recalzguder 터키적십자사 총재 면담결과를 보고함.

- ✿ 주터키대사는 북한 측의 터키접근이 한·터키 양국간의 우호적인 유대관계에 영향을 줄 것임을 강조
  - Recalzguder 총재는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파견이 시의에 맞을 뿐만 아니라 북한 측 접근책동 방지에 효과적인 방책이 될 것이라고 언급

## 3. 외무부는 1974.4.3. 대한적십자사에 북한적십자사 임원의 터키 입국 책동에 관한 검토를 아래와 같이 요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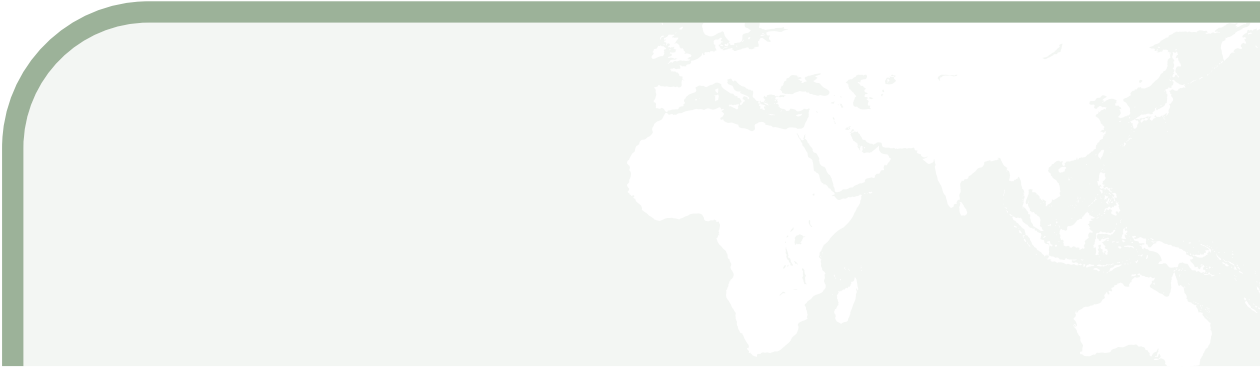
- ✿ 주터키대사 보고에 의하면 북한적십자사는 1973.11월 이란에서 개최된 세계적십자사 회의를 계기로 터키 적십자사에 접근하여, 1974.4.29. 개최되는 터키적십자사 총회에 대한 참관단 파견을 기도했으나 터키 정부의 부정적 태도로 좌절
- ✿ 터키적십자사는 북한의 책동을 방지하고 한·터키 양국 적십자사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터키 방문을 요청하고 주터키대사도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파견을 건의
- ✿ 주터키대사의 건의를 검토해 줄 것을 요망

## 4. 외무부는 1974.4.10. 주터키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대한적십자사가 터키적십자사 총회(4.29.)에 이범석 부총재를 파견하기로 결정
  - 공식 초청장 발급조치 및 한국대표단 참석행사, 준비사항 등을 보고

## 5. 주터키대사는 1974.4.12. 및 4.26.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파견 결정 사실을 터키 측에 통보
- ✿ 터키적십자사 총재는 구두초청으로 한국 참관단을 영접하겠다고 언급
  - 동 총재는 대표단 규모(1명)와 짧은 파견기간(4.27.-30)에 유감을 표시하고 많은 수의 대표단과 장기간 체류를 희망
- ✿ 터키적십자사 총재의 희망대로 조치해 줄 것을 건의



**6. 외무부는 1974.4.29. 주터키대사의 상기 건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함.**

- ✿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파견인원 추가와 방문기간 연장문제를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한 결과 동 건의를 수락하는 것이 시기상 불가능함을 지적
- 4.27. 터키에 이미 도착한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와 협의할 것을 희망



## 비공식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 1974.6.26.-8.1.

| 74-030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78 / 2 / 1-57p

## 1. 외무부는 1974.6.14. 아랍 미수교국에 비공식 특별사절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파견목적

- 아랍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일환책으로 관계국의 실정, 한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관계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참고

## \* 특별교섭단: 유정열 외대교수(한·아랍 친선협회장) 외 외무부 실무자

## \* 파견국(6개국): 이집트, 수단,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알제리

## \* 훈령

- 정부는 대중동 외교강화를 위해 노력을 집중, 1973.12.15. 친아랍정책 성명을 공표
- 미수교인 6개국과의 수교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을 위해 교섭단 파견
- 방문국 유력인사와 접촉, 방문국 정세와 대한국·북한 정책, 한국과의 수교장에 및 가능요인, 장애요인 제거방안, 대한국 정책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사 등 조사
- 한국의 수교전략에 참고가 될 건의사항을 포함한 국별 보고서 작성 제출

## 2. 외무부는 1974.8.26. 아랍 미수교국에 대한 비공식 특별교섭단의 보고 및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 교섭단 순방(6.26.~8.10.) 개요

- 아랍 5개국(이집트(7.2.~4./7.23.~26.), 요르단(7.4.~6.), 시리아(7.9.~15.), 수단(7.17.~21.), 리비아(7.26.~8.1.)) 순방

## \* 교섭단의 주요 건의사항

- 사절단 파견 접수: 리비아와 사절단 교환, 시리아에 한국 경제사절단 파견, 수단과의 경제사절단 교환
- 유력인사 방한초청: Al Fajr Al Jajid 리비아 신문 편집국장, 다마스쿠스 시리아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카르툼대 수단 부총장 및 Al Sahafa 신문 주필,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인척
- 코트라 사무소 설치: 시리아, 수단
- 한·아랍 공동 상공회의소 설립
- 기타: 아랍연맹지부 서울 설치, 한국친선협회 설치(이집트), 대학 자매결연(수단) 등 추진

## \* 상기 건의사항에 대해 8~9월 해당공관 및 관계부처에 추진 필요여부 및 방법을 우선 검토하도록 조치

- 동 결과가 종합되는 대로 구체적 추진방침 건의 예정

# 실무사절단 동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4.10.2.-11.2.

| 74-0301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0078 / 3 / 1~227p

## 1. 외무부는 1974.5.2. 북한의 각 지역 침투책동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제29차 유엔총회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교섭사절단 파견에 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13개반을 총 62개국에 파견

## 2. 상기 계획에 따라 외무부는 1974.9.11. 주케냐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함.

※ 외무부는 9월 중순부터 약 1개월간 유엔 지지교섭을 위한 특별교섭단을 동부아프리카지역에 파견 예정  
- 교섭단 단장: 김동휘 외무부차관보

## 3. 외무부는 1974.9.25. 동부아프리카지역 특별교섭단에 대해 아래와 같이 훈령함.

※ 교섭 대상국

-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레소토, 말라위, 스와질란드, 보츠와나,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르완다

※ 일반훈령

- 유엔 한국문제에 관한 정부입장과 한국 측 안전 및 결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방문국 정부가 한국 측 결의안 지지를 확약하고 자국 유엔대표단에 훈령하도록 교섭  
- 북한 측 결의안 내용의 부당성을 방문국 정부에 확실히 인식시키고 동 결의안을 반대해 줄 것을 교섭

※ 국별 훈령

- 방문국별로 교섭 상세내용을 하달

## 4. 김동휘 사절단장은 1974.11.18. 동부아프리카 7개국 순방결과를 아래와 같이 종합 보고함.

※ 방문일정

- 케냐(10.4.~8.), 우간다(10.9.~11.), 르완다(10.11.~16.), 말라위(10.16.~18.), 모리셔스(10.18.~22.), 보츠와나(10.23.~25.), 스와질란드(10.25.~28.)

※ 방문국별 주요 면담결과

- 케냐: 남북대화 지지, 외국인 철수문제에 대한 이해 표시, 한국 측 안을 수긍하면서도 지지에 대한 언질 회피

- 우간다: 한국 측 결의안 지지에 대한 언질 회피, 유엔기 밑에 미군만 주둔하는 것에 대한 의문 표시

- 르완다: OAU(아프리카단결기구)의 조류와 비동맹 중립주의에 부응하여 입장 결정, 한국과의 외교관계 유지와 각 분야 관계증진 희망

- 말라위: 분단국 문제 불간섭원칙 고수 입장 피력

- 모리셔스: 한국 측 결의안 지지, 공산 측 결의안 반대 확약

- 보츠와나: 한국 측안의 타당성은 시인하나 공산 측안 반대 확보 확인은 어려움

- 스와질란드: 한국입장 지지와 우호관계 유지를 재확인하면서도 공동제안국에 가담하지 않기로 결정



✿ 종합판단 및 건의

- 조만간 독립이 예상되는 모잠비크, 세이셸 등 미독립지역에 대한 사전대책 수립 시행
- 1975년 OAU 정상회담에 대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 필요
- 의료협력사업, 태권도사범 파견, 기타 기술자 파견 등 기술협력 강화
- 르완다대사관 정비, 말라위 및 모리셔스 상주공관 설치, 케냐대사관의 동부아프리카 기지공관으로서의 지원 강화 등

# 실무사절단 서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4.9.15.-11.4.

| 74-030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C-78 / 4 / 1~110p

## 1. 외무부는 1974.5.2. 북한의 각 지역 침투책동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제29차 유엔총회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교섭사절단 파견에 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13개반을 총 62개국에 파견

## 2. 신기흠 외무부 구아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1974.9.15.~11.4. 서부아프리카지역을 순방하여 각국의 주요 인사들을 면담, 유엔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함.

※ 방문 일정

- 토고(9.18.~20.), 차드(9.24.~27.), 베냉(구 다호메이)(9.30.~10.2. 및 10.16.~18.), 니제르(10.2.~5. 및 10.23.~26.),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10.5.~8.), 세네갈(10.10.~12.),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10.27.~29.), 튀니지(10.31.~11.4.)

※ 방문목적

- 유엔 한국문제에 관한 정부입장 설명  
- 한국 측 결의안 내용 설명 및 지지교섭  
- 북한 측 결의안 반대교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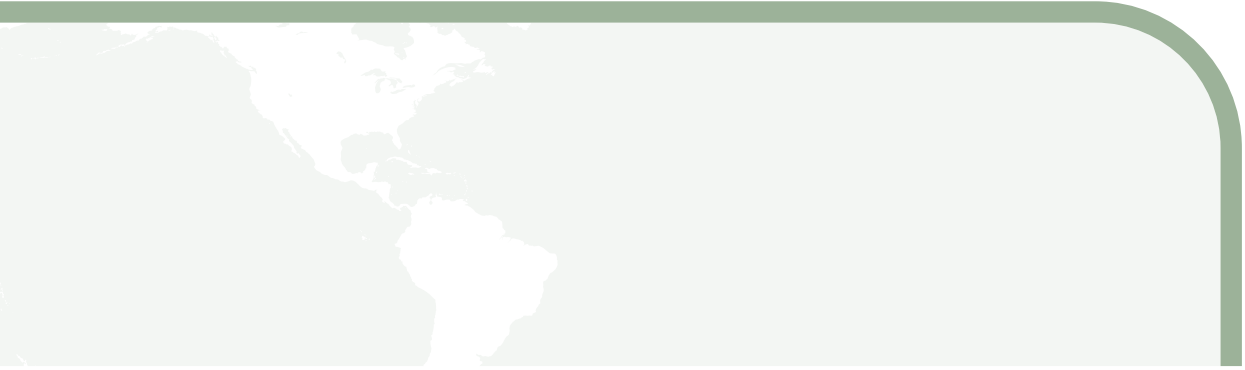
## 3. 신기흠 사절단장은 1974.11.10. 서부아프리카지역 사절단 방문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함.

※ 방문국별 주요 면담결과

- 차드: 한국 측 결의안 지지 확약, 주프랑스 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문제는 조속 통보 예정  
- 베냉: 남북대화 지속에 호의적 반응, 한국 측 결의안에 대한 입장 미정  
- 니제르: 한국입장 지지, 공동제안국 가담 원칙적 수락, 외상 방한 초청 수락, 10만 달러 규모의 원조약속 건의  
- 부르키나파소: 유엔군 주둔 필요성 수긍, 한국 측 결의안 지지하도록 훈령 약속, 최소한 기권유지는 가능하나 찬성투표에 대한 의구심 상존  
- 세네갈: 외상 부채로 주세네갈 대사에게 일임  
- 니제르: 한국입장에 공감표시, 외상의 방한의사 재확인  
- 콩고민주공화국: 한국입장에 이해와 지지 표시, 결의안 투표 시 찬반 여부에 대한 답변 회피, 기권 예상

※ 종합관찰 건의

- 제29차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에 관한 서부아프리카 각국의 찬반태도는 1973년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  
- 한국을 적극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 측 결의안이 부당해서가 아니라 비동맹회의 결의 때문인 것으로 관찰됨.  
- 각국 지도자와 접촉 시 한국 측 결의안의 옹호보다 북한 측 결의안의 모순성과 부당성 지적이 주효함.



✿ 대아프리카 외교활동 강화방안

- 재외공관의 정비 및 활동지원 강화
- 국가원수 등 유력인사 방한초청
- 기술원조의 확대 강화
- 사절단 구성 및 파견시기 재검토
- 친한세력 육성
- 홍보활동, 수출 신시장 개척활동 강화

| 74-0303 |

## 안진생 주콜롬비아대사 Lopez Michelsen, Alfonso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74.8.7.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78 / 5 / 1~10p

### 1. 주콜롬비아대사는 1974.6.26. Lopez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관하여 보고함.

- ※ 외무성 의전실과 접촉한 바, Lopez 대통령은 의식의 간소화를 이유로 대통령 취임식에 주재대사 이외의 대표 참석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 함.

### 2. 외무부 미주국은 1974.7.4. Lopez 대통령 취임식 경축사절 파견에 관하여 건의함.

- ※ 콜롬비아공화국은 동 대통령의 취임식을 8.7. 거행 예정
- ※ 당초 정부는 윤주영 문화공보부장관을 한국 경축사절로 파견 예정이었으나, 콜롬비아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에 콜롬비아 인접국 이외 국가로부터는 경축 특사를 접수하지 않으며 보고타 주재 외교사절들이 특사로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
- ※ 따라서 동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경축사절단을 아래와 같이 결정할 것을 건의  
- 안진생 주콜롬비아대사 부부 외 대사관 직원

### 3. 외무부 미주국장은 1974.7.3. 의전실장에게 신임장 작성을 아래와 같이 의뢰함.

- ※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사절로 참석하는 안진생 대사에 대한 신임장 작성 송부  
- 현 대통령: Misael Pastrana Borrero  
- 신임 대통령: Alfonso Lopez Michelsen

### 4. 외무부는 1974.7.6. 주일본대사에게 Lopez 대통령 취임식 경축사절 파견에 관해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주일본 콜롬비아대사관은 공한(1974.6.26. No.344)으로 동 대통령 취임식(1974.8.7.)에 남미 인접국을 제외한 외국 경축특사를 접수하지 않으며 보고타 주재 외교사절들이 특사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
- ※ 정부는 안진생 대사 부부를 동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사절로 참석하도록 결정, 이를 주일본 콜롬비아대사관에 통보

### 5. 외무부는 1974.7.6. 주콜롬비아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주일본 콜롬비아대사관은 공한으로 Lopez 대통령 취임식에 남미 인접국을 제외한 외국 경축사절을 접수하지 않으며 보고타 주재 외교사절들이 특사로 참석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
- ※ 따라서 윤주영 장관을 파견 예정이었던 당초 계획을 변경, 안진생 대사 부부 및 대사관 참사관을 경축사절로 참석하도록 결정했음을 주재국 정부에 통보  
- 대사의 신임장과 신임 대통령 및 외상에 대한 선물은 별도 송부

| 74-0304 |

## 송광정 주베네수엘라대사 Balaguer, Joaquin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74.8.16.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중미담당관/의전
MF번호	C-78 / 6 / 1-22p

### 1. 주베네수엘라대사(도미니카공화국 겸임)는 1974.7.17. Balaguer 도미니카공화국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1974.7.16. 도미니카공화국 외상 예방 시 등 외상은 자국의 재정 형편상 1974.8.16. Balaguer 대통령 취임식에 각국 특사는 초청하지 않고 주재 대사가 참석하도록 하였다고 언급
- ※ 당관의 8.15. 경축 리셉션 개최 준비와 관련, 대사의 동 취임식 참석여부에 대해 회신 요망

### 2. 외무부는 1974.7.19. 주베네수엘라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대사가 특사로 참석
- ※ 신임장 필요여부 및 신임장 작성 대상자 조속 보고
- ※ 베네수엘라 국경일 리셉션은 개천절을 이용하거나 귀지 사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

### 3.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74.7.24. 상기 훈령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신임장은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앞으로 작성 요망  
- 1974.8.14. 오전 도미니카공화국 외상에게 동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오후에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출 예정

### 4. 외무부는 1974.8.8. Balaguer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하는 주베네수엘라대사에 대한 신임장 발급에 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5. 외무부는 1974.8.8. 주베네수엘라대사에게 동 신임장 발송을 통보함.

### 6.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74.8.12.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 8.16. Balaguer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8.18. 귀임함.

36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이창희 주멕시코대사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겸임국 니카라과 방문

| 74-030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미담당관/의전
MF번호	C-78 / 7 / 1~72p

**1. 주멕시코대사관은 1974.5.14. 과테말라 외무성으로부터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1974.7.1.) 경축사절 초청 공한을 5.13. 접수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중미지역 및 파나마는 본국정부 파견 특사가 참석, 기타 국가는 동국 주재 외교사절 참석

**2. 외무부는 1974.5.21. 동 대통령 취임식에 이창희 주멕시코대사를 경축사절(특사)로 파견하고 귀로에 겸임국인 니카라과에 파견하기로 하였음을 주멕시코대사관에 통보함.**

**3. 이창희 대사는 1974.7.5. 과테말라 출장(1974.6.28.~7.3.) 결과에 관해 아래 요지로 보고함.**

- ※ 6.29. Arana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및 7.1. Laugerud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
- ※ 7.1. 신임 대통령과 면담 시 이 대사가 최근 한반도 정세 등을 설명한데 대해 동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 축의를 전해주시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며 가능한 모든 지원을 금년 유엔총회에서도 제공할것다고 언급
- ※ 이 대사는 7.2. Adolfo Molina Orantes 신임 외상을 방문, 상주공관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동 외상은 크게 환영하면서 필요한 모든 협조를 약속  
- 동일 외무차관 면담 시 한국의 상주공관 설치 동의 공한 접수
- ※ 7.2. 이 대사의 Rubio 국방장 면담 시 동 국방장은 10.1. 국군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한 방한 희망 표명

**4. 이창희 대사는 1974.7.8. 겸임국 니카라과 출장(1974.7.4.~10.) 결과에 대해 아래 요지로 보고함.**

- ※ 이 대사는 7.4. 차기 여당 대통령 후보인 Somoza 군총사령관을 면담, 최근 한반도 정세 등을 설명한데 대해 동 총사령관은 자국은 한국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하고 작년 유엔총회 이후 국제정세 변화 특히 석유파동으로 인한 발언권 강화에 따라 알제리를 비롯한 북한 지지 세력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한국이 작년 확보했던 지지국가 유지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
- ※ 7.6. 이 대사의 Julio Cesar Alegria 외무차관 면담 시 동 차관은 금년 유엔총회에서도 공산권 측이 한국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아랍권의 위상 상승에 따라 북한 지지 세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5. 본 문서철에는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행사 프로그램(스페인어), 1974.6. 외무부 작성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겸임국(니카라과) 방문에 따른 훈령사항 등도 수록되어 있음.**



## 이창희 주멕시코대사 Somoza Debayle, A. 니카라과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74.11.29.-12.3.

| 74-0306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중남미
MF번호	C-78 / 8 / 1-42p

이창희 주멕시코대사가 Somosa 니카라과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1974.11.29.~12.3. 니카라과를 방문함.

### 1. 주멕시코대사관은 1974.10.21. 니카라과 외무성이 동일 Somoza 장군의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 파견을 요청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니카라과 측은 특사의 신임장 휴대 요청

### 2. 박정희 대통령은 동 경축 특사 파견 관련 외무부의 아래 요지 건의문서(1974.10.30.)를 재가함.

※ 니카라과는 한국과 1962년 국교수립 이래 돈독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제28차 유엔총회에 이어 금차 유엔총회에서도 한국문제에 대한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

※ 대통령에 취임할 Somoza 장군은 1961.5월 니카라과 군 총사령관으로 공식 방한한 바 있는 친한인사로서 철저한 반공주의자이며, 앞으로 동국과의 기존 우호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기 위해 경축사절(특사)로 이창희 주멕시코 대사 파견

### 3. 외무부는 1974.11.14. 니카라과 대통령 취임식에 이창희 대사(니카라과 겸임)를 경축 특사로 파견하기로 하였으니 이를 니카라과 측에 통보하도록 주멕시코대사관에 지시함.

※ 박정희 대통령은 11.20. 동 대사에 대한 신임장 발급

### 4. 이창희 대사는 1974.12.5. 니카라과 출장(1974.11.29.~12.3.) 결과에 관해 아래 요지로 보고함.

※ 이 대사가 3인 체제 대통령들을 만나 경의를 표명한데 대해 동 대통령들은 과도정부 수반으로서 직책을 다하고 물러나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진 복구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박정희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

※ 동 취임식에는 겸임국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대통령과 외상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대사는 동 겸임국 대통령과 외상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금년 유엔총회에서 한국 측안을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 표명

※ 이 대사가 12.2. 유입된 Muntiel 외상을 방문하여 유입 축하를 한데 대해 동 외상은 한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언급

### 5. 본 문서철에는 1974.11월 외무부 미주국 작성 니카라과공화국 개황, 동경 주재 니카라과대사관(한국 겸임)의 동 대통령 취임식 행사 설명 Aide Memoire 등도 수록되어 있음.

# Pastrana Borrero, Misael 전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1974.10.31.-11.3.

| 74-0307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78 / 9 / 1~55p

1. 주콜롬비아대사관은 1974.10.1. Pastrana 전 콜롬비아 대통령이 10월 초순경 일본을 방문하는 기회에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으며(부인 동반 및 전 재무장관 부부 등 대동), 동인이 보수당의 원로이며 현 정권이 사실상 자유-보수 양당의 연립정부라는 점을 감안, 동 일행을 초청 예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1974.10.1. Pastrana 전 대통령 부처에 대한 정부 명의 방한 초청장을 대사 명의 공한으로 전달할 것을 주콜롬비아대사관에 지시함.
3. 주콜롬비아대사관은 1974.10.12. Pastrana 전 대통령의 주재국 출발이 다소 지연되어 10.31.경 서울 도착 예정이며, 한국 방문 기간 중 새마을운동 현황 시찰 및 국내 요로와의 접촉을 희망함을 보고함.
4. 외무부 미주국은 1974.10.21. 동인의 방한기간(1974.10.31.~11.3.)중 박정희 대통령이 수교훈장(광화장)을 서훈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의전실에 요청함.
5. Pastrana 전 대통령의 주요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 10.31.
    - 도착
  - ※ 11.1.
    - 대통령 예방(훈장수여)
    -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국무총리 등 예방
    - 모범 새마을 시찰,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 11.2.
    - 기아산업 시찰, 인천시장 예방 및 인천 도크 시찰
  - ※ 11.3.
    - 출발
6. 본 문서철에는 1974.10월 외무부 작성 Pastrana 전 콜롬비아 대통령 면담자료, 동인 일행을 위한 김동조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연설(안) 등도 수록되어 있음.

# Habib Bourguiba 튀니지 대통령 방한 초청 계획

| 74-0308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78 / 10 / 1~12p

## 1. 주튀니지대사는 1974.8.30. Bourguiba 튀니지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대해 외무부에 아래 요지로 보고함.

- ※ 동 대통령의 1974.6월 중국(구 중공) 방문은 출발 작전에 1975년으로 연기된 바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미국을 동시에 방문하려던 당초 계획이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었던 것으로 관측됨.
- ※ 동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1975.4월 실현될 가능성이 있고 이때 소련과 중국도 함께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파키스탄, 이란 등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음.
- ※ 이 기회에 동 대통령이 한국도 방문하도록 초청의사를 전달함이 우호관계의 표시로서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방한 실현 여부에도 불구하고, 초청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

## 2. (1974.12.28. 외무부 중동과장 작성 메모에 의하면) 튀니지 대통령 방한 초청 문제는 아래 요지의 초청 의의 등에 관한 국무총리 보고과정에서 외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구두설명을 통한 사전양해를 득한 후 처리하기로 보류 결정됨.

- ※ 동 대통령 초청을 통해 1969.3.31. 외교관계 수립 이후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양국간의 전통적인 우의 다짐 및 북한 측의 수교를 위한 접근 저지
- ※ 1973.12.15. 한국 정부의 친아랍 성명 발표를 계기로 동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아랍국가 원수로는 최초 방한 초청
- ※ 튀니지를 통한 리비아, 알제리 등 인근 미수교 아랍국과의 수교를 위한 중개 역할

## 3. 외무부는 1975.1.7. 튀니지 정부 측이 Bourguiba 대통령의 방한 의사를 정식 표명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대통령 명의 초청장 발송 건의를 수락할 수 없음을 주튀니지대사관에 통보함.

# Ford, Gerald 미국 대통령 방한, 1974.11.22.-23. 전6권 (V.1 기본문서철)

| 74-030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의전
MF번호	C-78 / 11 / 1~55p

366

## 1. 1974년 포드 미국 대통령의 방한추진 주요 경과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9.2. 에릭슨 주한 미국대사대리 면담 시 포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기회에 한국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초청의 뜻을 이미 주미국대사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전한바 있으나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도 이를 강력히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
- ※ 주미국대사는 9.4. 하비브 미 국무부 차관보 면담 시 포드 대통령의 방한이 한·일본 양국간의 관계로 보아도 당연히 실현됨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데 대해 동 차관보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언급
- ※ 박정희 대통령은 9.10. 금년 11월말 또는 12월초 일본을 공식 방문하는 동 대통령에 대한 초청장 발송을 건의하는 외무부 문서 재가
- ※ 주미국대사가 9.17. 하비브 차관보에게 동 대통령 방한 초청장을 전달하고 한국 정부와 국민은 동 대통령의 방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여 기대하고 있다고 한데 대해, 동 차관보는 현재로서는 방한 초청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
- ※ 주미국대사관은 9.20. 백악관은 동일 동 대통령의 1974.11.22.~23. 서울 방문을 정식으로 발표하였음을 보고
- ※ 주미국대사관은 11.15.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동일 백악관 기자회견 시 박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때에 왜 한국을 방문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음을 보고  
- It is clear that President Park is being criticized. But that does not outweigh the considerations that I have given. A failure to visit to Korea might be understood to be a reduction in the degree of our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Korea which could have serious international consequences.

## 2. 주미국대사관은 1974.11.27. 포드 대통령이 11.26. 양당의 의회 지도급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동 대통령의 극동 방문결과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동 설명이 있은 후 Nessen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한국문제에 관해 아래 요지로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국내적 억압을 북한의 위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박 정부는 몇 달 전에 비하여 더욱 관용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짐.
- ※ 박 대통령은 휴전선 터널 구축사건이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하였고 동 대통령은 자신이 하원의원으로서 방한했던 1954년 이후 한국경제가 놀랄만하게 발전하였다고 언급

## 3. 본 문서철에는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주한 미국대사 면담요록(1974.10.22. 및 11.21.), 포드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관한 주일본대사관의 보고(10.28.), 미국·일본 정상회담, 미국·소련 정상회담 예상의제 등에 관한 주미국대사관의 보고(11.1.) 등도 수록되어 있음.

# Ford, Gerald 미국 대통령 방한, 1974.11.22.-23. 전6권 (V.2 의전행사 준비)

| 74-031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의전
MF번호	C-78 / 12 / 1~167p

## 1. 외무부는 1974.9.26. 포드 미국 대통령 공식방한 영접 준비에 필요한 아래 사항에 관해 보고하도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 ※ 인적사항(동 대통령 및 부인 상세 경력과 사진, 각료급 이상 공식수행원, 기타 공식수행원, 기타 수행원 명단 등), 취미관계, 기호관계, 저서, 출신학교 및 출신지의 노래가 있을 경우 악보, 기타 개인적인 습관 등

## 2. 외무부는 1974.9.26. 타국 국가원수의 주재국 국민방문(부부동반) 시 영부인이 없는 경우 누가 그 역할을 대행하는지, 접수국 국가원수 가족 중 18세 이상의 영양(장녀)이 모든 공식행사에 영부인 역할을 대행하는 관례가 있는지를 조사, 보고하도록 주독일대사관 등 관련 재외공관에 지시함.

- ※ 주캐나다대사관은 9.26. 주재국의 경우 Massey 총독(1952~59. 역임) 부인이 일찍 서거하여 동 총독 재임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공식행사에 동 총독의 자부(며느리)가 영부인 역할을 행하였음을 보고
- ※ 주호주대사관은 9.30. 주재국의 경우 국가원수의 영부인이 없는 경우 성년한 딸 또는 가까운 친척 부인이 공식행사에 영부인 역할을 대행함을 보고
- ※ 주독일대사관은 10.1. 주재국의 경우 국가원수(대통령)의 영부인이 없는 경우 영부인의 역할을 연방수상의 부인이 대행함을 보고

## 3. 박정희 대통령은 1974.10.7. 포드 대통령 방한을 위한 영접위원회 및 영예수행원 구성에 관한 외무부의 건의문서를 재가함.

- ※ 영접위원회 구성
  - 위원장: 외무부장관,
  - 위원: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 차관 등
  - 간사장: 외무부 의전실장
  - 간사: 총무처 총무국장 등 관계부처 국장
- ※ 영예수행원: 영접위원장 내외, 주미국대사 내외, 무관 영예수행원

## 4. 주미국대사관은 1974.10.29. 포드 대통령 방한준비를 위한 선발대가 11.8. 서울에 도착, 2일간 체류 예정이며 동 선발대는 국무성 의전장, 백악관 NSC 아시아지역 책임자, 경호책임자 등으로 구성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5. 주미국대사관은 1974.10.30. 포드 대통령이 금번 여행에 부인을 동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미 국무부가 알려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Ford, Gerald 미국 대통령 방한, 1974.11.22.-23. 전6권 (V.3 각 부처별 의전행사계획 및 자료)

| 74-031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의전
MF번호	C-78 / 13 / 1~464p

본 문서철에는 포드 미국 대통령의 1974.11.22.~23. 방한에 따른 외무부 등 관련 부처의 의전 행사계획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목록은 아래와 같음.(예시)

## 1. 포드 대통령, 키신저 미 국무장관 등 미국 측 주요 수행원의 이력사항(국·영문)

### 2. 일정표

368

- ※ 김포국제공항 도착 및 공항 환영행사, 국립묘지 무명용사탑 및 고 육영수 여사 묘소 참배, 주한 미 2사단 시찰, 정상회담, 대통령 주최 리셉션 및 만찬, 민속공연(11.22.), 청와대 도착 및 이한인사, 공항 도착 및 이한행사 (11.23.)

### 3. 영접위원회가 작성한 포드 대통령 방한일정 세부설명서

### 4.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포드 대통령 방한 영접준비 세부계획

- ※ 의료반 차출기관, 인원, 장비 등에 관한 세부계획

### 5. 영접위원회가 작성한 간사회의 자료(10.18.)

### 6. 총무처가 작성한 공항 환영행사 초청자 명단(1차안)(10.30.)

### 7. 1974.11월 해외공보관이 작성한 포드 대통령 방한 대책

- ※ 홍보간행물 발간, Press kit 제작 배포, 외신취재 협조 계획 등

### 8. 서울특별시가 작성한 포드 대통령 영접계획(11.5.)

- ※ 가두 환송영, 연도변 환송영 행사계획 등

### 9. 외무부가 작성한 한·미국 실무그룹 회의자료(영문)(11.8.)

### 10. 중앙청 중앙홀에서 개최되는 민속공연 자료(국·영문)(11.22.)

### 11. 총무처가 작성한 포드 대통령 영접 공항행사 계획

# Ford, Gerald 미국 대통령 방한, 1974.11.22.-23. 전6권 (V.4 활동사항)

| 74-0312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북미1/의전
MF번호	C-78 / 14 / 1~128p

본 문서철에는 포드 미국 대통령의 1974.11.22.~23. 방한 관련 면담자료, 공동코뮤니케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목록은 아래와 같음.

## 1. 대통령의 면담자료

- ※ 국제경제협력, 한국경제, 한·미국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 2. 정상회담에서의 한국 측 입장(면담 요지)

- ※ 동북아 정세
  - 데탕트 정책에 기인한 안정, 중국·소련 분쟁이 동북아시아 안정에 미치는 영향, 소련의 아시아 진출, 일본의 지위
- ※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안보
  -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과 군사적 위협, 한국의 안보대책, 한·미국 간 군사협력(군원문제), 주한 유엔군 사령부의 장래문제
- ※ 한국의 외교정책
  -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바탕으로 한 평화적 통일 추구, 남북대화 추진, 대공산권 문호개방
- ※ 경제협력문제
  - 세계경제 문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배려, 한국의 경제개발 노력, 한·미국 경제협력
- ※ 통상진흥 문제
  - 세계무역의 증가추세와 한국의 무역정책, 한·미국 간 무역
- ※ 결론
  - 한국안보를 위한 향후 수년간의 중요성, 한·미국 양국의 이익 및 정책 목표의 공통성, 자립 한국을 지향한 미국의 협력

## 3. 회담요지(안) 및 Talking Points(Draft)

- ※ 한반도 정세, 장래의 전망과 한국의 입장, 한·미국 양국의 공동이익 추구 등

## 4. 포드 대통령의김포공항 도착 시 박정희 대통령의 환영사(국·영문)

## 5. 포드 대통령의 도착성명(Arrival Statement)

## 6. 포드 대통령을 위한 공식만찬 시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국·영문)

## 7. 박정희 대통령과 포드 대통령의 공동 코뮤니케 등

# Ford, Gerald 미국 대통령 방한, 1974.11.22.-23. 전6권 (V.5 국내 언론보도)

| 74-031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의전
MF번호	C-78 / 15 / 1~143p

본 문서철에는 포드 미국 대통령의 1974.11.22.~23. 방한에 관한 1974년 국내 언론기사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언론기사의 제목은 아래와 같음.(예시)

1. 포드의 극동 방문(9.12. 동아일보)
2. 조총련의 범죄활동 규제 포드 방일 때 요구해 주길(10.23. 서울신문)
3. 일본에 오면서 방한 않으면 북한이 어떤 오산 범할지도(11.2. 중앙일보)
4. 포드 극동여로(11.14. 조선일보)
5. 포드 방한은 실책이다(11.15. 동아일보)
6. 4강이 연결된 서울 방문(11.17. 한국일보)
7. 한미 정상외교 13년(11.18. 서울신문)
8. 포드 착일 오늘 정상회담(11.19. 한국일보)
9. 한국은 아주안보에 중요(11.21. 한국일보)
10. US-Japan Communique Accents Security Pact(11.22. The Korea Times)
11. 미국의 극동정책과 한국(11.22. 조선일보)
12. 재확인된 미국의 대한 안보협력(11.23. 서울신문)
13. 2백만의 서울환영(11.23. 동아일보)
14. Ford Reassures Park of US Role in Repelling Aggression against ROK(11.23. The Korea Herald)
15. 한·미 정상 2시간의 막후(11.24. 조선일보) 등



# Ford, Gerald 미국 대통령 방한, 1974.11.22.-23. 전6권 (V.6 해외 언론보도)

| 74-0314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북미1/의전
MF번호	C-78 / 16 / 1~398p

주미국대사관 등 재외공관은 포드 미국 대통령의 방한(1974.11.22.~23.)에 관한 해외언론의 보도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 1. 미국 워싱턴포스트(10.9)

- ※ 포드 대통령의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방한 후 귀국길에)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으며 회담 장소는 양측이 정치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태평양지역의 제3국의 장소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

## 2. 일본 마이니치신문(11.2)

- ※ 포드 대통령의 방한과 유엔의 한국문제 토의를 앞두고 한국의 민주세력은 정부로 하여금 민주화 정책을 취하게 하는 절호의 기회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 확실하며 이는 정부의 완화책이 입증하고 있음.

## 3. 독일 Frankfurter Allgemeine지(11.16)

- ※ 포드 대통령은 미국이 1950~53년간에 약 34천명의 병사를 희생하고 1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바 있는 한국의 방위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한을 합당케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음.
- ※ 동 대통령은 직선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상 1975년 여름에 있을 군비통제, 무역, 유럽, 중동에 관한 브레즈네프와의 다음 정상회담을 위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인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음.

## 4. 일본 아사히신문(11.18)

- ※ 미국의 의회, 학계에 박 정권 비판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기에 도전하듯 포드 대통령이 서울에 들리게 된 것은 만약 일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방문하면서 한국을 지나쳐가면 미국의 대한국 지원 자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오해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고려 때문임.

## 5. 미국 NYT지(11.22)

- ※ 1면에 Ford is in Korea: Hails Close Link라는 제목으로 Ford 대통령의 방한 관련 기사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Sinnott 신부가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사진과 함께 보도함.

37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Rahman, S. M. 방글라데시 수상 방한 초청 계획

| 74-031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78 / 17 / 1~10p

### 1. 김종필 국무총리는 1974.8.21. Rahman 방글라데시 수상 방한 초청에 관한 아래 요지의 건의 문서를 재가함.

- ※ 신임장 제정차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주인도대사는 Rahman 수상을 면담, 양국간의 국교수립을 계기로 한국 방문을 요청한데 대해 동 수상은 기회가 있으면 방한을 희망한다면서 특히 연내 방한이 가능할 것이라는 뜻을 시사함.
- ※ 최근 격증하고 있는 북한의 접근 시도 및 한·방글라데시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고려, 동 수상을 조기 방한 초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동 수상 방한 초청을 건의함.
- ※ 재가가 있는 대로 초청 공한(1974.8.22.자)을 동 수상에게 전달함.

### 2. 주 인도대사관은 1974.11.6. 동 초청 공한에 대한 Rahman 수상의 답신을 외무부에 보고함.

- ※ 동 수상은 초청에 사의를 표명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는 기대를 표명함.

# 뉴질랜드 수상 방한 초청 계획

| 74-0316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남아1
MF번호	C-78 / 18 / 1~24p

## 1. 1973~74년 뉴질랜드 수상의 방한 추진 개요는 아래와 같음.

- ※ 주뉴질랜드대사는 1973.10.18. Kirk 뉴질랜드 수상이 금년말경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명년 중에는 일본과 중국(구 중공)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기자 질문에 답변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 수상이 일본 방문할 경우 동 기회에 방한하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의 추진여부를 문의
- ※ 외무부는 10.31. Kirk 수상 겸 외상의 방한을 추진하도록 주뉴질랜드대사에게 지시
- ※ 주뉴질랜드대사는 11.8. Norrish 뉴질랜드 외무성 부차관 면담 시(11.5.) 내년 동 수상의 일본 방문이 실현될 경우 한국 방문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동 부차관은 이를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
- ※ 동 수상은 12.5. 콜롬보플랜 대표들을 위한 동 수상 주최 리셉션 시 주뉴질랜드대사에게 한국 측 초청을 수락하고 1974.4월 방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언급
- ※ 박정희 대통령은 12.26. 동 수상 방한 초청 및 초청 공한 전달을 건의하는 외무부의 문서를 재가
- ※ 주뉴질랜드대사는 1974.1.11. Hensley 뉴질랜드 외무성 아주국장이 유류위기 등 국내사정으로 동 수상의 아시아 지역(한국, 일본, 중국 등) 방문 연기를 알려왔음을 보고
- ※ 주뉴질랜드대사는 12.11. 다나가 일본 수상의 뉴질랜드 방문 시 동 수상이 Rowling 뉴질랜드 수상의 일본 방문을 초청하였고 Rowling 수상은 이를 수락한 바 있으나, Norrish 외무성 부차관에 의하면 동 수상이 명년에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등 유럽지역을 방문하게 될 것은 확실하나 극동지역을 방문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음을 보고
- ※ 주뉴질랜드대사는 12.13. Rowling 수상을 방문, 12.9.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의 결의안 관련 박정희 대통령의 감사전문 메시지를 전달하고 동 수상의 극동 방문에 관해 문의한데 대해 동 수상은 명년 2월 중 일본 방문을 제의하였으나 일본 측은 1월에 방문하여 줄 것을 희망하여 극동지역 방문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음을 보고
- ※ 외무부는 12.31. Rowling 수상의 방한을 적극 추진하고 방한이 확실 시 될 경우 필요하다면 정식 초청장을 발송할 것임을 주뉴질랜드대사에게 통보

## 2. 본 문서철에는 상기 박정희 대통령의 방한 초청 서한에 대한 Kirk 수상의 감사서한(1974.1.30)도 수록되어 있음.

## Hossain, Kamal 방글라데시 외상 방한 초청 계획

| 74-0317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78 / 19 / 1~11p

### 1. 외무부는 1974.8.21. 아래 요지의 내부건의의를 통해 Hossain 방글라데시 외상에 대해 김동조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발송하기로 결정함.

- ※ 주인도대사(방글라데시 겸임)가 1974.6.10. 신임장 제정 차 방글라데시 방문 시 Hossain 외상과의 면담에서 작년 외교관계 수립(1973.12.18.) 이후 점증하는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방한을 요청한데 대해 동 외상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주인도 방글라데시대사는 가능한 한 빠른시일내에 초청장을 보내주는 것이 동 외상의 방한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 최근 격증하고 있는 북한의 방글라데시 진출 시도 및 한국·방글라데시 우호관계를 고려, 동 외상의 조기 방한 초청이 바람직함.

### 2. 주인도대사관은 1975.1.17. 상기 방한 초청에 대한 Hossain 외상의 감사 서한(1975.1.13.)을 접수 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 동 외상은 한국 측의 방한 초청을 수락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할 것을 기대함.

## Guzman, Alberto 볼리비아 외상 방한 초청 계획

| 74-031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78 / 20 / 1~14p

1. 주페루대사(볼리비아 겸임)는 1974.9.8. 대만(구 자유중국) 정부가 Alberto Guzman 볼리비아 외상을 초청하였으며 Alberto Guzman 외상의 방문 시기는 미정이나 동 초청을 원칙적으로 수락하였다며 동 대사의 볼리비아 출장 시 동 외상에 대한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9.9. 동 외상의 대만 방문 시 한국도 방문하도록 한국 측 초청 의사를 전달할 것을 주페루대사에게 지시함.

2. 주페루대사는 1974.10.21. 페루를 공식 방문(1974.10.16.~20.)한 Guzman 외상 일행을 관저에 초청(10.17.), 비공식 오찬을 하는 기회에 동 외상의 대만 방문 시기를 문의한데 대해 동 외상은 11월 또는 12월 방문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실한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외무부장관 명의 초청장 발송을 건의함.

※ 외무부는 1974.10.23. 김동조 외무부장관 명의 초청장을 발송하기로 결정함.

3. 주페루대사는 1974.11.11. 상기 초청장에 대한 Guzman 외상의 감사회신(1974.11.5.)을 접수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동 외상은 1975년 1월 또는 2월 중 방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37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Sauvagnargues, Jean 프랑스 외상 방한 초청 계획

| 74-031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구1
MF번호	C-78 / 21 / 1~22p

1974년 Jean Sauvagnargues 프랑스 외상의 방한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1. 주프랑스대사는 6.25. Sauvagnargues 신임 외상에 대한 방한 초청 의사를 우선 구두로 전달하고자 하는데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
2. 외무부는 6.26. 신임 외상의 방한 초청을 구두로 전달할 것을 주프랑스대사에게 지시
3. 주프랑스대사는 6.27. Destremau 프랑스 외무차관을 방문, Jober 전임 외상이 4월 하순 방한하기로 결정된바 있으나, 불의의 사태로 방한이 연기된 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신임 외상의 방한 초청의사를 전달
  - ※ 이에 대해 Destremau 차관은 이를 곧 외상에게 보고하겠다고면서 프랑스 대통령의 방일 문제가 현안 문제로서 검토되고 있으며 금년말 이내에 실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언급
4. 외무부는 7.18. Sauvagnargues 외상에 대한 김동조 외무부장관 명의 초청 서한을 발송하기로 결정
5. 주프랑스대사는 8.6. Courcel 프랑스 외무차관을 방문하여 동 초청 서한을 전달
6. 주일본대사관은 10.26. 마이니치신문이 프랑스 외상이 일본 · 프랑스 정기협의를 위해 1974.11.21.~23.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음을 외무부에 보고
7.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이 10.28. Duzer 프랑스 외무성 아주국 부국장을 방문, Sauvagnargues 외상이 금번 일본 방문 기회에 방한하여 줄 것을 요청
  - ※ 이에 대해 Duzer 부국장은 지난 뉴욕에서의 양국 외무장관 회동 시 동 외상이 밝힌 바와 같이 금년 11월말 또는 12월초 정상회담 관계로 방한이 불가능하며 내년 방한 예정이라고 언급

## Singh, S. S. 인도 외상 방한, 1974.8.9.-13.

| 74-0320 |

생산연도	1971-1974
생산과	의전/서남아
MF번호	C-78 / 22 / 1~75p

1. 주인도대사대리는 1974.6.7. 주재국 외무차관의 요청으로 동 차관을 면담했으며, 동 차관은 Sardar Swaran Singh 외상이 제네바의 하계 경제사회이사회 참가 후 7.10. 귀임하며 7.13.부터는 동 외상이 멤버인 All India Congress Committee가 개최되어 동 외상의 7월중 방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인도대사대리는 1974.7.16. Menon 인도 외무성 차관보의 요청으로 동 차관보를 면담했으며, 동 차관보는 Singh 외상이 1974.8.9.~13. 방한하기로 확정함을 언급했다고 보고함.
3. Singh 인도 외상은 1974.8.9.~13. 공식 방한함.
  - ※ 수행원: Menon 차관보 및 비서관 1명
  - ※ 방한 일정
    - 도착,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리셉션 및 만찬(8.9.)
    -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상공부장관 예방, 동국대학교 방문, 국회의장 예방, 주한 인도교포 접견, 국회의장 주최 만찬(8.10.)
    - 한·인도협회 회장 주최 조찬, 인천항 시찰(8.11.)
    - 대통령 예방 및 오찬, 한·인도 무역협정 및 문화협정 서명, 인도 외상 주최 만찬(8.12.)
    - 출발(8.13.)
4. 주인도대사관은 1974.8.12. 주재국 Hindustan Times지가 8.11.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Singh 외상을 환대하였으며 한국이 보여준 이와 같은 따뜻한 우대는 한국이 인도를 경제 및 정치적으로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도했음을 보고함.
5. 본 문서철에는 동 외상의 이력사항(국·영문),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만찬사(영문), 동 외상의 방한 행사 관련 외무부의 관계부처 앞 협조요청 문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 호겐 신사꾸(法眼晋作) 전 일본 외무차관 방한, 1974.5.7.-12.

| 74-032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78 / 23 / 1~100p

## 1. 호겐 신사꾸 전 일본 외무차관의 방한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음.

- ※ 외무부는 일본 측 초청에 의한 윤석헌 외무부차관의 일본 방문(1972.4.3.~7.)에 대한 답례로 주일본대사로 하여금 12.16. 호겐 차관을 방한하도록 초청
- ※ 외무부는 1973.2.13. 동 차관의 방한이 가능한 조속 실현되도록 주재국 측과 계속 접촉할 것을 주일본대사관에 지시
- ※ 주일본대사는 2.16. 비공식 회합에서 동 차관을 만나 조속 방한을 촉구한데 대해 동 차관은 꼭 방한하고 싶으나 월남 전후문제 및 국제통화문제 등 어려운 문제가 많으며 특히 국회가 개회 중으로 6월이 아니면 방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
- ※ 외무부는 1974.3.7. 최근 일본 외무차관의 경질로 외무성 고문이 된 동 차관을 재차 방한 초청하고자 함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하고 동 초청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
- ※ 주 일본대사관은 4.4. 주재국 외무성 북동아과장에 의하면 동 차관은 4.29.부터 5.6.일 정도 방한함이 좋을 것이라고 하고 한국 측 사정에 따라서는 5.7. 시작 주도 좋다고 함을 보고
- ※ 외무부는 4.4. 동 차관의 방한 일정은 5.7.부터 5.6.일 정도가 적절함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

## 2. 호겐 전 일본 외무차관(부부동반)은 1974.5.7.~12. 방한함.

- ※ 도착,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5.7.)
- ※ 판문점 방문, 국무총리 예방, 새마을 시찰(5.8.)
- ※ 서울신문 사장 예방, 부산시장 주최 만찬(5.9.)
- ※ 마산, 울산 시찰(5.10.)
- ※ 경주 시찰, 포항제철 방문(5.11.)
- ※ 부산 시찰, 출발(5.12.)



# Ahmed Laraki 모로코 외무장관 방한, 1974.9.1.-4.

| 74-032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78 / 24 / 1~134p

## 1. 1974년 Ahmed Laraki 모로코 외상의 방한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음.

- ✿ 주모로코대사는 7.18. Laraki 외상이 심흥선 특사의 주재국 방문 시 한국 측의 방한 초청을 수락한 바 있으므로 동 방한의 조속 실현을 위해 외무부장관 명의 초청장을 발송해 줄 것을 건의
- ✿ 외무부는 8.3. 동 외상에 대한 김동조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주재국 측에 전달하도록 주모로코대사관에 지시
- ✿ Laraki 외상은 8.21. 주모로코대사관을 방문, 고 육영수 여사의 서거에 조의를 표하고 조문록에 서명하는 기회에 한국 대통령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1974.9.1.~3. 방한할 예정임을 언급

## 2. Laraki 외상(부부동반)은 1974.9.1.~4. 방한함.

- ✿ 수행원: Tadlaoui 주한 모로코대사(일본 상주), Jaïdi 주뉴욕 모로코총영사
- ✿ 방한 일정
  - 도착, 고 육영수 여사 묘지 참배(9.1.)
  - 외무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방문,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9.2.)
  - 대통령 예방(수교훈장 광화장 수여), 국무총리 예방 및 오찬,상공회의소 방문, 선경합섬 시찰, 상공회의소 회장 주최 만찬(9.3.)
  - 출발(9.4.)

## 3. 외무부는 1974.9.4. Laraki 외상의 방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 ✿ 당초 동 외상은 유엔총회 참석 후인 10월경 방한 예정이었으나 영부인 서거에 대한 핫산 모로코 왕의 조의를 표하기 위해 방문시기를 앞당겨 방한
- ✿ 방한성과
  - 동 외상의 방한은 모로코 정부의 각료급 인사로서는 최초의 방한
  - 동 외상은 금차 유엔총회에서의 한국 측 입장 지지 및 미수교 아랍국가와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협조를 약속하고, 양국간 경제기술 및 문화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조 요청

## 4. 주모로코대사관은 1974.9.4. 주재국 조간지에 게재된 9.2. 서울발 AP통신에 의하면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 측이 모로코의 사하라 해방운동 노력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 외무부는 9.5. 양국 외상회담(1974.9.2.)에서 Laraki 외상이 사하라 문제 관련 모로코 측 입장을 설명한 Memorandum을 수교하고 지지를 요청한데 대해, 외무부장관은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모로코 측 입장에 대한 이해와 동정을 표명한 바 있음을 주모로코대사관에 통보

# Karki Gyanendra B. 네팔 외상 방한, 1974.10.17.-20.

| 74-032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의전/동남아1
MF번호	C-79 / 1 / 1~133p

## 1. Gyanendra Bahadur Karki 네팔 외상이 1974.10.17.~20. 방한함.

- ※ 수행원: Yadav Prasad Pant 주한 네팔대사(일본 상주)
- ※ 방한 일정
  - 도착, 외무부장관 예방, 서울시장 예방, 조계종 방문(10.17.)
  - 고 육영수 여사 묘지 참배,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상공회의소 회장 주최 오찬, 동국대학교 방문(명예박사학위 수여), 신경합섬 시찰,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10.18.)
  - 경제기획원장관 및 농수산부장관 예방,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방문(10.19.)
  - 출발(10.20.)

380

## 2. 주네팔대사관은 1974.10.21. Karki 외상의 방한에 관한 아래 요지의 주제국 신문 보도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 ※ 동 외상이 한국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외무부장관을 예방
- ※ 동 외상은 주로 양국간 통상증진 문제에 관해 토의하였으며, 한국 측은 시멘트와 면직물을 네팔에 공급하고 네팔로부터 농산물과 임산물을 수입함으로써 상호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 동 외상은 불교계인 동국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룸비니 관계로 한국 불교계 인사와 접촉하였고 한국 불교대표단은 명년 3월경 네팔을 방문할 것이라고 함.
- ※ 양국은 통상증진을 위해 통상사절단을 상호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동 외상은 이한에 앞서 금번 방한이 양국간 유대를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음을 언급함.

## 3. 본 문서철에는 동 외상의 방한에 관한 주네팔대사관의 보고문서, 동 외상의 동국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연설문, 네팔 언론기사 등도 수록되어 있음.

# Romulo, Carlos P. 필리핀 외무장관 방한, 1974.8.5.-8.

| 74-032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의전/동남아2
MF번호	C-79 / 2 / 1~197p

1. Carlos P. Romulo 필리핀 외상은 1974.7.25. 주필리핀 대사관저에서 개최된 Romulo 외상을 위한 방한 환송만찬에서 자신과 한국과의 인연은 특별한 것이라며(이승만 박사와의 인연,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유엔총회 의장이었던 자신과 에치슨 미 국무장관과의 일화 등 언급) 한국을 방문함은 양국 관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한국 간의 특수한 인연을 가지고 방한하게 됨을 언급함.

## 2. Romulo 외상은 1974.8.5.~8. 방한함.

※ 수행원: Mabilangan 특별보좌관(대사), Maloles 영사

※ 방한 일정

- 도착, 외무부장관 예방, 주한 필리핀대사 주최 리셉션,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8.5.)
- 국립묘지 헌화, 국무총리 예방, 서울시장 예방 및 오찬, 서울대학교 방문(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 국회의장 예방 및 만찬(8.6.)
- 재향군인회 방문,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시찰, 필리핀 외상 주최 만찬(8.7.)
- 대통령 예방(훈장 수여) 및 오찬, 기자회견, 출발(8.8.)

## 3.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Romulo 외상 간에 1974.8.8. 발표된 공동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6·23 특별외교정책 성명에 대한 설명과 필리핀 측의 환영

- 한국 측은 대통령의 6·23 특별외교정책을 설명하고 동 정책 선언으로 한국이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음을 설명
- 필리핀 측은 동 정책이 국제적 화해조류에 부합되고 국제적 이해를 보다 증대시킬 것으로 환영

※ 남북대화에 대한 필리핀 측의 이해 촉구

- 한국 측은 1973.8월 북한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남북대화가 중단되었음을 지적하고 한국의 평화정책을 설명한데 대해 필리핀 측은 남북한 대화의 계속을 희망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노력을 평가

※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설명과 필리핀 측의 지지 획득

- 한국 측은 한국의 유엔가입이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임을 설명한데 대해 필리핀 측은 한국의 유엔가입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지지를 표명하고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한반도 통일에 공헌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 피력

※ 한·필리핀 양국 관계 강화

- 양 측은 향후 관계증진을 위해 통상, 경제 및 기술협력과 투자보호에 관한 회담을 최단 시일 내 개최할 필요성을 상호 인정하고 항공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합의

## Suheim bin Hammad Al-Thani 카타르 외무담당 국무상 방한 초청 계획

| 74-032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근동/국제연합
MF번호	C-79 / 3 / 1~15p

1. 중동지역 특별교섭단(단장: 정일영대사)이 1974.10.17.~19. 카타르를 방문하여 Al-Thani 카타르 외상 면담 시 구두로 동 외상을 방한 초청한데 대해 Al-Thani 외상은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방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2. 외무부는 동 교섭단의 건의에 의거, 1974.10.26. Al-Thani 외상에 대한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작성하여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게 통보하고 동 대사가 신임장 제정차 카타르 방문 시 이를 전달하도록 지시함.
3.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은 1974.11.19. 외무부장관의 Al-Thani 외상 앞 방한 초청장을 동일 주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대사관에 전달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은 1974.12.23. 주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대사관이 동 방한 초청을 수락하는 Al-Thani 외상의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보내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Ibrahim Al-Sultan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차관 방한, 1974.12.12.-15.

| 74-0326 |

생산연도	1974-1975
생산과	중동
MF번호	C-79 / 4 / 1~121p

## 1. 1974년 Sheikh Ibrahim Al-Sultan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차관의 방한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음.

- ※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8.6. Al-Sultan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차관이 10월 하순 필리핀 방문 기회에 방한을 희망함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 차관에 대한 외무부차관 명의 방한 초청을 건의
- ※ 외무부는 8.13. 동 초청 건은 1975년도에 추진할 계획임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에 통보
- ※ 동 대사관은 10.24. 동 차관이 11.20.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이며 주사우디아라비아 대만(구 자유중국)대사도 동 기회에 동 차관을 대만에 초청하도록 자국 정부에 건의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금번 기회에 동 차관을 방한 초청할 것을 재건의
- ※ 외무부는 10.30. 동 차관을 외무부차관 명의로 방한 초청하고자 함을 동 차관에게 적의 전달할 것을 동 대사관에 지시
- ※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가 11.4. 동 차관을 방문하여 방한 초청장을 전달한데 대해 동 차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이미 초청받은 이란, 필리핀, 대만과 함께 한국을 12월초 및 중순에 걸쳐 방한할 계획이라고 언급

## 2. Al-Sultan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차관은 1974.12.12.~15. 방한함.

- ※ 수행원: Siraj 외무성 아프리카·아시아국장 등 3명
- ※ 방한 일정
  - 도착,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12.12.)
  - 재무부장관, 건설부장관,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 정무차관보 주최 오찬,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건설부장관 주최 만찬(12.13.)
  - 한국·사우디아라비아 협력위원회 위원장 예방,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시찰, 한국·사우디아라비아 협력위원회 위원장 주최 만찬(12.14.)
  - 출발(12.15.)

## 3. 외무부 구아국이 1974.12.12. 작성한 양국 외무차관 면담자료의 주요목록은 아래와 같음.

- ※ 시카르 전 외무담당국무상 서거에 대한 조의 표명 및 화이자 사우디 국왕에 대한 문안인사
- ※ 최근 중동 정세 및 한반도 정세 검토
- ※ 한국의 아랍 지지 입장 재확인
- ※ 양국간 주요 현안문제 협의
  -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입장 지지
  - 미수교 아랍국과의 관계개선 추진 지원요청
  - 경제기술협력협정서 교환
  - 사우디아라비아의 잉여자본 유치문제
  - 의사 고용계약 촉진
  -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대사 조기임명 촉구 등

# Sayed Omar Al-Sakkaf 사우디아라비아 외무 담당국무상 방한, 1974.7.1.-4.

| 74-0327 |

생산연도	1968-1974
생 산 과	중동/의전
MF번호	C-79 / 5 / 1~323p

## 1. Sayed Omar Al-Sakkaf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담당국무상(Minister of State for Foreign Affairs)이 1974. 7.1.~4. 방한함.

※ 수행원: Al-Shubaily 외무성 아프리카·아시아국장 등 7명

※ 방한 일정

- 도착, 외무부장관 예방 및 만찬(7.1.)
- 대통령 예방(수교훈장 광화장 수여), 국무총리 예방 및 오찬, 한국외국어대학 방문(명예박사학위 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방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주최 만찬(7.2.)
- 외무부 방문(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서울시장 방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문,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7.3.)
- 출발(7.4.)

## 2. 외무부는 1974.7.6. Al-Sakkaf 외무담당국무상의 방한 결과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함.

※ 방한초청 경위

- 사우디아라비아의 외상직은 파이잘 사우디 국왕이 겸하고 있으나 사실상 외상 역할은 Al-Sakkaf 외무 담당국무상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동 국무상을 방한 초청

※ 방한성과

- 동 국무상의 방한으로 원유자원 안정 확보, 대중동 수출증대, 용역진출 면에서 그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으로 양국간 광범위한 경제협력 기반 조성
- 동 국무상은 한국의 기타 미수교 아랍국가와의 관계개선 노력을 측면 지원할 것임을 다짐함으로써 한국의 아랍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동 국무상은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 등을 계속 지지할 것임을 약속
- 동 국무상은 서울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할 것임을 밝혔으며 동 상주대사관 설치에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전 아랍국가와의 긴밀한 협의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

※ 한국·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술협력협정 요지

- 양국간 민간경제기술협력 강화 촉진, 투자 촉진, 과학기술 정보(기술자, 연수생) 교환, 합동위원회 설치 등

## 3. 주사우디대사대리는 1974.7.21. Al-Shubaily 사우디 외무성 아프리카·아시아국장을 면담한 바, 동 국장은 Al-Sakkaf 외무담당국무상의 방한이 매우 유익하였으며 1개월내 주한 상주공관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면서 동 국무상이 귀국 후에도 계속 건강상태가 나빠 입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주사우디대사는 11.16. 동 국무상이 과로로 인해 11.14. 뉴욕에서 급사하였음을 보고

## Hunlede, Joachim 토고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 74-0328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C-79/6/1-21p

1. 외무부는 1972.10.30. 현재로서는 주토고 상주공관 설치는 어려운 형편이므로 북한침투 견제의 한 방안으로 Joachim Hunlede 토고 외상의 방한 초청을 고려중임을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11.1. Hunlede 외상의 방한이 금년 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방한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동 방한으로 토고 내 북한 침투가 견제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토고 상주공관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고

2. 외무부는 1973.10.25. Hunlede 외상 방한 초청장을 동 외상에게 수교할 것을 주토고대사대리에게 지시함.

※ 주토고대사대리는 11.18. 동 외상에게 방한 초청장을 전달하고 방한 예상시기를 문의한데 대해 동 외상은 금년 내 방한은 어렵고 내년 봄 추진을 언급했음을 보고

3. 주토고대사대리는 1974.1.16. Hunlede 외상 면담 중 동 외상이 한국을 방문하는 시기에 평양도 아울러 방문할 계획임을 감지하였다고 1.17.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1.25. 동 외상이 한국 측 초청으로 방한하는 기회를 이용, 북한도 방문할 계획인 경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별도의 기회를 이용할 것을 주재국 측에 권유하도록 주토고대사대리에 지시

※ 또한, 주유엔대사는 4.19. 동 외상이 주토고대사대리로부터도 수차례 친절한 독촉을 받고 있어 가능한 금년 내 방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

4. 본 문서철에는 외무장관의 방한 초청 서한(1973.10.22.)에 대한 Hunlede 외상의 방한 수락 서한(11.12.) 등도 수록되어 있음.

38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전

1974

# Habib Chatty 튀니지 외무장관 방한, 1974.7.19.-21.

| 74-032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의전
MF번호	C-79 / 7 / 1~249p

## 1. 주튀니지대사는 1974.6.14. Habib Chatty 튀니지 외상이 중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한국도 방문 (1974.7.20.~22.)하기를 희망한다고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 방문 접수 가능여부를 문의함.

- ※ 외무부는 6.17. 동 외상의 방한을 수락함을 주튀니지대사에게 통보
- ※ 주튀니지대사는 6.18. Chatty 외상이 중국 방문 후 한국을 방문하고 이어서 일본을 방문기로 일정을 변경함에 따라 방한 일정이 1974.7.19.~21.로 변경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회보를 외무부에 건의
- ※ 외무부는 6.20. 동 방한일정 변경에 이의 없음을 주튀니지대사에게 통보

386

## 2. Chatty 튀니지 외상(부부동반)이 1974.7.19.~21. 방한함.

- ※ 수행원: Zaafrane 계획성 대외협력국장 등 6명
- ※ 방한 일정
  - 도착, 외무부장관 예방, 서울시장 예방, 외무장관 주최 리셉션 및 만찬(7.19.)
  - 국회의장 예방, 대통령 예방(수교훈장 광화장 수여), 외무부 방문, 국무총리 예방 및 오찬, 선경합섬 및 기아산업 시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주최 만찬(7.20.)
  - 이한(7.21.)

## 3. 외무부는 1974.7.31. Chatty 외상의 방한 결과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함.

- ※ 방한 성과
  - 동 외상은 금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아랍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에 최대의 측면지원을 약속함.
  - 양국은 제2차 한국·튀니지 공동위원회(1974.7.18.~19.)를 개최, 경제, 기술, 어업협력 및 통상분야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함.
  - 한국 측은 어업조사단을 조속한 시일 내 튀니지에 파견하기로 함.
  - 외무부장관과 동 외상은 1974.7.20. 양국 투자보장협정에 가서명함.
  - 동 외상의 금번 방한으로 양국간 우의가 더한층 돈독해진 것으로 사료되며 아랍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 튀니지의 직간접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됨.



# Brimelow, Thomas 영국 외무부 사무차관 방한, 1974.12.2.-4.

| 74-0330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서구담당관
MF번호	C-79 / 8 / 1-48p

1. 주영국대사대리는 1974.11.12. Brimelow 영국 외무성 사무차관(Permanent Under Secretary)이 영국·일본 간 정례적인 외상회의(1974.12.5.~6.) 참석차 극동지역을 방문하는 기회에 1974.12.2.~4. 한국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 사무차관이 외무성 외교직의 최고위직으로 대외정책의 실질적인 책임자의 직책에 있음을 감안, 동 방문이 가급적 공식 방문이 되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함.

※ 외무부는 11.15. 동 사무차관의 방한과 관련하여 주한 영국대사와 협의, 방한일정을 작성 중이며 금번 방한을 공식 방문으로 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주영국대사관에 통보

## 2. Brimelow 사무차관은 1974.12.2.~4. 방한함.

※ 방한 일정

- 도착, 주한 영국대사관 주최 만찬(12.2.)
-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차관, 국무총리 예방, 대통령 특별보좌관 예방,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12.3.)
- 출발(12.4.)

## 3. 외무부 구아국이 1974.11월 작성한 Brimelow 사무차관 면담자료 주요목록은 아래와 같음.

※ 한반도 일반정세

- 북한의 무력도발, 남북대화, 한국의 3단계 평화통일 원칙 천명

※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 Ford 미국 대통령 방한의 의의 및 성과

※ 영국 정부의 대북한 태도

※ 한·영국 간 경제문제

※ 한·영국 간 현안문제(북한 통상대표부 설치 문제)

- 영국 정부는 북한 민간통상대표부 설치를 허가하고 동 설치에 따른 조건(외교특권과 영국정부에 대한 대표권 등은 불인정)을 북한 측에 전달하였으며, 북한은 1974.7월 이를 수락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상급까지 주재원 비자 신청을 하지 않고 있음.

4. 본 문서철에는 1974.12.3. 노신영 외무부차관의 Brimelow 사무차관 면담요록 및 만찬사, 1974.12.3. 최규하 대통령 특별보좌관의 동 사무차관 면담요록 등도 수록되어 있음.

## Coll Blasini, Ne'stor 베네수엘라 외무차관보 방한 초청 계획

| 74-0331 |

생산연도	1972-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79 / 9 / 1~144p

Ne'stor Coll Blasini 베네수엘라 외무성 차관보의 방한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음.

1. 주브라질대사(베네수엘라 겸임)는 1972.9.11, Blasini 차관보가 주브라질 베네수엘라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수락하고 9월 하순 방한을 희망한다고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1972.9.13, Blasini 차관보의 9월 하순 방한은 이미 확정된 유력인사 방한 영접상 곤란하므로 방한기간을 10.5.~9로 조정할 것을 주브라질대사에게 지시함.
3. 주브라질대사는 1972.9월 이후 주브라질 베네수엘라대사관의 통보내용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동 차관보의 사정상 1972.10월중 방한은 어렵고 11월말경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알려옴(1972.9.20. 보고).
  - ※ 자국 대통령의 남미 순방 계획으로 인해 동 차관보의 방한이 1973.3월 중순경에 있을 예정임(1973.1.11. 보고).
  - ※ 동 차관보가 1973.5.27. 방한할 가능성이 줄어들었음(1973.4.23. 보고).
  - ※ 동 차관보가 1973.6.11.~15. 방한 예정임(1973.5.22. 보고).
  - ※ 동 차관보가 뉴욕에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2~3일간 휴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도착 시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통보해 주겠음(1973.6.8. 보고).
  - ※ 동 차관보가 의사의 권고에 따라 예정된 방한계획을 중단하게 될 것임(1973.6.22. 보고).
4.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74.6.19. 동 차관보가 외무성의 직제 개편(차관보제 폐지)에 따라 스웨덴주재 대사로 임명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 외무부는 10.2. 동 차관보의 방한 시 수여하기로 한 수교훈장 광화장을 스웨덴에서 동인에게 수여할 것을 주스웨덴대사에게 지시함.
  - 주스웨덴대사는 12.17. 동 차관보에게 동 훈장을 전수함.

# Mohamed Abdul Kader Hatem 이집트 대통령 특별보좌관(전 부수상) 방한 초청 계획

| 74-033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담당관
MF번호	C-79 / 10 / 1~70p

1974년 Mohamed Abdul Kader Hatem 이집트 부수상의 방한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음.

1. 주일본대사관은 2.7. 윤하정 공사의 주일본 이집트대사 예방 시 동 대사는 자국에서 영향력이 큰 Hatem 부수상이 2월중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동 기회에 동 부수상과 한국과의 국교 개설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2.8. 상기 내용을 주카이로총영사에게 통보하고 Hatem 부수상의 금번 극동 방문 기회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면 이를 환영하는 바이므로 그 가능성을 타진할 것을 지시함.

3. 주카이로총영사는 2.13. Hatem 부수상의 측근인 Munir 이집트 문화성 차관보 면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Munir 차관보는 일본 방문 후 즉시 귀국하려는 이집트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 동 부수상의 금차 방한은 어려울 것이며 장치를 위해 초청장을 보내주는 것은 무방하다고 언급함.

4. 외무부는 2.15. Hatem 부수상을 누구 명의로 방한 초청함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도록 주카이로총영사에게 지시함.

※ 이에 대해 주카이로총영사는 2.16. 현재 동 부수상이 실제로 수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사다트 대통령이 수상직을 형식적으로 겸직) 총리 명의로 초청함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함.

5. 외무부는 3.7. 김종필 국무총리 명의 Hatem 부수상 앞 방한 초청장을 전달하도록 주카이로총영사에게 지시함.

※ 주카이로총영사는 4.25. 동 부수상을 방문, 방한 초청장을 전달하였으며 동 부수상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방문 시기는 추후 알려주겠다고 언급함.

- 동 부수상과의 면담을 주선한 Munir 차관보는 만일 서울국립대학이 동 부수상에게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면 그 기회를 이용, 방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주카이로 총영사는 서울대학교 총장 명의로 동 부수상에게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할 용의가 있음을 통고하는 서한을 송부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



**6. 외무부는 5.1. Hatem 이집트 대통령 특별보좌관(방한초청 당시 부수상)에 대한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를 위한 문교부의 협조를 요청함.**

※ 문교부는 5.11. 서울대학교에서 동 보좌관에게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7. 주카이로총영사는 5.16. Hatem 특별보좌관 면담(5.15.) 결과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동 보좌관은 그간 본부에 보고한 교섭내용과는 달리 한국과 이집트의 국교가 수립된 후에야 방한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이는 동 관계개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생각에서 취해진 것으로 추측됨.

# Egerton, John 호주 노동당 부총재 방한, 1974.7.10.-16.

| 74-033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79 / 11 / 1~28p

1. 주호주대사관은 1974.4.2. John Egerton 호주 노동당 부총재가 1974.6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LO (국제노동기구) 회의 참석 후 방한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노동당 내 친한 인사 조성 차원에서 동 부총재를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건의함.

※ 외무부는 4.8. 동 방한 초청을 허가함을 주호주대사관에 통보

2. Egerton 호주 노동당 부총재는 1974.7.10.~16. 방한함.

※ 방한 일정

- 도착(7.10.)
- 외무부장관, 공화당 의장, 국회의장, 보사부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국회의장 주최 만찬(7.11.)
- 공화당 의장 주최 오찬, 판문점 시찰(7.12.)
- 대구 제일모직, 부산 금성사 방문(7.13.)
- 현대조선소, 포항제철 방문(7.14.)
- 한전 사장 주최 만찬(7.15.)
- 출발(7.16.)

3. Egerton 부총재 방한 관련 면담자료 중 호주의 대북한 수교 움직임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가 격화되고 공산국가의 대한민국 승인 움직임이 없는 현 상황에서 북한 승인은 북한의 오산에 의한 도발을 고무하고 한국민에게 지대한 타격을 가하므로 시기적으로 부적당
- ※ 연기 불능 시 수교합의는 하더라도 공관 설치 또는 대사 임명은 남북한 유엔가입, 동구권의 대한민국 수교를 조건으로 할 필요

4. 본 문서철에는 1974.7.30. Egerton 부총재의 김동조 외무부장관 앞 감사서한 등도 수록되어 있음.

## 제61차 IPU 총회 참석 각국 대표단 방한 및 Dutra, Tarso 브라질 상원의원 방한

| 74-0334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79 / 12 / 1~67p

1. 외무부 방교국은 1974.9.26. 미주국 앞 협조문을 통해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61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1974.10.2.~11.)를 계기로 한국 국회가 동 총회 참석 각국 대표단을 제1진(1974.9.28.~10.1.) 및 제2진(1974.10.12.~15.)으로 나누어 방한 초청하였음을 동 대표단 명단 및 일정과 함께 통보함.

※ 제1진 대표단 및 주요일정

- 벨기에, 스페인, 터키 대표단 등
- 도착, 한국 대표단장 주취 리셉션 및 국회의장 주취 뷔페(9.28.), 울산 시찰(9.29.), 판문점 시찰(9.30.), 국군의 날 행사 참관, 출발(10.1.)

※ 제2진 대표단 및 주요일정

- 호주, 프랑스, 가봉, 인도, 이란,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노르웨이, 태국 대표단 등
- 한국 대표단장 주취 리셉션 및 국회의장 주취 뷔페(10.12.), 울산 시찰(10.13.), 판문점 시찰, 대통령 예방 및 리셉션(10.14.), 출발(10.15.)

2. 주일본대사관은 1974.10.7. Tavora 브라질 상원의원 등 브라질 IPU 대표단(수행원 포함 10명)이 10.12.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10.16. 동 대표단이 1974.10.12.~15. 방한 일정을 마치고 10.16. 이한하였음을 주브라질대사관에 통보

3. Dutra 브라질 상원의원은 국내 선거 일정으로 인해 제61차 IPU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동 선거 후인 1974.11.22.~26. 방한함.

※ 방한 일정

- 도착(11.22.),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수출산업공단 시찰, 국회의장 주취 만찬(11.23.), 경복궁 등 시찰(11.24.), 국회의장, 국무총리 예방, 보건사회부장관 주취 오찬, 판문점 시찰(11.25.), 출발(11.26.)

4. 본 문서철에는 브라질 의회대표단 방한 관련 주브라질대사관의 보고문서, Dutra 브라질 상원의원이 1975.5.23. 브라질 연방국회에서 행한 월남사태 이후의 아시아 정세에 관한 연설문 중 한국관계사항 발췌문(영어 번역문) 등도 수록되어 있음.

# Turbay, Julio Cesar 콜롬비아 자유당 당수 방한, 1974.5.17.-21.

| 74-033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79 / 13 / 1~83p

## 1. 1974년 Julio Cesar Turbay 콜롬비아 자유당 당수 방한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음.

- ※ 외무부는 3.26. 주콜롬비아대사에게 Gonzalez 주일본 콜롬비아대사(한국 검임)가 주일본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음을 통보하면서 Turbay 당수 방한 초청에 관한 의견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 콜롬비아 선거에서 보수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한민국 정책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나 Lopez 자유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동당의 대외정책으로 미루어 북한과의 대화 내지 관계수립의 가능성이 큼.
  - 북한 접근 견제의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이며 영향력이 큰 Turbay 현 자유당 당수를 방한 초청함이 좋을 것이며, 동 당수가 방한 초청을 수락할 경우 방한 시기는 선거관계로 4.21. 이후가 될 것이나 초청장은 선거 전에 전달하도록 함이 효과적일 것임.
- ※ 주콜롬비아대사는 3.27. 동 당수의 극동(대만 등) 여행문제는 주재국 정계에 비공식으로 전하여지고 있으며 한국 측이 동 당수를 정식으로 초청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함.
- ※ 주콜롬비아대사는 4.11. 동 당수가 부인 동반하여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하였음을 보고함.
  - 동 당수는 4.17. 주콜롬비아대사 면담 시 5월 중순경 대만(구 자유중국) 초청으로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며 주재국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자신이 상원의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 외무부는 4.23. Turbay 자유당 당수가 금번 대만 방문 기회에 방한하도록 정식 초청할 것을 주콜롬비아대사에게 지시함.
- ※ 외무부는 4.30. 정일권 국회의장 명의 방한초청장을 동 당수에게 전달하도록 주콜롬비아대사에게 지시함.

## 2. 외무부 미주국은 1974.5.9. 의전실 앞 협조문을 통해 콜롬비아 자유당(4.21.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당이 됨) 당수 Turbay 상원의원 일행이 국회의장 초청으로 1974.5.17.~20. 방한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일정주선 및 동 당수에 대한 훈장수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함.

## 3. 외무부는 1974.5.22. 동 당수 일행 7명이 1974.5.17.~21. 방한 일정을 마치고 대만으로 항발하였으며 체한 중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대리,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판문점을 시찰하였음을 주콜롬비아 대사관에 통보함.

- ※ 박정희 대통령은 5.20. 동 당수에게 수교훈장 광화장, 수행한 Virgilio Clano 후보고타 명예총영사에게는 수교 훈장 승례장을 각각 수여함.

# 캐나다 국회의원단 방한, 1974.4.16.-20.

| 74-0336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79 / 14 / 1~103p

394

## 1. 1974년 캐나다 국회의원단(단장: Robert Jardine McCleave 하원 부의장)의 방한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음.

- ※ 외무부는 1973.11.2. 국회가 캐나다 의회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우의증진 및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McCleave 캐나다 하원 부의장 및 하원의원 약간 명을 방한 초청기로 하였음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하고 김진만 국회 부의장 명의 초청장을 전달할 것을 지시함.
- ※ 동 부의장이 11.28. 신년에나 방한이 가능할 듯 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음을 주캐나다대사관을 통해 전달함.
- ※ 1974.2.25. 동 부의장 측은 4월 3주경에 방한할 수 있겠다고 알려옴.
- ※ 캐나다 의원단이 1974.4.16.~20. 방한하며, 동 의원단은 McCleave 부의장(진보보수당)을 단장으로 Alexander Cyr 하원의원(자유당) 등 7명으로 구성된다고 보고함.

## 2. 동 의원단의 1974.4.16.~20. 방한 결과임.

- ※ 방한 일정
  - 도착, 국회의장, 농수산부장관 예방, 김진만 국회 부의장 주최 만찬(4.16.)
  -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한·캐나다 협회장 주최 오찬, 캐나다 참전기념비 헌화, 주한 캐나다대사 주최 만찬(4.17.)
  - 울산 시찰, 부산 유엔군 묘지 참배(4.18.)
  - 선경합섬, 수원 농촌진흥청, 관문점 시찰, 국회의장 주최 만찬(4.19.)
  - 외무부장관 예방, 출발(4.20.)

## 3. 외무부는 1974.4.20. 동 의원단이 외무부장관 예방 시 북한의 도발현황, 서해안 어선 격침사건, PL 480에 의한 미국 곡물 수입재개 등에 관심을 표명하였음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함.

## 4. 본 문서철에는 동 의원단 방한 관련 국회사무처의 외무부 앞 협조요청 문서, 외무부가 작성한 McCleave 부의장 방한에 관한 참고자료, 외무부장관-McCleave 부의장 면담자료(참고사항) 등도 수록되어 있음.



##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단 방한, 1974.7.23.-29.

| 74-0337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남아2
MF번호	C-79 / 15 / 1~43p

1974년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단 방한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음.

1. 외무부는 1973.9.10. Idham Chalid 인도네시아 국회의장 앞 정일권 국회의장의 방한 초청장(9.3.자)을 전달할 것을 주자카르타총영사에게 지시함.
2. 주자카르타총영사는 1973.9.27. Chalid 국회의장을 방문, 국교수립에 있어서의 지원협조에 사의를 표명 하고 방한 문제를 협의함.  
※ 동 의장은 연내 방한은 제반 사정으로 불가능하며 명년에 예산국회가 끝난 후 5월 이후 적절한 시기에 방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3.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74.2.21. 주재국 국회가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의원단 약 5명을 7월 내지 8월에 한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고함.
4. 외무부는 1974.3.15.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단의 방한시기로 7월말이 적당하다는 국회 측의 입장을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통보함.
5.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74.4.5. Sumiskum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의원단(동 부의장 포함 7명의 의원 및 국회사무국 직원으로 구성)이 7월말경 방한 예정임을 보고함.
6. 외무부는 1974.7.2. 국회 측이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단의 1974.7.22.~27. 방한에 동의하였음을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통보함.
7.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74.7.11. 인도네시아 의원단이 7.23. 동경으로부터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며 출발은 7.27. 또는 7.28. 양일 중 한국 국회 측이 정하는 일정에 따르겠다고 함을 보고함.
8. 본 문서철에는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단 방한 관련 국회사무처의 외무부 앞 협조요청 문서, Sumiskum 국회 부의장의 김동조 외무부장관 앞 감사서한(1974.8.10.) 등도 수록되어 있음.

# 이란 국회의원단 방한

| 74-033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중등
MF번호	C-79 / 16 / 1~168p

396

## 1. 1974년 Abdullah Riazi 이란 하원의장의 방한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음.

- ※ 주이란대사관은 1973.8.12. 이란 IPU(국제의원연맹) 사무국장인 Rashti 하원의원이 Riazi 하원의장에 대한 한국 국회의장의 방한 초청장 발송을 희망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 ※ 외무부는 1973.9.25. 정일권 국회의장 명의 방한 초청장(9.15.자)을 동 하원의장에게 전달할 것을 주이란 대사관에 지시
- ※ 주이란대사관은 1974.1.29. 방한 초청을 수락하는 동 하원의장의 정일권 국회의장 앞 서한(1.29.자)을 보고
- ※ 외무부는 1974.4.30. 국회 측의 사정변경으로 동 하원의장 일행의 방한시기를 1974.6월말경으로 재조정할 것을 주이란대사관에 지시
- ※ 주이란대사관은 1974.5.15. 동 하원의장이 영국에서 수술을 받고 요양을 해야 하므로 6월중 방한은 어려우며 10~11월경으로 방한 연기를 희망한다고 보고
- ※ 외무부는 1974.5.29. 동 하원의장의 10~11월경 방한도 무방하다고 주이란대사관에 알리면서 동인의 쾌유를 바라는 정일권 국회의장의 뜻을 전달할 것을 지시

## 2. 이란 국회의원단은 1974.10.28.~11.3. 방한함.

- ※ 국회의장단(총 10명) 구성
  - Riazi 하원의장, Ahmad Bahadori 상원의원 등 국회의원 9명
- ※ 방한 일정
  - 도착, 국회의장 예방 및 만찬(10.28.)
  - 서울시 방문,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및 오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문(10.29.)
  - 울산, 부산 시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주최 만찬(10.30.~31.)
  - 내무부 방문(새마을 브리핑),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판문점 시찰,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11.1.)
  - KBS TV회견, 경희대학교 방문(명예박사학위 수여), 경북궁 등 시내 시찰(11.2.)
  - 국립묘지 참배, 출발(11.3.)

## 3. 외무부는 1974.11.19. 이란 국회의원단의 귀국 후 반응과 공관의 평가를 보고하도록 주이란대사에게 지시함.

- ※ 주이란대사는 11.25. 아래와 같이 보고함.
  - Riazi 하원의장은 귀국 후 한국 측 후대에 극히 감사하다고 말함.
  - 방한 국회의원단 중 상·하원 양원대표는 국회 의사진행 중에 귀국보고를 함.
  - 이란 국내의 권력구조 면에서 의회의 위치가 미약함에 비추어 고도의 외교적 성과는 기대할 수 없으나 북한이 방문 및 초청외교를 적극 실천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에 현저히 뒤떨어진 상태에 있는 한국의 대이란 초청 및 방문외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4. 본 문서철에는 김종필 국무총리의 Riazi 이란 하원의장 면담요록(1974.11.1.), Riazi 하원의장의 정일권 국회의장 앞 감사서한(11.19.) 등도 수록되어 있음.

# 이시이 하지메(石井一) 일본 자민당 아시아·아프리카연구회 의원 방한, 1974.12.26.-28.

| 74-0339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일본담당관
MF번호	C-79 / 17 / 1~25p

## 1. 1974년 이시이 하지메 일본 의원(자민당 아시아·아프리카 연구회 소속)의 방한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음.

- ※ 이시이 하지메 의원은 11.12 주일본대사에게 자신이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여 국무총리, 여야 지도자, 2명의 일본인(하야가와 및 다치가와) 및 김대중을 만나고 싶다면 한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을 경우 일본 외무성을 통해 주선했 것이라고 언급함.
- ※ 외무부는 11.14. 연말연시를 앞두고 예산국회 및 포드 미국 대통령 방한 등 제반 일정이 분망하여 동 의원의 방한이 시기적으로 부적당함을 주일본대사에게 통보함.
- ※ 나카에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차장은 12.18. 이상진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에게 동 의원이 1974.12.25.~26. 경 방한하여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을 면담하고자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동 방문을 주선했을 것을 요청해 왔다고 알려줌.
- ※ 주일본대사관은 12.19. 동 의원을 통한 자민당 AA 그룹과의 접촉 강화 등을 위해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의 일정이 허락한다면 동 의원의 방한을 수락하여 줄 것을 건의함.
- ※ 외무부는 12.20. 동 기간 중 동 의원의 방한은 시기적으로 부적당함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 외무부는 12.21. 수차례에 걸친 동 의원의 방한 희망 표시가 있었고 동 방한이 한·일본 우호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공관의 건의를 참작하여 동 방한을 수락함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2. 주일본대사관은 1974.12.30. 이시이 하지메 의원의 귀국 기자회견(12.28.)과 관련하여 주재국 언론은 김동조 외무부장관이 문세광 처형 후 일본 측이 수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비판하고 조총련이 규제되지 않고 있음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도했음을 보고함.

## 3. 나카에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차장은 1975.1.8. 이상진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에게 이시이 하지메 의원 일행은 방한 시 일선 시찰을 통해 남북한 간의 생생한 대결의 현실과 군사적 위협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하며 이는 동인들이 한국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함.

## 4. 본 문서철에는 이시이 하지메 의원 방한 관련 한국 언론기사 등도 수록되어 있음.

## 일본 사회당 의원단 방한

| 74-0340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Re-26 / 21 / 1~59p

일본사회당 한·일본 경제협력관계 조사단의 방한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음.

1. 외무부는 1973.12.15. 일본 사회당의 요네다 도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한·일본 경제협력 관계 조사단이 연내 방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은 김대중 사건을 가지고 한·일본 각료회의 개최를 방해하여 물의를 야기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아울러 동 조사단이 사증을 신청할 경우 국회가 연말 예산문제 등으로 분망한 때이고 국회의장 이하 간부의 해외여행으로 동 조사단을 영접하기 곤란한 사정임을 들어 사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지시

2. 세오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은 1973.12.18. 우문기 주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에게 동 의원단은 일본 사회당 해외진출기업 조사단으로서 사회당의 김대중 사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요네다 도고 의원을 단장으로 중·참의원 6명으로 구성되며 입국 거절이 초래하는 마이너스보다 입국허가가 가져오는 플러스가 훨씬 큰 것으로 생각한다면 동 의원단에 대한 방한 허가를 요청함.

3. 외무부는 1973.12.18. 일본 사회당 위원단의 방한을 승인 또는 불승인할 경우의 이익 및 불이익을 평가하여 건의할 것을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 주일본대사관은 현 시기에서는 적당한 이유를 들어 방한을 일단 불허하고 향후 적절하고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구체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12.18. 보고

4. 외무부는 1973.12.19. 동 조사단의 입국허가 요청에 대해서는 연말연시가 국내적으로 분주한 시기임에 비추어 내년 1월 중순 이후 적당한 시기에 입국하도록 허가할 방침임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세오 과장은 1974.1.10. 동 조사단이 1974.1.16.~19. 방한할 예정이며 수일 내에 입국허가 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5. 외무부는 1974.1.15.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접수한 동 조사단의 면담대상자 명단이 방한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고 면담대상자가 1.8. 긴급조치 관련자임에 비추어 입국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동 취지를 일본 정부에 설명하고 당분간 동 조사단에 대해 입국사증을 발급할 수 없음을 납득시킬 것을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 주일본대사관은 1.15. 세오 과장에게 동 취지를 설명

6. 세오 과장은 1974.1.17. 우문기 주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에게 사회당 측이 작일 야마다 외무성 정무 차관을 방문, 한국 측이 일본의 제2공당인 사회당 의원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므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항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외무성으로서 입국허가 여부는 주권행사에 관한 문제이므로 추호도 항의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함.

※ 또한 동 과장은 사회당으로서 한국 정부가 지정하는 사람과는 면담을 하지 않는 조건부이라도 입국을 허가하여 주길 바라고 있다고 언급

## Abdul Aziz Al-Massaed 쿠웨이트 국회 외무 위원장 방한 계획

| 74-034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79 / 19 / 1~84p

1974년 Abdul Aziz Al-Massaed 쿠웨이트 국회 외무위원장 방한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음.

1.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는 4.24, Al-Masseed 외무위원장이 한국 측의 공식 초청이 있을 경우 방한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6.26, 국회가 외무위원장 명의로 동인을 방한 초청(방문 시기는 8월 하순 이후 편리한 시기) 키로 하였음을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7.3, Al-Masseed 외무위원장이 1974.8.26.~31. 또는 9.2.~7 중 한국 측에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에 알려왔음을 국회사무처에 통보함.  
※ 국회사무처는 7.16, 방한시기로 1974.9.2.~7.이 가장 적의함을 외무부에 통보
4.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는 8.29, 동 외무위원장의 9.2, 방한이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고함.
5. 외무부는 8.30, 국회 측 사정에 따라 동 외무위원장이 1974.9.23.~30, 방한 예정인 주재국 국회의장단에 합류할 수 없다면 동 위원장에 대한 별도 영접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에 통보함.  
※ 이에 대해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는 동 외무위원장 측이 주재국 국회의장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동 국회의장단 방한 시 합류하기로 하였으나 한국 측에서 항공료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10.1.부터 별도 방한할 경우에도 한국 측의 항공료 부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고
6. 외무부는 10.8, 대쿠웨이트 관계개선의 일환으로 동 외무위원장을 방한 초청하였으나 일정 및 경비 부담 조건 문제로 지연되고 있음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하고, 현재 자국 IPU(국제의원연맹) 대표로 동경에 체류 중인 동인을 접촉, 10.20.~11월초 방한이 가능한지 타진할 것을 지시함.  
※ 주일본대사관은 10.10, 동인이 금번에 방한치 못하게 되어서 섭섭하다고 하면서 11월에 방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을 보고  
- 동인은 개인사정으로 동일 쿠웨이트로 귀국

# Khalid S. Al-Ghunaim 쿠웨이트 국회의장 방한, 1974.9.23.-30.

| 74-0342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C-79 / 20 / 1~212p

Khalid S. Al-Ghunaim 쿠웨이트 국회의장의 방한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음.

## 1.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는 1972.11.22. 대주재국 외교강화 방안의 하나로 주재국 국회의장의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 2. 외무부는 1972.12.20. 내년 4월 방일하는 주재국 국회의장 일행을 방한 초청하고자 하는 뜻을 쿠웨이트 측에 전달할 것을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에 지시함.

- ※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는 1973.5.25. 미확인 정보에 의하면 주재국 국회의원단 방한 안건은 부결되었으며 일본 및 소련 방문만 결정되었다고 보고
- ※ 동 대표부는 6.4. 주재국 국회의장 면담 결과, 한국 측의 방한 초청 안건은 이미 전부터 접수된 여타국으로부터의 초청 관계로 토의되지 못한 것임을 보고

## 3. 외무부는 1974.1.16. 정일권 국회의장 명의 방한 초청장을 쿠웨이트 측에 전달할 것을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에 지시함.

- ※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는 1.23. 주재국 국회의장을 방문, 동 초청장을 전달
- ※ 동 대표부는 6.25. 주재국 국회 본회의가 한국 국회의장의 주재국 국회의장에 대한 방한 초청을 정식 수락하기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 4. Al-Ghunaim 쿠웨이트 국회의장은 1974.9.23.~30. 방한함.

- ※ 방한단 구성  
- Badr D. Al-Ajeell 의원 등 의원 7명 포함 총13명
- ※ 방한 일정  
- 도착(9.23.)  
- 국회의장, 상공부장관,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방문, 국회의장 주최 만찬(9.24.)  
- 울산, 부산 시찰(9.25.~26.)  
- 내무부 방문(새마을 브리핑), 대통령 예방(훈장 수여), 경제기획원장관 주최 오찬, 판문점 시찰,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9.27.)  
- 경복궁 등 관람, KBS-TV 회견(9.28.)  
- 국립묘지 참배, 출발(9.30.)

## 5. 주쿠웨이트통상대표부는 1974.11.9. 주재국 국회의원단이 작성한 방한보고서가 11.5. 주재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주재국 정부 전 각료에게 발송되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Tolbert, Frank E. 라이베리아 상원의장 방한, 1974.10.12.-16.

| 74-034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C-79 / 21 / 1-10p

1. Frank E. Tolbert 라이베리아 상원의장은 1974.8.22. 주라이베리아대사를 방문하여 박준규 의원 (IPU(국제의원연맹) 한국대표단장)의 방한 초청(1974.4.15.자 서한)을 수락하는 회신을 7.20. 발송하였다고 언급함.

※ 주라이베리아대사는 동 의장이 현 주재국 대통령의 친형일 뿐만 아니라 유력한 친한 인사인 점을 감안하여 방한 시 동인에 대한 각별한 후대를 외무부에 건의

※ 동 의장은 동경에서 개최되는 IPU 회의(1974.10.2.~11.)에 Howard 하원의원 등 의원 3명과 함께 참석 후 방한 예정

402

2. 외무부는 1974.9.2. 상기 주라이베리아대사의 건의내용을 국회사무처에 통보함.

3.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974.9.26. Tolbert 상원의장 일행이 동일 출발하였으며 의원 2명을 추가로 대동하여 방한할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4. 주일본대사관은 1974.10.9. Tolbert 상원의장 일행이 10.12. 서울 향발하며 주한 라이베리아대사(동경 상주)도 이들을 수행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노르웨이 국회 상무해운 분과위원회 의원단 방한계획

| 74-034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복구담당관
MF번호	C-79 / 22 / 1~13p

1. 주노르웨이대사는 1974.6.10. Gablielsen 노르웨이 국회 상무·해운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동 분과위원회 의원단이 8.27.부터 약 2주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 의원단에 대한 방한 초청 가능성을 문의함.
2. 국회사무처는 1974.7.25. 동 노르웨이 의원단 방한 초청 의사를 노르웨이 측에 전달하고 동 초청이 수락될 경우 국회 측 초청자 명의 등을 파악하여 알려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3. 주노르웨이대사는 1974.8.27. Gablielsen 위원장이 동 의원단의 일본 방문 직후 주재국 국회 개회일정 등으로 방한 초청을 수락할 수 없게 되어 유감이라는 뜻을 전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0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미국 외교정책협회 '순방세미나 주의원단' 방한, 1974.11.17.-20.

| 74-034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80 / 1 / 1~144p

## 1. 1974.6.12. 외무부 북미1과가 작성한 미국 주 의원단의 방한 및 세미나 참석계획에 관한 보고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미국 외교정책협회(Foreign Policy Association)의 중서부 책임자 Norman W. Pilgrim은 동 협회가 연례적으로 주관하는 주 의원단 순방세미나(LITS: Legislator's International Travel Seminar) 계획에 따른 방한 계획을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 미국 외교정책협회는 1918년 창설된 외교문제 연구 및 계몽 단체이며, 57개의 미국 저명기업이 재정적 지원 제공
- ※ 1974년도 동 협회의 순방세미나(LITS 74-East Asia) 계획
  - 순방국: 한국,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 홍콩
  - 방한 기간: 1974.11.17.~20.경
  - 방한 인사: 주 의원 약 20~30명
- ※ 방한 중 활동
  - 정부기관 또는 권위 있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세미나 참석, 지도적 인사와의 의견교환, 한국 실정 파악 등
- ※ 세미나 희망주제
  - 한·미국 통상관계, 농업발전, 도시계획, 인구문제 등
- ※ 동 순방세미나 계획 예비조사차 Pilgrim 중서부책임자가 1974.7월 방한 예정

## 2. 상기 미국 주 의원단은 1974.11.17.~20. 방한함.

- ※ 방한단 구성
  - John H. Clark 아이오와주 하원의원(부부동반) 등 총26명
- ※ 방한 일정
  - 도착(11.17.)
  - 국무총리 예방, 국회의장 예방, 외무부장관 예방 및 외교문제에 관한 간담회,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주한 미국대사관 방문, 주한 미국대사주최 리셉션(11.18.)
  - 분야별 세미나 참가(내무부 주관 농촌개발 문제, 서울시 주관 주택·교통 등 도시 문제, 남북조절위원회 주관 남북한 문제, 한미경제협의회 주관 한·미국 경제문제), 판문점 시찰, 외무부장관 주최 카테일 뷔페(11.19.)
  - 국립박물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방문, 출발(11.20.)

# 미국 의회의원 방한

| 74-0346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80 / 2 / 1~152p, 2010-87 / 22 / 1~3p

1. William Broomfield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의원(공화당, 미시간주) 및 Clement Zablocki 의원(민주당, 위스콘신주)이 1974.2.20.~23. 방한함.

2. Hiram Fong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의원(공화당, 하와이주)의 1974.10.11.~12. 방한 내용임.

- ※ 주미국대사는 1974.10.2. 동 의원이 IPU(국제의원연맹) 회의와 관련, 일본 방문 후 방한할 의향이 있다고 알려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 ※ 주요 방한일정
  - 도착, 미8군 방문,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예방, 국회의장 주최 만찬(10.11.)
  - 주한 미국대사관 안내로 판문점 시찰, 대만(구 자유중국) 향발(10.12.)

3. Richard Moose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이 1974.10.23.~26. 방한하였으며 방한 기간 중 주한 미군 및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업무협의를 가짐.

4. Strom Thurmond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및 William Scott 의원(공화당, 버지니아주)이 1974.12.29.~31. 방한함.

- ※ 주미국대사는 9.9. Thurmond 상원의원이 자신에 대한 방한 초청이 유효하면 방한 중 명예박사학위 및 훈장을 수여받고 일선 시찰을 희망한다고 알려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 ※ 외무부는 9.10. 동 의원에 대한 방한 초청이 유효함을 주미국대사에게 통보
- ※ Boardman 주한 미국대사관 2등서기관은 12.17. Scott의원도 Thurmond 의원과 함께 방한함을 외무부 북미 과장에게 통보
- ※ 주요 방한일정
  - 도착, 미8군사령부 브리핑, 휴전선 비무장지대 시찰(12.29.)
  - 외무부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통령 예방, Thurmond 의원에 대한 명예박사학위 수여(연세대),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12.30.)
  - 출발(12.31.)

5. Lester Wolff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의원(민주당, 뉴욕주) 및 Herbert Burke 의원(공화당, 플로리다주)이 1974.12.29.~75.1.1. 방한함.

- ※ 방한 일정
  - 도착(12.29.)
  -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예방, 동 의원들에 대한 명예박사학위 수여(한양대), 국회의장 주최 만찬(12.30.)
  - 국무총리, 대통령 예방(12.31.),
  - 출발(75.1.1.)

## 미국 하원의원단 방한, 1974.4.15.-17.

| 74-0347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80 / 3 / 1~247p

406

### 1. 미국 하원의원단(단장: Thomas P. O'Neill, Jr. 민주당 원내총무)의 방한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 ※ 주미국대사관은 1973.10.15. 동 의원단이 1973.11.24.~27.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
- ※ 외무부는 10.30. 동 의원단의 방한 목적이 임무수행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방미 국회의원단의 초청에 의한 것인지 보고토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
- ※ 주미국대사관은 10.30. 미국 하원 관계자에 의하면 한국 국회의원단의 방미에 앞서 국회의장으로부터 미국 하원 의원단의 방한 초청이 있었으며 방한에 앞서 한국 국회의원단을 미리 초청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난번 한국 국회의원단을 초청했던 것이라고 함을 보고
- ※ 주미국대사관은 11.7. 미국 하원 측이 동 의원단의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태국 등 방문계획을 1974. 1.4. 이후로 연기한다고 알려왔음을 보고,
- ※ 주미국대사관은 1974.3.22. 동 의원단이 1974.4.15.~17. 방한 예정임을 보고  
- 하원의원 23명, 전문위원 및 기타 수행원 10명, 대부분 배우자 동반 방한
- ※ 외무부는 3.25. 미국 하원의원단(일행 60명)이 4.15.~17. 전용기편으로 방한 예정임을 국회사무처에 통보

### 2. 외무부가 1974.4월 작성한 한·미국 의원 간담회(1974.4.17., 조선포텔) 참관보고서의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금번 방한 의원단의 2대 관심사는 한국의 안전보장 및 국내문제로 보임.
- ※ 안전보장에 있어서는 북한의 침공 가능성이 1968년도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증가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며, 무장간첩 남파의 기록은 줄고 강대국 간 동서화해 정책이 진전되는 여건에서 북한이 남한을 침공,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가진 것으로 보임.
- ※ 국내문제에 대하여는 학생 소요가 공산당의 지령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의문을 가진 것으로 보임.
- ※ 동 간담회에서 한국 측은 북한 공산당의 유례없는 호전성 및 한국정치의 특수성에 대해 강력히 주장함.

### 3. 외무부가 1974.4월 작성한 한·미국 의원 간담회 참고자료의 주요 목록은 아래와 같음.

- ※ 대외문제  
- 남북한 관계, 한국의 안보, 한·미국 경제협력, 한·미국 통상관계
- ※ 국내문제(미국 의원단이 관심을 표명하게 될 사항)  
- 김대중 사건, 대통령 긴급조치와 일부 학생 등에 관한 문제
- ※ 방한한 미국 하원의원의 대한민국 태도

# 한·일본 의원간친회 총회, 제3차. 서울, 1974.5.4.

| 74-034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80 / 4 / 1~104p

## 1. 제1무임소장관실은 1973.7.11. 한·일본 의원간친회 일본 측 회원의 동향 등을 외무부에 통보함.

- ※ 일본 측 회원인 중·참 양원의원 55명이 7.9. 아래와 같이 결의
  - 제3차 총회를 1973.9.15.~20. 사이에 서울에서 개최
  - 일·조 의원연맹 일본 측 대표 중심으로 추진 중인 북한 방문계획을 적극 저지
  - 중국·소련 등 공산국이 한국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때까지 대북한 접촉을 확대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 등
- ※ 일본 민사당 위원장 일행이 8월말 국무총리 초청으로 방한 시 대통령 예방 주선 요청

## 2. 제1무임소장관실은 1974.3.21. 제3차 한·일본 의원간친회 총회가 5월초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소관 자료 협조를 요청함.

- ※ 외무부는 4.22. 아래 문제에 관한 자료를 제1무임소장관실에 송부
  - 在樺太(재화대) 교포 귀환문제, 유골 봉환문제,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문제 등

## 3. 외무부가 1974.4.22.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본 의원간친회(1974.5.3.~4.)를 위해 작성한 일본 정세와 한·일본 간 주요 현안문제에 관한 자료(안)의 주요목록은 아래와 같음.

- ※ 최근의 일본 정세
  - 국내 정세 및 전망, 대외정책, 대한반도 정책
- ※ 한·일본 간 주요 현안 문제
  - 在樺太(재화대) 교포 귀환문제, 유골 봉환문제, 재일 한국인 문제,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문제, 한·일본 간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 긴급피난 및 해난구조 협정 체결 문제
- ※ 대일 정책의 기본방향

## 4. 본 문서철에는 1974.5.4. 한·일본 의원간친회 공동성명(국문 및 일본어), 한국 언론기사, 문교부 작성한 한·일본 의원 간친회 자료(서울대 공대 시설확충을 위한 일본정부 무상원조 추진) 등도 수록되어 있음.

## 한·세네갈 의원친선협회

| 74-0349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C-80 / 5 / 1~34p

1. 주세네갈대사는 1973.6.26. Amadou Cisse Dia 세네갈 국회의장이 양국 국회의원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의원친선협회의 창설을 제의하고 한국 국회의장이 정식 제의하면 세네갈 측 대표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한국 국회의장의 의원친선협회 창설 제의 공한을 송부해 줄 것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73.6.30. 동 의원친선협회 창설 실현을 위한 협조를 국회사무처에 요청함.

- ※ 국회사무처는 7.6. 동 협회 결성에 찬성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동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그 발족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니 이를 세네갈 의회에 설명해 줄 것을 외무부에 통보
- ※ 외무부는 10.26. 동 협회 결성을 제의하는 정일권 국회의장의 Amadou Cisse Dia 국회의장 앞 공한 (1973.10.18.자)을 주세네갈대사관에 송부  
- 동 국회의장은 11.6. 한국 측 제안에 찬성하는 회한을 정일권 국회의장 앞으로 발송

3. 국회사무처는 1973.11.8. 1973년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18. 이전에 동 의원친선협회가 결성되기를 희망함을 외무부에 통보함.

- ※ 주세네갈대사는 11.13. 주재국 국회 사무총장을 방문하여 동 의원친선협회 창설문제를 협의
- ※ 동 대사는 11.15. 주재국 국회가 세네갈 측 의원단을 발족시키겠다고 하였으므로 한국 측에서도 의원단을 발족시켜 이를 주재국 측에 통보할 것을 건의

4. 외무부는 1973.12.15. 국회사무처가 현재 국회가 계류 중인 안건처리 때문에 동 의원친선협회를 결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내년에 동 협회를 결성하고자 한다는 회신을 보내왔음을 주세네갈대사관에 통보함.

5. 외무부는 1974.9.12. 김용태 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국회의원 친선사절단의 세네갈 방문 시 동 의원친선협회 구성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며 가급적 9월말 이전에 양측 의원단이 공동 발족되도록 추진할 것을 주세네갈대사에게 지시함.

# 천명성(詹明星) 대만(구 자유중국) 동아시아 · 태평양 부국장 방한, 1974.3.26.

| 74-035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C-80 / 6 / 1~10p

## 1.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는 1974.3.26. 방한 중인 Chan Ming-Shing 대만(구 자유중국) 동아시아 · 태평양부국장과 면담을 가짐.

- ※ Chan 부국장은 김동조 외무부장관 취임 이래 부산영사관 설치 등의, 국제통신위성기구 회의 및 아시아개발 은행 회의에서의 대만 입장 지지 등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근래 한국 국회의원과 민간인사의 대만 방문이 많으며 양국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함.
- ※ 김정태 차관보는 양국 관계는 정치적으로 친선 관계이지만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경제 관계를 강화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양국 정부가 자국 실업가들에게 한국과 대만 간 교역을 증진할 것을 권장함이 좋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동 부국장은 대만은 과거 일본에 너무 치중하였으나 근년에는 다른 나라에 분산시킴으로써 일본의 영향을 덜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이 요망된다고 언급

## 2. 본 문서철에는 한 · 대만 간 통상 및 경제협력에 관한 아래 자료들도 수록되어 있음.

- ※ 양국 무역량의 확대와 무역 불균형 시정
  - 1974년 한국의 대대만 수출 목표액은 6,600만 달러인 바, 이는 1973년 실적 4,410만 달러에 비해 50% 증가
- ※ 펄프 안정공급
  - 한국의 1973년도 신용장 기개설분 6,100톤 중 미선적된 3,000톤 공급 요망
- ※ 원당 공급 최대 보증량 확장
  - 한국의 1974년도 수요량은 30만 톤인 바, 현행 계약내용은 연간 공급 보증량이 최하 20만 톤에서 최고 25만 톤이므로 국내 수요량 확보를 위해 최대 보증량 확장 요망

## 도미니카공화국 주요인사 방한

| 74-035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국제연합
MF번호	C-80 / 7 / 1~50p

### 1. Alfredo Miciades Dalmau Mendoza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주재 명예총영사가 1974.11.12.~17. 방한함.

- ※ 주베네수엘라대사(도미니카공화국 겸임)는 1974.10.15. 동 명예총영사가 11월 한국을 방문할 뜻을 전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외무부 인사와의 면담추진 등을 건의함.
- ※ 주유엔대사는 10.18. 금년도 유엔 한국 측 결의안에 도미니카공화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동국 외무성 방교국장을 면담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 명예총영사와 함께 방한하는 Hernandez가 동 명예총영사의 사위이자 동 국장의 아들임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건의함.
- ※ 외무부는 11.18. 동 명예총영사 일행이 방한 기간 중 외무부차관, 외무부 미주국장 및 통상국장 예방, 외무부 경제차관보 주최 오찬 참석, 산업 시찰,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문 등의 일정을 가졌다고 주베네수엘라 대사관에 통보함.

### 2. 주유엔대사는 1974.11.1. 주유엔 도미니카공화국대사가 10.30. 서한으로 자신의 후임자로 예상되는 Paxe Francisco Carias Dominici 주이탈리아 도미니카공화국대사가 로마 재임 중에 자신을 대신하여 방한 초청 받게 되기를 요망해 왔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주이탈리아대사에게 동인의 방한 초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 동 초청 여부를 결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견해를 제시함.

- ※ 주이탈리아대사는 11.7. 현지 주재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가 주유엔 도미니카공화국대사로 전임하기 위한 수속을 취하고 있고 유엔 부임 전 방한에 큰 의욕을 보이고 있으므로 동인을 방한 초청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는 의견을 외무부에 보고함.
- ※ 주유엔대사는 11.20. 외무부장관의 11.16. 뉴욕 출발 전 지시에 따라 동 대사를 방한 초청하도록 주이탈리아대사에게 지시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Alvarado Sagastume, Alfredo 온두라스 'Tegucigalpa' 시장 방한, 1974.6.7.-10.

| 74-035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80 / 8 / 1~30p

1. 주멕시코대사(온두라스 겸임)는 1974.5.24. Alfredo Alvarado Sagastume 온두라스 테쿠시갈파 시장의 일본 및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기회를 이용하여 동 시장을 방한 초청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1974.5.25. 대만을 방문 중인 Alfredo 시장을 체재비 부담 조건으로 방한 초청하기로 하였음을 주대만대사에게 통보하면서 동 시장의 서울 도착일정 등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함.

※ 주대만대사는 5.29. 동 시장 접촉 결과, 동인은 한국 측의 초청을 수락하고 대만에서의 공식 일정(아시아·태평양지역 시장 회의)이 끝나는 6.3. 동경 방문 후 6.7. 방한하겠다고 함을 보고

3. Alfredo 대만 시장(부부 동반)은 1974.6.7.~10. 방한함.

※ 방한 일정

- 도착(6.7.)

- 서울시장,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 정무차관보 예방 및 오찬, 문화공보부 방문, 기아산업 시찰, 주한 온두라스명예영사 주최 만찬(6.8.)

- 현충사 방문, 서울시내 시찰(6.9.)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문, 출발(6.10.)

4. 본 문서철에는 1974.6월 외무부 미주국이 작성한 동 시장 면담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음.

## 인도네시아 주요인사 방한

| 74-035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담당관/국제연합
MF번호	C-80 / 9 / 1~11p

### 1.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73.9.25. 아래 주재국 유력인사들을 1974년도에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 군부
  - 스미모토 안전질서유지사령관 겸 통합군부사령관 대장, 수로노 육군참모총장 등
- ※ 대통령 측근 인사
  - 대통령 정치담당 특별보좌관 모도포 장군 등
- ※ 국회
  - 이담 하리드 국회의장, 한·인도네시아 의원연맹 간부 5명 정도
- ※ 정부
  - 아리핀 외무성 경제담당 차관보
- ※ 언론인 약 5명
- ※ 스켈달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

### 2.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74.9.10. Abdullah Kamil 인도네시아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가는 길에 3박4일 예정으로 9.18. 또는 9.19.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 국장에 대한 편의 제공을 건의함.

- ※ 주인도네시아대사는 9.13. 동 국장이 일정을 앞당겨 1974.9.17. 방한함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건의

# 구와바라 미끼네(桑原幹根) 일본 아이찌(愛知)현 지사 방한, 1974.5.21.-24.

| 74-0354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일본담당관
MF번호	C-80 / 10 / 1~32p

1974년 구와바라 미끼네 일본 아이찌(愛知)현 지사의 방한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음.

1. 외무부는 1974.3.16. 이병희 무임소장관이 동 지사에 대한 수교훈장 광화장(1등급) 서훈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 서훈 추천 이유는 동 지사가 일·조 의원연맹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신규 가입을 저지하거나 기가입자의 탈퇴를 유도하는 한편 한·일 친선협회를 배후에서 지원

2. 외무부는 1974.3.19. 구와바라 미끼네 지사에 대한 이병희 무임소장관 명의의 초청장이 3.11. 주일본 대사관에 발송되었으며 동 지사는 5월 중순 이후 방한할 예정이라고 함을 주나고야총영사관에 통보함.

3. 주일본대사는 1974.3.20. 구와바라 미끼네 지사의 한·일본 친선협회 고문으로서의 헌신적 노력과 일·조 의원연맹 활동 저지 및 협정 영주권 신청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 현저한 공적에 비추어 동 지사에 대한 서훈에 동의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4. 주나고야총영사가 1974.3.25. 구와바라 미끼네 지사를 방문하여 이병희 무임소장관의 초청장을 전달 한데 대해 동 지사는 1974.5.21.~24. 부부동반으로 방한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고 방한 일정 작성에 있어서 부산, 경주 등의 고적 방문이 포함되기를 희망함.

5. 주나고야총영사는 1974.3.30. 구와바라 미끼네 지사(부부 동반)가 수행원 2명을 대동하여 1974.5.21.~24. 방한하며 동 일행과는 별도로 아이찌현 의회 한·일본 의원연맹 간부 3명이 동 지사 일행과 함께 방한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6. 주나고야총영사대리는 1974.5.21. 구와바라 미끼네 지사 일행 7명이 예정대로 출발하였다고 보고함.

# 다카시마(高島益郎)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74.6.6.-11.

| 74-0355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C-80 / 11 / 1~47p

## 1. 외무부는 1972.2.26.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한·일본 간 정보 및 정책 협의를 위한 외무실무자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구상하는데 대한 일본 측 의견을 타진할 것을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 마에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차장은 1972.3.13. 신정섭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에게 외무 실무자회의에 대한 일본 측 의견을 아래 요지로 언급함.

- 한국 측 구상에 대해 그 기본정신은 환영하나 국장급 레벨의 실무자회의를 제도화하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기회를 이용하는 것. 예컨대 한국 측에서 아주국장이 미국, 월남 등 출장 기회에 일본을 방문, 아시아국장을 만난다든지 또는 일본 외무성 조사부장이 한국 관계기관과의 정보교환 협의를 위해 방한할 기회에 외무부 아주국장 또는 정보문화국장을 만난다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함.
- 제도화된 회의기구를 만들어 상호간에 얽매이는 것보다 신축성 있게 회합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2. 주일본대사관은 1974.5.20. 다카시마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이 6월 초순 방한을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주일본대사관은 5.30. 다카시마 국장이 당초 예정(6.4~9.)보다 늦추어 6.6~11. 방한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함.

※ 또한 주일본대사관은 5.30. 동 국장이 주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아래 요지로 언급했음을 보고함.

- 일본 언론에서 마치 자신이 기소된 2명의 일본학생 문제 관련 특별교섭을 위해 방한하는 듯이 보도하고 있어 매우 당혹스러움.
- 자신은 아시아국장으로서 한국 내 여러 인사들의 양국관계에 관한 견해를 듣고 현지 실정을 직접 파악하려는 견지에서 방한하는 것임을 일본 언론에 충분히 설명하였음.

## 3. 다카시마 국장은 1974.6.6.~11. 방한함.

※ 동 국장은 6.7. 지성구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시 지성구 국장이 한·일본 양국 아주국장회의를 갖는데 대한 의견을 문의한데 대해 국·과장 실무레벨에서 조금 더 흥금을 터놓고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 4. 본 문서철에는 1974.6.7. 지성구 외무부 아주국장의 다카시마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 면담요록 등도 수록되어 있음.

#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관련 일본 유력 인사 방한

| 74-035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C-80 / 12 / 1~77p

1. 외무부는 1974.5.17.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와 관련된 유력 일본인 약간 명을 1974년 중 방한 초청 하고자 함을 일본지역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주일본대사관이 초청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함.
2. 주일본대사관은 1974.6.1. 초청 대상자로 이다가키 다케시 삿포로시장, 다케무라 데루오 법무성 입관국 차장, 미츠다미 노보루 미에현 구와니시시장 등을 건의함.
3. 1974년 이다가키 다케시 삿포로 시장 방한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음.
  - ※ 외무부가 6.22. 이다가키 시장을 4박5일 일정으로 7월 중순 방한 초청하고자 함을 주삿포로총영사에게 통보하고 동 초청 수락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 ※ 동 총영사는 6.25. 동 시장이 방한 초청을 쾌히 수락하였으며 1974.7.9.~13. 방한을 희망함을 보고함.
  - ※ 동 시장(부부동반)은 1974.7.9.~13. 방한함.
    - 도착, 외무부 영사국장 주최 만찬(7.9.)
    - 외무부 방문, 장기영 IOC(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예방, 경희대학 방문(삿포로대학과 자매결연), 고궁 시찰, 서울시 부시장 주최 만찬(7.10.)
    - 대구시장 예방(대구 청년회의소와 삿포로 청년회의소 자매결연), 경주 시찰(7.11)
    - 울산, 부산 시찰(7.12.)
    - 출발(7.13.)
4. 외무부는 1974.7.9. 일본 법무성 입관국 관계관(다케무라 차장 외 2명)을 방한 초청코자 함을 주일본 대사관에 통보하고 일본 측과의 협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함.
  - ※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이 8.7. 다케무라 차장을 방문, 방한 초청 수락을 요청한데 대해 동 차장은 현 시점에서는 한국 측 초청을 수락하기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언급함.
  - 동 차장은 한·일 관계가 과거보다 여러 면에서 복잡해졌으며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상호이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법무성 사정상 공식 방문이 어려울 경우 10월경 휴가 형식을 취하여 서라도 방한하고 싶다고 언급
5. 본 문서철에는 1974.6.20. 일본인 유공자 방한 초청 관련 해당인사 공적서 등에 관한 주일본대사관의 보고문서도 수록되어 있음.

# Kariuki, J.M. 케냐 관광성차관 방한, 1974.6.2.-7.

| 74-0357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C-80 / 13 / 1~61p

J.M. Kariuki 케냐 관광성차관이 1974.6.2.~7. 방한함.

## 1. 방한 경위 및 목적

- ※ 1973.9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IMF(국제통화기금) 및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한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Kariuki 차관이 주최하는 만찬에 초대받았으며, 동 만찬시 동 차관이 방한 의사를 표명함.
- ※ 남덕우 장관이 1974.3월 방한 초청장을 주케냐대사관을 통해 동 차관에게 전달함.  
- 동 차관은 방한 시 한국 정부 지도자들과 면담하고 한국의 산업, 공업의 발전을 시찰하기를 희망함.

416

## 2. 방한 일정

- ※ 6.2.  
- 도착
- ※ 6.3.  
- 부총리,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교통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 예방, 교통부장관 만찬
- ※ 6.4.  
- 건설부장관 예방, 교통부차관 만찬
- ※ 6.5.  
- 동명목재, 금성사, 울산정유공장, 한국비료, 현대조선소 등 시찰
- ※ 6.6.  
- 경주 고적 관광, 재무부장관 만찬
- ※ 6.7.  
- 출발

## 3. 케냐 도착 기자회견

- ※ Kariuki 차관은 1974.6.10. 공항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극구 찬양하고, 케냐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연구하고 모방해야 하며 앞으로 한국과 더 깊은 경제적인 유대를 가 져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동 차관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하여 케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각 정부부처에 널리 소개하겠다고 말함.

# Molapo, Charles Dube 레소토 보건교육사회 장관 방한, 1974.4.15.-20.

| 74-0358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아프리카
MF번호	C-80 / 14 / 1~83p

Charles Dube Molapo 레소토 보건교육사회장관이 1974.4.15.~20. 방한함.

## 1. 방한 경위

- ※ 1973.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시 이경호 보건사회부장관(당시)이 레소토 수석대표인 Molapo 장관을 방한 초청함.

## 2. 방한 의의

- ※ 양국간 우호증진
- ※ 의료협력 등 공동관심사 협의
- ※ 친한 인사 확보

## 3. 방한 일정

- ※ 4.15.
  - 도착
- ※ 4.16.
  - 보건사회부장관 및 외무부차관 예방
- ※ 4.17.
  - 의료원, 경희의대, 성모병원 등 시찰
  - 보건사회부장관 명의 만찬(보건사회부 차관 참석)
- ※ 4.18.
  - 사대부속초등학교 및 경기고등학교 시찰
  - 외무부차관 오찬
  - 선경직물 및 삼성전자 시찰
- ※ 4.19.
  - 한국의사협회 방문
  - 유한양행 및 부녀직업보도소 시찰
- ※ 4.20.
  - 출발

# Shahaty, Ahmad 리비아 아랍사회주의연맹(Arab Socialist Union) 정치국장 방한 초청 계획

| 74-035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담당관
MF번호	C-80 / 15 / 1~10p

1. 외무부는 미수교 아랍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1974.6.26.~8.10.간 중동 5개국을 순방한 바 있는 유정열 박사(한국·아랍 친선협회 회장)와 1974.9.8.~21. 리비아를 방문한 주튀니지 대사의 건의에 따라 아래 리비아 유력인사에 대한 방한 초청을 추진하기로 1974.10월 결정함.

- ✽ Bashir Hawady 아랍사회주의연맹 사무총장
- ✽ Ahmad Shahaty 아랍사회주의연맹 정치국장
- ✽ Mahmoud Subuhi 리비아 이슬람협회장

418

2. 외무부는 1974.11월 “한국·아랍 친선협회” 회장 명의의 초청장을 피초청인에게 전달하도록 주튀니지대사관에 지시함.

- ✽ 피초청 인사
  - Bashir Hawady 아랍사회주의연맹 사무총장
  - Ahmad Shahaty 아랍사회주의연맹 정치국장
  - Mahmoud Subuhi 리비아 이슬람협회장
  - 리비아 외무성 고위인사
- ✽ 전달 방법
  - 리비아에 거주하는 Zeid J.H. Yi 에게 전달하여, 동인이 피초청자에게 각각 전달하도록 조치
  - 유정열 박사는 초청장과 더불어 피초청인에 대한 한국·아랍 친선협회 명예회원증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나, 명예회원증을 초청장과 함께 전달



# Walter, Harold H. 모리셔스 보건장관 방한, 1974.1.10.-12.

| 74-0360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C-80 / 16 / 1~161p

Harold H. Walter 모리셔스 보건장관이 1974.1.10.~12. 방한함.

## 1. 방한 경위

- ※ Walter 모리셔스 보건장관은 1973.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 모리셔스 수석대표로 참석하였고 이경호 보건사회부장관(당시)은 동 장관을 정식으로 방한 초청함.
- ※ 1973년 가을 제28차 유엔총회 시 모리셔스 수석대표였던 동 장관을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교섭과 관련하여 재차 방한 초청하게 됨.

## 2. 방한 일정

- ※ 1.10.
  - 도착
  - 보건사회부장관 예방 및 만찬
- ※ 1.11.
  -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예방
  - 유한양행, 중앙의료원 및 국립박물관 시찰
- ※ 1.12.
  - 판문점 방문
  - 출발

## 3. 특기 사항

- ※ Walter 장관은 1974.1.11. 김동조 외무부장관 면담 시 양국간 기술협력 테두리 내에서 한국의 유능한 태권도 사범의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호의적 고려를 약속함.

# Kelly, Frank J. 주 Managua(니카라과) 명예 총영사 방한, 1974.10.23.-30.

| 74-036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80 / 17 / 1~26p

Frank J. Kelly 주 Managua(니카라과) 명예총영사가 1974.10.23.~30. 방한함.

## 1. 방한 일정

- ※ 10.23.  
- 도착
- ※ 10.24.  
- 대구 및 경주 방문
- ※ 10.25.  
- 포항 종합제철 및 울산 현대조선소 시찰
- ※ 10.26.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대한항공 방문, 주한 니카라과명예총영사 주최 만찬
- ※ 10.27.  
- 국립묘지 헌화, 관문점 시찰
- ※ 10.28.  
- 외무부장관, 외무부 정무차관보 및 미주국장 예방
- ※ 10.29.  
- 출발

## 2. 특기 사항

- ※ Kelly 명예총영사는 방한 기간 중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흥인장을 수여받음.
- ※ 동 명예총영사는 1974.11.8. 주멕시코대사에게 금번 방한 시 훈장수여 등 각별한 환대를 받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에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을 위해 일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여기고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함.
- 또한 동 명예총영사는 귀국 후 Somoza 장군(대통령 당선자)에게 방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동 장군은 양국의 굳건한 유대관계에 큰 만족을 표시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한국의 발전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였다고 전함.

# De La Puente Radbill, Jose 페루 외무성 경제 차관보 방한, 1974.11.6.-11.

| 74-036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80 / 18 / 1~32p

Jose De La Puente Radbill 페루 외무성 경제차관보가 1974.11.6.~11. 방한함.

## 1. 방한 일정

- ✿ 11.6.
  - 도착, 외무부장관 대리(차관) 예방, 경제차관보 면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문
- ✿ 11.7.
  - 경제기획원 차관보 방문, 외무부차관 오찬, 상공자원부장관 예방, 기아산업 시찰
- ✿ 11.8.
  - 울산 현대조선소 및 포항 종합제철 시찰
- ✿ 11.9.
  - 경주 방문
- ✿ 11.10.
  - 관문점 시찰
- ✿ 11.11.
  - 출발

## 2. 특기 사항

- ✿ Radbill 차관보는 귀국 후인 1974.11.21. 주페루대사와 자신의 방한 결과 및 유엔문제에 대해 요담함.
  - 동 차관보는 자신의 방한이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상과 한국이 북한과는 달리 자유분방한 사회라는 점에서 감명을 받았다고 말함.
  - 유엔문제에 대하여는 자신을 포함한 외무성 간부들이 한국 측안 지지를 강력히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우선 기권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므로 한국 측안 지지를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말함.
  - 이에 대해 주페루대사는 한국 측 입장을 현실성과 정당성을 재차 설명하면서 페루가 한국 측안을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Sheikh Abdul Aziz Thunayan 사우디아라비아 'Riyadh' 시장 방한 계획

| 74-036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근동담당관
MF번호	C-80 / 19 / 1~23p

1. 1974.4.28.~5.4.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한국 중동지역 경제협력사절단(단장: 상공자원부장관)은 수도인 Riyadh시의 Sheikh Abdul Aziz Thunayan 시장 방문 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다각적인 협력 추진의 일환으로 양국 수도(서울시와 Riyadh시) 간의 자매결연 및 양 시장의 상호 방문을 제의한 바, Thunayan 시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수락함.
2. 외무부는 1974.5월 서울시에 공한을 송부하여 서울시가 Thunayan 시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방한할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는 동시에 양 도시 간의 자매결연 문제를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서울시는 1974.6월 아래 요지의 서울시장 명의 Thunayan 시장 앞 방한 초청장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을 통하여 Riyadh시에 전달함.
  - ※ 귀하와 부인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의 수도 서울을 방문하여 주실 것을 공식 초청함.
  - ※ 한국 상공자원부장관이 귀지를 방문했을 때 서울시와 Riyadh시의 자매결연과 양 시장의 상호 방문에 관하여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음.
  - ※ 귀하의 서울시 방문은 양 도시 간의 이해 증진과 유대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 De Geer, Carl 스웨덴 외무성 차관보 방한, 1974.3.21.-23.

| 74-0364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서구2
MF번호	C-80 / 20 / 1~32p

Carl De Geer 스웨덴 외무성 차관보가 1974.3.21.~23. 방한함.

## 1. 방한 경위

- ※ 외무부가 대북구 외교강화책의 일환으로 북구지역의 유력인사 방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주스웨덴 대사관이 1972.12.19. Carl De Geer 차관보에게 방한 초청을 시사하였던바, De Geer 차관보는 이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함.
- ※ 주스웨덴대사관이 1973.2.20. 동 차관보에게 방한 초청 공한을 발송하였고 동 차관보는 1973.9월 방한을 희망함.
- ※ 1973년 추진되던 동 차관보의 방한 계획이 스웨덴의 북한 승인 조치 후 일단 보류되었으나, 1974년 들어 동 차관보가 방한 의사를 다시 표명함.

## 2. 방한 일정

- ※ 3.21.
  - 도착, 외무부 경제차관보 면담, 상공자원부차관 면담.
- ※ 3.22.
  - 외무부장관대리(차관) 및 경제기획원차관 예방,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예방 및 만찬
- ※ 3.23.
  - 출발

## 3. 특기 사항

- ※ De Geer 차관보는 1974.3.21. 외무부 경제차관보 면담 시 스웨덴 측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협력분야는 조선, 강철, 광산, 제지 및 펄프, 석유화학 등 5개 분야라고 밝히고 이 분야에서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함.
- ※ 동 차관보는 3.22. 외무부장관대리 면담 시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 특히 급속한 수출증대에 경의를 표하고, 한국의 중화학공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방한 중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앞으로 협조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함.

# 스리랑카 불교 지도자일행 방한, 1974.9.9.-14.

| 74-036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C-80 / 21 / 1~121p

스리랑카 불교지도자인 S.N.D.M. Thera 종정 외 2명의 고승이 1974.9.9.~14. 방한함.

## 1. 방한 경위

- ※ 주콜롬보 통상대표부대사는 1974.6월 스리랑카 불교계의 최고위 지도자로서 반다라나이케 스리랑카 수상에 지지를 받고 있고 스리랑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Thera 종정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 ※ 외무부는 당초 동 종정 일행을 1974.8.19.~26. 방한 초청하기로 추진하였으나, 육영수 여사의 서거에 따른 국민장 일정(8.19.)을 감안하여 방한 일정을 1974.9.9.~14.로 연기함.

424

## 2. 방한 일정

- ※ 9.9.  
- 도착
- ※ 9.10.  
- 종정 예방, 도선사 방문, 외무부차관 예방, 국립박물관 시찰, 조계종 총무원 및 동국대학교 방문
- ※ 9.11.  
- 직지사 방문, 포항 종합제철 시찰, 불국사 방문
- ※ 9.12.  
- 석굴암 참배, 울산 현대조선소 시찰, 통도사 방문
- ※ 9.13.  
- 국립묘지 참배, 동국대학교 명예박사학위 수여
- ※ 9.14.  
- 출발

## 3. 특기 사항

- ※ Thera 종정은 방한 후인 1974.9.30. 자신의 한국 방문 시 접촉하였던 각계 인사 12인에게 감사의 서한을 보내음.

# Pracha 태국 외무부 정보국장 방한, 1974.9.18.-21.

| 74-0366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동남아
MF번호	C-80 / 22 / 1~10p

Pracha 태국 외무부 정보국장이 1974.9.18.~21. 방한함.

## 1. 방한 일정

- ✿ 9.18.
  - 도착
- ✿ 9.19.
  - 외무부 정무차관보, 정보문화국장, 방교국장, 아주국장 등 예방
- ✿ 9.20.
  - 총리실 공보담당비서관 및 외무부 대변인 예방, 정보문화국장 오찬, 아주국장 만찬

## 2.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시 Pracha 정보국장 언급 요지

- ✿ 태국 통상사절단의 평양 방문
  - 태국 통상사절단의 평양 방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음.
  - 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서서히 조심스럽게 처리할 것임.
- ✿ 중국(구 중공)과 태국 관계
  - 태국의 대중국 관계는 조심성있게 처리될 것임.
  - 중국은 중국의 이름을 대외적으로 내세우고 태국 내 게릴라를 지원하지는 않으며, 게릴라들에 대한 무기 등 지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지원해 줌.
- ✿ 태국 국내 정세
  - 작년말 내지 금년초에 태국 학생세력은 자체 내의 이견으로 분리되어 약화되어 가고 있음.
  - 신헌법과 관련, 선거권자의 연령을 학생들은 18세, 정부는 20세로 주장하고 있으며,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학생들은 23세, 정부는 25세로 주장하고 있음.

## 터키 주요인사 방한

| 74-0367 |

생산연도	1971-1974
생 산 과	남구담당관
MF번호	C-80 / 23 / 1~165p

### 1. Ekrem Barlas 터키 앙카라 시장이 1971.10.29.~11.9. 방한함.

※ 서울-앙카라시 자매결연

- 양 도시의 자매결연(안)이 1971.7.22. 앙카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
- 양 도시의 자매결연을 8.15.을 전후하여 양측에서 동시 선언하기로 함.

※ 특기 사항

- Barlas 시장은 방한 전인 10.24. 주터키대사에게 자신의 방한이 양국 유대관계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특히 방한 중 한국고유의 민속음악을 접할 수 있기를 희망함.

426

### 2. Recai Erguder 터키적십자사 총재가 1974.10.1.~7. 방한함.

※ 방한 일정

- 국군의 날 행사 참석
-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등 예방
- 한국전참전기념비 제막식 참석, 판문점 시찰, 부산 유엔묘지 방문
- 경희대학교 방문 및 학위 수여, 민속촌 방문, 산업시찰

※ 특기 사항

- 10.4. 국무총리 예방 시 1등 수교훈장인 광화장이 수여됨.

### 3. Vedat Dalokay 터키 앙카라 시장이 1974.11.1.~7. 방한함.

※ 방한 일정

- 국립묘지 및 부산 유엔묘지 헌화, 판문점 시찰
-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 예방, 서울시장 예방 및 만찬
- 서울시 지하철, 하수처리장, 도시가스사업소 등 시찰
- 산업시찰(울산) 및 관광(경주)
- 경희대학교 방문 및 학위 수여

### 4. Namik Kemal Senturk 터키 이스탄불 지사가 1974.11.4.~10. 방한함.

※ 방한 일정

- 국립묘지, 부산 유엔묘지 및 현충사 참배, 판문점 시찰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예방
- 산업시찰(부산, 울산) 및 관광(부산, 경주)



# 영국 외무성 인사 방한

| 74-036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구담당관
MF번호	C-80 / 24 / 1~37p

## 1. Derek M. March 영국 외무성 신임 극동부국장이 1974.1.23.~26. 방한하였으며, 1.24. 외무부를 방문 하여 외무부 정무차관보, 구아국장, 통상국장, 방교국장 등과 면담을 가짐.

- ※ 김정태 정무차관보와의 면담에서는 중국(구 중공) 정세, 중국·북한 관계, 남·북한 대화 등에 관해 협의함.
- ※ 최호중 통상국장과 면담에서는 중국의 수출잠재력, 중국 내 외국인 투자, 한·중국 간 통상관계 가능성, 중국 및 극동 정세 등에 관해 협의함.

## 2. William Bentley 영국 외무성 극동국장이 1974.12.10.~16. 방한함.

- ※ 방한 일정
  - 12.10. 도착
  - 12.11.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및 원자력국장 면담, 외무부차관 주최 주한 영국대사 환송 만찬 참석
  - 12.12. 적십자사 방문, 한·영국 협회 연말 만찬 참석
  - 12.13.~14. 부산 및 울산 지역 방문
  - 12.15.(일) 자유시간
  - 12.16. 관문점 시찰
  - 12.16. 출발
- ※ 과학기술처 방문 시 협의사항
  - 기술협력국장과는 한·영국 기술협력사업 등에 관해 협의함.
  - 원자력국장과는 한·영국 원자력협력사업 등에 관해 협의함.

# 미국 국무부 인사 방한

| 74-036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80 / 25 / 1~210p, Re-26 / 30 / 1~69p

## 1. Robert S. Ingersoll 미 국무부 동부아시아및태평양담당 차관보와 James Keogh 해외공보처장이 1974.1.25.~27. 방한함.

※ Ingersoll 차관보 주요 방한 일정

- 1.25. 도착, 외무부장관 예방
- 1.26.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상공자원부차관 등 예방
- 1.27. 판문점 시찰, 출발

※ Keogh 공보처장 주요 방한 일정

- 1.26.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예방, 판문점 시찰

## 2. Richard L. Sneider 미 국무부 동부아시아및태평양담당 부차관보가 1974.6.21.~25. 방한함.

※ 방한 일정

- 6.21. 도착, 외무부장관 예방
- 6.22.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6.24. Habib 주한 미국대사 주최 오찬
- 6.25. 출발

## 3. Winston Lord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1974.7.26.~27. 방한함.

※ Lord 정책기획실장은 7.26. 외무부장관 및 외무부 정무차관보를 면담하고 한국 국내사태, 한·미국 관계, 한·일본 관계, 남북대화, 중국(구 중공)의 대한국 태도, 한국의 대동구권 관계 개선, 한국의 대아랍권 접근 등에 관해 협의함.

## 4. William Glysteen 미 국무부 동부아시아및태평양담당 부차관보가 1974.10.4. 방한하여 외무부차관과 면담을 가짐.

※ 동 면담에서는 한국 국내문제, 미국 언론 동향, 한국의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 등에 관해 협의함.

## 미국지역 명예영사 방한

| 74-037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80 / 26 / 1~32p

### 1. Ramond M. Kell 주Portland(미국 오레곤주) 명예총영사가 1974.4.6.~11. 방한함.

※ 방한 일정

- 4.6. 도착
- 4.7. 서울시 수도국 및 인천시 해운국 방문, 인천항만 부두 및 창고 시찰
- 4.8. 외무부장관 및 외무부차관보 예방, 두산산업주식회사 방문,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4.9. 외무부차관보 주최 오찬, 두산산업주식회사 주최 만찬
- 4.10. 외무부 관계관과의 회의
- 4.11. 출발

### 2. Richard G. Matheson 주Seattle 명예영사가 1974.5.31.~6.6. 방한하였으며, 6.6. 김동조 외무부장관을 예방함.

### 3. Irving Cowan 주Miami 명예영사가 1974.9.29.~10.5. 방한함.

※ Cowan 명예영사는 제26회 국군의 날 행사에 외빈으로 초청되어 방한하게 됨.

- 외무부의 초청외교 강화의 일환으로 아직까지 한국을 방문치 못한 명예영사와 유력인사를 국군의 날 행사에 즈음하여 방한 초청

# Saenz Sanguinetti, Abelardo 우루과이 보건성 국제문제위원장 방한, 1974.10.16.-21.

| 74-037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80 / 27 / 1~97p

Abelardo Saenz Sanguinetti 우루과이 보건성 국제문제위원장이 1974.10.16.~21. 방한함.

## 1. 방한 경위

- ※ 1973.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6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시 한국 WHO 대표단장(이경호 보건사회부장관)이 우루과이 교체수석대표인 Sanguinetti를 방한 초청함.
- ※ 주제네바대표부가 1973년 중 동 위원장의 방한 초청을 건의하였으나 본부 사정으로 1974년으로 방한 초청이 연기됨.
- ※ 1974.4월 주우루과이대사가 동인의 방한을 강력 건의함에 따라 1974.10월 방한이 실현됨.

430

## 2. 방한 일정

- ※ 10.16.
  - 도착
- ※ 10.17.
  - 보건사회부장관, 외무부차관, 외무부 정무차관보, 서울특별시장 예방
  - 서울대학교 강의
  - 국립의료원 시찰
  - 보건사회부장관 주최 만찬
- ※ 10.18.
  - 판문점 시찰,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문
- ※ 10.19.
  - 울산 현대조선소 및 포항 종합제철 시찰
- ※ 10.20.
  - 경주 방문
- ※ 10.21.
  - 출발

## 3. 특기 사항

- ※ 주우루과이대사는 Sanguinetti 위원장에게 방한 후인 1974.10.31. 수교훈장 흥인장을 수여함.

# 북한의 대외정책

| 74-037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국제연합
MF번호	Re-26 / 33 / 1~73p

외무부가 1974년초 작성한 1973년도 북한의 대외동향은 아래와 같음.

## 1. 개요

### ※ 북한의 외교목표

- 국내외 정세가 북한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 국제사회 적극 진출로 열세에 있는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한국과 동등 내지 우월한 지위로 승격시켜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도하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제여건조성에 외교역량을 총동원

### ※ 실적

- 비동맹중립 11개국 및 북구지역 5개국, 총 16개국과 외교관계 수립
- 상주대사관 11개, 대표부 2개 및 총영사관 1개 개설 또는 승격
- IPU(국제의원연맹), WHO(세계보건기구), UNCTAD(유엔무역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가입
- 북한정권 수립 후 최초로 유엔 총회의 한국문제 토의에 참여

## 2. 수교국 확대

### ※ 외교관계 수립

- 아주지역 4개국, 구주지역 5개국, 아중동지역 6개국, 중남미지역 1개국

### ※ 통상관계 수립

- 스위스 및 에콰도르와 통상대표부 설치 합의

## 3. 방문 및 초청 외교 강화

### ※ 방문 외교

- 아주지역: 40개 사절단, 11개 국가
- 아중동지역: 74개 사절단, 42개 국가
- 구주지역: 54개 사절단, 14개 국가
- 미주지역: 19개 사절단, 9개 국가
- 공산권지역: 177개 사절단, 13개 국가

※ 초청 외교

- 아주지역: 72개 사절단, 10개 국가
- 아중동지역: 37개 사절단, 21개 국가
- 구주지역: 20개 사절단, 8개 국가
- 미주지역: 16개 사절단, 8개 국가
- 공산권지역: 139개 사절단, 13개 국가

432

#### 4. 선전 외교활동 적극화

- ※ 해외 친북단체 설립, 전시회 및 영화감상회 개최, 예술단 파견 등 활동 강화

#### 5. 대서방 경제외교 강화

- ※ 일본, 프랑스, 서독, 영국, 스웨덴 등에 대한 경제외교 강화

#### 6. 대공산권 유대관계 증진

- ※ 소련, 중국(구 중공), 동구권과의 유대관계 강화

#### 7. 대유엔 외교 강화

- ※ 주유엔대표부(1973.9.14.) 및 주제네바대표부(9.20.) 개설
- ※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 참여 및 총회 이후 북한 외무성 성명 발표

## 북한 · 아르헨티나 관계

| 74-0373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D-16 / 2 / 1~85p

- 1. 김용택 북한 외무성차관을 단장으로 한 북한사절단이 1974.4.6.~10. 아르헨티나를 방문함.**
  - ※ 김용택 차관은 4.8. 정광순 초대 주아르헨티나 북한대사의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였으며, 동 기회에 김일성의 친서를 페론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전달함.
  - ※ 김 차관은 아르헨티나 방문 기간 중 제강회사, 농업시험소, 밀농사 농장 등을 시찰함.
- 2. 북한 황금산 무역회사 소속 무역사절단(김정환, 함명학)이 1974.3.19.~4.24.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육분 2,000톤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
- 3. 북한 방직 노조대표 8명(김봉근 등)이 1974.7.19.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아르헨티나 노조산하 각 공장 및 노동단체 등을 방문함.**
- 4. 북한은 제29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북한 입장 설득을 위하여 구용각 북한 외무성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1974.8.10.~18. 아르헨티나에 파견함.**
  - ※ 북한사절단은 아르헨티나 외무성 방문 시 제29차 유엔총회 관련 한국 문제에 대한 북한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한국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어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 5. 아르헨티나 초등학교 아동 일행 42명(아동 38, 교사 2, 기자 2)이 1974.8월 북한을 방문하여 평양 “소년궁전”을 견학함.**
  - ※ 동 일행은 8.2. 아르헨티나를 출발하여 8.16. 귀국함.
- 6. Valdez 홍보 및 문화교육 미주기구 사무총장 등 아르헨티나 언론인 5명이 북한 측의 초청으로 1974.9월 북한을 방문함.**
- 7. Italo Luder 아르헨티나 상원외교분과위원장 일행이 1974.10월 북한을 방문토록 북한 측에 의해 초청됨.**

43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북한·호주 관계. 전3권 (V.1 대호주 국교수립 저지교섭)

| 74-0374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남아1
MF번호	D-16 / 3 / 1~397p, Re-26 / 34 / 1~9p

434

## 1.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호주 정부의 대북한 승인 움직임과 관련하여 1974.1.10. Willesee 호주 외상 앞으로 아래 요지의 서한을 송부함.

- ※ 우리 우방이 조급히 북한을 승인함은 한국의 화해정책의 실효를 크게 해칠뿐 아니라 북한의 대한국 태도 경화를 고무하게 될 것임.
- ※ 호주가 보편주의(Universality) 원칙하에 대북한 정책을 재고하고 있음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동 원칙의 기본개념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동 원칙이 공산국가들로부터도 보장을 받아야 할 것임을 주장함.

## 2. Willesee 외상은 1974.1.21. 아래 요지의 서한을 김동조 장관 앞으로 보내음.

- ※ 호주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해 왔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할 필요성을 느껴음.
- ※ 호주의 북한 승인이 북한의 호전성을 조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세계 여론에 노출함으로써 북한 지도층에 대하여 건설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 호주는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 상호승인 및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고자 함.

## 3. 김동조 장관은 1974.1.22. 아래 요지의 서한을 Willesee 외상 앞으로 송부함.

- ※ 한국이 남북대화, 불가침협정 체결 등 중요한 문제를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호주는 한국 정부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바람.
- ※ 한국은 호주가 현 시점에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반대하나, 호주가 경제상의 고려로 통상대표부를 교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음.

## 4. Willesee 외상은 1974.1.26. 아래 요지의 서한을 김동조 장관 앞으로 보내음.

- ※ 호주 정부는 현재 한반도 내에 2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한동안 이같은 사실이 계속되리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금번 북한과의 협상개시 결정은 당연한 귀결임.
- ※ 북한과의 협상 시에도 한국과의 전통적이고 실질적인 유대관계를 존중할 것임.

## 5. 노석찬 신임 주호주대사는 1974. 2.5. 호주 Perth에서 Willesee 외상을 면담하여 호주의 북한승인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담은 비망록(Aide Memoire)과 함께 Whitlam 수상 앞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 사본을 수교함.

- ※ 친서 요지
  - 앞으로 수개월이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시기로 호주를 포함한 우방국들의 이해와 지원이 긴요함.
  - 호주가 고려하고 있는 조치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방해가 됨.



- 우리의 기대에 반하는 호주의 조치는 한국에 타격이 될 것이며, 이 문제가 양국간의 유대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함.

6. 노석찬 대사는 1974.2.21. Whitlam 수상을 면담하여 호주의 북한승인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동 수상은 호주의 북한 승인 입장을 노 대사에게 설명함.

7. Whitlam 수상은 1974.2.22. 아래 요지의 친서를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보내음.

- ※ 호주의 북한승인은 조급한 조치가 아니며, 동 정부는 12개월 전에 북한승인 원칙을 한국에 통보해 주었음.
- ※ 호주는 앞으로 수일 내 대북한 교섭을 개시할 것이며 이것은 확고한 방침임.
- ※ 호주는 북한과의 수교로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생각이 없음.

8. 김동조 장관은 1974.2.25. Bouchier 주한 호주대사를 초치하여 호주의 대북한 교섭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호주의 결정 재고를 요청하였으며, 호주가 대북한 교섭을 지연시킬 수 없다면 수교합의를 하더라도 공관개설 또는 대사교환을 보류할 것을 요청함.

# 북한 · 호주 관계, 전3권 (V.2 국교수립 및 공관 개설 등)

| 74-0375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남아1
MF번호	D-16 / 4 / 1~359p

436

## 1. Bouchier 주한 호주대사는 1974.7.24. 외무부장관을 방문하여 호주가 서울 시간으로 7.31. 오후 2시에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아래 요지의 Whitlam 호주 수상의 박정희 대통령 앞 서한을 전달해 줌.

- ※ 호주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7.31. 발표 예정이며, 본 건에 관해 이견이 있었음에 비추어 각하에게 사전 통고하는 바임.
- ※ 자카르타에서 호주와 북한이 수교 협의 시 호주는 우선은 평양에 상주대사를 파견할 수 없으며, 아시아 내 다른 호주대사가 겸임토록 할 것을 밝혔음.  
- 북한은 상주대사를 캔버라에 파견할 의도를 통고하였으며, 호주는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함.
- ※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확고한 원칙하에 취해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확인함.

## 2. 호주 정부는 1974.7.31. 아래 요지의 Willesee 외상 명의 성명을 통하여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함.

- ※ 금일 호주와 북한이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함.
- ※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호주는 아시아의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됨.
- ※ 호주 정부의 남북한 양 정부 승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궁극적인 통일의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믿음.
- ※ 호주는 한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의도나 한국과의 오랜 관계를 북한과의 관계로 대체하려는 희망에서 북한과 수교하는 것이 아님을 남북한에게 분명히 하였음.

## 3. 한국 정부는 1974.7.31. 호주의 대북한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 아래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 ※ 한국은 전통적 우방인 호주의 북한 승인 결정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함.
- ※ 호주의 북한 승인은 남북대화 노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및 남북 간의 균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함.
- ※ 북한지지 세력이 한국을 승인하지 않는 한 한국의 우방이 북한 승인은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4. 이장화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가 1974.8.24.~29. 호주를 방문하여 Willesee 외상을 면담하고 공관설치 문제, 유엔문제 등을 협의함.

## 5. F.C. Murray 호주 외무성 부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호주 행정반이 1974.9.27.~10.4. 북한을 방문하여 공관설치 문제를 협의함.

# 북한 · 호주 관계. 전3권 (V.3 국교수립 저지 각국 교섭)

| 74-0376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남아1
MF번호	D-16 / 5 / 1~194p

본 문서철에는 호주 정부의 대북한 승인 움직임과 관련하여 외무부가 각국(제3국)에 대하여 취한 조치들이 수록되어 있음.

## 1.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재외공관이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정부를 접촉하여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재국의 협조를 요청함.

- ✱ 윤하정 주일본대사관 공사가 1974.1.22. 다카시마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을 면담하여 협조를 요청
- ✱ 박근 주미국대사관 공사가 1.22. 슈나이더 미국 국무부 차관보를 면담하여 협조를 요청
- ✱ 주캐나다대사가 1.22. 안드류 캐나다 외무성 아·태 총국장을 면담하여 협조를 요청
- ✱ 주영국대사가 1.23. Wilford 영국 외무성 극동담당 차관보 등을 면담하여 협조를 요청  
- 또한 주영국대사는 1.29. Blaker 외무성 정부차관을 면담하고 영국 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는바, 동 차관은 이미 한국 입장을 호주 측에 전달하고 최소한 외교적 승인을 연기토록 조언하였음을 언급함.

## 2. 외무부차관은 1974.1.22. 주한 미국, 일본, 영국 대사 및 캐나다, 뉴질랜드대사대리를 외무부로 초청하여 각국이 호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3. 외무부는 1974.1.26. 주태국대사에게 태국 측이 Whittam 호주 수상 태국 방문 시(1974.1.31.~2.5) 호주의 북한 승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주도록 요청할 것을 지시함.

- ✱ 주태국대사는 1.29. Phan 태국 외무성차관을 방문하고 한국 입장을 전달함.

## 4. 외무부는 1974.1.30. 주필리핀대사에게 필리핀 측이 Whittam 수상 필리핀 방문 시(1974.2.11.~14) 호주의 북한 승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주도록 요청할 것을 지시함.

- ✱ 주필리핀대사는 2.5. Romulo 필리핀 외상을 면담하고 한국 입장을 전달한 바, 동 외상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 ✱ 동 외상은 2.15. 주필리핀대사에게 동 수상 필리핀 방문 시 북한 승인문제는 이미 각의에서 결정되어 이제 와서 결정을 바꿀 수 없으나, 남북대화의 진전여부를 주시하겠음을 말했다고 언급함.

## 5. 주뉴질랜드대사는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1974.1.25. Comer 뉴질랜드 외무성차관을 면담하여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함.

## 6. 주일본대사는 1974.1.30. 오히라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는 기회에 동 외상이 직접 호주대사를 초청하여 일본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동 외상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함.

## 북한 · 오스트리아 관계

| 74-037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D-16 / 6 / 1~195p

1.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4.1.8. 요나스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신년하례식에 참석하여 킬슈레거 오스트리아 외상과 환담하였는바, 킬슈레거 외상은 최근 정당, 경제계 등 일각에서 북한 승인 촉구 움직임이 상당히 있으며, 외무성도 이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동 외상은 스위스보다 앞선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으며, 금년 6월 이전 승인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함.

438

2.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4. 1.16. 킬슈레거 외상을 면담하여 오스트리아의 북한 승인문제에 관해 협의함.

※ 주오스트리아대사는 북한 승인에 앞서 한국의 문호개방정책에 공산국가가 호응하도록 촉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동 외상은 분단국은 원칙적으로 양측을 다 승인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금년 6월 이전 승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태도를 재확인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공산국가의 한국 승인을 촉구하겠다고 말함.

3. 시링가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 회장은 1974.3.22.~26.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부수상, 대외무역상, 대외무역촉진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양국간의 경제교류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4. 북한 주창선 대외문화관계 촉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1974.5.8.부터 오스트리아를 방문함.

5.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4.5.13. 킬슈레거 외상을 면담하여 오스트리아의 북한 승인문제에 관해 협의함.

※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오스트리아가 북한 승인문제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동 외상은 대통령 선거(1974.6.23.)시까지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나, 이미 북한 측에 언질을 주었고 국내적인 압력이 있어 무작정 지연시키기는 힘들다고 말함.

6.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4.7.2. 하이므라 신임 오스트리아 외무차관을 면담하고 최소한 유엔총회 종료 시까지 오스트리아의 북한 승인 연기를 요청한데 대해 하이므라 차관은 부임 초기라 확실한 답변은 곤란하나 킬슈레거 외상에게 보고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토록 건의하겠다고 말함.

7. 오스트리아와 북한 항공사 대표들은 1974.7.16. 상호업무대행 협조를 위하여 General Sales Agency Agreement 와 Interline Traffic Agreement를 체결함.
8. 베엘카 신임 오스트리아 외상은 1974.11.7.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한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고려하여 유엔의 한국문제 토의가 종료될 때까지 북한 승인문제에 관한 교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금년말까지는 승인절차를 밟게될 것이라고 언급함.
9. 오스트리아와 북한의 외무성 대표단은 1974.12.10.~14. 비엔나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간 외교관계 설정 및 외교대표 교환에 관한 공동 코뮈니케에 12.12. 서명함.
- ※ 동 코뮈니케는 1974.12.17.부터 효력을 가짐.

## 북한 · 부룬디 관계

| 74-037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16 / 7 / 1~10p

### 1. 북한과 부룬디 간 관계 동향 관련 주르완다대사관의 보고 내용임.

#### ※ 강성일 북한대사 이임

- 북한의 주부룬디 상주대사이며 주르완다 겸임대사인 강선일이 1973.1.17. 부룬디 근무를 마치고 이임함.
- 강선일은 와병 중인 부룬디 대통령을 대신한 Myamoya 수상으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음.
- 동 수상은 훈장 수여 시 부룬디는 북한의 위대하고 고귀한 지지를 감사히 생각하고 잊지 않을 것이며, 분단된 조국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재통일을 위한 북한 인민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함.
- 이에 대해 강선일은 부룬디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지지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부룬디의 계속적인 지지를 확신한다고 말하고, 용감한 부룬디 국민이 부룬디의 독립과 안정을 위협하는 제국주의자, 식민주의자 및 하수인들의 파괴공작을 분쇄함으로써 혁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함.

#### ※ 특기 사항

- 부룬디 주재 각국 대사 중 부룬디 외무성에 가장 자유롭게 출입할 수 대사는 중국(구 중공), 북한, 벨기에 3국 대사인 것으로 알려짐.
- 부룬디 상주대사로서 르완다를 겸임하고 있는 대사는 북한대사가 유일함.
- 강선일은 중국대사의 지원을 받아 1.5. 르완다에서 신임장을 제정하고 부룬디에 귀임 후 2주일 내에 이임하게 되었는데, 북한은 강선일의 신임장 제정을 통하여 대르완다 관계를 외교적으로 일단 현실화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두 부족 간의 대립이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부룬디 · 르완다 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은 전무한 상태에 있으며 북한으로서는 주르완다 겸임대사인 강선일의 이임을 계기로 르완다에 상주대사를 파견할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주목됨.

### 2. 주벨기에대사관이 벨기에 외무성을 통하여 북한의 대부룬디 원조에 관해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 1973.2월 북한과 부룬디는 농기구 제작공장 건설을 위한 차관공여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동 협정은 전혀 이행되지 않음.
- ※ 1973년 북한은 기관총이 장착된 중국제 지프 수대를 부룬디에 원조로 제공함.
- ※ 1974년초 북한이 농지 경작용 재래식 농기구의 철재부품 약간을 원조한 것으로 보이나 확인할 수는 없음.
- ※ 1974년 부룬디 정당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5천 미터의 직물을 선물로 제공함.

## 북한 · 미얀마(구 버마) 관계

| 74-0379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동남아1
MF번호	D-16 / 8 / 1~51p

1. U Thaug Dan 미얀마(구 버마) 국가이사회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미얀마 사회주의 계획당 대표단 (7명)이 1974.7월 북한 노동당 및 사회복지제도 시찰차 북한을 방문함.

2. 북한 · 미얀마 간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자회담이 1974.7.25.~8.3. 미얀마 랑군에서 개최됨.

※ 양측 대표단

- 북한 측: 김창국 조선민항 부책임자 등 5명
- 미얀마 측: 우 폐 몽턴 교통체신부 국장 등 5명

※ 합의사항

- 항공표 판매대리점 설치 협정 등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이원권 연장, 항로개설 등 근간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치 못함.

3. 이재숙 북한 외무성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1974.8.20.~23. 미얀마를 방문함.

※ 방문 목적: 제29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입장 지지 요청

- ※ 체재 일정: 정무국장 방문(8.21.), 유엔국장 및 외무차관 방문, 외무차관 주최 만찬(8.22.)

4. Maung Cho 미얀마 산업성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얀마 산업시찰단(Economic Study Mission)이 1974.9월 북한을 방문함.

※ 방문 목적

- 북한 산업시설 및 산업발전상 시찰
- 노동자 조직 및 기구 조사

※ 특기 사항

- 동 시찰단은 9.2. 미얀마를 출발, 북한에서 2주간 체재 후 일본을 약 1주간 방문 예정임.

## 북한 · 보츠와나 관계

| 74-038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16 / 9 / 1~11p

### 1. 정성진 주잠비아 북한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1974.7.9.~16. 보츠와나를 방문함.

※ 방문 목적

- 양국 외교관계 수립,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등에 관해 협의

※ 방문 일정

- Kgari 외무담당국무상, Kgabo 공보장관, Mookodi 등과 면담  
- 북한 선전영화 상영

442

### 2. 보츠와나 외무성은 1974.12.5. 북한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주케냐대사의 보츠와나 방문

- 주케냐대사는 1974.12.6.~8. 보츠와나를 방문하여 Mogwe 외무담당국무상, Tibone 외무차관 등을 면담하고 북한·보츠와나 간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 조사함.

※ 보츠와나 측 설명

- 보츠와나 정치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북한과의 수교를 주장하고 있었음.  
- 한국 스스로가 북한을 상대로 대화를 하고 있는 만큼 보츠와나도 북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할 것임.  
- 북한은 유엔에 옵저버대표부를 설치한 이상 유엔을 더이상 적대시하지 않고 있음.  
- 잠비아를 통한 북한 측의 지속적인 요청과 지난 7월 보츠와나를 방문한 북한사절단의 집요한 요청이 있었음.  
- 보츠와나 정부는 1년 전부터 북한과의 수교문제를 고려하고 있었음.  
-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Kgabo 전 공보장관이 수교를 강력히 주장함.  
- 수교 교섭은 잠비아 주재 양국대사 간에 이루어졌으며, 11.27. 수교에 합의하고 12.5. 발표하였음.  
- 북한 측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원조제의 등은 없었음.  
- 북한과 보츠와나 양국의 상주대사 임명은 당분간 없을 것임.



## 북한 · 칠레 관계

| 74-038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정보1
MF번호	D-16 / 10 / 1~37p

1. 칠레 산티아고발 UPI는 북한이 칠레 경제를 교란시키기 위해 820만 달러의 위조 달러를 투입했다고 Pinochet 칠레 대통령이 비난하였음을 1974.6.17. 보도함.

2. 주칠레대사관은 북한 위폐사건에 대해 1974.6.19.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Pinochet 대통령은 북한이 미화 위조지폐 800만 달러를 칠레 경제 교란에 사용코자 하였다고 6.17. 기자들에게 밝혔음.
- ※ 동 대통령은 그 이상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Pedro Ewing 관방장관은 북한이 800만 달러를 위조하였으며 그중 20여만 달러가 칠레에 반입, 유통되는 과정에서 압수되었다고 확인함.
- ※ 범인은 쿠바인, 볼리비아인 및 6명의 칠레인이라고 발표됨.
- ※ 동 위조지폐는 주로 마약대금 청산과 좌익계 비밀공작금에 사용되어 왔다고 함.

3. 주칠레대사관은 북한 위폐사건에 대해 1974.7.18.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그간 칠레 경찰수사국에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과거 알려졌거나 발표된 것 이상의 진전은 없으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도 없음.
- ※ 경찰수사국은 당초 국방성 정보국과 내무성으로부터 북한이 800만 달러에 달하는 위폐를 제조하여 칠레에도 반입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10여만 달러에 달하는 위폐를 좌익계 분자가 은닉한 것을 검거함으로써 다액의 위폐반입이 있었음을 확신하고 이를 북한의 행위로 판단하여 상부에 보고하게 되었던 것임.
- ※ Pinochet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정치적 의미에서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 같으며, 현재까지 북한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나 근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칠레 당국은 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칠레에서 발견된 위폐와 북한이 한국 내 반입, 사용하였던 것으로 간주되는 위폐와의 화폐 인쇄에 따른 제원을 비교해 보려고 한국 측에 협조를 구하여 왔던 것임.  
- 한국에서 유포되었던 위폐가 칠레에서 압수된 위폐와 동일한 것이라면 북한의 행위였다는 근거는 더 굳어질 것으로 보임.

## 북한·콜롬비아 관계

| 74-038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D-16 / 11 / 1~15p

북한과 콜롬비아 간의 관계 동향과 관련 주콜롬비아대사관의 보고 내용임.

### 1. 1974.5.30. 보고

- ※ 4.21. 실시된 주재국 총선에서 자유당이 승리함으로써 현재 정부의 기능이 다소 공백 상태에 있는 바, 북한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주재국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고 있음.
- ※ 최근 친한 인사인 주재국 외무차관의 협조로 북한사절단(김용택 북한 외무성 차관 일행)의 입국이 저지되었으나, 주재국이 언제까지 북한사절단의 입국을 거부할 것인지는 의문시 됨.
- ※ 친한파 인사인 외무차관, 대통령실 관계당국자, 친한파 참전용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인사들의 입국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

### 2. 1974.6.13. 보고(6.6. 주재국 외무차관 면담 시 동 차관 언급 요지)

- ※ 주프랑스, 우루과이, 페루,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대사관 및 유엔대표부로부터 북한사절단의 입국 신청을 받은 바 있으나,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거절하였음.
  - 본인이 차관으로 있는 동안은 북한사절단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며, 정권이 이양되더라도 후임자에게 이야기하여 선처하겠음.
  - 8.7. 취임 예정인 로페스 콜롬비아 대통령을 방문하여 이 문제에 대해 진언하겠음.
- ※ 주아르헨티나 및 주프랑스 대사관으로부터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 북한 경축사절단의 접수 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고, 북한과는 외교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함.

### 3. 1974.9.2. 보고

- ※ 북한이 그들의 모든 외교망을 통하여 주재국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사절단 파견을 집요하게 교섭하고 있음.
  - 현재 중남미 주요국가 중 북한인사에 대하여 입국을 불허하고 있는 나라는 주재국뿐 임.
- ※ 북한은 최근 1967년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국회의원 등을 동원하여 정부에 압력을 가 하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도 일단 북한사절단을 접수하여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

## 북한 · 카메룬 관계

| 74-038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16 / 12 / 1~44p

### 1. 주카메룬 북한대사관은 1974.4.29. “인민군 창설 제42주년”(4.25)을 기념하는 영사회를 북한대사관 내에서 개최함.

- ※ 동 영사회에서는 북한 인민군 관계 필름 1편과 문화영화 1편(금강산)이 상영되었고, 기자, 공보성 및 외무성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함.

### 2. 정준기 북한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1974.5.2.~7. 카메룬을 방문함.

#### ※ 사절단

- 정준기 부총리
- 이자경 주카메룬 북한대사
- 조상묵 외무성 국장
- 임규섭 외무성 부국장
- 이준옥 외무성 부국장

#### ※ 주요일정

- Efon 외상 및 Biya 대통령비서실장 면담
- 김일성의 친서 전달
- Biya 대통령비서실장 주최 만찬

### 3. 주카메룬 북한대사관은 1974.6.1. “보천보 전승”을 기념하는 영사회를 북한대사관 내에서 개최함.

### 4. 오만석 북한 외무성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1974.8.13.~16. 카메룬을 방문함.

- ※ 북한사절단은 방문기간 중 카메룬 외무성을 방문하여 외상, 아주국장, 국제기구부국장을 면담하고 외군철수, 연방제, 상호감군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설명함.

### 5. 주카메룬 북한대사관은 1974.10.10. “조선노동당 창설 제29주년”을 기념하는 영사회를 북한대사관 내에서 개최함.

- ※ 동 영사회에는 약 60명 내외의 카메룬인이 참석함.

## 북한 · 캐나다 관계

| 74-038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정보1
MF번호	D-16 / 13 / 1~20p

### 1. Andrew 캐나다 외무성 아시아태평양 총국장은 1974.2.20. 주캐나다대사에게 캐나다의 대북한 관계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 최근 호주가 대북한 수교문제를 캐나다 측에 협의해 온 사실이 있음.
- ※ 캐나다로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으며, 북한과의 관계 확대에 있어 서방국가 중 먼저 앞장서는 일은 없겠지만 동시에 가장 끝이 되지 않을 것임.

446

### 2. Collins 캐나다 외무성 차관보는 1974.2.25. 주캐나다대사에게 아직 북한이 캐나다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온 일은 없으며 캐나다로서도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시도할 예정이 없다고 말함.

- ※ Ritchie 캐나다차관은 주캐나다대사에게 한국의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2.25. 말함.

### 3. 1974.5.11.~27.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민간 국제회의(Annu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ilm Archives)에 참석하고자 하는 북한대표 3명이 주모스크바 캐나다대사관에 입국사증을 신청한데 대해, 캐나다 정부가 5.16. 사증발급을 승인함.

- ※ 캐나다 외무성 당국자는 정치성이 없는 동 회의 참석을 위한 입국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 부득히 입국을 허가하게 되었으며, 북한인들은 캐나다에 입국한 후 캐나다 당국의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되어있고 입국 목적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캐나다대사관에 설명함.

### 4. 주캐나다대사는 1974.5.17. Ritchie 차관을 면담하여 캐나다의 북한인에 대한 사증발급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금번 북한대표단에 대한 입국 허가가 선례가 되어 장차 북한인에 대한 입국 허가를 자동적으로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촉구함.

- ※ 이에 대해 동 차관은 이번 사증발급이 캐나다의 대한국 정책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사증발급은 해당 여권소지자의 소속 국가를 승인하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언급함.
- 또한 동 차관은 북한인이 북한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캐나다를 방문한다면 한국에 해로운 행동을 위하여 방문하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며, 캐나다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5. 주캐나다대사는 1974.8.5. Bauer 캐나다 외무성 신임 태평양국장을 면담하여 호주의 북한승인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 동 대사는 호주의 북한승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러한 호주의 움직임이 다른 참전국가나 서방국가 특히 영연방 내 다른국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함.
- ※ 이에 대해 Bauer 국장은 이번 호주의 조치가 캐나다의 대북한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캐나다 정부가 북한승인 문제를 생각해본 바 없으며,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캐나다가 북한을 승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함.

## 북한 · 코스타리카 관계

| 74-038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정보1
MF번호	Re-27 / 1 / 1~166p

1. 코스타리카 정부는 1974.2.10.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함.
2. 주멕시코대사(코스타리카 겸임)는 1974.2.13. Facio 코스타리카 외상을 면담하였는바, 동면담 시 Facio 외상은 대북한 수교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 북한과의 수교 이유
    - 유엔헌장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한 것임.
    - 금번 북한과의 수교는 북한의 정치체제 및 대외정책을 인정하거나 관계개선을 위한 것은 아님.
    - 코스타리카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갖는 것은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판단함.
  - ※ 수교 경위
    - 1974.1월 동 외상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참석 중 북한 외상으로부터 수교교섭 서한을 받았으며, 주유엔 북한대사와의 접촉을 통하여 원칙적 합의를 봄.
  - ※ 향후 대북한 관계
    - 코스타리카는 북한의 상주공관 설치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
    - 코스타리카의 한국과의 우호관계는 하등 변함이 없을 것임.
3. 북한은 주코스타리카 상주공관 설치를 목적으로 김철석 북한 외무성 부국장 등 4인을 1974.6.18. 코스타리카에 파견함.
  - ※ 동인들은 코스타리카 외무성 차관, 정무국장, 의전차장 등을 접촉하여 상주공관 설치를 시도함.
  - ※ 코스타리카 측이 7.3. 이들에게 상주공관 설치 불허를 통보하였으나, 이들(2명이 추가되어 총6인)은 커피, 바나나 수입 및 수력자원 개발을 제의하는 등 최소한 통상대표부를 설치하고자 시도함.
4. Facio 외상은 1974.8.13. 북한인 6인에 대해 출국을 요구하고, 코스타리카는 아직 북한과의 대사교환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발표함.
5. 코스타리카 상주 한국대사대리가 1974.9.5. 부임하여 동일자로 임시공관을 설치하였으며, 9.11. 공관을 정식으로 개관함.

# 북한 · 중국(구 중공) 관계

| 74-038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D-16 / 15 / 1~50p

북한에 대한 중국(구 중공) 언론 보도 내용임.

## 1. 북경방송은 1974.6.25. 북한과 제3세계와의 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평함.

- ※ 최근 북한과 제3세력 간의 접촉이 증가되어 북한의 국제적 위신이 높아지고 있음.
  - 북한과의 수교국가는 현재 70여개국이며, 금년 들어 16명의 북한 고위대표가 각국을 순방하였으며 알제리와 세네갈의 대통령 등 외국대표가 평양을 방문함.
- ※ 북한은 팔레스타인 및 아랍 인민의 투쟁과 아프리카 인민의 반제국, 반식민주의 투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제3세계로부터 평화통일안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음.
  - 작년 유엔총회는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해체안에 대한 합의성명을 채택하였으며, 제4차 비동맹 정상회의는 한국의 유엔가입은 통일 후 또는 남북한의 연방정부가 수립된 후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두 개의 한국안에는 반대하고 북한의 입장을 지지함.
- ※ 많은 국제기구가 북한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북한 외교의 혁명노선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임.

448

## 2. 중국 인민일보는 북한 창건 26주년(1974.9.9.)을 맞아 모택동, 주은래, 주덕, 동필무 연대명의로 북한 김일성 및 김일에게 보내는 축전내용을 1974.9.8. 보도하였으며, 9.9. 기념 사설을 게재함.

- ※ 중국의 북한 창건 26주년 기념 축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조국의 지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합리적인 주장들은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의 동정과 지지를 받고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제3세계 나라들의 친선과 단결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제적 지위는 전례없이 높아졌다.
  - 중국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인민과의 위대한 단결과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남·북 공동성명을 수호하고 2개 조선 조작에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투쟁과 남조선으로부터 미국군대를 완전히 철거시키는 것에 대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요구를 건결히 지지할 것이다.
- ※ 중국 인민일보는 북한 창건 25주년 기념사설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북한 주도하의 남북대화 개시, 김일성의 5대 강령,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 제의 등을 지지함.

# 북한의 대중국(구 중공)·소련 관계

| 74-038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구
MF번호	D-16 / 16 / 1~26p

## 1. “북한 공산당의 대남 공동 전선 전략과 중국·소련과의 관계”에 관한 세미나가 1974.3.5. 서울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됨.

- ✱ 발표자
  - 강영훈 박사(재미한국문제연구소장)
- ✱ 장소
  - 서울 Ambassador 호텔
- ✱ 참석자
  - 외무부 인사: 외교연구원장 등 외무부 간부
  - 외부인사: 국회의원, 교수, 언론인 등
- ✱ 강연 내용
  - 북한 공산당의 대남 공동전선 전략의 기본 요인
  - 대남 공동전선 전략의 2가지 유형
  - 대남 공동전선 전략 발전의 4단계
  - 대남 전략의 발전과 북한의 중국(구 중공), 소련과의 관계

## 2. 박건우 주미국대사관 서기관이 1974.5.14. Amstrong 미 국무부 중국과장을 면담한 바, 동 면담 시 Amstrong 과장이 북한-중국 관계 등에 관해 언급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 북한·중국 관계
  - 북한은 중국·소련 분쟁을 이용하여 양측으로부터 보다 많은 원조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과 소련도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조가 보임.
  -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북한의 미군철수 주장을 지원하지만 UNC 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해결이 있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요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이 무력에 의한 김일성의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은 확실하나, 2개의 한국안에 반대하는 것은 대만(구 자유중국) 문제 때문임.
  - 중국과 소련이 중국·소련 분쟁 때문에 경쟁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려고 하나, 중국·소련 분쟁이 완화 되는 경우 북한을 둘러싼 경쟁의식은 약화될 것임.
- ✱ 주은래 약화설과 미국·중국 관계
  - 서방 측 언론이 주은래의 위치가 약화되었으며 중국의 권력구조에 큰 변동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있으나, 국무부로서는 과장된 내용이 많다고 봄.
  - 미국·중국 관계는 그동안 큰 변동이 없으며, 민간차원의 왕래 및 양국간 교류 프로그램은 잘 진행되고 있음.

## 북한 · 덴마크 관계

| 74-038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정보1
MF번호	D-16 / 17 / 1~71p

### 1. Paludan 중국(구 중공) 주재 덴마크대사는 1974.1.16.~25.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1.18. 북한 강양옥 부주석에게 겸임대사로서의 신임장을 제정함.

※ Paludan 대사는 북한 체재 중 북한 부주석, 외무성 부부장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남북 대화, 남북통일 전망 등에 대한 북한 측 입장을 타진해 보았으나, 동 대사의 관찰 결과는 비관적인 것이었다 함.

- 경제, 통상 면에서는 북한 측이 덴마크로부터 농기구, 비료, 식품가공 및 방직공장시설 도입을 희망하는 등 적지않은 가능성이 엿보였다 함.

450

### 2. 주덴마크 북한대사대리는 1974.2.5. 덴마크 외무성을 방문하여 이장수 현 주동독대사의 덴마크 겸임을 위한 아그레망을 신청하였으며, 덴마크 정부는 이를 지체없이 수락하기로 결정함.

※ 그러나 북한 측은 2월중순의 겸임대사 임명 방침을 갑자기 변경하여 안송련을 상주대사 후보로 아그레망을 다시 신청함.

### 3. 주덴마크대사는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1974.2.22. Guldberg 덴마크 외상을 면담하고 덴마크 정부가 북한 상주대사 접수를 재고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동 외상은 북한의 상주대사 파견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한대사가 덴마크에 상주한다 하더라도 한국 측이 우려하듯이 덴마크가 북한의 서구국가 침투의 디딤돌이 되지는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함.

### 4. 안송련 주덴마크 북한 상주대사는 1974.3.11. 덴마크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5. 오만석 북한 외무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1974.4.30.~5.2. 덴마크를 방문함.

### 6. 주덴마크 북한대사관은 북한 창건일(9.9.)을 기념하여 1974.9.9.~18. 농업관계 사진 전시를 개최함.

※ 동 전시회에는 약 60여점의 사진이 전시되고 각종 선전책자가 진열됨.



## 북한 · 에콰도르 관계

| 74-038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남미담당관/정보1
MF번호	D-16 / 18 / 1~37p

### 1. 김용택 북한 외무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북한사절단이 1974.4.19.~26. 에콰도르를 방문함.

- ※ 북한사절단은 4.19. Valdes 에콰도르 외무차관을 면담하고 외교관계 및 통상관계 수립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에콰도르 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함.
  - 북한 측은 처음에는 외교관계 수립에 목표를 두었으나 반응이 없자 즉시 통상관계를 들고 나옴.
- ※ 또한 북한사절단은 유엔총회에 임하는 북한 측 입장, 북한의 통일방안, 대미평화협정 제의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함.
  - 북한 측은 통일방안에 대해 전과 다름없는 입장을 설명하였음.

### 2. 정광순 주아르헨티나 북한대사가 1974.8.15. 에콰도르에 도착하여 에콰도르 외상, 외무성 국제기구 총국장 및 경제국장과 면담하고 유엔총회에 임하는 북한의 입장을 설명함.

- ※ 정광순 대사는 8.17. 페루에 도착함.

### 3. 에콰도르 노동자연맹대표 2명이 북한 측 주최로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소위 한국의 자주통일지지 중남미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1974.11.13. 리마로 향발함.

### 4. 오송식 등 3명의 북한기자단이 1974.12.4.~13. 에콰도르를 방문함.

- ※ 북한기자단은 에콰도르 공산당 서기장의 안내로 신문사 등 각처를 방문하면서 북한이 목적으로 하는 한국통일을 위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였다 함.
- ※ 또한 북한기자단은 에콰도르 일간지 전면 광고에 김일성의 한국문제에 대한 5개항 방안에 관한 연설문 전문을 게재함.

45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북한 · 이집트 관계

| 74-039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D-16 / 19 / 1~27p

1. 황정환 북한 보위성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군사사절단이 1974.1.28. 이집트에 도착하여 이집트 국방상 및 참모총장의 영접을 받음.

2. 주카이로총영사는 북한 평양극예단이 1974.4.15.부터 10일간 카이로에서 공연함을 3.9. 이집트 문화성 문화교류국장에게 확인함.

※ 동 공연은 이집트 · 북한 간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며 집행수익금은 이집트 서커스단에 기부됨.

※ 북한 측은 이집트 아동 6명을 평양 곡예학교에 비용 전액 부담으로 초청하여 3년간 훈련하는데 합의함.

3. 김병호 주이집트 북한대사는 1974.1월 하순 평양에 출장하여 3월초 이집트에 귀임하였음.

※ 3.25. Sadat 이집트 대통령의 누이인 Sakina Sadat 여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병호 대사는 1월 중순경 Sadat 여사를 만찬에 초대하여, 북한이 군사적으로 이집트를 지원한데 반하여 한국은 이스라엘에 군사원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동 대통령에게 한국 공관의 폐쇄를 제의토록 요청하였으나, Sadat 여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함.

4. 김병호 대사는 1974.4.30. Sadat 대통령 및 Kamal 관계장관을 방문하여 양국간 협력문제를 협의함.

5. 북한 민항대표단이 1974.6.18.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하여 이집트 민항 관계관들과 카이로- 평양 간 민항로 개설 가능성에 대해 협의함.

6. 김병호 대사는 1974.7.21. Fahmy 외상을 방문하여 동 외상의 북한 방문을 공식 초청함.

※ 동 외상은 동 초청을 수락하였으며, 방문 시기는 추후 결정기로 하였다 함.

7. 김병호 대사는 1974.10.13. Esmail 부수상 겸 국방장관과 Ghanem ASU(아랍사회주의연맹) 중앙위원회 제1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함.

※ 김 대사는 10.27.에도 Ghanem 사무총장과 면담함.

## 북한 · 핀란드 관계

| 74-039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D-16 / 20 / 1~35p

1. 주핀란드 북한대사관은 1974.1.19.자 핀란드 외무성 앞 서한에서 정순규 전 북한대사대리 이임 (1973.12월말) 이후 대사대리직을 맡아온 장대희(참사관)가 귀국했으며, 동 대사관 3등서기관 이도섭이 대사대리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통고함.

※ 핀란드 외무성 관계자는 장대희의 귀국이 영구귀국인지 또는 일시귀국인지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함.

2. 핀란드 정부가 1974.4.1. 평양에 통상대표부를 개설하였다고 언론이 보도함.

※ 핀란드 외무성 총무국장은 4.11. 주핀란드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줌.

- 평양 주재 핀란드 상무관실의 명칭은 Commercial Section of the Finnish Embassy 임.
- 동 사무소는 통상업무만을 취급하고 정부 관계는 주중국(구 중공) 핀란드대사관에서 취급하므로 상무관이 임시 대사대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
- 평양에 상주 상무관실을 설치한 직접적인 동기는 핀란드가 북한에 제지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약 150~200명의 핀란드 기술자를 파견할 것이므로 이들과 북한 당국과의 협조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데 있음.

3. 김경련 북한 재정상이 1974.5.6.~12. 핀란드를 방문하여 5.7. 핀란드 수상, 재상, 법무상,상공상 및 교통상과 면담하고 5.9. 핀란드 대통령을 예방함.

4. 핀란드 사회민주당 대표가 1974.6.17.~24. 북한을 방문함.

※ 방문 인사

- Pohjonen 사민당 중앙위원(국회의원) 외 2인

※ 주요 일정

- 북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표 면담
- 관문점 방문
- 공장, 농촌, 학교 및 문화시설 시찰

5. 핀란드 공산당 당수 일행이 1974.6.23.~29. 북한을 방문함.

※ 방문인사

- Saarinan 핀란드 공산당 당수 외 3인

※ 주요 일정

- 김일성 주최 만찬 참석
- 북한의 통일원칙 및 외국군 철수 주장을 지지하고 2개 한국의 유엔가입에 반대하는 연설 시행, 산업시설 및 문화시설 시찰

6. 핀란드 문교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문화사절단이 북한 문화상의 초청으로 1974.8.25.부터 약 1주일간 북한을 방문함.

## 북한 · 프랑스 관계

| 74-039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D-16 / 21 / 1~35p

북한과 프랑스 간의 경제 관계에 관한 주프랑스대사관의 보고 내용임.

### 1. 북한의 대프랑스 경제활동 개요

- ※ 북한은 교역증대를 통한 경제 관계 증대가 정치적 및 외교적 관계의 전제조건이라는 판단에 따라 교역을 다방면으로 증대하는 한편 각종 차관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454

### 2. 차관 도입 현황

- ※ 석유화학공장 플랜트(1971.12월 계약)
  - 차관액: 5,100만 달러
  - 제공자: 프랑스 상사
  - 공장건설 기간: 1973~75년
- ※ 현금차관 도입(1973.6월 계약)
  - 차관액: 2,000만 파운드(약 5,100만 달러)
  - 제공자: 구주연합은행

### 3. 주요 차관 또는 거래교섭 진행 내용

- ※ 헬리콥터 라이선스 구입 교섭
  - 북한은 1973.11월초 프랑스 항공기 제작소(Snias)와 헬리콥터 제작 특허권과 건본구입 및 동 헬기 제작을 위한 차관 도입을 교섭해 옴.
  - 북한이 구입 교섭하고 있는 헬리콥터는 Alouette형 300대 및 Puma형 100대이며 군용으로 전환 가능한 기종임.
  - 최근 프랑스 당국은 동 헬기가 군사용으로 전환 가능하며 한반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점과 한국·프랑스 간의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대북한 판매문제에 관한 관계부처 합동위원회 토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함.
- ※ 정유공장 플랜트
  - 연산 4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정유공장 플랜트 수입교섭을 1973년초부터 프랑스 회사와 계속해 왔으나 현재 미해결 상태임.
- ※ 시멘트공장 플랜트
  - 연산 300~350만 톤 규모의 시멘트공장 플랜트 수입교섭을 1974년초부터 프랑스 회사와 해왔으며, 현재 계약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으나 성사 가능성이 농후해져 가고 있다 함.

## 북한 · 가봉 관계

| 74-0393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정보1
MF번호	D-16 / 22 / 1-66p

### 1. 이인규 주공고 북한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1973.12.10.~16. 가봉을 방문함.

- ※ 북한사절단은 12.13. 가봉 외무차관과 면담하였는바, 면담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양국간 수교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추측됨.

### 2. 김승혁 주모리타니아 북한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1974.1.26.~2.1. 가봉을 방문함.

- ※ 북한사절단은 1.26. 가봉 외무차관대리(국제협력국장)를 면담함.
- ※ 김승혁 북한대사와 라위리 가봉 외무장관은 1.29. 외무장관 사무실에서 가봉 · 북한 간 국교수립 및 대사급 외교대표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서에 서명함.
- ※ 북한사절단은 1.30. 가봉 붕고 대통령을 예방함.

### 3. 북한과 가봉은 양국이 국교수립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1.29.)하였음을 언론을 통하여 1974.2.1. 공식 발표함.

- ※ 가봉 외무차관은 22 주가봉대사대리에게 가봉의 북한과의 수교는 가봉 정부가 소위 개방적, 중립적 대외정책에 입각하여 세계의 모든 국가와 수교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로 인하여 가봉의 대한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 4. 이자경 주카메룬 북한대사를 단장으로하는 북한사절단이 1974.6.4.~14. 가봉을 방문하여, 6.11. 가봉 외무차관과 면담함.

- ※ 북한 측은 한국을 비방하면서 통일 후의 유엔가입, 주한유엔군 철수 등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가봉 측의 지지를 요청함.
- ※ 가봉 측은 한국문제는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북한 간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가봉의 입장을 밝힘.

45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북한 · 독일 관계

| 74-0394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서구담당관
MF번호	D-16 / 23 / 1~13p

북한과 독일(서독) 간의 경제 관계에 관한 주독일대사관의 보고 내용임.

### 1. 북한 · 독일 통상 관계

- ※ 북한의 대독일 수입은 체제불비 등의 사유로 현상유지 정도의 수준이며, 북한의 대독일 수출은 공산품의 경쟁력이 낮아 1차 산품에 치중하고 있음.
- 1973년 북한의 대독일 수출: 15,000,000달러
- 1973년 북한의 대독일 수입: 36,440,000달러
- 1974년 북한의 대독일 수출: 12,555,000달러
- 1974년 북한의 대독일 수입: 37,944,000달러

### 2. 북한-독일 최근 경제협력 현황

- ※ 1973년에는 독일 UHDE사가 오스트리아 상사와 공동으로 6,500만 마르크 상당의 비료공장 플랜트를 북한에 수출하였고, Buttner사는 루마니아 상사와 공동으로 4,500만 마르크 상당의 합성사 플랜트를 북한에 수출함.
- ※ 1974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컨소시엄과 북한이 합작으로 세계 최대규모인 연산 220천 M/T(소요자금 133백만 마르크)의 마그네사이트 제련공장 건설에 합의하였으며, 독일의 Siemens사는 별도로 100만 마르크 규모의 통신기재 플랜트를 북한에 수출함.
- ※ 또한 1974년 9월중 북한은 독일 전력회사 KWU의 하청회사인 오스트리아 Elin-Union과 약 3,500만 달러 상당의 발전소 시설재 도입 계약을 체결함.
- ※ 기타 방직기계, 신발류 제조기계, 의약품 제조를 위한 경제협력 관계가 이루어짐.
- ※ 최근 북한의 서구로부터의 기자재 도입에 있어 특이한 사항은 북한이 심각한 외환부족으로 조건이 지극히 불리함을 무릅쓰고 자본재, 원자재 등을 물자차관에 의해 대거 도입하고 있다는 것임.
- ※ 최근 북한의 외환부족으로 결제대금 지불 및 차관 상환을 지연하는 사례가 영국, 핀란드 등에서 발생함에 따라 독일 정부는 북한에 대한 플랜트 수출에 공여하였던 Hermes 보증보험을 일체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북한 · 그리스 관계

| 74-0395 |

생산연도	1974-1975
생산과	남구담당관
MF번호	D-16 / 24 / 1~14p

주그리스대사관이 그리스 외무성을 통해 1974.3월 보고한 북한의 대그리스 접근 동향 및 그리스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 1. 북한의 대그리스 외교 관계 수립 제의

- ※ 1973.5.20.~26. 중국(구 중공)을 방문한 Makarezos 그리스 부수상이 중국 측의 요청으로 주중국 북한 대사 면담 시 북한대사가 그리스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하였는바, Makarezos 부수상은 아무런 언질을 주지 않고 듣기만 하였음.
- ※ 그 전에도 프라하 주재 북한대사가 그리스대사에게 막연한 관계수립 희망을 표시한 일이 있었으나 이때도 적극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음.

### 2. 그리스의 입장 및 이에 대한 관찰

- ※ 그리스 외무성 당국자들은 현재 그리스가 북한과의 어떠한 관계수립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음.
- ※ 그러나 지금까지 대북한 관계 수립이 그리스에게는 고려 밖의 일이었으나 점차 서구국가의 동향에 따라서 이 문제를 취급하게 될 것이므로, 그리스가 그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의 생각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전 연구를 하는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북한 · 과테말라 관계

| 74-0396 |

생산연도 | 1974-1975

생 산 과 | 중미/정보1

MF번호 | Re-27 / 6 / 1~9p

1. 유용각 북한 외무성 외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1974.8.31.~9.3. 과테말라를 방문하였으며, 동 방문기간 중 Malga 과테말라 외무성 정무국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과 유엔에서의 북한 입장 지지를 요청함.

※ 동 면담 시 북한 측은 Molina 과테말라 외상 및 Malga 정무국장의 북한 방문을 초청하였으나, 과테말라 측은 즉석에서 거절함.

458

2. 권민준 주유엔 북한대사는 1974.12.18. Maldonado 주유엔 과테말라대사를 방문하고 허담 북한 외상의 Molina 외상 앞 공한을 전달하면서 북한 · 과테말라 간 외교관계 수립을 강력히 요청함.

※ 동 공한에는 동 외상과 Malga 정무국장의 북한 방문을 초청하는 내용 포함

3. 주과테말라대사대리는 1974.12.23. 과테말라 외무차관을 긴급 면담하고 최근 북한 측의 대과테말라 수교 제의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함.

※ 이에 대해 과테말라 차관은 12.24. 주과테말라대사대리에게 북한의 수교 제의 및 Malga 정무국장에 대한 북한 방문 초청 사실이 있었으나, 과테말라의 대한국 정책에는 변경이 없으며 북한 측의 수교 제의 및 초청을 모두 거부할 것이라고 말함.



## 북한 · 가이아나 관계

| 74-039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미
MF번호	Re-27 / 8 / 1~68p

- 1. 김용택 북한 외무성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1974.5.13.~19. 가이아나를 방문함.**
  - ※ 북한사절단은 가이아나 외상(5.15.), 무역상(5.16.), 공보차관 및 경제상공상(5.17.)과 각각 면담함.
  - ※ 북한사절단은 가이아나 고위인사들과의 면담에서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문제, 무역증진문제 등을 토의한 것으로 알려짐.
- 2. 주유엔대사는 1974.5.17. 유엔주재 가이아나대사를 접촉하여 북한·가이아나 수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가이아나가 북한과 어떠한 관계 수립도 하지 않도록 요청함.**
- 3. 주베네수엘라대사(가이아나 겸임)가 1974.5.17. 주베네수엘라 가이아나대사를 접촉하여 북한·가이아나 수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한데 대해 동 대사는 최근 자신의 일시 귀국 중 자국 외상이 가이아나로서는 남·북한과 공히 국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일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음을 알려면서 가이아나의 북한과의 수교 가능성을 언급함.**
- 4.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74.5.21. 주베네수엘라 가이아나대사로부터 최근 북한사절단의 가이아나 방문 시 가이아나가 북한과 비상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함.**
- 5. 북한과 가이아나 양국이 1974.5.18.자로 비상주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음을 5.25. 발표함.**
  - ※ 주미국 가이아나대사는 6.10. 주미국대사에게 자국 정부로부터 북한과의 수교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고 알려줌.
    - 5.18.자로 북한과의 수교에 합의하였으나 북한이 가이아나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임.
    - 가이아나 외상은 1973년 한국사절단에게 남·북한 모두 상주대사관을 설치할 수 있을 때에 한국의 상주대사관 설치 요청에 응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음.
    - 가이아나는 남·북한과 균형있는 관계를 유지코자 함.
- 6. 진중국 주제네바 북한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1974.8.19.~22. 가이아나를 방문하여 가이아나 외상, 무역상, 경제개발성 차관 등과 면담함.**

45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북한 · 온두라스 관계

| 74-039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Re-27 / 9 / 1~41p

### 1. 김용택 북한 외무성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1974.5.24.~27. 온두라스를 방문함.

- ※ 북한사절단은 5.24. Batres 온두라스 외상을 15분간 예방하였으며, 그 후 재차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 또한, 북한사절단은 5.27. 외무성 법률고문, 국제기구국장, 5.28. 차관서리와 면담함.
- ※ 북한사절단은 온두라스 측에 대해 양국간 국교수립 및 통상관계를 제의하고 김일성의 통일정책을 홍보하였으며, 한국의 통일방안을 비난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함.  
- 또한 북한사절단은 한국이 1969년 엘살바도르에 무기를 수출하고 공군 고문관을 파견했다고 허위 주장하면서 북한 · 온두라스 간 유대를 강조하였다 함.
- ※ 온두라스 측은 Batres 외상의 지시(Listening Only, No Commitment)에 따라 북한 측의 입장을 듣기만 하였다 함.

### 2. 박상두 주멕시코대사관(온두라스 겸임) 참사관은 1974.5.29.~6.4. 온두라스를 방문, 최근 북한사절단의 활동 결과를 파악하여 북한의 부당한 주장 및 허위선전을 반박하고 남 ·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입장에 대해서 온두라스 측을 설득함.

- ※ 박상두 참사관은 온두라스 방문 시 외무차관서리, 외상법률고문, 국제기구국장, 의전장 등을 면담함.  
- 특히 박 참사관은 외무차관서리 면담 시 온두라스 · 엘살바도르 분쟁에서 한국이 엘살바도르에 도움을 주었다는 북한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한국 · 온두라스 간 우의를 이간하려는 북한의 모략임을 설명한 바, 동 차관서리는 한국이 엘살바도르에 공군고문관을 파견한 것을 사실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들어 기쁘다고 말함.

### 3. 유용각 북한 외무성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1974.9.4.~9. 온두라스를 방문하였으며, 동 방문기간 중 온두라스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하고 유엔에서의 북한 입장 지지를 요청함.

- ※ 동 방문 시 북한 측은 온두라스 대통령 및 외상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 북한 · 인도 관계

| 74-039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1/정보1
MF번호	D-16 / 29 / 1~14p

1. Jerath 초대 주북한 인도대사가 1974.10.11. 평양에 부임하였음을 외신이 보도함.
2. 주인도대사관은 Jerath 주북한 인도대사가 1974.10.11. 평양에 도착하였음을 인도 외무성을 통해 확인함.
3. Jerath 주북한 인도대사가 1974.10.14. 신임장을 제정하였음을 10.16.자 외신이 보도함.
4. 주인도대사는 1974.10.21. 메논 인도 외무성 차관보를 방문하여 Jerath 주북한 인도대사가 급히 부임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문의하였는바, 동 차관보는 Jerath 대사가 급히 부임하게 된 것은 딜론(상원) 의장의 북한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함.
5. 인도 · 북한 친선협회가 한국 주둔 유엔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유엔 한국문제 토의시 북한 측안 지지를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음을 인도 언론이 1974.11.20. 보도함.
6. 주인도대사는 딜론 의장을 수행하여 북한을 방문한 인도 상원 부의장을 1974.11.25. 면담하였는바, 동 부의장은 최근 북한 방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 도착 시 비행장에 양국 국기를 든 수천명의 군중이 출영하고 대규모 연회가 개최되는 등 대표단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음.
  - ※ 김일성 면담 시 동인은 한반도가 강대국들에 의해 포위되어 있으며 강대국들의 작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동맹국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함.
  - ※ 북한은 소위 자주경제체제 확립을 위해 중 · 경공업을 막론한 모든 분야에 투자하여 필요한 모든 물자를 지급코자 한다고 하였는바, 국제분업의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북한의 현 경제구조는 앞으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임.
  - ※ 트랙터공장 and 비료공장을 시찰하였으며, 김일성 생가를 방문하였을 때는 우상송배가 너무 심해 이상한 느낌을 받았음.

## 북한 · 인도네시아 관계

| 74-0400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동남아담당관/정보1
MF번호	D-16 / 30 / 1~85p

1. 이장화 신임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가 1972.12.5. 자카르타에 도착하였으며, 연내에 신임장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12.11. 주자카르타총영사가 외무부에 보고함.
2. 김경련 북한 재무상 일행 4명이 1973.5.22.~27. 인도네시아를 방문함.  
\* 김경련 재무상은 방문 기간 중 인도네시아 대통령, 외상, 재무상, 무역상, 국회의장 등을 예방하고, 재무상 주최 만찬 및 중앙은행 총재 주최 오찬에 참석함.
3. 주자카르타총영사관이 인도네시아 조달청을 통해 탐문한 바에 따르면 북한 황금산 무역공사소속 대표 3명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1974.2.16. 조달청 당국과 북한쌀 5만 톤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함.
4. 북한, 인도네시아 양국은 1974.4.15. 계응태 북한 대외무역상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한쌀 10만 톤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에 합의하였으며, 7.9. 말리크 인도네시아 외상의 북한 방문 시 인도네시아 조달청장과 북한 황금산무역사장 간에 북한쌀 20만 톤의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함.  
\* 7월초 현재 북한쌀 9만 톤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였으며, 1만 톤이 7월말까지 도착 예정임.  
\* 북한쌀 20만 톤의 추가 수출은 1975년초까지 완결될 예정임.
5. 김재석 북한 외무성 정치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1974.8.3.~6. 인도네시아를 방문함.  
\* 북한사절단은 8.5. 인도네시아 외무성에서 말리크 외상에 대한 간단한 예방을 마친 후 외무성 실무진과 회담을 가짐.  
- 동 회담 시 북한 측은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관하여 장문의 외교문서를 낭독한 후 이를 인도네시아 측에 수교함.
6. 이장화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는 1974.9.6. 제26차 북한정권 창건일(9·9절)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 · 북한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의 관계를 충실히 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행하고 있음을 언급함.  
\* 또한 이장화 대사는 북한이 이미 10만 톤의 쌀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였고 20만 톤의 쌀을 추가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인도네시아가 북한으로부터 5톤의 철강을 구입하는 계약도 체결되었음을 언급함.

## 북한 · 이란 관계

| 74-040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북미1
MF번호	D-16 / 31 / 1~32p

1. 이운호 신임 주이란 북한대사가 1974.3.12. 부임차 이란에 도착함.
2. 심지수 북한 백금사 무역공사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통상사절단이 1974.8.3. 이란에 도착하여 약 1개월간 체재 예정임.
  - ※ 동 사절단의 방문 목적은 1973.9.9. 서명한 이란·북한 간 통상 및 지불협정 갱신 연장 등인 것으로 관측됨.
3. 주이란대사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란 왕의 둘째 아우인 Abdor Reza 왕자는 1974.11월 Iran Air의 테헤란-베이징-동경 간 항로개설에 따른 처녀항공편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임.
  - ※ 동 방문은 1974.4월 강랑욱 북한 부주석의 이란 방문 시 이란 측 환영책임자였던 동 왕자를 북한 측이 초청한데 따른 것이며, 북한 측은 동 왕자가 공식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이란 측은 수렵 여행 목적의 방문을 고집하고 있다고 함.
4. 주이란대사는 1974.11.6. Abdor Reza 왕자를 예방하여 동 왕자의 북한 방문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제반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 설명함.
  - ※ 동 왕자는 이번 북한 방문이 답방으로서 공식 방문이라고 말하고 향후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함.
5. Abdor Reza 왕자는 1974.11.19. Iran Air 항공편으로 북한 항발함.
  - ※ 동 방문에는 이란 외무성 7국장 등이 수행함.
  - ※ 같은 항공편으로 이란 체육회장이 스포츠관계 인사를 인솔하고, 상무성 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차관이 통상 및 경제협력 사절단을 인솔하여 북한 항발함.

46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북한 · 이탈리아 관계

| 74-0402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남구담당관/경제협력
MF번호	D-16 / 32 / 1~28p

464

### 1. 이탈리아 외무성 아주과장은 북한 · 이탈리아 관계에 대해 1974.1.17. 안영철 주이탈리아대사관 참사관에게 아래와 같이 언급함.

- ※ 이탈리아는 대북한 관계에 있어 중전과 같이 동구권의 대한 정책의 추이에 따라 동서 상호 문화개방을 제창한 한국정책을 지지함에 있어 변동이 없음.
- ※ 북한의 정식 통상대표부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민간무역사무소를 상호 개설하는데 대한 협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될지 모름.
- ※ 이탈리아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EC(구주공동체) 국가들과 협의, 조정할 것임.

### 2. 이탈리아 외무차관은 북한 · 이탈리아 관계에 대해 1974.7.2. 주이탈리아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언급함.

- ※ 북한은 공식 통상대표부 설치를 계속 시도하였으나 이탈리아 외무성은 이에 반대하여 왔으며, 이탈리아는 대북한 관계개선은 한국에 대한 동구권의 문화개방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음.
- ※ 그러나 좌익정당 및 일부 경제계의 압력에 따라 대외무역처(무역진흥공사)로 하여금 북한 측과 민간사무소 교환 교섭을 하도록 허가한 바 있음.
- ※ 북한은 정부의 공식 통상대표부가 허가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압력을 가중시켜 왔으나, 외무성으로서는 비정부 성격의 무역담당기관사무소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3. 이탈리아 외무성 아주과장은 북한통상사무소 설치 문제에 관해 1974.7월 주이탈리아대사관에 아래와 같이 언급함.

- ※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이탈리아 · 북한 간 협의가 모스크바에서 매듭지어져 아래 내용의 합의문서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2~3주 내에 서명될 것으로 예상됨.
  - 직원수는 7~8명으로 하며 사무소 설치 장소는 로마로 함.
  - 사무소는 민간상사로서 정부기관의 지위를 갖지 않으나, 사무소 책임자에 대해서는 외교관 여권 휴대와 파우치 사용 등 통신기밀 유지에 대한 특권을 부여함.

### 4. 이탈리아 외무차관은 1974.9월 하순 주이탈리아대사에게 북한통상대표부 설치에 관한 압력이 이탈리아 내에서 줄었음을 시사하고 북한이 민간 통상대표부 형식의 관계 수립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임을 언급함.

# 북한 송환 재일동포 일본인 처 자유왕래 실현 문제

| 74-0403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일본담당관
MF번호	Re-27 / 14 / 1~154p

본 문서철에는 1974년 일본에서 발생한 “북한 송환 재일동포 일본인 처 자유왕래 운동”의 배경, 일본 내에서의 반응, 한국 정부의 조치 등이 수록되어 있음.

## 1. 자유왕래 운동의 배경

### ※ 목적

- 북송된 6천여명 일본인 처의 일본 왕래 자유화

### ※ 활동

- 4.7. 동 운동 본부가 일본 동경에서 발족
- 북한 생활의 참상을 알리는 서신 공개
- 일본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에 입각한 협력 요청
- 일본 외무성 및 적십자사에 결의문 전달
- 자유왕래 촉구 궤기대회(4.30. 자유왕래촉진위원회 결성)
- 일본 외무성과 적십자사에 주소가 확인된 일본인 처 60명에 대한 초청장을 발송하도록 의뢰
- 자유왕래 찬동 범국민적 서명운동

## 2. 일본 내에서의 반응

### ※ 언론의 보도태도

-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일본 언론의 편향성 및 조총련계의 작용으로 과소 보도 또는 묵살

### ※ 관변 측 및 적십자사 반응(비공식)

- 일본·북한 간 국교관계 부재와 일본인 처가 소위 자유의사에 의해 북송되었다는 점 등으로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태도

### ※ 의회

- 5.24. 일본 중의원에서 동 문제가 제기되어 “자국민 보호의 미흡”을 지적

## 3. 한국 정부의 조치

- ※ 주일대사관은 4.10. 관할 각급 공관에 대하여 동 운동을 지원하도록 지시

- ※ 외무부는 5.10. 일본 주재 각 공관장에게 북송 일본인 처의 서신 내용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수집 보고할 것과 자유왕래 운동 본부에 대한 지원사항을 수시 보고토록 지시

## 북한 · 일본 관계

| 74-040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D-17 / 2 / 1~154p

본 문서철에는 1974.10월까지의 북한 · 일본 간 각종 대표단 교환 현황이 수록되어 있음.

### 1. 북한 대표단의 일본 방문 현황

- ※ 1963~71년
  -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단 등 7개 대표단
- ※ 1972년
  - 삿포로 동계올림픽선수단 등 4개 대표단
- ※ 1973년
  - 평양 경공업고교 축구선수단 등 15개 대표단
- ※ 1974년 1~10 월
  - 무역상사 대표단 등 13개 대표단

### 2. 일본 대표단의 북한 방문 현황

- ※ 1955~70년
  - 일본 공산당 대표단 등 15개 대표단
- ※ 1971년
  - 일 · 조 무역회 대표단 등 14개 대표단
- ※ 1972년
  - 일 · 조 의련 대표단 등 9개 대표단
- ※ 1973년
  - 일본 언론계 대표단 등 19개 대표단
- ※ 1974년 1~10월
  - 일본 무역진흥회대표단 등 14개 대표단



## 북한 · 일본 관계 신문기사

| 74-0405 |

생산연도 | 1973-1974

생 산 과 | 동북아1

MF번호 | D-17 / 3 / 1~65p

1. 본 문서철에는 1973~74년 중 북한 · 일본 관계에 대한 일본 신문의 각종 기사(일본어)가 수록되어 있음.
2. 특히, 북한 기자동맹중앙위원회의 초청으로 1974.8.11.~25. 북한을 방문한 일본인 기자 6명 중 오오니시 스스무 요미우리 신문기자 및 니이즈마 요시스케 아사히 신문기자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음.

## 일본 · 북한 체육교류

| 74-040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
MF번호	D-17 / 4 / 1~55p

1. 제2회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가 1974.4.2.~15. 일본 요코하마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동 대회 조직위원회는 제3차 대회 개최후보지인 북한 평양 강희원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특별 초청함.

※ 요코하마 시장은 2.18. 동 탁구대회에 참가하는 북한선수단 및 강희원 평양시장의 입국허가를 관방장관에게 요청했으며, 관방장관은 법무성 및 외무성과 협의,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함.

2. 일본 외무성 및 법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1974.3.13. 북한선수단 22명의 입국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강희원을 포함하는 소위 조사단이라는 명목의 대표단 입국 신청은 없었다고 함.

※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조사단의 입국 신청이 접수될 경우에 이는 선수단의 입국 문제와는 별도로 취급, 심사 될 것이라고 말함.

3.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이 돌연 임원 3명을 제외한 북한선수단의 파견 증지를 1974.3.26. 아시아 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통보하여 왔다고 3.27. 보도함.

※ 이에 대해 대회 조직위원회는 북한 측에 재고를 요구하는 전보를 타전하고 3.27. 밤 도착하는 중국(구 중공) 측과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라 함.

4. 아시아탁구선수권 조직위원회가 1974.4.8. 북한선수단(7명)의 입국을 대리 신청하였으며, 일본 법무성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북한선수단은 4.9. 일본에 입국함.

※ 북한선수단은 단장인 김유순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코치 2명 및 4명의 여자선수로 구성됨.

# 북한 · 자메이카 관계

| 74-040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미담당관
MF번호	Re-27 / 15 / 1~35p

## 1. 주멕시코 자메이카대사대리는 1974.9.10. 주멕시코대사(자메이카 겸임)에게 자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9.7자 훈령에서 자메이카가 가까운 장래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줌.

- ✧ 비동맹국 대부분이 북한과 관계를 수립
- ✧ 작년 비동맹회의 결의사항
- ✧ 호주가 북한을 승인
- ✧ 북한이 유엔상주대표부를 설치
- ✧ 금번 유엔총회결의안 공동제안국 비율이 북한 32개국, 한국 6개국이라는 점

## 2. 주멕시코대사는 겸임국인 자메이카를 방문하여 1974.9.27. Wells 자메이카 외무차관 및 Paris 자메이카 외무부 정무국장을 면담하여 자메이카의 대북한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함.

- ✧ Wells 차관은 자메이카가 제3세계 및 비동맹국가와의 협조를 근간으로 하는 대외정책에 따라 북한과 9월 수교하기로 결정하였음.
  - 그간 유엔, 제네바 및 쿠바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수교 교섭을 받았으며, 1974.8.28.~30. 제네바 및 쿠바 주재 북한대사가 자메이카를 방문하여 Thompson 자메이카 외무담당 국무상과 면담함.
- ✧ 주멕시코대사는 북한이 유엔결의사항, 한국의 불가침조약 및 긴장완화 제의를 외면하고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수교는 부당하다고 지적한바, 동 차관은 동 결정이 불가피하였다고 말하고 한국과의 우호관계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다짐함.
  - 주멕시코대사가 금번 유엔에서 한국문제 토의가 종료될 때까지 수교발표를 보류할 것을 요구한 바, 동 차관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 3. 북한과 자메이카 양국이 1974.10.9자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동 합의서한을 제네바에서 교환하였다고 10.11. 발표됨.

- ✧ 10.11. 자메이카에 도착한 주자메이카대사대리는 10.17. Thompson 국무상을 면담하고 북한 상주공관 허용여부에 대해 질문한 바, 동 국무상은 가까운 장래에 북한 상주공관 개설을 허용할 생각은 없으며, 장차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함.

## 북한 · 요르단 관계

| 74-040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담당관
MF번호	D-17 / 6 / 1~31p

북한과 요르단의 수교(1974.6.30.) 발표에 대해 외무부와 재외공관이 취한 조치 내용임.

1. 외무부는 요르단 정부가 1974.7.1자로 북한과의 수교를 발표하였음을 재외공관 보고 및 외신보도를 통해 알게됨.

2. 외무부는 1974.7.2. 주카이로총영사에게 요르단을 급히 방문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사실인 경우 요르단 정부의 재고 또는 실시 지연을 교섭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요르단을 관할하는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게는 수교 움직임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면서 주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대사를 접촉하여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함.

- ※ 이외에도 중동지역 주재 공관인 주터키대사관, 주이란대사관 및 주베이루트대표부에 동일한 지시를 보냄.
  - 주터키대사관은 7.3. 주터키 요르단대사가 한국 측의 요르단에 대한 대통령 특사파견을 제안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
  - 주베이루트대표부는 7.8. 주베이루트 요르단대사가 자국 정부를 통해 북한과의 수교를 확인하였음을 알려왔다고 외무부에 보고

3. 주카이로총영사는 1974.7.4.~10. 요르단을 방문, Abdel Rifai 요르단 국왕 외교교문 및 Ubayr Mufti 외교담당장관 등 고위인사들을 접촉하여 수교 경위, 배경 및 번복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7.15.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요르단 인사들은 요르단의 현실인정 정책 추구, 요르단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북한의 지원, 한반도의 긴장완화 기여 등을 수교의 이유로 들면서, 국왕의 칙령 발표(6.30.) 등을 감안할 때 수교의 번복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임.
-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북한이 요르단에 대사관을 개설하기 전에 시급히 한국이 대사관을 개설할 것을 건의함.

4.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요르단 · 북한 수교에는 시리아의 역할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974. 7.30.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담당국무상을 면담하여 시리아 및 북예멘의 한국과의 수교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8.14. 주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대사를 면담하여 요르단이 시리아 정부에 한국과의 수교를 종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8.23. 외무부에 보고함.

# 북한 · 케냐 관계

| 74-040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17 / 7 / 1~51p

1974년도 중 북한의 케냐에 대한 접근 시도 및 외무부의 조치 내용임.

## 1. 유엔문제를 이용한 접근 시도

- ※ 21. 주케냐대사는 주모스크바 북한대사관 직원들이 현지 케냐대사관을 방문, 제28차 유엔총회에서 케냐의 북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기 위한 북한 친선사절단의 케냐 파견을 요청하였음을 파악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 ※ 22. 외무부는 북한이 제28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처리가 마치 북한의 승리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케냐에 접근하여 공관 설치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의 케냐에 대한 접근을 저지할 것을 주케냐대사에게 지시함.

## 2. UNEP(유엔환경계획) 오염측정에 관한 정부간 회의(1974.2.11.~20) 참석

- ※ 외무부는 2.12. 주케냐대사관에 고철선 북한 보건차관을 대표로 한 북한대표단이 회의 참석과는 별도로 은밀하게 케냐 정부에 접근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계할 것을 지시함.
- ※ 1974.2.18.자 Evening Star지는 케냐와 북한이 조만간 수교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케냐 외무성 아주국장은 2.19. 주케냐대사대리에게 이를 부인함.
  - 주케냐대사대리는 북한대표 중 1인이 외무성을 방문하여 케냐 외무장관과의 면담이 거절되자 북한 외상의 친서를 전달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2.21. 주유엔대표부에 현지 북한대표부와 케냐대사관 간에 수교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토록 지시하고, 2.28.에는 협의 저지책을 강구토록 재차 지시함.
- ※ 주케냐대사관은 3.2. 외무부에 북한대표단이 3차례의 아주국장 면담을 통하여 외교관계 수립 의사를 타진하고 나이로비 시장을 면담한 기회에 외교관계 수립 지원을 요청하였음을 보고함.
- ※ 외무부가 3.5. 주케냐대사관에 북한침투 저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건의토록 지시한데 대하여, 동 대사관은 3.22. 외무부에 고위인사 방문, 초청외교, 경제·기술협력 강화 등을 건의함.

## 3. 기타 접근 시도

- ※ 해양법 77그룹회의(1974.3.22.~4.4.)에 참석한 북한대표단(단장: 전명수)이 케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케냐 외무성 아주국장과의 면담 밖에 하지 못함.
- ※ 김학섭 북한 체신장관 일행이 1974.11.2.~8. 사절단 형식이 아닌 일반 방문단 형식으로 케냐를 방문하여 외무성 아주국장을 면담하고 케냐 사절단의 북한 방문을 제의함.

## 북한 · 레바논 관계

| 74-0410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중동담당관
MF번호	D-17 / 8 / 1~26p

1. 주베이루트통상대표부가 1973.3.2. 외무부에 북한의 선물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선물구입비 1,000달러 지원을 요청한데 대해 외무부가 9.5. 동 지원을 결정함.
2. 주베이루트통상대표부는 1973.12.28. 외무부에 북한 공관원들의 동 대표부 직원들에 대한 협박 사례가 발생하고 레바논 정국의 혼미로 공관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증함을 이유로 경호원 3명 채용을 위한 경비 배정을 요청함.
3. 본 문서철에는 레바논 국회 친북인사들의 북한 승인 진정서 소동, 북한의 좌익 언론을 이용한 한국에 대한 비난 선전 공세, 북한의 좌익 국회의원 방문 초청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 북한 · 라이베리아 관계

| 74-041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정보1/서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D-17 / 9 / 1~113p, 2010-87 / 39 / 1~3p

북한과 라이베리아 간의 국교수립 관련 내용임.

### 1. 1973.12.30. 평양 방송을 통하여 북한과 라이베리아의 국교수립이 발표됨.

- ※ 외무부는 12.21. 라이베리아를 겸임하는 강용규 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라이베리아에 출장하여 북한대사관 개설이 허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함.
- ※ 강용규 대사는 1973.12.21.~28. 라이베리아를 방문, Dennis 외무장관과 외무성 간부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양국이 수교에 관한 원칙에 합의한 것이지 수교 교섭을 한 적이 없음(수교 부인).
  - 수교원칙 합의의 배경은 비동맹 외교, 분단국과의 수교, 한국 정부의 6·23선언 등 상황 변화임.
  - 북한과의 수교에 북한이 적극성을 보일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음.

### 2. 문희철 주라이베리아대사대리는 1974.1.20. 데니스 라이베리아 외상 면담 결과를 보고하면서 라이베리아의 북한과의 수교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한국 특사 방문 시에 약속한 의사 증파, 경제원조, 외상에 대한 훈장 수여 등을 건의함.

### 3. 공진태 북한 대외무역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1974.4.22.~5.2. 라이베리아를 방문, 라이베리아 대통령, 외상 등을 면담하여 북한의 정책을 설명하고 도로건설 등 경제적 유대강화 방안 등을 제시함.

### 4. 송기태 북한 외무성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1974.8.30.~9.4. 라이베리아를 방문, 라이베리아 외무차관 등을 면담하고 한국문제의 유엔 상정 필요성, 유엔군 철수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외교관계 수립을 요청함.

## 북한 · 라오스 관계

| 74-041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정보1/교민2
MF번호	D-17 / 10 / 1~104p

북한과 라오스 간의 1974.7.25. 외교관계 수립 관련 내용임.

1. 주라오스대사관은 1974.7.26. 라오스 정부가 7.25. 북한과의 수교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북한은 이미 7.23. 초대 주라오스 북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신청

474

2. 초대 주라오스 북한대사가 1974.9.11. 라오스에 도착하여 10.25. 라오스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활동을 개시함.

3. 주라오스대사관은 라오스의 남북한 동시 수교에 따른 북한의 활동에 대비하여 아래 대책들을 건의함.

※ 특수활동비 지원(1974.10.4.)

※ 공보관 파견(10.18.)

※ 출입국 신고제도 의무화(10.18.)

- 남북 대치 국가에서의 북한의 침투 공작을 저지하기 위한 교민 및 여행객 통제

4. 주라오스대사관은 1974.11.14. 북한 공관원의 한국 교민에 대한 접근 현황을 외무부에 보고함.

5. 라오스 경제사절단이 1974.10.4.~8.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차관 공여, 15만 달러 상당의 원조, 라오스 기술계 장학생 초청 등에 합의함.



## 북한 · 리비아 관계

| 74-0413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마그레브담당관
MF번호	D-17 / 11 / 1~9p

1. 일본 및 미국의 외신들은 1974.1.30. 리비아와 북한이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음을 평양방송을 인용하여 보도함.
2. 외무부는 1974.1.31. 리비아 관할 공관인 주튀니지대사관에 사실확인을 지시함.
3. 주튀니지대사는 1974.2.4. 리비아의 트리폴리신문(1.31.자)이 리비아와 북한이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다는 리비아 외무성의 발표를 보도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7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북한 · 말레이시아 관계

| 74-041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정보2/동남아담당관
MF번호	D-17 / 12 / 1~10p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의 1974년 중 관계 동향임.

1. 북한은 1973.6.30. 말레이시아와 국교를 수립한 후 12월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을 개설함.
2.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은 1974.5~6월 말레이시아 축구팀 및 탁구팀의 평양 방문을 추진하는 등 활동을 전개함.
3. 북한 외무성 국장 등 방문단이 1974.8.8.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외무성 간부들을 면담하고, 북한 외상의 친서를 전달하는 한편 말레이시아의 사절단 평양 파견과 유엔에서의 미군철수안 지지를 요청함.
4. 북한 경공업협회 관계자로 구성된 통상대표단이 1974.11.15.~18.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사기업체와 접촉할 예정임.

## 북한 · 모로코 관계

| 74-0415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아중동
MF번호	Re-27 / 18 / 1~16p

1. 외무부는 1974.1.12.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단독수교국 주재 공관에 한국의 6·23 선언에서의 공산국가에 대한 개방정책이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점을 주재국에 잘 설명함으로써 주재국의 북한과의 수교를 저지토록 지시함.

2. 주모로코대사는 1974.1.28. 모로코 외상을 면담, 북한사절단의 모로코 방문 결과를 청취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 북한사절단은 모로코 외상과 외무성 아중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외교 및 통상관계 수립을 제의하고, 주한 유엔군의 철수를 주장함.

3. 신임 주모로코대사는 1974.7.25. Laraki 모로코 외무담당 국무상을 면담하여 모로코의 북한과의 관계 수립 자제 및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간 현안 문제인 문화협정, 경제기술협정, 어업협정 등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함.

※ Laraki 국무상은 모로코의 비동맹정책으로 인하여 이념이 다른 국가와도 수교하는 것이 자국의 정책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아직 북한과의 수교를 고려치 않고 있음을 언급함.

477

## 북한 · 몰타 관계

| 74-041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구2
MF번호	D-17 / 14 / 1~6p

### 1. 주미국대사관은 1974.4.13. 미국 국무부로부터 입수한 아래 정보를 외무부에 보고함.

- ※ 주몰타 미국대사의 보고에 의하면, 루마니아 주재 북한대사가 4.10. 몰타를 방문함.
  - 북한은 1973.10.17. 몰타와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무역자유협정 체결 시 동 중기계 기증을 약속함.

### 2. 외무부는 1974.4.15. 주영국대사관 및 주이탈리아대사관에 상기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련 사항을 파악토록 지시함.

- ※ 주영국대사관은 4.23.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북한이 4.16. 몰타에 선박수리 기계를 기증함.
  - 동 기계는 영국 해군이 관리 운영하던 선박수리 공작창에 설치될 예정임.
  - 동 공작창은 북한의 기술지원으로 6,000~10,000톤 급 선박 1척도 건조하게 될 것임.

## 북한 · 네팔 관계

| 74-0417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남아1
MF번호	D-17 / 15 / 1~27p

1. 네팔은 중립주의 외교정책에 따라 북한과 1974.5.15.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함.
2. 주네팔총영사관(수교 후 대사관으로 승격)은 1973.12.27. 이래 주네팔 북한총영사관(수교후 대사관으로 승격)의 동향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선전책자 발행 및 배포
  - ※ 북한 · 네팔 친선협회 간부들에 대한 고정 월급 지급을 통한 협회 활성화와 지하 공작활동
  - ※ 네팔 언론인과 문화인단의 방북 초청
  - ※ 북한 친선사절단의 네팔 방문
  - ※ 북한 외무성 국장급 인사의 네팔 방문
    - 주한 유엔군 철수문제 교섭차 외무성 관계자 면담
  - ※ 네팔 문교장관의 북한 방문
3. 주네팔대사는 1974.8.25. 네팔 외상을 면담하고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에 관한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성명서를 전달하면서 네팔의 지지를 요청함.
  - ※ 주네팔대사는 네팔 측이 한국문제에 관하여 그동안의 당사자 간 직접 해결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하고, 유엔군 철수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

## 북한 · 니제르 관계

| 74-0418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아중동
MF번호	D-17 / 16 / 1~26p

1. 주말리 북한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1974.3.28.~4.6. 니제르를 방문함.

2. 니제르를 견입하는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1974.3.30. 이후 북한사절단의 동정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북한사절단은 니제르 대통령, 외무장관 등 고위인사들을 면담함.
- ※ 농업시설 시찰 등 북한은 니제르가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농업분야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평가됨.

480

2.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1974.4.17. 니제르 정세에 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니제르에 군사 구테타가 발생하여 디오리 니제르 대통령이 연금 중임.
- ※ 니제르 군부의 혁명위원회 구성 등 통치체계가 구체화되지 않아 신정권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1974.9.9. 북한과 니제르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니제르 일간지는 9.7. 니제르와 북한이 9.6.자 공동성명을 통하여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음을 보도함.
- ※ 주세네갈 북한대사가 니제르를 방문하여 니제르 외상과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함.

4.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1974.12.19. 니제르 외상이 12월초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북한 · 뉴질랜드 관계

| 74-041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대양주담당관
MF번호	D-17 / 17 / 1~26p

북한과 뉴질랜드 간의 1974년 중 관계 개선 노력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는 1974.6.13. 주뉴질랜드대사관에 전문을 보내어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대리가 호주대사관을 방문하고 북한 대외문화연락협회 소속 북한 문화사절단의 호주 방문을 신청하였으며, 동 사절단은 호주 방문 후에 뉴질랜드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음을 알려면서 관련 동향을 보고토록 지시함.
2. 주뉴질랜드대사관은 북한 사절단이 1974.7.31.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도착 이후 사진 및 도자기 전시회를 개최하고 선전물을 전시, 배포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북한과 호주 간의 외교관계 수립(1974.7.31.)에 대한 뉴질랜드 언론들의 보도와 관련하여, 뉴질랜드 외무차관은 1974.8.1. 주뉴질랜드대사에게 전화하여 뉴질랜드는 북한의 우방인 공산국가들이 한국을 승인하는 시기에 북한 승인을 고려한다는 종전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함.
4. 외무부는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가 1974.7월에 주인도네시아 뉴질랜드대사를 방문하여 뉴질랜드 입국을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입국 요청은 중국(구 중공) 북경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9.19. 주뉴질랜드 및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통보함.
  -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관계자는 9.23. 주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대사를 면담, 관련 동향을 파악하여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북한대사가 7월 이후 2~3회 뉴질랜드대사를 방문하여 뉴질랜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동 대사는 아직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며 거절함.

## 북한·필리핀 관계

| 74-0420 |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D-17 / 19 / 1~35p

북한과 필리핀 간의 관계개선 노력과 한국 정부의 조치 관련 내용임.

### 1. 북한의 관계개선 노력

- ※ 1973.12.15. 주싱가포르 북한총영사가 주싱가포르 필리핀대사를 방문하여 북한 부외상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한을 수교하였으나, 동 요청은 Romulo 필리핀 외상의 지시로 거부됨.
- ※ 주인도네시아 필리핀대사는 1974.2.18. 주인도네시아대사에게 북한이 필리핀 AGF(아시아경기연맹) 가입을 지지하였음을 언급함.
- ※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대리가 3.2. 주말레이시아 필리핀대사관 공사를 방문하여 북한과 필리핀 간의 우호협력 증진을 희망함.
- ※ 주싱가포르 북한대사관은 3.14. 주싱가포르 필리핀대사관을 통하여 북한 상공차관의 필리핀 방문을 희망함.
- ※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대리는 12.10. 주말레이시아 필리핀대사관 관계자를 방문하여 양국간의 통상증진 문제를 협의함.

### 2. 한국 정부의 조치

- ※ 주필리핀대사는 1973.10.23. 이래 여러 차례 Romulo 외상을 면담하고 필리핀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함.
- ※ 외무부는 1974.2.5. 주필리핀대사관에 북한이 동남아에 대한 접근 공작의 일환으로 문화 및 스포츠 사절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며 필리핀 정부의 접수를 강력히 반대토록 지시함.
- ※ 주필리핀대사는 7.5. 동 외상 비서실장이 필리핀 통상사절단의 평양 파견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7.8. 주필리핀대사에게 동 외상의 협조를 구하도록 지시함.



## 북한 · 파나마 관계

| 74-0421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중미담당관/정보1
MF번호	Re-27 / 22 / 1~156p

북한과 파나마 간의 1974년 중 외교관계 수립 시도 관련 내용임.

**1. 김용택 북한 부외상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1974.4.26.~5.6. 파나마를 방문하여 파나마와의 관계 수립을 시도함.**

※ 북한과 파나마가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5.3. 발표 예정이라는 정보가 입수됨.

**2. 외무부는 5.3. 파나마를 견임하고 있는 주멕시코대사에게 파나마에 출장하여 이를 저지토록 지시함.**

※ 주멕시코대사는 파나마 외무차관, 주파나마 미국대사 등을 면담하고 파나마가 북한을 승인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함.

**3. 주파나마대사관은 라카스 파나마 대통령이 5.3. 북한 사절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을 승인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주파나마대사관은 5.10. 외무부에 보낸 보고에서 북한 승인이 취소된 것은 라카스 대통령과 군부의 지원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함.

**4. 주파나마대사관은 북한 외무성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8.23. 파나마를 방문하여 파나마산 바나나 수입을 구실로 관계수립을 제의하였으나 실패하였음을 8.30. 외무부에 보고함.**

**5. 외무부는 북한 평양방송이 12.2. 북한 · 파나마 친선문화연락협회가 구성되었으며 회장에 파나마종합대학 총장이 선임되었다고 보도하였음을 파나마대사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지시함.**

※ 주파나마대사관은 11.27.자 파나마 일간지 기사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 협회가 창립 기념 행사로 1974.12.19.~28. 전시회를 개최함을 보고함.

48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북한 · 팔레스타인(PLO) 관계

| 74-042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D-17 / 21 / 1~8p

1. 주이집트 북한대사는 1974.5.19. 팔레스타인 통신과의 회견에서 팔레스타인 특공대 작전을 지지하면서 무력투쟁만이 제국주의 시오니스트와 그 지도자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의사표시라고 언급함.

※ 동 대사는 회견에 앞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외교공보관을 방문하여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하고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지속적 투쟁을 다짐하는 발언을 함.

2. 주유엔대표부는 1974.11.16. 북한이 11.15. 제29차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된 Press Release를 발표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북한은 동 발표문에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최초로 유엔에서의 팔레스타인 문제 토의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유일한 합법적인 대표로 참가하게 된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투쟁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아랍과 세계의 진보적 국민들의 공동의 승리라고 평가함.

## 북한 · 페루 관계

| 74-0423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중남미/정보1
MF번호	D-17 / 22 / 1~189p

북한과 페루 간의 1973~74년 중 외교관계 수립 관련 내용임.

**1. De la Flor 페루 외무상은 1974.3.13. 기자회견에서 4월말 내지 5월초에 북한과 통상관계를 수립하게 될 것이며, 이는 외교관계를 위한 첫 단계라고 언급함.**

※ 주페루대사관은 페루 외무성 고위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북한·페루 간 통상사무소 설치가 고위층에서 원칙적으로 결정되었으나, 동 사무소는 무역업무에 한정될 것이며 외교관계 수립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

**2. 김용택 북한 부외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교사절단이 1974.4.11.~19. 페루를 방문한 후, 5.3. 양국간 통상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됨.**

※ De la Puente 페루 외무성 경제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여 7.12. 평양과 리마에 통상대표부를 설치하는 합의서에 서명  
- 외교공관에 준하는 특권 면제 부여

**3. 외무부는 1974.7.16. 주페루대사관에 페루가 한국에 상주공관을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양에 공식대표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저지할 것을 지시함.**

※ 주페루대사는 Garcia Bedoya 페루 외무차관을 면담, 페루가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10.11. 외무부에 보고

**4. 페루·북한 친선협회가 1974.11월 페루에서 한국 자주통일 지지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북한 방직노조 대표들이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국가들을 방문하여 김일성 선전 등 활동을 전개함.**

48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북한 · 페루 관계(신문기사철)

| 74-0424 |

생산연도 | 1973-1974

생 산 과 | 중남미

MF번호 | D-17 / 23 / 1~141p

1. 페루 La Prensa지는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집트 영공에서 북한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미그기와 공중전을 벌였음을 미국 국방성이 발표하였다고 1973.10.19. 보도함.

※ 중동전 발발 2주전에 북한 조종사 약 30명이 이집트에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2. 페루 언론들은 1974.3.13. 페루와 북한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De la Flor 페루 외상의 언급내용을 보도함.

486

※ Juan Velasco 페루 대통령이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에 가진 기자 회견에서 페루와 북한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동 외상이 대신 답변함.

- De la Flor 외상은 4월말 내지 5월초에 북한과 통상관계를 수립하게 될 것이며, 이는 외교관계를 위한 첫 단계라고 언급함.

## 북한 · 루마니아 관계

| 74-0425 |

생산연도 | 1973-1974

생 산 과 | 동구

MF번호 | D-17 / 24 / 1~15p

북한 고위 인사들의 루마니아 방문 관련 내용임.

### 1.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1974.8.28. 루마니아를 방문하여, 차우체스크 루마니아 대통령을 면담함.

- ※ 차우체스크 대통령은 김일성이 발표한 6·23 제안에 대한 루마니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고 루마니아 신문이 보도함.

### 2. 김영주 북한 부수상은 1974.5.8.~13. 루마니아를 방문, 차우체스크 대통령을 면담하고 양국관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 ※ 동 방문 시 루마니아 측은 김일성의 통일 방안을 지지함.
- ※ 김영주 부수상은 루마니아에 이어 헝가리를 방문함.

48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북한 · 루안다 관계

| 74-042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아프리카/국제연합
MF번호	D-17 / 25 / 1~23p

북한과 르완다 간의 인사 교류 관련 내용임.

1. 전명수 북한 부외상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1974.4.15.~19. 르완다를 방문, 르완다 대통령, 경제 기획성장관, 건설장관 등을 면담하여 김일성 친서를 전달하고 주한 유엔군 철수 주장 등 선전활동을 전개함.
2. 손영선 북한 외무성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급 사절단이 1974.8.20.~21. 르완다를 방문하여 유엔에서의 북한 입장에 대한 르완다의 지지를 요청함.
3. 김고준 북한 체육부 차장이 이끄는 집단체조훈련단이 1974.12.23. 르완다를 방문하여 집단체조훈련을 제공함.
4. Nsekakije 르완다 외상이 1974.8.27.~30.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간 경제기술 및 문화협정에 서명함.  
※ 외무부는 르완다가 유엔에서 공산축이 제출한 북한 안에 공동제안국으로 가담할 기능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8.27.~28. 주르완다, 주유엔 및 주미국대사관에 르완다가 중립적 입장을 유지토록 적극 교섭할 것을 지시함.

## 북한 · 시에라리온 관계

| 74-0427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D-17 / 26 / 1~9p

### 1. 북한은 1974.3.13. 김승기 문교상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시에라리온에 파견함.

✪ 동 사절단은 시에라리온 대통령을 면담하여 김일성 친서를 전달하고 북한제 트랙터와 재봉틀 전달식을 거행함.

### 2. 북한과 시에라리온은 1974.5.11. 양국간 문화협정에 서명함.

### 3.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시에라리온 겸임)은 1974.10.16. 시에라리온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 현황을 외무부에 보고함.

48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북한 · 수단 관계

| 74-042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담당관
MF번호	D-17 / 27 / 1~6p

1. 주카이로총영사관은 중동통신을 인용하여 수단 사회주의연맹 대표단이 수단혁명 제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수단·북한 단결 주간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1974.5.20. 평양으로 향발하였음을 5.23.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유엔대표부는 뉴욕 주재 북한대표부가 1974.6.26. 수단 정부기관지 주필의 김일성 회견 기사를 Press Release 형식으로 발표하였음을 6.27. 외무부에 보고함.  
\* 동 기사는 김일성의 항일투쟁,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하는 북한의 입장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3. 주카이로총영사관은 수단통신 보도를 인용하여 신임 북한대사가 1974.8.15. 누미에미 수단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음을 8.21. 외무부에 보고함.  
\* 누미에미 대통령은 신임장 제정식에서 한반도 문제는 외국이 철수한 뒤에 한민족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언급한 것으로 보도됨.



## 북한 · 스위스 관계

| 74-0429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구주
MF번호	D-17 / 29 / 1~64p

북한은 1974.2.27. 스위스에 통상대표부를 설치한데 이어 12.20. 스위스와 외교관계를 수립함.

### 1. 주스위스 통상대표부 설치

- ※ 스위스와 북한은 1973.8월 통상대표부 상호교환에 합의함.
- ※ 북한은 1974.2.27. 취리히에 통상대표부를 설치함.

### 2. 스위스의 북한 승인

- ※ 주스위스대사관은 1974.7.22. 스위스가 1974년 가을에 북한을 승인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으며, 스위스 외상의 8월초 중국 방문 시 동 승인 방침이 통고될 것으로 예측됨을 외무부에 보고함.
  - 중립국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북한 승인문제를 두고 공동보조를 취하려는 입장임을 보고함.
- ※ 스위스 외무성은 1974.12.13. 주스위스대사를 외무성에 초치하여 스위스가 12.17. 북한을 승인할 방침임을 정식 통고함.
  - 외무부는 스위스 정부가 승인 일자를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가 종료되는 12.17. 오후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교섭하라고 주스위스대사관에 지시함.
  - 주스위스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12.20. 북한 승인을 발표함.

491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74

## 북한·토고 관계

| 74-043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17 / 30 / 1~39p

1. 북한은 1973.1.31. 토고와 외교관계를 수립한데 이어 7.26. 주토고 북한대사관을 개설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함.

2. 에아데마 토고 대통령이 1974.9.7.~12. 북한을 방문함.

※ 에아데마 대통령은 귀국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정치 안정과 농업과 수리관계 등의 발전을 찬양하면서, 북한 경제사절단이 9월말경 토고를 방문할 예정임을 언급함.

※ 주일본대사관은 일본소재 조선통신이 동 대통령 북한 방문 시 발표된 토고·북한 공동성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9.16. 보도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북한 · 태국 관계

| 74-043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D-17 / 31 / 1~138p

1. 태국 내이션지는 1974.2.4. “북한의 화해 접근”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의 태국에 대한 우호적 접촉 시도에 관하여 차차이 태국 부외상과의 회견 내용을 보도함.

※ 차차이 부외상은 북한의 우호적 접근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응할 것임을 언급함.

2. 주태국대사는 1974.2.13. 차차이 부외상을 면담하여 북한과의 비공식 교류 개시 보도에 대해 문의함.

※ 동 부외상은 언론보도가 정확하지 못하고 과장되었으며, 자신의 베이징 방문 시 북한대사가 1973.12.24. 찾아와 태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우선 문화, 스포츠, 무역 등 비공식 분야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제의하였음을 언급함.

3.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대리가 1974.2.14. 주말레이시아 태국대사를 면담함.

※ 동 대사는 3.6. 주말레이시아대사에게 북한과의 문화, 통상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태국 외무성의 의사이기 때문에 자신은 동 면담을 위해 본부의 훈령이 필요하지 않음을 언급함.

4. 주덴마크대사관은 주덴마크 북한대사가 주덴마크 태국대사를 접촉하여 관계 수립을 제의하자, 동 태국대사는 말레이시아에서 접촉할 것을 권하였다는 정보를 1974.3.28. 외무부에 보고함.

5. 태국 각의는 1974.4.23. 동남아 순방 중이던 북한통상사절단의 접수를 결정함.

※ 태국 외상은 5.2. 주태국대사에게 북한이 태국 상무장관의 방북을 초청한 것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북한이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국의 관계 개선은 없을 것임을 언급함.

6. 태국 상무장관은 1974.7.27. 북한이 비료 2만 톤을 태국에 수출하고 태국으로부터 Gunny Sack 50만 개를 수입하기로 동의함을 발표함.

7. 주태국대사관은 1974.11.7. 태국 각의가 통상사절단을 1974.12.6.~9. 평양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9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북한 · 트리니다드토바고 관계

| 74-0432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미
MF번호	Re-27 / 24 / 1~31p, 2010-87 / 6 / 1~3p

1. 트리니다드토바고를 겸임하는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1974.5.10. 주쿠바 북한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1974.5.8.~15.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 ※ 이에 대해 외무부는 5.11. 캐나다, 미국, 멕시코 및 유엔 주재 공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면서, 관련 동정을 파악하고 북한의 트리니다드토바고와의 관계 수립을 저지토록 지시함.
- ※ 또한 외무부는 주베네수엘라대사에게 북한과의 관계 수립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동 대사를 트리니다드토바고에 특사로 파견할 예정임을 통보함.

494

2.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1974.5.17. 북한사절단의 트리니다드토바고 방문에 관해 주베네수엘라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 등을 정리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 ※ 북한사절단은 트리니다드토바고 수상 및 외상과 면담함.
- ※ 주 의제는 양국간의 우호증진 문제였으며 별다른 합의 사항은 없었음.

3. 주유엔대표부는 1974.6.6. 주유엔 트리니다드토바고대표부 관계자가 트리니다드토바고의 현 외교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과의 공식관계 수립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 외무부는 1974.12.28. 북한이 트리니다드토바고 가디언지에 “주체사상과 공화국 정부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라는 제하의 신문광고를 게재하였다고 한 평양방송 보도(11.30.자) 내용을 주베네수엘라 대사관에 통보하면서 관련 사항을 조사, 보고토록 지시함.

- ※ 이에 대해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동 광고가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가 개입되지 않은 단순한 광고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 북한 · 터키 관계

| 74-0433 |

생산연도 | 1974

생 산 과 | 구주

MF번호 | D-17 / 33 / 1~45p

### 1. 주터키대사는 1974.4.22.~25. 터키 수상 및 외무성 차관보 등 고위인사들을 면담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북한이 공산권국가 주재 터키대사관을 통하여 터키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 ✪ 이에 대해 터키 정부는 전 재외공관에 북한의 접근 제의에 대하여 응하지 말고 필요시 거부 표시를 하도록 지시함.
- ✪ 한국과 터키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강철, 비료 등 예체벗 터키 수상의 특별관심 품목의 대터키 수출을 증진하고 문화 및 인적 교류 증대를 위하여 터키 유학생과 유력인사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 2. 주터키대사관은 북한이 1974.9.20. 터키 적십자사에 보낸 북한 선전자료를 입수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 ✪ 동 자료에는 민청학련 주모자 처벌 및 긴급조치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 수록됨.

49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북한 · 우간다 관계

| 74-043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17 / 34 / 1~113p

북한과 우간다 간의 1974년 중 인사교류 및 주우간다 북한대사관의 활동 관련 내용임.

### 1. 북한사절단의 우간다 방문

- ※ 허담 부총리 겸 외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은 1974.5.15.~18. 우간다를 방문함.
  - 동 사절단은 아민 우간다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 고위인사 면담, 지방 시찰 및 관광 일정을 가짐.
  - 동 사절단은 5.15. 아민 대통령을 면담하여 김일성의 구두 메시지를 낭독하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였으며, 우간다 측은 비동맹 중립정책을 재표명함.
  - 동 방문 결과 공동발표문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외세의 개입 없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주한미군 철수가 반영됨.
- ※ 손응순 북한 외무성 정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은 1974.8.16.~20. 우간다를 방문함.
  - 동 사절단은 우간다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김일성 친서를 전달하는 한편, 양국관계 및 유엔문제에 관해 협의함.
  - 김일성 친서의 주요 내용은 제29차 유엔총회에서 지지와 북한의 5개 통일원칙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것임.

### 2. 우간다 인사의 북한 방문

- ※ 1974.9.30.자 평양방송은 아민 우간다 대통령의 형인 라디단 아민 부부가 9.24. 평양에 도착하여 지방 시찰 등 일정을 가졌음을 보도함.

### 3. 북한대사관의 활동

- ※ 최규하 대통령 특보의 방문과 태권도 시범경기 개최 등 주우간다대사관의 홍보 활동에 대응하여 북한대사관은 체조훈련단 파견을 통한 집단체조 교육, 주체사상 선전 특집 신문 게재 등 선전 활동을 전개함.
  - 1974.9.16.~22.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 한국을 비방하는 사진을 전시하여 주우간다대사관이 우간다 외무성에 항의하는 소동이 일어남.
  - 주우간다대사관은 북한의 선전공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20. 공보관 파견을 외무부에 건의함.

## 북한 · 소련 관계

| 74-0435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특수지역
MF번호	D-17 / 36 / 1~36p

### 1. 1974년 소련 언론이 북한 입장을 지지하는 기사를 게재함.

- ✪ Izvestiya지는 3.21. 논평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함.
- ✪ 동 지는 3.27. 논평에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미국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 · 미국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것을 평양의 평화 이니시어티브라고 논평함.
- ✪ 모스크바 방송은 6.24. 소련 · 북한 간 우호를 강조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논평을 함.

### 2. 외무부는 3.30. 북한이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에서 북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원조 및 최신 군사무기를 획득하기 위하여 친소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외신의 관측에 주목하면서 1974년도 유엔총회를 계기로 중국 · 소련 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 북한의 양국에 대한 동향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됨.

497

## 미국의 북한지역 여행제한 조치 연장

| 74-043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D-17 / 37 / 1~28p

1. 미국의 북한지역 여행제한 조치가 1974.9.13.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외무부는 8.30. 주미국대사관에 동 제한 조치가 연장되도록 미국 정부와 교섭토록 지시함.

2. 주미국대사관은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 국무부 차관보 등을 접촉하여 교섭을 전개하고 외무부장관은 1974.9.9. 주한 미국대사에게 협력을 요청함.

※ 정부는 8·15 저격사건 등 북한의 도발적 태도가 더 심해졌으며, 제한 해제 시에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도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함.

※ 동 차관보 등 실무자들은 여행제한 지역 지정은 Global한 시각에서 결정되며, 매년 연례행사처럼 계속되는 한국 정부의 지정 축구가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미국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함.

3.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4.9.16. 외무부에 미국 시민의 북한지역 여행제한 조치가 6개월 연장되었음을 통고해 옴.

※ 관보에는 1974.9.19. 게재



## 북한 · 미국 관계

| 74-043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동북아1
MF번호	Re-27 / 26 / 1~122p

1. 하버드대학의 East Asian Law Speakers Program은 권민준 주유엔 북한대표를 연사로 초청(1974.5.6.~7)하고자 하였으나, 주미국대사관은 4.29. 미 국무부에 동인에 대한 여행허가를 거부할 것을 요청함.

- ※ 미 국무부는 동인의 강연이 유엔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여행허가를 거부함.
- ※ 동 결정에 대하여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 언론 및 케네디 의원이 반발함에 따라 미 국무부는 여행허가 거부 이유를 설명함.
- ※ 외무부는 5.16. 주미국대사관에 케네디 의원 등 보스턴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한반도 정세 설명 등을 통하여 이해를 구하도록 지시함.

2.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4.7.10. 소말리아 농구팀이 중국(구 중공)의 초청으로 한달간 북경을 방문, 북경 체류 중에 북한의 초청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동 북한 방문이 실현될 경우에는 농구팀 코치인 미국인에게 북한 방문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3. 1974.8.21.자 AFP 동경발 보도에 의하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우쓰노미야 일본 의원은 김일성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면서, 미국이 김일성의 3.25.자 평화협정 체결 제안에 대하여 제3국 지도자를 중개인으로 비밀회담 개최를 제의하였음을 언급함.

- ※ 외무부는 주미국대사관에 사실 확인을 지시하였으며,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이를 부인함.

4.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974.9.3. 뉴욕발 기사를 통하여, 미국 상원외교위원회는 북한의 초청이 있으면 동 위원회 전문위원을 평양에 파견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는 케네디 의원 등이 적극적이고 중국을 방문 중인 홀브라이트 외교위원장이 중국을 통하여 미국과 북한 간 교섭창구를 열 가능성이 있음을 보도함.

- ※ 외무부는 주미국대사관에 사실 확인을 지시하였으며, 케네디 의원 측과 국무부는 이를 부인함.

5. 미국을 방문 중인 휘트람 호주 수상이 1974.10.9. NBC 방송의 Meet The Press 프로그램에서 “미국도 북한을 승인할 것이다. 분단국가의 어느 일방 편을 드는 것이 앞으로는 어떤 국가 이익이나 세계 목적에 기여하지 않게 되었다.” 라고 언급함.

- ※ 외무부는 주미국대사관에 미국 · 호주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가 거론되었는지를 확인토록 지시하였으며, 미 국무부 관계관은 이를 부인함.

6. 미 국무부는 허담 북한 수상의 남북협업체 구성 제의(1974.11.8.)를 포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유엔 회의를 앞둔 선전 책동으로 분석, 평가함.

## 북한 ·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관계

| 74-043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18 / 1 / 1~67p

### 1. 북한 사절단의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방문

- ※ 공진태 북한 대외경제사업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은 아프리카 순방의 일환으로 1974.4.9.~13.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함.
- 북한 사절단은 라미자나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에게 김일성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반도에서의 유엔군 철수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라미자나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초청함.
- 북한 사절단은 외무성과 농림성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상주공관을 설치하고 북한의 원조 물자가 도착 예정임을 통보함.

500

### 2. 북한대사관 개설

- ※ 북한은 7.18. 주말리 북한대사가 겸임하는 상주대사관을 부르키나파소에 개설함.
- 동 대사관은 김일성 선전, 농업물자 기증 등 활동을 전개함.

## 북한 · 우루과이 관계

| 74-0439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D-18 / 2 / 1~31p

1. 정광순 주아르헨티나 북한대사 일행은 우루과이산 양모, 소고기 및 소가죽 구입 교섭을 구실로 1974.12.13.~18. 우루과이를 방문하여 우루과이 대외통상처장 및 외무차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외교 관계 수립을 제의하면서 우루과이로부터 쇠고기 등 농산물을 수입할 의향을 표명함.

- ※ 주우루과이대사는 우루과이 군부정권의 실력자들을 접촉하여 우루과이 정부의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유지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하였다고 12.20. 외무부에 보고함.
- ※ 또한 주우루과이대사는 한국이 우루과이와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검토하기로 한 소고기 등 농산물 수입을 정책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2. 우루과이 보수지 E Pais는 1974.12.19.자 “북한이 외교관계 개설에 관심이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우루과이와 북한이 장시간 수교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수개월 내에 북한이 몬테비데오에 대사대리를 임명하고 우루과이도 북한에 대사대리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도함.

- ※ 우루과이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상기 기사내용을 부인함.

## 북한 · 베네수엘라 관계

| 74-044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정보1
MF번호	D-18 / 3 / 1~125p

### 1. 북한 사절단의 베네수엘라 방문

- ※ 김용택 북한 외무성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1974.5.28.~30. 베네수엘라를 방문하여 베네수엘라 외상 및 외무차관서리와 면담하여 북한의 실정 및 남북통일 정책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짐.
  - 동 외상은 5.29. 주베네수엘라대사에게 북한이 수차례 요청하여 면담하는 것이며, 북한과 관계를 맺는 일은 없을 것임을 언급함.
  - 베네수엘라 외무성 부국장은 6.3. 주베네수엘라대사관 관계관에게 세계 모든 나라와 관계를 갖는다는 신임 대통령의 기본 방침에 따라 중국(구 중공) 및 쿠바와의 수교 문제를 검토 중이며 북한과의 수교 가능성도 검토될 것임을 언급함.  
(실제로 6.24.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7.5.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재개함.)

### 2. 베네수엘라 · 북한 외교관계 수립

- ※ 주베네수엘라대사가 7.2. 베네수엘라 외무성 정무국장을 면담하여 북한과의 수교 가능성을 타진한 바, 동 국장은 기본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나 북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바 없음을 언급함.
- ※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Pere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7.17. 해양법회의에 참석한 주쿠바 북한대사를 접견하였으며 조만간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문서 교환이 있을지 모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재국 외무성에 문의하였으나, 동 외무성은 외교관계 수립 가능성을 부인함.
- ※ 해양법회의의 참석차 베네수엘라에 입국한 북한대표가 8.23. 베네수엘라 외상을 면담함.
  - 주베네수엘라대사관 관계관이 8.29. 외무성 부국장에게 문의한 바, 동인은 알바니아, 외몽고 및 북한과의 수교문제를 검토 중이며, 금년 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실현될 것임을 언급함.
- ※ 노신영 외무부차관이 1974.10.28. 베네수엘라를 방문하여 Meneses 베네수엘라 외무차관서리를 면담함.
  - Meneses 차관서리가 노신영 차관에게 북한과의 수교 방침을 통보함.

# 북한의 대구주 진출 현황 및 대처방안

| 74-044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D-18 / 4 / 1~67p

## 1. 외무부는 북한의 외교공세 강화에 대한 중·장기 대처 방안을 1973.4.25. 청와대 안보회의에 보고한데 이어 동 방안에 기초한 구체적 실행계획(국가별, 연도별 및 사업별)을 작성함.

### ※ 대처방안

- 외교망 확장, 비상외교체제 편성, 홍보활동 강화, 실적위주의 사절단 파견, 특수활동의 적극화, 경제기술 협력의 효율화, 의료지원 증강, 상품의 정책적 수입, 북한의 국제기구진출 저지

### ※ 구체적 실행계획

- 유럽지역 대상 16개 국가들을 A, B, C 국가군으로 분류
- 국가별로 이미 취한 조치 및 앞으로 취할 조치 등을 수립

## 2. 외무부는 제28차 유엔총회 이후 유럽에서의 북한 미승인 국가들의 최근 동향을 정리하여 1974.2.11.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함.

- ※ 동 보고서는 유럽국가들이 동·서 간 문호개방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고 공산국가들이 한국을 승인하지 않는 한 북한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당분간 고수할 것으로 보이나, 비정치 분야에서의 대북한 문호개방은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영국 등 개별 유럽 국가들의 대북한 동향과 정책을 요약 정리함.

## 북한의 대중남미 정책 및 관계 현황

| 74-044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정보2
MF번호	Re-27 / 27 / 1~104p

1. 외무부는 중남미지역에 대한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공세가 집요하게 전개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74.5.30. 동 지역에서의 공관 증설을 통한 외교망 강화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함.

※ 동 방안에는 코스타리카 등 2개 상주공관 신설, 기존 공관 보강 및 겸임국 조정이 포함됨.

2. 주멕시코대사관은 1974.7.26. 외무부에 대한 보고에서 주멕시코대사관의 겸임국인 코스타리카 등 국가에서 북한의 비자금을 이용한 좌익세력 포섭 공작이 적나라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미 및 카리브지역에 북한저지 대책본부 설치, 상주 공관 증설 등을 건의함.

3. 주멕시코대사관은 1974.8.9. 외무부에 주멕시코대사관이 관할하는 7개 겸임국에 대한 북한의 공작현황 상세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함.

※ 외무부는 주멕시코대사관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멕시코 및 중미지역 북한 침투현황”을 작성함.

## 북한·신유고연방(구 유고슬라비아) 관계

| 74-0443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구
MF번호	D-18 / 6 / 1~12p

### 1. 북한·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간의 관계 자료임.

- ※ 한국 민간경제인단이 세르비아 방문 중에 입수한 세르비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명단
- ※ 세르비아와 북한, 중국(구 중공) 및 소련 간의 관계 일람표
  - 이들 3개국 간의 교류 등 관계를 분석하면서 북한과 세르비아 간의 외교관계가 세르비아 외상의 중국 방문(1971.6월)과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세르비아 방문(1971.9월) 즈음인 1971.9월 수립되었음을 주목하고, 1973년부터 북한과 세르비아 간의 접촉이 활발한 것으로 평가함.

### 2.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를 방문한 로무로 필리핀 외상이 1974.8.9. 주필리핀대사에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세르비아는 북한의 비동맹 가입과 유엔총회에서의 북한 입장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함.

50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북한·자이르 관계

| 74-044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18 / 7 / 1~27p

북한과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간의 1974년 중 관계 동향으로 북한은 1974년 중 2차례에 걸쳐 콩고민주공화국에 사절단을 파견함.

1. 1973.5.23. 콩고민주공화국에 공관을 개설한 북한은 1974.5.18.~25. 북한총리 겸 외상인 허담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콩고민주공화국에 파견함.

- ※ 동 사절단은 콩고민주공화국 당 창건 기념식 참가, 대통령, 외상 및 당정치국장 예방, 잉카발전소 방문 등 일정을 가진.
- ※ 또한 동 사절단은 김일성 주체사상, 북한의 반제국주의 정책 및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설명함.

2. 손만석 북한 부외상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1974.8.16.~18.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여 외상을 면담하고 유엔에서의 북한 입장 지지를 요청함.

3.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는 9.20. 옴바 콩고민주공화국 외상을 면담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의 유엔총회에서의 공산 축 결의안 불참가 입장을 확인함.

- ※ 동 외상은 북한의 군사원조에 관한 질의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차관형식으로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며,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을 이유로 북한이 다른 문제에 대해 요구를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음을 언급함.



## 북한대표단 일본 방문

| 74-044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D-18 / 8 / 1~37p

북한 사회단체들의 1974년 중 일본 방문 관련 내용임.

1. 최중삼 북한 직업동맹 중앙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 대표단이 1974.1.17.~31. 일본 교직원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학술집회인 “교육연구 전국 집회” 참가차 일본을 방문하여 집회 참석, 조총련 인사 면담 및 지방 학교 방문 등 일정을 가짐.
2. 한국 정부는 4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북한대표단의 단장인 강희원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일본 입국 문제에 대하여 주일본대사관을 통하여 일본 정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함.
3. 이정순 조선 민주여성동맹위원회 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1974.5.11.~12. 개최된 “일하는 부인의 중앙 집회”(일본 노동조합 총평의회)에 참석차 5.9.~23. 일본을 방문함.  
\* 일본 법무성은 이들이 입국 목적 이외의 활동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입국 허가를 하였음을 주일본 대사관 관계자에게 설명함.
4. 김기남 “노동자” 책임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과학문화대표단이 일본의 일·조 사회과학자연대 위원회 초청으로 5.18. 일본에 도착하여 학술심포지움 참가 등 활동을 함.
5.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참석을 위한 북한대표단(단장 홍기문)이 1974.9.29.~10.18. 일본을 방문함.  
\* 주일본대사관은 7월 북한대표단의 IPU 총회 참석을 반대하고 입국 허가가 나더라도 총회 참석 이외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여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함.

## 북한 광물사절단 페루 방문

| 74-044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정보1
MF번호	D-18 / 9 / 1~80p

북한은 페루로부터의 광물 수입을 구실로 1974년 중 사절단을 3차례 페루에 파견하여 외교관계 구축을 시도함.

### 1. 북한 사절단(단장: 김성준 북한 대외무역성국장)이 1974.2.25.~3.19. 페루를 방문하여, 페루로부터 1천만 달러 상당의 동과 연을 구입할 것임을 페루 동력광업장관 및 상무장관에게 언급함.

- ※ 외무성 고위인사는 3.6. 주페루대사에게 페루 정부가 북한 사절단 방문을 계기로 북한 통상대표부 설치를 허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와 교섭을 진행중임을 언급함.
- ※ 리마발 AP통신은 3.13. De La Flor 페루 외상이 1~2개월 내에 페루는 북한과 통상관계를 맺을 것이며, 이는 북한과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첫 단계라고 언급하였음을 보도함.

### 2. 북한 사절단(단장: 주찬택 북한 광물협회장)이 동광석 수입 대금 지불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0.25. 리마에 도착하였으며, 10.31. 리마 일간지에 한국 통일에 관한 김일성 연설문과 사진을 광고기사로 게재함.

### 3. 김관섭 북한 대외문화교류위원장이 10.28 세계광업회의(1974.11.3.-8.) 참석을 위해 리마에 도착함.

- ※ 북한 사절단이 11.3. 세계광업회의의 참가를 핑계로 페루에 추가로 도착함.
  - 북한 친선협회 주관으로 리마에서 1974.11.12.~14. “한국의 자주 통일지지, 라틴 아메리카 집회” 개최를 추진함.
  - 동 집회 주재를 위하여 북한 대외문화교류위원장이 11.8. 입국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자주통일 및 외군 철수를 위한 라틴아메리카 국민의 지지와 단결을 호소할 것임.

## 북한사절단 우루과이 방문 1974.1.3.-8.

| 74-044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D-18 / 10 / 1~41p

북한사절단의 1974년 중 우루과이 방문 관련 내용임.

### 1. 권민준 주유엔 북한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사절단이 1974.1.3.~8. 우루과이를 방문함.

※ 동 사절단은 우루과이 외무차관 및 정무국장을 면담하고 김일성의 5개 통일원칙(고려연방제)을 설명하면서 통상 및 경제협력 증진 의사를 표명함.

### 2. 우루과이 정부는 1.3. 주한 우루과이대사관을 통하여 북한사절단 접수를 해명하는 공한을 외무부에 보내온데 이어 3.4. 동 사절단과의 협의 내용을 알려줌.

- ※ 북한 사절단 접수가 한국 정부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지 않을 것임.
- ※ 우루과이의 공산당 등 마스주의 집단 불법화 조치가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제거하고자 함.
- ※ 북한은 우루과이와의 관계 수립을 요구하였으나, 우루과이 정부는 주아르헨티나 북한대사관 상무관을 통한 단순한 상무관계 유지만을 허용함.

### 3. 주우루과이대사관은 11.11. 외무부에 우루과이 정부의 반공정책으로 북한의 주우루과이 상주공관 설치가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나, 북한 측이 우루과이 상품 수입 등 상당한 제의를 해 올 경우에는 우루과이 측이 경제적 실리를 위하여 통상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예상됨을 보고함.

50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북한사절단 아프리카지역 순방 동향

| 74-044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D-18 / 11 / 1~100p

1. 1974년도에 작성된 “1973년도 북한의 대외동향 자료”는 북한의 외교 목표, 실적, 수교국 확대, 상주 공관 개설 등을 항목별로 설명함.

2. 북한은 1974년 중 아프리카지역에 8개 반의 각료급 사절단과 4개 반의 실무급 사절단을 파견함.

※ 북한사절단은 김일성의 메시지를 휴대하고 아프리카국가들을 방문하여 수교 교섭과 유엔에서의 북한 측 입장 지지 확보를 시도함.

- 김일성은 메시지에서 대미 평화협정체결 제의를 설명하고 제29차 유엔총회에서 주한 유엔군 및 미군 철수 결의 채택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는 북한사절단이 휴대한 김일성 메시지를 입수하여 1974.5.11. 62개 재외공관에 반박자료와 함께 송부함.

※ 외무부가 작성한 자료는 남북대화 부진과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는 문제, 한반도 분단의 영구화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는 문제, 주한 유엔군 및 미군 철수 주장의 문제 등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임.

# 북한사절단 서남아 및 동남아 순방

| 74-0449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동남아1
MF번호	D-18 / 12 / 1~371p

북한은 1974년 중 동남아 및 서남아지역에 4개 사절단을 파견함.

## 1. 강양욱 북한 부주석의 파키스탄, 이란, 미얀마(구 버마) 방문(1974.3.26.~4.11.)

- ※ 파키스탄에서는 부토 파키스탄 수상을 북한에 초청하고 김일성 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에 관한 북한 입장을 설명함.
- ※ 미얀마에서는 네윈 미얀마 대통령 등 지도급 인사를 접촉, 북한 입장을 설명하고 고위 인사 방북을 초청하였으며 북한과의 단독 수교와 항공협정 체결을 제의함.
- ※ 이란에서는 국왕, 외무장관을 예방하는 등 준 국민 수준의 대우를 받음.

## 2. 계응태 북한 대외무역부장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방문(1974.4.5.~5.1.)

- ※ 말레이시아에서는 교역문제 협의, 한국 비방, 수상 방북 초청 및 북한 상주공간 설치를 요청함.
- ※ 인도네시아에서는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통상회담 개최 후 회담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은 생고무, 인도네시아는 비료 및 쌀 수입 의사를 표명함.
- ※ 태국에서는 상무장관을 면담하여 교역문제 협의, 동 장관의 방북을 초청하고 외무장관을 면담하여 양국관계 정상화를 제의함.

## 3. 김경련 북한 재정부장의 인도 및 네팔 방문(1974.4.26.~5.3.)

- ※ 인도에서는 외무성 차관보를 면담, 대미평화협정 제의에 관해 설명하고 상무장관과 무역확대 문제를 협의함.
- ※ 네팔에서는 국회의장 및 재무상 겸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평화통일에 관한 북한 측 입장을 설명함.

## 4. 김대봉 북한 외무성 부부장의 라오스 방문(1974.6.22.~26.)

- ※ 라오스에서는 6.25. 라오스·북한 양측이 수교에 관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함.

## 북한사절단 구주지역 순방

| 74-045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D-18 / 13 / 1~57p

북한은 1974년 중 북유럽국가에 2차례 사절단을 파견함.

### 1. 오만석 북한 외무성 부부장의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방문(1974.4.8.-5.3.)

- ※ 북한사절단은 방문국 수상 등 고위인사들을 면담, 김일성 북한 주석의 친서를 전달하고 북한의 통일노선, 주한미군 철수 주장 및 대미 평화협상 제의를 설명함.
  - 1973년에 북한을 승인한 이 국가들에게 북한 입장을 선전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고조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는 등 정치선전에 역점을 둠.
- ※ 북한사절단은 일부 국가에서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상거래 협상도 진행함.
- ※ 방문국 인사들은 남북한이 평화적 협상을 통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 측에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요구에 동의함 없이 남북대화 지속을 촉구한 것으로 외무부는 평가함.

### 2. 양문소 북한 외무성 정치고문의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방문(1974.8.12.-23.)

- ※ 북한사절단은 다른 북한사절단이 4월에 방문하였던 국가들을 다시 방문함.
- ※ 방문국 외상 또는 외무성 고위 인사들을 면담, 북한 외상의 친서를 전달하고, 유엔총회에 제출된 유엔군 철수에 관한 공산 측 안 지지를 요청함.
  - 남북대화의 중단을 주한미군 주둔 탓으로 돌리면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함을 주장함.

# Malik, Adam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북한 방문, 1974.7.6.-10.

| 74-0451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동남아담당관
MF번호	D-18 / 14 / 1~24p

Adam Malik 인도네시아 외상이 1974.7.6.~10. 북한을 방문함.

## 1. Malik 인도네시아 외상은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등 공산권 국가 순방의 일환으로 북한을 방문함.

- ※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74.6.27. 외무부에 보낸 보고에서 동 순방의 목적이 인도네시아 제2차 경제개발에 필요한 원조를 공산권 국가들로부터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함.

## 2. Malik 외상은 방북기간 중 김일성 북한 주석 및 허담 북한 외상과 면담을 가짐.

- ※ 김일성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허담은 인도네시아와의 정치, 경제관계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동 외상은 양국관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함.
- ※ 동 외상의 평양 방문결과에 대하여 외무부는 양국이 경제관계 심화를 통한 정치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평가함.
  - 북한이 동남아시아 진출의 전진기지로써의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쌀 저가 출혈수출 등을 통하여 경제적 협력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점차 정치적 유대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함.

## 3. Malik 외상은 1974.7월 홍콩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아시아지역 주재 공관장회의에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에게 자신의 평양 방문 결과를 외무부장관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함.

- ※ 주한 인도네시아대사는 8.1. 김동조 외무부장관에게 동 외상의 평양 방문 결과를 설명함.

## 우쓰노미야 일본 자민당 의원 북한 방문, 1974.8.5.-15.

| 74-045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정보2
MF번호	D-18 / 15 / 1~51p

### 1. 우쓰노미야 일본 자민당 의원은 1974.8.5.~15.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북한 주석과 두 차례 면담을 가짐.

- ※ 동 의원은 좌익성향의 AA 그룹 소속으로 과거 일본·중국 국교정상화 사절로서 중국(구 중공)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인사로 8.5. 니가타항에서 만경봉호를 타고 청진항을 거쳐 평양을 방문함.

### 2. 우쓰노미야 의원은 김일성 주석과 아시아의 평화·안전 및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동 의견교환 시 김일성의 언급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연방제 등 상이한 체제 공존도 가능함.
- ※ 한국은 통일할 뜻이 없으며, 미국의 원조를 받는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수배나 강력하여 소국이 대국의 위협에 부닥치고 있는 상황임.
- ※ 북한은 남침 의도가 없으며 군비의 상호축소가 필요함.
- ※ 민청학련, 김대중 사건 등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하여 한국은 북한을 비난하나 북한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 ※ 1974.3.25.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직접 제의함.
- ※ 일본과의 수교는 남북한 간의 차별이 없는 조건이라야 가능함.



# Eyad'ema, Gnassingb'e 토고 대통령 북한 방문, 1974.9.7.-12.

| 74-045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D-18 / 17 / 1~66p

Gnassingb'e Eyad'ema 토고 대통령이 1974.9.7.~12. 북한을 방문함.

## 1. Eyad'ema 대통령은 중국(구 중공)을 거쳐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북한 주석 면담, 환영대회 참석 등 일정을 가졌으며, 토고·북한 경제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함.

- ※ 동 대통령은 환영대회 답사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엄중한 부조리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반도 분단이며, 제3세계 국가들은 북한의 유엔전문기구 가입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언급함.
- ※ 양국 경제기술협력 협정 체결로 북한이 토고에 1천 헥타르의 농지관계사업을 위해 30~50억 프랑(당시 환율로 1,200~2,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농업기계공장 건설을 위해 5억 프랑을 원조키로 하는 등 농업경제 분야 협력관계를 구축함.
- ※ 1974.9.12.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김일성 주석은 토고 측의 토고 방문 초청을 수락함.

## 2. 주토고대사관은 1974.9월 Eyad'ema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수행한 인사의 언급사항을 토대로 토고 내에 친북한 세력이 형성되고 양국간 협력관계가 긴밀해짐으로써 토고가 앞으로 유엔에서 북한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함.

## 3. 본 문서철에는 토고·북한 공동성명서와 Eyad'ema 대통령의 북한 방문 일정 및 관련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 Mobutu, Sese Seko 자이르 대통령 북한 방문, 1974.12.9.-16.

| 74-0454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D-18 / 18 / 1~26p

Mobutu Sese Seko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대통령이 1974.12.9.~16. 북한을 방문함.

## 1. Mobutu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은 평양 체류 기간 중 김일성 북한 주석과의 두 차례 회담, 평양시 환영군중대회 참석, 산업시설 및 군부대 시찰 등 일정을 가짐.

- ※ Mobutu 대통령은 평양 체류 중 김일성 주석과 북한을 찬양하였으나, 한국과 미국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음.
- ※ 동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마지막 순간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으며,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이 11.25.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동 대통령의 소련 방문이 취소되고 대신에 중국(구 중공)과 북한 방문으로 바뀌었다고 함.

## 2.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은 1974.12.10. 외무부에 대한 보고서에서 Mobutu 대통령의 방북이 콩고민주공화국의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전망함.

- ※ 동 대통령은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한다는 계획에 따라 자신이 희망하는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수락하지 않아 감정이 상하였을 것으로 추측됨.
- ※ 콩고민주공화국에 친북한 세력이 대두할 것이며, 언론도 중립적인 태도에서 친북한 태도로 변경될 것임.
- ※ 콩고민주공화국과 북한이 밀접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대외정책 면에서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3. 외무부는 Mobutu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관한 보고서에서 그의 평양 방문에도 불구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이 아직 남북한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북한이 자신의 대남정책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함.

# 일본 · 북한 경제관계

| 74-045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정보1
MF번호	D-18 / 19 / 1~92p

일본과 북한 간의 경제관계 관련 내용임.

## 1. 일본 · 북한 경제관계 상황

- ✪ 일본 · 중국(구 중공) 관계 정상화 이후에 일본 재계에서는 일본 · 북한 관계 정상화가 주요과제라는 인식이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 선례에 따라 대북한 경제관계 개선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음.
  - 특히, 재일본 조총련의 대형 수출입 상담 유혹과 일본 사회당의 압력으로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음.
- ✪ 북한에 대한 대형 플랜트 수출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심 대상의 하나는 일본 수출입은행 자금 사용 허용 여부임.
  - 일본 정부는 케이스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설정함.
- ✪ 1961년도에 8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무역액이 1972년에 이르러서는 1억 달러 이상이 되었으며, 1970년대 들어 증가폭이 급속히 늘어나는 현상을 보임.

## 2. 일본 상품 종합전시회 개최 문제

- ✪ 일본 정부는 대공산권 교역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1975년도에 북한에서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주관으로 종합무역 견본시(전시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추진함.
  - JETRO 대표단은 1974.3.8.~22. 평양을 방문하여 동 전시회 개최에 대하여 북한 측과 원칙적으로 합의함.

## 3. 무역주재원 상호교환 필요성 제기

- ✪ 일 · 조무역협회 사무국장이 1974.1~4월간 평양을 방문한 후에 4.23.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인정하면 1974년도에 민간무역사무소 상호 설치가 가능할 것임을 언급함.
- ✪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일본 업계에서는 주재원사무소 설치나 무역대표부 개선을 희망하고 있어서 일 · 조 무역협회는 일본 자민당이 무역대표부 설치를 인정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함.

# 일본의 대북한 플랜트 등 수출 및 수출입은행 자금 사용 승인 문제

| 74-045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D-18 / 20 / 1~271p

일본의 대북한 플랜트 수출 관련 내용임.

## 1. 일본 정부의 입장

- ※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의 대북한 플랜트 수출에 수출입은행 자금을 사용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됨.
  - 일본 정부는 1971년 북한의 민수용 물자 생산을 위한 플랜트 수출에 대하여 수출입은행 자금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함.
  - 오히려 일본 외상이 1973.1.12. 대북한 플랜트 수출에 수출입은행 자금을 사용하는 문제는 사안별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이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설정됨.
- ※ 또한 일본 정부는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인 COCOM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방침을 견지함.

## 2. 한국 정부의 입장

- ※ 일본의 대북한 플랜트 수출에 수출입은행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한·일본 기본조약에도 어긋나는 것임.
- ※ 설령 수출입은행 자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멘트, 철강과 같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직결되는 플랜트 및 제품(특수강, 볼트너트 등) 수출 자체에 반대함.

## 3. 경과

- ※ 신일본제철이 1973.9월 북한에 대한 제강공장 건설 및 무산-청진 간 철광석 수송 계획 참여를 추진함.
- ※ 일본 정부는 1973.11월 북한에 대한 민수용 타올 제조공장 및 볼트너트 제조공장 건설에 수출입은행 자금 사용을 최초로 허용함.
- ※ 북한은 1974.1월 일본으로부터 특수강 50만 톤 수입을 희망함.
  -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반대 입장을 반영하여 대북한 강관 수출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움.
- ※ 일본 외무성이 1974.12월 한일관계를 저해하는 대북한 수출입은행자금 사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함.

# 남북한 평화협정 제의 및 북한·각국 반응

| 74-0457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국제연합/동북아1
MF번호	Re-27 / 35 / 1-196p

박정희 대통령은 1974.1.18.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함.

## 1. 불가침협정 제의

- ※ 동 협정은 무력침략 포기, 내정간섭 포기, 휴전협정 효력 존속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 정부는 동 제의로 한국 정부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함.

## 2. 북한 측의 반응

- ※ 통혁당 방송이 1974.1.18. 동 제의를 비난함.
- ※ 노동신문이 1974.1.26.자 “평화협정 체결을 기피하며 두 개 조선 조작 놀음을 합리화 하려는 분열주의자들의 매국과 반역의 구호”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동 제의를 거부함.

## 3. 외부부의 평가

- ※ 동 제의가 우방국들로부터 호의적 반응을 일으켰고, 많은 국가들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였다고 평가함.
  - 다수 국가들이 북한이 제의한 평화협정과 비교하여 더 논리적이며 현실적이라고 평가함.
  - 북한의 불가침협정 체결 거부로 북한의 저의가 명확해졌으며 북한에 대한 불신이 한층 증대함.
- ※ 일부 국가들은 불가침협정 체결이 주한 유엔군 존속문제와 휴전협정과 관련한 유엔에서의 토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함.

# 북한의 대미국 평화협정 제의 및 북한·각국 반응

| 74-045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국제연합
MF번호	Re-27 / 36 / 1~127p

허담 북한 부수상 겸 외상이 1974.3.25. 대미국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함.

## 1. 대미 평화협정 제의

- ※ 북한은 1954.6.15. 제네바 회의에서 군비축소 및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문제를 고려할 위원회 구성을 제의한 이래 계속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여 왔음.
  - 1972년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어 남북대화가 진행되자 1973.3월 제2차 회의에서 군비 축소, 미군 철수 및 평화협정 체결 등 5개항을 제의함.
- ※ 허담 외상은 1974.3.25. 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에서 행한 보고에서 한국에서의 군대통수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과 미국이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함.
  - 쌍방 불가침 약속, 무력 증강과 군비 경쟁 중단, 외국 군대의 철수를 내용으로 함.
- ※ 북한 인민회의는 이러한 취지의 제안을 미국 의회에 송부하기로 결의함.

## 2. 각국의 반응

- ※ 한국 정부는 1974.3.26. 정부대변인 성명에서 동 제안이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아욕을 숨기려는 선전책동이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남북대화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요구함.
  - 외무부는 4월 작성한 분석 자료에서 북한이 유엔군을 포함한 외국 군대의 단계적 철수 실현, 유엔체제 제거, 남북대화 부진에 대한 책임 전가, 한국의 방위태세 약화, 한국의 국제적 지위 약화, 한국 내의 분열 조장 및 대미 접근 시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함.
- ※ 미 국무부 대변인은 3.25. 북한 측 제의 전문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으나,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의 요청과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주둔하고 있다며 한국 문제는 한국인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언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북한의 제의를 거부함.
  - 주유엔 북한대사가 4.4. 주유엔 미국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미 국무부는 이를 거절하라고 지시함.
- ※ 일본 언론들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직접교섭 제의가 이례적이며, 미국이 이에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제의를 한 배경으로 남북대화 정체, 중국과 소련의 압력 가능성 등을 제기함.
- ※ 미국, 독일 등 서방의 언론들은 사실 위주로 보도하였으나, 중국과 소련 관영지는 이를 전폭 지지한다는 논평을 냄.

# 남북대화 진전현황

| 74-0459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동북아1
MF번호	Re-27 / 37 / 1~52p

남북대화 현황 및 박정희 대통령의 불가침협정 체결 제의에 대한 외국 언론 반응 관련 내용임.

## 1. 남북대화 현황

- ✪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974.2월 북한에 의한 한국 어선 격침사건을 두고 남북 간의 상호비난의 격화로 한반도 정세는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었음을 보도함.
- ✪ 일본 언론들은 1974.2.27. 남북조절위 부위원장 회담에서 장기영 대표가 어선 격침사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수습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김영주 북한 대표는 청와대 습격사건(1968.1.21.)에 관하여 북한 측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였음을 보도함.
- ✪ 미국 LA Times지는 1974.3.5. 김동조 외무부장관이 3.4.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지연전술에 의한 남북대화 정체, 어선 격침 등 북한의 적대행위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이 중국을 통하여 북한을 자제시킬 필요성과 주한미군 계속주둔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음을 보도함.
- ✪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974.3.15. 주제네바 북한대표부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분열주의 책동으로 한반도 정세가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회귀하였다고 언급하였음을 보도하면서 이는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평가함.

## 2. 불가침 협정 체결 제의

- ✪ 일본 언론들은 1974.6월 박 대통령의 불가침협정 체결 제의에 관하여 대체로 사실 위주로 요약 보도함.
- 니혼게이지신문은 동 제의가 김대중 사건 이래 냉각된 남북 간의 대화분위기를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는 정세 판단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며, 유엔총회에 대비하여 불가침협정 체결, 유엔 동시가입을 다시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평화적 자세를 밝히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함.

# 이산가족재회 전문가회의, Florence(이탈리아) 1974.6.13.-16.

| 74-046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D-18 / 25 / 1~35p

한국적십자대표단은 국제인도법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itaria Law)이 1974. 6.13.~16.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개최한 이산가족 재회문제에 관한 정부 및 적십자 전문가 회의에 참가함.

## 1. 회의 개요

- ※ 국제인도법연구원은 1970년에 창립된 국제 인도법 및 인권문제 연구를 위한 학술단체로 본부는 이탈리아의 산레모에 있음.
- ※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용이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조건과 절차를 연구하고 이를 법규화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됨.
- ※ 동· 서독, 남· 북한을 포함한 30개국 정부 및 적십자 전문가들이 초청됨.

## 2. 한국의 참석

- ※ 외무부는 여타 국가의 참여 수준을 검토한 끝에 정부대표를 파견하지 않고 적십자대표단(이범석 부총재)만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함.
- ※ 대한적십자사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대표를 파견함.
  - 남북적십자회담에서의 한국적십자대표단의 기본 입장과 제안에 따라 토의에 임함.
  -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국제법규를 강화하는데 있어 종래 ICRC(국제적십자위원회)의 사업관례를 일반적 규칙으로 명문화 하도록 강조함.
  - 국가 주권과 인도주의의 활동 문제에 있어서는 인도주의의 사업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효를 거두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 북한은 초청되었으나 참석하지 않음.

## 3. 회의 결과

- ※ 동 회의는 한국이 주도하고 영국 등 9개국이 공동제안한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인권 및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진지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조속히 이루어 질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 외교단 행사에서의 외교단장(헝가리 대사)의 한국 등 비수교국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

| 74-0461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특수지역
MF번호	E-12 / 1 / 1~26p

핀란드 주재 외교단 단장인 헝가리대사가 한국 등 비수교국대사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임.

## 1. 사건 내용

- ※ 핀란드 주재 외교단 단장인 헝가리대사는 1974.1.31. 헬싱키에서 개최된 덴마크대사 이임송별 리셉션에 헝가리와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 이스라엘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를 초청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함.

## 2. 후속 조치

- ※ 주핀란드대사는 동 사실을 핀란드 외무성에 통보하는 한편, 외교단 우방 국가 대사들에 알렸음을 1974.2.1. 외무부에 보고함.
- ※ 위 사건은 주핀란드 포르투갈대사 주취 덴마크대사 송별 리셉션(1.24.)에서 알려져 이에 주핀란드 네덜란드대사는 1.25. 헝가리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외교단장은 자국과의 외교관계 유무와는 관계없이 외교단 전체를 대표하는 명예직이므로 외교단장의 차별대우는 국제관례에 위배됨을 지적함.
- ※ 주핀란드대사는 1.31. 헝가리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자신을 제외한 것은 특전 약탈 행위라고 비난하였으며, 헝가리대사는 관계기관과 협의 하겠다고 답장함.
- ※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등 국가 대사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헝가리대사는 향후 차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

## 동구권과의 인사교류 현황(통계)

| 74-046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특수지역
MF번호	E-12 / 2 / 1~23p

공산권국가와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외무부가 작성한 통계자료 및 분석내용임.

1. 외무부는 1974.2.19. “공산권과의 인사교류” 라는 제하의 인사교류 현황을 국가별, 유형별, 직업별, 시기별 등으로 분류함.

2. 한국인의 입국을 허용한 공산국가는 소련 및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였으며, 한국에 가장 많이 입국한 공산국가는 세르비아,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임.

※ 1973.2~74.2월 기간 중 88명의 한국인이 8개 공산권 국가를 방문하였으며, 공산권 4개국으로부터 24명이 한국을 방문함.

3. 동구권 국가들 중에서 외교적으로 가장 독자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나라는 소련과 세르비아임이 입증 되었음.

※ 이들 국가와의 교류는 체육, 예술 및 상담 등 관계개선의 가장 초보단계에 해당되는 제한된 비정치적인 인사교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한국의 개방정책(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으로 초기에는 소련 및 세르비아 등이 인사 교류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1973년 유엔총회를 전후로 하여 북한의 강한 방해 공작으로 주춤해졌음.

# 우방국을 통한 대동구권 관계개선 추진

| 74-046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E-12 / 3 / 1~27p

한국 정부의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추진 관련 내용임.

## 1.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

- ※ 주미국대사관은 1974.5.2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세르비아의 ADB 참여 이전에 한국이 세르비아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외교전략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의사를 타진함.
- 동 과장은 우선 세르비아가 ADB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다음에 ADB를 통하여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방안을 언급함.

## 2. Malik 인도네시아 외상의 유럽 공산권국가 방문

- ※ 외무부는 1974.5.18. 주인도네시아대사에게 Malik 외상이 동구권 방문(7월경) 기회에 한국의 대공산권 문호개방 정책을 방문국 고위층에 설명하여 주도록 부탁할 것을 지시함.
- ※ 동 외상은 1974.7.6.~10.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폴란드, 루마니아 및 세르비아를 방문함.
- ※ 동 외상은 8.2. 주인도네시아대사에게 자신의 동구권 방문 결과를 설명함.
  - 동구권 국가 외상들을 면담하고 자신이 평양을 방문하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의 필요성을 김일성에게 말할 것이라고 하자 모두 이에 찬성의 뜻을 표명하였음.
  - 폴란드와 세르비아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소련의 태도에 신경을 쓴다는 느낌을 주었음.
  - 한국이 우선 루마니아와의 관계개선에 최우선권을 부여함이 바람직하며, 동 국가와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면 소련 측을 자극하여 소련과의 관계 개선도 촉진될 것으로 봄.

## 3. 유럽 국가들을 통한 관계개선 시도

- ※ 주영국대사관은 영국 외무성에 루마니아에 문호개방을 권유해 줄 것을 요청함.
- ※ 주한 스웨덴대사는 1974.9월 중국·소련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는 한국의 대공산권 접촉은 큰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외무부 간부에게 언급함.
- ※ 주덴마크대사는 10월 외무부 지시에 따라 덴마크 정부에 덴마크를 방문하는 세르비아 대통령에게 한국의 대공산권 문호개방 정책을 설명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덴마크 측은 협조를 약속함.
- ※ 주노르웨이대사는 10월 노르웨이 수상의 폴란드 및 헝가리 방문 기회에 한국의 외교관계 수립 희망을 이 국가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노르웨이 외무성에 요청함.

## 공산권여행 허가 - 불가리아

| 74-0464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구
MF번호	E-12 / 4 / 1~10p

1. 캐나다 배구 국가대표팀 코치로 근무하는 한국인 박무가 불가리아를 방문하는 캐나다 국가대표팀을 동행하기 위하여 1974.8월 주캐나다 불가리아대사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됨.
2. 외무부는 1974.8.24 주캐나다대사관에 사증발급이 거부된 경위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주캐나다대사관은 캐나다 배구협회 및 외무성에 문의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1974.4월 캐나다에서의 배구시합 시 불가리아팀에 박무의 한국 국적을 알리고 불가리아 입국허가 가능성을 문의한 결과 허가 불가를 알려음.
  - ※ 주캐나다 불가리아대사는 8.16 캐나다 외무성 직원에게 동인의 입국사증 허가를 불가리아 정부에 청훈하였으나 부결되었음을 설명함.

# 공산권여행 허가 - 체코슬로바키아

| 74-046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특수지역
MF번호	E-12 / 5 / 1~43p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에서 1974년 중 개최된 문화행사 참석 관련 내용임.

## 1. 제19회 Karlovy Vary 국제영화제

- ※ 문화공보부는 3.8. 외무부를 경유하여 주이탈리아대사관에 Karlovy Vary 국제영화제 참가 관련 정보를 파악·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주이탈리아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의 대공산권 문화분야 접촉창구 역할을 하는 인사(명칭K로 주이탈리아 소련대사관 직원)를 통하여 협조를 부탁하였으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 ※ 외무부는 4.29. 주이탈리아대사관에 K를 통하지 않고 직접 주이탈리아 체코대사관에 참가 신청서 제출을 지시함.
- ※ 주이탈리아대사관은 5.6. 외무부에 영화제 주최 당국이 체코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초청장을 보내지 않는 상황으로 추정되며, 정식 초청장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반응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함.

## 2. 기타

- ※ 체코 유네스코위원회가 제2회 세계아동미술전 행사 개최를 한국 유네스코위원회에 알려오면서 작품 출품을 의뢰하여 음에 따라 한국 유네스코위원회가 한국일보를 통하여 작품 공모 등을 준비함.
- ※ 서울시는 8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국제 주택 및 도시계획연맹 주최 제32차 세계회의에 참가하는 서울시 주택국장이 동 회의의 일환으로 주선되는 체코와 폴란드 학술 관광 참가를 위해서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함.  
- 외무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동 국장의 폴란드 방문은 취소되었고 체코 방문은 8.11. 프라하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비엔나로 되돌아 음.

## 공산권여행 허가 - 헝가리

| 74-046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구담당관
MF번호	E-12 / 6 / 1~32p

한국인의 1974년도 헝가리 개최 국제행사 참석 관련 내용임.

### 1. 정두영 입국 거부 사건

-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음대 조교수인 한국 교포 정두영은 헝가리 TV가 4~5월 개최하는 제1회 국제지휘자 경연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부다페스트에 도착하였으나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미국으로 되돌아 감.
-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동인은 헝가리 당국의 사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4.23. 헝가리에 도착하였고 공항 당국은 주최 측으로부터 2주 전에 이미 동인의 참석 취소 통보를 받았음을 언급함.  
- 이에 대하여 동인은 자신은 통보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함.
- ※ 외무부는 6.15 동인에게 향후 공산권국가 여행 시에는 재외공관의 협의와 협조를 구하도록 조언함.

### 2. 도로공사 직원의 International Road Federation 지역회의 참석

- ※ 1974.9월 헝가리에서 개최되는 International Road Federation 지역회의에 참석하는 도로공사 직원의 헝가리 입국사증 획득과 관련하여 주미국대사관이 지역회의사무국의 협조를 구함.

## 공산권여행 허가 - 폴란드

| 74-046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구
MF번호	E-12 / 7 / 1~19p

1. 서울시는 1974.8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국제 주택 및 도시계획연맹 주최 제32차 세계회의에 참가하는 서울시 주택국장이 동 회의의 일환으로 주선되는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학술 관광 참가를 희망한다면서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함.

※ 외무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동 국장의 폴란드 방문은 취소됨.

2. 정부는 대한성서공회 대표가 1974.9월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세계성서공회 실행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행을 허가함.

※ 그러나 동인은 영국 주재 폴란드대사관에서 사증을 받지 못하고 바로 바르샤바에 도착하였는바, 공항 이민국이 동인의 입국을 거부하여 귀국함.

529

## 공산권여행 허가 - 루마니아

| 74-046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구담당관
MF번호	E-12 / 8 / 1~26p

### 1. 정부는 교환교수로 일본 체류 중인 김용준 고려대학교 교수의 루마니아 여행을 허가함.

※ 동인은 1974.7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되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 회의”에 참가함.

### 2. 정부는 한국에서 1974.6월 개최되는 여자농구대회에 참가하는 이란 팀 코치(루마니아 국적자)에게 사증을 부여함.

530

### 3. 루마니아 정부는 1974.8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되는 세계인구대회에 참가하려는 한국인 참석자에게 사증을 발급함.



## 공산권여행 허가 - 소련

| 74-046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구담당관
MF번호	E-12 / 9 / 1~14p

1. 프랑스 파리 주재 한국특파원들이 쾨피두 프랑스 대통령의 소련 방문(1974.3월) 취재를 위하여 한국 정부로부터 소련 여행 허가를 받았으나 소련 당국이 입국사증 발급을 거부함.
2.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74.5월 현지 외교단 친목회가 주최하는 소련 단체여행(1974.10월)에 대사관 직원이 친목회의 일원으로 참가 신청을 하여도 좋은지 외무부에 청훈하였으며, 외무부는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함.
3. 일본 척식대학 강사인 한국 여권 소지자가 1974.11월 소련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체육회 및 스포츠의 세계 과학회의” 세미나 참석이 허용되어 소련을 방문함.

53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대동구권 교류문제

| 74-047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구
MF번호	E-12 / 10 / 1~18p

1. 외무부는 동구권 미수교 공산국가들과의 교류를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1974.7.19. 경제기획원 등 11개 정부 부처 및 국회도서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어 향후 이 국가들과의 교류에 대해 사전 외무부의 협조를 구하여 줄 것과 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그 이유로서 상대가 체제가 다른 공산국가이며, 북한이 방해 공작을 할 우려를 제기함.

2. 외무부는 1974.8.22. 재무부 등 4개 부처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6·23 선언을 전후하여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를 위하여 취한 조치 내지 계획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체신부는 비적성 공산국가(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등 6개국)와의 통신망 구성 현황을 제출함.

# 동구권 교류 - 신 유고연방(구 유고슬라비아)

| 74-047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구주3/특수지역
MF번호	E-12 / 11 / 1~134p

동유럽 미수교국인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와의 1973~74년도 중 교류 현황임.

## 1. 한국인에 대한 여행허가

- ✪ 정부는 1973년 한완상 교수의 세르비아 여행을 허가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12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로 개최되는 “지역사회 개발 국제 비교연구” 세미나에 세르비아 및 폴란드 학자 초청을 위한 사전 교섭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동 교수에 대한 여행 허가를 9월 정부에 요청함.
- ✪ 1974.7월 세르비아에서 개최되는 국제산악연맹총회에 한국산악연맹과 한국산악회 대표가 정부의 여행 허가 및 세르비아 정부의 입국 허가를 받아 참석함.
- ✪ 정부가 10월 세르비아에서 개최되는 국제도서박람회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가 거부됨.
- ✪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8차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 중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새마을 운동에 관한 협의를 목적으로 세르비아 여행허가를 정부에 요청함에 따라 문화공보부가 이를 협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함.

## 2. 세르비아인에 대한 입국 허가

- ✪ 한국 과학기술연구소의 부설 기관인 선박연구소의 수석 기술고문으로 추천된 세르비아 국적의 선박 기술자가 주영국대사관에서 입국 사증을 취득하고 1974.6.3.에 한국에 입국함.
  - 동 사증발급 경위를 둘러싸고 법무부는 외무부에 조사를 요구하면서 법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을 것을 요청함.
- ✪ 정부는 한국 가족계획연구소에서 7월 개최하는 인구문제 세미나에 참석하는 세르비아 국적 인사에 대하여 입국 사증을 발급함.

#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Algiers(알제리) 1974.3.19.-21.

| 74-047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F-5 / 4 / 1~234p

비동맹국 의장단(조정위원회) 외상회의가 1974.3.19.~21. 알제리에서 개최됨.

## 1. 비동맹 의장단 회의 소집

- ※ 1973.9월 제4차 비동맹 정상회담에서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각종 선언과 결의사항 증진을 목적으로 1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의장단을 설치함.
- ※ 1974년에 의장 역할을 수입한 알제리가 동 회의를 소집함.
  - 자원문제 토의를 위한 유엔 특별총회, 중동문제 및 1974년도 각료급 회의 개최 문제 등이 동 회의의 주된 의제임.

534

## 2. 외무부의 조치

- ※ 동 회의 개최 소식을 접한 외무부는 1974.3.13. 이후 유엔 및 의장단 회원국이 주재하는 재외공관에 주재국 정부가 한국문제 토의 시 북한입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 북한은 비동맹 회의에 앞서 잠비아, 알제리 대통령 및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간부 초청 등 교섭 활동 전개

## 3. 회의결과

- ※ 참가국
  - 17개 의장단 회원국 외상, 24개 비동맹국 외상이 옵서버로 참가
- ※ 주요 회의결과(한국문제 불포함)
  - 유엔 특별총회에서 토의할 불평등한 국제경제관계 시정을 위한 조직적이며 통일된 입장, 원유 생산국의 가격결정권,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움 극복 방안
  - 비동맹국 경제 및 사회발전 기금 설치
  - 비동맹 각료회의를 1975년 페루에서 개최
  - 원자재에 관한 개도국 회의를 1975년 세네갈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알제리 외상을 제29차 유엔총회 의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정

## 북한의 비동맹회원국 가입 신청 정보 입수

| 74-047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F-5 / 5 / 1~29p

1. 로무로 필리핀 외상은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방문 후 귀국길에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후 1974. 8.29. 주필리핀 한국대사에게 장거리 국제전화를 통하여 자신이 세르비아 체재 중에 알게 된 아래 정보를 전달함.

※ 북한이 비동맹그룹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세르비아 정부는 1974년 가을 유엔총회에서 이를 지원키로 결정함.

2. 주필리핀대사의 보고를 접한 외무부는 비동맹국가 주재 대사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각 대사관은 주재국 외무성을 통하여 관련사항을 파악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 대다수 국가들은 북한의 가입신청서 제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엔총회 기간 중에 개최될 비동맹 외상회담 참여를 목표로 한 것일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임.

3. 외무부는 북한의 가입신청서 제출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유엔총회를 앞두고 이를 구실로 비동맹 진영과의 유대강화를 과시하려 할 것임을 의심함.

※ 북한은 1973.9월 알제리에서 개최된 제4차 비동맹 정상회담에서 가입 신청을 기도하다가 한국 측의 저지로 실패한 바 있음.

53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일본 및 미국의 대한국 안보정책

| 74-0474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G-35 / 1 / 1~89p

미국 및 일본의 1974년 중 대한국 정책 관련 내용임.

## 1. 미국 의회의 한국 정부 비판

-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2.18. 공개한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면서 미군 주둔은 전쟁 시에 자동적으로 미국을 개입시킬 위협이 있음을 경고하고 정책 전환을 제언함.
- ※ 일본 언론들은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표명한 대한반도 정책 불변 입장, 7~8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한국 인권 탄압에 관한 의회 청문회에서의 한국 긴급조치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해 보도함.

536

## 2.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분석

- ※ 한국 합동참모부가 2.6. 입수한 일본 방위청 자료는 주한미군은 금후 적어도 2~3년 이내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며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변화는 닉슨독트린의 일시 정지 또는 실질적인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함.

## 3. 일본 외상의 한반도관련 발언

- ※ 기무라 일본 신내각 외상은 8.19. 의회 발언에서 “한반도 전체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긴요하다”고 언급함으로써 1969년 미일공동성명에서의 “한국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소위 한국 조항을 일본 정부의 재해석을 통하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촉발함.
- ※ 동 외상은 8.29. 의회 및 외교클럽 발언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전혀 없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의구심을 야기함.
  - 동 외상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대해 자신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6·25 전쟁 시와는 다르다는 의미로 한 발언이라고 해명

# FY74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3권 (V.1 수권법)

| 74-0475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Re-28 / 12 / 1~434p

닉슨 미국 대통령이 1973.5.1. 의회에 제출한 FY1974 대외원조 수권법안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1973.12.18. 발효함(닉슨 대통령 서명).

## 1. 미국 행정부의 법안

- ✪ 미국 행정부는 1974년도 예산안 중에 대외 군사원조를 약 29억 달러로 책정(무상군원 652백만 달러와 차관 525백만 달러 등)함.
- 한국에 대한 무상군원 261백만 달러, 군사차관 25백만 달러, 교육훈련비 2.4백만 달러, 잉여장비 공여 43백만 달러 책정

## 2. 미국 의회의 수정

- ✪ 미국 상원의 폴브라이트 외교위원장은 미국 대외 군사원조 계획을 대폭 삭감하고 수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며(2년내에 무상군원 폐지, 수원액 50퍼센트 현지화 예치 등), 한국에 대한 무상 군원을 110백만 달러로 책정함.
- 미국무차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발언을 통하여 2년내 군원 폐지에 반대하면서 한국군 현대화 계획 추진에 상당한 진척이 있어서 한국의 자조 달성이 조기에 실현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주한미군도 5년 이내에 철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 상원 외교위원회는 1973.5.22. 폴브라이트 법안을 무상군원 폐기 시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채택하고 본회의에 회부함.
- 본회의는 6.29. 무상군원 420백만 달러, 폐지 시한 삭제, 현지화 예치 10퍼센트로 수정하여 채택함.
- ✪ 하원에서도 7.26. 수권법안을 채택함(무상 550백만 달러 등).
- ✪ 상하원 협의회는 양원 수권법안 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11.4. 총 원조액 24억 달러(무상 485백만 달러 포함)로 합의함.
- 동 조정안이 12.4. 하원에서, 12.5. 상원에서 각각 통과
- 닉슨 대통령이 1973.12.18. 동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발효

# FY74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3권 (V.2 지출법 및 대한군원)

| 74-0476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Re-28 / 13 / 1~260p

미국 FY1974 대외원조 지출을 위한 의회 심의 및 한국 정부의 대한 군원 증액 교섭 관련 내용임.

## 1. 계속지출법

- ※ FY1974 대외원조법안이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게 되자 하원이 1973.9.30.까지 유효한 전년도 수준의 한시적 지출을 허용하는 계속결의안을 6.26. 채택함.
- ※ 그러나, 상원에서 하원 결의안 중에 대외원조 지출에 관한 부분을 삭제함에 따라 6.30. 양원 협의에 회부됨.
- ※ 행정부와외 타협으로 대외원조 지출 조항이 부활되었으며, 동 수정안이 양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973.7.1. 발효됨(닉슨 대통령 서명).

## 2. 지출법

- ※ 미국 하원 본회의는 총58억 달러 규모의(무상군원 500백만 달러 포함) FY1974 의원 지출법안을 1973.12.11. 가결하여 상원으로 이송함.  
- 양원 협의를 거쳐 12.20. 58억 달러 규모(무상군원 450백만 달러 포함)의 의원 지출법안이 통과됨.

## 3. 대한 군원 증액 교섭

- ※ 한국 정부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수권법안 내의 국가별 배정액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 군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군원이 1975년 이후에도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 및 주미국대사관을 통하여 교섭을 전개함.  
- 국방부는 1973.8.17. 외무부에 FY1974 군원 중에 우선 운영유지비 3천만 달러의 우선 배정을 미국 측에 강하게 요구해 줄 것을 요청함.  
- 경제기획원은 8.28. 외무부에 군원 10퍼센트 현지화 적립 의무로 인한 재정 압박을 지적하면서 동 조항 철회를 위해 미국 측과 교섭해 줄 것을 요청함.
- ※ 1974.1.2. FY1974년 대한 군원으로 무상원조 134백만 달러, 군사차관 25백만 달러 등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전체 군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함.  
- 그러나, 캄보디아 사태 등 긴박한 지출이 요구되는 재정요소 때문에 배정된 지원액이 조정되어 최종적으로 3천만 달러가 삭감됨.



# FY75 미국 국방 예산

| 74-0477 |

생산연도	1974-1975
생산과	북미2
MF번호	G-35 / 3 / 1~293p

미국 행정부가 1974.2.4. 발표한 FY75 국방예산안 관련 내용임.

## 1. FY75 국방예산안

- ※ 국방예산안은 840억 달러로 총예산의 29퍼센트임.
  - 총병력은 2,152천명으로 FY74 대비 미세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일반목적 이상전투 사단은 13개 사단에서 13 1/3사단으로 증가
  - 대응력 및 전투력 강화, 공수능력 강화, 아시아 안보지원 계속 등 사업 설정
- ※ 이와는 별도로 수권법안에서 요구된 대외군원은 무상 925백만 달러로 FY74보다 240백 만 달러가 증액됨.
- ※ 미국 의회는 1974.9.24. 행정부가 제출한 국방예산안을 14억 달러 삭감한 826억 달러로 확정 채택함.

## 2. 한국 정부의 관심사항

- ※ 외무부는 1974.2.4. 주미대사관에 미 국방예산안이 주한미군 병력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무상군원 증가원인 및 각 국가별 배당액에 대하여 파악토록 지시함.
- ※ 외무부는 “FY75 미국의 주요 국방정책과 동북아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안)에서 미국의 국방 정책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평가함.
  - 주한미군의 목적은 1960년대까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 균형 유지였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는 동북아 전체의 세력 균형과 긴장완화를 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전환됨.
  - 미 당국자의 공약과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감안할 때 FY75 기간 중에는 미군 전투력 감소를 야기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FY75 미국의 대외원조법(수권법) 전4권 (V.1 1974.2-6)

| 74-0478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35 / 4 / 1~286p

닉슨 미국 대통령이 1974.4.24. 의회에 제출한 FY75 대외원조법(수권법)안 관련 내용임.

## 1. 행정부 안의 내용

- ※ 무상원조 925백만 달러, 군사차관 315백만 달러, 안보지원 원조 63백만 달러 등임.
- ※ 대한 군원은 총 213백만 달러로서 무상원조 161.5백만 달러, 군사차관 52백만 달러임.
  -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 대한 원조 필요성 때문에 한국에 대한 원조는 삭감되었으나, 미 행정부는 한국군 현대화 계획의 달성에 중점을 두고 무상원조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군사 차관을 증액함.

540

## 2. 의회 청문회에서의 증언

- ※ 미국 의원들은 법안 심의 청문회에서 한국 등 수원국 중에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된 국가들에 대한 군사원조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
  - FY73 대외원조법 제32조에 규정된 인권 탄압국에 대한 군사·경제 원조 금지를 근거로 함.
- ※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1974.6.4. 하원 외무위원회에서 수원국이 민주적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미국은 그 지역의 안보와 국익 등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원조를 제공함을 언급함.
  - 동 장관은 6.7.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도 대한 군원은 북한의 위협과 한국군 현대화 계획과 관련 있다는 입장을 설명함.
- ※ 솔레진저 미 국방장관은 6.5. 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군 현대화 계획이 자금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1975년도 완료 목표는 유효하다고 하면서, 한국에서의 군사력 균형 유지를 위하여 원조가 필요함을 답변함.

# FY75 미국의 대외원조법(수권법) 전4권 (V.2 1974.7-9)

| 74-0479 |

생산연도	1974-1975
생산과	북미2
MF번호	G-35 / 5 / 1~403p

닉슨 미국 대통령이 1974.4.24. 의회에 제출한 FY75 대외원조법(수권법)안 관련 내용임.

## 1. 행정부 안 내용

- ※ 무상원조 925백만 달러, 군사차관 315백만 달러, 안보지원 원조 63백만 달러 등임.
- ※ 대한 군원은 총213백만 달러로서 무상원조 161,5백만 달러, 군사차관 52백만 달러임.

## 2. 의회의 심의 및 조정

- ※ 의회는 1974.7.1.까지 FY75 대외원조법안 통과가 불가능하게 되자 전년도 수준으로 9.30.까지 잠정적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함.
- ※ 하원에서는 한국 인권 관계 청문회가 7.30.과 8.5. 두 차례 개최되어 의원들이 독재국가에 대한 원조 중단 내지 삭감을 주장함.
  - 프레이저 의원은 8.20. 대한 군원을 축소하는 수정안을 외무위에 제출함.
- ※ 상원에서도 한국 등 독재국가에 대한 군사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처치 의원이 8.13. 발의한 대한 군원 수정안이 채택됨.
  - 무상원조 91.5백만 달러, 군사차관 42.45백만 달러로 하되 매년 점진적으로 삭감하여 3년 후에는 종결함.
- ※ 외무부는 하원 프레이저 안과 상원 외교위원회 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군 현대화계획에 대하여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수권법안 통과 저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 FY75 미국의 대외원조법(수권법) 전4권 (V.3 1974.10-75.3)

| 74-0480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35 / 6 / 1~345p

닉슨 미국 대통령이 1974.4.24. 의회에 제출한 FY75 대외원조법(수권법)안 관련 내용임.

## 1. 행정부 안 내용

- ※ 무상원조 925백만 달러, 군사차관 315백만 달러, 안보지원 원조 63백만 달러 등임.  
- 대한 군원은 총 213백만 달러로서 무상원조 161.5백만 달러, 군사차관 52백만 달러임.

542

## 2. 의회의 심의 및 조정

- ※ 미국 상하원 의원 104명은 1974.9.20. 수원국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키신저 미 국무장관에게 송부함.
- ※ 하원 외무위원회가 10.25. 채택한 대한 군원에 관한 수권법안에 대하여 프레이저 의원 등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여 12.11. 하원 본회의에서 동 수정안이 채택됨.  
- 총액을 145백만 달러로 하되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있는 경우 이를 165백만 달러로 증액함.
- ※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처치 의원이 8.13. 발의한 대한 군원 수정안이 심의를 거쳐 12.4. 상원 본회의에서 채택됨.  
- 무상원조 91.5백만 달러, 군사차관 42.45백만 달러로 하되 매년 점진적으로 삭감하여 3년후에는 종결함.
- ※ 상하원은 양측의 입장을 조정한 결과, 12.16. 프레이저 수정안인 하원 안을 채택함.  
- 의회는 수권법안에 도입된 502B조항을 통하여 군원과 인권문제를 결부시켰으며, 행정부로 하여금 수원국의 인권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함.
- ※ 닉슨 대통령의 하야로 새로 취임한 포드 대통령이 1974.12.29. FY75 의원 수권법안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동 법안이 발효됨.

# FY75 미국의 대외원조법(수권법) 전4권 (V.4 언론보도)

| 74-0481 |

생산연도	1974-1975
생산과	북미2
MF번호	G-35 / 7 / 1~133p

미국의 FY75 대외원조법(수권법)안에 관한 한국 및 미국의 언론보도 내용임.

## 1. 한국 언론 보도

- ※ FY75 수권법안에 포함된 대한민국 군사원조가 한국군 현대화 계획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의회 심의과정에서의 토의 내용 등을 보도함.
  -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이 언급한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공약과 한국군 현대화 계획 지원 공약을 보도
  - 또한, 미국 의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 인권탄압 문제가 대한 군원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도 보도

## 2. 미국 언론 보도

- ※ 미국 의회의 군사원조액 대폭 삭감 입장, 이에 대한 행정부의 반응 등을 사실 위주로 보도함.

54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청와대 안보 정세보고 회의자료

| 74-0482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구주/북미1
MF번호	G-35 / 8 / 1~149p, Re-28 / 14 / 1~79p

외무부가 청와대 안보 정세보고 회의를 위해 작성한 회의 자료임.

## 1. 안보 조찬회 자료(1972.2월 작성)

- ※ 군원문제에 관한 현황 및 조치 결과 보고
- ※ 주월 한국군 철수문제
- ※ 대일본 외교정책 강화 방안
- ※ 북한의 위장공세에 대한 한국의 외교 정책
- ※ 유엔 대책

544

## 2. 안보 소회의 자료(1974.7월 작성)

- ※ 일본 자민당 좌파 인사 미국에서 김대중 사건 회의 개최 추진
- ※ 한국 해경함정 피격사건
- ※ 북한의 위조 미화 칠레 반입 사건
- ※ 대에과도르 시멘트 수출 건의
- ※ 북한의 유네스코 가입신청 등

## 3. 1974년 4/4분기 안보정세 종합평가 보고서(1974.12월 작성)

- ※ 국제 및 주변 정세 일반
- ※ 북한의 대외동향
- ※ 한국의 대외정책
- ※ 한국의 안전보장과 유엔
- ※ 특기사항, 문제점 및 대책방향 건의

# 한국 안보관계 자료

| 74-0483 |

생산연도	1969-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35 / 9 / 1~104p

1969~74년도 한국 안보관계 주요사건 일지 및 미국 의회의 한국 안보관계 일지임.

## 1. 한국 안보관계 주요사건 일지

- ※ 1969.7.25. 닉슨 미국 대통령 Guam 성명
- ※ 1969.8.22~23. 한·미국 정상회담 개최(San Francisco), 공동성명서 발표
- ※ 1970.8.24~26. 애그뉴 미국 부통령 방한
- ※ 1972.1.21. 닉슨 대통령 중국(구 중공) 방문
- ※ 1972.7.4. 7·4 남북공동성명
- ※ 1972.9.25~30. 일본·중국 정상회담
- ※ 1973.1.27. 월남 휴전협정 조인
- ※ 1973.6.23. 6·23 대통령 특별선언
- ※ 1974.8.8. 닉슨 대통령 사임 발표
- ※ 1974.11.22~23. 포드 미국 대통령 방한, 한·미국 정상회담 및 공동성명서 발표

## 2. 미국 의회의 한국 안보관계 일지

- ※ 1969.5.28. 미 행정부, FY70 대외원조지출 법안(26억달러 규모) 의회 제출
- ※ 1969.12.20. 상하원협의회 FY70 대외원조지출 법안(18억달러 규모) 합의
- ※ 1970.2.9. FY70 대외원조지출법안 최종 확정(닉슨 대통령 서명)
- ※ 1970.12.14. 상하원협의회 FY71 대외원조지출법안 합의(19억달러 규모)
- ※ 1971.4.21. 미 행정부 FY72 대외원조지출법안(35억달러 규모) 의회 제출
- ※ 1971.12.3. 상하원 협의회 FY72 대외원조지출법안(27억달러 규모) 합의
- ※ 1973.7.26. 미 하원 외교위 FY74 대외원조지출법안(28억달러 규모) 통과
- ※ 1974.1.2. 닉슨 대통령 FY74 대외원조지출법안 서명
- ※ 1974.4.24. 미 행정부 FY75 대외원조지출 법안(19억달러 규모) 의회 제출

## 미국 FMS 차관에 의한 대여합정구매

| 74-048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Re-29 / 11 / 1~46p

미국 FMS(대외군사판매) 차관을 이용한 합정구매 관련 내용임.

1. 국방부는 한·미국 간 합정대여협정에 의거, 운영 중인 합정 38척 중 37척에 대해 협정기간 만료에 따른 연차적인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외무부의 협조를 요청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주미국대사에게 구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하면서 국방부 군수차관보의 미국 방문 일정(1974.4.1.~4.)을 통보함.

546

2. 외무부는 FY74 FMS 잔여분 배정방식 변경 및 대여합정 구매 건에 관해 1974.4.3. 주미국대사관 담당관이 미 국무부 군원과장과 교섭한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함.

※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여합정 37척 FMS 구매협정 체결 문제에 관해 주한 미 합동군사지원단 측과 절충 중에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주미국대사관 담당관이 1974.6.11. 미 국무부에 FMS에 따른 36척의 합정구매에 관해 문의한바, 미국 측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미 해군성과 협조하여 조치할 것을 답변함.

4. 외무부는 미 국무부가 1974.6.18. 한국 측 합정구매 요청을 수락하고, 앞으로 미 해군성과 주미국대사관이 직접 접촉하여 처리할 계획을 알려왔음을 국방부에 통보함.



#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각료이사회. Ottawa, 1974.6.18.-19.

| 74-0485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서구1/안보
MF번호	G-36 / 8 / 1~12p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각료이사회가 1974.6.18.~19.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됨.

1. 주캐나다대사는 1974.6월 동 회의에서 14개항의 “오타와 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며, 동 선언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회원국 간 이미 합의를 본 바 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수개의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 조정을 한 후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함.

2. 트뤼도 캐나다 수상은 NATO 각료이사회 개최사에서 동서 간의 관계개선에 있어서는 식량 및 에너지 조달문제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동서간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NATO에 있어서 생활의 균등화, 경제발전을 통한 분쟁의 해결, 환경보호를 위한 관심 제고를 강조함.

※ Luns NATO 사무총장은 1973.10월 중동전쟁은 소련의 위협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동서 간 화해의 한계에 따른 회원국 간 결속을 강조함.

3. NATO 각료회의는 1974.6.19. “NATO Declaration on Atlantic Relations”을 발표함.

※ 동 선언은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이 1973.4월 제의한 “New Atlantic Charter”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NATO 회원국 상호 간 및 미국과 EC 회원국과의 보다 광범위하고 긴밀한 협조를 다짐하는 것이라고 주미국대사가 보고함.  
- 회원국은 경제정책상의 충돌을 제거하면서 경제협력을 장려하고 NATO 지역 외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회원국의 공통이익이 저해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호 협의하려고 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됨.

# WARSAW(바르샤바) 조약기구 정치자문위원회 회의, Warsaw(폴란드) 1974.4.17.-18.

| 74-048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구
MF번호	G-36 / 9 / 1~15p

바르샤바조약기구 정치자문위원회가 1974.4.17.~18.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됨.

1. 소련, 불가리아,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동독 등 동구 7개국의 정상들이 회동하여 구주안보, 군축문제, 국제긴장완화, 1975년 만료되는 바르샤바조약의 유효기간 연장문제 등에 관해 논의함.

※ 동 회의는 1972.1월 이래 2년 만에 개최됨.

2. 동 회의는 공동코뮤니케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군이 해체되면 바르샤바조약군도 해체될 것이며, 서방 측에 유효한 군축조치가 실현되지 않는 한 동구 불력이 존속하고 동구 조약권의 방위력을 증강시킬 필요가 있다고 공표함.

※ 동 · 서구 간의 긴장완화, 전 구주안보협력회의 개최, 중유럽의 병력 삭감 교섭 촉진 등을 포함함.

3. 동 회의는 소련의 동구권 내부에 있어서의 지위 확립과 동구권의 단결을 과시하는 한편, 세계긴장완화 추구를 강조하고 NATO의 해체를 주장함으로써 감군 회담, SALT(전략무기제한협정) 회담 등에서 동구 지역에 유리한 국제여론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관측되고 있음.

4. 한국 문제에 관해서는 공동코뮤니케에서 한국을 외세의 간섭 없이 평화적, 민주적으로 통일하려는 북한의 여건 조성과 같은 건설적 제의를 지지한다고 명시함.

# 인도양지역 안보문제

| 74-0487 |

생산연도	1974-1975
생산과	북미2
MF번호	G-36 / 10 / 1~59p

## 1. 인도와 스리랑카 수상은 1974.1.29. 공동성명에서 인도양을 강대국의 주도권 쟁탈로부터 제외하며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는 입장을 천명함.

- ※ 반다라나이케 스리랑카 수상의 인도 방문(1974.1.23.~29.)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평화수역을 선포함.
- ※ 동 평화수역 선포는 수에즈 운하의 재개통으로 모든 선박의 인도양 통과가 필연적인 상황에서 인도양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한 사전 조치인 것으로 보임.

## 2.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1974.2월 프라우다 등 소련 신문들이 인도양의 Diego Garcia 섬에 군사기지 시설을 확장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함.

- ※ 소련 신문들은 미국이 인도양을 평화지역으로 하려는 인도 및 연안국의 희망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중국(구 중공)에 대해서도 인도양에서의 소련 해군에 대한 제국주의적 음모에 가담하여 미국의 군사기지 시설확장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보도함.
- ※ 미국은 1969년 이래 Diego Garcia 섬에 통신시설과 소규모의 비행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1974년부터 29백만 달러를 들여 비행장 활주로, 유류저장시설 및 항만시설의 확장 계획을 추진함.

## 3. 주미국대사관이 인도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정책에 관하여 외무부에 송부한 자료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인도양 진출 현황
  - 소련은 1968년부터 본격적으로 해군 진출 개시
- ※ 미국의 입장
  - 1973.10월 중동전 발발 시 인도양 및 페르시아만에서의 미국의 능력 과시 필요성 절감
  - 석유문제, 통상 및 경제 관계, 인도양 지역의 국제적 지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으로 중요시
  - 1968년 미국·영국 간 50년간 공동사용 협정에 따라 운영 중인 Diego Garcia 섬의 중요성을 감안, 기지 건설을 위한 29백만 달러 예산 요청

##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 구상

| 74-048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구
MF번호	G-36 / 11 / 1~107p

1. 본 문서철에는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체제 구상에 관한 외무부 담당부서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 ※ 동 자료는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 구상의 발단과 배경, 무력 불사용 등 안보체제의 내용, 타국의 반응, 전망과 한국과의 관련성 등을 언급함
2. 오기평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의 논문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전보장론 소고”는 아시아적 여건과 제약, 제안 내용과 각국의 반응, 집단안보론의 이론적 전제 등에 관해 서술함.
3. 소련의 사마르칸트에서 1974.9.25.~27. “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제하로 개최된 국제회의에 30개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석함.
  - ※ 회의 주최기관
    - 비정부기관인 Soviet Committee for AAPSO(아·아인민단결기구)
  - ※ 목적
    - 소련의 아시아 지역 평화 노력 지속
    - 중국의 고립화 추진
  - ※ 평가
    - 소련의 집단안보체제 지속 추진 과시 기도
    - AAPSO를 통한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체제 추진은 제3세계에서의 중국 배제 및 주도권 장악 의도
    - 선전효과 외에는 실질적 의의는 별무한 것으로 관측
4. 아시아 집단안보론에 관한 Borisov의 논문 "Whither is the Flow directed?" 는 아시아 집단안보구상의 배경과 내용 등 주로 중국을 공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SOFA -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1-92차

| 74-048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2012-39 / 7 / 1~367p

## 1. 제91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 ※ 개최일자 및 장소: 1974.1.24., 주한미군 SOFA 회의실
-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R. Murphy 중장(주한미군 참모장)
- ※ 회의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에 대한 6건의 신규과제(한남동 소재 Camp Niblo 부지 일부 반환 등) 부여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건의 11건(김포국제공항 시설확장을 위한 미군공여 일부 부지의 조건부 해제 등) 승인
  -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이 한국에서 수령한 화물에 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는 문제 등 관련 재무분과위원회의 건의 4건 승인

## 2. 제92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 ※ 개최일자 및 장소: 1974.2.28., 주한미군 SOFA 회의실
-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R. Murphy 중장(주한미군 참모장)
- ※ 회의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에 대한 12건의 신규과제(포천군 소재 부지 3,829에이커의 임시사용 허가기간 연장 등) 부여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건의 4건(주한미군 지하전화선 가설을 위한 영등포구 등 소재 부지 1.2. 에이커 지역권 설정 등) 승인
  - 보건·위생, 마약 등 관련 3개 패널의 활동현황에 관한 군민분과위원회의 제17차 보고서 승인
  - 주한미군 측은 상무분과위원회 협의를 거쳐 초청계약자 지정 및 철회 관련 사항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서류 제출

3. 본 문서철에는 상기 합동위원회 회의록 및 해당 분과위원회의 건의문서(영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 SOFA -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3-95차

| 74-049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2012-40 / 1 / 1~384p

## 1. 제93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 개최일자 및 장소: 1974.4.11., 주한미군 SOFA 회의실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R. Murphy 중장(주한미군 참모장)

※ 회의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에 대한 18건의 신규과제(주한미군 통신선 매설을 위한 관악구 소재 1.25. 에이커의 부지 공여 등) 부여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건의 14건(해운대 소재 7.26. 에이커의 주한미군 시설 반환 등) 승인
- 한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되는 주한미군용 계약에 대한 면세 부여문제 검토 과제를 재무분과위원회에 부여

552

## 2. 제94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 개최일자 및 장소: 1974.5.2., 중앙청 외무부 회의실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R. Murphy 중장(주한미군 참모장)

※ 회의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에 대한 7건의 신규과제(주한미군 훈련을 위한 인천시 소재 0.167에이커의 부지 임시 사용 허가기간 연장 등) 부여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건의 3건(군산 공군기지내 주한미군 시설을 양측 합의 조건하 공동사용 등) 승인
- 미국 측은 주한미군 면세품의 한국 내 불법유통 문제 대처를 위한 임시분과위원회 설치를 위해 한국 측의 양측 SOFA 사무국을 통한 구체 협의 제안 수락

## 3. 제95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 개최일자 및 장소: 1974.6.5., 주한미군 SOFA 회의실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W.E. Sharp 대령(교체대표)

※ 회의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에 대한 15건의 신규과제(대구시 소재 Camp George의 0.135에이커의 공여부지 해제 및 247미터의 펜스 재배치 등) 부여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건의 12건(용산구 소재 0.76에이커의 주한미군 공여부지 반환 등) 승인
- 1974.5.6. 합동위원회의 긴급승인으로 주한미군 면세품 불법유통 문제 임시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음을 상기

**4. 본 문서철에는 상기 합동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분과위원회의 건의문서(영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 SOFA -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6-98차

| 74-049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2012-40 / 2 / 1~349p

## 1. 제96차 SOFA(주둔군 지위협정)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 개최일자 및 장소: 1974.7.25., 외무부 회의실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R. Murphy 중장(주한미군 참모장)

※ 회의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에 대한 17건의 신규과제(대구 소재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 한국 육군 건물 2동 공여 등) 부여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건의 14건(건설용 모래 및 자갈 채취를 위한 연천군 소재 3에이커의 하상 임시 사용 기간연장 등) 승인
- 신설된 면세물품 부정거래에 관한 임시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암거래 퇴치계획 추진 및 한 · 미 합동단속만의 운영개선을 골자로 한 건의서 승인
- 동 임시분과위는 앞으로 모든 형태의 암거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한 · 미 공동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고

554

## 2. 제97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 개최일자 및 장소: 1974.8.29., 주한미군 SOFA회의실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R. Murphy 중장(주한미군 참모장)

※ 회의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건의 11건(서울-의정부 간 지하 매설 주한미군 통신케이블의 신축도로변으로의 재배치 등) 승인,
- 동 분과위에 대한 2건의 신규과제(대전역사 내 주한미군 사무실용 화장실 등을 위한 일부 공간 공여 등) 부여
-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중 필수요원의 규정 등에 관한 노무분과위원회 건의 2건 승인
- 미측은 합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7명의 초청계약자 지명에 관한 서류 제출

## 3. 제98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 개최일자 및 장소: 1974.10.17., 외무부 회의실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욱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R. Murphy 중장(주한미군 참모장) 관한 서류 제출

✿ 회의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의 건의 14건(대구 소재 Camp Henry내 건물 1개 동 반환 등) 승인 및 16건의 신규과제 (항공통제 통신시설 건설을 위한 파주군 소재 5.54에이커의 부지 공여 등) 부여
- 최근 주요 미군시설 및 인접 기지촌에 대한 4차례의 현지답사 결과에 관한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의 제18차 보고서 접수
- 한국 관세당국과 미군 보안요원으로 구성된 한·미 합동수사반의 운영절차 개정에 관한 면세품 불법 거래 임시분과위의 건의 승인

555

대한민국외교사료제집

**4. 본 문서철에는 상기 합동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분과위원회 건의문서(영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 SOFA -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9-100차

| 74-049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2012-40 / 3 / 1~282p

556

## 1. 제99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 ※ 개최일자 및 장소: 1974.11.14., 외무부 회의실
-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R. Murphy 중장(주한미군 부사령관)
- ※ 회의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에 대한 4건의 신규과제(서울 소재 Camp Baker내 노후건물 1개 동 반환 등) 부여 및 건의 13건(양주군 소재 미군전용 사용 부지내 무허가 건물 2개동 철거 등) 승인
  - 주한미군의 석유류세 면제에 관한 신규과제를 재무분과위원회에 부여
  - 동 회의에서 주한미군 측과 한국인 고용원 간의 최근 노사분규가 한국 노동청의 중재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만족 표명
  - 양측은 1967.2.9. SOFA 협정이 발효된 이래 현재까지 제99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12월에 제100차 회의를 맞게 됨에 따라 그간 동 협정의 성공적 집행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행사를 개최할 것에 합의

## 2. 제100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 ※ 개최일자 및 장소: 1974.12.17., 주한미군 SOFA회의실
-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R. Murphy 중장(주한미군 부사령관)
- ※ 동 합동위원회는 제100차 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동일 미국 측 대표 주최 오찬 및 한국 측 대표 주최 만찬을 각각 개최하고 아래 요지(예시)의 공동발표문 배포
  - 합동위원회는 지난 9개월간 제100차의 공식회의를 비롯하여 수많은 회의를 개최, SOFA 협정 시행에 관한 수천 건의 문제를 다루어 왔으며, 합동위원회에 조언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1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함.
  - 분과위원회들 중 업무가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주한미군에게 소요되는 시설과 구역 취득과 해제 문제를 다루는 시설구역분과위원회로서 동 분과위원회는 그간 합동위원회로부터 1,518 건의 과제를 부여받고 1,480 건의 건의를 제출해 합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음.
  - 주한미군의 면세물품 불법거래를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한 · 미 공동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분과위원회는 합동위원회의 운영범위를 확대해 온 최근의 실례임.
  - 점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합동위원회가 취한 또 하나의 예는 1971.9.2.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의 설립이며 동 분과위원회는 주한미군시설에 인접한 한국인 마을에서의 군민관계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립함.

3. 본 문서철에는 상기 합동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분과위원회 건의문서(영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 74-0493 |

## SOFA - 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김포공항 종합청사 내 주한미군 전용안내 카운터 설치문제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2012-41 / 3 / 1~16p

### 1. 외무부는 1974.5.8. 교통부에 아래 내용을 통보하면서 의견 회보를 요청함.

※ 주한미군 당국이 민간항공편으로 출·입국하는 주한미군의 편의를 위해 미군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김포국제공항 터미널 건물 내에 사무실 장소 제공을 요청하고 동 문제를 SOFA(주둔군지위협정) 교통분과위원회에 긴급과제로 부여할 것을 제의하여 왔음.

### 2. 국토교통부는 1974.5.14. 주한미군 당국의 김포국제공항 터미널 안내카운터 설치 요청에 대하여 서울 지방항공관리국에 이를 허가토록 지시한 바 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주한미군 인원 수송을 일반여객 항공기 이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안내전담 카운터의 필요성을 인정함.

### 3. 외무부는 1974.5.17. 국토교통부에 김포국제공항 터미널 내의 미군 안내카운터 설치문제가 교통분과위원회에 긴급과제로 부여되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동 분과위원회의 건의가 합동위원회에 제출 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 4. 국토교통부는 1974.5.22. 동 안내카운터 설치에 따른 위치, 규모 등의 문제와 주차장 사용문제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주한미군 측과 서울지방항공관리국 간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교통분과위원회의 건의문서 한국 측 수정안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 회보를 요청함.

55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SOFA - 주한미군 사격장 내 출입통제 및 탄환절도 단속

| 74-049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Re-30 / 2 / 1~12p

## 1. 내무부는 1974.6.15. 아래 요지의 외무부 앞 문서를 통해 군 사격장 출입통제 및 탄환 절도 단속에 따른 협조를 요청함.

- ※ 군 사격장 및 탄착 지역 내에 인근 주민들이 무단 침입하여 탄환 등을 수집(절취)하다가 훈련용 총탄 또는 불발탄의 폭발 등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하여 군 작전 수행상 막대한 지장 초래
- ※ 이에 따라 전국 예하 경찰에 군 사격장 출입통제 및 탄환 절도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도록 지시
- ※ 상기 내용을 관계 미군기관에 통보 요망

558

## 2. 외무부는 1974.6.28. 군 사격장 출입통제 및 탄환 절도행위 단속에 관해 6.25. SOFA(주둔군지위협정) 미국 측 사무국을 통해 주한미군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조치하였음을 내무부에 통보함.

# SOFA -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 분과위원회, 제25-29차

| 74-049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2011-88 / 9 / 1~160p

1. 본 문서철에는 1974년 개최된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제25차(2.22.), 제26차(3.29.), 제27차(5.3.), 제28차(5.31.), 제29차(10.4.) 회의록(영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2. 동 임시분과위원회 회의록들 중 제25차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회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회의일자 및 장소: 1974.2.22., 외무부 회의실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훈 외무부 북미2과장
- 미국 측: Wallace E. Sharp 해군대령

※ 회의 결과

- 한국 측은 동 임시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내무부 관계관의 교체 내용을 설명
- 미국 측은 1973.6.8. 동 임시분과위원회의 시흥군 군자면 소재 소규모 미군부대 현장 방문 후 동 부대와 같이 고립된 지역의 부대에 대해서 도서관 등 여가시설 설치를 건의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 1974.1.16. 동 부대에 여사한 시설이 설치되었음을 설명
- 한국 측 SOFA 간사는 동두천 등 지역 주둔 미군들이 Codein으로 불리는 한국 드링크를 마신다는 1974. 2.22. Korean Herald지 기사를 소개하고 동 드링크는 습관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
- 한국 측은 동 임시분과위원회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미군기지 및 인근 마을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방문, 지역사회 주민의 협력정신 고양 방안 개발 등을 제안
- 미국 측은 미군과 한국 주민 간의 보다 효과적인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가적인 현장방문에 동의
- 미국 측은 보건 및 위생, 마약 및 약물남용, 민간친선(People-to-People projects) 문제에 관해 동 임시분과위원회가 합동위원회에 제출할 제17차 보고서 미국 측 안을 설명, 동 보고서 안은 한국 측과 논의 후 일부 내용 수정을 거쳐 채택
- 미국 측은 1973.9.28. 한국 정부와의 협조 하에 제6차 민사관계 회의(Civil Affairs Conference)를 개최, 동 회의에서 Stilwell 주한미군 사령관이 기조연설을 하였음을 보고하고, 1974.4.19. 개최예정인 제7차 민사관계 회의에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위원들을 초청
- 차기 회의는 1974.3.29. 주한미군 SOFA 회의실에서 개최기로 하고 회의 종료

# SOFA -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 주한미군의 마약사용 단속

| 74-049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Re-7-11 / 6 / 1~31p

1. 주미국대사관은 1974.7.16. 주재국 상원 본회의가 7.11. 마약법안 수정안에 관해 토의하였으며 동 토의 시 제출된 참고자료에 한국의 마약단속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 회의 의사록을 송부함.

2. 1974.8.2. 외무부 북미2과가 요약한 상기 미국 상원 본회의 의사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동 회의에서 아편, 양귀비 생산허용 국가에 대해 1975.1.1.부터 경제, 군사원조 및 신용판매 금지 조항을 추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법안 수정 논의
  - 동 제안은 터키의 양귀비 재배금지 해제조치에 대한 대응수단인 것으로 판단
- ※ 동 토의 시 제출된 참고자료 중 한국의 마약 현황 관련 요지
  - 한국 내의 마약문제는 긴급한 것은 아니나 더 엄격한 감독 요구
  - 마리화나 사용은 광범위하며 특히 barbiturate는 25세 이하의 주한미군 25%가 상습 복용
  - 미군 당국 및 한국 정부는 마약단속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국이 마약 공급루트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에 상주 감시원을 파견할 필요

3. 미국 측은 1974.10.4. 제29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회의 시 주한미군들의 마약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마리화나 사용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한국 내에서의 마리화나의 소지 및 거래로 인한 구금자에 관한 최근 통계를 요청함.

- ※ 외무부는 11.1. 상기 내용을 보건사회부에 통보하고 차기 임시분과위 회의의 시까지 동 자료를 미국 측에 제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 SOFA - 대통령 긴급조치 하에서의 주한미군 형사재판권 조항의 효력에 관한 건

| 74-0497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Re-7-11 / 7 / 1~90p

## 1. 외무부가 1974.1.10. 대통령 긴급조치와 주한미군에 대한 SOFA(주둔군지위협정) 형사재판권 조항의 효력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1974.1.8. 대통령 긴급조치와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은 1.9. 금번 조치의 제 규정이 SOFA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동 긴급조치와는 관계없이 SOFA 형사재판권 조항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
- ※ 상기 미국 측 요청에 관해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제90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1973.12.13.)에서 채택된 바에 따라, 헌법 제53조에 의한 긴급조치가 취하여질 경우 SOFA에 의해 보장된 미군의 제반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를 상호 협의함.
  - 금번 긴급조치가 특정 범죄에 대한 군법회의를 설치한바,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은 동 협정 제22조 합의의사록 제9항(가)에 의하여 한국의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음.
  - 미국 측의 요청사항 중 협정 대상자가 긴급조치에 의해 설치된 군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재판절차와 제반 권리를 규정한 SOFA 협정이 계속 유효함은 보장이 가능함.
  - 미국 측 요청사항 중 긴급조치의 제 규정이 협정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장문제에 있어서는 동 긴급조치의 내용이 처벌규정 뿐만 아니라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동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 금번 긴급조치 선포 취지와 주한미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에 대한 전속적 재판권의 행사권리는 동 협정 제22조 조항이 유효한 한 한국 측이 계속 유보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 측 요청사항 중 동 협정의 적용을 받는 기타 인원(other personnel)은 긴급조치와 동 협정 제22조 형사재판권 관계의 테두리를 벗어나므로 이를 삭제하고 미국 측 요청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회보 조치함(1974.1.11.).

## 2. 본 문서철에는 1973년 개정헌법 제53조 및 SOFA 제22조의 해석에 관한 한·미국 간 양해사항 수립을 위한 외무부와 법무부 간 협의문서, 동 양해사항에 관한 SOFA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분과위원회 양측 대표의 합동위원회에 대한 건의문서(영문), 1974.1.9. 이상훈 외무부 북미2과장의 클리브랜드 주한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면담기록 등도 수록되어 있음.

# SOFA - 미국 Philco · Ford사 기술요원의 주한 미군 시설 사용 허가

| 74-049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2012-42 / 4 / 1~28p

## 1. 미국 Philco-Ford사의 기술요원에 대한 주한미군 시설 사용권 허가에 관한 내용임.

- ※ 외무부는 1973.10.30. 국방부가 한국 정부와의 협정에 의거 한국 공군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1973.10~74.12월 체한 예정인 동 요원에 대한 주한미군 시설 사용허가를 요청해 왔음을 재무부에 통보하고 의견 회보를 요청함.
- ※ 재무부는 1973.11.2. 동 요원에 대한 사용허가는 SOFA(주둔군지위협정) 협정상 주한미군 및 그 관계자가 이용하는 PX, APO 등에 대한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근본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허용하는 경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 외무부는 1974.1.17. 상기 재무부의 통보사항을 국방부에 알리고 1971년 미국 Colt's사 기술요원에 대한 주한 미군 시설 사용 허가 시 SOFA 관련 미국 측 요청에 따라 한국 측이 동의하는 절차를 취하였음에 비추어 주한 미군 당국의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호의적으로 검토, 처리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통보함.
- ※ 그 이후 국방부는 수차례(1974.5.20., 7.1., 7.12. 등) 한국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동사 요원에 대한 주한미군의 비세출자금기관 사용 허가를 외무부에 요청함.

## 2. 외무부는 1974.7.15. 아래 요지의 내부건의의를 통해 미국 측과 합의하에 동 요원에 대한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함.

- ※ 국방부는 대공 유도탄 개조사업을 위한 장비, 기자재 구매 및 기술지원협정(1973.7.31. 발효)에 의거 1973.10~74.12월 체한하게 된 동사의 기술요원들에 대해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사용 허가를 요청함.
- ※ SOFA 협정 제13조에 의하면 동 비세출자금기관은 미군, 군속 및 그 가족의 이용을 위해 설치 운영되나 동 합의의사록 (바)항에서 한국 정부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기타 개인과 기관에 대하여도 사용권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요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중요성, 체류지역의 시설 결여 등을 감안, 아래 조치와 함께 사용을 허가하기로 결정함.
  - 미국 측에 대한 동의 요청
  - 차기 SOFA 합동위원회에서 기록
  - 합동위원회 기록내용을 국방부 및 재무부에 통보



# SOFA - 주한미군 군납계약 체결시 문제

| 74-049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2012-42 / 5 / 1~44p

## 1. 1974년 주한미군 군납계약 체결 시의 관세 등 과세문제에 관한 내용임.

- ※ 주한미군 당국은 3.6. 주한미군의 원화 계약 체결에 대해서도 SOFA(주둔군지위협정) 제9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관세 및 내국 소비세의 면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 외무부는 재무부 및 상공부와의 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주한미군 당국에 회신함.
  - 주한미군의 공적 사용을 위한 수입 물품은 SOFA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이 면세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한국 정부는 양국군이 공동으로 수행 중인 현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
  - 그러나 현 사업과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해 관련 국내법에 따라 관세 등이 이미 징수되었으며 환불은 불가능함.
  - 향후 원화표시 주한미군 군납에 대한 SOFA 규정 적용 문제에 관하여 재무분과위원회에 상호 협의를 위한 과제 부여를 제안함.
- ※ 한국과 미국 양측은 4.11. 개최된 제93차 SOFA 합동위원회에서 재무분과위원회에 상기 과제를 부여키로 합의함.

## 2. 1974년 주한미군 군납계약 문제에 관한 내용임.

- ※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는 1974.10.16.자 서한을 통해 1973.11.23. 합동위원회가 SOFA 규정에 의한 주한미군의 자유경쟁계약 체결 권리 보장을 위해 상무분과위원회의 건의를 승인한 바 있으나, 군납조합 측이 한국 정부 관계당국의 묵인 또는 지원하에 자유계약 권리를 제한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사례가 아직도 현저함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조사, 시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 외무부는 10.18. 상기 미국 측의 요청사항을 상공부에 통보함.
- ※ 상공부는 11.5. 미국 측이 구체적인 사례 없이 마치 한국 정부가 미국 측의 자유로운 구매행위를 방해 내지 방조하는 양 오해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1973.11.23. 군납업자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자유계약을 보장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 외무부는 11.26. 내부건의을 통해 SOFA 합동위원회 한국 측 대표 명의로 미국 측 대표에게 아래 요지의 서한을 발송키로 결정함.
  - 한국 정부 당국은 상기 합동위원회의 상무분과위원회 건의 승인 후 업체들이 군납협회 추천 없이 상공부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불건전한 사업 관행 등 한국법령 위반행위는 한국 사법당국에 의해 항상 수사되고 처벌됨.

# SOFA-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 주택 건설문제

| 74-0500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Re-7-11 / 11 / 1~133p

564

## 1. 1973년 주한미군 가족용 임대보증 주택건설을 위한 외국인 자재의 관세 면제에 관한 내용임.

- ※ 삼풍건설은 2.3. 동 주택공사를 위해 도입되는 외국인 건축자재의 면세를 위한 세부절차 수립을 외무부에 요청함.
- ※ 외무부는 2.21.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서 미국 측이 외국인 자재의 수입신고 양식을 합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을 제의하여 왔음을 재무부에 통보하면서 재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 재무부는 3.3. 수입신고서는 별도의 양식을 채택할 필요가 없으며 SOFA 제9조 제2항의 신고서를 사용하되 수입신고서는 삼풍건설로 하고 미군 통관장교와 구매관이 연서를 하게 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 ※ 외무부는 한· 미국 양측이 3.6. 동 수입신고 양식에 대해 합의하고 3.22. 제82차 SOFA 합동위원회 의사록에 이를 기록하였음을 3.23. 재무부에 통보하고 동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 2. 1974년 서울 및 대구 소재 주한미군 임대보증 주택사업에 관한 내용임.

- ※ 서울은행은 4.29. 삼풍건설이 동 주택사업을 위한 상업차관 지급보증 요율 감면을 요청해 왔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동 사업에 대한 양국 정부의 지원 또는 협조 내역 등을 문의함.
- ※ 외무부는 5.4. 서울은행에 아래 요지로 회보함.
  - 주한미군 측은 주요 기간요원의 가족을 동반한 장기복무에 따른 주택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주택단지 건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 이에 따라 제19차 SOFA 합동위원회(1967.12.21.) 및 제52차 합동위원회(1970.7.23.)에서 한국 정부는 SOFA 협정에 입각,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과 면세 조치를 약속하고 그간 동 주택 건설에 필요한 수입자재 면세와 전기, 수도 등 공공용역 요율 감면 등 조치를 취함.
  - 현재 동 주택단지에는 삼풍건설과 주한미군 당국 간의 장기(10년) 임대보증 계약에 따라 약 370세대의 기간요원 가족이 거주하고 있음.
- ※ 외무부는 12.19. 동 주택사업 관련 그간 한· 미국 특별실무반에서 검토된 내용을 제100차 SOFA 합동위원회(12.17.)에 보고했으나 양측은 관계 규정 및 절차상 삼풍건설이 제시한 3개 방안(임대료 인상, 임대료 선불, 저렴한 차관으로 대체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해결책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을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에 통보함.
  - 삼풍건설 측은 12.18. 재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주한미군 측에 통보함.
- ※ 경제기획원 경제협력차관보 주재로 12.23. 개최된 관계부처 회의(외무부, 재무부, 서울은행, 삼풍건설 관계관 참석)는 아래와 같이 합의함.
  - 삼풍건설은 주한미군에 대한 계약 종결과 주택단지 용역제공 중단 통보 철회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동 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
  - 외무부는 미국 측에 임대료 인상교섭 적극 전개
- ※ 이상훈 외무부 북미2과장은 12.30. 주한미군 Priem 대령(군수참모)을 초치, 동 문제는 특히 계약내용에 있어서 기본임대료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 측의 임대료 인상을 위한 제반조치 강구 필요성을 강조함.

# SOFA - 주한미군 전용택시 운수업체의 관세법 위반사건

| 74-050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Re-7-12 / 12 / 1~28p

1. 외무부는 1974.4.30. 주한미군 당국이 4.26. 서한을 통해 최근 주한미군 전용택시 운수업체의 관세법 위반사건 수사 관련, 한국 세관당국이 미군기지 내에 위치한 동 부속품 창고에 차압증을 부착한 것은 SOFA(주둔군지위협정) 위반이며 이로 인한 택시 운행의 차질은 주한미군의 임무수행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법무부에 동 차압증을 제거 요청함.

2. 외무부는 1974.5.4. 주한미군 전용택시 운수업체의 관세법 위반사건 수사 관련, 5.2. 개최된 SOFA 합동위원회 논의결과를 아래 요지로 재무부 및 관세청에 통보하고 재무분과위원회에 부여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청함.

- ※ 미국 측 대표는 택시운수를 위한 주한미군의 계약 수행 시 SOFA 제9조 적용문제에 관한 검토를 재무분과위원회 과제로 부여할 것을 제의함.  
- 또한 미국 측 대표는 동 과제의 만족스러운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 측은 미국 측 택시 양수인이 동 자동차 부속품을 제한 및 유보 또는 향후 어떠한 처벌도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는 내용으로 양해함을 언급함.
- ※ 한국 측 대표는 동 과제 부여에는 동의하나 문제된 자동차 부속품 사용에 관한 미국 측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번 사건이 아직 한국 검찰당국에 계류 중이고 전적으로 한국 검찰당국의 관할에 속하는 법률문제임을 지적, 상기 미국 측의 양해는 정확하지 않음을 설명함.

3. 외무부는 1974.5.4. 상기 합동위원회 논의결과를 법무부에 통보함.

4. 본 문서철에는 아리랑택시 관세포탈 사건 참고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음.

# 인도에 송환된 반공포로의 법적지위문제

| 74-050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Re-30 / 4 /1~40p

### 1. 외무부 영사국은 1974.10.7. 주인도대사의 반공포로의 인도 국적 취득문제에 관한 아래 요지의 보고 (9.25.)를 방교국에 통보하고 반공포로의 법적 지위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함.

- ※ 인도 거주 반공포로가 인도 당국에 귀화를 신청한 바, 인도 당국은 인도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북한 국적을 포기하였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회신
- ※ 동인은 인도 정부에서 근무 중이며 정식 공무원으로의 승진 및 연금 혜택 등을 위해서는 인도 시민권 취득이 필수
- ※ 현재 무국적자인 동인은 북한 국적 포기 사실을 주인도대사관에서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

### 2. 외무부 방교국은 1974.10.18. 아래 요지의 의견을 영사국에 통보함.

- ※ 동인의 법적 지위에 관해 인도당국이 동인의 국적을 북한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아래 이유로 용인 할 수 없음.
  - 한국 휴전 이후 동인을 비롯한 88명의 반공포로가 1954.2.8. 중립국인 인도로 송환될 당시 한국은 교섭과정이나 정부의 성명을 통해 동인들이 본적지, 거주지와 관련 없이 그리고 포로로 되기 전 어느 편 군대에 소속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입장을 취하였음(단, 12명의 중국인 제외).
  - 이는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정부로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강점된 지역의 주민이라도 한국국민이라는 입장을 기초로 하였으며, 전쟁 중 이북으로부터의 피난민에 대하여도 당연히 한국 국적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음.
- ※ 동인의 귀화에 대하여는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본인의 사정을 감안, 인도적인 견지에서 후원해야 할 것임.
- ※ 동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을 위해 아래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동인이 인도 당국에 대한 청원을 통해 북한 국적이 아님을 주장하여 특별한 고려를 요청하는 방법
  - 한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동인에게 재외국민등록증이나 여권을 발급, 이를 근거로 북한 국적이 아니라는 증거로서 제출하는 방법
- ※ 과거 인도측은 50명의 반공포로를 인도에서 브라질로 재송환할 당시 인도 정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에 법적 지위를 무국적으로 명기하였던 선례 존재

### 3. 외무부는 1974.10.21. 동인에 대한 국적상실 증명서 발급을 보류할 것 등을 주인도대사에게 지시함.

### 4. 본 문서철에는 인도 당국의 반공포로 대우상의 문제점 등에 관한 1956.2.23. 주일본대표부의 보고문서 (영문) 등도 수록되어 있음.

#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48-350차

| 74-050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G-38 / 2 / 1~260p

## 1. 제348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1974.2.28.)

### ※ 참석자

- 유엔사 측: William E. McLeod 미군 소장, 강영식 한국군 소장 등
- 공산 측: 김중섭 북한군 소장, 진건오 중국(구 중공) 인민군 소장 등

### ※ 회의결과

- 유엔사 측은 금번 서해안의 어선 납치 및 어부 납북 사건은 휴전협정 위반이며 범죄행위라고 규탄하고 납북 어선 및 어부의 즉각 소환 요구
- 북한 측은 무장간첩선을 어선으로 가장하여 정당행위를 했다고 하고 33호 선장 및 갑판장의 강제 육성 자백서 등을 들려주면서 이들이 중앙정보부 요원임을 시인했다고 주장

## 2. 제349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1974.4.1.)

### ※ 참석자

- 유엔사측: William E. McLeod 미군 소장, 강영식 한국군 소장 등
- 공산 측: 김중섭 북한군 소장, 진건오 중국(구 중공) 인민군 소장 등

### ※ 회의결과

- 북한 측은 유엔사 측이 SR-71 고공 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상공에 침투시켜 동서를 횡단하면서 정탐과 적대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엔사 측은 동 사실이 전혀 없음을 천명
- 북한 측은 현 남한 정권이 애국인사를 탄압하고 경제적 혼란에서 벗어나려는 구실로 최근 서해사건 및 2.15. 간첩선 사건을 조작했다고 비난한데 대해 유엔사 측은 북한이 본회담의 근본목적을 떠나서 한국의 내정문제 등에 대한 선동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했다고 비난

## 3. 제350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194.5.14.)

### ※ 참석자

- 유엔사측: William E. McLeod 미군 소장, 강영식 한국군 소장 등
- 공산 측: 김중섭 북한군 소장 등

### ※ 회의결과

- 북한 측은 5.9. 임진강 하구에 대한 군용 비행기 침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비난한 데 대해 유엔사 측은 헬기가 훈련 중이었으며 북한 지역을 침범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고 북한은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도 이 사실을 기만하고 위선적인 발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
- 유엔사 측은 납북된 수원호 어부들의 즉각 송환을 요구

#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51-355차

| 74-050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G-38 / 3 / 1~396p

## 1. 제351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1974.6.7.)

### ※ 참석자

- 유엔사 측: William E. McLeod 미군 소장, 강영식 한국군 소장 등
- 공산 측: 김중섭 북한군 소장 등

### ※ 회의결과

- 북한 측은 미국이 무기를 남한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난
- 유엔사 측은 북한 측이 정전협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동안 군사력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과거 유엔사 측이 본회의에서 북한 측의 각종 전투 장비 반입을 북한 발간 책자에서 발췌한 사진으로 제시한 바 있음을 상기시킴.

## 2. 제352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1974.7.1.)

### ※ 참석자

- 유엔사 측: William E. McLeod 미군 소장, 강영식 한국군 소장 등
- 공산 측: 김중섭 북한군 소장 등

### ※ 회의결과

- 북한 측은 남한 해군함정이 6.28. 동해 수위단 근해에서 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북한 함정에 기관포 수백 발을 발사했다고 비난
- 유엔사 측은 해경 초계정이 북한 측 해안에 접근하는 어선 철수를 위해 군사분계선 연장선 북방을 향해한 바 있으나 이는 공해상으로서 정전협정 위반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소형 해경선박이 북한 고속포함 3척을 공격했다는 주장은 우스꽝스러운 것이라고 반박

## 3. 제353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1974.8.12.)

### ※ 참석자

- 유엔사 측: William E. McLeod 미군 소장, 강영식 한국군 소장 등
- 공산 측: 김중섭 북한군 소장, 진건오 중국(구 중공) 인민군 소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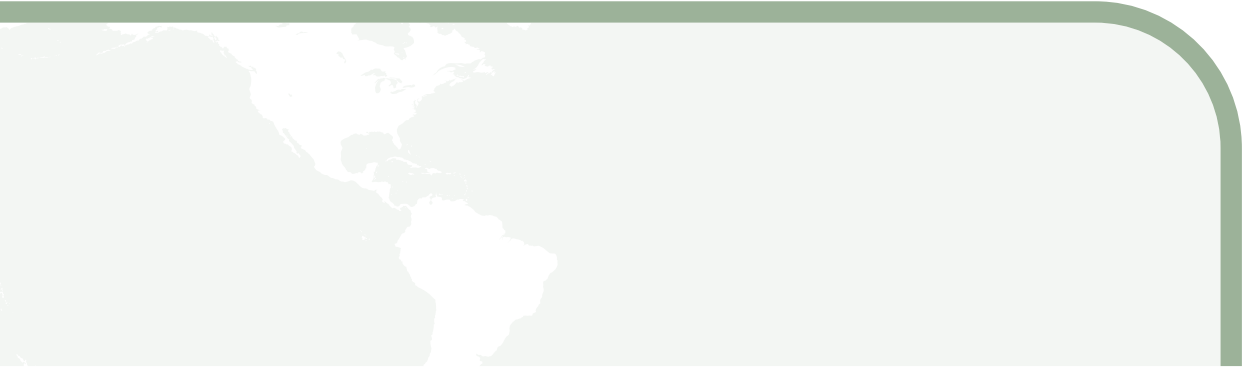
### ※ 회의결과

- 북한 측은 민간인 연습용(Cessna 150) 비행기의 실수에 의한 북한 비행을 간첩비행이라고 주장
- 유엔사 측은 실수에 의한 비행임을 강조하고 KAL기에 대한 무경고 사격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

## 4. 제354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1974.9.12.)

### ※ 참석자

- 유엔사 측: William E. McLeod 미군 소장, 강영식 한국군 소장 등
- 공산 측: 김중섭 북한군 소장, 진건오 중국 인민군 소장 등



✿ 회의결과

- 북한 측은 서해 5개 도서의 접속수역이 북한측 연해에 속한다고 주장
- 유엔사 측은 서해 5개 도서는 접속수역을 가지며 동 수역을 북한 측이 존중하여야 한다고 반박

#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56-357차

| 74-050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안보담당관
MF번호	G-38 / 4 / 1~161p

## 1. 제356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1974.11.26.)

### ※ 참석자

- 유엔사 측: Henry S. Morgan 미군 소장, 강영식 한국군 소장 등
- 공산 측: 김중섭 북한군 소장, 진진오 중국(구 중공) 인민군 소장 등

### ※ 회의결과

- 유엔사 측은 지하터널 건설과 민정경찰에 대한 기습공격 행위 등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관한 항의문을 전달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 북한의 터널 구축은 동 협정 위반행위일 뿐만 아니라 북한군을 침투시키고자 하는데 저의가 있다고 규탄
- 또한 유엔사 측은 DMZ 남방의 터널을 파괴시킬 의사임을 밝히면서 북한도 북방 동굴을 파괴할 것을 강력히 요구
- 북한 측은 지하터널 사건은 정치 모략극을 만들어 자신의 범죄를 은폐시키기 위한 허위 날조된 반공 모략책동이라고 주장

## 2. 제357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1974.12.20.)

### ※ 참석자

- 유엔사 측: Henry S. Morgan 미군 소장, 강영식 한국군 소장 등
- 공산 측: 김중섭 북한군 소장 등

### ※ 회의결과

- 북한 측은 미국의 각종 핵무기 및 신형무기 반입 등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금년초부터 12.20. 현재 22,700여 건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전쟁책동을 은폐하기 위하여 남북 간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땅굴이란 정치 모략극을 조작하여 반공소동에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
- 유엔사 측은 지난 11.17. 동굴 발견에 따른 공동감시소조 제의에 대한 북한의 거부행위는 북한이 동굴의 존재를 시인하고 그 내부에 폭발장치가 되어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북한 폭발물에 의해 유엔사 측 요원 2명이 순직한 사실 그 자체가 입증하는 것임을 주장



#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회의록, 제421-429차

| 74-0506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안보담당관
MF번호	G-38 / 5 / 1~401p

1. 본 문서철에는 1974년 개최된 제421차(1.10.), 제422차(3.12.), 제423차(4.26.), 제424차(6.18.), 제425차(7.18.), 제426차(8.22.), 제427차(10.4.), 제428차(11.11.), 제429차(12.23.)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회의록(국·영문)이 수록되어 있음.

## 2. 동 회의들 중 제421차 비서장회의(1974.1.10.)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예시)

### ※ 참석자

- 유엔사 측: Samuel L. Smith 미국 육군 대령 및 Laurence T. McCurdy 공군 중령
- 공산 측: 박익수 북한군 중좌

### ※ 회의결과

- 북한 측은 1973.12.11.~1974.1.16.간 총 198건의 자동무기, 중무기 반입 사건과 146건의 칼빈소총과 기관총 불법투입 사건이 자행되었다고 주장하고 불법무기 철거와 범죄자 처벌을 요구
- 유엔사 측은 북한 측의 상기 주장을 군정위 수석대표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하고 정전협정에는 비서장회의가 동 협정 위반사건을 토의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북한 측의 정전협정 위반사항 토의는 자신의 군정위 수석대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
- 북한 측은 제400차 회의(1972.4.5.)이후 제420차 회의(1973.12.13.)까지 21차에 걸쳐 11,100 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단 한건의 해답도 없음을 비난하고 조치결과 답변을 요구
- 이에 대해 유엔사 측은 북한 측이 주장한 사건은 조사 후 그 결과를 공동일직사무소 전통을 통해 이미 통보하여 의무를 완수했다고 반박하고 반면에 유엔사 측 항의사항에 대한 사건 조사 및 결과보고 회피행위를 북한 측 자신이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

# 체코 및 폴란드 중립국 감시위원단원 방한, 1974.11.15.

| 74-050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1/서남아
MF번호	G-38 / 7 / 1~75p

## 1. 외무부는 1974.11.12. 주한 호주대사관의 중립국 휴전감시위원단 초청에 관해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 ※ 주한 호주대사관은 공산 측 중립국 감시위원단인 폴란드 및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를 서울에 초청하고자 외무부의 의사 타진
- ※ 이에 대해 외무부는 과거 동 대사관이 동 감시위원단을 초청, 접촉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 측 대표들에게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초청을 양해
- ※ 체코 대표 Smoldas 중장 및 폴란드 대표 Marchenka 소장은 보좌관 1명을 각각 대동, 1974.11.15. 서울 방문 예정 - 11.15. 당일 서울 도착, 주한 호주대사 주최 오찬, 쇼핑, 판문점 향발

572

## 2.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는 1974.11.15. 중립국 감시위원단 폴란드 및 체코 대표를 위한 주한 호주 대사 주최 오찬에 참석함.

- ※ 동 차관보는 체코 대표에게 남북대화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으면서 한국에서는 실질적인 대화를 기초로 각 분야의 교류를 실시하여 남북 간의 장벽을 좁히고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
- ※ 이에 대해 동 대표는 남북 양측이 세계 각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현실과 현재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두 개의 한국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 양측이 현실성이 희박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다는 어조로 말함.

## 3. 본 문서철에는 1974.2.12. 유종하 외무부 동남아1과장의 Goggin 주한 호주대사관 1등서기관 면담 요약, 11.20. 외무부 북미2과 작성 동 감시위원을 위한 주한 호주대사 주최 오찬 참석 보고, 11.22. Goggin 주한 호주대사관 1등서기관 작성 동 감시위원단 서울 방문 보고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 스웨덴 중립국 감시위원단 대표 철수 고려 발언

| 74-050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38 / 8 / 1~16p

## 1. 주스웨덴대사는 1974.6.19. 백두진 국회의원의 스웨덴 외상 면담 시(6.17.) 동 외상이 스웨덴의 NNSC (중립국감시위원단) 철수문제에 관해 발언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동 외상은 NNSC의 활동상 한계 등을 이유로 스웨덴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음을 언급

## 2. 외무부는 1974.6.21. 스웨덴이 NNSC에서 철수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논리로 설득할 것을 주스웨덴 대사에게 지시함.

※ 정전협정은 과거 20여년간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방지해 온 한국전 교전 쌍방 간의 협정인 바, 동 협정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NNSC에서 철수하는 경우 동 협정체제 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NNSC 대표들이 상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엔사 측 감시위원의 일방적 철수는 우리 측 스스로가 동 협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쌍방 간의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으며 북한이 서해 5도 문제 제기, 대미평화 협정 제의 등으로 동 협정체제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 때에 스웨덴의 철수는 시기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임.

## 3. 주스웨덴대사가 1974.7.2. 스웨덴 외무성 정무국장서리를 방문하여 상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데 대해 동 국장서리는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스웨덴 외상은 철수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가볍게 언급한 것임.

- 특히 동 외상은 국방장관 시절에 NNSC 대표 인선문제에 상당한 고충을 겪은 까닭에 그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불과함.

※ 스웨덴은 NNSC 철수문제를 더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군 및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건립

| 74-0509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북미1/북미2
MF번호	G-38 / 9 / 1~52p

미군 및 유엔군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 건립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주미국대사관은 1973.6.26. 주재국 국무부가 미군참전기념비 건립위원회 사무총장인 A.J. Adams 소장의 지갑종 유엔한국참전기념협회 사무총장 앞 아래 요지 서한사본을 한국 정부 관계당국에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한국 참전을 기념하여 서울 남산에 기념비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대지 확보에 관한 한국 측의 문서상 언질이 필요함.

2. 지갑종 사무총장은 1973.7.7. 외무부 앞 문서를 통해 동 건 관련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요청함.

3. 외무부는 1973.7.14. 동 사업의 의의와 명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서울시 및 국방부에 통보하고 동 기념비 건립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함.

4. 서울시는 1973.8.17. 남산공원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개발 중인 여의도 자매 도시 공원 내로 기념비 건립 후보지를 변경할 경우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5. 외무부는 1974.3.5. 주미국대사관이 미 국무부 당국자로부터 아래 요지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서울시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함.

※ 미군참전기념비 건립위원회는 여의도 자매도시 공원이 동 기념비 건립에 적합한 부지로 결론짓고 한국 정부가 필요한 부지를 잠정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동 건립에 소요될 부지는 약 2,000평방미터(주차장 소요부지 별도)로 추산되며, 동 부지가 지정되면 동 위원회는 적합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 및 기념비 설계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대표를 서울에 파견할 예정임.

※ 기념비 건축은 미국 의회의 자금배정에 의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특정지역 사용 가능성을 약속해 준다면 동 자금배정 획득에 도움이 될 것임.

6. 외무부는 1974.4.15. 서울시가 여의도 자매도시 공원 내 3개의 건립후보지를 지정하여 왔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또한 서울시는 주차장 부지 제공 문제에 관해 동 후보지 주위의 8m, 15m 및 35m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동 공원용지 활용계획상 전용주차장 용지를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알려 옴.

7. 주미국대사관은 1974.5.7. 상기 서울시 통보내용을 미 국무부 당국자에게 통보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동해안 해양경비정 피격사건, 1974.6.28.

| 74-051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Re-30 / 9 / 1~126p

1. 외무부는 1974.6.28. 동일 오전 동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한국 해양경비정 불법 격침사건에 대한 아래 요지의 정부대변인(문화공보부장관) 담화문을 전채외공관에 통보하고 주재국 언론 등의 반응을 수시 보고토록 지시함.

- ※ 북한은 6.28. 오전 동해 군사분계선 남쪽 공해상에서 한국 해양경비정 제8635호를 침몰시키는 만행을 지행함.  
- 동 경비정은 동해에서 어로중인 어선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북한 함정 2척이 접근, 폭탄을 발사
- ※ 북한이 지난 2.15. 서해 공해상에서 한국 비무장 어선들을 격침, 납치한 해적행위에 이어 동해상에서 유사한 군사도발을 감행한 것은 계획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사과와 생존 승무원 및 사망자의 시신 즉각 송환을 강력히 요구함.

2. 레나드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1974.6.28. 김태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에게 미국 측이 파악하고 있는 동 사건 발생 장소는 동경 128도 북위 38도 41분으로 군사분계선 북방 6마일 지점이나 공해임은 틀림 없으므로 미국 정부로서는 동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공해라는 점을 강조할 것임을 언급함.

3. 외무부는 1974.7.1. 동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352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의 북한군 및 유엔군 측의 발언 내용을 전채외공관에 통보함.

- ※ 북한군 측은 한국 해군함정이 동해 수원단 동북쪽 3.8마일 군사분계선 연장선 북쪽 9마일 해상에 침범, 정탐 행위를 하려다 북한 함정이 나타나자 포격을 가해 왔으므로 이를 격침하고 수명을 생포했다고 주장함.
- ※ 유엔군 측은 한국 경비정이 1953년 해경에 인수된 최대속력 13노트의 경무장 노후선박으로 공해상에서 어선들의 군사분계선 월선을 제지, 보호하고 있었으며 먼저 북한 함정에 포격을 가할 정도의 배는 못된다고 하면서 북한의 한국 경비정 격침은 정전협정 위반임을 주장하고 생존자 송환을 강력히 촉구함.

#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불법 지하터널 구축

| 74-0511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Re-30 / 14 / 1~291p

576

1. 외무부는 1974.11.16. 북한이 중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남쪽에 불법 구축한 콘크리트 터널이 발견된 데 대해 주한 유엔군사령부 발표문, 국방부 성명, 정부대변인(문화공보부장관) 성명(아래 요지)을 전재외공관에 타전하고 북한의 이와 같은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행위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주재국 정부요료에 설명할 것을 지시함.

- ※ 정부는 동 터널구축 사실을 중대시하고 이와 같은 명백한 침략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 경고함.
- ※ 이번에 발견된 지하터널은 무장간첩을 본격적으로 남파하고 한국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지면 대대적인 무력 기습공격을 자행하기 위해 구축해 놓은 것이 분명함.
- ※ 북한의 이와 같은 침략행위는 휴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상호 무력도발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7·4 남북공동성명을 백지화하는 것으로 북한이 이와 같은 공격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함.

2. 외무부는 1974.11.18. 주한 외교사절을 위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주유엔대사에게 지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 주유엔대사는 11.19. Pennett 주유엔 미국대사와 접촉, 금번 사건을 유엔에 알리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임을 설명한데 대해 동 미국대사는 금번 사건을 유엔에 알리는 경우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형식을 취하고 그 내용이 어떠해야 하며 그 시기를 언제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국무부와 협의의 중이라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 주유엔대사는 11.20. 현지 미국대표부는 국무부와 협의 후 동 사건 진상을 유엔에 알리는 문제와 관련, 그 형식은 한국 정부가 이미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제출한 정부각서의 추가문서 형식을 취하고 문서 배포 시기는 한국문제 토의시기와 일치되도록 하되 문서 내용은 주관적 판단보다는 사실에 치중하여 작성토록 하자고 제의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 주유엔대사는 11.21.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을 방문, 본부 작성 자료 및 사진자료에 따라 터널 발견경위, 규모, 북한의 침략성, 군사적 의미와 한국안보에 미치는 중대성에 관해 설명하고 한국 국회의 메시지를 전달함.  
- 동 사무총장은 본 건 사태진전을 관찰하겠다고 하고 유엔 회원국에 금번 사태를 통보하고자 할 경우 우방들과 협의하여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고 언급
- ※ 주유엔대사는 11.22. 현지 북한대표부가 동 사건에 관한 한국 측 발표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북한의 일본을 통한 대남한 간첩활동

| 74-051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G-38 / 13 / 1~116p, Re-30 / 10 / 1~105p

## 1. 외무부는 1974.5.18. 우시로쿠 도타오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일본을 거점으로 한 북한의 대한국 공작활동에 관해 설명하고 아래 요지의 구술서를 수교함.

- ※ 최근 한국 관계당국이 발표한 바와 같이 북한은 일본을 거점으로 하여 한국에 대한 간첩 침투공작을 격화시키고 있어 한국은 국가 안전보장상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음.  
-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에 의한 남북대화를 1973.1.23.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한반도 적화통일기도를 노골화
- ※ 특히 한·일본 양국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북한은 한·일본 양국간의 왕래가 빈번해졌음에 편승, 소위 재일 조선인총연맹을 한국에 대한 우회 간첩침투의 본거지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이 지금까지의 검거간첩이나 자수간첩의 진술에 의해 밝혀지고 있음.
- ※ 더욱이 북한은 한국 내 소위 인민혁명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한·일본 양국을 이간시키고 일부 일본인과 의 반한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등의 공작 추진을 목적으로 소위 통일사업 촉진위원회를 조총련 중앙본부에 두고 조총련 중앙 13개국에 통일사업부 등을 신설하여 한국 정부 전복음모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 한국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유지 발전 필요성, 한·일본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상으로도 일본 영토가 한국 전복음모의 기지로 사용될 수 없음에 비추어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재일 조총련 등을 통한 한국 정부 전복음모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사급히 취하여 줄 것을 촉구함.

## 2. 주일본대사관 윤 공사가 1974.5.21. 야마다 신임 일본 외무성 심의관을 방문, 조총련을 통한 북한의 대한국 간첩 침투행위 등을 설명한 데 대해 동 심의관은 이 문제가 양국에 공히 위협이 되는 사태라면서 양국이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처지임을 강조함.

- ※ 또한 동 심의관은 윤 공사에게 한국 관계당국이 일본 학생 2명의 체포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거듭 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 학생 2명을 송청하기로 결정하고도 주한 일본대사에게 아무런 통고도 하지 않았음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에 비추어 불만스러운 일이었으며 제3국인 미국 기자에게 이를 먼저 알렸음은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언급함.

## 3. 본 문서철에는 외무부 작성 상기 구술서(안)에 대한 1974.5.17.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문서, 주요 일본 우회간첩 사건 개요 및 일본 우회침투 간첩 명단 등 관련 자료, 1974.6.11. 일본을 대한 공작지회화 제하 경향신문 기사 등 한국 언론기사, 1974.9.24. 북한 공작원 함국상에 대한 일본 경찰의 조사보고서(일본어) 등도 수록되어 있음.

# 서해안 어선 피격 및 납북사건, 1974.2.15. 전3권 (V.1 기본문서: 2월)

| 74-051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2010-88 / 8 / 1~347p

북한 함정이 1974.2.15. 서해안에서 조업 중인 한국 어선 2척을 공격, 이 중 한 척을 침몰시키고 한척을 납치 연행한 사건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74.2.15. 동 사건의 개요와 함께 장기영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장대리가 김영주 북한 측 위원장에게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을 전 재외공관에 통보함.

578

2. 외무부는 1974.2.16. 전재외공관에 동 사건의 기본 정보와 함께 남북조절위원회 북한 측 위원장의 회답에 대한 한국 측 위원장대리의 반박 통지문을 보내어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함.

3. 김용우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974.2.16. Eric Martin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에게 전문을 보내어 동 사건을 통보하고 납치된 어부의 생사확인, 어선의 송환 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 주제네바 대사는 2.18. Gallopin ICRC 집행위원회 의장을 면담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동 의장은 사건의 경위 등 상세 정보를 요청하고 막후 교섭 등을 통한 조용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함.

4. 외무부는 장기영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장대리가 1974.2.19. 김영주 북한 측 위원장에게 보낸 전화통지문 및 군사정전위원회 유엔 측 수석대표가 2.21. 발표한 보도자료 등을 전재외공관에 보내어 홍보활동에 활용토록 함.

5.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1974.2.22. 조선중앙통신성명(2.15자)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함.

※ 북한 측은 동 보도자료에서 한국 어선이 북한의 영해를 침범한 간첩선이라고 주장함.



# 서해안 어선 피격 및 납북사건, 1974.2.15. 전3권 (V.2 기본문서: 3-10월)

| 74-051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2010-88 / 9 / 1~198p

1. 주제네바대사는 1974.3.1.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극동국장을 면담, 납북 어부 석방을 위한 ICRC의 교섭 경위를 문의한 바, 동 국장은 북한 측이 어부를 가장한 간첩선임이 자백 및 증거물로 나타났으므로 송환할 수 없다고 하고 가족과의 서신교환 등 인도적 대우는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음을 언급함.

※ 이에 대해 주제네바대사는 고문과 협박에 의한 허위자백임을 설명하고 ICRC가 계속 유익한 역할을 하여 주기를 당부함.

2. 문화공보부 대변인은 1974.3.5. 한국어선에 포격한 북한 해군 승조원이 3.3. 평양방송 죄담회에서 어선 침몰을 진술한 바 있음을 발표하바 이는 어선에 대한 포격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힘.

※ 외무부는 이를 전 재외공관장에 통보하면서 대외홍보활동에 활용토록 지시함.

3. 주제네바 북한대사는 1974.3.5. ICRC를 방문, 납북 어부들의 자백서를 제시하면서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한국 측에서 어부의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송환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을 되풀이하었다고 주제네바대사가 보고함.

※ 3.7. 북한대표부 직원은 ICRC를 방문하여 어부의 자백서와 사진을 보이면서 간첩이라는 종래 주장을 되풀이 함.

※ 주제네바 북한대표부의 3.13. 기자회견 전후 주제네바대표부는 2차에 걸쳐 press release 및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등 활동을 전개함.

4.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자회의가 1974.3.11. 판문점에서 개최됨.

※ 한국적십자 측이 납북어부의 조속한 송환 및 인도적 대우 보장을 촉구한데 대해 북한적십자 측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피랍어선이 간첩선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함.

5. 외무부는 1974.4.3. 남북적십자 대표자회의에서 한국 측이 새로이 제안한 내용 관련, 한국적십자 총재의 ICRC 총재 앞 서한 요지를 동 총재에게 알리고 협조를 요청토록 주제네바대사에게 지시함.

※ 4.3. 주제네바대사가 면담한 Gallopin ICRC 집행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한, 인도적인 문제에 관한 경우 ICRC가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함.

# 서해안 어선 피격 및 납북사건, 1974.2.15. 전3권 (V.3 공관보고 및 언론보도)

| 74-051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2010-88 / 10 / 1~364p

1974.2.15. 서해안 어선 피랍 사건 관련 재외공관 및 관련 단체의 활동과 언론보도에 관한 내용임.

## 1. 재외공관의 홍보활동

- ※ 재외공관은 서해안 어선 피랍 사건에 관한 정부 입장을 주재국 정부, 언론기관 및 외교단에 설명함.

580

## 2. 관련 단체의 활동

- ※ 재향군인회는 1974.2.28. 세계재향군인연맹 가맹국 49개 단체에 북한 도발행위 규탄 및 긴장완화 노력에 대한 협조를 호소함.
- ※ 재미교포들의 납북어부 송환촉진 쫓기대회가 4.27. 유엔본부 앞 함마술드광장에서 개최됨.
- ※ 민단 동경 본부의 북한 만행규탄 민중대회가 7.5. 개최됨.

## 3. 외국 언론 보도(1974.2.15.~17.)

- ※ 캐나다(오타와 시티즌, 글로브 & 메일 등): 국방부 발표 인용 보도
- ※ 미국(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등): 사건 발생 및 국방부장관 경고, 남북조절위원회 성명 등 보도
- ※ 태국(방콕 포스트, 네이션 등): 사실 보도, 북한 측 도발 관련 사실
- ※ 홍콩(홍콩 스탠더드 등): 국방장관 성명 등 보도
- ※ 오스트리아(Die Presse, Wiener Zeitung 등): 사실 보도
- ※ 멕시코(El Heraldo, El Nacinal 등): 사실 보도, 시사 해설 등
- ※ 브라질(Jornal do Brasil 등): 사실 보도
- ※ 아르헨티나(La Razon, Cronica 등): 사실 보도

Soerono 인도네시아 통합군 부사령관 방한,  
1974.10.28.-11.5.

| 74-051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G-39 / 4 / 1~4p

Soerono 인도네시아 통합군 부사령관이 한국 합참의장의 초청으로 1974.10.28.~11.5. 방한함.

58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William, Allen H. 라이베리아 국방장관 방한,  
1974.9.29.-10.3.

| 74-051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G-39 / 5 / 1~18p

Allen Williams 라이베리아 국방장관 및 Henry Johnson 육군참모총장이 1974.9.29.~10.3. 방한함.

**1. 외무부는 국방부의 요청으로 제26회 국군의 날 행사에 초청할 군관계 인사를 추천토록 주라이베리아 대사 등 주요 아프리카 공관에 지시함.**

- ※ 초청 목적: 국군의 날 행사 참석을 통한 군사적, 외교적인 관계 증진
- ※ 기간: 1974.9.29.~10.3.
- ※ 수행원: 2~3명
- ※ 비용: 국방부는 체제비만 부담(여비는 참석자 부담)

**2. 주라이베리아대사는 주재국 국방장관 및 육군참모총장의 초청을 건의함.**

**3.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974.8.22. 주재국 국방장관 및 참모총장을 면담, 동인들의 국군의 날 행사 참석을 확인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 ※ 국방장관 및 참모총장은 9.26. 라이베리아 출발하여 9.29. 한국 도착 예정

## 사우디아라비아 군사관계 주요인사 방한 계획

| 74-051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3/중동
MF번호	G-39 / 6 / 1~29p

사우디아라비아 군사관계 주요인사의 방한 계획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는 1974.4.25. 중동경제협력사절단장에게 Sultan Abdul Aziz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 부부를 제26회 국군의 날(10.1)에 초청하는 국방부장관 명의 초청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2. 국방부는 1974.5.24. Turki Abdul Aziz 사우디 국방차관이 가급적 빠른 시일에 방한할 수 있도록 초청을 추진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알리면서 협조를 요청함.
3.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74.6.2. 국방차관 및 총참모장 일행의 방한 초청장을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에게 수교함.
  - ※ Sultan 국방장관은 국방차관 일행의 방한 초청을 수락하면서도 방한 시기로는 신년도 예산편성이 종료되는 2개월 후가 될 것임을 언급함.
4.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74.6.20. 서종철 국방부장관의 Sultan 국방장관 방한 초청 공한에 대한 동 장관의 회신을 접수하였음을 보고함.
5.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74.9.11. Sultan 국방장관을 면담한 바, 동 장관은 자신이 제2부수상을 대리하고 있어 한국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할 형편이 아니라며 다른 인사를 보내도록 조치할 것임을 언급함.
  - ※ 외무부는 상기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의 반응을 국방부에 통보함.

58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우간다 군사사절단 방한, 1974.9.28.-10.3.

| 74-0519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아프리카
MF번호	G-39 / 7 / 1~21p

우간다 군사사절단이 1974.9.28.~10.3. 방한함.

**1. 외무부는 국방부의 요청으로 제26회 국군의 날 행사에 초청할 군관계 인사를 추천하도록 주우간다대사 등 주요 아프리카공관에 지시함.**

- ※ 초청 목적: 국군의 날 행사 참석을 통한 군사적, 외교적인 관계 증진
- ※ 기간: 1974.9.28.~10.3.
- ※ 수행원: 2~3명
- ※ 비용: 국방부는 체제비만 부담(여비는 참석자 부담)

**2. 외무부는 1974.7.16. 주우간다대사에게 국군의 날 행사에 우간다 군사사절단이 파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함.**

**3. 주우간다대사는 1974.8.21. 외무부에 우간다 측이 포병 부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7명의 군사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할 것을 공식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 ※ 추후 명단이 변경되어 육군 중령 등 8명으로 군사사절단 구성

**4. 방한을 마친 우간다 군사사절단은 1974.10.6. 귀국 시 공항에서 주우간다대사관 직원에게 방한 중 영접 안내하여 준 한국 정부에 심심한 사의를 표시하고 한국의 발전상에 큰 인상을 받았음을 언급함.**

## 영국 국방대학원생 방한

| 74-0520 |

생산연도 | 1973-1974

생산과 | 서구담당관

MF번호 | G-39 / 8 / 1~15p

1. 외무부는 1973.4.27. 주한 영국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영국 국방대학원생 13명의 극동아시아 방문 계획(1973.9월)을 국방부에 알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이의 없음을 회신함.

2. 외무부는 1974.6.7. 주한 영국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영국 국방대학원생의 방한 계획(1974.9월)을 국방부에 알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 국방부는 이에 대해 영국 국방대학원생의 방한을 환영하며 방문 일정에 관해 협조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알려음.

585

## 핵 연료 비확산문제

| 74-052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G-39 / 10 / 1~18p

핵 비확산 문제에 관한 미국 언론 보도 내용임.

### 1. 1974.7.5. New York Times는 "Nuclear Club could add 24 nations in 10 years" 제하 기사 게재함.

- ※ 기술적, 정치적 장애가 더해지지 않는 한, 앞으로 10년 후에는 핵기술의 보급으로 24개국이 원자탄 보유 가능
- ※ 1982년에는 세계 원자력발전소에서 연간 10만 Kg의 플루토늄 생산이 예상되며 수만 개의 핵폭탄 제조가 가능
- ※ 미국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에 의하면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 보유 가능국가는 일본, 서독,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키스탄, 한국이라 함.

586

### 2. 1974.7.8. Washington Post는 "The Proliferation of Plutonium" 제하 기사 게재함.

- ※ NPT에 서명이나 비준을 하지 않은 국가 중 핵보유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서독, 일본, 스웨덴, 이태리, 스위스, 아르헨티나, 한국 등임.

### 3. 1974.7.8. Christian Science Monitor는 "The nuclear peace" 제하 기사 게재함.

- ※ 국제사회의 안전은 2개 초강대국 간의 핵전쟁 위험, 핵기술의 확산, 원자력 공장의 건설로 인한 환경 공해 위험 등에 달려있음.



## 한 · 칠레 군사 · 안보협력

| 74-0522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중남미
MF번호	G-39 / 11 / 1~13p

### 1. 주일본대사는 1974.5.7. 신임 주일본 칠레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유대강화에 관해 논의함.

- ※ 칠레대사는 한국의 기술원조 특히 농수산 부문의 기술제공을 희망하고 한국의 반공시책에 깊은 관심을 표시, 한국의 대공시책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을 희망함을 언급함.
- 또한 동 대사는 칠레 정부가 앞으로 주한 칠레대사를 파견키로 결정하고 당분간은 주일본대사가 겸임할 의향임을 언급함.

### 2. 외무부는 1974.5.8. 주일본대사에게 한국 정부는 주한 칠레 상주대사관이 재개설되기를 희망하며 우선 주일 칠레대사가 한국을 겸임하는데 동의함을 칠레 측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 3. 외무부는 1974.5.30. 한국과 칠레 간에 진행 중인 경제기술협력 추진 현황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하여 칠레대사 접촉 시 활용하도록 함.

- ※ 칠레의 동광석 등 자원개발, 잠업 훈련생 초청 연수, 자본협력 등을 포함함.

58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한 · 인도네시아 정보교류회의, 제[2]차. 서울,  
1974.7.1.-3.

| 74-052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2
MF번호	G-39 / 12 / 1~7p

1.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74.6.21. 한국 · 인도네시아 정보교류회의에 참석하는 인도네시아 대표단 명단을 외무부에 보고함.

※ Kharis Suhud 소장(단장) 등 대표단 구성

※ 1974.6.30.~7.4. 방한

2.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방한 중 회의 외에 산업시설, 지방시찰과 더불어 경제기획원을 방문, 경제개발에 관한 브리핑 받기를 희망함.

# 국제기구에서의 한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

| 74-0524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동
MF번호	H-25 / 1 / 1~37p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 관련 내용임.

## 1. 외무부는 1974.9.5. 문교부에 아래와 같이 통보함.

- ※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이 1974.9.14. 테헤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축구협회 총회에서 이스라엘을 추방하는 결의안(쿠웨이트 제출)이 논의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추방되지 않도록 한국의 협조를 요청하여 옴.
- ※ 아시아축구협회 총회의 토의안건에 한국에 관한 중요사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동 토의에 결석하며, 중요사항이 논의될 경우 참석하되 이스라엘 추방결의안 논의 시에는 결석토록 요망함.

## 2. 주이란대사는 1974.9.14. 테헤란에서 개최된 아시아축구협회 총회에서 쿠웨이트가 제안한 이스라엘의 경기출전 및 주최 금지안 토의 시 한국대표단은 퇴장하였다가 상당 시간 경과 후에 다시 입장하였으며 마침 비밀투표가 진행 중이어서 쿠웨이트 안에 반대투표하였음을 보고함.

- ※ 한국대표단의 반대투표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라는 외무부의 지시에 대해 주이란대사는 대표단의 귀국으로 접촉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함.
- ※ 쿠웨이트 신문 Daily News는 9.19. 한국에 대한 비방 기사를 게재함.

## 3. 주한 이스라엘대사는 1974.11.1. 외무부 구아국장대리를 방문, 아랍권이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한 예루살렘 문화재에 관한 결의안에 반대하여 주기를 요청한 데 대해 외무부는 대아랍 정책을 고려, 결의안 표결 시 '고의적 결석'으로 대처키로 결정함.

## 4. 주한 이스라엘대사는 1974.11.19. 외무부 구아국장을 방문, 한국이 아랍권 국가가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한 '이스라엘 점령하의 아랍 영토에서의 교육 및 문화시책이 현주민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반대하여 주기를 요청함.

#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7 정부각서, 연설문)

| 74-0525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Re-32 / 1 / 1~303p

## 1. 외무부는 1974.11.4. 제29차 유엔총회 한국문제에 관한 각서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 보도자료를 배포함.

- ※ 정부는 제29차 유엔총회 한국문제에 관한 한국의 기본입장을 설명하는 각서를 1974. 11.1.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
- ※ 동 각서에서 최근 한반도 사태 진전, 특히 7·4 남북공동성명에 위배되는 북한의 대남 비방·중상, 반정부 선동, 각종 군사도발 행위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상태를 설명  
- 이번 총회에서 한국문제가 1973년 유엔총회 합의성명 정신에 따라 대화의 지속과 이 지역 평화와 안전의 보장이라는 기조 위에서 토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
- ※ 또한 한국의 6·23 신외교 정책 및 불가침협정 체결 제의를 거부하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유지에 공헌하고 있는 유엔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주장의 비현실성과 모순성을 폭로

## 2. 외무부는 1974.11.4. 63개 재외공관에 상기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정부각서(11.1.)를 송부하여 대주재국 및 겸임국 교섭에 활용하도록 함.

## 3. 외무부는 1974.11.30.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유엔총회 제1위원회 연설과 관련 아래 보도자료를 배포함.

- ※ 제29차 유엔총회 수석대표인 김 장관은 1974.11.29. 제1위원회에서 연설하고 금차 총회의 한국문제 토의와 관련한 한국입장을 설명
- ※ 김 장관은 금차 유엔총회는 1973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합의성명에 따라 남북대화과 교류를 통해 민족적 화해가 추구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이 조성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국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임을 강조
- ※ 김 장관은 한국의 통일과 이 지역 평화안전의 유지를 위해 유엔이 수행한 역할을 설명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평화통일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한국의 제반노력을 상세히 설명
- ※ 김 장관은 북한이 표면으로는 평화통일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동·서해안 공해상에서의 어선 및 경비정에 대한 포격사건, 8·15 대통령 저격사건에서 나타난 북한의 만행을 폭로  
- 특히 최근 비무장지대 내에서 발견된 북한의 지하터널은 북한의 침략의도를 실증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대안없이 유엔군사령부의 장래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위험한 일임을 강조


#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9 해외 언론보도)

| 74-0526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26 / 3 / 1~105p

제29차 유엔총회(1974.9.16.~12.18.) 관련, 재외공관장이 외무부에 보고한 주재국 언론보도 내용임.

1. 주미국대사,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를 위한 공산 측 안건 제출(1974.8.19.)
2. 주미국대사, 프라우다지의 소련기자 북한 여행기(1974.8.23.)
3. 주미국대사, 볼티모어선지의 포드 미국 대통령의 제29차 유엔총회 연설 중 한국문제 언급내용(1974.9.15.)
4. 주인도대사, 인도 북한친선협회의 한국주둔 유엔군 철수요구 및 유엔 한국문제 토의 시 북한 측안 지지 호소(1974.11.20.)
5. 주유엔대사,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유엔총회 제1위원회 연설 관련 뉴욕타임즈 기사(1974. 11.30.)
6. 주일본대사, 각 신문보도(1974.12.6.)
  - ※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표결을 앞두고 남북 쌍방이 각자의 결의안 채택이 확실하다는 판단에서 강한 태도로 임하고 있어 타협의 여지가 본격화되지 않고, 그 대신 중립적 입장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타협을 요구하는 소리가 1973년보다 더욱 분명히 나오고 있음.
7. 주미국대사, 소련·한국 간 비밀회담 보도내용이 한국과 중국(구 중공) 측이 유포시킨 낭설이라고 프라우다지가 보도(1974.12.6.)
8. 주미국대사, 현재 유엔에서 토의 중인 한국문제의 전망에 관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의 보도 (1974.12.6.)
9. 주일본대사, 유엔 한국문제 토의에서 서방 측 결의안 가결이 확실된다는 요미우리 보도(1974.12.9.)
10. 주미국대사, 유엔 한국문제 토의결과에 대한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보도(1974.12.10.)

- 
11. 주일본대사, 유엔 한국문제 표결에서 서방 측 결의안 채택, 북한결의안 부결에 관한 각 신문 보도 (1974.12.11.)
  12. 주일본대사, 한국문제의 유엔해결 곤란 부각이라는 각 신문보도(1974.12.11.)
  13. 주독일대사, 유엔 한국문제 서방 측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 서방 측의 승리이며 독일 정부도 공동지원 했다는 언론보도(1974.12.11.)
  14. 주홍콩총영사, 유엔 한국문제 표결 결과에 관한 성도일보 사설(1974.12.12.)
  15. 주일본대사,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처리에 관한 마이니찌신문 사설(1974.12.13.)
  16.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 유엔에서의 서방 측 결의안 승리에 관한 자립만보 사설(1974.12. 17.)
  17. 주미국대사, 유엔의 한국문제 토의와 중국 측 태도에 관한 신화사 보도(1974.12.17.)

#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0 국가별 지지교섭 I : 아주지역1)

| 74-0527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국제연합
MF번호	H-26 / 4 / 1~462p

제29차 유엔총회(1974.9.16.~12.18.) 시 한국입장 지지 확보를 위한 아주지역 국가와의 교섭내용임.

## 1. 네팔

- ※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는 당사자 간 대화, 교류를 통해 해결함이 마땅하다는 기본입장
- ※ 남북불가침협정 체결 찬성 및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에 호의적 반응
- ※ UNC(유엔군사령부) 문제는 남북한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

## 2. 뉴질랜드

- ※ 한국 측 기본입장을 지지
  - 유엔에 한국문제 불상정, 양측 결의안 상정 시 1973년과 같이 합의 처리가 바람직
- ※ 유엔군 주둔 필요성 인정, 안보리의 의결에 의해 처리

## 3. 라오스

- ※ 양측 결의안 제출에 대해 엄정 중립 입장에서 유엔 한국문제 표결 시 불참 방침
- ※ UNC 문제에 관해 한국입장 지지
- ※ 한국의 남북불가침협정 제의에 대해서는 동 협정이 남북대화를 방해하지 않는 한 지지

## 4. 말레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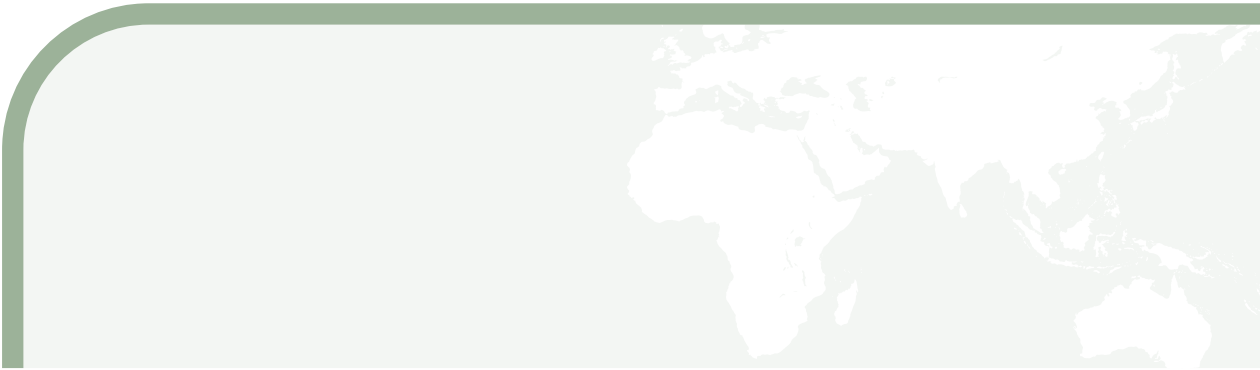
- ※ 한국문제에 관한 양측 결의안 표대결 시 중립을 지키고 기권할 예정
- ※ 그러나 1973년과 같이 합의에 따른 타협안이 나오는 경우 이를 지지

## 5. 몰디브

- ※ 총회의 정세에 따라 현지에서 적절히 판단, 행동할 수 있는 인물을 파견 예정
  - 몰디브 정부의 한국과의 우호관계 불변

## 6. 미얀마(구 버마)

- ※ 한국문제에 관한 미얀마 정부 입장은 불변
  - 엄정중립 비간섭 독립외교 정책에 입각하여 남북한 스스로 해결이 바람직하며, 남북 간 상충되는 문제에는 기권
  - 대분단국 등거리 외교정책 불변



## 7. 방글라데시

✿ 한국문제에 관한 태도 미결정

- 남북한과 공히 외교관계를 갖고 있어 편파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



#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1 국가별 지지교섭 II: 아주지역2)

| 74-052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26 / 5 / 1~350p

제29차 유엔총회(1974.9.16.~12.18.) 시 한국입장 지지 확보를 위한 아주지역 국가와의 교섭내용임.

## 1. 부탄

- ※ 외무장관이 금번 유엔총회에 불참
- ※ 양측 결의안 기권 예상

## 2. 스리랑카

- ※ 금번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 시 과거와 같이 양측 결의안에 공히 기권할 예정

## 3. 싱가포르

- ※ 절충안 방식에 의한 한국문제 처리에 대하여는 속단 불가
- ※ 중립정책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유엔한국문제 표결 시 양측 결의안에 각각 기권

## 4. 아프가니스탄

- ※ 남북한이 합의하지 않는 한 유엔가입문제 및 UNC(유엔사령부) 문제에 관해 과거와 같이 불간섭 엄정중립 정책 유지
- 양측 결의안에 공히 기권 예정

## 5. 인도

- ※ 양측의 타협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양측 결의안에 대한 태도 미정
- 비동맹국가가 호응할 수 있는 절충안 기대

## 6. 인도네시아

- ※ 중립외교 정책상 쟁점에 관여하지 않는 기본입장 견지
- 남북한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문제 표결 시 기권

## 7. 캄보디아(구 크메르)

- ※ 유엔 한국문제에 관해 한국 입장 지지
- 유엔 캄보디아 대표권 문제에 관해 캄보디아 입장을 지지하도록 적극 협력 희망

59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2 국가별 지지교섭Ⅲ: 아주지역3)

| 74-0529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26 / 6 / 1~257p

제29차 유엔총회(1974.9.16.~12.18.) 시 한국입장 지지 확보를 위한 아주지역 국가와의 교섭 내용임.

## 1. 태국

- ※ 한국문제 토의에 종전과 같이 지지하는 입장  
- 한국 입장을 호의적으로 고려

596

## 2. 파키스탄

- ※ 남북대화를 환영하며 외세간섭 없이 한국민 간에 평화통일 성취를 희망
- ※ 한국문제에 관한 양측 결의안 제출 시 모두 기권할 예정  
-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제의에 대한 공식지지 요청에 대해 거부
- ※ 유엔가입문제 및 유엔사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서 먼저 토의될 문제

## 3. 필리핀

- ※ 남북대화가 지속되기를 희망
- ※ 한국의 유엔가입에 대한지지 표명  
- 또한 남북한 양측의 유엔가입이 장래 한반도 통일에 공헌할 것이라는 견해 표명
- ※ 한국문제에 관한 외부로부터의 간섭 반대  
- 유엔문제에 있어 한국입장을 잘 이해하고 지지

## 4. 호주

- ※ 무력통일 배제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 한국문제에 관해 지지
- ※ 한국문제에 관한 양측 결의안 제출 시 서방 측 결의안 지지, 공산 측 결의안 반대 입장

## 5. 피지

- ※ 1973년과 같이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지지
- ※ 표결 시에는 별다른 사태 진전이 없는 한 쌍방안에 공히 기권

#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3 국가별 지지교섭IV: 미주지역1)

| 74-0530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국제연합
MF번호	H-26 / 7 / 1~431p

제29차 유엔총회(1974.9.16.~12.18.) 시 한국입장 지지 확보를 위한 미주지역 국가와의 교섭 내용임.

## 1. 가이아나

- ※ 비동맹 중립주의 노선에 따라 한국문제에 중도적인 입장을 취할 예정

## 2. 과테말라

-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

## 3. 그레나다

-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계획

## 4. 니카라과

- ※ 한국입장 지지 불변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

## 5. 도미니카공화국

- ※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 6. 멕시코

- ※ 한국입장 지지  
- 그러나 가능한 한 1973년과 같이 표결 없이 총의로 결정되기를 희망
- ※ 북한 측 결의안에 대해서는 기권할 예정

## 7. 바베이도스

- ※ 한국 측 공동제안국 참여 의사

## 8. 바하마

- ※ 한국 측 결의안 지지  
- 단, 공동제안국 참여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한 태도



## 9. 베네수엘라

- ※ 1973년도 합의성명 정신에 따라 한국문제 유엔 불상정 또는 표대결 없이 합의성명으로 처리하는 것을 찬성
  - 그러나 상정 시 한국 측 결의안에 찬성, 북한 측 결의안에 반대
  - 프랑스 수정안에 대한 공동제안국에는 불참

## 10. 볼리비아

598

- ※ 한국 측 입장을 계속 지지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승락

#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4 국가별 지지교섭 V: 미주지역2)

| 74-053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27 / 1 / 1~499p

제29차 유엔총회(1974.9.16.~12.18.) 시 한국입장 지지 확보를 위한 미주지역 국가와의 교섭 내용임.

## 1. 브라질

- ※ 한국입장 지지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불참
  - 공산 측 결의안 반대

## 2. 아르헨티나

- ※ 한국의 남북대화에 의거한 평화통일추구 입장 지지
  - 유엔군 철수문제는 안보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
- ※ 유엔 한국문제에 있어서 불개입 원칙에 따라 기권한다는 입장

## 3. 아이티

-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

## 4. 에콰도르

- ※ 한국문제가 무력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인 상호 대화에 의해 해결되기를 희망
- ※ 한국 측 결의안 찬성, 북한 측 결의안 반대

## 5. 엘살바도르

-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 6. 온두라스

- ※ 한국 측 결의안 지지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불참

## 7. 우루과이

- ※ 당사자 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한국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 지지
-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 8. 자메이카

- ※ 북한 측 결의안 지지
  - 비동맹국 및 제3세계 국가와의 보조를 고려
- ※ 한국 측 결의안에는 기권

## 9. 칠레

- ※ 한국입장 지지

600

## 10. 캐나다

-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

## 11. 코스타리카

-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

#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5 국가별 지지교섭VI: 미주지역3)

| 74-0532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27 / 2 / 1-363p

제29차 유엔총회(1974.9.16.~12.18.) 시 한국입장 지지 확보를 위한 미주지역 국가와의 교섭 내용임.

## 1. 콜롬비아

-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 2. 트리니다드토바고

- ※ 한국 측 및 북한 측 결의안 공히 기권  
- 절차문제에 대한 투표는 기권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며 이 문제는 향후 검토

## 3. 파나마

- ※ 1973년과 같이 계속 한국입장 지지
- ※ 한국 측 결의안에 공동제안국 참여 방침

## 4. 파라과이

- ※ 한국 측 결의안에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

## 5. 페루

- ※ 한국 측 결의안이 논리적이고 타당하며 페루 정부 입장과 일치  
- 단, 대외정책, 특히 비동맹회의와의 관계 및 남북한과의 관계를 고려, 신중 검토 예정
- ※ 양측 결의안에 공히 기권기로 결정

## 6. 미주지역 종합(1974.10월 미주국 작성 자료)

- ※ 1974년도 교섭목표(북한 측 결의안 기준): 찬성1, 반대19, 기권6. 계 26개국
- ※ 1974년도 공동제안국 목표: 한국 측 결의안 13, 북한 측 결의안 1
- ※ 특수교섭대상국 교섭목표: 한국 측 공동제안국 가담교섭 내지 운영위 지지교섭  
- 총 15개국(공동제안국 13, 운영위 2)
- ※ 중점 교섭대상국 교섭목표: 지지확보, 태도호전 내지 태도악화 방지  
- 총 10개국(지지확보 2, 태도호전 3, 현상유지 3, 신생국 2)

#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6 국가별 지지교섭VII: 구주지역1)

| 74-0533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27 / 3 / 1~474p

제29차 유엔총회(1974.9.16.~12.18.) 시 한국입장 지지 확보를 위한 구주지역 국가와의 교섭 내용임.

## 1. 그리스

- ※ 예년과 같이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
  - 표결 시 한국 측 결의안 지지, 공산 측 결의안 기권
- ※ 이번 총회시 제기할 사이프러스 문제 토의에 대비, 행동의 자유를 갖기 위해 한국 측 공동제안국 가담여부는 신중히 검토

## 2. 네덜란드

- ※ 금년에도 유엔에서 한국과 결속하여 한국의 승리를 위해 싸우기로 결정했다고 언급

## 3. 노르웨이

- ※ 한국문제에 관해 북구지역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나 한국의 입장을 호의적으로 고려
  - 한국 측 결의안 찬성
  - 북한 측 결의안 기권

## 4. 덴마크

- ※ 유엔총회 한국문제 처리에 있어 한국에 대해 지지와 협조
- ※ 프랑스 수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할 수 있으나, 공동제안국이 될 수는 없음.

## 5. 독일

- ※ 한국 측 결의안 지지, 북한 측 결의안 반대 입장
-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

## 6. 룩셈부르크

- ※ 한국의 우방으로서 한국입장 지지 불변
  - 한국 측 결의안 찬성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는 어려움

## 7. 벨기에

- ※ 한국 측 결의안 찬성, 북한 측 결의안 반대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는 어려움

## 8. 사이프러스

- ※ 양측 결의안에 공히 기권



#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7 국가별 지지교섭Ⅷ: 구주지역2)

| 74-0534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27 / 4 / 1~501p

제29차 유엔총회(1974.9.16.~12.18.) 시 한국입장 지지 확보를 위한 구주지역 국가와의 교섭 내용임.

## 1. 스웨덴

- ※ 향후 태도는 북구지역과 협의 결정 예정
- ※ 양측의 타협을 지지하며 표결 강행 시 양측 결의안 내용에 관계없이 기권할 예정

## 2. 스페인

- ※ 한국입장 지지, 북한 측 결의안 반대  
- 단,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불참

## 3. 아이슬란드

- ※ 한국입장 지지  
- 한국 측 결의안 찬성, 북한 측 결의안 반대

## 4. 아일랜드

- ※ 한국입장 지지  
- 단,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는 확인할 수 없음.

## 5.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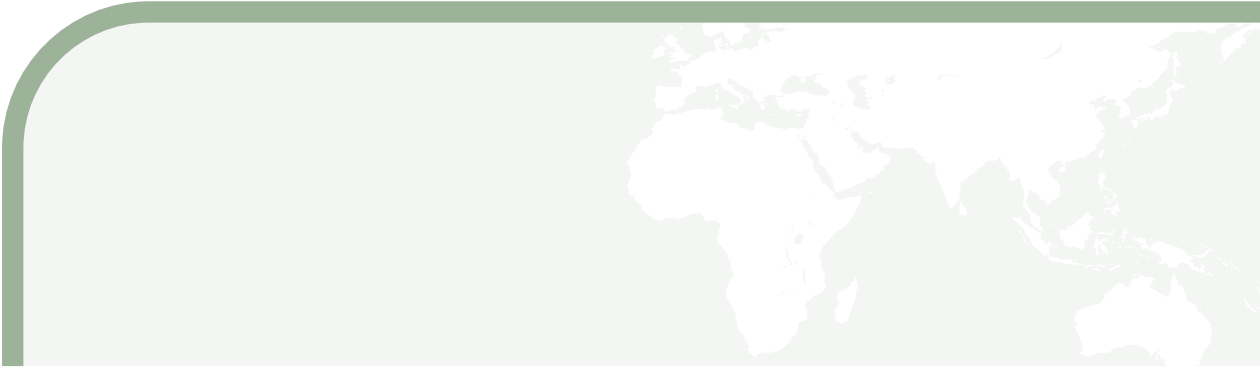
- ※ 한국입장 지지  
- 한국 측 결의안 찬성, 북한 측 결의안 반대 예정

## 6. 이탈리아

- ※ 한국 측 결의안을 지지하는 전통적 입장 불변  
- 당분간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불참

## 7. 터키

- ※ 한국 측 결의안 찬성, 북한 측 결의안 반대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 8. 포르투갈

- ※ 한국 측 결의안 지지, 북한 측 결의안 반대 약속

## 9. 프랑스

- ※ 한국 측 결의안 지지
- 북한 측 결의안 반대 여부에 대해서는 언질 회피

604

## 10. 핀란드

- ※ 중립외교정책에 의거하여 양측 결의안에 공히 기권하게 될 것
- 양측의 타협 희망



#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8 국가별 지지교섭IX: 중동지역1)

| 74-0535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국제연합
MF번호	H-27 / 5 / 1-413p

제29차 유엔총회(1974.9.16.~12.18.) 시 한국입장 지지 확보를 위한 중동지역 국가와의 교섭 내용임.

## 1. 레바논

- ✿ 한국문제에 대해 전통적 기권입장 불변
  - 알제리 대통령 및 외상의 친서를 접수했으나, 동 친서로 인한 태도변경은 없을 것

## 2. 리비아

- ✿ 공산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
  - 북한을 지지하는 뜻이 아니라 리비아가 과거 미국 또는 프랑스의 군사기지가 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외국군 및 그 기지 철수를 일관하여 지지하여 온 외교정책의 일환
  - 주일본 리비아대사는 금번 총회 시 한국문제 토의 연기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본국에 건의할 의향 표시

## 3. 모로코

- ✿ 한국 측 결의안을 지지
  - 아랍아프리카국가에 대해서도 지지하도록 측면 지원
- ✿ 한국 측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는 회피

## 4. 바레인

- ✿ 한국 지지 내지 최소한 기권으로 관측

## 5. 사우디아라비아

- ✿ 한국 측 결의안 찬성
- ✿ 공동제안국 참여

## 6. 아랍에미리트

- ✿ 한국문제 관련 공식입장 미정
  - 최선의 입장은 기권

#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19 국가별 지지교섭 X: 중동지역2)

| 74-0536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28 / 1 / 1~375p

제29차 유엔총회(1974.9.16.~12.18.) 시 한국입장 지지 확보를 위한 중동지역 국가와의 교섭 내용임.

## 1. 예멘(구 북예멘)

- ※ 공산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 한국 측 결의안 반대, 공산 측 결의안 지지

606

## 2. 오만

-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 3. 요르단

- ※ 아랍그룹회의의 결과에 따라 한국문제 최종입장을 결정할 것이나, 아랍그룹의 공동보조 가능성은 회의적이라는 시각
- ※ 한국 측 결의안 지지

## 4. 이란

- ※ 한국 측 결의안 지지, 공산 측 결의안 반대

## 5. 이스라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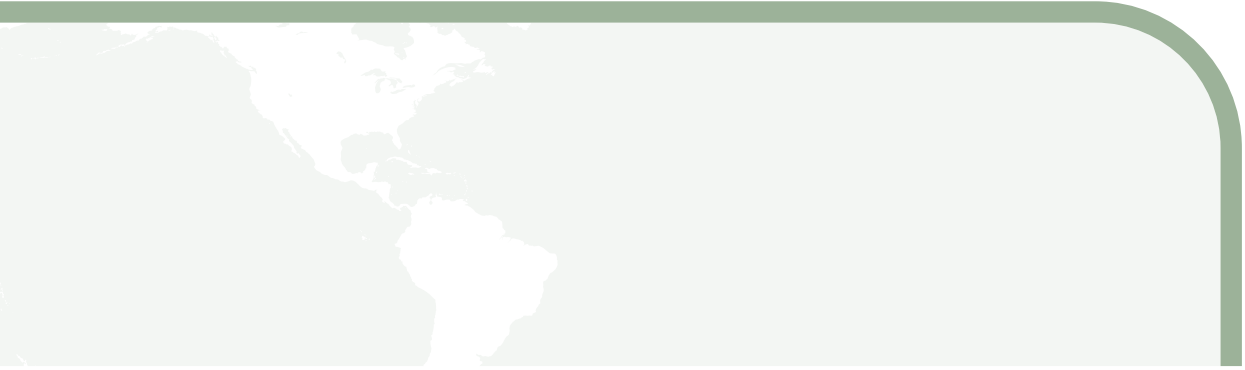
- ※ 주이탈리아 이스라엘대사관은 한국입장 지지요청에 대해 잘 이해하겠다고 하고 본국 정부에 전달 후 회신하겠다는 반응

## 6. 이집트

- ※ 한국 정부의 입장 이해  
- 한국 측 결의안에 비교적 호의적
- ※ 북한 측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서 동 결의안에 기권할 수 없다는 태도 명확화

## 7. 카타르

- ※ 한국문제에 관한 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을 따를 것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가담 여부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을 따를 것임을 언급



## 8. 쿠웨이트

- ✿ 한국에 대한 태도는 유동적
  - 공산 측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시사

## 9. 튀니지

- ✿ 한국 측 결의안 지지, 공산 측 결의안 반대
  - 공동제안국에는 불참

#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20 국가별 지지교섭 XI : 아프리카지역1)

| 74-0537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28 / 2 / 1~424p

제29차 유엔총회(1974.9.16.~12.18.) 시 한국입장 지지 확보를 위한 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교섭내용임.

## 1. 가나

- ※ 비동맹 중립주의라는 대외정책의 원칙상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한국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동의  
- 한국 측 및 북한 측 결의안에 기권할 것으로 관측

608

## 2. 가봉

- ※ 한국입장 지지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 3. 감비아

-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 4. 기니비사우

- ※ 북한입장 지지  
- 북한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 ※ 한국 측 결의안 투표 시 불참 약속

## 5. 나이지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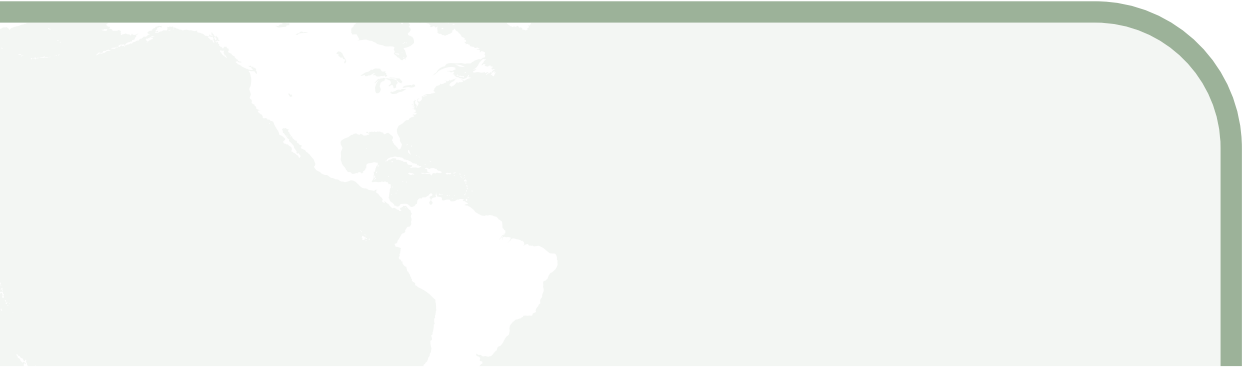
- ※ 비동맹 정책을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비동맹 다수국이 지지하는 알제리 안을 지지  
- 한국 측 결의안 반대

## 6. 남아프리카공화국

- ※ 한국입장 지지 불변

## 7. 니제르

- ※ 북한 측 결의안 지지
- ※ 한국 측 결의안 기권



## 8. 베냉(구 다호메이)

- ✿ 북한 측 결의안지지

## 9. 라이베리아

- ✿ 한국입장 지지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 10. 레소토

-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수락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21 국가별 지지교섭 XII : 아프리카지역2)

| 74-053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28 / 3 / 1~494p

제29차 유엔총회(1974.9.16.~12.18.) 시 한국입장 지지 확보를 위한 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교섭내용임.

### 1. 르완다

- ※ 남북한과 공히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입장  
- 그러나 북한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 변경은 곤란

610

### 2. 말라위

- ※ 분단국 문제에 중립을 지킨다는 기본입장에서 양측 결의안에 공히 기권할 예정

### 3. 모리셔스

- ※ 한국 측 결의안을 지지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언급  
- 북한 측 결의안 반대 약속

### 4. 보츠와나

- ※ 외국군 철수를 주장하는 북한 측 결의안 지지

### 5. 세네갈

- ※ 북한입장 지지

### 6. 스와질란드

- ※ 한국 측 결의안 지지  
- 단,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불참

### 7. 시에라리온

- ※ 북한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  
- 한국문제 해결을 한국민에게 일임하기 위해서는 외국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 북한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가담이 한국에 대한 적대표시가 아님을 강조

### 8. 부르키나파소(구 오투볼타)

- ※ 북한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 9. 우간다

- ※ 북한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 외국군 주둔 반대정책의 입장을 수행한 것일 뿐 반한정책은 아님.



#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22 국가별 지지교섭 XIII : 아프리카지역3)

| 74-0539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28 / 4 / 1~527p

제29차 유엔총회(1974.9.16.~12.18.) 시 한국입장 지지 확보를 위한 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교섭내용임.

## 1. 에티오피아

- ※ 국내정세 안정 시까지 종래 대외정책 견지, 특히 한국문제에 대해 중립을 유지
  - 양측 결의안에 공히 기권할 것
  - 절차상의 표결이 있을 경우에도 기권

## 2.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 ※ 한국문제에 관해 중립적 입장
  - 그러나 표 대결이 행해질 경우 북한 측 결의안을 지지할 것 같다고 언급

## 3. 적도기니

- ※ 북한입장 지지
  - 북한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 4. 중앙아프리카

- ※ 한국 측 결의안 지지, 북한 측 결의안 반대
  - 한국 측 공동제안국 참여

## 5. 차드

- ※ 한국 측 결의안 지지
  - 한국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불참

## 6. 카메룬

- ※ 한국문제 표결에서 한국 측 및 북한 측 결의안에 공히 기권

## 7. 케냐

- ※ 자국의 중립입장(기권) 견지
  - 한반도에서의 외국인군 주둔여부는 한국의 주권행사로서 타국이 간여할 문제가 아님.



## 8. 코트디부아르

- ✧ 한국 측 결의안지지
  - UNC(유엔군사령부) 장래문제는 안보리 소관이라는 생각 불변

## 9. 토고

- ✧ 북한 측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 74-0540 |

# 유엔총회, 제29차, New York, 1974.9.16.-12.18. 전23권 (V.23 OAU(아프리카단결기구)를 통한 지지교섭)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28 / 5 / 1~150p

제29차 유엔총회(1974.9.16.~12.18.) 시 한국입장 지지 확보를 위한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원국들과의 교섭 내용임.

## 1.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 보고(1974.4.26)

- ※ OAU 해방위원회 대표단의 북한 방문(1974.4.2~4.) 시 허담 북한 외상은 북한 입장을 OAU가 지지토록 요청하고, OAU 대표단장(소말리아 외상)은 지지를 약속
- ※ 북한은 금년 OAU 정상회의(1974.6월, 소말리아)에서 한국에 불리한 결의문 채택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집단적인 지지 확보 교섭을 시도할 가능성

## 2. 주모로코대사 보고(1974.5.8)

- ※ 모로코 외무성 부국장은 OAU가 지역기구이므로 비동맹회의 등과는 달리 역내문제가 아닌 한국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함을 언급

## 3. 주유엔, 주미국대사에 대한 훈령(1974.5.13)

- ※ OAU 정상회의 및 준비회의 일정
  - 제3차 해방위원회(1974.5.13.~17., 카메룬), 각료급 준비회의(1974.6.8.~12., 소말리아), 정상회의(1974.6.13.~15., 소말리아)
- ※ 현지 주재 OAU 회원국 대사 및 회의 참석자를 중점 접촉, 설득 교섭
  - 한반도 정세, 남북대화 현황 및 한국의 대아프리카 정책 설명
  - 동 회의가 지역문제인 한국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편파적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교섭

## 4. 주유엔대사 보고(1974.5월 이후)

- ※ 유엔 주재 OAU 회원국 대사 접촉 및 교섭 결과 수시 보고
  - 코트디부아르대사는 OAU가 아프리카에 관한 문제 토의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어 한국문제를 토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언급
  - 튀니지대사는 금번 유엔총회에서 북한 대표에게 한국문제 불상정을 중용하겠다고 언급

## 5. OAU 회원국 주재 공관장 보고(1974.5~6월)

- ※ OAU 회의 시 한국문제가 동 회의에서 잘못 취급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주요 반응을 수시 보고
  - 이번 회의에서 한국 및 북한 등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된 바 없음.

61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유엔특별총회, 제6차. New York, 1974.4.9.-5.2. 전2권 (V.1 사전준비)

| 74-054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경제협력
MF번호	H-28 / 6 / 1~374p

## 1. 주유엔대사는 1974.1~2월 유엔 특별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알제리 대통령은 1974.1.31. 비동맹회의 의장 명의로 유엔사무총장 앞 유엔 특별총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한 발송
  - 의제는 “원자재 및 경제개발 문제에 관한 토의”
  - 77그룹은 1974.2.21. 동 총회를 4.9. 개최키로 합의하고 이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
- ※ 유엔 사무총장은 상기 제6차 특별총회가 1974.4.9. 개막된다고 유엔 각국 상임대표에게 통보

614

## 2. 외무부는 1974.3.14. 자원문제에 관한 유엔 특별총회 참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장관결재를 받음.

- ※ 한국 옵서버단 참여문제
  - 같은 입장에 있는 타 비회원국 동향을 보아 이들과 동일한 보조와 입장을 취함.
- ※ 실무진 파견
  - 회의 의제가 한국의 장기 자원 확보, 경제개발계획 수행 및 국제협력 문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안, 관계부처 자원문제 전문가 실무진 파견
- ※ 실무진 활동지침
  - 주요자원 보유국의 정책과 방침 등에 관한 정보수집, 분석, 평가, 대책 건의
  - 자원보유국의 잉여외화의 국제적 규모와 대개도국 지원활용 문제에 관한 동향 파악 및 대책 건의
  - 한국의 경제외교 시책에 반영할 사항 파악 및 경제외교 수행상의 제문제점 분석, 평가, 대책 건의

## 3. 외무부는 1974.4.17. 제6차 유엔 특별총회와 한국의 입장에 관한 아래 요지의 내부자료를 작성함.

- ※ 특별총회 전망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해관계로 회의는 원칙론에 시종하고 자원문제의 구체적 해결을 위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확립에 관한 선언 및 조치계획은 다소 문안조정이 예상되나, 대체로 원안에 가까운 내용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
- ※ 한국의 입장
  - 경제적 측면: 13개항 선언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공감을 표시하되, 대결보다 국제협력을 통한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건지, 원유를 비롯한 주요자원에 관한 정책수립과 정부의 자원외교추진에 이바지
  - 정치적 측면: 비동맹세력과 접촉 강화, 관계개선 활동 강화, 북한의 외교적진출 책동저지를 위한 활동 및 조직적인 홍보활동 전개
- ※ 한국의 참여
  - 주유엔대표부에 총회 참관 및 보고와 경제적 및 정치적 측면에서의 관련 외교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

# 유엔특별총회, 제6차, New York, 1974.4.9.-5.2. 전2권 (V.2 결과보고)

| 74-054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경제협력
MF번호	H-29 / 1 / 1-282p

외무부는 1974.5.6. 주유엔대표부 보고를 토대로 제6차 유엔 특별총회 결과를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서면 보고함.

## 1. 회의 개요

- ※ 알제리 대통령이 비동맹회의 의장 자격으로 제의한 “자원 및 경제개발 문제 토의를 위한 제6차 유엔 특별총회”가 1974.4.9. 뉴욕에서 개최
- ※ 신국제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선언문 및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1974.5.2. 폐막

## 2. 주요 내용

- ※ 선언문
  - 새로운 질서 수립을 위한 20개 원칙 기술: 평등 원칙 위에 모든 국가의 광범위한 협력, 경제문제에 있어서의 모든 개발도상국 참여, 천연자원 및 경제활동에 관한 영구 주권 등
- ※ 행동강령
  - 통상 및 경제개발과 관련된 1차 상품과 원자재의 근본문제, 국제통화제도와 개발도상국 경제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행사 지원 등

## 3. 각국의 반응

- ※ 사회주의 국가와 개발도상국은 상기 회의 결정을 지지
- ※ 선진국은 동 결의 일부조항에 유보, 행동강령 제10항의 특별계획(특별기금 설치, 특별위원회 설치, 1975.1월까지 긴급구조 및 개발활동 개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의 불제기

## 4. 분석

- ※ 비동맹국가 주도하에 채택된 선언과 행동강령은 미국과 프랑스 등 EC(구주공동체) 국가 등의 불만과 유보로 앞으로 신국제 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제3세계의 노력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
- ※ 그러나 자원보유 자개발국가는 새로이 자원문제에 눈을 뜨고서 앞으로 선언과 행동강령에 따른 그들의 주장을 떠나가고 자원보호, 국유화 정책 및 자원생산국 협의회 형성 등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

## 5. 대책

- ※ 한국은 자원의 장기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보유국과의 유대관계 및 정부 간 협력 강화
  - 한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보유대상국을 선정하여 경제협력 증진 방안 마련
  - 한국의 능력 한도 내에서 최대한 경제기술협력 공여 활용
  - 경제협력 관계협정 체결을 적극 모색하여 정부 간 협력체제 확립 도모
- ※ 자원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참여
  - 국제경제협력체, 상품기구 등에 적극 참여

##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 특별위원회

| 74-0543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H-29 / 2 / 1~60p

### 1. 외무부 방교국은 1974.4.17.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 특별위원회의 결의안(초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함.

#### ※ 경위

- 1950년 제5차 유엔총회에서 소련은 침략행위를 열거한 결의안을 제출함.
- 1967년 소련의 제의로 침략의 개념 규정 노력이 재개됨.

#### ※ 내용

- 동 결의안은 전문과 본문 8개항으로 구성됨.
- 침략의 정의, 침략구성 행위, 침략의 효과, 유엔헌장에 의한 합법적 무력행사 등이 포함됨.

#### ※ 분석

- 북한의 무력남침은 결의안 제1조에 의거 침략에 해당됨.
- 북한의 무장공비 남파행위는 침략행위로 규정 가능함.
- 1950년 북한의 남침을 침략행위로 규정한 안보리의 결의는 계속 유효함.

#### ※ 평가

- 제29차 유엔총회에서 별다른 이의없이 채택될 전망이나 중국(구 중공)의 태도가 주목됨.
- 북한의 직접 또는 간접 침략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 2. 유엔총회는 1974.12.14. 국제연맹과 유엔의 법률 및 정치전문가들이 1923년 이후 51년간에 걸친 연구 작업 끝에 마련한 전문 제8조의 '침략의 정의' 를 표결없이 채택함.

# 유엔 세계식량회의, Rome(이탈리아) 1974. 11.5.-16. 전2권 (V.1 준비위원회 회의)

| 74-0544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H-29 / 3 / 1~239p

UN/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개최 세계식량회의(1974.11.5.~16., 로마)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1974년 중 3차례 개최됨.

## 1. 제1차 회의

- ※ 회의기간: 1974.2.11.~15., 뉴욕
- ※ 파견단: 박상용 주유엔대표부 참사관과 김흥기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옵서버 참석)
- ※ 회의결과:
  - FAO(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이 제안한 회의 의제 토의를 종료함.
  - 제2차 회의를 1974.6.4.~8. 제네바에서 개최 결정
  - 세계식량회의를 1974.11.5.~16. 로마에서 개최 결정

## 2. 제2차 회의

- ※ 회의기간: 1974.6.4.~8., 제네바
- ※ 파견단: 조상훈 주제네바대표부 3등서기관(옵서버 참석)
- ※ 회의결과:
  - 회의 사무국에 제출된 세계식량문제에 대한 평가연구서를 중심으로 토론
  - 제3차 회의를 1974.9.23.~10.5. 개최할 수 있도록 ECOSOC에 건의

## 3. 제3차 회의

- ※ 회의기간: 1974.9.23.~10.4., 로마
- ※ 파견단: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옵서버 참석)
- ※ 회의결과
  - 세계식량회의(1974.11.5.) 개최 준비 완료

# 유엔 세계식량회의. Rome(이탈리아) 1974. 11.5.-16. 전2권 (V.2 사전준비 및 결과보고)

| 74-0545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H-29 / 4 / 1~288p

## 1. 외무부는 1974.10.4. 유엔 세계식량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단의 임명 및 파견에 관한 재가를 상신함.

- ※ 회의명: UN/FAO(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회의
- ※ 기간 및 장소: 1974.11.5.~11.16., 로마
- ※ 대표단: 정소영 농수산부장관(수석대표)
- ※ 주요 의제: 세계식량사정의 평가, 국가적 및 국제적 행동계획 등

## 2. 주이탈리아대사관은 동 회의 참석 결과를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보고함.

618

- ※ 11.5.
  - 이탈리아 대통령 축하(개막식)
  - 이탈리아 상원의원을 의장으로 선출
  - 키신저 미 국무장관 연설
- ※ 11.6.
  - 정소영 장관의 연설 및 미국 농무장관 회동
  - 한국의 경제 및 농정의 성과와 시책 소개
  - 식량 증산 대책 제시 및 식량안보 관련 언급
  - 정 장관은 But 미 농무장관과 회동, 현안인 PL480 PA 발급 및 선적 촉구
- ※ 11.7.
  - 정 장관은 WFP(유엔세계식량기구) 사무총장 면담, 한국이 신청 중인 WFP 사업의 조기 승인 요청
- ※ 11.8.
  - 정 장관은 FAO 사무총장 면담, UNDP(유엔개발계획) 프로젝트인 식품연구사업에 대한 FAO의 지원 당부
- ※ 11.16.
  - 전체회의는 제1,2,3분과위원회의 총회에 대한 보고서 및 본회의 보고서 채택과 결의안 가결
  - 동 결의안에는 식량생산의 목적과 전략, 농업과 농촌개발의 우선순위, 식량과 농업의 연구, 보급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 사후 처리 계획
  - 11.29.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논의 후 유엔총회에 보고서 제출
  - 유엔총회는 12.2. 제2위원회에서 보고서 인준
  - FAO는 1975.1월 하반기에 회의 재정위원회 및 프로그램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 Ortiz de Rozas, Carlos 주유엔 아르헨티나 대사 방한, 1974.12.26.-30.

| 74-0546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29 / 5 / 1~72p

Carlos Ortiz de Rozas 주유엔 아르헨티나대사가 1974.12.26.~30. 방한함.

## 1. 방한 경위

- ※ 외무부는 1974년도 유엔대책의 일환으로 주유엔 아르헨티나대사를 초청키로 하고 주유엔대표부를 통하여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방한 일정을 타진함.
- 주유엔대사가 1974.3.7. 동 대사를 면담, 방한 의사를 타진한 바, 본국 정부의 허가를 전제로 방한을 수락함.

## 2. 방한 일정

- ※ 12.27.
  - 외무부장관 예방
  - 국립박물관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방문
  -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 12.28.
  - 판문점 방문
  - 유엔기념묘지(부산) 참배
- ※ 12.29.
  - 현대조선소 방문
  - 경주 관광
- ※ 12.30.
  - 남북조절위원회 방문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 Mogami, Thebe D. 주유엔 보츠와나대사 방한, 1974.4.30.-5.3.

| 74-0547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29 / 6 / 1~66p

Thebe Mogami 주유엔 보츠와나대사가 1974.4.30.~5.3. 방한함.

## 1. 방한 경위

- ✿ 외무부는 1974년 유엔대책의 일환으로 Mogami 대사를 방한 초청기로 하고 주유엔대사를 통하여 교섭함.
  - 주유엔대사는 1974.3.8. Mogami 대사를 오찬에 초청, 방한 일정 협의
  - 동 대사는 부인 동반으로 유엔 특별총회 이후 방한 희망

620

## 2. 방한 일정

- ✿ 4.30.
  - 외무부차관 예방
  - 외무부 방교국장 주최 만찬
- ✿ 5.1.
  - 관문점 방문
  - 외무부장관 예방 및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 5.2.
  - 국무총리 예방
  - 현대조선소 방문
- ✿ 5.3.
  - 유엔기념묘지 참배
  - 금성사 및 조선건직 방문

# Ramphul, Radha K. 주유엔 모리셔스대사 방한, 1974.5.8.-13.

| 74-0548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국제연합
MF번호	H-29 / 7 / 1~74p

Radha Ramphul 주유엔 모리셔스대사가 1974.5.8.~13. 방한함.

## 1. 방한 경위

- ※ 외무부는 1974년 유엔대책의 일환으로 Ramphul 대사를 방한 초청키로 하고 주유엔대사를 통하여 교섭함.
- ※ Ramphul 대사는 1974.4.24. 주유엔대사를 방문, 5월 초순 방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
  - 동 대사는 1970년 이래 유엔 내 아프리카그룹 의장으로서 동 그룹 대변인 역할을 수행
  - 또한 동 대사는 모리셔스 수상과 친분이 돈독하며 부인은 동 수상과 친족관계

## 2. 방한 일정

- ※ 5.9.
  - 국무총리 예방
  - 외무부장관대리 예방 및 만찬
- ※ 5.10.
  - 현대조선소 및 포항제철 방문
- ※ 5.11.
  - 유엔기념묘지 참배
  - 금성사 및 한국원양어업훈련소 방문
- ※ 5.12.
  - 국립박물관 및 관문점 방문
- ※ 5.13.
  - 과학기술연구소 방문

62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Jimenez, Privado G. 주캐나다 필리핀 대사 (전 주유엔대사) 방한, 1974.5.27.-6.1.

| 74-0549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29 / 8 / 1~50p

Privado Jimenez 주캐나다 필리핀대사가 1974.5.27.~30. 방한함.

## 1. 방한 경위

- ※ 외무부는 1974년도 유엔대책의 일환으로 주캐나다 필리핀대사(전 주유엔대사)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 ※ 주유엔대사는 Jimenez 대사가 한국의 방한 초청에 대해 자국의 승낙을 받았으며 방한 시기로 1974.4월 혹은 5월을 예정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622

## 2. 방한 일정

- ※ 5.27.
  - 외무부장관 예방 및 만찬
- ※ 5.28.
  - 외무차관 예방
  - 외무부 방교국장 주최 오찬
- ※ 5.29.
  - 현대조선소 및 포항제철 방문
- ※ 5.30.
  - 경주 관광
- ※ 5.31.
  - 국무총리 예방

## 유엔 한국참전국 협회

| 74-055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공보문화
MF번호	H-29 / 9 / 1~85p

### 1. 유엔 한국참전국협회는 1974.5.15. 외무부 앞 공문으로 1974년도 정기총회(4.30.) 결과를 보고함.

※ 동 보고는 이번 총회에서 이사 7명 중 5명이 연임되어 정관 제5장(이사회) 제15조(정원)에 의거, 유임된 이사 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감사도 유임하였으므로 정관 제14조에 따라 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취임을 승인하여 주기를 요청함.

### 2. 외무부는 1974.5.20. 회신에서 유엔 한국참전국협회 1974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회장 김일환, 부회장 김성환, 이사 3인, 감사)의 취임을 승인함.

### 3. 유엔 한국참전국협회는 1974.5.28. 외무부 앞 공문으로 이사진 취임에 따르는 법원 등기 수속을 5.24. 자로 완료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4.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1974.7.25. 유엔 한국참전국협회에서 추진 중인 '6·25 전사자료수집' 계획에 관하여 동 협회에 아래와 같이 통보함.

※ 동 계획을 총리에게 보고한 바, 총리는 전시품 수집활동에 관해 국방부 산하 부대 등에서 보관 중인 병기는 현 위치에 보관하되 수집목록을 작성하여 후일 전사관이 완공될 때 이관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국내에서 보유하지 못한 품목 중 수집해야 할 것은 반입하는데 주력하도록 지시함.

### 5. 유엔 한국참전국협회는 6·25 기념관 전사자료 수집을 위해 미국 등의 관계당국과 교섭하여 교육적 전시를 위한 군장비의 기증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 중임을 1974.10.15. 외무부에 보고함.

62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전2권 (V.1 1973.11-74.2)

| 74-0551 |

생산연도	1955-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29 / 10 / 1~299p

부산 소재 유엔기념묘지 관리 변경에 관한 내용임.

1. 주유엔대사는 1973.11.29. 유엔묘지 경비문제가 유엔총회 제5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참전국 대부분은 금년도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해체를 계기로 묘지예산을 유엔예산에서 분리하여 기금 설립 또는 분담금 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624

2. 호주 등 10개 관계국 유엔상주 대표는 1973.12.4. 유엔사무총장 앞 서한에서 유엔기념묘지 예산이 유엔 정규예산에서 분리될 경우 기념묘지협정 제9조 1항이 적용되어 토지소유권이 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소속국가의 각1명의 대표로 구성되는 기념묘지위원회에 귀속된다고 하면서 이에 관해 한국과 협의한 결과, 호주 등 10개국 정부는 동 협정 제9조 1항에 따라 기념묘지 유지, 관리 책임을 인수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함.

3. 외무부는 1973.12.7. 재한 유엔기념묘지 운영 및 예산 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한국과 참전국 대표 및 유엔사무국 간에 유엔 정규예산에서 동 묘지 관리유지비를 분리하여 한국과 참전국이 자발적 분담방식으로 공동부담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음.
- ※ 이 방안이 유엔총회에서 승인되면 유엔기념묘지 예산이 유엔 본예산에서 분리되며, 묘지 설치 및 유지 협정 제9조에 의거 한국과 관계국으로 구성되는 기념묘지위원회가 발족되어 묘지운영을 유엔으로부터 인수하게 됨.
- ※ 소요예산은 위원국 간 협의에 따라 분담률을 결정, 시행하게 됨.

4. 주유엔대사는 유엔묘지 인수에 관한 1973.12.12.자 유엔사무총장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 동 공한에서 유엔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1974년도 예산 부담 용의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과 관계국의 묘지인수 조치를 요망하며, 1974.1.1부터 동 묘지의 관리유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함.

5. 외무부는 1973.12월 관련 공문에 유엔기념묘지가 1959.11월 설치 이후 유엔의 정규예산으로 직접 관리 운영되어 왔으나 참전관계국 및 유엔사무국과의 협의 끝에 묘지관리운영을 기념묘지협정 제9조에 따라 한국대표 1명과 관계국대표 1명으로 구성되는 유엔기념묘지위원회가 인수하고 운영예산은 관계국이 분담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통보함.

6. 외무부는 1974.1.18. 방교국장 주최로 주한공관 대표 8명이 참가하는 유엔기념묘지 관계 실무급회의를 개최하여 묘지관리인 임명 문제, 예산, 창립회의 개최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함.

7. 외무부는 유엔기념묘지위원회 창립준비를 위해 1974.1.30. 관계국 실무급으로 구성된 초안작성 그룹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회 규칙과 재정규정을 기초함.

※ 2.5. 관계국 실무급 전체회의를 개최, 초안 확정

#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전2권 (V.2 1974.2-12)

| 74-0552 |

생산연도	1955-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29 / 11 / 1~254p

유엔기념묘지 예산 부담금 비율 확정과 1974년도 유엔기념묘지위원회 연례회의 개최 관련 내용임.

1. 1973년 제28차 유엔총회에서 부산 소재 유엔기념묘지의 관리를 동 기념묘지 협정 제9조 1항에 의거 관계 11개국으로 구성되는 유엔기념묘지위원회가 인수키로 합의함.

626

2. 유엔기념묘지위원회 창립 총회가 1974.2.15. 서울에서 개최됨.

3. 주유엔대사는 1974.7.2. 유엔에서 개최된 유엔기념묘지 재정 부담물에 관한 관계국 회의에서 고정 부담물에 합의하였음(한국 45%, 미국 15.82% 등)을 외무부에 보고함.

※ 이 부담물은 1974.1.1.부터 소급 적용됨.

4. 외무부는 1974년도 재한 유엔기념묘지위원회 연례회의에 대표를 파견함.

※ 일시 및 장소

- 1974.10.25., 부산 유엔기념묘지

※ 대표단

-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수석대표), 한우석 외무부 방교국장(교체수석대표), 주한대사 6명, 주한 대사대리 2명, 주일 남아공총영사, 주한 노르웨이명예영사

- 논의사항: 위원회 규칙 및 재정규정 채택, 1974년도 부담금, 1975년도 예산안 등



## 제26회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

| 74-055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29 / 12 / 1~16p

1. 외무부는 1974.12.13자 법무부 앞 공문을 통해 유엔사무총장이 12.10. 세계인권선언 제26주년 기념일에 즈음하여 한국이 시행한 각종 기념행사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음을 전달하면서 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함.

2. 법무부는 1974.12.23자 외무부 앞 공문으로 1974년도 인권의 날 기념행사 실시 결과를 알려줌.

- ※ 법무부는 제26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이하여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에 대한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이념을 선양할 목적으로 1974.12.7.~13.을 “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기념행사를 거행함.
- ※ 인권주간행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실시되고 내무부와 법무부가 후원하였으며 총무처, 문교부 등이 협조함.

62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제29차 유엔의 날 기념메세지

| 74-055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29 / 13 / 1~44p

1. 외무부는 1974.10.23. 주유엔대사에게 유엔 창립 제29주년에 즈음한 외무부장관의 메시지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함.

※ 주유엔대사는 10.24. 등 메시지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함을 보고함.

2. 박정희 대통령은 1974.10.24. 유엔의 날 제29주년을 맞아 국무총리가 대독한 처사에서 유엔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을 치하하고 유엔과 한국의 각별한 관계를 되새겨 긴밀한 협조를 다짐함.

## 유엔공채 원리금 상환액 수령

| 74-0555 |

생산연도 | 1974-1975

생 산 과 | 국제연합

MF번호 | H-29 / 14 / 1~12p

1. 주유엔대사는 1974.1.21. 유엔사무총장이 한국이 구입한 바 있는 유엔 공채금 중 12년째 상환액을 통보하면서 수표를 보내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상기 공채 상환액 수표를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발송하고 이를 재무부에 통보함.

#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한국 가입 검토

| 74-0556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49 / 1 / 1~100p

1. 과학기술처는 UNDP(유엔개발계획) 한국 주재 대표가 한국의 “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협정 (Agreement Establishing the Asian Rice Trade Fund)”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왔음을 1974.5.29. 외무부에 알려면서 이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는 1974.5.31. 아래와 같이 과학기술처에 회신함.

- ※ 농수산부에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한국이 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협정에 가입할 의사가 없음을 1973.6월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사무국에 통보한 바 있으며, 현재로서도 가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시기 바람.
- 한·미 양국간의 특별경제협력 체제하에서 미국산 현미의 장기저리차관 조건부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경제개발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5년 이하의 단기연불조건은 바람직한 도입조건이 아님.
- 장기저리차관 조건부 쌀 도입이 기금가입국 간에 제약을 받게 되는 등 기금에의 가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더욱이 아시아 수출국가에서 생산되는 장립종 쌀은 한국국민의 식생활 기호에 맞지 않음.

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은 1974.10.30. 한국 측 상임대표에게 아래 요지의 서한을 보내음.

- ※ 역내 미곡 수입국인 방글라데시, 인도, 캄보디아(구 크메르), 필리핀, 월남 및 스리랑카 6개국이 창설 회원국 서명 마감일인 1974.5.31. 이전에 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협정에 서명을 마침으로써 동 기금의 정식 발족이 가능하게 되었음.
- ※ 동 기금은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가 운용 자금으로 저리 및 무이자차관 또는 무상자금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6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협상단이 동 자금조달을 교섭하기 위하여 각국 및 국제기구를 순방할 계획임.
- ※ ESCAP 사무국은 동 협상단의 순방에 소요되는 경비계획서를 작성하여 UNDP에 제출하였으며, UNDP는 동 계획서의 승인을 각국 정부에 요청하니 동 내용을 검토하여 한국 정부의 승인여부를 한국 주재 UNDP 대표에게 통보하기 바람.

4. 외무부는 1974.11.18. ESCAP 사무국 서한 내용을 농수산부에 알려주면서 농수산부의 의견을 문의한 바, 농수산부는 1974.12.13. 협상단의 UNDP 자금 사용에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외무부에 통보함.

5. ESCAP 사무국은 아시아 미곡무역기금 협정이 1974.12.1. 발효되었음을 알리는 공한을 1975.2월 외무부에 보내음.

| 74-0557 |

#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총회, 제30차. Colombo(스리랑카) 1974.3.27.-4.8.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49 / 2 / 1~229p

정부는 1974.3.27.~4.8.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30차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총회에 김신 교통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심명원 주콜롬보통상대표부 총영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주요 의제

- ✧ 에너지 문제 등 역내 경제사회 사정 검토
- ✧ ECAFE 회의구조 합리화
- ✧ 역내 경제개발계획, 무역 및 금융통화 협력 문제
- ✧ 공업 및 자연자원 개발 문제
- ✧ 운수통신 및 관광 문제
- ✧ 인구, 통계 및 공공행정
- ✧ 주요 지역사업에 관한 진전보고서 검토
- ✧ 아시아개발은행의 활동 및 진전상황

## 2. 기본활동 방향

- ✧ 에너지 위기에 대비, 역내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한 자원확보 방안 모색
- ✧ ECAFE 체제 개편과 관련 한국의 대ECAFE 활동 강화
- ✧ 역내 경제 및 사회개발의 문제점 적시와 대책 협의
- ✧ 경제개발, 무역증진, 농촌개발 및 인구문제에 있어서의 지역협력 강화
- ✧ 국제무역 및 통화개혁 문제에 있어서의 역내 개발도상국 간 공동전략 협의
- ✧ 대륙붕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선례를 남긴 한·일본 대륙붕 협정에 대한 중국(구 중공)의 비난 공격에 대해 한국 입장의 적절한 홍보

#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총회, 제30차. Colombo(스리랑카) 1974.3.27.-4.8.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49 / 3 / 1~386p

정부대표단의 1974.3.27.~4.8.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30차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총회 참석 결과보고임.

## 1. 회의 의제

- ※ 의제 1: 개회
- ※ 의제 2: 의장단 선출
- ※ 의제 3: 의제 채택
- ※ 의제 4: 역내 경제사회 사정
- ※ 의제 5: ECAFE 회의구조 합리화
- ※ 의제 6: 제 활동분야의 진전사항 검토
- ※ 의제 7: 주요지역사업의 진전보고서
- ※ 의제 8: 아시아개발은행 활동 및 진전
- ※ 의제 9: ECAFE 관련 유엔총회 및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 ※ 의제 10: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 2. 회의 결과

- ※ 본회의 이외 전체위원회, 기초위원회와 14개 결의안 채택을 위한 비공식회의가 개최됨.
- ※ 대표단 활동

## 3. 정부대표단 활동

- ※ 수석대표 기조연설
  - ECAFE 회의구조 합리화와 ECAFE 사업에 있어서 에너지, 식량, 비료 등 새로운 문제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많은 회원국의 호응을 받음.
  - ECAFE가 공동조치를 요하는 경제사회문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지역유대의식과 상호이해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유효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ECAFE가 정치무대화 되는 것을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함.
- ※ 각 의제별 토의참여
  - ECAFE 회의구조 합리화, 무역 및 다자간 금융통화협력, 운수 및 통신, 주택 및 환경 등 의제에 대한 토의에서 한국입장을 개진함.

#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공업 및 천연자원위원회, 제26차. Bangkok, 1974.2.1.-11.

| 74-0559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경제기구
MF번호	I-49 / 4 / 1~191p

정부는 1974.2.1.~11.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6차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공업 및 천연자원위원회 회의에 김이명 주태국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참가국

- ※ 회원국: 한국, 호주, 방글라데시,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캄보디아(구 크메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덜, 네덜란드,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월남,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소련, 영국 및 미국(23개국)
- ※ 자문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서독 및 스웨덴
- ※ 국제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등 8개 국제기구

## 2. 회의 의제

- ※ 천연자원개발
  - 광물자원개발
  - 대륙붕 광물자원 조사
- ※ 공업화 및 고용
- ※ 중소기업의 육성
- ※ 과학기술 적용
- ※ 주택건설 및 구조 설계
- ※ 금속 및 기계
- ※ 농산물 가공 및 지방공업의 기술도입
- ※ 인간 환경
- ※ 공업 및 주택정보에 관한 보고서 등
- ※ 공업 및 천연자원분야에 관한 유엔기구의 활동
- ※ 공업 및 천연자원분야의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 ※ 차기회의 일자
- ※ 보고서 채택

#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무역위원회 회의, 제17차. Bangkok, 1974.1.7.-14.

| 74-0560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49 / 5 / 1~291p

정부는 1974.1.7.~14.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7차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무역위원회 회의에 김이명 주태국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회의 의제

- ※ 회원국의 무역 및 무역정책 동향 분석
-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활동
- ※ 역내무역 및 통화협력
- ※ ECAFE 무역진흥센터
- ※ 해운 및 해상운임

634

## 2. 회의 결과

- ※ 한국이 동 회의에서 부산의 선원 양성소를 ECAFE 역내 선원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제의, 이를 통과시킴으로써 ECAFE 사업계획에 대한 수동적 참여가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짐.
- ※ 각국이 무역 및 무역정책동향에 대한 검토에서 가장 관심을 보인 사항은 유류 및 원자재 파동과 이로 인한 인프라 내지 경기침체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됨.
- ※ ACU(아시아청산동맹)이나 역내 개발도상국 간 무역협상의 중요성은 강조되었으나 그 진척사항은 현저하지 못함.
- ※ 무역진흥 및 해운분야에 대한 각국의 사업계획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참여 필요성을 절감함.
-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지역경제협력체의 입장에서 관심의제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 ※ 동남아 ECAFE 국가 및 ECAFE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요망됨.



#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TNG(무역협상단) 회의, 제4차. Bangkok

| 74-0561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경제기구
MF번호	I-49 / 6 / 1~192p

정부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4차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TNG(무역협상단) 회의 및 속개회의에 김이명 주태국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회의 일정

- ※ 제4차 회의: 1974.1.15.~21.
- ※ 제4차 속개회의: 1974.7.22.~8.2.

## 2. 회의 결과

- ※ 제4차 회의
  - 제3차 회의 이후 각국이 재작성한 양허요청서(Request List)를 기초로 상호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확인하고 통상증대 방안을 협의함.
  - 양허요청서와 양허공여서(Offer List)를 차기회의 개최 전까지 제출하기로 함.
- ※ 속개 회의
  - 그동안 양허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일부 참가국이 양허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정함.
  - 향후 협상 계획을 확정함.
    - 1974.10.1.까지 특정양허요청서(Specific Request List) 제출
    - 1974.11.15.까지 잠정양허공여서(Provisional Offer List of Concessions) 제출
    - 제5차 회의는 제18차 ECAFE 무역위원회 회의(1974.12.2.-9.) 직후 3일간 개최
  - 1974.4.1. 이전까지 협상을 종결한 후 역내 특혜관세실시를 위한 의정서에 서명함.
  - 각 참가국이 협상 대상 품목에 대하여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현 수준에서 더 이상 높이지 않도록 권고 받음.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경제기획위원회 회의, 제1차, Bangkok, 1974.12.9.-14.

| 74-056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49 / 7 / 1~70p

정부는 1974.12.9.~14.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경제기획위원회 회의에 김이명 주태국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파견 목적

- ※ 동 회의에서는 제2차 유엔개발 10년의 중반 성과를 평가함과 아울러 개발계획의 개념, 방법 및 동 수립기법과 ESCAP 개발도상국의 경험들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임.
- ※ 한국은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 특히 제3차 5개년 계획의 내용과 성과를 주지시킴으로써 한국에 대한 참가국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개발계획의 수립, 추진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며, ESCAP의 개발계획에 관한 제반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기여하도록 함.

## 2. 주요 의제별 한국 입장

- ※ 제2차 유엔개발 10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의 중간평가(의제 4)
  - 유엔개발 1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상호협조는 물론 공공개발원조의 대폭 확대를 비롯한 선진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긴요함.
- ※ 개발계획에 대한 통일된 접근방향(의제 5)
  - 동 사업은 무엇보다도 국민 각층의 균등한 개발참여와 이에 따른 공평한 소득분배 및 지역 간 소득 격차의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사회개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함.
- ※ 1975~77년 활동계획 및 우선순위 검토(의제 6)
  - ESCAP이 제시한 활동계획이 대체로 무난함.

| 74-0563 |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두류잡곡전문가 회의. Bangkok, 1974.12.17.-20.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경제기구
MF번호	I-49 / 8 / 1~46p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주최로 1974.12.17.~20.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곡물관계 전문가회의에 김동희 농수산부 농업경제연구소장이 참석함.

## 1. 회의 명칭

- ※ 곡물관계 전문가회의( Expert Group Meeting on Coarse Grains and Pulses)

## 2. 회의 목적

- ※ 역내 곡물생산 전망 및 문제점 검토
- ※ 동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협력계획 수립 또는 그 가능성 검토

## 3. 토의 내용

- ※ ESCAP 지역에 있어서 잡곡의 생산과 수요에 관련된 제여건
- ※ 잡곡의 개량증산
  - 면적 확대를 통한 증산
  - 단위수량 제고를 통한 증산
  - 기초적 사회간접자본 및 정책
- ※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고찰
- ※ 각국 또는 ESCAP 지역에서 요구되는 대책
  - 종자
  - 재배면적
  - 수요와 공급의 분석
  - 무역
- ※ 당면한 지역협력을 위한 건의

63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무역위원회 회의, 제18차. Bangkok, 1974.12.2.-9.

| 74-0564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49 / 9 / 1~201p

정부는 1974.12.2.~9.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8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무역위원회 회의에 김이명 주태국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파견 목적

- ※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서 지역협력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수출증진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 ※ 무역협상단 회의에서는 역내 개발도상국 간 무역협상을 위하여 그동안 각국이 제출한 양허요구품목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는바, 한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관세율표를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도록 함.

638

## 2. 주요 의제별 한국 입장(훈령)

- ※ 회원국의 무역 및 무역정책동향 분석(의제 4)
  - 최근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수입제한조치 등 보호무역정책의 완화 내지 제거를 촉구함.
  - 한국과 경제적, 사회적 제도를 달리하는 국가와 호혜원칙 하에서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음을 재천명함으로써 한국의 정책방향을 주지시킴,
-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활동(의제 5)
  - 일반특혜제도 미 실시 국가의 조기 실시, 적용대상품목의 확대, 일반특혜제도 개선 등을 촉구함.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 및 지원의 실현을 촉구함.
- ※ 역내 무역 및 통화협력(의제 6)
  - 역내 개발도상국 간 무역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희망함.
  - 역내 통화협력의 동향을 관찰함.
- ※ 해운 및 해상운임 문제(의제 8)
  - 제17차 무역위원회에서 ESCAP 지역선원훈련센터로 지정된 부산소재 한국선원종합훈련소에 대한 ESCAP의 지원이 조기 실현되기를 촉구함.
  - 해상운임 인상의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고 최소한 단계적 소폭인상의 방법을 택함으로써 수출국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함.

| 74-0565 |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세계인구회의 사전 협의회, Bangkok, 1974.5.7.-10.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49 / 10 / 1~64p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주최로 1974.5.7.~10.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세계인구회의 사전협의회에 방한제 경제기획원 인구통계과장이 참석함.

## 1. 회의 성격

- ※ 1974.8월 개최되는 세계인구회의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 사전협의회임.

## 2. 참가국

- ※ 한국, 일본, 필리핀, 이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싱가포르, 태국, 미국, 루마니아, 월남, 방글라데시, 부탄, 피지, 파푸아뉴기니

## 3. 토의 사항

- ※ 세계인구회의에서 논의될 아래 의제를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관하여 토의함.
  - 인구의 추세 및 장래 인구의 추정
  - 인구와 가족
  - 인력자원 및 환경
  - 인구변동과 경제사회 발전
- ※ 세계인구회의의 사무총장이 지난 2년간 각국 기관 및 각종 분야의 전문가, 학자 등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작성한 세계인구회의의 활동계획 초안을 중심으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짐.
- ※ 한국 대표는 한국 경제사회의 발전상과 인구문제에 관해 기초연설을 하고 새마을 사업과 가족계획 활동을 소개함.
  - 한국의 인구성장율이 1960년초 2.7%에서 적극적인 가족계획의 실천으로 현재 1.9%로 감소하였으며, 1976년까지 1.5%, 1981년까지 1.3%로 계속 억제할 계획임을 소개함.

63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74-0566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운수·통신위원회, 제22차, Bangkok,  
1974.1.15.-22.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49 / 11 / 1~204p

정부는 1974.1.15.~22.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2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운수통신위원회 회의에 서인수 교통부 종합수송계획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파견 목적

- ※ 국제교통분야에서 회원국 간의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항만, 관광, 해운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입수함으로써 한국 운수통신의 발전을 기하고 수출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의제 및 정부 입장(훈령)

- ※ 철도분야(의제 4)
  - 지역 내 각국의 철도개발에 관한 상호협력사항을 검토함.
  - 한국의 1973년도 철도발전현황 및 197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설명함.
- ※ 공로 및 공로수송(의제 5)
  - 국제도로교통 개발에 관한 상호협력사항을 검토함.
  - 한국의 1973년도 공로수송개발현황 및 197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설명함.
- ※ 내륙수로·항만·해운 및 컨테이너화(의제 6)
  - 해운 화물수송의 대량화 및 효율화를 위한 컨테이너화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
  - 지역 내 화물선의 개발현황을 검토함.
- ※ 관광 및 국제교통 용이화(의제 7)
  - 한국의 국제관광 유치현황 설명 및 타국의 현황 파악, 자료를 수집함.
- ※ 전기통신분야(의제 8)
  - 한국의 전기통신 발전상 소개
  - 아시아 전기통신망계획 추진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전기통신 업무의 능률화를 위한 민영화 및 우정사업 분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 ※ 수송 계획 및 개발(의제 9)
  - 농어촌 도로망 확충에 관한 계획 설명
- ※ 우정사업 개선(의제 10)
  - 한국 우정사업 성과 및 우편사업의 기계화 추진현황 소개 및 자료를 수집함.

| 74-0567 |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운수·통신위원회, 제23차, Bangkok, 1974.12.16.-23.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49 / 12 / 1~103p

정부는 1974.12.16.~23.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운수통신위원회 회의에 박병선 교통부 종합수송계획관실 경협담당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파견 목적

- ※ 아시아지역의 운수통신분야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모색하고 한국의 운수통신의 발전과 관광 진흥 및 수출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

## 2. 주요 의제 및 정부 입장(훈령)

- ※ 철도분야의 진전사항 검토(의제 4)
  - 지역 내 각국의 철도개발에 관한 상호협력상황을 파악함.
  - 한국의 철도발전현황 및 주요사업계획을 주지시킴.
  -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철도운영정책에 관한 내용과 관련자료를 수집함.
- ※ 전기통신 분야의 진전사항 검토(의제 5)
  - 한국의 전기통신 발전상 및 계획을 소개하고 이 분야의 지역협력에 참가할 용의를 표명함.
  - 아시아 전기통신망계획에 대한 관심 및 협조 용의를 표명함.
- ※ 우편사업의 발전상황(의제 6)
  - 우편사업분야에서 각국이 처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파악함.
  - 전문가 작업반의 권고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이의 실현에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 ※ 교통 각 분야의 검토(의제 7)
  - 공로 및 공로수송부문에서는 국제 도로교통개발에 관한 상호 협력사항을 검토하고 한국의 1974년도 공로수송개발현황 및 197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설명함.
  - 해운, 항만, 컨테이너화 및 내륙수로 부문에서는 전문가 작성 보고서 내용 및 각 회원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개발 및 발전현황을 지역 회원국에 설명함.
  - 관광 개발 문제에 대해 한국의 국제관광 유치현황을 설명하고 역내 타 회원국의 유치현황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함.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인구문제와 여성역할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협의회. Bangkok, 1974.5.13.-17.

| 74-056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49 / 13 / 1~59p

정부는 ESCAP(구 ESCAP: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및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공동 주최로 1974.5.13.~17.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인구문제와 여성역할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협의회”에 방흔제 경제기획원 인구통계과장, 윤석천 대한가족계획협회 총무부장을 정부대표단으로 파견함.

## 1. 토의 사항

- ※ 여성의 개발참여와 인구분야 간의 상관관계 토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 ※ 여성의 개발참여 현황 및 인구문제와 관련한 정책 및 계획
- ※ 인구문제와 여성역할 간의 상관관계
- ※ 상기 문제 검토를 통한 필요조치 발견

## 2. 훈령

- ※ 일반사항
  - 한국은 1961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개발참여로 동 사업이 잘 수행되고 있음을 설명함.
  - 사회개발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관한 상호간의 자료 및 정보 교환을 제의하고 이를 통한 국제협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함.
- ※ 의장단 선출
  - 의장 출마가 예상되는 태국대표를 지지하며, 부의장의 선출은 우방국으로부터 지지요청이 있으면 회의 분위기를 참작하여 적절히 처리함.
- ※ 여성의 사회개발 활동 소개
  - 한국여성이 인구와 관련된 각종 사회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소개함.
- ※ 여성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 소개
  - 한국 민법상 여성의 법적지위 불평등에 대해 관련단체와 법조인이 법률개정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설명함.
- ※ 자료의 상호교환
  - 여성의 사회개발 참여, 여성의 법적지위 불평등 문제에 대한 각국의 활동 및 경험 등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함.
- ※ 세계 인구의 해 행사활동 소개
  - 1974년 세계 인구의 해에 즈음하여 한국 여성단체인 주부클럽연합회가 금년을 “피임의 해”로 정하여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을 소개함.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인력 및 노동통계에 관한 실무단회의, Bangkok, 1974.10.28.-11.4.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49 / 14 / 1~52p

정부는 1974.10.28.~11.4.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인력 및 노동통계에 관한 실무단회의(Working Group on Manpower and Labour Statistics)에 전태운 경제기획원 인구통계과 행정주사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 1. 참가국

- ✧ 한국, 일본, 호주 등 17개국 대표

## 2. 토의 사항

- ✧ 인구센서스에서 수집된 인력 자료
- ✧ 노동력 표본조사
- ✧ 노동의 불안전 활용에 대한 측정
- ✧ 사업체 통계
- ✧ 노동통계에 관련된 단체 및 기관

## 3. 토의 결과(한국대표 보고서)

- ✧ 인력 및 고용 통계자료는 각국에서 5년 내지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센서스에서 주로 수집되는데, 다른 대안이 없는 한 국제자료의 비교, 국가전체의 고용정책 수립상 필요한 자료를 계속 수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 Hauser가 권고하는 노동력 조사방법에 의하여 월별, 분기별 및 연간 실시하는 표본조사는 아시아지역에서는 한국, 일본 등 소수국가만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인구센서스의 공백기를 메우는 역할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동하는 국제 및 국내 경기변동 측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모든 아시아국가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됨.
- ✧ 노동의 불안전 활용 인구에 대한 연구가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함이 강조되었으며, 새로운 방법의 채택여부도 논의됨.
- ✧ 사업체를 통해 수집되는 공용통계로서 근로자의 임금통계, 생산성통계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됨.
- ✧ 고용통계에 증사하는 사람의 기술 및 지식 습득을 위한 상호 간의 정보교환, 훈련계획 등도 논의됨.
- ✧ 상기 논의사항을 향후 아시아통계관회의 의제로 채택하여 줄 것을 권고함.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천연자원위원회 회의, 제1차, Bangkok, 1974.11.5.-11.

| 74-057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0 / 1 / 1~221p

정부는 1974.11.5.~11.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천연자원위원회 회의에 김이명 주태국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파견 목적

- ※ 한국의 수자원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정보 등을 수집하여 수자원개발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

644

## 2. 주요 의제 및 정부 입장(훈령)

- ※ 1972~74년 역내 사업보고(의제 5)
  - 각국의 수자원개발 실적, 목표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에 역점을 두어 한국의 개발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함.
- ※ 인간환경 개선을 위한 수자원개발의 역할(의제 6)
  - 수자원개발정책에 대한 국민여론, 수자원개발이 환경오염 및 생태학적인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선진국의 사례와 경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
- ※ 수자원개발과 경제성장(의제 7)
  - 인구증가, 농공업의 성장에 따른 장기적인 수자원개발의 필요성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내국과 선진국의 경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자료를 수집함.
- ※ 지표수와 지하수의 공동관리(의제 8)
  - 수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지표수와 지하수의 공동개발 필요성에 관한 각국의 경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수집함.
- ※ 1977년 유엔수자원회의를 위한 준비작업(의제 9)
  - 각국 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동 회의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74-0571 |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태풍위원회 제7차 회의 및 WMO(세계기상기구) 태풍조절 기술회의, Manila(필리핀) 1974.10.8.-18.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0 / 2 / 1~86p

정부는 1974.10.8.~18.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7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태풍위원회 회의 및 WMO(세계기상기구) 태풍조절기술회의에 양인기 중앙관상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회의 일정

- ※ 제7차 ESCAP 태풍위원회 회의: 1974.10.8.~14.
- ※ WMO 태풍조절기술회의: 1974.10.15.~18.

## 2. 파견 목적

- ※ 태풍 대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관계기술 도입에 노력하여 태풍으로 인한 재난을 극소화하기 위함.

## 3. 주요 의제 및 정부 입장(훈령)

- ※ 1974년도 사업보고(의제 4)
  - 한국이 1974년말까지 설치완료할 기상시설에 관하여 설명함.
  - 각 회원국의 기상시설에 관한 정보를 입수, 활용함.
- ※ 지역 태풍사업을 위한 UNDP(유엔개발계획) 기술지원(의제 5)
  - 1974~76년간 UNDP 및 각국의 지원으로 실시되는 사업에 한국의 전문가 파견을 요청받을 경우 현재는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나 장래에는 파견을 고려할 것임을 표명함.
- ※ 공동준비와 재해예방에 대한 제2차 합동조사단(의제 6)
  - 합동조사단의 일본 및 필리핀 방문보고서를 검토하여 중요한 점은 한국의 실정에 적용하도록 함.
- ※ WMO 열대성저기압 사업과 기타지역 계획과의 협력(의제 7)
  - 범세계적인 재해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동 사업과 계획의 협력활동에 찬성함.
- ※ 제8차 태풍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의제 9)
  - 한국에서의 제8차 회의 개최는 현 여건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함.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통계위원회 회의, 제1차. Jakarta(인도네시아) 1974.11.21.-27.

| 74-057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0 / 3 / 1~185p

정부는 1974.11.21.~2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통계위원회 회의에 김춘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파견 목적

- ※ 각국의 통계지식과 기술 및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통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한국 통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646

## 2. 주요 의제 및 정부 입장(훈령)

- ※ 의장단 선출(의제 2)
  - 의장 출마가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후보를 지지하고, 부의장에 대하여는 우방국으로부터 지지 요청이 있을시 회의분위기를 고려하여 적절히 처리함.
- ※ 통계활동에 관한 소개(의제 6)
  - 1974년 세계인구의 해에 즈음한 한국의 행사활동 내용을 언급함.
  - 1974년 8월부터 실시 중인 세계 출산력조사 진행사항을 설명함.
  - 1975년도 인구센서스의 실시 준비사항 및 사회통계의 개선을 위한 사항을 소개함.
- ※ 에너지 통계(의제 8)
  - 종합적인 에너지 통계 작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설명함.
- ※ 환경보호 및 정책에 관한 통계(의제 10)
  - 대기오염방지책, 수질오염방지책 등 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능별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관련자료 교환 등을 제의함.
- ※ 인력 및 노동통계에 관한 워크숍(의제 11항)
  - 워크숍이 유익한 것임을 표명하고, 현재 한국은 ILO(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노동력 접근방법에 의거 새로운 표본설계와 조사방법으로 매분기별로 경제활동 인구를 조사하고 있음을 설명함.
  - 관련 통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제의함.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CPR (상임대표자문위원회) 회의, 제1-6차. Bangkok

| 74-0573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경제기구
MF번호	I-50 / 4 / 1~436p

1974년 중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ACPR(상임대표자문위원회)에 정부대표가 참석함.

## 1. 제1차 ACPR

- ✿ 개최 시기  
- 1974.5.29.
- ✿ 주요 의제  
- 위원회 산하 보조기구 존치 문제, 주요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문제, 세계비료기금 창설 문제

## 2. 제2차 ACPR

- ✿ 개최 시기  
- 1974.6.25.~26.
- ✿ 주요 의제  
- 세계비료기금 창설을 위한 재원조달 문제, 주요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문제

## 3. 제3차 ACP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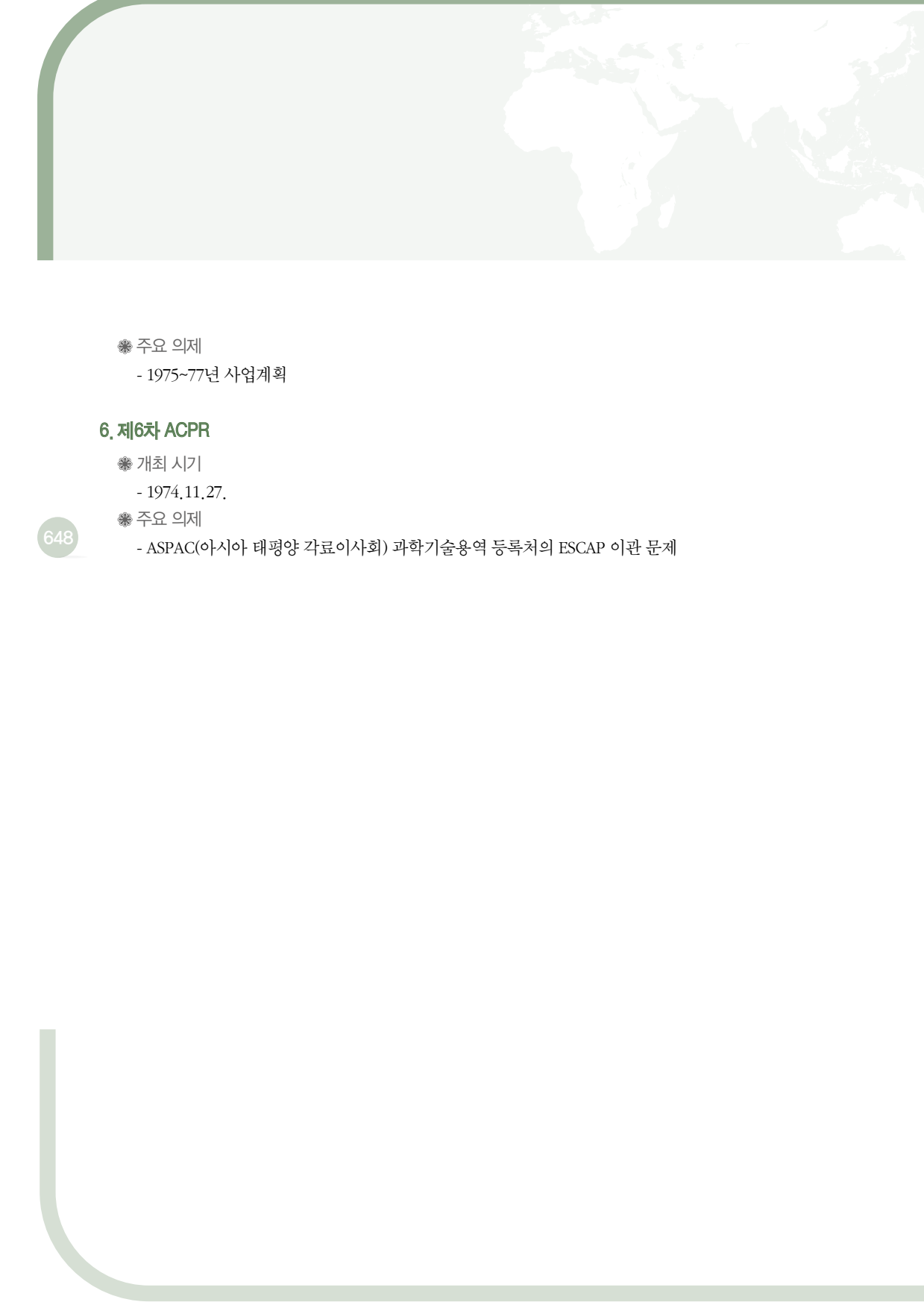
- ✿ 개최 시기  
- 1974.8.5.~6.
- ✿ 주요 의제  
- 세계비료기금 창설 문제,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문제, 해운위원회 신설 문제

## 4. 제4차 ACPR

- ✿ 개최 시기  
- 1974.9.3.
- ✿ 주요 의제  
- 주요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문제, 위원회 산하기구 폐지 문제
- ✿ 특기 사항  
- 한국대표가 ACPR 의장으로서 회의 사회

## 5. 제5차 ACPR

- ✿ 개최 시기  
- 1974.9.26.

- 
- ✿ 주요 의제
    - 1975~77년 사업계획

## 6. 제6차 ACPR

- ✿ 개최 시기
  - 1974.11.27.

- ✿ 주요 의제
  - ASPAC(아시아 태평양 각료이사회) 과학기술용역 등록처의 ESCAP 이관 문제

| 74-0574 |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IEDP (아시아경제개발계획연구원) 집행이사회. Bangkok, 1974.11.28.-29.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0 / 5 / 1~34p

1974.11.28.~29.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IEDP(아시아 경제개발계획연구원) 집행이사회에 송인상 주벨기에대사가 참석함.

## 1. 집행이사회 개최 및 구성

- ✪ 집행이사회는 매년 최소 1회 개최되며, 역내 39개 ESCAP 가입국으로부터 임기 3년으로 ESCAP 총회에서 선출된 7명의 위원과 AIEDP 소재지 국가인 태국 위원 1명 및 ESCAP 사무국장(의장 겸임)으로 구성됨.
- ✪ 한국에서는 송인상 주벨기에대사가 집행위원회 이사 자격으로 집행이사회에 참석함.
  - 송인상 대사는 1972.3월 제28차 ESCAP 총회에서 이사로 당선됨.

## 2. 집행이사회 결과(한국 대표 보고서)

- ✪ AIEDP 재정문제
  - UNDP(유엔개발계획)의 지원금액 체감 제의로 야기되었던 AIEDP의 재정문제는 그 후 UNDP의 지원 증액 약속과 회원국 분담금의 증액으로 해결됨.
- ✪ 건물이전 문제
  - 싱가포르로의 이전이 좌절되었던 건물 문제는 태국 정부의 후의로 우선 1977년말까지는 현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됨.
  - 태국 정부는 1977년 이후에도 건물용 부지를 제공하고 아울러 건축비의 일부도 부담하겠다는 입장으로 기울어짐.
- ✪ AIEDP와 여타 ESCAP 지역에 산재하는 연구훈련기관과의 관련 문제
  - 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논의가 이루어짐.
- ✪ 집행이사회 이사 선임 및 건의사항
  - 현 집행이사회의 임기가 1975.3월 종료되나, 현 집행이사회의 이사 전원의 임기를 1년간 연기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며, 이 제의는 ESCAP 사무총장에 의해 1975.2월 제31차 ESCAP 총회에 회부되어 확정될 예정임.
  - 제31차 ESCAP 총회가 기존 이사들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새로운 한국 측 후보자 지명을 고려해 둘 필요가 있으며, 다음 한국 측 이사 후보자는 경제협력 훈련 등에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ESCAP 지역 내에 널리 알려진 인사를 추천할 것을 건의함.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SAC (아시아표준자문위원회) 제4차. Kuala Lumpur, 1974.12.16.-19.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0 / 6 / 1~163p

정부는 1974.12.16.~1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AC(아시아표준자문위원회) 회의에 정창 주말레이시아대사관 1등서기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 주요 의제 및 토의 내용

- ASAC 지역표준화 활동에 관한 AIDC(아시아공업개발위원회)의 보고
  - 지역표준화작업과 국제표준화작업 간의 중복된 노력은 가능한 피해야 하며, 지역적 이익을 위해서는 지역표준화도 독자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봄.
  - 국제표준화가 결여된 경우에 잠정적 지역표준화가 작성되어 후일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져야 하며, 국제표준화가 지역적 이익에 맞지 않을 때에는 이를 수정하는 노력까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각 실무그룹의 보고
  - 실무그룹 활동의 효율성, 실무그룹이 취급하는 각 상품의 정의의 정확성 등이 논의됨.
- 지역협력
  - 훈련계획, 기술전문가 교환, 지역센터 설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됨.
-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표준화
  - ASAC이 다른지역의 표준화기구와 접촉을 갖기로 함.
  -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각 지역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회원 수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됨.
- 장래의 계획
  - ASAC 활동이 이 지역 표준화작업에 공헌하여 왔으며 이러한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ASAC이 ESCAP의 주요상설위원회로 그 지위가 승격되어야 함을 강조함.
- AIDC에 대한 보고서 정식 채택



| 74-0576 |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COORDCOM(동남아시아운수통신 조정위원회) 회원국 선원 훈련 전문가회의. Bangkok, 1974.8.19.-24.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0 / 7 / 1~169p

정부는 1974.8.19.~24.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COORDCOM(동남아시아운수통신조정위원회) 회원국 선원훈련 전문가회의에 안승혁 교통부 선원과 사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1. 회의 참가국

- ✪ 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월남, 태국, 인도, 이란(9개국)

## 2. 참가 목적

- ✪ 한국의 해사훈련 과정을 동남아 국가들에게 소개하고 동 회의 참석국의 해사훈련 정보를 입수, 한국 해사훈련 발전에 기여코자 함.
- ✪ 특히 제17차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무역위원회에서 한국 대표의 제의로 통과된 부산해원양성소의 ECAFE 지역센터 지정과 관련, 동 센터의 현황을 홍보하여 동남아 국가들과 ECAFE 지원을 요청코자 함.

## 3. 주요 의제

- ✪ 해기사 통일자격시험 및 법정면장에 대한 문제
- ✪ 해기사 자격과 교육제도 정립을 위한 공동목표와 통일교재의 채택
- ✪ 최저 선원 승선규모의 통일

## 4. 동 회의 관련 한국 측 추진사항

- ✪ 유엔/ECAFE 지정 한국선원양성소 설립 추진
  - 화물적재량 3,000톤 이상의 적격 실습선을 확보하여 실습선 유지관리에 충당
- ✪ 실습기재 확보 추진
  - 노르웨이로부터의 실습기재(100만 불 이상) 확보 및 교관(1~2명) 한국 파견 추진

| 74-0577 |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UPU(만국우편연합) 우편전문가 정부간 실무회의. Bangkok, 1974.10.21.-28.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0 / 8 / 1~110p

정부는 1974.10.21.~28.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UPU(만국우편연합) 우편전문가 정부간 실무회의에 김철진 주태국대사관 2등서기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라병화 체신부 우정국 국제우편과 사무관)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파견 목적

- ✧ 우정개발의 장애요소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및 향후 각국의 활동방향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한국 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의제

- ✧ 우정사업발전의 문제점과 대책
- ✧ 우편물의 효과적인 운송과 배달
- ✧ 우정요원의 과학적인 훈련
- ✧ 우정사업관계 기술원조

## 3. 주요 의제(우정사업관계 기술원조) 및 정부 입장(훈령)

- ✧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의 기술원조 5개 원칙(의제 6 부록 1-1)
  - 동 원칙에 찬성함.
- ✧ 훈련에 관계되는 기술원조의 형태(의제 6 부록 1-2)
  - 개별적 시찰이나 견학 또는 학습 대신에 단체적 과정 설정 형식, 세미나 형식, 지역학교 설정을 통한 단체 훈련 형식이 바람직함을 강조함.
- ✧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별적 우정분야(의제 6 부록 1-3)
  - 기획 및 통계, 예산, 요금정책과 회계관리, 경영합리화, 훈련기법, 국제우편업무분야 등을 강조함.
- ✧ 아시아·대양주 우정학교(의제 6 부록 1-4)
  - 현재까지의 훈련결과가 매우 유익하고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함.
  - 우정학교 참여국 확대방안 토의에서 중국(중공) 및 북한의 참여 권유안이 제기될 경우 현지 대사관에 연락하여 훈령을 기다리며, 불시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중립적 입장을 취함.
- ✧ 지역 내에서 순환근무할 교관 고용문제(의제 부록 1-5)
  - 한국과 직접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소극적 반대에 그침.
- ✧ 고급관리자학교 설립안 등(의제 부록 1-6)
  - 중립적 태도로 토의에 임함.

# 아시아 농기구센터 설립 준비사절단 방한, 1974.10.24.-27.

| 74-0578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경제기구
MF번호	I-50 / 9 / 1~74p

아시아 농기구센터 설립 준비사절단이 1974.10.24.~27. 방한함.

## 1. 준비사절단

- ※ 단장: R.Viteau(프랑스)
-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대표: U.T.Then(태국)
- ※ FAO(세계식량농업기구) 대표: R.H. Krause(독일)
- ※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대표: E. Gosparto(이탈리아)

## 2. 방한 일정

- ※ 10.24.
  - 도착
- ※ 10.25.
  - 농수산부 방문
  - 농촌진흥청 방문
  - 서울대 농과대학 방문
- ※ 10.26.
  - 상공부 방문
- ※ 10.27.
  - 출발

## 3. 협의 내용

- ※ 농수산부
  - 한국의 센터 참가여부 및 자금부담 가능성
  - 센터의 목적, 규모 및 지원사항
  - 한국의 농업기계화 사업 및 교육연구기관 현황
- ※ 농촌진흥청
  - 센터의 규모 및 기술연구분야 이용
  - 센터에서 지원할 사항
  - 센터와 국제미작연구소와의 관계
  - 농촌진흥사업소 개통
  - 농공이용연구소의 기능 및 시험사업결과 등
- ※ 서울대 농과대학
  - 농대 농공과의 교육과목 및 수업내용
  - 농공과 창설시기, 학생 수, 졸업생 종사분야 등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회의, 제14차. 제1부. Geneva, 1974.8.20.-9.13.

| 74-057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0 / 10 / 1~59p

정부는 1974.8.20.~9.13.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회의에 황호을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훈령

- ※ 제6차 유엔특별총회의 “선언” 및 “행동강령”이 앞으로 개발도상국 및 전 세계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힘.
- ※ MTN(다자간무역협상)의 실질적 교섭을 앞두고 일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하여 사전 협의없이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예가 있는 바, 이와 같은 국제교역상의 일반규칙을 어기는 조치가 없도록 선진국 측에 촉구함.
- ※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국가 간 교역문제에 대하여 한국은 1972.8월 “대동구권 국가와의 교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 추진 중이고 특히 1972.6.23. 평화통일에 관한 대통령 특별성명의 기본정신에 따라 이들 국가와 상호주의 원칙하에 무역관계를 갖기를 희망하는 바, 이는 UNCTAD 결의 53(III)에 따른 동서 간 교역증대에도 기여할 것임을 밝힘.

## 2. 회의 결과

- ※ 제4차 UNCTAD 총회 개최지 결정
  - 1976.5~6월 사이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
- ※ 제6차 UNCTAD 특별이사회 개최 결정
  - 1975.5월 중 제4차 UNCTAD 총회 준비 및 제2차 유엔개발 10년 사업 중간단계 검토를 위하여 개최
- ※ 기술이전위원회 신설
  - 종래의 작업단 회의 성격에서 상설위원회로 승격
- ※ 최빈개도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 간 그룹” 설치
- ※ 기타 개도국 외채문제회의 개최 결정 등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 제정에 관한 작업단 회의, 제3-4차

| 74-0580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경제기구
MF번호	I-50 / 11 / 1~137p

## 1. 정부는 1974.2.4.~22.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 제정에 관한 작업단회의에 정우영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 ※ 개최 경위

- 1972년 제3차 UNCTAD 총회에서 멕시코 대통령이 국가 간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헌장의 제정 필요성을 제의함에 따라, 동 총회가 동 헌장 초안 작성을 위한 작업단 설치를 결의함.
- 제1차 작업단회의(1973.1.12.~23.) 및 제2차 작업단회의(1973.7.16.~27.)가 개최됨.

### ※ 회의 결과

- 헌장 초안 각 조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비교적 각 국가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이외의 조항에 대하여는 제2차 작업단회의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축소, 통합 하는데 그침.

## 2. 정부는 1974.6.10.~27.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 제정에 관한 작업단회의에 박상두 주멕시코대사관 참사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 회의 결과

- 동 회의 참가국들이 자유진영, 공산진영, 선진공업국, 개발도상국 및 각 지역으로 나뉘어 의견 대립을 보임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 특히 개발도상국 내 다국적회사 제한문제, 외국인 소유기업의 국유화문제, 수송에 대한 배상문제, 약소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문제 등에 대한 의견대립이 이루어짐.
- 1974.9월 제네바에서 회의를 재개하여 계속 검토하기로 함.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국제일관수송협정에 관한 정부간 준비그룹회의, 제2차. Geneva, 1974.11.11.-29.

| 74-058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0 / 12 / 1~102p

정부는 1974.11.11.~29.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국제일관수송협정에 관한 정부간 준비그룹회의에 이보형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1. 개최경위

- ※ UNCTAD/TBD(무역개발이사회) 결의96(제)에 따라 1973년 제1차 회의에 이어 제2차 회의를 소집함.

656

## 2. 참가국 및 참가자

- ※ 76개국, 유엔산하 11기관 및 13개 비정부협의체로부터 약 290여 명이 참석함.

## 3. 회의 결과

- ※ 회의 시작부터 선·개도국 간 국제일관수송협정 필요여부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었으며, 모든 안건을 본회의(Plenary Meeting)에서 모든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일괄 토의하지는 77그룹의 주장에 따라 전 회의기간 동안 본회의에서 협정초안의 기초에 관한 토의를 진행함.
- ※ 국제일관수송(International Intermodal Transport)을 위한 협정안에 포함될 선적서류, 손해배상, 보험문제 등에 대하여 선진·개도국 간 논란이 있었으며, 1975.10월 개최 예정인 제3차 회의 시까지 UNCTAD 사무국과 각국이 좀 더 연구, 검토하기로 함.
- ※ UNCTAD 사무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협력하여 적극성을 가지고 동 협정의 기초작업을 서둘렀으나, 개도국들은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상이한 현행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거대한 계획에 의한 통합, 규제는 단시일 내에 실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

| 74-0582 |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무역 및 무역외 금융위원회/개발도상국 대외부채문제에 관한 Adhoc 전문가 그룹회의, 제1-2차. Geneva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경제기구
MF번호	I-50 / 13 / 1~123p

제1~2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대외부채문제에 관한 전문가그룹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각각 개최됨.

## 1. 제1차 회의(1974.5.6.~10.)

- ✿ 정부대표
  - 김희영 한국은행 조사 제1부 차장
- ✿ 파견 목적
  - 타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대외채무누진 및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한편 외자 공여조건의 개선 등 선진국들의 성의 촉구
  - 관계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한국의 외자도입정책 추진에 기여
- ✿ 토의 내용
  - 경제성장 둔화, 공공원조 감소 및 외채상환의 가용 외환과의 관계
  - 민관차관 증대 및 외채상환 수준에 대한 효과
  - 민관차관의 공공원조 대체 사용 정도
  - 외채상환난 해결을 위한 채무국의 경제정책
  - 개발수요와 외채상환 간의 조화문제
  - 공공원조의 증대 또는 공여조건 개선의 외채상환 용이화 정도
  - 개발도상국의 중단기 국제수지난 해결 지원을 위한 국제체제의 역할 등

## 2. 제2차 회의(1974.12.11.~17.)

- ✿ 정부대표
  - 이창수 한국은행 조사 제1부 차장
- ✿ 파견 목적
  - 타 개발도상국들과 공동보조하에 외채누진 및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공공개발원조의 확대 등 선진국들의 성의 촉구
  - 관계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한국의 외자도입정책 추진에 기여
- ✿ 토의 내용
  - 경제성장 둔화, 공공개발원조 감소 및 외채상환과 가용 외환과의 관계
  - 민관차관의 역할 증대가 외채상환 수준에 미치는 효과
  - 공공개발원조의 대체 수단으로서 민간차관의 이용한계
  - 경제개발의 소요액과 외채상환 소요액을 조화시키는 채무국의 경제정책
  - 투자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한 사업평가의 역할
  - 공공원조의 증대 또는 공여조건 개선의 외채상환 용이화 정도
  - 선진국의 무역제한이 개발도상국의 수출전망에 미치는 효과
  - 개발도상국의 중단기 국제수지난 해결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등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원산지 규정 작업단 회의, 제5차. Geneva, 1974.12.2.-6.

| 74-058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0 / 14 / 1~43p

정부는 1974.12.2.~6.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원산지 규정 작업단회의에 이보형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차수명 주제네바 대표부 상무관)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주요 의제

※ 원산지 규정의 조화와 간소화를 포함한 개선 제안 검토

- List of Process "A" and "B"
- Value-add Criterion
- Direct Consignment
- Cumulative Treatment
- Developed Country Contents
- Basic Material List

## 2. 회의 결과

- ※ 회의 벽두에 B그룹이 회의 실질안건에 대한 입장을 문서로 제시하고, 77그룹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 ※ B그룹이 77그룹의 대안에 대해 극히 부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타협이 시도되었으나, 회의는 별 진전없이 종료됨.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제품위원회 속개회의, 제6차. Geneva, 1974.7.2.-12.

| 74-0584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경제기구
MF번호	I-50 / 15 / 1~89p

정부는 1974.7.2.~12.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제품위원회 속개회의에 정우영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참가 목적

- ※ 동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출증진에 장애가 되는 비관세장벽 완화, 식물류 교역규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의 개발도상국의 특별배려 문제 등 한국의 수출증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주요의제로 다루어지므로 타 개발도상국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함.

## 2. 주요 의제

- ※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의 제거 및 완화에 관한 진전 검토
- ※ 개발도상국의 다자간 무역협상 참여
- ※ LTA(장기면직물협정) 등 식물류에 관한 국제교역
- ※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및 Standstill(신규보호조치동결)
- ※ 산업조정지원 조치
- ※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수량제한 및 기타 비관세장벽의 제거 및 완화를 위한 조치
- ※ 개발도상국의 수출정책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중석위원회 작업단 회의, 제9차. Geneva, 1974.8.12.-16.

| 74-058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0 / 16 / 1~39p

정부는 1974.8.12.~16.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9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중석위원회 작업단회의에 정우영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개최 목적

- ※ 중석의 생산국가와 소비국가 간에 중석의 세계적 수급조정을 통한 가격안정 방안을 협의

660

## 2. 훈령

- ※ 의장단 선출
  - 참가국의 다수의견에 따르되 가급적 중석생산국의 이익옹호를 대변하는 대표를 지지함.
- ※ 사무국의 의제안을 정식의제로 채택함.
- ※ 중석시장 분석과 가격안정 방안
  - 투기상인 배제와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유통방법을 협의함.
  - 중석시장의 국제적 운영, 통제를 관리하는 국제기구 창설을 협의함.
  - 중석 통계자료의 질적 향상 방법을 협의함.
  - 미국의 비축중석 방출정책이 국제중석시장의 안정화에 연결되는 방안을 협의함.
  - 중석 거래가격 결정 방법으로 Users' Index 보다 Monthly Average Base를 권장함.
- ※ 기타 문제
  - 중석 정장 및 가공품에 대한 선진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를 촉구함.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특혜특별위원회 회의, 제6차. Geneva, 1974.5.20.-31.

| 74-058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0 / 17 / 1~120p

정부는 1974.5.20.~31.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특혜 특별위원회 회의에 문덕주 주이탈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 토의 내용

- 특혜공여국(EC(구주공동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핀란드, 덴마크, 호주,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은 자국의 특혜제도 개선 현황을 설명하고 개도국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 캐나다는 1974.7.1.부터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제도 실시
- 개발도상국이 언급한 선진국에 대한 요망사항은 아래와 같음.
- 캐나다의 GSP 실시에 대해서 Product Coverage, Depth of Tariff Cut, Ceiling 등 개선 요망
- 일본의 Ceiling에 대해서 Reference Year(1968년)의 개선 및 GSP를 정지할 경우 사전 협의 요망
- 미국에 대해서 GSP 조기실시 촉구, 의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 중 Import Relief Measure와 Competitive Need Formula의 재검토 요망(미국 대표는 GSP 제도의 조속한 실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과 GSP 법안이 확정될 경우 개발도상국의 개발정도에 따른 융통성있는 GSP 제도 운영 시사)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해운위원회 회의, 제6차. Geneva(스위스) 1974.7.29.-8.9.

| 74-058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0 / 18 / 1~31p

정부는 1974.7.29.~8.9.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해운위원회 회의에 정우영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토의 내용

- ※ 본회의에서는 현행 및 장기적인 해운문제를 검토함.
  - 한국대표는 개발도상국의 세계해운운송에 실질적 참여증대 및 선박 증가가 필요하며, 선진국의 선박 차관 제공 및 상환조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언함.
- ※ 분과회의에서는 항만개발, 해운의 무역관행에 관해 검토함.

## 2. 결의안 채택

- ※ Freight Rate 결의안
- ※ Development of Merchant Marines 결의안
- ※ Merchant Shipping 에 대한 경제협력 결의안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호주의 GSP (일반특혜관세제도)

| 74-058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0 / 19 / 1~55p

1. 외무부는 1974.3월 1974년도 호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실시에 관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 문서를 업무 참고용으로 상공부 및 재무부에 송부함.
2. 외무부는 1974.5월 상기 호주의 GSP 제도에 관한 UNCTAD 문서의 일부분을 수정하는 통보문을 업무 참고용으로 상공부와 재무부에 송부함.

663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74

## UNCTAD(유엔 무역개발회의)/오스트리아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74-058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0 / 20 / 1~10p

1. 외무부는 1974.3월 1974년도 오스트리아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실시에 관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 문서를 업무 참고용으로 상공부 및 재무부에 송부함.
2. 외무부는 1974.3월 1974년도 오스트리아 GSP에 관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문서를 업무 참고용으로 상공부와 재무부에 송부함.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캐나다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74-059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1 / 1 / 1~27p

1.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74.6월 캐나다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74.7.1.부터 시행)에 관한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문서를 업무 참고용으로 외무부 통상국에 송부함.
2. 외무부는 1974.7월 캐나다 GSP에 관한 GATT 문서를 업무 참고용으로 상공부에 송부함.

66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일본의 GSP (일반특혜관세제도)

| 74-0591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기구/동북아1
MF번호	I-51 / 2 / 1~40p

1. 일본 정부는 1974.3.30. 관세집정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1974년도(1974.4.1.~75.3.31.) 특혜관세 실시  
요령을 발표함.

2. 본 문서철에는 아래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 ※ 상기 특혜관세운용방식 및 특혜관세대상 품목별 한도액
- ※ 1974.4.1.부터 시행 중인 일본의 개량된 GSP(일반특혜관세제도)에 관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문서
- ※ 1974.4.1.~6.30. 수입 상황 및 대한민국 특혜적용 상황 자료
  - 농수산물 Positive List 대한민국 특혜적용 상황
  - 광공산물 Ceiling 소화 상황 및 대한민국 특혜적용 상황
  - 1974.8.1. 현재 특혜적용 정지 현황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스위스의 GSP (일반특혜관세제도)

| 74-0592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경제기구
MF번호	I-51 / 3 / 1~74p

1. 외무부는 주한 스위스대사대리로부터 1974.4.1.부터 개정 실시되는 스위스의 대개발도상국 특혜 관세제도 및 관련 Aide-Memoire를 접수함(동 자료 수록).
2. 외무부는 1974.4.1.부터 개정 실시된 스위스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에서 한국이 여전히 직물 및 신발류 수혜대상에서 홍콩, 마카오와 함께 제외되었음을 지적하고 여사한 차별조항 시정을 위해 스위스 관계기관을 접촉하도록 주스위스대사관 및 주제네바대표부에 지시함.

※ 1972년 제도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수혜대상품목 범위 및 특혜관세 등에서 상당히 향상된 점이 있음은 평가함.

667

## 각국의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 74-059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1 / 4 / 1~70p

1. 외무부는 1974년 제29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이사국 입후보를 검토 하였으나, 인도네시아가 입후보를 결정하고 지지를 요청함에 따라 입후보하지 않고 인도네시아를 지지하기로 결정함.

※ 1974년말로 UNIDO 이사국 임기가 만료되는 아주국가(인도, 태국, 말레이시아)와 비공식 접촉한 바, 인도와 태국은 재출마할 것이며 말레이시아는 재출마를 포기할 것이라고 하였고, 인도네시아는 입후보를 결정하고 한국의 지지를 요청함.

※ 1974년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와 한국의 유엔 비회원국 지위를 감안하여 인도네시아와의 경합을 피하고 동국을 지지기로 함.

2. 한국은 1974년 제29차 유엔총회 UNIDO 이사국 선거에서 상기 인도네시아 이외에 태국, 케냐, 코스타리카, 쿠웨이트를 지지한 바, 동 선거에서 선출된 UNIDO 이사국(15개국)은 아래와 같음.

※ 알제리, 브라질,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쿠바, 프랑스, 코트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페루, 스웨덴, 미국

| 74-0594 |

## 제2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준비를 위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특별회의, Bangkok, 1974.10.31.-11.4.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1 / 5 / 1~94p

정부는 1974.10.31.~11.4.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준비를 위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특별회의에 천병규 주태국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회의 결과

- ※ 1974.10.28.~30. 개발도상국들의 예비회의가 개최되어 아시아선언을 채택하고 1974.10.31. 동 아시아선언을 특별회의 토의의 기초로 배포함.
- ※ 동 회의는 회의보고서에 아시아선언을 첨부시켰는바,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예비회담이 일부 회원국에 국한된 점과 동 예비회담에 ESCAP의 시설 등이 공여되는데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이를 회의 보고서에 반영함.

### 2. 특기 사항

- ※ 천병규 대사는 훈령에 구체성이 결여된 주장만 하달되고 동 주장을 뒷받침할 이유 및 근거 제시가 없었으며 선언초안에 대한 특별훈령이 없었던 관계로 대표단이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보고함.

66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및 상임위원회, 제4-5차, Vienna

| 74-0595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1 / 6 / 1~54p

### 1. 정부는 1974.4.17.~26.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4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공업개발상설 위원회에 강승구 주오스트리아 참사관 외 1인을 정부대표(옵서버)로 파견함.

※ 동 회의에서는 한국의 대표권 문제가 제기됨.

- 루마니아 대표단은 옵서버 국가(한국) 대표단의 신임장에 동 대표단이 한국인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표단은 그러한 권리가 없으며, 북한이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실체라고 지적함.
- 중국(구 중공) 대표단은 한국의 참가에 이의를 제기함.

670

### 2. 정부는 1974.12.2.~14. 및 1975.1.20.~27.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5차 UNIDO 공업개발상설 위원회에 강승구 주오스트리아 참사관 외 2인을 정부대표(옵서버)로 파견함.

※ 동 회의에서는 한국 대표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음.

##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기술협력관계 전문가 채용에 관한 회의, Geneva(스위스) 1974.9.16.-20.

| 74-0596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경제기구
MF번호	I-51 / 7 / 1~78p

정부는 1974.9.16.~2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기술협력관계 전문가 채용에 관한 회의에 조상훈 주제네바대표부 3등서기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 토의 내용

- 유엔 계획하의 전문가 채용과정 및 절차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극히 기술적인 내용에 집중됨.

67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제18차. Pasay(필리핀) 1974.6.5.-24.

| 74-059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연합/경제기구
MF번호	I-51 / 8 / 1~95p

정부는 1974.6.5.~24. 필리핀 파사이에서 개최된 제18차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에 장지량 주필리핀대사를 정부대표(옵서버)로 파견함.

## 1. 참가 현황

- ※ 47개 회원국 대표, 19개 옵서버국 대표, 국제기구 대표 등

672

## 2. 토의 및 결의 내용

- ※ 주요 토의사항
  - 5개국(방글라데시, 부탄, 체코, 몽골, 튀니지) Country Program 원조계획을 국가별로 심의함.
  -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케냐 및 터키에 대한 8천만 달러 상당의 인구원화 사업을 승인함.
  - 유엔총회에서 창설된 자원개발을 위한 회전자금의 운영절차 및 행정적 조치를 의결함.
- ※ 신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결의
  - 신경제질서 수립을 위한 UNDP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며 UNDP의 모든 기능을 다하여 기술협력할 것을 결의함.
- ※ 개도국 간 협력에 관한 결의
  - 개도국 간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UNDP 산하에 기술협력사업 증진과 정보교환을 위한 기구 창설을 결의함.
- ※ UNDP 자금의 지역별 할당
  - 1977~81년간의 UNDP 가용기금 3억 달러를 아프리카 99백만 달러, 아시아 93백만 달러, 라틴아메리카 63백만 달러, 구주·중동 45백만 달러로 할당함.
- ※ 특기 사항
  - 소련 대표는 1973년도 연례보고서 토의 중 UNDP의 경비는 증가되었으나 사업비 지출의 비율이 감소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에 대한 UNDP 지원을 반대함.

# UNDP(유엔개발계획) 주한대표 수석농업고문 겸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상주대표 임명 문제

| 74-059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1 / 9 / 1~42p

## 1. 외무부는 1973.7월 주한 UNDP(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와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본부에 UNDP의 수석농업고문관 겸 FAO 상주대표의 조속한 임명을 요청함.

※ 전임 UNDP의 수석농업고문관 겸 FAO 상주대표는 1973.2월 이임

## 2. 상기 요청에 대한 UNDP 및 FAO의 반응

※ 주한 UNDP 상주대표의 외무부차관 앞 서한(1973.10.9.자)

- UNDP는 동 기구의 정원문제, 예산문제 등을 고려, UNDP 예산에 의한 FAO 상주대표의 체한을 반대하고 있음.
- 한국 과학기술처 역시 FAO 상주대표의 충원이 절실한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여타 경제부문의 상주대표의 충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임.

※ FAO 본부의 반응

- 주이탈리아대사관이 FAO 본부를 접촉한 바에 의하면, FAO로서는 주한 UNDP 상주대표의 요청 없이는 후임자를 임명하기 어려운 사정인 것으로 보임.

## 3. 외무부는 1974.3월 농수산부의 제안에 따라 한국내 UNDP 사업관리인 중 1인(Lamey)을 FAO 상주대표로 겸임하는 방안을 주한 UNDP 측과 협의한바, UNDP 측은 아래 이유로 동 겸직을 동의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상주대표의 겸임문제는 UNDP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

※ 동 후보자가 담당하고 있는 UNDP 지원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므로 상주대표직 겸임은 동인의 직무수행에 차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67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UNEP(유엔환경계획) 이사회, 제2차.  
Nairobi(케냐) 1974.3.11.-22.

| 74-059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I-51 / 10 / 1~56p

정부는 1974.3.11.22.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2차 UNEP(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에 김균 주케냐대사관 3등서기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회의 결과

- 현재 및 미래의 UNEP 활동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함.
- 유엔총회 결의로 197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인간 정착지에 관한 국제회의 및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함.
- 유엔총회가 1975.1.1.자로 새로운 주거 및 인간 정착 재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함.



## UNICEF(유엔아동기금) 대표 임명

| 74-0600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I-51 / 11 / 1~31p

1. UNICEF(유엔아동기금) 본부가 1974.7월 주한 UNICEF 대표로 Allan McBain을 임명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한데 대하여, 외무부는 9월 동인에 대한 임명 동의를 주유엔대표부를 통하여 UNICEF 사무국에 통보함.

※ 외무부는 동인의 임명동시에 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의없음을 통보받음.

2. 1963년부터 1970년까지 주한 UNICEF 대표로 근무한 바 있는 McBain의 약력은 아래와 같음.

- ※ 1942~49년 인도, 중국 등에서 국제구호기관 사업에 종사
- ※ 1950~60년 UNICEF에 임용되어 태국, 인도, 미국(뉴욕) 등에서 근무
- ※ 1963~70년 주한 UNICEF 대표
- ※ 1970~74년 주에티오피아 UNICEF 대표

## UNICEF(유엔아동기금) 분담금

| 74-060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I-51 / 12 / 1~69p

1. 외무부는 1974.5월 경제기획원 앞 공문으로 1975년 예산요구서 상 동년도 UNICEF(유엔아동기금) 분담금으로 70,000달러를 요구할 예정이며 1974년도 UNICEF 분담금 특별보증회의 시(1974.11월) 국회승인 조건으로 이를 보증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 UNICEF는 한국에 대한 원조사업을 계속 확장, 지원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요청하고 있음.
- ※ 한국에 대한 UNICEF 원조사업은 과학·교육, 사회사업, 급식 및 직업훈련 등 분야에서 연 평균 70만 달러에 달함.
- ※ 문교부는 한국의 과학·교육 사업에 대한 UNICEF의 적극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2. 경제기획원은 1974.6월 한국 정부의 1975년도 UNICEF 분담금은 1974년도 예산액 56,000달러보다 8% 증액한 60,480달러로 함이 타당하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자금 지원에 의한 가족계획 사업

| 74-060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1 / 13 / 1~24p

1. 주한 UNDP(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는 1973.12.27.자 공한으로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과 한국 정부 간의기본협정 서명 절차 협의를 제의하고 UNFPA 분담금 증액을 희망함.

2. 이에 대해 외무부는 1974.1.10. 아래 요지의 회답 공한을 송부함.

- ※ 한국 정부와 UNFPA 간 협정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1974.1월말 경에 정식 서명 절차를 협의할 수 있을 것임.
- ※ UNFPA 분담금 증액 문제는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임.

3. 외무부는 보건사회부의 요청에 따라 1974.2.8.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장에게 WHO 소속 단기 자문관 1명을 한국에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 WHO 측은 1974.2.15. 상기 자문관으로 T.C.Hsu 박사를 1974.2.25.~3.1.간 파견할 것을 외무부에 통보함.

# WFUNA(유엔협회세계연맹) 서태평양지역회의. Sydney, 1974.5.20.-30.

| 74-060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연합/문화교류
MF번호	I-51 / 14 / 1~36p

## 1. WFUNA(유엔협회세계연맹) 서태평양지역 회의가 1974.5.20.~30.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됨.

### ※ 참석자

-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소련 등 9개 협회대표가 참석함.
- 한국은 한국유엔협회 김상준 사무국장(서강대 교수) 및 이구재 학생부장(서울대 교수)이 참석함.

### ※ 토의 의제

- 인권문제, 환경문제, 인구문제, 사회발전문제, 아시아의 평화문제

### ※ 동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 내용 중 한국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남·북한이 휴전선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은 피하고 남북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과 남·북한이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 조치로 유엔에 동시가입 할 것을 촉구함.

## 2. 외무부는 한국유엔협회 대표 2인의 상기 회의 참가 지원을 위하여 1인분의 왕복항공료와 활동비를 지급기로 함.

# WFP(유엔세계식량계획) 분담금 서약회의. New York, 1974.2.4.

| 74-0604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1 / 15 / 1~67p

1. WFP(유엔세계식량계획) 분담금 서약회의가 1974.2.4.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바, 동 회의에 참석한 한국대표는 한국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1975/76 분담금으로 12,000달러를 서약한다고 발표함.

※ 동 회의에 참석한 59개국 대표는 총311백만 불을 보증함.

2. 외무부는 현재까지 한국에 대한 WFP의 원조액을 감안하고 앞으로도 계속 WFP로부터 원조를 원활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한국의 1975/76 분담금을 태국 수준인 20,000달러로 인상할 것을 경제기획원에 제의 하였으나, 경제기획원은 1974.1월 전년도 분담금에서 30% 증액한 12,000달러를 제시한 바 있음.

# WFP(유엔세계식량계획)/IGC(정부간위원회) 회의, 제25-26차. Rome

| 74-060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1 / 16 / 1~27p

제25~26차 WFP(유엔세계식량계획) IGC(정부간위원회) 회의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됨.

## 1. 제25차 회의(1974.4.22.~26.)

- ※ 하성환 주이탈리아대사관 수산관이 정부 대표(읍서버)로 참석

## 2. 제26차 회의(1974.10.24.~30.)

- ※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등 2명이 정부 대표(읍서버)로 참석
- ※ WFP 사무총장의 언급요지

- 1974년 미국과 캐나다의 농작물 수확이 부진하고 아시아지역 일부 곡물 소비지역에서 흉작으로 인한 공급부족과 가격폭등 상태는 계속될 뿐 아니라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WFP는 자원부족으로 인하여 총 6억 달러 상당의 사업신청을 보류시키고 있고, 이미 승인된 5개 신규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IGC가 승인한 65백만 달러 상당의 11개 사업이 아직 서명이 되지 않고 있음.
- 다음 세계식량회의에서 각국 정부대표들이 매년 일정한 최소량의 곡물을 식량원조로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기를 촉구함.

# 중국(구 중공)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가입

| 74-060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1 / 17 / 1~72p

## 1. 중국(구 중공)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가입 추진 경위는 아래와 같음.

- ※ ICAO 이사회 의장이 1973.11.23.~12.1. 중국을 방문, 중국의 ICAO 참여문제에 관하여 논의함.
- ※ ICAO 사무총장은 ICAO 방콕 사무소 대표와 함께 1974.4.27.~5.1. 중국을 방문함.
  - 중국 외교부 및 항공청 고위인사와 접촉, 민간항공 문제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함.
  - 동 사무총장은 중국 측과 접촉 시 ICAO에 대한 중국의 적극 참여를 권유하였으며, 중국 측은 1974.9.24.~10.16.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ICAO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다짐함.
- ※ ICAO 사무국은 1974.5.31.자 회람 공한으로 중국의 ICAO 참여를 회원국에 알림.
  - 중국은 1974.2.15.자 중국 외상 명의 ICAO 사무총장 앞 비공개 서한으로 중국의 ICAO 참여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2. 중국의 ICAO 참여문제와 관련하여 주미국대사관이 1974.7월 미 국무부에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중국문제는 가입문제가 아니며 대표권의 문제인 바, ICAO 이사회가 중국(구중공)의 대표권을 인정함.
- ※ 미국은 Chicago Convention 기탁국으로 이사회의 결정을 따를 뿐이며, 중국이 기탁국인 미국 정부에 대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음.
- ※ 중국은 1974.9~10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ICAO 총회에 참가할 것을 통보함.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1차, Montreal, 1974.9.24.-10.15. 전2권 (V.1 기본문서)

| 74-0607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1 / 18 / 1~694p

정부는 1974.9.24.~10.15.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1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 김영주 주캐나다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문명린 교통부 항공국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참가국

- ※ 120개 회원국, 1개 옵서버국(동독) 및 국제기구의 대표

## 2. 주요 처리사항

- ※ 이사국 선출, UNDP(유엔개발계획) 계획하에 제공되는 기술원조에 관한 정책 및 활동, 해방운동단체의 ICAO 회의 초청 문제, 분담금 체납국에 대한 조치(남아공의 투표권 정지), 예루살렘 공항 문제, 헌장 제50조 개정 (이사회 의석 증가), 아랍어 사용 문제, 비행정보구역 설정 및 변경에 관한 기준, 분담금 책정 기준, 회원국 분담금 결정, 국제항공 운송이 당면한 중요 경제문제(관세문제 등), 포르투갈에 대한 제재 해제, 의사규칙 개정

## 3. 대표단의 동 회의 평가

- ※ 금번회의는 과거와는 달리 ICAO 본연의 실질적 기술적 문제보다는 정치적 문제 토의가 주된 관심사항이 됨.
- ※ 중동, 아프리카국들이 지역적 이해 문제에 있어서 단결현상을 보여 주었으며 나아가 회의의 전체적인 주도권을 장악함.
- ※ 항공요금 및 관세문제 등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양자적 현행제도를 고수하려고 하는 한편, 개도국들은 일률적인 원칙 수립을 주장하여, 선진·개도국 간의 이해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임.
- ※ Non-scheduled flight에 대해 각국이 큰 관심을 보임.



| 74-0608 |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1차, Montreal, 1974.9.24.-10.15. 전2권 (V.2 각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1 / 19 / 1~127p

외무부는 1974.9.24.~10.15. 개최된 제21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의 주요 의제인 이사국 선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함(1974.9월).

## 1. 한국의 지지를 요청해 온 아래 17개국에 대해서는 요청 경로에 따라 지지를 통보함.

### ✿ 지지요청 국가

- Part I 항공수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10석): 영국,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브라질, 독일, 호주(7개국)
- Part II 민간항공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최대 공헌국(10석): 벨기에, 아르헨티나, 스페인, 멕시코,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7개국)
- Part III 각 지역 대표(10석): 트리니다드토바고, 나이지리아, 모로코(3개국)

### ✿ 지지 이유

- 한국과의 관계 및 앞으로의 외교교섭 대상국으로서의 중요성
- 모로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현재 이사국으로서 국제민간항공에 큰 비중을 차지

## 2. 아직 지지요청은 없으나 우방으로 당선이 확실한 미국, 캐나다, 프랑스에 대해서는 대표단에 지지도록 훈령함.

## 3. 나머지 의석에 대해서는 수석대표로 하여금 한국과의 우호관계 및 각국 동향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처하도록 훈령함.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회의. Honolulu, 1973.9.5.-28.

| 74-0609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1 / 20 / 1~346p

정부는 1973.9.5.~28.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아시아·태평양 항공회의에 김완수 교통부 기획관리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참가국

- ※ 동 지역 28개 ICAO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참가  
- 중국과 북한은 불참

684

## 2. 주요 결과

- ※ 대중국 항로 구성안 통과  
- 이사회 인준 후 6개월 내 이행하도록 권고
- ※ 대구 관제국과 상하이, 베이징 관제국 간 직통전화 가설안 통과
- ※ 한국 FIR(비행정보구역) 북부 한계선 조정안 통과
- ※ 북한 및 중국 비행정보구역 설정안 통과

## 3. 회의 후속조치

- ※ 외무부는 1973.12월 상기 ICAO 아시아·태평양 항공회의 결정사항 중 한국과 관련된 아래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회보하여 주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함.  
- 북한 및 중국 비행정보구역 설정안 통과, 대중국 항로 구성안 통과, 한국 비행정보구역 북부 한계선 조정 등 한국과 관련된 사항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 회의, 제21차. Montreal, 1974.10.3.-22.

| 74-061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1 / 21 / 1~167p

정부는 1974.10.3.~22.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1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 회의에 교통부 항공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참석자

- ✿ 80개 회원국, 1개 비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함.

## 2. 주요 의제

- ✿ 바르샤바 협약(Convention for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연구문제
- ✿ 로마 협약(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the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연구문제

685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북대서양 및 태평양지역 임시항공회의. Montreal, 1974.11.4.-12.

| 74-061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1 / 1~72p

정부는 1974.11.4.~12.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북대서양 및 태평양지역 임시항공회의에 권재운 교통부 운항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참가자

※ 18개 ICAO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함

686

## 2. 주요 토의내용

※ ICAO 이사회 의장은 개막연설에서 태평양 및 북대서양지역에 설치된 LORAN-A 시설의 일부를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1974년말까지 철거할 계획이라고 하고 금번 회의의 목적은 이 시설들을 계속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언급함.

※ LORAN-A 시설 운용에 관하여는 5개 사항으로 분류하여 검토함.

- 북대서양 및 태평양지역의 현황
- 북대서양 및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현재의 LORAN-A 시설 운용 소요 판단
- 양 지역에 있어서 LORAN-A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추정예산
- 양 지역에 있어서 LORAN-A 시설의 지속적인 운용의 소요 판단
- 양 지역에 있어서 LORAN-A 시설배치 결정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사항

| 74-0612 |

##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선박에 의한 승객 및 화물수송에 관한 국제법률회의. Athene, 1974.12.2.-13.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조약
MF번호	I-52 / 2 / 1~224p

### 1.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선박에 의한 승객 및 화물수송에 관한 국제법률회의가 1974.12.2.~13.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됨.

- ✿ 32개 회원국, 3개 옵서버국 및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함.
- ✿ 한국 측에서는 대표단을 파견치 않음.

### 2. 동 회의는 선박에 의한 승객 및 화물 운송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the Carriage by Sea of Passengers and their Luggage) 채택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임.

68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18차, Vienna (오스트리아) 1974.9.16.-20.

| 74-061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3 / 1~178p

정부는 1974.9.16.~20.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8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한표옥 주오스트리아대사)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 1. 참가국

- ※ 82개 회원국, 2개 옵서버국 및 국제기구대표

## 2. 회의 결과

- ※ 이사국 선출
  - 11개 신규 이사국 선출
- ※ 신규회원국 가입 결정
  - 북한과 모리셔스 가입 결정
  - 한국 교체수석대표는 북한의 가입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이바지할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는 요지의 발언
  - 미국, 일본, 독일, 인도네시아, 태국, 코스타리카 등 우방국들의 한국입장 지지 발언
- ※ 기조연설
  - 각국대표는 지난 1년 동안의 원자력 이용에 관한 자국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원자력 이용 계획 및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포괄적인 입장 설명
  - 한국대표는 9번째로 기조연설
- ※ 의제 토의
  - 총회 의사규칙 개정, 1975년도 예산안, 1975년도 자발적 기여금 등에 관한 토의
- ※ 한국 대표 주최 만찬(1974.9.15.)
  - 총회 의장, IAEA 사무총장, 캐나다 등 주요국 대표를 초청하여 만찬 개최

#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Vienna(오스트리아)

| 74-061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4 / 1~10p

## 1.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가 1974.6.11.~13.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됨.

- ※ 1974년도 9월 개최되는 제18차 총회 가의제 채택, 1973년도 결산보고 채택 및 1973~74년간 활동 보고, 핵 폐기물 해양오염 예방 협정 등 안건을 처리함.
- ※ 사무총장의 요약보고서 청취 후 소련, 영국, 호주, 미국 등 14개국 대표가 개도국 기술원조사업의 확대, 자발적 기여금 증액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우선을 주장했으며, 원자력 발전소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7월초 회의를 열어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키로 함.

## 2. IAEA 임시이사회 및 기술원조위원회가 1974.12.29.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됨.

- ※ 제473차 IAEA 임시이사회
  - 아르헨티나의 Embalse 원전에 대한 IAEA와의 셰이프가드 협정 수정안을 콘센서스로 채택
- ※ IAEA 기술원조위원회
  - 사무국이 작성한 1975년도 기술원조 사업자금 배정(안) 승인
  - 원자력발전소 안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원자력발전소 품질보증, 원자력발전소 검사 등 한국에 대한 4개의 기술원조 사업도 원안대로 자금 배정(안)이 채택 및 통과됨.

68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가입

| 74-0615 |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5 / 1~140p

### 1. 주오스트리아 북한 통상대표부는 1974.5.10.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가입신청서를 IAEA 사무국에 제출함.

※ 북한 가입 신청서는 허담 북한 외무장관 명의로 되어 있음.

### 2. 외무부는 1974.5. 북한의 가입신청이 심의될 6월 이사회와 9월 총회에서 한국이 취할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이를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훈령함.

※ 6·23 신외교 정책의 취지에 따라 북한의 가입에 반대하지 않으며 6월 이사회와 9월 총회에서 한국 대표단이 기권토록 함.

※ 북한의 가입신청 심의시 아래 정부의 입장을 설명함.

- 분단의 영속화 방지를 위하여 중전에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반대하였지만 6·23 평화통일 외교 선언에 따라 통일시까지 잠정적으로 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에 가입하는데 반대하지 않기로 함.
- 한국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남·북한이 다같이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것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이바지 할 것을 기대하며 이런 취지에서 유엔에서도 남·북한이 다같이 회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 3. 1974.6.13. IAEA 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가입 신청건이 심의된 바, 동 심의시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상기 훈령에 따라 발언함.

※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대표 등은 한국에 유리한 발언을 함.

※ 북한의 가입 신청건은 표결없이 콘센서스에 의해 의장 선언으로 가결됨.

### 4. 1974.9.16. IAEA 총회에서 북한의 가입이 이사회의 권고대로 콘센서스로 가결됨.

※ 주오스트리아대사는 토의 초반에 제일 먼저 발언권을 얻어 한국의 입장을 천명함.

-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태국,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대표 등은 한국 입장 지지 발언 함.

※ 북한은 1974.9.18. 제3국인 루마니아를 통하여 수탁 정부인 미국 정부에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정식 회원국이 됨.

- 소련,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등 21개국이 기조연설에서 북한 가입을 환영함.



#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18차. Paris, 1974.10.17.-11.23.

| 74-061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6 / 1~247p

정부는 1974.10.17.~11.23.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8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 윤석현 주프랑스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규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주요 토의사항

- ※ 신규회원국 가입
  - 북한과 산마리노가 신규회원국이 됨.
  - 주프랑스대사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천명하는 발언을 함.
- ※ 1975/76년도 사업 및 예산 심의
- ※ 예루살렘 문화재 보호에 관한 문제
  - 예루살렘 문화재 보호에 관한 결의안(이스라엘 규탄 및 원조 철회)을 채택함.

## 2. 정부대표단의 활동

- ※ 한국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소개하고 유네스코 본부의 협력을 요청함.
  - 본부 신탁기금 사업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제의
  -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비교연구 세미나 성과 설명
- ※ 아주지역 유네스코 연맹 총회에 공산권국가 대표를 초청함.
  - 1976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동 회의에 소련, 북한, 몽골대표 초청
- ※ 리셉션 및 한국의 밤을 개최함.
  - 1974.11.7. 각국 대표, 사무국 간부 및 내외신 기자 등을 초청하여 리셉션 개최(400여명 참석) 및 11.8. 한국의 밤 행사(영화상영 등) 개최

#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94차, Paris, 1974.5.20.-6.28.

| 74-061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7 / 1~71p

## 1. 제94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이사회는 1974.6.25. 북한의 유네스코 가입문제를 토의, 10월 개최되는 제18차 UNESCO 총회 안건으로 포함시키고 동 총회가 북한의 가입을 승인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

- ※ 주프랑스대사는 동 이사회에서 6·23 선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북한의 유네스코 가입이 긴장완화와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한다면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요지로 한국 입장을 설명함.
- ※ 동 북한 가입안 채택 후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콜롬비아, 캐나다 및 스페인은 북한 가입안에 대한 기권 설명을 함.
  - 특히, 독일은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으므로 기권한다고 전제하고, 북한의 가입이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의 징조가 되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기를 희망함.
- ※ 일본은 북한의 가입에 찬성하나, 동 가입이 국제기구에서의 한국의 지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언함.

## 2. 북한은 1974.6.19. 허담 외교부장 명의 유네스코 가입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함.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APHCA(아시아태평양 지역축산보건위원회) 가입 검토

| 74-0618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8 / 1~38p

1. 외무부 국제기구과장은 1974.8월 APHCA(아시아태평양지역축산보건위원회) 설립협정 가입을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조약과장에게 요청함.

- ※ 농수산부는 동 협정 가입에 찬성함.
-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국은 가입국의 연간 재정부담규모가 초기단계에서는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함.

2. 주한 UNDP(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는 1974.8월 과학기술처 담당국장 앞 공한으로 동 협정 수락서 양식을 송부하면서 한국 정부가 동 협정 가입문제를 위해 조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693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 및 극동지역 총회, 제12차. 동경, 1974.9.17.-27.

| 74-0619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9 / 1~168p

정부는 1974.9.17.~27.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2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극동지역 총회에 함만준 농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이상진 주일본대사관 참사관)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주요의제별 정부입장(훈령)

694

- ※ 세계식량회의  
- 세계식량회의의 참가에 대비하여 회의의 진전상황을 파악, 보고함.
- ※ 세계식량안보  
- 식량비축과 식량안보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보다 긴밀한 국제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선진국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역설함.
- ※ 국제적 농업조정  
- 농업생산 및 교역증대를 위해 크게 진일보한 것이므로 이를 환영함.
- ※ 농업용수문제  
-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선진국 또는 국제금융기관의 차관공여 등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 ※ 농업 및 농촌개발의 종합적 방안  
- 한국 새마을사업 방식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 및 토의 진전사항을 수집, 보고함.

## 2. 회의 결과

- ※ 기술위원회 1974.9.17.~20. 개최, 본회의는 9.23.~27. 개최됨.
- ※ 본회의는 9.27. 네팔, 방글라데시 및 스리랑카 대표가 각각 제의한 3개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초위원회에서 작성한 회의록을 수정, 채택함.  
- 다음 지역총회의 장소와 시기는 회의개최 의사를 표명한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에서 FAO 사무총장이 결정하여 통보하기로 함.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비료위원회 회의, 제1차. Rome, 1974.7.2.-5.

| 74-062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11 / 1-66p

## 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현장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FAO 사무국이 설립을 추진한 비료위원회 (Commission on Fertilizers)에 한국이 1974.2월 가입함.

### ※ 비료위원회의 주요기능

- 비료의 생산, 소비 및 교역의 재검토 및 분석과 비료의 수급에 대한 정보 배포
- 비료의 사용과 관련된 경제적 요소 검토
- 비료의 예상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산 확대 촉진방안의 강구
- 비료의 생산, 소비 및 교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 고려
- 비료위원회 심의에서 나온 정책문제에 관한 보고 및 권고를 사무총장에게 제출

## 2. 1974.7.2.~5.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1차 FAO 비료위원회 회의에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이 정부대표로 참가함.

### ※ 회의 목적

- 비료 공급 및 가격에 관한 추세 및 전망 분석, 검토
- 특히 개도국에 있어서의 기존 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하고 나아가서는 기존시설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 검토
- 아울러 비료제조 원료의 가격 및 이용가능량을 타진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송 능력 및 수송로 문제 등 조사

### ※ 주요 의제

- 비료 공급 및 가격에 관한 시장 추세 및 전망에 대한 평가
- 개도국에 있어서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기존 시설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필요 시책
- 비료 수송 능력 및 해운임료에 관한 연구
- 비료 및 농약에 관한 긴급 대책
- 위원회 향후 사업계획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정부간 경질섬유단 회의

| 74-0621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12 / 1~21p

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당국은 1974.5.6.~8.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제5차 FAO 정부간 경질 섬유자문작업단 회의에 한국을 초청하였으나, 정부는 대표를 파견하지 않음.

2. FAO 당국은 1974.5.13.~15.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CCP(상품문제위원회) 경질섬유단 특별회의에 한국을 초청하였으나, 정부는 대표를 파견하지 않음.

※ 경질섬유는 현재 한국 내에서 재배되지 않고 있으므로 동 회의에 참석할 필요성이 없다는 농수산부의 의견에 따라, 주이탈리아대사관이 FAO 당국에 한국의 불참을 통고함.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개도국 상주대표단 회의. Rome, 1974.1.11.-5.24.

| 74-0622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13 / 1~31p

1974년 중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FAO(국제식량농업기구) 개도국 상주대표단 회의에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이 정부대표로 참가함.

## 1. 제1차 개도국 상주대표단 회의(1.11.)

- ✿ 참가자
  - 35개국 상주대표
- ✿ 주요 토의사항
  - 개도국 상주대표단 명칭 문제 등

## 2. 제2차 개도국 상주대표단 회의(1.23.)

- ✿ 참가자
  - 35개국 상주대표
- ✿ 주요 토의사항
  - 개도국 상주대표단 명칭("Group of Developing Countries in FAO" 로 결정)
  - 세계식량총회(World Food Con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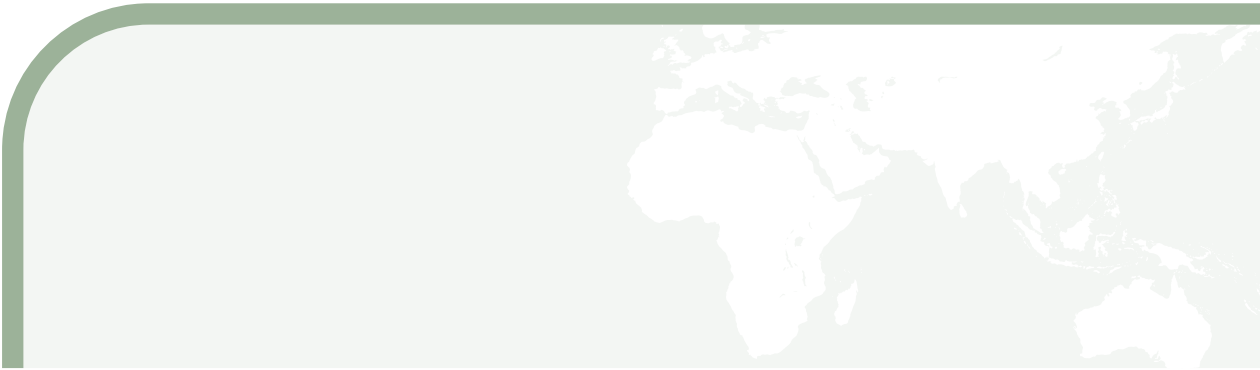
## 3. 아시아·극동국가 상주대표단 회의(3.8.)

- ✿ 참가자
  - 9개 아시아·극동지역 대표
- ✿ 주요 토의사항
  - 개도국 상주대표단의 성격(공식기구 여부)
  - 세계식량총회

## 4. 제3차 개도국 상주대표단 회의(4.11.)

## 5. 제4차 개도국 상주대표단 회의(5.21.)

- ✿ 참가자
  - 30개국 상주대표
- ✿ 주요 토의사항
  - FAO 특별이사회(1974.7.15.~19. 개최키로 함)
  - 세계식량총회
  - 개도국 상주대표단(Group of Developing Countries in FAO) 발족선언문



## 6. 전체 상주대표단 회의(5.24.)

✿ 참가자

- 65개국 상주대표
- FAO 사무국 파업문제





#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담배에 관한 정부간 집중 특별협의회. Rome, 1974.6.20.-22.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14 / 1~177p

정부는 1974.6.20.~22.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담배에 관한 정부간 집중 특별협의회에 김광정 전매청 제조국장을 수석대표(교체 대표: 조두영 전매청 수출입과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회의 목적

- ☛ 동 협의회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상품위원회 결의에 따라 FAO 상품위원회가 담배의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현행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재검토하고, 이 장벽이 개발도상국의 무역 및 수출소득에 미치는 충격을 평가하며, 나아가서 세계시장에의 접근을 개선하고 수출국에 안정된 적정가격을 확보하기 위한 대정부 제안을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집하는 것인바, 동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산 담배수출 가격의 유리한 조정과 수출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2. 주요 의제별 정부입장(훈령)

- ☛ 무역의 자유화(의제 4)
  - 미국 등을 위시한 선진국 EEC 지역 관세장벽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발도상국의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괄적인 호혜협정체결 조치가 불가피함을 강조함.
- ☛ 가격정책(의제 5)
  - 각국의 가격동향(특히 수출가격) 및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함.
  - 장기적 가격전망에 관하여는 각국의 농촌소득 향상을 위한 수매가격 인하 추세에 큰 관심을 가지고 토의에 임함.
- ☛ UNCTAD 결의사항 제83호 및 UNCTAD 상품위원회 결의사항 제7호 이행을 위한 계획(의제 6)
  - 회의 진행사항 및 참가국의 동향을 감안, 수석대표 재량으로 가능한 한 동 협의회 조직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함.

#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곡물연구단 회의, 제17-18차, Rome

| 74-062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15 / 1~41p

제17~18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곡물연구단 회의와 제2차 FAO 농업위원회 회의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됨.

## 1. 제17차 FAO/CCP 정부간 곡물연구단 회의(1974.4.1~3)

- ※ 정부대표
  -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 ※ 회의 의제
  - 의장단 선출(의제 1)
  - 임시의제 채택(의제 2)
  - 잡곡 소맥의 현황 및 단기전망(의제 3)
  - 기타 사업(의제 4)
  - CCP에 대한 보고서(의제 5)

## 2. 제2차 FAO 농업위원회 회의(1974.4.17~30)에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이 정부대표로 참가함.

## 3. 제18차 FAO/CCP 정부간 곡물연구단 회의(1974.9.12~18)

- ※ 정부대표
  -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9.12~15.), 하성환 주이탈리아대사관 수산관(9.16~18.)
- ※ 회의 의제
  - 의장단 선출(의제 1)
  - 임시의제 채택(의제 2)
  - 잡곡 소맥의 현황 분석 및 전망(의제 3)
  - 국제곡물가격의 추이와 문제점(의제 4)
  - 세계식량안보(의제 5)
  - 국가별 양곡정책(의제 6)
  - 차기회의 일정 및 장소(의제 7)
  - 기타사항(의제 8)
  - CCP에 대한 보고서(의제 9)

| 74-0625 |

#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미곡연구단 회의, 제18차, Rome, 1974.1.14.-16.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16 / 1~19p

정부는 1974.1.14.~16.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미곡에 관한 정부간 연구단 특별회의에 강인회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1. 참가 목적

- ※ 본 특별회의는 시장조작과 가격정책 관련하여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상품위원회가 행한 상품에 관한 집중적 정부간 협의회 개최 권고에 따라 미곡에 관한 집중적 협의를 위하여 FAO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회의 이므로, 동 회의에 참가하여 미곡의 무역자유화, 가격안정 및 적정가격의 확보 등을 논의하고 한국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

## 2. 회의 의제

- ※ 의장단 선출(의제 1)
- ※ 의제 채택(의제 2)
- ※ 특별회의 개최 배경 및 목적(의제 3)
- ※ 무역자유화(의제 4)
- ※ 가격정책(의제 5)
- ※ UNCTAD 결의사항 제83호 및 UNCTAD 상품위원회 결의사항 제7호에 따른 추가조치(의제 6)
- ※ 보고서 채택(의제 7)

## 3. 훈령

- ※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고가의 미곡가격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둠.
- ※ 주요 미곡 수출국들의 금년도 작황, 수출가용량, 수출정책 변화, 가격전망 등 자료를 수집, 보고함.
- ※ 기타 경미한 사항은 대표 재량으로 처리함.

701

대한민국외교자료해제집

1974

#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유실유지연구단 회의, 제8차. Rome, 1974.2.18.-27.

| 74-062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17 / 1~21p

정부는 1974.2.18.~27.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8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유실유지연구단 회의에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1. 참가 목적

- ※ 동 회의는 유실유지의 생산 및 수요 공급에 관한 단기적 전망과 국제정책을 검토하며 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하고 나아가서 생산고의 증산과 생산성의 향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회의이므로, 동 회의에 참석하여 각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회의 의제

- ※ 의제 채택(의제 1)
- ※ 의장단 선출(의제 2)
- ※ 단기 전망 및 국제적 조치(의제 3)
- ※ 중장기 문제점(의제 4)
- ※ 특별연구(의제 5)
- ※ 연구단에 관련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활동(의제 6)
- ※ 차기회의(의제 7)
- ※ 기타사항(의제 8)
- ※ 보고서 채택(의제 9)

## 3. 특기 사항

- ※ 동 회의 기간중 한국대표는 제5차 정부간 유실유지연구단 통계분과위원회 회의 및 정부간 유실유지연구단 특별회의에도 참석함.

#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AG(농업위원회) 회의, 제2차. Rome, 1974.4.17.-30.

| 74-0627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18 / 1~9p

정부는 1974.4.17.~30.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2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AG(농업위원회) 회의에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1. 참가 목적

- ※ 1971.11월 제16차 FAO 총회에서 설립된 농업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중기 농업개발 전망과 우선순위 사업을 논의하는 한편, 저강우지역의 생산성 향상, 가축의 개발, 비료의 사용, 생산 및 교역, 농지개혁 등의 개발문제, 본 위원회의 권한 및 작업방법 등을 협의함.

## 2. 주요 의제

- ※ 식품생산기술 및 사회적 목표 달성
- ※ 저강우지역의 생산성 향상
- ※ 우유 및 육류생산을 위한 가축의 개발
- ※ 비료의 사용, 생산 및 교역
- ※ 농지개혁

#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I(수산위원회) 회의, 제9차. Rome, 1974.10.15.-22.

| 74-062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19 / 1~33p

정부는 1974.10.15.~22.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9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I(수산위원회) 회의에 강용순 수산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참가 목적

- ※ FAO 수산위원회 위원국이며 세계 굴지의 어업국으로서 동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국제적 어업추세를 파악하고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704

## 2. 주요 의제별 정부입장(훈령)

- ※ 세계 수산자원의 현황
  - 각 연안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광범위한 자료의 수정 및 분석에 의거, 자원이 평가되도록 주장함.
  - 개발도상국의 자원 조사 및 평가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FAO가 주관하여 기술지원 할 것을 주장함.
  - 자원규제 문제가 대두될 경우 합리적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후 검토하도록 주장함.
- ※ 지역수산기구의 주요문제
  - FAO 주관으로 개발도상국 자원전문가 양성사업을 실시하고 다수국가가 참여하는 자료의 바탕위에서 자원관리책이 논의되도록 주장함.
- ※ 수산자원의 오염으로부터의 보호
  - 한국의 적극적 협조의사를 표명하고 각국의 정책 및 관계자료를 수집함.
- ※ 영세어업
  -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의 바탕위에서 지원책이 강구되도록 유도함.
- ※ 수산분야 사업의 검토
  - 개발도상국의 기술개발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을 주장함.

#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O(산림위원회) 회의, 제2차. Rome, 1974.5.22.-29

| 74-0629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20 / 1~26p

정부는 1974.5.22.~29.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2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O(산림위원회) 회의에 강인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1. 참가 목적

- ※ FAO 산림분야사업의 재검토, 지역산림위원회의 역할, 세계산림회의의 개최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함.

## 2. 세부내용

- ※ FAO 사무총장의 연설을 청취하고 한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FAO 정책방향 등을 검토함.
- ※ 임원 선출에 관하여는 가급적 한국에 우호적이고 이해관계가 깊은 국가에서 선출되도록 노력함.
- ※ 모든 의제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각 회원국의 동향 및 검토결과를 상세히 보고함.
- ※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산림자원 문제에 대하여 자원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자원정책 및 임산물 무역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함.
- ※ UNDP(유엔개발기구) 원조 및 FAO 집행사업으로 원조를 신청할 신규사업은 조기 수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구와 교섭함.
- ※ 제8차 세계산림회의의 개최 준비과정에 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함.
- ※ 차기 제3차 FAO 산림위원회 개최장소 결정에 관하여는 가급적 한국과 국교가 수립되어 있는 우방국에서 개최되도록 함.

| 74-0630 |

# Umali, Dioscoro L.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차장 겸 아시아·극동지역 대표 방한, 1974.9.28.-10.4.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21 / 1~10p

Dioscoro L. Umali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차장 겸 아시아·극동지역 대표일행이 1974. 9.28.~10.4. 방한함.

## 1. 방한 인사

- ✿ Umali FAO 사무차장 겸 아시아·극동지역 대표
- ✿ Prakoso FAO 아시아·극동지역 부대표
- ✿ Poduva FAO 지역개발 연구원

706

## 2. 방한 목적

- ✿ FAO 지역사업 검토를 위해 농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 3. 주요 방한 일정

- ✿ 9.28.  
- 도착
- ✿ 10.1.  
- 외무부, 과학기술처, 농수산부, 경제기획원 등 방문
- ✿ 10.2.  
- 수산청, 산림청, 서울대 농과대학 등 방문
- ✿ 10.3.  
- 서울 주재 UNDP(유엔개발기구) 사무소 방문
- ✿ 10.4.  
- 출발



| 74-0631 |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극동지역 농업통계위원회 회의, 제5차, Kuala Lumpur (말레이시아) 1974.7.14.-21.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22 / 1-59p

정부는 1974.7.14.~2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5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극동지역 농업통계위원회 회의에 정봉택 농수산부 농업통계관을 정부대표(교체대표: 박형호 농수산부 행정주사)로 파견함.

## 1. 참가 목적

- ※ 아시아·극동지역 농업통계분야의 발전현황 파악과 재검토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한국의 농업통계 발전에 기여코자 함.

## 2. 주요 세부내용

- ※ 한국의 통계와 FAO가 지향하는 바를 검토하여 한국의 농업통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통계인력의 자질향상 및 통계장비의 확보를 FAO 측에 제의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얻도록 함.
- ※ 1970년도 농업센서스에 대한 진척사항 보고와 아울러 1980년도 범세계적으로 실시되는 농업센서스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조사원의 자질과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역점을 둠.
- ※ 각국의 농업통계제도 조사방법 및 조사범위 등에 대한 FAO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FAO가 지향하는 통계개선 방향에 한국도 보조를 같이 하도록 함.
- ※ FAO의 사업활동 보고와 관련하여 한국은 조사방법의 개선 및 통계요원의 자질향상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나아가서 한국 통계요원의 해외기술훈련에 FAO가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제의함.

# FAO(유엔식량농업기구)/CECAF(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회의, 제4차. Rome, 1974.10.8.-12.

| 74-0632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23 / 1~23p

정부는 1974.10.8.~12.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중동대서양 수산위원회 회의에 하성환 주이탈리아대사관 수산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1. 참가 목적

- ※ 중동대서양 해역에 있어서의 어획통계, 생물자료, 자원현황 등을 검토하고 수산자원의 관리 및 합리적 이용 방안을 모색하며 수산업 합작투자 문제 등을 다루는 동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관계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동 해역에서의 한국의 지위 확보 및 한국 수산업의 국제적 진출을 촉진코자 함.

708

## 2. 주요 세부현령

- ※ 수산자료 상태
  - 각국의 생산 및 노력 통계와 생물학적 자료를 수집함.
- ※ 자원 상태
  - 자원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자원규제와 관련된 시험조사 자료를 입수함.
- ※ 중동대서양지역 수산자원관리 및 합리적 이용방법
  - 과학적 통계 수집과 평가체제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함.
  - 어획량 제한 등 규제문제에 대하여는 과학적 자료수집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자원규제 문제를 지연시킴.
- ※ 중동대서양 수산업 개발계획
  - 동 계획의 진척사항 및 관련자료를 수집함.
  - 동 계획에 대한 한국전문가의 참여를 모색함.
- ※ 수산합작사업
  - 200마일 경제수역의 확정을 전제로 각 연안국들과의 어업합작을 추진함.

| 74-0633 |

## FAO(유엔식량농업기구)/IOFC(인도양수산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 제4차. Rome, 1974.10.23.-25.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24 / 1~14p

정부는 1974.10.23.~25.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IOFC(인도양수산위원회) 집행위원회에 하성환 주이탈리아대사관 수산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 세부훈령

- 인도양지역 수산자원 조사 및 개발
  - 동 지역 수산자원 및 각 연안국가의 수산업 현황에 관한 관계자료를 수집함.
  - 한국의 참여 분야를 모색함.
  - 인도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모색함.
- 이란, 아라비아반도 해역 조사사업
  - 한국은 동 조사사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동 지역 수산자원과 동 지역 국가와의 어업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계자료를 수집함.
- 북아라비아해 조사사업
  - 관계자료 수집
- 쿠웨이트 수산개발센터 설치
  - 관계자료 수집
- 벵갈만 조사단 보고
  - 관계자료 수집
- 동아프리카해양 수산개발계획
  - 동아프리카에서 참치 및 트롤 조업을 하고 있는 한국은 동 지역 자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계자료를 수집함.

709

대한민국외교자료해제집

1974

# FAO(유엔식량농업기구)/WECAFC(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설치 및 한국가입

| 74-0634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25 / 1~21p

1. 1973.4.10.~17.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8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어업위원회 회의는 WECAFC (International Fisheries Body for the Western Central Atlantic,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6월 개최된 제60차 FAO 이사회는 FAO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동 기구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와 협의하고 동 기구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위임함.

710

2. FAO 사무국은 1973.7월 WECAFC 설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문의하여 왔는바, 10월 동 기구 설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함.

3. 1973.11월 제61차 FAO 이사회에서 정식 설치된 WECAFC 기능은 아래와 같음.

- ※ 어업 일반 및 특히 새우 어업에 관한 국별 통계 및 생물학적 자료의 수집 촉진과 협조 및 배포
- ※ 국별 연구계획의 조정 촉진과 연구방법 표준화의 진흥
- ※ 동 지역의 어업에 관한 정보의 상호교환 촉진
- ※ 환경과 오염이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통제 및 개선의 적절한 방안에 관한 연구의 국가적 및 지역적 베이스에 의한 촉진과 조정
- ※ 국가적 및 지역적 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개선 및 훈련센터와 세미나 조직에 의한 교육과 훈련 장려

4. 1974.2월 주이탈리아대사관을 통하여 한국이 WECAFC에 회원국으로 가입한다는 의사를 FAO 사무총장에게 정식 통고함.

#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7차. Geneva(스위스) 1974.5.7.-24

| 74-0635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27 / 1~144p

정부는 1974.5.7.~24.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7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 고재필 보건사회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황호을 주제네바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주요 토의사항

- ✿ 기니비사우 가입문제
- ✿ 1973년도 결산 심의 및 1974년도 예산 확정
- ✿ 8개 집행이사국 선출 문제
- ✿ 제28차 총회 개최지 결정

## 2. 대표단 주요활동

- ✿ 수석대표 기초연설
  - 한국의 종합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 가족계획사업, 한국 의료인의 해외봉사활동 등을 소개함.
  - 보건요원훈련, 공해대책, 한국 정부와 WHO 간의 협조 유지 등을 강조함.
- ✿ 우방국 등과의 친선유지
  - 회의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우방국과 협조하면서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보건행정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함.
- ✿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 및 국제민간단체 방문
  -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ILO(국제노동기구), WCC(세계기독교연맹) 등을 방문함.

#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회의, 제25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74.9.2.-10.

| 74-0636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28 / 1~102p

정부는 1974.9.2.~1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5차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회의에 박승함 보건사회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주요 토의사항

- ※ 1976~77년 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
- ※ 보건관계 기술토의
  - 뎅기열 매개모기의 박멸에 관해 기술자문위원회가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토의함.
  - 제26차 WHO 서태평양지역회의에서는 결핵관리사업에 대해 토의하되, 이제까지의 전문적 토의방법을 지양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방법으로 대체하도록 결의함.
- ※ 제27차 WHO 총회 및 제54차 집행이사회에서 채택된 지역관계 결의사항
  - 제27차 WHO 총회 결의사항을 재확인함.

## 2. 대표단 주요활동

- ※ 수석대표 기조연설
  - 가족계획사업의 실적 및 성과 소개
  - 한국 의료인의 해외봉사활동 소개
  - 지역보건계획이 한국의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7~82)에 반영될 것임을 설명
- ※ 회원국과의 친선활동
  - Abdul Razak 말레이시아 수상 및 Lee Siok Yew 말레이시아 보건장관을 예방하고 한국 의료요원의 말레이시아 진출 가능성 여부를 논의함.
  - 말레이시아 의과대학 부속의료원 및 의학연구소의 의료시설을 시찰함.
  - Semenyh Ululangt에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시찰함.

#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59차. Geneva(스위스) 1974.6.5.-26.

| 74-0637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2 / 29 / 1~75p

## 1.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9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1974.6.5.~17.간 최두열 노동청장이 읍서버 자격으로 참관함.

- ※ 주요 의제
  - ILO 사무총장 보고(고용증진과 직업훈련 강화, 노동자 복지향상,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노사관계 등)
  - 1975년도 사업계획 예산 및 재정
  - 직업병의 처치와 예방
  - 인력자원개발
  - 직업보도 및 훈련문제
- ※ 회의 참석 외 주요활동
  - ILO 사무총장 면담
  -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집행위원장 면담
  - ILO 아시아지역사무소 대표 면담

## 2. 최두열 노동청장이 1974.6.17.~22. 독일을 방문하여 파독 근로자를 위한 활동을 아래와 같이 전개함.

- ※ 현지 근로자 방문
  - 본 대학병원 간호요원 면담 및 격려
  - 베를린시 한인지도자 조찬간담회
  - 재독 한인근로자 만찬
  - 오버하우센(Oberhausen) 광산의 광부 면담
  - 재독 한인대표 오찬
- ※ 독일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교섭
  - 연방노동성, 연방경제협력성, 베를린시, 서독병원협회, 광산관련 기관, 기술협력센터 등 방문 및 협의

## 3. 최두열 노동청장은 1974.6.23.~27. 미국 뉴욕을 방문하여 한국의 노동과학연구소 설치사업에 대해 UNDP(유엔개발계획)와 교섭함.

- ※ Peterson UNDP 대표 면담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처치를 위한 한국의 노동과학연구소 설치사업 지원신청에 대해 UNDP 측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함.
  - UNDP 측은 한국 정부가 정식문서로 제출한다면 즉각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UPU(만국우편연합) 총회, 제17차.Lausanne(스위스) 1974.5.22.-7.4.

| 74-0638 |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3 / 1 / 1~381p

정부는 1974.5.22.~7.4. 스위스 로잔느에서 개최된 제17차 UPU(만국우편연합) 총회에 황호을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강유원 체신부 우정국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주요 의제

- ※ UPU 가입조항의 개정
- ※ UPU 총회 옵서버 참가조항의 개정
- ※ 집행이사국 및 우편연구자문이사국 선출
- ※ 국제사무국장 선출

## 2. 훈령 요지

- ※ PHG(월남임시혁명정부)의 금차 회의 참가에 반대함.
- ※ 남아공연방 축출결의 및 포르투갈 규탄결의에는 불참함.
- ※ 북한 가입신청시 6·23 선언의 취지에 따라 반대치 않음.
- ※ 기니비사우 가입 신청시 지지함.
- ※ 국제사무국장 선출시 이집트의 Sobhi를 지지함.

## 3. 특기 사항

- ※ 특별전권위원 임명
  - 정부는 제17차 UPU 총회 시 개정 채택될 UPU 헌장 등 우편관계협약에 서명할 특별전권위원을 사전에 임명함.
  - 수석 특별전권위원에 황호을 주제네바대사를, 특별전권위원에 박충섭 체신부 우편과장을 임명함.
- ※ 집행이사국 입후보 검토
  - 정부가 집행이사국 선거 입후보를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입후보하지 않기로 결정함.



# UPU(만국우편연합) 북한 가입

| 74-0639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3 / 2 / 1~155p

## 1. 북한은 1974.5.16. 스위스 정부에 UPU(만국우편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함.

※ 북한은 1971년초 UPU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우편투표를 통해 북한의 가입이 부결된 바 있음.

## 2. 정부는 제17차 UPU 총회(1974.5.22.~7.4)에서 북한 가입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하도록 훈령함.

※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반대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 6·23 신외교정책의 취지에 따라 기권토록 함.

※ 북한의 가입신청 심의 시 아래 정부 입장을 설명토록 함.

- 한국은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이 남북한의 접촉과 교류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이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이바지하기를 바람.
- 다만, 북한이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에의 참여를 희망하는 이상 남북한의 유엔 등 특정기구에의 가입이 분단을 영속화한다는 비합리적이며 일관성 없는 주장을 마땅히 철회하여야 할 것임.

## 3. 소련, 중국(구 중공), 이집트 등 43개 UPU 회원국들이 공동명의로 북한의 UPU 가입 결의안을 1974.5.28. 제17차 UPU 총회에 제출함.

※ 5.29. 북한 가입문제에 대한 토의가 있었는바, 알제리의 제안 설명, 한국 대표 및 중국 대표의 발언이 있은 후 니제르 대표의 토의 종결 제의에 따라 토의 종결 여부를 투표에 회부하여 찬성 126, 반대 1(모나코), 기권 1(프랑스)로 토의가 종결됨에 따라 북한 가입문제가 투표없이 결정됨.

※ 한국 대표는 동 토의 시 아래와 같이 발언함.

-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의거하여 한국은 UPU에 북한이 참여하는데 반대하지 않으며, 북한이 국제협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국제기구에의 문호는 개방되어 있음.
- 한국은 나아가 북한이 한국과 함께 유엔에 참가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하리라 확신함.
- 북한이 한국과 함께 유엔에 참여하는 것이 분단을 영속화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며 일관성이 없음.
- 제28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합의성명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대화를 계속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확장토록 촉구하고 있음.
- 한국 정부의 평화지향적이며 건설적인 조치에 호응하여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대화의 진전을 위한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

## 4. 북한이 UPU 총회 결정에 따라 1974.6.6자로 UPU에 정식 가입되었음을 스위스 정부가 전 UPU 회원국에 회람함.

#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해상이동통신업무 위한 WARC(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 Geneva(스위스) 1974.4.22.-6.8.

| 74-0640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3 / 3 / 1~226p

정부는 1974.4.22.~6.8. 스위스 제네바 개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해상이동 통신업무를 위한 WARC(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에 이주영 주제네바대표부 2등서기관을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권홍재 체신부 전파관리국 주파수과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주요 의제

- ※ IFRB(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위원 선출
- ※ 세계무선통신규칙 개정
- ※ 관리규칙 개정

## 2. 특기 사항

- ※ IFRB 위원 선출
  - 1974.4.29. 실시된 선거에서 5명의 지역별 의원이 선출됨.
  - 한국대표단이 훈령에 따라 지지한 캐나다(미주지역), 모로코(아프리카지역), 일본(아주·호주지역)이 선출 됨.
- ※ 한국 대표권 문제
  - 한국대표는 중국(구 중공), 쿠바, 알바니아, 루마니아 등 공산권 국가들이 한국의 대표권 문제를 제기 함에 따라 회의 시 발언을 통해 이를 반박하고, 또한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배포함.
  - 특히 중국대표가 6.4. 회의에서 한국대표단의 참석이 불공평하며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한국 대표는 지극히 기술적인 회의에서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임을 지적하고, 한국의 6·23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 북한이 국제적 긴장완화와 협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어떠한 국제기구 가입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정치적 주장이 부당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함.

| 74-0641 |

# ITU(국제전기통신연합)/CCIR(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 총회, 제13차. Geneva(스위스) 1974.7.15.-26.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53 / 4 / 1~40p

정부는 1974.7.15.~26.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3차 ITU(국제전기통신연합)/CCIR(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 총회에 이주영 주제네바대표부 2등서기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1. 참석자

- ※ 65개국 대표단 및 관계 회사 대표

## 2. 주요 의제

- ※ 국제무선통신관련 기술적 문제
- ※ CCIR 사무국장(Director) 선출

## 3. 특기 사항

- ※ CCIR 사무국장 선출
  - 1974.7.16. 실시된 선거에서 미국인 Mr. Kerby가 선출됨.
  - 한국대표는 동 선거 시 훈령에 따라 미국후보를 지지함.
- ※ 한국 대표권 문제
  - 중국(구 중공)대표는 7.17. 성명서를 발표하여 남북한이 독립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후 한국만이 그들의 대표를 ITU 회의에 파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한국대표는 7.18. 성명서를 통해 중국대표가 CCIR과 같은 기술적인 회의에서 정치적 논쟁을 야기시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중국의 성명이 무책임한 것임을 지적하고 중국이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함.

# 유엔 인권관련 제 결의와 관련한 한국정부 입장 및 조치사항

| 74-0642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I-53 / 5 / 1~150p

1973~74년 중 유엔 인권관련 제 결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 및 조치사항임.

## 1. 종교차별 철폐 관련사항

- ☛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총회 결의 제3069호에 의거한 “종교차별 철폐에 관한 선언 초안” 작성과 관련, 제3위원회가 작성한 “종교차별 철폐에 관한 보고서”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출하여 줄 것을 1973.12월 요청해 옴.
- ☛ 외무부는 유엔총회 결의 제3069호 및 제3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1974.1월 문화공보부에 의뢰하였으며, 문화공보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함.
  - 유엔총회에서 종교차별 철폐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은 세계인류의 인권보장과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 선언문의 채택을 찬성함.
  - 제3위원회의 선언문 초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
- ☛ 외무부는 상기 문화공보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유엔 측에 적의 회신 조치하도록 2월 유엔대표부에 지시함.

## 2. 인종차별 금지운동 관련사항

- ☛ 유엔 사무총장은 1973.12.31.자 외무부장관 앞 공한을 통해 1973.11.15. 유엔총회 결의 제3057호에 의거, 1973.12.10.부터 10년간을 “인종차별 금지 운동 기간”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망함.
- ☛ 외무부는 1974.1월 관련자료를 법무부에 송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법무부는 외무부에 대한 회신에서 동 계획이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승인된 것이라 하지만 동 계획의 국내적 시행에 있어서는 국가 외교적인 면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법무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 3. 인권에 관한 정기보고

- ☛ 유엔 사무총장은 1973.10.31.자 외무부장관 앞 공한을 통해 1965.7.28. 및 1971.5.21.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따른 “인권 및 정보교환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1974.3.31.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유엔 사무총장은 7.9.자 외무부장관 앞 공한을 통해 늦어도 8.30.까지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함.
- ☛ 외무부는 문교부, 문화공보부 및 보건사회부의 의견을 반영한 인권에 관한 정기보고서(1969~73년)를 작성하여 10월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함.

# 유엔세계인구회의 및 행사, Bucharest(루마니아) 1974.8.19.-30. 전2권 (V.1 회의)

| 74-0643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I-53 / 6 / 1~384p

정부는 1974.8.19.~30.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유엔세계인구회의에 박승함 보건사회부 차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안성규 보건사회부 가족계획보좌관, 문동석 외무부 국제연합과 사무관)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회의 의제

- ※ 최근 인구동향 및 전망
- ※ 인구변동과 사회, 경제발전 관계
- ※ 인구, 자원 및 환경 간의 관계
- ※ 인구와 가족
- ※ '세계인구활동계획' 채택

## 2. 대표단 주요활동

- ※ 수석대표 기초연설
  - 인구회의의 의의 강조
  - 가족계획사업 소개 및 성과 설명
  - 경제성장 극대화 및 인구증가를 둔화를 위한 노력 설명
- ※ 홍보 활동
  - 가족계획사업, 한국의 인구정책, 한국의 경제개발 등에 관한 각종 홍보자료 배포
- ※ 국제기구 및 우방국가와의 친선활동
  -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IPPF(국제가족계획연맹), 미국인구협회 등의 대표 및 우방국대표와 접촉 및 협조
- ※ 공산국가와의 접촉
  - 헝가리, 루마니아 등 공산국가대표와 접촉 및 협의

## 유엔세계인구회의 및 행사, Bucharest(루마니아) 1974.8.19.-30. 전2권 (V.2 행사)

| 74-0644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I-53 / 7 / 1~350p

720

1. 미국 뉴욕에 소재한 단체인 IED(International Educational Development Inc.)는 1974. 8.19.~30.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되는 세계인구회의와 병행하여 동 단체가 조직하는 민속관계 행사에 한국이 참가하여 줄 것을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1974.3월 요청해 음.  
  - ※ 동 행사는 세미나, 전시회, 공연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알려음.
2. 외무부는 동 행사가 동구 공산국가에서 개최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IED가 송부해온 계획서에 의거하여 민속세미나 참가대표 선정, 민속행사 참가 준비 등을 문화공보부에 1974.3월 요청함.  
  - ※ 또한 외무부는 세미나에 참석할 대표의 이력서 및 사진, 세미나에 제출할 자료 및 전시할 민속품 견본 등을 송부하여 줄 것을 문화공보부에 1974.4월 요청함.
3. 문화공보부는 민속세미나에 파견될 대표로서 유덕형(드라마센터) 및 이두현(서울대 교수)를 추천했으나 이들 대표의 파견경비, 세미나에 사용될 자료 작성비 및 민속전시회에 출품될 민속품의 제작구입비는 예산사정으로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1974.5월 외무부에 통보해 음.  
  - ※ 외무부는 민속세미나에 참가할 한국 대표의 이력서, 사진 등을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IED에 전달함.
4. IED는 유엔세계인구회의와 병행하여 개최를 추진중인 민속관계 행사(세미나, 전시회, 공연)의 3개 사업중 공연단 파견 계획은 경비와 효과면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대신 각국으로부터 시청각 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1974.6월 주유엔대표부에 통보해 음.
5. 외무부는 동 행사의 성격이 인구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건사회부에 민속세미나 참가 경비 등의 부담을 1974.7월 요청하였으나, 보건사회부는 동 경비 지원이 불가함을 통보해 음.
6. 외무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부예산 지원에 의한 민속세미나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동 세미나 참석 예정 인사 2인에게 이를 적절히 통보해 줄 것을 문화공보부에 1974.7월 요청함.  
  - ※ IED가 민속행사에 참가할 한국 인사들의 루마니아 입국문제에 관해 루마니아 측과 접촉해 왔으나, 루마니아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음.
  - ※ 보건사회부가 2명의 민속세미나 참가자에 대한 여비 지원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함.

#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제42차, Paris, 1974.5.13.-18.

| 74-0645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53 / 8 / 1~100p

정부는 1974.5.13.~18.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2차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 이창구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장, 현희강 주프랑스대사관 1등서기관을 정부대표단으로 파견함.

## 1. 주요 토의내용

- ※ 전체회의(기술사항)
  - '소가축'의 브루셀라병에 관한 보고 및 토의
  - 돼지의 전염병 폐염의 예방과 구제에 관한 보고 및 토의
  - 기타 국제역 방제 문제
- ※ 전체회의(행정사항)
  - 제43차 총회 개최: 1975.5월 프랑스 파리
  - 아시아지역위원회 개최: 1974.10월, 테헤란(이란)

## 2. 특기 사항

- ※ 한국 대표는 1974.5.15. 아시아지역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일본뇌염 예방약 및 우결핵검색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 발표함.

| 74-0646 |

제1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  
위원회) 회의 및 제10차 기술자문단회의. 서울,  
1974.8.7.-21.

생산연도 | 1973-1974

생 산 과 | 경제기구

MF번호 | I-53 / 9 / 1~97p

정부는 1974.8.7.~21. 서울에서 개최된 제11차 ECAFE(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회의 및 제10차 기술자문단 회의에 이정환 공업진흥청 국립지질광물연구소 소장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종수 공업진흥청 국립지질광물연구소 해양개발부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참가 목적

- 각국의 탐사실적, 탐사계획 및 제반기술에 관한 자료 등 수집
- 한국 해저광물탐사와 개발사업에 기여
- 한국의 해양탐사분야 활동상 소개



# SEAMEO(동남아문교장관기구) 회의, 제9차. Bangkok, 1974.1.28.-2.1.

| 74-0647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3 / 10 / 1~134p

정부는 1974.1.28.~2.1.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9차 SEAMEO(동남아문교장관기구) 총회에 김이명 주태국대사관 참사관(읍서버 자격)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 회의 결과

- 주요 토의사항
  - 동 기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문제와 각 지역 센터의 보고서를 검토함.
- 회원국 가입
  - 호주 및 뉴질랜드가 준회원국으로 가입함.
  - 회원국 수는 정회원 8개국, 준회원 3개국으로 총11개국이 됨.
- 차기 총회
  - 제10차 총회는 1975.1월 필리핀 바기오에서 개최기로 함.
- 교육개발 공채 문제
  - 제2차 특별총회에서 원칙적으로 승인한 교육개발 공채 기채를 건지도록 함.

72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ASCA(아시아과학협력협회) 회의, 제3차. New Delhi, 1974.4.8.-10.

| 74-064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I-53 / 11 / 1~166p

정부는 1974.4.8.~10.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3차 ASCA(아시아과학협력협회) 회의에 박찬현 주인도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형기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참가국

- ※ 14개 전회원국 대표

724

### 2. 회의 결과

- ※ 아시아 과학기술 세미나 부의장에 한국 대표 선출
- ※ 한국 대표는 기초연설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계획 소개
- ※ 동 회의는 13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

# AOPTS(아시아·대양주우정학교) 관리이사회. Bangkok(태국) 1974.3.18.-19.

| 74-0649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54 / 1 / 1~167p

정부는 1974.3.18.~19.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OPTS(아시아·대양주우정학교) 관리이사회에 체신부 국제우편과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1. 참가국

- ※ 회원국(한국, 태국, 필리핀) 대표, UNDP(유엔개발계획) 대표, 동 학교 관계자

## 2. 주요 토의사항

- ※ 제2단계 계획을 위한 UNDP 원조와 이에 따른 각 참여국의 부담액 및 동 계획의 운영방침이 토론의 초점이 됨.
- ※ 제2단계 계획안에 대해서는 추후 본국 정부의 승인 여부를 통보하기로 함.
- ※ 제2단계 운영계획안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참여국: 한국, 필리핀, 태국
  - 기간: 1974.5.1.~77.4.30.
  - 훈련과정: 일반관리자과정(총 112명, 한국 24명), 전문과정(총 100명, 한국 20명)

72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74-0650 |

#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가입국 총회, 제1차, Washington D.C., 1974.2.4.-8.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4 / 3 / 1~316p

정부는 1974.2.4.~8.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가입국 총회에 정춘택 주미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정규석 체신부 전무국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참가국

- ※ 72개 회원국 대표

726

## 2. 회의 결과

- ※ 대만(구 자유중국) 신임장에 대한 유보와 포르투갈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권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동 총회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대표단(72개국)의 신임장이 적절하다는 보고서를 채택함.
  - 대만의 신임장에 대해서는 22개국이 유보
  - 포르투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표권에 대해서는 12개국이 이의 제기
- ※ 법률전문가 11명을 선출함.
  - 아시아지역 3명, 유럽지역 4명, 미주지역 3명, 아프리카지역 1명
- ※ 차기회의는 1976.9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하기로 함.

| 74-0651 |

##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가입국 총회, 제1차, Washington D.C., 1974.2.4.-8. 전2권 (V.2 각국의 법률전문가 입후보 지지요청)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54 / 4 / 1~102p

1. 1974.2.4.~8.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가입국 총회는 법률전문가 패널 위원 11명을 선출함.
2. 상기 법률전문가 패널 위원 11명의 국적은 아래와 같음  
✿ 베네수엘라, 이탈리아, 영국, 아르헨티나, 독일, 호주, 인도, 미국, 스위스,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일본
3. 주한 일본대사관은 1974.2.14.자 공한으로 한국이 상기 법률전문가 패널 위원 선거에서 일본 후보를 지지해준데 대해 일본 정부의 사의를 전달함.

72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서명자 회의, 제2차, Acapulco(멕시코) 1974.4.1.-4.

| 74-0652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4 / 5 / 1~153p

정부는 1974.4.1.~4. 멕시코 Acapulco에서 개최된 제2차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서명자 회의에 이성희 체신부 사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1. 참가국

- ※ 54개 서명국 대표

728

## 2. 회의 결과

- ※ 이사회 대표권(공동이사국 형성)을 위한 최저투자율을 1.106226%로 결정함.
- ※ 브라질과 알제리의 국내통신을 위한 INTELSAT의 사용 요청을 승인함.
- ※ 이사회의 연례활동상황 및 연례재무보고를 심의하고 이사회의 공로를 치하함.
- ※ 차기회의를 1975.4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하기로 함.

## 3. 특기 사항

- ※ 동 회의에서 대만(구 자유중국)과 이란은 각각 한국과의 공동이사국 형성을 제의함.
- ※ 대만 대표는 비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공동이사국 형성을 제의함.
- ※ 이란 대표는 한국과의 공동이사국 형성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1974.5월 개최될 예정인 제9차 이사회부터 참석하기를 희망함.

# IHD(국제수문개발10개년사업) 총회, Paris, 1974.9.2.-14.

| 74-0653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54 / 6 / 1~138p

정부는 유네스코와 WMO(세계기상기구) 주관으로 1974.9.2.~14,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수문학 10년의 결과 및 수문학 장래계획에 관한 국제회의’에 유태용 건설부 수자원국 이수과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1. 참가국

- ✧ 91개국 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

## 2. 회의 결과

- ✧ 각국의 IHD(국제수문학10개년사업) 주요사업 성과보고
- ✧ 장래 사업계획 채택
  - 1975~80년간 IHP(국제수문학개발계획)의 1단계 시행안
- ✧ 심포지엄 개최
  - 수문순환, 하상침전물 파침식, 단기간 홍수, 장래 전망
- ✧ 10년간의 수문조사 성과와 장래사업계획에 관한 추가 기술보고서 검토

## 3. 특기 사항

- ✧ 중국(구 중공)대표가 한국의 대표권에 이의를 제기한데 대해 한국대표가 이를 반박하는 발언을 함.

| 74-0654 |

# IUOTO(국제관설관광기구연맹) 태평양 동아시아 지역위원회 회의, 제3차. Kuala Lumpur (말레이시아) 1974.12.3.-5.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4 / 7 / 1~102p

정부는 1974.12.3.~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3차 IUOTO(국제관설관광기구연맹) 태평양 및 동아시아지역위원회 회의에 주말레이시아대사관 공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1. 회의 주요의제

- ※ 제2차 태평양 및 동아시아지역위원회 회의 보고
- ※ 회원국별 관광개발에 대한 중간보고
- ※ 회원국의 관광개발에 관한 연차보고에 필요한 자료
- ※ 태평양 및 동아시아지역위원회 활동보고
- ※ 사업조정전문위원회 보고
- ※ 유류 및 경제위기에 따른 대응검토
- ※ 1975년 남아시아 관광의 해에 대한 회원국 참여에 관한 토의
- ※ 마닐라 개최 관광개발과 항공운송에 관한 IATA-IUOTO 공동세미나에 관한 토의
- ※ WTO(세계관광기구) 지역 사무국 및 WTO 본부 위치에 관한 토의

## 2. 후속조치

- ※ 교통부는 1974.7월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을 통하여 IUOTO 태평양 및 동아시아지역위원회 의장에게 동 의장이 요청한 '1974년도 한국관광사업현황 및 1975년도 전망' 자료를 송부함.



# WTO(세계관광기구) 규정 승인

| 74-065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4 / 8 / 1~31p

## 1. 외무부는 1974.8.13. 교통부에 WTO(세계관광기구) 헌장 발효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함.

- ※ 8.9. 스위스 정부가 외무부에 통보한 내용임.
- 현재까지 총 51개국이 WTO 헌장을 수락
- 동 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120일 후인 11.1. 동 헌장 발효

## 2. 교통부는 1974.8.27. 외무부에 WTO 헌장 비준에 관해 아래와 같이 요청함.

- ※ IUOTO(국제관설관광기구연맹)은 9월 제29차 유엔총회에서 모든 국가의 WTO 헌장 조속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어야 함을 강조함.
- 유엔총회 한국대표단이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줄 것을 요청
- ※ 세계 관광발전을 위한 것으로 적의 조치 후 결과 회보를 요청함.

## 3. 외무부는 1974.9.3. 주유엔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함.

- ※ IUOTO는 제29차 유엔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의 WTO 헌장 조속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 ※ 외무부는 9.4. 교통부에 아래와 같이 회보함.
-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나, 가능한 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주유엔대사에게 통보함.

## 4. 외무부는 1974.11.20. 교통부에 WTO 발족에 관한 동 기구 임시 사무총장의 서한(1974.11.5)을 참고로 송부함.

- ※ WTO 헌장이 1974.11.1. 정식 발효함.
- ※ 동 헌장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사무총장 선출 시까지 IUOTO 사무총장이 WTO 사무총장을 대행함.
- 동 본부를 스위스 제네바에 잠정 설치

## 5. 외무부는 1974.12.4. 교통부에 WTO 헌장 수락국 명단을 참고로 송부함.

# AARRO(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 사무총장 방한

| 74-0656 |

생산연도	1971-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4 / 9 / 1~46p

## 1. 주뉴델리총영사는 1971.6.24. AARRO(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 사무총장 방한에 관해 보고함.

- ※ K.Chand AARRO 사무총장이 1971.7.11.~14. 방한 예정임.
  - 방한 중 현재 AARRO 의장인 한국의 농림장관과 제4차 총회(1971.10월, 가나) 개최 준비 및 AARRO 극동사무소 서울 설치 등에 관해 협의 희망
- ※ 한국 고위인사 예방 및 한국의 농업 연구기관 및 시설 시찰 등 일정을 건의함.

## 2. 외무부는 1971.6.25. 농림부에 상기 Chand 사무총장의 방한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3. 주뉴델리총영사는 1972.6.23. Chand 사무총장이 1972.8월 약 3일간 방한 예정임을 보고함.

- ※ 외무부는 7.5. 농림부에 상기 사실을 통보함.
- ※ 농림부는 8.9. 외무부에 상기 사무총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방한을 연기한다는 통지가 있었음을 통보함.

## 4. 외무부는 1974.5.21. 농수산부에 Chand 사무총장의 방한에 관해 통보함.

- ※ 동 사무총장이 동경에서 개최되는 연구교육센터(RECA) 세미나 참석에 앞서 AARRO 사업계획 이행문제 등 협의를 위해 1974.6.27.~7.1. 방한함.
- ※ 동인의 영접계획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

## 5. 농수산부는 1974.6.5. 외무부에 Chand 사무총장의 체한 일정을 송부함.

- ※ 6.28. 농수산부장관, 외무부장관, 농협중앙회장 예방
- ※ 6.29. 농촌진흥청장 예방, 농협중앙회장 주최 만찬
- ※ 6.30. 시내 관광

## 6. 주인도대사는 1974.6.11. Chand 사무총장의 방한 일정이 1974.7.24.~29.로 변경되었음을 보고함.

## 7. 농수산부는 1974.10.22. 외무부에 AARRO 사무총장서리의 방한에 관해 통보함.

- ※ S.M. Osman 사무총장서리가 1974.10.23.~25. 서울방문 예정이며, 이에 따라 동인의 체한 일정을 작성함.
  - 10.23. 지역대표 예방, 농수산부장관 및 농협중앙회장 예방 등

# AARRO(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 집행위원회, 제13차, New Delhi(인도) 1974.3.29.-30.

| 74-0657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54 / 10 / 1~90p

## 1. 주인도대사는 1974.1.31. 제13차 AARRO(아시아·아프리카농촌재건기구) 집행위원회 개최에 관해 보고함.

- ※ AARRO 사무총장은 1.29. 공한으로 상기 회의가 1974.3.29.~30.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다고 통보하면서 등 회의에 참석할 한국 대표단의 명단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망

## 2. 외무부는 1974.3.7. 상기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를 임명하고 훈령함.

- ※ 대표단: 정해헌 주인도대사관 참서관(수석대표) 외 농수산부 직원 1명
- ※ 파견목적
  - 동 기구 집행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재정보고, 예산심의, 1975년 제5차 총회(마닐라) 개최 등에 관한 협의에 참가
- ※ 훈령
  - 의제 채택 및 제4차 총회 이후 활동상황 보고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채택 동의
  - 예산안은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문제 없을 시 원안대로 동의
  - 제5차 총회 개최일자 및 의제는 회원국의 반응을 고려, 다수의견에 따를 것

## 3. 정부대표단은 1974.3.29.~30.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3차 AARRO 집행위원회에 참가함.

- ※ 참가국
  - 한국 등 9개국 대표
- ※ 주요결과
  - 사무총장 보고 채택
  - 1975년도 예산안 및 지출 승인
  - 차기회의 개최일자 및 장소 확정
- ※ 차기회의 일정
  - 제14차 집행위원회(1975.2.21.~22., 마닐라)
  - 제5차 총회(1975.2.24.~3.3., 마닐라)
  - 제15차 집행위원회(1975.3.4., 마닐라)

#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이사회, 제16차. Singapore, 1974.4.15.-19.

| 74-065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4 / 11 / 1~49p

정부는 1974.4.15.~19.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6차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이사회에 이만용 상공부 공업기획국장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이은복 한국생산성본부 이사장)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 ※ 주요 훈령

-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의장직에 현 제2부의장인 대만(구 자유중국) 대표를 찬성하되 다수 회원국이 타국 대표 지지 시 이에 따를 것
  - 부의장직에는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받는 대표 지지
- APO 사무총장 연차보고서
  - 동 보고서는 생산성 활동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유익한 참고자료이므로 이를 잘 청취하여 생산성 활동계획 수립에 기여
- 1973년도 결산 보고서
  - 승인
- 197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수정
  - 원안대로 승인
  - 한국은 특별회비(5천 달러)를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납부할 수 없음을 천명
- APO 5개년 계획
  - 원안대로 승인하되,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
- 197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원안대로 승인하되, 세부사항 토의 시 한국에 필요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1975년도 한국 주관사업은 Export Marketing Training Course에 한정
- 197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원안대로 찬성하되, 한국에서의 사업주관에 대해서는 결정적 의사표명 보류
- 참가국 경비 및 APO 직원의 봉급규정 개정
  - 참가국 경비문제는 다수 회원국 지지안 찬성
  - 사무국 직원 급여문제는 원칙상 찬성하되, 다른 국제기구의 급여율을 참작하여 형평을 이루도록 요청

#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이사회 회의, 제3차, Madrid(스페인) 1974.11.20.-26.

| 74-0659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4 / 12 / 1~75p

## 1. 주스페인대사는 1974.11.14.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SCRS(조사통계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함.

- ※ 한국, 미국 등 9개 회원국과 파나마 등 5개 옵서버 참가
- ※ 11.13.~14. 황다랑어, 가다랑어, 참다랑어 자원 현상 검토

## 2. 1974.11.20.-26.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3차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이사회에 대표단이 참석함.

- ※ 정부대표단: 김동수 수산청장(수석대표), 수산청 관계관 4명
- ※ 훈령
  - 회의 참가 각국 대표들과의 토의 및 친선도모에 적극 참여
  - 회원국 상호 간의 이해증진 및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
  - 황다랑어, 가다랑어, 참다랑어 및 날개다랑어의 규제, 국제 감시제도 등 각 의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수산청 훈령을 참고하여 한국 정부의 견해와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
  - 구체적, 기술적 문제는 수석대표 재량으로 처리하되 중요한 정책적 문제는 정부에 청문

## 3. 주스페인대사는 1975.2.13. 청지느러미다랑어(Bluefin Tuna) 어획규제 권고안에 관해 보고함.

- ※ ICCAT 사무국은 상기 권고안이 미국, 캐나다, 한국 등 7개국의 찬성으로 1975.8.10.부터 발효됨을 통보
- 권고안 주요내용: 6.4킬로 이하의 Bluefin Tuna 금어, 총 어획의 15% 이내 분은 허용

## 4. 주스페인대사는 1975.2.14. ICCAT 회원국 현황에 관해 보고함.

- ※ 쿠바가 1.15.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
- 총 회원국 수는 14개국

#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식품위생위원회 회의, 제11차, Washington D.C., 1974.6.10.-14.

| 74-066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4 / 13 / 1~33p

정부는 1974.6.10.~14.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1차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식품위생위원회 회의에 문찬홍 보건사회부 식품위생과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1. 기본훈령

- ※ 의제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 정부의 견해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고 우방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와의 친선유대 및 이의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
- ※ 훈령에 언급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대표 재량으로 처리하되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정부에 청훈
- ※ 식품위생위 관련 제 문제의 검토, 가금류 가공의 위생기준 수정검토 등 세부 의제별 훈령에 따라 시행

## 2. 주미국대사에 대한 훈령(1974.6.9)

- ※ 북한 대표의 CAC(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식품위생위원회 회의 참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제시함.
  - 동 위원회에 북한을 초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북한 대표의 워싱턴 여행 허가가 앞으로 선례가 되지 않기를 바람.
  - 북한 대표의 활동은 회의 참석에만 국한토록 함.

## 3. 주미국대사의 결과 보고(1974.6.10. 및 6.14.)

- ※ 회의결과
  - 동 회의가 예정대로 1974.6.10.~14. 개최됨.
  - 차기 회의를 1975.5월 워싱턴에서 개최키로 합의함.
- ※ 북한 대표 동향
  - 시종일관 회의에 참석했으나, 발언이나 특이한 행동은 없음.

# ADC(아시아개발센터) 이사회 회의, 제10차. 동경, 1974.5.13.-17.

| 74-0661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54 / 14 / 1~10p

## 1. 국회사무처는 1974.4.24. 외무부에 제10차 ADC(아시아개발센터) 이사회 참석에 관해 협조를 요청함.

- ※ 동 이사회가 1974.5.13~17. 일본 동경에서 개최
- ※ 정부대표단 파견
  - 민병권 의원(ADC 이사회 의장)외 의원 2명, 국회사무처 직원 2명
- ※ 공항영승, 차량편의, 회의 제반 협조요청

## 2. 외무부는 1974.4.26. 및 5.8. 주일본대사에게 상기 대표단에 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훈령함.

## 3. 민병권 의장은 1974.5.13. 국회의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함.

- ※ 제10차 이사회에는 한국 등 6개국이 참가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가 불참
- ※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해 토의 및 이사회 의장 주최 만찬(5.13.)

## 4. 민병권 의장은 1974.5.14. 국회의장에게 회의 결과를 추가 보고함.

- ※ 이사회에서 다카오카 ADC 사무장관 제안에 대한 토의 진행(5.14.)
  - 소위원회를 구성, 각국 대표의 의견을 종합한 결의안을 작성, 본 이사회에 제출 심의토록 합의
- ※ 대표단은 새마을운동에 관한 해설과 슬라이드 상영(5.14.)
  - 각 ADC 회원국들은 자국에서도 잘살기 운동을 전개할 뜻을 표명
  - ADC의 향후 정책수립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

# APU(아시아의원연맹) 이사회 회의, 제16차. 서울, 1974.7.15.-16.

| 74-0662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4 / 15 / 1~84p

## 1. 국회사무처는 1974.5~6월 외무부에 제16차 APU(아시아의원연맹) 이사회(1974.7.15.~16., 서울) 개최에 관한 협조를 수시로 요청함.

- ※ 동 회의기간 중 참가회원국을 소개하는 필름 또는 슬라이드 방영을 위해 참가국 주재 한국 공관이 관계국 의원단과 접촉, 동 자료 송부 요청
- ※ 각국 대표단에 대한 초청장 전달과 참가자 명단 파악 요청

738

## 2. 외무부는 1974.5~6월 상기 APU 이사회 참가국 공관장에게 상기 협조를 수시 훈령함.

- ※ 주인도네시아대사는 7.11. 주재국이 APU로부터 탈퇴했으므로 동 이사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음을 보고
- ※ 주라오스통상대표부는 7.12. 주재국이 동 이사회 참석이 곤란함을 통보해 왔음을 보고
- ※ 주필리핀대사는 7.16. 주재국이 상기 이사회에 대표를 파견하지 못함을 통보해 왔음을 보고

## 3. 국회사무처는 1974.7.4. 외무부에 제16차 APU 이사회에 제출할 결의안에 관한 의견을 요청함.

- ※ 결의안 주요 내용은 정치위원회가 아래 사항을 결의
  -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통일 달성을 목적으로 한국이 제안한 남북한 불가침협정 제의를 적극 지지
  - APU 회원국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이 조속히 성취되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

## 4. 외무부는 1974.7.11. 국회사무처에 상기 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음을 회보함.

## 5. 국회사무처는 1974.11.7. 외무부에 제16차 APU 이사회 회의록(영문판)을 송부



# 제10차 APU(아시아의원연맹) 총회 및 제17차 이사회 회의, Bangkok, 1974.11.28.-12.2.

| 74-0663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54 / 16 / 1~138p

정부는 1974.11.28.~12.2.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0차 APU(아시아의원연맹) 총회 및 제17차 이사회 회의에 김진만 국회의부의장 및 국회의원 6명(김종익, 정광호, 정우식, 박해충, 민병권, 양정규)의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참가국

- ✿ 9개 회원국(한국,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구 크메르),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 필리핀, 인도, 태국)
- ✿ 7개 옵서버국 대표

## 2. 회의 결과

- ✿ 공동성명서(23개항) 채택
  -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노력을 지지하고 최근 북한의 지하터널구축이 긴장을 고조시킴을 지적
  - 티우 월남 대통령의 월남·베트콩 간 무조건 협상재개 제안을 지지
  - 라오스에서의 현상 감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지지
  - 캄보디아 내 수송 및 통신위성 설치를 위한 원조제공을 촉구
  - 동남아시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회의 소집에 지역국가가 응할 것을 호소
- ✿ 결의안 채택
  - 정치위원회 9개, 경제위원회 8개, 교통통신위원회 4개 등 총 29개 결의안 채택
  - 상기 결의안 중 4개 결의안이 한국대표단의 제안으로 채택

#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61차, 1974.10.2.-11. 전3권 (V.1 기본문서)

| 74-066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4 / 17 / 1~189p

1974.10.2.~11.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61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대표단이 참석함.

## 1. 정부대표단

- ※ 박준규 의원(민주공화당)을 단장으로 24명의 국회의원

## 2. 회의 결과

- ※ 개회식은 일본 천황부부 참석하에 거행되었으며, 천황, 중의원 의장, 다나카 수상, 일본 IPU 평의원회 회장 순으로 축사를 함.
- ※ 동 총회는 아래 의제에 관해 토의한 후 분과위원회 회의를 진행함.
  - 세계의 정치·경제·사회 정세와 연맹의 활동, 군비경쟁의 제한·중지 및 군비축소 노력 강화, 중동 사태, 고문문제, 에너지 위기, 세계인구 팽창의 경제·사회적인 효과, 국제적인 이해·협력·평화를 위한 청소년 교육, 인종차별 종식
- ※ 동 총회는 군비경쟁의 제한과 종식 노력 강화, 중동 상황 등에 관한 9개 결의안을 채택함.

## 3. 대표단의 활동사항

- ※ 대표단장 연설
  - 박준규 대표단장이 기조연설(10.3.)
  - 동 연설내용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크게 보도
- ※ 의제토론 시 발언
  - 대체토론에서 서인석 의원 발언(10.4.), 고문문제 토론에서 이범준 의원 발언(10.5.)
- ※ 외신기자 접촉
  - 박준규 단장 등 한국대표단은 10.7.~10.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의 14개 주요언론사 외신기자들을 접촉함.

| 74-0665 |

##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61차, 1974.10.2.-11. 전3권 (V.2 총회참석 각국대표단 방한)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54 / 18 / 1~413p

### 1. 국회는 제61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1974.10.2.~11., 동경)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방한 초청한바, 24개국 대표들이 방한함.

- ※ 동 방한초청은 방문자들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 주요 방한일정

- ※ 방한기간: 상기 총회 직전과 직후 각각 3박 4일간
  - 1차 방한기간: 1974.9.28.~10.1.
  - 2차 방한기간: 1974.10.12.~15.
- ※ 주요 방한일정
  - 국회의장 주최 만찬
  - 산업시찰, 관문점 시찰, 서울시내 관광 등

74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61차. 1974.10.2.-11. 전3권 (V.3 북한 참석)

| 74-066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5 / 1 / 1~216p

1. 제61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1974.10.2.~11., 동경)에 북한 대표단 22명이 참석함.

2. 상기 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의 활동사항은 아래와 같음.

- ※ 총회 발언
  - 고문문제 토의 시 김영남 부단장 발언
- ※ 기자회견 개최
  - 김영남 부단장 및 유기복은 1974.10.1. 일본 제국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반한적인 정치선전을 함.
- ※ 외신기자클럽 세미나 참석
  - 김영남 부단장이 10.8. 동경외신기자클럽 세미나에 참석하여 '평화통일 5원칙'을 설명하고 한국이 이 원칙을 거절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 ※ 조총련은 10.2. 동호텔에서 북한 IPU 대표단 환영 리셉션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함.

3. 외무부는 북한 IPU 대표단이 일본 체류 중에 입국 목적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금지토록 주일본대사관을 통하여 수차례 일본 정부에 요청함.

- ※ 외무부차관은 1974.9.27.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이를 요청함.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14차.  
Bucharest(루마니아) 1974.4.15.-20.

| 74-0667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5 / 2 / 1~180

1. 1974.4.15.~20.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제114차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에 박준규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국회의원 5명, 고문 1명, 수행원 4명)이 참석함.

※ 국회 측의 요청에 따라 황호을 주제네바대사가 고문자격으로 참석함.

2. 당초 수행 예정이던 국내기자 3명은 루마니아 입국비자를 받지 못해 회의 참석을 포기하고, 제네바 주재 동아일보 기자만 루마니아에서 동 회의를 취재함.

743

# WACL(세계반공연맹회의) 총회, 제7차. Washington D.C., 1974.4.8.-11.

| 74-066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I-55 / 3 / 1~140p

WACL(세계반공연맹회의) 런던 총회 취소에 따른 동 총회 준비경비 청산문제로 WACL과 런던지부 간에 분쟁이 발생한 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1973.8.27.~9.1. 런던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7차 WACL 총회는 대만(구 자유중국) 대표단의 입국비자 문제로 인해 8.23. 임시 집행이사회(워싱턴) 결정에 따라 취소됨.

744

2. 런던대회 준비위원장 Stewart-Smith 의원은 1973.12.3.자 서한에서 취소된 총회 경비 결손액 7만 달러 중 3만 달러를 한국 정부가 즉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송금이 없으면 서울소재 WACL 본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시사함.

3. Stewart-Smith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 반공연맹은 1973.12.27. 아래와 같이 회답함.

- ※ 한국 정부에서 이미 보낸 1만 달러에 추가로 3만 달러를 보조하는 것은 현재 재정 형편상 불가능함.
- ※ 모든 차질은 곡정강 대만 대표에 기인함.

4. Stewart-Smith 의원은 1974.1.9.자 서한으로 서울 WACL 본부를 상대로 제기할 문제와 관련된 서류를 한국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주영국대사에게 요청함.

- ※ 주영국대사는 이에 대하여 한국 대사나 한국 정부가 동 건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상기 서한과 관련서류를 반송함과 동시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당사자 간에 직접 교신할 것을 통보함.

5. WACL은 1974.5월 사무총장 명의 공문으로 동 건의 경위와 문제점 그리고 동 사무국의 방침을 외무부에 알림.

- ※ 동 사무국은 대만의 곡정강 대표와 상의하여 이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타협점을 모색토록 협의하고 있음을 언급함.

6. 제7차 WACL 총회는 1974.4.8.~11. 워싱턴에서 개최됨.

ICG(국제유리공학협회)/ICG(국제유리회의) 총회,  
제10차, 교토(일본) 1974.7.8.-12.

| 74-066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특수지역
MF번호	I-55 / 4 / 1~105p

1. ICG(International Commission on Glass) 주최로 1974.7.8.~12.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10차 ICG(International Congress on Glass, 국제유리회의) 총회에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이충희 경희대학교수 등은 동 ICG 간부들과 접촉, 한국의 동기구 가입문제를 협의함.

※ 동 ICG 간부들은 한국의 가입을 구두로 승인하고 가입수속은 한국요식협회가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함.

2. 외무부는 1974.10월 과학기술처에 공문으로 ICG에 소련,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동구 지역 국가가 가입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동 기구에 가입하여 동구 지역 국가와의 학술,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기회로 활용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동 기구 가입검토를 요청함.

74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WEC(세계에너지회의) 총회, 제9차, Detroit(미국) 1974.9.23.-27.

| 74-0670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5 / 5 / 1~67p

1. 외무부는 1974.6.29. 주한 월남대사관이 6.20. 외교공한을 통해 월남이 WEC(세계에너지회의)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여 왔음을 상공부에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함.

※ 상공부는 7.4. WEC는 인류평화와 복리 증진을 위한 에너지의 개발 및 평화적 이용에 목적을 둔 국제민간단체로서 월남의 동 회의 가입을 지지하며, WEC 한국국내위원회에도 협조토록 요청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

2. WEC 한국국내위원회(의장: 민충식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는 1974.9.2.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되는 1974년도 WEC 국제집행이사회 및 제9차 WEC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단 명단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재외공관의 협조를 요청함.

※ 외무부는 9.9. 동 대표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협조를 제공할 것을 주시카고총영사관에 지시

3. WEC 한국국내위원회는 1974.12.3. 아래 요지의 동 회의 참석결과를 외무부에 통보함.

※ WEC 국제집행이사회 회의

- 개최 일자: 1974.9.20.~21., 9.27.

- 한국 측 참석자: 민충식 한국국내위원회 의장, 한정석 상공부 동력개발국장

- 동 회의에서는 WEC/IEC 정관 일부개정, 월남, 파라과이 및 에콰도르 회원가입 등 결정

※ 제9차 WEC 총회

- 회의기간: 1974.9.23.~27.

- 한국 측 참석자: 상기 민충식 의장 등 총8명

- 회의 진행: 미래에너지 수요의 경제 및 환경에의 도전을 주제로 한 강연 및 토론, 디트로이트 인근 주요산업체 시찰 등의 일정으로 진행



## ATTU(아시아탁구연합) 한국가입

| 74-0671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공보문화/동북아2
MF번호	I-55 / 6 / 1~58p

1. 외무부는 1974.4.15. 대한탁구협회가 인도네시아와 함께 ATTU(아시아탁구연합)에 가입하고자 함을 주미국대사관 등 관련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5.2.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ITTF(세계탁구연맹) 이사회에 대비, 아래 요지의 지침에 따라 주재국 탁구협회 및 동 협회 소속 ITTF 이사회 위원 등을 접촉, 교섭할 것을 지시함.

※ 배경

- 중국(구 중공)은 대한탁구협회가 1951년부터 소속되어 온 ATT(아시아탁구연맹)에 대만(구 자유중국)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동 연맹에 가입할 입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일본, 북한 등과 1972.9월 베이징에서 ATTU를 결성
- 대한탁구협회 측은 1974.3.28. 인도네시아 측과 함께 ATTU 가입신청서를 동 기구 회장(일본인)에게 제출하였으나 4.12. 집행위에서는 동 신청서 내용이 ATTU가 인정하지 않는 ATT와와의 합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양국의 가입신청을 부결

※ 지침

- ATTU가 일부 아시아지역 국가의 가입을 정치적 이유로 계속 봉쇄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가입절차 규정(4개국 집행위원 전원일치제)을 유지하는 한 한국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문호가 개방 되도록 ITTF 이사회가 적절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

2. 주미국대사관은 1974.6.4. 김태지 참사관의 Rufford Harrison ITTF 이사와의 오찬(5.31.) 시 동인의 언급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 ※ Evans ITTF 회장은 ITTF가 지역탁구협회가 독자적으로 하는 일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선에 따른 ITTF 현장 개정안이 제안되어 통과
- ※ ITTF는 중국이 동 지역 각국(약 75개국) 탁구계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추측
- ※ 일본 측 참석자에 의하면 ATTU 집행위에서 한국 및 인도네시아에 대한 가입 거부 사유가 동 가입신청서를 ATTU가 인정하지 않는 ATT 봉투에 넣었다는데 있는 것처럼 들었으므로 그와 같은 트집을 잡지 못하도록 ATTU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그 거부된 사실을 갖고 인도에서 개최될 ITTF 총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3. 본 문서철에는 1974.6.8. 외무부 정보문화국 문화과 작성 ATTU 가입신청을 위요한 현황 및 대책(안) 등도 수록되어 있음.

# 불필요한 고통 또는 무차별 효과를 야기하는 무기에 관한 정부전문가회의. Lucerne(스위스) 1974.9.24.-10.18.

| 74-067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I-55 / 7 / 1~65p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74.5.24. 현지 국제적십자사가 1974.9.24.~10.18. 스위스 루체른에서 개최 예정인 무기문제에 관한 정부전문가회의에 한국 정부전문가를 초청하면서 회의 관련 자료를 송부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2. 동 회의 개요 및 배경은 아래와 같음.

### ※ 회의 개요

- 회의 명칭: 불필요한 고통 또는 무차별 효과를 야기하는 무기에 관한 정부전문가회의(Conference of Government Experts on Weapons which may cause unnecessary suffering or have indiscriminate effects)
- 초청 대상: 제네바 외교회의의 피초청국, 동 회의 피초청 해방운동기구, 유엔사무총장 및 전문가 대표
- 의제: 불필요한 고통 또는 무차별 효과를 야기하는 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 목적: 인도법에 관한 차기 제네바 외교회의(1975.2.3.~4.15., 잠정)의 편의 도모

### ※ 배경

- 1973.11. 제22차 국제적십자 총회(테헤란)에서 국제적십자사에 대해 불필요한 고통 또는 무차별 효과를 주는 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문제 토의를 위한 정부전문가회의 개최를 요청
- 인도법에 관한 제네바 외교회의(1974.2.20.~3.29.)에서는 특별위원회 설치로 동 문제를 토의하고 국제 적십자사 측 제안에 따라 정부전문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 3. 1974년 PRG(월남입시혁명정부, 베트남)의 동 회의 참석문제에 관한 내용임.

- ※ 주월남대사는 주재국 외무성 차관이 5.31. 지난 2월 제네바 외교회의 시 한국이 PRG 참가 반대를 해준데 대해 재차 사의를 표하면서 9월 예정된 정부전문가회의의 PRG 참가문제 토의 시에도 월남 입장을 계속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
- ※ 외무부는 6.11. 한국이 PRG의 금차 정부전문가회의 참석에 반대함을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
- ※ 외무부는 6.18. 주한 월남대사관이 PRG의 동 회의 참석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반대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동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임을 동 대사관에 회보하였다고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
- ※ 주월남대사관은 9.12. PRG의 동 회의 참석을 반대하는 월남 측 입장을 지지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는 주재국 외무장관의 김동조 외무부장관 앞 공한(8.31.자)을 외무부에 보고

| 74-0673 |

#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관 회의, 제1차. Geneva, 1974.2.20.-3.29.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72-1974
생산과	조약
MF번호	I-55 / 8 / 1~132p

## 1. 1973.8.31. 외무부 조약과가 작성한 '제네바협정(1949) 관계 외교관회의' 에 관한 보고사항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주한 스위스대사관으로부터 동 회의 참가 초청장 접수(8.31.)
  - 회의 명칭: 제1차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을 위한 외교관회의
  - 회의기간 및 장소: 1974.2.20.~3.29., 제네바
  - 초청대상: 제네바협약 가입당사국 정부(한국 1966년, 북한 1965년 가입), 유엔회원국 정부
  - 의제: 4개 협약의 시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의정서안
- ※ 회의 배경
  - 1969.8~9월 제21차 국제적십자 총회(이스탄불)에서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는 무력분쟁시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제안의 작성을 위임받음.
  - 1971.5~6월 제1차 정부전문가회의(제네바, 한국 불초청), 1972.5~6월 제2차 정부전문가회의(제네바, 한국 참석), 1973.10~11월 제22차 국제적십자 총회(테헤란, 한국 참석예정)

## 2. 외무부는 1973.12.28. 스위스 정부가 동 회의 참가 초청장을 제네바협약 가입당사국 및 유엔회원국 정부에 발송해 옴에 따라 한국 정부도 동 회의에 참가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제네바협약 당사국인 북한도 동 회의 참석이 예상됨. 동 회의 참가에 대비하여 추가의정서(안) 전반에 관한 문제점 검토 및 기본입장 수립을 위해 동 의정서(안)에 관한 질문서 등을 관련부처에 송부, 의견을 요청함.

- ※ 동 회의에서는 2차례의 적십자 전문가회의(1971.3월 및 1972.3월), 2차례의 정부전문가회의(1971.5월 및 1972.5월)에서 논의된 결과를 종합하여 ICRC가 작성한 1949.8.19. 제네바협약의 추가의정서 (국제적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희생자의 보호) 및 추가의정서 II(비국제적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검토 및 그 채택 여부에 관해 논의 예정

## 3. 이외에 1973.1.30. 박수길 외무부 조약과장의 Truninger 주한 스위스대리대사 면담요지, 10.23. 제네바 협약 추가의정서안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회의요록, 12.16. 주이란대사관의 제22차 국제적십자총회 참석(73.11.8.~15., 테헤란) 보고서 등 수록

#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관회의 의, 제1차, Geneva, 1974.2.20.-3.29. 전3권 (V.2 대표단 구성 및 훈령 등)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I-55 / 9 / 1~149p

정부는 1974.2.20.~3.2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을 위한 외교관회의(전시 인도법에 관한 외교관회의)에 황호을 주제네바대사를 수석 대표로 대표단을 파견함.

## 1. 파견 필요성

- ※ 1949년 제네바회의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전시 희생자 보호에 관한 외교회의로서 전시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 협약 채택(1949.8.) 이후 현실적 여건에 따라 동 협약 보완, 강화를 위한 추가의정서 채택 결정 예정
- ※ 한국은 1966.8.16. 동 협약 가입 이래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해 왔으며 휴전 상태하에 있는 한국의 특수 상황에 비추어 전시 희생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문제는 중요

## 2. 세부훈령 요지

- ※ 금번 회의에서 논의될 추가의정서는 현행 인도법규의 보완 및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의정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음.
- ※ 동 협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익보호국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의 합의에 따르고 동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ICRC(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인도기구가 대체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므로 제의정서 제5조 3항의 대안 중 Proposal II가 채택되도록 노력
- ※ Medical Air Transport의 경우 현대 의료수송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 기타 의료수송 수단과 같이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것
- ※ 금번 회의 중 논란이 예상되는 해방전쟁, 자결을 위한 전쟁요원이 포로가 된 경우의 지위에 관해 동 전쟁의 개념이 모호하고 그 요원에 대한 포로로서의 지위 부여 시 폭력의 단계적 악화 및 확대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포로로 불인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되 동 입장이 다수국의 반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 있는 지휘관의 통솔, 고정식별 표시, 협약 및 전쟁법규 준수, 민간인으로서의 위장 불법화 등을 조건으로 하여 포로로 대우한다는 입장을 취함.

## 3. 1974년 PRG(월남 임시혁명정부, 베트남)의 상기 회의 참석문제에 관한 내용임.

- ※ 외무부 방교국은 1974.2.16. 주한 월남대사관이 215. 공한을 통해 PRG의 동 회의 참석을 반대하는 자국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아주국에 통보하고 의견 요청  
- 아주국은 2.18. PRG를 월남 내 합법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므로 PRG가 국가 또는 정부 자격으로 동 회의에 참가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임을 방교국에 통보
- ※ 방교국은 3.2. 현재 개최중인 제네바협약에 관한 외교관회의에서도 PRG의 국가 또는 정부대표로서의 국제 회의 참가문제가 제기되었는바, 한국 대표는 이에 대한 투표 시 반대하였으며 투표결과는 찬성 37, 반대 38, 기권 33으로 PRG의 동 회의 참가가 저지된 바 있음을 국제경제국에 통보

#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관 회의, 제1차, Geneva, 1974.2.20.-3.29. 전3권 (V.3 회의 결과보고)

생산연도	1972-1974
생산과	조약
MF번호	I-55 / 10 / 1~111p

1974.2.20.~3.2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관회의(전시 인도법에 관한 외교관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수석대표: 황호을 주제네바 대사)의 참가보고서 요지임.

## 1. 참가국

- ※ 정회원 126개국 대표, 옵서버 11개 해방운동기구 및 45개 국제기구

## 2. 회의 의제

- ※ 제1 추가의정서: ICRC(국제적십자위원회)가 작성한 국제적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희생자의 보호
- ※ 제2 추가의정서: 비국제적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희생자의 보호

## 3. 초청문제

- ※ Pierre Graber 본회의 의장(스위스 외상)은 기니비사우, PRG(월남임시혁명정부), NLM(National Liberation Movement) 등의 초청문제에 관해 본회의 개최 전 수석대표 회합에서 논의하였으나, 합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동 문제는 스위스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본회의 자체가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
- ※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일부국가들의 상기 그룹 초청 찬성과 이에 반대하는 서방 측 의견을 절충한 결과, 컨센서스에 의해 기니비사우는 정식회원자격 참석 인정, PRG 초청은 부결, NLM은 옵서버자격으로 초청

## 4. 회의결과 및 건의

- ※ 일반토의 시 아프리카, 아랍, 공산국가 및 일부 아시아국가는 정치적 발언에 집중한 반면, 서방국가는 실질 문제(ICRC 초안)에 관해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영국대표는 전쟁을 just war와 unjust war로 구분함은 제네바협약의 근본이념을 흐르는 동시에 개인의 보호를 주관적, 정치적 견해에 의존하게 하는 위험한 결론을 도출할 염려가 있음을 강조
- ※ 금번 회의에서는 절차적 문제 토의에 3주간을 낭비한 결과, ICRC가 작성한 초안문제 토의라는 실질사항에 큰 진전이 없었으며, 내년(1975.2.3.~4.15., 잠정)에 제2차 외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1974.9.15.까지 수정안을 마감하기로 함.
- ※ 체약국 내에서 발생하는 해방전쟁, 자결을 위한 전쟁이 국제적 분쟁에 포함되는 사태라고 결정한 금번 회의의 결정은 서방국가 및 아시아 일부국가의 동 조항에 관한 유보를 야기시켰는바, 한국의 경우 동 분쟁의 개념이 정치적인 것이며 모호하다는 점과 게릴라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ICRC 의정서 초안의 상당한 부분에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 PATA(태평양지역관광협회) 총회, 제23차, Jakarta (인도네시아) 1974.4.1.-4.

| 74-067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55 / 11 / 1~29p

1. 교통부는 1974.3.16. 제23차 PATA(태평양지역관광협회) 총회(1974.4.1.~4.) 및 제14차 워크숍(1974. 3.28.~29.)이 자카르타 및 발리에서 각각 개최되며 한국 측은 관광 관계기관 및 관광사업자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관광객 한국 유치를 위한 특별활동을 전개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재외공관의 협조를 요청함.

※ 동 총회에는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관광 관계기관 및 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하여 1974년도의 운영방침 및 공동개발계획을 협의하며 각국 사업자 간의 상호 판촉활동도 전개함.

※ 대표단은 정성관 국제관광공사 부사장 등 동 공사 직원, 국내 여행사 및 호텔 관계관 등으로 구성됨.

2. 외무부는 1974.3.20. 상기 총회 및 워크숍에 약 45명의 대표단이 참여할 예정임을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통보하고 동 대표단의 현지 활동에 필요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협조를 제공토록 지시함.

PIANC(국제상설항해협회) 상설국제위원회  
연차총회. Rotterdam(네덜란드) 1974.6.4.-7.

| 74-067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I-55 / 12 / 1~35p

1. 외무부는 1974.4.11. 주네덜란드대사관에 1974년도 PIANC(국제상설항해협회) 상설국제위원회 연차 총회에 한국이 불참함을 통보함.

2.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74.6.28. 상기 총회 회의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함.

※ 외무부는 7.4. 동 자료를 교통부에 송부

75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조약근거에 대한 의견 조회

| 74-067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89 / 1 / 1-49p

754

1.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74.2.13.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1973.12.20. 신설 공포된 동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차관의 차관협정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공공차관 도입과 관련된 각종 협정체결 사무에 있어 양부처간 업무 중복과 소관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방교국에 통보하고 법해석 및 대책 등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

※ 방교국은 3.2. 공공차관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9조 및 제10조는 공공차관에 관련한 외국 정부나 국제경제기구와의 교섭, 협정체결 및 공포사무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전담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수락할 수 없는 안이라고 사료됨을 국제경제국에 통보하고 종래 관행대로 정부간 기본 테두리협정은 외무부장관이 관장하고 그 외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관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2.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74.6.29. 경제기획원이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한 청구권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청구권자금 수용자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외국과의 합작회사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려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외국과의 합작회사, 특히 일본과의 합작회사에 동 자금 사용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법의 제정정신에 위배됨은 물론 국민감정을 자극할 우려가 있음을 방교국에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함.

※ 방교국은 7.1. 동 의견에 동의함을 국제경제국에 통보함.  
 - 청구권자금은 일본에게 수탈된 대한민국 정부 및 국민의 재산과 권리 등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은 특수한 성격의 자금으로 자금의 공평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이를 최대한으로 온 국민의 복지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3. 외무부 국제경제국 경제조사과는 1974.7.12. 및 8.22. 주한 영국대사관이 척추결핵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에 대한 영국 해외개발성의 공식 지원 통보와 아울러 동 사업의 영국인 전문가 및 의약품의 외교행낭 편 반입에 대한 특전 부여를 각각 요청하여 왔음을 방교국 조약과에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함.

※ 방교국은 8.27. 아래 요지의 의견을 국제경제국에 통보함.  
 - 관세 면제는 법률이나 조약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바, 동 영국인의 경우 면세 특전을 부여할 하등의 조약 및 국내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특전 부여 불가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제4항에 의하면 외교행낭에는 공용을 목적으로 한 외교문서나 공관의 공용물품만이 그 내용물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의약품은 연구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수입함은 불가



# 무상군원 장비 처분에 관한 한·미국 간의 각서교환

| 74-0679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북미2/조약
MF번호	J-89 / 2 / 1~58p

## 1. 외무부가 1974.6.26. 무상군원 장비 처분에 관한 한·미국 간 각서교환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미 상원은 FY72 대외원조법에 규정되어 시행되었던 무상군원액의 10% 수원국 통화 예치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원국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제505항 f)을 FY74 대외원조법에 신설함.
  - 동 조항은 7.1.부터 모든 무상군원 장비를 사용한 후 처분대금을 현지화로 미국 정부 계정에 불입하여 미국 정부의 모든 공공비용에 충당키로 동의하지 않는 한 무상군원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규정
- ※ 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6.25. 본국 정부 지시에 따라 동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양국 정부간 각서 교환을 정식 제의함.
- ※ 미국 측 제의를 경제기획원,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한 결과, 동 규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 측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연간 약 30만 달러로 추산되며, 동 대외원조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조건을 수원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음.
  - 1956.7.28. 발효한 장비 및 물자 처분에 관한 한·미국 간 협정에서 무기, 탄약, 항공기, 선박 등 무상군원 장비가 원래 목적에 비추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미국국 정부에 반환하며,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처분 불가
  - 그간 미국 측은 브라운각서에 의거해 상기 장비 처분대금의 90%(10%는 행정수수료 제외분)를 한국군을 위해 사용해 왔으며, 주월 한국군 철수에 따라 1973.9.19. 주한미군 원조단장의 서한에 의거 1974.6.30.까지만 동 사용이 연장 승인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연장 불가
- ※ 경제기획원은 군원계획에 의한 한국군 도미 훈련비 중 한국 측 부담분 등과 상쇄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미국 측은 장비 판매대금이 미국 정부 계정에 편입되어 미국 정부기관의 관련 사업경비로서만 배정, 사용되어야 하므로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국방부가 요청한 장비처분 수수료 공제는 교섭 결과, 미국 측이 이를 양해하고 각서에 명시함.

## 2. 외무부는 1974.6.28. 미국의 상기 대외원조법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무상군원 장비처분에 관한 각서 (1974.7.1. 발효)를 주한 미국대사관과 외무부 간에 교환하였음을 경제기획원 및 국방부에 각각 통보함.

| 74-0680 |

## 한·미국 이-시스템즈(E-Systems) 회사 간의 전술용 무전기 키트(Kit) 구매협정 개정, 1974.10.14.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J-89 / 3 / 1~16p

1. 국방부는 1974.11.11. 미국 E-Systems사와 10.14. 체결한 무전기 키트 구매협정에 대한 개정 제1호 (Amendment Number I to AN/PRC-77 Radio Kit Purchas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E-Systems, Inc.)를 외무부에 통보함.

2. 상기 구매협정 개정 제1호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756

- ※ Mechanical 및 Electrical Piece Part의 완전 Set로 초도 수리부품인 CSP(Concurrent Spare Parts) 추가 공급
  - 가격: 444,215.20달러
  - 항공운임 추산: 35,500달러
- ※ 계획된 부품 6,000대 중 균원가격 인상으로 부족한 차관 자금 증액
  - 294,601.50달러
- ※ 상기에 따른 지불계획
  - C+1개월: 550,000달러
  - C+2개월: 150,000달러
  - C+3개월: 최종 잔액 지불

# 한·대만(구 자유중국) 간의 화교학생 수학기 송금에 관한 각서교환 개정

| 74-0681 |

생산연도	1972-1974
생산과	조약/동북아2
MF번호	J-89 / 6 / 1~96p

한·대만(구 자유중국) 간 화교학생 수학기 송금에 관한 협정 개정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는 1972.9.5. 주대만대사관에 화교유학생 수학기에 의한 원화 L/C 개설은 1966. 8.31. 양국 간 합의한 교환각서에 의거, 주재국 중앙신탁국 및 물자국에 한정되어 있음을 주재국 측에 설명토록 지시함.
2. 외무부 통상국은 1973.11.2. 동 수학기 송금에 관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안)에 주한 대만대사관 측과 합의하였음을 방교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
3. 법제처는 1974.1.26. 동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조약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을 외무부에 통보함.
4. 외무부는 1974.1.29. 내부건의를 통해 한·대만 화교학생 수학기 송금에 관한 협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함.
  - ※ 재한 화교학생 수학기금으로 적립된 원화로 종래 대만 중앙신탁국 또는 물자국에서만 수입할 수 있었으나 동 협정 개정을 통해 일반 업체도 수입 가능
5. 박정희 대통령은 1974.2.15. 동 협정 개정을 위한 외무부 건의를 재가함.
  - ※ 외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각서교환 형식의 동 협정 개정에 서명
  - ※ 각서교환 일자에 발효하는 동 협정 개정을 동일자로 공포
6. 외무부는 1974.2.19.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Loh Ying-teh 주한 대만대사 간의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1974.2.20. 발효되는 동 협정 개정 공포를 총무처에 요청함(조약 제494호).

# 한 · 독일 간의 재정원조협정

| 74-068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89 / 7 / 1~73p

758

## 1.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74.3.19. '1973년도 독일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관해 외무부장관의 결재를 득하였음을 방외국에 통보하고 동 협정 발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 ※ 교섭 경위
  - 한국 정부는 1972.12.5. 통신시설, 생사가공시설사업 등에 대해 독일 정부가 재정차관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
  - 1973.10.25. 서울에서 개최된 한·독일 경제회담에서 총 35백만 DM(약 1,300만 달러)을 제공(이자율 연2%, 10년 거치, 20년 상환)키로 합의
  - 1974.2.26. 주한 독일대사관은 협정(안) 제시
- ※ 협정(안) 요지
  - 통신시설(22백만 DM), 생사가공시설(8백만 DM), 한국디젤엔진공장(5백만 DM)에 차관 제공
  - 차관의 사용과 공여조건은 차주와 독일재건은행 간 체결되는 계약에 의함.
  - 독일재건은행에 대해 모든 조세와 공과금 면제
  - 차관사업과 관련된 물자와 용역 조달은 국제입찰에 의함.

## 2. 한 · 독일 재정원조협정(정식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경위는 아래와 같음.

- ※ 외무부는 1974.3.23. 동 협정에서 명시한 차관은 1973.9.25. 제8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1. 제88회 제16차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은 "1974년 공공차관 도입"(제안부서: 경제기획원장관)에 포함된 사항으로 '공공 차관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회 동의를 불필요함을 법제처에 통보하고 동 협정(안)에 대한 의견 문의
- ※ 법제처는 1974.4.6. 동 협정은 제88회 제16차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동의를 받은 41백만 DM 차관 중 35백만 DM 차관공여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상기 법률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이의 없음을 외무부에 통보
- ※ 국무회의는 1974.4.12. 동 협정을 심의 의결
- ※ 동 협정은 1974.5.17. 노신영 외무부장관대리와 사라친 주한 독일대사 간에 서명, 동일자로 발효됨 (조약 제503호).

# 한·일본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 74-068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89 / 9 / 1~109p

## 1.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과 김동조 외무부장관이 1974.10.23. 제79회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위해 공동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협정’ 체결 안건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교섭경위

- 1973.12.25. 제7차 한·일본 각료회담 시 한국의 농촌개발사업과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일본의 차관 공여를 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합의
- 일본 측은 1974.7월 협정안을 제시하고 양측 간에 수정을 거쳐 1974.9월 문안에 합의

### ✪ 체결 의의

- 동 차관으로 삼교천, 개화도, 창녕 지구의 농업기반 조성, 농업기계화 등 종합개발사업과 대청댐 건설 사업에 필요한 외자 확보

### ✪ 주요 내용

- 총 313억 2천만 엔 한도의 차관이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제공
- 총액 중 194억 4천만 엔 한도액은 농촌개발사업을 위해 제공(이자율 연3.25%, 7년 거치, 18년 상환)
- 총액 중 118억 8천만 엔 한도액은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해 제공(이자율 연3.5%, 7년 거치, 13년 상환)
- 차관은 사업 실시를 위해 소요되는 일본 생산품과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한국의 수입업자가 일본의 계약자에게 엔화로 지불하는데 충당하도록 사용
- 한국은 차관과 그 이자에 대해 해외경제협력기금에 부과될 조세 및 공과금을 면제하고 일본국민의 용역공급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한국 내에서 일본 회사와 국민에게 부과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 2. 외무부는 동 차관협정이 1974.10.25.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 동일자로 발효되었음을 주일본대사에게 통보함.

## 3. 외무부는 1974.10.25. 상기 각서교환으로 동일자 발효되는 동 협정 공포를 위한 조치를 총무처에 요청함(조약 제517호).

# 한·일본 간의 수출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일본 차관협정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 74-068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조약1
MF번호	J-89 / 10 / 1~21p

## 1.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이 1974.6.2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수출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에 대한 차관협정 수정(안) 심의 의결을 위해 국무회의에 제출한 안건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제안 이유

- 1971.6.29. 수출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108억 엔 차관도입을 위한 각서가 한·일본 간에 교환되고 동 각서교환에 따른 차관계약이 한국외환은행 및 중소기업은행과 일본수출입은행 간 각각 체결
- 수출산업진흥을 위한 차관자금 54억 엔은 이미 기일 내 인출을 끝냈으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차관자금 54억 엔(이자율 연6.25%, 3년 거치, 10년 상환)은 그 인출이 부진하여 자금인출 마감일(1974.6.28.)을 1975.3.31.까지 연장할 필요

### ※ 주요 내용

-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차관인출 마감일을 1975.3.31.로 연장

## 2. 외무부는 1974.6.29. 경제기획원장관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가 6.26. 서명한 중소기업육성 일본 엔 차관인출 마감일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원본 및 부속문서를 송부해줄 것을 경제기획원에 요청함.

- ※ 동 각서 원본을 접수하면 이를 외무부에서 보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보

## 3. 경제기획원은 1974.7.3. 동 각서 및 부속문서 사본을 외무부에 송부함.

## 4. 외무부는 1974.7.6. 동 각서 원본(일본 측 각서 원본 및 한국 측 각서 사본)과 부속문서 원본 송부를 경제기획원에 재요청함.

- ※ 또한 동 각서 원본을 접수하면 외무부에서 보관하고 일련의 조약번호를 기재하여 공포 조치하게 되는 바, 동 협정의 공포 조치 여부도 아울러 회보해줄 것을 요청

## 한·캐나다 간의 투자보장협정 체결교섭

| 74-0685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조약/경제협력
MF번호	J-89 / 11 / 1~213p

1972~74년 중 한·캐나다 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72.2.28. 주캐나다대사가 폐핀 캐나다 상공장관의 방한(1972.1.29.~31.) 시 한국 상공부장관과 합의한 바 있는 투자보험협정(Foreign Investment Insurance Agreement) 체결에 관해 보고하여 왔음을 재무부, 상공부 등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는 1972.12.18. 캐나다 측이 제시한 투자보험협정안에 대한 한국 측 대안(투자보장협정안)을 주캐나다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함.

※ 캐나다 측 협정안은 정치적 안정이 기대되지 않는 개도국을 상대로 해당국에서 국유화, 전쟁 또는 정변이 발생하였을 때 캐나다 투자보험법을 적용, 이는 캐나다 투자자만을 보호하려는 일방적인 투자보장협정의 패턴임.

※ 한국 측 협정안은 조약형식의 쌍무규정으로 투자보장과 함께 투자증진 조항을 포함함.

3. 주캐나다대사는 1973.11.14. 외무부에 주재국 측이 한국 측 안과 같은 쌍무적인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주정부와의 조정 관계로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선 캐나다 측 안에 서명하고 쌍무적 협정 체결 교섭을 계속할 것을 제의해 왔음을 보고함.

4. 외무부는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974.1.24. 타협안으로 아래 입장을 채택하였음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함.

※ 당초 한국 측 안인 쌍무적인 형식을 취하되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는 캐나다의 연방법 및(또는) 주법에 의해 보호를 받도록 하고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는 한국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여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협정을 조정 작성

※ 캐나다 제도에는 있으나 한국 제도에는 없는 해외투자보험과 동 보험의 대위권 인정 등 쌍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문제는 캐나다 측 안으로 교환각서 형식을 통해 편무적으로 규정

5. 주캐나다대사대리는 1974.2.14. 주재국 측이 한국 측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실제 타협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한·독일 간의 거주 및 상업 활동에 관한 조약 체결 교섭

| 74-0686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경제협력/구주
MF번호	J-89 / 12 / 1~169p

1972~74년 중 한·독일(구서독)간 거주및상업 활동에 관한 조약(Establishment Treaty) 체결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72.2.25. 주한 독일대사관이 양국간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의정서 제1항에 의거, 거주 및 상업 활동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해 왔음을 재무부 등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독일 측 조약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 재무부는 3.10. 동 조약안 제12조 삭제가 필요하며 국가 간 과세문제는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외무부에 통보함.

2. 외무부 경제협력과는 1972.5.11. 독일 측이 제시한 동 조약안의 추진현황, 주요내용 및 문제점 등에 관해 아래 요지로 내부 보고함.

※ 주한 독일대사관이 2.10. 구상서로 한·독일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의정서 제1항(본 협정 조인 후 1년 이내에 거주 및 상업 활동에 관한 조약 체결교섭 시작)에 따른 교섭 시작을 제의함.

※ 독일 측 제의 조약안에 포함된 체류기간 연장 보장, 긴급구속 24시간 이내, 최혜국 대우 제한, 투자 원금 및 과실의 해외송금 보장 등은 한국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 외자도입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 많은 문제점이 있음.

※ 이를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충분한 의견교환 후 교섭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3. 외무부는 1974.2.21. 내부건의의를 통해 아래 요지의 입장을 독일 측에 구두로 설명하기로 결정함.

※ 독일 측이 제시한 조약안은 우호통상항해조약과 유사한 것으로 최근 국가 간 체결되는 사례가 별로 없음.

※ 양국간에는 이미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 사증면제협정 등이 있어서 동 조약 체결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음.

※ 관계부처에서는 동 조약의 본질적인 사항(신체의 자유, 관세, 공업소유권, 대외송금 등)에 대해 삭제 내지 수정을 요청하고 있음.

4.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은 1974.3.14. 주한 독일대사관 참사관을 초치하여 상기 한국 정부의 입장을 구두로 설명함.



| 74-0687 |

## 한·캐나다 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

생산연도	1971-1974
생 산 과	조약1/경제협력
MF번호	J-89 / 13 / 1~239p

한·캐나다 간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을 1974.11.15. 체결함.

1. 외무부는 1972.11.13. 한국 측 협정안을 주캐나다대사관에 송부하고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진행을 지시함.
2. 주캐나다대사관은 1973.1.18. 한국 측 협정안에 대한 주재국 측의 수정안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1973.11.16. 내부건의을 통해 캐나다와 동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함.
  - ※ 캐나다는 한국과 같이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각서교환으로 협정 체결
  - ※ 동 협정은 운항주의에 의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하며 공동경영, 합작 사업, 국제경영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면세 조치
4. 국무회의는 1974.11.12. 동 협정을 심의 의결함.
5. 동 협정은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Allan Joseph MacEachan 캐나다 외상 간에 1974.11.15. 각서를 교환 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20호).

76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한·프랑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74-0688 |

생산연도	1962-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89 / 14 / 1~388p

한·프랑스 간 항공협정을 1974.6.7. 체결함.

1. 외무부는 1962.3.21. 주한 프랑스대사관으로부터 접수한 동 협정 초안을 교통부에 송부하고 의견을 문의함.

※ 교통부는 5.8. 동 협정 체결 교섭을 추진해 줄 것을 외무부에 통보

764

2. 외무부는 1962년 및 1963년 프랑스 측에 교섭을 제의하는 공한을 발송함.

3. 주프랑스대사는 1973.1.8. 주재국 외무성 아주국장과의 면담(1.5) 시 동 국장이 Air France의 한국항로 개설과 KAL기의 프랑스 진출 등을 위한 양국간 항공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제의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 외무부는 1973.1.18. 양국간 항공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므로 주재국 측 제의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시할 것을 주프랑스대사관에 지시함.

5. 교통부는 1973.6.12. 정부 간 교섭에 앞서 양국 항공사 간 사전협의(5.29.~30., 파리) 결과, 항공로 운항제휴에 관해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10.6.부터 서울-파리(북극 경유) 간 화물편 주1회를 운항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6. 한·프랑스 항공회담이 1973.11.5.~7. 서울에서 개최됨.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고충삼 교통부 항공국장대리(수석대표), 외무부 및 교통부 관계관 등

- (프랑스 측) Rober Esperou 민간항공 총사무국 항공운항부국장(수석대표), 동 총사무국 및 외무성 관계관 등

※ 회담결과

- 양측 수석대표가 동 협정안에 가서명

7. 국무회의는 1974.1.15. 동 협정(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심의 의결함.

8. 동 협정은 1974.6.7.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Landy 주한 프랑스대사 간에 서명되어 1974.7.16.자로 발효됨(조약 제508호).

# 한·태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제6조 4항]의 수정

| 74-068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89 / 15 / 1~115p

## 1. 1974.5월 외무부가 작성한 한·태국 간 항공협정 개정회의 참가보고서 요지임.

- ✧ 회의기간 및 장소: 1974.5.14.~15., 방콕
-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천병규 주태국대사(수석대표), 교통부 및 외무부 관계관 등
  - 태국 측: Sirilak Chandrangau 체신성 차관(수석대표), 체신성 및 외무성 관계관 등
- ✧ 주요의제
  - 이원지점 및 수송력 관련 항공협정 개정 문제
- ✧ 한국 측 목표
  - 현행 협정은 한·태국 중간지점을 포함한 항공로만 인정하고 취항 항공기는 220석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현 항공로를 양국 이원(한국 측: 싱가포르, 구주, 태국 측: 미국, 캐나다)으로 연장하고 220석 이하의 취항 항공기 제한 철폐
- ✧ 회의 결과
  - 한국 측의 항공로 확장(방콕 이원-싱가포르 및 구주) 요청에 대해서는 태국 측 사정으로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220석 이하의 취항 항공기 제한은 철폐하기로 합의

## 2. 외무부는 1974.5.15. 한·태국 항공협정회의에서 양 정부간 항공기 좌석수 제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합의, 이를 확인하는 각서를 주재국 측과 교환할 것을 주태국대사관에 지시함.

- ✧ 주태국대사관은 11.13. 주재국 측이 외상 명의 각서(11.12.)를 송부해 옴을 외무부에 보고
- ✧ 외무부는 11.18. 한국 측 회답각서를 주재국 측에 발송할 것을 주태국대사관에 지시
- ✧ 주태국대사는 11.26. 동 대사 명의 회답각서를 주재국 측에 전달하였음을 보고

## 3. 외무부는 1974.12.3. 상기 양국 항공협정 개정회의의 합의에 따라 항공수송력 합의사항(1972.1.4.)이 각서교환으로 수정되어 1974.11.26.자로 발효됨을 교통부에 통보함.

## 한국(대한항공) · 짐바브웨(AIR Rhodesia) 간의 항공운송계약 해약, 1974.7.15.

| 74-069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89 / 16 / 1~27p

1. 외무부는 1974.6.3. 짐바브웨(구 로데시아) 문제 관련 아래 요지의 교통부 앞 공문을 통해 대한항공이 Air Rhodesia와의 항공운송 계약을 해약토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줄 것을 요청함.

- ※ 유엔 안보리 결의 제253호(1968년) 제6항은 유엔회원국의 항공회사는 짐바브웨 내의 여하한 항공사와도 여객 또는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
- ※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Interline Agreement Manual 에 의하면 Air Rhodesia와 각종 운송계약을 체결한 항공사 명단에 대한항공이 포함
- ※ 유엔사무총장은 1974.5.13. 주유엔대사 앞 공한을 통해 상기 안보리 결의를 상기시키면서 동 계약 종결에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고 가급적 그 결과를 2개월 내에 알려줄 것을 요청

2. 교통부는 1974.7.4. 대한항공이 7.15.부터 동 계약 해지 조치를 취함을 외무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74.7.10. 대한항공의 상기 해약통보 내용을 유엔사무총장에게 통보할 것을 주유엔대사에게 지시함.

## 북한 · 제3국가 간 항공협정 체결관계

| 74-069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조약1
MF번호	J-89 / 17 / 1~18p

1. 교통부는 1974.8.26. 최근 외신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라크, 이집트, 시리아, 미얀마(구 버마), 오스트리아와 항공운송분야에서 협정 체결함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동 협정 내용을 수집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1974.9.11. 동 협정문 등 구체적 내용을 가능한 한 수집, 보고토록 관련 재외공관에 지시함.

- ※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9.11. 주재국 항공사와 북한 항공사 간 상호 업무대행 협조를 위한 General Sales Agency Agreement 및 Interline Traffic Agreement를 체결했음을 보고
- ※ 주랑군총영사관은 9.13. 북한은 미얀마와 항공협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General Sales Agency Agreement에 합의한데 불과함을 보고
- ※ 주카이로총영사관은 9.19. 주재국 항공사와 북한 항공사 간 General Sales Agency Agreement 및 Handling Agreement 체결에 합의하였을 뿐이며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은 가진 바 없음을 보고

76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일본·대만(구 자유중국) 간 항공노선 운항 중지, 1974.4.21.

| 74-0692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J-89 / 18 / 1~53p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 및 주일본대사관이 1973~74년 중 일본·대만 간 항공노선 운항 중지와 관련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 1. 주대만대사관 보고(1973.6.13.)

- ※ 주재국 주요 신문은 일본 측이 중국(구 중공)과의 민간항공협정 체결 교섭을 위해 대만과의 기존 항공노선(타이베이-동경)을 타이베이-나고야 등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제의에 대하여 주재국 관계당국은 일본 측의 제의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도함.

## 2. 주대만대사관 보고(1973.7.14.)

- ※ 주재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중국과의 민간항공협정 체결을 교섭함에 있어 중국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경우 주재국은 CAL기의 일본 이착륙 및 통과 권리를 포기하는 동시에 JAL기의 주재국 이착륙은 물론 비행정보구역 통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재국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표명함.

## 3. 주대만대사관 보고(1974.1.21.)

- ※ 항공문제 교섭차 1.15. 주재국을 방문한 이다가키 일본 교류협회 이사장(전 주대만 일본대사)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1.19. 귀국하였으며, 주재국은 기존의 강력한 입장을 동 이사장에게 표명하였다고 함.

## 4. 주대만대사관 보고(1974.3.4.)

- ※ 대만을 방문 중인 이다가키 이사장은 3.2 주재국 측과의 항공문제 교섭에서 JAL기 이외의 항공기가 타이베이에 취항하는 문제 등은 받아드릴 여지가 있으나 예컨대 CAL에 대만이라는 두 글자를 추가 표시하는 문제는 대만의 국위를 손상케 하는 문제이므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6. 주대만대사관 보고(1974.4.22.)

- ※ 일본·중국 민간항공협정 체결(4.20.) 관련 주재국 외교부장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만의 국위와 권리를 손상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대만 정부는 4.20. 16시를 기해 일본·대만 노선을 단절하며 일본 항공기가 대만 관할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국제민간항공법 및 대만 관계규정에 따라 의법 조치하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 7. 주일본대사관 보고(1974.4.22.)

- ※ 대만의 일본·대만 노선 정치 성명 관련 오히라 일본 외상은 4.20. 기자회견에서 동 노선은 재개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대만 정부의 조치는 쌍방에 불행한 일로서 동 사태를 냉정히 받아드리고 대처할 것임을 언급함.

# 일본·중국(구 중공) 항공협정 체결. 전2권 (V.1 기본문서)

| 74-0693 |

생산연도	1972-1974
생산과	동북아1/동북아2
MF번호	J-89 / 19 / 1~335p

외무부가 1974.5월 작성한 일본·중국(구 중공) 간 항공협정 체결과 관련된 자료임.

## 1. 체결 경위

- ※ 양국은 1972.9.29. 국교수립 시 동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도록 합의한 이래 수차례의 예비교섭과 정치적 절충을 거친 후 1974.4.20. 북경에서 항공협정 서명

## 2. 협정 내용

- ※ 일본 측 항로: 동경-일본내 다른 1지점-상해 또는 북경-뉴델리, 봄베이, 카라치 중의 1지점-아테네 또는 구주 내 다른 1지점 등
- ※ 중국 측 항로: 북경-중국 내 다른 1지점-오사카 또는 동경-급유를 위해 착륙하는 1지점-밴쿠버-오타와 또는 캐나다 내 다른 1지점 등
- ※ 운항 횟수: 추후 양국 항공당국이 협의하여 결정

## 3. 협정 체결을 둘러싼 일본·대만(구 자유중국) 관계

- ※ 대만은 일본의 대중국 교섭안 중 CAL기의 청천백일기는 국기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마크로 본다는 등의 방침이 대만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반발
  - 일본·중국 항공협정 서명일인 1974.4.20. 타이베이-동경 노선 폐쇄, 일본 항공기의 대만 FIR(비행정보구역) 통과 금지 등 조치

## 4.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 상기 대만의 조치로 인해 타이베이-동경 노선을 JAL(주 37회), CAL(주 21회)이 취항치 못하게 됨에 따라 대한항공 등 제3국 항공회사가 이익을 보게 됨.
- ※ 대만은 CAL 예약 승객(약 1천명)을 대한항공에 인계하고 대한항공이 타이베이-동경 노선 증편을 신청할 경우 허가 시사
- ※ 일본·중국 간에 정기항로가 개설되면 특히 일본기 및 중국기의 비행항로와 한국 FIR 및 영공과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 5. 한국 FIR 통과와 관계

- ※ 일본기의 경우: 일본에서 상해로 갈 경우 직선항로는 한국 FIR 남단을 통과하게 되며, FIR의 성격상 FIR 상공비행은 허가의 대상이 아니지만 통보 의무가 있으나 대구 관제국과 상해 관제국 간 통신시설이 없으므로 한·일본 간, 일본·중국 간 협의 필요
- ※ 중국기의 경우: 북경에서 일본으로 갈 때 직선항로에 가깝게 북한 상공을 경유하더라도 한국 FIR을 통과하게 되며, 가능성이 많지 않으나 만약 중국이 한국 FIR 통과를 요청했을 경우 안보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결정
- ※ 캐나다기, 미국기 등의 중국 취항 시: 한국 FIR 통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국제정치, 민간항공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안보상의 문제점이 없는 경우 적극적인 대책 검토 필요

# 일본·중국(구 중공) 항공협정 체결. 전2권 (V.2 신문기사철)

| 74-0694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동북아1/동북아2
MF번호	J-89 / 20 / 1~116p

1. 본 문서철에는 일본·중국(구 중공) 항공협정 체결 동향 관련 일본, 미국 및 한국 언론기사가 수록되어 있음.

## 2. 동 언론기사를 중 한국 언론기사의 주요제목은 아래와 같음.(예시)

- ✿ 일·중공 민항협정 20일 조인(1974.4.15., 중앙일보)
- ✿ 일본 경유 서울-대북선 운항중단(1974.4.17., 중앙일보)
- ✿ 일·중공 항공협정 20일에 조인(1974.4.18., 조선일보)
- ✿ 중공항로 한국이 길목(1974.4.19., 한국일보)
- ✿ 일·중공 항로 한국통과 안해(1974.4.20., 조선일보)
- ✿ 대만, 대일 항로 폐쇄(1974.4.21., 조선일보)
- ✿ 중공행 JAL기 한국통과 희망(1974.4.23., 동아일보)
- ✿ 항공방위구역 대만까지 확대(1974.4.28., 조선일보)



## 한·미국 간의 국제우편환 교환협정 체결 교섭

| 74-0695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경제협력
MF번호	J-89 / 21 / 1~12p

1. 체신부는 1974.3.8. 한·미국 간 우편환 업무 개설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동 업무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주미국대사관은 1974.3.15.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US Postal Service의 Harrison 우편환협정담당관은 주재국의 동 협정에 대한 최종 입장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사무실과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동 사무실과 연락하여 입장을 확정해 추후 연락해 줄 것을 약속함.
3. 외무부는 1974.3.18. 상기 주미국대사관의 보고내용을 체신부에 통보함.

77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한 · 핀란드 간의 사증면제협정

| 74-0696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89 / 22 / 1~181p

한 · 핀란드 간의 사증면제협정을 1974.2.18.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함.

## 1. 주요 골자

-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사증없이 입국하여, 핀란드 국민은 한국에서 계속하여 60일, 한국 국민은 북구 4국에 입국한 일자로부터 90일간 체류할 수 있음.
- ※ 사증의 면제는 양국의 입국 및 거주에 관한 국내법으로부터의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님.
- ※ 양국은 원치않는 인물의 입국 및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짐.

772

## 2. 동 사증면제협정의 의의

- ※ 동 협정의 체결로 한 · 핀란드 양국 국민은 여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국의 우호관계 및 이해증진에 기여함.

## 3. 교섭경위

- ※ 1969년 정부는 북구 3국과의 사증면제협정 체결 교섭시 주스웨덴대사관을 통하여 핀란드 측의 의사를 타진한 바 공식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거절된 바 있음.
- ※ 1972.5월 주핀란드통상대표부 설치 이후 동 대표부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여타 북구지역 국가의 협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협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함.
- ※ 주핀란드통상대표부를 통하여 핀란드 측과 교섭을 진행함.
- ※ 1973.8월 한 · 핀란드 외교관계 수립후 교섭이 진전되어 1974.1.10. 협정문에 대하여 최종합의를 봄.

4. 동 협정은 1974.2.8.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4.2.18. 각서 교환으로 체결, 1974.3.1.자로 발효됨 (조약 제495호).

# 한 · 독일 간의 사증면제협정

| 74-0697 |

생산연도	1959-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0 / 1 / 1~352p

한 · 독일 간 사증면제협정을 1972.11.17. 각서교환의 형식으로 체결함.

## 1. 주요 골자

- ✪ 한국 국민은 비영리 목적으로 3개월 미만 동안 사증없이 독일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음.
- ✪ 독일 국민은 비영리 목적으로 6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사증없이 체류할 수 있으며, 30일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자제없이 허가를 받게 됨.

## 2. 동 사증면제협정의 의의

- ✪ 동 협정 체결로 한 · 독일 양국 국민은 여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국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함.

## 3. 교섭 경위

- ✪ 한국과 독일 간의 1961.9.22자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이 독일 측의 사정으로 폐기됨.(폐기일자: 1972.1.1.)
- ✪ 정부는 한국과 독일 간 양국민 간의 빈번한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독일과 사증면제협정을 위한 교섭을 가짐.

4. 동 협정은 1972.10.11.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1972.11.17. 양측의 각서교환으로 체결, 1974.1.24. 자로 발효됨(조약 제489호).

# 한·그리스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 74-069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0 / 2 / 1~90p

한·그리스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1974.5.15.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함.

## 1. 주요 골자

- ※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의 입국사증을 상호면제함.
- ※ 그리스 측의 제안각서와 한국 측의 회답각서로서 협정이 체결되며, 한국 측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함.

774

## 2. 동 사증면제협정의 의의

- ※ 동 협정의 체결로 한·그리스 양국의 외교관과 공무원(가족 포함)들의 부임·출장 등에 따르는 입국 절차의 복잡성을 배제,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양국간 교류관계 증진에 기여함.

## 3. 교섭 경위

- ※ 1973.5.3. 주한 그리스대사(일본 상주)가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구두로 제의함에 대하여 한국 측은 원칙에 동의함.
- ※ 1973.12.18. 그리스 정부로부터 주한 그리스대사관을 통하여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 공무원의 입국 체류 사증면제협정을 공문으로 제의해 옴.
- ※ 그리스 측의 제의에 대하여 한국 측은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외교관 및 관용여권소지자(가족 등 포함)에 대하여 사증을 면제할 것을 수정 교섭하여 협정문안에 합의함.

## 4. 동 협정체결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진행됨.

- ※ 1974.3.25. 외무부가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요청
- ※ 1974.4.9. 외무부가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 1974.4.19. 국무회의가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동 협정은 1974.4.19.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1974.5.15.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 (조약 제502호).

# 한 · 온두라스 간의 문화협정

| 74-0699 |

생산연도	1965-1974
생산과	조약/공보문화
MF번호	J-90 / 5 / 1~173p

한 · 온두라스 간 문화협정을 1970.12.15. 체결함.

## 1. 주요 골자

- ※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상호간 상대방국의 문화, 역사 강좌 등 개최
- ※ 상호간 문화기관의 설치 촉진
- ※ 국민 상호간의 관광여행의 장려

## 2. 동 문화협정의 의의

- ※ 동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 · 온두라스 양국의 전통적인 친선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함.

## 3. 교섭 경위

- ※ 주멕시코대사관(온두라스 겸임)이 1965.2.26. 문화협정의 초안을 온두라스 측에 제시함.
- ※ 주멕시코대사는 1970.6.14. 겸임국 순방차 동국을 방문하여 수도인 테구시갈파에서 외무부장관서리와 본협정 문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함.

## 4. 동 협정은 1970.8.11.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1970.12.15. 서명, 1974.4.1. 비준서 교환으로 동일자 발효됨(조약 제499호).

77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한·인도 간의 문화협정

| 74-0700 |

생산연도	1968-1974
생 산 과	조약/공보문화
MF번호	J-90 / 6 / 1~214p

한·인도 간 문화협정을 1974.8.12. 체결함.

## 1. 주요 골자

- ✧ 예술, 문화, 과학, 교육, 보건, 마스크, 체육, 언론분야에서의 협력
- ✧ 예술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 및 교환
- ✧ 학생, 및 과학자에 대한 장학금 및 편의제공

776

## 2. 동 문화협정의 의의

- ✧ 동 협정 체결로 양국간의 문명, 문화를 상호교류함으로써 이 분야에서의 상호발전 및 국민간의 이해증진과 우의를 돈독히 함.
- ✧ 1973.12월 인도와의 공식적인 외교관계 수립 이후의 동 협정체결은 기존우호관계를 강화시키는 기초가 됨.

## 3. 교섭 경위

- ✧ 1969.1.11. 정부의 대중민국 외교 강화책의 일환으로 중립국의 영도적 위치에 있는 인도와 문화협정 체결을 제의
- ✧ 1973.12.10. 한·인도 간의 외교관계 수립을 기하여 협정체결 교섭이 급진전되어 인도 측은 한국 측에 협정초안 작성을 공식적으로 요청
- ✧ 한국 측은 1974.5.24.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협정문안을 주인도대사에게 송부하면서 적극적인 교섭
- ✧ 양측 안을 보완, 절충하여 최종문안에 합의

4. 동 문화협정은 1974.8.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4.8.12. 서울에서 서명,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12호).

# 한 · 터키 간의 문화협정

| 74-0701 |

생산연도	1966-1974
생산과	조약/공보문화
MF번호	J-90 / 7 / 1~186p

1972.8.4. 한 · 터키 간 문화협정을 체결함.

## 1. 주요 골자

- ✿ 출판물 및 예술작품의 교환, 교수 및 학생의 교환 등 양국의 문화 및 지적교류의 증진

## 2. 동 문화협정의 의의

- ✿ 동 협정 체결로 양국의 기존 우호관계 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에 대한 우호증진책에 기여함.

## 3. 교섭 경위

- ✿ 1966.6.23. 주터키대사대리가 터키 외무부에 문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여 원칙적인 합의를 봄.
- ✿ 1968.1.20. 주터키대사가 한국 측 초안을 터키 외무부차관에게 정식 제의함으로써 초안에 대한 교섭이 진행됨.
- ✿ 한 · 터키 양국은 1972.6.5. 협정문안에 관해 최종합의를 함.

4. 동 협정은 1972.6.20.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2.8.4. 터키 앙가라에서 서명, 1974.5.3.자로 발효됨 (조약 제500호).

# 한 · 우루과이 간의 문화협정

| 74-0702 |

생산연도	1965-1974
생산과	조약/공보문화
MF번호	J-90 / 8 / 1~202p

한 · 우루과이 간 문화협정을 1971.5.14. 체결함.

## 1. 주요 골자

- ※ 전문과 8개조로 구성
- ※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의 강좌 설치(1조), 학자, 과학자 등의 상호교환(2조), 상호간 문화기관의 설치(3조), 학위 상호 인정(4조) 등

778

## 2. 동 문화협정의 의의

- ※ 한·우루과이 간 체결되는 최초의 협정
- ※ 양국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강화에 기여

## 3. 교섭 경위

- ※ 한국은 1964.10.7. 우루과이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동국과의 문화교류 증진을 위하여 1965.2월 주브라질대사관을 통하여 동국과의 문화협정 체결 교섭을 지시함.
- ※ 1966.7월 몬테비데오에 한국의 상주대사관을 개설함에 따라 주우루과이대사관으로 협정의 체결교섭을 이관하여 교섭을 추진함.
- ※ 1971.1월 우루과이 측과 협정문안에 합의함.

## 4. 동 협정은 1971.5.14. 우루과이에서 서명, 1974.9.13.자로 발효됨(조약 제513호).



## 한 · WHO(세계보건기구) 간의 기본협정

| 74-0703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0 / 9 / 1~182p

한 · WHO(세계보건기구) 간 체결한 기본협정의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는 1973.3.15. WHO 당국이 1961년 체결한 한국 정부와 WHO 간 기본합의서의 일부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과학기술처와 보건사회부에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함.

※ WHO 수정 제의는 기본협정의 근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형식 및 표현상의 문제임.

2. 외무부는 1973.7.26.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기술자문원조 규정을 위한 기본협정”을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기본협정”으로 수정, 대체하고자 법제처의 의견을 문의함.

※ 법제처는 동 내용이 국내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상에 있어서는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

3. 동 협정 개정안은 1974.3.2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4.4.11.자로 발효됨(조약 제501호).

779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74

# 한 · 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건설중인 시설을 위한 보조약정 부속규정

| 74-070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0 / 10 / 1~37p

1. 과학기술처는 1974.5.13.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제안한 보조약정 부속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보내오면서 조약체결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주기를 요청함.

※ IAEA 주요 제안 내용

- 건설 중인 핵시설에 관한 설계자료 통보 및 안전조치 적용
- 핵시설의 건설 진행 상황 보고
- 설계 자료 및 보고에 따른 핵시설 건설 여부 확인을 위한 1회 이상의 검사
- 핵물질의 최초 투입 시 통보 등

780

2. 외무부는 1974.6.3. 한국 측이 “IAEA 안전조치 보조약정 추가 규정” 설정 제안을 수락키로 하였음을 IAEA 측에 통보하도록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지시함.

※ 주오스트리아대사는 6.14. 이를 공한으로 통보하였음을 보고

# 한·프랑스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 74-0705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조약
MF번호	J-90 / 11 / 1~149p

한·프랑스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을 1974.10.19. 체결함.

## 1. 과학기술처는 1973.11.26. 외무부 앞 공문에서 한·프랑스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를 취하여 주기를 요청함.

### ※ 협정의 주요 내용

- 목적, 협력분야, 방법, 평화적 목적을 위한 이용 등

### ※ 교섭 경위

- 1973.8월 과학기술처가 프랑스 CEA(원자력위원회)에 협정 초안을 발송

- 1973.9월 과학기술처장관의 프랑스 방문 시 양측이 교환각서 형식의 협정 체결에 합의

- 1974.2월 한국 측이 프랑스 측 각서를 접수

## 2. 외무부는 1974.5.23. 동 협정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추어 부처 간의 협력을 약속하는 문서가 아닌 정부 간의 조약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정부 간 협정 체결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과학기술처에 송부함.

## 3. 동 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가 진행됨.

※ 1974.9.27. 국무회의 심의

※ 1974.10.15. 대통령 재가

## 4. 동 협정은 1974.9.27.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1974.10.19.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 (조약 제516호).

## 한·인도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교섭

| 74-070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J-90 / 12 / 1~40p

한·인도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을 교섭함.

1. 과학기술처는 1974.1.28. 외무부 앞 공문에서 인도와 원자력분야 협력협정 추진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인도 측이 송부해 온 제안을 검토한 결과 양국간 협정체결이 한국의 원자력연구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추진을 위해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는 1974.3.12. 과학기술처에 한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미국, 캐나다와의 관계, 특히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미국 간의 협정 및 한국과 캐나다 간의 협정과 의 상충 여부를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회신함.
3. 과학기술처는 1974.4.30. 제18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인도 정부 간 협력협정 문안을 외무부에 송부하면서 동 협정체결 절차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외무부는 1974.5.30. 동 협력협정안 제2조 등의 표현을 수정한 안을 인도 측에 제의하도록 하는 의견을 과학기술처에 송부함.
5. 동 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는데 있어 1974.5.18. 실시된 인도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됨.

# [1973년도]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미국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

| 74-0707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0 / 13 / 1~184p

1. 주미국대사는 미 국무부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1972.11.24. 서명, 1973.3.18. 발효)의 일부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여 왔음 1973.7.18. 외무부에 보고함.
  - ※ 동 개정 제안은 미국 정부가 가능한 한 미국의 외국에 대한 핵연료 공급 약속을 협정으로 묶는 것을 피하고 미국산 핵연료를 우선적으로 미국 내 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미국은 일본, 호주 및 구주 각국에도 유사한 제안을 한 바 있다고 함.
  - ※ 외무부는 상기 미국의 제안을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상공부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함.
2. 과학기술처는 1973.10.10. 개정안 제3조의 핵연료농축계약 한도량을 5,000MW로 하고 협정 유효기간을 35년으로 하는 검토의견을 외무부에 보내움.
3. 주미국대사관 담당관은 1973.11.21. 미 국무부 원자력국 부국장을 면담, 한국 측 대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요청함.
  - ※ 미국 측은 12.7. 한국 측 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함.
4. 과학기술처는 1973.12.12. 상기 미국 측 수정안을 수락하면서 동 협정의 유효기간을 41년으로 하는데 동의하는 의견을 외무부에 보내온바, 외무부는 이를 미국 측에 통보함.
5. 주미국대사관 관계관과 미 국무부 원자력과 담당관은 1974.3.1. 국무부에서 한·미국 원자력협정 개정문에 가서명함.
6. 주미국대사와 미 국무부 차관보는 1974.5.15. 미 국무부에서 동 협정 개정문에 서명함.
7. 주미국대사관이 1974.5.21. 동 개정협정 발효에 필요한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를 미국 측에 통보하고 미 국무부가 1974.6.26. 미국 측 국내절차 완료를 한국 측에 통보함에 따라 동 협정 개정은 1974.6.26.자로 발효됨(조약 제506호).

# 한·일본 간의 농업공동연구계획 수행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74-0708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조약/경제조사
MF번호	J-90 / 14 / 1~195p

한·일본 간 농업공동연구계획 수행을 위한 기술협력협정을 1974.6.7. 체결함.

1. 일본 정부는 1973.8.21. 한·일본 농업연구계획을 위한 기술협력협정 체결을 한국 측에 제의함.

2. 양측은 상호 수정안 제의를 통해 1974.3.14. 최종 합의에 도달함.

※ 동 협정의 주요 내용

- 농업생산향상을 위한 협력(전문)
- 수도, 전작물 및 산지작물에 관한 연구, 계획 협력(제1조)
- 일본 정부의 비용으로 장비, 기계 등 제공(제3조)
- 한국 정부는 일본 전문가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청구 부담(제5조)

3.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가 진행됨.

- ※ 1974.4.8. 외무부가 법제처의 검토의견 요청
- ※ 1974.4.23. 국무회의 심의 통과

4. 동 협정은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간에 1974.6.7.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  
(조약 제504호).

# PL480호 제1관에 의한 한·미국 간의 농산물 도입협정 2차 개정

| 74-0709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경제협력
MF번호	J-90 / 15 / 1~25p

1. 주미국대사는 1974.11.27. 미국 농무부 관계관으로부터 받은 비공식 정보로 미국 정부가 수일 내에 쌀 60,000M/T PL480(1) 지원문제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주한 미대사관에 지시할 것임을 보고함.
2. 외무부는 경제기획원의 요청에 따라 1974.12.2. 주미국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함.
  - ※ 쌀 60,000M/T PL480(1) 협정이 1973년도 협정분 중 PA 미발급분 100.2백만 달러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1974년도 협정계획분인 154백만 달러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잔액의 처리방안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할 것.
3. 주미국대사는 PL480의 쌀 60,000M/T 도입을 위한 미국 측의 교섭지침은 주한 미국대사관 및 USAID (국제개발처)에 발송되었음을 보고함.
  - ※ 기체결되어 있는 CY73 농산물 협정 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이며 동 협정은 쌀 60,000M/T을 공급함으로써 종결하는 방향으로 지시된 것으로 탐문됨.
4. 경제기획원은 1973년도 미공법 제480호 제1관에 의한 농산물 도입협정에 대하여 당초 현미 140,000M/T을 현미 60,000M/T으로 수정 도입하기 위한 개정 협정이 1974.12.7. 체결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한·스페인 간의 수산협력 협정

| 74-0710 |

생산연도	1972-1975
생산과	조약
MF번호	J-91 / 1 / 1~286p

한·스페인 간 수산협력협정을 1974.2.28. 체결함.

### 1. 한·스페인 간 수산협력을 위한 실무자회의가 1972.11.24.~27.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됨.

※ 한국 측 수석대표

- 수산청 어업진흥관

※ 협의 내용

- 양국간 수산협력에 관한 7개항에 대한 스페인 측 입장을 타진하고 냉장고 합작투자, 간이선박수리소 설치, 뱀장어 양식, 선원건강관리, 신수품 보급창고, 어업차관 제공, 기술협력부문 등에 관해 원칙적인 합의 도출

### 2. 1973.5.27.~31. 서울에서 개최된 한·스페인 경제협력 실무회의에서 양측은 한·스페인 수산협력협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함.

※ 동 협정의 주요 내용

- 수산업 분야의 협력(1조)

- 과학기술교류, 경제협력(2조)

- 어선, 출입항의 편의(3조)

- 수산협력공동위원회 설치(5조)

### 3. 동 협정은 1974.2.28.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호세 아구아도 주한 스페인대사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496호).



# 한·뉴질랜드 간의 한국 내 육우시범목장 설치를 위한 각서교환

| 74-071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조약/경제조사
MF번호	J-91 / 2 / 1~209p

1. 외무부는 1974.2.8. 한·뉴질랜드 간 한국 내 육우시범목장 설치사업을 위하여 뉴질랜드 측이 제시한 협정안을 농수산부, 재무부, 상공부에 통보하면서 검토를 요청함.
2. 농수산부는 1974.3.19. 외무부에 한·뉴질랜드 간 한국 내 육우시범목장 설치를 위한 교환각서가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는 뉴질랜드 측이 제시한 협정안에 대한 한국 측 수정안을 1974.4.3.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에 제시하고, 주뉴질랜드대사에게 뉴질랜드 정부의 의견을 타진토록 지시함.
  - ※ 이에 대해 동 대사는 뉴질랜드 측이 동 협정안 제9항의 권한위임 등 경미한 사항 외에는 이의없다는 반응을 보였음을 보고
4. 동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가 진행됨.
  - ※ 1974.5.28. 법제처가 외무부에 검토의견 회신
  - ※ 1974.6.4. 국무회의 심의
  - ※ 1974.6.11. 대통령 재가
5. 동 협정은 1974.6.15.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Dunlop 주한 뉴질랜드대사대리 간의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1974.4.1. 소급 발효됨(조약 제505호).

# 한·월남 간의 농업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수정, 1974.2.28. 및 3.5.

| 74-071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1 / 3 / 1~15p

1. 재월남 농업기술단의 증원 및 파월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한국 측이 월남 측에 "한·월남 간의 농업 기술협력에 관한 협약"(1973.3.24)을 각서교환 형식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함.

✿ 수정 내용

- 제3조(농업기술단 인원을 16명에서 20명으로 증원)
- 제9조(유효기간을 1973.1.1.~74.12.31.로 연장)

788

2. 동 협약은 유양수 주월남대사와 Vuong Van Bac 월남 외무장관 간의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1974.3.5자로 발효됨.

## 한 · 그리스 간의 무역협정

| 74-0713 |

생산연도	1963-1974
생 산 과	조약/통상2
MF번호	J-91 / 4 / 1~324p

한 · 그리스 간 무역협정을 1974.10.4. 체결함.

**1. 주이탈리아대사(그리스 겸임)는 1966.3월 그리스 독립기념일(3.26)을 맞아 그리스를 방문하여 그리스 외무차관 등과 양국간 무역협정 체결에 관해 협의함.**

✪ 그 이후 그리스 정부는 주한 그리스대사관(동경 상주)이 한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교섭을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한국 측에 알려옴.

**2. 외무부는 1966.12.16. 주일본대사에게 그리스 측이 제시한 협정안이 한국 전매청의 그리스산 엽연초 구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리스 측이 이를 철회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지시함.**

✪ 이와 관련 주일본대사관 관계관이 그리스 측을 접촉, 한국 입장을 설명한 데 대해 그리스 측은 엽연초에 관한 합의없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임.

**3. 주한 그리스대사(동경 상주)는 1972.4.5.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그리스산 엽연초 구입조건을 철회 하는 각서를 보내왔으며, 5.10. 외무부 통상국장을 면담하여 무역협정 체결을 논의함.**

**4. 한 · 그리스 간의 무역협정이 1974.8.8. 주일본대사와 주한 그리스대사 간에 가서명됨.**

**5. 동 협정은 1974.9.24.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4.10.4. 노신영 외무부장관대리와 Chrysanthopoulos 주한 그리스대사 간에 서명,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14호).**

78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전

# 한·인도 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 협정. 전2권 (V.1 1968-72)

| 74-0714 |

생산연도	1968-1974
생 산 과	조약/통상1
MF번호	J-91 / 5 / 1~271p

## 1. 윤석현 외무부차관의 1971.10.10.~16. 인도 공식 방문 시 한·인도 양국은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체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함.

※ 동 협정은 경제 및 기술협력분야에서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호혜주의원칙에 비중을 두고 있음.

## 2. 외무부는 1972.4.24. 상공부에 인도와의 무역역조 시정 및 양국 교역 확대를 위해 현행 한·인도 무역협정을 개정하고자 검토 중임을 통보하면서 주뉴델리총영사관이 제기한 최저 무역고 설정, 특정 상품 수출입 보장안 강구 등에 관한 상공부의 의견을 문의함.

※ 상공부는 인도는 부분적으로 국영무역을 시행하나 우리는 민간업계에서 무역을 행하므로 최저무역고 설정이 의미가 없음을 회신함.

## 3. 정부는 1972.6.24. 한·인도 간의 교역 긴밀화 및 경제기술분야에서의 상호협력 추진을 위해 인도와 무역진흥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함.

※ 동 협정안은 현행 무역약정을 약간 수정하여 경제협력조항을 추가하고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담고 있음.

※ 주뉴델리총영사는 동 협정안을 7.12. 인도 외무부에 전달함.

# 한·인도 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 협정. 전2권 (V.2 1973-74)

| 74-0715 |

생산연도	1968-1974
생 산 과	조약/통상1
MF번호	J-91 / 6 / 1~205p

1. 외무부는 1973.3.6. 경제기획원, 상공부, 재무부에 한·인도 무역약정 개정, 경제협력조항을 삽입한 새로운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고자 인도 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인도 측 대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2. 인도 통상부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인도 통상사절단이 방한, 1973.4.27.~28.간 한국 측과 교섭한 바, 무역약정 개정안에 경제기술협력 조항 추가는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고, 내용 구체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과 통상사절단 파견 등 수출 증대 문제, 새우어업 공동개발을 위한 어업 협력 등을 협의함.
3. 윤석현 외무부차관과 방한중인 조지 인도 상공차관은 1973.11.22. 통상진흥 및 경제기술협력협정에 가서명함. 동 협정은 전문과 본문 11개 조문 및 교역상품을 열거한 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 최혜국 대우 부여, 경제협력 및 합작사업의 증진, 기술자 및 기술의 상호교류와 양국 정부 간의 연례 협의회 개최 등을 규정함.
4. 1974.2.8.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동 협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5. 주인도대사는 1974.2.25. 인도 정부는 협정의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종료하였음을 통보하고 인도 상무부는 뉴델리에서 서명하기를 희망, 이를 위해 한국 측 대표를 초청함을 보고함.  
\* 주한 인도대사관은 2.28. 상공부차관의 인도 방문을 초청하는 구상서를 송부
6. 동 협정은 1974.8.12. 서울에서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스와란 싱 인도 외교장관 간에 서명,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11호).

## 한·라오스 간의 무역 및 기술협력 협정 체결 교섭

| 74-071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1/동남아
MF번호	J-91 / 7 / 1~51p

한·라오스 간의 무역 및 기술협력 협정 체결을 교섭함.

1. 외무부는 1974.1.17. 라오스와의 무역 및 기술협력 협정 체결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주라오스통상 대표부 총영사에게 지시함.
2. 주라오스총영사는 1974.1.29. 라오스 외무부 정무국장을 면담한바, 동 국장은 동 협정 체결 제의를 환영하면서 라오스 재무차관 접촉을 권유함.  
\* 동 차관은 양국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동 제의를 환영하면서도 북한으로부터 여사한 제의가 있을 경우에는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을 언급함.
3. 외무부는 1974.3.6. 동 협정 체결을 위한 한국 측 초안을 주라오스통상대표부에 송부, 라오스 측과 교섭토록 지시함.
4. 주라오스총영사는 1974.3.19. 라오스 경제기획담당 국무상에게 동 협정 초안을 전달함.  
\* 동 국무상은 푸마 라오스 수상의 협정 체결에 대한 허락을 받았음을 알려온 바, 동 총영사는 가능하면 연정 수립 이전에 동 협정 체결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함.
5. 주라오스총영사는 1974.4.5. 라오스 연정이 금명 간에 수립될 상황으로 연정 수립 이전에 동 협정이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함.
6. 주라오스총영사는 1974.4.30 라오스 경제부 상역국장을 면담, 동 협정에 관해 논의함.

## 한·스웨덴 간의 고무장화류 쌍무협정

| 74-0717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J-91 / 8 / 1~101p

한·스웨덴 간 고무장화류 쌍무협정을 각서교환 형식으로 1974.11.20. 체결함.

### 1. 스웨덴 외무부 통상실 국장은 1974.3.16. 주스웨덴대사에게 한국산 고무장화의 수입급증에 대해 잠정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통보하고 양국간 정식 협의를 희망함.

※ 주스웨덴대사는 스웨덴 정부가 협의없이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함.

### 2. 외무부는 1974.3.18. 주스웨덴대사에게 스웨덴 측이 1967년 무역의정서에 규정된 서면통보 없이 국내법 및 국내절차를 이유로 일방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은 명백한 협정위반으로 스웨덴 측에 공식 협의 요청을 통보하도록 지시함.

※ 스웨덴 외무부 통상실 국장은 3.18 주스웨덴대사에게 긴급수입제한조치 발표는 일단 보류하였으나 무역청 고시문이 각계에 배포된 상황임을 설명하고 무역의정서 제3항의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에 관해서는 검토 예정임을 언급함.

### 3. 한·스웨덴 양국은 1974.5월 스톡홀름에서 교섭을 진행함.

※ 한국 측은 스웨덴의 일방적 규제조치에 항의하고, 스웨덴 측이 제시한 연간 쿼터량 500,000족은 수락할 수 없으며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최소한 과거 스웨덴 측 총계인 755,000족은 되어야 함을 주장함.

※ 이에 대해 스웨덴 측이 최종선으로 600,000족을 제시함.

### 4. 한국 측은 1974.6.4. 스웨덴 측이 제시한 쿼터량 600,000족에 동의하고 경과조치분 포함을 주장함.

※ 이에 대해 스웨덴 측이 10.25. 쿼터량 600,000족과 경과조치분(96,000족) 포함을 제시함.

### 5. 외무부는 1974.11.19. 주스웨덴대사에게 스웨덴 측 제안을 수락하고 합의사항에 서명하도록 지시함.

※ 동 협정은 1974.11.20. 스톡홀름에서 서명되고 동일자로 발효됨.

# 한(대한상사중재협회) · 미국(미국중재협회) 간의 상사중재협정 체결, 1974.12.1.

| 74-0718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1 / 9 / 1~12p

## 1. 대한상사중재협회는 1974.12.30. 외무부에 미국중재협회와 중재를 통한 상사분쟁의 우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 · 미국 상사중재협정을 체결하였음을 알려줌.

- ※ 동 협정의 체결로 한 · 미국 간의 무역계약에 있어서 협정에 따른 중재조항을 명시할 경우 중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으므로 활용을 권장함.
- ※ 동 상사중재협정은 1974.11.13. 뉴욕에서 미국상사중재협회장과 대한상사중재협회장 간에 서명되고 1974.12.1. 발효됨.

794

## 2. 대한상사중재협회는 1973.10.26. 일본과 중재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영국의 런던중재재판소와는 중재협정문안에 이미 합의하고 인준절차가 진행 중임.

- ※ 기타 국가의 중재기관과도 순차적으로 중재협정을 체결 계획임.



# 한 ·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간의 인구계획에 관한 협정

| 74-0719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조약
MF번호	J-91 / 10 / 1~349p

한 ·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간의 인구계획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 1.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대표단이 1972.10.23.~11.1. 방한, 한국의 가족계획사업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함.

- ※ 동 보고서에 의하면 UNFPA는 1973년도에 12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1,4백만 달러의 원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동 원조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한 · UNFPA 인구계획협정안을 제시함.
- ※ 과학기술처는 1973.1.29. 동 협정안에 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 2. 과학기술처는 1973.11.29. 한 · UNFPA 인구계획협정이 관계부처 및 UNDP(유엔개발계획)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취하여 주기를 요청함.

- ※ 동 협정문의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가 진행
  - 1974.2.19. 법제처 심사
  - 1974.3.12. 국무회의 심의 통과

## 3. 동 협정이 1974.3.21. 노신영 외무부장관대리와 Salas UNFPA 사무국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498호).

# 한·중남아프리카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74-0720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조약/경제협력
MF번호	J-91 / 11 / 1~192p

한·중남아프리카 간 경제기술협력협정과 무역협정을 체결함.

1. 주한 중남아프리카대사(동경 상주)는 1973.3.6. 한국 측에 한·중남아프리카 간 경제기술협력협정안과 무역협정안을 제시함.

2. 외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973.3.14. 한국 측안을 작성함.

3. 양국은 **뽀또로 중남아프리카 외상의 방한 기회를 활용하여 1973.3.21. 경제기술협력협정과 무역협정에 가서명함.**

※ 경제기술협력협정의 주요 내용

- 양국간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투자증진, 자본 등 상호교류 촉진을 위한 조치(제1조)
- 중남아프리카 요청사업을 위한 협력(제4조)
- 한국 기업의 대중남아프리카 투자, 사업에 대한 중남아프리카 정부의 보호(제5조)

※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제1조)
- 교역품목에 대한 부표에 따른 무역거래 원칙(제2조)
- 관세 및 과세의 면세(제5조)

4. 동 협정은 1973.5.10.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뽀또로 중남아프리카 외상이 경제기술협력협정과 무역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무역협정은 동일자로 발효(조약 제480호)되고, 경제기술협력협정은 1974.2.13. 비준서의 교환으로 발효됨(조약 제492호).**

# 한·프랑스 간의 기술초급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구성

| 74-0721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조약
MF번호	J-91 / 12 / 1~26p

프랑스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기술초급대학이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4년제 공과대학(아주대학)으로 변경됨.

## 1. 경위

- ※ 1971.12.23. 한국과 프랑스 간 기술초급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1973.4.12 수원에서 기술대학이 정식 개교함.
- ※ 한국 정부는 2년제 초급대학을 4년제 공과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이 운영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1973.8월 협정 개정안을 작성함.
- ※ 외무부는 1973.11.19.~24. 서울에서 개최된 한·프랑스 혼성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프랑스 측과 협의함.
  - 12.1. 외무부가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제안 각서를 송부, 프랑스대사관은 1974.10.15. 이에 동의함으로써 기존 협정에 개정 내용을 부속서 첨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함.

## 2. 부속서 주요 내용

- ※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항에서 초급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변경, 새로운 대학 명칭을 "한·프랑스 아주공과대학"이라고 함.
- ※ 프랑스 정부는 동 대학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파견 및 74~77 회계연도 동안에 250만 프랑에 달하는 운용 자금 제공 등 협력 제공을 약속함.

# 한·독일 간의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확충 사업을 위한 각서 교환

| 74-0722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조약/경제조사
MF번호	J-91 / 13 / 1~173p

한·독일 간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확충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를 1974.7.9. 교환함.

## 1. 경위

- ※ 고려대학교는 1971.12월 농과대학 발전계획 제1차 집행계획서(1972~76년도)를 작성하고 1972.4월 주한 독일대사관에 농과대학 확충(농화학과, 식품공학과)을 위한 기자재 구입 자금으로 2억8천만 원(약 80만 달러/200만 마르크 상당)에 달하는 독일 정부의 무상원조를 신청함.
- ※ 1972.4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한·독일 경제협의회에서 동 사업 지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함.  
- 독일 정부는 1973.2월 Göttingen대학 교수를 서울에 파견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후, 사업 성공을 위하여서는 대학이 신청한 액수의 3배 정도인 600만 마르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
- ※ 1973.10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독일 경제회담에서 700만 마르크를 지원키로 합의함.

## 2. 각서 교환

- ※ 독일 정부는 1974.5월 고려대학교 지원에 관한 약정안을 한국 측에 제시함.
- ※ 동 약정안은 1974.7.9.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Sarrazin 주한 독일대사 간의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07호).

# 한·독일 간의 산림녹화사업을 위한 약정 각서 교환

| 74-0723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조약/경제조사
MF번호	J-91 / 14 / 1~86p

한·독일 간 산림녹화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를 1974.7.31. 교환함.

## 1. 경위

- ※ 독일 정부는 1974.5월 한국 정부의 산림녹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약정안을 한국 측에 제시함.

## 2. 약정 내용

- ※ 5년 기한으로 총 4백만 마르크 정도의 전문가 파견, 장비 제공, 한국 장학생 독일 유학 제공 등 7개 조항  
- 산림 관리 개선 및 재목 생산, 토지 침식의 방지 및 수자원을 위한 산림가치의 제고를 목표로 함.

## 3. 약정 체결

- ※ 동 약정은 1974.7.31.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Sarrazin 주한 독일대사 간의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 (조약 제510호).

79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한·독일 간의 정밀기계기술 센터에 관한 각서 교환

| 74-0724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조약
MF번호	J-91 / 15 / 1~67p

한·독일 간 정밀기계기술센터에 관한 합의각서를 1974.11.4. 교환함.

## 1. 경위

- ※ 독일 정부는 1973.10.25. 서울에서 개최된 한·독일 경제회담에서 한·독일 정밀기계기술센터 건립을 지원키로 약속함.
- ※ 독일 측은 1974.6월 동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약정안을 주한 독일대사관을 통하여 한국 측에 제시함.

800

## 2. 약정 내용

- ※ 독일의 전문가 파견, 약 140만 마르크 상당의 정밀기계 제공, 그리고 한국 기술자의 독일 훈련 등 6개 조항으로 구성됨.

## 3. 약정 체결

- ※ 동 약정은 1974.11.4.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Sarazin 주한 독일대사 간의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 (조약 제518호).

# 한·일본 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각서 교환

| 74-0725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조약/경제조사
MF번호	J-91 / 16 / 1~170p

일본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금오공업고등학교 제3차 연도(1973~74년) 지원 관련 내용임.

## 1. 경위

- ※ 1971.8.28. 한·일본 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71년부터 연도별로 원조금을 지원함.
- ※ 일본 정부는 제3차 연도 원조금 지원을 위하여 한국 정부에 약정안을 제시함.

## 2. 약정 내용

- ※ 실습 설비와 교육자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7개 조항으로 구성됨(총 10억8,700만 엔 상당).

## 3. 약정 체결

- ※ 동 약정은 1974.2.6.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간의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490호).

# 한·일본 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시설 지원에 관한 약정

| 74-0726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조약/경제조사
MF번호	J-92 / 1 / 1~291p

일본 정부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시설 지원 관련 내용임.

## 1. 경위

- ※ 문교부는 서울대학교 10개년 종합 발전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과대학 설비확충을 위하여 1972.3.27. 일본 정부 해외개발특별원조 자금 사용 신청서를 주한 일본대사관에 제출함.
  - 정부는 9.18. 동 사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처 인사들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시설개선 추진 위원회를 구성함.
- ※ 한국 정부는 1973.3.23. 일본 정부에 동 사업 조사단 파견을 요청함.
  - 동 조사단이 4월 내한하여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서울대학교도 5월에 조사 요원을 일본에 파견함.
  - 한국 정부는 방한 조사단과 협의 후에 1974~76년간 1,500만 달러 원조를 신청함.

## 2. 약정 내용

- ※ 일본 정부는 1974.12.6.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하여 8개 조항의 약정안을 한국 측에 송부함.

## 3. 약정 체결

- ※ 동 약정은 1974.12.27.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간의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23호).



# 한·월남 간의 한·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약정의 개정

| 74-0727 |

생산연도	1969-1974
생산과	조약
MF번호	J-92 / 2 / 1~196p

한국 정부가 월남에 대한 경제원조의 일환으로 건립한 한·월 의료원 건립과 운영에 관한 약정 및 동 약정 개정 관련 내용임.

## 1. 의료원 건립 경위

- ※ 한국과 월남 정부는 1969.5월 티우 월남 대통령 방한 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주월 한국군 의료원 건립을 합의하였으며, 1969.11.14. 양국간에 한·월남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약정에 가서명함.
  - 250개 병상 규모의 진료 및 월남 보건부 의료요원 훈련을 담당할 국가기관으로 건립
  - 한국은 2.45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 지원(장비는 미국 제공)
  - 1970년에 착공하여 1971년에 준공되었으나 개원은 1974.2월에 이루어짐.
- ※ “한·월남 의료원 건립과 운영에 관한 약정”은 1974.1.30. 주월남대사와 월남 외상 간의 각서교환을 통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491호).

## 2. 약정 개정

- ※ 정부는 기 체결된 약정에 명기된 원조액(2,455백만 달러)이 공사비 증가 등으로 부족하여 원조액 증가가 불가피하자 원조액 변경 내용(약 40만 달러 증가)을 담은 약정 개정안을 1974.2.6. 월남 측에 제시하여 상호 합의함.
- ※ 동 개정 약정은 1974.11.9. 유양수 주월남대사와 Vương Văn Bac 월남 외상 간의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21호).

## 독일 주재 외국 외교공관 직원에 대한 재판관할권

| 74-072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2 / 3 / 1~16p

1. 독일 국회는 1974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독일 주재 외교관에 대한 재판관할권 관련 조항을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도록 결정함에 따라 1974.4.1 발효하는 신법과 구법 사이에 차이가 발생함.
2. 주독일대사관은 1974.5.3. 독일 외무성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구법 간 차이점을 표기한 비교표를 외무부에 보고함.

# 1961년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이행에 대한 한국의 관행

| 74-0729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조약
MF번호	J-92 / 4 / 1~32p

1. UN Working Group of the Committee on Relations with the Host Country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3조 1, 2항(면세)의 규정에 관한 각국의 상이한 적용 실태 및 일반 관행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를 1974.4.16. 및 6.11. 회원국에 회람함.
2. 주유엔대표부는 1974.7.23. 외무부에 유엔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한국의 실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10.2. 주유엔대표부에 한국의 실태 자료를 송부함.

# 외교 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

| 74-0730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J-92 / 5 / 1~35p

외무부 조약과에서 작성한 주한 외교공관, 주한 외국군의 특권면제 및 재외공관의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임.

## 1. 보건사회부는 1973.12.21. 공포되는 국민복지연금법의 시행령 제정에 있어 국민복지연금법 적용 사업장에 주한 외국기관을 포함, 이에 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 ※ 검토 의견

- 외국기관 중 외교공관이 주재국 국민을 고용할 경우에는 주재국 사회보장 규정이 부과하는 제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SOFA(주둔군지위협정)에 의거하여 처리됨.

## 2. 주호주대사관은 1974.4.10. 외무부에 호주 정부가 비엔나협약 제23조에 따라 외국 공관에 대하여 수도료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와 용역 수수료 및 요금을 면제해 주었으나,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각종 용역 수수료 및 요금을 부과하며, 간접적 수의 부문에 대하여는 호혜적으로 면제할 것을 제의하여 왔음을 보고하면서 한국의 관행을 문의함.

### ※ 검토 의견

- 서울시는 오물 수거료, 유료도로 통행료 및 급수 사용료를 징수함.
- 내무부는 취득 재산세 및 목적세는 과세 대상이 되나, 해당국이 한국 공관에 대하여 상응한 혜택을 부여할 경우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용역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함.

## 3.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 중인 고용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동 공관에 소환장을 발송하는 절차에 관해 문의함.

### ※ 검토 의견

-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관에 직접 소환장을 전달할 수 없으며, 외무성을 통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일정한 관행은 없으며 외무성이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음.
- 가장 좋은 방법은 우편을 통하여 공관에 전달하는 것임.

# ILO(국제노동기구) 한국 가입 문제

| 74-0731 |

생산연도	1971-1974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J-92 / 8 / 1~122p

한국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에 관한 내용임.

## 1. 정부는 1955.8월 이래 수차례 ILO 가입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제반 사정으로 가입 신청서 제출은 보류함.

- ☛ 정부는 가입을 위하여 계속 노력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회원국의 지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판단 되는 시기까지 가입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 ☛ 1974년 한국은 ILO를 제외한 모든 유엔전문기구에 가입함.

## 2. 북한이 1973년도에 유엔전문기구인 WHO(세계보건기구) 및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 가입함에 따라 ILO 가입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자, 정부는 동 기구가 남북한 가입을 일괄적으로 처리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 하에 1974.6월 제59차 ILO 총회에서 가입을 본격 추진하게 됨.

- ☛ 정부는 4월 국무회의에서 ILO 가입 문제를 심의함.

## 3. 외무부는 1974.5.2. 주제네바대사에게 한국의 단독가입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남북한 동시가입 일괄처리 방식에 따른 가입을 추진키로 한 정부 방침을 통보하고 사무국과 우방국 관계자를 접촉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토록 지시함으로써 가입 추진이 공식화됨.

- ☛ 주제네바대사는 북한의 가입서 신청에 대비하여 미리 가입신청서를 준비, 북한 움직임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며 5.17. 북한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 총회에서 ILO가입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무국 및 우방국 대표들이 보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한국 가입, 1974.3.18. 전3권 (V.1 1970-72)

| 74-0732 |

생산연도	1970-1974
생 산 과	국제경제/조약
MF번호	J-92 / 9 / 1-233p

정부는 1974.3.1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서 채택된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에 가입함.

## 1.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추진 배경

- ※ 면직물 교역은 장기 면직물 협정(Long Term Arrangement)을 통한 자율 규제를 하였으나, 비면직물의 교역은 양자적 차원에서만 처리되었을 뿐 전직물류 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은 없었음.
- ※ 미국 · 일본 간에 진행 중인 섬유류 수출 자율규제가 타결될 경우 EEC(유럽경제공동체) 지역에 대한 일본 섬유 수출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EEC 내에서 섬유 수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됨.
- ※ 1971.4월 GATT 임시 총회에서 캐나다 대표가 섬유류 수출 규제를 위한 작업반 설치를 제의함.

## 2. 직물류 국제교역 현황 검토를 위한 실무작업반 회의 설치 및 운영

- ※ 1972.5.23. 개최된 비공식회의에서 GATT 사무총장은 양자간 협상을 통하여 다루어져 온 직물 무역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GATT 내에 실무작업반 설치를 제의함.
  - 한국은 처음에 이를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전체적 분위기에 따라 소극적으로 수용함.
- ※ GATT 이사회는 6.27. 모든 섬유류의 수출 규제에 관한 실무작업반 설치를 결의함.
  - 제1차 실무작업반 회의가 7.10. 개최되어 회원문제, 검토대상, 자료수집, 연락관 지정 등을 논의함.
- ※ 정부는 9월 제2차 회의 및 12월 제3차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국의 직물류 수출이 외화획득 수단이 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면서 동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도록 훈령함.
  - 실무작업반 회의는 사무국이 수집한 자료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며, 보고서를 1973.1월 GATT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함.

#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한국 가입, 1974.3.18. 전3권 (V.2 1973.1-7)

| 74-0733 |

생산연도	1970-1974
생 산 과	국제경제/조약
MF번호	J-92 / 10 / 1~403p

정부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서 채택된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에 1974. 3.18. 가입함.

## 1. 직물류 현황 검토를 위한 실무작업반 회의

- ※ 1973.2.15. 개최된 직물류 주요 수출입 12개국 비공식 회의에서 GATT 사무총장이 제기한 후속조치 방안을 협의함.  
- 실무작업반의 임무를 두고 선진 수입국과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 수출국이 직물류 일괄처리 문제를 두고 대치하자 중재안으로 첫째, 문제점 확인 및 검토, 둘째, 다자간 해법 모색이 제시됨.
- ※ 정부는 대표단에 보낸 훈령에서 직물류 일괄 처리 반대,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 개선 등을 지시함.

## 2. 실무작업반의 협상그룹으로의 변경

- ※ 실무작업반회의가 1973.5.2. 및 6.4.~5. 개최되었으나 선개도국 간 입장 차이로 아무런 결과 없이 종료됨.
- ※ 실무작업반회의가 1973.6.25.~29. 개최되어 규제 대상 품목을 섬유류 전체로 확대하지 않고 교섭을 통해 한정하기로 하는 등 다자협정의 윤곽을 작성함.
- ※ 정부는 외무부, 상공부, 섬유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실무작업반회의에 파견하여 한국 입장을 적극 표명함.
- ※ 1973.7.30. 개최된 GATT 이사회가 실무작업반을 각 협상그룹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7.31. 개최된 실무작업반회의가 각 협상그룹의 작업 일정을 채택함(10.10.~12.3.간 3차례 회의).

#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한국 가입, 1974.3.18. 전3권 (V.3 1973.8-74.9)

| 74-0734 |

생산연도	1970-1974
생 산 과	국제경제/조약
MF번호	J-92 / 11 / 1~598p

정부는 1974.3.1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서 채택된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에 가입함.

## 1. 직물협상 회의 개최

- ※ 제1차 회의(1973.10.10.~12), 제2차 회의(1973.11.5.~9), 제3차 회의(1973.12.3.~7) 후 회의 기간을 12.20.로 연장한 끝에 최종안을 채택함.
- 협정명: Agre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Textiles
- 발효일시: 1974.1.1. (4년간 유효)
- 협정구성: 전문, 17개 조항 및 부속서 2항

## 2. 정부대표단 파견

- ※ 대표단 구성
  - 주제네바대사(수석대표) 외 관련부처 고위실무자들
- ※ 대표단 훈령
  - 본 협상 진전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하여 선진국 측이 협정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입장 표명을 유보
  - 인조섬유와 Filament 규제 제외, 최소 연간 쿼터 증가율 보장, 협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가급적 단기화, 긴급수입제한조치 절차 개선, 시장교란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입장 표명
- ※ 대표단 활동
  - 1973.10.22. 협정 초안 작성 및 회람
  - 1973.10.29. 수정안 제출
  - 제2차 협상회의에서 후진수출국 간 공동보조 추진을 제외하고 3차례에 걸친 비공식회의 개최

## 3. 정부의 후속조치

- ※ 정부는 1974.1.25. 주제네바대사 명의로 동 협정안 잠정가입 의사를 표명함.
- ※ 동 협정은 주제네바대사가 1974.3.18. 서명함으로써 동일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497호).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부속서 개정

| 74-0735 |

생산연도 | 1973-1974

생산과 | 국제기구

MF번호 | J-93 / 1 / 1~87p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부속서 개정 관련 내용임.

## 1. ICAO 사무국은 이사회의 협약 부속서 일부 개정안 채택 결정사항 및 항공안전 등 각 분야 분과위원회 회의 개정 권고안을 각 회원국에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함.

- ✧ 1973.11.9. 협약 부속서6
- ✧ 1973.12.19. 협약 부속서9
- ✧ 1973.12.31. 협약 부속서2, 6, 10, 11, 14
- ✧ 1974.4.4. 협약 부속서17
- ✧ 1974.4.8. 협약 부속서8, 16
- ✧ 1974.5.21. 협약 부속서2, 6

## 2. 교통부는 채택된 개정 부속서 내용과 국내 규칙이 관행과 일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외무부에 통보함.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제56조 개정에 관한 의정서 한국 가입, 1974.12.19.

| 74-0736 |

생산연도	1971-1977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3 / 2 / 1-81p

정부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제56조 개정에 관한 의정서에 1974.12.19. 가입함.

## 1. ICAO협약 제56조 개정 내용

- ✿ 제56조에 규정된 항공위원회 위원 수를 12인에서 15인으로 증가
  - 제18차 ICAO 총회에서 1971.7.7. ICAO 협약 제56조를 개정하는 의정서를 채택
  - ICAO 회원국 및 이사국 수의 증가, 동 위원회 활동의 양적, 질적 증대, 지리적 배분 등 고려

812

## 2. 한국의 가입 절차

- ✿ 1972.1.21. 국무회의 심의
- ✿ 1972.2.25. ICAO 사무총장에게 비준서 기탁
- ✿ 1974.12.19.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616호)

# WTO(세계관광기구) 규정 한국 가입, 1974.11.1.

| 74-0737 |

생산연도	1969-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3 / 4 / 1~296p

정부는 WTO(세계관광기구) 규정에 1974.11.1. 가입함.

## 1. WTO 규정 채택 경위

- ※ IUOTO(국제관설관광기구)는 1969.5.15.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전권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WTO 규정을 심의, 합의하였고 1970.9.29. 멕시코 IUOTO 특별총회에서 동 규정을 공식 채택함.  
- IUOTO는 WTO로 변경, 제네바에 임시 사무국

## 2. 한국의 가입

- ※ 정부는 1957.11.8. IUOTO에 가입하였으며, WTO 규정에 따라 서명, 비준함으로써 자동적으로 WTO의 정회원국이 될 수 있음.
- ※ 정부는 1971.11.2. 국무회의 심의와 1972.11.28. 비상 국무회의 동의를 거쳐 1973.1.12. WTO 규정 승인서를 스위스에 기탁, 1974.11.1. 한국에 대하여 발효함(조약 제522호).
- ※ 정부는 동 승인서를 기탁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별도 선언을 행함.  
-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본 규정의 승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또는 정부로 승인하지 않은 영토 또는 집단의 승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의미하거나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교육·과학 및 문화적 자재 수입에 관한 협정 한국 가입 검토

| 74-073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조약/국제기구
MF번호	J-93 / 5 / 1~145p

정부는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교육·과학 및 문화적 자재 수입에 관한 협정 가입을 검토함.

## 1. UNESCO 교육·과학 및 문화적 자재 수입에 관한 협정

- ※ 1950.6.17. 제5차 UNESCO 총회에서 채택되어 1952.5.21. 발효됨.
- ※ 전문과 18개 조항 및 5개 부속서와 부속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4.5월 현재 66개국 이 동 협정에 가입함.
- ※ 회원국 간의 교육·과학 및 문화적 자재의 국제적 소통을 용의하게 함으로써 각 회원국의 교육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함.

814

## 2. 한국의 가입 검토

- ※ 1974.4.30. 문교부의 가입 요청에 따라 가입 관련 관계부처의 의견을 문의한 결과, 재무부가 수입품 관세 면제에 관하여 이견을 표명하고 관세면제 유보를 선언할 것을 주장함.
- ※ 외무부는 일반적 유보는 협정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된 것이며, 현재 70개 가입국 중에서 유보를 행한 국가는 하나도 없으며 가입을 설득하였으나, 재무부가 국내 산업보호 등 이유로 유보 선언을 고집함에 따라 가입 절차를 위한 국무회의 상정이 연기됨.

#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 한국 가입, 1974.10.9.

| 74-0739 |

생산연도	1969-1975
생산과	조약/국제기구
MF번호	J-93 / 6 / 1~273p

정부는 1974.10.9.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에 가입함.

## 1. 협정 내용 및 경위

- ※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은 1970.7월 핵과학 기술에 관한 조사 및 훈련을 위한 지역적 협력을 토의하기 위한 회의를 방콕에서 개최함.
- 동 회의 참가국 대표들은 IAEA 사무국이 마련한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 협력협정안에 합의함.
- 동 협정안은 국제원자력기구 후원 하에 아시아지역 회원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공동연구, 개발 및 정보교환과 기타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을 촉진 및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 IAEA 사무국은 1972.8월 동 협정안을 관련 회원국에 송부함.

## 2. 한국의 가입

- ※ 외무부는 1972년 IAEA 사무국으로부터 동 협정안을 접수하고 가입 여부를 검토함.
- ※ 과학기술처는 1972년부터 동 협정 가입을 외무부에 요청하였으나, 외무부는 동 협정 가입 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과학기술처에 요청함으로써 가입이 지연됨.
- 과학기술처가 1974.7.6. 자체 예산확보를 약속함.
- ※ 1972.6.12. 발효한 바 있는 동 협정에 대하여 1974.10.8. 주오스트리아대사의 명의로 IAEA 사무총장에게 수락을 통보, 1974.10.9. 한국에 대하여 발효함(조약 제515호).

#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연장을 위한 의정서 한국 가입, 1974.7.1.

| 74-074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조약/경제기구
MF번호	J-93 / 7 / 1~153p

정부는 1971년 소맥무역협약(Wheat Trade Convention)의 연장을 위한 의정서에 1974.7.1. 가입함.

## 1. 경위

- ※ 영국 런던에서 1974.2.21. 개최된 제68차 소맥이사회 및 협정연장에 관한 정부간 회의는 소맥무역협약(1971년 채택, 1974.6.30. 시효만료)을 1년간 연장하는 의정서를 채택함.
- ※ 소맥무역협약은 공정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수입국에 대한 소맥 공급과 수출국에 대한 소맥시장을 보장하기 위한 한시적인 국제협약으로 수출국 10개국과 수입국 39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1949년도에 처음 채택되어 계속 갱신되거나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있음.

## 2. 한국의 가입

- ※ 노재원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이 1974.2.22. 런던에서 개최된 제68차 소맥이사회 및 협정연장에 관한 정부간 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함.
- ※ 동 의정서는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는바, 정부는 주미국대사에게 의정서 서명 전권을 위임하여 주미국대사가 1974.4.22. 서명함.
- ※ 정부가 6.17. 비준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 1974.7.1. 동 의정서가 한국에 대하여 발효함(조약 제509호).

# 1973년도 국제사탕협정 한국 가입, 1974.10.15.

| 74-0741 |

생산연도	1972-1974
생산과	조약/경제기구
MF번호	J-93 / 8 / 1~297p

정부는 1973년도 국제사탕협정에 1974.10.15. 가입함.

## 1. 협약 채택 경위

- ※ 1972.11.15. 런던에서 개최된 제9차 국제사탕이사회에서 동이사회 의장은 1973년 말에 만료되는 1968년 사탕 협정에 이어 1974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 회원국의 협력을 촉구함.  
- 협정안 작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함.
- ※ 1973.10.13.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협정안 교섭회의에서 수입국과 수출국 간에 “경제적 관계 조항”에 관한 심한 의견대립으로 새로운 협정 체결이 어렵게 됨.  
- 참가국들은 신협정 체결 시까지 현행 협정상 기구인 국제설탕기구를 존속시키며 설탕문제에 관한 국제적 협력과 신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할 목적 하에 현행 협정 규정 중에서 경제적 규정을 제외한 행정적 규정들만으로 구성된 잠정적 성격의 협정을 작성하기로 합의함.

## 2. 한국의 가입

- ※ 한국은 1972.11월 국제사탕기구 회원국이 되어 1973년 새로운 협정안 교섭에 참가함.
- ※ 제네바 회의에서 잠정적 성격의 협정 채택이 합의됨에 따라, 외무부는 주유엔대사에게 협정 서명 전권을 위임하여 주유엔대사가 1973.12.21. 서명, 1974.3.27.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 1974.10.15. 한국에 대하여 동 협정이 발효함(조약 제519호).

# 각국의 영해의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 74-0742 |

생산연도 | 1964-1975

생 산 과 | 국제법규

MF번호 | J-93 / 9 / 1~53p

외무부가 각국 영해의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하여 수집한 자료의 내용임.

## 1. 북미 및 구주지역

※ 미국(1964~74년)

- 1964.5.20. 발효한 영해 및 대륙붕 어업금지법의 내용

※ 캐나다(1974년)

- 캐나다 수산장관이 200마일 영해관할권 설정을 언급한 내용에 관한 AP-Dow Jones 경제뉴스 보도

※ 핀란드(1974년)

- 1974.6.12. 핀란드 외무성이 핀란드 정부가 자국 연안에 특별어로수역을 설정하였음을 외국공관에 통보

## 2.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 사우디아라비아(1974년)

- 사우디아라비아는 1974.4.30. 아라비아 및 홍해 해역에 대한 어로 및 수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자국 영해에 인접한 해역에 대해 어로전관수역을 선포

※ 이집트(1974년)

- 1974.8.24. 이집트 해운성은 이집트 영해 접속수역 항해에 관한 수정된 규정을 외국공관에 통보

※ 카메룬(1974~75년)

- 1974.11월 카메룬 국회가 영해를 18마일에서 50마일로 확장하는 법률안 통과

## 3. 기타

※ 주이탈리아대사관이 FAO(유엔식량농업기구)로부터 입수한 이란, 마다가스카르, 소말리아, 튀니지, 월남 국가들의 영해 또는 어업전관수역 확장 선포



| 74-0743 |

#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 (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1 해양법에 관한 77그룹 회의, 1974.3.25.-4.5.)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3 / 10 / 1~183p

정부는 1974.3.25.~4.5.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해양법에 관한 77개국 그룹회의에 정일영 본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회의개요

- ※ 77그룹회원국 및 기타 개도국 72개국 참가
-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대비한 개도국 공동입장 수립이 목적

## 2. 회의결과

- ※ 군도이론 등 4개분야 원칙적 합의
- ※ 연안국 관할 대륙붕의 범위 등 3개분야 미논의
- ※ 영해의 폭 등 3개분야 미합의

## 3. 종합 분석

- ※ 선진국에 대항하여 연안국의 인접해양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려는 개도국의 주장이 되풀이 되고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보조 필요성은 강조되었으나, 실질적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주요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주장을 양보하려는 의사는 보이지 않음.

## 4. 대표단 활동상황

- ※ 전체 작업반회의 및 아시아그룹 비공식회의 참석
- ※ 해양법에 관한 각국의 주장과 개도국 전체 추세 파악 노력
- ※ 각국 대표와 접촉, 의견 및 정보 교환

## 5. 결론 및 건의

- ※ 상당분야에서 대체적 의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영해, 대륙붕 등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 대립
- ※ 영해, 대륙붕, 경제수역의 성격, 어업 등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실익을 고려한 독자적 입장 형성이 요망되며, 기타분야에서는 대체로 개도국의 공동입장을 가급적 지지하는 방향으로 방침 설정 필요
- ※ 한국도 제3차 카라카스 유엔해양법회의에 대비, 조속한 시일 내 파견대표를 확정, 임명
- ※ 카라카스 회의에서는 해양법 협약 채택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개도 국가와의 우호협조 관계증진 및 수산 분야 등에서의 쌍무적 협력방안 논의 등도 아울러 시행해야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사전준비 요망

| 74-0744 |

#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 (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2 훈령 및 기본입장, 1973)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3 / 11 / 1~113p

820

## 1. 외무부는 1973.10.29.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1974.6.20.~8.29., 카라카스)에 대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함.

- ※ 회의 목적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대비한 한국의 기본입장 형성
  - 해양법 전 분야의 문제점 검토
  - 관계부처 간 의견조정
- ※ 회의 진행
  - 외무부가 해양법회의 개최경위 및 유엔에서의 준비상황, 국제동향과 각국의 입장, 한국의 입장 등에 관해 설명
  - 국방부, 상공부, 보건사회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청취

## 2. 외무부는 1973년에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대비하여 각종 조치를 시행함.

- ※ 학계와의 세미나 개최(1973.11.9.)
  - 1974년도 해양법회의에 있어서의 각 분야별 논제에 관한 의견 청취와 정부 기본입장 형성을 위한 의견 교환
- ※ 윤석헌 외무부차관의 Mckernan 미 국무부 어업담당 특보 면담(11.1.)
  - 양국의 해양정책과 관련된 일반적 문제 협의
- ※ 국내 관계부처에 해양법회의의 주요 논제에 관한 의견 문의(11.26.)
  - 영해, 국제항행,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어업, 해양환경의 보존, 해양의 과학적 조사, 국가 관할권 이원의 심해저 자원 등에 관해 의견 문의
- ※ 대한국제법학회에 해양법 주요 논제에 관한 연구 의뢰(12.7.)
  - 영해의 확정, 영해 내 외국선박의 통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상 어업, 해양환경의 보존, 과학적 조사, 심해저 자원, 분쟁의 해결방법, 잠정적 적용 등에 관해 질의

## 3. 외무부는 1973.11월 제3차 해양법회의와 관련하여 아래 자료를 작성함.

- ※ 개최 계획
  - 절차회의(1973.12.3.~14., 뉴욕)
  - 실질회의(1974.6.20.~8.29., 카라카스(베네수엘라))
- ※ 개최 경위: 제22차~28차 유엔총회 시 논의
- ※ 제1~3분과위원회 회의 준비상황
- ※ 해양법에 관한 주요 국제동향
- ※ 중요 문제점 및 각국의 주장
- ※ 실무작업반 구성

| 74-0745 |

#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 (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3 훈령 및 기본입장, 1974)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조약
MF번호	J-93 / 12 / 1~309p

## 1. 외무부는 1974.5.3. 관련부처 의견을 토대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2회기(1974.6.20. ~8.29., 카라카스)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초안)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 주요 내용

- 영해의 폭은 12해리 지지
- 영해 내 군함 등 특수선박의 통항은 엄격히 규제, 단 국제해협에 있어서는 통과항로를 지정하고 그를 통한 무해통항권 인정
-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불만대 조건: 외국의 입어권 보장,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 인정
-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나 선박의 항행을 제약하는 연안국 통제에는 반대
- 해양의 과학적 조사에 대한 연안국 및 국제기구 통제 주장을 지지
- 심해저 자원에 대한 강력한 국제기구 통제 지지

## 2. 외무부는 1974.5.3. 주베네수엘라대사 등 관계 공관장과 국방부, 상공부 등에 상기 정부의 기본입장을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함.

## 3. 외무부는 1974.6.14.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단에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동 회의는 한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본 훈령에 따라 한국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 ※ 해양법 주요 문제점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 반영 노력
  - 영해, 무해통항과 국제해협, 경제수역, 대륙붕, 어업, 해양환경의 보존, 해양의 과학적 조사, 국제제도 및 국제기구, 기타 분쟁의 강제적 해결 등
- ※ 대표단 활동지침
  - 영해 특히 국제해협 통항문제는 미국과 협조, 국방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하는데 대한 미국 측의 이해와 지지 확보
  - 77그룹의 일반적 주장과 상치되는 한국의 특수입장 표명은 가급적 회피하고 가능한 한 개발도상국들의 일반적 주장을 지지
  - 북한 및 동조국의 한국에 대한 부당한 언동에 대하여는 즉각 반박하는 등 대응조치 시행

## 4. 외무부는 1974.6.26. 주베네수엘라대사에게 국방부의 안보상 우려 의견을 반영하여 국제해협 통항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기초연설에서 이 문제에 관한 한국입장 표명을 보류
- ※ 미국과의 협조에서는 한국이 원칙상 무해통항 주장을 지지하나, 표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용히 미국 입장에 동조할 것이라는 뜻을 미국대표단에 통보

| 74-0746 |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  
(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4 대표단 구성 및 관련조치)

생산연도 | 1973-1974

생 산 과 | 조약

MF번호 | J-93 / 13 / 1~245p

1. 외무부는 1974.5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제2차 회기(1974.6.20.~8.29., 카라카스)에 박동진 주유엔 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송광정 주베네수엘라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2. 외무부는 1974.5월 주미대사관, 주베네수엘라대사관 등 관련 공관에 해양법회의의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함.

- ※ 회의 관계자료 송부
- ※ 주요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통보
- ※ 대표단 체재 협조 지시
- ※ 대표단 내 업무분담 기준통보
- ※ 각국 참가 대표단 명단 파악 지시

3. 외무부 방교국은 1974.6.13. 출입기자단에 아래 브리핑 자료를 배포함.

-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개최경위 및 배경
- ※ 해양법의 주요 문제 및 각국의 주장
  - 영해의 폭, 무해통항과 국제해협, 200해리 경제수역, 대륙붕, 해양환경 보존, 과학적 조사, 국제제도 및 국제기구 등

174-0747 |

#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 (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5 회의경과 및 결과보고)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4 / 1 / 1~173p

외무부는 1974.11.28. 유엔해양법회의 참가대표단의 보고를 기초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2차 회기(1974.6.20.~8.29., 카라카스) 결과를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함.

## 1. 회의 개관

- ※ 1974.6.20.~8.29.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개최
- ※ 한국을 포함한 137개국 대표 참가

## 2. 회의 주요 토의내용

- ※ 영해, 국제해협, 경제수역, 오염방지, 과학적 조사, 심해저 제도

## 3. 회의결과 평가


- ※ 구체적 결론은 없었으나, 각국의 주장이 명확히 부각되어 향후 협약채택 교섭의 기초 작업으로서의 중간적 성과 거양
- ※ 개도국과 선진국, 연안국과 내륙국 간의 이해대립 격화
- ※ 북한은 해양법 문제보다는 정치선전에 중점을 두고, 대체로 제3세계 권익을 옹호하는 중국(구 중공)과 같은 입장을 취함.

## 4. 전망

- ※ 차기회의는 1975.3.17.~5.10. 제네바에서 개최
- ※ 정치적 타협에 의한 일괄처리(package deal)의 형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
- ※ 현재 각 이해그룹 간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차기 회의에서의 협약채택은 기대 곤란

## 5. 대표단 건의사항

- ※ 영해문제
  - 다수국이 영해 12해리 지지
  - 한국 연안 안보를 위한 근거로서 영해선포 요망
  - 영해선포의 시기, 방법 등 관련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 경제수역 문제
  - 대륙붕에 관한 한국입장 고수
  - 원양어업의 보호를 위한 시책 강구 필요
- ※ 해수오염방지 문제



- 한국의 해외취항 선박 보호대책 강구 필요

- 연안해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책 검토

✿ 기타

- 외무부 주관하에 관계부처 및 국내학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연구 검토 요망

| 74-0748 |

#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 (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6 한국대표단 연설문)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조약
MF번호	J-94 / 2 / 1~144p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2차 회기(1974.6.20.~8.29., 카라카스)에서의 한국대표단 발언문 수록

## 1. 송광정 교체수석대표 기조연설(1974.7.2.)

- ※ 연안국인 한국은 해양에서의 이해관계가 자국의 안전보장과 경제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나, 타국의 이익을 완전 무시하면서까지 배타적으로 그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개발도상국 기대에도 부응토록 할 것임.
- ※ 형평의 원칙에 따라 국제해양 질서가 성립되도록 각종 이해관계에 대한 최대한의 조정을 달성시키는 것을 기본목표로 삼음.
- ※ 영해의 폭,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 대륙붕, 심해저 자원개발 국제제도 및 국제기구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표명함.

## 2. 박동진 수석대표의 북한대표단 기조연설(1974.6.28.)에 대한 반박연설(7.2.)

- ※ 북한은 기조연설에서 반제국, 반식민주의 등 정치적 선전을 위주로 발언
- ※ 회의 목적에 무관하거나 평화와 협력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은 삼갈 것을 희망한다고 발언

## 3. 기타 각종 준비회의, 위원회 등에서의 발언(1974.6~8월)

- ※ 제1위원회 및 제2위원회(7.16.~17.)
- ※ 제1위원회(7.31.)

82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74-0749 |

#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 (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7 회의자료 I)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4 / 3 / 1~296p

## 1.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74.7~8월 해양법회의의 관계문서를 수시로 외무부에 보고함.

- ※ 회의일지, 회의운영, 의사규칙, 전체회의 회의록, 각 위원회 회의록 등
- ※ 해양법 문서목록, 연안국 관할 한계, 해양법과 관련된 국가의 법령 등 자료
- ※ 국제해협에 관한 주요동향(제2위원회 비공식 작업문서)
- ※ 주요 문제에 대한 조문안 및 제안설명
- ※ 질의 답변서
  - 영해 및 해협, 해양법 협약의 잠정적 적용, 해양의 과학적 조사
- ※ 미국 등 각국의 주요문제에 관한 견해
  - 연안 해저 자원, 어종, 해양오염

## 2.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74.7.25. 해양법회의의 주요동향을 외무부에 보고함.

- ※ 총 138개 회의참가국 중 115개국 대표가 기초연설
  - 그중 29명은 각료급 인사
- ※ 각국 대표 기초연설 중 해양법 주요문제에 대한 각국의 주장과 동향(괄호속은 주장국가의 수)
  - 영해: 12해리(78), 200해리(12), 기타(4), 입장 불표시(21)
  - 국제해협 통항: 자유통과 지지(24), 자유통과 반대(25), 중도적 입장(25), 입장 불표시(약40)
  - 경제수역: 200해리 배타적 수역 적극 지지(70), 200해리 경제수역 조건부 지지(20), 경제수역 원칙적 반대(7), 입장 불표시(16)
  - 대륙붕: 경제수역(200해리)으로 대륙붕 개념 포용(절대 다수), 실제 대륙붕이 200해리 초과하는 경우, 대륙사면 전체에 대한 관할권 인정(상당수)

## 3.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74.8.5. 해양법회의의 제3위원회 토의 동향을 외무부에 보고함.

- ※ 토의경과
  - 제3위원회의 독자적 성과는 난망시
- ※ 토의내용
  - 해양환경 보존(공해문제): 개도국은 연안국 관할방식, 선진국은 기국주의적 규제 주장
  - 과학적 연구: 개도국은 국가관할 수역은 연안국 규제, 국제수역은 국제기구 관할 주장, 선진국은 영해, 경제수역, 국제해협에 별도의 기준에 따른 단계적 관할 주장
  - 기술이전: 아직 명확한 개념 미확립



| 74-0750 |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  
(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8 회의자료 II, 각국대표단 연설문 :  
가나-미국)

생산연도 | 1973-1974

생 산 과 | 조약

MF번호 | J-94 / 4 / 1~220p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2차 회기(1974.6.20.~8.29., 카라카스) 시 각국 대표의 기초연설문 내용 수록

1. 가나(74.7.2.)
2. 감비아(74.7.11.)
3. 교황청(74.7.12.)
4. 그리스(74.7.8.)
5. 나이지리아(74.7.9.)
6. 네덜란드(74.7.9.)
7. 노르웨이(74.7.2.)
8. 덴마크(74.7.9.)
9. 독일(구 동독)(74.7.2.)
10. 독일(구 서독)(74.7.9.)
11. 라이베리아(74.7.9.)
12. 레소토(74.7.15.)
13. 말레이시아(74.7.10.)
14. 미국(74.7.11.)

82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74-0751 |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  
(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9 회의자료Ⅲ, 각국대표단 연설문 :  
방글라데시-일본)

생산연도 | 1973-1974

생 산 과 | 조약

MF번호 | J-94 / 5 / 1~170p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2차 회기(1974.6.20.~8.29., 카라카스) 시 각국 및 국제기구 대표의  
기조연설문 내용 수록

1. 방글라데시(74.7.3.)
2. 베네수엘라(74.7.12.)
3. 볼리비아(74.7.3.)
4. 소련(74.6.28.)
5. 사이프러스(74.7.12.)
6. 시에라리온(74.7.12.)
7. 스페인(74.7.12.)
8. 아일랜드(74.7.11.)
9. 아이슬란드(74.7.8.)
10. 오스트리아 (74.7월)
11.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74.7월)
12. 유엔 환경프로그램(UNEP)(74.7월)
13. 인도네시아(74.7.15.)
14. 인도(74.7.3. 기조연설, 7.17. 제3위원회 발언문)
15. 일본(74.7.15.)

| 74-0752 |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  
(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10 회의자료Ⅳ, 각국대표단 연설문:  
자마이카 회지)

생산연도 | 1973-1974

생 산 과 | 조약

MF번호 | J-94 / 6 / 1~172p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2차 회기(1974.6.20.~8.29., 카라카스) 시 각국 및 국제기구 대표의  
기조연설문 내용 수록

1. 자메이카(74.7.3.)

2. 베네수엘라(74.7.3.)

3. 캐나다(74.7.29.)

4. 케냐(74.7.2.)

5. 콩고(74.7.3.)

6. 파키스탄(74.7.10.)

7. 페루(74.7.11.)

8. 핀란드(74.7월)

9. 필리핀(74.7.8.)

10. 호주(74.7.2. 및 7.11. 제1위원회 발언문)

11. 피지(74.7.4.)

829

대한민국외교자료해제집

1974

#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 (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V.11 회의자료 V, 각국대표단 명단)

| 74-0753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4 / 7 / 1~168p

유엔사무국이 배포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제2차 회기(1974.6.20.~8.29., 카라카스)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 명단 수록

## 1. 참가국

※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기에, 부탄,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 미얀마(구 버마), 부룬디, 벨라루스, 캐나다, 칠레, 중국(구 중공),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쿠바, 사이프러스,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베냉(구 다호메이), 북한, 예멘,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감비아, 독일(구 동독), 독일연방공화국,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아이티, 교황청,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코트디부아르, 자메이카, 일본, 케냐, 캄보디아(구 크메르),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말타,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멕시코, 모나코, 몽골, 모로코,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한국, 월남,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태국,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소련,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영국, 카메룬, 탄자니아, 미국,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사모아(구 서사모아), 예멘,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잠비아

## 2. 국제기구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IMO(국제해사기구),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LO(국제노동기구), WHO(세계보건기구), WMO(세계기상기구)

## 3. 정부간기구

※ 영연방, EC(구주공동체), 미주개발은행, 아랍연맹, 아프리카단결기구, 미주기구

## 4. 기타 비정부기구

※ 국제상공회의소 등 다수

##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 대한 주요국가 입장

| 74-0754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조약
MF번호	J-94 / 8 / 1~145p

외무부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1974.6.20.~8.29., 카라카스) 관련 수집한 자료임.

1. 유엔해양법회의가 1973.12.3. 발족됨에 따라 각 국가들은 자국 이해 도모를 위하여 사전 준비회의를 개최, 자신들의 주장을 표명하였음. 쟁점 사항은 영해 범위, 접속수역의 성질 및 범위, 대륙붕, 어업 및 공해의 어업자원 보존 등임.
2.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해양법소위원회의가 1974.1.7. 동경에서 개최되어 해협 통과 항해, 내륙국의 권리와 이해문제, 대륙붕, 경제수역 등 토의 주제를 채택하여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함.
3. 미개발 내륙국 및 지리적 불리 국가 26개국이 1974.6월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해양법회의에 대비한 회의를 3.20. 우간다에서 개최하여 결의문(The Kampala Declaration)을 채택함.  
※ 내륙국 및 지리적 불리국의 해양에 대한 무제한의 접근 권한 등 주장
4. EEC(유럽경제공동체) 집행위원회가 각료회의에 권고한 제3차 해양법회의에 임하는 공동입장의 내용임.  
※ 영해의 폭원, 해양오염, 항해의 자유, 어업의 권리, 해양 자원의 개발 등에 관한 입장
5. 제3차 해양법회의에 임하는 국가들의 영해, 경제수역 등 쟁점 이슈에 관한 입장 등에 관한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임.  
※ 호주, 싱가포르, 스페인, 태국, 월남 등의 입장

83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해양에 관한 4개 제네바 협약

| 74-0755 |

생산연도	1958-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94 / 9 / 1~133p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1958.2.24.~4.26., 제네바)에서 채택된 해양에 관한 4개 제네바 협약 내용임.

## 1.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 ※ 3개장 총 32개 조항으로 이루어짐.
- ※ 주권국가의 영해 및 접속 수역에 대한 관할권 인정, 영해에 대한 제한, 무해통항권 등을 규정함.

832

## 2. 공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High Seas)

- ※ 총37개 조항으로 이루어짐.
- ※ 공해의 정의,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 등 권리, 내륙국의 권리, 선박에 대한 국적 부여, 군함의 공해에서의 관할권 면제, 공해에서의 안전 확보, 공해에서의 충돌 등 사고 시 처벌 등을 규정함.

## 3. 어업과 공해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Fishing and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 ※ 총22개 조항으로 이루어짐.
- ※ 모든 체약국 국민의 공해에서의 어업권 향유 및 해양자원 보존 노력 의무 부과, 체약국의 의무 등을 규정함.

## 4. 대륙붕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 ※ 총15개 조항으로 이루어짐.
- ※ 대륙붕의 범위, 연안국의 권리 등 대륙붕과 관련된 제반 권리 의무를 규정함.

## 5. 해양에 관한 4개 제네바 협약 채택 시 부수적으로 채택된 결의안

- ※ 공해에서의 핵실험이 자유항해권을 침해함을 인정하고 동 문제를 총회에 회부함.
- ※ 공해에서의 방사성물질 투기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IAEA(국제원자력기구)로 하여금 체약국의 해양에서 방사성 물질 투기를 통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공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규제체제를 수립할 것을 권유함.

# 대만(구 자유중국)의 해양정책

| 74-075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J-94 / 10 / 1~25p

대만(구 자유중국) 정부의 대륙붕 석유탐사 추진 관련 내용임.

## 1. 대만 행정원 신문국은 1970.10.15. 동중국해 대륙붕 5개 구역에서 석유탐사가 진행 중임을 발표함.

※ 제주도 남부 해역으로부터 남쪽으로 대만해협에까지 걸쳐 있으며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섬 해역도 포함

## 2. 정부는 대만 정부가 발표한 지역에서의 석유 부존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주대만대사관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함.

- ※ 1974.12.21. 개최된 중국석유학회 연차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 대만연해 대륙붕의 지질구조로 보아 대량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존재
  - 시추 지역 범위는 24만 평방미터로 총 7개 지역에서 시추
  - 6개 지역은 중국석유공사가 미국석유회사와 합작하여 시추하고, 1개 지역은 석유공사 단독 시추

83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

| 74-0757 |

생산연도	1970-1974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J-94 / 11 / 1~60p

제3차 해양법회의(1974.6.20.~8.29., 카라카스)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 내용임.

### 1. 영해의 범위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일본의 입장

- ※ 한국 정부가 주일본대사관을 통하여 탐문한 일본 정부의 입장
  - 영해의 범위에 관해 일본 정부는 기존 국제법상 3해리를 존중하나, 대다수 국가들이 12해리를 선호하면 이를 수락한다는 입장
- ※ 일본 언론들의 일본 정부 입장에 관한 보도
  - 1974.3.3. 마이니치신문은 1974.6월 개최될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영해가 12마일로 결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방위성은 확대되는 해공 방위구역과 인접국(소련)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고 보도
  - 1974.4.23. 일본경제신문은 일본 정부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
  - 1974.5.9. 이후 일본 언론들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등 쟁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도
- ※ 일본 외무성 해양법본부의 검토자료
  - “제3차 해양법회의의 경위와 그 문제점”이라는 제명의 내부 검토자료
  - 제3차 해양법회의의 경위, 특징 및 핵심 쟁점(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 대륙붕, 국제해협, 해저자원개발, 해양오염, 과학문제)에 대한 논의 동향 정리

### 2. 대륙붕 개발에 관한 협력

- ※ 한국, 일본 및 대만 3개국 민간단체로 구성된 해양개발연구연합위원회는 1970.12.21. 일본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3개국이 친선우호의 정신과 상호협조의 태도로 해양자원의 조사, 연구 및 개발의 기획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

| 74-0758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조약
MF번호	J-94 / 12 / 1~192p

제3차 해양법회의(1974.6.20.~8.29., 카라카스)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 내용임.

### 1. 미국 정부의 입장

- ※ 존 무어 미국 대통령부특사가 1974.3.14. 하원 청문회에서 해양법 주요 쟁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언급
- ※ 미국 국무부가 1974.4.15. 발간한 Bulletin에 미국 정부가 작성한 협정안(경제수역, 해저자원, 어업,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오염 방지, 해양 과학 탐사, 해양법의 잠정적 적용, 강제 분쟁 해결) 및 입장 설명서 수록
  - 영해 12해리 조건부 지지, 국제해협에서의 무해통항권 보장, 접속수역에서의 어종별 어업 규제, 대륙붕 200마일 등

### 2. 기타 자료

- ※ 미국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발간 자료
  - 자료명: The Preparations for the Law of the Sea Conference
  - 내용: 해양법 회의의 쟁점 사안별 협상 동향 설명

83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파라셀 · 스프라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 74-075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2
MF번호	K-12 / 2 / 1~158p

파라셀(Paracels) · 스프래틀리(Spratly) 군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내용임.

## 1. 분쟁 지역 개요

- ※ 파라셀 군도는 남중국해에 위치한 군도로서 월남 중부 지역에서 약 250마일, 중국 해남도에서 약 175마일 거리에 위치한 암초, 산호 및 사구로 구성된 일군의 도서로 중국(구 중공)과 월남, 대만(구 자유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함.
- ※ 스프래틀리 군도는 남중국해에 위치한 군도로서 월남에서 250마일, 필리핀에서 200마일, 중국에서 700마일, 대만에서 1,063마일 거리에 있는 일군의 도서로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월남 및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함.

836

## 2. 파라셀 분쟁 발생

- ※ 파라셀 군도(서사군도)에 대하여 중국은 기원전부터 중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입장이고, 월남은 1802년 이후 월남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함.
  - 중국은 1958년 남중국해에 위치한 4개 군도의 영해 12마일 이내 군사적 목적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사전 허가 요청을 선포
  - 월남은 파라셀 군도 중에 patton 섬에 1932년 이래 기후관측소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며 경비원이 상주
  - 1973.8월 월남 정부가 월남 해안과 동 지역에서의 석유 탐사를 시작하였으며, 10여개 도서를 복수성의 일부로 편입시킨 데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1974.1.10. 강하게 항의
- ※ 월남 주유엔대표부는 1974.1.16. 중국인 수명이 월남 영토인 파라셀에 상륙하여 중국기를 게양하였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해군 함정 2척이 출현하였음을 알리면서 유엔 안보리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중국의 반대와 안보리 회원국들의 소극적 태도로 회의 소집 무산
- ※ 1974.1.19.~20. 파라셀 섬에서 중국 해군과 월남 해군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함.
  - 동 전투에서 월남과 중국 군함 1척이 각각 격침되고 중국이 섬을 장악

## 3. 스프래틀리 분쟁 발생

- ※ 월남은 1973.9월 스프래틀리 군도(남사 군도) 중 10개 도서를 월남 영토로 귀속시키고, 영유권 주장을 위하여 1974.1.30. 2개 섬에 군대를 상륙시킴.
  - 4개 섬에는 주권비를 설치함으로써 중국, 필리핀, 대만과의 갈등 가능성을 야기
- ※ 중국 외무부는 24. 월남군 주둔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대만은 21. 동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 서도 평화적 해결의사를 피력하였으며, 필리핀은 25. 월남과 대만 주둔군 철수를 촉구하는 외교 각서를 전달하였음을 언급하면서 동 분쟁이 유엔 또는 제2차 대전 전승국 사이에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함.
  - 미 국무부는 1.31. 영유권 분쟁에의 불간섭 정책을 표명하면서 관계국 간의 평화적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희망
  - 마르크스 필리핀 대통령은 2.16. 분쟁 당사국 간의 직접 대화를 제의

# 프랑스의 남태평양지역 핵실험에 대한 호주 및 뉴질랜드의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

| 74-0760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조약
MF번호	K-12 / 3 / 1~25p

호주와 뉴질랜드는 1973.5.9. 프랑스의 남태평양 지역 핵실험에 대하여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함.

## 1. 배경

- ☛ 세계 4번째 핵보유국이 된 프랑스는 1963년부터 남태평양 French Polynesia의 Muuroa 섬과 Fangataufa 군도에서 대기권 핵실험을 하여 인근 지역에 방사능 낙진 피해를 야기시킴.
  - 중국(구 중공)과 프랑스는 대기권 핵실험을 금지한 Partial Test Ban Treaty에 미가입
- ☛ 1960년대 초부터 뉴질랜드 평화운동단체는 대기권 핵실험 반대운동을 조직·전개해 왔으며, 1973년 뉴질랜드 정부는 호주 정부와 공동으로 프랑스를 ICJ에 제소함.

## 2. 국제사법재판소 심리 결과

- ☛ 뉴질랜드와 호주는 ICJ가 프랑스의 핵실험으로 인한 낙진이 국제법 하에서 보호되는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임을 선언하고 프랑스로 하여금 추가적인 핵실험을 실행하지 않도록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함.
- ☛ ICJ는 1973.5.21.부터 심리를 시작하여 6.22. 잠정적 결정을 발표함.
  - 주네스칼 프랑스대사는 5.16. ICJ에 보낸 서한에서 동 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인하면서, 소각하를 요청
  - ICJ는 뉴질랜드, 호주 및 프랑스가 상황악화를 야기할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
  - ICJ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잠정적으로 동 사안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최종 결정을 위하여 호주와 프랑스 측에 입장제출을 요청
- ☛ ICJ는 1974.3.26. 성명을 발표하여 재판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내용의 발표나 보도를 자제하도록 요청함.

# 인도 · 중국(구 중공) 국경분쟁

| 74-0761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K-12 / 4 / 1~22p

인도와 중국(구 중공) 간 히말라야산맥 지역에서의 국경분쟁 관련 내용임.

## 1. 배경

- ※ 인도와 중국은 서부 카슈미르 지역과 동부 시킴 지역에서 국경 분쟁으로 대립함.
- ※ 1962.7월 시킴 지역에서의 양국간 무력충돌에서 인도가 참패하였고 이에 양국은 상호 대사를 철수시키고 대리대사만을 유지함.
  - 중국은 인도와 소련 간의 평화 우호조약으로 인도가 소련의 중국 포위 전략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
- ※ 라지브 간디 인도 수상은 1974.2월 동북부에 위치한 시킴 왕국을 인도에 편입시키기 위한 헌법개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킴.

## 2. 분쟁 추이

- ※ 중국 외교부는 1974.9.11. 성명을 발표하고 시킴 병합에 관한 인도 의회의 헌법개정안 통과는 노골적인 확장주의 행위이며 중국 정부는 시킴에 대한 인도의 불법적 합병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음을 표명함.
  - 소련이 대중국 포위를 위한 남진정책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
- ※ 인접국인 네팔에서 대규모 반인도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국가의 언론들도 합병을 인도의 식민주의적 팽창행위라고 비난함.
- ※ 이에 대하여 인도 정부는 동 합병은 인도와 시킴 간 양국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제3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응대함.
- ※ 양국군은 시킴 수도 강콕으로부터 64km 지점인 나투 통로에서 대치 중에 충돌함.
  - 1975.10.20. 인도군이 순찰 중에 중국군의 매복 공격을 받고 사상자가 발생
- ※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중국 외교부는 11.3. 성명을 통하여 중국군이 국경을 침범한 인도군을 퇴각시키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응대함.

# 부르키나파소(구 오투볼타) · 말리 간의 국경분쟁

| 74-076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K-12 / 5 / 1~11p

서부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구 오투볼타)와 말리 간에 발생한 국경 분쟁 관련 내용임.

## 1. 배경

- ✪ 부르키나파소 북부와 말리 접경 지역에 있는 160km 길이의 Agacher Strip을 두고 양국이 소유권을 주장함.
- ✪ 말리군이 1974.11월 분쟁 지역을 점거하고 주민들에게 말리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자국민화 조치를 시행함.

## 2. 분쟁 추이

- ✪ 양국 대통령은 1974.12.4. 말리 접경 도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상설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함.
- ✪ 부르키나파소 외상은 12.11. 주부르키나파소 한국대사를 초청하여 분쟁 경과를 설명함.
  - OAU(아프리카단결기구)에서 국경선은 식민시대의 국경선으로 정한 바 있으며, 부르키나파소와 말리 간에는 식민시대의 확정된 단일 국경이 있을 뿐이므로 말리 측의 주장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함.
  -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국경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부르키나파소 정부의 입장임을 언급함.
- ✪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은 12.14. 자국 주재 외교단을 초청하여 분쟁 경과를 설명함.
  - 양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리 측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함.
  -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평화적 해결 입장을 추구할 것이나 해결이 어려우면 모든 수단을 다하여 주권 확보 및 영토 보존을 기할 것임을 본국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3. 제3국의 중재 노력

- ✪ 토고 대통령이 1974.12.18. 양국을 방문하여 중재를 시도하였으며, 니제르 외상이 12.19. 양국을 방문함.
- ✪ 주프랑스 부르키나파소대사는 12.27. Giscard D' Staing 프랑스 대통령을 면담하고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 OAU 의장 제의에 따라 부르키나파소, 말리, 토고, 니제르 4개국 대통령은 1974.12.26.~27. 토고에서 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 4개국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양국이 분쟁 지역으로부터 군대를 철수하며, 양국에 거주하는 상대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존 법적 자료에 근거한 해결 방법을 모색함.

# 스페인령 서부사하라(폴리사리오) 영유권 문제

| 74-0763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구주2/중동
MF번호	K-12 / 6 / 1~65p

서부사하라(폴리사리오) 영유권 문제 관련 내용임.

## 1. 배경

- ※ 스페인은 1884년 이래 사하라 북서부 지역을 점령하여 해외 영토화함.
- ※ 인접국인 모로코와 모리타니아도 서부사하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며, 1973년에는 내부에서 무장 저항단체인 Polisario Front가 결성되어 점차 대부분 영토를 차지함.
- ※ 유엔은 1965.12월 동 지역 장래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스페인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 1967.12월 사하라 주민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스페인이 마련하도록 하는 결의안 채택
  - 1973.2월 서부사하라를 독립시키도록 스페인에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 2. 분쟁 추이

- ※ 모로코, 모리타니아 및 알제리 3국 정상은 1973.7월 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서부사하라 주민의 민족자결원칙 적용을 주장함.
- ※ 모로코 국왕은 1974.7.4. 프랑코 스페인 총통에게 서한을 보내 서부사하라에 대한 역사적 소유권을 주장함.
- ※ 모리타니아 외상은 8.3. 기자회견에서 모로코의 영유권 주장과 스페인의 주민자치권 부여 입장이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
- ※ 스페인 정부는 8.21. 유엔사무총장에게 서부사하라에서의 국민투표를 1975.6월 이전에 실시하여 해결한다는 원칙을 통보함.
- ※ 하산 모로코 국왕은 8.20. 연설에서 모로코는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나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위하여 스페인군 철수와 주민투표 질의서 내용에 대해 모로코와의 사전 협의 등을 주장함.
  - 하산 국왕은 9월 서부사하라 문제 해결을 위하여 ICJ(국제사법재판소)의 중재를 요청하였으며, 모로코 외상은 스페인 외상에게 ICJ 제소를 제의함.

# 중동전 및 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

| 74-0764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중동
MF번호	K-12 / 7 / 1~131p

1973.10.6.~25. 발생한 이스라엘·아랍 전쟁(일명 10월 전쟁 또는 Yom Kippur, Ramadan 전쟁) 후 이스라엘과 이집트 및 시리아가 군 격리 협정을 체결함.

## 1. 배경

- 1973.10.6. 이집트의 기습으로 시작된 10월 전쟁은 이집트와 시리아가 시나이 반도 및 골란 고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벌인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종료됨.

## 2. 전후 처리 과정

- 이집트·이스라엘
  - 양국은 1973.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평화회담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위하여 양국군 격리가 시급하다는 점에 합의하고 작업반을 설치
  - 양국은 수에즈 운하 동안에서 양국군을 철수시키고 유엔군을 배치한다는 내용의 군대 격리 협정을 1974.1.18. 체결
- 시리아·이스라엘
  - 1974.4월부터 시작된 양국군 격리 협상에서 시리아는 1967년 전쟁 시 실지 전부 반환을 주장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10월 전쟁 시의 점령지에서의 철군을 주장
  - 1974.4.28.~29.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국·소련 외상회담에서 이스라엘이 10월 전쟁에서 점령한 주요 지역을 반환시키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도
  - 닉슨 미국 대통령은 5.29.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골란 고원에서의 휴전과 군 격리에 합의하였음을 발표

# ICJ(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5조 2항에 따른 비당사국 선언

| 74-0765 |

생산연도	1971-1974
생 산 과	국제법규/조약
MF번호	K-12 / 8 / 1~29p

ICJ(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5조 적용 관련 내용임.

## 1. ICJ 규정 제35조

### ※ 제1항

- 재판소는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에 대하여 개방된다.

### ※ 제2항

- 재판소를 다른 국가에 대하여 개방하기 위한 조건은 현행 제조약의 특별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다.

-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조건은 당사자들을 재판소에 있어서 불평등한 지위에 두게 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2. 유엔에서의 검토

※ 1974.10월 유엔 제6위원회는 ICJ의 역할에 관한 토의에서 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인정, 회원국들의 재판소에 대한 관심 증대 필요성 등 국제재판소 규정의 보편적 적용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호주 등 18개국 공동으로 결의안을 작성함.

- 회원국들의 강제관할권 수락 검토 권유, 유엔 기관들의 재판소 활용 활성화 등을 포함

## 3. 당사국이 ICJ에 제출한 관할권 수락 선언

※ 1971.10.29. 서독 정부는 아이슬란드와의 어업권 분쟁 관련하여 아이슬란드와의 1961년도 교환각서에 의거, ICJ의 관할권 수락을 통보함.

※ 1971.12.22. 서독 정부는 1964.4.24. 비엔나 영사협약 및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 당사국과의 분쟁에서 ICJ 관할권을 인정함을 통보함.



#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분담금

| 74-0766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K-12 / 10 / 1~33p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분담금 납부 관련 내용임.

## 1. AALCC(Asian African Legal Consultative Committee)

- ※ 아시아·아프리카 회원국의 법적 문제 자문을 위하여 1956년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이며, 인도 뉴델리에 사무국을 설치함.
- ※ 한국은 1970.1.19. 준회원국으로 가입함.

## 2. AALCC 사무국 운영비 현실화 문제

- ※ AALCC 사무국은 1974.12.4. 주인도 한국대사관에 공문을 보내어 국제적인 물가 인상 추세로 인하여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1975.1월 테헤란에서 개최되는 제16차 AALCC 총회에 동 문제를 제기할 것을 통보함.
- 각 회원국은 기본 회비 960파운드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유엔분담금 납부 비율에 따라 분담

843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연락관회의, 제101-128차, New Delhi

| 74-0767 |

생산연도 | 1970-1974

생 산 과 | 국제법규

MF번호 | K-12 / 11 / 1~45p

제101차, 제125~128차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연락관 회의가 뉴델리에서 개최됨.

## 1. 제101차 회의(1970.2.28.)

- ※ 10개국 대표 참석
- ※ 1970 회계연도 예산안 검토

844

## 2. 제125차 회의(1974.6.10.)

- ※ 16개국 대표 참석
- ※ 제16차 총회 개최 시기, 행정 및 재정적 내규 개정 문제 협의

## 3. 제126차 회의(1974.8.19.)

- ※ 13개국 대표 참석
- ※ 제125차 회의록 승인, 제16차 총회 날짜 및 의제 등 협의

## 4. 제127차 회의(1974.9.28.)

- ※ 13개국 대표 참석
- ※ 제126차 회의록 승인, 제16차 총회 날짜 및 의제 등 협의

## 5. 제128차 회의(1974.12.19.)

- ※ 15개국 대표 참석
- ※ 제127차 회의록 승인, 1975년 예산안 검토, 해양법 실무회의 개최문제 협의

#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15차, 동경, 1974.1.7.-14.

| 74-0768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조약
MF번호	K-12 / 12 / 1~316p

정부는 1974.1.7.~14.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5차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총회에 주일대사대리를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회의 의제

- ✿ 행정 사항
  - 신규 회원국 가입
- ✿ 실질 토의 주제
  - Protection and Inviolability of Diplomatic Agents and other privileged persons
  - Law of the Sea including questions relating to Sea Bed and Ocean Floor
  - International Shipping Legislations
  -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2. 훈령

- ✿ 정회원 가입 신청(회원국 2/3 이상 찬성 필요)
- ✿ 1975.6월 제3차 해양법회의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 영해(3해리), 국제해협, 배타적 경제수역 지지, 공해상 어업의 자유 최대한 보장 지지, 심해저 자원개발에서는 개도국의 이익 최대한 보장 주장 등 입장 견지

## 3. 회의 결과

- ✿ 56개국 및 6개 기구 참석
- ✿ 한국은 1974.1.11. 신규회원 가입서 제출
  - 서면 투표에 의하여 3.15. 정식회원으로 가입
- ✿ 의제별로 부속위원회가 설치되어 실질문제 토의 진행
  - 회의 토의내용을 기록하여 추후 회원국이 참고토록 할 예정

# 강원도 - Alberta주(캐나다) 간의 자매결연, 1974.9.5.

| 74-076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L-12 / 1 / 1~8p

강원도와 캐나다 앨버타주 간의 자매결연 관련 내용임.

## 1. 내무부는 1974.4.16. 강원도청이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자매결연 체결관련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 ※ 추진 경위

- 1973.7.14. 강원도와 앨버타주 국제무역부장 간 자매결연에 관한 의견교환
- 1973.11.6. 앨버타주 시장 담당관 등 6명의 사절단 방한, 자매결연에 관한 원칙 합의
- 1974.3.26. 앨버타주 국제무역부장 및 농림차관보 방한, 자매결연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

### ※ 목적

- 양도간의 상호친선 도모 및 우의강화를 통한 국제적 유대 증진
-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축산 및 농업분야의 기술교환
- 공업 및 농업생산물의 수출입 증대
- 문화교류 및 유학생 교환
- 관광사업진흥을 위한 자료 및 정보교환

## 2. 외무부는 1974.4.22. 강원도와 앨버타주 간 자매결연 체결에 이의없음을 내무부에 통보함.

## 3. 주밴쿠버총영사는 1974.6.3. 강원도와 앨버타주가 1974.9월 자매결연 성립을 외무부에 공표할 예정임을 보고함.

- ※ 자매결연 서명식은 강원도에서 거행되며, Peter Loughrea 앨버타주 수상이 참석 예정

## 한 · 소련 문화교류

| 74-0770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구담당관
MF번호	L-12 / 2 / 1~23p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될 정경화 바이올린 연주회의 소련 지휘자 선정 문제와 국내 음반 제작사의 소련 작곡가 작품 수입 문제 등에 관한 내용임.

1. 주핀란드대사는 1974.5.3. 정경화 바이올린 연주회가 1974.5.15.~16.간 헬싱키 교향악단 정기공연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주최 측은 지휘자로 소련인 아르비도안손을 선정하였으나, 정경화의 국적 문제로 소련 측이 반대할 경우 핀란드인 지휘자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함.

※ 주핀란드대사는 주최 측에 한국은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며, 음악회는 정치문제와는 관계없는 문화 행사임을 강조하면서 소련인 지휘에 반대할 이유가 없음을 표명

2. 주핀란드대사는 1974.5.20. 정경화 연주회가 연주자의 발병으로 취소되었음을 보고함.

※ 또한 동 연주회가 취소되기 수일 전에 소련의 관영 연주회 사무국 측이 정경화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아르비도안손이 연주회에서 지휘할 수 없음을 핀란드 교향악단 담당관에게 통고한 바 있음을 보고

3. 문화공보부는 1974.5.22. 국내 음반 제작사인 지구레코드사가 미국 RCA사에서 제작한 음반 원판을 수입하고자 동 원판에 수록된 음악 중 소련 작곡가 작품이 수록되어 있어 '음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 요강'에 의해 적성국가에서 제작되거나 그 국민이 제작한 음반의 수입, 배포를 금지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함.

※ 외무부는 5.27. 회신에서 외교정책 수행상 소련을 적성국가로 취급치 않고 있으나, 음반의 내용이 국시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반하는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4. 소련 이즈베스차는 1974.7.4. 모스크바 음악대회에 참가한 73명의 피아노 연주자 중에서 정명훈이 2등상을 수상하였음을 보도함.

847

대한민국의외교사료해제전

1974

## 한 · 소련 자료교류

| 74-077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L-12 / 3 / 1~30p

1. 공업진흥청은 1974.5.11. 소련 지질성 산하 전연방 지질학 도서관장(Director of All- Union Geological Library)이 한국의 지질조사소에 한국의 지질연구 관계 자료를 요청해 음에 따라 산하기관인 지질 광물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를 소련 측에 발송하는데 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는 1974.5.20. 공업진흥청에 대한 회신에서 대공산권 관계개선 정책에 비추어 소련 지질학 도서관과의 자료 교환은 의의가 있고 다만, 자료의 내용에 안보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3. 국회도서관은 1974.7.25. 국회도서관이 1973.10.29. 소련 레닌 국립도서관에 자료의 상호교환에 관한 서한을 발송한데 대해 소련 측이 동 제의를 수락한다는 회신을 보내왔음을 외무부에 알려줌.  
\* 레닌 국립도서관은 통계, 경제문제, 경제학, 대외무역에 관한 서적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한국 측으로부터 안내서, 백과사전 및 참고서적을 받기를 희망
4. 국회도서관은 1974.8.16. 소련 레닌 국립도서관과의 교환 자료 목록을 외무부에 알림.

# Mohamed Mekki Naciri 모로코 종교문화장관 방한 초청계획

| 74-0772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공보문화/중동
MF번호	L-12 / 4 / 1~79p

Mohamed Mekki Naciri 모로코 종교문화장관 방한 추진 관련 내용임.

## 1. 주모로코대사는 1973.1.28. Naciri 모로코 종교문화장관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 ※ 외무부는 2.8. 문화공보부에 초청해 줄 것을 요청
- ※ 문화공보부는 3.21. 예산 사정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 ※ 외무부는 3.23. 주모로코대사관에 초청 조건 조회
- ※ 주모로코대사관은 장관 및 수행원 1인에 대한 항공료 및 체재비 부담 제시
- ※ 외무부는 4.23. 문화공보부에 초청 조건 통보 및 협의
- ※ 문화공보부는 5.4. 외무부와 경비 공동부담 조건으로 방한 초청 수락

## 2. 외무부는 1973.5.9. Naciri 종교문화장관 및 수행원 1인을 1973.7.10.~15.간 방한 초청할 예정임을 알려면서 주모로코대사에게 방한 의사를 확인토록 지시함.

- ※ 주모로코대사는 8.23. 동 장관의 11월 중 방한 희망을 보고
- ※ 동 대사는 11.6. 동 장관의 방한일정이 중동전 관계로 확정키 어려움을 보고

## 3. 문화공보부는 1973.11.9. 국회의 예산심의 등 연말 국내일정 등을 고려, Naciri 종교문화장관의 방한을 1974년 봄(5월경)으로 추진코자 함을 외무부에 통보함.

- ※ 주모로코대사는 모로코 측에 한국 측 사정을 전달, 동 장관은 1974년 봄 방한에 동의

## 4. 문화공보부는 1974.3.28. 공문으로 Naciri 종교문화장관의 방한을 적극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외무부에 알려오면서 주모로코대사로 하여금 상대방에서 접촉하여 오면 응하되 한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를 요망함.

## 5. 주모로코대사는 1974.4.25. 모로코 정부 개각에서 Naciri 종교문화장관이 경질되었음을 보고함.

# Dennis, James C. 라이베리아 'Liberian Star'지 업무국장 방한, 1974.10.6.-11.

| 74-077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홍보문화
MF번호	L-12 / 5 / 1~97p

James Dennis 라이베리아 Liberian Star지 업무국장이 1974.10.7.~12. 방한함.

## 1. 방한 경위

- ✿ 외무부는 1974.7.25. 라이베리아 외상 및 동 외상의 친형인 Liberian Star지 업무국장 방한을 추진토록 주라이베리아 대사에게 지시함.
- 이에 대해 주라이베리아대사는 James Dennis 업무국장이 10.6. 전후 방한 희망함을 외무부에 보고
- 동 국장은 라이베리아 신문인협회장을 역임한 언론계 중진

850

## 2. 방한 일정

- ✿ 10.6.
  - 서울 도착
- ✿ 10.7.
  - 외무부 정무차관보, 구아국장 예방
  - 문화공보부 해외공보관장 예방
  - 외무부장관대리 예방
  - 중앙메스컴 센터, 국립영화제작소 방문
- ✿ 10.8.
  - 부산 금성사 방문
- ✿ 10.9.
  - 울산 현대조선소, 석유화학단지 시찰
- ✿ 10.10.
  - 관문점 시찰
- ✿ 10.11.
  - 서울 출발



# Mustapha Alaoui 모로코 'El Kawalis' 지 사장 방한, 1974.12.16.-24.

| 74-0774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공보문화/중동
MF번호	L-12 / 6 / 1~33p

Mustapha Alaoui 모로코 El Kawalis지 사장이 1974.12.16.~24. 방한함.

## 1. 방한 경위

- ※ 주모로코대사는 1974.10.28. 모로코 언론계 중진의 방한 초청 추진을 외무부에 건의함.
  - 그 이후 주모로코대사는 El Kawalis지 사장인 Mustapha Alaoui가 12.15.경 방한을 희망함을 외무부에 보고
  - 동인은 아랍어신문 El Kawalis지 사장이며 친한 인사로서 모로코 언론계에서 비중이 큰 인물
- ※ 외무부는 1974.11.27. 동 사장의 방한 초청을 수락함을 주모로코대사에게 통보함.

## 2. 방한 일정

- ※ 12.16.
  - 서울 도착
- ※ 12.17.
  - 외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예방
- ※ 12.18.
  - 상공부차관 예방
  - 경향신문사, 상공회의소 방문
- ※ 12.19.
  - 울산 현대조선 시찰
- ※ 12.20.
  - 한국이슬람협회 주최 간담회 참석
  - 중앙일보 방문
- ※ 12.21.
  - 관문점 및 땅굴 시찰
- ※ 12.24.
  - 서울 출발

# Pataky-Frommer, Laszlo 니카라과 언론인 방한, 1974.5.15.-20.

| 74-077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L-12 / 7 / 1~18p

니카라과 유력 언론인 Laszlo Pataky-Frommer가 1974.5.15.~20. 방한함.

## 1. 방한 경위

- ※ 주유엔대사는 Laszlo의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1974.5.6.~10.) 시 동인을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함.  
- 동인은 니카라과 각종 일간지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El Clarin지 편집국장 등을 역임.
- ※ 외무부는 1974.5.6. 동인을 방한 초청키로 결정함.

852

## 2. 방한 일정

- ※ 5.15.  
- 서울 도착
- ※ 5.16.  
- 국립영화제작소 방문  
- 외무부장관대리, 외무부 정무차관보 예방  
- 경제기획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방문
- ※ 5.17.  
- 관문점 방문  
-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KOTRA(대한무역진흥투자공사) 사장, 문화공보부 차관 예방
- ※ 5.18.  
- 부산 원양어업훈련센터, 조선소 방문  
- 울산 공업단지 방문
- ※ 5.19.  
- 경주 관광
- ※ 5.20.  
- 국무총리 예방  
- 서울 출발

# Diaz Bravo, Oscar 페루 'La Prensa' 지 편집국장 방한, 1974.2.22.-23.

| 74-0776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남미담당관
MF번호	L-12 / 8 / 1~19p

페루 유력 일간지 La Prensa의 편집국장인 Oscar Diaz Bravo가 1974.2.22.~23. 방한함.

## 1. 주페루대사는 1974.2.5. Oscar 편집국장의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1974.2.14.~20.) 시 동인을 방한 초청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주페루대사는 동인이 대만 방문 후 22일부터 3일간 방한 가능하며 방한 시 언론계 면담, 산업시찰, 판문점 견학을 희망한다고 27. 외무부에 보고

## 2. Oscar 편집국장은 1974.2.23. 외무부장관을 예방함.

※ 동 예방 시 외무부장관은 자신이 3월 중순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식과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후 페루를 방문, 중남미지역 공관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언급하고,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관계 현황과 증진 방안, 한국의 대외정책 일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

## 3. Oscar 편집국장은 귀국 후 1974.3.4. 주페루대사를 예방하여 방한 주선에 사의를 표시하면서 한국의 전반적인 발전에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 방문에 관한 기사를 쓰겠다고 언급함.

## 4. La Prensa 발행 주간지인 '7 Dias' 지는 1974.3.29. 6면에 걸쳐 한국에 관한 특집 기사를 게재함.

※ 동 기사는 서울 시가도, 적십자회담, 서울 지하철 및 한국문학에 관한 사진을 보도함.  
※ 아울러 필자의 방한 체험기와 함께 한국의 역사와 발전상, 남북대화, 통일정책, 새마을운동, 한국 문학 및 풍속 등에 관해 기술함.

85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

1974

# Epenu, Nathan 우간다 'Voice of Uganda' 지 부주필 방한, 1974.9.27.-10.4.

| 74-077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프리카/홍보문화
MF번호	L-12 / 9 / 1~22p

우간다 'Voice of Uganda' 의 부주필 Nathan Epenu가 1974.9.27.~10.4. 방한함.

## 1. 주우간다대사는 1974.9.4. Nathan 부주필의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 ※ 주우간다대사는 동인이 9.27. 서울 도착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체한 중 대통령 회견, 주요 언론사 접촉, 국군의 날 행사 참석, 농촌 새마을 건설 참관, 상품생산공장 견학 등을 희망함을 보고함.

854

## 2. 주우간다대사는 1974.10.6. Nathan 부주필이 방한을 마치고 귀국하였음을 보고함.

- ※ 동인은 10.8. 주우간다대사를 방문하여 방한 소감을 피력하면서 한국 정부에 거듭 감사를 표시함.  
-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일치하여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직무에 충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판문점, 울산 단지, 포항제철, 새마을 건설, 거리의 청결이 인상적이었다고 언급

## 3. Nathan 부주필은 1974.10.18. 및 10.24. Voice of Uganda지에 특집 기사를 게재하여 한국의 발전 모습을 기술함.

- ※ 은둔의 나라 한국이 외부의 침입을 받은 후 군사 방위에 힘쓰면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국토를 건설하여 새로운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경제적으로 자립국가가 되었다고 기술함.

# Papa Blanco, Sergio 한 · 우루과이 친선협회 간사 방한, 1974.11.27.-12.3.

| 74-077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L-12 / 10 / 1~46p

한 · 우루과이 친선협회 간사인 Sergio Papa Blanco가 1974.11.27.~12.3. 방한함.

## 1. 방한 경위

- ※ 주우루과이대사는 1973.9.13. 우루과이에서 한국의 홍보활동에 크게 기여한 Sergio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예산 사정상 1973년도에는 방한 초청이 어려우며 1974년도에 재검토할 예정임을 주우루과이대사에게 통보
- ※ 주우루과이대사는 1974.5.8. 동인 등 우루과이 유력인사의 방한 초청을 재차 건의함.
- ※ 외무부는 1973.9.5. 동인의 방한 희망기간을 파악토록 주우루과이대사에게 지시함.  
- 이에 대해 주우루과이대사는 동인이 1974.11.4.부터 4일간 방한하기를 희망함을 보고

## 2. 방한 일정

- ※ 11.27.  
- 서울 도착
- ※ 11.28.  
- 외무부 정무차관보, 미주국장 예방  
- 문화공보부 차관 예방  
- 외무부 정무차관보 주최 오찬
- ※ 11.29.  
- 중앙일보, MBC 사장 예방
- ※ 11.30.  
- 현대조선, 포항종합제철 시찰
- ※ 12.1.  
- 경주 관광
- ※ 12.2.  
- 판문점 시찰
- ※ 12.3.  
- 서울 출발

# 한·중국(구 중공) 및 한·소련 문화 학술교류

| 74-077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구담당관
MF번호	L-12 / 11 / 1~9p

1974.5~6월 하와이 및 일본 지역에 출장하여 대중국·소련 학술·문화교류를 위한 예비접촉을 시도한 김준엽 아세아문제연구소장이 외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임.

## 1. 교섭 경과

- ※ 대소련 접촉
  - 일본 대외문화협회 섭외부장을 통해 주일 소련대사관 담당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실패
- ※ 대중국(구 중공) 접촉
  - 최근 소련, 중국, 북한을 방문한 서대숙 하와이대학교 교수를 만나 중국 정세를 청취

856

## 2. 금후 계획

- ※ 세미나 참가
  - 하와이 대학교 한국연구소 주관 중국·소련 문제 국제세미나 참가 예정
- ※ 한국 간행물 송부
  - 아세아문제연구소 명의로 소련 및 중국 내 기관(소련 과학원, 모스크바대학교 도서관, 레닌그라드대학교 도서관, 중국 과학원, 북경대학교 도서관 등)에 한국 간행물 송부 계획
- ※ 해외 파견
  - 1974.7~8월 중 교수 2인을 미국에 파견, 미국 내 소련연구 실정 조사
  - 1974.9.4.~7.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슬라브연구 국제회의에 교수 1인 파견
- ※ 해외 인사 초빙
  - 1974.9월 중 서대숙 하와이대학교 교수 초빙 등

# 미국 하와이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센터

| 74-078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L-12 / 12 / 1~104p

미국 하와이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센터 관련 내용임.

1. 서대속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 교수에 의하면 동 센터 주최로 1974.6.10.~14. 개최되는 'Conference on North Korea' 제하의 세미나에 미국학자 10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북한 학자의 참석 가능성도 있다 함.

2. 주호놀룰루총영사는 서대속 교수가 북한 초청으로 1974.4.19.부터 3주간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며 북한 방문에 대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았음을 언급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주미대사관은 서대속 교수가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센터 주관 'Conference on North Korea' 제하의 세미나에 북한 학자 초청 협의차 북한을 방문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3. 미국 하와이주 상원은 1974.3.22.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 건립 기금 45만 달러를 모금한 데 대한 감사결의문을 채택함.

※ 하와이주 상원 사무처는 동 결의문을 문교부장관에게 전달하여 주기를 요청하여 왔다고 주호놀룰루총영사가 외무부에 보고함.

4. 서대속 교수는 1974.5.18. 북한 방문을 마치고 귀로에 동경에 기착하여 기자회견을 가짐.

※ 동 기자회견에서 서 교수는 북한 방문기간(1974.4.29.~5.13.) 중 북한 과학원 및 김일성대학 교수 등과 공산주의 이론 및 사회문제 등에 관해 토론하였음을 언급함.

5.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 기공식이 1974.7.1. 개최되어 주미국대사가 참석함.

※ 위치: 하와이대학교 구내 동서문화센터 인근

※ 공사기간: 1974.7~75.12월

# Ibrahim C. Badran 이집트 'Cairo' 대학교 부총장 방한, 1974.8.25.-28.

| 74-078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L-12 / 13 / 1~53p

Ibrahim Badran 카이로대학교 부총장이 1974.8.25.~28. 방한함.

## 1. 방한 경위

- ✿ 외무부는 1974.7.4. Badran 부총장 방한 초청 건의에 대한 수락을 주카이로총영사에게 통보
- ✿ 주카이로총영사가 1974.7.21. 서울대학교 총장 명의 초청장을 등 부총장에게 전달

858

## 2. 방한 일정

- ✿ 8.25.
  - 서울 도착
- ✿ 8.26.
  - 서울대 총장 예방
  -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시찰
  - 서울대 관악산 캠퍼스 시찰
  - 방송통신대학 브리핑
  - 세미나 참석
  - 보건사회부장관 예방
- ✿ 8.27.
  - 외무부장관 예방
  - 문교부장관 예방
  - 연세대, 고려대, 국립박물관 시찰
- ✿ 8.28.
  - 서울 출발



Agapitidis, Sotirios J. 그리스 아테네대학 교수  
방한, 1974.4.7.-20.

| 74-0782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남구담당관
MF번호	L-12 / 14 / 1~29p

Sotirios Agapitidis 그리스 아테네대학교 교수가 1974.4.7.~20. 방한함.

1. 주그리스대사는 1973.10.3. 그리스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그리스 대학교수 2인의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 특히 Sotirios Agapitidis 아테네대학교 교수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제의된 바 있음을 언급하면서 방한이 실현 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주그리스대사는 1973.10.30. 그리스 외교부가 금년 내 방한 초청이 어려울 경우 내년도에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라도 구상서에 포함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주그리스대사는 1974.2.4. 그리스 교수들이 3월 중에는 대학강의 관계로 방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4월이나 7월 중 방한할 수 있도록 요청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 Agapitidis 교수는 1974.4.7.~20. 방한 후 보고서를 제출함.

※ 동 교수는 한·그리스 문화협정 시행 계획의 일환으로 중앙대학교와의 교수 상호 교환파견 프로그램에 의거 방한함.

## 미국 학계 인사 방한

| 74-0783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Re-34 / 8 / 1~46p

미국 학계 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 1. Ronald Hilton 스탠포드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은 1973.5.24.~27. 방한함.

✿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외교연구원 세미나 참석, 국립박물관 관람, 판문점 견학 등 일정을 가짐.

### 2. Eugene Rostow 예일대학교 법률학교수는 1973.6.3.~5. 방한함.

860 ✿ 외무부장관 예방, 주한 미국대사 주최 오찬 참석,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세미나 참석, 서울대 법대 강연 등 일정을 가짐.

### 3. 김영진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치학교수는 1973.7.2 및 1974.6.25.~28. 방한함.

### 4. Robert Scalapino 캘리포니아대학교 정치학교수는 1974.8.13. 방한함.

# 연세대 · 파리 제7대학 간의 교수 · 학생교환 협약에 대한 프랑스 승인보류

| 74-0784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공보문화
MF번호	L-12 / 16 / 1~13p

연세대와 파리 제7대학 간의 교수 · 학생교환협약 관련 내용임.

1. 문교부는 1974.11.8. 연세대와 파리 제7대학이 1974.1월 교수와 학생의 교환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주한 프랑스대사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프랑스 문교부가 승인을 보류함에 따라 교환 계획이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프랑스 측의 협조를 요청하여 주기를 요망함.

- ※ 주한 프랑스대사의 반대 이유는 연세대가 사립대학이며, 미국계 대학으로 프랑스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공헌을 한 것이 없음을 주장함.
- ※ 프랑스 측은 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협약의 효력이 없으며, 프랑스 정부는 주한대사의 찬성이 있어야 승인할 방침이라 함.

2. 외무부는 1974.11.27. 문교부 앞 회신에서 프랑스 정부는 국립대학인 파리 제7대학이 연세대의 학생이나 교수를 초청할 경우 프랑스 외무부의 해외장학생 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한국의 여타 대학들이 유사한 요청을 할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없음을 우려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통보함.

- ※ 프랑스 측은 양국 정부 차원의 문화 및 기술협력협정에 따라 교수, 학생 및 자료의 교환을 추진할 방침임.

# Hassan Mohamed Kutbi 사우디아라비아 종교 장관 방한, 1974.9.2.-8.

| 74-078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L-12 / 17 / 1~56p

Hassan Mohamed Kutbi 사우디아라비아 종교장관이 1974.9.2.~8. 방한함.

## 1. 방한 경위

- ※ 외무부가 1974.6.11. 동 장관을 문화공보부장관 명의로 초청하여 줄 것을 문화공보부에 요청함.  
- 문화공보부는 사정상 초청할 수 없음을 회신
- ※ 외무부가 1974.7.18. 동 장관을 문교부장관 명의로 초청하여 줄 것을 문교부에 요청함.  
- 문교부는 종교업무가 문화공보부 소관사항이므로 추진이 어렵다고 회신
- ※ 외무부가 1974.8.2. 현 시점에서 추진이 어려우므로 다음 기회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게 통보함.
- ※ 외무부는 1974.8.16. 동 장관을 문공부장관 명의로 8월 하순이나 9월 초순경 방한 초청키로 하였다고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게 통보함.  
- 8.26. 문공부장관 명의 초청장 발송

## 2. 방한 일정

- ※ 9.2.  
- 행운의 열쇠 증정(서울시장)
- ※ 9.3.  
- 문화공보부장관, 국무총리 예방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시찰  
- 외무부장관, 국회의장 예방  
- 문화공보부장관 주최 만찬
- ※ 9.4.  
- 한양대 총장 예방 및 강연회
- ※ 9.5.  
- 관문점 시찰
- ※ 9.6.  
- 대통령 예방  
- 이슬람사원 예배
- ※ 9.7.  
- 국립박물관 탐방

## 한·벨기에 친선협회

| 74-0786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구주1/공보문화
MF번호	L-12 / 18 / 1~22p

1. 한·벨기에 친선협회 창립을 위한 준비회의가 1974.3.5. 주벨기에대사관 주관으로 각계 저명 인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2. 한·벨기에 친선협회 창립총회가 1974.6.14.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 ※ 동 창립총회는 정관을 채택하고 임원(의장, 부의장, 재정부장, 집행위원 등)을 선출하고 리셉션을 개최함.
    - 의장에는 퇴역장성인 George Vivario(한국 참전용사회 회장 역임)가 선출됨.

86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한·캄보디아(구 크메르) 친선협회

| 74-078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L-12 / 19 / 1~20p

한·캄보디아(구 크메르) 친선협회 창립총회가 1974.3.5. 주한 캄보디아대사관저에서 개최됨.

1. 동 창립총회는 한·캄보디아 친선협회의 정관을 채택하고 임원을 선출함.

2. 김우정 우성공영사장이 동 협회 회장으로 선출되고, 주한 캄보디아대사가 명예회장으로 선출됨.

# 한·일본, 일본·한 친선협회

| 74-0788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동북아1
MF번호	L-12 / 20 / 1~77p

일·한 친선협회 관련 내용임.

## 1. 일·한 친선협회(홋카이도)

- ※ 동 친선협회 창립총회 및 축하연이 1974.2.23. 삿포로에서 개최됨.
  - 일본인 및 한국인 약 500여명 참석
  - 홋카이도 측에서는 홋카이도 지사, 홋카이도 의회 의장, 삿포로 시장 등 주요인사 참석
  - 한국 측에서는 이병희 무임소장관 및 이철승 국회의장 참석
- ※ 동 창립총회는 나카가와 이치로 중의원 의원(대장성 정무차관)을 협회 회장으로 선출하고 임원, 회칙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

## 2. 일·한 친선협회(아마가타 현)

- ※ 동 친선협회 1974년도 총회가 1974.4.7. 아마가타 현 현민회관에서 개최됨.
  - 일부 회칙 개정 및 임원 개선
  - 이병희 무임소장관 참석
- ※ 동 총회 후 한국 민속가무예술단 공연이 있었는데, 약 1,200여명이 공연을 관람함.

## 3. 일·한 친선협회(시네마 현)

- ※ 동 친선협회 주관으로 1974.4.26.~29. 한·일본 친선 서도전이 개최됨.

## 4. 일·한 친선협회(히로시마 현)

- ※ 동 친선협회 1974년도 총회가 1974.6.12. 히로시마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됨.
- ※ 한국 영화상영, 리틀엔젤스 공연, 강연 및 리셉션

## 5. 일·한 우호축진의원연맹(홋카이도)

- ※ 1974.7.19. 홋카이도 도의회 자민당 의원총회는 만장일치로 일·한 우호축진의원연맹을 결성기로 결정함.

## 6. 일·한 친선협회(에히메 현)

- ※ 동 친선협회 결성식이 1974.11.9. 마즈야마시 문교회관에서 개최됨.

## 한 · 스페인, 스페인 · 한 친선협회

| 74-078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구2/공보문화
MF번호	L-12 / 21 / 1~14p

### 1. 1974년 스페인 · 한국 친선협회 총회가 12.3. 개최됨.

※ 동 총회에는 스페인 정부, 국회, 군부, 재계 인사 약 70명이 참석함.

### 2. 동 총회 행사내용

※ 임원 선출

- 회장으로서는 Antonio Villacieros 전 주일본대사(한국 겸임)를 선출함.

※ 한국 영화 상영, 북한의 DMZ 지하터널 사진 및 설명자료 공개



# 구주 및 아프리카지역 제국에 대한 유대 강화 방안

| 74-079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28 / 1 / 1~23p

1. 청와대는 1974.9월 구주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기존 유대 강화, 특히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보고할 것을 외무부에 지시함.

2. 이와 관련 외무부 주관하에 관계부처 국·과장회의 및 실무자회의가 개최됨.

※ 관계부처

-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수산청

※ 국·과장급(1974.9.10.) 회의 의제

- 서구지역 국가와의 기존 유대강화, 특히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효과적 정책 수립 및 구체적 시행방안

- 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실질적 유대강화를 위한 대아프리카 장기정책 수립 및 구체적 시행 방안

※ 실무자회의(1974.9.16.) 의제

- 각 부처안 검토 및 종합안 마련

# 나이지리아 경제동향

| 74-079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담당관
MF번호	M-28 / 2 / 1~27p

주카메룬대사가 보고한 경제통상 관할국인 나이지리아 경제동향임.

## 1. 나이지리아 통상관계 출장보고

- ✿ 출장기간
  - 1974.5.7.~10.
- ✿ 출장자
  - 주카메룬대사 및 동 대사관 직원 1명
- ✿ 활동사항
  - 시장조사, 주요 수출품 현황조사, 북한의 경제침투여부 파악, 나이지리아의 주요 경제시책 조사
- ✿ 건의사항
  - 라고스 소재 코트라 사무소의 확장 및 직원 보강 요망
  - 대나이지리아 주종 수출품목인 섬유류의 수출이 난망시되고 있음을 고려, 수출 품목의 전환·다양화 검토가 필요

868

## 2. 나이지리아 경제현황(1974.8월)

- ✿ 나이지리아의 최근 동향
- ✿ 경제정책과 현황
- ✿ 외국자본의 진출 및 원조 현황
- ✿ 무역동향
- ✿ 한국과의 무역관계
- ✿ 건의사항
  - 한국의 합작 유망분야로 생각되는 경편직물 생산, 의류생산, 건축업, 무역업 등에 대한 진출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

# 각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 74-079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28 / 3 / 1~55p

외무부 국제경제국이 작성한 경제협력 현황 관련 자료임.

## 1. 한 · 프랑스 경제협력 현황(1974.11월)

- ※ 외자도입 현황
- ※ 경제협력 추진현황
-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다자간 무역협상
- ※ EC(구주공동체)의 일반특혜제도
-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국제에너지기구와 프랑스가 제안한 산유국 · 선진국 · 개발도상국 에너지회의
- ※ 기술협력

## 2. 프랑스 외무부 경제국장 면담자료

- ※ 핵연료 가공 및 재처리사업 차관 추진현황
- ※ 면담 시 유의사항

## 3. 각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 ※ 아시아
  - 네팔, 미얀마(구 버마), 파키스탄,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 ※ 중동
  - 튀니지, 레바논, 모로코,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 ※ 미주
  - 캐나다, 바하마,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파나마, 페루, 멕시코, 브라질
- ※ 호주, 뉴질랜드
- ※ 구주
  -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 벨기에, 노르웨이
- ※ 아프리카
  - 말라위, 우간다,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라이베리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에티오피아, 스와질란드, 레소토

## 한 · 덴마크 경제협력

| 74-0793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28 / 4 / 1~22p

1. 주덴마크대사는 1973.11.8. 주제국 해외개발처장을 면담, 아래 분야에 대한 원조 가능성을 타진한 바, 덴마크 측은 한국 측이 구체적 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임.

- ※ 농업기술센터 건립
  - 한국 측: 대지 및 교실 건물 준비
  - 덴마크 측: 훈련용 기자재, 교원 · 기술자 제공
- ※ 덴마크 농가실습을 통한 기술훈련

870

2.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1973.11월 외무부에 한 · 덴마크 간 제반 현안문제를 조속히 처리토록 지시함.

- ※ 주한 덴마크대사는 덴마크 정부가 제의한 농업협력 문제 등 제반 현안문제에 관하여 한국 정부의 회답이 없어 업무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언하였다고 함.

3. 외무부는 1974.2월 덴마크 3대 기업 중 하나인 F.L.Smith의 직원이 1974.3월 방한 예정이며 동사의 대북한 접근 확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동사와 국내업체 간의 제휴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에 요청함.

- ※ F.L.Smith는 북한과 약 1억4천만 달러 상당의 시멘트 플랜트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함.

4. 상공부는 1974.6월 Kurt J.W. Shou 현대조선 중공업 사장 등 4명의 덴마크인에게 울산조선소 건설과 초대형 유조선 건조에 기여한 공적을 감안, 은탑산업훈장(2급) 및 국무총리 감사장을 수여하고자 이에 대한 외무부의 동의를 요청함.

# 한·이집트 경제협력

| 74-079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2/중동담당관
MF번호	M-28 / 5 / 1~297p

1. 주카이로총영사는 1974.5월 이집트 외무장관 등 이집트 정부 주요인사와 한·이집트 수교 실현 문제, 경제협력 문제 등을 협의한 바, 이집트 측은 한·이집트 간 경제협력사업을 요청함.

2. 정부는 1974.8월 관계부처회의 등을 통해 이집트 측 요청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함.

(이집트 외무장관의 요청사항)

- ※ 사다트 대통령 부인의 전쟁 불구아동을 위한 1억 달러 모금 운동참여
  - 5만 달러 규모 현금을 추진
- ※ 유리한 조건으로 1천만 달러 내지 2천5백만 달러의 차관 제공
  - 국내 외환사정상 불가능
- ※ 정책적 수출(비료, 시멘트, 철근)
  - 비료는 국내수급상 1977년 이후 가능
  - 시멘트는 1975년도에 10만 톤을 대이집트 수출용으로 확보
  - 철근은 가능하므로 민간상사간 접촉하도록 추진
- ※ 정책적 수입(인광, 담배 필터, 합성섬유)
  - 인광, 담배필터 및 합성섬유 수입은 제조시설 부재 또는 국내 공급상태로 보아 수입 불가능
- ※ 조선소 시설 건설
  - 5천만 달러 규모 이상의 조선소 설치는 1977~78년 이후에나 고려 가능
- ※ 해군창 설치
  - 국내사정상 불가능
- ※ 어업협력
  - 원칙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

(아랍연맹 공보국장의 비공식 요청사항)

- ※ 알렉산드리아에 농장, 피혁공장 건설
  - 현실적으로 어려움.
- ※ 버섯재배, 잠업합작투자
  -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태세 미비
- ※ 방직공업합작
  - 협력가능한 분야로 이집트 측에 통보
- ※ 1천만 달러 무역회전 자금 대여
  - 국내 외환사정상 어려움.

## 대일본 청구권자금 청산계정 상쇄

| 74-0795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28 / 6 / 1~27p

1. 정부는 1973.11.16. 제10차 청구권 무상자금 청산계정 잔액의 부분금에 대해 주일본대사관 명의 공한으로 일본 외무성에 통고함.  
\* 일본 외무성은 상기 공한에 대한 접수 확인 공한을 보내음.
2. 1974.3.20. 개최된 한·일본 양국 정부 합동위원회는 제9차 및 제10차 연도 청구권자금 실시계획에 대하여 합의하고 서명함.

## 한·라이베리아 경제협력

| 74-0796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M-28 / 7 / 1~14p

### 1.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이 1974.2월 제출한 한·라이베리아 경제협력 세부계획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자본협력
  - 철광석 개발 참여, 소형선박 조선소 합작설치, 제지공장 설치 가능성 검토, 국제입찰 적극 참여
- ※ 기술협력
  - 훈련생 접수, 의사 증과, 전문가 파견
- ※ 민간합작
  - 공제공장, 소형선박 수리소, 축산업, 직조공장, 염색 및 나염공장

### 2.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974.3월 주재국 외무부 아·아국장의 요청으로 동 국장을 면담한바, 동 국장은 대통령의 지시라며 한국에서 안과의사 1~2명을 추가로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 동 국장은 만약 한국 정부에서 파견 결정한 외과의사 2명에 추가로 안과의사를 파견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외과의사 1명을 안과의사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함.
- ※ 이와 관련, 외무부는 라이베리아 증파의사 선발(안과 1명, 외과 1명)을 보건사회부에 요청함.

87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한·스페인 경제협력

| 74-079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28 / 8 / 1~13p

### 1. 주스페인대사관이 1974.2월 제출한 한·스페인 경제협력 사업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협정체결
  - 어업협력협정, 통상·경제협력협정
- ※ 자본협력
  - 선박 건조, 조선소 건설
- ※ 민간합작
  - 실뱀장어 양식, 간이 선박수리소, 종합무역상사, 냉동창고
- ※ 기술협력
  - 어학 장학생, 관광 장학생 파견

874

### 2. 외무부는 1974.3월 상기 계획과 관련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주스페인대사관에 통보함.

- ※ 조선소 건설 추진과 관련 현대조선으로 하여금 주스페인대사관과 긴밀히 협조를 유지토록 조치함.
- ※ Intercomsa와 제휴할 종합무역상사에 관해서는 현재 각 경제단체를 통하여 물색 중임.



# 제9차 한·대만 (구 자유중국) 경제각료회담 및 실무자회의. 서울, 1974.6.14.-17.

| 74-0798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경제협력
MF번호	M-28 / 9 / 1~230p

제9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경제각료회담 및 실무자 회의가 1974.6.14.~18. 서울에서 개최됨.

## 1. 참석자

- ✿ 경제각료회담
  - 한국 측: 태완선 경제기획원 장관(수석대표)
  - 대만 측: Sun Yun-Suan 경제부장(수석대표)
- ✿ 경제실무자회의
  - 한국 측: 최각규 경제기획원 차관(수석대표)
  - 대만 측: Liu Shin-Chen 경제부 상무차관(수석대표)

## 2. 주요 토의내용

- ✿ 경제협력
  - 자원 및 원자재 공동개발 협력, 산업분야에서의 협력, 해운협력, 석유화학제품 교환, 외국자본투자유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조치 정보교환 및 관련 공무원 상호방문, 최근 경제정책에 관한 정보 및 경험 교환
- ✿ 무역협력
  - 무역불균형 조정, 수입관세 축소, 한국 농산물 가공기계 및 장비구입에 대한 USAID(국제개발처) 자금 이용, 공급원이 한국으로 한정된 37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해제 제의
- ✿ 기술협력
  - 공동연구협력 촉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기관간 협력

# 한·월남 경제각료회담, 제6차. Saigon, 1974.12.16.-17.

| 74-0799 |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M-28 / 10 / 1~375p

제6차 한·월남 경제각료회담이 1974.12.16.~17. 월남 사이공에서 개최됨.

## 1. 참석자

- ※ 한국 측: 장예준 상공부장관(수석대표), 김용관 주월남대사(교체수석대표) 외 관계부처 직원
- ※ 월남 측: Le Quang Truong 재무장관(수석대표) 외 관계부처 직원

876

## 2. 공동성명

- ※ 양국간 기술분야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
- ※ 양국간 무역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방안을 마련함.
  - 또한 민간 기업인들 간의 교류를 장려
- ※ 양국간에 자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함.
- ※ 항공편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의 지정 항공사간에 협의하도록 함.
- ※ 한국 정부는 아래 분야에 약 1백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함.
  - 월남 연수생 훈련
  - 의약품 제공
  - Dai Dien 관개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 Dong Nai 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
- ※ 한국 정부는 5백만 달러의 상품차관을 제공함.
  - 월남이 한국에서 장비 및 물자 구입
  - 차관의 상세사항은 1975년초 협의

# 한·독일 경제실무자회담. Bonn, 1974.6.24.-28.

| 74-080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28 / 11 / 1~140p

한·독일 경제실무자 회담이 1974.6.24.~28. 독일 본에서 개최됨.

## 1. 참석자

- ✿ 한국 측: 최창락 경제기획원 차관보(수석대표) 외 대표단
- ✿ 독일 측: Schussler 경제부 부국장(수석대표) 외 대표단

## 2. 주요 합의사항

- ✿ 독일의 한국에 대한 재정차관
  - 1974년 사업: 농업기계화 및 정부관리 양곡창고 건설사업을 지원
  - 1975년도 사업: 원조 규모는 1974년도 수준(3천만 마르크)으로 유지하고, 사업분야는 중소기업육성, 부산 하수처리사업, 농업개발사업
- ✿ 독일의 한국에 대한 상업차관
  - 통신시설 확장 사업(1976년도 공사계획분)을 위한 37백만 마르크를 보증차관으로 제공
- ✿ 한·독일 기술협력
  - 1974년도에 49만 마르크를 추가 제공
  - 1975년 사업으로 농업개발사업 추가외화 사용, 부산 한독직업학교 확장, 독일 통신기술 자문단 지원기간 연장, 급속시험소 건설 타당성 조사, 선박시험검사장비 추가지원 등의 우선순위로 추진
  - 충남공대 건설사업은 타당성 조사 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4백만 마르크 원조
- ✿ 한국에 대한 독일의 투자유치
  - 독일 측은 제2차 대한투자조사단을 한국에 파견
  -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
- ✿ 한국에 대한 독일의 투자유치
  - 무역자유화 추진 계획 등 한국의 무역정책 기본방향 설명

## 3. 한국대표단은 상기 회의기간 중인 1974.6.28. 독일 기업인을 대상으로 투자유치간담회를 개최함.

# 한·일본 경제협력 예비실무자회담, 제1-2차, 1974.11.28.-29. 및 12.18.-20.

| 74-0801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28 / 12 / 1~19p

제1~2차 한·일본 간 경제협력 예비실무자 회담이 1974.11.28.~29. 및 12.18.~20. 각각 개최됨.

## 1. 제1차 회담(1974.11.28.~29., 동경)

※ 주요 논의사항

- 북평항 개발
- 경부선 전철화와 충북선의 복선화 계획
- 새마을 사업과 관련된 농업용수 개발
- 여주댐 및 양수발전소 등 관개사업 추진

## 2. 제2차 회담(1974.12.18.~20., 서울)

※ 논의 결과

- 북평항 개발(45백만 달러): 일본 측 전액을 약속함.
- 충북선 복선화(35백만 달러): '선조사 후약속'의 형태를 취하여 일본은 1974년도 회기내인 1975.1~3월 사이에 조사단 파견
- 농업용 상품차관(50백만 달러): 일본 측은 필요성은 인정하나 금액은 미정
- 여주댐 건설(85백만 달러): 일본 측은 기초조사 미완비와 규모의 방대성에 따른 타 사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 계속 난색을 표명

# 한·튀니지 공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74.7.18.-19.

| 74-0802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경제협력
MF번호	M-28 / 13 / 1~118p

제2차 한·튀니지 공동위원회가 1974.7.18.~19. 서울에서 개최됨.

## 1. 양국대표단

- ✿ 한국 측: 이창수 외무부 국제경제국 연구관(수석대표)
- ✿ 튀니지 측: Ahmed Fekih 튀니지 외무부 통상·경제협력과장(수석대표)

## 2. 회의결과

- ✿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문안에 합의
- ✿ 튀니지 외무장관의 방한에 맞추어 양국 외무장관 가서명 건의에 합의
- ✿ 기타 합의사항
  - 양국 경제 및 통상관계 정보 교환
  - 수산협력협정 체결 및 수산분야 합작사업 추진
  - 각종 입찰정보의 신속, 정확한 교환
  - 농업분야 기술협력 강화

# 한·벨기에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1차. 서울, 1974.10.2.

| 74-080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28 / 14 / 1~15p

벨기에 투자사절단의 방한(1974.10.1.~5.) 계기 제1차 한·벨기에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합동 회의가 1974.10.2. 서울에서 개최됨.

## 1. 참석자

- ※ 한국 측 43명, 벨기에 측 10명, 기타 8명이 참석

880

## 2. 협의 사항

- ※ 자본협력, 기술협력 및 통상진흥
- ※ EC(구주공동체) 지역과의 협력: 금융협력 및 유럽 금속공업계와의 협력

## 3. 상기 벨기에 투자사절단 주요 방한 일정

- ※ 주요인사 예방
  - 국무총리, 부총리, 상공차관, 경제단체장 예방
- ※ 주요 협의 및 개별 활동
  - 한·EC 합작금융회사 설립 추진
  - 한·EC 금속공업계 간 제휴
  - 경부선 전철화 사업을 위한 차관 제의
  - 선박 도입 협력
  - 창원기계공업단지 부설 직업훈련소에 대한 지원
  - 전자교환식 통신시설을 위한 합작투자 제의

# 한·프랑스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창립총회, Paris, 1974.3.25.

| 74-080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구1/경제협력
MF번호	M-28 / 15 / 1~19p

한·프랑스 경제협력위원회 창립총회가 1974.3.25. 파리에서 개최됨.

## 1. 참석자

- ✿ 한국 측: 조중훈 KAL 사장
- ✿ 프랑스 측: Chambard 전 주한 프랑스대사

2. 상기 창립총회는 1974년 가을 프랑스 기업인으로 구성된 투자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결의사항을 채택하고 양국 협력위원회 사무국은 즉시 준비작업을 개시기로 함.

3. 동 창립총회 직후 개최된 주프랑스대사 주최 리셉션에는 프랑스 외무부 아주국장, 통상부국장, 경제재무부 대외경제국장, 상공부장관 비서실장 등 다수의 고위인사가 참석함.

##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설립

| 74-080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정책
MF번호	M-28 / 16 / 1~23p

1. Suwoto Sukendar 인도네시아상의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대표단 30여명은 1974.5.3. 대한상을 방문하고 한·인도네시아 양국간의 민간경제협력방안을 협의함.
2. 동 인도네시아 기업인 대표단은 1974.5.6. 서울에서 개최된 제22차 국제상업회의소 아시아극동위원회 총회에 참석함.
3.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기구설치 의정서가 1974.5.7. 서울에서 김성곤 대한상의 회장과 Suwoto Sukendar 인도네시아상의 회장 간에 서명됨.



# 한·일본 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 제6회. 동경, 1974.2.28.-3.2.

| 74-080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M-28 / 17 / 1~37p

제6회 한·일본 민간합동경제위원회가 1974.2.28.~3.2. 일본 동경에서 개최됨.

## 1. 참석자

- ※ 한국 측: 김용완 전경련 회장(단장) 외 대표단
- ※ 일본 측: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단장) 외 대표단

## 2. 회의 의제

- ※ 한국의 중화학 개발계획과 한일 민간경제협력
- ※ 한·일본 공업소유권협정의 발효와 양국 기술협력의 방향
- ※ 한·일본 직·합작 투자사업에 관한 제문제(기업유치협의회 설치문제를 포함)
- ※ 교역증진 및 원자재 확보의 문제

88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한·영국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창립총회 및 합동회의, 제1차

| 74-080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28 / 18 / 1~176p

## 1. 한·영국 경제협력위원회(영국 측) 창립총회가 1974.9.12. 영국 런던에서 개최됨.

- ※ 런던 CBI 회관에서 개최된 등 창립총회에는 한·영국 양측에서 약 150여명이 참석

## 2. 제1차 한·영국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1974.10.15. 서울에서 개최됨.

### ※ 참석자

- 한국 측: 정주영 위원장(단장) 외 대표단
- 영국 측: Nichols 위원장(단장) 외 대표단

### ※ 회의 결과

- 동 회의는 자본 및 기술협력, 교역확대 등의 의제를 토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함.

### ※ 영국대표단의 의견 피력

-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인들의 경제발전 의욕과 창의력으로 보아 국제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생각함.
- 영국의 탁월한 경영능력과 우수한 기술, 한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근면성이 결합되면 국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므로 한·영국 간 경제협력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

## 3. 1974.10.13.~23. 방한한 런던투자사절단의 주요 일정

### ※ 주요인사 예방 및 면담

-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 ※ 기관방문

-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무역협회 방문

### ※ 강연회 개최

- 영국의 자본시장, 동서교역의 문제 등을 주제로 개최

### ※ 주요인사 면담 및 기관방문 시 토의내용

- 한·EC(구주공동체) 합작금융회사 설립 문제
- 중화학공업 추진을 위한 유럽 혼성차관단 구성
- 창원기계공업단지 내 기술훈련센터 지원문제와 기술교류확대 문제
- 동종산업 간 경험강화를 위한 동종분야 기술자 초청 및 세미나 개최

# IECOK(대한민국국제경제협력체) 총회, 제7차 및 태완선 부총리 구주 순방, 1974.3.16.-29.

| 74-080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M-28 / 19 / 1~133p

태완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974.3.16.~29. 유럽4개국(EC(구주공동체) 본부 포함)을 방문하고 제7차 IECOK(대한민국국제경제협력체) 총회에 참석함.

## 1. 각국 방문

- ✱ 영국(3.16.~19.)
  - 외무장관, 통상장관, 해외개발처장관, 런던상공회의소 소장, 경제인협회 회장 등 면담
- ✱ 독일(3.20.~23.)
  - 대통령, 외무장관, 내독관계부장관, 독일상공회의소 소장, 경제인협회 회장, 금융단 대표 등 면담
- ✱ 프랑스(3.24.~27.)
  - 경제재무장관, 외무장관, 공업장관, 한·프랑스 경제인위원회의 주요기업인 등 면담
- ✱ EC(구주공동체) 본부 및 벨기에(3.29.)
  - EC 집행위원장 및 부위원장, 벨기에 통상장관 등 면담

## 2. 제7차 IECOK 총회 참석

- ✱ 회의기간 및 장소: 1974.3.26.~27., 파리
- ✱ 참석자
  - 10개 회원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 캐나다, 호주, 벨기에)의 대표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MF(국제통화기금),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5개 국제기구의 대표
- ✱ 주요 활동사항
  - 기조연설
  - 한국이 필요로 하는 외자규모의 추정 및 조달에 관한 협의
  - 각국 및 국제기구와의 경제협력 방안 협의
- ✱ 각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 내용
  - IBRD: 연간 100~200백만 달러 규모의 장기차관 제공 예정
  - ADB: 향후 3년간 연간 100백만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
  - 미국: 1974년도에 25백만 달러의 개발차관, 2백만 달러의 기술지원 제공
  - 일본: 대외경제협력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하나, 자본협력은 종래의 제공방식과 민간투자로 계속할 예정
  - 독일: 1974년도에 30백만 마르크의 재정차관 제공
  - 프랑스: 1974~75년 10억 프랑의 차관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보증할 계획
  - 영국: Trading Center 설립을 통해 통상증대 계획
  - 벨기에: 전기부문에 대한 장기저리자금 지원방안 모색

# 동남아 경제개발 각료회의, 제9차. Manila (필리핀) 1974.11.14.-16.

| 74-080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M-28 / 20 / 1~62p

제9차 동남아 경제개발 각료회의가 1974.11.14.~16.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됨.

## 1. 참석자

※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월남 등 10개국 대표

## 2. 상기 회의에 대한 필리핀 및 월남의 입장

886

※ 필리핀

- 일본 주도로 1966년 창설된 동남아 경제개발 각료회의는 창설 시 동남아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농수산 개발 및 1차 산품 시장 개척에 중점을 둘 것임을 확인한 바 있음.
- 필리핀은 국제회의 개최가 국내정치 안정에 대한 대외적인 선전과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이미지 개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어 각료회의의 결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각료회의 개최 자체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이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 즉 호주, 뉴질랜드, 캄보디아(구 크메르), 라오스로 참가국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동 회의를 동남아지역 경제기구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되나, 필리핀은 이러한 확대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임.

※ 월남

- 월남은 월남이 참가하는 유일한 지역회의로 동 회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동 회의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월남은 한국이 동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상기회의 시 한국의 참가 문제를 제기하려 하였으나 태국이 북한 초청문제를 제기할 기미가 보여 거론하지 않았다고 함.

# EC(구주공동체)지역 주재공관 협의체 설치

| 74-081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28 / 21 / 1~291p

## 1. EC(구주공동체)지역 주재공관 협의체가 1974.8.1자로 설치됨.

### ※ 설치목적

- 대EC 경제협력 및 통상증진, EC 공동정책에 대한 능동적 대처, 유기적 협조체제 확립

### ※ 설치경위 및 구성

-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 외무부 규정으로 설치
- 주EC대사를 의장으로 하고 EC지역 주재 공관장으로 구성
- 임무는 경제협력, 자원협력, 통상진흥, 대동구권 경제진출, 정보 및 자료의 처리 및 홍보 등

## 2. EC지역 주재공관 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가 1974.8.29.~30.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 ※ 참석자: EC지역 주재 공관장(대리 포함) 7명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구주이사, 외환은행 구주이사

### ※ 협의사항 및 보고사항

- 협의사항: 협의체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제1차 협의체 사업계획, 관계부처 요망사항, 정부 및 민간업계에 대한 건의사항
- 보고사항: 협의체 사무국에 관한 보고, EC 활동에 관한 보고, 한·EC 무역현황 보고, KOTRA 유럽이사 주재령에 관한 보고, 유럽자본시장에 관한 보고

### ※ 동 협의체의 제1차 사업 채택 내용

- EC지역에 대한 신규수출 유망품목의 시장조사
- 제2종합제철사업에 대한 구주지역 국가의 참여 가능성 조사
- 투자유치 대상 업종의 조사 및 유치방안
- 투자진흥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각종 공업단지의 투자유치계획에 대한 실천방안
- 다국적기업과의 협조에 의한 대EC지역 통상진흥
- 협의체 간행물 발간
- 동구권과의 경제관계증진 방안 연구
- 한국기업의 유럽지사 및 현지법인 설치를 위한 안내서 발간
- 유럽자본시장에 있어서의 기체에 관한 연구

# IEA(국제경제학회) 총회, 제4차. Budapest(헝가리) 1974.8.19.-24.

| 74-081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3
MF번호	M-28 / 22 / 1~36p

1. 1974.8.19.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는 국제경제학회 총회에 최호진 박사 등 4명이 한국 대표로 참석할 계획임.
2. 파리소재 국제경제학회 본부는 동인들의 비자를 미리 헝가리 당국에 신청할 것을 요청한 바, 외무부는 국내여권 발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동인들에 대해 여권번호 사전부여 등 비자 신청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함.
  - ※ 외무부는 주프랑스대사관에 상기 최호진 박사 일행이 1974.8.8. 파리에 도착, 헝가리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받을 예정임을 통보함.

# IER(동서경제기구) 주최 국제경제협력회의 참가 계획

| 74-0812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통상정책/동구
MF번호	M-28 / 23 / 1~103p

1. 오스트리아 소재 IER(동서경제기구)의 사무국장은 IER 주최로 1974.4.2.~5.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gress에 한국 유력 경제계인사 약간 명(5~6명)과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담당 참사관을 초청함.
2. 외무부는 1974.2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한국 참가자 명단을 결정하고, IER의 협조를 받아 주오스트리아 폴란드대사관에 한국 참가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신청함.  
\* 폴란드대사관 측은 1974.3월 폴란드 정부가 한국의 참가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IER 측에 통보함.

# 경제협력사절단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74.4.25.-5.10.

| 74-081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3/중동
MF번호	M-29 / 1 / 1~376p

장예준 상공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중동 경제협력사절단이 1974.4.25.~5.10.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를 방문함.

## 1. 방문국가 및 시기

- ※ 사우디아라비아(1974.4.28.~5.4.)
- ※ 쿠웨이트(1974.5.4.~6.)

890

## 2. 사절단 구성

- ※ 장예준 상공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및 민간 대표로 구성

## 3. 주요 일정

- ※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국방장관, 상공장관 등 예방
- ※ 쿠웨이트 국왕, 국회의장, 상공장관, 석유재무장관 등 예방

## 4. 협의사항

- ※ 일반사항
  -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국방장관 등 방한 초청,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설치
  - 쿠웨이트 상공장관, 석유재무장관 방한 초청
- ※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체결
  - 이종과세방지, 어업, 항공 등에 관한 협정의 체결 추진
- ※ 경제협력
  - 한국 내 사업으로 정유공장 합작, C.T.S. 건설 계획, 조선소 건설 참여
  - 사우디아라비아 내 사업으로 시멘트 공장, 케이블 공장, 슬레이트 공장 등 합작 건설
- ※ 기타
  - 기술협력, 어업협력, 통상증대



## 경제사절단 미국 방문, 1974.7.8.-21.

| 74-081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29 / 2 / 1~52p

태완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이 1974.7.8.~21. 미국을 방문함.

### 1. 방문 목적

- ✧ 제7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수출입은행 차관 도입
- ✧ PL480호에 의한 미국 잉여농산물 도입
- ✧ USAID(국제개발처) 및 세계은행에 계류 중인 차관 교섭

### 2. 방문 결과

- ✧ 면담 인사
  - Parket USAID 차관, Butz 농무장관, Ingersol 국무차관, Dent 상무장관, McNamara 세계은행총재, Gaud IFC 수석부사장, Dale IMF 수석이사 서리, Casey 수출입은행 총재 등
- ✧ 교섭 결과
  - 제7비료공장 건설 차관: 직접차관 48백만 달러, 보증차관 64백만 달러, 상업차관 24백만 달러 등 총 160백만 달러를 이자율 8%,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합의
  - PL480호 지원: 국내 쌀 수급계획상 20만 톤을 동 자금으로 도입
  - 계류 중인 차관 교섭의 조속한 종결 약속 확보: USAID(47백만 달러), IBRD(315백만 달러), EXIM(487백만 달러)

# 경제사절단 서남아 순방, 1974.10.26-11.10

| 74-081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1
MF번호	M-29 / 3 / 1~23p

송방용 경제과학심의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이 1974.10.26.~11.10. 인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지역을 방문함.

## 1. 주요 일정(인도)

- ✿ 10.26.
  - 뉴델리 도착
- ✿ 10.28.
  - Okhla 산업단지, 타이어 공장 등 시찰
- ✿ 10.29.
  - 산업장관, 통상장관, 재무장관 예방
  - 국가무역협회 회장, 투자센터 소장 예방
- ✿ 10.30.
  - Sanyal 외무부 경제담당차관, Birla 상공회의소 소장, Kumar 수출입 통제관 예방
  - Seth 한·인도 친선협회 사무총장 접견
- ✿ 10.31.
  - 월양어업협회, 타타수출 공장 방문
  - 상공인협회인사 면담
- ✿ 11.1.
  - 제약공장 방문
- ✿ 11.2.
  - 힌두스탄 자동차 방문

## 2. 주요 일정(방글라데시)

- ✿ 11.3.
  - 다카 도착
- ✿ 11.4.
  - 상무장관, 공업장관, 경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예방
  - 국영무역공사 주최 만찬
- ✿ 11.5.
  - 실무회담
  - 임수산축산장관 예방
  - 상무장관 주최 만찬
- ✿ 11.7.
  - 상공회의소와 회담 및 만찬

# 경제조사단 중부아프리카지역 순방, 1974.11.8.-23.

| 74-081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M-29 / 4 / 1~284p

주원 경제과학심의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조사단이 1974.11.8.~23.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5개국을 방문함.

## 1. 경제조사단 구성

- ※ 주원 경제과학심의회 상임위원(단장) 외 10명

## 2. 방문국 및 기간:

- ※ 나이지리아(11.8.~10.), 카메룬(11.11.~14.), 가봉(11.14.~16.),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11.17.~22.), 중앙아프리카(11.22.~23.)

## 3. 방문 활동 및 성과

- ※ 나이지리아
  - 수산청 수석기획관, 라고스 문과대학장 겸 외무부 자문위원회 수석위원 등 면담
  - 한국어선 연해 진출, 어업분야 기술협력, 기업 진출 등 협의
- ※ 카메룬
  - 경제기획장관, 외무장관, 상공장관 등 면담
  - 경제협력 및 무역일관협정 초안 논의
  - 새마을운동 전수, 한국어선 진출, 산림개발 등 협의
- ※ 가봉
  - 실무회의 개최
  - Owendo 공업단지 시찰
  - 경제기술협력협정, 무역협정, 산림개발 등 협의
- ※ 콩고민주공화국
  - 건설장관, 무역차관 면담, 경제문제연구소 방문
  - 경제기술협력협정, 건설업 진출, 교역 확대 등 협의
- ※ 중앙아프리카
  - 외무장관 예방
  - 실무회의 개최

## 라오스 경제사절단 방한, 1974.12.8.-11.

| 74-081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M-29 / 5 / 1~288p

Sisouk 라오스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 경제사절단이 1974.12.8.~11. 방한함.

### 1. 주요 일정

- ※ 12.8.
  - 서울 도착
- ※ 12.9.
  - 외무부장관대리 예방 및 만찬
- ※ 12.10.
  - 상공부장관 대리 예방 및 오찬
  - 판문점 시찰
- ※ 12.11.
  - 국방부장관 예방 및 오찬
  - 삼성전자 시찰

894

### 2. 방문 결과

- ※ 원조 문제 협의
  - 실무회의를 통해 한국이 라오스 훈련생 10명을 접수하고 나이론 원단 50만 야드를 라오스에 원조키로 결정

# Ngon Sananikone 라오스 재무장관 방한, 1974.5.30.-6.3.

| 74-0818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동남아
MF번호	M-29 / 6 / 1~107p

Ngon Sananikone 라오스 재무장관이 1974.5.30.~6.3. 방한함.

## 1. 방한 경위

- ✿ 외무부가 1974.3.19. Ngon Sananikone 라오스 전 공공사업교통장관에게 방한 초청장을 전달함.
- ✿ 라오스 각의가 1974.3.20. 동 장관의 방한 초청을 승인함.
- ✿ 동 장관이 1974.4.5. 라오스 연립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임명됨.

## 2. 주요 일정

- ✿ 5.30.
  -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건설부장관 예방
  -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 5.31. 예방
  - 포항제철, 현대조선소 시찰
- ✿ 6.1.
  - 동명목재, 조선건직, 금성사 시찰
- ✿ 6.2.
  - 경제인 면담

# 말레이시아 Selangor주 개발공사 대표단 방한, 1974.7.23.-26.

| 74-081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통상1/동남아담당관
MF번호	M-29 / 7 / 1~16p

Haran Idris 말레이시아 Selangor주 수석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발공사 대표단이 1974.7.23.~26. 방한함.

## 1. 방한 목적

- ✿ 건설자재 및 동종업종에 대한 합작투자 가능성 검토
- ✿ 주택 및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연구
- ✿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산업단지의 관리 연구

896

## 2. 방한 일정

- ✿ 7.25.
  - 건설부차관 및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면담, 상공부장관 예방, 공업단지관리청장 면담
- ✿ 7.26.
  - 구로동 공업단지 시찰

# Ringadoo, Veerasamy 모리셔스 재무장관 방한, 1974.10.25.-30.

| 74-0820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아프리카
MF번호	M-29 / 8 / 1~171p

Veerasamy Ringadoo 모리셔스 재무장관이 1974.10.25.~30. 방한함.

## 1. 방한 경위

- ※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974.7.29.~8.1. 모리셔스를 방문한 이병희 장관이 Ringadoo 장관 방한 초청을 정부에 건의
- ※ 재무부는 1974.8.21. 동 장관에 대한 방한 초청장을 송부
  - 주영국대사는 1974.9.17. 주영국 모리셔스 고등관무관실에 동 초청장 전달
- ※ 주영국대사는 1974.9.27. 동 장관이 10.23.~30. 방한 희망함을 외무부에 보고

## 2. 방한 일정

- ※ 10.26.
  -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예방
  - 인천항만, 인천제철 시찰
- ※ 10.28.
  - 외무부장관, 국무총리 예방
  - 경제인연합회 주최 오찬
  - 대통령 예방
  - 재무부장관 주최 만찬
- ※ 10.29.
  - 기아산업, 삼성전자 시찰

# Nazer, Hisham Mohiddin 사우디아라비아 기획상 방한, 1974.2.13.-18.

| 74-0821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중동/통상3
MF번호	M-29 / 9 / 1~156p

Hisham Nazer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장관이 1974.2.13.~18. 방한함.

## 1. 방한 일정

- ※ 2.13.
  -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 2.14.
  - 대통령 특별보좌관, 상공부장관 예방
  - 대통령 특별보좌관 주최 오찬
  -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및 만찬
- ※ 2.15.
  - 국무총리 예방 및 오찬
  - 외무부장관 면담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방문
  -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
- ※ 2.16.
  - 한·사우디 경제협력위원회 창설회의 참석
  - 국립박물관 관람
- ※ 2.17.
  - 이슬람 사원 시찰
- ※ 2.18.
  - 대통령 예방
  - 기자회견

## 2. 방한 시 협의사항

- ※ 한반도 정세, 한국의 대아랍 입장, 한국의 미수교 아랍 국가와의 관계수립 문제
- ※ 원유공급 및 일반 경제기술협력, 경제협력협정 체결, 경제협력위원회 구성, 협력사절단 파견



# Chagula, Wilbert K. 탄자니아 경제개발계획성장관 방한 추진

| 74-082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M-29 / 10 / 1~23p

Wilbert K. Chagula 탄자니아 경제개발계획성장관 방한 추진에 관한 내용임.

## 1. 추진 경위

- ※ 과학기술처는 1974.4.17.자 외무부 앞 공문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개발, 특히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현황과 역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Chagular 탄자니아 경제개발계획성장관을 방한 초청하고자 외무부의 의견을 물어옴.  
- 탄자니아는 북한과 단독 수교국이어서 외무부는 탄자니아와의 관계수립 추진 차원에서 동 초청에 동의

## 2. 추진 결과

- ※ 과학기술처는 1974.5.27. 과학기술처장관 명의로 Chagular 장관에 대한 초청장을 발송함.
- ※ 10.3. 동 장관은 공적인 사정으로 현재로서는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답장을 보내옴.

89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한국의 대미얀마(구 버마) 원조

| 74-0823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서남아
MF번호	M-29 / 11 / 1~25p

1974.8월 미얀마(구 버마)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해 정부는 피해복구를 위한 원조를 제공함.

1. 주량군총영사관은 1974.8.27. 미얀마 3대강의 범람으로 수많은 이재민이 생겨나고 농토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과 현지 외국공관의 지원동향을 본부에 보고하면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건의함.
2. 미얀마 주재 국제적십자사대표도 한국적십자사에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 및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피해 이재민에 대한 질병예방 약품지원을 요청함.
3. 정부는 주량군총영사관을 통하여 네윈 미얀마 대통령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위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1천 달러를 지원함.

## 한국의 대차드 원조

| 74-0824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M-29 / 12 / 1~10p

정부는 1974.8월 차드에 콜레라 백신 등을 지원함.

1. 정부는 1974.8월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하여 1만 달러 상당의 콜레라 백신을 차드에 지원함.
2. 주유엔대표부는 1974.12.26. 차드가 자국의 면화 증산에 필요한 한국 농업기술조사단 파견, 비료 원조 등의 지원을 요청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901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한국의 대중양아프리카 무상원조

| 74-0825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M-29 / 13 / 1~32p

정부의 대중양아프리카 무상원조 관련 내용임.

1. 중앙아프리카 정부는 1973.12월 아프리카 농구선수권대회(1974.4월) 개최를 위한 경비 약 30만 달러를 지원해 줄 것을 한국, 미국, 프랑스 등에 요청함.

※ 외무부는 동 요청을 검토한 후에 지원 불가 입장을 통보함.

902

2. 중앙아프리카 정부는 1974.3월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을 통하여 1974년도 아프리카지역 국제 소년·소녀단대회 개최에 필요한 대회촌 건립비 약 30만 프랑세파 지원을 요청함.

※ 정부는 대중양아프리카 외교를 위하여 1974.7월 1,370달러(30만 프랑세파)를 지원함.

3. 중앙아프리카 청년·체육·예술성은 1974.11월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을 통하여 차량, 운동기구 및 사무용품 등의 지원을 요청함.

## 한국의 대중양아프리카 앰블런스 지원(무상원조)

| 74-0826 |

생산연도 | 1973-1974

생 산 과 | 중부아프리카

MF번호 | M-29 / 14 / 1~40p

정부는 1974.2월 중앙아프리카에 앰블런스를 무상 지원함.

1. 정부는 방한 중인 Soseph Potolot 중앙아프리카 외상에게 1973.3.21. 수교한 Aide-Memoire에서 14대의 앰블런스 무상 지원을 약속함.

※ 1973년도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70,526달러 소요

2. 동 앰블런스 전달식이 1974.2.21. Bokassa 중앙아프리카 대통령, 외교사절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903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한국의 대이집트 원조(무상원조)

| 74-0827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중동/경제협력
MF번호	M-29 / 15 / 1~65p

1973.10월 중동전쟁 후 이집트 등 아랍 국가에 대한 정부의 무상 원조 내용임.

1. 외무부는 1973.11.2. 대아랍 외교 강화책의 일환으로 이집트에 약 3만9천 달러 상당의 구호품(의약품 및 담요) 제공을 결정함.

2. 주카이로총영사는 1973.11.4 이집트 외무성에 의연금을 전달하고, 카이로 주재 시리아대사에게 구호품 기증 의사를 표명함.

※ 카이로 거주 한국인 명의로 의연금 2천 달러 기증

3. 한국 제약회사에서 구입한 약품은 1974.2.9. 이집트 정부에 전달됨.

## 한국의 대말라위 원조(무상원조)

| 74-0828 |

생산연도 | 1974-1975

생 산 과 | 남부아프리카

MF번호 | M-29 / 16 / 1~12p

정부의 말라위에 대한 무상 원조 내용임.

1. 정부는 대아프리카 외교의 일환으로 말라위, 중앙아프리카, 감비아 3개국에 특별 원조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말라위에는 겸임 대사관인 주케냐대사관을 통하여 1974.11월에 2만 달러를 지원함.
2. 동 자금 지원은 의료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짐.

90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한국의 대니카라과 지진원조

| 74-0829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중남미/국제연합
MF번호	M-29 / 17 / 1~141p

1972.12월 지진 피해를 입은 니카라과에 대한 정부의 원조 내용임.

### 1. 주멕시코대사관(니카라과 겸임)은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시에서 1972.12.23. 강력한 지진으로 2만여 명의 사상자와 2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이에 대해 정부는 우호국인 니카라과에 대하여 2만 달러 상당의 구호품을 제공키로 결정하였으나, 니카라과 측에서 현금 지원을 요청하여 현금을 지원함.

※ 이와는 별도로 대한적십자사에서 1973.1월 니카라과 적십자사에 의료품을 전달함.

### 2. 니카라과 정부는 1973.5.18. 재해복구 진전 검토를 위한 국가비상위원회 특별회의를 6.7. 개최함을 주멕시코대사에게 알려오면서 참석을 요청함.

※ 또한 주유엔 니카라과대사가 8.23. 주유엔대사를 방문하여 한국 정부의 특별 구호품(한국제 스포츠 셔츠) 공급을 공식 요청함.

- 정부는 1973년도 예산 반영의 어려움으로 1974.3월 5천 달러 상당의 물품을 제공



## 한국의 대파나마 원조(무상원조)

| 74-0830 |

생산연도 | 1974-1975

생 산 과 | 중미담당관

MF번호 | M-29 / 18 / 1~53p

정부의 1974년도 중 대파나마 원조 내용임.

1. Antonio G. Suarez 파나마 방위군 섭외실장이 5.31. 방한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농업 협력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수동 경운기 500대를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함.

2. 주파나마대사대리는 8.9. 경운기 30대 기증을 통보하는 공한을 Suarez 섭외실장에게 전달함.

※ 경운기는 1975.1.27. 기증식을 통하여 파나마 측에 전달됨.

907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74

# 한·미국 농산물 구매협정에 의한 미국농산물 도입

| 74-083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29 / 19 / 1~185p

한·미국 농산물 구매협정 PL480에 의한 미국 농산물 도입 관련 내용임.

## 1. 경위

- ※ 정부는 국내에서 부족한 쌀 등의 농산물 확보를 위하여 미국 정부 대개도국 원조프로그램인 PL480에 의존함.
- ※ 그러나, 농산물 국제가격 상승 등 요인으로 한국이 PL480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는 농산물 양에 있어서 변동이 생기게 되어 정부는 미국에 대하여 원조액 및 Credit Line 증액을 교섭함.
  - 미국은 PL480에 의거, 1973년도 한국에 80만 톤의 현미 공급을 약속하였으나, 현미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폐지로 인하여 한국이 수입할 수 있는 양이 10만 톤 부족한 사태가 발생함.
  - 정부는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부족액은 USAID(국제개발처) 원조액 증액을 통하여 제공되도록 미국 정부 및 의회 친한 인사를 통하여 노력함.
  - 미국 정부는 8만 톤까지는 USAID자금과 PL자금을 이용하여 지원하되 나머지는 한국 KFX로 수입토록 제시함.

## 2. 내용

- ※ PL480에 의한 쌀 11만 톤 구매를 위한 입찰이 1973.1.23. 있었는데, 쌀 공급자 응찰 가격이 미국 정부의 구매 제한가격(ceiling price) 보다 훨씬 높게 제시됨.
- ※ 미국 측은 초과되는 금액은 한국 보유 외환으로 지불토록 요청함.
- ※ 정부는 미국 농무성이 개입하여 정부 제한가격 이내로 공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함.
- ※ USAID는 응찰가격 수락을 거부하고, 책정된 공급량을 채우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현미와 백미 두가지 종류로 재입찰 할 것을 권유함.

# 프랑스의 대한민국 투자

| 74-0832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29 / 20 / 1~83p

1973~74년도 프랑스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 노력에 관한 내용임.

## 1. 대외 교역 및 투자 다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 ※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한·프랑스 경제협력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한편,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체결도 추진함.
- 주프랑스대사관은 1973.3.28. 파리에서 프랑스 국립대외무역자문위원회와 프랑스-아시아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1회 프랑스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역 및 투자 확대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프랑스 상공인들의 방한을 적극 권유함.
- ※ 양국이 은행 지점의 상호 설치를 합의함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은 1973년도에 파리 지점 개설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프랑스의 Banque de L' Indochine도 서울 지점 설치를 추진함.

## 2. 프랑스기업의 대한 투자 사례

- ※ 프랑스 석유회사(CFDP)의 대표들이 한국에 정유공장 건설을 위한 1억 7천 달러 규모의 합작투자를 정식 제의하기 위하여 1973.6.28. 서울을 방문함.
- ※ 프랑스 Aluminum Pechiney사는 1973.5월 260만 달러를 투자하여 한국산업은행과 합작으로 한국에 알루미늄 공장을 건설키로 결정함.
- ※ 현대자동차가 차관을 통하여 프랑스로부터 1,500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 제조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함.
- ※ 프랑스 Creusot\_Loire사가 1974.10월 60만 달러를 투자하여 금속제품 가공제조공장을 한국 공업단지에 건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정부는 투자처 다변화 차원에서 마산수출자유지역 진출을 적극 환영함.

# 영국의 대한국 투자

| 74-083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29 / 21 / 1~64p, 2010-87 / 28 / 1~2p

한·영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노력 관련 내용임

## 1. 정부의 영국과의 교역 및 투자 다변화 노력

- ※ 정부는 미국·일본에 치우친 경제관계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영국과의 경제관계 강화를 모색함.
  - 한·영국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1974.6월), 한·영국 기술협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등을 추진
- ※ 영국에서도 영국 해외무역위원회 산하에 대한 무역자문위원회가 1974.5월 설립되어 한국에 대한 투자 및 수출 증진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영국 기업 및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게 됨.

910

## 2. 영국기업의 대한 투자 등 협력 사례

- ※ 대한 무역자문위원회 대표단이 1974.10.13.~23. 방한하여 아래사항을 협의함.
  - 한국의 중화학공업 건설에 필요한 장비, 기술 제공
  - 고리원자력발전소 시설자금으로 약 2백만 달러 제공
  - 제2제철계획에 따른 시설재 및 기술 제공
  - 자동차 부품과 엔진 주물 합작 추진
  - 제2원자력 발전소 시설자금 지원
- ※ 양측간에 추진되고 있는 경제협력사업의 사례임.
  - 서울대 시설 현대화 사업
  - 인천시 및 대전시 상수도 확장사업
  - 서울시 중랑천 하수처리장 건설
  - 충남방직 염색가공공장 건설

# 캐나다 원자로(CANDU 2기 및 NRX) 도입을 위한 재정차관 교섭

| 74-0834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경제협력
MF번호	M-30 / 1 / 1~270p

정부의 캐나다 원자로 도입을 위한 캐나다와의 재정차관 교섭에 관한 내용임.

## 1. 경위

-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캐나다 NRX 실험용 중수형 원자로 도입을 추진함.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캐나다에 재정차관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캐나다 측이 상업차관 사용을 권유함에 따라 1973.12.20. 외무부에 외교적 교섭을 의뢰
- ✪ 또한 한국전력은 캐나다로부터 중수형 원자로 제3호기 및 제4호기 도입을 추진함.

## 2. 교섭 내용

- ✪ NRX 실험용 중수형 원자로
  - 해당 부처인 캐나다 국제개발청은 동 원자로 구입가가 동 기관의 연간 원조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여 재정차관 제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
  - 한편, 정부는 캐나다 중수형 원자로인 Candu 3호기 구입을 위한 캐나다 수출입은행과의 교섭에서 동 실험용 원자로 구입을 package로 하는 방안을 1974.2월 캐나다 측에 제시
  - NRX 실험용 중수형 원자로 구입에 대한 재정차관 사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회의를 캐나다 외무성에서 4.10. 개최되었으나, 캐나다 측은 이미 한국이 수혜 대상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
  - 캐나다가 인도 핵실험 이후 실험용 원자로 해외 판매에 매우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함에 따라, 정부는 NRX 실험용 원자로 수입을 위한 차관은 차치하고 수입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8.6. 주캐나다대사관에 정부의 평화적 목적 사용 약속을 캐나다 측에 전달토록 지시
  - 김종필 국무총리는 8.20. Trudeau 캐나다 수상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
  - 주캐나다대사는 8.30. 캐나다 외무성 차관을 방문하고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배려를 요청하였는바, 동 차관은 캐나다 정부가 NRX 실험용 원자로 수출 허용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포함한 정책 전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
- ✪ 발전용 중수형 원자로
  - Candu 원자로 제3호기 구입을 위한 차관 교섭이 1974.4월 캐나다에서 개최되어 225백만 달러 및 1천만 파운드 제공에 합의하였으나, 이자율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추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
  - 정부는 7.8. 협상에서 캐나다 측에 Candu 2기(제3호기 및 제4호기) 및 NRX 실험용 원자로 구입을 package로 하는 방안을 캐나다 수출입은행에 제의하였으나, 캐나다 측은 1기에 대한 차관 공여만 가능하다고 응답
  - 캐나다 수출입은행 대표단이 8.6. 한국에 도착하여 한전과 협상을 갖고 1기 도입을 위한 재정차관 조건에 합의하였으며, 양측이 12.30. 합의 문서에 서명

# 중앙선 C.T.C. 장치 사업을 위한 영국 차관 자금중 미사용 잔액 처리의 건

| 74-083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0 / 2 / 1~11p

## 1. 외무부는 1974.8.1. 재무부에 한 · 영국 대부협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함.

- ※ 주영국대사가 7.25. 한 · 영국 대부협정(1964년)에 의한 대부총액 중 미사용액(13.77파운드)의 처리방안과 원금 및 이자지불을 요청해 왔는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

## 2. 재무부는 1974.8.14. 철도청에 아래와 같이 통보함.

- ※ 재무부와 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중앙선 CTC 장치 사업을 위한 영국차관자금 중 미사용액(13.77 파운드)에 대한 외무부 공문을 통보하니 적의 조치바람.

## 3. 재무부는 1974.8.14.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회신함.

- ※ 중앙선 CTC 장치 사업을 위한 영국차관자금 중 미사용액(13.77파운드)에 대하여는 공문으로 전대차주인 철도청에 통보함.
- ※ 본 차관의 원리금은 7.30. 지불되었으며 앞으로는 원리금 지불일 1개월 전까지 재무부가 원리금 지불통보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적의 조치 바람.

## 4. 외무부는 1974.8.20. 주영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재무부가 본 차관의 원리금을 7.30. 지불하였으며, 앞으로는 지불기일 1개월 이전에 재무부가 지불통보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조기 발송 바람.
- ※ 본 차관 미사용액(13.77파운드)에 대하여는 전대차주인 철도청에 통보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조치함.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농산물 복합가공 시험 차관도입

| 74-083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0 / 3 / 1~29p

## 1. 농수산부는 1974.2.5. 외무부에 농산물 복합가공사업 차관 도입에 관해 통보함.

※ 농어촌개발공사가 1971.10월부터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측과 차관 교섭을 진행

## 2. 경제기획원은 1974.3.30. 및 4.13. 외무부에 농산물 복합가공사업을 위한 IBRD와의 최종협의를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함.

※ 농산물 복합가공사업 차관 도입을 위한 최종회의(4월)를 위해 정부대표가 파견될 예정이며, 이를 주미국대사에게 통보 요망.

- 경제기획원 외자계약심의관 외 3명 파견
- 동 대표단은 4.6. 워싱턴 도착 예정

※ 아래 훈령안 타전 요망

- 내자 지원액(1,480백만 원)에 대한 융자조건은 당초 방침대로 할 것
- 정부부담금은 정부 및 농기공 자체자금으로 지원할 것이며 농협자금도 지원가능
- 시행령 개정문제는 금융의 일원화를 위해 당초 방침대로 할 것

## 3. 경제기획원은 1974.5.8. 외무부에 농산물 복합가공사업을 위한 IBRD 차관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함.

※ IBRD 차관협정서(안)는 5.3.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경제기획원에서 동 사실을 IBRD에 타전

## 4. 경제기획원은 1974.5.21. 외무부에 IBRD 농산물 복합가공사업 차관협정 체결과 관련 아래와 같이 통보함.

※ IBRD 차관을 위한 정부와 IBRD 간의 보증협정(Guarantee Agreement) 체결권한을 양운세 주미국대사관 경제 공사에게 위임하니, 보증협정 및 관련 부속문서에 서명토록 조치 요망

※ 또한 본 차관의 차주인 농어촌개발공사는 동 공사와 IBRD 간의 차관계약(Loan Agreement) 체결권한도 양 공사에게 위임한다하니 차관계약 및 동 관련 부속문서도 아울러 서명조치 요망

## 5. 외무부는 상기 IBRD 차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장관결재를 받음.

※ 동 차관의 정부보증협정, 차관협정 등 문서에 정부 및 차주(농어촌개발공사)를 대표하여 양운세 공사가 서명 조치

※ 사업내용

- 사업목적: 전략 농산물의 생산, 가공, 수출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성 기금의 설치 운영
- 금액 및 조건: 13백만 달러, 이자율 7.25%, 5년 거치 15년 상환

## 6. 주미국대사는 1974.6.7. 양운세 공사가 농산물 복합가공사업 보증협정 및 차관협정에 정부 및 농어촌 개발공사를 대표하여 서명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도입

| 74-0837 |

생산연도	1971-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0 / 4 / 1~34p

1971~74년 중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 도입에 관한 내용임.

## 1. 고속도로 건설차관(1973~74년)

- ※ 주미국대사는 1973.2.4. 동 차관 도입에 관해 보고
  - IBRD 도로차관담당관이 제1차 고속도로차관(54.5백만 달러) 집행현황 검토와 제2차 차관(43백만 달러) 사전 이행조건 협의를 위해 2.14. 방한
  - 철도차관담당관이 제3차(40백만 달러) 및 제4차(40백만 달러) 철도차관 집행검토를 위해 1973.2.14.~24. 방한
- ※ 주미국대사는 1974.1.25. 관련사항 보고
  - 정춘택 주미국대사관 공사가 1.25. IBRD의 영동동해고속도로 건설차관협정서에 서명

## 2. 제2종합제철 건설차관(1973~74년)

- ※ 외무부는 1973.3.5. 주미국대사에게 아래 내용 통보
  - 포항종합제철 확장계획 중 cold mill 건설에 관한 정부 방침 결정
  - IBRD의 평가조사단 파견을 요청하며, 일본 공여분 자금문제를 IBRD가 일본 측과 직접 협의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3.5. IBRD에 타전
- ※ 주미국대사는 1974.2.20. 제2종합제철 건설을 위한 용역사업 차관협정서에 서명

## 3. 제5차 철도도입 차관(1971~74년)

- ※ 주미국대사는 1971.6.22. 철도차관도입에 관한 IBRD 한국담당이사와의 협의내용을 외무부에 보고
- ※ 주미국대사는 1974.5.21. IBRD 철도차관조사단의 방한계획(6월 중순)을 외무부에 보고



# 미국 EXIM BANK 차관도입

| 74-0838 |

생산연도	1973-1976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0 / 5 / 1~338p

1973~76년 중 미국 수출입은행 차관 도입에 관한 내용임.

## 1. 김포공항 시설 확장(1973~74년)

- ※ 주미국대사가 김포공항 확장사업을 위한 차관도입에 관해 미국 수출입은행과 협의한 내용을 수시 보고

## 2. 제7비료공장 건설(1973~74년)

- ※ 외무부가 1974.2.2. 주미국대사에게 동 비료공장 건설 소요 외자 중 1억44백만 달러 조달을 위해 교섭하도록 지시
- ※ 주미국대사가 8.20. 외무부에 미국 수출입은행이 동 차관을 8.16. 승인했음을 보고
- ※ 외무부가 8.29. 주미국대사에게 미국 수출입은행의 승인내용에 한국 정부가 동의함을 통보

## 3. 축지 및 지도제작 장비 도입(1974년)

- ※ 주미국대사가 1974.2.21. 동 사업차관 승인에 관한 한국 정부의 의견 문의
- ※ 양측이 5.3. 동 사업차관 도입에 관한 협정 체결
- ※ 외무부가 8.29. 주미국대사에게 동 차관자금 인출 마감일을 1975.8.31까지 연장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

## 4. 포항제철 냉연공장 건설(1974년)

- ※ 외무부가 1974.4.25. 및 8.8. 주미국대사에게 냉연공장 건설을 위한 차관 교섭을 지시  
- 총 4,023만 달러 규모
- ※ 주미국대사가 8.22. 외무부에 미국 수출입은행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보고
- ※ 외무부가 8.29. 주미국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동의를 수출입은행에 통보하도록 지시

## 5. 디젤기관차 도입(1974~75년)

- ※ 외무부가 1974.5.9. 주미국대사에게 동 차관 도입을 교섭하도록 지시  
- 총 4,210만 달러 규모
- ※ 미국 수출입은행이 6.26. 동 차관을 승인
- ※ 외무부가 1975.1.6. 주미국대사에게 동 차관협정(안)을 조속 송부할 것을 지시

## 6. 제2 위성통신지국 건설(1974~76년)

- ※ 외무부가 1974.5.29. 주미국대사에게 동 차관 도입 가능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  
- 총 5백만 달러 규모
- ※ 주미국대사가 9.6. 외무부에 미국 수출입은행이 9.3. 동 차관을 승인하였음을 보고

## AID(미국국제개발처) 차관 자금 환불 관계

| 74-0839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0 / 6 / 1~148p

1. 정부는 1973 회계연도 USAID(미국국제개발처) 개발차관(489-H-087) 현미구매 자금(22,925,535.41 달러)의 환불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USAID와 교섭할 것을 1973.7월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2. 주미국대사관이 1973.8월 USAID 측과 접촉한 바, USAID 측은 환불을 위해서는 공급자(Connel Rice And Sugar)가 관련 문서를 제시하여야 하나, 아직 동 문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 다만 USAID 측은 USAID 개발차관(489-H-084)에 의한 현미 구매시 KFX에 의해 지불된 초과 구매분 2,195,081.23달러(FOB 기준)에 대하여는 한국 측 계좌에 입금시킬 것임을 언급함.
  - 주미국대사관은 동 구매 시 KFX에 의해 지불된 해상운임(872,612.09달러)도 동일하게 인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지적함.
3. USAID 측은 1973.8.30. 1차 환불금 3,087,193.26달러를 한국 측 은행계좌에 입금함.
  - ※ USAID 측은 동 환불액이 한국 측의 환불 요청액과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차관협정서에 해상운송비 2%는 차주가 부담토록 되어있어 이 액수는 환불할 수 없기 때문임을 설명함.
4. 정부는 1973.10월부터 동 차관 자금 22백만 달러 환불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현미, 소맥 등을 도입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주미국대사관은 USAID 측과 협의 결과 1974.1월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함.
  - ※ 1973.1~6월까지의 계약분 중 미국 선박 선적분 약 3백만 달러 및 비미국선박 선적분 약 9백만 달러(총 약 12백만 달러)는 우선 환불함.
  - ※ 22백만 달러의 환불 예정액 중 잔여 약 10백만 달러에 관하여는 1973.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구매 계약한 사료곡물에 대해 USAID 규정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환불함.
5. USAID는 1974.2.25. 차관자금(489-H-087)으로 환불받은 소맥 대전 중 비미국선박 선적분 9,253,822.15 달러를 한국 측 은행계좌에 입금함.
  - ※ 미국 선박 선적분 2,927,739.33달러도 3.21. 한국 측 은행계좌에 입금됨.
6. 정부는 차관자금 중 미환불된 약 10백만 달러의 해결방안으로 1974.4월 한국 사업자를 미국에 파견하여 공급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토록 함.
  - ※ USAID는 한국 측의 차관자금 잔액 상환 신청과 관련 7월 8,918,053.17달러를 한국 측 계좌에 입금 조치함.

## 대모로코 인력진출

| 74-0840 |

생산연도	1974-1975
생산과	중동
MF번호	M-30 / 7 / 1~42p

### 1. 주모로코대사는 1974.1월 대모로코 인력진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모로코 왕실이 한국 태권도 사범 2인을 고용하고자 함.
- ※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Jaidi 주뉴욕 모로코총영사가 1974.2월 방한 예정임.

### 2. Jaidi 총영사는 1974.2.19.~20.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 측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이용기 5단, 김명옥 5단)를 면담함.

- ※ 동 총영사는 한국 측이 추천한 2명을 국왕에게 천거하고 추후 그 결과 통보할 것을 한국 방문시 언급함.

### 3. 주모로코대사는 모로코에 진출한 한국인에 대해 1974.6월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1974.4월부터 모로코 왕실에 근무하게 된 한국 태권도사범(2인) 및 부인(2인)은 각각 국왕 경호원에 대한 태권도 훈련과 왕실의 실내장식(조화)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
  - 동인들은 국왕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 심화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국왕은 동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훈련 및 왕궁 실내장식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하고 이를 적극 장려토록 하는 등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
- ※ 동인들의 근무와 관련 조화 제작 자료 및 태권도복 구입, 송부를 건의함.
  - 국왕용 식탁 등에 장식할 조화의 제작을 위한 자료 및 도구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바, 관련자료 등을 기증코자 함.
  - 국왕 경호원 100명은 아직 도복없이 태권도를 수련중인바, 도복 100벌 및 띠 150개를 기증코자 함.

### 4. 주모로코대사는 1974.4월 모로코 국왕의 동생 아브달라공이 한국인 남성 1인(마사지 및 정골사) 및 여성 1인(가정부 및 마사지사)을 고용코자 대사관 협조를 요청하여 왔음을 보고하면서 적당한 후보자 추천을 외무부에 건의함.

- ※ 외무부는 1974.6월 후보자 5인(남성 3인, 여성 2인)을 선발하여 주모로코대사관에 통보함.

## 한국 외환은행 Beirut(레바논)사무소 설치

| 74-084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0 / 8 / 1~14p

### 1. 주베이루트통상대표부는 현지 한국 외환은행 지점 설치 문제에 대해 1973.11.10.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주재국의 금융기관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은행 또는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의 신규허가는 일체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규정도 없으므로 동 법령의 유효기간인 1977.5.26.까지 한국 외환은행의 지점 설치는 불가능함.
- ※ 지점 설치 방법 외에 다른 가능성으로서는 현존하는 레바논 은행의 주식 과반수를 매수하여 레바논 법인체로 등록, 경영하는 방안이 있음.
- ※ 최근 중국(구 중공)과 라이베리아가 당지에 은행 지점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동 법 규정으로 인해 실패하였으며, 라이베리아는 현재 당지 은행의 매수를 추진 중에 있음.

### 2. 주베이루트통상대표부는 1974.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국 외환은행 베이루트사무소의 설치를 외무부에 건의함.

- ※ 한국 건설업체의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쿠웨이트 등으로의 진출로 금융감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
- ※ 유로 달러 및 석유자본의 항배 조사 및 자본협력의 가능성 조사가 필요함.
- ※ 향후 한국 외환은행 지점 설치를 위한 발판을 구축함.

### 3. 재무부가 1974.3.5.자로 한국 외환은행 베이루트사무소의 설치를 아래와 같이 허가함에 따라 한국 외환은행은 4월말경 동 사무소 개설을 목표로 준비를 추진함.

- ※ 명칭  
- 한국 외환은행 베이루트사무소
- ※ 위치  
- 레바논 베이루트시
- ※ 주재원수  
- 본국직원 3명  
- 현지직원 1명

# 대중앙아프리카 원면공장 기술자 및 경영자 파견 검토

| 74-084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M-30 / 9 / 1~47p

1. 주중앙아프리카대사는 중앙아프리카가 1974.5.12. 프랑스인이 경영하던 면화협동조합을 국유화 하였으며, 동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원면공장의 기술자 및 경영진의 파견을 한국 측에 요청하여 왔음을 7월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1974.8월 국내 관련부처인 상공부와 과학기술처에 중앙아프리카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파견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 ※ 상공부는 8.30. 화신에서 동 문제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 통보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정치정세 등 현지의 구체적인 상황
  - 실제로 담당할 업무의 기술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
  - 근무조건, 외국인 근무자 현황 등 참고사항
- ※ 과학기술처는 9월 중앙아프리카에 대한 전문가 파견이 불가능함을 외무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일본 주재 중앙아프리카대사관(한국 검입)이 1974.8.9.자 공한으로 중앙아프리카 측의 원면공장 기술자 및 경영진 파견 요청에 대한 한국 측의 검토결과를 조속히 통보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한데 대해, 외무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동 문제를 검토, 협의 중에 있음을 일본주재 중앙아프리카 대사관에 통보토록 8.22.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 ※ 주일본대사관은 동 지시대로 일본 주재 중앙아프리카대사관에 통보하였음을 8.26. 외무부에 보고함.

# 한·영국 기술협력사업

| 74-0843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0 / 10 / 1~95p

1973~74년 중 진행된 한·영국 기술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임.

## 1. 농업기계화 협력사업(훈련강화사업) 연장

### ※ 사업현황

- 기간: 1972.6~74.12월
- 예산: 외자 188,000파운드 및 내자 179,613,000원
- 영국 지원실적: 전문가 3인 방한 및 장비도입(84,900파운드 상당)
- 사업실적: 기술요원 훈련(2,227명) 및 시험연구 수행

### ※ 사업연장 계획(농촌진흥청)

- 기간: 1975~76년
- 예산: 외자 100,000파운드 및 내자 1억원
- 주요사업: 훈련사업(기술요원훈련 5,200명, 지방순회지도 138개군) 및 시험사업

### ※ 사업연장 결정

- 주한 영국대사관은 영국 ODA(해외개발처)가 동 사업기간 연장과 어느 정도의 사업확장에 동의하였음을 1974.7월 외무부에 통보함.
- 동 통보 시 영국 측은 현재 체한 중인 영국인 전문가 3인에 대해 1975년까지의 계약기간 연장 및 트랙터 전문가 1인의 파견을 제의함.
- 영국 측은 제안에 대해 한국 측은 트랙터 전문가 1인의 파견에 대해 동의하고, 영국인 전문가 3인의 용역기간은 연장 사업기간 2년에 맞추어 2년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함.

## 2. 메탄가스 이용시설 현대화에 관한 연구사업

### ※ 주요 연구사업

- 대형 가스발생장치의 설치
- 가스의 정화 및 압축저장 방법
- 메탄가스 이용도 확대 등

### ※ 추진경과

- 1974.4월 Peers 영국 ODA 고문의 방한 시 한·영국 양측이 사업추진에 합의함.
- 영국 ODA는 동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조만간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임을 9월 주영국 대사관에 알려줌.

### ※ 영국지원 요청사항

- 영국 전문가 2인 파견(1~2개월)
- 한국 기술자 2인 영국 내 훈련(2~3개월)
- 기자재(29,000파운드 상당) 지원

# 한 · 일본 과학기술장관회의, 제4차

| 74-0844 |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M-30 / 11 / 1~192p

## 1. 제4차 한 · 일본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실무자회의가 1974.1.24.~25. 일본 동경에서 개최됨.

### ※ 참석자

- 한국 측: 김형기 과학기술처 지역협력국장(수석대표) 외 대표단
- 일본 측: 오사카 과학기술청 진흥국장(수석대표) 외 대표단

### ※ 회의 결과

- 그동안 한 · 일본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점검하고, 다양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제4차 한 · 일본 과학기술장관회의를 1974.5.1.~3.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 2. 제4차 한 · 일본 과학기술장관회의가 1974.5.1.~3. 서울에서 개최됨.

### ※ 참석자

- 한국 측: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수석대표), 이창석 과학기술처차관(교체수석대표) 외 대표단
- 일본 측: 모리야마 긴지 과학기술처장관(수석대표) 외 대표단

### ※ 회의 의제

- 원자력 연구 및 실용화에 관한 협력
- 환경과학기술에 관한 기술협력
- 조력자원개발조사에 관한 연구
- 공동연구
- 연구기관간 제휴
- 과학전시 보급 및 계몽에 관한 협의

## 의료단 아프리카 파견 문제

| 74-084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M-30 / 12 / 1~14p

1. 주라이베리아대사대리는 한국 정부가 라이베리아에 2명의 외과의사를 파견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라이베리아 측이 감사서한을 보내왔음을 1974.3월 외무부에 보고하였으며, 또한 라이베리아가 희망하고 있는 한국 안과외과의 파견 전망에 대해 회시하여 줄 것을 4.6. 외무부에 요청함.

※ 주라이베리아대사대리는 4.25. 안과외과 파견 문제가 라이베리아 대통령 및 외상의 관심사항임을 강조하면서 동 파견 전망에 대해 즉시 회시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재요청함.

922

2. 주라이베리아대사는 경제과학심의회에서 주관하는 대아프리카 경제사절단 파견과 관련하여 조사 및 협의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줄 것을 1974.3월 외무부(국제경제국)에 건의함.

※ 경제 및 자본협력

- 철강석 개발참여 문제
- 소형선박 건조를 위한 조선소 합작투자 문제
- 제지공장 합작투자 또는 기술원조 문제
- 도로건설 참여

※ 기술협력

- 각 분야 훈련생 접수 및 전문가 파견
- 의사 증파, 특히 안과외과 1인 우선 파견

※ 통상진흥 분야

- 어획물 수출문제
- 봉제품 수출

3. 외무부 국제경제국이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의 안과외과 파견 건의 등에 대한 추진현황을 외무부 구아국(구주아프리카국)에 문의한 바, 구아국은 1974.8월 아래와 같이 국제경제국에 회신함.

※ 현재 한국 정부 파견 의사 3명(외과 2, 내과 1)이 라이베리아에 근무 중이며, 2명의 의사를 증파코자 추진 중에 있음.

※ 외과의 1명은 9월 중 파견 예정이며, 안과의 1명은 관계부처와 협조하였으나 후보자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감비아에 파견 근무 중인 안과의 1명을 라이베리아로 전출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



# Battesti, Barry 코트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 직업기술교육장관 방한, 1974.8.25.-9.1.

| 74-0846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아프리카
MF번호	M-30 / 13 / 1~122p

Barry Battesti 코트디부아르 직업기술교육장관이 1974.8.25.~9.1. 방한함.

## 1. 방한 경위

- ✿ Battesti 장관이 대만(구 자유중국) 정부 초청으로 대만을 방문하는 기회에 한국도 방문하기를 희망하여, 과학기술처장관 명의로 동인을 공식 초청

## 2. 방한 목적

- ✿ 한국 기술계통학교 및 직업기술양성소 견학
- ✿ 각 기업체 전문가, 행정 및 무역업계 간부 양성 과정 견학
- ✿ 기술교육담당 전문인사 방문

## 3. 주요 방한 일정

- ✿ 8.25.
  - 도착
- ✿ 8.26.
  - 과학기술처장관, 외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예방, 과학기술처장관 주최 만찬
- ✿ 8.27.
  - 노동청장 및 외무부 경제차관보 예방, 소사 중앙직업훈련원 방문
- ✿ 8.2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문, 고궁 관람
- ✿ 8.29.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및 아주공대 방문, 농촌진흥청장 예방
- ✿ 8.30.
  - 국무총리 예방, 부산 방문(부산기계공업학교 방문, 금성사 시찰)
- ✿ 8.31.
  - 울산 방문(시장 예방, 현대조선소 및 석유화학단지 시찰)
- ✿ 9.1.
  - 출발

92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일본 각계인사 서울시 지하철 개통행사 참석차 방한, 1974.8.14.-15.

| 74-084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M-30 / 14 / 1~72p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 종로선이 1974.8.15. 개통됨에 따라 지하철 종로선 건설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적극적인 협조를 한 일본 인사들을 지하철 개통행사에 초청함.

## 1. 주요 인사

- ✿ 시마 히데오 해외철도기술협력협회 회장
- ✿ 구라모치 히로시 해외경제협력기금 이사
- ✿ 아라키 모쿠치 제도고속도교통영단 총재
- ✿ 다키야마 마모루 국유철도 이사
- ✿ 아노 시게요 마루베니상사 전무
- ✿ 후자노 미쓰비시상사 회장
- ✿ 아키도미 기미마사 운수성 철도감독국장
- ✿ 마사히데 가나야마 전 주한 일본대사

## 2. 주요 행사

- ✿ 8.14.
  - 서울시장 예방
- ✿ 8.15.
  - 지하철 개통식 참석(청량리역)
  - 종로5가역 시설물 시찰
  - 서울역 시설물 시찰
  - 전철 개통식 참석(구로역)
  - 포상전수(국내건설업체)
  - 감사패 및 행운의 열쇠 전달
  - 리셉션 및 만찬

# 한·미국 간 원자력 5·6호기 핵연료 농축계약 체결, 1974.9.5. 및 11.13.

| 74-084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경제협력
MF번호	M-30 / 15 / 1~22p

1. 과학기술처는 한·미국 간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미국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아산 1, 2호기)에 공급할 핵연료 농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1974.6월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무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 ※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미국원자력위원회와 핵연료 농축계약 체결에 관한 정부의 승인을 요청함.
- ※ 이미 확정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가 1982.12월 및 1983.12월 각각 상업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농축우라늄 인수시기가 각각 1981.6월 및 1982.6월이 되는바, 이를 위해서는 미국 원자력 위원회의 우라늄 농축정책에 따라 1974.6.30.까지 미국원자력위원회와 농축계약을 체결해야 함.
- ※ 핵연료 농축계약 체결에 관한 정부 서면승인서 초안내용을 검토, 서명 후 미국원자력위원회에 통고토록 주미국 대사관에 지시함.

2. 한국전력주식회사는 1974.6.26. 핵연료 농축계약에 소요되는 착수금 176만 달러의 송금 통보서와 계약서를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행낭 편으로 미국원자력위원회에 송부함.

3. 미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1974.8.6. 대통령 성명으로 그간 보류하여왔던 외국과의 핵연료 농축계약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것이며 한국과도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핵연료 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8.5. 주미국대사관에 알려줌.

4. 미국원자력위원회가 1974.9.5. 핵연료농축계약서를 한국전력주식회사에 송부하였으나 동우편물의 전달이 지연되어 11.4. 동 사에 접수되었으며, 동 사는 11.13. 동 계약서에 서명 후 이를 등기우편으로 미국 측에 송부함.

- ※ 11.19. 주미국대사관은 동 사가 미국원자력위원회로 송부한 계약서가 아직 미도착이나 조만간 도착되어 동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 한 · 버뮤다 어업협력

| 74-084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0 / 16 / 1~70p

### 1. 수산청은 1974.10월 주미국대사관(외무부 경유)에 지시하여 동 대사관 수산관이 버뮤다에 출장하여 양국 어업협력에 관한 아래 사항을 조사, 보고토록 조치함.

- ※ 제3국과의 어업협력 및 합작사업 사례 또는 추진현황
- ※ 버뮤다가 한국에 희망하는 어업협력분야
- ※ 한국이 진출 가능한 분야
- ※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조업할 가능성 타진
- ※ 기존 시설이 부족할 경우 한국 측의 8,600톤급 냉동모선을 기지화하여 활용하고자 할 경우 버뮤다의 수락 여부 등

### 2. 주미국대사관 수산관은 1974.12.2.~5. 버뮤다에 출장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수산청(외무부 경유)에 보고함.

- ※ 출장시 접촉한 주요인사
  - 버뮤다 수상, 건설장관, 농수산장관, 농수산국장, 대법원 판사, 농수산관계 국회의원, 수산기구 직원 등
- ※ 제3국과의 어업협력관계
  - 제3국과의 어업협력관계는 없음.
  - 외국선박은 24시간 사전통보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음.
- ※ 한국에 희망하는 어업협력 분야
  - 버뮤다의 수산현황이 미약하고 해양연구조사 실적이 없어 구체적 제안은 없었음.
  - 연안에서의 조업 이외 어떠한 제의도 호의적으로 검토, 수용할 것이며 동시에 가능한 편의를 제공 하겠다고 함.
- ※ 한국의 진출가능 분야 등
  - 버뮤다 주변해역에 대한 시험조업을 실시한 후에 어업협력 형태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차적으로 시험조업과 기지사용, 기술협력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간 협력 체결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버뮤다 측은 기존시설 부족으로 한국의 8,600톤급 냉동모선을 기지로 한 협력문제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언급함.

# 캐나다의 북태평양에서의 넙치(Halibut) 보호조치 요청

| 74-085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M-30 / 17 / 1~75p

## 1. 캐나다 측은 1974.2월 북태평양 및 베링해에서의 넙치(Halibut) 보호 관리를 위한 한국 측의 협조를 아래와 같이 요청함.

- ※ 동 해역에서 일본, 한국 및 소련의 트롤어선 조업에 기인하여 넙치 재고가 격감되고 있음.
- ※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취한 것(시기별 해역제한)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 2. 캐나다 측은 1974.3월 북태평양 및 베링해에서의 넙치 보호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양국 관계당국자 간 회합을 갖기를 희망함.

## 3. 한국 측은 1974.5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캐나다 측에 전달함.

- ※ 3.31. 현재 북태평양에 출어중인 한국 트롤어선은 38척으로 캄차가 해역에서 명태를 주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문제의 해역에서는 넙치 어종에 대한 어로행위를 하고 있지 않음.
- ※ 동 해역에 조업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수산청 조치로 외국과의 어업협정 준수, 어종제한, 타어구 적재금지 등 규제조치를 위하여 1971.11.11. 수산청 고시 제43호(북태평양 어업허가 처분요령) 및 1972.12.29. 수산청 고시 제23호(북태평양 어획물 전재 허가 처분요령)를 시행중에 있음.  
- 또한 관련업계 이행사항을 계속 확인, 지도하고 있으며, 위반선박에 대하여는 수산업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 ※ 한국은 이미 제도적으로 넙치 어획에 대한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어 일본이 취한 바와 같은 시기별 해역제한이 필요 없으며, 또한 동 문제만을 위하여 캐나다 정부와 협의할 필요성도 현재로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음.

## 4. 캐나다 측은 한국 측의 입장 전달 관련, 1974.6월 아래와 같이 한국 측에 재요청함.

- ※ 캐나다 정부가 넙치 보호관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넙치 어종 자체에 대한 어로행위보다는 다른 어종 어로 시 부수적으로 잡힘에 따른 재고량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한국 측과 협의하고자 양측간 회의를 제안하였음.
- ※ 부수적 어획으로 잡히는 넙치의 어획량, 처리방법 및 이에 대한 한국의 규제조치를 알려주기 바람.

## 5. 한국 측은 캐나다 측의 재요청에 대해 1974.8월 아래 입장을 캐나다 측에 전달함.

- ※ 넙치에 대하여는 어획실적, 국내판매실적 및 수출실적이 없음.
- ※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획금지에 관한 지도계몽을 계속 실시하고 있어 위반 선박이 없음.
- ※ 따라서 부수적 어획 문제만을 위하여 캐나다 정부와 협의할 필요성이 없음.

## 한 · 이집트 어업협력

| 74-085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등
MF번호	M-30 / 18 / 1~18p

### 1. 외무부는 1974.4.12. 이집트 및 예멘과의 어업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

- ※ 회의 장소  
-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실
- ※ 회의 참석범위  
- 외무부, 과학기술처, 수산청 관계관
- ※ 회의 합의사항(대이집트 어업협력부분)  
- 정부는 대이집트 관계개선 및 유대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으로 수산협력을 우선 추진할 것을 주카이로총영사가 건의한 바 있고, 또한 주일 이집트대사(한국 겸임)도 양국간의 수산협력을 강조한 바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 경제협력분야 중 수산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함.  
- 이집트 측은 지중해, 홍해연안 어업 및 내수면 어업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수산청은 앞으로 어업훈련생 방한초청 및 한국전문가 파견, 어업합작, 어선수출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외무부에 통보하기로 함.

### 2. 주카이로총영사는 1974.6월 이집트와의 어업협력 추진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 및 건의함.

- ※ 이집트가 한국에 기대하고 있고 한국이 실제적으로 진출 가능한 분야는 원양어업분야임.  
- 이집트와의 합동원양어업은 사업성과 타당성이 엇보이며 이집트의 원양어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임.
- ※ 이집트 측과 상용 베이스에 입각한 합동원양어업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한국의 적절한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합작문제를 추진토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함.
- ※ 이집트 측은 연해 및 내수면 어업개발을 위한 한국전문가 파견 및 훈련생 방한 초청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으며, 반면 연해 및 내수면 어업의 개발확장을 위해 외국자본의 진출을 바라고 있음.

### 3. 주카이로총영사의 보고 및 건의와 관련하여 수산청은 1974.8월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통보함.

- ※ 대이집트 어업협력 진출을 위한 희망업체(원양, 연근해, 내수면)를 조사한바, 현 시점에서는 진출의 어려움을 통보함.
- ※ 대이집트 어망수출을 위해 8.8.부터 어망업계 대표(남양어망, 삼화제망)가 이집트 출장중임.

# 한·가나 어업협력

| 74-085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기술협력
MF번호	M-30 / 19 / 1~48p

## 1. 가나의 정부출자수산회사가 한국과의 어업협력(참치 및 새우 어업합작투자)에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외무부는 1974.9월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아래 내용을 조사, 보고하도록 지시함.

- ※ 동 합작투자에 따른 자본재 및 어업기술 진출에 대한 가나 정부의 의견
- ※ 관련회사의 구체적인 제의
- ※ 어장성 타진을 위한 시험조업 가능여부
- ※ 어업진출에 따른 기항편의, 입어로 지불방식 및 조건, 유류공급, 선수품 제공
- ※ 어업자원에 관한 자료
- ※ 외자관련 법규 등

## 2.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가나와의 어업협력에 관해 1974.11월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동 합작투자에 따른 자본재 및 어업기술진출에 대한 가나 정부의 의견
  - 가나 정부는 외국의 투자 및 외국업체의 진출을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어업 및 동 기술분야의 진출을 환영함.
- ※ 관련회사의 구체적인 제의
  - 동 회사는 참치어업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제의내용은 현재로서 준비된 것이 없으며, 다만 참치어선 3척을 5개년 계획기간에 확보하고자 함.
  - 새우어업 합작투자계획은 취소함.
- ※ 어장성 타진을 위한 시험조업 가능 여부
  - FAO(세계식량농업기구)가 시험조사 사업을 실시시함.
  - 필요하다면 더 구체적인 어장성 타진을 위한 시험조업이 가능함.
- ※ 어업진출에 따른 기항편의, 입어로 지불방식 및 조건, 유류공급, 선수품 제공
  - 가나 정부가 참치어업 합작투자 설립을 승인하게 되면 기항편의, 유류공급, 선수품 구입 등 제반편의를 제공할 것임.
  - 입어료는 연간 1척당 136달러 지불제를 실시함.
- ※ 외자관련 법규
  - 가나의 국립은행을 통해 통제, 관리함.

## 한 · 인도네시아 어업협력

| 74-0853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0 / 20 / 1~113p

### 1.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73.10월 한 · 인도네시아 어업협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한국의 수산조사선 태백산호가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양국간 공동수산조사 활동을 마치고 10.20. 귀항 예정임.
- ※ 동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근해의 참치어장이 유망시 됨으로 판명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시험조업 완료 단계에 있는 한국업체(사조산업, 대진해운)에 본격적인 대인도네시아 진출을 권장, 추진토록 요청함.

### 2. 외무부는 사조산업과 인도네시아 Nusantara Djaja사 간의 어업합작 및 대진해운과 인도네시아 Intisart Kota사 간의 어업합작 추진상황을 1974.2월 아래와 같이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통보함.

- ※ 사조산업의 합작사업
  - 1973.2.14.~10.18. 인도네시아 반다해에서 시험조업을 실시함.
  - 시험조업 결과 6개월간 척당 400톤을 어획하여야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작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9개월간의 시험조업 결과 164톤을 어획하여 계획에 훨씬 미달됨.
  - 따라서 사조산업은 10.19. 인도네시아 측에 합작사업 포기를 통고함.
- ※ 대진해운의 합작사업
  - 1973.4.5.~11.12. 인도양에서 시험조업을 실시함.
  - 인도네시아 측이 제시한 어장에서는 여건이 불량하여 조업을 포기하고 인도네시아 남부 공해상에서 조업하였던바, 어획실적이 비교적 양호하였음.
  - 그러나 시험조업선 제1정양호의 실 조업일수 183일간으로는 경제성을 판단할 수 없어 추가 시험조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합작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3. 외무부는 대진해운의 추가 시험조업 건에 대해 1974.5월 아래와 같이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통보함.

- ※ 대진해운은 보다 광범위한 어장조사와 어업협력 추진을 위해 제1정양호 외에 제2, 제3정양호 등으로 구성된 어선단을 파견하여 사업성을 검토코자 추진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수산청으로부터 동 시험조업의 연장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1.5. 받았음.
- ※ 이에 따라 대진해운은 동 어선단을 인도양에 파견하여 조업 중에 있음.



# 한·일본 어업 공동규제수역 내 어획량 및 출어선 척수 상호 통보

| 74-0854 |

생산연도	1973-1975
생산과	일본담당관
MF번호	M-30 / 21 / 1~87p

본 문서철에는 한·일본 양국이 한·일본 어업협정 합의의사록에 근거하여 분기별로 상호 통보한 한·일본 어업 공동규제수역 내 출어선 척수, 어획량 등이 수록되어 있음.

## 1. 1973년 3/4분기

- ※ 한국 측이 1974.1월 일본 측에 통보
- ※ 일본 측이 1973.12월 한국 측에 통보

## 2. 1973년 4/4분기

- ※ 한국 측이 1974.4월 일본 측에 통보
- ※ 일본 측이 4월 한국 측에 통보

## 3. 1974년 1/4분기

- ※ 한국 측이 1974.7월 일본 측에 통보
- ※ 일본 측이 6월 한국 측에 통보

## 4. 1974년 2/4분기

- ※ 한국 측이 1974.9월 일본 측에 통보
- ※ 일본 측이 9월 한국 측에 통보

## 5. 1974년 3/4분기

- ※ 한국 측이 1974.12월 일본 측에 통보
- ※ 일본 측이 12월 한국 측에 통보

## 6. 1974년 4/4분기

- ※ 한국 측이 1975.4월 일본 측에 통보
- ※ 일본 측이 3월 한국 측에 통보

## 한 · 모로코 어업협력

| 74-085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0 / 22 / 1~146p

### 1. 김동수 수산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어업사절단이 1974.6.12.~16. 모로코를 방문함.

※ 어업사절단 구성

- 김동수 수산청장
- 이종휘 수산청 기획관리실장
- 고정하 수산청 원양어업개발 담당관
- 이종국 남양주식회사 대표이사
- 유남열 남양주식회사 상무이사
- 김영록 대립수산주식회사 부사장
- 최휘웅 대립수산주식회사 라스팔마스 기지장
- 신요식 대진해운주식회사 라스팔마스 소장

※ 김동호 수산청장은 6.15. Layachi 모로코 수산청장과 아래 요지의 합의각서에서 서명함.

- 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추진
- 수산물 가공 및 어망제조공장과 조선시설 설립 방안 연구
- 모로코 수산분야 연수생 5명 방한초청 훈련
- 상기 사업에 한국 측은 최대 1,300만 달러의 재정지원 제의
- 양국간 어업협력협정 체결 검토

### 2. 김동수 수산청장은 1974.11.27.~29. 모로코를 재방문함.

※ 양국 수산청장은 11.27.~28. 양국간 어업협력 촉진문제를 협의함.

- 모로코 측은 한국 측의 모로코 양식어업 기술자 및 어민 초청 훈련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 측 경비 부담 5명 외에 모로코 정부 비용으로 5명의 추가 훈련을 요망함.
- 한국 측은 모로코 측이 한국 시험선의 모로코 연안조사를 강력히 요망함에 따라 동 가능성을 검토하여 추후 모로코 측에 통보해 주기로 함.
- 모로코 측은 양측의 합작투자에 의한 제3국 수익 진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음을 표명하고, 모로코 어업개발과 모로코 어민 소득증대에 양국 어업협력의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함.
- 모로코 측이 어망공장 설치를 요청한데 대해, 한국 측은 이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함.

# 한·모리타니아 어업협력

| 74-0856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경제협력2/마그레브담당관
MF번호	M-30 / 23 / 1~38p

## 1. 대림수산주식회사는 1973.9월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동 사의 모리타니아 어장 입어계획 추진 상황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 ※ 그동안 대림수산은 스페인 합작투자회사인 IMAPEC사와 모리타니아 연안 조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IMAPEC 측이 대림수산을 대리하여 모리타니아 당국에 대림수산 선박의 조업허가를 신청함.
- ※ IMAPEC 측에 의하면 모리타니아의 상공부 및 수산청과는 양해가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모리타니아 외무부와외의 절충이 미결상태라 함.
- ※ 주모로코대사의 모리타니아 방문시 대림수산 직원을 출장시켜 수산관계 협의에 참여시킬 예정으로 대림수산의 모리타니아 연안조업이 달성되도록 지원 바람.

## 2. 주세네갈대사관은 1974.3.25.~29. 세네갈에서 개최된 대서양어업개발회의에 참석한 모리타니아 대표 (Dherat 수산청 부청장)로부터 아래 정보를 입수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 ※ 대림수산의 모리타니아 진출에 대하여는 작년도에 정부의 허가수속이 이루어졌으나, 최종 시행단계에서 외무부장관의 반대로 실패하였음.
- ※ 최종 순간에 외무부장관이 개입한 동기는 확실치 않으나 때마침 모리타니아를 방문한 북한 부수상의 영향인 것으로 간주됨.
- ※ 모리타니아 수산당국은 한국과의 수산협력을 바라고 있으므로 금년중에 다시 대림수산업의 진출을 시도할 예정임.

## 3.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도 Dherat 모리타니아 수산청 부청장으로부터 입수한 아래 정보를 1974.4월 외무부에 보고함.

- ※ 합작투자 추진을 위하여 대림수산과의 접촉이 많았음.
- ※ 작년에 농수산부장관의 합작투자 허가 결재를 득하였으나, 갑자기 북한 측의 1백만 달러 원조에 따른 외무부 장관의 보류 요청 전화가 요인이 되어 현재 보류중임.
- ※ 대림수산업의 모리타니아 진출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

## 4. 외무부는 주세네갈대사관이 대림수산의 모리타니아 입어계획에 관하여 모리타니아 당국과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 회보할 것을 1974.4월 주세네갈대사관에 지시함.

## 한 · 모리셔스 어업협력

| 74-085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2
MF번호	M-30 / 24 / 1~18p

### 1. 외무부는 신임장 제정을 위해 모리셔스를 방문 예정인 주영국대사(모리셔스 겸임)에게 한 · 모리셔스 어업협력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모리셔스 측의 의향을 타진하도록 지시함.

- ※ 1971.7월 방한한 Duval 모리셔스 외상은 양국간 어업협력을 위한 합작투자 추진을 제의한 바 있으나, 상금 모리셔스 측은 구체적인 합작내용을 제의하지 않고 있음.
- ※ 한국으로서는 선박 현물출자 및 어로기술 제공에 관한 합작사업에 관하여 모리셔스 측이 구체적 제의를 할 경우 시험조업을 통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934

### 2. 신임장 제정차 1974.3.4.~10. 겸임국 모리셔스를 방문한 주영국대사는 Rangoolan 수상 및 Jagatsingh 경제상 등 면담 기회에 양국간의 어업협력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 모리셔스 측은 한국의 입장에 대하여 반기운 제의라고 환영하면서 이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검토한 후 재상의 할 것을 언급함.
- ※ 또한 모리셔스 측은 소련으로부터도 유사한 제의를 받고 있는 바, 대외 어업협력 전반에 관한 기본입장을 정할 것임을 언급함.

### 3. 외무부가 1974.5월 수산청에 대하여 대모리셔스 어업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수산청은 6월 대모리셔스 어업협력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회보함.

- ※ 모리셔스 Port Louise 기지에 출어중인 한국 어선에 모리셔스 선원을 승선시켜 어로 기술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함.
- ※ 선박수리기술 강습지도와 한국 선박의 현지 선박수리를 실시함.
- ※ 모리셔스 연안의 미개발 어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및 어민 방한초청 훈련을 실시함.
- ※ 선수품의 현지 구입으로 모리셔스 경제발전에 기여함.
- ※ 한국 및 일본 회사가 모리셔스 회사와 추진 중인 참치, 가다랭이 어업개발을 위한 합작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함.

# 한·스리랑카 어업협력

| 74-0858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경제협력2/통상1/서남아
MF번호	M-30 / 25 / 1~181p

1973~74년 중 추진된 한·스리랑카 어업협력 관련 내용임.

## 1. 한국 어선의 스리랑카 Galle 항 이용 문제

- ✪ 스리랑카 정부는 1972.10월 한국 어선의 Galle 항 이용을 요청한 바 있음.
- ✪ 한국 측은 1973.1월 참치연승선 20여척이 Galle 항을 기지로 이용토록 조치함.
- ✪ 1974.8월 현재 9개 회사 24척의 어선이 Galle 항을 이용 중임.
  - Galle 항에서 연료, 식수, 식료품 등을 조달받고 있으나 항구 시설의 부족으로 선진국 운송선박이 들어 오지 않고 있어 어획물의 전선이 곤란함.

## 2. 어업합작 추진 문제

- ✪ 1973.3월 스리랑카 정부가 어업합작을 제의함.
- ✪ 1973.12월 주콜롬보통상대표부는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회사를 스리랑카 Finco사 측에 통보함.
  - 오양수산: 현물(참치연승어선 3척) 투자
  - 부산 수산냉동 주식회사: 자본금(참치연승어선 5척 규모) 투자
- ✪ 1974.3월 Finco사의 대표가 방한하여 한국 측과 합작사업을 논의함.
- ✪ 1974.4월 동 사 대표는 오양수산의 참치연승 합작제의를 스리랑카 수산당국과 협의, 검토 중임을 한국 측에 회신함.

## 3. 어망공장 합작건설 문제

- ✪ 주콜롬보통상대표부는 1973.10월 이후 수차례 한국의 스리랑카 어망공장 합작사업 참여를 건의함.
  - 스리랑카 수상, 어업성장관 등의 관심사업인 어망공장 합작사업 참여가 양국관계 증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동 사업 참여를 강력히 건의함.
- ✪ 외무부는 수차례 수산청과 협의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국업체의 동 사업참여가 곤란하다는 수산청의 회보를 받음.
  - 한국 어망업체의 실정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한 실현 가능성이 없음.
  - 지역이 협소하여 시장성이 없고 물자수입도 정부 일괄구매제도에 따름.
  - 국제적인 원자재 품귀현상으로 소요 원자재의 적정 도입 전망이 밝지 않음.

## 한 · 세네갈 어업협력

| 74-085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0 / 26 / 1~24p

1974년 중 추진된 한 · 세네갈 어업협력 관련 내용임.

### 1. 남양원양외의 세네갈 영해 내 조업

- ※ 남양원양은 1972.4.20.부터 세네갈 영해 내 조업을 추진함.
- ※ 주세네갈대사관이 남양원양 사원의 세네갈 입국을 위하여 1974.5월 세네갈 외무성에 동인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을 요청하였고 동 외무성은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함.
- ※ 세네갈 수산청장은 아래와 같은 제의와 함께 남양원양과의 계약체결교섭을 11월 하순에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10월 주세네갈대사관에 통보함.
  - 남양원양이 어선 13척의 근해어로권을 얻는 조건으로 세네갈 측의 요구(어망제조공장건설, 기술훈련소 설치, 어류가공을 위한 합작회사 설치)를 수락할 것.
- ※ 남양원양 대표가 세네갈 측과의 교섭을 위해 12.5. 세네갈에 입국 예정임.

### 2. 참치어선분야 합작회사 설립

- ※ 세네갈 수산청은 1974.10월 참치어선분야의 한 · 세네갈 합작회사 설립을 아래와 같이 주세네갈대사관에 제의함.
  - 목적: 수도 다카르에 기존 또는 창설할 어획물 가공공업의 조성을 위한 참치활선어 어선장비 개척
  - 규모: 연간 1만 톤 생산을 위한 평균 척당 50톤의 어선 20척의 장비 예상
  - 구성: 자본금 5천만 프랑 CFA의 회사 창설(세네갈 측 지분 51%, 한국 측 지분 49%)
- ※ 삼송산업 대표가 합작회사 설립문제를 세네갈 측과 협의하기 위해 11월말 세네갈 방문 예정임.

# 한·스페인 어업협력

| 74-0860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경제협력/구주2
MF번호	M-31 / 1 / 1~102p

1974년 중 추진된 한·스페인 어업협력 관련 내용임.

## 1. 어선건조를 위한 어업협력차관

- ✪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스페인 어업공동위원회 시 스페인 대표는 현재 한국의 대진해운에 적용되고 있는 차관조건(연리 7.5%, 2년 거치 8년 상환)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차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조건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
- ✪ 7월 수산청은 한국 3개사(남양사, 동성산업, 해외산업)의 차관 신청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주스페인대사관이 스페인 측을 접촉하여 아래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 현재 차관을 신청할 경우 종전 조건으로 차관이 가능한 지 여부
  - 차관이 가능할 경우 선박건조에 참여할 수 있는 스페인 측 조선소 물색
- ✪ 8월 주스페인대사관은 스페인 측 접촉 결과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종전 차관 조건은 5.16. 서명된 OECD 협약에서 수정되어 6.14.자로 각 회원국에 통고, 시행됨.
  - 새로운 차관 조건은 연리 8%, 착수금 20%, 상환기간 7년임.
  - 경과조치로 종전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는 7.1. 이전에 공식승인이 있어 10.1. 이전에 본 계약이 서명된 경우에 한함.

## 2. 양국 합작 선박수리소 설치

- ✪ 한국의 남성원양은 스페인 회사와 함께 스페인령 라스팔마스에 합작회사인 NAHIKOSA사를 설립함.
  - 남성원양은 3.14. 설립자본금 10,000달러를 현지로 송금하고 동 합작회사에 근무할 기능공 8명을 파견함.
- ✪ 합작회사의 설립등기가 12.10. 마무리되었으며, 기능공에 대한 노동허가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됨.

## 3. 원양어업기지용 통신시설 Telex 설치 교섭

- ✪ 7월 수산청은 서울과 라스팔마스 원양어업기지 간의 교신을 신속히 하고 경제활동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동 기지에 Telex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주스페인대사관은 신속한 설치허가 취득을 위해 스페인 측과 교섭함.

## 마이크로네시아 연안에서의 시험 조업

| 74-086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1 / 2 / 1~78p

1. 수산청이 마이크로네시아 연해 상어어장 조사를 위한 시험조업을 아래와 같이 계획함에 따라, 외무부가 주호놀룰루총영사(관출장소장)에게 이를 현지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1974.1.11. 지시함.

- ※ 시험조사기간  
- 1974.2월 하순부터 45일간
- ※ 시험조사선  
- 국립수산진흥원 조사선 1척, 부산어업협동조합소속 어선 1척
- ※ 시험조사대상  
- 상어자원조사, 상어어획시험, 기타 관련사항
- ※ 시험조사대상 해역  
- 마이크로네시아 티니안 연안을 중심으로 한 해역

2. 주호놀룰루총영사는 한국의 상어어장 조사계획에 관한 현지 관계당국 접촉 결과를 1974.1.28.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동 지역(미태평양신탁통치지역) 정청은 한국의 상어어장 조사 실시를 원칙적으로 환영하나, 동 지역 내 연료(유류) 결핍으로 시험조사 기간 중 연료공급이 불가능하니 동 문제가 완화될 때까지 어장조사 실시를 연기하는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3. 수산청이 마이크로네시아연안에서의 시험조업을 티니안에서의 유류 보급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1974.2.27.~4.6.간 조사하는 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외무부가 주호놀룰루총영사에게 이를 현지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2.10. 지시함.

4. 주호놀룰루총영사는 한국의 상어어장 조사계획에 관한 현지 관계당국 접촉 결과를 1974.2.26.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동 지역 정청은 한국 측에서 시험조사선의 승선원 명단과 상세한 조사계획서만 제출하면 동 조사 실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함.

5. 마이크로네시아 연안에서의 시험조업이 아래와 같이 실시됨.

- ※ 시험조사선(태백산호 및 태양호) 일정  
- 1974.3.15. 괌 도착





- 3.19. 짜이판 도착
- 3.30. 티니안 도착
- ✿ 승선원(총 40명)
  - 태백산호 25명
  - 태양호 15명

## 한 · 미국 어업협력

| 74-0862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협력/조약
MF번호	M-31 / 3 / 1~133p

### 1. 미 국무부는 미국 서북대서양 대륙붕에 서식하는 바닷가재(lobster)를 자국의 대륙붕 수산 자원 리스트에 추가하는 법안에 대통령이 1974.1.2. 서명하였음을 1.22.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 미국의 서북대서양에서 어로를 하고 있거나 어로를 한 실적이 있는 한국 외 20개 국가에 통보됨.
- ※ 수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북대서양에서 한국의 바닷가재 어업실적은 전무하며 또한 동 수역 출어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음.

940

### 2. 미 국무부는 한국 어선 금용12호의 베링해에서의 게(Tanner Crab)포획이 미국 관계법 위반임을 1974.5.15.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 이와 관련 수산청은 동 어선이 베링해의 게 어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 어선이 당초 허가받은 구역에서만 조업하도록 긴급 지시하였으나, 게를 미국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륙붕 자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3.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미국 대륙붕 생물자원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새로운 조치(1974.12.5. 발효)를 취할 것임을 1974.9월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 강제승선
  - 미국의 대륙붕 생물자원을 어획할 목적으로 고안된 어구로 조업할 때
  - 미국 대륙붕 수산자원을 일반적으로 혼획하게 되는 Bottom Gear(저층 트롤 어구 포함)를 가지고 조업할 때
- ※ 대륙붕 자원의 집중 서식처에서의 조업 금지
- ※ 혼획된 대륙붕 생물자원의 즉각 방류
- ※ 미국과 양자협정 형식의 어업협정 체결 촉구

# 한·우루과이 어업협력

| 74-0863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1 / 4 / 1~88p

## 1. 강용순 수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남미 어업조사단이 1974.3.21.~25. 우루과이를 방문하여 우루과이 측과 양국간 어업협력 문제를 협의함.

### ※ 주요 일정

- 3.21. 우루과이 도착
- 3.22. 우루과이 수산청장 방문
- 3.25. 우루과이 상공부장관 예방 및 수산개발위원회 의장 방문, 우루과이 출발

### ※ 방문 결과

- 상공부장관을 예방하여 양국간 어업협력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기술 공여계획에 따라 초청, 훈련 예정인 우루과이 어업훈련생 2명을 조속 선발,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수산청을 방문하여 양국간 수산합작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 측 시험조업선을 우루과이에 파견키로 합의함.
- 수산개발위원회 의장을 방문하여 상호 어업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 어선 2척을 우루과이에 파견하여 시험조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의함.

## 2. 양국 수산청 간 합의 추진을 위해 함병림 삼송산업 사장이 1974.7.25.~29. 우루과이를 방문하여 우루과이 수산청 투자발전국장을 면담한 결과 참치연승 시험조업선 2척을 파견키로 합의함.

※ 1974.9월 수산청이 삼송산업의 우루과이 참치연승 시험조업 계획서를 우루과이 측에 제출함.

## 3. 우루과이 해군사령관은 1974.12.12. 주우루과이대사를 면담하고 한·우루과이 양국간의 어업협력 합의사항 실천문제 및 삼송산업의 시험조업 신청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 현재 허가할 수 있는 사업은 우루과이 선적의 새로운 선박과 육상시설을 균형있게 구비하고 외국인투자법에 의거하여 우루과이에 위치할 한국 어업회사 또는 한국과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임.
- ※ 어업훈련생에 관한 기술협력을 환영함.
- ※ 우루과이 어업개발계획은 국가통제하의 민간산업 육성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한국의 새로운 선박 판매차관 제의에 대해서는 민간회사가 응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 우루과이 정부는 참치어업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접촉하여 조사 시기, 장소, 기간, 필요기술, 어획물, 기타 이익처리 문제 등을 결정할 것임.

## 한 · 인도네시아 수산청장회의. 서울, 1974.5.17.-18.

| 74-086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1 / 5 / 1~40p

한 · 인도네시아 수산청장회의가 김동수 수산청장 및 Nizam Zachman 인도네시아 수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1974.5.17.~18. 서울에서 개최됨.

### 1. 회의 의제

- ※ 합작투자
  - 현재 담보 상태에 있는 합작투자사업 촉진 방안 검토
  - 가다랭이
- ※ 기술협력
  - 어패류 양식 기술자 상호교류
  - 인도네시아 어민 초청훈련
- ※ 어장 공동조사
- ※ 어선 연불수출
  - 새우 트롤어선
  - 인도네시아 어업에 적합한 어선
  - 연불 수출의 일반조건

### 2. 회의 결과(아래 요지의 합의의사록에 서명)

- ※ 연근해 개발
  - 한국 측이 인도네시아 연근해 개발을 위한 경험 및 기술 제공
- ※ 기술협력
  - 1975년에 한국기관에서 인도네시아 연수생 2명 훈련
- ※ 어장조사
  - 인도네시아 근해의 해양자원 조사에 양측이 협력
- ※ 합작투자
  - 참치연승 어업 합작투자를 위해 한국업체 대표가 1974.6월 인도네시아를 방문
  - 한국회사의 인도네시아 해역에서의 가다랭이 어업을 위한 합작사업 추진
  - 한국업체의 새우 트롤어업 합작투자 신청 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를 검토

#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9차, 서울, 1974.7.31.-8.3.

| 74-0865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동북아1
MF번호	M-31 / 6 / 1~301p

제9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가 1974.7.31.~8.3. 서울에서 개최됨.

## 1. 정부대표단

- ※ 국별위원
  - 강웅순 수산청차장, 신정섭 외무부 아주국장, 이봉래 수산진흥심의위 위원
- ※ 운영 소위원회
  - 신정섭 국장 외 수산청, 외무부, 내무부 관계관
- ※ 어업자원 소위원회
  - 강웅순 차장 외 수산청, 국립수산진흥원 관계관

## 2. 회의 결과(외무부의 참석보고서)

- ※ 회의일정
  - 1974.7.31. 본회의(개회식, 회의일정 및 의제 확정) 및 소위원회
  - 1974.8.1.~2. 소위원회
  - 1974.8.3. 본회의(소위 심의사항 검토 및 채택, 공동코뮤니케 합의, 폐회)
- ※ 소위원회 심의
  - 공동성명서 및 보고서 작성, 채택
- ※ 공동코뮤니케 주요내용
  - 제9차 한·일본 어업공동위가 1974.7.31.~8.3. 서울에서 개최
  - 양국의 어업자원 공동조사 결과, 부어류는 안정, 저어류는 주의하여야 할 상태임을 인정
  - 합리적 자원평가를 위해 조사수역 이외 수역 조사 및 자원관리 방안 검토 필요성 인정
  - 과거 1년간 어업사고 내용 검토결과 평가
  - 어선 간 사고처리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 협의
  - 소형어구에 대한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의 가해사고 방지를 위한 지도강화 합의
  -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 약정 체결을 위한 교섭 조속재개를 양국 정부에 건의
  - 제10차 공동위원회를 1975.5월 이후 일본 동경에서 개최기로 결정

# 한·일본 간 연안어업 정보교환 협의회

| 74-086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일본담당관
MF번호	M-31 / 7 / 1~17p

944

### 1. 외무부는 1974.3.5. 수산청에 1974년도 한·일본 연안어업 정보교환협의회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하고 회신을 요청함.

- ※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1974년도 등 협의회와 지방시찰을 3.26.~4.4. 실시할 것을 제의
  - 일본 측 참가자: 세토나이카이 수산청 어업조정 사무국장 외 2명
  - 일정: 협의회 개최(3.27.), 지방시찰(인천, 속초, 주문진, 묵호, 강릉, 부산)(3.28.~4.3.)
- ※ 수산청은 3.7. 외무부에 한국 측이 일본 측 제의에 동의함을 일본 측에 통보해 주기를 요청

### 2. 수산청은 1974.11.21. 외무부에 1974년도 한·일본 연안어업 정보교환협의회 개최 계획을 일본 측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 ※ 협의회 개최 계획
  - 기간: 1974.12.9.~17.
  - 조사 예정지: 니가타, 오사카, 히로시마,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 조사 참석요원: 수산청 협동조합과장 외 1명
- ※ 여행동기
  - 한·일본 어업협력협정 합의의사록 제7항 어업협력에 관한 공문에 의거, 한일본 양국 정부는 매년 관계관을 상호 교환
  - 연안어업(규제대상 어업 제외)의 조업실태 파악과 정보교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협의하고 양국의 수산업 현황을 시찰함으로써 상호 이해증진과 양국 어업격차의 해소 등 수산업 발전에 기여
- ※ 여행목적
  - 공동규제수역에 출어, 조업하는 연안어업 실태와 어획 등의 양육현황, 어기별·어종별 어획상황 등 각종 연안어업에 관한 정보의 교환과 실태 분석
  - 양육어업의 균형적 발전과 기술 및 경제분야의 상호 밀접한 협력 도모
- ※ 효과
  - 양국간 수산업에 관한 정보교환 및 상호협의를 통한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생산성 유지
  - 선진 일본수산의 제실정 파악, 분석으로 한국 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책 강구

### 3. 외무부는 1974.12.6. 수산청에 아래와 같이 통보함.

- ※ 주한 일본대사관은 12.4. 일본 측이 1974년도 한국 측의 연안어업 실태조사 및 정보교환 협의회 개최 제의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한을 외무부에 전달하여 왔음.

# 한·스페인 어업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74.5.22.-24.

| 74-0867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경제협력
MF번호	M-31 / 8 / 1~107p

제1차 한·스페인 어업공동위원회가 1974.5.22.~24. 서울에서 개최됨.

## 1. 정부대표단

- ※ 수석대표
  - 신동원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 대표
  - 수산청 기획관리관 등 수산청, 외무부 대표단 8명, 민간 대표 5명

## 2. 회의 결과

- ※ 회의 개최
  - 한·스페인 어업협력협정(1974.2.28. 체결)에 의거 개최
- ※ 합의의사록 요지
  - 해양자원의 보존과 관리문제: 양측은 상호 관심수역 내에서의 어로현황에 관해 검토, 스페인 측은 동수역 내에서의 어로문제에 관해 관심 표명
  - 민간 경제협력 문제: 뱀장어 양식사업, 간이 선박수리소 합작, 냉동시설 합작 등 사업을 계속 검토, 추진키로 합의
  - 선박건조 차관 문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차관 조건에만 부합하면 한국의 추가 선박건조를 위한 차관을 무제한 확보
  - 선원복지 문제: 한국선원을 위한 간이 의료소 설치 문제를 비롯한 복지향상 문제에 관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조할 것에 합의
  - 제2차 회의: 1975년 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키로 합의

## 한·일본 간 해도[참고자료]

| 74-086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M-31 / 9 / 1~48p

본 문서철에는 한국과 일본의 해도(海圖)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 1. 한국 측 해도

- ✿ 어업용 한반도 주변수역의 상세 해도
  - 1962년까지의 제 자료에 의해 편집
  - 수심(최저 저조면, 미터), 표고(평균수면상, 미터) 등 표시
  - 평화선, 어업공동 규제수역 표시 등
- ✿ 대한민국 수로국 발행

### 2. 일본 측 해도

- ✿ 아래 수역에 대한 어업용 상세 해도
  - 한반도 남해안 및 주변수역
  - 제주해협 및 주변수역
  - 쓰시마해협 및 주변수역
  - 혼슈(히로시마현 부근)
  - 세토나йка이 부근
  - 시모노세키 해협에서 부산항까지 바다
  - 수심과 표고 등 표시
- ✿ 일본 수로부 발행



# 한·호주 면양 시범목장 운영

| 74-0869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경제협력/경제조사
MF번호	M-31 / 10 / 1~49p

한·호주 면양 시범목장 운영에 관한 내용임.

## 1. 주한 호주대사관, 외무부에 면양 도입 통보(1974.4.22.)

- ※ 359두의 면양이 5.24. 항공편으로 도입
- ※ 면양수송 전문가가 동행하며, 동인을 단기 콜롬보플랜 전문가로 승인 요망

## 2. 외무부, 과학기술처 및 농수산부에 상기 사실 통보 및 편의제공 요청(1974.4.26.)

- ※ 과학기술처, 상기인 승인 통보(5.23.)

## 3. 주한 호주대사관, 한·호주 면양 시범목장 관리인 교체 통보(1974.4.22.)

## 4. 주호주대사관, 호주 면양 기증 관련 언론보도내용 보고(1974.5.27.)

- ※ 콜롬보플랜 원조계획에 의거, 호주 정부는 한국에 약속한 총 2,500두의 면양 중 1,050두는 이미 기증 - 5.23. 360두 추가 선적

## 5. 주한 호주대사관, 외무부에 면양 탁송지연 통보(1974.10.7)

- ※ 한국의 겨울 전 면양을 구입, 수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350두 면양 탁송이 1975.5월까지 지연될 예정

## 6. 주한 호주대사관, 외무부에 시범목장연구관 교체 통보(1974.11.6.)

- ※ 연구관 교체에 따른 승인 요청
- ※ 농수산부, 외무부에 상기인의 임명동의 통보(11.22.)
- ※ 과학기술처, 외무부에 동인의 교체 임명동의 통보(11.30.)
- ※ 외무부, 과학기술처에 동인의 내한 통보 및 필요조치 요청(12.10.) - 11.29. 동인이 내한

## 7. 과학기술처, 외무부에 호주 연수 후보자에 대한 필요조치 요청(1974.11.25.)

- ※ 신청서 및 각종 증명서 첨부

# 한·일본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 제6차. 서울, 1974.2.11.-12.

| 74-0870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M-31 / 11 / 1~183p

제6차 한·일본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가 1974.2.11.~12. 서울에서 개최됨.

## 1. 정부대표단

- ※ 수석대표
  - 손중호 농수산부 농림기획관
- ※ 대표
  - 외무부, 농수산부, 농촌진흥청, 수산청 등 관계관 15명

948

## 2. 한국대표단 훈령

- ※ 농림수산물분야의 기술증진이 한국 경제발전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별도 작성된 회의 자료를 기초로 국가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도록 활동
- ※ 농림수산물분야의 기술교류가 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하되, 금차회의 의제인 기술정보의 교류, 기술자의 교류, 종자·종묘의 교류, 시험연구의 협력 등 각 분야에 걸쳐 한국 측 요구사항을 상대 측에 충분히 이해시켜 회의의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할 것

## 3. 회의 결과

- ※ 종자·종묘의 교류
  - 산림종묘 등 총 66종에 대해 자국의 국내 규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공여, 알선키로 합의
  - 원예와 특용작물 3종에 대해 제공키로 합의
- ※ 기술자 교류
  - 일반기술자 24명 파견과 10명 초청은 양국간 기술협력계획(쿨롬보플랜)의 일환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협력키로 합의
  - 시험연구협력사업 기술자 11명 파견과 8명 초청은 향후 검토키로 합의
- ※ 기술 정보자료 교환
  - 요구분 180종 477부 중 제공 가능분 21종 75부 교환 합의
- ※ 농림수산물 시험연구 협력
  - 국제적응 연락시험 등 4개 사업에 대해 가능한 한 정보교환을 해가면서 검토키로 합의
- ※ 기타
  - 한국 측은 농사시험연구, 수산시험연구, 임업시험연구를 발표
  - 일본 측은 농림수산물시험연구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

# Robinson, Lionel 트리니다드토바고 농수산장관 방한 초청 계획

| 74-087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남미담당관
MF번호	M-31 / 12 / 1~17p

## 1. 외무부는 1973년 상반기 Lionel Robinson 트리니다드토바고 농수산장관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 ※ 윤석현 외무부차관이 1973.3.27. 동국 친선방문 시 Robinson 장관을 방한 초청
- ※ 중남미 경제협력 실무조사단의 동국 방문 시 단장 이문웅 연구관이 6.26. 한국 정부의 초청의사를 전달하고 농수산장관의 초청장을 전달

## 2. 외무부는 1973.7.26. 중남미 친선사절단장인 김동조 주미국대사에게 트리니다드토바고 방문 시 Robinson 장관의 방한시기를 확정하도록 지시함.

## 3. 주미국대사는 1973.10.10. Robinson 장관의 방한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주미국대사관은 주미국 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에 아래 요지의 공한을 발송
  - 한국 정부가 동 장관의 방한이 조속한 시일 내 이루어지기를 희망
  - 동 장관의 방한일자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
- ※ 동 건 진전사항을 계속 보고할 예정

## 4. 주미국대사는 1973.11.7. Robinson 장관의 방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추가 보고함.

- ※ 주미국 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 참사관은 주미국대사관이 송부한 동 장관 초청 공한을 접수 즉시 본국 정부에 전송하였으나 아직 이에 대한 회답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
- ※ 동 참사관은 사건임을 전제로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는 곧 국회가 새 수상을 선출하게 됨에 따라 각료들이 이 시기에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떠나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 5. 외무부 김용식 특사는 1974.7월 트리니다드토바고 방문 시 재차 Robinson 장관의 방한을 요청함.

## 6.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74.8.31. 미주국에 Robinson 장관의 방한 초청 관련 아래와 같이 통보함.

- ※ 김용식 특사의 카리브지역 순방보고서에 의하면 동 장관은 아직 방한시기를 결정하지 못하였으나, 1974년내 방한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언급
- ※ 이에 따라 동 장관의 방한초청을 재차 추진하고자 하니 동 장관의 초청경비를 미주국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 7. 외무부 미주국은 1974.9.11. 국제경제국에 Robinson 장관의 방한초청 경비는 외무부 추경예산 확정 후 검토하여 통보하겠다고 회신함.

## Butz, Earl L. 미국 농무장관 방한, 1974.4.18.-20.

| 74-087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31 / 13 / 1~73p

Earl L. Butz 미국 농무장관이 1974.4.18.~20. 방한함.

### 1. 외무부는 1974.3.8. 국무회의에서 Butz 농무장관의 방한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외무부는 2.28. 주미국대사에게 한· 미국 농무장관회의 개최 교섭을 훈령  
- Butz 장관은 방한초청을 수락, 1974.4.18.~20. 방한의사 표명
- ※ Butz 장관 방한 시 농수산부에서 요청하는 대미국 식량 장기확보를 위한 교섭을 한· 미국 농무장관 간에 갖는 것이 좋을 것
- ※ 동 장관의 아시아 순방계획(태국, 홍콩, 대만(구 자유중국), 일본)은 3.12 워싱턴에서 발표될 예정

### 2. 농수산부는 1974.4월 Butz 장관 방한에 관한 자료를 작성함.

- ※ 방한 경위, 동남아 순방일정, 일행 명단, 장관 주요약력
- ※ 방한 일정(1974.4.18.~20.)  
- 4.19.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등 예방, 양국 농상회의 개최  
- 4.20. 농촌 및 새마을마을 시찰, 이한

### 3. 외무부는 1974.4.20. 한· 미국 농무장관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한· 미국 농무장관 공동성명 요지(1974.4.19. 발표)  
- 세계식량의 균형된 수급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각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 확인  
- Butz 장관은 한국의 식량증산을 위한 노력을 치하  
- Butz 장관은 한국의 식량수요에 대한 안정된 공급을 위해 계속 협력하는데 합의  
- 미국은 PL480 약속을 존중하며 PL480 잔여분 선적은 수급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것
- ※ 미국 측은 비공식적으로 한국 농수산부장관의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언급했으나 이를 공동성명에 반영시키기를 회피
- ※ 공동성명 작성 협의 시 외무부 국제경제국이 주도

### 4. 외무부는 1974.4.23. 주미국대사에게 한· 미국 농무장관 공동성명을 참고하여 PL480 미도입분의 조기 선적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지시함.

# IMF(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제도 개혁 논의

| 74-087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1 / 15 / 1~22p

## 1. 외무부 경제기구과는 1974.6.18. 경제협력과와 경제조사과에 IMF(국제통화기금)의 국제통화제도 개혁 논의 내용을 요약 송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함.

- ※ IMF 국제통화 개혁 논의
  - 1974.6.12.~13.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IMF C-20회의에서 논의
- ※ 국제통화제도 개혁의 목적
  - 종래의 달러화 중심의 Breton Woods 시대에서 다국통화 영향권에 다가선 국제통화제도로의 이행을 촉구할 필요성 대두
  - 세계 유동성의 원활한 운용을 목적으로 1972.9월 C-20이 구성되어 국제통화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 착수
- ※ 국제통화제도 개혁의 방향
  - IMF 기구개편, SDR(특별인출권)의 가치 및 이자율, 금 문제, 변동환율의 운용지침, 개발도상국가의 이익 등 당면과제에 대한 방안 제시
-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금 보유량이 부족한 한국의 경우 이번 조치로 인한 이득은 별로 없음.
  - 서방 선진국가 등의 대외 결제수단의 증대로 개발도상국에의 실질재원 이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음.
  - 개발도상국의 출자액 증대로 IMF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됨.

## 2. 주미국대사는 1974.6.18. IMF의 각종 발표문을 외무부에 송부함.

- ※ IMF 이사회의 국제통화제도에 관한 임시위원회 설치(6.13.)
  - 목적: 국제통화제도의 운영과 적용에 대한 감독, 국제유동성 현황 리뷰 및 개발도상국에의 재원 이전, 협정조문의 수정 제안, 국제통화제도를 위협하는 급작스런 방해요소 검토
  - 구성원: 기금 이사진, 각 회원국이 지명하는 집행이사 등
- ※ 미국, 독일 등 16개국 통화의 SDR 평가기준(6.13.)
- ※ 변동환율제의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6.13.)
  - 서론, 고려요소, 가이드라인 내용
- ※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용 상승이 회원국의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각 회원국에 가용한 재원을 판단하는 기구 설치(6.13.)

| 74-0874 |

#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29차. Washington D.C., 1974.9.30.- 10.4.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1 / 16 / 1~367p

정부는 1974.9.30.~10.4.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9차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연차총회에 김용환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성환 한은총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한국대표단 훈령

- ※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금융분야에서의 한국의 지위향상과 동 기구와의 유대강화 노력
- ※ 국제통화 개혁문제에 대해 한국은 가능한 한 개도국 및 동남아그룹의 입장에서 그 방향을 제시 또는 주장
- ※ 금차 총회 참석 각국대표, 국제기구 인사와의 면담 및 회의 등을 통해 현안문제 및 공동 관심사의 해결을 위해 노력
- ※ 주요 선진국 및 IMF, IBRD로부터의 경제협력을 도모,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유리한 개발자금 확보 노력
- ※ 대만(구 자유중국)의 대표권 문제는 제28차 결의대로 동 문제가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총회에서 논의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
- ※ 국제통화 개혁, IBRD 융자정책, IMF 스탠드바이 차관 협의, IBRD 차관도입 교섭, 파푸아뉴기니 가입, 대만대표권 등 문제는 세부지침에 따라 수행

## 2. 한국대표단 보고

- ※ 1974.10.1.부터 상기 총회에서의 대표단의 활동상황을 수시로 전문 보고함.
  - 수석대표의 IBRD 총재 등 주요인사 면담 결과
  - 미국 재무장관, 이란 재무장관 등 주요국 수석대표의 연설요지 등

## 3. 주미국대사는 1974.10.8. 제29차 IMF/IBRD 연차총회 시 배부된 각종 회의자료를 외무부에 송부함.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이사회 회의록

| 74-087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1 / 17 / 1~185p

본 문서철에는 1974년 중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이사회 회의록 등이 수록됨.

## 1. 회의록(5.23)

- ※ 월레보고서 검토, 콜롬비아에의 투자승인 등 4개 결의안 채택

## 2. 회의록(6.11.)

- ※ 자메이카 개발은행 차관제공, 르완다 고속도로 개발 신용공여 등 7개 결의안 채택

## 3. IDA(국제개발청)과의 합동회의록(6.11., 6.14.)

- ※ 부르키나파소(구 오투볼타) 농업개발 프로젝트에의 신용공여 등 10개 결의안 채택

## 4. 회의록(6.6., 6.11., 6.20., 6.27.)

- ※ 차드 개발차관 등 19개 결의안 채택

## 5. 회의록(7.2. 7.5., 7.16., 7.11.)

- ※ 월레 국가별 프로젝트별 운영현황 보고서
- ※ 필리핀 국가전력공사에의 차관제공 등 9개 결의안 채택
- ※ 말레이시아 국가전력청에의 차관제공 등 6개 결의안 채택
- ※ 마다가스카르(구 말라가시) 축산업 개발 프로젝트 승인 등 6개 결의안 채택
- ※ 레소토 교육 프로젝트 승인 등 2개 결의안 채택

## 6. 회의록(10.22., 10.29., 11.5., 11.12.)

- ※ 레바논 근동은행 주식투자 승인 결의안 채택
- ※ 터키 회사 투자 등 5개 결의안 채택
- ※ 필리핀 국립은행 차관승인 결의안 채택
- ※ 모리타니아 개발차관 공여 승인 등 3개 결의안 채택

95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IMF(국제통화기금) 동남아그룹 국제통화 전문가 회의, 제3-4차

| 74-0876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1 / 18 / 1~106p

## 1. 정부는 1974.1.7.~9.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3차 동남아그룹 국제통화 전문가회의에 김창희 재무부 외환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 회의참가 목적

- 현재 IMF(국제통화기금)의 20개국 위원회에서 토의 중인 국제통화 개혁문제를 개도국 입장에서 검토하고, 한국 등 동남아그룹 구성국들이 20개국 위원회에 반영시킬 공동의견 및 대책 등을 토의
- 차기 제4차 회의는 IMF 출자금 순위에 따라 한국이 주최하게 될 것임에 비추어 이에 관한 구성국들의 구체적 의사타진 및 필요한 제반 자료를 수집

### ※ 대표단 훈령

- 국제통화제도 개혁문제에 관한 토의과정에서 개도국 입장에서, 한국의 현재 및 장래의 경제정책에 부응하도록 제의 또는 주장
- IMF 조직개편, SDR(IMF의 특별인출권)의 가치문제, IMF 쿠틀 구조조정 문제, 국제수지 조정문제, 개도국으로의 실질재원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세부지침에 따라 이행
- 차기회의는 IMF 쿠틀 및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출자금 순위에 따라 한국이 개최하여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2. 정부는 1974.5.30.~6.1. 미얀마(구 버마) 랑군에서 개최된 제4차 동남아그룹 국제통화 전문가회의에 김창희 재무부 외환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 대표단 훈령

-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그룹 구성국과의 유대강화
- 국제통화제도 개혁문제에 관한 토의과정에서 개도국 입장에서, 한국의 현재 및 장래의 경제정책에 부응하도록 의견 제시
- 제5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되 개최시기는 20개국 위원회 실무급위원회 토의 진전상황을 감안하여 1974년 하반기 중 적당한 시기를 택할 것



# 제7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서의 대만 (구 자유중국) 대표권 문제

| 74-087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1 / 19 / 1~62p

## 1. 재무부는 1974.3.28.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의 대만(구 자유중국) 대표권 문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제7차 ADB 연차총회(1974.4.25.~27., 쿠알라룸푸르) 시 ADB에서의 대만 대표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대표단의 활동지침에 참고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의견 통보를 요청함.

## 2. 외무부는 1974.4.10. 부내 의견을 종합하여 재무부에 아래 의견을 통보함.

- ※ 국제경제기구에서 대만 대표권 문제가 거론될 경우, 중국(구 중공)의 기구 가입에는 반대하지 않고, 대만의 축출에 찬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의 기본 입장임.
- ※ 그러나, 대만이 1971년도 유엔으로부터 축출된 이래 유엔전문기구 등 기타 많은 정부간 국제기구로부터 축출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 금차 ADB 총회에서 대만의 대표권 문제가 거론되는 경우, 한국은 적극적인 입장 표명은 피하고 회의전체 분위기를 고려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임.

## 3. 주한 대만대사는 1974.4.9. 외무부 경제차관보를 방문, ADB 총회에서의 대만 대표권 문제가 거론될 경우, 아래 자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함.

※ 대표권 문제는 총회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우선 이사회에서 검토 후 총회에 보고되어야 함.

## 4. 외무부는 1974.4.19. ADB에서의 대만 대표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수립함.

- ※ 총회 벽두에 대만 대표권 문제를 의제로 추가하자는 친중국 국가의 긴급동의가 표결에 부쳐질 경우, 한국은 이에 반대함.
- ※ 총회 또는 의사위원회에서 동 대표권문제가 토의될 경우 아래와 같이 대처함.
  - “대만 대표권 문제가 총회에서 논의되기보다는 이사회에서의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치도록”하는 대안을 타우방국이 발의하면 이를 지지할 것
  - 상기 대안을 타우방국이 제안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단독으로 제안하는 것은 피할 것
  - 상기 대안을 단독 제안하는 우방국이 없는 경우, 타우방국과 협조하여 공동제안을 추진하는 것도 가함.

## 5. 주한 대만대사는 1974.5.7. 외무부에 ADB 총회에서의 대만 대표권 문제 관련 아래 요지의 공한을 송부함.

- ※ 대만 대표권 문제에 관한 파키스탄 대표의 발언이 ADB 총회에서 있었으나, 타 회원국대표들에 의해 묵살됨.
- ※ 대만 정부를 대표하여 동 회의기간 중 한국 정부가 베푼 친절한 협조에 대해 감사하며, 아울러 앞으로도 ADB 내에서 대만 정부를 지원하고 협조해 주기를 희망함.

#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제7차, Kuala Lumpur, 1974.4.25.-27.

| 74-087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2 / 1 / 1~185p

정부는 1974.4.25.~27.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7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남덕우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대표단 훈령

- ※ ADB정책 및 활동방향 제시
  - 유류 수입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ADB 역할의 중요성 강조하고 ADB의 자금 조달과 융자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 ※ ADB 차관 도입의 적극추진 및 핀란드와의 임업개발협력 추진
- ※ ADF(아시아개발기금) 설립 시 한국과 같은 유류수입 개발도상국이 포함되도록 추진
- ※ ADB에서의 대만(구 자유중국) 대표권 문제에 대하여는 세부지침에 따라 대처

## 2. 대표단 보고(1974.5.1)

- ※ 한국 수석대표 발언 및 주요인사 면담 요지
  - 비산유 개발도상국의 교역조건 악화 및 경기침체 타개를 위해 지원강화 촉구
  - 국제통화개혁 지연 및 인플레이 대책의 협조 부족현상 지적
  - ADB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개발용자 지원확보(석유달러 이용 등)에 둘 것
  - ADB 총재, 미 재무장관, 일 대장상 등을 면담, 개도국에 대한 특별배려를 요청하고 ADB의 차관공여 약속, 한·일본 경제협력의 질적개선 추진 약속 등을 확보
- ※ 대만 대표권 문제
  - 파키스탄 대표단이 기조연설에서 아래 요지로 대만 대표권 문제 언급
  - 아시아의 대국인 중국(구 중공)의 진정한 대표가 ADB에 가입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며, 중국을 유일한 대표로 인정한 유엔의 결의에 따라 현재의 잘못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지체없이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

# EC(구주공동체) 확대에 따른 GATT(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 관세율 재교섭

| 74-0879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2 / 2 / 1~142p

## 1. 외무부는 1973.3.31. 아래 요지의 내부건의를 통해 EC(구주공동체) 확대에 따른 GATT(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 관세율 재교섭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함.

- ※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등의 EC 가입이 1973.1.1. 발효되고, GATT 제24조 5(a)항에 의한 확대 EC와의 양허관세율 재교섭을 제28차 GATT 총회 결정에 따라 1973.3~7월 제네바에서 행하게 되어 있는 바, 확대 EC와 양허관세율을 재교섭하고자 하는 국가는 GATT 제28조에 의거해 이해관계품목 리스트(Claims of Interest)를 EC와 GATT 사무국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
- ※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등의 EC 가입으로 인한 이해득실 비교에서 관세수준면이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면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동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유리한 조건이 많아지며, EC 가입으로 인해 영국 등 3개국의 관세가 인상되는 수출 품목은 수가에 불과함.
- ※ 따라서 수개의 관세인상 품목을 확대 EC에 대한 Claims of Interest로 제출, 재교섭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에 유리한 점이 표면화될 것이므로 Claims of Interest 제출은 보류하고, 한국이 개발도상국임과 대EC 무역역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한국의 대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수출품목 중 관세가 인상되는 품목과 GSP Ceiling 채택으로 특혜관세 수혜가 제한되는 품목에 대해 EC 당국의 호의적인 배려를 요구할 것을 지시 하는 훈령을 관계부처와 협의 후 주제네바대사에게 시달함.

## 2. 주제네바대사는 1974.4.24. 아래 의견을 외무부에 보고함.

- ※ 영국 등의 EC 가입으로 한국은 GSP를 포함한 관세면에서 종전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며 직물류 등 이외의 관계품목의 경우에는 최초교섭국 내지 주요 공급국이 아니므로 GATT 제28조의 주요 관계국이 될 수 없을 것임에 비추어 작년 4월 재교섭을 위한 Claims of Interest를 제기치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음.
- ※ 따라서 EC 확대에 의해 한국의 수출상품 중 관세 수준이 인상되는 품목에 관한 대EC 교섭은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추진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관세그룹 회의

| 74-088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2 / 3 / 1~68p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74.4.11.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제2차 관세작업단회의가 5.14.부터 개최되며 동 회의에서는 협상방법의 모색을 위한 관세관계 기초자료 수집, 관세율 기준일자(Base Date) 및 기준율(Base Rate)의 결정 등 향후 관세인하 교섭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의제가 토의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관세관계 전문직원의 파견을 건의함.

958

2. 재무부는 1974.5.3. 동 작업단회의에는 주제네바대표부에서 참석토록 외무부에 요청하고 훈령안에 대한 아래 요지의 의견을 통보함.

- ✿ Base Date  
- 자료의 최신화를 위해 1973년 또는 그 이후를 기준
- ✿ Base Rate  
- 비잠정적인 성격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관세율 기준 등

3. 주제네바대표부는 1974.5.17. 아래 요지의 동 작업단회의(1974.5.14.~16.)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 Base Date에 대해서는 1972년 이후 연도에서 가능한 각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자로 하자는데 대체적인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일자를 정하지 못함.
- ✿ Base Rate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계 자료수집에 관한 제안을 검토 후 결정기로 함.
- ✿ 관세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미국의 제안에 대해 Tariff Data Bank를 만든다는 원칙에 합의함.  
- 동 자료수집 문제 토의과정에서 개도국 대표들은 GSP(일반특혜관세제도) Rate도 자료수집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였으나, 미국 및 일본 대표는 GSP Rate는 다자무역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 피력
- ✿ 다자무역협상에서 사용할 통계 수집을 위한 기준년도에 관하여는 1년간의 통계를 기초로 하는 것보다 수년간의 통계를 기초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구체적인 연도에 대해서는 결론을 얻지 못함.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열대산품그룹회의

| 74-088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2 / 4 / 1~16p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74.2.20. MTN(다자간무역협상) 열대산품 작업단 제1차 회의(1974.2.18.~20.)에서 제2차 회의(1974.4.23.~25.) 시까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이 준비해야 할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동 작업단 자체의 작업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제네바대표부는 1974.4.26. 동 작업단 제2차 회의에서 코코아, 커피, 바나나 등 품목별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차기 회의는 사무국이 일자를 정하여 통보키로 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주제네바대표부는 1974.7.16. 동 작업단 제3차 회의(1974.7.10.~15.)에서 사무국에서 준비한 자료를 기초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저개발 수출국들은 동 품목에 대해 선진 수입국들이 높은 관세, 비관세장벽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협상과정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완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 동 회의 시 미국대표는 무역협상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는 양허를 하여야 하되 개도국은 그 경제발전, 재정, 교역의 정도에 상응하는 양허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재천명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NTB(비관세장벽) 그룹회의

| 74-0882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경제기구
MF번호	M-32 / 5 / 1~147p

## 1. 1974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NTB(비관세장벽) 작업단회의 결과에 대해 주제네바대표부가 외무부에 수시로 보고한 문서임.

- ※ 1974.3.4~8. 공산품의 비관세장벽 작업단회의 결과(3.8. 보고)
  - NTB Inventory에 관해 GATT 사무국에서 신규 개정 발간한 Inventory에 전 품목을 모두 다루기는 곤란하므로 새로 제기되었거나 수집된 문제점 등의 타당성 검토를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등
- ※ 1974.5.7~8. Packaging and Labelling에 관한 작업단회의 결과(5.9. 보고)
  - Clarification of the Problems 토의에서는 우선 Packaging과 Labelling을 구분하여 논의하기로 결정
  - Packaging 부분에서는 Requirement의 형태로서 특정 원료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것과 Size 및 Standard of Fill 등이 있으며 이 모두가 교역 면에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데 의견 일치 등
- ※ 1974.10.3~4. 특별대우(Differential Treatment) 가능성 검토를 위한 보조금 및 상계관세 작업단회의 결과(10.7. 보고)
  - 개도국들은 선·개도국 간 권리, 의무상의 균형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보조금 및 상계관세 문제는 대개도국 특별대우 원칙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
  - 선진국의 강력한 반대로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으나 대체로 개도국의 발전 정도에 상응하는 특별취급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 개진

## 2. 본 문서철에는 동 작업단회의 관련 외무부의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 앞 의견문의 문서, 동 회의 관련 GATT 문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자료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2 / 6 / 1~92p

##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74.10.2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Measures,SM) 작업단회의(1974.10.17.~18.) 결과를 외무부에 아래 요지로 보고함.

- ※ 브라질대표는 SM 문제는 개도국의 무역신장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므로 MTN에서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하며 개도국 수출에 차별 적용을 두고 검토해야 함을 주장
- ※ 이에 대해 미국대표는 우선 GATT 제19조 적용상의 문제점, 제19조와 제28조와의 관계 등 문제점을 먼저 확인한 후 SM 적용에 따른 개선점 모색을 주장
- ※ 캐나다, 스위스, 호주,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은 무차별 적용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EC는 수출입국의 피해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SM 기준 수립이 필요함을 언급

## 2. 외무부는 1974.11.21. GATT 사무국이 한국에 아래 요지의 질문서를 송부해 왔음을 재무부 및 상공부에 통보하고 자료 작성을 요청함.

- ※ 최근 5년간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의 피해 또는 그 위험을 야기시킨 사례
- ※ 이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긴급수입제한조치
- ※ 최근 5년간 한국의 수출품에 대해 수입국이 국내시장 보호를 이유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한 사례 등

## 3. 본 문서철에는 상기 질문서에 대한 재무부 등 관련부처 작성 현황자료, 동 작업단회의 관련 GATT 문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Sector Approach 그룹회의

| 74-0884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2 / 7 / 1~45p

##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74.10.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SA(Sector Approach) 작업단회의(1974.10.7.~9.) 결과에 대해 외무부에 아래 요지로 보고함.

- ※ SA는 일반 협상방식에 대한 보완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Sector의 정의, 선정기준,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함.
- ※ SA의 제안국인 캐나다는 Sector의 선정기준으로 국제교역량이 상당히 있을 것, 국제거래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힐 것, 규모의 경제 및 집중적인 자본투자가 산업발전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일 것, 무역에 관한 장벽의 제거가 가능할 것 등을 제시
  - 이에 대해 EC(구주공동체)는 규모의 경제 및 집중적 자본 투자 등은 Sector 선정기준으로 부적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그 대신 관세인하만으로는 상당한 무역자유화를 기하기 곤란한 것, 과점적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국제교역에 장애가 되는 것 등을 기준으로 제시
- ※ 개도국 대표들은 Sector의 선정에서 개도국의 관심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이 방법에 의한 협상에 있어서도 개도국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며, 열대산품은 SA의 대상이 되는 Sector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
- ※ GATT 사무국이 향후 작업을 위해 기초문서를 작성하기로 결정 등
  - 동 문서에는 과거 협상에서의 SA 활용내용, SA의 목적, 원칙, 개도국의 주요관심대상 Sector 선정 내용 등을 포함

## 2. 본 문서철에는 SA 작업단 회의 관련 GATT 문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28조에 의거한 체약국간 양허표 수정

| 74-0885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2 / 8 / 1~226p

## 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8조에 의거한 GATT 체약국 당사자 간 교섭결과 및 양허표 수정에 관한 GATT 문서(영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예시).

- ✿ 핀란드 정부의 양허표 수정을 위한 교섭 개시 결정을 회람하는 문서(72.6.16.) 및 핀란드의 관세양허표(7.28.)
- ✿ 뉴질랜드와 영국 간 협상 결과를 회람하는 문서(8.31.)
- ✿ 브라질과 EC(구주공동체) 간 협상 결과를 회람하는 문서(73.1.5.)
- ✿ 호주와 미국 간 협상 결과를 회람하는 문서(74.1.30.)
-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스웨덴 간 협상 결과를 회람하는 문서(6.12.)
-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 간 협상 결과를 회람하는 문서(7.31.)

## 2. 외무부는 1974.11.27. 일본정부는 GATT 제28조 5항에 의거 일본의 양허표(Schedule 38)중 신발류 (ex 64.01 ski boots) 품목을 철회할 뜻을 GATT 사무국에 통보하고 관심있는 국가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하였음을 재무부 및 상공부에 통보하고 협상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함.

- ✿ 상공부는 12.11. 한국은 동 품목 생산실적 및 대일본 수출실적이 없으므로 일본과의 협상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외무부에 통보
- ✿ 재무부는 12.13. 한국의 양허 철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협의에 응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한국에서 제시하는 양허철회 요청품목에 대해서도 일본 측이 이익을 제기하지 않도록 차제에 교섭함이 바람직할 것임을 외무부에 통보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30차. Genava, 1974.11.19.-21.

| 74-088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2 / 9 / 1~103p

정부는 1974.11.19.~22.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0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에 문덕주 주이탈리아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황호을 주제네바대사)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 1. 대표단 훈령(일반지침)

- ※ 금차 총회는 작년 하반기 이래로 표면화된 자원파동 격동기 중에 열리는 첫번째 총회인 만큼 개발도상국으로서 GATT 제4부의 실천을 강조
- ※ 자원파동에 따른 보호무역동향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관세 및 무역상의 각종 제한조치철폐 및 완화 주장 등

## 2. 회의 결과(토의요지)

- ※ 총회 의장(기다하라 일본대사)은 1974.11.19. 개회연설에서 금년도의 심각한 경제상황에 대처할 GATT 임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다자간 무역협상 및 각국의 무역자유화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 ※ 한국대표는 11.19. 이사회 보고서 심의 시 섬유류 무역 관련, MFA(다국간섬유협정) 조항의 해석상 견해차 문제는 GATT와 MFA의 일반적 이상(무역자유화, 교역중대)을 고려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여하한 제한조치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을 강조
- ※ 한국대표는 11.20. 회의 시 세계무역이 보호무역주의의 희생물이 될 우려를 표시하고 GATT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감시기능을 갖추는 문제를 시사하는 한편,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고려를 촉구
- ※ 동 회의 시 다수 개도국 대표들은 선진국의 수입제한조치 완화 등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고 GSP(일반특혜 관세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
- ※ 미국대표는 통상법안의 의회 통과 실현을 위해 포드 미국 대통령이 미상원에 촉구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 기타 선진국들은 다자간 무역협상의 조속 실시를 강조하고 개도국을 위한 무역자유화노력 등을 설명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내 원산지 규정문제 협의. Geneva

| 74-0887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경제기구
MF번호	M-32 / 10 / 1~174

## 1. 외무부는 1974.2.11. 아래 요지의 내부건의를 통해 EC(구주공동체) 및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 간 특혜원산지 규정에 관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협의 절차에 한국도 참가하기로 결정함.

-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4.1.22. 공한을 통해 EC 및 EFTA 국가들이 상호간 특혜무역에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이 GATT 규정에 배치되고 미국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GATT 제22조 및 동 절차규정에 의거, 해당국들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음을 밝히고 한국도 동 협의에 참가할 것을 요청함.
- ※ 원산지 규정의 문제점
  - 동 규정은 EC 및 EFTA 국가 간의 특혜무역협정에 따른 상호간 특별관세대우 및 무관세 수입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상품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역외국가의 무역상 이익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 ※ 미국의 입장
  - 동 규정은 역내국간 무역편중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역외국에 대해 보호주의적 효과를 갖게 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음.
- ※ 한국의 입장
  - 한국은 EC 및 EFTA 국가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EC와 EFTA 국가 간의 특혜무역 강화는 한국이 받고 있는 GSP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1973.10.19. GATT 이사회에서 EC와 EFTA 국가 간의 원산지 규정 검토를 위한 작업단 설치를 제의한 미국 입장을 지지함.
  - 최근 EC 당국은 한국의 수출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한국에 대하여는 앞으로 GSP의 내용을 제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따라서 미국이 제의한 협의에 한국도 참가하여 한국이 현재 받고 있는 특혜이익이 동 규정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EC 및 EFTA 국가를 자극하는 발언이나 태도표명은 피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GSP의 중요성을 강조함.

## 2. 상기 EC 및 EFTA와의 협의결과는 아래와 같음.

- ※ 1차 협의(1974.4.29., 제네바)
  - 미국이 EFTA의 신·구 원산지 규정을 배포하고 향후 협의 및 절차 문제를 논의함.
  - 동 협의에는 한국, 캐나다, 일본, 폴란드도 참가하고 루마니아는 옵서버로 참여함.
- ※ 2차 협의(7.11., 제네바)
  - 미국이 제안한 GATT 사무국 직원의 동 협의 배석(회의록 작성, 배포 등)에 대해 EC 및 EFTA 측이 반대하여 절차상 문제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함.
  - EC 및 EFTA 측은 동 원산지 규정이 역외국의 동 지역에 대한 수출을 저해한 사례가 있으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함.
  - 3차 협의(10월초)에서 동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TCN(무역협상위원회) 회의, 제3차. Geneva, 1974.7.17.-18.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2 / 11 / 1~142p

정부는 1974.7.17.~18.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 정우영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회의참가 목적

966

- ※ GATT 다자간무역협상 결과는 1970년대 후반기 세계무역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를 통한 국제금융질서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과 병행, GATT는 금번 회의를 통해 가을부터 본격화할 실질적인 무역협상 작업을 위한 문제점을 협의하고, 각 작업단별 토의내용의 종합검토와 향후 작업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임.
- ※ 동 회의 참석을 통해 상기 논의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한국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타 개도국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개도국의 공동입장을 모색함.

## 2. 회의 결과

- ※ Informal Group 회의(1974.7.16.) 주요 내용
  - 개도국에 대한 특별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이 제3차 TNC 회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도국은 공동보조를 취함.
  - 아르헨티나는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GATT 내에 제도화하지는 제의를 하였으며, 브라질은 비관세 장벽의 하나인 보조금과 상계관세 문제 교섭에서 개도국을 위한 특별대우 제안에 대한 신흥공업국의 지지를 요망함.
- ※ 제3차 TNC 회의(1974.7.17.~18.) 주요 토의내용
  - 한국대표는 개도국을 위한 특별절차를 다름에 있어서 브라질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참고하기를 요망한다고 하고 미국의 통상법안 통과 전망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함.
  - 미국대표는 9월까지 통상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언급함.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은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UNCTAD의 입장을 밝힘.
  - 10월 하반기 중 제4차 TNC 회의 개최할 예정임.

# Long, Olivier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방한, 1974.5.16.-21.

| 74-088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2 / 12 / 1~66p

Olivier Long GATT 사무총장이 1974.5.16.~21. 방한함.

## 1. 방한 경위

- ※ 상공부는 1974.1.17. Long 사무총장을 방한 초청하고자 함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 ※ 외무부는 1974.1.21. 장예준 상공부장관의 동 사무총장 방한초청 서한을 GATT 당국에 전달
- ※ 주제네바대사는 1974.4.3. 동 사무총장이 5.16.~21. 방한을 희망함을 외무부에 보고
- ※ 외무부는 1974.4.6. 동 방한 희망기간 수락을 주제네바대사에게 통보

## 2. 방한 일정

- ※ 5.16.
  - 서울 도착
  - 상공부장관, 외무부장관대리 예방,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
- ※ 5.17.
  - 국무총리, 재무장관 예방, 재무장관 주최 오찬,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방문, 경제기획원장관 주최만찬
- ※ 5.18.
  - 울산공업단지 시찰
- ※ 5.19.
  - 경주 시찰
- ※ 5.20.
  - 한국무역협회 회장 예방, 전경련 및 대한상의 등 공동주최 강연회 및 오찬, 학위 수여식 참석(연세대), 국립미술관 등 관람
- ※ 5.21.
  - 서울 출발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훈련과정 참가

| 74-0890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2 / 13 / 1~64p

## 1. 과학기술처는 1974.5.13. 외무부 및 상공부에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상업정책 훈련과정 (Commercial Policy Course) 후보자 추천을 요청함.

- ※ 훈련기간 및 장소: 1975.2.3.~6.13., 제네바
- ※ 인원: 2명
- ※ 후보자 자격
  - 대학의 경제과 졸업자로서 통상정책 분야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고 현재 동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자
  - 영어에 능숙한 자 등

968

## 2. 외무부는 1974.7.18. 내부건의를 통해 1975년도 GATT 상업정책 훈련과정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함.

- ※ 동 과정 후보자격 요건으로서 통상정책분야 3년 이상 근무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제경제국 내지 통상국 직원 중에서 후보 선발이 가능할 것이나 현재 양국 공히 인력 부족
  - 단, 명년에는 적격후보자 추천 추진
- ※ 금년도에는 상공부에서 적격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1962년 이래 외무부는 7명의 직원(총8명 중 재무부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동 훈련과정을 이수

## ICAC(국제면화자문위원회) 총회 서울 유치 추진

| 74-0891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2 / 14 / 1~50p

ICAC(국제면화자문위원회) 총회의 서울 유치 추진 관련 내용임.

1. 주미국대사관은 1974.5.21. 현지 ICAC 사무국이 74년 가을 또는 76년 가을에 ICAC 연차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동 총회 서울 개최 수락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74.7.10. 동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을 상공부에 통보하고 상공부 주최하의 총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3. 상공부는 1974.8.13. 76년도 동 총회의 서울 개최는 국내 면방업계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4. 외무부는 1974.9.18. 동 총회는 ICAC의 성격과 기능, 각국의 총회 주최기관을 감안, 외무부 등 관계부처 및 대한방직협회의 협조 하에 상공부가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상공부에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함.
5. 상공부는 1974.11.7. 공산국 회원 초청문제, 소요경비 산출 및 확보상의 어려움, 부처 간 업무 총괄 문제 등의 사유로 외무부 주관 하에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외무부에 통보함.
6. Frick ICAC 상임위 위원장은 1974.12.17. 주미국대사관 공사에게 프랑스가 75년도 총회를, 미국이 76년도 총회를 각각 주최하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한국이 77년도 총회 개최를 약속하여 줄 것을 요청함.
  - ※ 상공부는 12.20. 77년도 총회 한국 개최는 국내 면방업계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무부 주관하에 추진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
  - ※ 주미국대사관은 1975.4.11. ICAC 관계관에 의하면 75년도 총회는 대만(구 자유중국) 초청문제로 주최가 불가능하게 된 프랑스 대신 코트디부아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77년도 총회에 관하여는 일본에서의 개최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77년 총회의 서울 개최 가능여부를 조속 회신해 줄 것을 건의

#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43-44차. Brussels(벨기에) 1974.6.10.-14.

| 74-089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32 / 15 / 1~56p

정부는 1974.6.10.~14.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43~44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에 정재철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파견 목적

- ※ 관세행정제도 및 절차를 국제적 수준으로 통일 간소화시키기 위한 연차총회로서 금번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협약 가입상황, 이사회 권고 수락상황, 기술지원 및 차기 이사회 개최문제 등에 관해 토의할 예정임.
- ※ 동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각국 대표들의 입장을 파악, 무역증대와 관련된 세관행정제도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력에 기여함.

## 2. 회의 결과

- ※ 동 회의에 63개 회원국 및 다수의 국제기구가 참석함.
- ※ 한국 대표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함.
  - 기술협약 가입에 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선원 후생품에 관한 협약과 전시용 물품의 수입편의 제공에 관한 협약 등에 가입할 예정임을 밝힘.
  - 기술원조 사항에 관하여 한국 세관공무원에 대해 훈련과정을 제공한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 사의를 표명하고 앞으로 선진국이 훈련에 관한 문호를 더욱 개방할 것을 강조함.
  - 상임기술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세관절차의 조화 및 간소화에 관한 협약 부속서는 원산지에 관한 규정 등을 원안대로 채택



# 일본의 생사수입 규제조치

| 74-089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16 / 1 / 1~97p

## 1. 오오모리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참사관은 1974.7.23. 김재춘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초치, 일본 생사시장 악화 방지를 위해 8.1.부터 일본 잠사사업단에 의한 생사 수입 일원화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을 통보함.

※ 이에 대해 김 참사관은 등 조치 실시 전 양국간 협조방안 모색을 제의한 바, 오오모리 참사관은 실시 일자 (8.1.) 변경은 할 수 없으나 일원화 수입 운영 등에 관한 양국간의 상호협의를문제는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 2. 1974.7.31. 농수산부 농특사업국장 주재하에 개최된 생사류 수출대책 간담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

- ※ 참석자
  - 농수산부, 외무부, 상공부,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생사수출조합 관계관 등
- ※ 회의결과 요지
  - 수입창구 일원화의 세부운영절차가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되도록 검토하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생사수출조합은 구미지역에서 생사전시회를 추진하여 시장다변화에 노력
  - 7.31. 현재 B/L 발급분에 대하여는 등 수입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공관에서 교섭

## 3. 외무부는 1974.7.31. 주일본대사관에 7.31. 현재 B/L이 발급된 생사 수입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그렇지 않은 경우 적극 교섭할 것을 지시함.

※ 주일본대사관은 8.1. 외무부에 주재국의 생사가격안정법 등 관련 규정에서 7.31. 이전 선적분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두어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형식상 통산대신의 사전 허가를 받게 되어 있음을 보고함.

## 4. 외무부는 1974.8.14. 일본 정부가 생사수입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폐하도록 교섭할 것을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 ※ 일본 정부는 등 수입규제 긴급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GATT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조치 이전의 서면통고 또는 조치 이후의 협의를 하지 않았음.
- ※ 일본 내의 생사가격 하락 등은 1971년 이래 급격한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산 생사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질서 있는 수출을 하여야 한국의 생사까지 포함하여 규제함은 부당함.

## 5. 농수산부는 1974.11.26. 서울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일본 무역회담 시 일본 측에 생사 수입규제조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일본 측은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본 잠사 회담 조기실현(11월 중)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이를 외교경로를 통해 촉구해 줄 것을 요청함.

## 한 · 불가리아 교역추진

| 74-0894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통상정책
MF번호	N-16 / 2 / 1~20p

### 1. 불가리아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의 방한을 추진함.

- ※ 대한상공회의소는 1973.12.10. Ivan Ivanov 불가리아 사무총장을 방한 초청하여 달라는 상공부의 요청을 받고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동 사무총장 일행에 대한 초청장을 발송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함.  
- 김성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12.1.자 동 사무총장 앞 서한에서 방한에 가장 좋은 계절은 4월 중순부터 5월까지임을 언급
- ※ 외무부는 1974.4.9. 동 초청장을 전달하기로 한 주베이루트공사에게 현재까지 불가리아 측의 반응이 없음을 통보하고 현지 불가리아대사관을 통해 확인할 것을 지시함.
- ※ 주베이루트공사는 4.11. 동 초청장이 동 사무총장에게 직접 우송되고 일차 독촉했으나 회신이 없는 상태라고 보고함.

### 2. 외무부는 1974.8.21. 대동구권 교류문제에 관한 아래 요지의 문서를 상공부에 발송함.

- ※ 8.20. 및 8.21. 국내일간지에 게재된 금호실업의 대불가리아 및 폴란드 타이어 수출에 대한 기사출처에 관해 금호실업에 문의하였던바, 기사가 본건 내용을 사전에 알고 금호실업 실무자로부터 확인하여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함.
- ※ 정부의 대동구권 관계개선 정책에 따라 동구권과 제반분야에서의 교류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따른 북한의 방해공작을 항상 예상하여야 하므로 대외적 발표를 삼가고 누설을 방지하도록 업체 등에 대한 행정지도가 요망됨.

## 브라질의 서울소재 Trade Center 설치 검토

| 74-089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N-16 / 3 / 1~10p

1. Joaquim de Almeida Serra 주한 브라질대사는 1974.3.6. 외무부장관 예방 시 외무부장관의 브라질 체류일정(3.9. 서울 출발, 3.10. Caracas 도착) 등을 문의하고 양국간 통상문제에 관해 아래 요지로 언급함.

- ※ 현재 양국간 통상이 규모가 작고 저조한 실정이나, 양국간 수출입이 공히 증대되길 희망
- ※ 브라질 정부는 대한민국 통상증진을 위해 서울에 Trade Center 설치를 검토하고 있음.  
- 빠르면 금년 7월 중 개설을 바라고 있으며, 외교관 1명 증원도 검토 중
- ※ 리마에서 한국 공관장회의 개최 시 통상증대 문제에 대해 각별히 당부해 주길 요망

2. 외무부는 1974.3.8. Serra 대사가 3.6. 외무부장관 예방(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특사 참석에 대한 인사차) 시 브라질 정부가 한국과의 통상증진을 위해 서울에 Trade Center 설치 검토를 언급했음을 주브라질 대사관에 통보함.

97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PL480 백미의 대월남 · 캄보디아(구 크메르) 대어 및 상환

| 74-0896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N-16 / 4 / 1~65p

1. 외무부는 1973.1.9. 미국 정부와 논의 중인 백미 한국 구매분의 월남 대어문제에 대해 현재 도입 중인 PL480 백미 24,580톤을 월남에 대어하되 아래 조건으로 전용에 동의하였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하고 전용절차 등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지시함.

※ 동량의 대체 현미를 연내에 도입토록 하고, 월남 수송에 따른 모든 추가비용은 한국에 불리하지 않게 추가 부담되지 않도록 함.

974

2. 외무부는 1973.7.12. 주미국대사관에 Nguyen Duc Cuong 월남 경제성차관 일행이 방한, PL480 백미 월남 대어문제에 관한 실무회의(1973.7.2.~4.)를 갖고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통보함.

- ※ 한국 측은 대체미 해결을 전제로 백미 24,580MT를 월남에 대어하는데 동의함.
- ※ 한국 측은 한국 행정기관의 최종 승인 등을 전제로 22,775MT 추가 대어 검토에 동의함.
- ※ 월남 측은 쌀의 한국 운송에 따른 제반 경비 부담에 동의함.

3. 외무부는 1973.7.27. 주한 USAID(국제개발처)에서 동 대어미의 상환을 확인하는 공한을 송부하여 왔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4. 외무부는 1974.1.19. 아래와 같이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하면서 조속 상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함.

- ※ 월남 대어미 47,355톤 상환은 미국 정부가 FY74 자금 중 가장 빨리 월남 정부에 PA를 발급하여, 월남 측이 상환미를 구매 확보하면 조달청이 용선하여 수송토록 합의함.
- ※ 캄보디아(구 크메르) 대어미 20,000톤은 캄보디아 측이 구매 용선하여 한국 정부가 지정하는 항구까지 수송하여 주도록 합의함.

# 한·체코슬로바키아 통상

| 74-089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3/특수지역
MF번호	N-16 / 5 / 1~154p

## 1. 외무부가 1974.2.28. 체코와의 경제교류 추진에 관해서 작성한 내부보고 내용임.

- ✿ 체코 접촉 경위
  - 안영철 주이탈리아대사관 참사관은 2.8. Korbel 체코대사관 경제담당 참사관을 방문, 양국간 교역 추진방안 협의
  - Korbel 참사관은 2.24. 답방차 한국대사관을 방문, 자국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공식 방문임을 밝히고 대사 및 안 참사관을 면담
- ✿ 동 면담 시 체코 측 반응
  - 한국과의 이해 증진 등을 위한 접촉의 확대를 환영하며 경제, 문화의 교류 증대 희망
  - 체코의 플랜트 수출 조건(8~12년 상환, 연리 3%전후)을 설명하고 한국 관계관의 체코 방문 시 편의 제공 의사 표명
  - 일반무역 촉진을 위한 박람회 참가 및 관계 인사의 체코 방문 환영
- ✿ 주이탈리아대사관의 관찰 및 건의
  - 체코는 한국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에 있어 완전 문호개방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적극적인 반응이 있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체코로부터 도입할 상품 및 프로젝트를 선정, 조속히 예비회담 개시 필요
- ✿ 향후 추진방향
  - 경제외교위원회를 소집하여 경제교류 방안, 대상품목 및 프로젝트 협의
  - 동 협의결과에 따라 주이탈리아대사관을 통해 한국 측 희망사항 통고
  - 체코 박람회(1974.4.20.~28.) 참가 또는 참관단 파견 추진

## 2. 외무부가 1974.3.12. 체코와의 경제교류 추진을 위해 체코 측과 교섭할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임.

- ✿ 체코로부터 도입 가능한 Plant
  - Water Treatment Equipment(600만 달러), 금속가공기계 공장(2,400만 달러), 중전기 공장(240만 달러), Crystal Glass 공장(70만 달러) 등
- ✿ 체코로부터 수입가능 품목
  - 각종 원자재, 기계류 등
- ✿ 대체코 수출가능 품목
  - 의류, 면직물, 합성수지제품, 신발류, 타이어튜브 등

## 3.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74.3.24. 안 참사관의 Korbel 참사관 면담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 협력사업 기본윤곽을 안 참사관 명의 서한으로 제시한데 대해 Korbel 참사관은 자국 정부에 보고할 상세 자료 요청
- ✿ 동 참사관은 한국 측이 제시한 4개 사업 추진에 합작투자 형식이 아닌 차관공여 형식으로 차관을 제공, 공장 건립에서 가동까지 책임지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임을 언급

# 한·일본 부관페리호 취항에 따른 자동차 일시 수입금지 조치

| 74-089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N-16 / 6 / 1~28p

1. 외무부는 1973.7.25. 부관페리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의 일시 수입금지 조치로 말미암아 한·일본 합작 회사가 한국에 질소 등 특수품목을 수출함에 있어서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아노 등의 대일본 수출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시모노세키영사관의 보고 내용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함.

2. 관세청은 1973.9.7. 상기 검토 요청에 대해 아래 요지의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 ※ 질소 운반 화물자동차의 면세통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하나 질소를 운반하는 용기가 국제거래상 화물 운송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기라면 재수출 조건으로 면세 통관 가능
- ※ 피아노 국외반출을 위한 화물자동차 면세통관은 관세법 제29조 1항 7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령에 피아노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나, 화물자동차를 부관페리가 접안하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동 보세구역 내에서 수출물품인 피아노를 적재하고 반출하는 것일 경우 세관장의 반송면허를 받으면 가능

3. 외무부는 1974.9.28. 정부가 10.1.~12.31. 기간 중 부관페리를 통한 일체의 자가용자동차 일시수입을 불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동일 관세청 고시로 공포하였음을 일본 주재 각 재외공관에 통보함.

4. 외무부는 1974.9.28. 아래 이유로 동 차량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졌으며, 동일 아주국장이 마에다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하여 설명하였음을 일본 주재 각 재외공관에 추가로 통보함.

- ※ 차량의 일시 대량구입으로 인한 혼잡을 틈타 불순분자의 활동 예상
- ※ 차량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총기, 폭약 등이 은닉, 수입될 가능성 농후
- ※ 따라서 차량의 일시 대량수입은 국가안보상 위태롭다고 판단

## 주서울 미국 무역센터 설치

| 74-0899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16 / 7 / 1~55p

1. 주미국대사는 1973.5.31. 미 국무부 Nicolas Lakas에 의하면 Richard Garnitz 미국 상무부 부국장이 향후 2주 이내에 미국 무역센터(US Trade Center) 서울 설치 가능성을 최종 평가하기 위해 방한하게 될 것이며 동인은 같은 목적으로 타이베이도 출장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운영교 외무부 통상국장은 1973.6.20. Richard Garnitz 부국장 면담 시 한국 측이 수년전부터 양국간의 교역 및 투자증진을 위해 미국 정부가 서울에 미국 무역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을 요청해 왔으며, 특히 양국간의 교역량이 15억 달러를 초과한 현시점에서 동 센터 설치는 긴급하고 유익할 것임을 강조함.  
※ 이에 대해 동 부국장은 동 센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 방한 기회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사하여 주한 미국대사관과 협의 후 미국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것임을 언급
3.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관실은 1973.7.19.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이 내년 봄 서울에 미국 무역센터를 개설할 것임을 발표함.
4. 주미국대사관은 1974.1.28. 주재국 상무성이 3.20. 미국 무역센터 개관식에 John K. Tabor 상무차관 등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5. 김동휘 외무부 경제차관보는 1974.3.20. Daniel M. Searby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부차관보 면담 시 미국 무역센터 개관은 시의에 맞은 것이며 양국간의 무역확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동 부차관보는 동 센터 개관이 특히 한국에서 조선 공업을 육성하고 있는 때에 유익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함.

## New York 한국센터(Korea Center) 설치 추진

| 74-0900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16 / 8 / 1~102p

1973~74년 중 뉴욕 한국센터(Korea Center) 설치 추진 관련 내용임.

1. 주뉴욕총영사관은 1973.5.25.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의 뉴욕 진출 가능성, 대미국 수출 및 투자유치 중심지로서의 뉴욕의 중요성, 현지 교민수의 급증 등을 감안, 한국센터를 하루 속히 설치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동 센터 일부를 한인문화회관으로 사용케 하고, 동 센터에 한글학교, 국영방송국 및 수출 진흥관계 각 기관 사무실 등을 둬으로써 유기적인 수출 진흥활동 및 다양한 교민보호 활동을 전개

2. 외무부는 1973.8.11. 정부가 대미국 수출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뉴욕 주재 한국관계 기관의 수용을 위해 뉴욕에 동 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한국무역협회가 동 센터를 위한 자금의 규모를 500만 달러로 보고 재원을 확보 중임을 주미국대사와 주뉴욕총영사에게 각각 통보하고 건물의 위치와 규모 등을 보고토록 지시함.

3. 외무부는 1973.9.12. 한국센터 설치를 위한 현지 공관의 조사 결과를 상공부에 통보함.

※ Fifth Avenue 40-60 St. 등 3개 장소, 동 장소 이외 구역이라도 지역발전에 장래성이 있고 건물이 양호하면 고려 가능

※ 대지 약 24 내지 278평 정도의 10층 이상 건물, 연건평 약 3,000평

※ 부동산 구입 예상 소요액은 7백만 내지 8백만 달러

4. 주뉴욕총영사관은 1973.12.27. 현재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가 Rolex Building(665, 5th Ave.)을 제1 후보 건물로 선정, 매매협상을 시작하였음을 보고함.

5. 주뉴욕총영사관은 1974.2.7. 상기 빌딩은 현 소유주와 임차권자(Rolax 사계회사)간의 기존 임대계약으로 인해 동 임대계약기간(20년) 동안 동 건물 명칭의 변경 및 외부간판의 부착이 동 회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동 회사 측의 동의 획득이 어려운 실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 대동구권 교역 추진 방안

| 74-090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16 / 9 / 1~134p

**1. 외무부는 1973.5.9. 아래 요지의 대동구 교역 추진현황 및 방향을 주일본대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주영국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관련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현지 주재 동구지역의 무역대표부, 상공회의소 등의 리스트 및 이들과의 접촉방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 ※ 1972년 말 대동구 교역은 200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주요 수출품은 아동복, 양말 등 섬유제품이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체코, 동독, 헝가리,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소련, 폴란드의 순위
- ※ 대동구 직접 교역의 적극 추진을 위해 12.30. 무역거래법 제2조를 개정 공포, 대동구 직접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
- ※ 또한 대동구 교역 적극 추진의 일환으로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한 수송수단 확보
- ※ 1973년도 대동구 교역을 아래와 같이 추진
  -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서독 주재 대사관 및 헬싱키 주재 대표부를 통한 소련 및 동구 지역에 대한 간접무역 확대
  - 동구지역 중 비교적 상당한 범위의 민간무역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세르비아와의 교역 중점 추진, 상공회의소 대표 등 유력인사 방한초청, 한국 민간업체단체 대표의 동구지역 방문, 박람회 참가, 직접 교역의 길을 열기 위한 구상무역 제의, 동구지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과의 협조 등을 통해 소련 및 동구지역에 대한 직접무역 추진
  - 중국(중 공공)과의 교역추진 관련, 홍콩, 일본 등을 통한 간접교역과 제3국의 대중국 수출품의 국내 가공을 통한 교역을 추진하는 한편, 직접교역의 가능성 모색

**2. 주영국대사관은 1974.5.10. 한국의 소련 및 동구권과의 교역 관련, 동구시장의 특징, 동구지역 해외 무역공사의 기능, 거래개시 방법, 영국 상사를 통한 동구와의 교역 가능성 등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아래 요지를 건의함.**

- ※ 동구와의 교역을 추진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동구에 한국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세보다는 동구 상품을 수입하는 자세로 임하여 거래관계가 이루어진 이후 한국 상품의 수출 대책을 강구함이 유리하다고 판단
- ※ 동구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에 적극 참가, 한국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교역 증진의 발판을 구축할 필요

**3. 본 문서철에는 1974년 미쓰이 등 일본 상사를 통한 대동구권 수출 추진 관련 주오사카총영사관의 보고문서 및 외무부의 상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문서, 외무부의 공산권국가와의 경제교류 추진 현황에 관한 대통령 앞 보고문서(74.3.4.), 외무부 통상국 작성 동구권과의 교역 확대 방안 자료(7.10) 등도 수록되어 있음.**

# 대신유고연방(구 유고슬라비아) 통상관계 개선 노력

| 74-0902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16 / 10 / 1~37p

## 1. 1973.12.28. 강승구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의 현지 주재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대사관 경제 담당 참사관 및 세르비아 상공회의소 대표와의 접촉결과에 관해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 아니찌 비엔나 주재 세르비아 상공회의소 대표 접촉(12.18.)
  - 강 참사관은 마케도니아 연초회사와 거래차 세르비아를 방문하려던 한국 전매청 직원에게 관용여권 소지를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사는 부당하며 우선 양국간 통상관계라도 정상화해야 할 것임을 강조
  - 이에 대해 동 대표는 자신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중국(구 중공), 북한의 한국 접근 봉쇄활동이 강하여 교역관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
- ※ 라스베가 비엔나 주재 세르비아대사관 경제담당 참사관 접촉(12.21.)
  - 라스베가 참사관은 신년도 목표로 우선 세르비아대사에게 건의하여 본국정부로 하여금 스페인과 같이 상공회의소 베이스의 대표부라도 교환, 교역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해 볼 것임을 언급

## 2. 외무부는 1974.1.15. 상기 스페인의 경우와 같은 대표부 설치를 적극 추진 교섭할 것을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에 지시함.

- ※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2.12. 외무부에 강 참사관이 2.11. 라스베가 참사관을 접촉, 통상대표부(민간 또는 정부 베이스)의 상호교환 또는 한국 통상대표부의 세르비아 설치 문제에 관해 정부당국에 건의하여 주도록 요청한데 대해, 동 참사관은 신임대사에게 이를 건의, 동 대사의 승인을 얻어 본국 정부에 건의토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했음을 보고

## 3.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74.3.2. 정보문화국 앞 내부협조문을 통해 세르비아는 ADB(아시아개발은행)과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 ADB 가입 또는 Asian Development Fund에 대한 자금 제공을 제의하여 왔음을 통보하고 세르비아의 ADB 정식가입 등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

- ※ 정보문화국은 3.7. 세르비아의 상기 제의에 대해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본 건을 한국의 대세르비아 관계개선의 돌파구로 이용토록 외교적 노력을 시도해 봄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을 국제경제국에 통보

## 한 · 신유고연방(구 유고슬라비아) 통상

| 74-090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16 / 11 / 1~19p

1.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74.3.20. 작년 20만 달러의 한국 상품을 수입(중계수출)한 바 있는 현지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상사 Martimpex사의 Bammer 부사장(오스트리아인)이 1974.4.7.~12.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가능한 편의 제공을 건의함.

※ 동 사는 세르비아 상사로서 주재국에 등록되어 있으며 세르비아뿐만 아니라 동구지역에 대한 중계무역 전담

2. 외무부는 1974.3.27. 상기 방한 관련,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무역협회가 대동구 수출가능 상품에 대한 상담을 알선하고 제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상공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함.

3.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74.4.19. Bammer 부사장이 동 대사관을 방문, 자신의 방한 시 제반 편의 제공에 사의를 표명하고 방한 중 총 296,670달러 상당의 계약을 하였다고 알려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 본 문서철에는 동 부사장의 방한일정 및 활동성과에 관한 1974.4.22. 한국무역협회의 외무부 앞 문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 한·벨기에 통상장관회담, 제1차. Brussels, 1974.9.30.-10.1.

| 74-090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N-16 / 12 / 1~22p

장예준 상공부장관은 제1차 한·벨기에 통상장관회담 참석차 1974.9.30.~10.1. 벨기에를 방문함.

## 1. 방문 일정

※ 9.30.

- Toussaint 대외통상장관 예방 및 제1차 한·벨기에 통상장관회담, Toussaint 장관 주최 오찬, EC(구주 공동체) 집행위원장 예방,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

※ 10.1.

- 벨기에 수상 예방, 산업 시찰

## 2. 장예준 장관은 1974.10.1. 한·벨기에 통상장관회담 및 EC 집행위원장 면담 결과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함.

※ 통상장관회담(9.30.)

- 통상증대문제(수입규제, 특혜관세 등), 경제협력문제(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화학공업 개발계획 참여 등), 기술협력 추진 등을 협의함.

- 동 회담 결과를 공동성명으로 채택, 발표할 예정임.

※ Ortori EC 집행위원장 면담(9.30.)

- 한국 측은 한국의 관심품목인 섬유류 및 양송이 통조림에 대한 EC의 수입규제, 녹즙기 등에 대한 EC 각 회원국별 수입제한조치를 지적하고 이의 철폐를 위한 EC의 역할과 향후 정책방향 등을 문의함.

- 동 집행위원장은 EC의 기본방향은 무역자유화를 통한 교역확대에 있음을 설명하고 각국별로 정치, 경제 및 사회적 문제가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 측 입장을 EC 정책수립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언급함.

## 3. 장예준 장관은 1974.10.2. 상기 통상장관회담 결과 관련, 공동성명(10.1.) 및 벨기에 수상 예방(10.1.) 결과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함.

※ 공동성명 요지

- 면제품과 양송이 통조림을 비롯한 EC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벨기에 정부는 한국의 입장을 EC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함.

- 한국은 1975년 EC의 일반특혜관세 집행에 있어서 한국의 수출품 일부를 동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벨기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약속함.

※ 벨기에 수상 예방

- 동 수상은 한국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양국간 통상 및 기술협력이 심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언급함.

# 한·미얀마(구 버마) 통상장관회담, 제1차. 서울, 1974.11.4.-5.

| 74-0905 |

생산연도	1974-1975
생산과	통상1
MF번호	N-16 / 13 / 1~321p

## 1. 외무부는 1974년 한·미얀마(구 버마) 통상장관회담을 추진함.

- ✪ 1974년도 아주지역 공관장회의 시 한·미얀마 각료회담 추진 결정
- ✪ 차지철 대통령 특사가 7월초 미얀마 방문 시 미얀마 정부와 1974년 내 각료급 통상경제회담을 갖기로 원칙적 합의
  - 미얀마 측은 동 회담을 10월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희망
- ✪ 외무부는 7.31. 상공부에 한·미얀마 통상장관 개최에 관한 의견문의
  - 상공부는 8.5. 동 회담개최(74.11월, 서울)에 동의하는 회신 발송

## 2. 상공부는 1974.11월 한·미얀마 통상장관회담 결과보고서를 아래 요지로 작성함.

- ✪ 회의기간 및 장소: 1974.11.4.~5., 서울
-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장예준 상공부장관 외 상공부, 외무부, 재무부 대표단 6명
  - 미얀마 측: U San Win 통상장관 외 6명
- ✪ 주요 일정
  - 장관회의(11.4.~5.), 부산, 울산 등 산업시찰(11.5.~6.)
- ✪ 주요 합의사항
  - 1967년 체결된 양국간 무역협정에 의거, 양국간 교역에서 최혜국대우원칙 상호적용, 향후 교역확대를 위해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유의
  - 양국간 교역확대의 시급성 인정, 합작투자 가능성 모색, 해운 및 해상운임에 관한 상호협조, 한국의 대미얀마 연불 수출 가능성 검토
  - 상공부장관의 1975년 중 미얀마 방문 수락
  - 개발도상국이라는 입장과 지역적 유사성을 재인식, 국제경제 여건변화가 특히 개도국 간 교역확대 및 경제적인 유대강화의 필요 당위성을 가중하고 있음을 공감

## 3. 본 문서철에는 각종 회의자료 등이 수록됨.

- ✪ 미얀마 경제 및 통상정보
- ✪ 한·미얀마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서(국·영문)(1974.11.5. 서울)
- ✪ 상공부장관의 개·폐회사(11.4. 및 11.5.)
- ✪ 외무부장관의 미얀마 통상장관 면담요록(11.4.)
- ✪ 미얀마 통상장관 일행 방한 준비자료(11월, 외무부 통상국 작성)
  - 정세개관, 대한정책 및 현안문제, 한·미얀마 통상·경제기술협력, 미얀마·북한관계 등
- ✪ 한·미얀마 통상장관회의 자료(11월, 상공부 작성)

#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제6차. Wellington, 1974.3.4.-5.

| 74-090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16 / 14 / 1~45p

제6차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이 1974.3.4.~5.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됨.

## 1. 정부대표단 구성

- ※ 수석대표
  - 장예준 상공부장관
- ※ 대표
  - 상공부, 외무부 관계자 8명

984

## 2. 회담 의제

- ※ 통상증대
  - 무역현황 검토, 무역 불균형 시정
- ※ 자원의 장기공급
  - 원목, 화학펄프, 우피
- ※ 경제협력
  - 평택 낙농시범목장, 치즈제조공장 합작투자, 육우목장, 젖소 차관도입 요청, 낙농기술제공 요청
- ※ 무역협정 개정

## 3. 회담 결과

- ※ 교역증대방안 강구
  - 특혜관세·수입자유화 품목확대, 대한 특별수입지원 쿼터증액, 화차입찰에 한국회사 고려
- ※ 자원의 장기공급
  - 원목 장기공급 합의, 우지·사료·원피·쇄목 펄프재 장기공급
- ※ 무역협정 개정
  - 자원 장기공급, 경제 및 기술협정조항 추가
- ※ 경제협력
  - 평창 육우목장 설치 지원(75만 달러), 평택 낙농시범목장 추가 지원(10만 달러), 치즈제조공장 합작 추진(45만 달러 규모), 육우도입 차관 검토(1,000두), 낙농기술 훈련생 파견

# 한·미국상공장관회담, 제6차. Washington D.C., 1974.6.4.-5.

| 74-0907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통상2
MF번호	N-16 / 15 / 1~214p

제6차 한·미국상공장관회담이 1974.6.4.~5.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 1. 정부대표단 구성

- ※ 수석대표
  - 장예준 상공부장관
- ※ 대표
  - 주미국대사, 상공부 관계관 등 9명

## 2. 회담 결과

- ※ 상공부장관 미국방문 일정
  - 미국 상무장관, 대통령 특별통상교섭 대표, 재무장관 등 행정부인사 예방(6.3.)
  - 한·미국상공장관회담, 농무장관, 수출입은행총재 등 주요인사 예방(6.4.)
  - 공동성명서 발표(6.5.)
- ※ 의제
  - 양국간 통상증대, 주요 원자재의 안정공급, 한·미국 양국간 경제협력 등
- ※ 주요 합의사항
  - 미연방 해사위원회를 통해 인천항에 대한 차별선임 철폐를 위해 노력
  - 섬유류 협정 재교섭 시 GATT(관세및무역예관한일반협정)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거, 기존 문제점 제거 노력 약속
  - 고철, 원면 등 주요 원자재의 안정공급을 위해 협조
  - 73년도 PL480 협정 이행 결정
  - 미국 기업인의 대한국투자 계속 권장
  - 수출입은행을 통한 미국자본의 한국진출 촉진
  - 차기회의 서울개최 합의
- ※ 양국간 협의 및 주요합의사항을 정리한 공동성명서 발표(6.5.)

## 한·오스트리아 합섬셔츠 쿼터 협정, 1974.7.30.

| 74-090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16 / 16 / 1~194p

1. 외무부는 1974.3.16. 오스트리아의 한국산 합섬셔츠 수입제한을 위한 협의 제의에 응하기로 결정함.

2. 제1차 한·오스트리아 쿼터교섭이 1974.3.27.~28.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 오스트리아 측은 동 교섭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 시사

3. 제2차 한·오스트리아 쿼터교섭이 1974.5.16.~17.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어 양측이 아래와 같이 합의함.

※ 합섬셔츠: 쿼터량 75만 매(73년 한국 측 수출통계의 약 11배), 쿼터연도는 1974.5.1.~75.4.30. 대오스트리아 직수출분과 독일 등 제3국 수입분에 관한 운영절차 합의

※ 면직물: 오스트리아 측은 수입자유화는 불가하나 쿼터 증량폭은 호의적 배려(약 50% 증가) 용의 표명

4. 외무부는 1974.7.5. 상공부에 대오스트리아 합섬셔츠 수출 관련, 추가 의견을 문의함.

※ 오스트리아 측이 6.18. 쿼터 운영절차에 관해 수정 제의

- 대오스트리아 직수출분은 협정발효일을 1974.7.1.로 연기

- 독일 등 제3국 수입분도 7.1.부터 선적 기준으로 할 것

5. 상공부는 1974.7.23. 외무부의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 쿼터기간을 1974.8.1.~75.7.31.로 조정

※ 수출추천서 발급은 한국 관계수출조합에서 발급하는 수출추천서가 첨부된 분에 한해 쿼터에 계상 요망

6. 주오스트리아대사와 오스트리아 외무성 통상국장대리는 1974.7.30. 한·오스트리아 쿼터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에 서명함.

※ 쿼터기간은 1974.8.1.~75.7.31.

※ 쿼터량은 75만 매(간접수출분 포함)

※ 운영규정: 한국 측은 수출추천, 오스트리아 측은 수입허가, 대상은 1974.8.1. 이후 L/C 개설분

7.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4.9월 동 협정의 운영절차와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1974.9.23. 오스트리아 측이 8.1. 이후 수출계약분에 관한 예기치 못한 수입허가서(L) 발급신청 쇄도로 추가 협정을 제의



- 8.1. 이전 수출계약분에 대해서는 9.1.~10.30.까지 I/L 계속 발급, 동량은 쿼터에서 공제
- 1974.8.1.~31.간 기수입분은 쿼터량에서 제외

#### 8.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4.10.25. 한-오스트리아 합섬셔츠 쿼터협정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양 측이 동 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10.15. 교환
- ※ 동 협정 시행에 관한 한국 측 확인 서한을 10.25. 오스트리아 측에 전달(동일자 발효)

# 한·일본 무역회담, 제11차. 서울, 1974.10.21.-22.

| 74-090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16 / 17 / 1~232p

제11차 한·일본 무역회담이 1974.10.21.~22. 서울에서 개최됨.

## 1. 양측 대표단

- ※ 한국 측
  - 최호중 외무부 통상국장(수석대표)외 상공부, 재무부, 농수산부 등의 관계자 13명
- ※ 일본 측
  - 다카시마 외무성 아세아국장(수석대표)외 외무성, 대장성, 농림성 등의 관계자 19명

988

## 2. 회담 주요의제

- ※ 양국간 무역현황 검토
- ※ 양국간 무역확대를 위한 무역불균형 시정 문제
  - 관세, 개발수입, 기타 수입자유화 및 생사무역문제 등
- ※ 일본영화 수입

## 3. 회담 결과

- ※ 한국 측은 양국간 무역불균형 시정과 한국 관심품목에 대한 대일수출 증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
  - 관세인하, 특혜관세제도 개선, 가공제 수입품 원재료분 관세경감제도 적용대상품목 확대, 개발수입(육류개발 투자), 해태의 수입자유화, 생사수입규제 철폐
- ※ 일본 측은 일본영화 수입 요구
- ※ 양측 합의사항
  - 한국 측의 농수산물 및 광산물 관세인하 요구는 일본 측이 관세인하 검토 시 참고
  - 일본 측이 특혜관세제도 개선 검토
  - 가공제 수입품 문제는 일본 측이 관련업계 영향을 감안하면서 대처
  - 개발수입은 건별로 협력
  - 생사 수입규제 철폐문제는 74년 내 별도회담을 개최 협의

# 한·일본 생사 실무자회담, 동경, 1974.12.19.-21.

| 74-0910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통상1
MF번호	N-16 / 18 / 1~60p

한·일본 생사 실무자회담이 1974.12.19.~21. 일본 동경에서 개최됨.

## 1. 정부대표단 구성

- ✿ 수석대표
  - 최창락 주일본공사
- ✿ 대표
  - 농수산부 농특사업국장, 농수산부, 상공부, 외무부 관계자 9명

## 2. 대표단 교섭지침

- ✿ 한·일본 간 수출재개 촉구
- ✿ 양국간 원활한 생사무역과 생사생산 및 수급의 사전조정을 위한 연례회담 제의
- ✿ 생사의 수입제한조치 즉시철회 요구 등

## 3. 회담 결과

- ✿ 한국 측 주장
  - 일본 측이 1974.8.1. 실시한 생사 수입규제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유무역 상태로 복귀
  - 자유무역원칙에 입각, 생사의 생산과 수급의 사전조정을 위한 연례회담 개최
  - 일본 측의 잠사사업단에 의한 수입규제조치는 부당
  - 약 27백만 달러 상당의 생사 연내 선적조치 요망
- ✿ 일본 측 언약
  - 한일 양국의 잠사업 정세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인식 심화
  - 일본 측은 L/C 개설분 중 상금 미선적분에 대한 한국 측 설명에 주목
  - 1975.1월 일본 측의 생사 수급동향에 따라 생사수입 재개 시 대한 수입에 대해 공정 타당한 처리
  - 일본 측은 필요시 생사 수출입문제에 관한 한일 전문가 논의 준비

## 한·노르웨이 섬유쿼터회담. Oslo. 1974.5.24.

| 74-091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16 / 19 / 1~79p

섬유류 쿼터채정을 위한 한·노르웨이 무역회담이 1974.5.24.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됨.

### 1. 대표단

- ※ 한국 측: 최호중 외무부 통상국장 등 대표단
- ※ 노르웨이 측: Schoyen 외무성 국장 등 대표단

990

### 2. 회담결과

- ※ 1974년도 쿼터액: Fabrics 385천 달러(전년대비 92.5% 증액), Textiles 415천 달러(전년대비 24% 증액)
- ※ 품목 간 한도액: Fabrics 한도액 철폐, Textiles는 75천 달러(종전 60천 달러)로 증액
- ※ Buyer's 쿼터에서 Seller's 쿼터로 전환
- ※ 이월사용: 총 쿼터량의 30%
- ※ 1974.1.1. 선적분부터 쿼터량에서 공제
- ※ 신발류 및 tableware에 관한 쿼터부과 문제는 협의대상에서 제외

### 3. 향후 필요조치

- ※ Buyer's 쿼터에서 Seller's 쿼터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조합명과 추천서 표본(Recommendation sample) 등을 노르웨이 측에 조속 통보
- ※ 1975년도 쿼터는 종량규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1973, 1974년도 품목별 수출량 집계

# 한·스웨덴 특정섬유류 섬유쿼터회담

| 74-0912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통상2
MF번호	N-16 / 20 / 1~253p

## 1. 한·스웨덴 특정섬유류 쿼터회담이 1974.1.25.~30. 서울에서 개최되어 양국 수석대표가 합의문서에 가서명함.

- ✪ 대표단
  - 한국 측: 최호중 외무부 통상국장(수석대표)외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외무부 등 관계관 6명
  - 스웨덴 측: K. Wollter 외무성 경제국 제3부장(수석대표) 외 5명
- ✪ 주요 합의내용(괄호속은 73/74년 쿼터대비 증가율)
  - 기존 쿼터품목: 양말 202천 타(6.3%), 셔츠 580천 개(6.2%), 블라우스 134천 개(7.2%)
  - 신규품목은 양국 정부가 74.3.1.부터 선적 및 통관현황을 관찰한 후 5월 이전에 제협의
- ✪ 후속조치
  - 동 합의문서는 2.19. 한국 측 최호중 국장과 Joedahl 주한 스웨덴대사관 참사관 간 교환공한 방식으로 서명되어 발효
  - 외무부는 2.22. 상기 합의내용에 따라 3.1.부터 신규품목에 대한 한국 측 수출협회의 추천서 발급을 상공부에 요청

## 2. 한·스웨덴 양국은 1974.5.20.~25. 스톡홀름에서 특정섬유류에 대한 추가 교섭을 실시함.

- ✪ 교섭 결과
  - 니트, 블라우스 등 신규 4개 품목은 양측 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최종 미합의
  - 스웨덴 측은 자국이 제의한 최종안을 2주 내 미수락 시 MFA(다자간섬유협상) 규정에 따라 일방적 규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언급

## 3. 외무부는 1974.6.4. 주스웨덴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1974.5월 추가 교섭회담 결과 조치를 위한 관계관회의를 6.4. 개최하여 스웨덴 측 최종안을 수락하기로 결정
  - 섬유류: 스웨터 520만, 바지 40만, 자켓 225천, 블라우스 25만 매 합의, 쿼터연도(74.7.1.~75.6.30.), flexibility는 10% 이월사용
  - 신발류: 60만 족 합의, 쿼터연도(74.3.18.부터 1년간)
- ✪ 상기 한국 정부 입장을 스웨덴 측에 통보

## 4. 주스웨덴대사는 1974.6.13. 스웨덴 측이 상기 한국 측 입장을 수락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5. 스웨덴 측의 1974.6.28. 공한과 한국 측(주스웨덴대사대리)의 7.3. 회신공한으로 한·스웨덴 섬유쿼터 협정이 개정됨.

# GATT(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TSB(직물 감독기구) 회의

| 74-091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16 / 21 / 1~30p

## 1. 주제네바대사는 1974.11.28. GATT(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TSB(직물감독기구)가 배포한 문서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로 송부함.

- ※ 일본의 1974년도 대캐나다 수출쿼터(11.26.)
  - 면류 바지 및 반바지 328천 여벌, 나일론 직물 등 5.5백만 평방야드 등
- ※ 일본의 대노르웨이 수출쿼터(11.26.)
  - 1973.10~74.9월 총 90만 달러 규모
- ※ 호주, 호주-홍콩 간 섬유교역협정 체결 통보(11.25.)
  - 셔츠, 자켓, 코트, 블라우스 등 품목 쿼터설정
  - 홍콩 수출허가 시스템 규정 첨부
  - 수출허가대상 품목 규정
- ※ 호주, 호주-인도 간 섬유교역협정 체결 통보(11.25.)
  - 블라우스 및 셔츠 115만 매, 드레스 등 27만 5천 매
- ※ 캐나다, 캐나다-싱가포르 간 섬유교역협정 체결 통보(11.26.)
  - 바지류 수출쿼터 1974년도 71,200매
- ※ 브라질의 직물수입 제한 통보(11.25.)
- ※ 엘살바도르의 국제섬유협정 가입 비준(11.22.) 통보(11.27.)

## 2. 외무부는 1974.12.11. 아래와 같은 GATT 다자간 직물협정관계 TSB 문서를 상공부에 송부하고 업무에 참고토록 함.

- ※ 일본의 대캐나다 및 대노르웨이 수출쿼터
- ※ 품목삭제 및 분류번호 수정
- ※ 엘살바도르의 협정가입 비준서 제출
- ※ 캐나다-싱가포르 협정
- ※ 브라질의 직물수입제한
- ※ 호주-인도, 호주-홍콩 협정

# 1974년도 경제외교위원회 회의, 제2차. 1974.3.6.

| 74-091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16 / 22 / 1~111p

제2차 경제외교위원회 회의가 1974.3.6. 개최됨.

## 1. 회의자료(1974.3.6.)

### ※ 의결안건(괄호 속은 주관부서)

- 동구권 진출(외무부): 대공산국 직접 교역추진
- 외국인 수산분야 연수생 방한초청 훈련(수산청): 수산청 자체 예산으로 연 30명 가량 연수생 확보

### ※ 보고안건

- 74년도 제1차 경제외교위원회 결과보고: 제1차 회의 시 심의 의결한 한·월남 의료원 개원 및 의료 사절단 파견, 사료곡물 해외개발, 어업조사단 파견 및 수산행정 책임자 초청 등에 대한 시행결과
- 74년도 정부 대외기술공여 종합시행안(외무부, 과학기술처): 21개 대상국, 14개 분야, 총 30명
- 한·사우디 친선협회 창립총회(무역협회): 증대되는 대중동 경제협력 필요성에 따라 2.16. 민간레벨의 한·사우디 친선협회 결성, 창립총회 개최
- 제5차 아시아상공회의소 연합회의(상공회의소): 1974.2.4.~8.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역내 협력, 투자, 역내무역, 에너지위기, 불안정한 국제통화, 인플레이션 문제 등 논의
- 제22차 CAFE(아시아극동문제위원회)-ICC(국제상공회의소) 총회(상공회의소): 1974.5.6.~8.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동 총회에 대비, 각 부처 간의 원활한 협조도모
- 월남 근해 시험조사선 파견(수산청): 5.1.~29. 수산진흥원 소속 조사선을 월남 해역에 파견하여 시험조업 실시

## 2. 회의결과

### ※ 의결사항

- 동구권 진출: 철저한 보안조치를 취하여 신속히 시행한다는 원칙하에 관계부처 소실무회의에서 논의
- 대외수산기술공여 계획: 기존 기술공여계획과의 조정 내지는 일원화가 요청되며, 동 협의를 위해 실무 회의를 개최하고 이는 외무부가 담당

#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4권 (V.1 제1-3차)

| 74-091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17 / 1 / 1~185p

외무부의 1974년 중 제1~3차 수출진흥 확대회의의 개최 관련 보고 내용임.

## 1. 74년도 상반기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보고계획(1.14.)

### ※ 기본방침

- 한국상품의 시장확대: 특히 EC(구주공동체) 시장 심화에 역점을 둔 미국, 일본, EC의 기존시장 심화 및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규시장 확대
- 자원의 국제적 유통상황의 파악 및 소요자원 확보를 위한 교섭
- 교역증진 및 자원확보와 직결되는 경제협력
- 무역환경 개선 및 수송수단 확충을 위한 교섭
- 공산권과의 직접교역 추진

### ※ 월별 잠정보고 안건

- 매월 사정에 따라 새로운 안건으로 대체 또는 추가하여 가장 적합한 보고안건이 되도록 재조정

## 2. 제1차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보고(1.20.)

### ※ 74년도 지역별 수출증대 활동방침

- 총 45억 달러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별 수출목표 할당
- 수출증대 방안: 중점 전략시장 확대, 업계를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 강화

### ※ 섬유류 다자협정과 양국간 쿼터교섭

- 협정 체결과 내용 및 개도국 우대, 전망과 대책 등
- 1974.1~3월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EC와 교섭계획

## 3. 제2차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보고(2.27.)

### ※ 각국의 자원확보 노력과 우리의 자원외교

### ※ 일반관세특혜제도와 한국의 대구주 수출증대

- 구주 주요국의 특혜실시 현황, 의의와 영향, 74년도 확대 EC의 특혜내용, EC 특혜의 제약성, 영국의 EC 가입으로 한국 상품 진출조건 호전, 특혜관세의 활용대책

## 4. 제3차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보고(3.27.)

### ※ 대중남미 통상 및 경제외교 강화

-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 개최(1974.3.18.~19., 페루 리마), 자원확보, 경제협력, 수출증진방안 집중토의
- 한-페루 무역협정 체결(3.19.), 6개국과 무역협정 기체결, 6개국과 추진중

### ※ 북구와의 교역 및 경제협력 관계증진

-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구사절단 방한(74.3월), 최근 북구지역의 대한 경제진출 증대의 배경분석, 대책, 북구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



#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4권 (V.2 제4-6차)

| 74-091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17 / 2 / 1~256p

외무부의 1974년 중 제4~6차 수출진흥 확대회의의 관련 보고 내용임.

## 1. 제4차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보고(4.24.)

- ※ 74년도 아주시역 공관장회의(경제관계) 결과보고
  - 1974.4.15.~22. 서울에서 주일본대사 등 19명 참석 회의개최
  - 아주시역 수출시장 개관과 수출증진방안 협의: 경제발전에 따른 신규상품 수출촉진, 정책적 수출량 배정, 대정부 교섭강화, 공관장 중심 경제활동 강화, 경제적 진출확대를 통한 한국의 외교목표 달성촉진
- ※ 섬유류 수입규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TSB(직물감독기구) 설치운영, 한-캐나다 쿼터교섭 합의내용, 74.5~7월간 스웨덴, 미국 등 5개국과 쌍무교섭 계획, 미국의 섬유류 수입동향 등

## 2. 제5차 수출진흥확대회의 보고(5.29.)

- ※ 74년도 중동지역(1974.5.7.~8., 베이루트) 및 아프리카지역(1974.5.11.~12., 아비장) 공관장회의의 보고
  - 중동지역 회의 결과: 통상증진(장기시장 확보), 경제 및 기술협력(장기자원 확보), 협력사업 적극진출, 친공 중립국과의 통상 및 경제협력 모색, 신 수출시장 개척, 대중동 1억 달러 수출 초과달성 다짐
  - 아프리카지역 회의 결과: 무역 및 경제협력 체결, 동·서부 종합상사 설치추진, 시장조사단 및 세일즈맨단 파견, 연불기금 및 기술공여 집중지원, 수출목표 6천만 달러 달성 다짐
- ※ 캐나다의 일반특혜관세제도 실시
  - 특혜관세 내용, 캐나다의 수입규모와 특혜관세, 한국에 미치는 영향, 대책 등
- ※ 영국의 대한 경제관계 증대노력
  - 대한무역자문위 신설, 영국 대외무역위의 기능, 동 위원회 신설배경, 대책 등

## 3. 제6차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보고(7.1.)

- ※ 국제입찰을 통한 대 아랍지역 수출증대
  - 대이집트 타이어 낙찰, 대시리아 전선수출, 기타 카타르, 사우디 등 주요입찰 현황, 전망 및 진출강화 대책
- ※ 한국상품의 대이탈리아 수출확대
  - 이탈리아 시장분석, 한국상품의 대이탈리아 수출증가 추세, 이탈리아 국제수지 악화, 수입제한조치, 전망 및 대책
- ※ 서부아프리카 해역에의 어업진출 강화
  - 한국의 원양어업 출어현황(73년), 73년도 실적 및 74년도 목표(243척, 42백만 달러), 아프리카 어장 확장의 이점 및 문제점, 추진방향 및 대책

#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4권 (V.3 제7-9차)

| 74-091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17 / 3 / 1~176p

외무부의 1974년 중 제7~9차 수출진흥 확대회의의 개최 관련 보고 내용임.

## 1. 제7차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보고(8.28.)

- ※ 수입규제 동향
  - 캐나다 및 EC(구주공동체)의 양상이 수입규제, 호주의 섬유류 수입제한, 75년도 EC 특혜관세 수혜제한, 분석 및 평가, 대책
-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다자간 무역협상
  - 협상의 근황, 목적, 협상내용 요지, 케네디라운드와의 차이점, 미국 등 각국의 입장,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 대책
- ※ EC 지역 주재공관 협의체 설치
  - 설치목적, 설치경위 및 구성, 추진사항(1974.8.29.~30. 브뤼셀에서 발족회의 개최)

996

## 2. 제8차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보고(9.25.)

- ※ 대중동 수출증대 방안
  - 이란, 이집트, 리비아, 수단, 이라크, 시리아 등 국별 수출증대방안 수립 시행
- ※ 인도의 시장사정
  - 인도의 대한민국 무역규모, 수입정책상 특이점, 연도별 수입추세, 한국의 대인도 수출(73년 2.6백만 달러, 74.1~8월 1.5백만 달러), 인도의 수입전망, 수출확대를 위한 활동방향

## 3. 제9차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보고(10.30.)

- ※ 대중남미 수출 및 경제협력 증진
  - 경제개황, 한국의 진출현황, 중남미의 경제적 특성 및 한국의 진출전망, 대책(상품진출 노력강화, 상호 이익에 입각한 협력관계 증진, 각종 건설공사에 적극 참여, 억 달러대 시장의 기반 확충)
- ※ 동남아 및 아프리카지역 경제사절단 파견
  - 파견시기 및 방문국(동남아지역: 10.25.~12.5., 중부 아프리카지역: 10.31.~12.9. 서부아프리카지역: 10.25.~12.9., 동부 아프리카지역: 10.25.~12.6.), 파견목적, 주요자원 보유현황, 수출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기대성과
- ※ 군수품 수출증대
  - 한국의 군납추세, 지역별 군복 수출현황, 추진중인 사업(사우디 등 7개국, 73백만 달러 규모), 각국의 수요현황, 수출증대 방안(신속한 구매 및 입찰정보 수집, 한국 수출가능품목의 홍보활동 강화, 군납업자 상호교류 추진, 국가별 개척상사의 기득권 설정 및 창구일원화, 군수품의 엄격한 검사제도 실시, 보안 유지)

# 수출진흥 확대회의. 전4권 (V.4 제10-11차)

| 74-091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17 / 4 / 1-107p

외무부의 1974년 중 제10~11차 수출진흥 확대회의의 개최 관련 보고 내용임.

## 1. 제10차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보고(11.27)

- ✿ 한· 미국 섬유류협정 교섭결과 보고
  - 제1차(9.12.~20., 워싱턴) 및 제2차(11.4.~9., 서울) 회의의 진행, 11.9. 양국간 양해각서 서명
  - 협정 유효기간: 3년(74.10.1.~77.9.30.)
  - 제1차년도 쿼터총량: 504.7백만 syds(전년대비 7%증가), 2, 3차 연도는 6.25%, 6.75% 증가
  - 기타 이월, 조상 등 운영상의 융통성 확보
- ✿ 전자제품의 캐나다시장 심화
  - 대캐나다 수출현황, 과학적 시장조사 실시(6~10월), 조사결과 전자제품의 수입수요 계속 증가예상
- ✿ 호주의 대한 경제관계 증대노력
  - 호주 경험사절단 방한(7.20.~27.), 상호교류의 적극화 등 양국간 경제관계 증대를 위한 방안 건의
  - 우리의 대처방안: 호주 정부의 계획 추진상황 파악, 관계부처별 활동지침 작성, 한· 호주 통상장관회담 활용

## 2. 제11차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보고(12.27)

- ✿ 자원보유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푸아뉴기니 등 자원보유국과의 방문· 초청외교, 합작투자,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 체결 등 시행
- ✿ 75년도 통상진흥 시책
  - 지속적 성장을 위한 민활한 경제외교 전개
  - 활동지침: 국제적 경제불황에 슬기와 결의로 대처, 100억 달러 수출 조기달성, 주요 교역국으로서의 지위 공고화, 수출증대로 외교목표 달성에 이바지
  - 아래 추진계획을 시행
    - 시장특성에 적합한 수출전략의 활용: 75년도 총 수출목표는 60억 달러(일본 23억, 미국 21.4억 달러 등), 75년도 공관장회의를 지역별로 4회 개최
    - 국제적 경기침체에 따른 무역상의 장애 제거
    - 자원확보를 위한 외교활동의 전개
    -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적극 지원
    - 우리의 결의: 60억 달러 수출목표 돌파, 경제개발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세계속의 수출 한국의 확고한 지위 건립

# 1973년도 일본지역 수출진흥 공관장회의

| 74-0919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17 / 5 / 1~155p

1973년 중 제2~3차 일본지역 공관장회의 결과 보고 내용임.

## 1. 제2차 일본지역 공관장회의 결과 보고(8.9.)

※ 회의개요

- 8.6. 오사카에서 주일본대사 주재로 개최, 일본주재 전 공관장 및 대사관 관계자와 경제기관 대표 등이 참가
- 1973년도 상반기 대일본 수출실적 및 수출진흥활동 현황을 분석, 검토하고 하반기 활동방안 협의

※ 아래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조치요망

- 수입절차 간소화, 품질관리 철저 및 수출검사 강화, 부가가치가 높은 2차 제품 수출비율 향상을 위한 업계지도, 특정상품 전문 수출업자 육성, 상품 견본용 원자재 범위확대, 한국업체의 신용 등 자료제공 방안 강구, 특수화물 자동차의 일시수입 허용 등

## 2. 외무부는 1973.8.14. 부내 국제경제국 등 관계국 및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 관계부처에 상기 회의 시 대일본 수출증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송부하고 검토결과 회보를 요청함.

- ※ 외무부는 1973.9.19. 및 1974.1.11. 주일본대사에게 상기 건의사항에 대한 상공부, 관세청 등 회신내용을 통보

## 3. 제3차 일본지역 공관장회의 결과 보고(12.8.)

※ 회의개요

- 12.7. 동경에서 주일본대사 주재로 개최, 일본 주재 전공관장 및 대사관 관계관과 경제기관 대표 등 36명이 참가
- 석유위기에 직면한 일본 경제현황 검토, 1973.10월말 수출실적 분석과 1974년도 수출전망 협의

※ 아래 건의사항에 대한 최대한 반영조치 요청

- 화섬·전자제품 등 원자재 확보노력 경주, 관광객을 위한 저질품(수산물, 홀치기, 가발 등) 수출방지, 상품소개 자료 및 견본 등 선전자료 적극지원, 직접수출 장려, 오키나와 해양박람회 어전(1974.9월)에 한국상품전 개최, 상사에 대한 충분한 경비송금 허용 등

## 4. 외무부는 1973.12.27. 상공부, 농수산부, 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1973년도 제3차 일본지역 공관장회의 결과를 송부하고 건의사항 등에 관해 검토 조치를 요청함.

- ※ 외무부는 1974.1.10., 2.11., 2.25., 3.15. 주일본대사에게 교통부, 수산청, 농수산부, 상공부의 검토결과를 수시 통보

# 동구시장 개척조사단 폴란드 및 루마니아 파견계획

| 74-092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17 / 6 / 1~41p, 2010-87 / 30 / 1~3p

## 1. 상공부는 1974.5.23. 외무부에 안광호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의 동구지역 입국에 따른 상공부장관의 추천 가능여부를 아래 문의함.

- ※ 캐나다 무역상의 알선으로 인한 안광호 사장의 폴란드 및 루마니아 방문계획으로 동인의 입국수속에 필요한 상공부장관의 추천 가능여부 검토요청

## 2. 외무부는 1974.5.31. 상공부에 아래 회신함.

- ※ 대동구 경제 및 통상관계 개선책의 일환으로 수차 한국인사가 동구 국가 입국을 시도해 왔으나 미실현
- ※ 금번 안광호 사장의 폴란드, 루마니아 방문실현은 한국의 대동구 적극진출을 위해 극히 유익하므로 상공부 장관의 추천서 작성, 수교 요망

## 3. 외무부 통상3과는 1974.6.13. 동구시장 개척조사단 파견과 관련 아래 장관재가를 득함.

- ※ 금번 안광호 사장의 폴란드, 루마니아 방문을 계기로 대동구 교역을 위한 정보수집 및 이들 공산권 국가와의 직접교역방안 모색을 위해 김병연 외무부 통상국 과장을 동 사장의 assistant 자격으로 수행

## 4. KOTRA는 1974.6.14. 외무부에 동구지역 수출진출을 위한 간담회 개최결과를 아래 송부함.

- ※ 6.5. 안광호 사장 주재로 캐나다 무역상과 국내 관계업자 초청 간담회 개최  
- 개척조사단의 동구권 입국에 따른 절차, 문제점 등 상세협의

## 5. 외무부는 1974.6.20. 중앙정보부에 동구시장 개척조사단 파견과 관련, 아래 의견을 문의함.

- ※ KOTRA는 캐나다의 대동구 전문상을 통해 폴란드 및 루마니아와의 상담 및 박람회 참가협의를 위해 안광호 사장의 동 구 입국을 교섭  
- KOTRA에 의하면 한국경제인의 입국이 가능하다는 캐나다 무역상의 전문을 6.6. 접수
- ※ 금번 안 사장의 폴란드, 루마니아 방문을 계기로 대동구 직접교역 방안 모색을 위해 김병연 외무부 공산권 교역 담당직원을 KOTRA 사장의 비서(KOTRA 직원)자격으로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회보 요망

## 6. 중앙정보부는 1974.6.25. 외무부에 아래 회신함.

- ※ 외무부 통상3과장의 폴란드 및 루마니아 여행은 6·23 선언의 외교정책에 입각, 허가해도 무방  
- 단, 동 국가들은 북한의 공작활동이 활발한 지역임을 감안, 철저한 신분안전 및 보안대책 강구요망

# 통상 및 자원사절단 동남아 순방, 1974.3.3.-15.

| 74-092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17 / 7 / 1~15p

장예준 상공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통상 및 자원사절단이 1974.3.3.~15.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를 방문함.

## 1. 방문 일정

- ※ 뉴질랜드(3.3.~6.)
- ※ 호주(3.6.~8.)
- ※ 인도네시아(3.9.~12.)
- ※ 말레이시아(3.12.~15.)

1000

## 2. 방문 성과

- ※ 뉴질랜드
  - 제6차 한·뉴질랜드 상공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아래 사항에 합의
  - 양국간 교역증대방안 강구, 원목 등 자원의 장기공급, 무역협정 개정, 평창 육우목장 설치 지원 등 5개 사업 추진
- ※ 호주
  - 철광석 및 원료탄 등 자원의 장기공급 확보, 파푸아뉴기니 원목개발 참여추진, 민간 경제인협의회 설립(정기적 연례회의)
- ※ 인도네시아
  - 원목, 석탄 등 자원의 장기확보, 연례 상호 장관회담 개최, 시멘트·비료·철강재의 대한 수입, 환관 등 합작투자 진출협조, 건설업체의 합작 기술훈련 및 잠업기술 지원
- ※ 말레이시아
  - 원목·생고무 등 자원의 장기공급 협조, 화차 등 입찰에 적극참여, 조림·벌목 등 합작사업 검토, 잠업 등 기술협력, 연례 상공장관 또는 고위실무자 회담 추진

# 호주 통상협력사절단 방한, 1974.7.20.-27.

| 74-092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정책
MF번호	N-17 / 8 / 1~48p

Hill 호주 통상성 부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호주 통상협력사절단이 1974.7.20.~27. 방한함.

## 1. 주호주대사는 1974.7.1. 호주 통상산업 협력조사단 방한에 관해 보고함.

- ※ 동 사절단의 임무는 양국간 교역증대를 위한 신규상품 개척, 교역상 문제점 발굴, 호주 기술 및 자문 지원분야 조사, 대한민국 투자가능 분야 조사 등
- ※ 한국이 필요로 하는 호주자원 소요량에 관해 설명, 호주의 협조 재요청 건의

## 2. 주호주대사는 1974.11.5. 호주 통상협력사절단 보고서에 관해 보고함.

- ※ 상기 보고서를 10.1. 케인즈 호주 통상상에게 제출
- ※ 동 보고서 중 한국관계 권고 부분의 주요 내용
  - 한-호주 경제인협력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조치로 중요 한국기업인 호주 초청
  - 한국투자유치 사절단 초청 및 호주 투자사절단 파한
  - 74.12월말 또는 75년초 호주 구매사절단 파한
  - 축산전문가 초청 및 제2종합제철 사장 초청
- ※ 동 사절단은 호주의 자원수출 대상국으로서 한국의 중요성과 투자 적정국으로 한국을 적극 추천

## 3. 외무부는 1974.11.13. 호주 통상협력사절단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발췌, 대통령에게 보고함.

- ※ 한국경제 평가
  - 1962년 이래 연평균 9.2% 성장
  - 향후 10년간 성장계획도 매우 낙관적
  - 한국의 중공업발전을 위한 호주의 원자재 공급의 중요성, 합작투자 가능성, 투자대상국으로서의 한국 등을 기술
- ※ 양국 경제관계 증진을 위한 건의사항
  - 상호교류 증진, 한국의 투자협외단 초청, 호주 구매사절단 파한, 수력발전 등 용역사업과 제3국에서의 합작투자 가능성 검토, 농업개발 · 해운 · 기술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 검토

## 4. 주호주대사는 1974.12.23. Hill 호주 통상성 단장이 동 사절단 방한 보고서(책자)를 송부해 왔음을 보고함.

- ※ 외무부는 12.30. 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 농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상기 책자를 송부하고 호주와의 통상 증대 및 경험증진에 참고토록 요청
- 특히 동 보고서를 75년도 한 · 호주 통상장관회담 의제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 표명

100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우간다 통상사절단 방한, 1974.10.19.-22.

| 74-0923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N-17 / 9 / 1~44p

Athiyo 우간다 상공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우간다 통상사절단이 1974.10.19.~22. 방한함.

## 1. 주요 일정

- ※ 10.19. 한국 도착
- ※ 10.20. 산업시설 견학, 한국무역협회장 주최 만찬
- ※ 10.21. 장예준 상공부장관 예방, 김동조 외무부장관 예방, 김종필 국무총리 예방, 남덕우 부총리 예방, 한국 경제발전 브리핑,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
- ※ 10.22. 한국 출발

1002

## 2. 외무부장관 면담(74.10.21.)결과

- ※ 외무부장관이 한국의 통일정책 및 대유엔정책에 관해 설명
  - Athiyo 장관은 한국의 정책을 잘 이해했음을 언급
- ※ 동 장관은 양국간 통상 및 경제관계 증진과 한국 상품의 직접 거래가 실현되기를 희망
  - 또한 합작투자 사업도 추진되기를 희망
- ※ 동 장관은 한국 고교교사(4~5명)의 우간다 파견을 요청
  - 외무부장관은 문교부와 협의, 가능한 파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우간다 학생을 한국에 파견, 교육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시사
- ※ 외무부장관은 주한 우간다 상주대사의 파견을 요청
  - 동 장관은 귀국 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언급



# Scotland(영국) 통상사절단 방한, 1974.9.15.-20.

| 74-0924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통상2
MF번호	N-17 / 10 / 1~69p

영국의 스코틀랜드 통상사절단이 1974.9.15.~20. 방한함.

## 1. 사절단 개요

- ※ 스코틀랜드 상공인 16명으로 구성(단장: W.Inglis)
- ※ Scottish Council의 정기적 사절단 파견계획에 의해 최초 방한
- ※ 한·영국 경제협력위원회 창설(1974.6.13.)이후 최초의 공동사업

## 2. 방한 목적

- ※ 한·영국 간 경험·통상 증진

## 3. 방한 일정

- ※ 9.15. 한국 도착
- ※ 9.16. 주한 영국대사관, 전경련, 한·영국 경제협력위원회 방문, 사절단 주최 리셉션
- ※ 9.17. 주한 영국대사주최 리셉션
- ※ 9.20. 한국 출발

## 4. 면담자료 작성(외무부 통상2과)

- ※ 사절단 개요
- ※ 통상관계
  - 대영국 교역현황, 영국의 경제·통상 동향
- ※ 경제협력 관계
  - 자본협력, 한·영국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립, 한·영국 기술협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영국 투자조사단 방한 등

100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미국 기업인 통상투자사절단 방한, 1974.5.12.-17.

| 74-092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N-17 / 11 / 1~117p

D.M. Kennedy 미국 전 재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기업인 통상투자사절단이 1974.5.12.~17. 방한함.

## 1. 주요 활동

-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상공부장관 예방
- ※ 한국경제와 투자환경, 한국의 경제여건, 중화학공업 추진현황, 울산공업단지 현황 등 브리핑
- ※ 현대조선소 등 시찰, 한·미국 실업인 간 간담회 등

1004

## 2. 방한 결과(경제기획원의 평가 및 전망)

- ※ 투자환경에 대한 종합평가
  - 미국과의 투자 및 통상유대 강화 인식 및 한국의 경제개발과 투자환경 과약의 계기
  - 외국인 투자환경은 양호, 특히 저임의 숙련된 노동력 발견
  - 사절단에 참가한 회사들은 3,500만 달러 투자의향 발표, 향후 투자 확대 예정
- ※ 구체화된 투자내용
  - 전자부품, 비료, TV bulb, 식료품 제조, 농업부문, 중기계 제작 등 분야
- ※ 투자환경에 대한 문제점
  - 외국인 투자기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 현재 면세되고 있는 노동소득세 이외에 종합소득세 면세도 요청
  - 이에 대해 관계기관과 검토 협의한 후, 결정하여 통보하기로 답변

# 장예준 상공장관 이란 방문, 1974.10.8.-11.

| 74-092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17 / 12 / 1~77p

장예준 상공부장관이 1974.10.8.~11. 이란을 방문함.

## 1. 방문 일정

- ✿ 10.8.
  - 이란 도착
- ✿ 10.9.
  - 이란석유공사 총재 면담
  - 수상 예방
  - 상무상 면담 및 오찬
  - 주이란대사 주최 만찬
- ✿ 10.10.
  - KOI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최 오찬
- ✿ 10.11.
  - 이란 출발

## 2. 방문시 주요인사 언급요지

- ✿ 이란석유공사 총재
  - 정유공장 합작건설 추진의사를 표명하고 상호 검토 언급
  - 방한초청은 1975.2월경 가능함을 언급
- ✿ 수상
  - 정유공장 합작건설, 어업협력 등 양국간 합작투자 추진을 강조
  - 건설업 진출 가능성을 시사
- ✿ 상무상
  - 한국의 시멘트, 철강재 및 설탕 등 공급 요청
  - 한국업체의 건설분야 진출지원을 약속
  - 한국의 어업관계 조사단 파견을 환영
  - 경제사절단 상호교환 제의를 환영

100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장예준 상공장관 아프리카 및 일본·월남 순방, 1974.12.3.-21.

| 74-092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3/아프리카
MF번호	N-17 / 13 / 1~188p

장예준 상공부장관이 1974.12.3.~21. 아프리카 및 아시아를 순방함.

## 1. 방문 목적

- ※ 세네갈에서 개최되는 제1회 다카 국제박람회 참가 및 한국의 날 행사주관
- ※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증대, 경제 및 기술협력 증대 및 우호관계 증진
- ※ 제6차 한·월남 경제각료회의의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가
- ※ 오키나와 국제해양박람회장 시찰

1006

## 2. 방문 일정

- ※ 세네갈(12.3.~6.), 케냐(12.6.~7.), 우간다(12.8.~11.), 월남(12.16.~17.), 일본(12.20.~21.)

## 3. 방문국별 주요활동 및 방문성과

- ※ 세네갈
  - 한·세네갈 무역협정 체결 합의
  - 한·세네갈 우호관계 및 이해 증진
  - 다카 국제박람회 한국의 날 행사 주관, 축하 리셉션 개최
- ※ 케냐
  - 무역 및 기술협력협정 체결합의
  - 면화 계약재배를 위해 합작투자 검토 합의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의 기금으로 추진되는 발전소, 각종 도로·교량건설에 한국업체 진출 협조요청
- ※ 우간다
  - 한·우간다 무역협정 체결에 합의
  - 1975년 우간다 기술자 10명 방한 초청, 훈련에 합의
  - 우간다 측은 한·우간다 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제의
- ※ 월남
  - 제6차 한·월남 경제각료회담 참석
  - 월남의 전후복구와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원조 약속
- ※ 일본
  - 오키나와 국제해양박람회(1975.7.20.~76.1.18. 개최예정) 장소 시찰
  - 한국의 참가계획 점검

# 이병희 제1무임소장관 쿠웨이트 방문, 1974.10.21.-25.

| 74-092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N-17 / 14 / 1~60p

이병희 제1무임소장관이 1974.10.21.~25. 쿠웨이트를 방문함.

## 1. 방문 목적

- ※ 국무총리 친서전달, 한국종합상품전시회 개최 주관, 통상증대 도모, 외교관계 수립 촉구
- ※ 한반도 정세 설명 및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교섭
- ※ 양국간 현안문제(통상,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체결, 유력인사 방한초청) 협의

## 2. 주요 일정

- ※ 10.22.
  - 상공장관, 상공회의소 회장, 국회부의장 방문, 기자회견, 한국상품종합전시회 개막식 참가
- ※ 10.23.
  - 외무차관 면담, 수상 예방, 전력수력상과 석유담당차관보 면담, 한국의 밤 개최

## 3. 방문 결과

- ※ 상품전시회는 매우 성공적
  - 개막 참가인원 약 2,000명
- ※ 정부인사 면담
  - 수상, 상공장관, 상공회의소 회장, 국회 부의장, 외무차관, 전력수력상, 석유담당차관보 등
  -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및 수교문제에 대해 이해하나 언급은 회피
  - 통상,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체결은 원칙적 환영, 외무부에서 현재 검토 중
- ※ 주요인사 방한초청
  - 상공회의소 회장과 국회부의장은 1975년 방한 예정
  - 전력수력상과 석유담당차관보는 방한초청에 사의를 표명하고 검토 언급

100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Mahmoud A. Taiba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차관 방한, 1974.6.9.-13.

| 74-092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통상3
MF번호	N-17 / 15 / 1~16p

## 1. M.A. Taiba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차관이 1974.6.9.~13. 방한함.

## 2. 1974.6.10. Taiba 차관과 노신영 외무부차관과의 면담요지는 아래와 같음.

### ※ 노 차관 언급요지

- 한국의 대중동 협력사절단의 후대에 대해 감사
- Sakkaf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담당 국무상의 74.6월말 방한을 환영하며, 한국은 사우디와 경제 및 기술 협력협정 체결을 준비 중
-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설치 결정을 환영하며, 금번 Sakkaf 국무상 방한 시 이에 관한 최종적인 통보가 있기를 희망
- 중동은 흥미롭고 유망한 지역이며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이 한국과 대조적이라고 생각
- 한국은 지하자원이 부족하고 고도의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어 오직 근면과 노력으로 자원의 부족을 충당
- 사우디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기술 및 공업역량을 합작하여 상호협력으로 형제관계의 유대를 수립 하게 되기를 희망

### ※ Taiba 차관 언급요지

-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체결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장관의 최종지시 대기중
- 외무부차관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초청
- 양국간의 협력사업이 조속 실현되기를 기대
- 장예준 상공부장관을 면담하고 6.13. 이한 예정

# Hussein Ali Al-Watari 예멘(구 북예멘) 상공 회의소 회장 방한, 1974.4.13.

| 74-0930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중동
MF번호	N-17 / 16 / 1~14p

## 1. Al-Watari 예멘(구 북예멘) Sanna 상공회의소 회장 일행이 1974.4.13.~22. 상품구매 교섭차 방한함.

## 2. 외무부 구아국은 1974.4.16. 상기 상공회의소 회장이 외무부 경제차관보를 예방할 계획임에 따라 면담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통상국으로 송부함.

### ※ 한국의 대예멘 입장

- 한국은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에 따라 친공산, 중립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2.15. 친아랍성명의 근본 취지에 입각하여 아랍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예멘에는 현재 북한대사관이 상주하고 있으나, 한국도 대사급 외교관계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74.1월 최운상 주카이로총영사가 예멘을 방문하여 한국과의 외교관계수립을 비공식 제의한 바 있음.
- 최대사의 예멘 방문 중 대통령 정치고문, 개발성장관, 부외상 및 경제관계 유력인사를 접촉하였으며, 금번 방한한 Al-Watari 상공회의소 회장도 면담한 바 있음.

### ※ 예멘의 대한국 입장

- 예멘은 아랍국가권으로 현 Al-Iryani 대통령 집권 이전까지의 이집트 일변도정책에서 점차 미국, 프랑스, 독일 등과의 외교관계수립으로 적극적으로 서구에 접근하고 있음.
- 대한국 관계는 이집트의 선례를 답습, 한국과의 영사관계,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
- 예멘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최운상 대사가 비공식 제의한 외교관계수립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 양국간 협력증대를 위한 주지사향

- 양국간 관계정상화를 통한 상호 호혜적인 바탕에서의 실질적 협력증대가 요망됨.
- 최근 아랍권 가운데 오만, 카타르가 한국과의 단독 외교관계수립에 합의하였음.
- 한국은 이집트와의 관계 긴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이집트 정부도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100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대바레인 시멘트 수출

| 74-093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아중동
MF번호	N-17 / 17 / 1~8p

대바레인 시멘트 수출과 관련한 중동지역 재외공관의 주요 활동 내용임.

### 1. 주이란대사는 1974.5.17. 바레인의 시멘트 수입요망과 관련하여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5.27, A.Buali 주이란 바레인대사 예방시, 바레인대사는 한국산 시멘트 구입희망을 표시
- ※ 다량 구입을 희망하며, 바레인 항구시설은 5만 톤급 선박이 입항 하역할 수 있다는 바, 양국간 우호증진 특히 수교문제 등 현안문제 등을 고려하여 5만 톤 정도 정책적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

1010

### 2. 주이란대사는 1974.8.8. 상기 바레인 시멘트 수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보고함.

- ※ TĐ와 바레인 측 South Gulf Trading and Shipping 회사 간에 톤당 65달러로 시멘트 1만 톤 공급이 합의되었으며, 8.10까지 계약 체결
- ※ 쌍용 측으로 하여금 TĐ 측에 상기 1만 톤을 추가 할당토록 긴급조치 요망

### 3.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74.12.9. 대바레인 시멘트 수출 관련,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대사관은 쌍용 부사장으로부터 바레인 Tranship 회사에 쌍용시멘트 5만 톤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미 Taiba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차관에게 통보했다는 전문 접수
- ※ 대사관은 바레인과의 외교관계 수립 교섭에 본건 5만 톤 이외에 바레인이 필요로 할 경우 1975년도 추가 공급 가능성을 이용하고자 본 건 사우디아라비아 측에 통보하기 전에 당관으로 사전 연락해 주기를 요청한 것임.
- ※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회보 요망
  - 본 건 5만 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공급 계약량에 대한 추가인지의 여부
  - 공급계획 및 시기
  - Taiba 상공차관에게 이미 통보하였는지 여부
  - 1975년도 대바레인 공급 가능량



# 대모로코 군수품 수출

| 74-093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2010-87 / 36 / 1~138p

## 1. 모로코 군사구매단(단장: A. Jaidi 주뉴옥 모로코총영사)이 1974.8.1.~11. 방한함.

- ✿ 방한 경위
  - 심홍선 특사 방문(1974.6.25.)시 모로코 국왕은 한국으로부터 군수품 구매를 목적으로 군사사절단 파한을 고려중임을 언급
- ✿ 방한 목적
  - 각종 화기(M-16 및 바주카포), 군복 및 군화 등 병참물자 구매
  - 정비병 및 유격전 교관요원 초빙 가능성 검토
  - 한국산 도청장치 구입
- ✿ 방한 활동 및 결과
  - 외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을 예방, M-16 소총 등 군수품 구매 협조를 요청
  - 한국 측은 한-미국 간 양해각서 및 기술지원협정에 따라 미국의 사전동의 없이 군수품이나 플랜트 수출의 어려움을 설명

## 2. 모로코 군사사절단(단장: Faquir 군 감찰총장)이 국군의 날 행사 참석차 1974.9.30.~10.4. 방한했으며, 방한 시 초계정, 각종 화기, 군복 및 군용 가공식품 도입문제 등을 협의하고 주요 방위산업을 시찰함.

## 3. 상기 1974.8월 군사구매단 방한 및 1974.9월 Laraki 모로코 외상 방한 시 모로코 측은 M-16 소총 구매 희망과 함께 모로코 국왕에게 증정할 국산소총 2정의 기증을 요청함.

- ✿ 주모로코대사는 10.10. XB-4 소총의 모로코 수출 가능성을 외무부에 문의하고 모로코 왕실에 증정할 동 소총 2정을 제작, 송부해 줄 것을 건의
- ✿ 국방부는 왕실증정용 XB-4 소총의 증정에 관해 미국 측과 협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회답 접수
- ✿ Jaidi 주뉴옥 모로코총영사는 12.17. 외무부 구아국장에게 한국 측이 왕실 증정용 소총의 기증에 응하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
- ✿ 국방부는 국왕증정용 소총의 생산 시기로 1975년초를 준비하고 있으며, 동 소총의 수출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음을 언급

# 김종락 코리아 타코마 조선공업주식회사사장 구주 순방, 1974.5.22.-26. 및 12.10.-24.(연기)

| 74-0933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구주
MF번호	N-17 / 19 / 1~54p

## 1. 외무부는 1974.5월 주영국, 주노르웨이대사관을 통해 김종락 코리아타코마 조선공업주식회사 사장의 구주순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함.

- ※ 영국(5.22.~26.)
  - 방문목적: 포트머스 소재 Vosper Thorny-Croft 조선소를 방문하여 고속정 관련 문제 협의
  - 제반 편의제공
- ※ 노르웨이(5.26.~29.)
  - 방문목적: 오슬로 소재 조선소를 방문하여 고속정 관련문제 협의, Kongsberg Vappan사를 방문하여 Penguin(함재 유도탄) 구입문제 협의
  - 체재일정 사전협의 및 제반 편의제공

1012

## 2. 외무부는 1974.12월 김종락 회장의 구주지역 순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함.

- ※ 영국(12.10.~14.)
  - 방문목적: 한국 해군의 영국 Vickers사 잠수함 구입 계획 협의
  - 양측간에 기본적인 합의가 성립되도록 최대한 협조
  - 한국 정부가 코리아타코마사를 Agent로 지정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향서 작성
  - Vickers사와 코리아타코마사 간 양해각서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한 협의
- ※ 프랑스(12.14.~21.)
  - 각종 편의 제공
- ※ 독일(구 서독)(12.21.~24.)
  - 방문목적: Messer Schmitt-Boelkow-Blohm사의 대전차포 Armbrust-300 관련 협의
  - 방문일정 조정 등을 통해 방문 목적이 달성되도록 협조
  - 김 회장의 독일방문 건은 연말 휴무 등으로 연기

# 한·일본 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 보호에 따른 심사협력 협의

| 74-0934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통상1
MF번호	N-17 / 20 / 1~16p

## 1. 상공부는 1974.5.24. 외무부에 한·일본 공업소유권 상호보호협정에 따른 심사협력사항 협의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함.

- ※ 일본 특허청 총무과장 외 1명이 1974.5.6.~10. 방한
- ※ 방한 목적
  - 한·일본 공업소유권 상호보호협정 발효(1974.1.1.)후의 일본인 출원 및 처리상황 조사
  - 심사 협력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 특허정보 자료의 정비 및 관리현황 조사
- ※ 한국 측의 설명 및 제안
  - 일본인의 출원 건수(2,329건)가 한국인 출원 건수(2,046건)보다 많으며, 심사자료 미비, 심판관 부족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일본인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본 측의 협력(심사자료 보완, 심사정보 교환, 심사 및 심판관 훈련)을 요청
  - 상기 한국 측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 특허청 국장이 일본을 방문, 특허청장관과 협의해 줄 것을 요망
- ※ 향후 추진방침
  - 특허청 국장의 6월 일본 방문 시 일본 특허청 장관과 협의 타결
  - 일본 발명협회 및 특허협회와 한국의 특허협회 간 유대강화 문제 협의
  - 한국 특허협회원들의 일본 특허관리체제 시찰

## 2. 외무부는 1974.5.30. 주일본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 지시함.

- ※ 한·일본 공업소유권 상호보호협정 발효 후 일본 특허청 직원이 1974.5.6.~19. 방한하여 동 협정 발효에 따른 심사협력문제 협의
- ※ 특허청 국장의 방일 및 한국특허협회 회원들의 일본 특허관리체제 시찰 방침에 대한 견해 보고
- ※ 한국인 및 교포의 출원분에 대한 일본 특허청의 차별대우 및 처리지연 등의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 보고

101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미국의 외국국적 민간항공기 검색 강화

| 74-093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N-17 / 21 / 1~11p

미국의 외국국적 민간항공기 검색 강화를 위한 미 국내법 개정 움직임 관련 내용임.

## 1. 주미국대사는 1974.1.29. 외국국적 민간항공기의 검색강화에 대한 발표문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미국 교통부는 1.24. 외국국적 민간항공기의 검색강화에 관한 제안을 발표
  - 미국 내에 취항하는 외국국적 민간항공기의 검색강화를 위해 현존의 Federal Aviation Regulation 129조를 개정, 실시
  - 각국으로부터 2.25.까지 동안에 대한 코멘트를 받은 후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실시 예정
- ✿ C.S. Brinegar 미국 교통부장관의 발표문 요지
  - 닉슨 미국 대통령의 보안절차 점검 및 보완지시에 따른 조치
  - 1973.1~2월 발효된 긴급조치에 의해 미국 항공기 및 공항의 보안은 강화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외국 항공기들의 미국 내 자유 출입이 가능하며, 이는 심각한 위협요소
  - 외국국적 항공기 탑승자에 의한 납치(hijacking)로부터 미국 국제공항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 항공기에도 미국 항공기와 동일한 보안규정 적용

## 2. 외무부는 1974.2.6. 교통부에 외국 민간항공기 검색강화에 대한 미국 교통부의 발표문을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속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 ✿ 1.24. 미국 교통부가 미국 내 외국 민간항공기의 검색강화를 발표
- ✿ 미국 교통부는 외국 항공기의 검색강화를 위해 현 Federal Aviation Regulation 제129조를 개정
  - 2.25.까지 각국으로부터 동 개정안에 대한 코멘트를 접수
  - 그로부터 30일 이후 실시
- ✿ 미국 발표문 및 개정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조속 회보

# 한 · 캐나다 간 항공협력

| 74-093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N-17 / 22 / 1~16p

한국과 캐나다 간의 항공협력 관련 내용임.

## 1. 교통부는 1974.3.4. 캐나다 정기 민간항공기의 한국 FIR(비행정보구역) 통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통보함.

- ※ 캐나다 CPA 항공기의 대중국(구 중공) 정기취항에 있어 영공이 아닌 FIR 통과에는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은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
  - CPA 항공기는 대구 관제국으로부터 340Km나 떨어진 대구 FIR 남단을 통과하게 되므로 거리상 대구 관제국의 직접 공지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제주 모슬도에 위치한 공군 공지통신의 중계로 관제지시를 받아야 함.
  - 대구항로 관제국과 상해항로 관제국 간에는 항공교통 관제업무 및 항공정보 교환 등에 사용되는 직통 전화가 가설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상해 관제국과 대구 관제국 간의 관제업무 및 항공 정보교환은 동경 관제국에서 대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대구 관제국은 동경 관제국과 사전협의를 이루어져야 함.
  - 한-중국 FIR 항로 관제국 간에는 항공교통 관제업무 수행상 세부적인 협정체결이 필요함. 현 시점에서는 대구 관제국과 상해 관제국 간에 협정체결이 불가능하나 주1회 운항회수와 교통량으로서는 항공기 안전운항상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2. 주일본대사는 1974.3.20.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3.16. 한국 중앙일보 보도를 인용하여 한국 정부가 5월부터 캐나다-중국 간을 취항하는 캐나다 태평양항공기의 제주도 상공의 FIR 통과에 관한 캐나다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허가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3.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74.4.3. 외무부에 공한으로 캐나다 민간항공기의 중국행 대구 FIR 통과를 위한 허가를 요청함.

- ※ 동 비행은 주중국 캐나다대사관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Charter Flight
  - 통과지점은 대구 비행정보 구역
  - 일정은 동경출발(4.8.), 상해도착(4.9.), 상해출발(4.10.), 밴쿠버도착(4.10.)

## 4. 외무부는 1974.4.4.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상기 중국행 캐나다 민간항공기의 대구 FIR 통과를 허가하는 공한을 발송함.

101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대한항공(KAL)의 Teheran행 전세기 운항

| 74-093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N-17 / 23 / 1~9p

### 1. 대한항공은 1974.8.7. 외무부에 서울-테헤란 간 전세운항 인가획득을 위한 협조를 아래와 같이 의뢰함.

- ※ 1974.9.1.부터 테헤란에서 개최되는 Asian Olympic Game에 파견되는 한국선수단 수송을 위해 서울-테헤란 간 전세운항 허가를 이란 정부에 신청했으나 아직 이란의 회신 미접수
- ※ 전세운항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외교경로를 통해 특별배려 요망
  - 운항일자: 8.17~19., 9.17.~19.
  - 운항구간: 서울-방콕-테헤란
  - 운항목적: Asian Olympic Game 한국선수단 및 임원 317명 수송

1016

### 2. 외무부는 1974.8.9. 주이란대사대리에게 상기 대한항공의 전세 운항계획을 통보하고 이란 민간항공부에 운항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결과 보고를 훈령함.

### 3. 주이란대사는 1974.8.12. 대한항공 요청대로 운항허가가 나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4. 외무부는 1974.8.14. 대한항공에 서울-테헤란 간 전세운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함.

- ※ 서울-테헤란 간 전세기 운항을 위한 이란 정부의 운항허가가 나왔다는 주이란대사의 보고를 받았음.

# 인천항 차별 선임 철폐 노력

| 74-093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N-17 / 24 / 1~72p

본 문서철에는 대미국지역 해운동맹에서 한국항에 부과하고 있는 차별선임의 철폐에 관해 외무부가 전개한 외교노력이 수록되어 있음.

## 1. 외무부는 1974.1월부터 교통부, 상공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해운공사 등 관계부처와 인천항에 대한 차별선임 철폐를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함.

- ※ 상공부는 1.7. 외무부에 인천항에 대한 차별선임 관계자료 송부
- ※ 교통부는 1.14. 외무부에 인천항 차별선임 철폐 교섭관련 아래와 같이 통보
  - 해운공사의 FEC(Far East Conference, 수입운임동맹의 하나) 가입문제는 현재 한-북미항로에 취항 중인 선박이 재래선으로 현대화 된 여타 동맹선사에 비해 크게 경제력이 미약하므로 해운공사가 컨테이너선 확보 투입 시 동맹가입이 검토될 것
  - FEC 간부의 한국시찰 초청문제는 원칙적 찬성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3.29. 차별선임철폐추진위원회를 개최
  - 차별선임 철폐를 위한 FEC 의장 초청문제와 철폐 추진방안 등을 협의
  - 대미국 수입차별선임 인하경위(1968-70년) 및 한국항 차별선임 부과현황 자료 첨부

## 2. 주미국대사는 상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수시 보고함.

- ※ 1974.1.25. Kirse FMC(미연방해사위원회) 국장을 면담. 인천항에 대한 FEC 및 PWC(Pacific Westbound Conference)의 차별선임 철폐에 대한 협조를 요청
  - 국장은 호의적 반응을 보였으며, 3월 중 개최되는 FEC, PWC 합동총회 시 한국차별문제를 의제로 채택,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겠다고 약속
- ※ 3.19. 주미국대사는 방한하는 Hearn FMC 위원에게 차별선임 철폐를 위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
  - 동 위원은 금번 방한 시 인천항만 시설 개선상황을 관찰하고 귀국 후 적절한 조치를 약속
- ※ 주미대사관 상무관이 2.15. FMC를 방문. PWC 및 FEC가 보류해 오던 인천항에 대한 차별인상을 4.1부터 인상키로 결정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FMC가 중재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
- ※ 4.17. Kirse FMC 국장이 FEC 총회에서 4.1부터 인상 실시하던 인천항에 대한 차별선임을 10달러에서 4달러로 인하키로 결의하고 4.22부터 실시키로 하였음을 통보
- ※ 7.29. Bentley FMC 의장이 9월 극동 방문계획이며 이 기회에 2~3일 방한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 요망

101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국제우편교환

| 74-093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특수지역
MF번호	N-17 / 25 / 1~17p

## 1. 체신부는 1974.4.12. 한·루마니아 간 국제통신이 개설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 4.15.부터 루마니아에서 개최되는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한국대표가 초청되는 것을 계기로 한·루마니아 간에 국제전보, 텔렉스를 개설하여 업무를 취급

## 2. 체신부는 1974.8.2.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국제우편교환에 관해 아래와 같이 국무회의에 보고함.

- ※ 보고이유
  - 대통령의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의 일환으로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우편교환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교역증진 및 정보교환을 통해 국가이익에 부응
- ※ 주요 내용
  - 현행: 원칙적으로 공산국가와의 우편교환 금지(단, 정부가 지정하는 비적성 공산국가와 한국 사이에 교환되는 우편물로서 그 내용이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것은 제외)
  - 개정: 북한, 월맹을 제외한 세계국가(지역)와의 우편물 교환을 1974.9.1.부터 시행
- ※ 효과
  - 국가시책에 부응
  - 우편을 통한 무역증대 촉진

1018

## 3. 외무부 특수지역과는 1974.8.5. 상기 체신부의 조치에 관해 문제점 및 대책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함.

- ※ 문제점
  - 남북교류와의 관계: 북한이 제외된다는 내용이 대외적으로 크게 보도되게 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이 남북교류를 저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선전자료로서 이용될 가능성
  - UPU(만국우편연합) 현장과의 관계: 북한이 6.6. UPU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었으나, 회원국간 통상 우편물 교환을 주 목적으로 하는 UPU 현장 정신에 위배된다는 비난의 가능성
- ※ 대책
  - 금후 적당한 기회에 남북교류 실현불가능 원인이 북한 측에 있다는 현실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상기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홍보
  - 9.1.자로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국제우편교환 개정안 실시 시 더이상의 대외발표 회피
  - 제3자의 UPU 현장 정신위반 문제 제기예 대비, 북한 및 월맹 제외에 관한 적절한 입장선명 검토 필요



# 노르웨이 통상사절단 방한, 1974.3.19.-22.

| 74-0940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구주
MF번호	N-17 / 26 / 1~10p

## 1. 1974.1.17. 김동휘 외무부 경제차관보와 Berg-Nielsen 주한 노르웨이대사(동경 상주)와의 면담요지는 아래와 같음.

- ※ 경제 긴급조치
  - 김동휘 차관보는 정부가 최근 유통과동, 자원부족, 인플레이션 등 제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14. 긴급조치를 발표했음을 소개
  - Berg-Nielsen 대사는 금번 조치가 타당하다고 언급
- ※ 통상사절단의 방한
  - Berg-Nielsen 대사는 노르웨이 선박기계 제조회사 대표 17명으로 구성된 통상사절단이 1974.3.19.~22. 선박기계 대한수출 및 조선관계 합작가능성 조사를 위해 방한할 예정임을 언급
  - 노르웨이는 세계 제4위 해운국이고 조선사업은 사기업이며 자유기업이므로 동 사절단이 한국에서의 조선합작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결론만 얻게 되면 한·노르웨이 합작 가능성이 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
  - 김 차관보는 조선사업은 한국 정부의 중화학공업 개발계획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서 현재 확장중에 있으므로 동 사절단이 가장 적기에 방한함을 언급

## 2. 외무부 구아국은 1974.3.22. 상기 통상사절단의 방한과 관련한 자료를 작성함.

- ※ 방한목적
  - 선박기계 시장개척차 1974.3.19.~22. 방한함,
- ※ 노르웨이 개관
  - 군주국, 내각책임제, 인구 4백만 명, 국민소득 3,148달러(1972년), 노동당 내각
- ※ 한국과의 관계
  - 1959.3월 외교관계 수립
  - 1972.12월 주노르웨이 상주대사관 설치
  - 양국간 교역량 3.9백만 달러(1973년)
- ※ 북한과의 관계
  - 1973.6월 외교관계 수립, 8월 북한대사관 개설
- ※ 참고사항
  - 북한이 소형잠수함 구입을 시도했으나, 노르웨이 정부의 불허로 실패
  - 한국은 고속정 구입을 위해 가격조회를 하였으나, 노르웨이 정부가 무력충돌 위험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

## Plovdiv(불가리아) 국제박람회 참가, 1974.9.3.-10.

| 74-094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정책/동구
MF번호	N-17 / 27 / 1~28p

1. 외무부는 1974.1.17.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주베이루트 공사가 1974.9월 불가리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0차 Plovdiv 국제박람회에 한국이 직접 참가할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여 왔음을 통보하고 KOTRA 명의로 직접 참가하는데 대한 의견을 문의함.

- ※ 불가리아 정부가 구상무역의 방법으로 직접 박람회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인 증가 전망은 없으나 동 박람회 참가의 의의는 동구권 시장 발굴 및 확대에 있음.
- ※ 동 박람회 참가를 위해 불가리아 정부와 교섭할 것이며 수락하는 경우 직접 참가
- ※ 직접 참가가 거부되는 경우 종래와 같이 Strand사(레바논 회사) 측에 한국 견본을 제공, 간접 참가

1020

2. KOTRA는 1974.1.31. 동 박람회(1974.9.3.-10)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베이루트 주재 KOTRA 사무소장에게 지시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함.

- ※ 외무부는 2.4. 주베이루트 공사에게 KOTRA 명의 직접 참가를 신청하고 동 참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

3. 주베이루트 공사는 1974.4.9. 외무부에 동 박람회 당국이 KOTRA 명의 참가 신청에 대해 공간이 없음을 통보하여 왔으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이 새로이 동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동 박람회 측의 부정적인 반응은 북한의 방해에 의한 것으로 추측됨을 보고함.

4. 본 문서철에는 베이루트 주재 KOTRA 사무소장의 불가리아 방문결과에 관한 KOTRA 보고서 (1974.9.14.) 등도 수록되어 있음.

# 광주(廣州, 중국) 교역회 참관

| 74-094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3/중국담당관
MF번호	N-17 / 28 / 1~58p

## 1. 외무부가 1974.5.8. 재미교포 실업인 김시면(미국 시민권 소지자)의 중국(구 중공) 광저우 교역회 참가에 관해 작성한 대통령 앞 보고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동인은 4.24.~5.4. 중국 측의 초청으로 광저우 교역회에 한국교포로서는 최초로 참가, 13,500달러 상당의 가족제품 구매계약 체결
- ※ 중국 측은 동인이 최근까지 한국 국민이었고 한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
- ※ 동인의 진술내용 및 의견
  - 동인은 약 1년전 중국계 화교와 상담 시 광저우 교역회 참가 희망을 표시하였으며 주미국 중국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초청장 알선 절차를 밟고 주영국 중국대사관이 동인에게 초청장과 비자 발급
  - 동인은 정부에 대한 건의를 통해 향후 중국 수공업의 미국 진출에 대비해 그 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미국, 홍콩, 일본에 있는 교포 상사의 동 교역회 참가를 적극 시도할 것 등을 제안

## 2. 외무부가 1974.11.21. 재미교포 김시면의 소련, 중국 방문결과에 관해 작성한 대통령 앞 보고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개요
  - 동인은 10.19.~30. 소련, 몽골을 거쳐 중국을 방문, 추계 광저우 교역회 참가 후 11.15. 방문결과에 관한 보고서 제출
  - 동인은 금번 방문 중 소련의 경공업국장과 장시간 한국의 경제발전 및 교역문제에 대해 면담했으며, 동 교역회 참가기간 중인 10.26. 중국 대외무역부장 앞 한·중국 교역에 관한 의견서 제출
- ※ 동인의 보고서 요지
  - 소련 측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매우 호의적이었으며 현재 일본, 서독, 스웨덴을 통해 한국 상품(완구, 가발, 아동복 등)이 수입되고 있음을 시인
  - 중국·북한 관계는 계속 밀착되고 있으므로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로서 한국과의 교역 가능성이 엿보이는 정도
  - 한국은 중국·북한의 밀착상태와 중국·소련 대립이 격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소련 교역 적극화가 바람직

102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Brno(체코슬로바키아) 국제소비재박람회 참가 계획, 1974.4.20.-28.

| 74-094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정책/동구
MF번호	N-17 / 29 / 1~42p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의 Brno 소비재 박람회(1974.4.22.~28.) 참가 추진 관련 내용임.

1.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74.1.31. 외무부에 현지 주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소가 브르노 박람회 사무국으로부터 동 박람회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월 5, 6, 8일 중 체코를 방문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전문을 접수하였음을 보고함.

1022

2. 외무부는 1974.2.6. 주오스트리아 KOTRA 사무소장의 체코 방문을 허가함을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통보하고, 브르노 박람회 당국과 한국의 참가문제를 협의함에 있어서 KOTRA 명의 또는 한국 상사들에 의한 직접 참가 교섭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Information Booth 형식의 참여를 제의, 교섭할 것을 지시함.

3. 주오스트리아 KOTRA 사무소장이 1974.2.7. 주오스트리아 체코대사관에 입국사증을 신청하였으나 동 대사관은 본국 정부에 조회, 약 2주일이 소요됨을 언급함.

※ 주오스트리아 KOTRA 사무소는 3.13. 체코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 발급을 불허한다는 회신을 접수

4. 외무부는 1974.3.15. 상기 비자발급 불허를 주이탈리아대사관에 통보하고 현지 주재 체코대사관 관계관 접촉 시 한국 민간 참관단의 브르노 박람회 참가 가능성을 타진할 것을 지시함.

※ 주이탈리아대사관은 3.21. Korbelt 현지 주재 체코대사관 참사관을 접촉, 동 참관단 파견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동 참사관은 비자발급 신청 후 2주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밀라노 주재 KOTRA 관장 등의 참관단 구성을 건의

※ 외무부는 3.22. 동 참관단의 사증 신청을 주이탈리아대사관에 지시

※ 주이탈리아대사관은 4.29. 동 박람회가 끝날 때까지 비자발급 여부에 대한 체코 측의 회답을 접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 Cairo(이집트)국제박람회. 제7차, 1974.3.9.-30.

| 74-0944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중동담당관
MF번호	N-17 / 30 / 1~107p

주카이로총영사관은 1974.4.11.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제7차 카이로국제박람회 (1974.3.9.~30.) 참가 결과에 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1. 한국관 개요

- ※ 주요 내용
  - 상품전시
  - 각종 기념행사
  - 국위선양을 위한 홍보활동
- ※ 한국관 참관 인원수
  - 3.9.~11. 참관 인원은 약 5,100명
  - 3.12.~30. 일반관람 인원은 약 30만명

## 2. 기념행사

- ※ 3.9. 박람회 개최식 거행 후 Shafei 주재국 부통령이 한국관 방문 관람
- ※ 3.9. 한국관에서 기념리셉션 개최
  - 주재국 정부 및 경제계 인사 등 약400명 참가
- ※ 3.15. 총영사 및 한국관장의 Al Ahram지 등 이집트 언론과의 기자회견
- ※ 3.15. 한국의 날 기념리셉션 및 공식만찬 개최
  - 기념리셉션에 주재국 정부 고위인사 등 약 350명 참석
  - 공식만찬에 Oteify 국회 부의장 등 주재국 정부 고위인사 참석

## 3. 주카이로총영사관의 평가 및 건의

- ※ 계약 체결이 전무하여 실제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하겠으나 주재국에서 한국의 산업발전상에 대한 주재국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의 참가 방해를 봉쇄하여 주재국 정부가 동 박람회 한국 참가를 승인케 한 정치적 성과 거양
- ※ 계약실적이 전무한 것은 주재국의 국영수입제도상의 특수성에 기인
- ※ 금후 박람회 참가 시에는 KOTRA 본사에서 한국관장을 별도로 파견치 말고 현지 사무소장을 관장으로 박람회에 참가토록 하고 본사에서는 보조요원만을 파견토록 함이 바람직

102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Leipzig(동독) 국제무역박람회 간접참가, 1974.3.10.-17.

| 74-0945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통상정책
MF번호	N-17 / 31 / 1~30p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동독 Leipzig 국제무역박람회(1974.3.10.~17.) 간접참가 관련 내용임.

1024

1.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73.10.10. 동 대사관의 수출진흥 에이전트가 대동구 수출진흥의 일환으로 동 박람회에 한국 상품을 소규모로 전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경비 3천 달러 중 1천 달러 정도를 보조하여 줄 것과 최신 전시상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아래 요지의 의견을 건의함.

※ 명년도 동구 우수 박람회 직접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여사한 간접참가의 방법으로라도 동 박람회 전시를 통해 동독 및 기타 동구 업자들과의 접촉을 통한 간접수출의 길을 모색함이 바람직

2. 외무부는 1973.10.18. 상기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의 보고내용을 상공부 및 KOTRA에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함.

3.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73.11.20. 동 에이전트가 시일이 촉박하여 박람회 참가를 차기로 미루겠다고 알려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74.2.18. 현지 주재 KOTRA 사무소가 동 박람회에 주재국 상사를 통해 간접참가 예정이며(72년부터 계속 참가) KOTRA 사무소장은 현지 고용인(네덜란드인)만을 파견하였던 종전의 소극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직접 동독에 입국코자 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5. 외무부는 1974.2.20. KOTRA 사무소장의 동독 입국사증 신청을 주네덜란드대사관에 지시함.

※ KOTRA 사무소장이 동독대사관을 방문, 사증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한국과 외교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 하였으며 KOTRA 사무소는 현지직원을 동 박람회에 파견, 간접참가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

6.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74.5.3. 한국 수개상사의 섬유제품을 주재국 동독 전문상사인 Flemtex 이름으로 동 박람회에 전시한 결과, 182,553달러 상당의 거래가 성립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Budapest(헝가리) 국제박람회 참가추진

| 74-0946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통상정책/동구
MF번호	N-17 / 32 / 1~26p

1.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73.11.2. 현지 주재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사무소가 주재국 중계업자를 통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박람회(1974.9.14.~22.)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 외무부는 11.15. 상기 보고내용 관련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해 줄 것을 KOTRA에 요청
- ※ 외무부는 11.19. 상기 보고내용을 상공부에 통보

2.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73.11.27. 오스트리아 상사(Kasimex)가 동 박람회 한국 참가사업을 제의해 음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업체를 파견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가 1974.2.22. 작성한 동 박람회 관련 내부 보고사항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헝가리 출신 오스트리아인이 경영하는 Kasimex사를 통해 동 박람회 직접참가를 추진
- ※ KOTRA 명의 참가는 국교 미수립을 이유로 박람회 당국이 거절하였으며, 개인상사 명의 참가는 가능  
- 참가 상사원 비자발급은 가능

102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전

1974

## Poznan(폴란드) 국제박람회 직접 참가 추진

| 74-094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N-17 / 33 / 1~54p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폴란드 포즈난(Poznan) 박람회(1974.9.23.~30.) 참가 추진 관련 내용임.

### 1. KOTRA는 1974.7.23. 동 박람회 직접참가 추진경위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이 4.22. 동 박람회 당국으로부터 참가신청서 등 필요서류 접수
- 5.3. 참가신청서를 박람회 당국에 송부하고 50 S/M 입차료 반액상당인 528.75달러 송금
- 6.5. 박람회 당국으로부터 입차료 영수증 접수
- 7.16. 한국관 위치도를 포함한 직접참가를 확인하는 문서 접수

### 2. 외무부는 1974.7.25. 상기 내용을 주네덜란드대사관에 통보하고 본 건은 동 무역관으로 하여금 계속 추진토록 하고 추진경과에 관해 동 무역관과 긴밀히 연락, 본부에 보고토록 지시함.

### 3.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74.8.27. 동 무역관장이 현지 주재 폴란드대사관을 방문, 동인 및 대우실업 프랑크푸르트 주재원 등 5명의 비자를 신청하였으며 폴란드대사관 측은 한국이 비우호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본국 정부에 조회 후 발급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 4.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74.9.3. 동 무역관이 8.28. 동 박람회 당국으로부터 입차료 잔액 미지불을 이유로 참가 취소 통보를 접수하였으며, 현지 폴란드대사관은 9.2. 비자발급이 거부되었음을 동 무역관에 통보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5.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74.9.6. 동 무역관이 동 박람회 네덜란드관을 책임 운영하게 될 NCTP(네덜란드무역진흥위)를 통해 참가취소 경위를 알아본 결과, 한국인의 입국사증 신청을 폴란드대사관의 보고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폴란드 외무성이 박람회 당국 등에 대해 KOTRA 참가를 취소 하라는 압력을 가하여 입차료 잔금 미지불 등을 이유로 취소를 통보하게 된 것이라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 Dakar(세네갈) 국제박람회 참가, 제1차. 1974.11.28.-12.15.

| 74-0948 |

생산연도	1975
생산과	통상3
MF번호	N-17 / 34 / 1~12p

1.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975.1.10. 제1회 Dakar 국제박람회(1974.11.28.~12.15.)에 출품했던 전시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전시품 및 장치물 일부를 트리폴리 국제박람회(1975.3.1.~20.)에 이관 활용키로 주세네갈대사관과 합의함에 따라 관련 물품을 트리폴리로 항공 발송해 주도록 주세네갈대사관에 지시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외무부는 1.14. 관련 내용을 주세네갈대사관에 지시

2. 외무부는 1975.1.25. 주세네갈대사관의 Dakar 국제박람회 보고서 건의사항에 대해 상공부 및 KOTRA와 협의,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주세네갈대사관에 통보함.

※ 1976년도 제2회 Dakar 박람회 참가

- 1975년도 말에 있을 76년도 국제박람회 참가계획 수립 시 검토

※ 박람회가 없는 해의 산업별 전시회 참가

- 각 산업별 전시회 자료 접수 검토 후 참가여부 결정

3. KOTRA는 1975.2.11. 주세네갈대사관의 1975년도 세네갈 산업전시회 참가 건의 관련, 동 박람회(전시회 포함) 사업이 이미 확정되어 동 산업전시회 참가가 불가능함을 외무부에 통보함.

102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전

#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운영 개선 방안

| 74-094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18 / 1 / 1~82p

## 1. 외무부는 1974.8.27. 내부건의를 통해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평가교수단의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운영 강화에 관한 의견 제시 요청에 대해 아래 요지의 의견을 제시키로 결정함.

### ※ 조직망 정비

- 시장기반이 잡힌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 미개발시장 지역으로 중점을 전환
- 시장기반이 이미 확립되고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중복 설치 지양
- 재외공관 설치가 어려운 좌경 중립국 등의 국가에 대한 진출을 우선 강화

### ※ 업무담당 분야의 조정

- 재외공관 및 각 주재관의 업무와의 이중성을 피함을 원칙으로 함.
- 일반적인 경제동향, 시장동향 등은 재외공관 및 관계 금융기관에서 담당하고, KOTRA는 상품별로 전문화된 시장조사, 각국의 상품별 유통경로 파악, 유통 바이어 접촉 강화, 박람회 참가 및 전시회 개최 등의 임무 수행

### ※ KOTRA 보강 및 활용방안

- 재외공관 대신 설치되는 KOTRA에 외교 요원 파견 방안
- KOTRA의 해외무역관에 유통상사 요원 파견 방안
- 동구지역과의 거래 강화를 위한 KOTRA 활용 강화

### ※ 기타

- 종합상사 육성으로 일본 등 제3국 상사를 통한 중계 거래 지양
- 현지 법인체 무역상사 설립으로 직접거래 추진

## 2. 1974.10.14. 국무총리 주재 KOTRA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회의의 주요 내용임.

### ※ 참석자

-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외무부차관, 외무부 통상국장, 상공부장관, KOTRA 사업 담당이사 등

### ※ 국무총리 지시사항

- KOTRA가 유명무실하다는 평도 듣고 있는데 개선방안을 종합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보며, KOTRA는 신시장 개척의 선봉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직망 재배치 검토 필요
- KOTRA 활동 강화를 위한 종합방안을 상공부가 외무부, KOTRA 등과 협의, 작성하여 금년말까지 건의

# Tripoli(리비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소 설치, 1974.10.1.

| 74-0950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통상1
MF번호	N-18 / 2 / 1~15p

1.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973.11.14. 정부의 80년도 100억 달러 수출목표 달성과 전 세계 시장 강화를 위한 KOTRA 해외조직망 확장계획에 의거 1974년초 아라비아 지역에 1인 사무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의견 회의를 요청함.

※ 방글라데시 다카, 아프가니스탄 카불, 아일랜드 더블린, 리비아 트리폴리, 카나리아제도 라스팔마스

2. 외무부는 1974.1.9. 상기 5개 해외사무소 설치 계획중 더블린 및 트리폴리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향후 수출전망 및 한국과의 현 관계 등 고려,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여타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아래 사유로 한국공관이 설치된 후 양국간 제반 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KOTRA에 통보함.

※ 3개 지역의 한국과의 교역량이 근소한 상태

※ 다카 및 카불

- 조만간 한국공관 설치가 예상되며, 수출입 행위를 대부분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행하고 있어 민간 교역의 여지가 적음.

※ 라스팔마스

- 영사관이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수산관도 주재

3. KOTRA는 1974.3.12. 라스팔마스, 다카, 트리폴리 3개 지역에 사무소를 신설케 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동 신설지역은 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사무소 설치 및 활동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관할지역 공관의 협조를 요청함.

4. 주튀니지대사관은 1974.10.11. 트리폴리 주재 KOTRA 직원으로부터 10.1. 사무소를 개설하였다고 알려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Lisbon(포르투갈)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소 설치

| 74-095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18 / 3 / 1~11p

1.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974.4.25. 라스팔마스에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외무부의 의견과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리스본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함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동 사무소 설치허가 등 수속을 위해 포르투갈 겸임공관인 주프랑스대사관의 협조를 요청함.
2. 주프랑스대사관은 1974.5.2. 동 사무소 설치 및 KOTRA 사무소장 임명을 정식으로 통보 받는 대로 포르투갈 정부에 필요한 통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3. KOTRA는 1974.5.7. 리스본 사무소장의 인적사항과 함께 사무소 설치를 위한 포르투갈 정부에 대한 아래 요청사항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함.  
※ 파견 직원에 대해 정부기관 직원으로서의 대우, 사무소 및 직원에 대한 면세 등
4. 외무부는 1974.5.8. 상기 내용을 주프랑스대사관에 통보함.
5. KOTRA는 1974.6.12. 리스본 사무소를 6월말경 설치하게 됨을 외무부에 통보함.

# 1974년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 관장회의, 1974.3.18.-21.(Jeddah 사무소 자료)

| 74-0952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통상3
MF번호	N-18 / 4 / 1-62p

본 문서철에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젃다 사무소가 작성한 1974년도 KOTRA 무역관장회의(1974.3.18.~21.)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동 자료의 목차는 아래와 같음.

## 1. 경제동향

- ※ 석유
  - 중동의 석유 매장량과 주요국의 의존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 중동 산유국의 공급 삭감과 한국의 교섭경위, 원유가격, 앞으로의 전망 등
- ※ 산업
  - 농업, 공업, 광업
- ※ 재정·금융

## 2. 무역동향

- ※ 연도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 ※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주요국별 수입동향

## 3. 무역관리제도

## 4. 외환관리제도

## 5. 관세제도

## 6. 한국과의 협력

- ※ 경제, 통상, 기술협력
- ※ 건설, 용역, 기술진출 등

## 7. 한국과의 통상관계

- ※ 연도별 한국의 대사우디아라비아 수출, 주요 품목별 수출 및 실적 분석
- ※ 1974년도 수출 전망

## 8. 건의사항

- ※ 업계, 정부, 본사 건의

103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Las Palmas(스페인)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소 설치 계획

| 74-0953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18 / 5 / 1~19p

1032

1.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973.11.14. 정부의 80년도 100억 달러 수출목표 달성과 전 세계시장 강화를 위한 KOTRA 해외조직망 확장계획에 의거, 1974년초 아래 지역에 1인 사무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의견 회시를 요청함.

※ 방글라데시 다카, 아프가니스탄 카불, 아일랜드 더블린, 리비아 트리폴리, 카나리아제도 라스팔마스

2. 주스페인대사는 1973.11.20. 라스팔마스지역은 스페인 영토이지만 워낙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마드리드 소재 KOTRA 사무소가 효율적으로 관장할 수 없으므로 사무소의 별도 설치가 요청됨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 구아국은 1973.12.12. 라스팔마스에 KOTRA 사무소를 설치함에 이의가 없으나, 라스팔마스는 수산기지로서 자유항이지만 홍콩과 같은 성격의 자유항이 아니며, 한국영사관이 금명간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 수산관이 주재하고 있음을 통상국에 통보함.

4. 외무부는 1974.1.9. 상기 5개 해외사무소 설치 계획 중 더블린 및 트리폴리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향후 수출전망 및 한국과의 현 관계 등 고려,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여타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아래 사유로 한국공관이 설치된 후 양국간 제반 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재검토함이 바람직함을 KOTRA에 통보함.

※ 3개 지역의 한국과의 교역량이 근소한 상태

※ 다카 및 카불

- 조만간 한국공관 설치가 예상되며, 수출입 행위를 대부분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행하고 있어 민간교역의 여지가 적음.

※ 라스팔마스

- 영사관이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수산관도 주재

5. KOTRA는 1974.3.12. 라스팔마스, 다카, 트리폴리 3개 지역에 사무소를 신설하게 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동 신설지역은 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사무소 설치 및 활동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관할지역 공관의 협조를 요청함.

6. KOTRA는 1974.4.25. 라스팔마스에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외무부의 의견과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리스본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함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동 사무소 설치허가 등 수속을 위해 포르투갈 검입공관인 주프랑스대사관의 협조를 요청함.

# 제2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준비회의, Vienna, 1974.12.2.-14.

| 74-0954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N-18 / 6 / 1~52p

**1.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74.8.14. 비엔나에서 개최된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의 77그룹 회의 결과를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 1974.12.2~14. 비엔나 개최 제5차 UNIDO 공업개발 상설위원회 회의 기간 중 별도로 1974.12.5~10. 77그룹 회원국 회의를 개최하며, 1975.2.15~18. 시리아 Damascus에서 동 그룹 전체 각료급회의를 개최
- ※ 동 각료급회의에서 공업개발을 위한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 및 라틴아메리카지역 각료회담에서 채택된 계획 및 선언에 관한 종합검토 및 공동입장 확립을 모색한 후 1975.3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될 UNIDO 총회 상정에 대비

**2.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74.10.2. 현지 UNIDO의 통보에 의하면 제2차 UNIDO 총회 준비를 위한 제5차 공업개발상설위 회의가 1974.12.2.-14. 및 1975.1.20.-27. 2차례에 걸쳐 비엔나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974.12.5.-6. 개최된 UNIDO 77그룹 회의는 제2차 UNIDO 총회에 제출할 77그룹 선언과 신경제질서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 작성을 위해 3개 지역에서 선출된 Working Group 회의를 독려하였으며, 77그룹 회의 의장인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는 Damascus에서 개최될 예정인 77그룹 각료회의가 동 국의 국내사정으로 취소되었으므로 동 회의를 1975.2월 알제리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 ※ 동 제의에 대해 쿠바, 탄자니아 등은 지지 발언을 하였으나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다수 대표들은 동 회의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4.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74.12.13. 상기 77그룹 회의 최종 회의록에 알제리(북한 단독 수교국) 회의 참석에 관한 한국 측의 교섭결과가 아래와 같이 동 보고서에 반영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 One delegation inquired whether all members of the Group of 77 would be invited to attend the Algerian meeting. In the absence of objections from the floor, the chairman replied that all members of the Group would be invited.

103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전

#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제24차, Singapore (싱가포르) 1974.11.26.-12.5.

| 74-0955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N-18 / 7 / 1~299p

정부는 1974.11.26.~12.5.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4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Colombo Plan Consultative Committee) 회의에 이창석 과학기술처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1. 회의 참가국

1034

- ※ 역내 회원국: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싱가포르, 태국, 스리랑카, 이란, 말레이시아 등
- ※ 역외 회원국: 미국, 호주, 영국, 일본, 캐나다 등
- ※ 옵서버 참가국 및 국제기구: 독일, ADB(아시아개발은행), UNDP(유엔개발계획), ESCAP(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 2. 회의 일정

- ※ 각료급회의(12.3.~5.)
- ※ 행정관회의(11.26.~29.)
- ※ 제5차 공보관회의(11.26.~27.)

## 3. 한국대표단 일반훈령

- ※ 콜롬보플랜 원조공여국 대표와의 접촉을 통해 동 계획에 의한 기술원조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한국에 대한 기술원조 확대 필요성 강조
- ※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에 대한 원조뿐만 아니라 개도국 상호간의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한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과학기술협력체제 수립 및 동 지역에 대한 한국의 기술용역 진출 가능성 모색
- ※ 모든 원조가 공여국 측 입장에 의하어만 좌우되지 않고 수원국의 필요에 따른 원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 등

## 4. 한국대표 연설(12.4.회의) 요지

- ※ 에너지 위기, 각종 원자재의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해외시장 축소 등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원조를 계속하고 있음을 상기
- ※ 제7 비료공장이 완성되는 1977년부터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를 회원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천명



# 콜롬보플랜 기술협력이사회, 제122-125차. Colombo(스리랑카)

| 74-095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N-18 / 8 / 1~252p

정부는 제122~125차 콜롬보플랜 이사회(Colombo Plan Council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South and Southeast Asia)에 대표단을 파견함.

## 1. 제122차 콜롬보플랜 이사회(1974.4.9., 스리랑카 콜롬보)

- ※ 정부대표단
  - 심명원 주콜롬보통상대표부 공사(수석대표) 및 동 대표부 관계관
- ※ 회의 의제
  - 파푸아뉴기니의 동 이사회 가입 및 지역훈련관의 임기 3개월 연장 문제 등
- ※ 훈령
  - 파푸아뉴기니의 동 이사회 가입에 이견 없으며, 지역훈련관 임기 연장에도 이견 없음.

## 2. 제123차 콜롬보플랜 이사회(1974.7.16., 스리랑카 콜롬보)

- ※ 정부대표단
  - 조효원 주콜롬보통상대표부 총영사(수석대표) 및 동 대표부 관계관
- ※ 훈령
  - 사무국 현지채용 직원에 대한 의료수당 인상과 상하 직원간의 균일화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제안된 800루피 수준이 적정 수준인지에 관하여는 현지 사정과 참가 이사국의 다수 의견을 참고해 판단할 것.

## 3. 제124차 콜롬보플랜 이사회(1974.9.14., 스리랑카 콜롬보)

- ※ 정부대표단
  - 조효원 주콜롬보통상대표부 총영사(수석대표) 및 최동진 동남아1과장 등
- ※ 주요 안건
  - 동 사무국 소속 수석공보관(이란인) 및 공보관(파키스탄인)의 임기 연장 건
- ※ 동 대표부는 10.3. 동 이사회가 10.11.로 연기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

## 4. 제125차 콜롬보플랜 이사회(1974.11.12., 스리랑카 콜롬보)

103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일본의 동해안 오염방지를 위한 연안국 협력 제안 추진

| 74-095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일본담당관
MF번호	N-18 / 9 / 1~133p

1. 외무부는 1974.4.16. 동아일보가 동일 일본 정부가 한국 동해안의 오염방지를 위해 한국, 소련 및 북한 등에 전문가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임을 동경 특파원발 기사로 보도하였음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 보고할 것을 지시함.

2. 주일본대사관은 1974.4.17. 주재국 아사히조간(4.16.) 보도내용 및 김춘호 서기관의 주재국 환경청 관계관 접촉결과를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1036

※ 아사히조간 보도요지

- 일본열도 주변의 해양오염이 악화되고 있으며 가장 심한 곳은 공업지대가 늘어선 태평양 연안이지만 동해 수질도 악화되어 금후 공장 진출 등이 진행되면 태평양 연안과 마찬가지로의 오염상태가 될 것임.
- 한국, 소련, 북한에서도 공업개발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동국들과 구체적 협의 필요
- 북한과는 국교가 없으므로 수질오염 전문가 레벨에서의 논의를 제외할 예정

※ 주재국 환경청 관계관의 언급요지

- 구주에서 발트해에 관한 조약이 이미 성립되었고 지중해와 북해 등에 관하여도 관계국간 조약이 검토되고 있음에 비추어 관계국간 협의방식을 포함한 제반 구체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성안되면 외무성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
- 우선 처음에는 관계국 전문가들에 의한 공동조사 제안이 고려되고 있으며, 동해 연안의 아키타시와 블라디보스톡시 간 동건에 관한 협력문제가 논의되고 있음.

## 알제리 정세

| 74-0958 |

생산연도	1971-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39 / 1 / 1~14p

1971~74년 중 재외공관의 알제리 정세보고 내용임.

**1. 주프랑스대사관은 1971.2.25. 부메디엔 알제리 대통령이 2.24. 동국에 있는 프랑스 석유회사 주식의 51%와 천연가스 생산 및 분배회사 주식의 전부를 국유화한다고 선언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 동 대통령은 알제리가 국유화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1967년 알제리가 국유화한 다른 석유회사(Shell 등)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할 것임을 선언함.
- ※ 프랑스 정부는 동 선언을 일방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중재에 의해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임.

**2. 주미국대사관은 1973.4.2.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알제리로부터 향후 25년간 총 17억 달러 상당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 동 약정 교섭과정에서 미국은 1억5천만 달러의 수출입은행 직접차관과 구주은행들로부터의 약 4억 달러 차관에 대한 보증을 약속하였으며, 동 가스 수입 및 차관 제공으로 1967년 중동전쟁으로 단절되었던 양국간 외교관계가 다시 수립될 가능성도 있음.

**3. 주프랑스대사관은 1973.7.10. 알제리 외상이 프랑스 공식 방문을 위해 7.9. 파리에 도착하였으며, 이는 알제리 독립 후 동국 외상의 첫 번째 프랑스 공식 방문으로서 그 동기는 아래와 같이 알려지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 구주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알제리로서는 프랑스와 제휴하여 구주공동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음.
- ※ 프랑스로서는 알제리 정치체제가 확고하며 발칸화된 아프리카에서의 알제리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동국과 화해할 필요가 있음.

**4. 주미국대사관은 1974.4.9. 유엔특별총회 참석차 뉴욕에 체재하고 있는 부메디엔 알제리 대통령이 닉슨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4.11. 워싱턴을 방문, 닉슨 대통령 및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 1967년 외교관계를 단절한 바 있는 양국의 회담은 외교관계 재개를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며 동 회담에서 동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5. 주미국대사관은 1974.11.12. 미국 국무부가 동일 미국과 알제리 간의 외교관계 재개를 발표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103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앙골라 정세

| 74-095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39 / 2 / 1~54p

1974년 중 앙골라 정세에 관한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 보고 내용임.

## 1. 11.12. 보고

- ※ 주재국 Eima지는 동일 BBC 및 VOA 방송을 인용, 지난 일요일 앙골라 수도 Luanda에서 MPLA(앙골라 해방 인민운동), UNITA(앙골라 완전독립민족동맹), FNLA(앙골라 민족해방전선) 간에 유혈투쟁이 벌어져 46명이 사망하였으며, 포르투갈 군대가 수도 치안유지를 위해 개입하였음을 보도
- ※ 동지는 앙골라 해방운동의 각파가 최근 다투어 Luanda에 사무소를 개설한 것이 상기 투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이라고 보도

1038

## 2. 12.16. 보고

- ※ 콩고민주공화국 주재 MPLA 정치국은 Chipenda 콩고민주공화국 주석 주재로 특별회의를 개최, 성명 발표
- ※ 동 주석은 동 성명에서 Lusaka 대회에서 반대파 Neto 박사가 패한 후 그가 취한 모든 약속은 불법이며 동 파당의 앙골라 내에서의 일체의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함을 천명하고, 여타 2개의 독립운동단체에게 즉각적으로 단일전선을 형성할 것을 호소

# 아르헨티나 정세

| 74-096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39 / 3 / 1~209p

## 1. 1974.7.2. 외무부 중남미과가 작성한 Peron 아르헨티나 대통령 서거 후 아르헨티나 정세에 관한 보고서 요지임.

- ※ 대통령 서거 및 계승자
  - Peron 대통령은 7.1. 지병인 기관지염이 악화되어 78세로 서거하였으며, 헌법에 의거 Isabel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승
  - 서거에 앞서 동 대통령은 6.29. 건강상 이유로 부통령(동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조치
- ※ 장례 관계
  - 장례식은 7.3. 거행되며 조의사절 파견은 일체 요청하지 않을 것이나 자진하여 오는 특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우 제공
  - 주아르헨티나대사는 외교단장 자격으로 모든 행사에 참석할 예정
- ※ 정세
  - 아르헨티나 정국은 현재 경제정책의 실패 및 좌익 게릴라의 난동으로 극히 불안한 상태
  - 대통령 서거 후 현재 정국은 평온하며 Isabel 신임 대통령은 Peron 정신(실리적 민족주의, 대외적으로 중립)을 표방, 국민의 단결을 호소
  - 아르헨티나는 당분간 상징적 대표가 될 수 있는 동 부통령이 이끌어 갈 것이나 Peron 당내의 좌·우익 각축으로 새로운 권력 정립을 위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군부가 재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1974.7.2. 아르헨티나 정세에 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아르헨티나 국민의 유일한 구심점이었던 Peron 대통령 서거 후의 정세는 야당, 군부, 노조, 경제인협회 등 각 실력단체가 현재로는 Isabel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재건을 맹세하고 있어 새로운 사태 파악에는 시일이 걸릴 것임.
- ※ Peron파 내의 심각한 세력 다툼, 좌파와의 균열, 좌익테러단 동향, 노동단체의 연이은 파업 등 주재국 정세는 여러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Isabel 신임 대통령 만의 영도력으로 수습이 가능한지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임.

## 3. 외무부는 1974.7.3. 고 Peron 대통령의 장례식에 정부 조의사절로 참석할 것을 주아르헨티나대사에게 지시함.

- ※ 주아르헨티나대사는 7.3. 주재국 정부가 돌연 장례식을 7.4.로 연기하는 한편, 자국 해외공관을 통해 우방국

103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조의 사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을 보고함.

- ✿ 주아르헨티나대사는 7.5. 장례식은 7.4. 저녁 종결되었으며 외국 특사에 한해 Isabel 대통령이 접견하고 현지 주재 대사로서 임명된 특사들은 일체 조문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으나 동 대사는 외교단장 자격으로 단독 조문의 기회가 부여되어 한국 대통령의 조의의 뜻을 전달하였음을 보고함.

# 호주 총선거

| 74-096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39 / 4 / 1~112p

## 1. 1974.5.3. 외무부가 작성한 호주 총선거 전망에 관한 대통령 앞 보고서 요지임.

- ※ 지난 4.10. 야당이 우세한 호주 상원에서 정부의 예산지출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Whitlam 호주 수상은 4.11. 상하 양원을 동시 해산하고 5.18. 총선 실시를 발표함.
- ※ 노동당(여당) 및 보수연합(야당)은 4.16. 및 4.23. 양측 당수의 첫 선거연설을 계기로 본격 선거전에 돌입함.
  - 노동당은 일부 정책추진의 부진이 야당이 우세한 상원의 방해에 기인한 것임을 강조함.
  - 보수연합 측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국방력 약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후퇴 등을 쟁점화함.
- ※ 4.11. 총선 발표 직후 호주의 저명한 정치기자 및 선거전문가들은 야당의 우세를 전망하였으나 보수연합 내의 분류로 최근 국회기자단 등은 현 노동당 정부의 우세(9석)가 감소할 것이나 승산이 있다고 평가함.
- ※ 결국 1972년도 총선 때보다는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관측됨.

## 2. 1974.5.20. 외무부가 작성한 호주 총선거 전망에 관한 대통령 앞 보고서 요지임.

- ※ 개표가 진행 중인 5.19. 14:47 현재 하원 총127석 중 노동당이 64석, 보수연합이 57석을 획득함으로써 노동당이 이미 반수 의석을 확보, 재집권이 확실시 됨.
- ※ 호주가 선택투표제도(Preferential Voting System)를 채택하고 있어 최종 개표결과가 판명되기까지는 앞으로 1주여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지 관측자들은 여·야 간 의석 차는 종전보다 감소된 1~5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 상원에 대한 득표집계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확실한 전망을 내릴 시기는 아니나 총의석 60석 중 종전보다 노동당 세력이 만회되어 1석차로 여·야 간 우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됨.
- ※ 노동당의 정책전망은 아래와 같음.
  - 기대했던 상원에서의 우위확보가 불확실하고 하원에서도 종전보다 우위가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야당의 주요공격 대상이었던 국내문제에서의 급진적인 정책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 대외정책에 관하여는 이번 선거전을 통해 크게 쟁점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현 대외노선을 적극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됨.
- ※ 호주의 대북한 수교문제의 전망은 아래와 같음.
  - 지난 5.1. 자카르타에서의 호주·북한 접촉 시 호주 측은 총선 후 노동당이 재집권하면 교섭을 재개할 것이라고 북한 측에 통고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북한으로부터 제의가 있는 경우 접촉을 재개하게 될 것이 확실함.

# 오스트리아 정세

| 74-0962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구주2
MF번호	O-39 / 5 / 1~45p

## 1. 1974년 작성된 오스트리아 정세에 관한 자료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정치사정

- 1971.10월 총선 결과 사회당이 과반수를 획득, 집권하고 있으나 1973년말 및 1974년초에 실시된 지방 선거 결과 집권당인 사회당과 야당인 국민당의 세력분포가 대등하게 되어감.
- 1975년 총선 시 어느 정당도 의회 안정세력 구축에 성공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없으며 제3당인 자유당의 항배를 감안한 연정형태의 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큼.

### ※ 현안문제

- 오스트리아는 친서방 중립국으로서 분단국을 공히 승인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 오스트리아 외상이 2차례 언급한 대로 1974.6월 이전에 북한을 승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1974.2월 오스트리아 하원은 10월 개최되는 국회에서 구체적인 인선을 거쳐 한·오스트리아 의원협회를 발족하기로 결정함.

### ※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에 대한 태도(제29차 총회 전망)

- 표대결 없이 양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한 해결을 희망함.
- 공산 측에 대한 적극적 반대외사를 기피하는 입장에서 표결에 기권할 가능성을 시사함.

## 2. 본 문서철에는 중립에 관한 자료도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목록은 아래와 같음.

### ※ 국제법상의 국외중립과 중립주의

- 중립의 개념과 특성, 현대 국제정치상의 중립주의, 중립국가

### ※ 오스트리아의 중립정책과 국방정책

- 오스트리아 중립의 역사적 배경, 영세중립 선언, 영세중립 선언 후의 대외정책, 오스트리아 국방정책의 제약 및 균비 등



## 방글라데시 정세

| 74-096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39 / 6 / 1~30p

1974년 중 방글라데시 정세에 대해 주인도대사관(방글라데시 겸임) 등의 보고 내용임.

### 1. Choudhury 방글라데시 전 대통령(1973.12.24. 사임)이 Cabinet Minister Status를 갖는 Special Representative로 임명되었고 Mohammadullah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됨.

※ Choudhury 전 대통령의 사임 이유는 근본적으로 상징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국가적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원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 2.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24. Mohammadullah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음을 공고함.

### 3. 다카발 보도에 의하면 방글라데시와 북한 간의 통상협정이 3.1. 서명됨.

### 4. Rahman 방글라데시 수상일행이 11.6.부터 5일간 이집트를 공식 방문함.

※ Rahman 수상은 11.10. 이집트 출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국 외무장관이 카이로에서 문화협정에 서명 하였음을 발표함.

### 5. 12.28. 방글라데시에 비상사태가 선포됨.

※ 다카발 보도에 의하면 파키스탄군과 공모한 극렬분자, 외국세력에 고용된 자들의 행동이 국가안보와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등 중대 사태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일시 정지한다고 발표함.

104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전

# 미얀마(구 버마) 정세

| 74-096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39 / 7 / 1~180p

## 1. 1974.1.9. 외무부가 작성한 미얀마(구 버마) 신헌법 채택에 관한 대통령 앞 보고서 요지임.

- ※ 미얀마 혁명정부는 1973.12.15.~31. 국민투표에서 채택(90.19% 지지)된 신헌법을 1974.1.4. 공포 시행
- ※ 동 헌법 시행에 따라 1974.1.27.~2.10. 제1대 인민위원회 의원 및 각급 인민위원회(주·군·면·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며 동 선거후 3.2. 민정이양 예정
- ※ 민정이양 후 미얀마의 국호는 버마 연방사회주의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the Union of Burma)으로 개칭

1044

## 2. 주랑군총영사관은 1974.4.6. 네윈 미얀마 대통령이 4월 하순 인접국인 파키스탄, 인도 및 방글라데시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5월 하순에는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순방 후 인도네시아를 방문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 ※ 상기 인접국 친선방문은 대외적으로 주재국 신정부 수립 후 선린외교정책 강화를 다짐하고 국제적으로는 인접국의 주재국 신정부에 대한 계속적인 우의와 지지를 국민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

## 3. 주랑군총영사관이 1974.5.3. 외무부에 제출한 주재국의 1/4분기 정세보고서 중 민정이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상기 국민투표에서 신헌법 채택
- ※ 1.27.~2.11. 총선에서 451명의 인민의회 의원과 기타 지방인민위원회 의원 선거
- ※ 3.2. 인민의회 제1회의에서 네윈 혁명위원회 의장이 민정이양 선서
- ※ 동일자 비공개회의에서 신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네윈이 피선
- ※ 국가이사회(Council of State),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등 주요기관을 구성

## 4. 주랑군총영사관은 1974.8.31.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예정대로 주재국 방문을 마치고 8.29. 출국하였으며, 동 대통령 출국 후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 인도차이나 사태 관련, 라오스 연정수립을 환영하며 캄보디아(구 크메르)와 월남에서도 무력전쟁을 종식하고 스스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것을 희망
- ※ 동남아에서의 외세 간섭 비난, 비간섭 원칙 준수 촉구 및 비동맹정책의 당위성 강조
- ※ 인도네시아의 군도국가 원칙에 대한 미얀마의 이해 및 지지 표명

# 브라질 정세

| 74-096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39 / 8 / 1~159p

## 1. 외무부가 브라질 대통령 선거(1974.1.15.) 결과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 요지임.

- ✱ 대통령 선거 실시
  - 1.15. 대통령 선거는 1964년 우익 군사혁명정부 수립 이후 4번째로 실시된 선거로서 대통령은 상·하 양원 의원 및 지방의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을 포함한 총 502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
  - 금번 선거에서 여당(ARENA, 국가혁신동맹) 후보인 Ernesto Geisel 장군(퇴역)은 총투표수 497표 중 400표 득표로 당선
  - 신임 대통령 취임식은 3.15. 거행되며 1974.3.15.~7.3.15. 재임함.
- ✱ 브라질 신정부의 대한민국 정책 전망
  -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대한민국 기본정책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
- ✱ 대브라질 정책 유의사항(주브라질대사 건의)
  - 브라질은 국력신장과 함께 자국 국익을 위주로 한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추구
  - 유엔에서 유엔헌장 개정, 안보리 참가문제 등에 적극 간여하면서 강대국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
  - 상기 감안하여 협조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지양하고 진지하게 접촉할 필요
- ✱ 대통령 취임 경축사절 파견(주브라질대사 건의)
  - 남미 국가들의 대통령 취임식에 각국이 거물급 사절을 파견하고 있는 바, 본국에서 사절단 파견을 고려할 경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전준비 필요

## 2. 주브라질대사관은 1974.3.18. 브라질 신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 3.15. 거행된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볼리비아, 칠레, 우루과이 대통령은 Geisel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가짐.
- ✱ 동 회담에 배석했던 Azeredo da Silveira 브라질 외상은 브라질 대외정책의 목표를 라틴아메리카지역, 특히 남미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관계국과의 이익 조화에 있다고 밝히고 어느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거나 다른 국가의 우위에 서려고 하지는 않음을 언급함.

## 보츠와나 정세

| 74-0966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아프리카2
MF번호	O-39 / 9 / 1~13p

1.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은 1974.3.26. 주재국 일간지인 중화일보는 3.25. 보츠와나가 중국(구 중공) 정권을 승인하였음을 보츠와나발 AP 외신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으며, 주재국 외교당국은 이에 대해 상급 아무런 공식발표도 하지 않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케냐대사관은 1974.4.1. Botswana Daily News(3.26)에 의하면 보츠와나 정부는 3.25. 중국(구 중공)을 승인하고 현재 동국 주재 대만대사관의 철수를 요청했다고 보도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주대만대사관은 1974.4.6. 주재국 주요 일간지가 동일 주재국 외교부 성명을 인용, 보츠와나 정부가 3.25. 중국을 승인하는 한편 주재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고 보도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동 외교부 성명은 보츠와나 정부의 조치가 대만의 기본이익과 양국간 우호관계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주재국 정부는 4.5. 보츠와나와의 외교관계를 중지(suspension)하며 동국 주재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는 동시에 동국에 파견된 농경대 및 의료대를 철수키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함.

# 베냉(구 다호메이) 정세

| 74-0967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39 / 10 / 1~16p

베냉(구 다호메이) 정세에 관한 주코트디부아르 대사관 보고 내용임.

## 1. 1974.10.8. 보고요지

- ※ 베냉 파견 의료단의 9.2 서신에 의하면 베냉 보건상은 금년 11월 또는 12월경 중국(구 중공)을 방문할 예정이나, 북한을 방문할 예정은 없다고 언급
- ※ 그러나, 금후 북한 책동에 의한 동 보건상의 방북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 장관에 대한 방한 초청 고려 가능

## 2. 1974.10.23. 보고요지

- ※ 10.22. 발표된 개각에서 외상, 보건상 등 6명의 각료는 유임
- ※ Kerekou 베냉 대통령은 금번 개각에서 지금까지 맡고 있던 국방, 기획업무 외에 모든 대외원조, 공보, 국가지도 (Orientation Nationale)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 총괄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강화

## 3. 1974.11.19. 보고요지

- ※ 베냉 정부는 현재 6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혁명위원회를 해체하고 13명으로 구성된 국가정치국(Bureau Politique National)을 신설, 베냉 국정전반에 대한 정치적 방향 설정 임부 부여
- ※ 동 정치국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

## 4. 1974.12.10. 보고요지

- ※ Kerekou 대통령은 11.30. 군사혁명 2주년 기념사에서 베냉은 동일부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혁명과업으로 할 것을 공식 선언
- ※ 베냉은 12.3. 전격적으로 동국 소재 외국계 은행을 국유화하는 등 사회주의 노선으로 급선회

1047

대한민국외교자료해제집

# 차드 정세

| 74-096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
MF번호	O-39 / 11 / 1~10p

1973~74년 중 차드 정세에 관한 주프랑스대사관 보고 내용임.

## 1. 1973.7.10. 보고

- ※ 7.10. 르몽드지는 수십만에 달하는 차드인이 7.7. 폴아미에서 그들의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를 했으며, 차드 대통령은 프랑스의 차드 내정간섭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연설했음을 보도

1048

## 2. 1974.2.12. 보고

- ※ 1.29. 이래 차드 수도에서 회의를 거듭해온 프랑스·차드 혼성위원회의 작업이 끝남에 따라 2.8. 파리 및 차드 수도에서 동시 발표된 공동성명은 양국간 협력을 곤란하게 했던 오해를 불식시켰고 차드가 제시한 경제개발을 위한 원조 요청의 일부를 프랑스가 수락했음을 선언

## 3. 1974.6.14. 보고

- ※ 차드 정부는 6.12. 서독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음을 발표
- ※ 동 단교는 지난 4.23. 차드 북부에서 현 정부에 반기를 든 Issene Habre 일당에 의해 서독 의사 1명이 인질이 된 후, 서독 정부가 최초에는 차드 정부 양해 하에 석방교섭을 진행하다가 6.11. 차드 정부에 알리지 않은 채 반도들과의 직접협상으로 인질을 석방시키는데 대한 반발 조치
- ※ 차드 정부는 동 단교에 관한 성명에서 서독이 자국에 많은 원조를 하고 있으나 주권을 무시한데 대해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음을 발표

## 4. 1974.11.20. 보고

- ※ Ngarta Tombalbaye 차드 대통령은 11.18. 프랑스를 비공식 방문
- ※ 동 대통령은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갖고 쉬락 수상 등과 면담 예정
- ※ 동 대통령의 파리 방문은 1972.4월 이후 2년반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차드 북부 반란군 진압을 위해 파견되었던 프랑스군이 1972년 여름 차드에서 철수한 후 냉각되었던 양국 관계가 동 대통령의 방문으로 호전될 것으로 기대

## 5. 1974.11.29. 보고

- ※ 차드 정부는 11.28. 서독과의 외교관계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

# 콜롬비아 정세

| 74-096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39 / 12 / 1~18p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결과에 대해 외무부가 1974.4.23. 작성한 대통령 앞 보고서 내용임.

## 1. 대통령 선거결과

- ※ 1974.4.21. 실시된 선거에서 Alfonso Lopez Michelsen 후보(자유당)가 투표자 약 500만 명의 50%에 해당하는 250만 표를 획득하여 당선됨.

## 2. 국내정세와 전망

- ※ 콜롬비아는 역사적으로 격렬한 정치투쟁으로 유혈사태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1958년부터 16년간 여야가 National Front를 구성하여 교대로 집권하여 왔으나 금번 선거를 계기로 자유경쟁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됨.
- ※ 금번 선거에서 Lopez 후보가 국민의 지지로 당선되어 자유당이 향후 4년간 집권하게 되었으나 학생 데모와 테러행위로 인한 사회불안과 경제적인 난국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음.
- ※ 콜롬비아 산업구조는 농산물(커피, 원면, 바나나, 설탕 등)의 비중이 크며 주로 미국에 수출한 관계로 대미 의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나, Lopez 후보가 선거 유세 중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특히 대콜롬비아 경제 정책을 신랄히 비난한 바 있어 향후 양국간 경제관계가 주목되고 있음.

## 3. 집권당의 정책

- ※ 집권당의 정책은 부의 균형 있는 재분배, 소수집단의 자본독점 배제, 도시 및 지방의 개혁 단행, 각국과의 호혜원칙에 의한 관계유지, 국제 다원주의 이념 추구 등임.
- Lopez 후보는 자유당 내 중도좌파 인사로서 선거공약에서 대한민국 정책에 관해 특별히 언급한 바 없으나, 모든 국가와의 관계수립을 표방하고 특히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배경으로 한 북한의 콜롬비아 접근 시도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카메룬 정세

| 74-0970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O-39 / 13 / 1~19p

주카메룬대사관이 주재국 정세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 1. 1974년 정세 동향

- ※ 아히조 카메룬 대통령의 절대적 권력 장악으로 정국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 동 대통령은 6.8. 대국회 연설에서 국가통일 공고화, 모든 분야에서의 국가독립 강화, 국가개발 총력 경주 등을 강조함.

1050

## 2. 1975년 정세 전망

- ※ 1975년도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 현 대통령의 재입후보가 예상됨.
- ※ 대외정책에서는 비동맹 중립주의 원칙에 따른 대외관계 다변화,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 및 협력 관계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 ※ 대한민국 정책에서는 카메룬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중국(구 중공)과 북한의 원조 등으로 인한 영향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카메룬의 남북문제에 대한 중립적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되므로 정부의 실질적 관계강화 정책을 건의함.



# 인도의 핵실험에 대한 캐나다 입장

| 74-097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O-39 / 14 / 1~19p

인도의 핵실험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반응 관련 내용임.

## 1. 인도의 핵실험

- ☛ 인도 정부는 1974.5.18.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핵비확산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에 충격을 줌.

## 2. 캐나다의 반응

- ☛ Mitchell Sharp 캐나다 외상이 1974.5.22. 아래 요지의 비난성명을 발표함.
  - 인도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노력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함.
  - 인도가 캐나다의 실험용 원자로 등 각종 지원 대상국이라는 사실이 캐나다를 당혹케 함.
  - 캐나다 정부는 핵협력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실시할 것임.
  - 인도 정부와의 대화를 희망함.
- ☛ 주한 캐나다대사는 1974.5.27. 외무부 차관을 방문하여 인도 핵실험에 관한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캐나다 외상의 성명서를 전달함.
  - 캐나다는 콜롬보플랜의 일환으로 인도의 평화적 에너지 계획들을 돕기 위하여 과거 20년간 실험용 원자로 제공, 기술 및 차관 공여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
  - 인도에 대한 핵 장비 및 자재의 선적 등 모든 협력을 보류함.
  - IAEA(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 NPT(핵무기비확산조약) 서명국 및 인도 핵개발 관련된 국가들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개최할 것임.

## 3. 한국에 대한 영향

- ☛ 한국 정부는 캐나다로부터 중수형 원자로 및 실험용 원자로 구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인도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캐나다 정부는 대외 핵협력정책에 대하여 전반적 재검토를 실시하고 한국에 대한 실험용 원자로 제공을 거부하게 됨.

105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캐나다 정세

| 74-097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O-39 / 15 / 1~10p

1974.8월 실시된 캐나다 총선에 따른 조각과 관련된 내용임.

1. 1974.8월 캐나다 총선에서 승리한 Pierre Elliot Trudeau 캐나다 수상이 새로 조각한 내각 명단을 주한 캐나다대사관이 8.12. 외무부에 알려옴.

2. 재선에 성공한 Trudeau 수상에 대하여 대통령이, 그리고 신임 외상인 Allan MacEachan에 대하여 외무부장관이 축하 전문을 보낸데 대하여 양인이 답신을 보내옴.

# 중국(구 중공) 정세

| 74-097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O-39 / 16 / 1~211p

1974년 중국(구 중공)에서 벌어졌던 공자 및 임표 전국방장관 비판운동과 중국의 대외관계 관련 내용임.

## 1. 공자 및 임표 비판운동(비림비공 운동)

- ✪ 문화혁명이 휩쓸고 지나간 중국에서 공자 및 임표 전국방장관 비판운동이 벌어짐.
  - 1973년에 시작된 비판 사상에 대하여 1974.2.2. 인민일보는 “임표를 비판하고 공자를 비판하는 투쟁을 끝까지 진행하자”는 사실에서 비판운동이 모택동의 지도하에 전개되고 있음을 강조함.
  - 언론, 학생 및 노동자를 동원한 대대적인 비판운동이 전개됨으로써 제2의 문화대혁명이 발동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모여짐.
- ✪ 동 비판운동에 대한 재외공관보고, 외교안보연구원, 해외 주요언론 등이 분석한 자료는 동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점차 그 목표가 주은래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으로 분석함.
  - 등소평을 천거한 주은래를 제거하기 위하여 강경파 4인방이 언론을 이용하여 획책
  - 2.24 주은래는 잠비아 대통령 환영 연회석상에서 “비림비공운동”은 문화혁명의 성과를 강화,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 해외 분석가들은 주은래의 입지 변화 여부를 전망하였으며, 10월 들어 외신들은 와병 중인 주은래 사임 및 등소평 부수상 등장을 보도하기 시작
- ✪ 비판운동 발생 배경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내부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성격으로 해석
- ✪ 문화대혁명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생산 마비가 없으며, 홍위병과 같은 주체가 없고, 공격 대상이 명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 그러나, 3월부터 지역 군사령관들이 대자보의 공격 대상이 되었으며, 6.16 화국붕과 그의 부하를 비난 하는 북경 대자보가 등장한 이래 지방으로 확대되고 유혈충돌도 발생
- ✪ 비판운동과 관련하여 1965년 제3차 인민대회 이래 개최되지 못한 제4차 인민대회가 어느 시점에 개최되느냐 하는 점에 관심이 모아졌는바, 모택동 후계 지정, 신헌법 제정 등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4차 인민대회가 비판운동이 종결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

## 2. 대외관계

- ✪ 비판운동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외 관계는 변화 없이 기존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구소련과의 갈등은 상당하나 중국 · 소련이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105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중앙아프리카 정세

| 74-097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
MF번호	O-39 / 17 / 1~11p

1974년 중 중앙아프리카의 국내정세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보사카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은 6.15. 내각 개편을 단행함.

2.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은 6.20. 동 내각 개편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 중앙아프리카 외무장관은 교체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각 내에서의 순위가 상승

# 미주지역국가의 대쿠바 제재 해제 노력

| 74-0975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중미담당관
MF번호	O-39 / 18 / 1~22p

미주지역 국가들의 대쿠바 제재 해제를 위한 움직임과 관련된 내용임.

## 1. 대쿠바 제재

- ✪ 미국 정부는 1961년 쿠바가 미국 기업에 대한 국유화를 단행하자 쿠바에 대하여 무역, 금융 등 포괄적인 제재를 가함.
- ✪ OAS(미주기구) 회원 국가들은 쿠바가 인군 국가에 대하여 혁명과 테러리즘을 수출하자 1964년 쿠바에 대하여 외교, 경제 제재를 가하기로 결의함.
  - 멕시코는 동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쿠바와 외교관계를 유지함.

## 2. 제재 해제 시도

- ✪ 캐나다는 1974년 캐나다 소재 미국회사의 자회사를 통하여 쿠바에 기관차 25대를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미국 제재법에 저촉되어 보류됨.
  - 캐나다의 국내 여론이 이에 반발하고 이 문제가 미국·캐나다 간 외교문제가 됨.
- ✪ 국제사회의 해빙 분위기가 라틴아메리카에도 영향을 미쳐, 일부 OAS 회원국들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됨.
  - OAS 회원국 중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3개국은 1974.8.29. 쿠바에 대한 제제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아르헨티나, 페루, 파나마가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재개하였으며,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도 쿠바와의 관계를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됨.
- ✪ OAS 회원 국가 외상 21명이 11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대쿠바 외교 및 경제 봉쇄 해제 문제를 논의한 후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가결에 필요한 14표를 획득하는데 실패함.

105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도미니카공화국 정세

| 74-097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미담당관
MF번호	O-39 / 19 / 1~15p

주베네수엘라대사관(도미니카공화국 겸임)이 1974년 중 도미니카공화국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 1. 4.30. 보고

✧ Balaguer 현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이 5.16.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함.

1056

### 2. 대통령 선거 결과 보고

✧ 1966년 대통령에 취임한 Balaguer의 독재적 통치에 대항하여 야당이 야당연합전선 후보를 내세웠으나 1974.5.16. 대선에서 패배함.

✧ Balaguer 대통령의 취임식이 8.16. 거행됨.

## 에콰도르 정세

| 74-0977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남미담당관
MF번호	O-39 / 20 / 1~10p

주에콰도르대사관이 1974년 중 에콰도르 정세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주에콰도르대사관은 4.22. 동 대사관 관계관(대사대리)의 3~4월 활동사항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에콰도르대사관은 4.22. 주재국 정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군부 내에서 독재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사임 압력으로 인한 6월 위기설이 향간에 유포되고 있음.
- ※ 집권층의 부패, 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곤경, 페루와의 국경 분쟁,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 발생 등 정세불안 요인이 상존함.

1057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이집트 정세

| 74-097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39 / 21 / 1~98p

1974년 중 이집트의 국내 정세 및 대외 관계에 관한 내용임.

## 1. 국내 정세

- ※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4.25. 및 9.25. 두 차례 개각을 단행함.
  - 9월 개각에서는 대통령이 겸직하던 수상직을 이양
- ※ 사다트 대통령은 4.18. 국회 및 아랍사회주의연맹 중앙위원회 합동회의에서 “October Working Paper”를 제출하고 이를 5.15. 국민투표에 붙였으며, 동 문서는 투표자의 99.5 퍼센트의 지지를 얻어 헌법적인 지위를 획득함.
  - 대외관계에서는 양대 진영 사이에서 분명하고, 완전한 중립주의 추구
  - 2000년도를 내다보는 국가발전 추구,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보장, 경제문화 개방주의 등 국내발전을 위한 국가목표 선언

1058

## 2. 대외 관계

- ※ 1974.7.30.~8.7. 이집트를 방문한 파이잘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양국 공동성명에서 이집트의 재건을 위한 3억 달러의 재정원조를 약속하고, 10월 아랍정상회담 개최 등 지역 문제에 관하여 입장을 밝힘.
- ※ 사다트 대통령은 9.28.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나이반도가 반환되더라도 이스라엘과는 직접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시나이반도 문제, 골란고원 문제 및 팔레스타인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 기무라 일본 외상이 1974.11.7.~9. 이집트를 방문하여 이집트 외상과 공동성명을 발표함.
  - 유엔안보리결의 제242의 신속하고 완전한 적용을 통하여 중동평화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 일치가 있었으며, 일본 측은 기존의 중동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
  - 양국간 경제, 기술협력 강화 및 무역 확대 , 투자보장협정 체결 교섭 개시 등에 합의
- ※ 이집트 일간지 Egiptian Gazette는 사다트 대통령이 11.16. 새로운 중동전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포드 미국 대통령 및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전달하였다고 보도함.
- ※ 헤가지 이집트 수상은 12.3.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중동문제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목표이며, 소련과 긴밀한 관계유지를 희망함을 언급함.



# 이디오피아 정세

| 74-0979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39 / 22 / 1~211p

에티오피아에서 1974.2.26. 발생한 군부 쿠데타 및 이후 사태진전에 관한 내용임.

## 1. 에티오피아의 상황(주에티오피아대사관 보고)

- ※ Sellasie 에티오피아 황제를 둘러싼 일부 지도층의 부패와 무능,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 에리트리아 지방 독립운동, 북부 지역에서의 3년간의 가뭄, 유류파동과 물가급등으로 인한 서민생활 악화, 군인들의 처우개선 요구 등으로 정세불안 요인이 팽배한 상황임.

## 2. 사태 발전 과정

- ※ 1974.2월 남부 국경경비대 소속 일부 병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지휘관에 항명함.
- ※ 2.26. 북부 주둔군이 주수도 아스마라와 인근 지역을 장악하고 봉급 인상 등 처우개선과 부패 각료의 처단 등을 요구하였으며 2.27. 해군 부대가 반란에 가담함.
- ※ 2.27. 에티오피아 내각이 총사퇴하고 2.28. 새내각을 구성하여 사태수습을 시도하였으나 정국의 혼미상태가 지속됨
- ※ 3.5. Sellasie 황제는 내각책임제와 황제의 절대권력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 단행을 발표함.
- ※ 3.25. 공군 장병들의 정부 전복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하였으며, 4월 들어서 근로자들의 대대적인 시위 및 파업 사태가 발생함.
- ※ 6월 이후 실제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내각의 기능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군부 개혁세력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함.
- ※ 9.12. 군부가 포고령을 통하여 황제 폐위, 헌법 정지 및 의회 해산을 명하고, 임시군사정권을 구성, 신헌법에 의한 새정부 수립 시까지 국가를 통치한다고 발표함.
- ※ 12.20. 군사정부는 “에티오피아 제일주의”를 선언하고 사회주의체제 수립을 발표함.

## 3. 공관원 및 가족 보호조치

- ※ 외무부는 1974.11.24. 임시군사정권이 과격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11.28. 주에티오피아대사에게 공관원 및 가족 안전을 위한 전권을 부여함을 통보하고 각별한 주의를 지시함.
- ※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12.3. 비상식량 비축 및 가족 대피 계획서를 작성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105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프랑스 정세

| 74-0980 |

생산연도	1959-1974
생 산 과	서구담당관/서구1
MF번호	O-39 / 23 / 1~24p

영국, 프랑스 및 독일에서의 정권교체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가 1974.5.27. 작성한 “서구 주요국가(영국, 프랑스, 독일)의 정권교체와 이의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제하의 자료는 서구 국가에서의 일반적인 정치 불안 요인을 분석하고, 3개 국가별로 국내 상황, 집권당의 선거 공약 평가 및 전망과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3개국에서의 정권 교체가 한국과의 기존관계를 특별하게 변화시킬 요소는 없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신정부들은 종래의 대한 우호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함.

1060

2. 김용식 주프랑스대사관 공사는 1959.1.12. 청와대에 대한 보고서에서 1.8자로 프랑스가 제4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으로 바뀌었음을 보고하면서, 신정부 내각 구성 및 정책 등을 기술함.

※ 동 보고서는 영어로 작성되었는바, 이는 이승만 대통령 정부 시대에 대통령 비서실과 재외공관 간 통신에 영어가 사용된 까닭임.

# 가봉 정세

| 74-0981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O-39 / 24 / 1~26p

가봉의 대통령 선거 및 대외관계에 관한 내용임.

## 1. 대통령 선거

- ※ 주프랑스대사관은 1973.2.28. 가봉에서 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봉고 가봉 대통령이 재선되어 7년간 집권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대통령 명의를 축전 발송을 건의함.

## 2. 대외 관계

- ※ 주모리타니아 중국(구 중공)대사를 단장으로 한 중국사절단이 1974.4.16. 가봉을 방문하여 양국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짐.
- ※ 가봉 독립기념일을 경축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8.17. 가봉 외무성에 전달됨.

106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동·서독 관계 및 상호 상주대표부 개설

| 74-0982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구주
MF번호	O-39 / 25 / 1~71p

동·서 독일의 관계수립과 상호 상주대표부 개설에 관한 내용임.

## 1.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 ※ 양 독일 정부가 1972.12.21. 상호관계를 규정할 기본조약에 서명하고, 1973.6.21.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동 조약이 발효됨
- 동 조약에 따라 동·서독은 9.18. 유엔에 동시가입

1062

## 2. 상주대표부 설치

- ※ 기본조약 제8조는 양 정부가 서로 상주대표부를 교환하기로 규정하였으나, 기술적 및 정치적 장애가 발생하여 양측대표 간의 추가적인 교섭이 필요하게 됨.
- 상주대표부에 대한 주무관청 문제로서, 서독 측은 동독 상주 대표가 수상실에 신임장을 제출할 것을 주장한 반면에 동독 측은 여타 외국과 같이 외무성에 제출할 것을 주장
- 기본조약 세부협정, 문화교류협정, 보건협정, 체신협정 등 후속 조치를 교섭
- ※ 양측은 1974.3.14. 협상 끝에 동·서독 상설 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와 각서에 서명함.
- 주무관청은 서독은 수상실, 동독은 외무성
- 동독 주재 서독대표부는 동독 및 제3국에 거주하는 서베를린 시민에 대한 이익을 대표
- ※ 양측은 5.2. 상주대표부를 본 및 베를린에 각각 개설함.

# 가나 정세

| 74-0983 |

생산연도 | 1973-1974

생 산 과 | 서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 O-39 / 26 / 1~7p

가나의 대외관계 및 국내정세에 관한 내용임.

## 1. 대외 관계

- ※ 런던발 로이터통신은 가나가 1973.10.28.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발표하였음을 보도함.
  - 동 보도는 이스라엘이 점령지로부터 철수할 때까지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다고 밝힌 가나 외무성의 성명을 인용한 것임.
  - 이로써 1972.3월 이후에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아프리카 국가는 모두 22개국에 달함.

## 2. 국내 정세

- ※ 주가나대사관은 가나 군사정부가 1974.1.2. 단행한 개각 명단과 인적사항을 외무부에 보고함.

106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기니비사우 정세

| 74-0984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아프리카
MF번호	O-39 / 27 / 1~30p

기니비사우(구 기네비소)의 독립에 관한 내용임.

## 1. 기니비사우의 독립

- ※ 1960년대 초부터 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을 위하여 무장투쟁을 벌인 기니비사우의 국민협회가 1973.9.24. 독립을 선포함.  
-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통령제를 채택

1064

## 2. 국가승인 문제

- ※ 정부는 기니비사우 정부의 친공산 중립성향, 서방국가들의 유보적 태도 및 신정부의 유효한 국토지배에 대한 논쟁 등을 감안하여 관망하는 입장이었음.
- ※ 그러나, 정부는 동 신생 국가의 국제기구 가입이 실현되고, 승인국가 수도 80개로 증가하는 등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1974.5.31. 국가승인을 위한 국내 절차로서 이 문제를 국무회의에 상정함.

## 과테말라 총선거

| 74-0985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중미담당관
MF번호	O-39 / 28 / 1~45p

1974.3.3. 실시된 과테말라 대통령 선거에 관한 내용임.

1. 과테말라 제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인 Kjell Eugenio Laugerud Garcia 과테말라 장군이 최다 득표를 하였으나 과반수를 획득하는데 실패함.

※ 동 후보는 3.12. 국회에서 실시된 결선 투표에서 당선 결정됨.

2. 동 선거 결과에 대하여 야당 및 학생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학생지도자의 피살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어 국내적 긴장이 고조됨.

106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헝가리 정세

| 74-098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구
MF번호	O-39 / 29 / 1~16p

1974년도 헝가리의 대외관계에 관한 내용임.

### 1. 헝가리 수상 인도 방문

- ※ Jeno Fock 헝가리 수상은 Indira Gandhi 인도 수상의 초청으로 1974.11.21.~26. 인도를 방문하여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 양국은 국제 화해 분위기를 환영하면서 인도 등 개도국들이 추구하는 비동맹 외교가 세계 평화를 강화하고 국제협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
  - 양국은 한국 사람들의 평화적 통일 염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
  - 양국은 양국간 과학, 기술 협력에 만족을 표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

1066

### 2. 헝가리 수상 미얀마(구 버마) 방문

- ※ Jeno Fock 헝가리 수상이 1974.11.26.~29. 미얀마를 공식 방문함.
  - 이는 미얀마 대통령의 1972.7월 헝가리 방문에 대한 답방
- ※ 동 방문의 결과로서 양국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 양국 협력 관계 증진에 대한 만족 표명
  - 국제 화해 분위기에 대한 평가 및 강조
  - 구주안전협력회의 성과 설명
  - 아시아의 안보 강조 등



# 세계주교회의(Synod of Bishops) 제4차. Vatican, 1974.9.27.-10.26.

| 74-098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
MF번호	O-39 / 30 / 1~83p

제4차 바티칸 세계주교회의(Synod of Bishops) 개최와 관련된 내용임.

## 1. 회의내용

- ✪ 로마 교황청은 카톨릭 포교문제를 다루기 위한 세계주교회의를 1974.9.27.~10.26. 바티칸에서 개최함.
- ✪ 교황 바오로 6세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폭력이나 혁명 등은 복음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성직자들은 이들 폭력적 수단을 포용하지 말 것을 강조함으로써, 교회가 빈곤 등 현실 세계 문제들을 폭력적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에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함.
- ✪ 또한 교황은 인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오늘날 모든 국가에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집권자에 대하여는 인권을 신장하여 줄 것을 호소함.
- ✪ 회의의 폐막 시 채택된 선언문은 복음전파와 인간구제 간의 관계가 상호 밀접함에 유의하고, 교회는 정치적, 사회적 한계 내에서만 상주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종교상의 죄악,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기심 등으로부터 진정으로 완전하게 해방시키기 위하여 매진해야 한다는 내용 등 13개 항목으로 이루어짐.

## 2. 한국 정부의 관심

- ✪ 동 회의 개최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는 바, 이는 동 회의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하여 언급할지 여부에 대한 우려를 가졌기 때문임.
- ✪ 회의는 개별 국가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으며, 각 교구 대표가 현지 포교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언급함.
  - 한국과 관련해서는 김수환 추기경이 10.9. 주교회의의 연설에서 “교회가 자신의 특권이나 구조들의 침해에는 곧 항의를 하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압박당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 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음을 외신 및 국내 언론이 보도

106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아이슬란드 정세

| 74-098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서구2
MF번호	O-39 / 31 / 1~7p

아이슬란드 국내정세 및 대외관계에 관한 내용임.

## 1. 국내 정세

- ※ 1974.6월 아이슬란드 총선 결과, Geir Hallgrímsson 아이슬란드 독립당 당수가 이끄는 내각이 구성됨.

## 2. 대외 관계

1068

- ※ 아이슬란드가 1973.1.8. 북월맹을 승인함에 따라 북구 5개국 전부가 월맹을 승인하게 됨.
  -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는 월맹을 불승인
- ※ 아이슬란드 외무성은 1973.1.10. 아이슬란드 주둔 미군 철수 및 미군기지(공군 및 해군) 철거 문제에 관한 양자 협의가 1.24.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밝힘.
  - Johannesson 아이슬란드 좌파연립정부 수상은 1971.7월 집권 직후에 미군기지 철거를 공약
  - 아이슬란드는 계속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 잔류

# 인도 · 시킴왕국 합병

| 74-0989 |

생산연도	1971-1974
생산과	서남아
MF번호	O-39 / 32 / 1~26p

인도와 시킴왕국의 합병에 관한 내용임.

## 1. 경위

- ※ 1950년 인도와 시킴왕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은 제2조에서 시킴은 인도의 피보호국이 됨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시킴의 방위와 영토보전의 책임을 인도가 진다고 규정함.
- ※ 시킴은 인도 동북부 히말라야 산악지역에 위치한 소왕국으로 중국(티베트)과 접경하여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지역 중의 하나임.  
- 주민의 대다수는 네팔족으로 왕족인 원주민과 대표권을 두고 갈등

## 2. 합병 과정

- ※ 1973.4월초부터 시킴왕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경찰의 발포로 사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시위대가 대부분의 지방 경찰서를 점거하게 되자 시킴 정부는 인도 정부에 지원을 요청함.
- ※ 인도는 1973.4.6. 군 병력을 급파하여 치안을 접수한데 이어 4.8.에는 시킴 정부의 요청으로 행정권을 인수하고 임시 행정수반을 임명함.
- ※ 시킴 왕과 반정부 지도자들은 인도 주재 하에 시킴 헌법 개정과 행정부 개혁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정당 회의를 1973.5월 중에 소집하기로 합의함.
- ※ 1973.5월 회의에서 합의한 '일인 일표' 투표권 제도 하에서 1974.4.15.~19.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야당인 Sikkim Congress가 압도적으로 승리함.
- ※ 인도 정부가 시킴을 합병하는 헌법 개정안을 1974.8월 국회에 제출하여 동 개정안이 9.4. 통과됨.  
- 시킴 왕과 중국은 인도의 병합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명

106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인도 정세

| 74-099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39 / 33 / 1~42p

1974년 중 인도의 대외관계에 관한 내용임.

## 1. 외국 인사의 인도 방문

1070

- ※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이 1974.10.27.~30. 인도를 방문하여 지역 정세 및 세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미·인도 공동성명을 발표함.
- ※ Nimeiri 수단 대통령이 1974.11.26.~30. 인도를 공식 방문함.
- ※ Arita 일본 외무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1974.11.26. 인도를 방문하여 일본·인도 회담을 갖고 인도 핵실험, 인도의 대일본 철광석 수출 문제 등을 협의함.
- ※ Naik 파키스탄 외국무역성 차관을 대표로 하는 사절단이 1974.11.26. 인도를 방문하여 양국간 무역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함.
- ※ Jeno Fock 헝가리 수상이 1974.11.26. 인도를 방문하여 양국 공동성명을 발표함.
- ※ 부탄 왕이 1974.12.8.~10. 인도를 방문함.

## 2. 인도 인사의 외국 방문

- ※ 차반 인도 외상이 1974.11.18.~21.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경제, 무역, 과학 및 기술 협력과 각종 문화 교류를 증진시키는데 합의함.  
- 스리랑카에 거주하는 인도계 사람들의 장래 문제 등 양국간 현안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콜롬보 개최 비동맹국 회의에서 논의될 인도양의 평화구역 설정 제의에 관하여도 의견을 교환함.
- ※ Kewal Singh 인도 외무차관은 1974.12월 포르투갈을 방문하여 그간 정지되었던 양국간 외교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함.

# 인도네시아 정세

| 74-099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2
MF번호	O-39 / 34 / 1~45p

1974년 중 인도네시아 국내 정세 및 대외 관계에 관한 내용임.

## 1. 국내 정세

- ※ 1974.1.15. 다나카 일본 수상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일부 학생들의 난동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그 책임을 물어 군부 보안 관련 책임자들을 대거 교체함.
- ※ 4월 수하르토 대통령의 측근들과 군부와의 불화 및 알력으로 인한 정치위기설이 유포됨.

## 2. 대외 관계

- ※ Don Willesey 호주 외상이 1974.3.12.~16.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양국간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함.
- ※ Elizabeth 영국 여왕이 1974.3.18.~22.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수하르토 대통령 면담, 지방 방문 등 일정을 가짐.
- ※ 소련 무역상이 3.20. 자카르타에 도착하여 양국간 무역협정에 서명함.
- ※ 제7차 아세안 외상회의가 5.7.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어 아세안 사무국 설치 문제 등을 협의함.
- ※ 수하르토 대통령은 라작 말레이시아 수상의 초청으로 1974.5.3.~4. 말레이시아 페낭을 방문하고 양국간 비공식 정상회담을 가짐.  
- 라작 수상은 말레이시아와 중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교섭과정과 문제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짐.
- ※ 수하르토 대통령은 5.27. 인도네시아에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비공식 정상회담을 가지고 필리핀 남부 회교도 지역 분쟁 해결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 네윈 미얀마(구 버마) 대통령은 1974.6.8.~11.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수하르토 대통령과 비공식 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 관심사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 말리크 인도네시아 외상은 1974.7월 북한 등 5개국을 방문함.  
- 북한 방문 시에는 북한 쌀 20만 톤 수입 계약을 체결함.
- ※ 휘틀람 호주 수상이 9.5. 인도네시아와의 비공식 회담을 위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함.

107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이란 정세

| 74-0992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39 / 35 / 1~21p

1973~74년 중 이란의 국내 정세 및 대외 관계에 관한 내용임.

## 1. 국내 정세

- ※ Hoveyda 이란 수상은 1974.4.27. 개각 및 정부기구 개편을 단행함.
  - 동 개편은 경제발전으로 인한 행정면의 확장 추세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1975년도 국회의원 선거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보임.

1072

## 2. 대외 관계

- ※ 이란 정부는 1973.7.21. 아프가니스탄 혁명정부를 승인함.
- ※ 프랑스와 이란은 1974.2.9. 산업협력협정에 서명함.
  - 프랑스는 향후 10년에 걸쳐 이란에 대하여 45~5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공여함.
  - 협력 분야로서는 원자력 발전소 설치, 이란산 천연가스의 대구주 공급 파이프라인 건설, 가스 액화공장 합작 건설 등임.
- ※ 1974.1월 이래 이란·이라크 양국간 국경 충돌 사건이 빈번하게 보도되었으나 3월 들어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따라 언론들은 양국 휴전 가능성을 보도함.
- ※ 이란은 3.16. 주네덜란드 이란대사 및 대사관원 전원의 철수를 결정함.
  - 3.8 이란대사관 앞에서 네덜란드 시위대에 의한 시위가 있었으며, 네덜란드 경찰은 대사관 요청으로 경찰관을 파견함.
  - 그러나 이란대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일찍 철수함에 따라 시위대가 대사관 영사부에 난입하여 낙서 및 직원 모욕 등 위협 행위를 함.
  - 이란은 네덜란드 정부의 외교공관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공관원 철수를 결정함.
- ※ 팔레비 이란 왕은 1974.6.24.~27.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여,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과 4차례 정상회담을 가짐.

## 이스라엘 정세

| 74-099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담당관
MF번호	O-39 / 36 / 1~12p

1. Yigal Allon 이스라엘 부수상 겸 외상은 1974.11.26. 이스라엘 국회(Knesset)에서 대외 관계에 관하여 연설함.

2. 동인은 상기 연설에서 아랍-이스라엘 분쟁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안(1974.10.3.)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 유엔총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전혀 놀랄 일은 아님.
- ※ 유엔이 반 이스라엘 아랍·소비에트 세력에 의하여 완전히 점령되었음.
- ※ 이스라엘은 유엔의 이러한 성질을 감안하여 유엔결의안에 아무런 무게를 두지 않음.
- ※ 그러나 유엔결의에도 불구하고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정치적 해결 가능성은 열려 있음.

107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일본 정세

| 74-099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O-39 / 37 / 1~282p

1974년 중 일본 국내정세에 관한 내용임.

### 1. 참의원 선거 실시

- ※ 다나카 일본 수상은 7.7. 참의원 선거를 통하여 안정적인 세력을 유지하고자 함.
- ※ 동 선거 결과, 여당인 자민당은 126석 만을 획득함으로써 과반수인 127석에서 1석이 부족하나 보수계 무소속 당선자 3명을 가산하여 겨우 야당연합 저지에 성공함.
  - 자민당 내에서는 당 근대화 문제를 두고 5개 계파 간의 갈등이 표면화됨.

1074

### 2. 다나카 수상의 사임과 미키 신내각 등장

- ※ 동 수상은 7.16. 일부 내각 경질을 단행하였으나, 계파 간 갈등은 계속됨.
  - 10.25. 고노 참원 의장이 다나카 내각 총사퇴설을 처음으로 언급함.
- ※ 동 수상은 11.8.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하자 새로운 내각을 구성함.
- ※ 동 수상은 11.26. 수상 및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표명하였으며, 내각은 12.10. 총사퇴를 결정함.
  - 자민당은 당내 후계 총재 선출 방식 등을 협의에 착수하였으나, 주류와 비주류 간에 의견 대립으로 진통을 겪다가 계파 간 타협으로 미키 신내각이 구성됨.



# 케냐 정세

| 74-0995 |

생산연도	1973-1975
생산과	동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O-39 / 38 / 1~33p

1973~74년 중 케냐의 국내 정세 및 대외 관계에 관한 내용임.

## 1. 국내 정세

- ※ 1974.10.14. 실시된 케냐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함.
- ※ 켈아타 케냐 대통령은 10.31. 내각 개편을 단행하여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마련함.

## 2. 대외 관계

- ※ 케냐는 대외관계 강화를 위한 외교망 확장의 일환으로 1973~74년도에 중국(구 중공), 일본, 캐나다 등 국가에 대한 외교공관 개설을 추진함.
  - 주케냐대사관은 1973.7월 외무부에 주케냐 소련대사관이 케냐와 동독 간 국교수립의 중간 역할을 하였음을 보고
- ※ 케냐 정부는 분단국 문제에 대한 불개입원칙에 따라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서 기권 입장을 고수함.

107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레바논 정세

| 74-099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39 / 39 / 1~15p

1974년 중 레바논의 국내 정세 및 대외 관계에 관한 내용임.

### 1. 국내 정세

- ※ 레바논 우익 정당인 Phalangist Party의 민병대원과 팔레스타인 극좌파 소속 게릴라들은 7.28, 베이루트 근교에서 대규모 총격전을 벌여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레바논 난민촌을 기지로 하는 팔레스타인 게릴라에 대하여 레바논 정부가 효과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함.
- ※ 레바논의 기독교와 회교도 극렬분자들의 유혈 충돌로 인한 치안 불안 및 정치 혼란을 이유로 Sloth 수상이 9.25. 내각 총사퇴서를 제출하였으나, 레바논 대통령은 정부 부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표 수리를 미루다가 10.3. Saed Salem을 수상으로 지명하고 조각을 요청함.

### 2. 대외 관계

- ※ 4.11. 팔레스타인 게릴라가 접경 지역 북부이스라엘 촌락을 공격한데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군이 4.13. 레바논 남동부 촌락에 대하여 공격을 가함.
- ※ 5.16. 이스라엘군이 전투기를 동원하여 베이루트 인근 및 남부 레바논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 등을 공격함에 따라 베이루트 공항이 일시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함.

# 라오스 정세

| 74-099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O-40 / 1 / 1~326p

1973~74년 중 라오스 국내정세 및 대외 관계에 관한 내용임.

## 1. 역사적 배경

- ※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라오스는 입헌군주국으로서 1962.7.23. 14개국 제네바회의에서 중립을 보장받음.
- ※ 라오스는 좌우의 및 중립파와의 연정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좌익 파테트 라오 반군의 연정 탈퇴 및 무력 반발로 내란 상태에 빠짐.
- ※ 소위 호찌민 루트를 따라 라오스 영토에 주둔한 약 4만여 명의 월맹군은 파테트 라오를 지원함에 따라 라오스의 중립화가 위협하에 놓임.  
- 파테트 라오는 월남의 베트남, 캄보디아의 크메르와 함께 공산 연합 전선 구축

## 2. 제3차 연정 구성

- ※ 푸마 라오스 수상은 1973.2월 파테트 라오 측과 휴전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7.29. 연정 구성 원칙에 관한 합의에 따라 중앙훈성위를 개최하여 연립정권의 권력 배분에 관한 협상을 진행함.
- ※ 1974.1월 중앙훈성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우여곡절 끝에 4.5. 연정이 수립됨.

## 3. 연립정부의 대외관계

- ※ 라오스 연립정권은 중립주의를 표방하고 세계 모든 국가와 국교를 수립한다는 입장을 가진.
- ※ 라오스 정부는 인프라 복구 및 심각한 재정 및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한국을 포함한 20여개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함.  
- 주라오스 한국통상대표부는 1974.7.25. 대사관으로 승격

107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말레이시아 정세

| 74-0998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남아2
MF번호	O-40 / 2 / 1~14p

1973~74년 중 말레이시아의 대외 관계에 관한 내용임.

### 1. 동독과의 수교

- ※ 폴란드 등 동구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동독과의 국교 수립을 추진함.
- ※ 동독 대표단이 1973.4.2.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교섭한 결과 4.4. 양국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발표함.  
- 공관 개설 시기는 추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함.

1078

### 2. 월맹과의 수교

- ※ 말레이시아 정부는 1973.3.30. 월맹과의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하면서, 이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지역 협력과 지역정체성 확립이라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책과 일치함을 설명함.

### 3. 이스라엘과의 관계

- ※ 말레이시아 The Strait Times지는 1974.3.5.자 기사에서 라작 말레이시아 수상이 이스라엘과의 전면적인 통상 금지를 명령하였음을 보도함.

## 몰타 정세

| 74-0999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남구담당관
MF번호	O-40 / 3 / 1~13p

주영국대사관(몰타 겸임)은 몰타 정세에 관해 1974.12월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Anthony Mamo 몰타 대통령 취임에 따른 대통령의 축전 발송을 건의함.

1. 몰타 총독이었던 Anthony Mamo 경이 1974.12.13.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입헌군주국(영국 여왕을 몰타 여왕으로 함)에서 공화국으로 바뀜.

※ 다만, 영국 연방국으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음.

2.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종전 헌법에 의하면 헌법의 주요사항은 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후 국민투표로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지난 1970년 이래 집권해 온 노동당은 당초의 헌법은 국민에게 강요된 것이었으며, 전 유권자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노동당에게 헌법개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짐.

3. 현 야당인 국민당은 당초 헌법개정에 적극 반대하여 왔으나, 극한적인 헌정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여당 측과 헌법개정 문제를 논의함.

4. 최근 시행된 몰타 의회의 개헌투표 결과는 총 55명의 의원 중 야당 6명만이 반대 투표를 함.

107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몰디브 정세

| 74-100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40 / 4 / 1~16p

주오스트리아대사관(몰디브 겸임)은 1974년 몰디브 정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1. 1974.3.8.~14. 인도를 방문한 Zaki 몰디브 수상이 동 방문 후 Gandhi 인도 수상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몰디브 수상실이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송부함.

1080

2. 1974.8.5.~9. 스리랑카를 방문한 Zaki 수상이 동 방문 후 Bandaranaike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몰디브 외무성이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송부함.

## 멕시코 정세

| 74-1001 |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40 / 5 / 1~107p

주멕시코대사관이 1974년 중 멕시코 정세에 대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유엔사무총장이 1974.1.2.~5. 멕시코를 방문하여 Echeverria 멕시코 대통령과 회담하고 동대통령이 제안한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 이 유엔에서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언급함.
2. Echeverria 멕시코 대통령은 42명의 정부, 업계 및 교육계 대표를 대동하고 1974.2.1.~17. 오스트리아, 서독, 이탈리아,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및 바티칸을 공식 방문함.
4. Rabasa 멕시코 외상은 미국에서 개최된 미주외상회의(1974.4.19.~20) 및 미주기구총회(1974.4.19.~5.1)에 참석하여 미국과 중남미국가 간의 새로운 대화를 주장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5. Rabasa 외상은 4.15. 유엔특별회의 연설에서 생활수준의 향상없이 세계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조함.
6. Echeverria 대통령은 9.1.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아래 요지의 연차교서를 발표함.
  - ※ 외세간섭 배제
  - ※ 베네수엘라의 중남미 정상회담 개최(12월 페루) 제의 수락
  - ※ 미국 대통령의 미·멕시코 정상회담 개최 제의 수락
  - ※ 다국적 기업의 부당이익 제한
7. Echeverria 대통령은 1974.7.10.~31.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자메이카 등 중남미 7개국을 순방함.
8. Echeverria 대통령이 제안한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 이 1974.12.12. 제29차 유엔총회에서 찬성 120, 반대 6, 기권 10표로 가결됨.
9. 미국·멕시코 정상회담이 양국 국경도시인 Nogales에서 1974.10.22. 개최됨.
  - ※ 동 회의 시 양측은 미국·중남미국가 간의 새로운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멕시코 노무자의 미국 이민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며, 미국의 대쿠바 문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처리하기로 함.

108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모잠비크 정세

| 74-100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아프리카
MF번호	O-40 / 6 / 1~19p

1974년 중 모잠비크 정세에 관하여 재외공관이 보고한 내용임.

### 1. 주프랑스대사관 보고

- ※ 1975.6.25. 모잠비크에 독립을 부여키로 한 포르투갈과 FRELIMO(모잠비크해방전선) 간 Lusaka 협정 서명(1974.9.7.)과 때를 같이하여 현지 포르투갈인 주동의 백인 반란이 발발함.
  - 동 반란군은 방송국, 공항, 정유공장 등 시내 주요건물을 점령하고 모잠비크 전체주민들이 반란이 동조하기를 호소한 것으로 보도됨.
  - 포르투갈 정부는 사태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육군총사령관과 반란진압 병력을 현지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짐.
- ※ 1974.9.7. 발발하였던 백인반란은 그들이 기대하였던 포르투갈 군부의 지원을 얻지 못함으로써 실패하였다고 9.11. 보도됨.
  - 이에 따라 Lusaka 협정이 계속 유효하게 되고 FRELIMO 세력을 중심으로 한 과도정부가 조직될 것이며, 1975.6.25. 정식 독립이 부여될 때까지 동 과도정부는 정권이양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함.

### 2. 주케냐대사관 보고

- ※ 케냐 외상은 1974.9.10. 아래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포르투갈 정부와 FRELIMO 간의 Lusaka 협정 서명을 환영함.
  - 외국 식민지로 부터의 아프리카인의 해방은 현대 아프리카 역사상 중대한 일임.
  - FRELIMO의 영웅적 투쟁과 포르투갈 정부의 금번 조치를 찬양함.
  - 모잠비크인은 지금까지의 시련을 극복한 경험으로 완전 독립을 위해 모든 일을 잘 수행해 나갈 것임.
  - 케냐 및 기타 OAU(아프리카통일기구) 회원국은 항상 모잠비크인의 편에 있음.
  - 모잠비크인의 소망과 완전 독립의 권리는 존중되고 보장될 것임.
  - 독립 후의 경제, 사회적 시련도 모잠비크인의 단결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앙골라의 독립도 성취되어야 할 것임.
- ※ 모잠비크는 9.20. FRELIMO의 제3인자인 Chissano(35세)를 수반으로 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음을 발표함.
  - 임시정부는 1975.6.25. 완전 독립할 때까지의 과도기 정부임.



## 니카라과 정세

| 74-1003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40 / 7 / 1~22p

주멕시코대사관(니카라과 겸임)이 1973~74년 중 니카라과 정세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 1. 니카라과의 실권자인 Somoza 장군은 1974.12.13.~15. 멕시코를 방문하여 니카라과 지진시 멕시코의 원조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 1974년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할 것임.
- ※ 제3세계는 다양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바, 미국의 우방인 니카라과는 서방 측에 속하고 있음.
- ※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구아시의 재건에는 10년이 걸릴 것임.

### 2. 1974.9.1. 실시된 니카라과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인 Somoza 장군이 대통령으로 당선됨.

- ※ Somoza 대통령 당선에 대한 대통령의 축전 발송을 건의함.

### 3. 1974.12.27. 마나구아시 교외의 전 니카라과 농업상 사저에서 개최된 리셉션에 게릴라 6명이 침입하여 Alejandro 니카라과 외상부부를 포함한 19명의 저명인사를 인질로 잡은 후 보석금 100만 달러, 8명의 동료 게릴라 석방, 동 게릴라들의 안전한 출국보장 등을 요구함.

- ※ Somoza 대통령은 즉각 게릴라가 점거하고 있는 전 농업상 사저를 포위하는 한편 계엄령을 선포하고 긴급 각의를 열어 대책을 협의함.
- ※ 주니카라과 미국대사는 동일 리셉션의 주인이었으나 사건 발생 20분 전에 현장을 떠나 번을 면함.
- ※ 게릴라들은 석방된 14명의 정치범과 함께 12.30. 니카라과 항공기편으로 쿠바의 하바나에 도착하였으며, 동 항공기는 즉시 회항함.  
- 인질들은 동 항공기의 이륙 직전에 석방됨.

108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니제르 정세

| 74-1004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O-40 / 8 / 1~118p

주코트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대사관이 겸임국인 니제르 정세(1974~75년)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Seyni 니제르 육군참모총장이 주동이 된 군사쿠데타가 1974.4.15. 발생하여 니제르 대통령은 연금되었으며, 군부는 국회해산, 헌법정지를 선언하고 최고군사회의를 구성하여 정권을 장악함.

1084

2. Seyni 최고군사회의 의장은 1974.4.16. 라디오 방송을 통해 내정원칙으로 질서, 사회정의 및 단결을 선언하고 지하자원 특히 우라늄을 이용한 최대한의 이익 추구를 언명하였으며, 프랑스와의 관계는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임을 언급함.

3. 군사혁명에 따른 니제르 신정부의 각료명단이 1974.4.17. 발표됨.

※ 동 군사정부는 군부인사들로 구성되었으나, 동 조각을 임시정부 구성이라고 발표함으로써 향후 민간인 등용의 여지를 남겨둠.

4. 니제르 최고군사회회의는 1974.7.16. 중공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할 것을 결정하였음을 발표함.

※ 신정부 공보상은 동 결정을 발표하면서 니제르는 중공이 유엔회원국으로 국제정치에서 더 이상 그 존재를 무시할 수 없으며, 이 결정은 Seyni 의장이 혁명 시 공약한 모든 국가와의 협력 추구 정책에 입각한 것임을 언급함.

5. 니제르와 중국(구 중공)이 1974.7.20.자로 외교관계를 수립키로 하였음을 7.22. 니제르 방송이 보도함.

6. 니제르 최고군사회회의는 1974.11.30. 개각을 단행함.

※ 동 개각을 통해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을 겸하고 있던 Seyni 의장이 내무장관직을 총무차장관인 Arouna 소령에게 넘겨주어 겸임하도록 함.

## 파키스탄 정세

| 74-1005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40 / 9 / 1~7p

재외공관의 1973~74년 중 파키스탄 정세 동향 보고임.

### 1. 주브라질대사관은 Rahar 주브라질 이란대사대리가 파키스탄 정세에 관해 주브라질대사에게 언급한 아래 내용을 1973.2월 외무부에 보고함.

- ※ 최근 파키스탄에서 부족들의 반란이 발생했으며, 주파키스탄 이라크대사관의 외교행낭 속에서 기관총 300정이 발각되었음.
- ※ 소련은 파키스탄의 반정부 부족들에게 이라크를 통해서 무기를 공급하는 등 내부교란을 꾀하고 있음.
- ※ 이란은 국제공산세력의 침투공작에 대비하기 위해 20억 달러 상당의 최신무기를 미국에 발주하기로 결정 하였음.

### 2.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은 Aziz Ahmad 파키스탄 외무·국방담당국무상의 방일에 대해 1974.12월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Ahmad 국무상은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1974.12.6.~11. 일본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 ※ 동 국무상은 방일기간 중 일본 외상과 회담하고 천황을 알현하는 외에 일본 경제관계부처와의 회담을 계획하고 있음.
- ※ 동 국무상의 방일 목적은 일본의 대파키스탄 원조사업의 재개를 포함한 차관문제의 타결에 있음.  
- 동 국무상의 방일을 계기로 차관협정이 서명될 것이라 하며 이를 위한 실무협회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108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폴란드 정세

| 74-100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구담당관
MF번호	O-40 / 10 / 1~59p

재외공관의 1974년 중 폴란드 대내·외 정세 동향 보고임.

## 1. 주벨기에대사관은 폴란드 정세에 관해 아래와 같이 2월 외무부에 보고함.

### ※ 국내 정세

- 폴란드 통일노동당은 2.15.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1명의 당서기를 해임하고 3명의 당서기를 새로 임명함.
- 폴란드 정부는 1.19. 임금인상 및 물가인상 등 일련의 경제조치를 발표함.

### ※ 대외 정세

- 폴란드 및 서독 양국은 1974.1.22.~24. 서독 본에서 회의를 갖고 서독의 대폴란드 차관공여문제를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후일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함.
- 1.28. 폴란드 여객선 편으로 서독 관광 중이던 여객객 64명이 여객선 승선을 거부하고 서독에 망명한 사건이 발생함.

## 2. 주미국대사관은 Gierek 폴란드 당 제1서기의 미국 방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10월 외무부에 보고함.

### ※ 미국 방문 일정

- 1974.10.8.~10. 워싱턴 공식 방문 기간 중 포드 미국 대통령 및 키신저 국무장관과 각각 1회의 공식 회담을 가짐.
- 미국 경제각료들과 개별접촉을 가졌으며, 의회 및 National Press Club에서 연설함.
- Gierek 당 제1서기 일행은 워싱턴 방문 후 뉴욕, 피츠버그, 휴스턴 등 상공업 도시를 방문한 후 10.13. 귀국함.

### ※ 회담내용

- 키신저 국무장관은 회담에 앞서 동서간의 관계개선 문제와 양국간 경제기술협력이 주요의제라고 언급함.
- 회담 후 폴란드 측은 양국간의 경제문제를 주로 논의하였으며, 동서간 관계개선 문제와 국제경제협력 문제 등에 관하여도 의견을 교환하였음을 발표함.

# 파라과이 정세

| 74-100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남미
MF번호	O-40 / 11 / 1~8p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의 1974년 중 겸임국인 파라과이에 대한 정세 동향 보고임.

## 1. 일반정세

- ※ Stroessner 파라과이 대통령은 1954년 이래 20년간 장기집권 중이며 파라과이는 정치, 경제적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임.
- ※ 파라과이 국회는 단원제이며 여당 일색으로 명목적인 의회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 파라과이는 내륙국으로 경제적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특수환경으로 인하여 인접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2. 대외관계

- ※ 파라과이는 철저한 반공국가로서 친서방 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칠레, 브라질, 볼리비아 등과 4국 반공연맹을 구상 중임.
- ※ Stroessner 대통령은 1974.4.2.~6. 남아연방을 공식 방문하고 양국간 경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 3. 자원문제

- ※ 파라과이도 1973년 중동전쟁 이후의 국제적 유류파동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음.
- ※ 파라과이 정부는 미국 자본으로 볼리비아와 인접한 국경지대의 석유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임.

## 4. 북한문제

- ※ 현 파라과이 정권이 계속되는 한 북한의 침투 우려는 없는 것으로 관측됨.

108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파나마 정세

| 74-100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미담당관
MF번호	O-40 / 12 / 1~25p

주파나마대사관의 1974년 중 주재국 정세 동향 보고임.

### 1. 파나마 정부는 1.28. 동독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양국간에 대사를 교환하게 될 것임을 공식 발표함.

- ※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성명서는 베를린에서 파나마를 대표한 Jimenez 주서독 파나마대사와 동독을 대표한 Winzer 동독 수상 간에 서명됨.

1088

### 2. 닉슨 미국 대통령은 주파나마 미국대사에 Jordan 국가안보위원회 남미문제담당 보좌관을 1.17. 지명, 발표함.

- ※ 동인은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보좌관으로 2년간 근무하여 왔고, 한국전쟁 시 언론사 특파원으로 한국에 근무한 바 있는 한국통이라고 함.

### 3. Tack 파나마 외교장관은 8.20. 지난 13년간 단절되었던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재개키로 결정하였음을 공식 발표함.

- ※ Barletta 파나마 경제기획성장관이 쿠바를 방문하여 8.22. 국교회복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동일자로 외교관계가 정식 재개됨.
- ※ Bertrand 주파나마 쿠바대사가 10.28. 파나마에 도착하여 10.30. Lakas 파나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4.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 혁명 6주년을 맞아 10.11.까지 전재외공관장으로 하여금 일괄사표를 제출토록 조치함.

- ※ 파나마 외무부 소식통에 의하면 11.6. 현재 파나마 재외공관장 중 대사 7명과 총영사 1명의 사표가 수리됨.

# 각국의 팔레스타인(PLO) 승인

| 74-100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40 / 13 / 1~59p

채외공관의 1974년 중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대외적 지위 문제 관련 보고임.

## 1. 주레바논대사관

- ※ PLO는 팔레스타인의 실지회복 및 독립운동을 위한 조직체이며 대외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 아랍권에서는 PLO를 팔레스타인의 합법적인 대표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음.
- ※ 레바논 정부도 PLO를 팔레스타인의 합법적 대표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외부성을 통한 공식 외교접촉은 하지 않고 있음.

## 2. 주이란대사관

- ※ 이란 정부는 PLO를 승인하고 있지 않으나 PLO가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고 있음.
- ※ 이란은 팔레스타인 문제 및 대표기구에 관하여는 직접 당사자인 요르단 및 이집트가 최종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를 견지함.

## 3. 주브라질대사관

- ※ PLO가 팔레스타인 국민을 대표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입장은 미정임.
- ※ 브라질 정부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의 합법적인 권리회복과 이스라엘의 아랍점령지역으로부터의 철수를 지지하고 있음.

## 4. 주일본대사관

- ※ 일본 정부는 PLO가 사실상의 정치단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으나, 동 기구에 대한 구체적 지지 여부에 대하여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PLO에 대한 승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5. 주영국대사관

- ※ 영국 정부는 PLO가 팔레스타인의 이익을 법적으로 대표한다고 보지 않음.
- ※ 따라서 영국 정부는 PLO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음.

## 6. 주유엔대표부

- ※ 유엔 주재 아랍외교관에 의하면 현재 PLO는 요르단을 제외한 모든 아랍국가들로부터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소련을 위시한 대부분의 공산국가에 의해서도 승인되고 있음.

108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7. 주프랑스대사관

- ※ 프랑스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합법적 권리와 자결권은 인정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승인문제를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임.

### 8. 주미국대사관

- ※ 미국은 PLO의 대외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PLO가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대표하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여 PLO의 국제회의 참석 자격도 인정하지 않았음.
- ※ 다만, 1974.7.3. 발표된 닉슨-브레즈네프 공동성명에서 중동문제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를 표명하는 등 PLO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전환되어 가고 있음.

### 9. 주카이로총영사관

- ※ 이집트 정부는 PLO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PLO를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기구로 인정하고 있음.



# 페루 정세

| 74-101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40 / 14 / 1~67p

주페루대사관의 1974년 중 주재국 정세 동향 보고임.

## 1. 1월 보고

- ※ 국내 정세
  - 1973.11월 페루 남부 Arequipa 및 Puno 시에서 소요사태 발생 및 비상사태 선포
  - 1973.11.2.~4. 제6차 페루 공산당대회 개최
- ※ 대외 관계
  - 유엔결의에 따라 페루 정부가 1973.11월 중등 휴전 감시군 파견
  - 페루 정부가 이란과의 외교관계 수립 발표(11.20.)

## 2. 4월 보고

- ※ 국내 정세
  - 페루 정부가 미국계 화학 및 제지 회사, 시멘트 회사의 국유화 단행(1974.2.14.)
- ※ 대외 관계
  - 미국계 기업 국유화에 따른 미국·페루 간 보상협정 서명(2.19.)
  - 중국(구 중공) 군사사절단 페루 방문(3.6.~14.)
  - Velasco 페루 대통령이 프랑스와의 국교 재개 의사 표명(3.17.)

## 3. 7월 보고

- ※ 국내 정세
  - 페루 정부가 추진해 온 토지개혁을 정글지대에까지 확대하는 법안 공포(6.8.)
- ※ 대외 관계
  - De La Flor 페루 외상이 미주기구 제4차 정기총회 연설(4.20.)에서 파나마 운하에 대한 파나마의 주권 회복 및 쿠바의 미주기구 복귀를 역설
  - 페루 정부가 소련 Aeroflot 항공사의 페루 취항을 허가(5.27.)

## 4. 1974.10월 이후 보고

- ※ 국내 정세
  - Velasco 대통령이 7.28.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1968.10.3. 군사혁명 이전에 마련되었다는 혁명계획을 공개
- ※ 대외 관계
  - De La Flor 외상이 일본을 방문, 차관(3억 3천만 달러) 도입을 위한 차관협정에 서명(8.28.)
  - 페루 정부가 파키스탄과의 국교수립을 공식 발표(9.1.)
  - 동 대통령은 11.13. 기자회견에서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미주기구외상회의(1974.11.8.~12.) 불참을 비난

109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루안다 정세

| 74-101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담당관
MF번호	O-40 / 15 / 1~44p

주르완다대사관의 1974년 중 르완다 정세 동향 보고임.

### 1. Habyarimana 르완다 대통령은 1973.12.29. 외교단 신년하례식에서 아래 요지의 연설을 하고 1974년도 정부시책을 밝힘.

- ※ 1973년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 설명
- ※ 대외정책으로서 유연한 입장을 존중하고 국제평화 노력에 가담
- ※ 선진국의 원조 약속 불이행 지적
- ※ 농업에 중점을 둔 경제개발 수행

### 2. Habyarimana 대통령은 4월초 약1주일간 프랑스와 벨기에를 방문함.

### 3. Mobutu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대통령이 1974.6.8.~10. 르완다를 공식 방문함.

- ※ 동 방문기간 중 양국 대통령은 양국간 협력, OAU(아프리카통일기구)에서의 공동보조, 아프리카 해방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함.

### 4. Habyarimana 대통령이 6.12. OAU 총회 부의장으로 당선됨.

### 5. 르완다 독립 12주년(7.1.) 및 혁명 1주년(7.5.)에 즈음한 Habyarimana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르완다 군부는 구정권이 조장한 혼란을 시정하기 위해 1973.7.5. 쿠데타를 단행함.
- ※ 새로운 정부는 헌신적 노력으로 질서를 되찾았으며, 국민의 현명한 호응과 단합으로 국가 발전의 기틀이 튼튼해짐.
- ※ 국가의 운명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므로 국민들이 더욱 단합해 줄 것을 요청함.
- ※ 앞으로 능률적인 행정, 효율적인 군사훈련체제, 노동의 중시 및 노동자의 복지향상, 교육제도 개선, 사회악 추방, 정치범 감형조치 등을 추구할 것임.

# 스리랑카 정세

| 74-101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O-40 / 16 / 1~45p

주스리랑카대사관의 1974년 중 주재국 정세 동향 보고임.

## 1. Bandaranaike 스리랑카 수상이 1974.1.22.~29. 인도를 방문함.

- ※ Bandaranaike 수상은 1.23. Gandhi 인도 수상 주최 만찬 연설에서 비동맹 정책 계속 추구 및 인도양 평화지대 안에 대한 양국의 공동노력을 강조함.
- ※ 양국은 동 수상의 인도 방문 기간 중 스리랑카 내 인도계 무국적자 150,000명의 처리문제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봄.
  - 이들 중 75,000명에게는 인도 국적을, 75,000명에게는 실론 국적을 부여하기로 함.

## 2. Bandaranaike 수상은 영국·미국 간 “디에고가르시아섬” 군사기지 확장 합의에 대한 항의서를 28. 미국 대통령 및 영국 수상에게 전달함.

- ※ 동 수상은 동 항의서에서 인도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인도양 평화지대 설정안이 유엔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영국·미국 양국이 디에고가르시아섬 군사기지 확장에 합의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함.

## 3. Bandaranaike 수상은 심각한 식량난 타개를 위해 정부 고위인사들을 소련, 인도, 중국(구 중공) 및 파키스탄에 파견하기로 3월 결정함.

- ※ 소련과 인도에는 동력성장관을, 중국과 파키스탄에는 대외무역성장관을 각각 파견하기로 함.
- ※ 이들은 동 수상의 친서를 휴대할 것이며, 방문국에 쌀, 소맥분 및 설탕 공급 요청을 할 것이라고 함.

## 4. 스리랑카 정부는 야당의 대규모 집회개최 선언에 따른 정국의 심각성에 대비하여 야당집회 금지, 통행금지 선언, 신문사 휴간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사태를 4.20. 선포함.

- ※ 동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야당의 반정부 집회 개최가 어렵게 되어 야당은 원내에서 대정부 공세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됨.

## 5. 스리랑카 정부는 인도와 스리랑카 간 쟁점의 하나인 “카차티부섬” 문제에 관한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6.29. 발표함.

- ※ 6.28. 양국 수상에 의해 서명된 동 협정서는 양국의 경계선 확정과 카차티부섬의 스리랑카 영토로의 귀속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짐.

109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소말리아 정세

| 74-101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아프리카
MF번호	O-40 / 17 / 1~86p

재외공관의 1974년 중 소말리아 정세 동향 보고임.

**1. Barre 소말리아 대통령이 1974.9.13.~14. 케냐를 방문하여 케냐 대통령과 양국간 통상증진, 동부 아프리카국가 간의 유대강화 문제 등을 협의함.**

**2. Barre 대통령은 1974.11.11.~13.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를 방문함.**

1094

- ※ 동 대통령은 동 방문시 자신이 OAU(아프리카통일기구) 의장으로서 아프리카의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회원국과 접촉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위기 및 식민지 해방 문제도 함께 검토할 것임을 밝힘.
- ※ 동 대통령은 외상, 농업상, 기획상 등 약 30명의 인사를 대동함.
- ※ 양국 대통령은 11.13.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 동남아 특히 월남, 캄보디아에서의 외국의 간섭 규탄 및 간섭 중지 요구
  - 한국민의 평화통일 호소
  - 이스라엘의 아랍 점령지역으로부터의 철수 지지
  - 1975년 아랍·아프리카 정상회담 개최 환영
  - OAU 헌장 개정 필요성 인정
  - 양국간 문화통상협정 조기 체결 합의 등

**3. Barre 대통령이 1974.11.13.~15. 니제르를 방문하여 니제르 측과 OAU 국가들의 공동관심사 등에 관해 협의함.**

- ※ 동 방문후 발표된 양국 공동성명서에는 주요 역내 경제문제, 식민지 해방, 아프리카의 단결, 팔레스타인 문제에서의 아랍 입장 지지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4. Barre 대통령은 1974.11.21.~23. 코트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를 방문함.**

## 튀니지 정세

| 74-101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40 / 19 / 1~47p

주튀니지대사관의 1974년 중 주재국 정세 동향 보고임.

1. 알제리 대통령이 Bourguiba 튀니지 대통령의 초청으로 1974.3.22.~23. 튀니지를 방문하여 양국간의 3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각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방안, 대마그레브 건설구상,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한 권익보장 문제 등을 협의함.

2.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3.25. 튀니지와 요르단이 국교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함.

※ 튀니지와 요르단은 1973.7.18. 국교를 단절한 바 있으며, 동 국교 재개에 관한 튀니지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음.

3. 튀니지의 단일 정당인 데스를 사회당의 제9차 전당대회가 682명의 대의원과 32개 외국사절단이 참석한 가운데 1974.9.12.~15. 개최됨.

※ 동 전당대회에서는 Bourguiba 대통령을 종신 당총재 및 종신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헌법 개정을 결의함.

4. 튀니지 총선거가 11.3. 실시되어 Bourguiba 대통령이 총 투표자 99.98%의 지지를 받아 당선됨.

※ 11.4. 동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각료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선거에 따른 개각은 없을 것으로 발표됨.

※ 주튀니지대사관은 동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축전 발송을 건의함.

5.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1974.11.8.~9. 튀니지를 방문하였으며, 11.9. 출발성명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짧은 방문(18시간)이었지만 매우 유익한 방문이었음.

※ Bourguiba 대통령의 반 식민지 독립 투쟁시 단계적으로 목적을 성취한 것처럼 중동문제도 단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양국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에 합의함.

109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전

## 트리니다드토바고 정세

| 74-101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미담당관
MF번호	O-40 / 20 / 1~10p

주베네수엘라대사관(트리니다드토바고 겸임)의 1974년 중 트리니다드토바고 정세 동향 보고 및 외신 보도 내용임.

### 1.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는 6.21. 중국(구 중공)과의 수교 결정을 공식 발표함.

※ 동 정부 발표 성명에 의하면 양국 정부는 주권 및 영토의 상호존중과 내정 불간섭 및 평등의 원칙을 존중할 것이라고 함.

### 2.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와 미국의 민간회사인 Tesoro 석유공사 간의 합작투자가 정부와 민간회사 간 합작투자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고 함.

※ 동 합작회사는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가 50.1%의 주를 보유하고 있고 Tesoro사가 49.9%의 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 정부가 동사와의 공약을 잘 지키고 또한 회사 측은 현지 고용원에 대한 의무를 완수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함.

### 3. 트리니다드토바고는 1975년부터 현재의 수입차량보다 저렴한 승용차를 생산할 것을 계획 중임.

※ Neal And Massey사에서 차량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사는 현재 미국 General Motors 생산 부품을 도입하여 승용차를 조립하고 있음.

- 국내 조립 승용차의 부품 60%를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임.

### 4. 트리니다드토바고 의회는 12월 트리니다드토바고 역사상 처음으로 650백만 달러에 달하는 1975년도 예산안을 승인함.

※ 동 예산은 석유재원에 근간을 두고 인플레이션 억제, 산업투자 증대 및 식량증산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터키 정세

| 74-101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O-40 / 21 / 1~155p

주터키대사관의 1974년 중 주재국 정세 동향 보고임.

## 1. 터키의 공화인민당 및 국민구국당이 1.25. 연립내각 구성에 합의하고 Koruturk 터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신내각이 정식으로 출범함.

- ※ 1973.10.14. 터키 총선거에서 종전의 집권당인 정의당이 패하고 공화인민당이 과반수에는 미달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함.
- ※ 총선거 후 동 대통령은 4차에 걸쳐 정당 당수들에게 조각을 위임하였으나 실패하고, 최종적으로 공화인민당과 국민구국당이 제휴하여 연립내각을 구성함.
- ※ 신내각은 2.7. 하원의 신임투표에서 235표(과반수는 226표)를 획득함.

## 2. Ecevit 터키 수상(공화인민당 소속)은 9.3. 국민구국당과의 연립내각 유지의 어려움을 표명하고, 9.18. 내각 총사퇴를 단행함으로써 연립내각이 붕괴됨.

- ※ Ecevit 수상은 9.16. 자신 및 공화인민당 각료의 사의를 표명하고, 9.18. Koruturk 대통령에게 내각 사퇴서를 제출함.

## 3. Koruturk 대통령은 연립내각 붕괴 이후 정국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각 정당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1974년말까지 정국의 혼란은 계속됨.

- ※ 9.20.~30. 동 대통령의 위임에 따라 Ecevit 공화인민당 당수가 조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함.
- ※ 9.30.~10.4. 동 대통령의 위임에 따라 데미렐 정의당 당수가 조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함.
- ※ 10.8. 동 대통령이 정국타결을 위한 정치지도자들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함.
- ※ 10.10.~11.7. 동 대통령의 위임에 따라 Ecevit 당수가 조각을 위해 다시 노력하였으나 실패함.
- ※ 11.12. 동 대통령이 정국타결을 위해 정치지도자들과의 제2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당간의 상호 양보와 협력을 모색함.
- ※ 11.13. 동 대통령이 이르마크 상원의원에게 중립거국내각의 조각권을 위임함.
  - 내각부재 상태의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당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는 “중립내각” 구성이라는 변칙적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11.29. 하원 투표에서 이에 대한 신임을 획득하지 못함.
  - 11.29. 이후 이르마크 과도내각이 유지되는 불안한 정국이 계속됨.

## 탄자니아 정세

| 74-101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아프리카
MF번호	O-40 / 22 / 1~12p

재외공관의 1974년 중 탄자니아 정세 동향 보고와 언론 보도 내용임.

1. Nyerere 탄자니아 대통령이 1974.3.15.부터 5일간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함.

2. 탄자니아 외상은 3.20. 우간다군이 양국이 체결한 “모가디시” 강화협정을 위반하여 탄자니아 영토 내 10Km까지 침입하였다고 우간다를 비난함.

1098

3. Nyerere 대통령이 중국(구 중공)을 일주일간 방문하기 위해 3.23. 북경에 도착함.

※ 중국은 최근 대아프리카 초청외교를 강화하고 있으며, 1974년중 이미 잠비아와 알제리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앞으로 4명의 아프리카 국가원수가 방문할 예정임.

※ Nyerere 대통령은 방중 기간중 모택동 당주석, 주은래 중국 수상 등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공동관심사 특히 정치·경제문제와 국제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임.

4. Nyerere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3.31. 인도를 방문하여 Gandi 인도 수상과 회담하고 국제정세 및 비동맹국들의 당면문제들을 협의함.

※ 동 회담 후 인도 외상은 양국 지도자들이 비동맹운동의 강화방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고 기자들에게 언급함.

5. 하트 영국 해외개발상은 영국이 탄자니아에 2,640만 달러를 원조하기로 결정했다고 7.23. 밝히면서, 동 원조계획이 지난 9년간 단절되어온 영국의 대탄자니아 원조의 재개를 의미한다고 부연함.



## 우간다 정세

| 74-101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40 / 23 / 1~32p

주우간다대사관의 1974년 중 주재국 정세 동향 보고임.

**1. Amin 우간다 대통령은 3.6. 주우간다 소련대사에게 최근 소련의 대우간다 군사원조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명함.**

※ 군사원조는 탱크, 병력수송 장갑차, 고사포, 미그 17기 1개 중대 등인 것으로 알려짐.

**2. 영국 BBC 방송이 우간다의 인권유린에 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한데 대해, Amin 우간다 대통령은 6.6. 주우간다 영국대사대리를 초치하여 이러한 악선전이 계속되는 경우 주우간다 영국대사관의 폐쇄와 우간다 내 영국민의 추방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함.**

**3. 12월초 우간다 정부는 주우간다 영국대사관 무관을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12.7.까지 우간단을 떠나도록 명령하였으며, 또한 Amin 대통령은 50명인 주우간다 영국대사관의 직원을 5명으로 줄이도록 명령함.**

※ 동 대통령은 50명이라는 영국대사관 인원에 비해 우간다·영국 간 거래 내지 협상관계는 거의 없었다고 말하고, 정식으로 우간다 외무성에 통고된 외교관은 불과 9명으로서 나머지 41명은 우간단을 교란할 목적으로 주재하는 인원이라고 말함.

**4. Amin 대통령은 12.20. 전 외교사절을 대통령실에 초치하여 우간다 전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우간다가 현재 처한 인접국가와의 정세 현황에 대하여 브리핑하면서 각 외교사절이 정확한 사실을 본국 정부에 보고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함.**

※ 동 대통령은 1972년 자신이 집권한 이후 탄자니아와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탄자니아와 수단이 우간단을 침공하고자 획책한 양측 간의 합의문서를 입수하였다고 밝힘.

109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전

## 영국 총선거

| 74-101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구주1
MF번호	O-40 / 24 / 1~203p

주영국대사관의 1974년 중 주재국 정세(총선거) 동향 보고임.

### 1. Heath 영국 수상은 국민에게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임을 물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8. 하원을 해산하고, 2.28.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2.6. 발표함.

※ Heath 보수당 정부는 1973.11.12. 석탄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서 발단된 노동쟁의가 확산되고 1974.1.14. 정부와 노조대표와의 회담이 결렬되었으며, 탄광노조가 2.10. 전면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총선거 실시를 확정, 발표함.

1100

### 2. 2.28. 실시된 영국 총선거에서는 Wilson이 이끄는 노동당이 보수당을 5석 차이로 누르고 승리하여 조각 준비에 들어감.

※ 총의석 635석 중 노동당 301석, 보수당 296석을 각각 차지하여 양당 공히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함.

※ 선거 초반에는 보수당이 우세하였으나, 후반에 들어 정부의 경제정책 실효를 집중 공격한 노동당의 전략이 주효하여 주도권을 장악하게 됨.

### 3. Wilson 노동당 당수가 3.4. 수상에 취임함으로써 1970.6월 총선 패배로 보수당에 정권을 이양한 지 3년 9개월 만에 노동당이 재집권하게 됨.

※ Wilson 수상이 노동당 단독 내각을 일단 수립하였으나, 신정부는 의회 소수파의 약체 내각으로서 단명을 면치 못할 것이 확실시되며, 1년 이내 재선거 실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4. 영국 노동당은 10.10. 실시된 총선거에서 총의석 635석 중 과반수에서 1석이 많은 319석을 획득함으로써 원내 안정세력을 확보함.

※ Wilson 노동당 당수는 금세기 최초의 4선 수상이 되었으나, 노동당의 지지율은 39.3%로 다수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지는 못했음.

※ 금번 선거에서 20석을 잃은 보수당은 당 지도층의 교체 논의가 활발하게 거론될 것이며, 당의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이 단행될 것으로 보임.

※ 투표율은 72.8%로서 2월 총선의 79%보다 저하됨으로써 총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줄어듦.

## 미국 정세

| 74-1020 |

생산연도	1969-197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O-40 / 25 / 1~126p

주미국대사관의 1969~75년 중 주재국 정세 동향 보고임.

**1. 닉슨 미국 대통령은 1969.7.23.~8.3.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월남,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 6개국과 루마니아 및 영국을 방문함.**

※ Nixon 대통령은 아시아국가 순방을 통해 월남전 후의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수립하고 각국의 의향을 타진 하며, 미국의 새로운 대아시아 정책 시행이 결코 미국의 아시아로부터의 철수가 아니고 태평양국가로서의 공약과 역할을 지켜나갈 것임을 다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2. 포드 미국 부통령의 취임으로 공석이 된 미시간 제5선거구 하원의원 보궐선거(1974.2월)에서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 소속 Vanderveen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됨.**

※ 지금까지 포드 부통령이 동 선거구에서 60% 이상의 지지를 받아왔음에 비추어 금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3. 포드 미국 대통령은 1974.8.9. 취임 직후에는 부통령 당시의 소수 보좌관들만을 백악관 참모진으로 기용하고 닉슨 대통령 당시 참모의 대부분을 유임하도록 하였으나, 그 후 여론 등을 참작하여 백악관 참모진을 개편함.**

※ 포드 대통령은 취임 후 대외관계보다는 국내문제에 역점을 둘 것이며, 대외정책에 있어 우선은 닉슨의 외교 정책을 지속하고 에너지 및 자원문제 해결에 치중할 것으로 보임.

**4. 포드 대통령은 극동 방문의 일환으로 일본 방문 후 1974.11.22.~23. 한국을 방문하고, 이후 블라디보스톡에서 소련 정상과 회담을 가짐.**

※ 미국 정부는 동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관해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면 전통적인 우방인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우의 내지 약속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도 한국 방문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함.

**5. Fraser 미국 하원의원이 주도한 한국관계 청문회가 1974.7.30. 및 8.5. 개최됨.**

※ 동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 측은 대체로 한국의 전략적인 위치 및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들어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가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한 반면, 일부 참가자들은 소위 한국의 인권문제 때문에 군사원조 삭감 내지 주한미군 감축으로 미국 측의 강한 의사전달이 있어야 함을 주장함.

#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정세

| 74-102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O-40 / 26 / 1~132p

주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대사관의 1974년 중 주재국 정세 동향 보고임.

## 1. 부르키나파소 군부는 2.8. 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함.

- ※ 군 최고간부회의 결정에 따라 Lamizana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이 군부의 재집권에 관한 포고를 선언함.
  - 1970년도 민정이양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 해산 및 정치활동 금지를 선언하며, 구국 내각을 조직할 것을 약속함.

1102

## 2. Lamizana 대통령은 2.11. 군정 신내각 구성에 관한 포고문을 발표함.

- ※ 민정 내각에 참여하였던 5명의 군부출신 각료는 각료 직책이 다소 변경되었으나 유임됨.
- ※ 군부 소장 출신 장교 4명 및 민간인 출신 4명이 등용됨.
- ※ 동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정부 수반직에 추가하여 법무장관직을 겸하게 됨.

## 3.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10.26. 2명의 각료를 교체하고 1명의 각료의 직명을 변경하는 개각을 단행함.

## 4. Barre 소말리아 대통령이 1974.11.11.~13.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함.

- ※ 양국 대통령은 11.13.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 동남아 특히 월남, 캄보디아에서의 외국의 간섭규탄 및 간섭중지 요구
  - 한국국민의 평화통일 호소
  - 이스라엘의 아랍 점령지역으로부터의 철수 지지
  - 1975년 아랍·아프리카정상회담 개최 환영
  - 앙골라, 모잠비크, 프랑스령 소말리아의 즉각적인 독립을 인정하도록 요구
  - OAU(아프리카통일기구)의 헌장 개정 필요성 인정
  - 양국간 문화통상협정 조기 체결 합의
  -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의 소말리아 방문 초청 수락

## 우루과이 정세

| 74-102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O-40 / 27 / 1~76p

주우루과이대사관의 1973~74년 중 주재국 정세 동향 보고임.

1. 우루과이 정부는 1973.6.27. 의회 해산 조치 이후 표면상 사회안정을 유지해 왔으나, 좌익세력 근절을 위해 10.27. 대학의 무기한 폐쇄조치 및 공산당 불법화 조치를 단행함.

※ 다만, 우루과이 정부는 공산당 불법화와 관계없이 공산권과의 교류는 지속함.

2. 우루과이 정부는 1974.6.27. 대대적인 정부기구 개편을 단행하고 특히 경제 및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소위 경제팀을 정비, 강화함으로써 경제에 새로운 동인을 마련하고자 노력함.

3. 우루과이의 보수계 및 우익계 정치인 108명은 1974.9.1. 정부에 대한 공개서한을 통해 1973.6.27. 이래 금지된 정치단체 활동의 재개를 요청하고 정부가 군부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헌법개정에 각 정당도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해야 함을 주장함.

4. 우루과이 정부가 1974.9.25.을 기하여 외국인 환전업무를 자유화함에 따라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엄격히 통제하여 온 공정환율제가 폐지됨.

※ 이에 따라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고 생계지수가 12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함.

5. Blanco 우루과이 외상은 1974.11월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된 미주기구 외상회의에서 쿠바에 대한 제재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쿠바가 우루과이 좌익 게릴라를 지원하고 있음을 비난함.

※ 또한 동 외상은 우루과이는 쿠바 공산정권과의 외교관계는 물론 어떠한 형태의 관계도 재개하지 않겠다고 공언함.

6. 주프랑스 우루과이 무관이 1974.12.19. 자신의 숙소 차고에서 좌익테러단의 총격을 받고 피살됨.

※ Bordaberry 우루과이 대통령은 동일 저녁 특별담화를 통해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살해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프랑스 정부에 요구함.

110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월남전

| 74-102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2
MF번호	O-40 / 28 / 1~89p

주월남대사관의 1974년 중 월남전 상황 보고 내용임.

1. 월남군사령부는 1.9. 공산군의 증강과 예상되는 총공세를 막기 위해 선제공격을 전개하고 있음을 밝혔는바, 여사한 군사조처는 티우 월남 대통령이 1.4. 4군단 창설기념식에서 밝힌 월남 내 공산지역에 대한 공격 결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1104

2. 월남군사령관은 월맹군 약 4,000명이 구정 명절을 기하여 월남의 최대 공군기지인 Bien Hoa(사이공 북방 15마일 지점)를 공격하기 위해 사이공 북방 20~25마일 지점까지 침투해 있음을 1.14. 밝힘.

3. Bac 월남 외상은 1.26. 기자회견을 갖고 월맹과의 관계정상화를 협상하기 위해 월맹 외상이나 고위 관리들을 어디서든지 만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함.

※ 또한 동 외상은 이러한 회담에서 최근 박정희 대통령이 제의한 것과 같은 남북불가침조약 같은 문제도 다를 수 있을 것임을 부언함.

4. 월남군 측과 공산군 측 간의 포로교환이 2.8. 시작되어 4.7. 종료됨.

※ 월남군 측은 총 3,636명(민간인 3,516명, 군인 130명)을 석방함.

※ 공산군 측은 총 585명(민간인 195명, 군인 380명)을 석방함.

5. 월남 당국이 6월 밝힌 바에 의하면 사이공 북방 25마일 지점인 Binh Duong성 지역 공방전에서의 쌍방 인명손실은 총 2,900여 명이며, 이중 공산군은 약 1,900여 명임.

※ 투입된 공산군은 월맹군 7 및 9사단을 주력으로 한 2개 대대 내지 1개 연대 병력이며, 월남군은 18사단의 2개 연대 병력임.

6. 공산군은 7월 월남 북부 다낭 서남방 25마일 지점의 월남군 전초기지에 약 12,000명의 병력을 투입 하여 집중공세를 가하는 한편, 인근 Duc Duc 지역을 집중포격하고 점령을 기도함.

※ 7.29. 현재 월남군은 다낭지구의 포위망을 제거하기 위한 공중포격과 지상작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산군의 Duc Duc 지역 점령기도는 실패한 것으로 관측됨.

### 7. 월남 정부는 7.20. 남북월 분단 20주년에 즈음한 특별성명서를 발표하고, 월맹에 대해 아래 4개항을 제의함.

- ✿ 즉각적인 침략 중지 및 월남에서의 월맹군 철수
- ✿ 통일문제 토의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 개시
- ✿ 서신교환, 상호왕래, 통상을 위한 즉각적인 토의 개시
- ✿ 동남아시아를 공동계획으로 이끌 공동입장을 향한 공동노력

### 8. 월남 외무성은 11.7. 아래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 ✿ NLF(공산군 측)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교섭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월남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합법적인 월남 정부 전복을 위한 시도임.
- ✿ 공산군 측이 일체의 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무조건 협상재개에 응할 것을 촉구함.

## 월남 정세

| 74-102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남아2
MF번호	O-40 / 29 / 1~307p

주월남대사관의 1974년 중 주재국 정세 동향 보고임.

1. 월남 외무성 대변인은 1.12. 최근 중국(구 중공)의 남지나해 파라셀 군도 영유권 주장을 비난하고 월남이 동 군도에 대한 유일한 합법적인 주권 보유국임을 천명함.

2. 티우 월남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통령 3선 개헌이 1.19. 이루어짐.

※ 월남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에 3선이 가능하게됨.

3. 티우 대통령은 2.18. 정부기구의 개편과 전면 개각을 단행하였으며, 이어서 지방 성장의 1/5을 경질하고 군 고급장성 11명을 예비역에 편입하는 등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함.

4. 닉슨 미국 대통령의 사임이 발표됨에 따라 전 월남군은 티우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하여 8.9. 아침부터 비상근무 상태에 들어감.

※ 주월남 미국대사대리는 티우 대통령과 키엠 월남 수상을 각각 면담하고 미국의 대월남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 동 대통령은 당일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월남군 총사령부도 별도 특별회의를 개최함.

5. 반부패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카톨릭 교도 및 하원의원 등 약 1,500명은 1974.10.30. 햇불시위를 실시한 후 부정부패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함.

6. 티우 대통령은 11.1. 혁명기념일에 즈음한 특별담화를 통하여 공산세력의 사회교란 활동에 대한 경종을 강조하면서, 부패추방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사회악은 정부의 부패만이 아니라 사회 각 계층의 문제로서 이의 추방을 위해서 전체사회의 합심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7. 월남 하원은 1974.11.16. 아래 요지의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정당설립 요건인 지부의 수를 종전의 300개에서 200개로 하며, 당원 수는 종전의 반인 10만 이상으로 함.

※ 정당의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참여를 의무화하고 일부 해산정당을 자동부활시킴.



## 베네수엘라 정세

| 74-1025 |

생산연도	1973-1975
생 산 과	남미담당관
MF번호	O-40 / 30 / 1~43p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의 1973~75년 중 주재국 정세 동향 보고임.

### 1. 1973.12.9.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Perez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외무성을 개편하고 외교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함.

- ※ 1974.3월 중 있을 신정부 출범 후에도 한국을 지지하는 기본정책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 외무성 개편 및 외교자문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윤곽은 신정권의 외상에 의해 밝혀질 것이나 외무성 요직에는 계속 보수적 인사가 등용될 것임.

### 2. 베네수엘라 신정부는 1974.3월 각료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외상에는 국제법 교수인 Schacht가 임명됨.

### 3. Schacht 외상은 1974.6.28. 중국(국 중공)과의 수교를 공식 발표함.

- ※ 동 수교합의 문서에는 동 외상과 중국의 통상성 차관이 각각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6.28. 외무성에서 서명함.

### 4. 멕시코 대통령이 1974.7.25.부터 5일간 베네수엘라를 공식 방문함.

### 5. 베네수엘라는 1974.8.1. 불가리아와 수교하기로 합의함.

- ※ 동 수교합의 문서는 Schacht 외상과 해양법 회의에 참석 중인 Yakov 불가리아 대사 간에 8.1. 교환됨.
- ※ 동 문서교환시 동 외상은 불가리아와 같은 정치·사회 제도가 다른 국가와도 수교하기를 희망함을 언급함.

### 6. Perez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974.8.27. 감비아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함.

- ※ 동 수교합의는 Perez 대통령과 해양법회의 참석차 베네수엘라에 체재중인 감비아 대통령 간에 이루어짐.

### 7. 베네수엘라 외무성은 1974.12.29.자로 베네수엘라와 쿠바 간의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음을 공식발표함.

110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전

# 북예멘 쿠데타

| 74-102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중동
MF번호	O-40 / 31 / 1~20p

재외공관이 1974.6.13. 북예멘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관해 보고한 내용임.

## 1. 주카이로총영사관 보고(1974.6.15.)

- ※ 북예멘 정부가 Hamidi 육군대령(참모차장)이 이끄는 군부에 의해 전복되었음을 언론이 보도함.
- ※ Irany 전 대통령은 동 군부혁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1108

## 2.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보고(1974.6.17.)

- ※ 북예멘에서 Hamidi 육군대령이 이끄는 군사혁명위원회가 1974.6.13. 무혈쿠데타를 일으켜 정부 및 의회를 장악하였음을 언론이 보도함.
- ※ Irany 전 대통령 등은 연금 상태에 있으며, Macci 북예멘 수상은 긴급각의를 제의하여 혁명위원회의의 성명에 대한 지지를 발표함.
- ※ Hamidi 북예멘 혁명지도자는 6.14. 현지 주재 아랍국가 대사들을 초청하여 동 사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새로운 정권에 대한 아랍국가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짐.

## 3. 주베이루트통상대표부 보고(1974.6.19.)

- ※ Hamidi 혁명지도자는 신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함.
  - 아랍국가 및 모든 외국에 대해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정책을 유지함.
  - 비동맹 정책을 계속하고, 아랍연맹과 타 국제기구를 존중하며, 기존 양자조약을 위시한 모든 협정을 준수함.
- ※ 사우디아라비아는 동 쿠데타를 북예멘의 내부문제로 간주하여 이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일체의 외부세력의 간섭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나, 여타 아랍국가들은 상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 4. 주이란대사관 보고(1974.6.30.)

- ※ 북예멘 신정부가 1974.6.25. 구성되었으며 10개의 기본정책을 발표함.
- ※ 동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란 정부도 동 정부에 대해 우호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잠비아 정세

| 74-102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아프리카
MF번호	O-41 / 1 / 1~7p

재외공관의 1974년 중 잠비아 정세 동향 보고 및 언론 보도 내용임.

## 1. 카운다 잠비아 대통령이 중국(구 중공) 방문을 위해 2.21. 베이징에 도착함.

- ※ 카운다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 모택동 당주석, 주은래 수상 등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고 주로 경제협력 및 무역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 2. 카운다 대통령은 5.6. 말라위를 방문하여 반다 말라위 대통령과 회담함.

- ※ 동 대통령이 말라위를 방문한 것은 10여년 만에 처음이며 양국간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 양 대통령의 회담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포르투갈의 정세변동에 따른 모잠비크 및 로데시아 문제가 주요 의제였을 것이라고 함.
- ※ 동 대통령의 귀국 후 잠비아 외무부 대변인은 양국 각료급들이 상호 간의 문제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협의키로 합의하였음을 발표함.

## 3. 잠비아 정부가 6.14. 자국 내 휘발유 가격을 40% 인상함에 따라 승차요금 및 운송료가 2배 가까이 급등함으로써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동 가격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함.

- ※ 잠비아는 세계의 주요 동 수출국 중 하나이며 연간 평균 6만 톤의 동을 수출해 왔음.
- ※ 내륙국인 잠비아는 수출하는 동의 운송을 육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의 인상으로 동의 현 수출가격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관측함.

110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공관활동보고 - 미얀마(구 버마)

| 74-102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서남아/정보1
MF번호	O-41 / 2 / 1~69p

주랑군총영사관의 1974년 중 공관의 주요 외교활동 보고임.

### 1. 주랑군총영사는 미얀마(구 버마) 외무부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함.

- ※ 1.10. 외무부 정무국장을 면담, 한국의 긴급조치의 필요성 및 배경을 설명하고 성명서를 수교하는 한편, 국교 수립문제에 관해 문의
- ※ 2.23. 외무부 정무국장을 면담, 서해안 사태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
- ※ 3.14. 외무부 유엔국장을 면담,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유엔군사령부 존속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
- ※ 4.8. 외무부 유엔국장을 면담,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
- ※ 5.10. 외무부 정무국장을 면담, 양국 무역회담, 언론인 방한, 국교수립문제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 5.17. 외무부 유엔국제경제국장을 면담, 6·23 선언에 따른 대유엔정책, 공보장관 초청건 등에 관해 협의
- ※ 5.22. 외상을 예방, 사절단 방문 및 양국간 경제문화체육분야에서의 교류확대문제 논의
- ※ 7.17., 9.10., 9.23. 외무부 유엔국장을 방문, 유엔총회에서 한국 지지를 요청

### 2. 주랑군총영사는 6.18. 신문공사 총재를 방문, 방한 언론인 선정문제 등에 관해 협의함.

### 3. 주랑군총영사는 차지철 대통령 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의 방문 활동을 지원함.

- ※ 7.2. 대통령, 수상, 국가이사회 위원회 등을 예방,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설명하고, 경제협력 및 통상확대를 위한 경제각료급 회담을 제의

### 4. 주랑군총영사는 친선사절단이 제의한 경제각료회담 개최 추진에 관해 미얀마 측과 협의함.

# 공관활동보고 - 캄보디아(구 크메르)

| 74-1029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O-41 / 3 / 1~18p

주캄보디아(구 크메르) 대사관의 1973~74년 중 공관의 주요 외교활동 보고임.

## 1. 주캄보디아대사의 1973년도 주요 외교활동

- ※ 1.19. 상원의장을 면담, 캄보디아 사태의 정치협상에 의한 해결 가능성 청취
- ※ 1.26. 하원의장을 면담, 캄보디아 정세 의견 교환
- ※ 1.27. 론놀 캄보디아 대통령은 대사에게 발전된 한국이 캄보디아의 경제재건에 협력하기를 희망
- ※ 1.29. 외상은 대사에게 캄보디아 평화문제,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등에 관해 언급
- ※ 2.28. 기획개발장관을 면담, 캄보디아 국내정세, 전기사정 악화 등에 관해 논의

## 2. 캄보디아대사관의 1975년도 사업계획(1974.11월 보고)

- ※ 정세 전망
  -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망명정부와의 대표권 문제로 외교, 군사적으로 대치상태에 있어 정세가 불투명
  - 중립화로 나아갈 경우에도 국교지속 노력경주 필요
- ※ 비예산사업
  - 바자참여 및 구호사업, 한국인 경영 교아원 지원, 태권도 보급지원, 교민회 지원, 친한단체 유대강화 등
- ※ 예산사업
  - 대사관저 장기계약, 유력인사 초청, 기술훈련생 및 장학생 초청 등
- ※ 경제관계 사업
  - 수산업, 농업 등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가능성 조사

111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공관활동보고 - 캐나다

| 74-103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O-41 / 4 / 1~125p

주캐나다대사의 1974년 중 공관의 주요 외교활동 보고임.

### 1. 진필식 주캐나다대사의 외교활동

- ※ 1.8.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총국장장 오찬, 긴급조치의 불가피성 등을 설명
- ※ 1.10. 토론토대학 총장 면담, 한국정세 설명 및 국제정세에 관해 의견교환
- ※ 1.11. 토론토에서 지역홍보대책위원회 개최
- ※ 1.18.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총국장장 면담, 대북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 등에 관해 설명
- ※ 1.23.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총국장장 면담, 호주의 대북한 외교정책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 1.28.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총국장장 면담, 주한 캐나다대사관의 무관배치 등에 관해 협의

1112

### 2. 김영주 주캐나다 신임대사의 외교활동

- ※ 2.21.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총국장장 신임 예방, 북한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
- ※ 2.22. 수출개발공사 총재 예방, 양국간 경제협력문제 협의
- ※ 2.25. 외무부 차관 및 차관보 면담
- ※ 3.7. 트뤼도 캐나다 수상 외교담당 특보 예방
- ※ 3.14. 트뤼도 수상 예방
- ※ 8.14. 원자력공사 사장 면담
- ※ 8.20. 상공차관보 면담
- ※ 8.23. 캐나다 수출진흥회의 주재(몬트리올)

# 공관활동보고 - 고오베(神戸, 일본) 총영사관

| 74-103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O-41 / 5 / 1~29p

주고베총영사관의 1974년 중 공관의 주요 외교활동 보고임.

## 1. 이보형 주고베영사의 외교활동(1~6월)

- ※ 1.4. 신년 시무식 개최, 사카이 주고베 지사 주최 신년식 참석
- ※ 1.5. 병고현 민단 본부 방문
- ※ 1.12. 한·일본 친선학생농구대회 참석
- ※ 1.16. 한·일본 친선의원연맹회장 접견
- ※ 2.9. 한국 상공인 회장 접견
- ※ 2.22. 병고현 대한부인회 주최 시국강연회 참석
- ※ 3.12. 고베 민단단장 접견
- ※ 3.20. 고려미술화랑 창립 3주년 기념전람회 개관식 참석
- ※ 3.28. 고베 상은 정기이사회 참석
- ※ 5.9. 고베 상의 주최 영사단 월례오찬회 참석
- ※ 5.22. 병고현 한국청년상의회장 접견
- ※ 5.27. 고베 입국관리소 간부 초청 오찬 주최

## 2. 김진하 주고베총영사의 외교활동(9월 이후)

- ※ 9.28. 가와시키중공업 고문 접견
- ※ 10.16. 아мага사키 한국인 상공회 주최 상공인 간담회 참석
- ※ 10.18. 병고현 한일친선연맹 회장 접견
- ※ 10.21. 아мага사키 시장 주최 영사단을 위한 만찬회 참석
- ※ 10.26. 아이오이 한국인 회관 건립 유공자 표창식 참석

111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공관활동보고 - 센다이(仙臺, 일본) 영사관

| 74-103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일본담당관
MF번호	O-41 / 6 / 1~9p

주센다이영사관의 1974년 중 공관의 주요 외교활동 보고임.

### 1. 주센다이영사의 주요 활동(2월)

- ※ 2.18. 민단 미야기 지방 본부 사무국장 접견, 교육문화센터 소장 접견
- ※ 2.20. 민단 미야기 지방 본부 의장 접견
- ※ 2.21. 국제승공연합 미야기 지방 본부장 접견
- ※ 2.23. 민단 후쿠시마 지방 본부 총무부장 접견

1114

### 2. 주센다이영사의 주요 활동(10월)

- ※ 10.14. 민단 미사와 지부 방문 및 단장 주최 오찬 참석
- ※ 10.15. 무라 아오모리현 총장 방문, 조난 선박 구조 공로 치하
- ※ 10.17. 민단 미야기 지방 본부 부단장 접견
- ※ 10.22. 이와메 상은 운영 대책협의회 참석



# 공관활동보고 - 요코하마(横浜, 일본) 총영사관

| 74-1033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O-41 / 7 / 1-69p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의 1973~74년 중 공관의 주요 외교활동 보고임.

## 1. 주요코하마총영사관 이영사의 활동(1973.11~74.5월)

- ✻ 73.11.23. 민단 상서 지부에 출장, 교민간담회 개최
- ✻ 11.26. 가나가와현 한국인 상공회 합동이사회 참석
- ✻ 74.1.6. 민단 쓰루미지부 신년회 참석
- ✻ 1.9. 가나가와현 지사 주최 영사단을 위한 신년 리셉션 참석
- ✻ 1.14. 가나가와현 한일우호협력회 부회장 접견
- ✻ 1.16. 가나가와현 한일우호협력회 임시총회 참석
- ✻ 2.1. 가나가와현 한일우호협력회 사무국장 접견
- ✻ 2.23. 요코하마 무역협회장 방문
- ✻ 3.1. 제55회 3.1절 기념 관동지구 합동국민대회참석
- ✻ 3.28. 국제수입박람회 참석
- ✻ 4.5. 민단 지방본부 등과 조총련 대책 협의
- ✻ 4.18. 요코하마 지방세관장 방문
- ✻ 4.19. 가나가와현 한국인 상공회 정기총회 참석
- ✻ 5.18. 가나가와현 한일우호협력회 창립1주년 기념 친선원유회 개최

## 2. 주요코하마총영사의 활동(1974.6월 부임 이후)

- ✻ 7.8. 가나가와현 지사 예방
- ✻ 7.10. 민단 가와사키 지부 단장 접견
- ✻ 7.25. 시즈오카현 민단 본부 순시
- ✻ 8.20. 한일우호협력회장 예방
- ✻ 8.28. 요코하마 상은 이사장 주최 만찬 참석
- ✻ 9.1. 관동대지진 한국인 희생자 위령제 거행
- ✻ 10.12. 미 해군 극동 수송사령부 주최 창설 기념 리셉션 참석
- ✻ 10.29. 일본 천황 주최 원유회 참석
- ✻ 11.19. 가나가와현 한일우호협력회 주최 만찬 참석

111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공관활동보고 - 일본

| 74-103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O-41 / 8 / 1~192p

주일본대사관의 1974년 중 공관의 주요 외교활동 보고임

### 1. 윤하정 주일본대사대리의 주요활동(1월)

- ※ 1.7. 오히라 일본 외상 주최 만찬 참석
- ※ 1.21. 외무성 조약국장 면담
- ※ 1.22. 아주국장 면담
- ※ 1.28. 외무성 정보문화국장 면담

1116

### 2. 김영선 대사의 주요활동(2월부임 이후)

- ※ 2.1. 민단중앙총본부 방문
- ※ 2.28. 외무차관 방문, 유엔에 관한 입장 설명
- ※ 3.1. 제55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 ※ 3.6. 방위청장관 예방
- ※ 3.9. 천황에게 신임장 제정
- ※ 5.2. 외무성 정무차관 면담
- ※ 5.17. 관방장관 예방
- ※ 5.28. 한일문화 간친회 좌담회 참석
- ※ 5.31. 오히라 외상 예방
- ※ 6.28. 농림장관 예방
- ※ 7.23. 외무차관 주최 오찬회 참석
- ※ 7.24. 토시오 신임 외상 예방
- ※ 8.24. 다나카 수상 예방
- ※ 9.9. 외무차관 면담
- ※ 9.27. 일본 국민회의 월례회의에서 한일관계 강연
- ※ 10.16. 아시아대학에서 한일관계 강연
- ※ 11.27. 사토 전수상 방문
- ※ 12.2. 외무차관 예방

# 공관활동보고 - 라오스

| 74-1035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동남아
MF번호	O-41 / 9 / 1~99p

주라오스통상대표부와 주라오스대사관(7월 이후)의 1974년 중 주요 공관외교활동 보고임.

## 1. 주라오스통상대표부의 주요활동(1~7월)

- ※ 1.7. 공공사업 및 교통장관 예방
- ※ 1.9. 체신장관 예방
- ※ 1.21. 통상대표부 창설 기념 리셉션 개최
- ※ 1.29. 외무성 정무국장 방문, 통상 및 기술협력협정 체결 협의
- ※ 2.11. 경제기획담당 국무장관 예방
- ※ 4.12. 연정 외교차관 면담
- ※ 5.13. 재무장관 예방
- ※ 5.28. 국방장관 예방
- ※ 6.18. 재무장관 내외 초청 만찬 주최
- ※ 6.22. 국교수립 공동성명서 서명

## 2. 주라오스대사관의 주요활동(7월 이후)

- ※ 7.18. 재무장관 예방,
- ※ 8.13. 외무차관 면담, 라오스 정세 등 의견교환
- ※ 8.28. 국방장관 예방, 국군의 날 행사 참석 문의
- ※ 9.7. 국회부의장 예방
- ※ 9.12. 국방장관 예방
- ※ 10.8. 공보성 차관보 방문
- ※ 10.11. 외무성 정무국장 면담, 유네스코 관련 협의
- ※ 10.23. 부수상 겸 문교장관, 국방장관 예방
- ※ 10.24. 재무장관 예방
- ※ 10.25. 외무장관 예방
- ※ 11.14. 국민의회 부의장 방문

111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공관활동보고 - 루안다

| 74-103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O-41 / 11 / 1~45p

주르완다대사대리의 1974년 중 공관의 주요 외교활동 보고임.

## 1. 외무부 접촉 활동

- ※ 1.10. 외무장관 예방
- ※ 1.21. 외무차관, 의전장 면담
- ※ 1.29. 외무장관 예방
- ※ 3.14. 국제관계국장 면담
- ※ 3.27. 협력국장 면담
- ※ 4.19. 의전장 방문
- ※ 5.21. 외무장관 예방, 유엔총회문제 등 협의
- ※ 6.19. 국제관계국장 면담,
- ※ 6.29. 경제국장 및 의전장 내외 초청 만찬
- ※ 8.19. 외무차관 면담, 유엔총회에서 지지 요청
- ※ 8.29. 국제관계국장 면담
- ※ 8.30 외무차관 면담
- ※ 10.14. 김동휘 사절단 일행과 대통령, 외무장관 면담

## 2. 기타 접촉 활동

- ※ 1.11. 재무장관 주최 리셉션 참석
- ※ 3.19. 국립은행 외환국장 접견
- ※ 3.25. 농무차관 예방
- ※ 4.23. 경제기획장관 예방
- ※ 6.8. 대통령 주최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대통령 환영 리셉션 참석
- ※ 7.29. 보건사회부 주최 세미나 참석
- ※ 8.15. 경축 리셉션 개최
- ※ 10.24. 제혁공장 기공식 참석
- ※ 10.26.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 ※ 11.14. 한유동 대사와 함께 대통령 예방
- ※ 11.26. 체신장관 예방

# 공관활동보고 - 미국

| 74-1037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북미1/정보1
MF번호	O-41 / 12 / 1~162p

주미국대사의 1974년 중 공관의 주요 외교활동 보고임.

## 1. 국무부 접촉 활동

- ※ 1.21. 합병준 주미국대사 취임식 개최, 국무장관 대리 면담 신임장 사본 제출
- ※ 2.20.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 예방
- ※ 2.21. 국무부 자문관 예방
- ※ 2.27. 군사정치국장 면담
- ※ 3.20. 김동조 외무부장관 수행 키신저 국무장관 예방
- ※ 4.10. 안보원조담당차관 예방
- ※ 4.20. 소맥무역협약 서명
- ※ 4.25., 5.29., 6.26. 잉거솔 차관보 예방
- ※ 7.22. 아태담당 부차관보 예방

## 2. 기타기관 접촉 활동

- ※ 1.25.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과 오찬
- ※ 1.30. 닉슨 대통령 연두교서 발표 상하원 합동회의 방청
- ※ 2.3. 우드로 윌슨 센터 개최 스미소니언 학자 만찬회 참석
- ※ 2.11. 농무장관 예방
- ※ 2.12. 상무장관 예방
- ※ 2.14. 하원의장 예방
- ※ 2.15. 콜롬비아대학 주최 한국문제 세미나 참석
- ※ 2.21. 헬름스 상원의원 예방
- ※ 3.4. 캔사스 시장 접견
- ※ 3.8. 아시아학회에서 연설, 상무차관과 오찬
- ※ 4.10. 수출입은행 총재 예방
- ※ 5.2. 국방부 부차관보 오찬
- ※ 5.8. 대법원장 예방
- ※ 6.8. 워싱턴 지구 한인종교지도자 초청 만찬
- ※ 6.25. 알링턴 묘지 6·25 참전용사 헌화

111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공관활동보고 - Agana(미국) 총영사관

| 74-103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담당관/정보1
MF번호	O-41 / 13 / 1~85p

주호노를루총영사관 관출장소 및 주하갓나영사관(5월 이후)의 1974년 중 공관의 주요 외교활동 보고임.

### 1. 주호노를루총영사관 관출장소의 활동(1~4월)

- ※ 1.1. 신년 조찬회 개최
- ※ 1.4. 괌 지사 주최 신년 오찬회 참석
- ※ 2.4. 괌 지사의 의회 연설 방청
- ※ 3.18. 미국 적십자사 괌 지사 간부진 접견
- ※ 4.3. 괌 영사단 월례회의 참석
- ※ 4.10. 괌 정부 주최 자매결연 주간행사 참석
- ※ 5.6. 미 해군 병원장 이취임식 참석

### 2. 주하갓나영사관의 활동(5월 이후)

- ※ 5.23. 제5차 괌 경제회의 개회식 참석
- ※ 6.7. 미 해군사령관 이취임식 참석
- ※ 6.18. 퍼시픽 데일리 뉴스 주필 면담
- ※ 6.25. 제24주년 6·25 기념 헌화식 거행
- ※ 7.14. 괌 해방 30주년 축하행사 참석
- ※ 10.31. 미 해군사령관 예방
- ※ 11.14. 한인회장단 접견

# 공관경제통상 동향보고 - 카메룬

| 74-1039 |

생산연도	1974-1975
생산과	통상2
MF번호	O-41 / 15 / 1~10p

## 1. 주카메룬대사는 카메룬 경제기획 및 국토개발장관이 1974.2.13.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1960년 독립 이후 카메룬의 경제개발성과” 를 외무부에 보고함.

- ✿ 기본 경제정책
  - 1960~80년 20년동안 국민소득 배가를 목표로 경제개발계획 추진
  - 1976년 제3차 5개년 계획의 종료와 동시에 제4차 계획 추진
  - 1971~72년 276%의 성장 달성
- ✿ 통상
  - 1972~73년도 280%의 수입 증가, 246%의 수출 증가
- ✿ 1차 산업
  - 13년간 300억 프랑 투자, 야바시 바광 사업 계획 등 추진
- ✿ 2차 산업
  - 13년간 200억 프랑 투자, 카메룬 횡단 철도 건설 진행
- ✿ 교육 후생
  - 독립 후 교육에 120억 프랑, 의료분야에 60억 프랑 투자
- ✿ 중국(구 중공)의 원조
  - 180억 프랑의 차관으로 문화센터, 댐 건설

## 2. 주카메룬 대사는 1975.1.23. 카메룬 및 나이지리아의 경제개황(인구, GNP, 무역액 등) 자료를 외무부에 보고함.

112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공관경제통상 동향보고 - 캐나다

| 74-104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O-41 / 16 / 1~27p

주캐나다대사관의 1974년도 3/4분기 경제통상보고서 내용임.

## 1. 캐나다 경제사정 일반

### ✿ 무역 개황(10월말)

- 수출: 총수출액 263억 달러로 73년도 동기간 대비 28% 증가, 대미국 수출이 24.5% 증가
- 수입: 총수입액 257억 달러로 73년도 동기간 대비 35% 증가, 대미국 수입이 29% 증가

### ✿ 물가 동향(8월말)

- 일반 도매물가 지수: 7월 대비 1.4% 증가 469.3 기록
- 소비물가 지수: 7월 대비 1.0% 증가 169.6 기록

## 2. 한·캐나다 양국간 통상

### ✿ 일반

- 9월말까지 수출 실적은 1.2억 달러
- 73년도 동기 대비 약 58% 증가

### ✿ 수출 호조 품목

- 참치 등 어패류, 양송이 통조림, 합성수지 가방, 합판, 어망지, 전자제품, 신발류

### ✿ 신규 유망 품목

- 식탁용 도자기 제품, 낚시대 등



# 공관경제통상 동향보고 - 이탈리아

| 74-1041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경제협력
MF번호	O-41 / 17 / 1~11p

주이탈리아대사관의 1974.4월 경제통상보고서 내용임.

## 1. 일반경제 추세 및 전망

- ※ 74년도 1/4분기 경제 개황
  - 내각의 해산 등 정정불안, 물가의 급등, 만성화된 노동쟁의, 유류난으로 인한 공업활동 위축, 국제수지 적자 확대 등 문제로 요약
- ※ 경제지수
  - 생계비 133.0으로 전년 대비 13.2% 상승
  - 도매물가 73년 대비 25.4% 상승
  - 국제수지는 차관도입으로 인해 악화

## 2. 환율정책 등 국제통화문제

- ※ 2중환율제 폐지
- ※ 외환관리법의 보완
- ※ 금융: 할인율의 인상

## 3. 한·이탈리아 통상진흥

- ※ 수출입 시장의 변동
- ※ 특정 산업별 및 한국 상품 수출가능분야 등

112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공관경제통상 동향보고 - 리비아

| 74-104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O-41 / 18 / 1~12p

주튀니지대사관(리비아 겸임)의 1974.9월 리비아 통상경제관계 보고서 내용임.

## 1. 리비아 무역정책 및 시장성

- ※ 시장다변화 노력
  - 수입의 50% 이상이 구주공동체로 편중되어 아시아 등으로 수입 시장의 다변화 추구
- ※ 품목제한
  - 원칙적으로 품목의 제한없이 수입 가능
- ※ 무역 계획
  - 3개년 개발계획에 책정된 개발제 수요품목의 수입에 최우선
- ※ 시장 규모
  - 인구는 200만에 불과하나 원유 가격의 급등으로 실제 시장 규모는 상당

1124

## 2. KOTRA(무역진흥투자공사) 사무소 설치 문제

- ※ 국내법상 외국인 또는 외국상사의 지사에 대해 독자적 상거래 불인정
- ※ KOTRA의 독자적 사무소 개설 활동은 불가능
- ※ 양국 정부 차원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사무소 설치 추진 모색

## 3. 트리폴리 국제박람회 참가 문제

- ※ 75년도 박람회 참가 신청을 구두로 의사 표시
- ※ 75년도 박람회에서는 소비재 중심에서 탈피, 리비아의 경제개발에 기여 가능한 품목으로 전환

## 4. 수입상의 애로사항 해결

- ※ 은행결제의 지연, 우편통신의 지연, 해운상의 난점 등이 애로
- ※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 공관경제통상 동향보고 - 스페인

| 74-104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경제협력/남구담당관
MF번호	O-41 / 19 / 1~13p

주스페인대사관의 경제활동보고서(1974.1~4월) 및 한·스페인 민간경제인협의회에 관한 내용임.

## 1. 경제활동보고서

- ※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의 요청에 따라 1974.3.~4월 서울에서 제1차 민간경제인협의회 총회를 개최하는 문제에 대한 스페인 측 의견 타진(1.9)
- ※ International Trade Mart 사무총장을 면담, 한국상품 선전영사회 개최문제, 정책무역회사인 Intercomsa와 한국 종합무역상사 간 합작 추진문제 등을 협의(1.14)
- ※ 스페인 최대의 백화점 Corte Inglee 관계자를 면담, 구매사절단 방한 문제 협의(1.23)
- ※ Centro Sun Yat-sen 책임자(전 주대만대사대리)를 접촉, 대만과 스페인 간 교역 현황 파악(4.15)
- ※ 주스페인 일본대사관 경제담당관을 접촉, 일본과 스페인 간 경제관계 현황 파악 및 스페인 주재 일본상사의 분포 및 활동상황 청취(4.16)
- ※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을 면담, 1974.5월 서울 개최 제1차 한·스페인 수산공동위 회의 참가 스페인대표단의 방한 일정 및 대표단 구성 등을 확인(4.17)

## 2. 한·스페인 민간경제인협의회

- ※ 외무부는 1974.24. 상공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 제1차 한·스페인 민간경제인협의회 총회 개최와 관련, 스페인 상공회의소 측은 진행 중인 회장 선거가 끝나야 화신이 가능한 상황임을 알리면서 직접 스페인 측과 연락하여 일정을 협의토록 요청

112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재외교민회관 건립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실태

| 74-1044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재외국민
MF번호	P-13 / 1 / 1~85p

재외한인단체의 한인회관 건립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내용임.

1. 주아르헨티나대사(파라과이 겸임)는 1974.3.22. 외무부에 파라과이 교민회가 한인회관 건립을 위해 2만 달러를 자체 모금하였으며, 정부에서 2만 달러를 보조하여 줄 경우 동 회관 건립이 가능함을 보고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건의함.

※ 파라과이 교민회장은 4.18. 대통령 앞 진정서에서 지원을 호소

※ 외무부는 동 진정에 대해 예산 사정상 1974년 중 지원이 불가함을 회신하도록 주아르헨티나 대사에게 지시

2. 감사원이 1974.2월 지적한 해외에서의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불철저 사례는 아래와 같음.

※ 캐나다 한인회관

- 제1차 연도(1972~73년)에 대지 구입(40,000달러) 및 건물 건축(72,000달러)을 위한 국고보조금(49,323달러)을 교부하였으나, 자기부담금을 부담치 아니하여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브라질 한인회관

- 건립 제1차 연도(1972~73년)에 대지 구입(35,000달러)과 건물 건축(200,000달러)을 위한 국고보조금 100,000달러를 교부하였으나, 대지만 매입하고 건축은 착공하지 않고 있음.

※ 오키나와 한인연합교회

- 한인연합교회 건립(121,000달러)을 위한 국고보조금 2,000달러를 교부하였으나, 자기부담금을 부담치 아니하여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재외국민 교육 기본정책

| 74-1045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재외국민
MF번호	P-13 / 2 / 1~181p

재외국민 교육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는 1973.1.4. 재외국민 교육 정상화방안에 관해 주일공관장회의에서 논의, 건의된 내용을 문교부에 송부하여 참고하도록 함.

2. 문교부는 1973.7.13. 재외국민 교육 정책수립을 위해 재외국민 교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한 재외교포 교육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하면서 의견을 요청함.

※ 기본 방향

- 현지에서의 적응 능력 배양

※ 결론

- 현지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현존 한국학교를 폐지
- 학교 폐지에 선행, 대규모 교육문화센터를 건립, 민족의식을 고취

3. 주일본대사는 1973.12.7. 동경에서 개최된 공관장 회의에서 재일 한국학교의 폐지는 현시점에서 곤란하며 현존 학교의 유지는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본 전 지역에서의 문화센터의 증설이나 규모 확대는 적극 추진되어야 함을 건의함.

4. 외무부는 1974.1.14. 재외국민 2세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일본 주재 공관과 재외교포 지도자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문교부에 송부함.

- ※ 현존 한국학교의 폐지는 부적당하며 한국학교의 시설 및 내용을 강화, 교포 2세의 취학도도 필요
- ※ 교포 2세의 모국 유학 용이화 및 우수자에 대한 장학제도 강화
- ※ 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필요

5. 문교부는 1974.2.14. 재외국민 교육현황 자료를 최신 내용으로 갱신하여 주기를 외무부에 요청함.

## 재외국민 선도대책 수립추진

| 74-1046 |

생산연도 | 1973-1974

생 산 과 | 구주/교민1

MF번호 | P-13 / 3 / 1~207p

1. 재미교포 선도대책에 관한 1973.7.16. 자료는 북한의 재미 교민사회 침투를 봉쇄하고 일부 교민의 반정부 활동을 선도, 저지하여 10만 교민이 국가정책에 호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함.

※ 재외공관의 대교민 봉사자세 강화, 교민 단결 육성, 지역별 교민회 육성, 유학생 지도, 교민학교 설치 육성 등을 대책으로 제시함.

1128

2. 교민육성 사업에 관한 1974.7월 자료는 교민 정책의 기본목표를 거주지역에서의 정착 및 생활안정, 교민 간의 융화단결조성, 북한의 교민사회 교란 방지, 모국과의 유대 강화에 두고 있음.

※ 1975년도 교민육성 사업으로 재외공관의 영사특별활동 강화, 재외국민 보조금 지급, 재외국민의 모국과의 유대 강화, 재일국민 지위 향상 등을 제시함.

3. 재외국민 선도대책에 관한 관계부처 실무자회의가 1974.9.11. 외무부에서 개최됨.

※ 재외국민 현황과 교포 동향, 민단의 강화 등 재일국민 선도 대책, 교포 2세 교육시책 등에 관해 논의함.

4. 본 문서철에는 평가 교수단에 의한 교민 정책 평가자료인 '교민현황과 시책방향(74.10월)'이 수록되어 있음.

※ 재외국민 및 교민단체 현황, 교민시책, 교민문제 취급기관, 문제점 및 대책 등이 포함됨.

# 재외교민 실태조사단 파견

| 74-1047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P-13 / 4 / 1~220p

재외교민 실태조사단 파견에 관한 내용임.

## 1. 국회 외무위원으로 구성된 재일본 교민 실태조사단이 1974.6.27.~7.21. 일본을 방문함.

- ✿ 조사단 구성
  - 주영관 의원(단장), 오세웅 의원, 김택하 의원, 김종득 전문위원
- ✿ 중점 조사대상
  - 조총련의 교민사회 침투 현황, 사할린 교포 실태, 민단의 조직 상태, 교포 중소기업 실태, 정부의 대교민 홍보활동 성과, 재일국민 2세 교육 현황 등
- ✿ 방문 지역
  -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센다이, 니가타, 요코하마 등

## 2. 국회 박준규 의원(제61차 IPU 총회 참석 대표단장) 등으로 구성된 이민, 취업, 교포 실태조사 및 교섭단이 1974.10.3.~10. 일본을 방문함.

## 3. 일본지역 승공지도 특별순회강연 및 교민실태조사단(3개반)이 1974.10.24.~11.5. 일본의 14개 지방을 방문하여 강연회, 영화 상영, 간담회 개최 등 활동을 전개함.

## 4. 김세련 국회 외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교민실태조사단이 1974.12.30.~75.1.13. 동남아지역을 순방함.

- ✿ 조사단 구성
  - 김세련 위원장 외 의원 4명 및 전문위원 1명
- ✿ 조사 대상지역
  -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월남, 대만(구 자유중국)

## 재일본 한국인 차별대우 문제

| 74-104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재외국민/동북아1
MF번호	P-13 / 5 / 1~31p

재일교포가 일본 히타치 회사의 입사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국적 문제로 합격이 취소된 사안에 대해 일본 재판소가 해고조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동 교포의 입사가 결정됨.

### 1. 한국의 기독교연합회가 재일교포의 일본 히타치사 합격 취소에 항의하기 위해 히타치 제품 불매운동을 결의하고 1974.5.18.부터 가두 캠페인을 벌이기로 함.

※ 외무부는 주일대사관 등에 동 합격 취소 이유 등 내용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 주요코하마총영사는 재일교포 박종석이 1970.8월 히타치 입사시험에 합격하고 9.2. 채용통지서를 접수하였으나, 입사 수속을 위해 제출한 호적등본상의 성명이 응시원서의 일본 이름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9월 중순 채용 취소통고를 받고 동년 12월 해고조치 무효확인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음을 보고

### 2. 주요코하마총영사는 요코하마 지방재판소가 1974.6.19. 히타치의 입사 거부 행위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시하고 해고조치의 취소와 동시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을 보고함.

### 3. 주일본대사 및 주요코하마총영사는 박종석이 히타치와의 협의를 통하여 1974.9.2. 동 사에 입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함.



# 재일본 민단 확대 간부회의 개최계획

| 74-1049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교민
MF번호	P-13 / 6 / 1~171p

## 1. 주일본대사는 제2차 민단강화대책회의를 1974.7.10. 전후 한국에서 개최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민단 중앙본부의 건의를 6.20. 외무부에 보고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개최 필요성, 효과, 안건, 참석 범위 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건의하도록 지시

## 2. 주일본대사는 민단과의 협의를 거쳐 1974.7.8.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필요성

- 1969년 제1차 민단강화대책회의 개최 시 매년 개최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조총련의 공세 추세에 대처하여 민단의 체제 강화 및 사기 진작 필요

※ 효과

- 연례회의 개최로 민단이 정부와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신뢰감과 지지도 고양  
- 본국 시책에 대한 인식과 교민 지도의 능률화 도모

※ 안건

- 민단 간부 교육 및 후계 간부 양성 대책  
- 조총련의 공세 대처를 위한 대책 및 정부 지원  
- 재일국민 2세 교육을 위한 모국 내 단기대학 설치 문제  
- 재일국민의 법적지위 향상  
- 재일국민 지도육성을 위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민단을 통한 창구 일원화 문제 등

## 3. 외무부는 1974.8.7. 주일본대사에게 민단이 주관하고 외무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1974.8.29.~30. 서울에서 민단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통보함.

## 4. 주일본대사는 1974.8.23. 민단 측이 민단회의의 연기를 요청하여 왔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 74-105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13 / 7 / 1~374p

태평양전쟁 전몰 재일본 한국인 유골의 봉환 교섭 및 인도에 관한 내용임.

## 1.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계획이 1974.1.25. 국무회의에서 보고됨.

- ※ 일본 후생성에 보관중인 태평양 전쟁 전몰 한국인 유골 2,083주를 인수하여 부산 금정사에 봉안한 후 유족에게 인도
- ※ 구체적 대일본 교섭 개시
- ※ 향후 유가족의 확인 및 유골의 인수, 봉안 등 계획 시행

1132

## 2. 외무부는 1974.1.21. 전몰 한국인 유골의 인수범위, 봉환책임 등 구체적 방안에 관해 파악할 것을 주일대사에게 지시함.

- ※ 주일본대사는 2.2. 일본 측 보관 한국인 유골 명부를 외무부에 송부

## 3. 일본 측은 1974.10.26. 한국 측의 일괄인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한국 측이 일본에 제공한 유가족 신고자 명부에 따른 일괄 인수, 인도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 ※ 외무부는 11.2. 보건사회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 한국 측이 제공한 968명의 명부 중 일본 측 자료와 일치하는 835주에 대해서는 일괄 인도를 받고, 잔여분은 양국간의 착오가 보정되는 대로 인도받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함.
- 이에 따라 외무부는 11.6. 주일본대사에게 835주의 봉환 시기 등에 관해 교섭할 것을 지시함.

## 4.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세부시행계획이 1974.12.16 국무회의에 보고됨.

- ※ 일본 후생성 보관 유골 중 12.10. 유족이 확인된 911주를 우선 정부가 일괄 인수하여 유족에게 인도할 계획
- ※ 유골의 봉환(12.20.) 및 위령제 거행(12.21.)
- ※ 향전금으로 유골 1주당 정부 지원금 1만원과 일본 정부 지급금을 합하여 지급

#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관련 민원

| 74-1051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13 / 8 / 1~75p

재일본 한국인 유골 봉환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처리 내용임.

## 1. 1974.2.6., 2.12., 4.11.자 진정서에 대한 답변

- ※ 최근 발표한 명단은 일본 정부에서 보관 중인 한국인 유골 전부이며, 강제 징용 등으로 원통하게 사망함에도 당시의 혼란한 상황으로 유해를 찾을 길이 없어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함.

## 2. 1974.2.9., 4.19.자 진정서에 대한 답변

- ※ 일본 정부와 외교교섭이 끝나는 대로 유골을 인수해 올 방침이며, 상세 내용은 보건사회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 3. 1974.4.22.자 진정서에 대한 답변

- ※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중공업공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200여 명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 귀국 중 풍랑으로 선박이 난파되어 전원 익사하고 익사체가 대마도 등지에 매장된 것과 관련, 정부는 일본 측에 조사하여 주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임.

1133

대한민국외교자료해제집

## 재사할린 동포 귀환 교섭

| 74-1052 |

생산연도 | 1974-1975

생 산 과 | 동북아1

MF번호 | P-13 / 10 / 1~149p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을 위해 일본 측이 소련과 교섭을 하였으나 동 문제가 일본·소련 간의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소련 측의 반응으로 좌절됨.

1. 주일본대사는 일본 외무성이 1974.1.22. 한국 귀환을 희망하는 사할린 동포 45세대 201명의 명단을 제시하고 한국 측이 이들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소련 정부와 송환교섭을 하겠다고 제의하여 왔음을 보고함.

1134

※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동인들의 일본 귀환 후에 귀국 의사를 확인하여 인수할 것임을 일본 측에 회보하도록 주일본대사에게 지시

2. 일본 측은 1974.3.18. 한국 귀환 희망자들을 한국이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명하여 주는 것이 귀환 촉진에 필요하며 그 다음 단계로 소련과 협의할 것임을 한국 측에 알려줌.

※ 한국 측은 5.8. 한국 귀환 희망자들의 입국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통보

3. 일본 외무성은 1974.11.13. 주일본대사관에 사할린 동포 귀환에 관한 대소련 교섭 경과를 아래와 같이 설명함.

※ 일본 측이 귀환 희망자 명단을 소련 측에 제시하면서 출국을 허가하도록 요청

※ 소련 측은 한국 동포 귀환 문제는 일본·소련 간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공한 접수를 거부

# 재사할린 동포 귀환관계 진정서

| 74-105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13 / 12 / 1~169p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 관련 진정서에 대한 외무부의 회신 내용임(예시).

## 1. 1974.2.20. 회신

※ 해당인을 귀환 희망 사할린 교포명단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다른 경로를 통해 추가로 파악하겠음.

## 2. 1974.3.20. 회신(대한적십자사 총재 앞)

※ 서한을 사할린 거주 부친에게 발송하는데 이의 없음.

## 3. 1974.7.29. 회신(사할린 억류교포 귀환 촉진회 앞)

※ 동 촉진회에서 발표한 사항이 국내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어 교섭에 지장을 초래하고 귀환 실현에 방해 우려 있음.

## 4. 1974.12.28. 회신(사할린 억류교포 귀환 촉진회 앞)

※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대소련 교섭을 추진하도록 촉구하여 왔으며 일본 정부로서도 성의를 가지고 교섭에 임하고 있으나 소련의 비우호적 태도로 인하여 교섭이 난관에 처해 있음.

113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기타지역 재외국민단체 창설 및 활동

| 74-1054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재외국민
MF번호	P-13 / 13 / 1~55p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지역 일부 국가에서의 재외국민단체의 창설에 관한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임.

### 1. 대상 지역

※ 인도, 뉴질랜드, 코트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 쿠웨이트, 에콰도르, 볼리비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콜롬비아, 네팔

1136

### 2. 보고 내용

※ 교민단체 결성 보고서, 회칙, 사업계획, 명단 등

# 주아르헨티나 한국교민회관 건립

| 74-1055 |

생산연도	1973-1974
생산과	교민2
MF번호	P-13 / 14 / 1~45p

1. 아르헨티나교민회는 1974.3.5자로 교민회관 구입을 완료하고 4.6. 주아르헨티나 한국교민회관 개관식을 거행함.

## 2. 동 교민회관 구입현황은 아래와 같음.

### ☼ 계약관계

- 계약일: 1974.1.16.
- 건물인수: 1974.3.5.
- 구입가격: 350,000페소(약 35,000달러 상당)
- 소개료: 10,000페소

### ☼ 자금 조달 관계

- 한국 정부보조: 30,000달러
- 교민자체 모금: 약 20,000달러(201,250페소)
- 공관직원 보조: 1,000달러
- 기타: 600달러
- 총금액: 약 51,400달러(514,000페소)

### ☼ 건물 관계

- 건물 위치: Balbastro 615, Buenos Aires
- 건물구조: 2층 콘크리트 건물

113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주Sydney(호주) 한국교민회관 건립 추진

| 74-105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교민2
MF번호	P-13 / 15 / 1~7p

### 1. 주시드니총영사는 1974.1.28자 외무부장관 앞 서한으로 주시드니 한국교민회관 건립 추진을 건의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2월 동 총영사에게 아래 요지로 회신함.

- 교민회관 건립은 원칙적으로 교민 자체 성금으로 건립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정부에서 일부 지원함.
- 교민대표 및 유지들과 협의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민회관 건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 바람.

1138

### 2. 호주 한인회 특별운영위원회는 1974.3.29. 교민회관 건립을 위한 발기위원회를 구성함.

※ 동 발기위원회는 8.15. 정기총회에서 한인회 신입회장단이 구성될 때까지 교민회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을 한인회 이름으로 관장하기로 함.



# 주월남 한국 교민회관 건립

| 74-1057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재외국민
MF번호	P-13 / 16 / 1~6p

주월남대사관의 1974.5월 주월남 교민회관 건립에 관한 보고 내용임.

## 1. 회관건립 경위

- ※ 1972.11.4. 기공하여 1973.5.10.완공함.
- ※ 골조공사는 파월군 공병대에서 담당하여 시공함.
- ※ 건축에 소요된 자재는 국내 기업체로부터 기증받음.

## 2. 회관규모

- ※ 대지 190평, 건평 162평
- ※ 구조: 철근 콘크리트(본건물 150평, 부속건물 12평)
- ※ 정원면적: 약 70평

## 3. 건립비 및 자원조성

- ※ 대지가각: 13,340,000피(월남화)
- ※ 건축공사비
  - 현금 지출액: 18,900,000피
  - 기증자재환산액: 5,100,000피
- ※ 자원조성
  - 일반모금 및 특별찬조금: 24,230,000피
  - 정부보조금 및 자체적립금: 7,999,000피

## 4. 건물유지비 및 조달방법

- ※ 자체예산으로 조달함.

## 5. 건물의 법적 소유자

- ※ 본 건물은 대사관 부속건물로 되어있음.

113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문선명 전도사 및 통일교회 활동

| 74-105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P-13 / 17 / 1~26p

### 1. 주미국대사관은 1974.2월 문선명 전도사 및 통일교회 운동에 대한 미국 내 평판을 아래 요지로 보고함.

- ※ 미국 내 여론은 문 전도사의 활동(닉슨 대통령에 대한 용서와 단합 호소 등)에 매우 비판적임.
- ※ 통일교 신도 800여 명이 1.31. 백악관 근처 공원에서 닉슨 미국 대통령 지지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집회에서 닉슨 대통령의 장녀 및 사위가 기자회견을 함.
- ※ 미국 정부의 일각이나 여론은 한국 정부의 모 기관이 개입된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음.

1140

### 2. 주미국대사는 1974.2월 외무부장관 앞 친전으로 통일교가 닉슨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서는 것은 통일교가 미국의 국내정치 문제에 공공연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워싱턴포스트와 같은 언론기관의 통일교에 대한 공격을 격화시킬 것이라고 보고함.

- ※ 닉슨 반대세력은 통일교가 순수한 종교단체가 아니라 한국 정부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정치적 또는 공작적 성격을 띤 사이비 종교단체라는 방향으로 결론지으려 할 것임.
- ※ 따라서 한국 정부의 고위층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형태로 통일교의 지도층과 접촉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3. 외무부는 통일교가 해외여행 및 외환에 관해 한국 정부로 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는 등 한국 정부와 통일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시사한 1974.2.15.자 워싱턴포스트지 보도에 대해 적절히 해명하도록 2.22. 주미국대사에게 지시함.

## 재캐나다 반한단체 활동

| 74-1059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교민/복미1
MF번호	Re-37 / 12 / 1~15p

1. 이상철 한인연합교회 목사(캐나다 토론토 소재)는 1974.2월 긴급조치 위반으로 한국 내에서 구금된 자들의 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함.

※ 동 목사의 모금운동 권고에 따라 장범식 British Columbia 대학 교수는 가족돕기운동 서한을 밴쿠버 교민 120명에게 전달함.

2. 주밴쿠버총영사는 1974.3월 토론토에서 발간된 'The New Korea Times'(1,23.자) 및 '개헌청원 지지 서명운동 취지문'(1,23.자)이 밴쿠버 한인회 회원들에게 우송되었음을 보고함.

※ 상기 간행물 발간은 이상철 토론토 연합교회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 이상철 목사 등 7명이 1974.7.18. 주캐나다대사관 건물 앞 도로상에서 민청학련 관련자들에 대한 사형 구형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함.

114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독일 내의 반한 활동

| 74-1060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교민2
MF번호	P-13 / 19 / 1~165p

1. 독일 쾰른 대학에 재학 중인 배동인은 1974.2월 유신체제와 비상조치를 비방하는 내용의 '한국 국민을 위하여' 인쇄물(국문 210페이지, 독문 80페이지)을 작성, 배포함.
2. 재독일 목사(장성환,이화성) 및 배동인 등의 주동으로 1974.3.1. 서독 본 시내에서 개최된 반정부 시위에 교민 70여 명이 참석함.
  - ※ 시위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 비난 성명 낭독 및 구호제창 후 40분간 시가행진을 함.
3. 주합부르크총영사는 1974.3.21. 괴팅겐에 출장, 괴팅겐 한인회 회원들을 위한 영화제를 개최하고 동 회원들과 좌담회를 가짐.
  - ※ 괴팅겐 한인회는 반정부 행동을 위해 조직된 소위 '민주사회건설협의회' 발기 추천인으로 되어 있음.
4. 간행물 '주체' 발행인 오석근(서베를린 거주)은 1974.3월 김차규 신부에 대해 개인권리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4.16. 재판에서 원고 오석근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이 종결됨.
  - ※ 오석근은 동 신부가 동인의 미사 참석을 거부하고 미사 중 동인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하고 좌익활동을 위해 금전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것을 개인권리침해 사유로 들.
5. 소위 민주사회건설협의회가 주동이 된 반정부 집회가 1974.4.26.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개최됨.
  - ※ 교포 60여 명 및 독일 좌익계 동조인원 약 60명이 참석함.

## 반한인사 일본 내 활동

| 74-106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일본담당관실
MF번호	P-13 / 20 / 1~27p

1. 외무부는 1974.8.6. 주일본대사에게 문명자 전 중앙일보 미국 특파원 및 소위 '한국 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 이근팔 미국본부 사무총장이 일본에 입국,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보도의 진위를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일본 정부에 항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함.

- ※ 일본 법무성은 8.8. 문명자, 이근팔 양인이 일본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이들에게 동일 '김대중 사건 1주년 행사' 를 주최하는 '한국 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 를 통하여 경고함.  
- 문명자는 일본 법무성의 경고에 따라 동 행사에서 연설을 하지 못함.

2. 외무부는 1974.8.8. 주일본대사에게 일본의 해외공관이 문명자 및 이근팔에게 일본 입국 여행증명을 발급하고, 일본 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허가한 것은 비우호적인 조치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일본 측에 통보하고 이들의 즉각적인 국외추방을 요구할 것을 지시함.

- ※ 외무부차관은 8.9.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문명자, 이근팔에 대한 도항증명서 발급은 한·일본 양국간의 우호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중대한 처사라고 엄중 항의함.
- ※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명자는 8.10. 미국으로 귀국하였다 함.

114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재일본 반한단체 동향

| 74-1062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교민1/동북아1
MF번호	P-13 / 21 / 1~196p

1. 일본 내 반한그룹인 소위 베트콩 일파 등은 1974.3.2. 동경 닛쇼회관에서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정부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가두행진을 함.

2. 북한의 대미국 평화협정 제안을 지지하는 재일 조선인대회가 1974.3.30. 동경 히비야 공회당에서 약 1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아래와 같이 결의함.

- ※ 북한 인민최고회의의 제안 지지
- ※ 한반도에 있어서의 무력도발 반대
- ※ 조국의 자주적 통일 촉진

3.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발동 후 일본지역 반한교포의 동태는 아래와 같음.

- ※ '한국 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 일본 지부', '전 민단 동경본부', '구 한국청년동맹' 등 소위 '베트콩' 파 6개 단체는 1974.4월 아래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 긴급조치 제4호 발동 항의
  - 본국 학생들의 움직임 찬양
  - 김대중의 완전 자유회복 요구
- ※ 한덕수 조총련 중앙의장은 4.4. 기자회견에서 긴급조치 제4호 발동에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함.
- ※ 당시 좌익계 일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4인터' 소속 일본 대학생 6명 및 서승 석방을 요구하는 청년회 소속 청년 1명이 주일대사관 경비실에 아래 요지의 항의문을 놓고 감.
  - 한국의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의 활동 지지
  - 긴급조치 제4호 철폐
  - 무단 체포자 즉시 석방 및 보도관제 철폐
- ※ '한국청년동맹' 소속 청년 약 30명이 4.6. 주일본대사관 정문 앞에서 반정부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함.
- ※ '제4인터' 소속 일본 대학생 20여 명이 4.15. 한국 긴급조치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함.
- ※ 한국 국민 결기 연대 및 이승만 정권 타도 14주년 기념집회가 4.19. 학생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사카에서 개최됨.
- ※ '민주주의 민족통일위원회'는 4.21. 약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4.19. 혁명기념 및 4.3. 결기지원 재일 한국인 대회를 개최함.
- ※ 베트콩 그룹 소속 재일 한국동맹은 4.21.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조치 제4호 발동 항의 집회를 개최함.

# 재일본 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 간첩사건

| 74-1063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동북아1
MF번호	P-14 / 1 / 1~19p

## 1. '서승 형제를 구하는 회' 등 7개 단체 대표들은 1974.5.15. 주오사카총영사관에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서준식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함.

- ※ 외무부는 5.28. 이와 관련, 아래 요지의 관계부처 입장을 주오사카총영사관에 통보함.
  - 서준식을 고문 또는 학대한 사실이 없으며, 5.2. 동인의 모친 오기순이 면회를 통하여 서준식이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함.
  - 서준식에 대한 면회, 차입금품 접수, 서신의 자유왕래, 충분한 의료적 조치 등은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임.

## 2. 서승·서준식과 관련한 항의집회가 개최됨.

- ※ '서준식을 구제하는 회' 라는 단체 회원 15명이 1974.5.16. 주일본대사관 정문에서 서승 형제를 석방하라는 내용의 요망서를 낭독함.
- ※ '재일본 한국학생동맹 모국유학생 구제위원회' 소속 남녀학생 40명이 5.16. 주일본대사관 앞에서 서준식에 대한 고문항의 구호를 외치고 항의문을 놓고 감.

## 3. 1974.5.24자 아사히신문은 일본 각당 국회의원과 문화인 등이 중의원 회의실에서 집회를 열고 서준식에 대한 고문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음을 보도함.

- ※ 자민당, 사회당, 공산당, 공명당, 민사당 등 각당 의원 220명이 동 성명에 서명하였고, 75명의 학자·문화인 등이 고문에 강력히 항의함.

1145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전

1974

## 문명자 전 문화방송 미국 특파원 입국 허가 문제

| 74-1064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P-14 / 2 / 1~56p

1. 외무부는 미 국무부(1974.10.22.)와 주한 미국대사관(10.26.)에 대하여 문명자 전 워싱턴 특파원이 포드 미국 대통령 방한 시 수행기자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전 문화방송 워싱턴 특파원인 문명자는 1973년 망명을 운운한 사실이 있고 그 후에도 계속 반정부 언동을 행함.

2. 하비브 미 국무부 차관보는 1974.10.30. 주미국대사에게 문명자가 기자단 일원으로 방한하고자 한다면 미국 정부로서는 막을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고 사건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언급함.

※ 한국 정부가 문명자의 입국거부 조치를 취하느니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나으며, 이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기자들을 자극함으로써 문명자를 순교자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임.

3. 주미국대사는 1974.11.7. 문명자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내버려 두는 방향으로 대처한 것이 좋겠다고 외무부에 재차 건의한 바, 외무부차관은 11.11. 주한 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문명자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함.

4. 주미국대사관은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1974.11.16. 문명자에 대하여 백악관 수행기자들과 동일하게 체류기간 1개월의 사증을 발급함.



# Ogle, George E. 미국 목사 반한 활동 및 강제 퇴거

| 74-1065 |

생산연도	1974-1975
생 산 과	북미1/동북아1
MF번호	P-14 / 4 / 1~383p

1. 정부는 1974.12.14. 입국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를 한 George E. Ogle 미국인 선교사에 대하여 강제퇴거를 명령함.

2. Ogle 목사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외무부가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함.

- ✱ 법무부의 강제퇴거 발표에 따른 조치사항(1974.12.14.)
  - 주미국대사관에 법무부 발표문을 미리 타전하여 국무부 등 관계기관 및 인사에게 설명하도록 지시함.
  - 외무부차관이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초치, 강제퇴거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함(법무부 발표문 수교).
- ✱ 주미국대사의 하비브 미 국무부 차관보 면담(12.16.)
  - 하비브 차관보는 동 목사가 자기를 변호할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하고 동 목사의 동경 기착 시 대한항공 기장이 동 목사를 내리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함.
  - 주미국대사의 보고에 의하면 하비브 차관보는 다소 격앙된 어조였으며, 미 국무부가 종교계로부터 동 목사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받아서 당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함.
- ✱ 미하원 외무위의 청문회 개최(12.20)관련 조치
  - 주미국대사 및 공사는 미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동 목사 강제퇴거 경위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함.

3.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74.12.17. 브리핑에서 아래와 같이 논평함.

- ✱ 하비브 차관보가 주미국대사를 만나 Ogle 목사 건에 대해 관심과 유감을 표시하고 공황에서 있었던 일을 포함하여 몇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미국은 한국 정부로부터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음(12.18.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이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설명).

4. 미하원 외무위의 국제기구 분과위 및 아·태 분과위 공동 주관으로 Ogle 목사 청문회가 1974.12.20. 개최됨.

- ✱ 증인인 동 목사가 미리 준비한 증언 텍스트를 낭독하고 이어서 증인에 대해 강제퇴거 사유와 경위, 한국에서의 종교활동 및 인권문제 등에 관해 질의응답을 함.
- ✱ 주미국대사관은 동 청문회가 회기 마지막날인 12.20. 오후에 열려 참석의원도 3명 밖에 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함.

## 조총련 동향

| 74-106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재외국민
MF번호	P-14 / 5 / 1~365p

### 1. 제10회 조총련 전체대회가 1974.2.23.~25. 동경에서 개최됨.

- ※ 조총련 집행부를 선출함.
  - 한덕수 의장 재선 및 부의장 5명 재선
- ※ '김일성주의로 무장하고 조국통일실현에 전력을 다한다' 라고 결의함.

### 2. 제10차 조선청년동맹 대회가 1974.4.3. 동경에서 약 2,500명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 동 대회에는 탄자니아 청년동맹, 스웨덴 공산주의 청년동맹 등 14개국의 청년·학생단체 대표 25명이 참가함.
- ※ 네팔 외무부는 주카트만두총영사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동 대회에 참가 초청된 네팔 대표 2명에 대해서 참가를 불허함.

### 3. 조총련은 1974.6.25. 동경에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 즉시 철폐요구 및 박 정권을 규탄하는 조선인 중앙대회' 를 개최(약 5,000명 참가 추산)하고 대로를 행진함.

### 4. 조총련은 1974.7.4. 7·4 공동성명 2주년 기념 재일한국인 중앙대회를 개최함(약 2,000명 참가 추산).

- ※ 조총련은 민단에 공동집회를 제의하였으나, 민단이 이를 거절한 바 있음.

### 5. 조총련계 인사 150여 명은 자동차 98대와 선전차 3대에 분승하여 요코하마 시내에서 시위한 바, 동 시위자들의 구호 및 결의문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김지하 등과 일본인 학생 2명에 대한 사형 또는 20년형 선고 비난
- ※ 비상사태, 비상계엄령, 유신체제, 긴급조치 4호에 항의

### 6. 조총련계 인사 7,000여 명은 1974.9.20. 오사카 시내 공원에서 반한집회를 개최하고 시가행진을 함.

## 조총련계 인사 북한 방문

| 74-1067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14 / 6 / 1~28p

1. 1974.2.11.자 동경발 외신은 나카무라 일본 법상이 2.9.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10월 동경에서 개최되는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대책회의 명목으로 북한에 다녀올 예정인 한덕수 조총련 의장의 재입국을 허가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보도함.

※ 나카무라 법상은 한덕수 등에 대한 재입국 허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일본에서 IPU 총회가 개최된다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변함.

2. 1974.4.2.자 아사히신문은 일본 법무성이 '재일 조선예술인 조국방문단' 147명의 재입국을 허가하였음을 보도함.

※ 동 예술단은 4월 일본을 출발하여 3개월간 북한에서 순회공연할 예정임.

※ 주일본 대사관 관계관은 법무성 입관차장에게 동 방문단에 포함된 조총련의 정치적 인물(5명 정도)의 재입국이 허가된데 대해 항의함.

3. 조총련 중앙위 산업국장 등 중앙간부 10명이 1974.12월 소위 귀환사업 15주년 기념대회 참석차 북한을 방문한 바, 동인들의 재입국 허가기간은 45일임.

4. 일본 법무성은 3개월 예정으로 1974.12월 북한을 방문하는 조총련 중앙조직국 제1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총련 사회과학자 대표 16명에 대해 재입국을 허가함.

※ 구성원의 신원 및 방문기간에 비추어 교육훈련이 주목적인 바, 일본 법무성 당국은 이들의 동향에 세심한 관심을 가질 것이며, 특히 일본 귀환 후 반응을 주시할 것이라고 함.

114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전

1974

## 조총련계 인사 제3국 방문

| 74-106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14 / 7 / 1~6p

1. 조총련은 테헤란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1974.8월) 체육인 시찰단 명목으로 20명, 응원단 명목으로 60명에 대하여 일본 법무성에 재입국을 신청한바, 일본 법무성은 응원단에 대해서는 전원 불허하고 시찰단에 대해서는 16명에 대해서만 재입국을 허가함.
2. 일본 법무성 입관차장이 1974.9월 주일본대사관에 알려온 바에 의하면, 상기 아시안게임에 참가 예정이던 조총련 체육관계자 16명은 실제로 출국하지 않았다고 함.

1150

※ 출국하지 않은 이유는 미상이나 이란 입국시증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조총련계 인사의 미국 방문시도

| 74-106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14 / 8 / 1~19p

1.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은 1974.2.14. 외무부 미주국장에게 북한 국적자인 양명보(Ryang Mem-bo) 오사카대학 교수가 하와이대학에서 개최되는 미·일 화학세미나(74.5.1.~3.)에 참석하는 일본 학계 대표단의 일원으로 주일본 미국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하였음을 보고함.

※ 양명보는 북한 여권이 아니고 일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Certificate of Identity)를 소지함.

2. 주미국대사관 관계관은 1974.3.7.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면담, 상기 양명보가 조총련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동인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 동 과장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일본 주재 공관으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동인에 대한 좋지 못한 기록이 없으며, 그런 정도의 인물이 미국에 입국해서 해가 있을 수 없고, 한국 측이 그렇게 위험한 인물로 생각한다면 좀 더 일찍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하면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임.

3. 주일본대사관은 1974.3.8. 일본 법무성 담당과장에게 양명보가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바, 동 과장은 여행목적이 순수한 학술회의 참석일 경우에는 재입국을 불허하기가 곤란하다며 혹시 다른 색채가 내포되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함.

115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일본 내 조선교육재단의 재산환수 소송

| 74-1070 |

생산연도	1965-1974
생 산 과	조약/동북아1
MF번호	P-14 / 9 / 1~27p

## 1. 조선교육재단 재산환수 소송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 ※ 소송당사자
  - 원고: 조선교육재단
  - 피고: 조선장학회(조총련계)
- ※ 소송대상물
  - 조총련계의 조선장학회가 점유하고 있는 동경 소재(신주쿠) 택지 510평
- ※ 소송목적
  - 피고점유 소송대상물의 환수
- ※ 재심판결(1972.2.19. 동경민사지방법원)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원고 패소)
- ※ 항소제기
  - 3.8. 제17회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3.9. 동경민사고등법원에 항소제기

## 2. 동 소송의 경위는 아래와 같음.

- ※ 조선교육재단은 1927.2월 동경 신주쿠 소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함.
- ※ 일본국 내 법인인 조선장학회는 1960.12.13. 상기 재산을 조선교육재단으로부터 무상양도 받은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함.
  - 조선교육재단은 1945.8.15. 이후 휴면상태이었고 공습으로 등기부 손실
- ※ 정부는 1965.10월 조선교육재단의 상기 재산 환수소송을 지원하기로 한바, 조선교육재단은 12.18. 소송을 제기함.
- ※ 동경민사지방법원은 1972.2.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 문교부는 3.8. 국무회의 보고를 통하여 조선교육재단이 항소를 제기하도록 조치함(3.9. 항소제기).
- ※ 항소제기 이후 구두변론이 계속되어 왔으며 1974.7.10. 제1차 구두변론이 있었는바, 원고 측의 변론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조선교육재단이 소송대상 부동산을 무상 양도한 사실이 없음.
  - 조선교육재단은 1964.12.31. 이전에도 재단활동을 한 사실이 있음.
  - 1964년 이전 조선교육재단 관계자 및 주일대표부 관계자를 원고 측 증인으로 함.

# 브라질 해상에서의 한국 원양어선 피납

| 74-1071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조약
MF번호	P-14 / 10 / 1~52p

1. 한국 해외산업소속 원양어선 '세인트 마린 제33호'가 1974.5.22. 브라질 Recife항 동북방 145마일 해상에서 브라질 해군 당국에 의해 영해침범 혐의로 나포, 억류됨.

※ 브라질 지방 세관 당국은 선박 및 어획물에 대해서 840,000달러의 벌과금을 부과함(해외산업의 이의 신청도 기각함).

2. 주한 브라질대사관은 1974.8.28.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해외산업주식회사를 포함한 15개 어선 및 상선회사 또는 선원에게 브라질 해상법원이 보내온 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동 회사 및 선원들의 소재 파악 협조를 요청함.

3. 외무부 방교국은 1974.9월 상기 주한 브라질대사관의 서류 송달과 관련하여 외무부 영사국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양국간 사법공조협정 부재만을 이유로 상기 주한 브라질대사관의 한국 소송관계인 소재지 파악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치 않음.

※ 외무부가 동 소송서류를 접수하여 소송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115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중국(구 중공)의 한국어선 및 선원 구조

| 74-1072 |

생산연도	1973-1974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P-14 / 11 / 1~82p

1. 1973.8.14. 서해에서 어로조업 중 조난당한 한국어선 '대창호' 어부 8명이 1974.8.17. 중국(구 중공) 어선에 의해 구조된바, 중국 당국은 9.23. 동인들을 한국 측에 인도함.

- ※ 주중국 영국대사는 한국 측의 요청에 의하여 1973.10.5. 중국 외교부 당국에 한국 정부의 사의를 전함.
- ※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조난당한 사람에게 구조를 부여하는 것은 중국의 정책이며,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 수립 이전에도 일본 어부들에게 같은 일을 해왔다' 고 말함.

1154

2. 중국 당국은 1974.8.21. 중국 어선에 의해 동지나 공해상에서 구조된 한국어선 '제67 금성호' 어부 9명을 9.21. 한국 측에 인도한바, 외무부차관은 9월 주한 영국대사에게 한국 측의 사의를 영국 외교경로를 통하여 중국 당국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 주한 영국대사는 10.11. 외무부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주중국 영국대사가 중국 외교부 영사국 국장대리에게 한국 정부의 뜻을 전하였으며, 동 국장대리는 이를 상부에 보고할 것임을 언급함.

3. 1974.10.13. 중국 남사열도에서 좌초된 한국 고려원양 소속 '제77 광명호' 어부 24명은 중국 어선에 의해 구조된 후 10.31. 한국 측에 인도됨.

- ※ 동 어부들은 중국 어부 및 관원으로부터 사망자 시체 처리, 식사제공, 의료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음.

4. 중국 어선은 1974.11.8. 소흑산도 부근에서 조난당한 한국어선 '총신호' 를 구조하여 한국 측에 인도함.

- ※ 주중국 영국대사관 1등서기관은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12.16. 한국 측의 사의를 중국 외교부 영사국 관계 직원에게 전달함.
- ※ 중국 외교부는 이를 순수한 인도적 문제로 취급하고 이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꺼리는 반응을 보였다 함.

5. 주한 영국대사관은 1974.12월 한국 측에 중국 외교부와 주중국 영국대사관이 냉담한 관계에 들어가 당분간은 한국 측이 이와 같은 사의 전달 시 주중국 영국대사관을 이용하는 것은 적당한 외교경로가 아님을 언급함.



# 한·중국(구 중공) 간 영해 침범

| 74-1073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2
MF번호	P-14 / 12 / 1~72p

## 1. 중국(구 중공)은 1974.5.12. 신화사통신 보도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 어선의 행위를 비난하고 한국 당국이 사건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라고 경고함.

- ※ 한국 어선이 누처에 걸쳐 동지나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어구를 파괴하고 중국 어부를 구타하였으며 심지어는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함.
- ※ 중국 관계당국은 한국 어선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한국의 관계당국이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함.

## 2. 내무부, 국방부, 수산청 등 관계당국의 조사결과, 1974.5월 현재까지 3건의 중국 어선과의 불상사가 있었는데, 동 불상사에서 한국 어선이 피해를 입었고 동 어선이 중국 어선에 가해한 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3. 수산청은 1974.5.18. 중국 관계당국의 한국 어선 비난 보도에 대한 아래 요지의 발표문을 신문에 게재함.

- ※ 한국 관계당국의 조사 결과, 한국 어선이 중국 영해를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5월 공해상에서 한국 어선이 중국 어선에 의해 파괴, 손실당했음이 밝혀짐.
- ※ 그러나, 한국 관계당국은 장차 있을지 모를 중국 어선과의 분쟁 방지를 위해 각별히 유념할 것을 한국 어민들에게 지시함.

## 4. 상기 건에 대한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담당과장의 분석은 아래와 같음.

- ※ 신화사통신 보도 내용이 사건의 시간과 장소를 밝히지 않은 점, 소위 불법행위를 한 한국 어선의 행방을 밝히지 않은 점이 특이함.
- ※ 중국이 한국 정부를 상대하지 않고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였다.' 고 한 점은 검토의 여지가 있음.
- ※ 주홍콩 미국 총영사관의 보고는 이번 항의가 온건한(low key) 것이라고 분석함.

115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일본 밀입국자 강제송환

| 74-1074 |

생산연도	1972-1974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Re-37 / 16 / 1~118p

1156

## 1. 일본지역 주재 공관이 보고한 1972~74년 중 일본 밀입국 시도 및 체포 현황임.

- ※ 주삿포르총영사관
  - 1972.9.9. 김윤찬이 소련과 국경지역에서 수영으로 밀입국 시도하다 체포됨(73.1월 출입국 관리령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 받음).
- ※ 주요코하마총영사관
  - 1972.12.12. 한국인 2명이 제92 광명호의 어구창에 숨어있다 일본 세관원에 의해 발견됨.
- ※ 주오사키총영사관
  - 1973.1월 한국인 밀항자 14명이 체포되어 일본 경찰의 조사를 받음.
  - 4.22. 한국 밀항자 1명(양봉림)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함.
- ※ 고베총영사관
  - 1973.2월 한국 활어 운반선에 12명이 밀항함(7명은 조사 중, 5명은 도피).
  - 3.29. 고베 수상경찰서는 한국 선박에 밀항자 19명을 적발하여 체포함.
  - 6.1. 한국 활어 운반선에 숨어있던 한국인 밀항자 24명이 고베 외항에서 체포됨.
  - 일본 경찰은 7.10. 고베 외항 정박 중인 한국 선박에서 한국인 밀항자 2명을 적발함.
  - 일본 경찰은 9.25. 한국 선어 운반선에서 밀항자 14명을 체포하고 도망자 4명을 수색중임(선박 선장 및 선원 4명도 밀항 방조혐의로 체포됨).
- ※ 주일본대사관
  - 1973.3월 일본 경찰은 25년 전 일본으로 밀항하여 명치대학 강사로 일하던 이희영(원명 김원영)과 동인의 처 강정애를 체포함.
  - 동경 해상보안부는 10.7. 한국선박에 밀항자 4명이 잠입한 것을 발견하여 체포함.
- ※ 주후쿠오카총영사관
  - 1973.3.13. 한국인 4명이 일본 해안에 상륙하여 이동하던 중 체포됨.
  - 3.15. 한국인 22명이 어선으로 대마도에 도착, 인근 산에 은신 중 불심검문으로 체포됨.
- ※ 주시모노세키총영사관
  - 1974.4.22. 한국 선박이 밀항자 11명을 일본 하다마시의 근해에 상류시키바, 이들은 택시운전사의 신고로 체포됨.
- ※ 주나고야총영사관
  - 1973.6.18. 한국인 밀항자 2명이 밀입국하려다가 해상보안청에 의해 체포됨.

## 2. 밀항을 위해 이란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정상실)은 이란 선박 선장에 의해 1973.10.29. 주나고야총영사관에 인계됨.

# 일본어선의 한국 영해 및 어업전관수역 침범

| 74-1075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14 / 14 / 1~90p

1. 해양경찰대는 1974.6.3. 내무부에 독도근해를 침범한 일본 어선이 동년 5월 총 129척으로 1973년도 연간 침범 척수를 상회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이에 대한 내무부의 답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수산청 어업지도선 상주 배치 문제  
- 수산청 어업지도선을 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과 함께 적의 배치, 운용하여 한국 어선의 월선 조업 방지와 일본 어선의 위반 단속에 활용할 것임.
- ※ 일본 어업지도선의 현지 파견 단속 문제  
- 일본 정부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자국 어선의 단속을 요청하는 것은 현실점에서 고려할 수 없음.

2. 내무부는 1974.8.30. 외무부에 일본 어선단 100여척이 8.23. 한국 전관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다가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통보하면서 이에 대해 일본 정부에 엄중 항의하여 일본 어선이 다시는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함.

- ※ 외무부는 10.4. 내무부에 일본 어선단의 한국 전관수역 침범에 관하여 일본 외무성의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일본 외무성은 일본 수산청으로 하여금 관련 어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위반조업을 하지 않도록 주의, 지도하였다고 답신함.

115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74

##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 74-1076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영사/동북아1
MF번호	Re-37 / 17 / 1~222p

### 1. 일본 측은 한국 측과 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제74차 강제 송환일정 및 송환자를 결정함.

- ※ 1974.3.12 및 3.26. 오오무라 수용소에서 영사면접을 실시함.
  - 일본 측이 작성한 대상자는 214명
- ※ 4월 주일대사관은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강제송환대상자 중 하기 인사(30명)가 제외되도록 교섭함.
  - 제73차 송환에서 보류된 자, 협정 영주권자, 협정 영주 허가자 가족, 일본인 가족, 기타 정상참작자
- ※ 4.6. 일본 외무성에서는 법무성 및 주일대사관 간 제74차 강제송환 최종심사를 실시함.
- ※ 4.17. 최종 확정된 송환자 189명이 선편으로 오오무라를 출발함.

1158

### 2. 일본 측은 한국 측과 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제75차 강제 송환일정 및 송환자를 결정함.

- ※ 1974.9.3. 오오무라 수용소에서 영사면접을 실시함
  - 일본 측이 작성한 대상자 256명 중 44명을 보류·재심사하기로 하고, 212명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양해
- ※ 9월 주일대사관은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강제송환대상자 중 일부 인사에 대해서 송환보류 교섭을 실시함.
- ※ 9.20. 최종 확정된 송환자는 226명임.
  - 대상자 256명 중 송환 226명, 자비귀국 2명, 보류 28명
- ※ 9.26. 송환자 226명은 선편으로 오오무라를 출발함.

## Las Palmas(스페인) 진출 한국 선원 사고

| 74-1077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구주
MF번호	P-14 / 16 / 1~12p

### 1. 라스팔마스 진출 한국 선박(팔레라 22호)에서 1974.11.26. 살인사건이 발생함.

- ※ 동 선박에서는 11.26. 당직교대 관계로 가해자 정태근과 피해자 이현일이 서로 싸우다가 이현일이 살해됨.
- ※ 주라스팔마스 총영사관은 가해자 정태근을 본국 송환 조치 시까지 라스팔마스 현지 사직당국이 구류하도록 조치하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당국의 검사 후 매장하도록 함.

### 2. 주라스팔마스총영사관은 1974.12.11. 가해자 정태근의 한국 호송을 위해 한국에서 호송 경관을 파견하여 줄 것을 건의함.

1159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선원기항 여행결과보고서

| 74-1078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영사
MF번호	P-14 / 17 / 1~20p

### 1. 주뉴욕총영사관은 아래 해외취업선원의 중국(구 중공)기항 보고서를 접수함.

- ※ 선박명: MV Star Caroline
- ※ 선적: Liberia
- ※ 승선인원: 33명(전원 한국 선원)
- ※ 기항지: 중국 대련 신항
- ※ 입항기간: 1974.1.16.~5.14.
- ※ 입항목적: 캐나다산 곡물 수송

1160

### 2. 주코트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대사관은 아래 해외취업선원의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기항 보고서를 접수함.

- ※ 선박명: M/S EURYALUS
- ※ 선적: Liberia
- ※ 승선인원: 32명(전원 한국 선원)
- ※ 기항지: 세르비아 Koper항
- ※ 입항기간: 1974.4.11.
- ※ 입항목적: 원목 수송

# 일본 적군파 관계

| 74-1079 |

생산연도	1974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14 / 18 / 1~93p

## 1. 일본 적군파 등에 의한 쿠웨이트 주재 일본대사관 점거 사건은 1974.2.7. 쿠웨이트 정부가 일본 항공기의 착륙을 허가하고, 2.8. 일본 항공기가 싱가포르 원유저장소 폭파범을 신고 쿠웨이트에 도착함으로써 일단락됨.

- ✱ 일본 적군파 2명과 팔레스타인 게릴라 2명이 1.31. 싱가포르 소재 쉘 정유소 저장탱크를 폭파하고 정유소 직원을 인질로 잡아 싱가포르 경찰과 대치함.
- ✱ 일본 적군파와 팔레스타인 해방전선 무장게릴라들이 2.6. 주쿠웨이트 일본대사관을 점거하여 일본대사 등 16명의 직원을 인질로 잡고 상기 싱가포르 원유저장소 폭파범들을 쿠웨이트까지 안전 송환할 것을 요구함.
- ✱ 일본 정부는 2.6. 일본 항공기와 함께 외무성 국장을 싱가포르에 급파, 인질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함.
- ✱ 쿠웨이트 정부가 2.7. 일본 항공기의 쿠웨이트 착륙을 허가함에 따라 2.8. 일본 항공기가 쿠웨이트에 도착함.

## 2. 주베이루트 한국 공사는 팔레스타인 민족해방전선 대변인의 기자회견(1974.9.23)을 인용, 일본 적군파가 반한세력과 제휴하여 한국에 대한 모종의 테러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한바, 이와 관련하여 외무부가 취한 조치는 아래와 같음.

- ✱ 외무부차관은 1974.9.27.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한국에 대한 일본 적군파의 테러행위계획에 관한 팔레스타인 민족해방전선 대변인의 진술에 대해 언급하고, 일본 정부의 예방조치를 요청하는 구술서를 전달함.
- ✱ 외무부 아주국장은 9.28.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에게 일본 적군파의 명단, 사진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입수,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동 공사는 10.1. 적군파 15명의 명단을 전달
- ✱ 외무부는 10월 미국 정부가 작성한 일본인 Blacklist의 일부를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으로부터 입수하여 주일대사관, 내무부, 법무부, 중앙정보부 등 관계기관에 업무 참고용으로 송부함.

## 주오오사카총영사관 청사 신축

| 74-1080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교민
MF번호	P-14 / 19 / 1~35p

### 1. 주오사카총영사관 신축청사 준공식이 1974.11.9. 개최됨.

- ※ 준공식에는 주일대사, 민단중앙단장 등 내빈, 기성회 간부, 건축공사 관계자등 350명이 참석하였으며, 축하연에는 950명의 하객이 참석함

### 2. 상기 주오사카총영사관 신축경위는 아래와 같음.

- ※ 건설 기성회 발족: 1971.9월
- ※ 건설부지 취득
  - 1972.1월 대지 157평 매입계약 체결
  - 1972.6월 '대한민국' 소유로 등기 완료
- ※ 건물 시공(1972.11.7.)
  - 지하 2층 지상 9층(연건평 1,600평)
- ※ 모금현황(1974.8월)
  - 목표액 10억 엔 중 7억 엔 확보
  - 잔여 3억 엔 모금운동 전개 중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관저 매입

| 74-1081 |

생산연도	1974-1975
생산과	재외공관담당관
MF번호	P-14 / 20 / 1~60p

### 1.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74.5.9. 관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6.11. 신관저에 입주함.

- ※ 건평 및 대지  
- 건평 800㎡, 대지 1,075㎡
- ※ 구입 가격  
- 175,000,000루피아(422,195.42달러 상당)
- ※ 내부 구조  
- 1층: 홀(대), 부엌, 식당, 차고, 침실1개  
- 2층: 홀(소), 침실 4개

### 2.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한국외환은행 싱가포르지점으로부터 440,000달러의 용자를 받아 관저 구입 대금을 지불한 바, 동 용자조건은 아래와 같음.

- ※ 금액: 440,000달러
- ※ 여신기간: 취급 후 10년
- ※ 상환방법: 1975~84년까지 매년1회 균등 분할 상환
- ※ 이자율: Singapore Inter-Bank Offered Rate(이자 지급당일 rate)+0.5%

116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주우간다대사관 관저 매입

| 74-1082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재외공관담당관
MF번호	P-14 / 21 / 1~56p

1. 주우간다대사는 1974.10.1. 관저용 건물 소유주와 매입계약서에 서명하고 매입대금 55,000달러를 지불함.

※ 대지 임차(99년 Lease hold)비용 1,286달러 별도 지불

2. 동 관저의 규모는 아래와 같음.

- ※ 건평: 106평
- ※ 대지: 2,312평
- ※ 수영장: 21.6×6m

#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중앙회관 건립 추진 및 민단 운영

| 74-1083 |

생산연도	1974
생산과	교민1/기획예산담당관/동북아1
MF번호	Re-37 / 18 / 1~198p

## 1. 재일본 거류민단 중앙본부는 1974.11월 현재 아래와 같이 재일본 거류민단 중앙회관 신축을 계획함.

- ✧ 신축규모
  - 대지: 360.81평, 연건평: 2,352평(지하 3층, 지상 9층 철근콘크리트)
- ✧ 위치
  - 동경 시내
- ✧ 공사비
  - 11.8억 엔
- ✧ 시공청
  - 주일본대사관(과세문제로 주일본대사관 별관으로 건축허가를 얻음.)
- ✧ 건축업자
  - 대성건설 주식회사
- ✧ 공사기간
  - 1974.10.15.~76.2.25.(500일간)
- ✧ 공사계약
  - 수의계약
- ✧ 공사비 조달방법
  - 현 적립액: 2.0억 엔
  - 부족액 조달: 9.8억 엔 모금

## 2. 1974.11~12월 중 상기 재일본 거류민단 중앙회관 신축계획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음.

- ✧ 외무부는 11월 현재 모금 실적이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총공사비 11.8억 엔 가운데 부족분 9.8억 엔을 공사기간 중에 전액 모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 외무부는 12월 주일대사에게 환치자금 2억 엔을 상기회관 신축비에 직접 사용하도록 승인함.
- ✧ 주일본대사는 12월 재일본 거류민단 중앙회관 신축에 따른 3억 엔 특별보조요청에 관한 건의서(거류민단 단장 명의를 외무부에 송부하고 검토를 요청함).

1165

대한민국외교자료해제집

1974

# 부록



# 주요 외교 일지

## | 1974년 |

15. Karachi(파키스탄) 주재 북한총영사관 개설
17. 제17차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무역분과위원회(Bangkok)  
- 수석대표: 김이명 주태국 참사관
- 17.-14. 제15차 아·아 법률자문위원회(AALCC) 총회(동경)  
- 수석대표: 윤하정 주일대사대리
- 110.-12. Walter, Harold H. 모리셔스 보건장관 방한
115. 이수우 제10대 주홍콩총영사 부임
117. Stiles, John Alexander 초대 주한 캐나다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18. 박정희 대통령, 남북한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제의
- 118.-2.17. 이철승 국회 부의장 아주 순방  
- 일본(1.18.~27.), 홍콩(1.27.~29.), 필리핀(1.29.~2.1.), 싱가포르(2.1.~3.), 말레이시아(2.3.~5.), 인도네시아(2.5.~8.), 호주(2.9.~12.), 뉴질랜드(2.12.~14.), 호놀룰루(2.15.~17.)
- 123.-26. March, Derek M. 영국 외무성 극동부국장 방한
124. 한·독일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489호)
124. 제6차 아시아태평양아시아사회(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서울)
- 125.-26. Tarjanne, Pekka 핀란드 교통장관 방한
- 125.-27. Ingersoll, Robert S. 미 국무부 동아태지역담당차관보 방한
- 125.-27. Koegh, James 미국 공보처장 방한
126. 북한,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남북한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제의 거부
- 129.-2.7. 국제의원연맹(IPU) 구주안보회의(Beograd, 세르비아)  
- 수석대표: 강문봉 국회의원
130. 한·일본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서명(1978.6.22. 발효, 조약 644호)
130. 한·일본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서명(1978.6.22. 발효, 조약 645호)
130. 윤경도 주요르단대사 신임장 제정
130. 한·월남 간의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491호)  
- 1974.11.9. 개정(조약 521호)
- 130.-2.14.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한국 경제조사단 방한

- 2.1. 북한·가봉 외교관계 수립
- 2.1. 함병춘 제9대 주미국대사 신임장 제정
- 2.4.-8. 제1차 국제통신위성기구(INTELSAT) 가입국 총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정춘택 주미국대사관 공사
- 2.5. 박찬현 초대 주인도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6. 한·일본 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490호)
- 2.6. 강춘희 초대 주뉴질랜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7. 정부, 그레나다 승인
- 2.10. 북한·코스타리카 외교관계 수립
- 2.11.-12. 제6차 한·일본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서울)
- 2.13. 한·중앙아프리카공화국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492호)
- 2.13.-18. Nazer, Hisham Mohiddin 사우디아라비아 기획상 방한
- 2.14. 노석찬 제3대 주호주대사 신임장 제정
- 2.15. 유엔기념모지위원회(UNMCK) 창립회의
- 2.16. 한·일본 간의 농수산물개발을 위한 차관계약에 관한 협정 개정(조약 493호)
- 2.18. 한·핀란드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1974.3.1. 발효, 조약 495호)
- 2.20. 한·중국 간의 화교학생 수학기금 송금에 관한 각서교환의 개정(조약 494호)
- 2.20.-23. Broomfield, William S. 및 Zablocki, Clement J. 미국 하원의원 방한
- 2.28. 한·스페인 간의 수산협력협정 서명, 발효(조약 496호)
- 3.1. 한·핀란드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495호)
- 3.4.-5. 제6차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Wellington)  
- 수석대표: 장예준 상공부장관 / Talboys, B. E. 부수상 겸 외상 겸 대외무역상
- 3.5. 한·캄보디아(구 크메르) 친선협회 창립
- 3.6. Arocha Castresana, Freddy 주한 베네수엘라대사 신임장 제정
- 3.6. 최경록 초대 주모리셔스대사 신임장 제정
- 3.8. 한·프랑스 경제협력위원회 창립총회
- 3.8. 진필식 제6대 주독일대사 신임장 제정
- 3.9. 김영선 제5대 주일본대사 신임장 제정
- 3.10. 북한·기니비사우 외교관계 수립

- 3.11.-19. 김동조 외무부장관 남미 순방(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 베네수엘라(3.11.~14.), 브라질(3.14.~16.), 페루(3.16.~19.)
- 3.15. 한·코스타리카 간의 무역협정 서명(1975.6.27. 발효, 조약 539호)
- 3.15. 아·아 법률자문위원회(AALCC) 규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532호)  
- 1970.1.19. 준회원국으로 가입
- 3.15. 주에콰도르대사관 개설
- 3.15. 아·아 법률자문위원회(AALCC) 정회원국 가입
- 3.15. 북한, 아·아 법률자문위원회(AALCC) 가입
- 3.16.-29. 태완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구주 순방(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 영국(3.16.~19.), 독일(3.20.~23.), 프랑스(3.24.~27.), 벨기에(3.29.)
- 3.18.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497호)  
- 1978.2.16., 1982.3.12., 1986.10.9. 각각 연장
- 3.18.-19. 중남미지역 공관장회의(Lima, 페루)
- 3.19. 한·페루 간의 무역협정 서명(1976.5.5. 발효, 조약 573호)
- 3.19.-21.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Algier, 알제리)
- 3.19.-22. 노르웨이 무역대표단 방한
- 3.19.-22. Tabor, John K. 미국 상무차관 방한
- 3.20.-22. 김동조 외무부장관 미국 방문
- 3.21. 한·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간의 인구계획에 관한 협정 서명, 발효(조약 498호)
- 3.21.-23. De Geer, C. 스웨덴 외무성 차관보 방한
- 3.22. 윤석현 제5대 주프랑스대사 신임장 제정
- 3.25. 송찬호 제4대 주브라질대사 신임장 제정
- 3.26.-27. 제7차 대한국제경제협력의체(IECOK) 총회(Paris)  
- 수석대표: 태완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 3.26.-4.11. 강양욱 북한 부주석 이란 및 서남아 순방(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 파키스탄(3.26.~31.), 이란(3.31.~4.6.), 방글라데시(4.6.~9.), 미얀마(4.9.~11.)
- 3.27.-4.8. 제30차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총회(Colombo)  
- 수석대표: 김신 교통부장관
- 3.28. 한·오만 간 외교관계 수립
- 3.29.-30. 제13차 아·아 농촌재건기구(AARRO) 집행위원회(New Delhi)  
- 수석대표: 정해현 주인도대사관 참사관

- 4.1. 한 · 뉴질랜드 간의 한국 내 육우시범목장 설치를 위한 각서교환 소급발효 (6.15. 서명, 조약 505호)
- 4.1. 한 · 온두라스 간의 문화협정 발효(조약 499호)
- 4.1. 송광정 초대 주베네수엘라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4.1.-4. 제2차 국제통신위성기구(INTELSAT) 서명자회의(Mexico City)
- 4.1.-4. 제23차 태평양지역관광협회(PATA) 총회(Jakarta)
- 4.3. 이재설 제2대 주인도네시아대사 신임장 제정
- 4.4. 신상철 제3대 주스페인대사 신임장 제정
- 4.5. 김영관 제5대 주월남대사 신임장 제정
- 4.5.-5.1. 계응태 북한 무역상 동남아 순방(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 싱가포르(4.5.~9.), 말레이시아(4.9.~13.), 인도네시아(4.13.~19.), 태국(4.26.~5.1.)
- 4.6. 김종필 국무총리 Pompidou 프랑스 대통령 장례식 참석
- 4.6.-10. 제33차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 총회(London)  
- 수석대표: 윤치원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 4.6.-5.30. 김용택 북한 외교부 부부장 중남미 순방(아르헨티나,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 가이아나,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 아르헨티나(4.6.~11.), 페루(4.11.~19.), 에콰도르(4.19.~26.), 파나마(4.26.~5.6.), 코스타리카(5.6.~11.), 가이아나(5.13.~19.), 온두라스(5.24.~28.), 베네수엘라 (5.29.~30.)
- 4.7.-9. Mahanti 인도 상원의원 방한
- 4.8. 주로마 교황청대사관 개설
- 4.8. 함영훈 제4대 주Islamabad(파키스탄)총영사 부임
- 4.8. 신현준 초대 주로마 교황청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4.8.-10. 제3차 아시아과학협력기구(ASCA) 회의(New Delhi)
- 4.8.-11. 제7차 세계반공연맹(WACL) 회의(Washington D.C.)
- 4.8.-5.3. 오만석 북한 외교부 부부장 북유럽 순방(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 핀란드(4.8.~13.), 아이슬란드(4.16.~19.), 노르웨이(4.19.~24.), 스웨덴(4.24.~30.), 덴마크(4.30.~5.3.)
- 4.10. 이한림 제7대 주터키대사 신임장 제정
- 4.11. 한 · 세계보건기구(WHO) 간의 기본협정 서명, 발효(조약 501호)
- 4.11. 최완복 초대 주네덜란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4.15. 한병기 제4대 주칠레대사 신임장 제정
- 4.15.-17. 미국 하원의원단 방한  
- 단장: O'Neill, Thomas P.J.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 4.15.-19. 제16차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이사회(Singapore)  
- 수석대표: 이만용 상공부 공업기획국장
- 4.15.-20. 제114차 국제의원연맹(IPU) 이사회(Bucharest, 루마니아)  
- 수석대표: 박준규 국회의원
- 4.15.-20. Molapo, C.D. 레소토 보건·문교·사회·복지장관 방한
- 4.15.-22. 아주지역 공관장회의(서울)
- 4.16.-20. McCleave, Robert J. 캐나다 하원 부의장 방한
- 4.17. 아이슬란드 주재 북한대사관 개설
- 4.17. 북한 주재 핀란드 상무관실 개설
- 4.17.-30. 제17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상품문제위원회 곡물연구단회의(Rome)
- 4.18. 한·카타르 외교관계 수립
- 4.18.-20. Butz, Earl L. 미국 농무장관 방한
- 4.19. 김영주 북한 부총리 소련 방문
- 4.19.-5.1. 제4차 미주기구(OAS) 총회(Atlanta, 미국)
- 4.21.-5.2. 이란 국회의원단 방한  
- 단장: Shame, Yahya Novin당 의원
- 4.22.-26. 제25차 세계식량계획(WFP) 정부간위원회(Rome)
- 4.23. 송인상 제4대 주벨기에대사 신임장 제정
- 4.23.-27. 제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Kuala Lumpur)  
- 수석대표: 남덕우 재무부장관
- 4.23.-30.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자회의(서울)
- 4.25. Mossi Sorto, Cersar 초대 주한 온두라스대사 신임장 제정
- 4.25.-5.10. 장예준 상공부장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방문  
- 사우디아라비아(4.28.~5.4.), 쿠웨이트(5.4.~6.)
- 4.30.-5.3. Mogami 주유엔 보츠와나대사 방한
- 5.2. 주한 스웨덴대사관 개설
- 5.3. 정부, 포르투갈 신청부 승인

- 5.3. 한·터키 간의 문화협정 발효(조약 500호)
- 5.4. 제3차 한·일본 의원간친회 총회(서울)
- 5.4.-14. 허담 북한 부총리 겸 외교부장 동구 순방(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 폴란드(5.4.~10.), 루마니아(5.10.~12.), 헝가리(5.12.~14.)
- 5.6.-18. 김용식 국토통일원장관 중미 순방(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나마, 엘살바도르)  
- 코스타리카(5.6.~10.), 온두라스(5.10.~13.), 파나마(5.13.~16.), 엘살바도르  
(5.16.~18.)
- 5.7. 주Agana(미국) 영사관 개설
- 5.7. 주고베, 요코하마, 나고야총영사관 개설
- 5.7. 천병규 제6대 주태국대사 신임장 제정
- 5.7.-8. 중동지역 공관장회의(Beirut)
- 5.7.-12. 호겐 신사쿠 전 일본 외무차관 방한
- 5.7.-24. 제27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Geneva)  
- 수석대표: 고재필 보건사회부장관
- 5.8.-13. Ramphul, Radha K. 주유엔 모리셔스대사 방한
- 5.10. 한·덴마크 조세협정 체결 실무자회의(서울)
- 5.11.-14. 김동조 외무부장관 코트디부아르 방문
- 5.12.-16. 미국 대한투자통상조사단 방한  
- 단장: Kennedy, David M.
- 5.12.-22. 제8차 국제최고회계검사기관기구(INTOSAI) 총회(Madrid)  
- 수석대표: 이석제 감사원장
- 5.13.-18. 제42차 국제수역국(OIE) 총회(Paris)  
- 수석대표: 이창구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장
- 5.14. Wibowo, Sarwo Edhi 초대 주한 인도네시아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5.14. 조효원 제2대 주Colombo 통상대표부 대사 부임
- 5.15. 한·네팔 외교관계 수립(1969.7.2.9 영사관계 수립)
- 5.15. 주네팔대사관 개설
- 5.15. 북한·네팔 외교관계 수립
- 5.15. 한·그리스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502호)

- 5.15.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협력을 한 · 미국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개정 및 연장 서명 (1974.6.26. 발효, 조약 506호)
- 5.15. 김동조 외무부장관 프랑스 방문
- 5.15.-24. 김종철 국회의원 캐나다 방문
- 5.16.-21. Long, Olivier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사무총장 방한
- 5.16.-22. Whitehead, S. A. 뉴질랜드 국회의장 방한
- 5.17. 한 · 독일 간의 재정원조협정 서명, 발효(조약 503호)
- 5.17.-18. 한 · 인도네시아 수산청장회의(서울)  
- 수석대표: 김동수 수산청장 / Zachman, Nizam 수산청장
- 5.17.-20. Turbay, Julio Cesar 콜롬비아 상원의장 방한
- 5.18. 북한 · 가이아나 외교관계 수립
- 5.20.-31. 제6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특혜특별위원회(Geneva)  
- 수석대표: 문덕주 주이탈리아대사
- 5.21. 송인상 주룩셈부르크대사 신임장 제정
- 5.21. 현시학 제3대 주이란대사 신임장 제정
- 5.22. 아프가니스탄 주재 북한대사관 개설
- 5.22.-24. 제1차 한 · 스페인 어업공동위원회(서울)
- 5.22.-7.5. 제17차 만국우편연합(UPU) 총회(Lausanne, 스위스)  
- 수석대표: 황호을 주제네바대사
- 5.23. 연하구 제3대 주케냐대사 신임장 제정
- 5.30. 한병기 주에콰도르대사 신임장 제정
- 5.30.-6.1. 김일성 북한 주석 모리타니 방문
- 5.30.-6.3. Sananikone, Ngon 라오스 재무장관 방한
- 6.2.-7. Kariuki 케냐 관방성차관 방한
- 6.3. 한 · 파나마 간의 문화협정 서명(1975.1.17. 발효, 조약 524호)
- 6.3. 윤석현 주포르투갈대사 신임장 제정
- 6.3.-12. 정일권 국회의장 남미 순방(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 브라질(6.3.~7.), 파라과이(6.8.~9.), 우루과이(6.10.~12.)
- 6.4. 박찬현 초대 주아프가니스탄대사 신임장 제정

- 6.4.-5. 제6차 한·미국 상공장관회담(Washington D.C.)  
- 수석대표: 장예준 상공부장관 / Dent, Frederick B. 상무장관
- 6.5.-26. 제5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Geneva)
- 6.6. 송광정 주아이티대사 신임장 제정
- 6.6. 정부, 기니비사우(구 기네비소) 승인
- 6.6. 북한, 만국우편연합(UPU) 가입
- 6.7. 한·일본 간의 농업공동연구계획 수행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발효 (조약 504호)
- 6.7. 한·프랑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서명 (7.16. 발효, 조약 508호)
- 6.7.-13. Ramphul 주유엔 모리셔스대사 방한
- 6.9.-13. Taiba, Mahmoud A.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차관 방한
- 6.10. 박찬현 주방글라데시대사 신임장 제정
- 6.10.-14. 유엔식량농업기구(FAO) / 세계보건기구(WHO) 공동식품규격화위원회 (Washington D.C.)
- 6.10.-28. 국회사절단 북구 순방(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 단장: 백두진 유정회 회장  
- 덴마크(6.10.~13.), 핀란드(6.13.~16.), 스웨덴(6.16.~19.), 노르웨이(6.19.~22.)
- 6.12.-16. 김동수 수산청장 모로코 방문
- 6.13.-15. 제11차 아프리카단결기구(OAU) 정상회담(Mogadishu, 소말리아)
- 6.13.-16. 이산가족재회 전문가회의(Florence, 이탈리아)
- 6.14.-17. 제9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경제각료회담(서울)  
- 수석대표: 태완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 손운선 경제부장
- 6.14.-7.10.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순방(세네갈, 니제르,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구 자이르))  
- 단장 : 김용태 공화당 원내총무  
- 세네갈( 6.19.~22.), 니제르(6.24.~27.), 코트디부아르(6.27.~30.), 카메룬 (6.30.~7.3.), 콩고민주공화국(7.4.~6.)
- 6.15. 한·뉴질랜드 간의 한국 내 육우시범농장 설치를 위한 각서교환(4.1. 소급발효, 조약 505호)

- 6.15.-7.10.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순방(케냐, 에티오피아, 레소토,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우간다)  
 - 단장: 최규하 대통령외교담당특별보좌관  
 - 케냐(6.16.~19.), 에티오피아(6.19.~22.), 레소토(6.24.~26.), 보츠와나(6.27.~29.), 스와질란드(7.1.~3.), 우간다(7.4.~7.)
- 6.17.-7.5. 특별사절단 중동 순방(이란, 모로코, 튀니지)  
 - 단장: 심홍선 총무처장관  
 - 이란(6.19.~21.), 모로코(6.23.~26.), 튀니지(6.26.~30.)
- 6.17.-7.6 국회 친선사절단 구주 순방(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 단장: 이민우 신민당 원내총무  
 - 독일(6.17.~20.), 오스트리아(6.20.~23.), 벨기에(6.23.~26.), 영국(6.27.~28.), 이탈리아(7.3.~6.)
- 6.19.-22 정일권 국회의장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 6.20.-8.29.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 제2회기(Caracas, 베네수엘라)
- 6.21. 최운상 제3대 주모로코대사 신임장 제정
- 6.21. Eastman, Ernest 주한 라이베리아대사 신임장 제정
- 6.21.-25. Sneider, Richard L. 미 국무부 동아태지역담당부차관보 방한
- 6.22. 한·라오스 외교관계 수립
- 6.24. 연하구 주레소토대사 신임장 제정
- 6.24. 북한·라오스 외교관계 수립
- 6.24.-28. 제5차 한·독일 경제실무자회담(Bonn)  
 - 수석대표: 최창락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 / Schuessler, Hans 경제성 대외협력국장
- 6.25. 문철순 제4대 주튀니지대사 신임장 제정
- 6.26.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미국 간의 협정 개정 및 연장 발효(조약 506호)
- 6.26.-7.8. 특별사절단 서남아 순방(네팔, 미얀마, 라오스)  
 - 단장: 차지철 국회 내무위원장  
 - 네팔(6.27.~29.), 미얀마(6.29.~7.3.), 라오스(7.3.~6.)
- 6.27. 임명진 제2대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 신임장 제정
- 6.27.-7.1 Chand, K. 아·아 농촌재건기구(AARRO) 사무총장 방한
- 6.28. 동해 해양경비정 863호 격침 및 승무원 전원 납치사건 발생
- 6.3. 북한·요르단 외교관계 수립
- 7.1. 이창희 주멕시코대사 Langerud Garcia, Kjell Eugenio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 7.1.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제1차 연장을 위한 의정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509호)
- 7.1.-3. 제2차 한·인도네시아 정보교류회의(서울)
- 7.1.-4. Sayed Omar, Al-Sakkaf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담당 국무상 방한
- 7.2. 연하구 주스와질란드대사 신임장 제정
- 7.2.-12. 제6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제품위원회(Geneva)  
- 수석대표: 정우영 주제네바대사
- 7.3.-6. 김신 교통부장관 벨기에 방문
- 7.3.-7. Sabki, Ahmad 말레이시아 문화청년체육차관 방한
- 7.4.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서명(1975.1.19. 발효, 조약 527호)
- 7.4. 윤영교 제3대 주카메룬대사 신임장 제정
- 7.5. 북한, 국제의원연맹(IPU) 가입
- 7.7.-17. 특별사절단 서부아프리카 순방(라이베리아, 베냉, 토고)  
- 단장: 김세련 국회 외무위원장  
- 라이베리아(7.7.~10.), 베냉(7.11.~14.), 토고(7.14.~17.)
- 7.8.-21. 경제사절단 미국 방문  
- 단장: 태완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 7.8.-22. 북미 및 구주지역 공관장회의(서울)
- 7.9. 한·독일 간의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확충사업을 위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507호)
- 7.1. 제1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판문점)
- 7.10.-16. Egerton, John A. R. 호주 노동당 부총재 방한
- 7.10.-8.8. 친선사절단 파키스탄 및 중미 순방(트리니다드토바고, 가이아나,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아이티)  
- 단장: 김용식 국토통일원장관  
- 파키스탄(7.10.~15.), 트리니다드토바고(7.22.~24.), 가이아나(7.24.~27.), 바베이도스(7.27.~31.), 그레나다(7.31.~8.2.), 아이티(8.5.~8.)
- 7.11. 북한·페루 통상관계 수립
- 7.16. 한·이란 간의 문화협정 서명(1975.3.20. 발효, 조약 529호)
- 7.16. 한·프랑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발효(조약 508호)
- 7.16. 심명원 초대 주라이베리아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7.16.-8.6. 특별사절단 아프리카 순방(중앙아프리카, 차드, 모리셔스, 말라위)  
 - 단장: 이병희 무임소장관  
 - 중앙아프리카(7.26.~22.), 차드(7.22.~25.), 모리셔스(7.29.~8.1.), 말라위(8.2.~6.)
- 7.18. 부르키나파소 주재 북한대사관 개설
- 7.18.-19. 제2차 한·튀니지 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이창수 외무부 국제경제국 연구관 / Fekih, Ahmed 외무성 통상 및 경제협력과장
- 7.18.-19. 제11차 한·일본 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동경)
- 7.19.-21. Habib Chatty 튀니지 외무장관 방한  
 - 7.20. 투자보장협정 가서명  
 - 7.21. 공동성명서 발효
- 7.20.-27. 호주 통상사절단 방한  
 - 단장: Hill, G.H. 통상성 부차관
- 7.22. 송광정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 신임장 제정
- 7.23.-27. Hasan Bukres 주일본 리비아대사 방한
- 7.23.-8.3. 특별사절단 남미 순방(에콰도르, 칠레, 아르헨티나)  
 - 단장: 윤주영 문화공보부장관  
 - 에콰도르(7.23.~26.), 칠레(7.26.~31.), 아르헨티나(7.31.~8.3.)
- 7.26.-27. Lord, Winston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방한
- 7.28. 소진철 제2대 주싱가포르총영사 부임
- 7.31. 북한·호주 외교관계 수립
- 7.31. 연하구 주말라위대사 신임장 제정
- 7.31. 한·독일 간의 산림경영 사업을 위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510호)  
 - 1978.9.1., 1979.8.24., 1981.12.30. 각각 연장
- 7.31.-8.3. 제9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서울)
- 8.1. 한·그레나다 외교관계 수립
- 8.4.-10. 최운상 주카이로총영사 겸임국 수단 출장
- 8.5.-8. Romulo, Carlos P. 필리핀 외상 방한
- 8.7. 안진생 주콜롬비아대사 Lopez Michelsen, A.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 8.9.-13. Singh, Swaran S. 인도 외상 방한
- 8.12. 한·인도 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발효(조약 511호)
- 8.12. 한·인도 간의 문화협정 서명, 발효(조약 512호)

- 8.12.-23. 북한사절단 북구 순방(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 단장: 양문소 외교부 정치고문
  - 아이슬란드(8.12.), 핀란드(8.12.~23.), 스웨덴(8.19.), 노르웨이(8.19.~22.), 덴마크(8.22.~23.)
- 8.14. 주라오스대사관 개설(통상대표부에서 승격)
- 8.15. 박정희 대통령 저격미수 사건 발생, 육영수 대통령 영부인 서거
- 8.15. 시에라리온 주재 북한대사관 개설
- 8.15. 박정희 대통령,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제시 - 평화 정착, 상호 교류, 남북한 자유 총선
- 8.16. 송광정 주베네수엘라대사 Balaguer, Joaguin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 8.18.-20. 니긴 캄보디아 제1부수상 육영수 대통령 영부인 장례식 참석차 방한
- 8.19. 다나카 일본 수상 육영수 대통령 영부인 장례식 참석차 방한
- 8.20. 연하구 주보츠와나대사 신임장 제정
- 8.20.-24. 제2차 한·미국 어업실무자회의(Seattle)
- 8.20.-9.13. 제14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Geneva)
  - 수석대표: 황호을 주제네바대사
- 8.25.-9.1. Battesti, Barry 코트디부아르 직업기술교육장관 방한
- 8.26. 한·태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서명 (1977.10.12. 발효, 조약 607호)
- 8.26.-28. 한·호주 섬유류 자율규제회담(서울)
- 8.28.-9.13. 특별사절단 가나·시에라리온 방문(차드,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시에라리온, 세네갈 경유)
  - 단장: 윤석현 주프랑스대사
  - 차드(8.28.~30.), 카메룬(8.30.~9.3.), 코트디부아르(9.3.~5.), 가나(9.5.~9.), 시에라리온(9.9.~12.), 세네갈(9.12.~13.)
- 9.1.-4. Laraki, Hamed 모로코 외상 육영수 대통령 영부인 장례식 참석차 방한
- 9.2.-10. 제25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회의(Kuala Lumpur)
  - 수석대표: 박승함 보건사회부차관
- 9.5. 강원도, Alberta주(캐나다) 자매결연
- 9.5. 김창훈 초대 주가봉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9.5.-8. Asiturk 터키 내무장관 방한
- 9.6. 북한·니제르 외교관계 수립



- 9.6. 남철 주아이슬란드대사 신임장 제정
- 9.7. 방글라데시 주재 북한대사관 개설
- 9.10. 주과테말라대사관 개설
- 9.10. 라오스 주재 북한대사관 개설
- 9.10.-12. 함병춘 특사(주미국대사) 바하마 방문
- 9.11. 주코스타리카대사관 개설
- 9.12.-13.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 스페인 방문
- 9.12.-18. 제18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상품문제위원회 곡물연구단회의(Rome)
- 9.13. 한·우루과이 간의 문화협정 발효(조약 513호)
- 9.13.-17. Njie, A. A. B. 감비아 외상 방한
- 9.13.-20. 미국 경제사절단 방한
- 9.15.-20. Scotland(영국) 통상사절단 방한  
- 단장: Inglis, W. 상공인
- 9.15.-11.4. 실무사절단 서부아프리카 순방(토고, 차드, 베냉,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튀니지)  
- 단장: 신기흠 외무부 구아국장  
- 토고(9.18.~20.), 차드(9.24.~27.), 베냉(9.30.~10.2./10.16.~18.), 니제르(10.2.~5./10.23.~26.), 부르키나파소(10.5.~8.), 세네갈(10.10.~12.), 콩고민주공화국(10.27.~29.), 튀니지(10.31.~11.4.)
- 9.16.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 9.16.-20. 제18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Vienna)  
- 수석대표: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
- 9.16.-12.18. 제29차 유엔총회  
- 수석대표: 김동조 외무부장관
- 9.17. 한·토고 외교관계 단절(1963.7.26. 외교관계 수립)
- 9.17.-19. Kamil, Abdullah 인도네시아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방한
- 9.17.-27. 제12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극동지역 총회(동경)  
- 수석대표: 함만준 농수산부 기획관리실장
- 9.18. Sneider, Richard 제10대 주한 미국대사 신임장 제정
- 9.19.-25. 제43차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총회(Cannes, 프랑스)
- 9.21.-23. Daddah 모리타니 대통령 북한 방문

- 9.23.-30. Al-Ghunaim, Khalid Saleh 쿠웨이트 국회의장 방한
- 9.24. Pant, Yadav P. 초대 주한 네팔대사 신임장 제정
- 9.24. Besa Lyon, Carlos 초대 주한 칠레대사 신임장 제정
- 9.24.-25. 제7차 한·미국 연례 안보협의회(Honolulu)
  - 수석대표: 서동철 국방부장관 / Schlesinger, J. R. 국방장관
- 9.24.-10.4. Khefacha 튀니지 국방상 방한
- 9.24.-10.5. 제21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Montreal)
  - 수석대표: 김영주 주캐나다대사
- 9.26. Shammout, Amer Abdel Kader 주한 요르단대사 신임장 제정
- 9.26. Sanchez Matarrita, Edgar 주한 코스타리카대사 신임장 제정
- 9.26. 지성구 초대 주세네갈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9.27. 홍수희 초대 주네팔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1974.5.15. 외교관계 수립)
- 9.27.-10.2. 터키 국회의원단 방한
  - 단장: Tekinel, Ismail Kakki 의원
- 9.28.-10.1. Lynch, Jack 아일랜드 국회의원 방한
- 9.28.-10.1. Saint-Remy, Andre 벨기에 상원의원 방한
- 9.29. Rubio Cornado, Fausto David 과테말라 국방장관 방한
- 9.29.-10.1. 제1차 한·벨기에 통상장관 회담(Brussels)
  - 수석대표: 장예준 상공부장관 / Toussaint, Michael 통상장관
- 9.29.-10.1. De Mayalde, C. 스페인 국회의원 방한
- 9.29.-10.2. Alberte Betti, Luis 아르헨티나 합동참모본부 의장 방한
- 9.29.-10.3. Bereciartu, Manuel 베네수엘라 육군사령관 방한
- 9.29.-10.4. Alcoreza, Carlos 볼리비아 육군총사령관 방한
- 9.29.-10.4. Williams, A. H. 라이베리아 국방장관 방한
- 9.29.-10.4. Soesthene, Fernandez 캄보디아 총사령관 방한
- 9.29.-10.5. 장예준 상공부장관 벨기에 및 네덜란드 방문
  - 벨기에(9.29.~10.2.), 네덜란드(10.2.~5.)
- 9.29.-10.7. Vargas Fgallo, Joaquin 한·페루 친선협회장 방한
- 9.30.-10.4. 제29차 국제통화기금(IMF) / 국제부흥개발기금(IBRD) 총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김용환 재무부장관

- 9.30.-10.4. 모로코 군사사절단 방한  
- 단장: Faquir 군 감찰총장
- 10.1. 한·벨기에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립
- 10.1. 한·미국 간의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 직물의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소급발효 (1975.6.26. 서명, 조약 538호)
- 10.1.-7. Shumaimiri, A.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참모총장 방한
- 10.1.-7. Erguder, R. 터키 적십자사 총재 방한
- 10.2. 송광정 주가이아나대사 신임장 제정
- 10.2.-11. 제61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 및 제115차 이사회(동경)  
- 수석대표: 박준규 국회의원
- 10.2.-11.2. 실무사절단 동부아프리카 순방(케냐, 우간다, 르완다, 말라위, 모리셔스,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 단장: 김동휘 외무부 경제차관보  
- 케냐(10.4.~8./10.29.~11.1.), 우간다(10.9.~11.), 르완다(10.11.~16.), 말라위(10.16.~18.), 모리셔스(10.18.~22.), 보츠와나(10.23.~25.), 스와질란드(10.25.~28.)
- 10.4. Glysteen, W.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부차관보 방한
- 10.4. 한·그리스 간의 무역협정 서명, 발효(조약 514호)
- 10.5.-24. 유엔 특별교섭단 중동 순방(레바논,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바레인)  
- 단장: 정일영 외교안보연구원장  
- 레바논(10.5.~9.), 요르단(10.9.~10.13.), 쿠웨이트(10.13.~17.), 카타르(10.17.~19.), 아랍에미리트(10.19.~21.), 오만(10.21.~23.), 바레인(10.23.~24.)
- 10.8.-11. 장예준 상공부장관 이란 방문
- 10.8.-13. 김동조 외무부장관 이탈리아 방문
- 10.9. 북한·자메이카 외교관계 수립
- 10.9.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 협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 (조약 515호)
- 10.11. 김동조 외무부장관 로마 교황청 방문
- 10.11-13. Fong, Hiram L. 미국 상원의원 방한
- 10.12.-13. Virgilio Tavora 브라질 상원의원 방한
- 10.12.-14. Janner, Lord 영국 상원의원 방한
- 10.12.-15. Vattekar, Odd 노르웨이 국회부의장 방한

- 10.12.-15. Southa Kakouma, C.S. 라오스 국회부의장 방한
- 10.12.-15. Bouchier, J.W. 호주 국회의원 방한
- 10.12.-15. Alam, Kho J. 이란 국회의원 방한
- 10.12.-15. Seamus, Pattinson 아일랜드 국회의원 방한
- 10.12.-15. Delorme, Claude 프랑스 국회의원 방한
- 10.12.-15. Antila, Pentti 핀란드 국회의원 방한
- 10.12.-15. Bunnag, P. 태국 국회의원 방한
- 10.12.-16. Amaolo, Mario O. 아르헨티나 국회의원 방한
- 10.12.-16. Murahari, G. 인도 국회부의장 방한
- 10.12.-16. Maurice, Q. 코트디부아르 국회부의장 방한
- 10.12.-16. Tolbert, Frank E. 라이베리아 상원의장 방한
- 10.13.-17. Ukil, Abdul Malek 방글라데시 국회의장 방한
- 10.13.-23. 영국 경제협력사절단 방한  
- 단장: Harris, T.C. 통상성 극동담당국장
- 10.14. 한·미국 E-System 회사 간의 전술용 무전기 KIT 구매협정 개정
- 10.14. 주자메이카대사관 개설
- 10.14.-15. Divounguy, Pierre Uaver 가봉 국회의장 방한
- 10.15. 1973년 국제사탕협정(ISO)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519호)
- 10.16. 한·네덜란드 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서명(1975.6.1. 발효, 조약 534호)
- 10.16.-18. 제5차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 특별총회(London)  
- 수석대표: 최종익 주영국대사관 공사
- 10.17. 북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가입
- 10.17.-20. Karki, G.B. 네팔 외상 방한
- 10.17.-11.23. 제18차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총회(Paris)  
- 수석대표: 윤석현 주프랑스대사
- 10.18.-30. 한국종합상품전시회 개최(Kuwait, 쿠웨이트)  
- 이병희 제1무임소장관 개막식 참석
- 10.19. 한·프랑스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516호)
- 10.19.-22. 우간다 통상사절단 방한  
- 단장: Athiyo 상공장관

- 10.21.-22. 제11차 한·일본 무역회담(서울)  
- 수석대표: 최호중 외무부 통상국장 / 다카시마 마사오 외무성 아시아국장
- 10.21.-11.1. 해상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London)  
- 수석대표: 최종익 주영국대사관 공사
- 10.22. 천병규 초대 주라오스대사 신임장 제정
- 10.23.-25. Osman, S. 아·아 농촌재건기구(AARRO) 사무차장 방한
- 10.23.-26. Moose, Richard M. 미국 상원의원 방한
- 10.24.-29. 노신영 외무부차관 중남미 순방(파나마, 베네수엘라, 페루)  
- 파나마(10.24.~26.), 베네수엘라(10.26.~28.), 페루(10.28.~29.)
- 10.24.-30. 제26차 세계식량계획(WFP) 정부간 위원회(Rome)
- 10.25. 한·일본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형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 협정 서명, 발효(조약 517호)
- 10.25.-28. Magnussen 노르웨이 상무장관 북한 방문
- 10.25.-30. Ringadoo, V. 모리셔스 재무상 방한
- 10.26.-11.9. 경제사절단 서남아 순방(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 단장: 송방용 경제과학심의위원  
- 인도(10.26.~11.3.), 방글라데시(11.3.~8.), 미얀마(11.9.)
- 10.28. 북한·베네수엘라 외교관계 수립
- 10.28.-11.3. 이란 국회의원단 방한  
- 단장: Riazi, Abdullah 하원의장
- 10.30.-11.16. 특별사절단 북구 순방(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 단장: 최규하 대통령 외교담당특별보좌관  
- 노르웨이(10.31.~11.2.), 스웨덴(11.2.~6.), 덴마크(11.6.~9.), 아이슬란드(11.9.~12.)
- 10.31.-11.3. Pastrana Borrero, Micael 전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 11.1. 세계관광기구(WTO) 규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522호)
- 11.4. 한·독일 간의 정밀기계센터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518호)
- 11.4. 강춘희 주서사모아대사 신임장 제정
- 11.5. 우간다 통상사절단 북한 방문
- 11.5.-6. 제1차 한·미얀마 통상장관회담(서울)  
- 수석대표: 장예준 상공부장관 / U San Win 통상장관
- 11.5.-16. 제3차 세계식량회의(Rome)  
- 수석대표: 정소영 농수산부장관

- 11.5.-12.14. 김동조 외무부장관 미국 방문
- 11.6.-11. De la Puente Raddbill, Jose 페루 외무성 경제차관보 방한
- 11.8. 강춘희 주통가대사 신임장 제정
- 11.8.-23. 경제사절단 중부아프리카 순방(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봉,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단장: 주원 경제과학심의위원  
 - 나이지리아(11.8.~10.), 카메룬(11.11.~14.), 가봉(11.14.~16.), 콩고민주공화국(11.17.~22.), 중앙아프리카공화국(11.22.~23.)
- 11.9. 한·월남 간의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각서교환 개정(조약 521호)
- 11.13. 윤경도 주오만대사 신임장 제정
- 11.14.-15. 김동조 외무부장관 캐나다 방문  
 - 11.15.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 서명
- 11.14.-16. 제9차 동남아경제개발각료회의(Manila)
- 11.15. 주한 유엔군사령부, 중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부근 북한의 제1땅굴 발견 발표
- 11.15. Alvarez Luna, Manuel 주한 멕시코대사 신임장 제정
- 11.15. De Silva, John Denis 제5대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신임장 제정
- 11.15. 한·캐나다 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520호)
- 11.19.-22. 제30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총회(Geneva)  
 - 수석대표: 문덕주 주이탈리아대사
- 11.20.-26. 제3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이사회(Madrid)
- 11.22. 제29차 유엔총회 본회의, 한국문제에 관한 대한민국 추가 각서 발표(북한의 비무장 지대 땅굴 구축 관계, 동일자 제1위원회 문서로 배포)
- 11.22.-23. Ford, Gerald R. 미국 대통령 방한
- 11.22.-23. Kissinger, Henry A. 미국 국무장관 방한
- 11.22.-26. Dutra, Tarso 브라질 상원의원 방한
- 11.22.-12.1. Abdor Reza 이란 왕자 북한 방문
- 11.25. 제29차 유엔총회 제1(정치)위원회, 한국문제 토의개시
- 11.25.-29. 한·호주 간의 섬유류 자율규제회담(Canberra)
- 11.27. 프랑스, 제29차 유엔총회 한국 문제 서방측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사무국에 제출

- 11.27. 주시에라리온대사관 개설
- 11.27.-29. 김동수 수산청장 모로코 방문
- 11.28.-12.2. 제10차 아시아의원연맹(APU) 총회(Bangkok)  
- 수석대표: 김종익 의원
- 11.28.-12.11. 장예준 상공부장관 아프리카 순방(세네갈, 케냐, 우간다)  
- 세네갈(12.3.~6.), 케냐(12.6.~7.), 우간다(12.8.~11.)
- 11.29.-12.3. 이창희 주멕시코대사 Somoza De Bayle, Anastacio 니카라과 대통령 취임식 참석
- 12.2.-4. Brimelow, T. 영국 외무성 사무차관 방한
- 12.5. 북한·보츠와나 외교관계 수립
- 12.5.-10.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총회 대비 제2차 77그룹 회의(Vienna)  
- 수석대표: 한표욱 주오스트리아대사
- 12.6.-9. Jephcott, Bruce R. 파푸아뉴기니 자원장관 방한
- 12.7. 1974년도 한·미국 간의 농산물 구매 협정의 2차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
- 12.7. 노석찬 주피지대사 신임장 제정
- 12.8.-11. 라오스 경제사절단 방한  
- 단장: Sisouk Na Champassak 국방장관
- 12.9. 제29차 유엔총회 제1(정치)위원회, 한국 문제에 관한 결의안 표결(서방 측 결의안 가결, 공산 측 결의안 부결)
- 12.9. 윤석현 주차드대사 신임장 제정
- 12.10. Aga, S.M. 초대 주한 인도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2.10.-16. Bentley, W. 영국 외무성 극동국장 방한
- 12.10.-20. 북한 수교 교섭사절단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 방문  
- 단장: 이성희 외교부 부부장  
- 오스트리아(12.10.~14.), 스위스(12.14.~20.)
- 12.11. 제7차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서울)
- 12.12.-15. Ibrahim Al-Sultan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차관 방한
- 12.15. 한·독일 간의 괴테학원 설립에 관한 협정 종료
- 12.15.-19. 국제금융공사(IFC) 조사단 방한
- 12.16. 문덕주 제5대 주제네바대사 부임
- 12.16.-17. 제6차 한·월남 경제각료회담(Saigon)  
- 수석대표: 장예준 상공부장관 / Le Quang Truong 재무장관

- 12.17. 김용식 제7대 주영국대사 신임장 제정
- 12.17. 제29차 유엔총회 본회의, 한국 문제에 관한 서방 측 결의안 가결(찬성 61, 반대 43, 기권 31)
- 12.17. 북한·오스트리아 외교관계 수립
- 12.19. 국제민간항공협약(ICA0)의 제56조 개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616호)
- 12.19.-20. 제1차 한·일본 경제협력실무자회담(서울)
- 12.19.-21. 한·일본 생사료회담(동경)
- 12.20. 한·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서명 (1976.9.3. 발효, 조약 583호)
- 12.20. 북한·스위스 외교관계 수립
- 12.20.-21. 장예준 상공부장관 일본 방문
- 12.26.-30. De Rozas, C.O. 주유엔 아르헨티나대사 방한
- 12.27. 한·일본 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 (조약 523호)
- 12.29.-30. Thurmond, Strom 및 Scott, William L. 미국 상원의원 방한





#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해설·요약 -

| 1974년 |

인쇄 2019년 11월 1일

발행 2019년 11월 15일

발행처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기획	외교부 기획조정실 외교사료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해제위원	박상훈, 박재현, 송봉헌, 이휘진, 최석인, 한재영
감수위원	박상훈
디자인/인쇄	(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세종인쇄정보 Tel. 044-868-8878